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9. 1.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2019년도 예산 설명서

Ⅰ. 2019년도 세입예산 설명자료 ····· 3

1. 2019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 ····· 5
2. 2019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 ····· 6
3. 2019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설명서 ····· 11

Ⅱ.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 117

1. 2019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 ····· 119
2. 2019년도 회계별·사업별 세출예산 ····· 120

Ⅲ.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127

농가경영안정 ····· 129

1.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 131
2. 농업재해보험 ····· 139
3.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 147
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151

5. 재해대책비(융자포함) ····· 159
6.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 165
7. 농업자금이차보전 ····· 172
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 203
9. 농기계임대 ····· 220
10.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 238
11. 밭농업직불제 ····· 243
12. 경영이양직불 ····· 252
13. 조건불리지역직불 ····· 258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 267

1.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정보화) ····· 269
2.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 280
3. 전공심화과정운영(책임,수입대체) ····· 290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294
5.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299
6. 농촌고용인력지원 ····· 313
7.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 317
8. 귀농귀촌활성화지원 ····· 324

양곡관리 ····· 333

1.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 335
2. 들녘경영체육성 ····· 340

3.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 347
4. 수입양곡대 ····· 353
5. 정부양곡매입비 ····· 359
6. 정부양곡관리비 ····· 364
7. 쌀소비활성화 ····· 371
8. 한은차입금이자상환 ····· 377

농업신산업육성 ····· 381

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 383
2. 노지작물과원스마트영농모델개발 ····· 391
3.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 394
4. 임대형스마트팜 ····· 398
5. 스마트팜실증단지 ····· 403
6.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 408
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 419
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 419
9.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 429
10.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조성 ····· 440
11.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 443
12.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 450
13. 도시농업활성화 ····· 457
14. 농기자재수출활성화 ····· 466

15. 친환경농업직불 ····· 471
16. 친환경농자재지원 ····· 479
17.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487
18.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 493
19.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 498
20.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 503
21. GoldenSeed프로젝트(R&D)(농림부) ····· 509
22.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R&D)(농림부) ···· 515
2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 523
24. 기술사업화지원(R&D) ····· 528
25. 첨단생산기술개발(R&D) ····· 535
26. 수출전략기술개발(R&D) ····· 542
27.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R&D) ····· 549
2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R&D) ····· 556
29.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R&D) ····· 565
30.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R&D) ····· 570
31. 농촌기반기술연구(R&D) ····· 575
32.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R&D) ····· 584
33.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R&D) ····· 590
34.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R&D) ····· 596
35.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R&D) ····· 602
36.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R&D) ····· 608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 613

1. 농업관측 ····· 615
2. 밭작물산업육성 ····· 621
3.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 628
4.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 634
5.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 639
6.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645
7.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 ····· 656

축산업진흥 ····· 671

1. 반려동물산업육성(자율) ····· 673
2. 반려동물산업육성(제주) ····· 680
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685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 693

1. 살처분보상금 ····· 695
2. 시도가축방역 ····· 700
3.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 705
4.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 708
5.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 716

농업생산기반정비 ····· 723

1. 배수개선 ····· 725
2. 한발대비용수개발 ····· 737
3.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744
4. 대단위농업개발(농특) ····· 749
5.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 756
6. 수리시설유지관리 ····· 768
7. 수리시설개보수 ····· 778
8. 농촌용수관리 ····· 783
9. 농업기반정비 ····· 799
10. 농업기반정비(세종) ····· 803
11. 농업기반정비(제주) ····· 806
12. 농촌용수개발 ····· 809
13.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 824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 829

1.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 831
2. 취약농가인력지원 ····· 839
3.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 845
4.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 851
5.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 858
6. 경관보전직불 ····· 865
7.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871

8. 토양개량제(제주) ····· 877
9.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 881
10. 농촌다원적자원활용 ····· 894
11.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 900
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 913
13. 농촌공간계획수립 ····· 920
14.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 926
15.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930
16. 농촌형교통모델(자율) ····· 934
17. 일반농산어촌개발 ····· 939
18. 지역행복생활권협력 ····· 945

국제협력협상 ····· 951

1. 국제농업협력(ODA) ····· 953
2. 농업협상대응 ····· 961
3. 국제기구분담금 ····· 970
4. 국제기구분담금(ODA) ····· 974

농산물품질관리 ····· 979

1. 농산물안전성조사 ····· 981
2. 농산물안전성조사(ODA) ····· 998
3.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 1004

4.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 1020
5. 농산물원산지관리 ····· 1050
6. 농업경영체등록 ····· 1067
7.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 1079

농림축산검역검사 ····· 1091

1.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 1093
2.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 1101
3. 동식물검역검사(ODA) ····· 1112
4. 동축산물검역검사 ····· 1121
5. 축산식품안전관리 ····· 1128
6.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 1134
7. 가축방역 ····· 1144

종자관리 ····· 1155

1.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종자원) ····· 1157
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 1177
3. 원원종 및 원종생산 ····· 1190
4.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 1198
5. 종자원정보화(정보화) ····· 1204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 1213

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 1215
2.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 1219
3.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정보화) ····· 1226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 1231

1. 행정운영 ····· 1233
2.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 ····· 1237
3.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 1245
4. 행정정보화(정보화) ····· 1251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 ····· 1259
6. 농업정보이용활성화 ····· 1264
7.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 1275
8. 정책연구개발사업(R&D) ····· 1284
9.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 1289
10. 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 ····· 1295
11.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 1304
12. 농업농촌알리기 ····· 1310
13. 기후변화실태조사 ····· 1312
14. 청사시설지원(본부) ····· 1316
15. 청사시설관리(농관원) ····· 1320
16. 청사시설지원(종자원) ····· 1327
17.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 1337

식품외식산업육성 ····· 1345

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 1347
2.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R&D) ····· 1354
3.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1360
4.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강화 ····· 1365
5.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 전략품목육성지원 ····· 1379
6. 수출인프라강화 ····· 1384
7.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 1390
8.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 1395
9. 푸드서비스선진화 ····· 1407
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율) ····· 1412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 141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농지관리기금 ····· 1429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433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434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 1436
2. 기타관유물대여료 ····· 1439
3.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 1442
4. 기타민간이자수입 ····· 1444
5. 기타재산수입 ····· 1449
6. 가산금 ····· 1450
7. 법정부담금 ····· 1451
8. 재고자산매각대 ····· 1454
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456
1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461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462
12. 기금예탁원금회수 ····· 1463
13. 기금예탁이자수입 ····· 1464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융자) ····· 1465
2.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1470
3. 대단위농업개발(농지) ····· 1478
4. 새만금지구(내부개발) ····· 1487
5.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 1492
6. 농지연금(융자) ····· 1496
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1503
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 1510
9.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 1519
10. 인건비 ····· 1535
11. 기타경비 ····· 1538
12. 농지은행인적역량강화사업 ····· 1553
13. 농지은행사업관리비 ····· 1557
14. 조성토지관리처분비 ····· 1564
15. 농지이용관리지원 ····· 1570
16.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 1574
17. 농지제도개선홍보 ····· 1577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출 ··· 1580
1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1582
20. 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 ····· 1584
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 ····· 1586

양곡증권정리기금 ····· 1589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593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594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 ····· 1595
2. 기금예수금 ····· 1597
3. 일반회계전입금 ····· 1599
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601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 ····· 1603
2.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 1606
3. 통화금융기관예치(양곡기금) ····· 1609

축산발전기금 ····· 1613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617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618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 1620
2. 기타민간이자수입 ····· 1621
3. 기타재산수입 ····· 1622

4. 법정부담금 ····· 1623
5. 민간출연금 ····· 1624
6. 기타경상이전수입 ····· 1625
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1626
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627
9. 특별회계전입금 ····· 1628
10.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629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인건비 ····· 1630
2. 기타경비 ····· 1633
3. 축산자조금 ····· 1637
4. 축산물수급관리 ····· 1644
5.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 1660
6.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 1667
7. 가축개량지원 ····· 1680
8. 사료산업종합지원 ····· 1689
9. 말산업육성지원 ····· 1694
1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1711
11.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1715
12.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 1719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1723
14. 가축분뇨처리지원 ····· 1732
15. 축산물품질관리 ····· 1741
16. 도축검사 운영 ····· 1751
17. 축산물HACCP지원 ····· 1760
18. 가축위생방역지원 ····· 1766
19. 비통화금융기관예치(축발기금) ····· 177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1775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779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780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 ····· 1781
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782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783
4. 특별회계전입금 ····· 1784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 1785
2. 직불제이행점검 ····· 1790
3. 인건비 ····· 1794
4. 기타경비 ····· 1797
5. 사업관리비 ····· 1800
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 180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807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811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812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민간이자수입 ····· 1814
2. 기타재산수입 ····· 1816
3. 법정부담금 ····· 1818
4. 기타경상이전수입 ····· 1820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821
6. 특별회계전입금 ····· 1823
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825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827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인건비 ····· 1829
2. 기타경비 ····· 1832
3.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 1835
4.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 1840
5.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 1843
6. 피해보전직불 ····· 1846
7. 폐업지원 ····· 1852
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 1857
9.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1861
10. 종자산업기반구축 ····· 1865
11. 과수생산유통지원 ····· 1871
12. 원예시설현대화 ····· 1882

13.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 1892
14.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 1899
15. 원유소비활성화 ····· 1902
16. 축사시설현대화 ····· 1906
17. 여유자금운용(통화, 비통화) ····· 191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915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919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921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 1924
2. 기타민간이자수입 ····· 1925
3. 기타재산수입 ····· 1927
4. 몰수금 및 추징금 ····· 1929
5. 위약금 ····· 1930
6. 법정부담금 ····· 1931
7. 기타경상이전수입 ····· 1933
8. 건물매각대 ····· 1934
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1936
10. 토지매각대 ····· 1937
11. 재고자산매각대 ····· 1939

12.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 1940
13.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1945
14.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1946
1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1947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 1948
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 1954
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 1960
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1965
5. 전통발효식품육성 ····· 1971
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 1984
7. 비축지원 ····· 1991
8.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 2019
9. 자조금지원 ····· 2025
10.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 2029
11. 도매유통활성화지원 ····· 2038
12.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2042
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 2050
14.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 2056
15.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2056
16.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 2062
17.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 2067

18.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융자) ····· 2072
19.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2078
20. 농산물마케팅지원 ····· 2093
21.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 2100
22.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2104
23.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2110
24. 종자수매·공급 ····· 2114
25. 인건비 ····· 2121
26. 기타경비 ····· 2125
27. 유통개선사업운영 ····· 2129
28. 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 ····· 2138
29.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 ····· 213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141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2145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2146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이자수입) ····· 2147
2. 면허료 및 수수료(재보험료 수입) ····· 2148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149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150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재보험금 ····· 2151

2. 인건비 ····· 2155

3. 기타경비 ····· 2158

4. 통화금융기관예치 ····· 2161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164

2019년도 예산 설명서

Ⅰ. 2019년도 세입예산 설명자료

1. 2019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억원)

구분 (항-목)	'18년 (A)	'19년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115,896**	**132,528**	**16,632**	**14.4**
□ 일반회계	**204**	**201**	**△3**	**△1.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7,401**	**110,933**	**13,532**	**13.9**
[구조개선사업계정]	**52,829**	**59,873**	**7,044**	**13.3**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9	159	-	-
○ 변상금및위약금	1	1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44	546	2	0.4
○ 면허료 및 수수료	14	14	-	
○ 잡수입	0.2	0.4	0.2	100.0
○ 고정자산매각대	-	2	2	순증
○ 재고자산매각대	0.2	0.1	△0.1	△50.0
○ 융자원금회수	2,689	2,689	-	-
○ 전년도이월금	-	△2,016	△2,016	순감
○ 전입금	49,422	58,478	9,056	18.3
- 일반회계전입금	39,312	36,315	△2,997	△7.6
- 타계정전입금	10,110	22,163	12,053	119.2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44,572**	**51,060**	**6,488**	**14.6**
○ 농어촌특별세	38,188	41,799	3,611	9.5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5	27	△48	△64.0
○ 기타경상이전수입	2,230	2,444	214	9.6
○ 잡수입	2	2	-	-
○ 융자원금회수	77	77	-	-
○ 전년도이월금	-	2,711	2,711	순증
○ 예탁원금회수	-	-	-	-
○ 기금전입금	4,000	4,000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	**429**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0**	**0.4**	**△89.6**	**△99.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9**	**217**	**28**	**14.8**
□ 양곡관리특별회계	**17,583**	**20,748**	**3,165**	**18.0**

2. 2019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

회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18년 (A)	'19년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20,392	20,130	△262	△1.3
□ 관유물대여료	627	645	18	2.9
○ 토지대여료	508	508	-	-
○ 건물대여료	109	127	18	16.5
○ 기타관유물대여료	10	10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68	268	-	-
○ 기타재산수입	268	268	-	-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393	1,375	△18	△1.3
○ 벌금및과료	18	-	-	-
○ 과태료	1,375	1,375	-	-
□ 변상금및위약금	878	878	-	-
○ 변상금	672	672	-	-
○ 위약금	206	206	-	-
□ 가산금	20	25	5	25.0
○ 가산금	20	25	5	25.0
□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13,922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13,922	-	-
□ 면허료및수수료	2,000	2,000	-	-
○ 면허료및수수료	2,000	2,000	-	-
□ 입학금및수수료	38	38	-	-
○ 수업료	38	38	-	-
□ 실습수입	10	10	-	-
○ 실습수입	10	10	-	-
□ 잡수입	135	135	-	-
○ 기타잡수입	135	135	-	-
□ 잡수입(수입대체)	746	773	27	3.6
○ 기타잡수입	746	773	27	3.6
□ 고정자산매각대	50	50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0	50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218	1	△217	△99.5
○ 토지매각대	218	1	△217	△99.5
□ 재고자산및유동자산	87	10	△77	△88.5
○ 재고자산매각대	67	10	△57	△85.1
○ 유동자산매각대	20	-	△20	△100.0

회계 :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18년 (A)	'19년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9,740,144**	**11,093,251**	**1,353,107**	**13.9**
구조개선사업계정 소계	5,282,889	5,987,251	**704,362**	**13.3**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870	15,870	**-**	**-**
○ 기타민간이자수입	9,733	9,733	-	-
○ 기타재산수입	6,137	6,137	-	-
□ **변상금 및 위약금**	85	85	**-**	**-**
○ 위약금	85	85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4,399	54,621	**222**	**0.4**
○ 법정부담금	1,388	1,610	222	16.0
○ 기타경상이전수입	53,011	53,011	-	
□ **면허료 및 수수료**	**1,383**	**1,383**	**-**	
○ 면허료 및 수수료	1,383	1,383	-	
□ **잡수입**	25	42	17	1.2
○ 기타잡수입	25	42	17	1.2
□ **고정자산매각대**		**199**	**199**	**순증**
○ 기계기구매각대		8	8	순증
○ 토지매각대		191	191	순증
□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19	12	△7	△36.8
○ 재고자산매각대	19	12	△7	△36.8
□ **융자원금회수**	**268,923**	**268,923**	**-**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68,923	268,923	-	-
□ **전년도이월금**	**-**	**△201,645**	**△201,645**	**순감**
○ 전년도이월금	-	△201,645	△201,645	순감
□ **전입금**	**4,942,185**	**5,847,761**	**905,576**	**18.3**
○ 일반회계전입금	3,931,151	3,631,464	△299,687	△7.6
○ 타계정전입금	1,011,034	2,216,297	1,205,263	119.2

구분 (항-목)	'18년 (A)	'19년 (B)	증감 (B-A)	증감률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소계	**4,457,255**	**5,106,000**	**648,745**	**14.6**
□ 농어촌특별세	**3,818,800**	**4,179,900**	**361,100**	**9.5**
○ 농어촌특별세	3,818,800	4,179,900	361,100	9.5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543**	**2,713**	**△4,830**	**△64.0**
○ 기타민간이자수입	1,364	1,364	-	-
○ 기타재산수입	6,179	1,349	△4,830	△78.2
□ 기타경상이전수입	**223,000**	**244,430**	**21,430**	**9.6**
○ 기타경상이전수입	223,000	244,430	21,430	9.6
□ 잡수입	**173**	**173**	**-**	**-**
○ 기타잡수입	173	173	-	-
□ 융자원금회수	**7,739**	**7,739**	**-**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739	7,739	-	-
□ 전년도이월금	**-**	**271,045**	**271,045**	**순증**
○ 전년도이월금	-	271,045	271,045	순증
□ 전입금	**400,000**	**400,000**	**-**	**-**
○ 기금전입금	400,000	400,000	-	-

회계 : 에특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18년 (A)	'19년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42,925**	**42,932**	**7**	
투자계정 소계	**20,911**	**20,918**	**7**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7**	**7**	**순증**
○ 기타재산수입	-	7	7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1**	**20,911**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1	20,911	-	
융자계정 소계	22,014	22,014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33**	**533**	**-**	
○ 기타민간이자수입	533	533	-	
□ 융자원금회수	21,481	21,481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1,481	21,481	-	

회계 : 혁특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목)	'18년 (A)	'19년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9,000**	**43**	**△8,957**	**△99.5**
□ 관유물대여료	**-**	**43**	**43**	**순증**
○ 건물대여료입	-	43	43	순증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9,000**	**-**	**△9,000**	**순감**
○ 토지매각대	9,000	-	△9,000	순감

회계 : 균특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목)	'18년 (A)	'19년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18,854**	**21,728**	**2,874**	**15.2**
지역자율 소계	**12,447**	**17,128**	**4,681**	**37.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0**	**160**	**40**	**33.3**
○ 기타재산수입	120	160	40	33.3
□ 기타경상이전수입	**12,327**	**16,968**	**4,641**	**37.6**
○ 기타경상이전수입	12,327	16,968	4,641	37.6
지역지원계정 소계	**6,407**	**4,600**	**△1,807**	**△28.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7**	**75**	**△62**	**△45.3**
○ 기타재산수입	137	75	△62	△45.3
□ 기타경상이전수입	**6,270**	**4,525**	**△1,745**	**△27.8**
○ 기타경상이전수입	6,270	4,525	△1,745	△27.8

회계 : 양특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18년 (A)	'19년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1,758,255**	**2,074,834**	**316,579**	**18.0**
□ 양곡사업수입	**452,224**	**390,280**	**△61,944**	**13.7**
○ 미곡판매수입	447,835	385,891	△	△
○ 부산물기타판매수입료	4,389	4,389	-	-
□ 잡수입	**9,754**	**9,754**	**-**	**-**
○ 기타잡수입	9,754	9,754	-	-
□ 전입금	**1,296,277**	**1,674,800**	**378,523**	**29.2**
○ 일반회계전입금	1,296,277	1,674,800	378,523	29.2

3. 2019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설명서

(1) 토지대여료
51 - 51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토지대여료	241	508	508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토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토지대여료(511)	508	
· 토지대여료	508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508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83	483	508	263	54.5	51.8	243	2
'15	508	508	468	89	26.6	36.1	239	-
'16	508	508	468	89	20.0	20.0	378	1
'17	508	508	460	241	47.4	52.4	219	-
'18	508	508	448	260	51.2	58.0	188	63

(2) 건물대여료

51-512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건물대여료	149	109	**127**	18	16.5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건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건물대여료(512)	109	
· 건물대여료	109	'15~'17년 평균수납액 반영
합계	109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82	82	99	96	117.1	97.0	3	
'15	91	91	79	76	83.5	96.2	-	-
'16	96	96	257	155	161.5	60.3	102	-
'17	91	91	152	149	163.7	98.0	3	-
'18	109	109	260	258	236.7	99.2	2	-

(3)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관유물대여료	3	10	**10**	-	-

1. 법적 근거

○ 제41조 (대부의 제한)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대부료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법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제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세입 개요

○ 물품 대부에 다른 대여료 징수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관유물대여료(513)	10	
· 기타관유물대여료	10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1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0	10	7	7	70.0	100.0		
'15	10	10	5	5	50.0	100.0		
'16	10	10	4	4	40.0	100.0		
'17	10	10	3	3	30.0	100.0		
'18	10	10	3	3	30.0	100.0		

(4)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재산수입	30	268	268	-	-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

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 유로 발생한 이자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재산수입(545)	268	
· 기타재산수입	268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268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68	268	840	857	319.8	99.7	2	1
'15	268	268	17	14	5.2	5.2	3	
'16	268	268	17	15	5.6	88.2	2	
'17	268	268	33	30	11.2	90.9	3	
'18	268	268	31	30	11.2	96.8	1	

(5)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과태료	1,150	1,375	**1,375**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인삼산업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
5.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종자산업법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수납하는 과태료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과태료(563)	1,375	
· 과태료	1,375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1,37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375	1,375	1,534	943	68.6	61.4	591	
'15	1,375	1,375	1489	881	64.1	59.2	603	5
'16	1,357	1,357	1,749	1,181	87.0	67.5	567	1
'17	1,375	1,375	1,763	1,150	83.6	65.2	613	-
'18	1,375	1,375	2,125	1,482	107.8	69.7	643	-

(6) 변상금
57-57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변상금	53	672	672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우,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 포함)에게 대한 변상금의 징수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변상금(571)	672	
· 변상금	672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672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72	672	169	55	8.2	32.5	106	
'15	672	672	219	121	18.0	55.2	98	-
'16	672	672	175	74	11.0	42.3	101	-
'17	672	672	154	53	7.9	34.4	101	-
'18	672	672	151	55	8.2	36.4	96	-

(7)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위약금	144	206	**206**	-	-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2.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할 지체상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위약금(572)	206	
· 위약금	206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206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06	206	166	164	79.6	98.8	2	-
'15	206	206	36	33	16.0	91.7	-	-
'16	206	206	35	31	15.0	88.6	4	-
'17	206	206	148	144	69.9	97.3	4	-
'18	206	206	21	18	8.7	85.7	3	-

(8) 가산금
58-58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가산금	19	20	**25**	5	20.0

1.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2. 세입 개요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식물방역법 위반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가산금(581))	20	
· 가산금	20	'15~'17년 평균 수납액 반영
합계	2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0	20	217	15	75.0	6.9	202	-
'15	188	188	243	12	6.4	4.9	228	3
'16	58	58	247	43	74.1	17.4	204	-
'17	20	20	212	19	95.0	8.9	193	-
'18	20	20	240	13	65.0	5.4	227	-

(9)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2,070	13,922	**13,922**	-	-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연체금 및 반환금 등(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출연비 정산금, 과오지급급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환금 등)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3,922	
·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18년 예산수준 반영
합계	13,922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5,188	15,188	3,460	1,413	9.3	40.8	2,042	5
'15	6,198	6,198	2,337	1,402	22.6	40.0	935	-
'16	5,261	5,261	2,735	1,839	35.0	67.2	896	-
'17	13,922	13,922	2,899	2,070	14.9	71.4	829	-
'18	13,922	13,922	3,390	2,430	17.4	71.7	960	-

(10)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면허료 및 수수료	1,210	2,000	**2,000**	-	-

1. 법적 근거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6조(품종보호료)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세입 개요

○ 면허·허가·이자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면허료및수수료(651)	2,000	
· 면허료및수수료	2,000	'18년 예산수준 반영
합계	2,00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462	3,462	1,207	1,207	34.9	100.0	-	-
'15	2,000	2,000	1,091	1,091	54.5	100.0	-	-
'16	2,000	2,000	1,111	1,014	50.7	91.3	97	-
'17	2,000	2,000	1,353	1,210	60.5	89.4	143	-
'18	2,000	2,000	1,599	1,219	60.9	76.2	380	

(11) 수업료
66-662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수업료	7	38	38	-	-

1. 법적 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제10장 학비지원, 기숙사생활 제40조 (학비지원) ①학생에게는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을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유급 등으로 인한 재 수업 학기의 학생에게는 학생 자부담으로 한다.
②피복, 침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지급품과 대여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2. 세입 개요

○ 유급자 및 수강자 학비부담금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수업료(662)	38	
· 수업료	38	'17년 예산수준으로 반영
합계	38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27	27	순증	100.0	-	-
'15	20	20	23	23	115.0	100.0	-	-
'16	27	27	65	65	240.7	100.0	-	-
'17	25	25	7	7	28.0	100.0	-	-
'18	38	38	282	159	418.4	56.4	123	-

(12) 실습수입
68-68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실습수입	10	10	10	-	-

1. 법적 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2. 세입 개요

○ 한국농수산대학 농산물 시험재배 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실습수입(681)	10	
· 실습수입	10	'18년 예산수준 반영
합계	1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8	8	순증	100.0	-	
'15	10	10	5	5	50.0	100.0		
'16	10	10	10	10	100.0	100.0		
'17	10	10	10	10	100.0	100.0		
'18	10	10	20	20	200.0	200.0		

(13) 기타잡수익
13-69-69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잡수익	22	135	135	-	-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불용물품 매각대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잡수익(691)	135	
· 기타잡수익	135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13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35	135	57	56	41.5	98.2	1	
'15	135	135	30	31	22.2	96.8	1	-
'16	135	135	25	25	18.5	100.0	-	-
'17	135	135	23	22	16.3	95.7	1	-
'18	135	135	26	26	19.3	100.0	-	-

(14) 기타잡수익(수입대체)
14-69-69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잡수익	785	746	773	27	3.6

1. 법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 인재개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한국농수산대학 전공심화과정 수업료 및 입학금 운용 규정 제7조 (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한국농수산대학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학기별로 징수한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이수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3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2. 4~5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3. 6~7학점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4. 8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세입 개요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및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실시하는 유료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및 숙박비 수입 등 기타 잡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잡수익(691)	746	
· 기타잡수익	746	'13~17년 평균예산 수준 반영
합계	746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00	600	766	763	127.2	99.6	3	-
'15	760	760	781	778	102.4	99.6	3	-
'16	763	763	760	756	99.2	99.5	4	-
'17	760	760	787	785	103.2	99.7	2	
'18	746	746	678	673	90.2	99.3	4	

(15)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50	50	-	-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세입 개요

○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 포함) 매각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3)	5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0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5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59	59	순증	100.0		
'15	50	50	18	18	36.0	100.0	-	-
'16	59	59	-	-	-	-	-	-
'17	50	50	-	-	-	-	-	-
'18	50	50	-	-	-	-	-	-

(16) 토지매각대
72-72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토지매각대	1	218	1	△217	△99.5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 토지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토지매각대(721)	1	
·토지매각대	1	'17년 수납액 수준 반영
합계	1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18	218	9	9	4.1	100.0	-	-
'15	218	218	-	-	-	-	-	-
'16	218	218	3	3	1.4	100.0	-	-
'17	218	218	1	1	0.5	100.0	-	-
'18	218	218	-	-	-	-	-	-

(17) 재고자산매각대
73-73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재고자산매각대	1	67	10	△57	△85.0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세입 개요

○ 재고자산의 매각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재고자산매각대(731)	10	
·재고자산매각대	10	'15년~'17년 평균 수납액 반영
합계	1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7	67	17	17	25.4	100.0	-	-
'15	67	67	16	16	23.8	100.0	-	-
'16	67	67	13	13	19.4	100.0	-	-
'17	67	67	1	1	1.5	100.0	-	-
'18	67	67	1	1	1.5	100.0	-	-

(18)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민간이자수입	3,131	9,733	**9,733**	-	-

1. 법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기타 수입금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세입 개요

○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의 농업인 등에 대한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민간이자수입(544)	9,733	
· 기타민간이자수입	9,733	'18년 예산 수준으로 반영
합계	9,733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9,733	9,733	6,081	6,078	62.4	99.9	3	-
'15	5,686	5,686	2,951	2,951	51.9	100.0	-	-
'16	9,733	9,733	2,622	2,622	26.9	100.0	-	-
'17	9,733	9,733	3,131	3,131	32.1	100.0	-	
'18	9,733	9,733	2,599	2,599	26.7	100.0	-	

(19) 기타재산수입
54-545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재산수입	1,432	6,137	6,137	-	-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재산수입(545)	6,137	
· 기타재산수입	6,137	'18년 예산 수준으로 반영
합계	6,137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758	1,758	923	914	52.4	99.0	9	-
'15	6,137	6,137	398	391	6.4	98.2	7	-
'16	6,137	6,137	1,699	1,689	27.5	99.4	10	-
'17	6,137	6,137	1,445	1,432	23.3	99.1	13	-
'18	6,137	6,137	643	629	10.2	97.8	14	-

(20) 위약금
57-572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위약금	89	85	**85**	-	-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세입 개요

○ 구매계약의 해약, 용역계약 지연 등에 따른 지체상금 등 위약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위약금(572))	85	
· 위약금	85	'18년 예산 수준으로 반영
합계	8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85	85	72	72	84.7	100.0	-	-
'15	85	85	55	55	64.7	100.0	-	-
'16	85	85	55	55	64.7	100.0	-	-
'17	85	85	89	89	104.7	100.0	-	-
'18	85	85	128	128	150.6	100.0	-	-

(21) 법정부담금
59-593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법정부담금	1,942	1,388	**1,610**	222	16.0

1. 법적 근거

○ 법적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1992.1.1부터 부과, 2002.1.1에 근거규정 폐지로 신규 부과 없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에 의해 관련규정 폐지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

2. 세입 개요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으로써 얻는 수입(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징수)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법정부담금(593)	1,610	
· 법정부담금	1,610	'15~'17년 수납 및 기한 미도래분 수납예산액 반영
합계	1,61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388	1,388	909	838	60.4	92.2	71	-
'15	1,388	1,388	308	308	22.2	100.0	-	-
'16	1,388	1,388	965	965	69.5	100.0	-	-
'17	1,388	1,388	1,942	1,942	139.9	100.0	-	-
'18	1,388	1,388	1,170	1,170	84.3	100.0	-	-

(22)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34,163	53,011	**53,011**	-	-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의 정산잔액 반납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53,011	
· 기타경상이전수입	53,011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53,011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0,057	40,057	46,743	44,754	111.7	95.7	1,989	-
'15	53,011	53,011	45,377	44,067	83.1	97.1	1,310	-
'16	53,011	53,011	34,103	32,863	62.0	96.4	1,240	-
'17	53,011	53,011	34,990	34,163	64.4	97.6	827	-
'18	53,011	53,011	39,602	25,486	48.1	64.3	14,116	-

(23)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면허료 및 수수료	285	1,383	**1,383**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심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삭제
7.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거절·취소에 대한 심판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자
9.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1조에 따른 제척·기피신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른 참가신청, 같은 법 제

165조에 따른 비용액결정의 청구,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청구를 하는 자. 이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4조에 따른 재심에서의 신청·청구 등을 포함한다.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검사나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5.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6.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17.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세입 개요

○ 안전성 분석 수수료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면허료 및 수수료(651)	1,383	
· 면허료및수수료	1,383	'18년 예산 수준 반영
합계	1,383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99	199	1,348	1,348	677.4	100.0	-	-
'15	465	465	1,417	1,417	304.7	100.0	-	-
'16	1,348	1,348	896	896	66.5	100.0	-	-
'17	1,383	1,383	285	285	20.6	100.0	-	-
'18	1,383	1,383	161	161	11.6	100.0	-	-

(24) 기타잡수익
69-691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잡수익	20	25	**42**	17	68.0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세입 개요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잡수익(691))	42	
· 기타잡수익	42	'13년~'16년 평균 수납액 반영
합계	2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0	10	5	5	50.0	100.0	-	-
'15	25	25	87	87	348.0	100.0	-	-
'16	25	25	2	2	8.0	100.0	-	-
'17	25	25	20	20	80.0	100.0	-	-
'18	25	25	20	17	68.0	85.0	3	-

(25) 기계기구매각대
71-712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계기구매각대	15	-	8	8	순증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세입 개요

○ 기계기구(차량) 매각대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계기구매각대(712)	8	
· 기계기구매각대	8	'15년~'17년 평균 수납액 반영
합계	8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
'15	-	-	-	-	-	-	-	-
'16	-	-	9	9	순증	100.0	-	-
'17	-	-	15	15	순증	100.0	-	-
'18	-	-	-	-	-	-	-	-

(26) 토지매각대
72-721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토지매각대	-	-	191	191	순증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 토지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토지매각대(721)	191	
· 토지매각대	191	'15년~'17년 평균 수납액 반영
합계	191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
'15	-	-	181	181	순증	100.0	-	-
'16	-	-	393	393	순증	100.0	-	-
'17	-	-	-	-	-	-	-	-
'18	-	-	-	-	-	-	-	-

(27) 재고자산매각대
73-731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재고자산매각대	1	19	12	△7	△36.8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세입 개요

○ 재고자산 매각대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재고자산매각대(731)	12	
・재고자산매각대	12	'15년~'17년 평균 수납액 반영
합계	12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8	18	8	8	44.4	100.0	-	-
'15	18	18	1	1	5.5	100.0	-	-
'16	19	19	33	33	173.7	100.0	-	-
'17	19	19	1	1	5.3	100.0	-	-
'18	19	19	-	-	-	-	-	-

(2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42,065	268,923	**268,923**	-	-

1. 법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예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세입 개요

○ 농업정책금융원이 대여기관(농협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농특회계 융자원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4)	268,923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68,923	융자원금 회수계획에 따른 '19년도 민간융자원금 회수액
합계	268,923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97,712	397,712	221,150	221,150	55.6	100.0	-	-
'15	246,965	246,965	199,218	199,218	80.7	100.0	-	-
'16	216,727	216,727	160,578	160,578	74.1	100.0	-	-
'17	224,723	224,723	142,065	142,065	63.2	100.0	-	-
'18	268,923	268,923	108,302	108,302	40.3	100.0	-	-

(29) 전년도이월금
88-881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전년도이월금	9,340	-	△201,645	△201,645	순감

1. 법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전년도 세입수납액과 세출액간의 결산상 잉여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전년도이월금(881)	△201,645	
·전년도이월금	△201,645	'19년도 재정수지를 고려하여 산정
합계	△201,64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4,243	28,243	47,026	47,026	166.5	100.0	-	-
'15	18,550	18,550	92,030	92,030	496.1	100.0	-	-
'16	28,040	28,040	5,349	5,349	19.1	100.0	-	-
'17	28,044	28,044	9,340	9,340	33.3	100.0	-	-
'18	-	-	4,653	4,653	순증	100.0	-	-

(30)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일반회계전입금	3,696,202	3,931,151	**3,361,464**	△299,687	△7.6

1. 법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중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의 상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일반회계전입금(911)	3,631,464	
·일반회계전입금	3,631,464	법정전입금 및 '19년도 재정수지를 고려하여 산정
합계	3,631,464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162,949	3,162,949	3,162,949	3,162,949	100.0	100.0	-	-
'15	4,826,173	4,868,473	4,868,473	4,868,473	100.9	100.0	-	-
'16	4,007,350	4,007,350	4,007,350	4,007,350	100.0	100.0	-	-
'17	3,507,926	3,507,926	3,696,202	3,696,202	105.4	100.0	-	-
'18	3,947,721	3,947,721	4,066,593	4,066,593	103.0	100.0	-	-

(31) 계정간전입금

91-15

<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계정간전입금	1,345,900	1,011,034	**2,216,297**	1,205,263	119.2

1. 법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예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2. 세입 개요

○ 농특회계 농특세계정에서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입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계정간전입금(915)	2,216,297	
· 계정간전입금	2,216,297	'19년도 재정수지를 고려하여 산정
합계	2,216,297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523,140	2,523,140	1,442,593	1,442,593	57.0	100.0	-	
'15	1,485,549	1,485,549	1,258,000	1,258,000	84.7	100.0	-	
'16	1,528,986	1,528,986	1,301,500	1,301,500	85.1	100.0	-	-
'17	1,359,688	1,359,688	1,345,900	1,345,900	98.9	100.0	-	-
'18	1,011,034	999,564	1,513,352	1,513,352	151.4	100.0	-	-

(32) 농어촌특별세
91-15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농어촌특별세	3,838,756	3,818,800	**4,179,900**	361,100	9.5

1. 법적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2. 세입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조세감면액, 증권거래액 및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부가세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농어촌특별세(371)	4,179,900	
· 농어촌특별세	4,179,900	'17년도 결산 수납액 및 '18년 수납액 등을 감안하여 반영
합계	4,179,90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195,890	4,195,800	3,332,412	3,332,412	79.4	100.0	-	-
'15	3,702,000	3,702,000	3,824,900	3,824,900	103.3	100.0	-	
'16	3,620,300	3,620,300	3,636,956	3,636,956	100.5	100.0	-	-
'17	3,783,000	3,783,000	3,838,756	3,838,756	101.5	100.0	-	-
'18	3,818,800	3,818,800	3,791,261	3,791,261	99.2	100.0	-	-

(33)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민간이자수입	723	1,364	**1,364**	-	-

1. 법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2. 세입 개요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사업계정의 농업인 등에 대한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민간이자수입(544)	1,364	
· 기타민간이자수입	1,364	'18년 예산 수준으로 반영
합계	1,364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252	3,252	2,276	2,276	70.0	100.0	-	-
'15	3,170	3,170	1,656	1,656	52.2	100.0	-	-
'16	2,276	2,276	1,161	1,161	51.0	100.0	-	-
'17	1,548	1,548	723	723	46.7	100.0	-	-
'18	1,364	1,364	478	478	13.0	100.0	-	-

(34) 기타재산수입

54-545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재산수입	873	6,179	**1,349**	△4,830	△78.2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 유로 발생한 이자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재산수입(545)	1,349	
·기타재산수입	1,349	'15~'17년 평균 수납액 수준 반영
합계	1,349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801	801	2,833	2,833	353.7	100.0	-	-
'15	6,179	6,179	1,562	1,562	25.3	100.0	-	-
'16	6,179	6,179	1,612	1,612	26.1	100.0	-	-
'17	6,179	6,179	873	873	14.1	100.0	-	-
'18	6,179	6,179	734	729	11.8	99.3	4	-

(35)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338,345	223,000	**244,430**	21,430	9.6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244,430	
· 기타경상이전수입	244,430	농신보 출연금 반납 200,000백만원, 집행잔액 반납 44,430백만원
합계	244,43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553,996	553,996	521,556	521,071	94.1	93.0	485	-
'15	144,430	144,430	114,875	114,498	79.3	99.7	377	-
'16	344,430	344,430	24,747	22,740	6.6	91.9	2,007	-
'17	444,430	444,430	338,688	338,345	76.2	99.8	1,657	-
'18	223,000	223,000	220,552	217,340	97.5	98.5	3,212	-

(36) 기타잡수익
69-691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잡수익	-	173	173	-	-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잡수익(691)	173,000	
· 기타잡수익	173,000	'18년 예산수준으로 반영
합계	173,00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162	1,162	17	17	1.5	100.0	-	-
'15	1,162	1,162	57	57	4.9	100.0	-	-
'16	1,162	1,162	-	-	-	-	-	-
'17	173	173	-	-	-	-	-	-
'18	173	173	-	-	-	-	-	-

(3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5,225	7,739	7,739	-	-

1. 법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2. 세입 개요

○ 농특세사업계정에서 농업인 등에게 융자하고 있는 사업자금의 원금 상환액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4)	7,73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739	'19년 원리금 회수 계획에 따른 융자사업 상환액
합계	7,739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1,010	21,010	23,670	23,670	112.7	100.0	-	-
'15	17,826	17,826	15,046	15,046	84.4	100.0	-	-
'16	6,048	6,048	10,218	10,218	168.9	100.0	-	-
'17	7,455	7,455	5,225	5,225	70.1	100.0	-	-
'18	7,739	7,739	6,565	6,565	84.8	100.0	-	-

(38) 전년도이월금
88-881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전년도이월금	477,034	-	271,0450	271,045	순증

1. 법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전년도 세입수납액과 세출액간 결산상 잉여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전년도이월금(881)	271,045	
·전년도이월금	271,045	'18년 결산상 잉여금 추정
합계	271,04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92,944	392,944	451,033	451,033	114.8	100.0	-	-
'15	448,757	448,757	532,697	532,697	118.7	100.0	-	-
'16	144,286	144,286	478,402	478,402	331.6	100.0	-	-
'17	△118,787	△118,787	477,034	477,034	△401.6	100.0	-	-
'18	-	-	556,877	556,877	순증	100.0	-	-

(39) 기금전입금
88-881

< 농특회계-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전년도이월금	400,000	400,000	**400,000**	-	-

1.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3조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2. 세입 개요

○ 농특회계 농특세계정 재원 부족분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금전입금(913)	400,000	
·기금전입금	400,000	농지관리기금의 기금전입금 4,000억원 반영
합계	400,00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
'15	-	-	100,000	100,000	순증	순증	-	-
'16	-	-	300,000	300,000	순증	순증	-	-
'17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00.0	100.0	-	-
'18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00.0	100.0	-	-

(40) 기타재산수입
88-881

< 에특회계-투자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재산수입	1	-	7	7	순증

1.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2. 세입 개요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재산수입(545)	7	
· 기타재산수입	7	'15~'17년 평균 수납액 수준
합계	400,00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
'15	-	-	1	1	순증	100.0	-	-
'16	-	-	19	19	순증	100.0	-	-
'17	-	-	1	1	순증	100.0	-	-
'18	-	-	2	2	-	-	-	-

(41)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에특회계-투자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20,968	20,911	**20,911**	-	-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20,911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1	'18년 예산액 수준으로 반영
합계	20,911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749	1,749	18,822	17,771	1,016.0	94.4	1,051	-
'15	13,200	13,200	16,136	16,135	122.2	100.0	1	-
'16	19,866	19,866	1,989	1,955	9.8	98.3	34	-
'17	20,911	20,911	20,968	20,968	100.4	100.0	-	-
'18	20,911	20,911	2,460	1,765	8.4	71.7	695	-

(42)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에특회계-융자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민간이자수입	167	533	533	-	-

1.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타 수입금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3.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4.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민간이자수입(544)	533	
· 기타민간이자수입	533	'18년 예산액 수준으로 반영
합계	533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99	199	596	596	299.5	100.0	-	-
'15	351	351	555	555	158.1	100.0	-	-
'16	596	596	145	145	24.3	100.0	-	-
'17	533	533	167	167	31.3	100.0	-	-
'18	533	533	161	161	30.2	100.0	-	-

(43)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 에특회계-융자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5,559	21,481	**21,481**	-	-

1.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타 수입금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3.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4.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융자원금 회수액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4)	21,481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1,481	'18년 예산액 수준으로 반영
합계	21,481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9,686	9,686	24,987	24,987	258.0	100.0	-	-
'15	18,716	18,716	13,765	13,765	73.5	100.0	-	-
'16	25,340	25,340	19,124	19,124	75.5	100.0	-	-
'17	21,481	21,481	15,559	15,559	72.4	100.0	-	-
'18	21,481	21,481	14,290	14,290	66.5	100.0	-	-

(44) 건물대여료
51-512

< 혁특회계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2	-	43	43	순증

1. 법적 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2. 세입 개요

○ 국가소유 부동산(건물) 사용료 징수액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건물대여료(512)	43	
·건물대여료	43	'15년~'17년 평균 수납액 수준으로 반영
합계	43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1	21	순증	100.0		
'15			9	9	순증	100.0		
'16			78	78	순증	100.0		
'17			42	42	순증	100.0		
'18			46	46	순증	100.0		

(45) 기타재산수입
54-545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재산수입	164	120	160	0	33.3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장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재산수입(545)	160	
· 기타재산수입	160	'15년~'17년 평균 수납액 수준으로 반영
합계	16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
'15	-	-	96	96	순증	100.0	-	-
'16	120	120	220	220	183.3	100.0	-	-
'17	120	120	164	164	136.7	100.0	-	-
'18	120	120	108	86	71.7	79.6	22	-

(46)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17,682	12,327	**16,968**	4,641	37.6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6,968	
· 기타경상이전수입	16,968	'15년~'17년 평균 수납액 수준으로 반영
합계	16,968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5,739	5,739	9,706	9,202	160.3	94.8	504	-
'15	5,739	5,739	15,783	15,208	265.0	96.4	575	-
'16	9,202	9,202	18,373	18,015	195.8	98.0	358	-
'17	9,202	9,202	18,123	17,682	192.1	91.0	283	-
'18	12,327	12,327	15,010	5,928	48.1	39.5	9,082	-

(47) 기타재산수입
54-5454

<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재산수입	1	137	75	△62	△45.3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장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재산수입(545)	75	
· 기타재산수입	75	'14년~'16년 평균 수납액 수준으로 반영
합계	7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03	103	146	146	141.7	100.0	-	-
'15	137	137	59	59	43.1	100.0	-	-
'16	146	146	64	64	43.8	100.0	-	-
'17	137	137	1	1	-	-	-	-
'18	137	137	82	2	1.4	2.4	80	-

(48)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278	6,270	**4,525**	△1,745	△27.8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596)	4,525	
· 기타경상이전수입	4,525	'13년~'15년 평균 수납액 수준으로 반영
합계	4,52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093	1,093	9,991	9,828	899.2	98.4	163	-
'15	4,458	4,458	2,584	2,584	58.0	100.0	-	-
'16	9,827	9,827	3,538	3,534	36.0	99.9	-	-
'17	6,270	6,270	282	278	434	98.6	4	-
'18	6,270	6,270	4,146	1,851	29.5	44.6	2,295	

(49) 미곡판매수입
41 - 411

< 양특회계-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미곡판매수입	476,360	447,835	**385,891**	△61,944	△13.8

1. 법적 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일반판매용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세입 개요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미곡판매수입(411)	385,891	
· 미곡판매수입	385,891	▪ 군수용 : 42천톤×2,211천원= 92,862백만원 ▪ 관수용 : 8천톤×1,990천원= 15,920백만원 ▪ 학교급식용 : 1천톤×2,211천원= 2,211백만원 ▪ 기초수급자용 : 63천톤×160천원= 10,080백만원 ▪ 차상위계층용 : 15천톤×820천원= 12,300백만원 ▪ 기초보장시설용 : 1천톤×1,1,06천원= 1,106백만원 ▪ 무료급식단체용 : 1천톤×312천원= 312백만원 ▪ 경로당용 : 10천톤×2,211천원= 22,110백만원 ▪ 가공용(국산) : 60천톤×400천원 = 24,000백만원 ▪ 가공용(수입) : 195천톤×232천원 = 45,240백만원 ▪ 주정용(수입) : 190천톤×291천원= 55,290백만원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사료용 : 410천톤×206천원= 84,460백만원 ▪ 원조용 : 50천톤×400천원= 20,000백만원
합계	358,891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91,922	691,922	543,730	536,378	77.5	98.6	7,351	-
'15	691,922	691,922	501,105	500,216	72.3	99.8	889	-
'16	659,685	659,685	465,577	465,453	70.6	100.0	124	-
'17	581,000	581,000	476,484	476,360	82.0	100.0	124	-
'18	447,835	447,835	959,801	726,173	162.2	75.7	233,504	124

※ '18년은 12월 27일 기준(잠정)

(50) 부산물 및 기타판매수입료
41 - 413

< 양특회계-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부산물 및 기타판매수입료	3,496	4,389	**4,389**	-	-

1. 법적 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일반판매용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세입 개요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 및 잡곡 부산물 등 판매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부산물및기타판매수입(413)	4,389	
· 부산물및기타판매수입	4,389	▪ 전년 수준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합계	4,389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389	4,389	3,375	3,366	76.6	99.7	9	-
'15	4,389	4,389	3,261	3,260	74.3	99.7	1	-
'16	4,389	4,389	3,728	3,703	84.4	99.3	25	-
'17	4,389	4,389	3,503	3,496	79.6	99.8	7	-
'18	4,389	4,389	4,077	4,010	91.4	98.4	66	-

※ '18년은 12월 27일 기준(잠정)

(51) 기타 잡수입
69 - 691

< 양특회계-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기타잡수입	1,366	9,754	**9,754**	-	-

1. 법적 근거

○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곡관리사업 수입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차입금 4.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세입 개요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기타 잡수입(691)	9,754	
· 기타 잡수입	9,754	▪ 전년 수준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합계	9,754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9,413	9,413	9,754	9,754	103.6	100.0	-	-
'15	9,413	9,413	15,758	15,758	167.4	100.0	-	-
'16	9,754	9,754	10,649	10,641	109.1	99.9	8	-
'17	9,754	9,754	1,366	1,366	100.0	100.0	-	-
'18	9,754	9,754	11,628	10,900	111.7	93.7	728	-

※ '18년은 12월 27일 기준(잠정)

(52)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양특회계-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B-A)	%
일반회계전입금	842,656	1,296,277	**1,674,800**	378,523	29.2

1. 법적 근거

○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곡관리사업 수입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차입금 4.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세입 개요

○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대비 자체 수입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지원

3. 2019년 세입 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세목별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일반회계전입금(911)	1,674,800	
· 일반회계전입금	1,674,800	▪ 총 세입액(2,074,834백만원) - 자체세입(400,034) = 일반회계 전입금(1,674,800)
합계	1,674,80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792,561	792,561	792,561	792,561	100.0	100.0	-	-
'15	596,874	596,874	596,874	596,874	100.0	100.0	-	-
'16	894,860	894,860	894,860	894,860	100.0	100.0	-	-
'17	842,656	842,656	842,656	842,656	100.0	100.0	-	-
'18	1,296,277	1,296,277	1,296,277	1,296,277	100.0	100.0	-	-

※ '18년은 12월 27일 기준(잠정)

Ⅱ.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1. 2019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구 분	'17	'18 (A)	'19 (B)	증 감	
					(B-A)	%
전 체	총계	168,822	178,087	195,191	17,104	9.6
	순계	99,953	103,564	106,401	2,837	2.7
	일반지출	80,762	86,795	95,758	8,963	10.3
□ 일반회계	총계	49,815	61,002	62,842	1,840	3.0
	일반지출	5,734	6,562	6,727	165	2.5
	기금전출금	1,770	2,166	3,052	886	40.9
	회계계정간	42,310	52,274	53,063	789	1.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계	89,900	85,605	97,054	11,449	13.4
o 구조개선사업계정	총계	43,568	45,303	52,357	7,054	15.6
	일반지출	27,484	29,556	33,908	4,352	14.7
	기금전출금	3,173	3,607	4,884	1,277	35.4
	회계계정간	12,911	12,140	13,565	1,425	11.7
o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총계	46,332	40,302	44,697	4,395	10.9
	일반지출	18,947	19,195	19,827	632	3.3
	기금전출금	13,738	10,996	2,707	△8,289	△75.4
	회계계정간	13,647	10,110	22,163	12,053	119.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총계	530	453	394	△59	△13.0
o 투자계정	일반지출	376	340	301	△39	△11.5
o 융자계정	일반지출	154	114	93	△21	△18.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계	14,199	13,444	14,153	709	5.3
o 지역자율계정	일반지출	13,525	12,874	13,608	734	5.7
o 지역지원계정	일반지출	146	63	39	△24	△38.1
o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일반지출	459	421	424	3	0.7
o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일반지출	69	87	83	△4	△4.6
□ 양곡관리특별회계	총계	14,378	17,583	20,748	3,165	18.0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총계	-	-	-	-	-

2. 2019년도 회계별·사업별 세출예산

가. 농업·농촌

(단위 : 백만원, %)

구분(프로그램 코드)	'17년	'18년(A)	'19년(B)	증감(B-A)	증감률
농가경영안정(1000)	**1,828,537**	**1,818,267**	**2,133,699**	**315,432**	**17.3**
[300]농업재해보험	286,995	252,148	326,046	73,898	29.3
[302]재해대책비	48,000	48,000	55,764	7,764	16.2
[304]재해대책비(융자)	28,500	28,500	28,500	-	-
[302]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58,345	17,133	12,519	△4,614	△26.9
[301]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	50,962	55,740	4,778	9.4
[305]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	-	300	순증	순증
[301]농업자금이차보전	210,519	221,562	420,922	199,360	90.0
[305]농업정책보험금융원기관운영비지원	-	6,577	6,820	243	3.7
[324]농기계임대	28,500	30,900	43,500	12,600	40.8
[301]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816,000	809,000	802,770	△6,230	△0.8
[420]밭농업직불제	190,646	193,738	207,790	14,052	7.3
[302]경영이양직불	54,517	49,662	47,179	△2,483	△5.0
[342]조건불리지역직불	47,220	50,560	54,647	4,087	8.1
[368]농업인안전재해보험	59,295	59,525	71,202	11,677	19.6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1100)	**86,009**	**102,778**	**140,016**	**37,238**	**36.2**
[500]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정보화)	1,231	1,316	1,231	△85	△6.5
[300]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36,481	29,748	42,708	12,960	43.6
[310]전공심화과정운영(책임,수입대체)	226	228	297	69	30.3
[344]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	5,880	9,480	3,600	61.2
[380]A팜쇼	-	300	-	순감	순감
[436]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11,859	21,372	9,513	80.2
[331]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3,503	38,232	48,520	10,288	26.9
[333]농촌고용인력지원	-	2,400	2,400	-	-
[407]귀농귀촌활성화지원	14,568	12,815	14,008	1,193	9.3
양곡관리(2100)	**1,412,793**	**1,820,670**	**2,153,355**	**332,685**	**18.3**
[310]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	136,829	150,479	13,650	10.0
[350]들녘경영체육성	11,114	11,216	13,702	2,486	22.2
[430]고품질쌀유통활성화	14,880	14,370	14,340	△30	△0.2
[362]수입양곡대	357,026	386,905	379,567	△7,338	△1.9
[564]한은차입금이자상환	11,900	10,486	10,050	△436	△4.2
[360]정부양곡매입비	763,677	873,030	1,105,102	232,072	26.6
[366]정부양곡관리비	247,796	381,434	473,715	92,281	24.2
[369]쌀소비활성화	6,400	6,400	6,400	-	-

구분(프로그램 코드)	'17년	'18년(A)	'19년(B)	증감(B-A)	증감률
농업신산업육성(2200)	**498,524**	**497,735**	**540,322**	**42,587**	**8.6**
[301]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23,000	20,000	15,000	△5,000	△25.0
[401]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R&D)	-	1,800	1,811	11	0.6
[323]토양복원기술적용기반구축	-	1,000	-	순감	순감
[368]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644	744	-	순감	순감
[370]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00	10,500	28,000	17,500	166.7
[376]노지작물과원스마트영농모델개발	-	1,100	3,000	1,900	172.7
[380]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	-	12,190	순증	순증
[383]임대형스마트팜	-	-	16,400	순증	순증
[386]스마트팜실증단지	-	-	19,227	순증	순증
[312]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3,243	3,358	3,190	△168	△5.0
[314]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조성	-	-	500	순증	순증
[304]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1,731	3,141	1,710	△1,431	△45.6
[381]바이오양잠융복합특화단지조성	-	250	-	순감	순감
[384]도시농업활성화	-	-	1,600	순증	순증
[375]농기자재수출활성화	617	973	931	△42	△4.3
[320]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	-	500	-	순감	순감
[301]친환경농자재지원	220,940	203,210	188,752	△14,458	△7.1
[303]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	2,050	순증	순증
[305]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5,800	856	1,000	144	16.8
[383]친환경농업직불	41,096	43,545	38,110	△5,435	△12.5
[412]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37,239	34,250	23,903	△10,347	△30.2
[401]GoldenSeed프로젝트(R&D)(농림부)	20,450	20,450	26,199	5,749	28.1
[405]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R&D)(농림부)	4,732	4,775	6,355	1,580	33.1
[410]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	8,912	9,354	442	5.0
[411]농촌개발시험연구(R&D)	2,018	350	-	순감	순감
[421]기술사업화지원(R&D)	10,284	8,910	7,181	△1,729	△19.4
[430]첨단생산기술개발(R&D)	29,909	30,678	28,505	△2,173	△7.1
[431]수출전략기술개발(R&D)	17,501	16,551	13,010	△3,541	△21.4
[432]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R&D)	7,347	7,989	7,794	△195	△2.4
[436]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R&D)	7,724	13,347	13,581	234	1.8
[447]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R&D)	-	964	2,843	1,879	194.9
[448]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R&D)	-	3,043	4,321	1,278	42.0
[450]농촌기반기술연구(R&D)	-	1,527	1,802	275	18.0
[451]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R&D)	-	3,417	5,558	2,141	62.7
[453]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R&D)	-	-	3,159	순증	순증
[454]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R&D)	-	-	5,750	순증	순증
[457]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R&D)	-	-	4,250	순증	순증
[410]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33,952	30,304	27,273	△3,031	△10.0
[411]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3,649	3,649	2,823	△826	△22.6

구분(프로그램 코드)	'17년	'18년(A)	'19년(B)	증감(B-A)	증감률
[420]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401	11,365	9,332	△2,033	△17.9
[384]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7,747	6,277	3,858	△2,419	△38.5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3000)	**49,038**	**59,335**	**70,630**	**11,295**	**19.0**
[350]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	-	7,200	7,200	-	-
[300]농업관측	8,339	8,518	8,520	2	0.02
[338]밭작물산업육성	8,450	10,200	10,950	750	7.4
[383]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	1,150	4,500	3,350	291.3
[456]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22,668	22,668	23,501	833	3.7
[384]농식품바우처지원	-	500	-	순감	순감
[385]농식품소비정책및건전한식생활확산	-	-	6,781	순증	순증
[310]국가인증농식품지원	9,581	9,099	9,178	79	0.9
축산업진흥(3700)	**2,419**	**7,364**	**13,589**	**6,225**	**84.5**
[338]동물보호및복지대책	2,419	7,364	4,109	△3,255	△44.2
[310]반려동물산업육성(자율)	-	-	9,450	순증	순증
[311]반려동물산업육성(제주)	-	-	30	순증	순증
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3900)	**156,342**	**194,726**	**217,622**	**22,896**	**11.8**
[337]살처분보상금	40,000	40,000	60,000	20,000	50.0
[335]시도가축방역	107,829	132,603	130,891	△1,712	△1.3
[338]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	-	-	13,700	순증	순증
[349]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630	720	3,020	2,300	319.4
[350]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7,883	21,403	10,011	△11,392	△53.2
농업생산기반정비(4000)	**1,694,468**	**1,698,481**	**1,755,761**	**57,280**	**3.4**
[306]수리시설유지관리	154,700	162,232	150,000	△12,232	△7.5
[566]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12,854	8,152	14,203	6,051	74.2
[300]배수개선	291,500	277,800	256,750	△21,050	△7.6
[304]한발대비용수개발	12,500	12,100	11,700	△400	△3.3
[306]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37,000	40,890	43,463	2,573	6.3
[700]수리시설개보수	474,300	460,000	558,018	98,018	21.3
[304]대단위농업개발(농특)	87,200	96,000	99,500	3,500	3.6
[308]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28,400	39,000	42,000	3,000	7.7
[310]농촌용수관리	38,553	47,263	51,092	3,829	8.1
[300]농촌용수개발	365,970	381,287	350,200	△31,087	△8.2
[300]농업기반정비	170,928	156,678	160,995	4,317	2.8
[300]농업기반정비(제주)	19,563	16,079	16,840	761	4.7
[300]농업기반정비(세종)	1,000	1,000	1,000	-	-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4100)	**1,627,883**	**1,590,858**	**1,660,229**	**69,371**	**4.4**

구분(프로그램 코드)	'17년	'18년(A)	'19년(B)	증감(B-A)	증감률
[380]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11,800	12,920	-	순감	순감
[366]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344,431	347,197	353,525	6,328	1.8
[365]경관보전직불	11,592	9,320	8,356	△964	△10.3
[367]취약농가인력지원	8,610	8,610	9,968	1,358	15.8
[375]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1,805	1,805	1,500	△305	△16.9
[384]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13,700	13,090	13,995	905	6.9
[391]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	528	-	순감	순감
[392]농촌마을지원단지원	-	-	-	-	-
[394]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	-	2,776	순증	순증
[405]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7,060	13,703	18,536	4,833	35.3
[411]농촌다원적자원활용	2,140	2,440	2,638	198	8.1
[419]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31,327	31,697	31,375	△322	△1.0
[427]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	8,614	6,200	△2,414	△28.0
[430]농촌공간계획수립	-	-	1,000	순증	순증
[433]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	-	6,420	순증	순증
[434]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	3,000	순증	순증
[300]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52,628	125,739	121,192	△4,547	-3.6
[360]일반농산어촌개발	849,041	856,355	901,412	45,057	5.3
[301]농촌형교통모델(자율)	-	4,100	28,744	24,644	601.1
[370]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54,529	123,600	118,335	△5,265	△4.3
[300]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제주)	2,835	3,344	3,789	445	13.3
[369]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8,219	18,103	18,701	598	3.3
[302]토양개량제사업(제주)	2,297	2,000	1,500	△500	△25.0
[300]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세종)	795	2,800	1,785	△1,015	△36.3
[300]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5,074	4,893	5,482	589	12.0
국제협력협상(5000)	**35,787**	**84,161**	**87,256**	**3,095**	**3.7**
[531]국제기구분담금(ODA)	14,763	15,248	16,216	968	6.3
[530]국제기구분담금	1,692	1,810	1,537	△273	△15.1
[300]국제농업협력(ODA)	17,253	65,133	66,413	1,280	2.0
[301]농업협상대응	2,079	1,970	3,090	1,120	56.9
농산물품질관리(6000)	**80,088**	**87,313**	**88,435**	**1,122**	**1.3**
[301]농산물안전성조사	20,051	23,267	23,590	323	1.4
[302]농산물안전성조사(ODA)	69	69	69	-	-
[310]LMO및농산물표시관리	4,045	4,424	4,543	119	2.7
[517]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5,509	5,633	6,161	528	9.4
[300]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3,020	13,922	11,847	△2,075	△14.9

구분(프로그램 코드)	'17년	'18년(A)	'19년(B)	증감(B-A)	증감률
[311]농산물원산지관리	15,773	16,479	17,012	533	3.2
[362]농업경영체등록	21,621	23,519	25,213	1,694	7.2
농림축산검역검사(6200)	**65,298**	**78,737**	**79,436**	**699**	**0.9**
[300]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8,907	10,107	9,211	△896	△8.9
[300]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0,427	15,889	17,677	1,788	11.3
[302]동식물검역검사(ODA)	348	230	230	-	-
[311]동축산물검역검사	8,012	9,210	9,748	538	5.8
[300]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20,932	21,498	22,513	1,015	4.7
[312]축산식품안전관리	1,739	2,540	1,910	△630	△24.8
[301]가축방역	14,933	19,263	18,147	△1,116	△5.8
종자관리(6400)	**33,767**	**54,825**	**46,741**	**△8,084**	**△14.7**
[522]종자원정보화(정보화)	1,429	1,556	1,793	237	15.2
[300]시설현대화및품질관리(종자원)	9,396	25,543	23,299	△2,244	△8.8
[301]품종심사및재배시험	17,714	21,947	15,870	△6,077	△27.7
[302]원원종및원종생산	4,809	5,692	5,692	-	-
[303]종자산업및품종보호(ODA)	419	87	87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6500)	**3,042**	**3,342**	**3,392**	**50**	**1.5**
[303]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450	450	450	0	0.0
[300]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정보화)	457	457	477	20	4.4
[300]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2,135	2,435	2,465	30	1.2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7000)	**56,105**	**60,796**	**66,731**	**5,935**	**9.8**
[301]청사시설지원(본부)	275	200	200	-	-
[335]청사시설관리(농관원)	2,968	3,638	4,705	1,067	29.3
[354]청사시설지원(종자원)	486	917	376	△541	△59.0
[361]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11,944	13,417	13,414	△3	△0.02
[304]행정운영	228	217	217	-	-
[321]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	1,169	1,169	1,155	△14	△1.2
[326]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413	1,563	1,563	-	-
[505]행정정보화(정보화)	4,851	5,248	5,200	△48	△0.9
[33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	12,782	13,858	17,341	3,483	25.1
[500]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3,955	5,826	5,883	57	1.0
[504]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3,052	1,632	1,982	350	21.4
[300]정책연구개발사업(R&D)	2,139	2,139	2,139	-	-
[507]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2,952	3,162	2,993	△169	△5.3
[337]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	1,800	1,800	2,080	280	15.6
[340]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5,691	5,177	5,450	273	5.3
[341]농업농촌알리기	-	-	1,200	순증	순증
[355]기후변화실태조사	400	833	833	-	-

나. 식품업

(단위 : 백만원, %)

구분	'17년	'18년(B)	'19년(B)	증감(B-A)	증감률
식품외식산업육성(2800)	**351,297**	**708,846**	**697,018**	**△11,828**	**△1.7**
[355]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1,735	12,056	21,378	9,322	77.3
[330]기능성식품산업육성	-	2,636	2,806	170	6.4
[372]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7,708	5,535	-	순감	순감
[380]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14,431	13,231	9,928	△3,303	△25.0
[303]검역해소품목및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	3,000	2,700	△300	△10.0
[304]수출인프라강화	43,478	47,896	43,106	△4,790	△10.0
[305]할랄식품산업육성	7,134	1,634	-	순감	순감
[306]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8,420	8,420	7,578	△842	△10.0
[378]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2,678	2,585	-	순감	순감
[370]푸드서비스선진화	1,800	1,450	1,350	△100	△6.9
[420]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34,400	32,508	20,981	△11,527	△35.5
[421]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R&D)	-	-	5,631	순증	순증
[300]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율)	-	20,896	20,636	△260	△1.2
[300]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2,940	2,581	1,501	△1,080	△41.8

Ⅲ.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농 가 경 영 안 정

1.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26,509	17,133	12,519	△4,614	△27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1000 - 1003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금융정책과장(이시혜), 서기관(김보람, ☏ 044-201-17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자본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시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지원 및 농협 경제사업 평가를 위한 용역 실시
사업기간	'12~'22,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직접수행(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농협중앙회(농금채 이자비용), 농식품부(평가용역)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총괄 : 12,519백만원('18년 대비 △4,614)≫

○ 농협 사업구조개편 부족자본금 지원(농금채 이자비용) 및 경제사업 평가용역비 **12,519백만원('18년 대비 △4,614)**

구 분	'18예산	'19요구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7,133백만원	12,519백만원
▪부족자본금지원	○'13년 농금채 0.5조원 ×2.39%×2/4분기 ≒5,963 ○'17년 농금채 0.5조원 ×2.2%=11,000백만원 ⇒ 16,963백만원	○<지원종료> ○'17년 농금채 0.17조원 ×2.12%=3,604백만원 ○'17년 농금채 0.33조원 ×2.65%=8,745백만원 ⇒ 12,349백만원
▪경제사업평가용역	170백만원(용역 1식)	170백만원(용역 1식)

≪부족자본금 지원(농금채 이자비용) : 12,349백만원('18년 대비 △4,614)≫

○ 농협 사업구조개편 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0.5조원*('17년 발행분 0.5조원**) 이자비용 12,349백만원** 편성('18년 대비 △4,614)

* '12년 4조원('12.2분기~'17.1분기), '13년 0.5조원('13.3분기~'18.2분기) 지원기간 종료, '17년 0.5조원 이자 지원중('17.4분기~'22.3분기)

** 도공주식 관련 현물출자 계약당사자인 농협-산은 간 협의 지연에 따른 현물출자 애로로 이자지원으로 전환('17년 국회 예산의결)

- **산출내역 : (①'17년 0.17조원 × 2.12%) + (②'17년 0.33조원 × 2.65%) = 12,349백만원**

① '17.10.13일 발행한 농금채 0.17조원(3년물)의 **실발행금리 2.12% 적용**

② '17.10.24일 발행한 농금채 0.33조원(2년물)의 만기가 '19.10월 도래함에 따라, 0.33조원 차환발행 예상금리를 상향 반영(기존 2.2% → 차환 4%)하여 **연간 가중평균금리를 2.65%*로 조정**('18년 2.2% → '19년 2.65%)

※ 정부 지원 부족자본금 5조원 중 '12년 발행분 4조원 및 '13년 발행분 0.5조원에 대한 지원기간 만기로 사업비 감소

≪ **농협경제사업 평가용역 : 170백만원('18년 동일)** ≫

○ 농협 경제사업목표 달성, 생산자 편익 및 소비자 후생, 개선권고사항 및 주요정책과제 이행 등 **농협경제사업 평가용역비 170백만원** 편성

- 농협 전체 경제사업 규모 약 25조원, 사업분리 후 신규투자 규모 5조원(36개 사업)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요구됨
- '20년까지 농협경제사업 평가업무 추진을 위해 '18년 수준 170백만원 반영

□ 지원 필요성

○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자본금 지원이 필수적이며, 중단 시 경제사업 투자 축소 등으로 사업구조개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

- 자본금 지원은 농협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3조) 및 '12년 예산 국회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명시된 사항

○ 개정 농협법(법률 제10522호)은 농협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를 신설하였고,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평가하도록 규정(법 제161조의6, 제161조의7 등)

- 평가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58,345**	**17,133**	**12,519**	**△4,614**	**△27**
▪ 부족자본금지원 (농금채 이자지원) (산출근거)	58,175	**16,963** (0.5조원×2.39% ×2/4분기) +(0.5조원×2.2%)	**12,349** (0.17조원×2,12%) + (0.33조원×2,65%)	△4,614	△27.2
▪ 농협경제사업 평가용역비 (산출근거)	170	**170** (용역 1식)	**170** (용역 1식)	-	-
□ **비목**(합계)	**58,345**	**17,133**	**12,519**	**△4,614**	**△27**
○ 일반연구비(260-01)	170	**170**	**170**	-	-
○ 민간경상보조(320-01)	58,175	**16,963**	**12,349**	△4,614	△27.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11.3.31) 부칙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 ⑤ (생략)
  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신경분리 문제 부상('94 ~)
- 농협중앙회 2017년 사업분리 확정('07.3) * '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 농협개혁위원회 출범('08.12)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09.12.16)
- 농식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농협법 개정안 의결('11. 3. 4)

- 법제사법위원회(3.10) 및 본회의 통과(3.11), 공포('11.3.31)
- 농협에서 자본실사, 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 후 정부에 부족자본지원 요청(11.7.28)
- 정부 부족자본 지원계획서(4조원) 국회 상임위 보고('11.9.21)
- 국회에서 현물출자 1조원 증액된 5조원으로 최종 지원규모 확정('11.12.31)
- 정부는 현물출자 1조원 대신 이차보전 1조원을 확대하여 이차보전 4조원, 현물출자 1조원으로 지원규모 확정('12.2.15)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12.3.2)

  *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 및 농협경제지주) 출범 및 자본금 배분 완료

- 농업금융채권 4조원 발행('12.1.9~2.24)
- 농식품부-농협간 사업구조개편지원 이행약정서 체결('12.5.29), 세부이행계획 수립('12.9.18)
- '13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현물출자가 지연되고 있는 산은지주주식 5천억원에 대한 농금채 발행 완료('13.6.27)
- 나머지 현물출자 0.5조원(도공주식)의 현물출자 계약당사자인 농협-산은 간 협의지연에 따른 현물출자 애로로 '17년 예산 국회 의결 시 이자지원으로 전환하는 예산 반영('16.12.2)
- '12년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원 지원 완료('17.1분기)
- 도공주식 5천억원을 대체하여 농금채 5천억원 발행 완료('17.10.13, 10.24)
- '13년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0.5조원 지원 완료('18.2분기)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952	1,773	1,746	1,695	583	1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결산

- (불용) 농금채 차환발행에 따른 금리인하로 인한 절감액 2,129백만원, 경제사업 평가용역 경쟁입찰잔액 103백만원 불용
- (이월)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세수부족에 따라 80,287백만원, 경제사업 평가용역의 연말 기준 평가에 따른 74백만원 이월

○ 2016년 결산

- (불용) 농금채 차환발행에 따른 금리인하로 인한 절감액 912백만원, 경제사업 평가용역 경쟁입찰잔액 53백만원 불용
- (이월)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세수부족에 따라 73,150백만원, 경제사업 평가용역의 연말 기준 평가로 차년도 용역 완료('17.5월)에 따라 64백만원 이월

○ 2017년 결산

- (불용) 신규 농금채 0.5조원의 4분기 발행에 따른 집행차액 등 집행잔액 4,940백만원, 평가용역 경쟁입찰잔액 39백만원
- (이월) 평가용역 차년도 완료에 따른 71백만원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745.5** ( )	685.7 ( )	- ( )	2,431.2 ( )	**1,605.3** ( )	803.6 ( )	22.3 ( )
'16년	**1,695.2** ( )	803.6 ( )	- ( )	2,498.8 ( )	**1,757** ( )	732.1 ( )	9.7 ( )
'17년	**583.5** ( )	732.1 ( )	( )	1,315.6 ( )	**1,265.1** ( )	0.7 ( )	49.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기획재정부)

- 보조사업 지원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기여하여 실효성이 있으며, 2018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

○ ’15년 결산 지적사항(상임위, 예결위)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기존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과 경제지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경제지주가 회원조합과 경합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농협중앙회는 수입 증대 방안 모색 및 지출 소요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16년 결산 지적사항(상임위, 예결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방안을 재설계 하고,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부합하는 조직역량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프랑스 Credit Agricole(CASA)의 정부 지원 사례

- 1988년 프랑스 정부는 당시 정부기관이었던 CNCA(현 CASA 전신)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하고, CNCA의 자본 90%를 광역은행(Caisse Regionale)에 10%를 임직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영화
- 민영화 당시 정부는 시장에서 약 120~140억 프랑으로 추정(정부 추산 81억 프랑)되었던 CNCA를 약 70억 프랑에 광역은행에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약 50~70억 프랑을 지원
- 아울러, 광역은행의 인수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CCI(협동조합투자증권, 무의결 우선주의 일종)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협동조합 체제에서는 이례적)

(5) 사업추진절차

○ 자금지원(농식품부) → 이자보전 사업비 집행(농협) → 경제사업 추진(농협) → 농식품부에 사업추진 이행상황 보고(농협)

*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과제는 농협 경제사업평가협의회(위원장 : 차관)에서 별도 점검

참고 1 정부지원 대상 농금채 발행 명세

발행일자	만기일자	기간	발행 금리(%)	발행금액 (백만원)	분기별 이자금액 (백만원)
2017-10-13	2020-10-13	3년	2.12	170,000	901
2017-10-24	2019-10-24	2년	2.20	330,000	1,815
'17년 발행 0.5조원 소계			**2.17**	**500,000**	**2,716**

2 농업재해보험(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재해보험	288,109	252,148	326,046	73,898	29.3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1000 - 10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사무관(오재협, ☏ 044-201-172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농업보험의 농가 보험료 등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사업기간	'01~계속(농작물 : '01~, 가축재해 : '97~, 수입보장 '15~, 가축질병 '18~)
총사업비	해당없음('18년까지 투자액 24,316억원)
사업규모	('19) 78품목 (농작물 62, 가축 16)
지원조건	민간보조 (농작물) 순 보험료 40~60% (수입보장) 순 보험료 50%, 운영비 100% (가축재해·가축질병) 영업보험료 50%
사업시행주체	(농작물·수입보험) 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가축질병) 농협경제지주, 농협손해보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9년 예산액 326,046백만원 (전년대비 29.3% 증)

《농작물재해보험》 : 186,000백만원(전년대비 2.3% 증)

- 지원조건 : 순보험료 40%～60%
- 목표 가입률 : (’18) 29.0% → (’19) 33.0%
- 대상품목 : (’18) 57 품목(본사업 43, 시범사업 14) → (’19) 62(시범 5품목 추가)

가. 순보험료 : 186,000백만원

- 가입률이 33.0% 수준으로 상승했을 경우 추정 순보험료 372,000백만원의 50%

* ‘17년 실적 가입률 29.7%, 순보험료 334,252백만원 기준(수입보장보험 제외)

《가축재해보험》 : 120,625백만원(전년대비 90.2% 증)

- 지원조건 : 영업보험료 50%
- 목표가입률 : (’18) 92.5% → (’19) 93.5%

가. 영업보험료 : 85,000백만원

- ‘18년 폭염에 따른 가축폐사 등으로 인한 가입수요 증가(가입률 93.5% 수준) 및 보험료율 상승(15% 수준)시 추정 영업보험료 170,000백만원의 50%

* ‘17년 실적 가입률 92.9%, 영업보험료 146,766백만원 기준

나. ‘17년 가입 증가에 따른 미지급 : 8,879백만원

다. ‘18년 가입 증가에 따른 예상 부족 지원액 : 26,746백만원

《농업수입보장보험》 : 17,721백만원 (전년대비 244.2% 증)

- 지원조건 :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가. ’19년 예산은 ‘18년 예산 수준 유지 : 5,100백만원

- 순보험료 : 3,923백만원
- 운영비 : 1,177백만원

* 배정된 예산 초과시 가입을 중단하고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가입 유도

나. ‘17년 가입 증가에 따른 미지급 : 12,621백만원

《가축질병치료보험》 : 1,700백만원 (전년수준 유지)

▪ 지원조건 : 영업보험료 50%

가. 영업보험료 : 1,500백만원

나. 예방사업 : 200백만원

- (구제역) 79백만원, (소 설사병) 104백만원, (강습회) 14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재해보험	**252,148백만원**	**326,046백만원**
▪농작물재해보험	**181,874백만원** · 가입률 : 29% · 대상품목 : 57품목	**186,000백만원** · 가입률 : 33% · 대상품목 : 62품목
▪가축재해보험	**63,425백만원** · 가입률 : 92.5%	**120,625백만원** · 가입률 : 93.5% · '17년 미지급 : 8,879백만원
▪농업수입보장보험	**5,149백만원** · 가입률 : 3.7% · 대상품목 : 7품목	**17,721백만원** · '18년 예산수준 유지 · '17년 미지급 : 12,621백만원
▪가축질병치료보험	**1,700백만원** · 보험 및 예방사업	**1,700백만원** · '18년 예산수준 유지

□ 지원 필요성

○ 최근 잦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발생하는 농업피해 및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수입 감소 등 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 발생시 신속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제도 등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17년('01～'17)간 110만 농가가 2조 1,820억원(농가부담 5,398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0만여 농가가 농가부담액의 약 3.1배인 1조 6,52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 현 정부의 국정과제(82번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의 한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농업인·BH·국회·감사원 등 여러 외부기관에서는 대상 품목 및 대상재해의 확대 등 현재 수준 이상의 정책보험 활성화를 요구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 방지 등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18년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도입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재해보험**	**288,109**	**252,148**	**326,046**	**73,898**	**29.3**
▪ 농작물재해보험 (산출근거)	198,675	**181,874** (가입률 29%, 대상품목 57)	**186,000** (가입률 33%, 대상품목 62)	**4,126**	**2.3**
▪ 가축재해보험 (산출근거)	81,433	**63,425** (가입률 92.5%)	**120,625** (가입률 93.5%, '17년 보험료미지급액 8,879백만원, '18년 보험료 미지급예상액 26,746백만원)	**57,200**	**90.2**
▪ 업무위탁기관운영비 (산출근거)	3,305	-	-	-	-
▪ 농업수입보장보험 (산출근거)	4,696	**5,149** (가입률 3.7%, 대상품목 7)	**17,721** ('18년 예산수준 5,100백만 + '17년 미지급액 12,621백만)	**12,572**	**244.2**
▪ 가축질병치료보험 (산출근거)	-	**1,700** (보험 및 예방사업)	**1,700** ('18년 예산수준 유지)	-	-
□ **비목**(합계)	**288,109**	**252,148**	**326,046**	**73,898**	**29.3**
○ 민간경상보조(320-01)	**288,109**	**252,148**	**326,046**	**73,898**	**29.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가축질병치료보험은 '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이며 법적 근거 마련 중

- 대통령 공약: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

○ 추진경위

-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나, 현행 자연재해 대책은 시설복구 및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경영 안정 역할 미흡
- 이에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보험제도 도입·시행

> ●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01), 사과·배 시범사업 실시('01)
>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05, 국가재보험 도입 및 기금 설치)
>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발표('07)
>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09), 농어업재해보험사업(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시작('10)
> ● 농업수입보장보험 제1차('13) 및 제2차('14) 도상연습 실시
> ● 농업재해보험 제도개편 확정 발표('13) 및 내실화 방안 마련('14)
> ●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 출범(농업정책보험금융원, '15)
>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도입('15)
> ●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15)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재해보험	2,016	2,701	2,853	2,869	2,870	2,52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이월(686억원) : 농특회계 세수부족

○ ’15년 불용(149억원) : 보험가입수요가 적어 불용 발생

○ ’16년 전용(179억원) :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량 증가로 보험료 부족액을 재해대책사업의 재해대책비에서 전용

○ ’16년 이월(882억원) :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이월

○ ’16년 불용(33억원) : ’15년 이월예산 집행잔액 및 가축질병공제시범사업 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33억원 불용

○ ’17년 이월(861억원) :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이월

○ ‘17년 불용(10억원) : ’16년 이월예산 집행잔액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853 (-)	522 (-)	- (-)	3,375 (-)	2,540 (2,530)	686 (9)	149 (0.6)
’16년	2,869 (-)	686 (9)	179 (-)	3,734 (-)	2,819 (2,822)	882 (0.3)	33 (3)
’17년	2,869 (-)	882 (0.3)	- (-)	3,751 (-)	2,881 (2,879)	861 (0.7)	10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4년 국회(상임위·예결위·국감) 지적사항

- 가입률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 공적기능 강화, 벼 도열병 보장 등

○ ‘15년 국회(상임위·예결위·국감) 지적사항

- 무사고환급제도 도입, 적과전종합위험보장상품 사업지역 조기확대, 가뭄으로 인한 이앙포기 농가의 보험적용, 노지채소 보험도입

○ ‘16년 국회(상임위·예결위·국감) 지적사항

-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보장범위 확대(과수 일소피해, 병충해 등), 밭작물 등에 대한 가입품목 확대, 수발아피해벼 보장 확대, 가입률제고 및 실효성 확대방안 마련

○ ‘17년 국회(상임위·예결위·국감) 지적사항

-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해충 피해 보장 확대, 보장수준 확대, 가입방식변경 등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기타 언론 및 민원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등 상품개선 요구

- 농가부담경감, 보험보장성 강화, 보험적용 대상 확대 등

3)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 및 사업지역 확대

-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대상품목 : ('15) 62품목(농작물 46, 가축 16) → ('16) 66(50 + 16) → ('17) 69(53 + 16)

- 보장수준 확대(85%·90% 보장형 상품 개발) 등

- 벼 미이앙보장 도입('16년)

○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장하기 위한 수입보험 확대

* 대상품목 : ('15) 콩·포도·양파 → ('16) 마늘 추가 → ('17) 감자·고구마 추가 → ('18) 양배추 추가

○ '17년 농작물재해보험 현장간담회 개최('17.7.20~8.9, 5회) 및 농업재해보험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토론회 개최('17.8.17, 8.25 2회)

- 현장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17년 12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54개국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실시

-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50~60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 정착
- 대부분의 국가가 거대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보험을 담당하고, 국가 지원비율도 농가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부담

○ 미국은 재해보험과 함께 수입보장보험을 운영

- '12년 미국 농업법은 기존 직불제 체계를 폐지하고 농가소득안정망 및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보험제도를 활용

* 수입보험은 '94년 이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13년 작물보험 중 약 80%(보험금 규모)를 점유

○ 일본은 1947년부터 가축의 질병과 사고를 보상하는 가축공제제도를 시행

(5) 사업추진절차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시행계획수립	연초	보험사업자	○ 가입률 목표 및 농가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확정
⇓			
사업약정체결	1월초	농식품부, 보험사업자	○ 약정당사자 및 약정기간 결정 ○ 정부의 손실보전 수준 결정 ○ 약정 당사자간 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			
보험약관 및 상품확정	1월중	보험사업자	○ 상품 주요변경사항 확정 ○ 보험요율 산정 및 감독기관 승인 ○ 약관 및 안내장 등 작성
⇓			
농가 보험가입 안내	연중	보험사업자	○ 약관 및 안내장 배포 ○ 가입 안내문서 시행 ○ 언론 홍보 및 보도
⇓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연중	농 가	○ 농지 고지 및 청약서 작성 ○ 농지 현지조사 ○ 보험료 결정 및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및 청약서 발급	연중	보험사업자	○ 보험 가입에 따른 중요사항 안내 ○ 보험증권 및 청약서 부본 발생 후 계약자 배부
⇓			
정부지원금 개산급 지원 요청 및 교부	연중	농식품부, 보험사업자	○ 판매 종료 후 보험료 지원금 산정 ○ 운영비 포함 정부지원금 지원 요청 ○ 농가보험료 및 운영비 사업자에 지원
⇓			
사업종료 및 운영비 정산	12월말	농식품부, 보험사업자	○ 당해연도 판매품목에 대한 최종정산 보험료 확정 ○ 농가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액 확정 및 정산

○ 가축질병치료보험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이행, 성과점검 등	➡	사업관리, (상품설계, 계약체결)	➡	(농가) 가축진료 후 보험료 청구,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심사, 지급, 사후관리

3.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	50,962	55,740	4,778	9.4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1000 - 10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사무관(오재협, ☏ 044-201-172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

- 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부담 보험료를 경감하고 농가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보험 홍보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신규('18~) * '01～'17년까지 농업재해보험에 포함되어 운영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 농작물재해보험 62개 품목
지원조건	민간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NH농협손해보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 ‘19년 예산액 55,740백만원(전년대비 9.4% 증)

▪ ‘18년 농작물재해보험 예상 순보험료 372,000백만원의 15%수준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50,962백만원**	**55,7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최근 잦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발생하는 농업피해 및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수입 감소 등 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 발생시 신속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제도 등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17년(‘01～’17)간 110만 농가가 2조 1,820억원(농가부담 5,398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0만여 농가가 농가부담액의 약 3.1배인 1조 6,52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 현 정부의 국정과제(82번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의 한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농업인·BH·국회·감사원 등 여러 외부기관에서는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의 확대 등 현재 수준 이상의 정책보험 활성화를 요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	50,962	55,740	4,778	9.4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산출근거)	-	50,962 (순보험료의 14% 수준)	55,740 (순보험료의 15% 수준)	4,778	9.4
□ 비목(합계)	-	50,962	55,740	4,778	9.4
○ 민간경상보조(320-01)	-	50,962	55,740	4,778	9.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추진경위

-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부담 보험료를 경감하고 농가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보험 홍보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	-	-	-	-	509

* 농업재해보험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시행계획수립	연초	보험사업자	○ 가입률 목표 및 농가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확정
⇓			
사업약정체결	1월초	농식품부, 보험사업자	○ 약정당사자 및 약정기간 결정 ○ 정부의 손실보전 수준 결정 ○ 약정 당사자간 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			
보험약관 및 상품확정	1월중	보험사업자	○ 상품 주요변경사항 확정 ○ 보험요율 산정 및 감독기관 승인 ○ 약관 및 안내장 등 작성
⇓			
농가 보험가입 안내	연중	보험사업자	○ 약관 및 안내장 배포 ○ 가입 안내문서 시행 ○ 언론 홍보 및 보도
⇓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연중	농 가	○ 농지 고지 및 청약서 작성 ○ 농지 현지조사 ○ 보험료 결정 및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및 청약서 발급	연중	보험사업자	○ 보험 가입에 따른 중요사항 안내 ○ 보험증권 및 청약서 부본 발생 후 계약자 배부
⇓			
정부지원금 개산급 지원 요청 및 교부	연중	농식품부, 보험사업자	○ 판매 종료 후 보험료 지원금 산정 ○ 운영비 포함 정부지원금 지원 요청 ○ 농가보험료 및 운영비 사업자에 지원
⇓			
사업종료 및 운영비 정산	12월말	농식품부, 보험사업자	○ 당해연도 판매품목에 대한 최종정산 보험료 확정 ○ 농가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액 확정 및 정산

4.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7,385	59,525	71,202	11,677	19.6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000 - 10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 ☏ 044-201-1792)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기자재정책팀장(김수일), 사무관(최승묵, ☏ 044-201-18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 도로주행 농기계에 대해 등화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일부 지원 ○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부착비용 일부 지원
사업기간	'96 ~계속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 '15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8년 가입목표 기준 농업인 800천명, 농기계 78천대 가입
지원조건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 민간경상보조(보험료의 50% 국고지원) * 다만, 2019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 지자체경상보조(국고40%, 지방비 60%)
사업시행주체	농업인안전보험(NH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NH농협손해보험)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71,202백만원

○ 농업인안전보험 :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682백만원

< 일반농가 > : 44,100백만원

▪ 일반1형(보상수준 55백만원) :

- 800천명(대상인원) × 96,000원(보험료) × 44.7%(인원비율) × 50%(국고비율) = 17,168백만원

▪ 일반2형(보상수준 75백만원) :

- 800천명 × 112,200원 × 14.0% × 50% = 6,284백만원

▪ 일반3형(보상수준 90백만원) :

- 800천명 × 127,500원 × 7.5% × 50% = 3,825백만원

▪ 일반4형(보상수준 120백만원) :

- 800천명 × 145,100원 × 5.2% × 50% = 3,015백만원

▪ 장애인형(보상수준 75백만원) :

- 800천명 × 97,600원 × 0.5% × 50% = 196백만원

▪ 산재1형(보상수준 120백만원, 보급형) :

- 800천명 × 159,600원 × 10.0% × 50% = 6,384백만원

▪ 산재2형(보상수준 120백만원, 보장강화형) :

- 800천명 × 180,700원 × 10.0% × 50% = 7,228백만원

< 영세농가 > : 6,582백만원

▪ 영세농(일반4형, 보상수준 120백만원) :

- 800천명(대상인원) × 145,100원(보험료) × 8.1%(인원비율)* × 70%(국고비율) = 6,582백만원

*** 영세농(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상자는 농림분야 경제활동인구 130만명의 5%인 65천명으로 예상되며 전체 목표인원(800천명)의 8.1% 수준**

*** '16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영세농 : 15천명(전체 가입자의 2% 수준)**

*** 복지부 통계 : 전체 인구의 4.3% 수준(220만명 :기초수급 162만명, 차상위 58만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9,320백만원**

▪ 산출내역 : 92천대*(대상농기계) × 420천원('17년 농기계종합보험 대당 평균 보험료) × 50%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 1,200백만원

▪ 산출내역 : 30천대(대상농기계) × 100천원(부착비용) × 40%(국고비율)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9,525백만원**	**71,202백만원**
▪ 농업인안전보험	**<45,845백만원>** 800천명(대상인원) × 109~174천원(보험료) × 50%(국고지원율)	**<50,682백만원>** 일반농가 : 44,100백만원 735천명(대상인원) × 109~174천원(보험료) × 50%(국고지원율) 영세농가 : 6,582백만원 65천명(대상인원) × 145천원(보험료) × 70%(국고지원율)
▪ 농기계종합보험	**<12,480백만원>** 78천대(대상농기계) × 320천원(’16 대당 평균보험료) × 50%(국고지원율)	**<19,320백만원>** 92천대(대상농기계) × 420천원(’17 대당 평균보험료) × 50%(국고지원율)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1,200백만원>** 30천대(대상농기계) × 100천원(대당사업비) × 40%(국고지원율)	**<1,200백만원>** 30천대(대상농기계) × 100천원(대당사업비) × 40%(국고지원율)

□ 지원 필요성

○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필요

○ ‘09년부터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으나, 의무화 이전에 공급된 농기계의 야간 도로주행과 저속운행, 기 부착된 등화장치의 파손·망실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7,385	59,525	71,202	11,677	19.6
▪ 농업인안전보험 (산출근거)	39,700	45,845 (800천명 × 109~174천원 × 50%)	50,682 (일반농가 735천명× 109~174천원×50%) + (영세농가 65천명×145천원×70%)	4,837	10.6
▪ 농기계종합보험 (산출근거)	16,310	12,480 (78천대×320천원 ×50%)	19,320 (78천대×320천원×50%)	6,840	54.8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산출근거)	1,200	1,200 (30천대×100천원 ×40%)	1,200 (30천대×100천원×40%)	-	-
□ 비목(합계)	57,385	59,525	71,202	11,677	19.6
○ 민간경상보조(320-01)	56,185	58,325	70,002	11,677	2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200	1,200	1,2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1항

>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 1996년

·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 2015년

- 추진배경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필요

-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영세한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지원 강화 및 다양한 보험상품(산재보험 수준 강화상품 포함) 개발·보급(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68	397	490	640	593	59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세수부족에 따라 9,190백만원 '15년 이월 집행

○ '15년 가입률 정체에 따라 집행잔액(7,642백만원) 발생

○ 「농업인안전보험법」 시행('16.1)에 따른 보험 보장범위 확대로 가입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16년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가입률 저조로 불용(11,557백만원) 발생

* 가입인원 / 가입률 : ('15) 776천명 / 56.4% → ('16) 744천명 / 55.5%
* 보험료(1형기준) : ('15) 74,900원 → ('16) 108,500 (44.9%)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89** (505)	92 (-)	- (-)	581 (505)	**505** (501)	- (3)	76 (1)
'16년	**640** (525)	- (2)	- (-)	**640** (527)	**525** (523)	- (1)	115 (3)
'17년	**593** (573)	- (1)	- (-)	**640** (574)	**574** (573)	- (-)	19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률이 전체산업 근로자의 2배가 넘어 농업인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 마련 필요('14년 국정감사)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증진과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농업인이 최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14년 국정감사)
- 농업인안전·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향상 필요('14,'15 회계연도 결산국회)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필요('17 회계연도 결산국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15.1) 및 시행('16.1)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농(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 상향 추진
  * 영세농 국고(보험료) 지원비율 : ('18) 50% → ('19) 70
- 위험률 산출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보험료의 평균 10% 수준 인하
- 농업인 고령화 추세 감안 가입연령 확대(만84세 → 87세, 1형·4형)
-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한 신상품(2종) 개발·보급
- 유관기관 합동 홍보 실시(지자체, 지역농협), 농기계자재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부모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해 드리기' 홍보, 은행ATM 활용, 홍보자료 배포 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유럽에서는 도로를 주행하는 농업기계에 저속차량표시등을 의무부착 운행토록 하고 미부착 운행시는 과태료 등 부과

* 국내 건설기계도 작업등(경광등) 의무부착 공급

(5) 사업추진절차

○ 농업인안전·농기계종합보험

사업시행계획 수립 (정부) → 보험약관 및 상품확정 (보험사업자↔정부) → 보험가입안내·홍보 (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농업인) ← 자금교부요청 및 교부 (보험사업자↔정부)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보험사업자↔정부)

○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		등화장치 업체에 부착 신청		등화장치 부착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추진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집행

참고 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명, 천건, %)

구분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림업경제 활동인구	가입농가수	가입률	농기계 수	가입건수	가입률
'96	2,218	540	24.3	2,187	35	1.6
'97	2,177	567	26.0	2,151	71	3.3
'98	2,318	575	24.8	2,333	28	1.2
'99	2,219	595	26.8	2,200	22	1.0
'00	2,162	587	27.2	2,200	11	0.5
'01	2,065	594	28.8	2,200	11	0.5
'02	1,999	636	31.8	2,000	10	0.5
'03	1,877	703	37.5	2,000	10	0.5
'04	1,749	653	37.3	2,000	6	0.3
'05	1,747	702	40.2	1,600	8	0.5
'06	1,721	653	37.9	1,235	11	0.6
'07	1,670	741	44.4	1,217	12	0.7
'08	1,633	765	46.8	1,214	14	0.8
'09	1,595	791	49.6	1,218	28	2.3
'10	1,557	804	51.7	1,220	32	2.6
'11	1,519	817	53.7	1,220	29	2.4
'12	1,482	803	54.2	1,220	33	2.7
'13	1,445	805	55.7	1,180	40	3.4
'14	1,409	779	55.3	1,180	43	3.7
'15	1,374	776	56.4	1,172	52	4.4
'16	1,340	744	55.5	1,172	60	5.1
'17	1,307	710	54.3	1,172	79	6.8
'18.11	1,274	800	62.8	1,172	89	7.6

참고 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화장치 부착지원	위탁기관 운영비	합 계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실적	집행률	예산	예산	예산	실적	집행률
'96	3,600	4,968	138.0	7,300	824	11.3	-	-	10,900	5,792	53.1
'97	5,959	5,993	100.6	1,869	1,385	74.1	-	-	7,828	7,378	94.3
'98	5,928	6,457	108.4	1,271	688	54.1	-	-	7,199	7,145	99.2
'99	5,928	6,546	110.4	1,271	629	49.5	-	-	7,199	7,175	99.7
'00	5,928	6,765	114.1	1,271	427	33.6	-	-	7,199	7,192	99.9
'01	5,928	6,675	112.6	1,271	524	41.2	-	-	7,199	7,199	100.0
'02	6,669	6,759	101.4	553	463	83.7	-	-	7,222	7,222	100.0
'03	7,385	7,383	99.9	578	549	95.0	-	-	7,963	7,932	99.6
'04	9,200	9,349	101.6	578	428	74.0	-	-	9,778	9,778	100.0
'05	10,790	10,664	98.8	578	651	112.6	-	-	11,368	11,315	99.5
'06	17,718	16,067	90.7	578	1,071	185.3	-	-	18,296	17,138	93.7
'07	22,057	19,975	90.6	606	1,345	221.9	-	-	22,663	21,320	94.1
'08	27,075	25,262	93.3	764	1,336	174.9	-	-	27,839	26,598	95.5
'09	30,666	27,389	90.8	1,510	3,160	209.3	-	-	32,176	30,599	95.0
'10	29,644	28,318	95.5	3,580	4,694	131.1	-	-	33,224	33,012	99.4
'11	31,587	31,587	100.0	4,368	4,368	100.0	-	-	35,955	35,955	100.0
'12	31,063	31,063	100.0	4,778	4,778	100.0	-	-	35,841	35,841	100.0
'13	31,935	31,630	99.0	4,883	5,188	106.2	-	-	36,818	36,818	100,0
'14	33,493	23,500	70.1	6,176	6,979	113.0	-	-	39,669	30,479	76.8
'15	40,987	39,075	90.5	6,764	10,224	151.2	1,200	-	48,951	50,499	103.2
'16	55,061	41,204	74.8	7,352	9,652	131.3	1,200	401	64,014	52,457	81.9
'17	46,610	39,700	85.2	11,310	16,310	144.2	1,200	175	59,295	57,385	96.8
합계	465,211	426,329	91.6	69,209	75,673	109.3	3,600	576	538,596	506,229	94.0

* '14년은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집행잔액 9,190백만원을 이월 집행('15.1), '15년 집행실적에 포함
* '15년은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예산 1,200백만원 신규 편성(농기자재정책팀에서 지자체보조 집행)
* '16년은 위탁기관운영비 예산 401백만원 신규 편성

5. 재해대책비(의무,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재해대책비	19,822	76,500	84,264	7,764	10.1
- 재해대책비	17,055	48,000	55,764	7,764	16.2
- 재해대책비(융자)	2,767	28,500	28,500	0	-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1000 - 1033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서기관(강승규, ☏ 044-201-179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공공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기간	'6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 재해대책비 - (보조) 국비 24.5~70%(농림시설 24.5%, 대파대 35%, 농약대 70%) - (지자체) 시설관리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국가관리) 국비 100%, (지방관리) 국비 50%, 지방비 50%, (농어촌공사 관리) 국비 70%, 지방비 30% ○ 재해대책비(융자) : 30~70% ※ 금리 1.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84,264백만원

- 농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특히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역·시기 구분 없이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
- 호우, 태풍 등 예측 불가한 거대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필요

○ 산출근거: 최근 10년('08~'17) 평균 집행액(75,687백만원)의 111%수준 반영

- 재해대책비 : 55,764백만원(기타보전금 25,764,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 재해대책비(융자) : 28,500백만원(기타민간융자금 28,5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재해대책비	**76,500백만원** -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액(843억원)의 91%수준	**84,264백만원** -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액(757억원)의 111%수준
▪ 재해대책비	48,000백만원	55,764백만원
▪ 재해대책비(융자)	28,500백만원	28,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정부지원 필요

- 농업은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아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특히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지역·시기 구분 없이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추세

  * 최근 80년간 1~5위까지 태풍이 '00년대 발생, 강도와 강수량 역시 증가 추세

- 자동화 비닐하우스 보급 등 영농자재 설치 및 구입 비용 상승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인의 복구비용 부담 가중

  *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국가의 책무로써 복구비를 지원토록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재해대책비**	19,822	76,500	84,264	7,764	10.1
□ **비목**(합계)					
○ 재해대책비	17,055	48,000	55,764	7,764	16.2
- 보전금(310)	13,547	21,000	25,764	4,764	22.7
- 자치단체이전(330)	3,508	27,000	30,000	3,000	11.1
○ 재해대책비(융자)	2,767	28,500	28,500	-	-
- 융자금(450)	2,767	28,500	28,5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추진경위

- '67년부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주요 생계수단인 농업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영농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재해대책비(융자포함)	2,200	2,176	1,092	1,085	765	76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재해대책비 보상금(310-01) 223백만원 사고이월

- 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선집행 후 재배정된 국비의 지방비로 세입조치 누락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광주 광산구 3백만원, 울산 울주군 220백만원)

○ ('16년) 재해대책비 보상금(310-01) 455백만원 사고이월

- 지방비 예산 미확보로 '1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비와 함께 집행(전남 32백만원)
- 주생계수단 확인 지연으로 사고이월 발생(전남 54백만원)
- 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선집행 후 재배정된 국비의 지방비로 세입조치 누락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충북 281백만원, 경북 88백만원)

○ ('16년) 재해대책비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7,866백만원,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000백만원 이·전용

-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부족재원 충당(기타민간융자금 10,000백만원)
- 농업재해보험 사업 부족재원 충당(자치단체이전 17,866백만원)

○ ('17년) 재해대책비 기타보전금(310-04) 5,00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000백만원, 기타민간융자금(450-04) 15,000백만원 이·전용

- AI 살처분 보상금 및 기타 가축 질병 관련 보상금 부족재원 충당(25,000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92 ( )	2 ( )	0 ( )	1,094 ( )	98 (**74**)	2 ( )	994 ( )
'16년	1,085 ( )	2 ( )	△279 ( )	808 ( )	414 (**397**)	5 ( )	389 ( )
'17년	765 ( )	5 ( )	△250 ( )	520 ( )	198 ( )	0 ( )	32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피해발생신고
(농가→시·군)

- **신고시기** : 재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내용** : 발생장소, 피해물량 등 피해상황
- **신고방법** : 서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피해조사
(읍·면, 시·군)

- **조사방법**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47호)
- **조사담당** : 담당 공무원, 이·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가 합동조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보고
(시·군→시·도→농식품부)

-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복구비 소요액 파악**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47호)
- 복구계획 수립·보고

⇩

중앙합동조사
(중앙, 시·도, 시·군)

- **조사반 구성 :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서**
- 조사내용 : 복구비 소요액 산정 및 복구 지원대상 분류 적정여부 등

⇩

복구계획 확정시달
(농식품부→시·도→시·군)

- 시·도의 복구계획을 검토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조치 및 지원**

⇩

복구비 예산집행

참 고 | 자연재해 국가지원 기준

❑ 지원 근거 및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기준	시·군·구별 일정규모(면적) 이상 피해 발생 시	시·군·구 재정력지수별 일정금액 이상 피해 발생 시
	- 가뭄·홍수·호우 등 50ha 이상 - 서리·우박·설해 30ha 이상 - 유해 야생동물 10ha 이상 - 농업시설 등 피해 3억원 이상	- (재정력지수 0.1 미만 지자체) 피해액 18억원 이상 - (0.1~0.2) 24억원 이상 - (0.2~0.4) 30억원 이상 - (0.4~0.6) 36억원 이상 - (0.6 이상) 42억원 이상

* 행안부 지원기준 미만은 농식품부에서, 농식품부 지원기준 미만은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대상 재해

구 분	대상 재해	
자연재난 (행안부)	< 공통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해일, 조수(潮水)	풍랑, 낙뢰,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농업재해 (농식품부)		이상저온, 우박, 서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동물

❑ 지원 내용

① **직접 지원** :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예시) 대파대 : 일반작물 266만원/ha, 엽채류 410, 과채류 619 등
  농약대 : 일반작물 52만원/ha, 채소류 168, 과수류 175 등

② **간접 지원** : **피해가 심한 농가**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 **농가단위 피해율**(피해면적/재배면적)**에 따라 지원**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③ **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지침에 따라 피해농가에 융자 지원

  * 금리 1.8%(6개월 변동금리), 1년 상환(1년 연장 가능. 단 과수농가는 3년)

6.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재량, 신규)

< 농특회계 - 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	-	300	-	-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1000 - 1033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서기관(강승규, ☏ 044-201-179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기간	'19~'23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300백만원('19년 신규사업)
지원조건	보조(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300백만원

- 포획시설 지원을 통한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 산출근거 : 300백만원(= 500개 × 1,500천원(단가) × 국고보조 4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	-	**300백만원** * 500개×1.5백만원×40%

□ 지원 필요성

○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는 증가추세이며, 농작물 피해도 매년 110~130억원(소득액 기준) 수준 발생

* 연도별 피해액(억원) : ('120) 121 → ('13) 127 → ('14) 109 → ('15) 107 → ('16) 110
* '16년 동물별 피해(억원) : 멧돼지 56, 고라니 25, 까치 13, 오리류 3, 꿩 3, 기타 9

- 기존 포획정책은 안전사고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으로 인해 실효성 부족

○ 부작용 우려가 적은 포획시설 지원을 통해 적정수준의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예방 가능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	-	**300** (500개×1.5백만원×40%)	-	-
□ **비목**(합계)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300** (500개×1.5백만원×4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야생 멧돼지 피해저감 대책 사회장관회의 보고('16.7월)
-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협조요청(환경부, '17.10.24일 11.13일)
-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관련대책 강화 필요성 지적 및 적극적인 대책 추진 요구(권석창, 이완영 의원, '17년 국정감사)
- 농식품부-환경부 정책협의회 개최('17.12.7일)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유해야생동물포획 시설지원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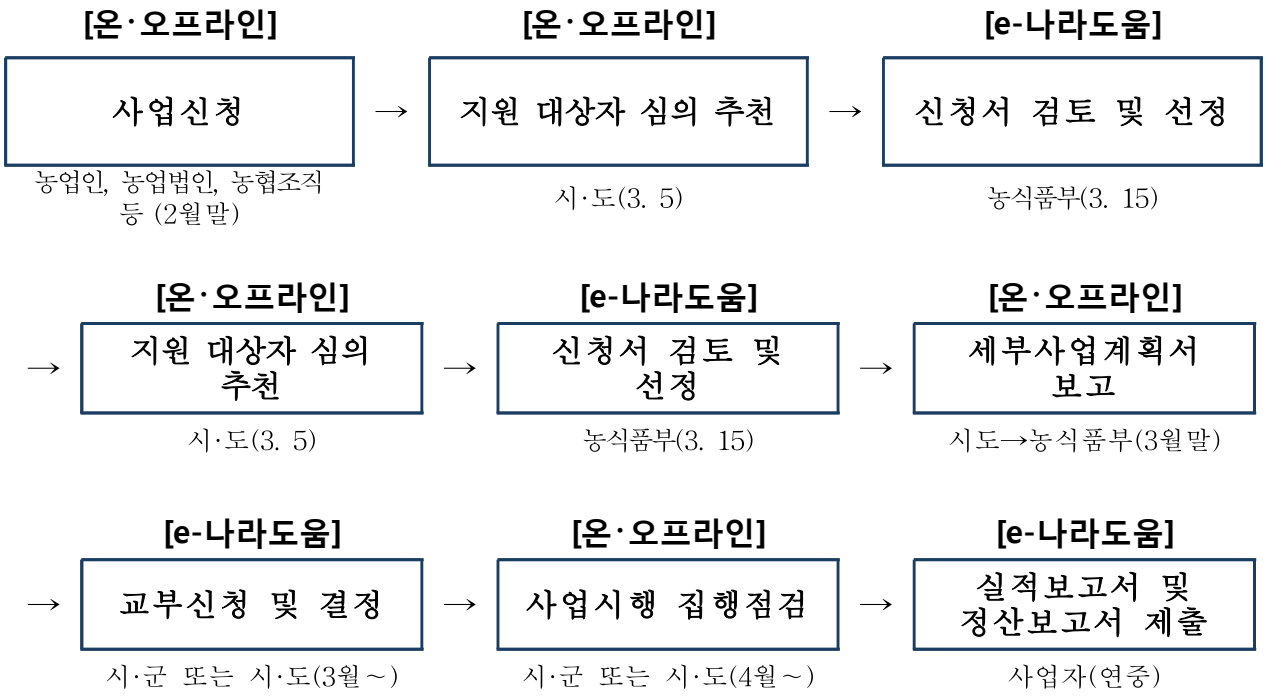
[온·오프라인]
사업신청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 (2월말)
[온·오프라인]
지원 대상자 심의 추천
시·도(3. 5)
[e-나라도움]
신청서 검토 및 선정
농식품부(3. 15)
[온·오프라인]
지원 대상자 심의 추천
시·도(3. 5)
[e-나라도움]
신청서 검토 및 선정
농식품부(3. 15)
[온·오프라인]
세부사업계획서 보고
시도→농식품부(3월말)
[e-나라도움]
교부신청 및 결정
시·군 또는 시·도(3월～)
[온·오프라인]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 또는 시·도(4월～)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자(연중)

참고 1 포획트랩 이용 멧돼지 포획과정

이동통로 확인 → **미리 먹이주기** → **트랩 길들이기** → **트랩설치** → **포획단계**

- 이동통로 확인: 발자국과 섭식 흔적을 참고
- 미리 먹이주기: 약 500m 간격 먹이 제공 후 매일 먹이반응을 확인
- 트랩 길들이기: 10일 이상 계속 먹을 때 트랩을 이동하여 설치
- 트랩설치: 문을 개방, 바닥 흙을 파헤쳐 두고 유인먹이 제공
- 포획단계: 문 개방, 먹이제공 후 3일간 계속 먹이반응을 하면 문을 닫음

이동통로 확인

미리 먹이 주기

트랩설치

대량포획

참고 2 유해 야생동물 피해 현황

❑ 지역별 피해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계	12,149	12,661	10,883	10,672	10,911	12,676
서 울	-	-	-	-	-	-
부 산	40	15	10	15	122	623
대 구	137	16	95	30	18	23
인 천	534	1,216	805	797	893	856
광 주	21	14	16	12	10	11
대 전	275	200	160	117	118	110
울 산	188	169	181	222	224	244
세 종	18	38	42	40	44	58
경 기	1,956	1,907	1,864	2,427	1,650	1,374
강 원	1,225	1,504	1,009	834	1,303	1,872
충 북	1,095	917	1,338	1,075	1,567	2,325
충 남	1,343	1,043	916	902	881	798
전 북	590	1,169	812	591	484	447
전 남	1,026	1,537	790	804	731	931
경 북	1,690	1,333	1,621	1,700	1,883	1,951
경 남	1,209	524	426	477	552	829
제 주	802	1,059	798	629	431	224

[출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야생동물별 피해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 치	청설모	오리류	기 타
계	69,952	33,339	14,748	1,917	9,248	593	2,522	7,585
‘12	12,149	5,752	3,051	281	1,647	127	380	911
‘13	12,661	5,186	2,604	360	1,764	93	778	1,876
‘14	10,883	4,202	2,309	458	1,710	94	475	1,635
‘15	10,672	4,701	2,055	300	1,588	138	353	1,537
‘16	10,911	5,648	2,460	259	1,263	79	276	926
‘17	12,676	7,850	2,269	259	1276	62	260	700

[출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작물별 피해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사과	배	포도	호도	벼	채소	기타
‘12	12,149 (100)	1,213 (10)	989 (8)	217 (2)	73 (1)	2,169 (18)	1,793 (15)	5,695 (47)
‘13	12,661 (100)	855 (7)	1,021 (8)	377 (3)	86 (1)	2,176 (17)	2,183 (17)	5,963 (47)
‘14	10,883 (100)	865 (8)	896 (8)	288 (3)	115 (1)	1,199 (11)	3,160 (29)	4,360 (40)
‘15	10,672 (100)	877 (8)	961 (9)	309 (3)	139 (1)	1,526 (15)	2,452 (23)	4,407 (41)
‘16	10,911 (100)	1,103 (10)	918 (9)	357 (3)	135 (1)	1,609 (15)	2,643 (24)	4,146 (38)
‘17	12,676 (100)	1,481 (12)	979 (8)	338 (3)	75 (1)	1,799 (14)	3,312 (26)	4,692 (37)

[출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7.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자금이차보전	210,094	221,562	420,922	199,360	90.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1000 - 1038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금융정책과장(이시혜), 사무관(허정은, ☏ 044-201-175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을 저리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사업기간	'70～계속
총사업비	-억원(해당없음)
사업규모	-
지원조건	이차보전, 정액보조
사업시행주체	농협은행 등 농업자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정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비 420,922백만원

- 산출내역 : ① '19년 이차보전 소요 305,304백만원{'19년 추정 대출평잔(17,082,838백만원) × 이차율(기준금리 - 대출금리, 0.25~3.25%)} + ② '17년 예산 부족액 41,272백만원 + ③ '18년 예산 부족액 74,346백만원
- 기준금리 : (금융자금)농협은행 3.25%, (재정자금)공자기금 3.142%
  * **'18년 9월말** 이차보전 기준금리(3.25%) 적용

< 2019년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자금명	세부구분	19년 말 대출잔액 (추정)	19년평잔 (추정)(A)	기준 금리	대출 금리	이차 율 (B)	이차액 (C=A*B)	'19년 융자규모 (신규대출)
'19년 농업자금이차보전 소요 예산			**17,561,075**	**17,082,838**				**305,304**	**6,923,700**
정책자금이차보전	**정책자금이차보전 소계**		**16,874,001**	**16,329,373**				**291,691**	**6,923,700**
	①농축산경영자금	농협자금(고정)	93,493	93,493	3.21	2.5	0.75	701	116,866
		농협자금(변동)	1,042,507	1,042,507	-	변동	2.00	20,851	1,303,134
		소계	**1,136,000**	**1,136,000**				**21,552**	**1,420,000**
	②재해농가이자감면	**1년/2년연기**	**-**	**18,740**	**2.5**	**-**	**2.50**	**468**	**-**
	③재해복구자금	**농협자금**	**13,505**	**19,074**	**3.25**	**1.5**	**1.75**	**334**	**-**
	④RPC벼매입자금	경영평가 차등지원 (무이자~3%)	377,732	377,732	3.25	-	3.25	12,276	419,702
			300,192	300,192	3.25	0.50	2.75	8,255	333,547
			193,851	193,851	3.25	1.00	2.25	4,362	215,390
			126,280	126,280	3.25	1.50	1.75	2,210	140,311
			90,833	90,833	3.25	2.00	1.25	1,136	100,926
			18,832	18,832	3.25	3.00	0.25	47	20,924
		소계	**1,107,720**	**1,107,720**				**28,286**	**1,230,800**
	⑤농업종합자금	부채대책등	173	219	3.40	1.50	1.90	4	-
		농기계구입(고정)	980,716	1,053,986	3.40	2.00	1.40	14,756	250,000
		농기계구입(변동)	773,891	792,014	-	변동	2.00	15,840	250,000
		시설(고정)	413,483	455,056	3.40	2.00	1.40	6,371	91,216
		운전(고정)	465,619	409,531	3.40	2.50	0.90	3,686	239,395
		변동금리	2,710,130	2,555,859	-	변동	2.00	51,117	1,164,689
		스마트팜(시설)	154,113	123,379	3.40	2.00	1.40	1,727	95,400
		스마트팜(운전)	7,428	5,945	3.40	2.50	0.90	53	4,600
		수출및규모화	1,146,723	1,226,612	-	개별	3.51	43,054	300,000
		농기계생산(시설)	233,147	152,262	3.40	2.00	1.40	2,132	190,000
		농기계보관창고(시설)	1,546	1,376	3.40	2.00	1.40	19	773

구분	자금명	세부구분	19년 말 대출잔액(추정)	19년평잔(추정)(A)	기준금리	대출금리	이차율(B)	이차액(C=A*B)	'19년 융자규모(신규대출)
		쌀가공육성(변동)	84,536	69,431	-	변동	2.00	1,388	50,000
		농식품우수기술화(변동)	86,297	71,663	-	변동	2.00	1,433	50,000
		농기계수리부품(변동)	25,889	23,276	-	변동	1.00	232	12,640
		농기계수리부품(고정)	12,602	13,260	3.40	3.00	0.40	53	3,588
		소계	**7,096,292**	**6,953,869**				**141,865**	**2,702,300**
	⑥후계농업경영 안육성자금	우수후계농추가	319,910	322,867	3.25	1.00	2.25	7,264	30,000
		후계농(고정)	12,10,531	1,071,347	3.25	2.00	1.25	13,391	281,043
		후계농(변동)	104,328	84,927	-	변동	2.00	1,698	33,957
		소계	**1,634,769**	**1,479,142**				**22,353**	**345,000**
	⑦농촌주택개량자금	농협자금	2,806,402	2,624,116	3.25	2.00	1.25	32,802	550,000
		공자기금	527,572	580,418	3.14	2.00	1.14	6,628	-
		소계	**3,333,974**	**3,204,534**				**39,430**	**550,000**
	⑧협동조합합병자금	**농협자금**	**75,430**	**74,725**	**3.25**	**-**	**3.25**	**2,428**	**24,000**
	⑨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농협자금 (고정/변동)	1,303,850	1,186,606	3.25	2.00	1.25	14,832	276,480
			94,014	83,426	-	변동	2.00	1,668	23,520
		소계	**1,397,863**	**1,270,031**				**16,500**	**300,000**
	⑩긴급경영안정 자금	재해이자감면	1,076	1,811	3.25	-	3.25	59	-
		거치기간	795	1,338	3.25	1.00	2.25	30	
		상환기간	14,735	24,802	3.25	1.80	1.45	360	-
		소계	**16,606**	**27,951**				**449**	**-**
	⑪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	농협자금 (고정 무이자~3% /변동)	44,353	45,534	3.25	-	3.25	1,480	36,521
			11,505	11,812	3.25	0.50	2.75	325	9,472
			3,541	3,635	3.25	1.00	2.25	82	2,916
			6,835	7,017	3.25	2.00	1.25	88	5,629
			51,405	52,772	3.25	3.00	0.25	132	42,328
			-	-	-	변동	2.00	-	-
			26,881	27,596	-	변동	1.00	276	22,134
		소계	**144,520**	**148,366**				**2,383**	**119,000**
	⑫축사시설현대화자금	재해이자감면	6,363	6,744	3.25	-	3.25	219	-
		농협자금	357,023	345,144	3.25	2.00	1.25	7,493	65,000
		소계	**363,386**	**351,888**				**7,712**	**65,000**
	⑬첨단온실신축 지원	농협자금	123,142	130,523	3.25	1.00	2.25	2,937	-
			18,566	19,679	3.25	2.00	1.25	246	-
		소계	**141,708**	**150,202**				**3,183**	**-**
	⑭축산경영종합 자금	인센티브자금 (0~1%차등)	33,209	31,392	3.25	-	3.25	1,020	13,200
			2,465	2,329	3.25	1.00	2.25	53	981
		농업인(고정)	80,260	75,870	3.25	2.00	1.25	948	31,900
		조합 등(고정)	69,021	65,248	3.25	3.00	0.25	163	27,431
		(변동)	6,911	6,535	-	변동	2.00	131	2,745
			57,484	54,345	-	변동	1.00	543	22,843
		소계	**249,350**	**235,719**				**2,858**	**99,100**
	⑮인삼약용작물 계열화	농협자금 (고정/변동)	69,786	66,590	3.25	2.50	0.75	500	14,370
			44,327	42,296	-	변동	2.00	846	9,130
		소계	**114,113**	**108,886**				**1,346**	**23,500**

구분	자금명	세부구분	19년 말 대출잔액 (추정)	19년평잔 (추정)(A)	기준 금리	대출 금리	이차 율 (B)	이차액 (C=A*B)	'19년 융자규모 (신규대출)
	⑯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농협자금 (고정/변동)	46,790	40,435	3.25	2.00	1.25	505	15,000
			1,717	1,817	-	변동	2.00	36	-
			259	274	-	변동	1.00	3	-
		소계	48,766	42,526				544	15,000
부채대책이차보전	부채대책자금이차보전 소계		687,074	753,465	-	-	-	13,613	30,000
	①정책자금상환연기('04)		376,879	416,225	3.25	1.50	1.75	7,284	-
	②연대보증해소자금('01)		16,055	18,261	3.25	3.00	0.25	46	-
	③농업경영회생자금('01)		79,839	84,072	3.25	1.00	2.25	1,891	30,000
	④정책자금대체자금('04)		214,300	234,907	3.25	1.50	1.75	4,111	-
	⑤부채상환인센티브('01)							281	-
이차보전 부족예산*								115,618	
기타	'17년 부족분			15,320,085 (193,264 증)	3.01	0~3, 변동	0.01~ 3.01	41,272	
	'18년 부족분 * 기준금리 '18.9월말 기준 적용			16,189,307 (440,152 증)	3.25	0~3, 변동	0.25~ 3.25	74,346	
총 소요예산								420,922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자금 이차보전	**221,562백만원** <'19년 소요 이차보전액 221,562백만원> - '18년말 대출평잔: 15,789,966백만원 • 기존자금 12,963,499 / 신규자금: 2,826,467 * 신규지원 융자 규모: 7,277,400백만원 - 기준금리 : 2.99%(농협은행) ※ 산식: 대출평잔 15,789,966백만원×각 세부사업별 이차율 0~2.99% = 221,562 <이차보전 부족예산 115,618백만원>	**420,922백만원** <'19년 소요 이차보전액 305,304백만원> - '19년말 대출평잔: 17,082,838백만원 • 기존자금 14,113,524 / 신규자금: 2,969,314 * 신규지원 융자 규모: 6,923,700백만원 - 기준금리 : 3.25%(농협은행) ※ 산식: 대출평잔 17,082,838백만원×각 세부사업별 이차율 0.25~3.25% = 305,304 <이차보전 부족예산 115,618백만원> - '17년 예산 부족액 41,272백만원 - '18년 예산 부족액 74,346백만원
▪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0%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0%

□ 지원 필요성

○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농업자금을 저리지원함에 따라 발생한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정부에서 사후에 보전해주는 의무적 지출 성격의 사업이므로 이차보전액 지급을 위한 적정 소요 반영·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자금이차보전	**210,094**	**221,562** (대출평잔 15,789,966 백만원×이차율 0~2.99)	**420,922** (대출평잔 17,082,838 백만원×이차율 0.25~3.25) + 17년 및 '18년 부족예산	**199,360**	**90.0**
▪ 농축산경영자금	19,903	25,935	21,552	△4,383	△16.9
▪ 재해농가이자감면	298	468	468	-	-
▪ 재해복구융자금	526	391	334	△57	△14.6
▪ RPC운영자금	27,592	26,423	28,286	1,863	7.1
▪ 농업종합자금	90,878	80,398	141,865	61,467	76.5
▪ 농촌주택개량자금	22,718	29,799	39,430	9,631	32.3
▪ 협동조합합병자금	1,910	2,129	2,428	299	14.0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5,428	15,417	22,353	6,936	45.0
▪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	6,584	- (후계농육성자금으로 통합)	-	-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6,747	9,534	16,500	6,966	73.1
▪ 사료구매자금	112	101	-	△101	△100.0
▪ 긴급경영안정자금	977	1,093	449	△644	△58.9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2,086	2,015	2,383	368	18.3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4,499	5,684	7,712	2,028	35.7
▪ 첨단온실신축지원자금	1,858	2,795	3,183	388	13.9
▪ 축산경영종합자금	1,933	3,921	2,858	△1,063	△27.1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523	1,551	1,346	△205	△13.2
▪ 농촌융복합산업자금	204	286	544	258	90.2
▪ 정책자금상환연기	8,376	7,130	7,284	154	2.2
▪ 연대보증해소자금	-14	-	46	46	순증
▪ 농업경영회생자금	1,855	1,974	1,891	△83	△4.2
▪ 정책자금대체자금	4,678	4,183	4,111	△72	△1.7
▪ 부채상환인센티브	464	335	281	△54	△16.1
▪ 부당대출반납액	-42	-	-	-	-
▪ '17년 부족예산	-	-	41,272	41,272	순증
▪ '18년 부족예산	-	-	74,346	74,346	순증
□ 비목(합계)	**210,094**	**221,562**	**420,922**	**199,360**	**90.0**
○ 민간경상보조(320-01)	**464**	335	**314**	**-21**	**-6.3**
○ 이차보전금(320-05)	**209,630**	221,227	**420,608**	**199,381**	**90.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 추진경위 : 1970년부터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자금이차보전	3,783	3,213	2,826	2,180	2,109	2,2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15년) 예산편성시 대비 실제 이차보전 기준금리 하락(농협중앙회 : 4.11%→3.39, 농협조합 : 5.17%→4.36, 재정자금 : 4.07%→3.05) 등으로 불용액 발생
- ('16년) 예산편성시 대비 실제 이차보전 기준금리 하락(농협중앙회 : 3.22%→3.00, 재정자금 : 3.07%→2.41) 등으로 불용액 발생
- ('17년) 전년도 이월예산(대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익년도 1월 이후 최종 정산급 지급)에 대한 집행 잔액(1,209백만원)이며, 본예산에 대한 불용은 없음

○ 이월사유('15~'17)

-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해 연내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이월
- 당해연도 대출실적 확정(익년도 1월) 후, 최종 정산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이월

○ 이·전용

- ('15년) 구제역·AI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추가 소요액(35,600백만원), 구제역·AI 방역 추진에 소요된 예산 정산 및 백신 일제접종 비용(23,938백만원)으로 이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826** ( )	1,177 ( )	-595 ( )	3,407 ( )	**2,197** ( )	953 ( )	257 ( )
'16년	**2,180** ( )	953 ( )	- ( )	3,133 ( )	**2,165** ( )	919 ( )	48 ( )
'17년	**2,109** ( )	919 ( )	- ( )	3,029 ( )	**2,101** ( )	916 ( )	1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이차보전 일부사업의 연례적인 융자금 지원실적 부진, 정책자금별 지원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파악하여 계획을 과다하게 수립하지 않도록 할 것('13년 상임위, '14년 상임위, 예결위)
- 연례적인 기준금리 과다산정과 사업수요저하로 예산조정과 제도개선 필요('15년 예정처, 예결위 검토보고서)
-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며, 정책자금별 지원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16년 결산 상임위, 예결위)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5년 예산 기준금리 산정 변경 적용과 사업수요에 따라 융자규모 조정
  · (현행) '13년 2/4분기~'14년 1/4분기 가중평균금리 적용→(변경) '14년 1/4분기 가중평균금리 적용
  · (융자규모조정) 협동조합합병자금 600억원→300,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1,200억원→1000억원, 축사시설현대화자금 2,125→1,225억원),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700억원→1,000억원 등
- '16년 예산 기준금리 산정 변경 적용 및 금리인하 반영
  · (현행) '14년 2/4분기~'15년 1/4분기 가중평균금리 적용→(변경) '15년 10월 가중평균금리 적용
  · (금리인하) 농업종합자금(시 3%→2, 운전 3%→2.5), 농축산경영자금(3%→2.5), 도축가공업체지원(3~4%→2.5~3), 인삼약용작물계열화(3%→2.5), 농촌주택개량자금(2.7%→2.0), 귀농인창업지원자금(2.7%→2.0), 변동금리 도입
- '18년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융자금 집행 실적 및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정책자금 이차보전 : 정책자금 관련 시책 시행(정부) → 농업인 등 신청 → 관련 심사 및 정책자금 지원(금융기관 등) → 이차보전금 신청(금융기관) 및 지급(정부)

○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 부채대책 시행(정부) → 농업인 신청 → 부채심사위원회 심사(농협) → 부채대책자금 지원(저리대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 이차보전금 등 신청(농협) 및 지급(정부)

참고 1 '19년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자금별 세부산출근거

1 정책자금 이차보전

① 농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86.3.5 농어촌종합대책(10→8%) 및 '89.4.28 농어촌발전종합대책(8→5%) 등에 의하여 농업경영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함에 따른 이차발생액을 보전

※ 금리조정('98.4.15) : 5 → 6.5%

※ 추가 금리조정(중산층, 서민생활안정대책 : '99.7.1) : 6.5 → 5.0%

※ 금리조정('02.7.1) : 5.0 → 4.0%, 금리조정('04.3.1) : 4.0 → 3.0%

※ 금리조정('15.8.1) : 3.0 → 2.5%

※ 금리조정('17.7.1) : 재해대책경영자금 금리 추가 인하 2.5 → 1.8%

※ 변동금리 도입('15.9.1)

나. 2019년 예산 산출내역

구 분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① 지원계획(억원)	**14,200**	**14,200**	0
② 지원규모(억원)	14,200	14,200	0
③ 연간평잔(억원)	**13,065**	**11,360**	-1,705
④ 이차발생액(백만원)	**25,935**	**21,552**	-4,383
⑤ 재정자금미운용수익(백만원)	0	0	0
⑥ 이차보전액(④ - ⑤)	**25,935**	**21,552**	-4,383
⑦ 농축산경영자금 손실보전료(백만원)	**0**	**0**	0
⑧ 총 소요액(⑥ + ⑦)	**25,935**	**21,552**	-4,383

※ 2019년 연간평잔 : 신규지원<지원규모×지원율(80.0%) × 평잔율 69.0%> + 기존자금

※ 재정자금 미운용 수익 : 미반영(차입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아 반영 불필요)

- 미운용 수익 : 미운용 평잔 × (정기예금 금리 - 재정자금 차입금리)

※ 농축산경영자금 손실보전료(2011년 종료) : 지원규모 × 0.5%

다. 농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재 원 별	지원규모	평잔액	대출금리 (예금)	이차율 (출연율)	이차보전 발생액
농협자금	116,866	93,493	2.50	0.75	701
농협자금	1,303,134	1,042,507	변동	2.00	20,851
계	**1,420,000**	**1,136,000**			**21,552**

※ 평잔액 산출 : 신규지원<지원규모×지원율(80.0%) × 평잔율 69.0%)> + 기존자금

<참고1 : '18년 농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예산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재 원 별	지원규모	평잔액	조달금리	대출금리 (예금)	이차율 (출연율)	이차보전 발생액
재정자금	4,193	9,237	2.4019 [1)]	2.50	-0.0981	-9
농협자금	1,415,807	1,297,223	-	변동	2.00	25,944
계	**1,420,000**	**1,306,460**				**25,935**

※ 평잔액 산출 : 신규지원<지원규모 ×지원율(92.0%)× 평잔율(69.2%)> + 기존자금

1) 재정자금 조달금리 (2.4019%) = 차입금리(1.1163%) + 취급수수료(1.2856%)

2) 농협자금은 변동금리 이차율 적용

< 참고2 : 농협자금 기준금리 변동내역(정산기준)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은행자금	4.97	4.87	4.94	4.40	3.94	3.39	3.00	3.01
상호금융자금	6.95	7.27	6.96	5.60	5.02	4.36	3.88	3.80

② 재해농가이자감면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거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농축산경영자금의 원금 상환 기일을 1년 또는 2년간 연기하고 연기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함에 따른 이차보전

- 피해율 50%이상 농가 : 상환기간 2년 연기, 이자감면
- 피해율 30～50% 농가 : 상환기간 1년 연기, 이자감면

※ 금리조정('02.7.1) : 5.0 → 4.0%　※ 금리조정('04.3.1) : 4.0 → 3.0%
금리조정('15.8.1) : 3.0 → 2.5%

나. 2019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증 감 (B-A)
내 용	연기대상 금 액	이 율	이자면제 (A)	내 용	연기대상 금 액	이 율	이자면제 (B)	
2017재해				2018재해				
-1년 연기	9,370	2.5%×1	234	-1년 연기	9,370	2.5%×1	234	0
-2년 연기	9,370	2.5%×1	234	-2년 연기	9,370	2.5%×1	234	0
	18,740		**468**		**18,740**		**468**	**0**

③ 재해복구융자금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 ‘96, ‘99, ‘00, ‘01, ‘02, ‘03, ‘04, ‘06, ‘09년 재해복구용 융자금을 농협 자금으로 지원하고 그 이차를 보전

○ 지원조건

- 3～5년 거치 2～10년 상환(‘01년 변경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04.3.5 : 1.5% (‘03년말 기준 지원잔액)
- 대출금리(‘06.1.1) : 4.0 → **1.5%**

나. 2019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재해복구융자금	**391**	**334**	**-57**

다. 이차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A)	대출금리(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발생액 (C×D)
재해복구융자금	**3.25**	**1.50**	**1.75**	**19,074**	**334**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 규모	회수	잔액 (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기존자금	26,941	0	7,867	19,074	0	5,570	13,504	19,074
신규자금	0	0	0	0	0	0	0	0
합 계	**26,941**	**0**	**7,867**	**19,074**	**0**	**5,570**	**13,504**	**19,074**

주) 회수금액은 전년도 대출잔액에 회수율 29.2% 적용

④ RPC(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 RPC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쌀 품질유지 및 쌀 유통구조 개선

○ 사업내용

- 총 지원규모 : **1,230,800백만원**
- 지원조건 : 1년 이내 상환, 대출금리(0~3% 차등 적용)

나. 2019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RPC 운영자금	26,423	28,286	1,863

다. 이차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영자금			금 리 (%)			이차 발생액 (C×D)	
	지원규모		대상평잔 (C)	기준 금리	대출 금리	이차율 (D)		
	2018년(A)	**2019년(B)**						
A등급	419,702	419,702	377,732	3.25	0.00	3.25	12,276	RPC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적용
B등급	333,547	333,547	300,192	3.25	0.50	2.75	8,255	
C등급	215,390	215,390	193,851	3.25	1.00	2.25	4,362	
D등급	140,311	140,311	126,280	3.25	1.50	1.75	2,210	
E등급	100,926	100,926	90,833	3.25	2.00	1.25	1,136	
F등급	20,924	20,924	18,832	3.25	3.00	0.25	47	
합 계	**1,230,800**	**1,230,800**	**1,107,720**				**28,286**	

※ 2019년 평잔액 : (A의 신규지원율 90.0%×평잔율 45.6%) + (B의 신규지원율 90.0%×평잔율 45.6%)

※ 벼 매입자금 지원금리는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 A등급·통합RPC(무이자), B등급·수탁선도금(0.5%), C(1.0%), D(1.5%), E,F(2, 3%)
- '18년도 구성비 : (무이자) 지원규모의 34.1%, (0.5%) 27.1%, (1%) 17.5%, (1.5%) 11.4%, (2.0%) 8.2, (3.0%) 1.7%

라. RPC 운영자금 평잔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실적(B)	지원평잔(C)	평잔율(C/B)
2015	1,253,925	587,329	46.8
2016	1,274,787	574,299	45.1
2017	1,249,190	562,919	45.1
합계	**3,777,902**	**1,724,547**	**45.6**

⑤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가. 농업종합자금 사업개요

○ 지원목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원예, 특작, 축산, 농기계구입·사후관리, 관광농원 등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지원조건 : 금리 1.5~3%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상환, 운전자금 2~3년 이내 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 거치 4~7년 상환

※ 금리조정('15.8.1) : 3.0 → 2.5%(운전자금) , 금리조정('16.1.1) : 2.5 → 2.0%(시설자금)

※ 변동금리 사업 확대('15.9.1)

※ 스마트팜종합자금 신설('17.1.1) '17년 500억, '18년부터 1,000억원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을 농업종합자금(스마트팜종합자금)으로 통합('18.1.1)하여 융자지원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 (B-A)
농업종합자금	**80,398**	**141,865**	**61,467**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			2019년 소요액		비고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부채대책등	3.40	1.50	1.90	219	4	
농기계구입(고정)	3.40	2.00	1.40	1,053,986	14,756	
농기계구입(변동)	-	변동	2.00	792,014	15,840	
시설(고정)	3.40	2.00	1.40	455,056	6,371	
운전(고정)	3.40	2.50	0.90	409,531	3,686	
변동금리	-	변동	2.00	2,555,859	51,117	
스마트팜(시설)	3.40	2.00	1.40	123,379	1,727	
스마트팜(운전)	3.40	2.50	0.90	5,945	53	
수출및규모화	-	개별	3.51	1,226,612	43,054	
농기계생산(시설)	3.40	2.00	1.40	152,262	2,132	
농기계보관창고(시설)	3.40	2.00	1.40	1,376	19	
쌀가공육성(변동)	-	변동	2.00	69,431	1,388	
농식품우수기술화(변동)	-	변동	2.00	71,663	1,433	
농기계수리부품(변동)	-	변동	1.00	23,276	232	
농기계수리부품(고정)	3.40	3.00	0.40	13,260	53	
합 계				**6,953,869**	**141,865**	

※ 2014년부터 이차보전 기준금리에 0.15% 추가금리 부여(농업종합자금 심사시스템 운용0.03%, 농업금융컨설팅 운영 0.05%, 근저당설정비 지원 0.07%)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 규모	회수	잔액 (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부채대책등	400	-	137	263	-	90	173	219
농기계구입(고정)	1,207,077	378,490	412,820	1,123,543	250,000	384,252	980,716	1,053,986
농기계구입(변동)	804,718	321,510	275,214	809,218	250,000	276,753	773,890	792,013
시설(고정)	626,939	94,249	214,413	494,523	91,216	169,127	413,483	455,057
운전(고정)	214,417	247,355	73,331	356,285	239,395	121,849	465,620	409,531
변동금리	2,070,570	1,203,416	708,135	2,409,407	1,164,689	824,017	2,710,130	2,555,859
스마트팜(시설)	17,028	95,400	5,824	94,202	95,400	32,217	154,113	123,379
스마트팜(운전)	813	4,600	278	4,537	4,600	1,552	7,427	5,945
수출및규모화	1,362,080	466,900	465,831	1,302,452	300,000	445,439	1,146,723	1,226,612
농기계생산(시설)	47,804	50,600	16,349	75,477	190,000	25,813	233,147	152,262
농기계보관창고(시설)	524	1,000	179	1,215	773	416	1,545	1,376
쌀가공육성(변동)	3,734	60,500	1,277	55,092	50,000	18,841	84,536	69,431
농식품우수기술화(변동)	11,664	57,580	3,989	57,770	50,000	19,757	86,298	71,663
농기계수리부품(변동)	9,976	16,357	3,412	20,795	12,640	7,112	25,889	23,276
농기계수리부품(고정)	14,964	4,643	5,118	13,885	3,588	4,749	12,601	13,260
합 계	**6,392,708**	**3,002,600**	**2,186,307**	**6,818,664**	**2,702,301**	**2,331,984**	**7,096,291**	**6,953,869**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48.7%) - (C의 평잔율 48.7%)

※ 회수금액은 회수율 34.2%, 신규지원액에 '18년 신규지원율 87.0%, '19년 신규지원율 96.57% 적용

마. 최근 3개년 평잔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액(A)	지원평잔(B)	평잔율(B/A)
2015	1,845,663	888,314	48.1
2016	2,499,869	1,208,418	48.3
2017	2,689502	1,330,648	49.5
합계	**7,035,034**	**3,427,380**	**48.7**

⑥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사업개요

○ 지원목적

- 후계농업인육성자금 : 영농종사 의지가 높은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영농기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력 육성
- 우수후계농추가지원 : 후계농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후계농업인의 성장·성숙 유도 및 미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 내용

- 후계농업인육성자금 : 토지구입,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기반자금 지원(최대 3억원 한도)
- 우수후계농추가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5년이 경과한 우수 농업인에게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자금 지원

  * 영농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자금, 8천만원 한도내 융자)을 통해 규모화·전문화 유도

○ 지원조건

- 후계농업인육성자금 : (현행) 금리 2%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

  (개선안) 2030세대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미만, 연간 1천명 규모)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
- 우수후계농추가지원 : 금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총 지원규모 : 3,450억원(후계농 3,150억원, 우수후계농추가 300억원)

※ 금리조정('14.1.17) : 후계농 3.0 → 2.0%, 우수후계농추가 3.0 → 1.0%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으로 통합('18.1.1)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 (B-A)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15,417	22,353	6,936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3.25	2.00	1.25	1,071,347	13,391
	-	변동	2.00	84,927	1,698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	3.25	1.00	2.25	322,867	7,264
계				**1,479,141**	**22,353**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규모	회수	잔액(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후계농	846,557	310,000	68,571	1,087,986	315,000	88,127	1,314,859	1,156,275
우수 후계농	322,296	50,000	33,196	323,200	30,000	33,290	319,910	322,867
합계	**1,168,853**	**360,000**	**101,767**	**1,411,186**	**345,000**	**121,417**	**1,634,769**	**1,479,142**

- 후계농

※ 2019년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30.1%) - (C의 평잔율 30.1%)

※ 회수금액은 회수율 8.1%, 신규지원액에 '18년, '19년 신규지원율 100% 적용

- 우수후계농

※ 2019년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10.1%) - (C의 평잔율 10.1%)

※ 회수금액은 회수율 10.3%, 신규지원액에 '18년 신규지원율 68.2%, '19년 신규지원율 100% 적용

마. 최근 3개년 운영자금 평잔 추이

○ 후계농육성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액 (B)	지원평잔 (C)	평잔율 (C/B)
2015	176,148	59,655	33.9
2016	163,829	46,574	28.4
2017	176,905	49,299	27.9
합계	**516,882**	**155,528**	**30.1**

○ 우수후계농추가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실적 (A)	지원평잔 (B)	평잔율 (B/A)
2015	36,813	3,681	10.0
2016	40,663	2,799	6.9
2017	45,289	5,976	13.2
합계	**122,765**	**12,456**	**10.1**

⑦ 농촌주택개량자금 이차보전

가. 농촌주택개량자금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신축·수리)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지원조건

- 주택신축 : 평균 60백만원/세대, 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1~3년거치 17~19년상환
- 주택수리(부분개량) : 평균30백만원/세대, 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1~3년거치 17~19년상환

○ 총 지원규모 : 5,500억원

※ 금리조정('14.1.17) : 3.0 ~ 4.0% → 2.0%(65세이상) ~ 2.7%(65세 미만)
금리조정('16.1.1) : 2.7% → 2.0%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농촌주택개량자금	**29,799**	**39,430**	**9,631**

※ 2013년 타기관 관리기금(주택기금, 지방비, 농특)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2019년 소요액		비 고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2.0%	3.25	2.00	1.25	2,624,116	32,802	
2.0%	3.1420	2.00	1.1420	580,418	6,628	
합 계				**3,204,534**	**39,430**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규모	회수	잔액(A)	지원규모 (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2.0%	2,344,184	550,000	250,828	2,588,356	550,000	276,954	2,806,402	2,624,116
2.0%	661,574		70,788	590,786		63,214	527,572	580,418
합계	**3,005,758**	**550,000**	**321,616**	**3,179,142**	**550,000**	**340,168**	**3,333,974**	**3,204,534**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16.4%) - (C의 평잔율 16.4%)

※ 회수금액은 회수율 10.7%, 신규지원액에 '18년, '19년 신규지원율 90.0% 적용

마. 최근 3개년 운영자금 평잔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실적(B)	지원평잔(C)	평잔율(C/B)
2015	409,237	64,160	15.7
2016	465,340	75,380	16.2
2017	488,148	83,443	17.1
합계	**1,362,725**	**222,983**	**16.4**

⑧ 협동조합합병자금 이차보전

가. 협동조합합병자금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일선조합의 경영 건전성 확보 및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일선조합의 합병에 따른 제경비 및 경영 정상화 자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조건 : 금리 0%, 5년 거치 일시상환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협동조합합병자금	**2,129**	**2,428**	**299**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협동조합합병자금	**3.25**	**0.00**	**3.25**	**74,725**	**2,428**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규모	회수	잔액(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금 액	70,000	30,000	10,710	72,940	24,000	11,160	75,430	74,725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71.7%) - (C의 평잔율 71.7%)

※ 회수금액은 상환율 15.3%, 신규지원액에 '18년 신규지원율 45.5%, '19년 신규지원율 56.88% 적용

마. 최근 3개년 운영자금 평잔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액 (B)	지원평잔 (C)	평잔율 (C/B)
2015	44,000	32,592	74.1
2016	6,000	3,268	54.5
2017	-	-	-
합계	**50,000**	**35,860**	**71.7**

⑨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이차보전

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 지원

○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 지원(3억원 한도내)
- 주택구입자금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75백만원 한도내)

○ 지원조건 : 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업창업자금 : 2.0%, 주택구입자금 : 2.0%

※ 사업명 변경 : 2015. 1. 1.(귀농귀촌정착지원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금리조정('16.1.1) : 2.7% → 2.0%(65세미만)

나. 2018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귀농인창업지원자금	**9,534**	**16,500**	**6,966**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			2019년 소요액		비 고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귀농인창업지원자금	3.25	2.00	1.25	1,186,606	14,832	
	-	변동	2.00	83,426	1,668	
	합계			**1,270,032**	**16,500**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 규모	회수	잔액 (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2.0%	870,746	276,480	53,116	1,094,110	276,480	66,741	1,303,849	1,186,605
변동	54,902	23,520	3,349	75,073	23,520	4,579	94,014	83,426
합 계	**925,648**	**300,000**	**56,465**	**1,169,183**	**300,000**	**71,320**	**1,397,863**	**1,270,031**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44.1%)- (C의 평잔율 44.1%)

※회수금액은 회수율 6.1%, 신규지원액에 '18년, '19년 신규지원율 100% 적용

마. 최근 3개년 운영자금 평잔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액 (B)	지원평잔 (C)	평잔율 (C/B)
2015	169,489	72,264	42.6
2016	233,314	107,612	46.1
2017	302,493	131,063	43.3
합계	**705,296**	**310,939**	**44.1**

⑩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가축질병 등 가격 및 수급불안요인 발생에 따른 경영압박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조건 : 금리 1(거치)~1.8%(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긴급경영안정자금	**1,093**	**449**	**-644**

* 2010년부터 일반회계 이차보전으로 지원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2019년 소요액		비 고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 (C×D)	
긴급경영 안정자금	**3.25**	**-**	**3.25**	**1,811**	**59**	**재해이자감면**
	3.25	**1.00**	**2.25**	**1,338**	**30**	**경영안정자금 추가사업**
	3.25	**1.80**	**1.45**	**24,802**	**360**	**일반 경영안정자금**
	합계			**27,951**	**449**	

※ 경영안정자금 추가사업의 금리는 거치기간중에는 1%, 원금상환 기간중에는 1.8%로 변경

※ 2015년부터 대출금리 3%를 1.80%로 인하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 규모	회수	잔액 (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0%	4,218	0	2,088	2,130	0	1,054	1,076	1,811
1.0%	3,118	0	1,543	1,575	0	780	795	1,338
1.8%	57,778	0	28,600	29,178	0	14,443	14,735	24,802
합 계	**65,114**	**0**	**32,231**	**32,883**	**0**	**16,277**	**16,606**	**27,951**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30.3%) - (C의 평잔율 30.3%)

※ 회수금액은 회수율 49.5%

⑪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이차보전

가.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HACCP을 지정받아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가공업체의 운영활성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 융자규모 : 119,000백만원(도축가공업체지원 952억, 계란가공장·집하장 등 70억, 유제품지원 168억)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생산자)/3%(일반업체),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5년 거치 10년 상환
- 운영자금 : 금리 0~2.5%(생산자)/3%(일반업체),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 금리인하('15.8.1) 4%→3%, 3%→2.5%, 금리인하('16.1.1) 2.5%→2.0%(시설자금), 변동금리 도입('15.9.1)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 감(B-A)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2,015	2,383	368

* 2010년부터 축발기금 융자사업에서 일반회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 리(%)			2019년 소요액		비 고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0.0%	3.25	0.00	3.25	45,534	1,480	
0.5%	3.25	0.50	2.75	11,812	325	
1.0%	3.25	1.00	2.25	3,635	82	
2.0%	3.25	2.00	1.25	7,017	88	
3.0%	3.25	3.00	0.25	52,772	132	
변동	-	변동	2.00		0	농업인
변동	-	변동	1.00	27,596	276	비농업인
합 계				**148,366**	**2,383**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 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 규모	회수	잔액 (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0.0%	50,100	52,173	28,557	46,064	36,521	26,256	44,354	45,534
0.5%	13,000	13,532	7,410	11,950	9,472	6,811	11,505	11,812
1.0%	4,000	4,165	2,280	3,678	2,916	2,096	3,542	3,635
2.5%	7,718	8,041	4,399	7,098	5,629	4,046	6,835	7,017
3.0%	58,060	60,469	33,094	53,386	42,328	30,430	51,405	52,772
변동			0	0		0	0	0
변동	30,363	31,620	17,307	27,917	22,134	15,913	26,880	27,596
합 계	**163,241**	**170,000**	**93,048**	**150,093**	**119,000**	**85,552**	**144,521**	**148,366**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31.0%) - (C의 평잔율 31.0%)

※ 회수금액은 회수율 57.0%, 신규지원액에 '18년 신규지원율 47.0%, '19년 신규지원율 67.21% 적용

⑫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및 내용

- 축사의 개보수, 자동화시설 등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융자규모 : 축사시설현대화 65,000백만원

○ 지원조건

- 축사시설현대화 : 금리 1%**(2019년부터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84**	**7,712**	**2,028**

* 축사시설현대화는 2012년부터 신규지원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2019년 소요액		비 고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축사시설 현대화	3.25	0	3.25	6,744	219	재해이자감면*
	3.25	1.00	2.25	317,809	7,151	2018년 (1.0%)
	3.25	2.00	1.25	27,335	342	2019년 (2.0%)
	합계			**351,888**	**7,712**	

※ 재해이자감면(0%) : '17년 AI 발생 살처분 및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축산정책과-525호, 2017.2.1.) 조치**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 규모	회수	잔액 (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0%	7,908	0	815	7,093	0	731	6,363	6,744
1.0~2.0%	308,895	65,000	31,816	334,266	65,000	34,429	357,024	345,144
합 계	**316,803**	**65,000**	**32,631**	**341,359**	**65,000**	**35,160**	**363,387**	**351,888**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47.8%) - (C의 평잔율 47.8%)

※ 회수액은 회수율 10.3%, '18년, '19년 신규지원율 87.98% 적용

⑬ 첨단온실신축지원자금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및 내용

-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지원조건 : 금리 1~3%, 3~5년 거치 7~10년 상환

※ 2013년부터 신규지원

※ 2018년부터 농업종합자금(스마트팜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신규 융자지원('18년부터는 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만 발생)

나. 2017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첨단온실신축지원자금	**2,795**	**3,183**	**388**

* 2013년부터 신규융자 지원, 2018년부터는 이차보전금만 발생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리(%)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첨단온실신축지원	3.25	1.00	2.25	130,523	2,937
첨단온실신축지원	3.25	2.00	1.25	19,679	246
계				**150,202**	**3,183**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규모	회수	잔액(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1%	119,041	86,900	12,261	137,282	0	14,140	123,142	130,523
2%	17,949	13,100	1,849	20,698	0	2,132	18,566	19,679
계	**136,990**	**100,000**	**14,110**	**157,980**	**0**	**16,272**	**141,708**	**150,202**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47.8%) - (C의 평잔율 47.8%)

※ 회수액은 회수율 10.3%, '18년, '19년 신규지원율 35.1% 적용

⑭ 축산경영종합자금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및 내용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과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금융자금 지원규모 : 99,100백만원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75,000백만원, 금리 0~2%, 1~3년 일시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
- 축산계열화사업 : 24,100백만원, 금리 0~3%, 2년 일시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

* 인센티브 0~1%, 농업인·생산자단체 2%, 기업·조합 등 3%

※ 금리인하('15.1.1) 3%→2%(농업인), 변동금리 도입('15.9.1)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축산경영종합자금	3,921	2,858	-1,063

* 2014년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브랜드경영체지원, 축산계열화)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리(%)			2019년 소요액		비 고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축산경영 종합자금	3.25	0.00	3.25	31,392	1,020	
	3.25	1.00	2.25	2,329	52	
	3.25	2.00	1.25	75,871	948	
	3.25	3.00	0.25	65,248	163	
		변동	2.00	6,535	131	농업인
		변동	1.00	54,345	543	비농업인
계				**235,720**	**2,858**	

※ 2015년부터 대출금리 3%를 2.0%로 인하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규모	회수	잔액(A)	지원규모(B)	회수(C)	잔액(D)	평잔액(E)
0%	27,000	18,861	7,911	30,632	13,200	8,975	33,210	31,392
1%	2,000	1,402	586	2,272	981	666	2,465	2,329
2%	65,259	45,581	19,121	74,034	31,900	21,692	80,261	75,871
3%	56,127	39,195	16,445	63,669	27,431	18,655	69,022	65,248
변동	5,626	3,922	1,648	6,378	2,745	1,869	6,911	6,535
변동	46,756	32,639	13,700	53,031	22,843	15,538	57,485	54,345
계	**202,768**	**141,600**	**59,411**	**230,016**	**99,100**	**67,395**	**249,354**	**235,720**

※ '18년 신규지원율 61.2%, '19년 신규지원율 87.52% 및 평잔율 29.5%, 회수율 29.3% 적용

⑮ 인삼약용작물계열화자금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및 내용

- 인삼·약용작물의 전근대적인 생산·유통·가공구조를 생산자단체의 계열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고 농가 소득안정 도모

○ 금융자금 지원규모 : 23,500백만원

○ 지원조건 : 금리 2.5% 또는 변동, 1년 일시상환, 5년거치 일시상환

※ 변동금리 도입('15.9.1)

※ 금리인하('15.8.1) 3%→2.5%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인삼약용작물계열화	**1,551**	**1,346**	**-205**

* 2014년부터 농안기금 융자사업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리(%)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2.5%	3.25	2.50	0.75	66,590	500
변동	-	변동	2.00	42,295	846
계				**108,885**	**1,346**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규모	회수	잔액(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2.5%	59,450	22,870	9,096	65,425	14,370	10,010	69,785	66,590
변동	37,757	14,530	5,777	41,555	9,130	6,358	44,327	42,295
계	**97,207**	**37,400**	**14,873**	**106,980**	**23,500**	**16,368**	**114,112**	**108,885**

※ '18년 신규지원율 65.9%, '19년 신규지원율 100% 및 평잔율 26.7%, 회수율 15.3% 적용

⑯ 농촌융복합사업(6차산업) 이차보전

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및 내용

-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산업 창업을 촉진하는 등 사업 확장 및 개선 지원을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 도모

○ 금융자금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 지원조건 : 금리 2% 또는 변동금리, 2~3년 거치 3~7년 상환

※ 변동금리 도입('15.9.1)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6차산업창업지원	**286**	**544**	**258**

* 2014년부터 신규지원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리(%)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2%	3.25	2.00	1.25	40,435	505
변동	-	변동	2.00	1,817	36
변동	-	변동	1.00	274	3
계				**42,526**	**544**

※ 2015년부터 대출금리 3%를 2.0%로 인하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규모	회수	잔액(A)	지원 규모(B)	회수 (C)	잔액 (D)	평잔액 (E)
2%	29,405	30,000	2,088	38,417	15,000	2,728	46,789	40,435
변동	1,990	0	141	1,849		131	1,718	1,817
변동	300	0	21	279		20	259	274
계	**31,695**	**30,000**	**2,250**	**40,545**	**15,000**	**2,879**	**48,766**	**42,526**

※ '18년 신규지원율 37.0%, '19년 신규지원율 74.0% 및 평잔율 24.1%, 회수율 7.1% 적용

2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① 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이차보전

가. 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사업개요

○ 지원내용

- '04정책자금상환연기 : '03년말기준으로 '04.1.1 이후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연기(대출금리 1.5%)

  * 지원근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 지원조건('04정책자금상환연기) : 금리 연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04정책자금상환연기	**7,130**	**7,284**	**154**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04정책자금상환연기	**3.25**	**1.50**	**1.75**	**416,225**	**7,284**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분할상환	잔액 (A)	분할상환 (B)	잔액 (C)	평잔액
'04정책자금상환연기(농협)	527,630	75,376	452,254	75,376	376,878	416,225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47.8%)

② 연대보증해소자금 이차보전

가. 연대보증해소자금 사업개요

○ 지원내용 : '01년에 주채무자에 대해 보증을 선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였거나 상환하고자 하는 연대보증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3.0%(부채경감법 개정 '03.1.1, 5.0% → 3.0)
- 상환기간 : (당초)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경, '04)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연대보증해소자금	**0**	**46**	**46**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연대보증해소자금	**3.25**	**3.00**	**0.25**	**18,261**	**46**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분할상환	조기상환	잔액 (A)	분할상환 (B)	조기상환 (C)	잔액 (D)	평잔액 (E)
농 협	24,906	3,558	1,067	20,281	3,380	845	16,056	18,261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47.8%) - (C의 평잔율 47.8%)

※ 조기상환율 : 5% 적용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이차보전

가. 농업경영회생자금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 지원조건 : 금리 연 1%('04부채대책으로 금리인하된 자금은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2015년부터 대출금리 3%를 1.0%로 인하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농업경영회생자금	**1,974**	**1,891**	**-83**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A)	대출금리(B)	이차율 (C=A-B)	평잔(D)	이차보전 발생액(C×D)
1.0%	3.25	1.00	2.25	84,072	1,891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지원규모	분할 상환	조기 상환	잔액 (A)	지원 규모 (B)	분할 상환 (C)	조기 상환 (D)	잔액 (E)	평잔액 (F)
1.0%	90,501	60,000	9,050	4,073	85,238	30,000	9,471	3,788	79,839	84,072

※ 평잔액(F) : (A 평잔율 100%) + (B의 평잔율 21.6%) - (C+D의 평잔율 21.6%)
※ 신규지원액에 '18년 신규지원율 13.1%, '19년 신규지원율 26.2% 적용
※ 조기상환율 5% 적용

④ 정책자금대체자금 이차보전

가. 정책자금대체자금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농업(법)인이 보유한 기존의 농특회계(구조개선자금)자금, 축발기금 등 중장기정책자금 대출금을 농협자금으로 대체

* 지원근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04부채대책 시행지침

○ 지원조건 : 금리 연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나. 2019년 이차보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 감(B-A)
정책자금대체자금	**4,183**	**4,111**	**-72**

다. 이차보전 발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리 (%)			2019년 소요액	
	기준금리 (A)	대출금리 (B)	이차율 (C=A-B)	평잔 (D)	이차보전 발생액(C×D)
정책자금대체자금	**3.25**	**1.50**	**1.75**	**234,907**	**4,111**

라. 지원금액 및 평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2018년분			2019년분			
		분할상환	조기상환	잔액 (A)	분할상환 (B)	조기상환 (C)	잔액 (D)	평잔액 (E)
금 액	296,815	29,682	13,357	253,776	28,197	11,279	214,300	234,907

※ 평잔액 : (A 평잔율 100%) - (B+C의 평잔율 47.8%)

※ 조기상환율 5% 적용

⑤ 부채상환 인센티브

가. 부채상환인센티브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및 약정 당시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경우에 이자액의 일부를 환급

- 정상상환 인센티브 : 납부한 이자액의 40% 해당금액
- 조기상환 인센티브 : 1년간 이자액의 40% 해당금액

* 지원근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나. 2019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증 감 (B-A)
		대상금액	대출 금리	상환율	환급율	환급 금액(B)	
합 계	**335**					**281**	**-54**
○ 농 협	**335**	**943,887**				**281**	**-54**
- 정상상환 인센티브	**50**	**132,337**	**1.5%**	**5%**	**40%**	**40**	**-10**
- 조기상환 인센티브	**285**	**811,550**				**241**	**-44**
▪ 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158	452,254	1.5%	5%	40%	136	-22
▪ 연대보증해소자금	16	20,281	3%	5%	40%	12	-4
▪ 농업경영회생자금	20	85,238	1%	5%	40%	17	-3
▪ 정책대체자금(농협)	91	253,777	1.5%	5%	40%	76	-15

※ 조기상환율 5% 적용

3 '17, '18년 이차보전 부족예산

구분	당초편성		실제발생		부족예산 (B-A) (백만원)	비고
	예산액 (A)	산출근거	예산액 (B)	산출근거		
①'17년 이차 보전	210,519	대출평잔 15,126,821 백만원 × 이차율 (기준금리-대출금리, 0.02~3.03%)	251,791 (확정치)	대출평잔 15,395,037 백만원 × 이차율(기준금리-대출금리, 0.01~3.01%)	**41,272**	<'17년 부족분> • 대출평잔 : (편성) 15.1조원→('17년말 최종) 15.4 • 기준금리 : (편성) 3.03%→('17년말 최종) 3.01
②'18년 이차 보전	221,562	대출평잔 15,789,966 백만원 × 이차율 (기준금리-대출금리, 0~2.99%)	295,908 (추정치)	대출평잔 16,189,307 백만원 × 이차율(기준금리-대출금리, 0.25~3.25%)	**74,346**	<'18년 부족분> • 대출평잔 : (편성) 15.8조원→('18년말 추정) 16.2 • 기준금리 : (편성) 2.99%→('18.9월 현재) 3.25
합계(백만원)					**115,618**	

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2,760	6,577	6,820	243	3.7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1000 - 1038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사무관(최은철, ☏ 044-201-179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재해보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재해보험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농업정책자금관리('04～계속), 농업재해보험사업('15~계속),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16~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정책자금관리 및 재해보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비 6,820백만원

▪ 정책자금 검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2명) 및 처우개선요소 등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3.7% 증액

▪ 인건비 : 4,208백만원

- 공통인상 1.8% 및 ‘18년 증원 인력 4명 연차소요 등 4,147백만원 반영
- ‘19년 증원 인력 2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61백만원 반영

▪ 경상비 : 2,612백만원

-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 경상비 2,612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6,577백만원**	**6,820백만원**
▪ 인건비	3,965 (48명×6.7×12개월) +(4명×4.5×6개월)	4,208 (52명×6.6×12개월)+(2명×5.1×6개월)
▪ 경상비	2,612 (52명×50)	2,612 (54명×48)

□ 지원 필요성

○ 농업정책자금관리, 농업재해보험사업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의2에 의해 설립된 농금원의 기관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농업정책보험금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

<농업정책자금관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사업수행자로 지정

<농업재해보험사업관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감독, 보험통계 수집·관리,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사업 수행자로 지정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관리>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15.1.6) 및 시행('16.1.7)에 따른 보험사업의 안정적 성장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투명한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및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 연구·보급 활성화 등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사업 수행자로 지정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2,760**	**6,577**	**6,820**	**243**	**3.7**
▪ 농업정책자금관리 (산출근거)	2,760 (인건비 2,070(27명×6.4×12개월)+경상비 690(27명×26))	6,577 (인건비 3,965(52명×6.4×12개월) +경상비 2,612(52명×50))	6,820 (인건비4,208(54명×6.5×12개월) +경상비 2,612(54명×48))	243	3.7
□ **비목**(합계)	**2,760**	**6,577**	**6,820**	**243**	**3.7**
○ 민간경상보조 (320-01)	2,760	6,577	6,820	243	3.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③ 생략.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생략.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생략.

○ 추진경위

- '91.11.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정(법률 제4399호)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신설
- '93.12.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융자계정』을 농협중앙회에 위탁
- '03.11.24 대통령의 농특자금 운용·감독체계 개선 지시
- '04.05.19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설립
- '04.07.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융자계정』을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
- '05.06.04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운용업무 수탁
- '11.07.2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0935호)으로 농어업 정책자금에 대한 검사근기 법제화
- '13.01.31 기타공공기관 지정
- ('05)농특회계 융자금 → ('08)이차보전자금 → ('10)대손보전이행대출금 → ('13)FTA기금 등 금융기관 취급 기금의 융자・보조 사업으로 검사범위 확대
- '14.09.30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15.01.21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 수탁
- ‘15.06.2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356호)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설립 근거 법제화
- ‘16.02.01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 수탁
- ‘18.01.01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업무 수탁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22	25	26	26	28	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인건비(직급별 정·현원 차이), 경상비(예산 절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6** (**26**)	- ( )	- ( )	26 (26)	**26** (**23**)	- ( )	- (3)
’16년	**26** (**26**)	- ( )	- ( )	26 (26)	**26** (**24**)	- ( )	- (2)
’17년	**28** (**28**)	- ( )	- ( )	28 (28)	**28** (**26**)	- ( )	-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난 5년간(‘08~’12) 대출취급 부적정, 부당사용 적발건수 6,900여건 1,575억에 이름. 사후관리 강화로 실제 농업인들에게 정책자금 지원 필요 (장윤석·윤명희·홍문표·이운룡·경대수 의원, ‘13. 국정감사)

○ 농업정책자금 검사대상기관 1번씩 검사하는데 16년 이상 소요, 검사제도 개선(인원확대, 검사기법 개발 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당사용 비율을 최소화 할 것 (‘13. ’12년 결산국회 심사결과)

○ 검사주기를 5년 정도로 앞당기기 위해 검사인력 약 15명 단계적 확대 방안 강구토록 지적 (‘15년 예산안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

○ 검사인력 확대, 검사기법 개발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이군현・윤명희 의원, ‘15. 국정감사)

○ 한 해에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을 높이고, 대출기관의 부정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위성곤 의원, ‘16. 국정감사 지적)

○ 정책자금 부당대출 감소를 위하여 현장검사 확대 및 담당자 문책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권석창·김종회·김철민·위성곤 의원, ‘17. 국정감사 지적)

○ 농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재해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 필요, 재해보험 가입률과 관련하여 지역별 보험요율 체계 개선 필요(권석창·김현권 의원, ‘17. 국정감사 지적)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현실화 노력 등을 통해 보험가입률 향상 필요 (이만희 의원, ‘18. 국정감사 지적)

○ 외래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장방안 검토 필요(경대수 의원, ‘18. 국정감사 지적)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보조금 예산통지(농식품부) → 보조금 예산신청(농금원)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 → 보조금 집행(농금원)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농금원) → 결산심사 및 확정 통지(농식품부) → 집행잔액 등 국고 반납처리(농금원)

참고 1 농업정책자금검사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일 반 현 황

❑ 주 요 업 무

○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 금융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에 대한 집행 및 사용실태 점검
- 정책자금 취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도·교육 등 부정수급 예방활동

검 사 대 상 규 모 ('17년말 기준)

1. 검사대상 기관 : 총 1,989개 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합 계
중앙회(은행) 지점	544	30	1	59	634
지역조합	1,130	85	140	-	1,355
계	**1,674**	**115**	**141**	**59**	**1,989**

* 시중은행(10개) : 광주,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2. 검사대상 자금 : 25조 1,26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합 계
농특융자금	4,551	525	3,259	305	8,640
이차보전자금	166,145	31,594	3,203	177	201,119
기금융자금	33,122	31	-	642	33,795
대손보전 이행	6,190	1,403	120	-	7,713
계	**210,008**	**33,553**	**6,582**	**1,124**	**251,267**

* 검사범위 확대: 농특('05) → 이차보전('08) → 대손보전('10) → 기금(축발·농안·FTA)융자('13)

❑ 사업 추진체계

행 정 기 관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출취급 금융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 융자사업 계획·지침 수립 • 융자한도액 배정 • 대상자 선정 및 실적확인, 사후관리(일부사업)	• 농특회계 융자금 대여(금융기관) • 농특회계 융자금 회수(금융기관) •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 대출심사 및 집행 - 대상자 선정 및 실적확인(일부사업) • 대출 원리금 회수 • 대출금 사후관리

나 주 요 성 과

❑ 검사 기관수 확대 및 검사방식 개선 등 검사의 실효성 제고

○ 인력충원 및 자율점검 사전컨설팅의 집합교육 전환으로 현장검사 확대

- 증원인력 3명 및 자율점검 절감인력을 현장검사에 투입, 전년대비 8.5%(37개 기관)가 증가한 총 472개 기관 검사 실시

* '17년 435개(현장 235, 자율 200) → '18년 472개(현장 272, 자율 200)

< 연간 검사 실시 현황 >

(단위 : 개소)

현장검사					자율점검	합계
정기	일반	기획	감사지원	소계		
12	196	49	15	272	200	472

○ 소규모기관 동시검사 확대 및 불시 현장검사 도입으로 검사·관리 강화

- 소규모기관 동시검사*로 검사 사각지대 해소 및 자율점검 부실기관에 대한 불시 현장검사**로 자율점검 기능강화

* 소규모기관 동시검사 : ('17년) 96개→ ('18년) 145개(49개 증)

** 불시현장검사 : '18년 14개(대출금 규모 대비 점검실적 부진, 점검결과 후속조치 미흡 등)

○ 자율점검 방식 개선으로 대출기관의 자체 관리역량 제고

- 자율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신설로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추진

* 총 8회,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 현장검사 실시 및 지적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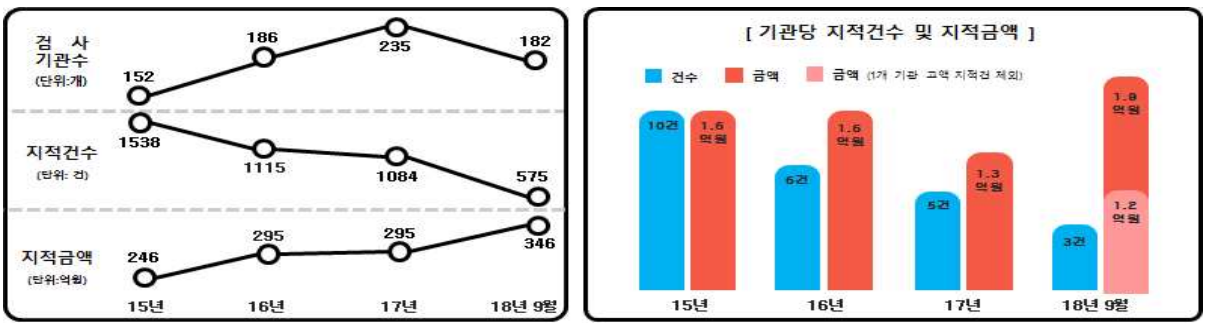

※(현황분석) 검사확대, 신상필벌 및 부정수급 사전예방활동 강화 등 검사효과 파급으로 기관당 지적건수·금액이 감소 추세

* '18년의 경우 기관당 지적금액은 증가(1개 기관에서 고액(127억원)의 지적건 발생)

❑ 사기진작 방안 마련 및 검사 처분요구 강화 등 '신상필벌' 원칙 확립

○ 정책자금관리 우수직원 포상 확대 및 고의·중과실 엄중문책

- 농식품부장관 표창 확대 및 농금원장 표창 신설

  * 장관표창('17년 : 4명 → '18년 : 5명), 농금원장 표창(10명)

- 문책 요구기준 강화 및 위규행위에 대한 '기관경고'제도 도입

  * 문책요구 대상 비위유형 신설 및 세분화(신규유형 5건 추가)

  * 문책요구 기준을 현행 기준 건수·금액의 85% 수준으로 하향하여 문책범위 확대

  * 기관경고 : 비위행위가 반복적·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적용

○ '심의조정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

-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의 감사업무 및 사업담당 공무원을 외부 전문가로 추가 위촉(3명)

  * (위원구성) 기존 : 총 5명(외부1, 내부4) → 개선 : 총 8명(외부4, 내부4)

❑ 대출기관 자체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예방활동 강화

○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시스템 설계 등 기획 완료('19년 : 구축 및 시범운용, '20년 : 본격운용 목표)

  * 정책자금 사용자의 대출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 대출기관에 보급·운용

○ 업무 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신설 등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추진

  * 권역별 순회교육 : 8회(200개 기관), 연수원 집합교육 : 10회

○ 검사사례집* 발간 및 홈페이지 공개 등 검사정보 접근성 개선

  * 농·수·산림조합 등 대출취급기관 배포(5,000부), 전자책(e-book) 홈페이지 게시

❑ 검사원 청렴·윤리의식 고취 및 전문역량 제고

○ 「청탁금지법」 등 청렴·윤리교육 강화 및 자체 점검 추진

  * 부서장 주관 청렴·윤리 교육 실시(월 1회)

  * 내부 집합교육 및 권익위 등 외부 전문기관 청렴·윤리교육 이수(15명, 66회 수료)

○ 금융연수원, 감사교육원 등 전문기관의 단계별 교육을 통한 직무 전문성 제고

  * 소양과정(12명, 57회 수료), 기본과정(15명, 38회 수료), 전문과정(13명, 19회 수료)

참고 2 검사 지적 및 조치 현황 (2018년 9월말 기준)

❑ 지 적 현 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현장검사		자율점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216	165	197	150	19	15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05	177	149	162	56	15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0	3	10	3	-	-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40	15	5	1	35	14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18	0	18	0	-	-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660	101	196	30	464	71
합 계	1,149	461	575	346	574	115

* '05년 이후 누적 지적현황 : 18,390건, 4,428억원(연평균 1,314건, 316억원)

❑ 조 치 현 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현장검사		자율점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여금 반납	106	13	55	8	51	5
이차보전 제외	612	209	334	167	278	42
대손보전금 환수	13	0	13	0	-	-
정상화 조치	216	159	88	115	128	44
조치 진행중	202	80	85	56	117	24
합 계	1,149	461	575	346	574	115

* 신분상 조치 : 12건, 49명(주의 22명, 진행중 27명)

참고 3 농업정책보험 사업관리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일 반 현 황

❑ 주 요 업 무

○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국가재보험사업 관리

- 사업관리·감독 및 약정 체결 관련 업무

○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 사업 추진체계

행 정 기 관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농협손보, KB 등)
• 정책보험사업 정책수립 • 사업시행지침 마련 • 정책보험사업 자금배정	• 정책보험 및 재보험사업 약정 체결 • 보험사업 점검·정산·관리 • 정책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 재해보험 관련 통계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 손해평가인 운용

나 주 요 성 과

1 사 업 실 적 ('18.11월 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18년 가입률 목표 : 31.5%)

○ 가입면적 365,807ha, 가입농가 262,236호, 가입률 31.9%

< 주요 품목 가입현황 >

구 분	가입률(%)	가입농가(호)	가입면적(ha)	비고 ('17년 가입면적)
과수 4종	46.2	30,566	28,197	27,046
벼	37.3	137,614	277,731	262,730
원예시설	24.1	29,418	14,008	8,674

❑ 가축재해보험 ('18년 가입률 목표 : 93%)

○ 가입두수 272,504천두, 가입농가 19,387호, 가입률 92.3%

< 주요 축종 가입현황 >

구 분	가입률(%)	가입농가(호)	가입두수(천두)	비고 ('17년 가입두수)
소	10.2	8,513	353	311
돼지	94.3	4,364	10,763	10,396
가금	94.2	4,173	261,286	257,638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8년 가입률 목표 : 농업인 58%, 농기계 7.5%)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인원수 800천명, 가입률 62.8%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농기계수 91천대, 가입률 7.8%

< 사업별 가입현황 >

구 분	가입률(%)	가입수(명, 대)	비고 ('17년 가입수)
농업인안전	62.8	800,409	709,777
농기계종합	7.8	91,255	79,454

2 보험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

< 농작물재해보험 >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품목 확대 : ('17) 53개 → ('18) 57 (4개↑)**

○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의 4개 품목 신규 도입 및 복숭아, 시설작물(무·백합·카네이션) 본사업 전환

○ '19년 5개 품목 추가 확정('18.11) :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 **병충해, 냉해·폭염, 품질피해 보장 추가 등 보험의 보장성 강화**

○ (과수) 복숭아 세균구멍병 보장, 참다래 비가림시설 특약 도입, 감귤의 등급 외 심도피해율 인정기준 확대

○ (식량작물) 벼 병해충 2종(먹노린재, 깨씨무늬병) 추가, 평년수확량 산정방법 개선을 통한 보장금액 확대

○ (밭작물) 고추 병충해 추가, 인삼 냉해·폭염피해, 고구마・감자・마늘・양파 품질피해 보장 등

❏ **요율상한제 도입으로 시·군간 요율격차 완화 및 농가부담 경감**

○ 시・군간 요율 격차가 컸던 사과, 배, 벼 품목 30개 시・군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순보험료율 0.9%~54.2% 감소

< 가축재해보험 >

❏ **신상품 도입 및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 꿀벌 법정전염병(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으로 인한 폐사 보장 신설

○ 축산농가 지진 불안 해소를 위한 지진 피해 보장 신설

○ 축사 시설 내 LPG 가스 보온설비 폭발사고 위험담보 신설

❑ **사육환경 개선 및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보험료 할인**

○ '제주마' 보험료율 50% 인하로 사육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

○ 축사 화재예방 및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전기설비 우수등급(A,B 등급) 축사에 대한 보험료 할인(5~10%)제도 도입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보험료 5% 할인 및 폐사 가축 랜더링 처리 비용 지원(보험금의 10% 한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 신상품 도입 및 보장범위 확대**

○ (농업인안전) 산재보험 보장수준으로 향상한 신상품 도입(산재1·2형)

○ (농기계) 농업인의 배상책임 및 신체 상해 필수 보장을 위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만 국고지원

- 농기계 사고 법률비용(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합의금)보장 특약 신설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산출방식 개선으로 농가부담 경감**

○ 보험료 산출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17년 대비 약 10% 인하

3 보험사업의 관리 · 감독

❑ **정책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의 상품개선안 및 보험료율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도입**

○ (농작물) 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사업실적에 따른 요율조정 효과, 추가 사업지역 요율 산출의 적정성 등 검증, 승인

- 20개 보험 상품 사전 검토 및 밀·인삼 등 일부 품목의 보험료율 재 산출 지시

○ (가축) 돼지 보험가액 산정방식 변경 및 전기안전점검 축사 보험료 할인

- 돼지 보험가액 산정시 '박피' 평균지육 단가를 '탕박' 평균지육 단가로 변경

- 돼지 축사 전기안전 점검 시 보험료 할인율 신설

❑ **보험사업자 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운영비 예산 절감**

○ 보험사업자의 과다이익 방지를 위해 사업자수수료 산출기준 변경

○ 벼 동일 계약자의 농지는 단일 증권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모집수수료 절감(전년 대비 약 22억원(14.2%) 수수료 감소 효과)

❑ **공공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점검 실시**

(보험사업자 14회, 지역대리점 50회 등 총 64회 점검)

○ (농작물) 보험사업자의 예산 집행, 보험인수 및 보험금 지급, 손해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점검·지도 강화

○ (가축) 위험관리 신호체계에 따라 '경계·심각'에 해당하는 지역대리점 및 재해보험사업자 보험인수 및 지급내역 등 점검

○ (농업인) 보험사업자, 지역농협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점검

❑ **농업정책보험의 인지도 제고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 (농작물) 벼 가입촉진전략회의(8개 시·도) 및 라디오 광고 10회 실시, 농작물재해보험 책자(300부) 및 홍보물품(팔토시 1만개) 제작·배포 등

○ (가축) 가축재해보험 특약 홍보 및 축산농가 사고 예방 교육 실시

- 신규 도입된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지진 특약 제도 홍보

- 여름철 폭염 및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전북·전남 43개 축사현장)

○ (농업인) 가입 저조 지역 독려 및 의견 수렴(24회),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8회), 신문·라디오 광고* 및 농기계박람회 부스 홍보 등

* '만화로 보는 농업인안전보험' 신문 광고(3회), 농업인안전보험 라디오 광고(12회)

❑ **농업재해보험의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한 교육 강화**

○ 손해평가사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이론)교육 및 품목별 수시(현장)교육 실시

- 품목별(양파, 마늘, 벼, 과수 등)·지역별(주산지) 맞춤형 교육시행

○ 거대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개최('18.7.26, 경북 문경)

❑ **손해평가사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역량 강화**

○ 업무범위 확대, 수당체계 개선 및 물량 배정 기준 등 손해평가사 제도개선을 위한 손해평가협의회 개최(5회)

○ 농작물 손해평가사 업무 영역을 소(牛) 축종으로 확대(4.1~)

❑ **정책보험통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수집대상) 농식품부, 통계청, 기상청, 보험사업자 등 18개 기관의 보험·생산·가격·기상·재해피해 통계

○ (서비스) OLAP*을 이용한 사용자 정의 데이터 추출, 정책보험 실적 현황(연감, 사업추진 실적보고, 월보 등), 지도서비스 등

*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 사용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직접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

❑ **정책보험 데이터 이력관리를 위한 수집 DB 개선 및 정책보험 통계 제공 시기 단축(분기·연→월 단위)**

○ 보험계약·변경·지급 이력 및 담보특약별 정보 통계 신규 반영 등

○ 월간 「농업정책보험 사업추진 실적 보고」 생산·제공('18.3~)

* 월간 사업추진현황, 가입・지급현황, 전년대비 가입 증감 분석 등

❑ **농업재해보험연감, 계간지, 기본자료집 등 정기간행물 발간**

○ '18.1월 농재협 통계업무를 인수, 계간지 4회, 연감・기본자료집 1회 발간

참고 4 농업정책보험 가입실적 (2018년 11월말 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전체 및 주요작물)

구분		'17년말(A)	'18년 11월말(B)	B/A, ( )는 증감율
전체	가입률(%)	30.1	31.9	(1.8%p)
	가입면적(ha)	321,331	365,807	113.8%
	가입농가(호)	195,804	262,236	133.9%
과수4종 (특정)	가입률(%)	43.5	46.2	(2.7%p)
	가입면적(ha)	27,046	28,197	104.3%
	가입농가(호)	29,247	30,566	104.5%
벼	가입률(%)	37.1	37.3	(0.2%p)
	가입면적(ha)	262,730	277,731	105.7%
	가입농가(호)	117,418	137,614	117.2%
원예시설	가입률(%)	14.4	24.1	(9.7%p)
	가입면적(ha)	8,674	14,008	161.5%
	가입농가(호)	18,874	29,418	155.9%

❑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구분		'17년말(A)	'18년 11월말(B)	B/A, ( )는 증감율
전체	가입률(%)	92.9	90.7	(△2.2%p)
	가입두수(천두)	268,381	272,504	101.5%
	가입농가(호)	16,432	19,387	118.0%
소	가입률(%)	9.8	10.2	(0.4%p)
	가입두수(천두)	311	353	113.5%
	가입농가(호)	7,174	8,531	118.9%
돼지	가입률(%)	96.4	94.3	(△2.1%p)
	가입두수(천두)	10,396	10,763	103.5%
	가입농가(호)	4,331	4,364	100.8%
가금류	가입률(%)	94.6	94.2	(△0.4%p)
	가입두수(천두)	257,638	261,286	101.4%
	가입농가(호)	4,098	4,173	101.8%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현황

구분		'17년말(A)	'18년 11월말(B)	B/A, ( )는 증감율
농업인	가입률(%)	54.3	62.8	(8.5%p)
	가입인원(명)	709,777	800,409	112.8%
농기계	가입률(%)	6.8	7.8	(1.0%p)
	가입대수(대)	79,454	91,255	114.9%

9. 농기계임대(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기계임대	28,500	30,900	43,500	12,600	40.8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1000 - 1067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기자재정책팀장(김수일), 사무관(최승묵, ☏044-201-18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임대사업소 지원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 콩, 마늘 등 주산지에 경운·정지, 파종·정식, 방제, 수확 작업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 구입 지원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체하거나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 ◦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 ◦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평가 및 임대사업소별 활성화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기간	◦ '03～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18년까지 기투자액 : 2,456억원)
사업규모	◦ 임대사업소 24개소, 주산지일관기계화 220개소, 여성친화형농기계 60개소, 노후농기계 대체 50개소 ◦ 임대사업평가 및 컨설팅 : 전국 140개 시군 443개 임대사업소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임대사업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노후농기계 대체 ◦ 민간 경상보조(정액지원) -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 임대사업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노후농기계 대체 ◦ 민간 전문기관 -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기계임대사업소** :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비 12,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0백만원 × 지자체보조 50% × 24개소

○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 밭작물기계화 촉진대책 이행 및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소요를 감안한 사업비 22,000백만원

▪ 산출내역 : 200백만원 × 지자체보조 50% × 220개소

* 사업확대 : ('18년) 50개소 x 200백만원/개소 → ('19년) 220개소 x 200백만원/개소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백만원 × 지자체보조 50% × 60개소

○ **노후농기계 대체**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 5,000백만원

▪ 산출내역 : 200백만원 × 지자체보조 50% × 50개소

○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 임대사업소 운영평가 및 컨설팅 비용 1,500백만원

▪ 산출내역 : 1,500백만원

- 평가 및 컨설팅 : 3.35백만원/개소 × 443개소 = 1,484백만원(정액)
- 조달입찰수수료 등 = 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기계임대		
▪ 농기계임대사업소	16,000 - 32개소x1,000백만원/개소×50%	12,000 - 24개소x1,000백만원/개소×50%
▪ 주산지일관기계화	5,000 - 50개소x200백만원/개소×50%	22,000 - 220개소x200백만원/개소×50%
▪ 국제농기계박람회 지원	400 * 국제농기계박람회 개최 지원	- * 격년시행으로 미요구

□ 지원 필요성

○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작물 기계화 추진을 위해 지원필요

* 농기계 이용일수 : 개인구입 농가 2.3일/년, 임대사업소 12.5일/년('17년기준, 농촌경제연구원)

* 밭농업 기계화율 : ('17년) 58.3 → ('22년) 75.0%

○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추세

- 10년 후에는 농기계 없이는 적기 농작업 지장초래 전망(농촌진흥청,2015)

* 고령화율(65세 이상) : ('00)21.7% → ('10)31.8 → ('15)38.4 → ('16)40.3 → ('30p)51.3 (KREI)

* 농가인구 : ('00)403만명 → ('10)306 → ('15)257 → ('16)250 → ('30p)180(KREI)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28,500	30,900	43,500	12,600	40.8
▪ 농기계임대사업소 (산출근거)	21,000 (42개×1,000백만×50%)	16,000 (32개×1,000백만×50%)	12,000 (24개×1,000백만×50%)	△4,000	△25.0
▪ 주산지일관기계화 (산출근거)	2,000 (20개×200백만×50%)	5,000 (50개×200백만×50%)	22,000 (220개×200백만×50%)	17,000	340.0
▪ 여성친화형농기계 (산출근거)	3,000 (120개×50백만×50%)	3,000 (60개×100백만×50%)	3,000 (60개×100백만×50%)	-	-
▪ 노후농기계대체 (산출근거)	1,000 (10개×200백만×50%)	5,000 (50개×200백만×50%)	5,000 (50개×200백만×50%)	-	-
▪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산출근거)	1,500 (정액)	1,500 (410개×3.6백만, 정액보조)	1,500 (443개×3.35백만, 정액보조, 조달수수료 16백만)	-	-
▪ 국제농기계박람회 (산출근거)	- (격년시행)	400 (박람회 홍보 및 수출지원, 정액보조)	- (격년시행)	△400	순감
□ 비목(합계)	28,500	30,900	43,500	12,600	40.8
○ 일반연구비(260-01)	1,500	1,500	1,5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	400	-	△400	순감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7,000	29,000	42,000	13,000	44.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8조(농어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1년 : 국정감사시 농기계임대사업 필요성 제기

  · 농기계 구입이 농가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 필요

- '03년 :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5개소)

- '04년 12월 :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장관결재)

  · 국고 보조율 상향 : ('04) 30% → ('05) 50%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로「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선정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New Start 2008 프로젝트」과제로 밭농사용 임대사업 확대 추진계획 발표('08.3.25) : 밭농사용 임대사업을 '12년까지 350개소로 확대

- '09년 4월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지원근거 마련

- ’10년 5월 :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장관결재)

  · 시군 수요를 반영, ’12년까지 350개소 설치 계획을 ’15년까지로 연장

- ’11년 10월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장관결재)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선정

  · ’15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400개소 지원 계획

- ‘14년 12월 한중FTA피해 대책으로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 ’25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820개소 확대

- ‘15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 차등지원 적용(’16년 사업)

  · 운영실적, 인력확보, 수수료 등을 종합평가하여 A(우수), B(보통), C(미흡)으로 평가하고 우수는 사업대상자로 우선선정하고 미흡사업소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시도에서 현장지도 감독 강화

- 설치 후 6년 이상 경과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지원 지속요구(지자체, ~’15)

  · 임대농기계는 다수가 사용하고 일반농기계에 비해 사용시간이 2~5배 많아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내용연수가 짧아져 교체수요 빈번하게 발생

- 국제농기계박람회 1992년부터 격년제로 개최(‘16년까지 13회), ’10년 천안시에서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박람회(KIEMSTA)로 개최,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 육성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92년부터 격년제로 정부 주도의 국제농기계박람회를 개최

- ‘17년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밭작물 기계화 촉진 대책” 마련하여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중점 추진(장관결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4	’15	’16	’17	’18	’19
○농기계임대	200	220	264	285	309	4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국비 이월사유

- 이월액 발생사유 : ‘18.2월 용역 완료에 따른 ’18년 정산(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 보조사업 시행주체 이월·불용사유

- 불용액 발생사유 : 입찰잔액(보관창고 건립 및 임대농기계 구입)
- 이월액 발생사유 : 임대사업소 부지도성 지연에 따른 보관창고 건축 지연 및 임대농기계 구입지연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20** **(220)**	- (46)	- (-)	220 (266)	**220** **(193)**	- (72)	- (1)
’16년	**264** **(264)**	- (72)	- (-)	264 (336)	**264** **(254)**	- (78)	- (4)
’17년	**285** **(285)**	- (78)	- (-)	285 (363)	**278** **(243)**	7 (108)	- (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 통(85.0)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전문 운전인력 확보
- 농기계임대제도는 소농·가족농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므로 앞으로 면단위, 단위조합까지로 확산
-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적

○ 감사원 지적 : 해당 없음

○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농기계 전문가 등을 확보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병역특례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

- 노동력 부족에 대응,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

  * ('16) 379개소 → ('18) 469→ ('21) 560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의무화와 임대할 수 없는 농기계를 처분하도록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리스·렌탈사업, 농기계은행, 영농대행 등)

(5) 사업추진절차

○ 농기계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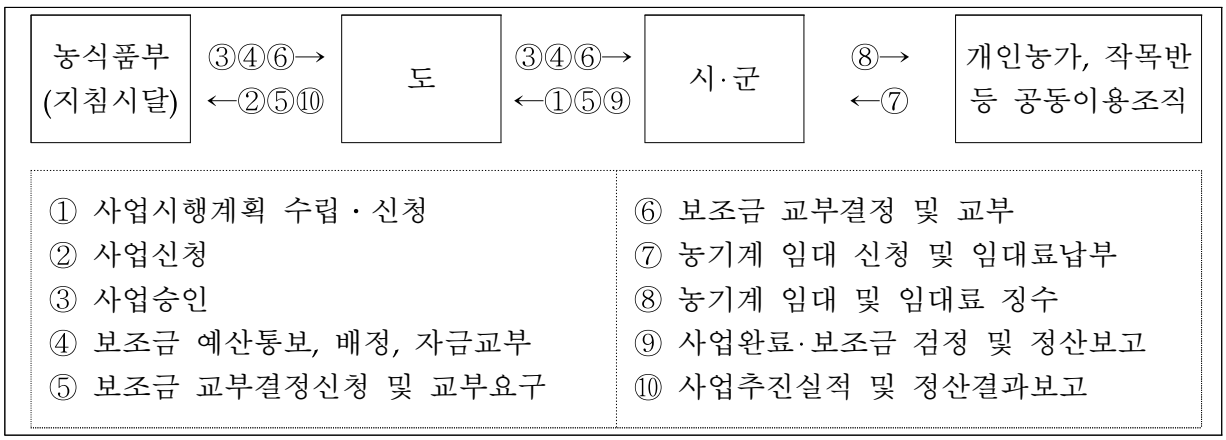

참고 1	밭작물기계화 촉진대책(안)

1. 추진배경 및 경과

❑ 농촌인구감소·노령화 대비, 쌀 수급대책과 연계한 현실성 있는 “밭농업기계화 대책 마련” 지시(장관님, 9.11.)

❑ 농식품부, 농진청, 농기계조합 등이 참여, “밭농업기계화 대책 T/F” 구성·운영(9.15 ~)

○ T/F 회의 개최(4회), 현장·업계 의견수렴 통해 대책(안) 마련

2. 추진 목표 및 전략

목표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17) 58.3% → (‘22) 75.0

- ▸ 파종·정식 (‘17) 8.9% → (‘22) 44.1
- ▸ 수확 (‘17) 23.9% → (‘22) 44.2

추진 전략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파종·정식(8.9%), 수확(23.9%) 중심 추진

▸재배면적이 넓고 주산지로 지정된 주요작물(10개) 중심 추진

* 논 타작물 전환면적이 큰 작물 중심 선정

▸임대사업 주산지 기계화 지원 확대 : (‘17) 40개 작목반 → (‘22) 1,478(누계)

주요 과제

1. 보급과 연계한 개발	■ 파종·정식기 성능개선 후 즉시 보급(‘18) ■ 수확기 성능개선 지속 추진 ■ 표준재배양식 개발(‘18)
2. 주산지 중심 보급	■ 품목별 주산지 대상 집중 보급 ■ 신기술지정농업기계 우선 보급 ■ 보급업체의 교육 및 사후봉사 의무화
3. 농작업대행 활성화	■ 주산지는 1년 이상 장기 임대 도입 ■ 장기임대차 통한 주산지 주변 농작업 대행 ■ 임대사업소 통한 고령농·여성 농작업 대행

◈ 소요재원 : ‘18~’22년 동안 총 3,967억원(주산지 중심 보급)

○ **파종·정식 2,942, 수확 991**

○ 경운·정지 5.8, 비닐피복 21.1, 방제 7.1

3. 세부 추진계획

◈ 업체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정부는 R&D자금 지원 및 농기계보급

1 농기계 개발

❑ **(성능개선)** 현재 개발·보급되고 있지만 작업성능이 떨어져 보급이 저조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성능 개선**

○ 성능 개선이 완료되면 **'18년**부터 주요작물 **주산지부터** 중점 **보급**

❑ **(다기능 농기계 개발)** 현재 수확기는 굴취만 가능*하나, **굴취 후 수집**까지 할 수 있는 **수집형 수확기** 개발

* 현재 보급되고 있는 수확기는 굴취만 하고, 수집은 인력으로 작업

- 주요작물 기계화율 및 중점 추진분야 -

작물	'16년기준, 기계화율(%)					중점 추진 분야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성능개선·보급('18)	다기능 기계 개발('21)
고추	99.5	0	44.6	86.3	0	정식기 성능개선	일시수확형 수확기
마늘	99.8	15.1	45.6	94.1	31.0	파종기, 수확기 개발 완료, **보급에 중점**	수집형 수확기
양파	99.7	8.8	72.8	98.3	21.3	정식기 성능개선, 굴취식수확기 보급	수집형 수확기
배추	99.7	1.0	81.6	93.9	0	정식기 성능개선	수집형 수확기
무	100.0	0	93.2	98.8	8.9	파종기, 굴취식 수확기 성능개선	수집형 수확기
감자	99.8	5.8	77.2	88.9	65.2	파종기 성능개선, 굴취식 수확기 보급	수집형 수확기
고구마	99.7	0	67.8	81.6	51.6	정식기 성능개선, 굴취식수확기 보급	수집형 수확기
콩	99.9	22.8	65.8	93.7	28.6	파종기 성능개선	정식기
인삼	99.0	5.0	0	90.0	60.0	육묘파종기·정식기 성능개선, 굴취식수확기 보급	승용 자동정식기, 수집형 수확기
참깨	99.7	5.0	75.0	85.0	5.0	파종기, 예취기 성능개선	예취+결속기
평균	**99.7**	**6.4**	**62.4**	**91.1**	**27.2**		

* 쌀수급대책과 연계한 작목 중 **사료작물**은 **기계개발이 완료**되어 주요작목에서 **제외**

❑ **(기계화 인프라 연구** : 농진청) 농기계 보급을 위한 **표준재배양식 개발('18), 기계화 적합 품종**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병행(장기)

2 농기계 보급

❑ **(보 급) 파종·정식기와 수확기** 중심으로 **주산지** 대상 집중 보급

○ **(보급체계)** 성능개선하거나 신규 개발한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정부가 구입***하여 주산지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17 40개소 → '22 1,478**)에 장기임대로 보급

* **판매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민간**도 농기계 개발 및 생산에 **적극 참여** 예상

** **대당 농기계 농작업 능력, 연도별 보급대수, 작목별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소요예산)** '22년까지 3,967억원 소요(**파종·정식 2,942, 수확 991**, 비닐피복 등 34)

- '18년은 농기계임대사업비 중 **42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

* 신규임대사업소 지원 160,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100,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 100,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60 중 **파종·정식 및 수확용기계 구입에 194억 투입**

작물	파종·정 식						수 확					
	기계화율('22)	연도별 보급대수					기계화율('22)	연도별 보급 대수				
		계	'18	'19	'20	'21~'22		계	'18	'19	'20	'21~'22
고추	45.0%	6,316	180	1,534	1,534	3,068	0%	-	-	-	-	-
마늘	45.0%	2,793	200	648	648	1,297	50.0%	1,164	20	285	285	574
양파	45.0%	3,357	150	801	802	1,604	55.0%	1,274	30	311	311	622
배추	45.0%	2,827	150	669	669	1,339	0%	-	-	-	-	-
무	45.0%	981	100	200	220	461	15.0%	1,082	20	265	265	532
감자	40.0%	1,187	110	269	269	539	72.0%	487	30	114	114	229
고구마	45.0%	939	80	200	210	449	62.0%	606	20	140	146	300
콩	45.0%	815	100	170	180	365	60.0%	3,272	95	780	790	1,607
인삼	40.5%	2,452	150	570	570	1,162	70.5%	1,678	20	350	390	918
참깨	45.0%	1,161	100	200	265	596	57.0%	2,559	100	550	600	1,309
계	44.1% (억원)	**2,828 (2,942)**	**1,320 (159)**	**5,261 (680)**	**5,367 (695)**	**10,880 (1,408)**	**44.2% (억원)**	**12,122 (991)**	**335 (35)**	**2,795 (223)**	**2,901 (235)**	**6,091 (498)**

* **고추**와 **배추수확**은 **기계화 요구도가 성숙**될 때까지는 **인력알선**을 통해 농작업 수행 불가피

❑ **(교육 및 사후봉사)** 농기계 보급업체를 통한 **주산지** 농업인에 대한 **현장 교육, 연시, 사후봉사** 강화로 이용률 제고

○ 제조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급대수를 확보해주는 대신 표준재배양식, 농기계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 의무화

3 농작업 대행

❏ **(장기임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방식을 개선, **주산지의 공동이용조직에** 공급 농기계를 **장기임대**하여 일정 면적 이상을 **농작업 대행**토록 **의무화**

○ **(현재)** 경운·정지기, 방제기 위주(0.2%)

→ **(개선)** 파종·정식기, 수확기 위주(20%)

❏ **(농작업 대행)**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대행체계 구축

○ **(장기임대자) 주산지** 작목반 **농가는** 물론 **주변 농가**의 농작업까지 대행

○ **(임대사업소) 고령농, 여성**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가 대상 농작업 대행

* 지자체가 임대수수료를 농작업대행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시 농작업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신규임대사업소 사업비 차등지원 및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등 지원

4. 향후 계획

❏ "밭농업기계화 촉진 대책(안)"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반영 추진

* '19년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참고 2 작물별 목표 기계화율 및 소요예산(추정)

작물	기계화율(%)		소요예산(백만 원)					
	'17	'22	계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고추	46.1	66.9	82,756	120	82,108	494	34	0
마늘	57.1	76.6	19,047	16	11,172	470	56	7,333
양파	60.2	77.9	83,317	46	77,211	238	13	5,809
배추	55.2	66.5	47,916	46	47,706	97	67	0
무	60.2	70.8	8,978	0	3,924	171	14	4,869
감자	67.4	80.4	15,903	34	14,244	378	29	1,218
고구마	60.1	79.3	19,779	53	17,841	265	105	1,515
콩	62.2	78.2	26,692	73	8,965	0	149	17,505
인삼	63.5	76.8	19,128	152	11,279	0	45	7,652
참깨	53.9	76.8	73,179	42	19,737	0	173	53,227
계	**58.6**	**75.0**	**396,695**	**582**	**294,187**	**2,113**	**685**	**99,128**

참고3 농업 기계화율 현황

❑ 논농업 기계화율

연 도	평균	경운·정지	이 앙	방 제	수 확	건 조
2000	87.2	98.5	98.2	98.9	98.4	42.1
2005	89.9	99.1	98.4	99.5	99.4	53.2
2010	91.5	99.0	99.8	99.3	100.0	58.5
2012	94.2	99.9	99.8	99.7	99.9	71.6
2014	97.8	100	99.9	99.0	99.9	90.1
2016	97.9	100	99.9	97.1	100	92.6

❑ 밭농업 기계화율

연 도	**평균**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2000	**45.9**	94.4	-	37.0	90.8	7.3
2005	**47.2**	97.4	2.5	39.6	88.8	7.7
2010	**50.1**	99.7	4.0	43.9	90.7	12.1
2012	**55.7**	99.4	3.9	64.1	96.3	14.6
2014	**56.3**	99.8	5.0	67.6	95.8	13.3
2016	**58.3**	99.9	8.9	66.8	92.0	23.9

❑ 밭농업 작목별 기계화율(2016년)

품목	**평균**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콩	**62.2**	99.9	22.8	65.8	93.7	28.6
감자	**67.4**	99.8	5.8	77.2	88.9	65.2
고구마	**60.1**	99.7	0	67.8	81.6	51.6
무	**60.2**	100	0	93.2	98.8	8.9
배추	**55.3**	99.7	1.0	81.6	94.0	0
마늘	**57.1**	99.8	15.1	45.6	94.1	31.0
양파	**60.2**	99.7	8.8	72.8	98.3	21.3
고추	**46.1**	99.5	0	44.6	86.3	0
소계	**58.3**	99.9	8.9	66.8	92.0	23.9

참고 4 농기계임대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보관창고 + 농기계)를 설치하여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게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1~3일)

○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예산 : 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10억 내외)

○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 사업성과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밭농업 기계화 촉진

- '03년부터 '18년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469개소 지원

* 지원 사업량(누계) : ('10) 195개소 → ('15) 379 → ('16) 410 → ('17) 443 → ('18) 469

○ 연간 사용기간이 짧고 품목별로 기종이 다양해 농가 구입부담이 큰 밭농사용 농기계(콩 탈곡기 등)와 부속작업기 위주로 공급

- 농가에 1~3일간 농기계를 단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임대, 수리, 교육을 병행

○ 농기계 이용률 및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에 크게 기여

* 임대농기계 대당 작업일(일/대) : ('11) 7.5→ ('15) 11.5→('16) 12.0→ ('17) 12.5

* 밭농사 기계화율(%) : ('99) 44 → ('07) 47 → ('10) 50→('13) 56.3→('17) 58.3

< 예산 반영 추이 >

(백만원)

연 도	'15	'16	'17	'18	'18	'19
예산	22,000	26,000	28,500	30,900	43,500	43,500

참고5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 개 요

○ 여성농업인 현황 및 비율

(단위 : 만명, %)

구 분	'00	'10	'12	'13	'14
농업인수	403	306	291	285	275
여성농업인수	206	156	149	146	141
비 율	51.1	50.1	51.2	51.2	51.3

○ 특히 밭농업은 기계화율(56%)이 논농업(98%)에 비해 낮고, 여성의 작업시간이 월등히 많음

구 분	작업시간(시간/년)	
	남	여
논 작 업	477.0	32.4
밭 작 업	403.6	437.2

❑ 지원대상

○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연차적으로 매년 60개소씩 지원(개소당 50백만원 내외)

❑ 기존 농기계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불편사항 사례

○ 여성이 주로 작업하는 파종, 이식, 수확 등의 기계화율이 낮아 여성농업인의 수작업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기계 구입 우선순위가 낮아 임대 가능 농기계가 부족함

* 밭농업 기계화율 : 파종·이식 8.9%, 수확 23.9 (경운·정지 99.9, 피복 66.8, 방제 92.0)

○ 필지별 면적이 적은 밭이나 하우스에서 운전과 조작이 용이한 소규모 농기계 보급이 저조함

참고 6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

❑ 지원 필요성

○ 농기계임대사업은 '17년 기준 140개 시군에서 443개소를 운영

-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56천대 중 19천대(34.4%)가 내용연수 경과 농기계로서 노후 농기계 교체 필요

> ○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 촉진, 노후농기계로 인한 농업인 재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예산 증액 요청 ('16년 국회 상임위, 김현권, 박완주 의원)
>
> ○ 평가를 통한 우수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비용 지원 방안 마련 ('16년 국회 결산 보고서)

❑ 지원방안 및 계획

○ **(방안)**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임대사업소에 노후 농기계 교체예산을 지원

○ 사업비 지원대상 : 임대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임대사업소당 1.5~3억원 차등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자체는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노후 농기계 교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기대효과

○ 임대사업소의 **지속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

참고 7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 평가개요

○ **(목적)**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정책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기계 임대사업 체계구축

○ **(평가대상)** 임대사업소 운영 중인 140개 시·군·구

❑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내용)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적합성 및 성과 평가

-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운용,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침 준수 등

*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자체별 임대사업 운영 성과 평가

- 운영기반의 적합성,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유지 관리의 적합성

❑ (평가방법)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기초자료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분석·평가

○ 평가기관 선정 : 공개경쟁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평가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

○ 평가 : 지자체별 기초자료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임대사업 운영 결과 평가

-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계획서 및 운영자료 분석

- 시·도별 작목별 표준경영비(소득) 자료 분석(투입시간 등)

- 평가기관에서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

참고 8 농기계 임대사업 컨설팅

❑ (목적)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 제시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제고

❑ (대상)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인 140개 시·군·구('17년 기준)

❑ (방법)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및 임대사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 총괄기관을 선정한 후 총괄기관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 총괄기관에서 표준 컨설팅지침(자료)을 작성하여 전문컨설턴트 업체를 교육시키고, 전문컨설턴트 업체는 컨설팅을 담당하는 임대사업소별 SWOT분석 등을 실시하는 등 해당 임대사업소를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 (컨설팅 내용) 정책 목표 이행정도, 사업운영 적절성, 임대사업소별로 평가결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정책 목표 이행정도

- 밭농업기계화 촉진,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추진 적극성
-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서를 구체화하는 기획과 준비 정도 등

○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서를 반영한 사업운영 적절성

- 자체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임대농기계 구입과 임대실적, 임대사업의 운영 프로세서의 적절성, 관련 실적과 운영
-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과 이행 여부

○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컨설팅

- 지자체 특성에 맞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제시

❑ (컨설팅 방법) 평가 결과, 우수 사업소와 미흡 사업소에 대해 사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평가결과 미흡한 임대사업소는 2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

*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평가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추진

10. 쌀소득보전고정직불(의무,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831,509	809,000	802,770	△6,230	△0.8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000 - 1070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이지은, ☏ 044-201-17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쌀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주곡의 생산기반 유지 및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사업기간	'01~계속
사업규모	803천ha
지원조건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 등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한 사업비 802,770백만원

- 지급대상면적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0.8% 감액
- 산출내역 : 803천ha × 평균 지급단가 100만원/ha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쌀소득보전고정직불	**809,000백만원**	**802,770백만원**
▪ 쌀고정직불금	809천ha×100만원/ha×100%	803천ha×100만원/ha×100%

□ 지원 필요성

○ 쌀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주곡의 생산기반 유지 및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쌀소득보전고정직불**	**831,509**	**809,000**	**802,770**	**△6,230**	**△0.8**
▪ 쌀고정직불금 (산출근거)	831,509	809,000 (809천ha×1백만원×100%)	802,770 (803천ha×1백만원×100%)	△6,230	△0.8
□ **비목**(합계)	**831,509**	**809,000**	**802,770**	**△6,230**	**△0.8**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31,509	809,000	802,770	△6,230	△0.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추진경위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01.3)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2.12)
- ('05)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과 변동직불)로 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05.3)
- ('13)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국정과제 추진(~'15)
  * 평균 지급단가 : ('06~'12) 700천원/ha → ('13) 800 → ('14) 900 → ('15)1,000
- ('15) 쌀소득보전법 폐지('14.12.3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5.1.1)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쌀소득보전고정직불	6,984	7,740	8,450	8,240	8,160	8,09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면적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0억원 내역변경

○ ('16, '17) 최근 지급면적 감소율 둔화추세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편성되어 실지급면적이 예산대비 증가하여 타 사업에서 내역변경 *('16) 143억원, ('17) 160억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450 **(8,427)**	6 (-)	△20 (-)	8,436 (8,427)	8,427 **(8,390)**	- (-)	8 (37)
'16년	8,240 **(8,383)**	- (-)	143 (-)	8,383 (8,383)	8,383 **(8,364)**	- (-)	- (19)
'17년	8,160 **(8,315)**	- (-)	160 (-)	8,320 (8,315)	8,315 **(8,293)**	- (-)	5 (2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우수”

(4) 사업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② 직불금 신청·등록	2~4월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9월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신청내용 조사(서면·현지) - 등록증 교부	5월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등록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5~9월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지자체 등)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필수점검)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신규·관외 신청자, 팜맵·경영체정보 불일치,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많은 경우 등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
⑥ 고정직불금 지급	10월	▸**지급대상자·면적·금액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통장계좌입금**(시·군·구→지급대상자)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⑦ 농약잔류·토양 검사	9~11월	▸**농약잔류검사**(농관원)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⑧ 변동직불금 지급	다음연도 2~3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 * 지급대행: 농협경제지주회사(시군 농정지원단)
⑨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직불금 콜센터(1588-6830)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참고 1 연도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현황

* 목표가격 : ('05년～'12년산) 170,083원/80kg, ('13～'17년산) 188,000원

< 고정직불금 >

연산별	면적(천ha)		지급총액(억원, 천명)			지급액 (백만원)	지급단가 (원)	농가당 지급액 (천원)	ha당 단가(천원)
	예산	실적	인원	예산	실적				
'17년산	816	829	804	8,160	8,315	831,509	15,873	1,034	1,000(진흥 1,076, 비진흥 807)
'16년산	824	837	794	8,240	8,383	838,284	15,873	1,056	1,000(진흥 1,076, 비진흥 807)
'15년산	845	844	779	8,450	8,427	842,712	15,873	1,082	1,000(진흥 1,076, 비진흥 807)
'14년산	860	835	740	7,740	7,560	755,957	14,306	1,022	900(진흥 970, 비진흥 728)
'13년산	873	855	770	6,984	6,866	686,614	12,713	892	800(진흥 850, 비진흥 680)
'12년산	883	866	791	6,181	6,101	610,101	11,509	771	700
'11년산	885	875	812	6,195	6,174	617,444	11,495	760	700
'10년산	950	883	837	6,650	6,223	622,269	11,486	743	700
'09년산	1,013	893	865	7,088	6,328	632,805	11,536	732	700
'08년산	1,016	1,013	1,097	7,116	7,118	711,809	11,475	649	700
'07년산	1,012	1,018	1,077	7,171	7,120	712,004	11,475	661	700
'06년산	998	1,024	1,050	6,986	7,184	718,397	11,475	684	700(진흥746, 비진흥597)
'05년산	1,004	1,007	1,033	6,002	6,022	602,208	9,836	585	600(진흥640, 비진흥512)

< 변동직불금 >

연산별	면적(천ha)		지급총액(억원, 천명)			지급액 (백만원)	지급단가 (원)	농가당 지급액 (천원)	ha당 단가(원)
	예산	실적	인원	예산	실적				
'17년산	714	684	675	10,800	5,393	539,331	12,514	799	788,382
'16년산	715	706	685	14,900	14,898	1,489,778	33,499	2,175	2,110,437
'15년산	730	726	685	7,193	7,262	726,220	15,867	1,060	999,621
'14년산	731	729	671	1,641	1,941	194,096	4,226	289	266,238
'13년산	742	735	697	200	-	-	-	-	-
'12년산	786	747	719	252	-	-	-	-	-
'11년산	788	754	740	620	-	-	-	-	-
'10년산	790	789	781	7,993	7,501	750,145	15,588	960	950,868
'09년산	815	809	815	5,951	5,945	594,500	12,028	729	733,708
'08년산	943	920	1,025	676	-	-	-	-	-
'07년산	945	932	1,016	5,330	2,791	279,122	4,907	275	299,327
'06년산	998	951	1,000	9,501	4,370	437,038	7,537	437	459,757
'05년산	945	940	984	9,096	9,007	900,703	15,710	915	958,310

11. 밭농업직불제(의무,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밭농업직불제	184,770	193,738	207,790	14,052	7.3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000 - 1070
* 담 당 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 (김영민, 044-201-177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밭농업 종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한 밭농업 생산기반 유지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밭농업직불금 지급
사업기간	'12~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18년까지 투자액 10,587억원)
사업규모	386천ha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군·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밭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지불금 207,290백만원

- (밭고정) 293,800ha × 550천원 × 국고 100% = 161,590백만원

  * 단가인상 : ('18년) 50만원/ha → ('19) 55

    · 여야정합의('15.11.30.) 및 국정과제: 밭고정불금을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

- (논이모작) 92,400ha × 500천원 × 국고 100% = 46,20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밭농업직불제	**193,738백만원**	**207,790백만원**
▪ 직접지불금	- (밭고정) 293,800ha × 50만원 × 100% - (논이모작) 92,400ha × 50만원 × 100%	- (밭고정) 293,800ha × 55만원 × 100% - (논이모작) 92,400ha × 50만원 × 100%
▪ 이행점검	- (이행점검) 635백만원	- (이행점검) -

□ 지원 필요성

○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여·야 합의('11.10.31.)에 의하여 '12년 밭농업직불제가 도입·시행되었으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5년부터 밭고정직불제 시행에 따른 경비 지원은 의무사항

○ 여·야·정 합의('15.11.30.) 및 국정과제인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82-2번 과제)'에 포함되어 지급단가 단계적으로 인상 계획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밭농업직불제	184,770	193,738	207,790	14,052	7.3
▪ 직접지불금	173,253	193,103 (고정 293,800ha × 50만원 × 100%) (이모작 92,400ha × 50만원 × 100%)	207,790 (고정 293,800ha × 55만원 × 100%) (이모작 92,400ha × 50만원 × 100%)	14,687	7.6
▪ 이행점검	8,357	635 (380명×215천원×8월)	-	순감	순감
□ 비목(합계)	184,770	193,738	207,790	14,052	7.3
○ 일용임금(110-04)	6,186	-	-	-	-
○ 일반수용비(210-01)	552	-	-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9	-	-	-	-
○ 임차료(210-07)	227	-	-	-	-
○ 국내여비(220-01)	655	635	-	순감	순감
○ 민간경상보조(320-01)	214	-	-	-	-
○ 고용부담금(320-09)	620	-	-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76,199	193,103	207,790	14,687	7.6
○ 자산취득비(430-01)	58	-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0조의2(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의 토양보전 등을 위하여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밭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추진경위

- 한미 FTA 관련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여야 합의사항('11.10.31)에 따라 19개 품목 밭작물 대상 밭농업직불제 신규 도입('12)
- 7개 품목(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추가('13)
- 논에서 동계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재배 농가 대상 논이모작 직불금 도입('14)
- 지목무관, 모든 밭작물(휴경포함) 대상 밭고정직불제 도입('07)
- 26개품목직불제와 밭고정직불제를 밭고정직불제로 일원화('16)
- 여야정 합의('15.11.30.) 및 국정과제에 따른 단가인상 추진('17~'20)
  * ('16) 40만원/ha → ('17) 45 → ('18) 50 → ('19) 55 → ('20) 60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밭농업직불제	726	1,347	1,929	2,118	1,906	1,9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도 밭농업직불제 예산대비 신청면적이 저조하여 519억원 불용

○ ‘16년도 밭농업직불제 예산대비 신청면적이 저조하여 225억원 불용

- ‘16년도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급대상 면적이 증가하여 밭농업직불제 사업에서 143억원 내역변경
- ‘16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 지급대상 면적이 증가하여 밭농업직불제 사업에서 24억원 내역변경

○ ‘17년도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급대상 면적이 증가하여 밭농업직불제사업에서 56억원 내역변경

- ‘17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누락자 발생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밭농업직불사업에서 53백만원 내역변경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29** **(1,409)**	- (-)	- (-)	1,929 (1,409)	**1,409** **(1,352)**	(-)	520 (58)
’16년	**2,118** **(1,726)**	- (-)	△167 (-)	1,951 (1,726)	**1,726** **(1,675)**	- (-)	225 (51)
’17년	**1,906** **(1,848)**	- (-)	△57 (-)	1,850 (1,848)	**1,848** **(1,801)**	- (-)	2 (4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해 불용 과다 발생하여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면밀한 수요조사와 사전검토로 적정 예산을 편성(‘15년 결산검토보고서)

○ 밭직불제 지원단가 인상(‘15~’17 상임위·예결위)

○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업무흐름]	[시 기] * ()논이모작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시군구, 농관원)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② 신청·접수	2월~4월 (2월~3월)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동, 농관원) -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추진 -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 ▸**신청서 전산입력**(~4월, 읍면동)
③ 신청자 정보공개	5월~8월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④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5월 (3월)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동) -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심사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및 등록증 발급**(읍면동)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5월~8월 (3월~5월)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여부 이행점검**(농관원)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읍면동→농관원)
⑥ 지급대상자 확정	9월	▸**지급대상자 확정**(시군구)
⑦ 직불금 지급	9월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구)
⑥ 수령자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10월 ~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구 홈페이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사후관리**

참고 1 | **한 · 중 FTA 여 · 야 · 정 합의서**

합 의 서 (안)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타결된 4개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지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 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 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2.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학계·전문기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3.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25만원/ha에서 2016년부터 40만원/ha으로 인상한다.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60만원/ha으로 정한다. 아울러,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밭직불금과 상호연관성이 있고 중복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70만원/(ha·어가)으로 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20년까지 4년 간에 걸쳐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5만원/ha으로 정한다.

4.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6.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7.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실시하며,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9.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10. 한중 FTA 등 기타걸 FTA비준동의안은 11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11. 동시에 첨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5. 11.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재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첨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

12. 경영이양직불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경영이양직불	54,517	49,662	47,179	△2,483	△5.0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000 - 1070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추진안정단장(김원일), 서기관(조민경, ☏ 044-201-177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영이양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등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고령 농업인(65~74세)이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 등에게 경영이양한 경우 직불금을 2~10년간 지급하여 고령농의 소득보전 및 영농규모화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
사업기간	'97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8) 신규 482ha, 분할 16,684 → ('19) 신규 2,000ha, 분할 15,155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47,179백만원(직불금 43,978, 사업운영비 3,201)

- 신규이양 : 3,143백만원, 2,000ha

· (매도) 500ha × 330만원/ha × 필요사업비율 58.2% = 960백만원

· (임대) 1,500ha × 250만원/ha × 필요사업비율 58.2% = 2,183백만원

- 분할지급금 : 40,835백만원, 15,155ha

· '18년 이전 약정 : 36,813백만원

(매도) 1,195ha × 300만원 × 필요사업비율(91.2%) = 3,270백만원

(임대) 12,260ha × 300만원 × 필요사업비율(91.2%) = 33,543백만원

· '18년 약정(예상) : 4,022백만원

(매도) 200ha × 330만원/ha × 필요사업비율 91.2%= 602백만원

(임대) 1,500ha × 250만원/ha × 필요사업비율 91.2% = 3,42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경영이양직불	**49,662**	**47,179**
▪ 직불금	**46,461** - 신규이양 781 (482ha) - 분할지급 45,680 (18,036ha)	**43,978** - 신규이양 3,143 (매도 500ha, 임대 1,500) - 분할지급 40,835 (15,155ha)
▪ 사업운영비	**3,201**	**3,201**

□ 지원 필요성

○ WTO/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등 중심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국고지원 필요

○ 경영이양직불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농업부문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경영이양직불	54,517	49,662	47,179		
▪ 직불금 (산출근거)		46,461 ·신규 : 482ha, 781백만원 (매도 : 182ha×330만원×57.8%=347백만원, 임대 : 300×250만원×57.8%=434백만원) ·분할 : 16,684ha, 45,680백만원 (매도 : 1,537ha × 300만원 × 91.9%= 4,238백만원, 임대 : 15,147ha × 300만원/ha × 필요사업비율 91.2% = 41,442백만원)	43,978 ·신규 : 2,000ha, 3,143백만원 (매도 : 500×330만원×58.2% = 960, 임대 : 1,500ha×250만원×58.2%=2,183) ·분할 : 15,155ha, 40,835백만원 ('18년 이전 13,455ha×300만원×91.2%=33,543, '18년 매도 200ha×330만원/ha×91.2%= 602, '18 임대 1,500ha×250만원×91.2%=3,420)	△2,483	△5.3
▪ 사업운영비 (산출근거)		3,201 ·인건비 2,353, 경비·일반관리비 834, 교육·홍보비 15	3,201 ·인건비 2,353, 경비·일반관리비 834, 교육·홍보비 15		
□ 비목(합계)	54,517	49,662	47,179	△2,483	△5.0
○ 민간경상보조(320-01)	54,517	49,662	47,179	△2,483	△5.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의 조치를 강구하여 함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 추진경위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97.2.1) 및 시행규칙 제정('97.2.25)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 한·칠레 FTA 비준 관련 보조금 대상 연령 한시적 상향조정('04.2.23)
  · 70~72세도 지급 대상에 포함('06년까지)
-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직불제도 확대·개편('09.1)
  · 신청연령 : 63세~69세 → 65~70세
  · 지급단가 : 매도 289.6만원/ha, 임대 297.7 → 매도 임대 300만원/ha
  · 지급기간 : 2~8년 → 2~10년
- 경영이양 신청연령 및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15.4)
  · 양수대상자 :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50세 이하 일반농업인 포함
  · 신청연령 : 65세~70세 → 65~74세
- 매도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 매도·임대 단가 차등 적용('18.1)
  · 매도 임대 300만원/ha →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경영이양직불	624	617	590	573	545	4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90 (590)	- (-)	- (-)	590 (590)	590 (590)	- (-)	- (-)
'16년	573 (573)	( )	( )	573 (573)	573 (573)	- (-)	- (-)
'17년	545 (545)	- (-)	- (-)	545 (545)	545 (538)	- (-)	- (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 경영이양직불제 약정종료자의 영농복귀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 마련 필요(‘15회계연도결산 상임위, ’16년 국정감사)

○ 성과목표 현실화 및 제도개선 필요(‘16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 및 임대인 보조금 지원

<농지중간관리기구>

- 도입 배경 : 최근 휴경지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휴경지 및 휴경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해 이용권을 설정하여 경작 포기 방지와 농지집약 가속화로 경작률과 생산성 향상 도모
  * 「농지중간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 내용
  · 지역 내 분산된 농지이용을 정리하여 후계자별로 규모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휴경·방치 중인 농지 등에 대해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임차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필요한 경우, 기반을 정비하여 후계자가 규모화 된 형태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농지중간관리기구에 농지를 임대한 자에 대한 지원>

- 지역에 대한 지원 : 140억엔
  · 지역 내의 농지 중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임대한 농지의 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조금 지급
  · 교부단가 :「지역」내의 전체 농지면적 중 농지관리기구에 임대한 농지의 비율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하여 지급
    * 20% 초과 50% 이하 : 2만엔/10a, 50% 초과 80% 이하 : 2.8만엔/10a, 80% 초과 : 3.6만엔/10a
- 개별임대자에 대한 지원 : 65억엔
  · (교부대상) 농지중간관리기구에 농지를 임대하고, ①경영 전환하는 농업인 ② 은퇴하는 농업인 ③ 농지를 임대하는 상속인
  · (교부요건) 전체 농지를 10년 이상 중간관리기구에 임대하고, 동시에 당해 농지가 중간관리기구로부터 임차인에게 임대 될 것
  · (교부단가) 0.5ha이하: 30만엔/호, 0.5ha초과 2.0ha 이하: 50만엔/호, 2.0ha 초과: 70만엔/호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시행지침 시달	1월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에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제출 사업시행계획 승인	1월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 시행계획 승인 후 홍보 실시
⇩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	연중	고령농업인	·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은퇴농업인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경영이양 약정체결	연중	한국농어촌공사/ 고령농업인	·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류(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구비서류 내용 일치 여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지급요건 적합 여부, 개인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여부) 및 현지조사(신청인의 자격조사, 지급대상 농지조사, 농지 양수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여 60일 이내 지급대상자 선정 ·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서에 따라 지급약정 체결
⇩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매월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국고보조금 교부	매월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에 국고보조금 교부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연중	한국농어촌공사	· 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15일에 지급약정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자 사후관리	연중	한국농어촌공사	· 지급 받은 자의 사망 여부 · 경영이양한 농지를 자경하는지 여부 · 경작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임대(임대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 ·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여부 · 경영이양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 여부 등

13. 조건불리지역직불(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조건불리지역직불	43,086	50,560	54,647	4,087	8.1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000 - 1070
* 담 당 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 (김영민, 044-201-177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 내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사업기간	'04~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18년까지 투자액 5,641억원)
사업규모	106천ha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 80%(국고 80%, 지방비 2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54,647백만원

- (농지) 103,350ha × 650천원 × 80% = 53,742백만원

- (초지) 2,828ha × 400천원 × 80% = 905백만원

* 단가 인상: ('18년) 농지 600천원/ha, 초지 350천원 → ('19) 650, 400

· 여야정 합의('15.11.30.) 및 국정과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조건불리지역직불	**50,560**	**54,647백만원**
▪ 직접지불금	- (농지) 103,350ha × 60만원 × 80% - (초지) 2,828ha × 35만원 × 80%	- (농지) 103,350ha × 65만원 × 80% - (초지) 2,828ha × 40만원 × 80%
▪ 이행점검	- (이행점검) 160백만원	- (이행점검) -

□ 지원 필요성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밭농업직불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격차 및 정주여건 불리성 등을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조건불리지역직불	43,086	50,560	54,647	4,087	8.1
▪ 직접지불금	42,183	50,400 (농지 103,350ha×600천원×80%) (초지 2,828ha×350천원×80%)	54,647 (농지 103,350ha×650천원×80%) (초지 2,828ha×400천원×80%)	4,247	8.4
▪ 이행점검	786	160 (98명×205천원×8개월)	(0개×0백만×00%)	순감	순감
▪ 조건불리지역 DB 관리	102	-	-	-	-
▪ 교육 및 홍보	15	-	-	-	-
□ 비목(합계)	43,086	50,560	54,647	4,087	8.1
○ 일용임금(110-04)	568	-	-	-	-
○ 일반수용비(210-01)	15	-	-	-	-
○ 국내여비(220-01)	165	160	-	순감	순감
○ 민간경상보조(320-01)	102	-	-	-	-
○ 고용부담금(320-09)	53	-	-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2,183	50,400	54,647	4,247	8.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소득보

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추진경위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 기본방향 수립(‘01)
- 경지경사도 조사 실시(‘02~’05)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관련 연구용역 실시(‘03.4~’04.1)
- 399개 오지면 대상 시범사업 실시(‘04~’05)
- 본사업 시작 : 구분지표 충족 육지 읍·면,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06~)
- 지원확대 : 구분지표 충족 육지 읍·면, 모든 도서의 읍·면, 제주 포함(‘07~)
- 제2기(‘12~’1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 재선정(‘12~)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규칙 개정(‘15.4)
  · 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 설정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3기(‘17~’2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 재선정(‘16~)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규칙 개정(‘18)
  * 마을공동기금 적립 자율화
- 여·야·정 합의(‘15.11.) 및 국정과제,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에 따른 지급단가 인상 추진(’18)
  * (‘16) 농지 500천원/ha, 초지 250 → (‘17) 550, 300 → (‘18) 600, 350 → (‘19) 650, 400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조건불리지역직불	395	395	395	395	472	50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 지급면적 증가로 타 직불사업에서 34억원 전용(쌀소득보전고정직불 20억원, 친환경농업직불 14억원)

○ ('16) 지급면적 증가로 타 직불사업에서 24억원 전용(밭고정직불제 24억원)

○ ('17) 타 직불사업 지급면적 증가로 42억원 전용(쌀소득보전고정직불 42억원) 및 누락자 구제를 위해 53백만원 전용(밭농업직불제 53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95 (429)	- (-)	34 (-)	429 (429)	429 (429)	- (-)	0.05 (-)
'16년	395 (419)	- (-)	24 (-)	419 (419)	419 (408)	- (-)	0.15 (1.09)
'17년	472 (431)	- (-)	△41 (-)	431 (431)	431 (425)	- (-)	0.17 (6.2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자율도가 낮은 지방부담 완화 위해 국고 보조율 인상필요('13.7.26, 안행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15~'17년 상임위, 예결위)

○ 밭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인상 시 조건불리지역직불 지원단가 인상 필요 ('15년~'17년 상임위 및 예결위)

○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EU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불제
목표	· 생산비에 대한 자연적 불리성의 영향 보상 · 농촌지역 공동화 방지 및 농촌환경 유지	· 농업생산 유지를 위한 토양침식 및 홍수방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도입 배경	·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소득 감소로 대규모 인구감소현상 발생 · 구조조정이 수용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75년부터 도입	· 중산간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과소화, 농지의 휴경화·황폐화에 따른 대책으로 '00년도부터 도입
대상 지역	· 산악지역 : 고도, 경사도 등 고려 · 일반조건불리지역 : ha당 생산량, 농가소득, 인구밀도 등을 고려 · 특수불리지역 : 수질조건, 공공규제지역 등	· 일반지역: 특정농산촌법 등 8개 지역진흥법에서 지정된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농지 · 특인지역 : 단지화된 1ha이상 급경사지, 초지비율,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조건 및 지원 단가	· 3ha이상 경작자, 향후 5년간 경작조건 · 4.5만원 ~ 35만원/ha	· 5년이상 계속하여 작물재배 및 마을협약 이행 ※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대상마을에 지급 · 논 80~210만원/ha, 밭 35~115만원/ha 등 ※ 평야지와 생산비 격차의 80%

(5) 사업추진절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마을기금 조성여부 결정 및 통보**(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시·군, 농관원)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
② 신청·접수	2월~4월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 농관원) -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추진 -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 ▶**신청서 전산입력**(~4월, 읍·면)
③ 지급대상마을 선정(해당마을만)	4월~5월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4월) ▶**지급대상 마을 선정 및 통보**(5월)
④ 신청자 정보공개	5월~8월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농식품부 및 시·군 홈페이지)
⑥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관리협약 체결	5월~6월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 -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농업종사여부 심사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및 등록증 발급**(읍·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관리협약 체결**(해당 마을만)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5월~8월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시·군)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 ▶**농지관리의무 및 관리협약 이행점검**(농관원, 시·도)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읍·면→농관원)
⑥ 지급대상자 확정	9월	▶**지급대상자 확정**(시·군)
⑦ 직불금 지급	9월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
⑥ 수령자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10월 ~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홈페이지)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참고 1 | **한 · 중 FTA 여 · 야 · 정 합의서**

합 의 서 (안)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타결된 4개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 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민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 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2.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학계·전문기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3.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25만원/ha에서 2016년부터 40만원/ha으로 인상한다.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60만원/ha으로 정한다. 아울러,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밭직불금과 상호연관성이 있고 중복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70만원/(ha·어가)으로 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20년까지 4년 간에 걸쳐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5만원/ha으로 정한다.

4.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6.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7.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실시하며,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9.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10. 한중 FTA 등 기타걸 FTA비준동의안은 11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11. 동시에 첨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5. 11.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재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첨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

농 업 인 력 육 성 및
창 업 지 원

1.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정보화)(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정보화)	961	1,316	1,231	△85	△6.5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1100 - 1110
* 담당자 : 기획조정과장(백운활), 사무관(최윤석), 주무관(오택근, ☏ 063-238-904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후계농어업 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정보자원 활용체계(시스템)를 구축하여 대학의 교육운영 내실 강화

- 업무전산화 확대 등 데이터기반의 교육행정 서비스 환경 강화 및 안정적인 정보자원(187종) 운영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국가 후계농어업 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정보자원 활용체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의 교육운영 내실 강화
사업기간	'98~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9년도 사업예산 1,231백만원
지원조건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대학 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1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지원시스템 운영 : ('18) 1,316 → ('19) 1,231백만원

대학 교육운영의 근간인 학생선발, 학사관리, 교원 채용·평가·연구관리 등에 관한 업무전산화 확대 및 연계·통합을 강화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교육행정 실현과 국가 후계농어업인력 양성과정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미래 교육기반 조성

▪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확대 (102백만원)

* (현황) '06년 구축, '18년 재구축(인프라 교체/응용 397개), '19년 응용 확대 필요(누적 425개, +28)
* (문제) 교육행정 수작업으로 인해 업무처리 및 대내외 요구자료(실적, 평가, 통계 등) 제출 지연 반복
* (개선) 비효율적인 수작업업무(관련데이터)를 온라인화 하여 단절된 업무·데이터 간 연계·통합 강화

< 주요내용 >

· '16 ~ '17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행안부, 재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대학 교육환경의 양적 확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구축 중기('17~'19년) 사업계획 수립('17. 9.)

* 재개발 대상시스템: 통합학사관리 및 교육지원관리

< 대학 교육환경의 주요 확대내역 >

구 분	'17년			'18년			증 감 (C=B-A)	증감률	비 고 ('19년 변동)
	전문학사	전공심화	소계 (A)	전문학사	전공심화	소계 (B)			
입학정원(명)	470	94	**564**	550	110	**660**	+96	17.0	-
재학생수(명)	1,250	94	**1,344**	1,410	110	**1,520**	+176	13.1	1,680
졸업생수(명)	4,431	-	**4,431**	4,733	-	**4,733**	+302	6.8	5,123
전공학과(개)	11	-	**11**	18	-	**18**	+7	63.6	-
전임교원(명)	33	-	**33**	55	-	**55**	+22	66.7	-

· 관련계획에 따라 기존 노후 정보자원 교체, 수작업 등 비효율적 업무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 추진('18년 5월 현재 진행 중)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착수('18. 1.) 및 교육행정 업무전산화 현황 검토회의 개최('18. 2.)

*기존 노후 기반 전면 교체 및 학적, 수강·성적관리 등 전산응용 377개 전환('18. 5.)

※MS제품 종속, .NET프레임워크 기반 → Non-ActiveX,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임교원 업적평가, 재임용·승진 심사, 기숙사 일지관리 온라인화, 장학생·자격증 현황 관리 등 전산응용 20개 확대('18. 8월 중 착수 / 12월 중 완료)

※ '18년 상반기) 전산응용 377개 → '18년 하반기) 397, +20 → '19년 목표) 425, +28

· (‘19년 주요 추진내용) ‘19년도 계획된 연구과제 관리 등 현행 비효율적 수작업 교육행정 처리과정 전산화 확대 및 전공학과 증설(11 → 18, +7), 입학정원 증원 등 학제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응용관리 기능 조정

※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교육행정 실현과 교육운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년도 계획과제 추진 필요

< 목표기반 구성 개념도 >

- 응용 추가 및 통합 구성(③ 구축비(추가), 관리용역비) : (‘18) 208 → (‘19) 102

  * 대학 연구과제 관리 등 현행 비효율적 수작업 교육행정 처리과정 전산화

  * 산출근거

총 기능점수	단계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기능 점수당 단가(원)	단계별 단가(원)	보정계수				개발원가 (원)
					언어	어플리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276.0	분석	0.19	519,203	98,648	-	1.00	0.650	1.025	18,139,808
	설계	0.24		124,609					22,913,674
	구현	0.32		166,145	0.8				24,441,253
	시험	0.25		129,801					19,094,729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84,589,464
이 윤								10%	8,458,946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부가세 별도)									**93,048,410**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부가세 포함)									**102,353,252**

※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2017 개정판 적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시스템 구성자원 교체 확충 기존 임차료 (587백만원)

- 전공심화교육시스템 확대(③ 구축비(추가), 임차료) : (‘18) 101 → (‘19) 101

  * 산출근거

· (‘18) 101 → (‘19안) 101백만원 (1회분 리스료 50,500,000원 × 2회), 변동 없음
· 연도별 리스료(6개월 선불) 상환내역(총 10회 분납)

리스기간(60개월) 2016. 2.25. ~ 2021. 2.24.	상환 스케쥴					
	‘16년 1~2회차	‘17년 3~4회차	‘18년 5~6회차	‘19년 7~8회차	‘20년 9~10회차	합계
금 액(백만원)	101	101	101	101	101	505

- 망 분리·연계시스템 구축(③ 구축비(추가), 임차료) : ('18) 124 → ('19) 124

  * 산출근거

· ('18) 124 → ('19안) 124백만원 (1회분 리스료 61,811,160원 × 2회), 변동 없음
· 연도별 리스료(6개월 선불) 상환내역(총 10회 분납)

리스기간(60개월) 2016.12.30. ~ 2021.12.29.	상환 스케쥴						
	'16년 1회차	'17년 2~3회차	'18년 4~5회차	'19년 6~7회차	'20년 8~9회차	'21년 10회차	합계
금 액(백만원)	164	124	124	124	124	124	**784**

-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구축(③ 구축비(추가), 임차료) : ('18) 254 → ('19) 254

  * 산출근거

· ('18) 254 → ('19안) 254백만원 (1회분 리스료 127,124,000원 × 2회), 변동 없음
· 연도별 리스료(6개월 선불) 상환내역(총 10회 분납)

리스기간(60개월) 2017.12.30. ~ 2022.12.29.	상환 스케쥴						
	'17년 1회차	'18년 2~3회차	'19년 4~5회차	'20년 6~7회차	'21년 8~9회차	'22년 10회차	합계
금 액(백만원)	254	254	254	254	254	127	**1,397**

- 교수·학습관리시스템 확대(③ 구축비(추가), 임차료) : ('18) 54 → ('19) 108

  * 산출근거

· ('18) 54 → ('19안) 108백만원 (1회분 리스료 53,676,000원 × 2회)
  *변동내역: '18년 내역 자연증가(6월 반영 → 12월)
· 연도별 리스료(6개월 선불) 상환내역(총 10회 분납)

리스기간(60개월) 2018.12.30. ~ 2023.12.29.	상환 스케쥴						
	'18년 1회차	'19년 2~3회차	'20년 4~5회차	'21년 6~7회차	'22년 8~9회차	'23년 10회차	합계
금 액(백만원)	54	108	108	108	108	54	**540**

▪ 시스템 구성자원 유지관리(보수) (348백만원)

- 개발 SW(④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 ('18) 81 → ('19) 81

  * 산출근거

· ('18) 81 → ('19안) **81**백만원(도입비 810백만원 × 유지보수 요율 10.0%), 변동 없음

구 분	'18년	'19년	증감
운영규모	2종 810백만원	2종 810백만원	-
평균요율	10.0%	10.0%	-
금 액	81백만원	81백만원	-

- 상용 SW(④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 ('18) 70 → ('19) 70

  * 산출근거

· ('18) 70 → ('19안) **70**백만원(도입비 681백만원 × 유지보수 요율 10.3%), 변동 없음

구 분	'18년	'19년	증감
운영규모	27종 681백만원	27종 681백만원	-
평균요율	10.3%	10.3%	-
금 액	70백만원	70백만원	-

- HW 장비(④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 ('18) 197 → ('19) 197

  * 산출근거

· ('18) 197 → ('19안) **197**백만원(도입비 4,509백만원 × 유지보수 요율 4.36%), 변동 없음

구 분	'18년	'19년	증감
운영규모	118종 4,509백만원	118종 4,509백만원	-
평균요율	4.36%	4.36%	-
금 액	197백만원	197백만원	-

▪ 시스템 운영관련 기타 지원 (194백만원)

- 교육업무용 PC 등 도입(⑥ PC 도입, 임차료) : ('18) 52 → ('19) -

  * '18년 리스 종료

- 학습지원 노후 PC 교체(⑥ PC 도입, 자산취득비) : ('18) 6 → ('19) -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⑦ 회선사용료, 공공요금및제세) : ('18) 76 → ('19) 76

  * 산출근거

· 국가정보통신 업무망 운영: ('18) 32 → ('19안) **32**백만원
(월 이용요금 2,673,330원 × 1회선 × 12월), 변동 없음
·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운영: ('18) 14 → ('19안) **14**백만원
(월 이용요금 1,192,400원 × 1회선 × 12월), 변동 없음
· 교육·학습지원 인터넷 운영: ('18) 26 → ('19안) **26**백만원
(월 이용요금 2,149,400원 × 1회선 × 12월), 변동 없음
· 문자발송·핸드폰인증서비스 운영: ('18) 4 → ('19안) **4**백만원
(월 이용요금 319,000원 × 1회선 × 12월), 변동 없음

- 전산 소모품 운영 등(⑨ 기타 운영지원, 일반수용비) : ('18) 20 → ('19) 32

  * 산출근거

· 학습지원, 장비운영 등 전산소모품 구매: ('18) 5 → ('19안) 9백만원
(8,000원 × 1,100명), 증 4
·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정기 업데이트: ('18) 12 → ('19안) 20백만원
(18,260원 × 1,100명), 증 8
※변동내역: 지원 대상 학생 증가('18년 반영 642명 → '19년 1,100, +458)
· 정보화사업 제안서 조달평가 사례금: ('18) 3 → ('19안) **3**백만원
(200,000원 × 8명 × 2회), 변동 없음

- PC 등 유지보수(⑨ 기타 운영지원, 시설장비유지비) : ('18) 21 → ('19) 21

  * 산출근거

· ('18) 21 → ('19안) **21**백만원(도입비 509백만원 × 유지보수 요율 4.15%)

구 분	'18년	'19년	증감
운영규모	14종 509백만원	14종 509백만원	-
평균요율	4.15%	4.15%	-
금 액	21백만원	21백만원	-

- 업무협의, 교육 등 출장(⑨ 기타 운영지원, 국내여비) : ('18) 2 → ('19) 2

  * 산출근거

· ('18) 2 → ('19안) 2백만원 (1,000,000원 × 2명), 변동 없음

- 공무직(무기계약) 운영(⑨ 기타 운영지원,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 ('18) 50 → ('19) 63

  * 산출근거

· (상용임금) 공무직 2명 연봉, 제수당, 성과급(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 ('18) 40 → ('19안) 52백만원, 증 12

(단위: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증감
전산전문가 1명	**22**	**28**	**6**
- 연봉액	1,631,970원 × 12월 = 19	1,860,400원 × 12월 × 1.03 = 23	4
- 제수당	19,583,640원 × 10% = 2	22,994,544원 × 10% = 2	-
- 성과금	400,000원 × 2회 = 1	400,000원 × 2회 = 1	-
- 정액급식비		130,000원 × 12월 = 2	2
전산사무원 1명	**18**	**24**	**6**
- 연봉액	1,315,080원 × 12월 = 16	1,573,770원 × 12월 × 1.03 = 19	3
- 제수당	15,781,696원 × 10% = 1	19,451,797원 × 10% = 2	1
- 성과금	400,000원 × 2회 = 1	400,000원 × 2회 = 1	-
- 정액급식비		130,000원 × 12월 = 2	2

※변동내역: 처우개선관련 물가 상승률 3% 및 교섭단체 협상결과에 따라 정액급식비 지급 반영

· (복리후생비) ('18) 1 → ('19안) 1백만원 (400,000원 × 2명), 변동 없음

· (고용부담금) 4대 보험 및 퇴직금 ('18) 9 → ('19안) 10백만원, **증 1**

(단위: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증감
전산전문가 1명	**5**	**5**	**-**
- 4대 보험	22,342,000원 × 13.15% = 3	27,653,998원 × 10.36% = 3	-
- 퇴직금	22,342,000원 / 12월 = 2	27,653,998원 / 12월 = 2	-
전산사무원 1명	**4**	**5**	**1**
- 4대 보험	18,159,000원 × 13.15% = 2	23,756,977원 × 10.36% = 3	1
- 퇴직금	18,159,000원 / 12월 = 2	23,756,977원 / 12월 = 2	-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한국농수산대학 정보화교육운영	**1,316백만원**	**1,231백만원**
▪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지원시스템 운영	1,316백만원 ·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확대 (208=417FP×0.499백만원) · 시스템 도입자원 기존 임차료 (585=리스 5건×117백만원) · 시스템 구성자원 유지관리(보수) (369=요율 5.67%×도입비 6,509백만원) ·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76=12월×이용료 6.33백만원) · 학습지원 등 정보화운영 일반 (20=(642명×0.026백만원)+(8명×0.2백만원×2회)) · 업무협의, 교육 등 국내 출장비 (2= 2명×1백만원) · 공무직(무기계약)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고용부담금 (50= 2명×25백만원) · 학습지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6= 6대× 1백만원)	1,231백만원 ·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확대 (102=205FP×0.499백만원) · 시스템 도입자원 기존 임차료 (587=리스 5건×117.4) · 시스템 구성자원 유지관리(보수) (369=요율 5.67%×도입비 6,509백만원) ·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76=12월×이용료 6.33백만원) · 학습지원 등 정보화운영 일반 (32=(1,100명×0.026백만원)+(8명×0.2백만원×2회)) · 업무협의, 교육 등 국내 출장비 (2= 2명×1백만원) · 공무직(무기계약)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고용부담금 (63= 2명×3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대학 교육환경의 양적 확대 등 학제운영 변화와 연계되는 정보화 추가수요 대응에 필요한 소요재원 지원

○ 정보자원 운영규모, 사용자 등의 증가와 연계하여 대학 정보화기반 유지 운영에 관한 추가 수요 대응에 필요한 소요재원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 교육운영	961	1,316	1,231	△85	△6.5
▪ 농수산대학 교육지원시스템 운영 (산출근거)	961	1,316 (시스템 6종×157.8백만원)+ (유지보수 요율 5.67% × 6,509백만원)	1,231 (시스템 6종×143.7백만원)+ (유지보수 요율 5.67% × 6,509백만원)	△85	△6.5
□ 비목(합계)	961	1,316	1,231	△85	△6.5
○ 기타직보수(110-02)	35	40	52	12	30.0
○ 상용임금(110-03)	23	20	32	12	60.0
○ 일반수용비(210-01)	76	76	76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25	585	587	2	0.3
○ 임차료(210-07)	330	369	369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	1	1	-	-
○ 복리후생비(210-12)	157	208	102	△106	51.0
○ 관리용역비(210-15)	2	2	2	-	-
○ 국내여비(220-01)	7	9	10	1	11.1
○ 연금지급금(320-03)	5	6	-	△6	
○ 고용부담금(320-09)	-	7	9	2	28.6
○ 자산취득비(430-01)	5	5	6	1	2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 추진경위

- 1998년 (사업시작) 정보교육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교육운영정보화 기반 구축 운영
- 1999년～2002년 대학 교육환경 변화 대응 교육운영정보화 기반 점진적 확대(고도화)
  * C/S기반으로 학사관리, 학비지원, 장기현장실습관리, 졸업생관리, 입시관리 등 대학 주요 업무시스템 및 DB 분산 운영

  ※ 기술과 서비스방식 발전, 이용불편 증가 대응 종합적 개선 필요성 대두
- 2003년～2006년 정보교육센터 발전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정보화 기반 종합적 개선
  * 정보교육센터 이전, 운영 DB 4종 통합, 운영방식 변경(C/S → Web), 정보통신망 확충 및 정보교육 강의실 3개소 및 멀티미디어실 구축
  * 입시, 학적, 수강·성적, 강의평가 등 전문학사과정 중심의 통합학사관리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개편, e-비즈니스교육, 전자우편 등 지식정보 이용 및 학습지원 기반 구축
- 2007년～2012년 대학 설치법 제·개정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다른 교육운영 정보화 기반 조정 확대
  * 대학 설치법 시행·소속변경에 따른 학사관리, 홈페이지 등 기존 업무·서비스 환경 변경, 정보통신망 구성 전환 및 업무망 정보보호 기반 확충
  *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학습콘텐츠(45교과) 개발, 사이버교육(이러닝)시스템 구축 및 입시, 학적·성적 등 학사관리 개발(전문학사/전공심화 정규 2 과정 통합)
- 2013년～2016년 학과 신설·분과, 캠퍼스 이전 등의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존 운영기반 개선 확대
  * 신설·분과에 따른 업무시스템 확대, 장기현장실습관리 및 학비지원관리 기능 추가
  * 교육환경 확대변화를 감안한 학사행정관리 전략계획 수립(13개 이행과제 도출)
- 2017년～ 입학정원 증원, 학과 신설·분과 등 교육환경 확대 운영에 따라 대학교육지원시스템 확대 등 운영기반 강화
  * 전략계획에 따라 교육행정 업무프로세스 60종 재설계(BPR) 및 망 분리시스템 구축
  *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구축(ActiveX 등 비표준 제거, 노후 자원 교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기존 전산 응용 전환, 수작업 전산화 확대, 통합인증, 포털·통계서비스 추가 등)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한국농수산대학 정보화교육운영	10.6	11.2	10.9	11.6	12.3	13.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 이월 30백만원 및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 (′16) 용역사업 미완료로 인한 이월 54백만원

○ (′17)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구축 미완료로 인한 이월 298백만원 및 집행잔액 26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9 ( )	0.2 ( )	( )	11.1 ( )	10.8 ( )	0.3 ( )	- ( )
′16년	11.6 ( )	0.3 ( )	( )	11.9 ( )	11.3 ( )	0.6 ( )	- ( )
′17년	12.3 ( )	0.5 ( )	( )	12.8 ( )	9.6 ( )	3.0 ( )	0.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통합제정평가(농림축산식품부, ‘17.3.): 보통(88.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반 대학의 경우 우수 입학자원 확보, 교육목적 달성과정 효율화, 교육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학사행정 체계화, 교육서비스 및 이용품질 강화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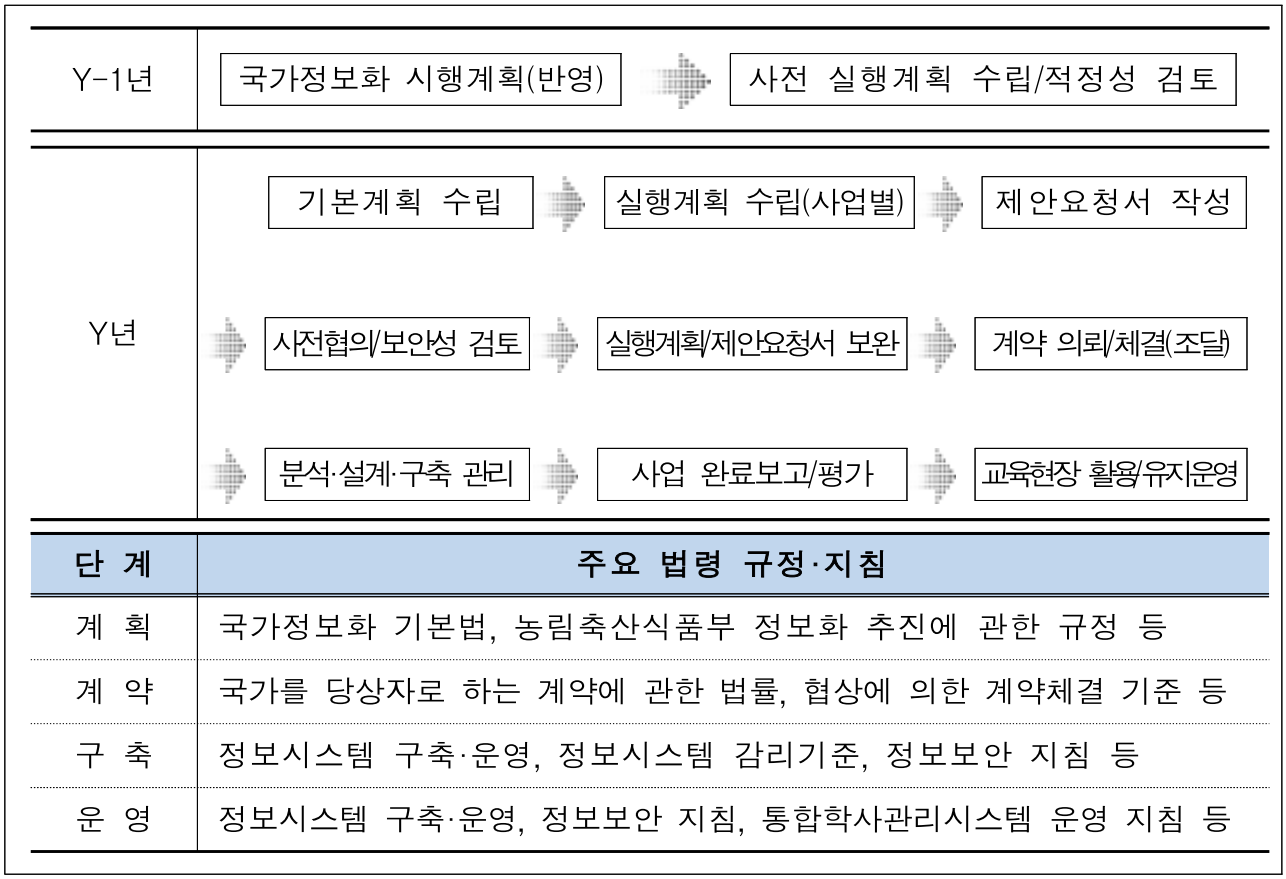

단 계	주요 법령 규정·지침
계 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계 약	국가를 당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구 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보안 지침 등
운 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보안 지침, 통합학사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등

2.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책임운영)	36,784	29,748	42,708	12,960	43.6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1100 - 1110
* 담당자 : 기획조정과장(백운활), 사무관(조용형), 주무관(강은미, ☏ 063-238-970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정예 후계농어업 인력 양성
- 재학생 대상 농어업 전문 교육 실시 및 졸업생에 대한 영농·영어정착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정예 후계농어업 인력 양성 ○ 농어업· 농어촌의 여건을 반영한 실험· 실습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 졸업생에 대한 영농· 영어정착 지원체계 확립으로 성공하는 농어업· 농어촌 지도자 양성
사업기간	'97~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건물(전북 전주, 연면적 60,043㎡, 교육관동 등 27개 시설) ○ 재학생(18학과 1,410명, 졸업생 ('18) 4,733명 → ('19) 5,123명
지원조건	국고 100%(수업 연한의 2배 동안 의무영농 이행)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대학 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교내교육 : 1, 3학년 교내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비 6,101백만원**

▪ ('18) 5,623백만원 → ('19) 6,101백만원 (증 478)

▪ '17년 및 '18학년도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1, 3학년 학생수 증원으로 교내 교육운영비 증가에 따라 '18년 대비 478백만원(8.5%) 증액 요구

* 입학정원 : ('16) 390명 → ('17) 470명 → ('18) 550명

** 1,3학년 학생수 : ('16) 780명 → ('17) 860명 → ('18) 940명 → ('19) 1,020명

▪ 산출내역

◦ 초빙교원 및 강사료 : ('18) 1,760백만원 → ('19) 1,760 (-)

* 565시간x32주x80천원

◦ 교재, 피복, 실습재료 등 교육용품 : ('18) 1,471백만원 → ('19) 1,596 (125)

* 8월x1,020명x195.6원

◦ 기숙사, 도서관, 보건실 운영비 : ('18) 255백만원 → ('19) 277 (22)

* 12월x1,020명x22.6천원

◦ 현장실습 임차비 : ('18) 117백만원 → ('19) 127 (10)

* 18개 학과x8월x1,187천원

◦ 교내행사비 : ('18) 112백만원 → ('19) 141 (29)

* 940명x264천원

◦ 재학생 교육관련 일반용역비 : ('18) 154백만원 → ('19) 194 (40)

* 1,020명x182천원

◦ 장학금 및 해외봉사 지급보상비 : ('18) 408백만원 → ('19) 408 (-)

* 1,020명x416천원

◦ 재학생 급식비 : ('18) 1,346백만원 → ('19) 1,598 (252)

* 1,020명x3식x522천원

○ **현장교육 : 2학년 장기현장실습운영을 위한 비용 4,730백만원**

▪ ('18) 4,042백만원 → ('19) 4,730백만원 (증 688)

▪ ‘18년 대비 2학년 장기현장실습생 증원에 따른 현장교육 운영비 증가로 ‘18년 대비 688백만원(17.0%) 증액 요구

* 2학년 학생수 : (’17) 390명 → (’18) 470명 → (’19) 550명

▪ 산출내역

◦ 현장실습 지도비용 : (‘18) 49백만원 → (’19) 88 (39)

* 550명x160천원

◦ 현장실습 교육용품 구입 : (‘18) 231백만원 → (’19) 268 (37)

* 550명x487천원

◦ 현장교수 연찬회, 실습생 소집교육 급식비 : (‘18) 37백만원 → (’19) 43 (6)

* 550명x78천원

◦ 실습생 방문지도, 단기해외연수 인솔경비 등 : (‘18) 165백만원 → (’19) 165 (-)

* 1명x33회x5백만원

◦ 2학년 단기해외연수경비 : (‘18) 880백만원 → (’19) 1,073 (193)

* 550명x1,951천원

◦ 실습보상금 등 기타운영비 : (‘18) 2,680백만원 → (’19) 3,093 (413)

* 550명x5,623천원

○ **졸업생지원 :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비용 601백만원**

▪ (‘18) 555백만원 → (’19) 601백만원 (증 46)

▪ 졸업 후 사후관리 및 영농정착 지원 대상 졸업생 증가 등에 따른 ‘18년 대비 46백만원(8.3%) 증액 요구

* 졸업생 : (’18) 4,733명 → (’19) 5,123명

▪ 산출내역

◦ 우수과제사업 공모지원 : (‘18) 200백만원 → (’19) 200 (-)

* 5과제x40백만원

◦ 영농·영어 정착지원비 : (‘18) 300백만원 → (’19) 346 (46)

* 5,123명x67.5천원

◦ 연구모임 지원 : (‘18) 37백만원 → (’19) 37 (-)

* 5,123명x7천원

◦ 현장지도 출장비, 사업추진비 등 : (‘18) 18백만원 → (’19) 18 (-)

* 19회x12월x80천원

○ **교육지원 :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비용 20,682백만원**

▪ ('18) 12,744백만원 → ('19) 20,682백만원 (증 9,617)

▪ 학생정원 증원 및 학과 증설, 대학 인프라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교육운영비 '18년 대비 7,938백만원(62.2%)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비정규직 인건비 : ('18) 1,903백만원 → ('19) 2,061(158)

* 비정규직 인건비 임금상승 및 처우개선(138백만원), 최저임금 반영(20백만원)

* (상용임금) 75명×25.7백 (일용임금) 17명×7.8백

◦ 교육지원 기본경비 : ('18) 7,841백만원 → ('19) 7,841 (-)

*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교육지원 및 교육사업 운영, 신입생홍보, 시설장비 유지보수, 청사관리, 연구용역, 사업추진비 7,841백만원('18년과 동일)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비 : ('18) -백만원 → ('19) 149 (149)

* 1식x149백만원

◦ 기숙사 외장재 교체 공사비 : ('18) -백만원 → ('19) 2,131 (2,131)

* 1식(기숙사 A,B,C동)x2,131백만원

◦ 기후변화실습교육센터 시설비(2년차) : ('18) 3,000백만원 → ('19) 8,500 (5,500)

* 시설비 2,200백만원, 장비비(12대) 6,300백만원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18년	잔여사업비	'19년 요구	'20이후	비고
기후변화대응 실습교육센터	**19,500**		3,000	16,500	**8,500**	14,300	
▪ 보상비	-		-	-	-	-	
▪ 설계비	126		126	-	-	-	
▪ 공사비	1,048	'18~'20	1,048	2,200	**2,200**	-	
▪ 감리비	31		31	-	-	-	
▪ 부대비	9		9	-	-	-	
▪ 자산취득비	16,086		1,786	14,300	**6,300**	14,300	

○ 기반시설확충공사 비용 10,594백만원

▪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공사(4년차) : ('18) 6,784백만원 → ('19) 10,594 (3,810)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기투자(~17년)	'18년	잔여사업비	'19년 요구	'20이후	비고
정원확대 시설확충공사	35,741 <30,699> (낙찰△5,042)	'16~'19	21,286 <13,321> (낙찰차액 △3,982) (재이월불용 △3,983)	<6,784>	7,671	10,594	-	
▪ 보상비	-		-	-	-	-	-	
▪ 설계비	1,177		1,177	-	-	-	-	
▪ 공사비	32,465		19,865 (전액이월)	5,497	7,103	10,026	-	
▪ 감리비	2,024		199	1,287	538	538	-	
▪ 부대비	75		45	-	30	30	-	

* 기투자액 21,286백만원에서 13,321백만원으로 조정 예정(7,965백만원 감액)
→ 감액 내용 : 재이월액 3,983백만원 + 낙찰차액 3,982백만원

** (당초) 총사업비 연부액 7,671백만원
→(요구액) 10,594백만원(재이월액 3,983증액 및 관급자재 낙찰차액 1,060감액)

※ 총낙찰차액 5,042백만원 : 공사비대비 15.53%

⇒ '19잔여사업비(7,671백만원) - 관급자재 낙찰차액(1,060백만원) + 재이월액(3,983백만원) = 10,594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29,748백만원	42,708백만원
▪ 교내교육 * 1,3학년 교내 교육비용	5,623백만원 · 940명×5,982천원	6,101백만원 · 1,020명×5,982천원
▪ 현장교육 * 2학년 장기현장실습 교육비용	4,042백만원 · 470명×8,600천원	4,730백만원 · 550명×8,600원
▪ 졸업생지원 *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비용	555백만원 · 4,733명×117천원	601백만원 · 5,123명×117천원
▪ 교육지원 * 교육운영을 위한 지원비용	12,744백만원 · 1,410명×6,910천원 · 기후변화실습시설 3,000백만원	20,682만원 · 1,570명×6,402천원 · 기후변화실습시설 8,500백만원 · 기숙사 시설개선 2,131백만원
▪ 기반시설확충(총사업비)	6,784백만원 · 입학정원 증원관련 기반시설 확충비	10,594백만원 · 입학정원 증원관련 기반시설 확충비

□ 지원 필요성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거하여 농어가 인구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후계농어업인력 육성이라는 뚜렷한 목적과 법적근거를 가지고 교육을 운영함

- 매년 약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전체 졸업생 중 86%가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의 유지·발전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후계농어업인력 양성은 공익성이 매우 크며, 젊은층의 농어업·농어촌 기피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우수한 후계농어업인력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후계농어업인력 양성은 농어업·농어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농림·축산·수산·식품 분야의 인력 수요 요구에 부응하고, 농정방향과 대학의 교육 방향으르 연계하여 우수한 후계 농림축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재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졸업생이 농어촌을 이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영농·영어활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졸업생 지도 및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강사진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소요재원의 지원이 필요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책임운영)	35,329	29,748	42,708	12,960	43.6
■ 교내교육	4,492	5,623 (1,3학년 940명×5,982천원)	6,101 (1,3학년 1,020명×5,982천원)	478	8.5
■ 현장교육	3,354	4,042 (2학년 470명×8,600천원)	4,730 (2학년 550명×8,600천원)	688	17.0
■ 졸업생지원	525	555 (졸업생 4,733명×117천원)	601 (졸업생 5,123명×117천원)	46	8.3
■ 교육지원	6,848	12,744 (재학생 1,410명×6,910천원, 기후변화실습시설 3,000백만원)	20,682 (재학생 1,570명×6,402천원, 기후변화실습시설, 기숙사개선 10,631만원)	7,938	62.3
■ 시설확충공사(총사업비)	20,110	6,784 (3년차 공사비)	10,594 (0개×0백만×00%)	3,810	56.2
□ 비목(합계)	35,329	29,748	42,708	12,960	43.6
ㅇ기타직보수(110-02)	751	-	-	-	-
ㅇ상용임금(110-03)	1,544	3,240	3,754	514	15.9
ㅇ일용임금(110-04)	28	163	133	△30	△18.4
ㅇ일반수용비(210-01)	2,009	2,184	2,294	110	5.0
ㅇ공공요금및제세(210-02)	1,047	1,327	1,365	38	2.9
ㅇ피복비(210-03)	252	405	470	65	16.0
ㅇ임차료(210-07)	310	385	411	26	6.8
ㅇ유류비(210-08)	161	239	239	-	-
ㅇ시설장비유지비(210-09)	311	420	420	-	-
ㅇ재료비(210-11)	580	895	970	75	8.4
ㅇ복리후생비(210-12)	12	24	33	9	37.5
ㅇ일반용역비(210-14)	326	216	264	48	22.2
ㅇ관리용역비(210-15)	734	568	160	△408	△71.8
ㅇ기타운영비(210-16)	43	38	41	3	7.9
ㅇ국내여비(220-01)	183	183	159	△24	△13.1
ㅇ국외업무여비(220-02)	142	27	27	-	-
ㅇ국외교육여비(220-03)	13	117	112	△5	△4.3
ㅇ사업추진비(240-01)	32	30	29	△1	△3.3
ㅇ일반연구비(260-01)	23	70	70	-	-
ㅇ포상금(310-03)	117	102	102	-	-
ㅇ기타보전금(310-04)	3,374	4,196	4,802	606	14.4
ㅇ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200	-	-
ㅇ구호및교정비(320-06)	1,190	1,440	1,692	252	17.5
ㅇ고용부담금(320-09)	247	294	386	92	31.3
ㅇ실시설계비(420-02)	29	163	173	10	6.1
ㅇ공사비(420-03)	20,778	8,522	14,994	6,472	75.9
ㅇ감리비(420-04)	202	9	569	560	6,222
ㅇ시설부대비(420-05)	50	5	39	34	680
ㅇ자산취득비(430-01)	641	4,286	8,800	4,514	105.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령」 제14조(경비 부담)

○ 추진경위

- UR 농업협상 타결, WTO체제의 출범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계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
-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순수한 농업대학 설립을 건의
- 1995년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설치령 제정(대통령령)
-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 개교(입학정원 240명, 6학과 3년제)
- 2007년 한국농업대학 설치법(법률 제7997호) 시행(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
- 2008년 후계인력 육성 확대를 위한 학생증원 및 증과(입학정원 300명, 7학과)
-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수산양식학과 신설, 입학정원 300명)
- 2013년 학과 신설 및 학생 증원(말산업학과·산림조경학과 신설, 입학정원 390명)
- 2016년 입학 정원 증원('17년 470명)
- 2017년 입학 정원 증원('18년 550명), 학과 개편(11학과 → 18, '18년 신설 학과 4개, 분과 3개 등 6개 계열 18개 학과)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운영(책임운용)	145	143	158	182	368	2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 실습유리온실 신축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한 시설비, 감리비 이월 및 계약직 채용지연, 학적변동에 따른 보상금 불용액 발생

○ ('16) 시설 확충에 따른 실시설계비(추경) 낙찰차액 발생, 교내 다중이용시설 유지보수 미완료 및 농산가공실험실 신축공사 등 미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

○ ('17) 시설확충공사 낙찰차액 발생, 연구용역 및 시설확충공사, 교내 실습시설 신축공사 추진지연으로 인한 용역비 및 공사비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8 **(-)**	7 (-)	△1 (-)	164 (-)	146 **(-)**	8 (-)	10 (-)
'16년	182 **(-)**	8 (-)	- (-)	190 (-)	164 **(-)**	20 (-)	6 (-)
'17년	368 **(-)**	20 (-)	△2 (-)	386 (-)	169 **(-)**	202 (-)	15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국회(예결위, '14회계연도 결산)

- 임차료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함에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 '18년 국회(상임위, '17회계연도 결산)

- 연구용역 부실추진으로 연구용역비 예산 중 18백만원 이월 및 47백만원 불용하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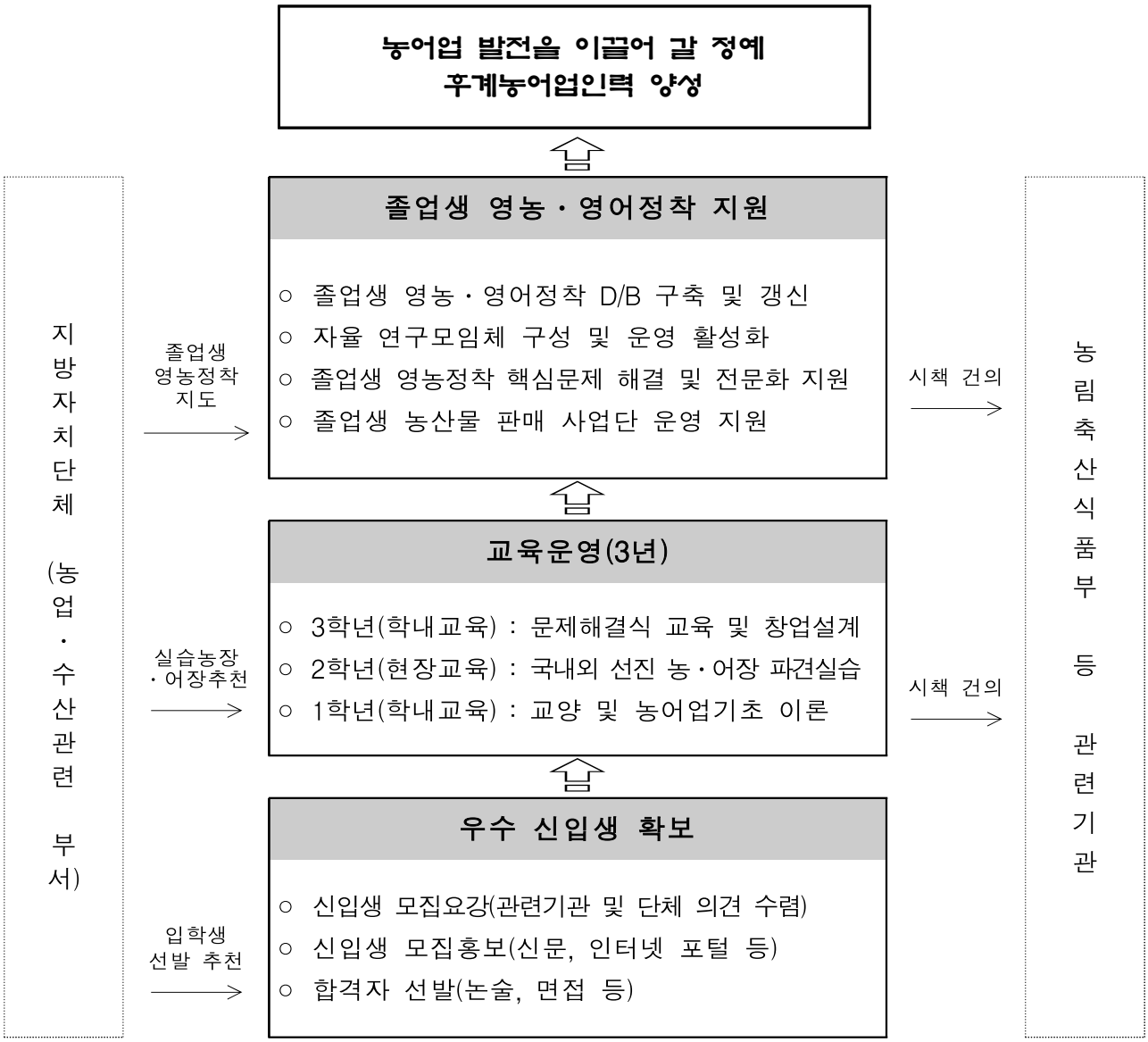
농어업 발전을 이끌어 갈 정예
후계농어업인력 양성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지원
○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D/B 구축 및 갱신
○ 자율 연구모임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졸업생 영농정착 핵심문제 해결 및 전문화 지원
○ 졸업생 농산물 판매 사업단 운영 지원
교육운영(3년)
○ 3학년(학내교육) : 문제해결식 교육 및 창업설계
○ 2학년(현장교육) : 국내외 선진 농·어장 파견실습
○ 1학년(학내교육) : 교양 및 농어업기초 이론
우수 신입생 확보
○ 신입생 모집요강(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 수렴)
○ 신입생 모집홍보(신문, 인터넷 포털 등)
○ 합격자 선발(논술, 면접 등)
지방자치단체 (농업·수산관련 부서)
졸업생 영농정착 지도
실습농장·어장추천
입학생 선발 추천
시책 건의
시책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3. 전공심화과정운영(책임,수입대체)(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전공심화과정운영(책임, 수입대체)	250	228	297	69	30.2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1100 - 1110
* 담당자 : 교수부장(신용광), 사무관(박건용), 주무관(유성옥, ☏ 063-238-901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농어업경영인 양성

○ 전문학사 졸업자에게 계속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전공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전문학사 졸업 후 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낀 심화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우수 후계농어업인으로 양성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8) 11개학과 110명 → ('19) 12개학과 110명
지원조건	국고 100%(수입대체경비)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대학 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전공심화과정운영지원 : 전공심화과정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 297백만원

-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8년대비 30.2% 증액요구
- 산출내역 : 110명(인원수)×2,850천원(1인당 등록금)

  * 사업확대 : (' 18년) 11개학과 110명 → (' 19 요구) 12개학과 110명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제5조의 4 2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은 연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연도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 (550명×20%=110명)

※ 전공심화과정 등록금 2,850천원(전년대비 등록금 동결, 교육부 등록금동결정책)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전공심화과운영	**228백만원**	**297백만원**
▪ 전공심화과정 교육운영	228백만원 * 110명×2,850천원×0.73	228백만원 * 110명×2,850천원×0.95

□ 지원 필요성

○ 지식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졸업생의 영농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농어업·농어촌 정착을 위해 교육적 사후관리가 필요함

- 졸업생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욕구 해소

○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하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전공심화과정 교육운영을 통하여 이를 공유 및 해결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전문적으로 제공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전공심화과정교육운영	250	228	297	69	30.2
▪ 전공심화과정교육운영	250	228 (110명×2,850천원×73%)	297 (110명×2,850천원×95%)	69	30.2
□ 비목(합계)	250	228	297	69	30.2
○ 기타직보수비(110-02)	94	80	128	48	60.0
○ 일반수용비(210-01)	98	89	96	7	7.9
○ 임차료(210-07)	4	10	10	-	-
○ 재료비(210-11)	30	16	30	14	87.5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 기타운영비(210-16)	8	12	12	-	-
○ 국내여비(220-01)	3	3	3	-	-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 직무수행경비(250-02)	2	-	-	-	-
○ 구료비(320-06)	3	4	4	-	-
○ 고용부담금(320-09)	2	5	5	-	-
○ 반환금기타(710-03)	3	6	6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령」 제14조(경비 부담)

○ 추진경위

-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 및 시행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근거 마련

- 2010년 전공심화과정 시범 실시(3개학과 56명)
- 2018년 11개학과 110명 운영('10년 3개학과 56명→ '18년 11개학과 110명)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전공심화과정운영	1.6	1.6	2.1	2.3	2.6	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 일용임금 직무수행경비 등 16백만원 불용

○ (’16) 계획인원대비 교육인원 감소로 인한 교육운영비 63백만원 불용

○ (’17) 교육운영비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19 ( )	( )	( )	2.19 ( )	2.03 ( )	( )	0.16 ( )
’16년	2.23 ( )	( )	( )	2.23 ( )	1.60 ( )	( )	0.63 ( )
’17년	2.58 ( )	( )	( )	2.58 ( )	2.50 ( )	( )	0.0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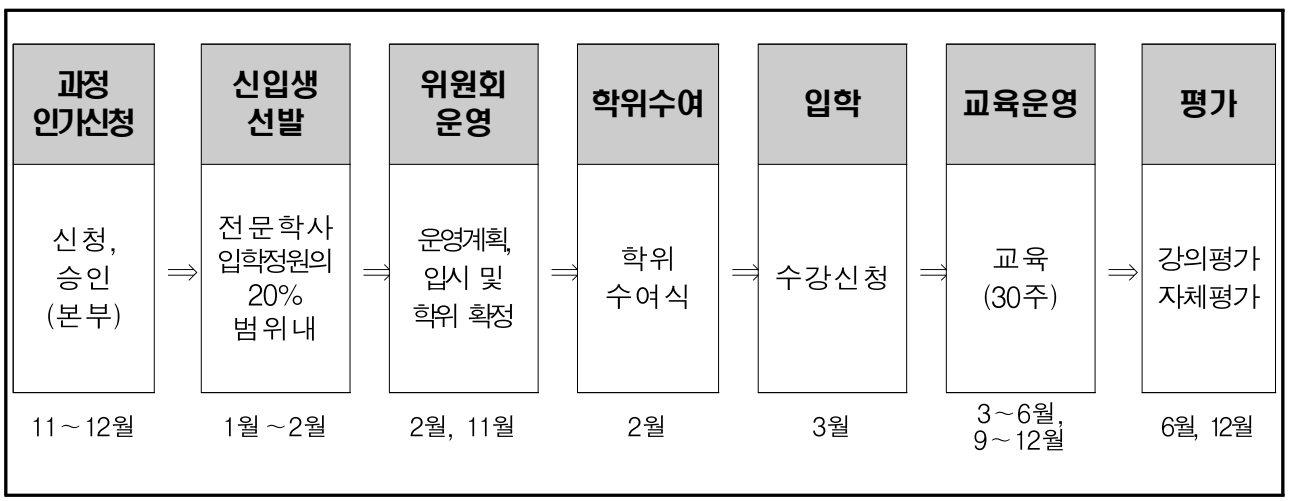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11,859	21,372	9,513	80.2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100 - 1120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경영인력과장(강동윤), 서기관(김호균, ☏ 044-201-15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영농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기 영농창업 활성화 제고

○ 매년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 및 지원하여 농촌에 청년층 유입 및 농업인력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18~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청년농업인 3,200명
지원조건	국비 50~100%, 지방비 30~5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1,372백만원

- 지원금(20,132백만원) : '18년 선발자(1,200명) 9,112백만원 + '18년 추경 선발자(400명) 3,177백만원 + '19년 신규 선발자(1,600명) 7,843백만원
- 선발·운영비(900백만원) : 10개 시·도 × 180백만원 × 50%
- 모니터링 홍보(340백만원) : 1식 × 340백만원 × 1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1,859백만원**	**20,132백만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금 6,804 (1,200명×1백만원×9개월×0.9×70%)	지원금 22,093 ('18년 선발자(1,200명) 9,112백만원 + '18년 추경 선발자(400명) 3,177백만원 + '19년 신규 선발자(1,600명) 7,843백만원)
	선발·운영비 450 (10개 시도×90백만원×50%)	선발·운영비 900 (10개 시도×180백만원×50%)
	모니터링·홍보 105 (1식×105백만원×100%)	모니터링·홍보 340 (1식×340백만원×100%)
▪ 경영실습 임대농장	4,500 (30개소×300백만원×5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부사업으로 내역사업 이관

□ 지원 필요성

○ 농가인구 감소, 농업경영주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 심화

- '17년말 기준 경영주가 40세 이하인 농가 비율이 0.9%(9천호) 수준에 불과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이 시급한 상황

- 반면에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이 58.3%(607천호)이고, 경영주 평균연령이 63.1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

* 65세 이상 농가비율이 35세 이하 농가비율의 140배 수준(일본 89, 미국 6)

-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향후에도 고령화 추세는 심화 전망(농경연)

구 분	2017	2021	2026
농가 인구(만명) / 농가(만호)	242 / 104	226 / 101	203 / 96
- 65세 이상 농가인구(%)	42.5	44.1	49.3
- 40세 이하 농가인구(%)	18.3	18.1	16.7
- 총인구 중 농가인구(%)	4.7	4.3	3.8

○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층은 영농창업 시 여유자금 부족, 농지 구입 및 영농기술 습득 등 어려움* 호소

* 청년층의 영농 창업·정착 애로: 여유자금(51%) > 농지(42) > 주거(26) > 영농기술(21)

○ 제19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83-1,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 실천과제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11,859**	**21,372**	**9,513**	**80.2**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7,359백만원 지원금 6,804 (1,200명×1백만원×9개월×0.9×70%) 선발·운영비 450 (10개 시도×90백만원×50%) 모니터링·홍보 105 (1식×105백만원×100%)	21,372백만원 지원금 22,093 ('18년 선발자(1,200명) 9,112백만원 + '18년 추경 선발자(400명) 3,177백만원 + '19년 신규 선발자(1,600명) 7,843백만원) 선발·운영비 900 (10개 시도×180백만원×50%) 모니터링·홍보 340 (1식×340백만원×100%)	**14,013**	**190.4**
▪ 경영실습 임대농장	-	4,500 (30개소×300백만원×50%)	사업이관	**△4,500**	**△순감**
□ **비목**(합계)	**-**	**11,859**	**21,372**	**9,513**	**80.2**
○ 민간경상보조(320-01)	**-**	**105**	**340**	**235**	**223.8**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6,804**	**21,032**	**14,228**	**209.1**
○ 자지단체자본보조(330-03)	**-**	**4,500**	**-**	**△4,500**	**△순감**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연구용역('17.3~'17.6)
- 제19대 대선 공약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지원
- 청년창업농육성대책 발표('17) 및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추진('18)
- "국정과제(83-1)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 실천과제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	-	-	-	11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시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의무영농기간(총 6년) 및 연간 의무교육 부여 등으로 엄격한 관리 필요('18년 예산안 부대의견)

○ 선발기준 및 절차 보완, 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 강화 등 지원금 사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19년 상임위 예산안 부대의견)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19년 예결위 예산안 부대의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45세 미만의 창농인에게 최대 7년(창업준비 2 + 창업 후 5년) 간 연간 150만엔 보조금 지급('12년~)으로 고령화 완화

○ (EU) 4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인 농업인에게 최대 5년간 기본직불금의 25%를 추가 지급('14년~)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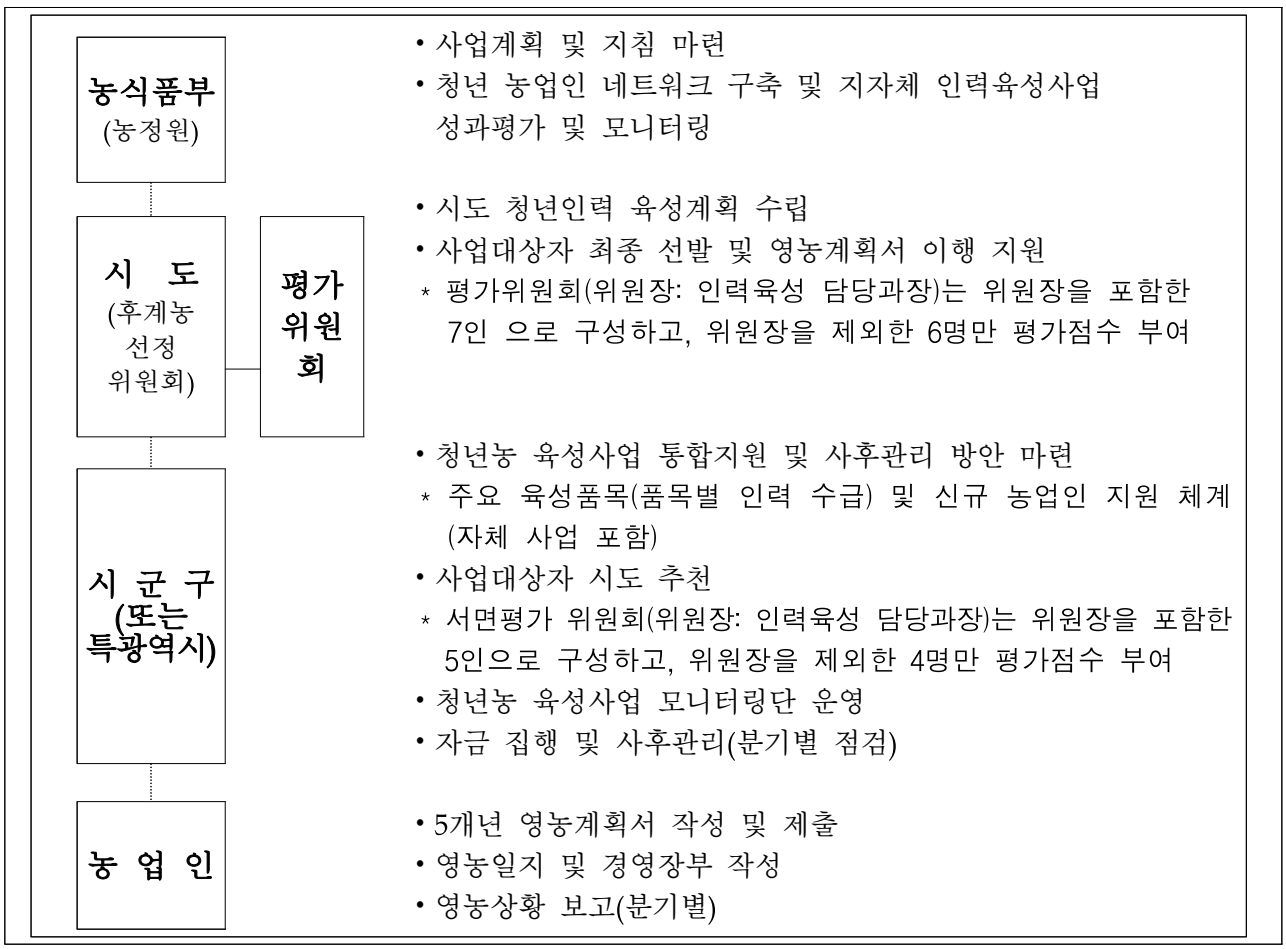

5.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3,321	38,232	48,520	10,288	26.9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136 - 331-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경영인력과장(강동윤), 사무관(김화태, ☏ 044-201-153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인프라 구축비 지원

○ 농업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청년들의 농업 관련 국제기구,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진출을 지원

○ 한-뉴질랜드 FTA 체결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이외에 양국 정부가 합의한 농업분야 협력사업 및 농축산업 훈련비자 사업추진

○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 축산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인프라 구축비 지원, 한-뉴질랜드 FTA체결 시 합의한 농림분야 협력사업, 농업경영체 대상 경영컨설팅 제공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 실시, 해외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등
사업기간	'82~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국고 50~100%, 자부담 20~50%) ·지자체보조(국고 30~100%, 지방비 0~50%, 자부담 10~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 농고, 농대, 교육기관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18) 38,232백만원 → ('19안) 48,520(증 10,288, 26.9%)

《농업·농촌교육훈련》 ('18) 30,512백만원 → ('19안) 40,505(증 9,993, 32.8%)

○ 예비농업인교육지원 : ('18) 12,670백만원 → ('19안) 16,639(증 3,969)

- 미래농업선도고교(3,900), 농대영농창업특성화사업(5,870), 농업계고교지원(3,000), 농업계대학지원(3,869)

* (미래농업선도고교) 1·2·3학년 운영비 3개교×1,300

- 3개교 : 홍천농고,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단위 : 억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연도	'16	'17	'18	**'19**	'20	
인프라비	20*3	6*3	4*3			
1학년 운영비		2*3	2*3	**2*3**	2*3	
2학년 운영비			4*3	**4*3**	4*3	
3학년 운영비				**7*3**	7*3	
계	60	24	30	**39**	39	222

* (농대영농창업특성화) 5,870백만원(1·2·3·4학년 운영비 5개교×1,174백만원)

- 5개교 : 천안연암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단위 : 억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연도	'16	'17	'18	**'19**	'20	
1학년 운영비	2*5	2*5	2*5	**2*5**	2*5	
2학년 운영비		2*5	2*5	**2*5**	2*5	
3학년 운영비			5.74*5	**5.74*5**	5.74*5	
4학년 운영비				**2*5**	2*5	
계	10	20	48.7	**58.7**	58.7	196.1

* (농업계고교지원) 3,000백만원(4개교×325백만원×100%+15개×113백만원×100%)

* (농업계대학지원) 3,869백만원(3개교×600백만원×70%+3개교×46백만원×50% + 교육지원: 10개교×180백만원×100%+5개교×150백만원×100%)

○ **청년취창업포럼 : ('18) - → ('19안) 100(증 100)**

* 8회×12.5백만원×100%

○ **전문농업경영체육성교육지원 : ('18) 13,542백만원 → ('19안) 14,546(증 1,004)**

- 현장실습교육(WPL)지원(1,890), 첨단기술공동실습장(1,075),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1,218), 농업인 국외훈련·방문연수(885),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1,120), 농업경영혁신교육(1,273), 스마트 팜 확산지원(1,960), 농업마이스터대학(5,125)

* (현장실습교육) 1,890백만원(4,500명×600천원×70%)

* (첨단기술공동실습장) 1,075백만원(5개소×278백만원×70% + 2개소×50백만원×100%)

- 7개소 : 연암대, 전남대, 경남ATEC, 순천대,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한농대, 원스베리

*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1,218백만원(공모교육 410백만원 + 영농정착지원 필수교육 808)

* (농업인국외훈련방문연수) 885백만원(18개과정×61.8백만원×50% + 50명×9,400천원×70%)

* (첨단품목특화과정) 1,120백만원(토마토,파프리카,딸기,버섯,양돈,낙농,장미 7개 품목×200백만원×80%)

* (농업경영혁신교육) 1,273(농업회의소200 + 농업인교류센터500 + 경영혁신교육573)

* (스마트팜확산지원) 1,960[권역별 현장지원센터 1,000백만원(20개소×100백만원×50%), 현장실습형교육 600(8회×150백만원×50%)+장기보육프로그램 운영 10억원]

* (농업마이스터대학) 5,125(1,899명×5,398백만원×50%)

○ **농촌현장적응교육지원 : ('18) 1,962백만원 → ('19안) 1,962(-)**

-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1,666), 체험마을리더교육(170), 농업인·소비자교육(126)

*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1,666백만원(2,480명×672천원×100%)

* (체험마을리더교육) 170백만원[(15백명×200천원×50%)+(20개소×2백만×50%)]

* (농업인·소비자교육) 126백만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일반수용비 122, 국내여비 3 등)

○ **후계농육성교육지원 : ('18) 1,112백만원 → ('19안) 1,382(증 270)**

- 후계농업경영인육성(460), 후계농교육(573), 후계농업경영인대회지원(227), 여성농업경영인대회지원(122)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460백만원(460백만원×100%)

* (후계농업경영인교육) 573백만원(2,850명×402천원×50%)

* (후계농업인경영인대회지원) 227백만원(1회×454백만원×50%)

* (여성농업인경영인대회지원) 122백만원(1회×203백만원×60%)

○ **농업·농촌교육지원 : ('18) 816백만원 → ('19안) 816(-)**

- 교육훈련 내실화 지원(516), 농업마이스터지정(300)

○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쉽 지원 : ('18) 410백만원 → ('19안) 410**

- 인턴 체재비 등(335)*, 사업관리(선발 · 홍보 · 교육 · 운영 등)(75)
  * 체재비 · 왕복항공료 · 준비비(비자 · 보험) 335백만원=6.7백만원×50명

○ **경영실습임대농장 : ('18) - → ('19안) 4,500(이관)**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세부사업)에서 이관
  * (경영실습임대농장) 4,500백만원(30개소×300백만원×50%)

○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용역 : ('18) - → ('19안) 150(신규)**

- 연구용역비 : 150백만원

《한국-뉴질랜드FTA협력사업》('18) 1,385백만원 → ('19안) 1,346(△39, △2.8%)

○ 농축산업 훈련비자 연수 : 뉴질랜드에서 농축산업 분야 훈련을 받는 농축산계열 고등학생·대학생 30명 지원(629백만원) * 30명×20,977천원×100%

○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학습에 참가하는 농어업인 자녀 127명 지원(571백만원) * 127명×4,496천원×100%

○ 농림축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 뉴질랜드 내 농림축산분야 학과 석·박사과정 장학생 4명의 장학금 지원(93백만원) * 4명×23,333천원×100%

○ 농림축산분야 전문가 훈련·연구 협력 : 농림축산분야 전문가 7명의 훈련·연구비 지원(53백만원) * 7명×7,571천원×100%

《농업경영활성화》('18) 2,919백만원 → ('19안) 4,853(증 1,934, 66.3%)

○ 농업경영컨설팅(지자체) : 농업인, 농업법인 컨설팅 비 1,032백만원(16백만원 × 30% × 215개소)

○ 평가운영비(민간) : 컨설팅 대상 선정, 사전·사후 경영역량진단실시, 전문컨설팅업체 인증 등 사업 평가·점검 사업비 157백만원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채용지원 : 2,434백만원(200개소×12백만원+운영비34백만원)

○ 농업법인취업지원 : 1,230백만원(취업지원 200명×1백만원×6개월+운영비30백만원)

《축산관련종사자교육》('18) 1,816백만원 → ('19안) 1,816

○ 교육비 : 1,050백만원

▪ 신규(허가) : (2천명×35,820원×70%) + 신규(등록) : (5천명×35,820원×70%) + 보수(집합) : (34.9천명×35,820원×70%)

○ 교육 운영비 : 766백만원

▪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비 : 313백만원 + 인건비 : 324백만원 + 지자체 및 교육운영기관 합동설명회 : 34백만원 + 교육홍보 : 69백만원 + 교재개발 등 : 26백만원

《도시농업활성화》('18) 1,600백만원 → ('19안) 사업 이관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8,232백만원	48,520백만원
▪농업·농촌교육훈련	□ 30,512백만원	□ 40,505백만원
·예비농업인교육지원	- 12,670백만원	- 16,639백만원
(미래농업선도고교)	(3,000=3개교×1,000백만원×100%)	(3,900=3개교×1,300백만원×100%)
(농대영농창업특성화)	(4,870=5개교×974백만원×100%)	(5,870=5개교×1,174백만원×100%)
(농업계학교실습장)	(1,300=4개교×325백만원×100%)	(농업계고교지원) 변경 (3,000=4개교×325백만원×100%+15개교×113백만원×100%)
(농업계학교교육지원)	(3,500=15개농고×113백만원×100%+10개농대×180백만원×100%)	(농업계대학지원) 변경 (3,869=3개교×600백만원×70%+3개교×46백만원×50% + 교육지원:10개교×180백만원×100%+5개교×150백만원×100%)
·청년취창업 포럼		- 100백만원
·전문농업경영체육성교육지원	- 13,542백만원	- 14,546백만원
(현장실습교육)	(1,890=4,500명×600천원×70%)	(1,890=4,500명×600천원×70%)
(첨단기술공동실습장)	(1,075=5개소×278백만원×70%+2개소×50백만원×100%)	(1,075=5개소×278백만원×70%+2개소×50백만원×100%)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1,167=2,370명×703천원×70%)	(1,218=공모교육 410백만원+영농정착지원 필수교육 808백만원)
(농업인국외훈련방문연수)	(932=18개과정×61.8백만원×50%+50명×9,400천원×80%)	(885=18개과정×61.8백만원×50%+50명×9,400천원×70%)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1,120=7개×200백만원×80%)	(1,120=7개×200백만원×80%)
(농업경영혁신교육)	(1,273=농업회의소 200백만원 + 농업인교류센터 500백만원 + 경영혁신교육 573백만원)	(1,273=농업회의소 200백만원 + 농업인교류센터 500백만원 + 경영혁신교육 573백만원)
(스마트팜확산지원)	(960=12개소×100백만원×50%+4회×180백만원×50%)	(1,960=12개소×100백만원×50%+4회×180백만원×50%+장기보육프로그램 운영 10억원)
(농업마이스터대학)	(5,125=1,899명×5,398백만원×50%)	(5,125=1,899명×5,398백만원×50%)
·농촌현장적응교육지원	- 1,962백만원	- 1,962백만원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1,666=2,480명×672천원)	(1,666=2,480명×672천원)
(체험마을리더교육)	(170=15백명×200천원×50%+20개소×2백만×50%)	(170=15백명×200천원×50%+20개소×2백만×50%)
(농업인소비자교육)	(126=강사수당 73백만원+일반수용비 49백만원+국내여비 3백만원+사업추진비 1백만원)	(126= 일반수용비 122백만원 + 국내여비 3백만원 + 사업추진비 1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후계농업경영인육성교육지원	- 1,112백만원	- 1,382백만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	(460=1개×460백만×100%)	(460=1개×460백만×100%)
(후계농업경영인교육)	(400=2,000명×400천원×50%)	(573=2,850명×402천원×50%)
(후계농업경영인대회지원)	(252=1회×504백만×50%)	(227=1회×백만×50%)
(여성농업경영인대회지원)	(격년운영)	(122=1회×255백만×60%)
·농업·농촌교육지원	- 816백만원(교육내실화지원 716+마이스터지정 100)	- 816백만원(교육내실화지원 716+마이스터지정 100)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 410백만원(8.2백만원×50명)	- 410백만원(8.2백만원×50명)
·경영실습임대농장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세부사업)에서 이관	- 4,500백만원(30개소×300백만원×50%)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용역		- 150백만원(연구용역비)
▪한·뉴 FTA 협력사업	□ 1,385백만원	□ 1,346백만원
·농축산업훈련비자연수	- 650(42명×15,476천원)	- 629(30명×20,977천원)
·농촌청소년어학연수	- 592(127명×4,660천원)	- 571(127명×4,496천원)
·농림축산분야대학원장학금	- 70(3명×23,333천원)	- 93(4명×23,333천원)
·농림축산분야전문가훈련연구협력	- 53(7명×7,571천원)	- 53(7명×7,571천원)
·수의역학분야공동워크숍	- 20	- 격년제 운영
▪농업경영활성화	□ 2,919백만원	□ 4,853백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자체)	- 1,032(215개×16백만원×30%)	- 1,032(215개×16백만원×30%)
·평가운영비(민간)	- 157(평가점검비)	- 157(평가점검비)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	- 800(80개소×10백만원)	- 2,434(200개소×12백만원+운영비34백만원)
·농업법인취업지원	- 930(1백만원×150명×6개월+운영비30백만원)	- 1,230(1백만원×200명×6개월+운영비30백만원)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1,816백만원	□ 1,816백만원
·교육비	- 1,050(신규허가2천명×35,820원×70%+신규등록5천명×35,820원×70%+보수집합34.9천명×35,820원×70%)	-1,050(신규허가2천명×35,820원×70%+신규등록5천명×35,820원×70%+보수집합34.9천명×35,820원×70%)
·교육운영비	- 766(인건비324+전산운영·유지313+설명회34+기본교재26+교육안내·홍보 69)	- 766(인건비324+전산운영·유지313+설명회34+기본교재26+교육안내·홍보 69)
▪도시농업활성화	□ 1,600백만원	사업 이관
·도시농업박람회개최	- 300(1식×300백만×100%)	
·도시농업교육·인력양성	- 300(6개×100백만×50%)	
·도시텃밭조성	- 500(10개×100백만×50%)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	- 370(1식×370백만×100%)	
·도시농업정책홍보	- 30(1식×30백만×100%)	
·도시양봉지원	- 100(1식×100백만×100%)	

□ 지원 필요성

○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이 더 요구되는 반면, 고령화 심화로 농업인력 구조는 악화 추세로, 적극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FTA 등 시장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신지식·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이 필수적이며, 수준 높은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량에 맞는 맞춤형·실습중심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

○ 교육이 증가할수록 농업경영체 역량향상과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실습교육 중심의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 고부가 가치 창출 등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과 교육이 연계된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인 소득 지원 뒷받침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농업전문인력육성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매우 높으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교육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지속적 지원 필요

○ 청년들에게 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에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해외 진출 지원 및 차세대 리더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유도

○ 시장개방으로 농산업 분야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 판로확보 등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채용지원 연계로 농업경영체의 시장지향적 마인드 제고 및 경영능력 확대 필요

○ 농축산업 훈련비자 운영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능동적·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후계 농업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업임(규모화 된 전문농업인 육성)

- 농축산업 훈련 비자를 통해 농고·농대생이 뉴질랜드 현지 농장의 선진 농업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획득하여 미래 농촌 경쟁력 제고

○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가축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친환경 축산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축산관련종사자의 방역의식을 고취하여 선제적 방역활동을 통해 악성 가축질병 발생 위험도 감소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시행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농촌교육훈련	33,503	38,232	48,520	10,288	26.9
▪ 농업농촌교육훈련	27,705	30,512	40,505	9,843	32.3
▪ 한뉴 FTA협력사업	1,365	1,385	1,346	△39	△2.8
▪ 농업경영활성화	1,309	2,919	4,853	1,934	66.3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1,816	1,816	1,816	-	-
▪ 도시농업활성화	1,308	1,600	사업이관	△1,600	순감
□ 비목(합계)	33,503	38,232	48,520	10,288	26.9
○ 상용임금(110-03)	67	73	-	△73	순감
○ 일반수용비(210-01)	55	49	122	73	143.0
○ 국내여비(220-01)	3	3	3	-	-
○ 국외여비(220-02)	71	69	69	-	-
○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 연구용역비(260-01)	-	-	150	150	순증
○ 민간경상보조(320-01)	22,281	27,510	33,515	6,005	21.8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925	8,027	7,600	△427	△5.3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100	2,500	7,060	4,560	182.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비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한·뉴 FTA 협력 챕터 제 14.3.2조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추진경위

<농업·농촌교육훈련>

-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교육훈련 실시('82년)
-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 제정으로 '81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
-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발표('04.12)
-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육성 대책 수립 시행('05.4)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 수립('06.2)
- 첨단농업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한나라당 공약사항, '08.3)
- 실용정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하여 신 농업교육체제 구축계획 마련('08.6)
- 후계농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필요에 의해서 '10년부터 평가 및 홍보 사업추진('09)
- 제1차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10.11.30)
- 농업인교육 3개년 계획 수립('10.12)
-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계획 수립('11.9)
-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2년부터 사업 추진
- 마을리더·사무장·전문가 양성 및 사업별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05~14년까지 4만 4천명 교육실시

-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본계획 수립('14.12)
-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지원비 및 여성농업인 대회지원비(격년제)가 '15년부터 마사회특별 적립금에서 이관
- 농업직업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농고·농대사업 추진계획 수립('15.6)
- 우리 청년들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추진('17.12)

<한·뉴FTA협력사업>

- '09.3월 협상 시작단계부터 양국은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업 분야 피해 보전의 일환으로 한·뉴 협력 등을 지속 논의
- '14.11월 농업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기반 마련에 합의

  * '14.11.15 한·뉴 FTA 타결, '14.12.22 한·뉴 FTA 가서명, '15.3.23 한·뉴 FTA 정식 서명, '16.3.21 한-뉴FTA협력사업 추진기관(한측: 농정원/ 뉴측: 국제교육원(ENZ))간 양해각서(MOA) 체결

<농업경영활성화>

- '96 주요농정과제로 채택('96.2), 기본방침 수립('96.9)
- 농업경영혁신종합지원방안 마련('97.12)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사업시행지침마련('98)
- '99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제 실시('06), 사업의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를 위해 지원조건 변경(국고 50%→국고 30%)('11),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 추가('13), 법인경영체 중심의 사업 재편('14)
- '14년 6차산업경영컨설팅(내역사업) 단년도 추진
- '18년부터 전문경영체 채용지원사업의 내역사업 변경(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경영활성화)
- '18년부터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신규 추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11.3.24) 및 세부시행방안 수립시행('11.5.6)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2)으로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도입
- '1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의무교육 시작

<도시농업활성화>

-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시 '저탄소 녹생성장,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보고
-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2013.5.31)
  ·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도시농업공간 확충, R&D 확대, 인력양성, 홍보 강화 등 정책 구체화
- 도시농업활성화방안 마련('15.3.31)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제고에 기여하고자 5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하는 향후 10년('24년까지)간의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마련
- '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핵심과제 선정('15.3월)
- 행정자치부의 "국민디자인 과제"로 도시농업활성화 선정('15.4.15)
- '18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이관('19.1)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농촌교육훈련	254	249	266	343	335	38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 2016) 농업경영컨설팅(사업신청저조), 농업·농촌교육훈련(인원감소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66** **(271)**	5 (-)	- (-)	271 (271)	**271** **(264)**	- (-)	- (7)
'16년	**343** **(340)**	- (-)	- (-)	343 (340)	**340** **(330)**	- (-)	3 (10)
'17년	335 **(333)**	- (-)	- (-)	335 (333)	333 **(319)**	- (3)	2 (1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 컨설팅 업체에 대한 인증관리 강화 및 타 컨설팅 사업에서도 인증제도 확대 적용 검토 필요(상임위, 예결위 '15년 결산)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농업·농촌교육훈련

[민간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교육계획 수립·제출(교육기관) → 심의·예산 확정(농식품부) → 세부교육계획 수립·대상자 선정(교육기관) → 자금요구(교육기관) → 자금배정(농식품부) → 교육실시(교육기관, 연중) → 결과보고(교육기관)

[지자체보조] 교육운영 지침 시달(농식품부) → 교육계획 수립·제출(교육기관) →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검토 및 제출(지자체) → 지자체별 교육계획 및 예산규모 확정(농식품부) → 교육기관별 예산규모 확정(지자체) → 세부교육계획 수립·대상자 선정(교육기관) → 자금요구(교육기관) → 자금배정(지자체) → 교육실시(교육기관, 연중) → 결과보고(교육기관) → 교육비정산 및 결과보고(지자체)

□ 한-뉴 FTA 협력사업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성과점검, 사업비 배정, 뉴측과 협의		뉴측과 업무협약 체결,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프로그램운영 행정사항 수행, 자금신청·집행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사업정산

□ 농업경영활성화

○ 농업경영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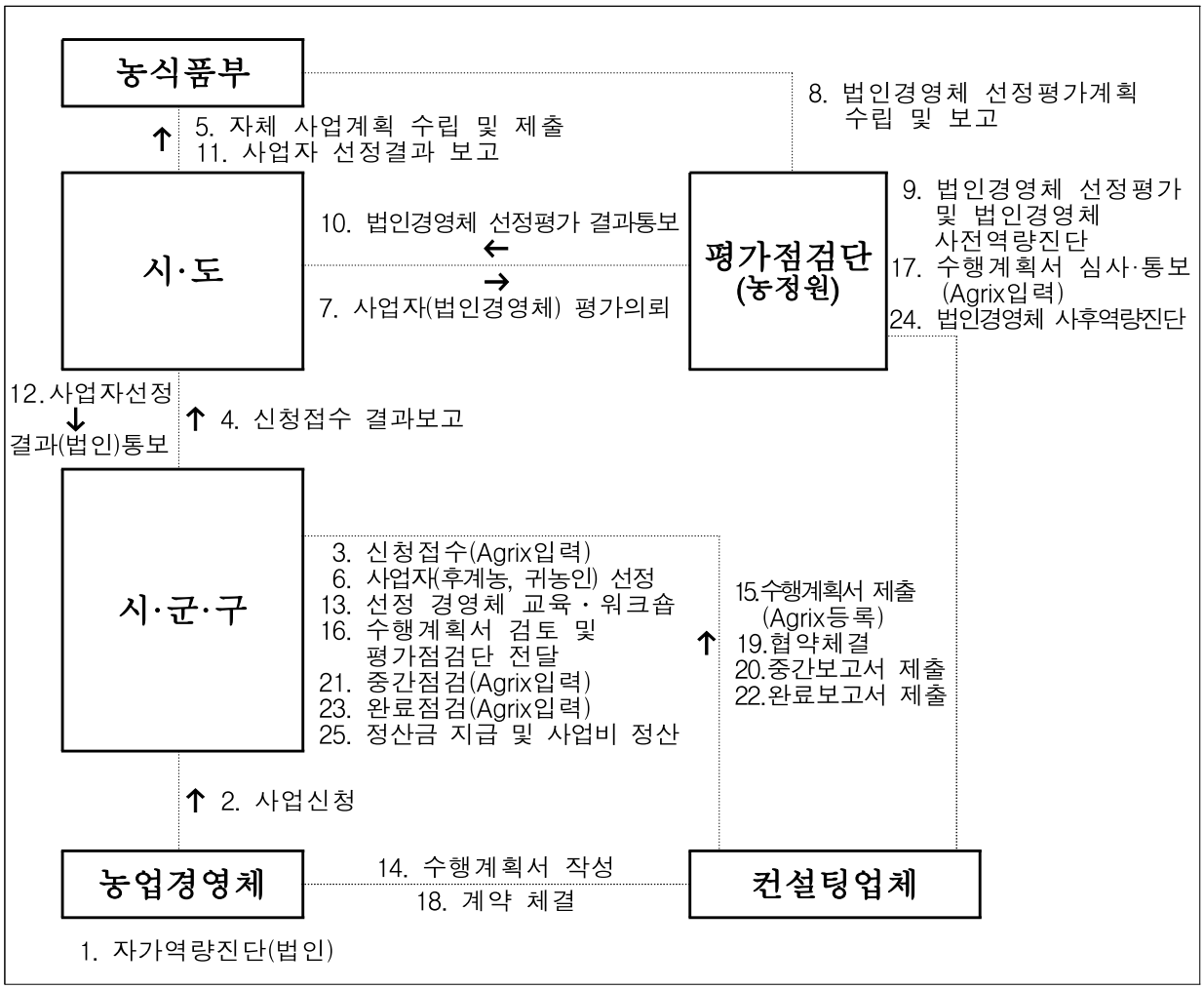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성과점검, 사업비 배정 ➡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채용인력 심사, 행정사항 수행, 자금신청·집행 ➡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사업정산

○ 농업법인취업지원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채용인력 매칭, 행정사항 수행, 자금신청·집행 ➡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사업정산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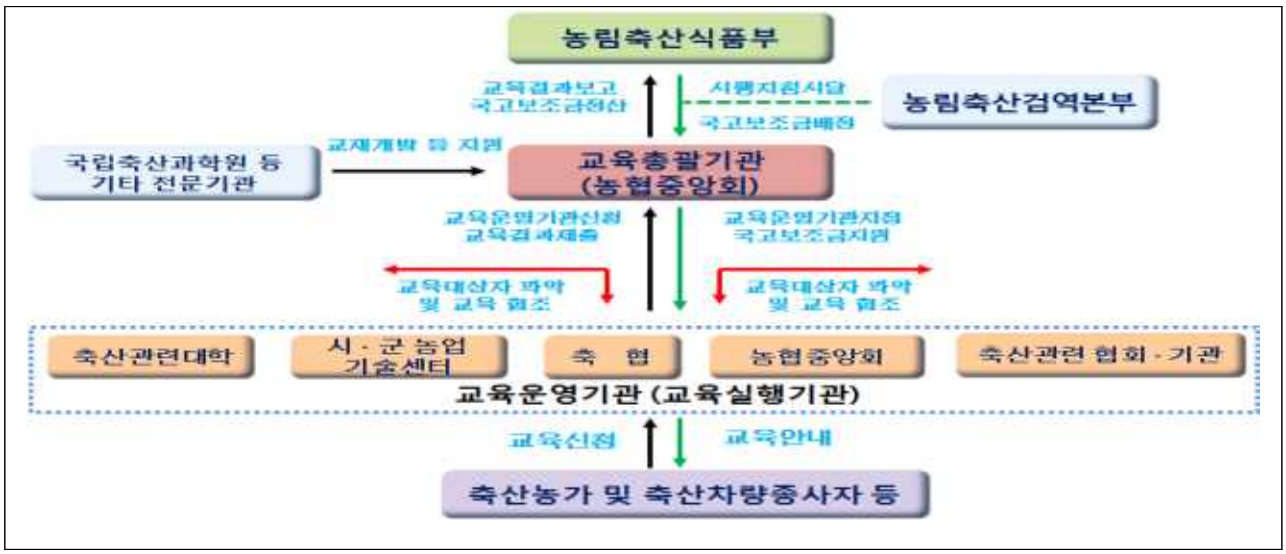

□ 도시농업활성화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홍보, 교육・인력양성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도시농업 정책홍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도시텃밭조성, 도시양봉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수립, 성과점검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사업관리・정산	➡	사업신청, 사행수행・정산

□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별 사업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별 사업기관
추진계획 수립, 예산배부, 이행・성과점검 등	➡	세부시행계획 수립· 예산 집행, 인턴 선발, 교육, 파견 등	➡	인턴 결과보고서, 수퍼바이저 평가서, 만족도 조사 등 사업 평가·개선 등

6. 농촌고용인력지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고용인력지원	-	2,400	2,400	-	-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100 - 1140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경영인력과장(강동윤), 사무관(신부선, ☏ 044-201-153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농협 인력중개센터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협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구인구직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사업기간	'18~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50개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국비 70%(농협중앙회 30%)
사업시행주체	농협중앙회(사업대상자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사무소)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50개소 운영 지원 사업비 2,400백만원

▪ 산출내역 : 2,400백만원(개소 당 68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70% × 50개소), 워크숍 비용 2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촌고용인력지원	**2,400백만원**	**2,400백만원**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68백만원 × 국고 70% × 50개소	68백만원 × 국고 70% × 50개소

□ 지원 필요성

○ 농가인구 감소 및 농촌고령화, 농업의 계절성으로 인한 농촌의 인력수급 어려움 극복을 위해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내에 전담상담원을 배치하고 구인·구직 알선 중개, 영농작업반 운영, 교통·숙박·수송지원, 교육·홍보 등을 통해 안정적 근로인력 공급을 통해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고용인력지원**	-	**2,400**	**2,400**	-	-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산출근거)	-	**2,400** (50개×68백만×70%)	**2,400** (50개×68백만×70%)	-	-
□ **비목**(합계)	-	**2,400**	**2,4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	**2,400**	**2,4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13)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실시
- ('16) 영농작업반 시범운영(15개소)
- ('17) 지자체 협력 시범사무소 확대 운영(36개소)
- ('18) 정부 협력 농촌인력중개센터 전국 50개소 확대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촌고용인력지원	-	-	-	-	-	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계획수립〉	〈사업추진 1〉	〈사업추진 2〉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본회)	시군지부·지역농협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본회)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사업계획검토 및 승인	➡ •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 총괄사업계획 수립	➡ • 사업계획서작성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	➡ • 인력중개사업현황 점검 • 성과평가 및 환류

참고 1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추진개요

1. 사업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2.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 사업대상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사무소 50개소

□ 사업규모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50개소 운영 지원*

* 총 사업비 34억(국비 24억 : 개소당 68백만원 × 50개소 × 70%)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70%, 농협중앙회 30%

<사업추진방향>

○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신속히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개시
- 센터내 전담인력 채용, 구인 농업인 등과 구직 농작업자(도시 및 지역 유휴인력, 귀농·귀촌자, 여성, 탈북민 등)간 중개 실시

○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등 운영전반 점검 실시(수시, 정기)

3. 지원 내용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상담원) 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구인농가) 현장실습교육비(2만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우선 중개

□ (농작업자) 교통비(5,000원), 숙박비(10,000원), 작업도구(토시, 장갑 등) 상해보험 무상 가입, 안전교육 등

7.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4,690	5,880	9,480	3,600	61.2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1100 - 115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사무관(배태현, ☏ 044-201-246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창업·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벤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 벤처 대상 정책 지원 원스톱 전달체계 및 민간투자 지원, 시제품 판매 및 판로 지원 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 벤처 대상 정책지원, 민간투자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창업·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기간	'16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운영(7개소), 기술평가지원(20개 내외 기술), 농산업체 판로지원(홍보판매관 운영 3개소), 농촌현장 창업보육(250개 업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운영,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운영
지원조건	국고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벤처기업협회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운영** :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기업의 접근성을 강화 및 원스톱 창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2,990백만원

▪ 산출내역 : (A+센터)420백만원×7개소, 창업정보망유지보수 50백만원 등 2,990백만원

* 사업확대: ('18) A+센터 5개소 → ('19) A+센터 7개소, 창업정보망 50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 : 농식품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젊은 인력을 발굴하는 등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200백만원

▪ 산출내역 : 행사 운영비, 홍보비 등 1,200백만원

○ **기술평가지원** : 민간 투자자본의 농식품 벤처 유입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및 은행 등 IP담보 대출, 보증용으로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지원비 **210백만원**

▪ 산출내역 : 20개 기술 내외 × 10~15백만원 × 90%(자부담 10%)

* 지원조건 변경 : ('18) 국고보조율 70% → ('19) 90%

○ **농산업체 판로지원** : B2C 및 B2B,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제품 판매관 추가 개소 및 제품기획·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및 네트워킹, 유통채널 연계, 수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960백만원

▪ 산출내역 : 운영비 및 인건비 960백만원

○ **농촌현장 창업보육** :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하여 보육센터 입주가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창업 보육 실시 **3,150백만원**

▪ 산출내역 : (창업기업) 20백만원 × 200개 기업 × 70%(자부담 30%), (예비창업) 10백만원 × 50개 기업 × 70%(자부담 30%) 등 3,150백만원

* 사업확대 : ('18) 100개 기업 → ('19) 예비창업자 50명 + 창업기업 200개

○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창업 초기 소요자금 모집 지원을 위한 사업비용 660백만원

▪ 산출내역 : 플랫폼 운영,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인센티브, 홍보, 후속 투자유치 데모데이 추진 등 660백만원

○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운영** : 농식품 분야에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고, 선배기업과의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용 310백만원

▪ 산출내역 : 인턴제 운영 및 50명 지원 31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5,880백만원**	**9,480백만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2,100 * 농식품벤처창업센터 5개소 운영비(420×5개소)	2,990 * 농식품벤처창업센터 7개소 운영비(420×7개소), 창업정보망 50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1,200 *창업콘테스트 운영 및 홍보비	1,200 * 창업콘테스트 운영 및 홍보비
▪기술평가	210 * 30개 기술, 자부담 30%	210 * 20개 기술 내외, 자부담 10%
▪농산업체판로지원	960 * 창업제품판매홍보관 2개소 운영	960 * 붐붐마켓 3개소 540, 추가개소 80, 입점지원 225, 박람회 115
▪농촌현장창업보육	700 * 100개 업체, 자부담 30%	3,150 * 200개×20백만×70%+50개x10백만x70%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400 * 플랫폼운영240+컨설팅80+홍보비80	660 * 플랫폼, 컨설팅, 홍보, 인센티브, 데모데이
▪농식품벤처창업 인턴제운영	310 * 50명×1.1×4개월+운영비90	310 * 50명×1.1×4개월+운영비90

□ 지원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부로 농식품 벤처 업무이관('11) 후 산업별 차별화된 접근 전략 미흡, 상대적으로 산업규모 영세, 전통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농식품 분야 창업 지원에 애로

- 따라서,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기술-자본-시장'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성장산업화 도모 필요

○ (기대효과) 젊고 창의적인 신규인력 농업계 유입 촉진, 농식품 벤처 비중 확대로 인한 농촌 일자리 창출, 농가 간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가 등의 효과 기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4,850	5,880	9,480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3,600	5,880	9,480		
-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1,980 (운영비 220백만×5개소+ 창업정보망480)	2,100 (5개×420백만×100%)	2,990 (7개×420백만+창업정보망 50)		
- 농식품창업콘테스트	400 (행사 운영비 230백만 + 상금 170)	1,200 (운영비1,030+상금170)	1,200 (콘테스트 운영 및 홍보비 등)		
- 기술평가지원	240 (30개×10백만 ×80%)	210 (30개×10백만원×70%	210 (20개 내외×10~15백만원×90%)		
- 농산업체판로지원	300 (운영비 150백만×2)	960 (붐붐마켓 운영 및 기타 판로지원)	960 (붐붐마켓 운영 및 기타 판로지원)		
- 농촌현장창업보육	640 (60개×10백만× 80%+40개×5 백만×80%)	700 (100개×10백만원×70%)	3,150 (200개×20백만×70%+50개×10백만×70%)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플 활성화 지원	440 (플랫폼 240백만 +컨설팅120 백만+홍보 80백만)	400 (농식품전용관운영 240+컨설팅지원비80 +홍보비80)	660 (플랫폼, 컨설팅, 홍보, 인센티브, 데모데이 등)		
-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	-	310 (50명×1.1백만×4 개월+운영비90)	310 (50명×1.1백만×4개월+운영비90)		
▪ 청년농산업창업지원	1,250	-	-		
□ 비목(합계)	1,250	5,880	9,480		
○ 민간경상보조(320-01)	-	5,880	9,48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25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1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

○ 추진경위

-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시 기술기반 농업분야 창업생태계 구축 방안 수립 추진(14.12.16)
- '농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안) 수립' 및 '창업생태계 조성 추진단(TF)' 구성·운영('14.12.22 ~)
- 벤처지원 관련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 보고('15. 1,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 기재부 주관, 농식품부·중기청·미래부 관계부처 합동TF에 농업분야 벤처창업 지원 대책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사업	-	-	-	49.6	48.5	58.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6년 불용) 기재부 예산 수시배정 심사시 청년농산업창업지원 내역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미배정(1,314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49.6 **(49.6)**	- (-)	- (-)	49.6 (49.6)	36.5 **(30.5)**	- (2.7)	13.1 (3.3)
'17년	48.5 **(4.85)**	- (2.7)	- (-)	48.5 (51.2)	48.5 **(48.4)**	- (0.6)	- (2.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지원

가. 미국

○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책의 핵심적 전략으로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s)와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법이 있음

○ 벤처기업 지원기관인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지원 프로그램인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운영

나. 이스라엘

○ 창업단계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외국 엔젤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엔젤 법(Angel Law)" 제정(2011년 발효)

○ Yozma펀드 프로그램, TNUFA 프로그램, Hezne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펀드 운영

다. 독일

○ 독일은 우수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전하였으나 벤처캐피털 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해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를 할 수 있는 금융 시장 육성을 위하여 1975년 독일벤처투자주식회사(WFG) 설립

라. 중국

○ 정부주도로 벤처집적 단지 조성, 창업보육센터 설립, 벤처투자자금 조성 등의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육성에 관여

○ 사회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 추진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실용화재단, 농금원, 벤처협회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사업지침 마련	➡	·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시행계획 수립 ·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세스 운영·관리 · 창업콘테스트 추진 · 후속 연계지원 사업 추진 ·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운영 · 관리	➡	· 센터 운영성과 검토 · 성과분석 및 후속지원 제도 기획 · 성과 환류 및 확산

8.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5,097	12,815	14,008	1,193	9.3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200 - 42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경영인력과장(강동윤), 사무관(홍근훈, ☏ 044-201-153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상담・정보제공・홍보 및 임시주거 제공, 융화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상담· 영농 체험 기회 제공 등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귀농·귀촌 교육 3,000여명,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귀농귀촌종합센터(상담·교육 등) 운영, 도시민농촌유치지원 58개 시·군 지원, 귀농인의 집 70개소 조성 등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고 70~100%, 자부담 0~30%, 지속지원), 지자체보조(국고 50%, 지방비 50%, 지속지원),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귀농귀촌 교육 : 예비 귀농귀촌인의 소양함양 교육 지원 사업비 3,961백만원

▪ (2018년) 3,561백만원(3,634명 × 1.4백만원 × 70%) + 200백만원(홍보, 평가 등) + 200백만원(온라인 강의 개발) → (2019년) 3,761백만원(3,838명 × 1.4백만원 × 70%) + 200백만원(홍보, 평가 등)

○ 청년귀농 장기교육 :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경영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류형 장기 실습 지원 교육비 808백만원

▪ (2018년) 교육비 392백만원(50명×11.2백만원×70%) + 창업컨설팅 12백만원(50명×0.08백만원×3회×100%) → (2019년) 교육비 784백만원(100명×11.2백만원×70%) + 창업컨설팅 24백만원(100명×0.08백만원×3회×100%)

* 물량확대 : ('18년) 8개소, 50명 → ('19년) 15개소, 100명

○ 귀농귀촌 박람회 : 귀농귀촌박람회 및 일자리 박람회 개최 700백만원

▪ (2018년) 귀농귀촌박람회 400백만원 → (2019년) 귀농귀촌박람회 400백만원, 일자리 박람회 300백만원

* 사업이관 : 일자리박람회 편입

○ 귀농귀촌 실태조사 : 실태조사 500백만원

▪ (2018년) 300백만원(귀농·귀촌 각 1,500가구 × 현지조사비 10만원) + 150백만원(장애인 귀농귀촌 실태조사 1,500명 × 현지조사비 10만원) + 50백만원(장애인 귀농귀촌 지원방안 연구 × 1식) → (2019년) 500백만원(귀농·귀촌 각 2,000가구, 장애인 1,000가구 × 현지조사비 10만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귀농귀촌 상담 및 정보 제공, 홈페이지 유지보수, 콜 시스템 운영, 임차료 등 센터 운영비 833백만원

▪ (2018년) 인건비 290백만원, 전문가 풀 80, 센터 운영비 430, 시스템 운영 131, 홍보 69 → (2019년) 전문가 풀 80, 센터 운영비 553, 시스템 운영 131, 홍보 69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시직 인건비 제외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 74개 시·군 사업비 5,500백만원

▪ (2018년) 5,400백만원(54개시군 × 200백만원 × 50%) + 100백만원(홍보, 평가 등) →

(2019년) 5,400백만원[(24개시군× 200백만원 × 50%) + (21개시군× 160백만원 × 50%) + (15개시군× 120백만원 × 50%) + (14개시군× 60백만원 × 50%)] + 100백만원(홍보, 평가 등)

* 신규 희망 시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주기별 지원률 차등으로 조건 변경 : ('18년) 시군별 2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19 요구) 1주기 200백만원, 2주기 160, 3주기 120, 4주기 이상 60

○ 귀농인의 집 : 농촌빈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주택 구입 70개소 조성 사업비 1,050백만원

▪ (2018년) 70개소 × 30백만원 × 50% → (2019년) 70개소 × 30백만원 × 50%

○ 귀촌인 농산업창업 지원(신규) : 귀촌인의 영농 및 농산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비 306백만원

▪ (2019년) 교육 196백만원(200명×1.4백만원 ×70%)+100백만원(교육과정 개발)+10(홍보)

○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신규) : 융화교육을 기존 지역민에 대해서도 확대하기 위한 융화교육비 350백만원

▪ (2019년) 70개 시·군×20개마을×0.5백만×5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2,815백만원	14,008백만원
▪ 청년귀농장기교육	404 (50명×11.2백만원×70%)	808 (100명×11.2백만원×70%)
▪ 귀농귀촌박람회	400 (귀농귀촌박람회 400)	700 (귀농귀촌박람회 400, 일자리박람회 300)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1,000 (인건비 290백만원, 전문가 풀 80, 센터 운영비 430, 시스템 운영 131, 홍보 69)	833 (전문가 풀 80, 센터 운영비 553, 시스템 운영 131, 홍보 69)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5,500 (54개시군 × 200백만원 × 50%)	5,500 (24개시군× 200백만원 × 50%) + (21개시군× 160백만원 × 50%) + (15개시군× 120백만원 × 50%) + (14개시군× 60백만원 × 50%)
▪ 귀촌인 농산업창업 지원	-	306 교육196백만원(200명×1.4백만원×70%) +100백만원(교육과정 개발)+10(홍보)
▪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	350 (70개 시·군×20개마을×0.5백만원×50%)

□ 지원 필요성

○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 인구 과소화에 따른 농촌 소멸,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최적의 정책수단임

- 농촌 인구는 지속 감소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중 89개(39%, '18년 기준)가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18.7월 고용동향브리프)

* 소멸위험 지역 : '13년 75개 → '18년 89개로 확대

○ 또한,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연평균 0.8%, 70세 이상은 연평균 2.4% 증가하고 40세 미만 농가인구는 연간 6.8%씩 감소하는 추세(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 2018」)

* (40세 미만) ('00) 37% → ('15) 20.3% (65세 이상) ('00) 21.7% → ('15) 38.4%

* 경영주 평균 연령 : 58.3세('00) → 65.6세('15)

○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귀촌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17년에는 한해에만 50만명 이상이 농촌으로 이주하였으며, 이중 2만여명이 농업에 새롭게 종사

* 귀농귀촌 인구(귀농): ('13) 422,770(17,318) → ('17) 516,817(19,630)

- 특히, 귀농가구 중 젊은 층과 여성가구주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분야에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에 기여

* 귀농가구주 중 40세 미만, 여성 비율(%): ('15) 9.6, 30.6 → ('16) 10.4, 32.2 → ('17) 10.5, 32.9

○ 아울러, 귀농·귀촌에 실패하여 도시로 재이주(역귀농)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귀농·귀촌의 동기와 유형, 정착과정, 정착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역귀농 실패 예방과 안정적으로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책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정책임

* '09년 전국 귀농 4,080세대 중 221가구(약 5.4%) 역귀농(2012 국정감사자료)

* 귀농·귀촌인 대상 재이주 의향 조사 결과(약 9.6%)(김철규· 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

- 대부분의 농촌지역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등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15,097	12,815	14,008	1,193	9.3
▪ 귀농귀촌 교육 (산출근거)	5,058	3,961 3,561백만원(3,634명×1.4백만원×70%) + 200백만원(홍보, 평가 등) + 200백만원(온라인 강의 개발)	3,961 3,761백만원(3,838명×1.4백만원×70%) + 200백만원(홍보, 평가 등)	-	-
▪ 청년귀농 장기교육 (산출근거)	-	404 (교육 50명 × 1,120만원 × 70%, 귀농창업 지원 40명 × 귀농닥터 3회 × 10만원)	808 (100명×11.2백만원×70%)	404	100.0
▪ 귀농귀촌 박람회 (산출근거)	400	400 (200백만원×2회)	700 (귀농귀촌박람회 400, 일자리박람회 300)	300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산출근거)	1,089	1,000 (운영비, 전문가풀 등)	833 (전문가 풀 80, 센터 운영비 553, 시스템 운영 131, 홍보 69)	△167	△16.7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산출근거)	5,500	5,500 (54개소×200백만원×50%) + 100백만원(평가,사업추진)	5,500 (24개시군×200백만원×50%) + (21개시군×160백만원×50%) + (15개시군×120백만원×50%) + (14개시군×60백만원×50%)	-	-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산출근거)	2,000	-	-	-	-
▪ 귀농인의 집 (산출근거)	1,050	1,050 (70개×30백만원×50%)	1,050 (70개소×30백만원×50%)	-	-
▪ 귀농귀촌 실태조사 (산출근거)	-	500 300백만원(귀농귀촌 3,000가구×10만원) + 150백만원(장애인 귀농귀촌 1,500가구×10만원) + 50백만원(장애인 귀농귀촌 지원방안 연구)	500 (귀농귀촌 각 2,000가구, 장애인 1,000가구 × 현지조사비 10만원)	-	-
▪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산출근거)	-	-	306 교육 196백만원(200명×1.4백만원×70%) + 100백만원(교육과정 개발) + 10(홍보)	306	순증
▪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산출근거)	-	-	350 (70개 시·군×20개마을×0.5백만원×50%)	350	순증
□ 비목(합계)	15,097	12,815	14,008	1,193	9.3
○ 일반수용비(210-01)	6	6	6	-	-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 민간경상보조(320-01)	6,637	6,355	7,198	843	13.3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450	6,450	6,800	350	5.4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000	-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07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
- '09년 4월 귀농귀촌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본격 추진
- '10년 3월부터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 실시
- '12년 3월부터 농촌진흥청에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소 및 운영
- '13년 1월 귀농인 지원근거 마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3년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시행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 '14년 7월 귀농귀촌종합센터 서울 이전 개소 및 운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기존 농촌진흥청 운영)

- '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14.12.29) 및 공포('15.1.20), 시행('15.7.21)

- '16년 11월 2017~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 국정과제 : 83-1.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활성화’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추진
- 대통령 공약 :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152	159	145	166	146	12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6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700백만원 편성, 예산 173억원 전액 집행, 이·불용 없음

○ ‘17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529백만원 편성, 예산 151억원 전액 집행, 이·불용 없음

○ ‘18년 예산 128억원 전액 집행, 이·불용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5 **(145)**	65 (153)	- (-)	210 (298)	210 **(238)**	- (56)	- (4)
’16년	173 **(173)**	- (56)	- (-)	173 (229)	173 **(127)**	- (94)	- (9)
’17년	151 **(151)**	- (94)	- (-)	151 (244)	151 **(200)**	- (36)	- (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통합재정사업평가 : (‘16) 보통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농식품부(농정원)와 농촌진흥청이 중복으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폐합을 추진 필요(2014년 국정감사시)
- 청년 귀농인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T/F를 조직하여 종합 지원하는 방안 필요(2015년 국정감사시)
- 귀농인의 범위에 수도권 시(읍·면 지역)에서 타 지역 군(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농업인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2015년 국정감사시)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귀농·귀촌 교육사업에 대하여 국회에서 중복성 지적 등 역할 분담 필요성을 제기하여 기관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
- 2017~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16.9월)
-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영농창업 지원 근거 마련('18.12.7 법률 개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지자체보조(도시민농촌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부·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이행, 성과점검 등	➡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실적 점검, 자금 정산

□ **민간경상보조(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농정원		농식품부·농정원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이행, 성과점검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 지원	➡	사업 추진실적 점검, 자금 정산

양 곡 관 리

1. 논타작물재배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논타작물재배지원	-	136,829	150,479	13,650	10.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100 - 2110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식량산업과장(김정주), 사무관(송재원, ☏ 044-201-18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논 타작물 재배시 단위면적당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논에 벼 이외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기존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단위 면적당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사업기간	'18~'19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8년) 5만ha, ('19년) 5.5만ha
지원조건	▪ 소득보전 : 국고 80%, 지방비 20% ▪ 이행점검 :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군) / 농관원(이행점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 150,479백만원

(소득보전) 149,600백만원

- 5.5만ha×340만원/ha×보조율(80%)=149,600백만원

* 사업규모 증가 : (‘18) 5만ha → (‘19년) 5.5만ha

(이행점검) 879백만원

- 조사원 일용임금 : 68명×8,350원/시간×8시간/일×26.5일/개월×6개월 =722백만원
- 조사원 일반수용비 : 68명×205천원/개월×6개월=83백만원
- 조사원 고용부담금 : 일용임금×10.26%=74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논타작물재배지원	**136,829백만원**	**149,600백만원**
▪ 소득보전	5만ha, 136,000백만원	5.5만ha, 149,600백만원
▪ 이행점검	829백만원	87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생산감소 쌀 생산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발생

* 벼 재배면적 : (’05) 1,244천ha → (’10) 892 → (’18) 738

* 단위면적당 생산량 : (’05) 490kg/10a → (’10) 483 → (’18) 524

* 1인당 소비량 : (’05) 80.7kg → (’10) 72.8 → (’17) 61.8

-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격리 등 단기·사후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정부재고 및 재정투입 등의 문제 제기

* ’17 양곡연도말(10월말) 쌀 재고는 186만톤으로 전년(170만톤) 대비 9.4% 증가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전환과 같은 사전적 생산감축 노력이 필요

- 최근 지속적 쌀값 상승*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농가의 타작물 재배유도가 중요

* 산지 쌀값 : (‘17. 수확기) 153,213원/80kg → (‘18.12.15) 193,300(‘17. 수확기 대비 26.1% 상승)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	136,829	150,479	13,650	10.0
▪ 소득보전 (산출근거)	-	136,000 (5만ha×340만원/ha ×80%)	149,600 (5.5만ha×340만원/ha×80%)	13,600	10.0
▪ 이행점검 (산출근거)	-	829 (일용임금 641, 일반수용비 123, 고용부담금 65)	879 (일용임금 722, 일반수용비 83, 고용부담금 74)	50	6.0
□ 비목(합계)	-	136,829	150,479	13,650	10.0
○ 지자체경상보조(330-01)	-	136,000	149,600	13,600	10.0
○ 일용임금(110-04)	-	641	722	81	12.6
○ 일반수용비(210-01)	-	123	83	△40	△32.5
○ 고용부담금(320-09)	-	65	74	9	13.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하략)

- 공약 86 : ‘쌀 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 1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

- 국정과제 82-1 :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쌀 수급안정

○ 추진경위

- ’15.12. ‘중장기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수급균형 필요성 및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성 제기

* 식량정책포럼(12.3), KREI 토론회(12.10), 의견수렴 간담회(12.14) 등

- ’15.12.31.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에서 조속한 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17년 생산조정제 도입 검토

- ’16.2~12. 논 타작물 재배지원(생산조정제) 도입 등을 위한 부내·유관기관(KREI, 농협, 농진청, 종자원 등) 의견수렴(9회)

- ’17.4~8.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추진

- ‘17.12.26.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지침 수립·시달

- ‘18.1.22.~7.15 사업 신청 접수, 10.31.까지 농관원 이행점검 실시

-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보완대책 마련(5회, 2.23, 3.15, 4.3, 5.28, 7.6)

- ‘18년 사업 목표 5만ha 중 31,125ha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26,550ha가 타작물 재배 이행(이행률 85.3%), 4,640ha 미이행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논타작물재배지원	-	-	-	-	-	1,36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타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보조금 단가를 인상하고, 배수개선 등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증액 필요('18년 상임위, 예결위 안상수 위원, 박완주 위원, 서삼석 위원, 정운천 위원, 조정식 위원, 김현권 위원)

○ '18년 사업 실적이 저조하며, 벼 농사의 수익성이 높아질 경우 타작물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아 감액 필요('18년 예결위 조경태, 김승희 의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쌀 생산 집중 완화를 위해 쌀 변동직불('14년산 이후) 및 고정 직불('18년산 이후)을 폐지하고, 사료용·쌀가루용 쌀 등을 중심으로 논활용직불(전작보조금) 증액

구분	개혁 이전(~2013년)	개혁 이후(2014년 이후)
논 활용 직불 (전작 보조금)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에 대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직불금으로 지급 -80천엔/10a(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35천엔/10a(맥류, 대두, 사료작물) -20천엔/10a(메밀, 유채, 가공용 쌀)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에 대해 단수에 비례해 직불금이 달라지는 수량직불로 변경 -55천~105천엔/10a(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80천엔/10a(벼발효 조사료용 쌀) -35천엔/10a(맥류, 대두, 사료작물) -20천엔/10a(가공용 쌀)

(5) 사업추진절차

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계획수립·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②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계획수립 : 시·도 및 시·군·구

↓

③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읍·면·동)

↓

④ 사업추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⑤ 실적 평가 및 환류 : 농식품부, 시·도

2. 들녘경영체육성(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들녘경영체육성	10,911	11,216	13,702	2,486	22.2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100 - 213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식량산업과장(김정주), 사무관(정순일, ☏ 044-201-183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지, 인력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조직화 촉진 지원) 조직관리, 재배기술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공동육묘장 등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산물 등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를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 쌀 선도경영체, RPC 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브랜드 쌀 홍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09~'18년) 교육·컨설팅 지원 621개소, 시설·장비 지원 198개소, 사업다각화 27개소 등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다각화 지원 :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RPC 교육・홍보·컨설팅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 국고 50%, 자부담 50% ▪ 교육훈련 위탁기관 운영비, 성과확산, 평가·점검 :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물량×평균단가×보조율)

○ ’18년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13,702백만원

(조직화 촉진 지원) 8,250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 100개소×30백만원×50%=1,500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들녘) : 40개소×200백만원×50%=4,000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잡곡) : 11개소×500백만원×50%=2,750백만원

(사업다각화 지원) 4,367백만원

- 들녘, 3년차 : 4개소×721백만원×40%=1,154백만원
- 들녘, 2년차 : 5개소×470백만원×40%=940백만원
- 들녘, 1년차 : 7개소×526백만원×40%=1,473백만원
- 잡곡, 1년차 : 4개소×500백만원×40%=800백만원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465백만원

- 교육훈련 사업비 : 국내 4천명×23만원×50%=460백만원
- 위탁기관 운영비 : 460백만원×1%=5백만원, 국고보조 100%

(성과확산) 400백만원, 국고보조 100%

- 들녘경영체 설명회·워크숍, 실태조사,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운영·관리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획과제 사업비·경비 400백만원

(평가·점검) 100백만원, 국고보조 100%

- 잡곡단지조성 등 밭식량작물 관련 사업평가·점검 등 100백만원

(RPC 교육·홍보·컨설팅) 120백만원

- RPC 교육·홍보·컨설팅 : 8개소×50백만원×30%=12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들녘경영체육성	**11,216백만원**	**13,702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조직화 촉진 지원	3,500백만원	8,250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1,000백만원 (80개소×25백만원×50%)	1,500백만원 (100개소×30백만원×50%)
· 시설·장비 지원(들녘)	2,500백만원 (25개소×200백만원×50%)	4,000백만원 (40개소×200백만원×50%)
· 시설·장비 지원(잡곡)	-	2,750백만원 (11개소×500백만원×50%)
▪ 사업다각화 지원	6,800백만원	4,367백만원
· 사업다각화 지원(들녘)	6,800백만원 (10개소×800백만원×40%+12개소×500백만원×40%+5개소×600백만원×40%)	3,567백만원 (4개소×721백만원×40%+5개소×470백만원×40%+7개소×526백만원×40%)
· 사업다각화 지원(잡곡)	-	800백만원 (4개소×500백만원×40%)
▪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536백만원	465백만원
· 교육훈련	510백만원 (국내 4천명×23만원×50%+국외 40명×2.5백만원×50%)	460백만원 (국내 4천명×23만원×50%)
· 운영비	26백만원 (교육훈련 510백만원×5%×100%)	5백만원 (교육훈련 460백만원×1%×100%)
▪ 성과확산	200백만원 (워크숍 등 사업비 200백만원×100%)	400백만원 (워크숍 등 사업비 400백만원×100%)
▪ 평가·점검	-	100백만원 (평가 등 사업비 100백만원×100%)
▪ RPC교육·홍보·컨설팅	180백만원 (12개소×50백만원×30%)	120백만원 (8개소×50백만원×30%)

□ 지원 필요성

○ 농촌·농업의 고령화·부녀화, 식량수급 불균형 등으로 발생한 문제해소 및 기존 논 농업 중심에서 밭농업을 포함한 전략적 지원 필요

- 기 확인된 들녘경영체(쌀)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의 육성효과를 밭식량작물(맥류·두류·서류 포함, 찹쌀·흑미 등 미곡 제외) 분야까지 확산

* 전국 논벼 재배농가의 직접생산비 대비 들녘경영체의 직접생산비 절감효과 16.0%, 대형농기계 도입 등으로 농작업 능률향상·품질제고, 영농후계자 확보(’17년 실태조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들녘경영체육성	10,911	11,216	13,702	2,486	22.2
▪ 조직화 촉진 지원	4,465	3,500	8,250	4,750	135.7
- 교육·컨설팅 지원	1,000	1,000 (80개×25백만원×50%)	1,500 (100개×30백만원×50%)	500	50.0
- 시설·장비 지원(들녘)	3,465	2,500 (25개×200백만원×50%)	4,000 (40개×200백만원×50%)	1,500	60.0
- 시설·장비 지원(잡곡)	-	-	2,750 (11개×500백만원×50%)	2,750	순증
▪ 사업다각화 지원	5,432	6,800	4,367	△2,433	△35.8
- 사업다각화 지원(들녘)	5,432	6,800 (10개×800백만원×40%+12개×500백만원×40%+5개×600백만원×40%)	3,567 (4개×721백만원×40%+5개×470백만원×40%+7개×526백만원×40%)	△3,233	△47.5
- 사업다각화 지원(잡곡)	-	-	800 (4개×500백만원×40%)	800	순증
▪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604	536 (국내 4천명×23만원×50%+국외 40명×2.5백만원×50%+운영비 26백만원×100%)	465 (국내 4천명×23만원×50%+운영비 5백만원×100%)	△71	△13.3
▪ 성과확산	200	200 (200백만원×100%)	400 (400백만×100%)	200	100.0
▪ RPC 교육·훈련·컨설팅	210	180 (12개×50백만원×30%)	120 (8개×50백만원×30%)	△60	△33.3
▪ 평가·점검	-	-	100 (100백만원×100%)	100	순증
□ 비목(합계)	10,911	11,216	13,702	2,486	22.2
○ 민간경상보조 (320-01)	804	736	965	229	31.1
○ 지자체경상보조 (320-01)	1,210	1,180	1,620	440	37.3
○지자체자본보조 (330-03)	8,897	9,300	11,117	1,817	19.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 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지자체 등에서 한·미 FTA 등 쌀 개방에 대비 조직화·집단화를 위한 들녘별 경영단지 육성·지원 요구 등을 검토, ’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규모화로 발생한 인력·농지 등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 벼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다각화’를 ’16년부터 신규 지원

-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 식량작물 생산 확대 및 수급안정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식량작물 분야를 ‘19년부터 신규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들녘경영체육성	10	25	45	108	111	1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시설·장비 지원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565백만원 발생

○ ('16년) 사업다각화 지원 신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준비 미흡 및 들녘경영체의 수요 부족으로 불용액 1,550백만원 발생

○ ('17년)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비 심의에 따른 집행잔액 203백만원 발생

* 사업다각화 지원 168백만원, 시설·장비 지원 35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5	-	-	45	39.4	-	5.6
	(39.4)	(6.6)	(-)	(46)	(38.5)	(6.2)	(1.3)
'16년	108.1	-	-	108.1	92.6	-	15.5
	(92.6)	(6.3)	(-)	(98.9)	(50.9)	(43.4)	(4.6)
'17년	111.1	-	-	111.1	109.1	-	2.0
	(109.1)	(43.4)	(-)	(152.5)	(95.0)	(53.1)	(4.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 : 보통, 90.0점

- 평가사업명 : 식량생산유통지원(들녘경영체육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 '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정상추진, 86.5점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방안 필요('16·'17 회계연도 결산 국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은 집단적·조직적 농작업 및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농업경영법인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

- 1970년 농지법 개정, 1975년 농용지이용증진법 제정 및 1980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제정하여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추진

○ EU는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의 특성을 살린 농업정책을 추진

- 농업·환경정책을 통합,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의 다각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CAP('57년), Neo CAP('92), New CAP('00~현재)를 추진

- 프랑스의 경우, '61년 농업기본법 제정 및 공동농업정책 시행, '80년·'99년 농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공동농업경영단을 제도적으로 도입·육성하고 타 산업부문과 동등한 경영체로서의 법적지위 확보 및 특수경영체로 인정

(5) 사업추진절차

집행과정	시기	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접수	전년도 3월말	시장·군수	· 신청인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신청 병행
⇓			
사업자 추천	전년도 5월말	시·도지사	· 평가·사업자 선정 심의 등을 거쳐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자 평가 및 선정	전년도 6~8월	농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외부위원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발표 평가 등을 시행
⇓			
사업자 확정 및 예산배정	전년도 12월	농식품부	· 최종 확정된 사업자 등을 지자체에 통지
⇓			
사업지도 감독 및 사업비 집행	당해연도 1~10월	농식품부	· 지자체에 예산 배정·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당해연도 2~12월	시·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및 시·군 등의 현장점검
⇓			
사업비 정산	익년도 1월	시·군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지자체 사업비 정산

3.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4,490	14,370	14,340	△30	△2.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100 - 2131 - 430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식량산업과장(김정주), 사무관(정순일, ☏ 044-201-183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PC 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저장시설 및 쌀산업기여도평가 지원을 통해 쌀의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및 쌀산업 대내외 경쟁력 향상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노후화된 RPC 가공시설의 현대화, RPC 및 DSC의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
사업기간	'95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95~'18년) 쌀브랜드육성 61개소, 건조·저장시설 1,481개소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고품질쌀브랜드육성)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국고30·40%, 지방비20, 자부담50·40 ○ 민간보조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9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비 : 14,340백만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노후화된 가공시설의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6,000백만원

- 브랜드육성 : 5개소 × 3,000백만원 × 보조율(40%) = 6,000백만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농업인의 편의증진 도모 및 우리 쌀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비 7,950백만원

- 통합RPC : 15개소 × 900백만원 × 40%(보조율) = 5,400백만원
- 일반RPC : 8개소 × 600백만원 × 30%(보조율) = 1,440백만원
- 저온저장고 : 9개소 × 300백만원 × 40%(보조율) = 1,110백만원

○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RPC 쌀산업기여도평가를 위한 사업비용 39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4,370백만원**	**14,340백만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5개소, 4,500백만원	5개소, 6,000백만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35개소, 9,480백만원 (통합 15개소, 일반 8개소, 저온 9개소)	35개소, 7,950백만원 (통합 15개소, 일반 8개소, 저온 9개소)
▪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390백만원	39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포장·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비용절감, 품질향상 및 효율적 유통 기반 구축

- 가공시설 현대화로 쌀 가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수취 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 구입가격은 인하할 수 있어 물가안정에 기여

- 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고품질쌀 공급 및 유통여건을 확충하고, 개방에 대비한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 필요

○ RPC 대부분 설치된지 1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고품질쌀 생산에 한계 봉착

○ 또한, 쌀의 가치를 높이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이고 규모화된 가공시설 구비가 필요

- 기존 RPC의 경우 가공시설과 포장시설 등이 분리되지 않고, 가공 과정에서 쌀이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등 위생상 문제점 노출

- 쌀 개방화 이후 우리쌀의 수출까지 고려한다면 생산시설 현대화는 필요

○ 추곡수매제도 폐지 이후, 수확기 농가벼 매입기능을 RPC가 대신하고 있으나 건조·저장시설 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 발생

- 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야적발생으로 쌀 품질 저하가 발생하며 수확기 일시에 쏟아지는 농가벼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쌀값 폭락 등 농촌사회 문제 발생

- RPC(DSC 포함)가 '16년산 벼 2,744천톤(벼 유통량의 67.8%)을 매입했으나 건조·저장시설 부족으로 야적 발생

○ 또한, 농촌인력 고령화로 수확 후 건조·운반 등 농업인이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도로변 건조로 사고 및 도난 위험에도 노출

- 농가가 직접 벼를 건조할 경우 과건(過乾)·급건(急乾)의 우려가 있으며, 고품질쌀 생산에도 곤란

<사진1> 도로변 건조	<사진2> RPC 벼 매입을 위해 대기 모습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4,880	14,370	14,340	△30	△0.2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산출근거)	4,500	4,500 (5개×3,000백만×30%)	6,000 (5개×3,000백만×40%)	1,500	33.3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산출근거)	9,990	9,480 (15개×900백만×50%) (8개×600백만×30%) (9개×300백만×50%)	7,950 (15개×900백만×40%) (8개×600백만×30%) (9개×300백만×40%)	△1,530	△16.1
▪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산출근거)	390	390	390	-	-
□ 비목(합계)	14,880	14,370	14,340	△30	△0.2
○ 민간경상보조 (320-01)	-	390	390	-	-
○ 지자단체자본보조 (330-03)	14,490	13,980	13,950	△30	△0.2
○ 일반연구비 (260-01)	390	-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2조

-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 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95년부터 벼 수확후 건조·저장·포장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
- ’07년부터 우리쌀의 고품질 브랜드 육성 및 수입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시작
- ’14년부터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융자(벼 매입자금 지원) 자금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 ‘14년부터 밀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주요곡물육성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255	121	152	149	149	14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 : RPC 경영평가 용역업체 선정 낙찰차액

○ ‘16년, 17년 이월 : RPC 경영평가 미종료에 따른 이월

○ ’17년 불용 : RPC 경영평가 용역업체 선정 낙찰차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1.95**	-	-	151.95	**151.76**	-	0.19
	(151.76)	(66.55)	(-)	(218.31)	**(115.5)**	(102.34)	(0.47)
’16년	**148.8**	-	-	148.8	**144.9**	3.9	-
	(144.9)	(102.34)	(-)	(247.24)	**(189.8)**	(54.64)	(2.8)
’17년	**148.8**	3.9	-	152.7	**150.9**	1.5	0.3
	(144.9)	(54.64)	(-)	(199.54)	**(135.43)**	(64.01)	(0.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필요(2016회계연도 결산국회)

○ 2016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 보통(90.0점)

- 평가사업명 : 식량생산유통지원(들녘경영체육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정상추진(86.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경우, 벼 중심 곡물 공동 건조·저장·제현·포장 시설(CE, Country Elevator)에 대해 설치 지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7.4억엔 규모)

* CE의 역할 : 공동처리시설을 통한 생산조직화 도모(작부체계 통일 등), 생산시설 과잉투자 방지로 생산비 절감, 산물형태 유통으로 유통비용 절감 등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 사업자 → 시장·군수
↓		
■ 사업자 추천	: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식품부
↓		
■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	•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 사업자 확정 및 예산배정	:	• 농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		
■ 사업지도감독 및 사업비 집행	:	•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 지도반 편성 운영 •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 사업완료	:	• 사업비 정산

4. 수입양곡대(의무, 계속)

< 양특회계 - 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입양곡대	357,026	386,905	379,567	△7,338	△1.9

* 사업코드 : 20 - 51 - 01 - 100 - 101 - 2100 - 213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식량정책과장(전한영), 서기관(양지연, ☏ 044-201-182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5년 쌀 관세화 이후 TRQ 쌀(연간 408,700톤)의 지속적 수입 필요

* '95～'14년까지 관세화 유예 대가로 WTO와 약정한 의무수입물량을 저율할당관세물량(TRQ)로 확정하여 수입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15년 쌀 관세화 이후 WTO 규정에 따라 연간 409천톤의 TRQ 쌀 지속 수입 필요
사업기간	· '95년 ~ 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409천톤('14년분 의무수입물량) → 매년 쌀 409천톤 수입 · 최근 5년간('14~'18) 17,032억원(누적)/3,406억원(평균)
지원조건	· 직접수행,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4년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라, '14년분 의무수입물량(409천톤)이 저율할당관세물량(TRQ)으로 확정되어 '15년 관세화 이후에도 지속 도입해야 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19: 379,567백만원) 필요

- 최근 TRQ 쌀 도입단가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예산 소요를 감안하여 전년수준 요구(△1.9%)

▪ 수입양곡대 379,167백만원 : ('18) 386,505백만원 → ('18) 379,167

* 산출내역 : 408,700톤(도입물량, 백미) × 843.4$/톤(최근 10개년 평균 도입단가) ×1,100원/$(환율) - 338천원(조정)

< 수입쌀 최근 10년('08~'17) 평균 도입단가(가중평균) >

(백미기준, 단위 : US $/톤, 천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중평균
밥쌀	682	1,079	851	952	888	854	824	1,007	943	674	801.5	827.3
도입량	47	63	80	98	104	110	117	123	60	50	40	*계:852
가공	679	997	774	795	822	762	801	816	890	813	808.5	897.1
도입량	182	224	227	229	244	258	261	286	349	359	369	*계:2,619
계 *가중평균	680	1,015	794	842	842	790	808	874	897	796	807.8	**843.4**

▪ 양곡류 해외시장조사비 400백만원 : ('18) 400 → ('19) 400

* 우리나라가 '14.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에 대해 5개국이 이의제기를 하였음. '15년부터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WTO 규범에 맞는 TRQ 운영도 검증협의의 중요한 고려요소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수입양곡대	**386,905백만원**	**379,567백만원**
▪ 수입양곡대	386,505 ·408,700톤×836.9$/톤×1,130원/$ -1,364천원	379,167 · 408,700톤×843.4$/톤×1,100원/$ -338천원
▪ 양곡류 해외 시장조사비	400 · 해외쌀 시장조사 23 · 해외 곡물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377	400 · 해외쌀 시장조사 23 · 해외 곡물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377

□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 쌀은 개도국으로서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94년 UR협상 및 '04년 협상을 통해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의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음

*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 협상 결과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WTO 가입국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함

○ '14년말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었으나 관세화 직전(유예완료연도)의 의무수입물량(MMA)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확정되어 수입해야 함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양곡관리법」에 따라 TRQ 쌀은 국영무역으로 운영하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입양곡대	357,026	386,905	379,567	△7,338	△1.9
▪ 수입양곡대 (산출근거)	356,626	386,505 (408,700톤×836.9$/톤 ×1,130원/$-1,364천원)	379,167 (408,700톤×843.4$/톤 ×1,100원/$-338천원)	△7,338	△1.9
▪ 양곡류 해외시장조사비 (산출근거)	400	400	400 (해외쌀 시장조사 23, 해외곡물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377)	-	-
□ 비목(합계)	357,026	386,905	379,567	△7,338	△1.9
○ 민간경상보조(320-01)	400	400	400	-	-
○ 저장품매입비(430-020)	356,626	386,505	379,167	△7,338	△1.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법령상 근거)

- '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 WTO 이행계획서 양허표 LX-대한민국('04년 쌀 협상문) >

- **제1부(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농산물) 제1-B절(관세할당)**

① 제3열 및 제4열에 명시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매년 균등하게 증가한다.

② **(쌀에 대한 특별대우의 검토)**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로 10년간 연장된다. 제5년차에 이의 이행에 관한 다자간 검토를 실시한다.

③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할당)**

3.1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 20만5,228톤(정곡기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다음 회원국들에게 할당된다(국별쿼타). 중국 11만6,159톤(정곡기준), 미국 5만76톤(정곡기준), 태국 2만9,963톤(정곡기준), 호주9,030톤(정곡기준)

3.2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총량쿼타). 제한된 물량이 특수한 용도의 쌀에 대한 국내수요를 위하여 할당될 수 있다.

3.3 이행기간중 특별대우가 중단되는 경우나 이행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상기 국별쿼타 총물량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총량쿼타가 적용된다.

④ **(이행기간중 특별대우가 중단되는 경우)**

4.3 **대한민국은 특별대우가 중단된 이후에는 특별대우가 중단된 시점에서 유효한 최소시장접근 물량 수준을 유지한다.** 특별대우가 중단된 시점에서 유효한 최소시장접근 물량 수준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 해당 물량 수준이 상응하지 않으면 이중 더 높은 수준의 물량을 적용한다.

- '14년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aganization)」에 따른 대한민국 이행계획서 수정안

< WTO 이행계획서 LX-대한민국>

-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시장접근분야, 할당물량 및 관세
UR 이행계획서 3항 및 WT/Let/492 문서 제1~6항의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특별조치 종료 후 관련품목의 현행 MMA물량은 유지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수입기관의 지정)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수입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 양곡관리법 제11조(양곡의 수출입), 제24조(업무대행),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양곡관리법 >

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제24조(업무대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4년 UR 농업협상 시 쌀에 대한 관세화(시장개방)를 10년간('95~'04) 유예하고, 그 대가로 매년 국내소비량의 1~4%에 상당하는 MMA(최소시장 접근물량) 쌀을 의무수입

  * ('95) 51천톤 → ('04) 205천톤(백미 기준)

- '04년 쌀 협상시 관세화를 10년간('05~'14) 추가로 유예하고, MMA 쌀을 '14년까지 의무수입

  * ('05) 226천톤 → ('14) 409천톤(백미 기준) ⇒ 매년 2만톤씩 증량

- '14년 말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에 따라 '15년부터 '14년 관세화 유예 마지막년도 의무수입물량인 409천톤을 저율할당관세물량(TRQ)로 확정하여 지속 수입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수입양곡대	3,270	3,282	3,058	3,253	3,570	3,8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058 (3,058)	- (-)	- (-)	3,058 (3,058)	**3,058** **(3,058)**	- (-)	- (-)
'16년	3,253 (3,253)	- (-)	- (-)	3,253 (3,253)	**3,253** **(3,253)**	- (-)	- (-)
'17년	3,570 (3,570)	- (-)	- (-)	3,570 (3,570)	**3,570** **(3,57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쌀 수입을 전부 가공용으로 하도록 단가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217~240억 감액 필요('15년 예결위 및 상임위 예산 심사)
-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밥쌀용 쌀 수입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 300억원 감액('16년 상임위 예산심사)
-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밥쌀용 쌀 수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17년 상임위 예산심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수입쌀(저장품매입비) : 쌀 구매입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도입(수입업체) → 자금집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판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 해외시장조사(민간경상보조) : 예산 확정(국회) → 자금배정 신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검토 및 배정 통보(농식품부) → 자금 집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정부양곡매입비(재량, 계속)

< 양특회계 - 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정부양곡매입비	763,677	873,030	1,105,102	232,072	26.6

* 사업코드 : 20 - 51 - 1 - 100 - 101 - 2100 - 2131 - 360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식량정책과장(전한영), 사무관(양성철, ☏ 044-201-182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양곡 비축・운용

○ ASEAN+3 비상 쌀 비축 협정(APTERR) 약정물량 이행용 미곡 비축

○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양곡 비축·운용 - ASEAN+3 비상 쌀 비축 협정(APTERR) 약정물량(15만톤) 이행용 미곡 비축 -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결손 보전
사업기간	'94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공공비축미곡 340천톤, APTERR미곡 10천톤, 농협손실보전(7개사업) ('17) 미곡 350천톤(340+10) → ('18) 미곡 350천톤(340+10)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 ‘19년 사업비 268,636백만원

▪ 기존 농협채권 정산, ‘14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시작 및 ‘17년산 시장격리 추가 반영에 따라 ‘18년(194,905백만원) 대비 37.8% 증액

▪ 산출내역

- ‘08년 보리재고 특별처분(10,257) : (상환액) 9,999 (이자) 258
- ‘08년산 시장격리곡(9,364) : (상환액) 8,474 (이자) 890
- ‘09년산 추가매입곡(57,495) : (상환액) 50,872 (이자) 6,623
- ‘14년산 시장격리곡(70,929) : (상환액) 47,160 (이자) 23,769
- ‘15년산 시장격리곡(36,005) : (이자) 16,060 (보관료 등) 19,945
- ‘16년산 시장격리곡(36,604) : (이자) 12,094 (보관료 등) 24,510
- ‘17년산 시장격리곡(47,982) : (이자) 17,652 (보관료 등) 30,330

* 농협 결손보전 이자율 : (‘18) 2.52% → (’19) 2.52

○ 공공비축미곡 등 매입 : 공공비축미곡(340천톤), 애프터(APTERR) 공여용 미곡(10천톤) 매입비 등 836,466백만원

▪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 인상(155,000원→168,335), 쌀 수급상황에 따라 매입량 및 단가에 탄력적 대응(쌀값 변동 대응)을 위해 ‘18년(678,125백만원) 대비 23.3% 증액

▪ 산출내역

- 공공비축미곡 340천톤(매입량)×168,335원/80kg×12.5(톤환산) = 715,424백만원

* 매입단가 상승 : (‘18년) 155,000원/80kg → (‘19년) 168,335원/80kg

- 애프터미곡 10천톤(매입량)×168,335원/80kg×12.5(톤환산) = 21,042백만원
- 쌀값 변동 대응 = 100,000백만원

* 쌀값 상승시 부족분 충당, 하락시는 물량 확대 등 수급안정에 활용

구 분	’18예산	’19요구
□ 정부양곡매입비	**873,030백만원**	**1,105,102백만원**
▪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 **총 194,905백만원** * 이자율 : 2.52% - ‘08년 보리재고 특별처분(10,530) - ‘08년산 시장격리곡(9,595) - ‘09년산 추가매입곡(58,884) - ‘14년산 시장격리곡(31,797) - ’15년산 시장격리곡(46,355) - ’16년산 시장격리곡(37,744)	○ **총 268,636백만원** * 이자율 : 2.52% - ‘08년 보리재고 특별처분(10,257) - ‘08년산 시장격리곡(9,364) - ‘09년산 추가매입곡(57,495) - ‘14년산 시장격리곡(70,929) * 판매완료 따른 원금상환 시작 - ’15년산 시장격리곡(36,005) - ’16년산 시장격리곡(36,604) - ’17년산 시장격리곡(47,982)
▪ 공공비축 및 APTERR 매입	○ **총 678,125백만원** - 공공비축미 34만톤 : 658,750 - APTERR 1만톤 : 19,375 * 매입단가 : 155,000원/80kg	○ **총 836,466백만원** - 공공비축미 34만톤 : 715,424 - APTERR 1만톤 : 21,042 * 매입단가 : 168,335원/80kg - 쌀값 변동 대응: 100,000

□ 지원 필요성

○ 비상시를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미 비축·운용 및 ASEAN+3 비상 쌀 비축 협정(APTERR) 약정물량(15만톤) 이행용 미곡 비축을 위한 국고지원 필요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영하여야 한다.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 협정(APTERR)이 ‘12.7.12 발효, ’13.6.25 국회비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정부양곡매입비**	**767,682**	**873,030**	**1,105,102**	**232,072**	**26.6**
▪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127,729	194,905	**268,636**	**73,731**	**37.8**
▪ 공공비축 및 APTERR 매입비	639,953	678,125 (35만톤×155,000원/80kg×12.5(톤환산))	**836,466** (350천톤×168,335원/80kg×12.5(톤환산)+시장대응 1,000억)	**158,341**	**23.3**
□ **비목**(합계)	**828,671**	**763,677**	**873,030**	**109,353**	**14.3**
○ 보전금(310-01)	127,729	194,905	268,636	73,731	37.8
○ 저장품매입비(430-02)	639,953	678,125	836,466	158,341	23.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영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공공비축제
  - '93년까지 양곡관리기금에서 양곡수매사업을 수행하고, 소요재원은 양곡증권을 발행하여 조달
  - '94년부터 양곡수매사업은 양곡판매사업으로 충당하되,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 '05년부터 종전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시행(양곡관리법 개정 '05.3월)
- APTERR(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 APTERR 협정 발효('12.7.12) 및 국회 비준('13.6.25.)
  - '14년부터 APTERR용 미곡 매입 : ('14) 30천톤 → ('15) 30 → ('16) 30 → ('17) 10 → ('18) 10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정부양곡매입비	8,484	9,336	9,997	10,209	7,937	8,7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 77,366백만원 불용

- 산지쌀값 하락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 하락에 따른 정부양곡매입비 감소

  * 예산 매입단가 : 160,871원/80kg, 실 매입단가 : 152,158/80kg

○ 2016년 : 38,050백만원 전용, 154,157백만원 불용

- 정부양곡 재고 급증으로 인한 관리비 부족 및 농협손실보전금 부족으로 각각 39,188백만원(-), 1,138백만원(+) 전용

-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매입비용 감소

  * 예산상 매입단가: 163,962원/80kg, 실제 매입단가: 129,807원/80kg

○ 2017년 : 4,005백만원 전용

-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 상승에 따른 저장품매입비 예산 부족

  * 예산상 매입단가: 143,789원/80kg, 실제 매입단가: 153,213원/80kg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997 (-)	- (-)	- (-)	9,997 (-)	9,224 (-)	- ( )	773 (-)
'16년	10,209 (-)	- (-)	△381 (-)	9,828 (-)	8,287 (-)	- ( )	1,541 (-)
'17년	7,637 (-)	- (-)	40 (-)	7,677 (-)	7,677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매년 수확기 쌀값과 공공비축미 매입단가의 차이로 인해 전용과 불용이 반복적 발생하는 문제 지적, 예산단가 현실화 필요
('15 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16 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 우선지급금 지급근거 및 지급수준, 사후정산 절차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것
('16 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9년 예산 편성시 과거 매입단가,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매입단가를 현실화
* '19년 정부예산안에 가격변동 대응 예산 1천억원 편성
- 우선지급금 지급 근거 및 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 관계부처 의견조회('17.5.25 ~ 6.12), 입법예고('17.5.31~7.10), 정부 제출('17. 9. 8)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매입량 결정	~8월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비축 및 APTERR 매입량 결정
⇓			
공공비축미곡 매입	9월~12월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비축 및 APTERR 매입(농가→정부)
⇓			
보관	9월~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미곡 보관
⇓			
판 매	익년도1월~	농림축산식품부	· 군관수용, 가공용, 사회복지용 등으로 판매

6. 정부양곡관리비(재량, 계속)

< 양특회계 - 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정부양곡관리비	252,966	381,434	473,715	92,281	24.2

* 사업코드 : 소관 - 51 - 1 - 100 -101 - 2100 - 213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식량정책과장(전한영), 서기관(김정락, 044-201-182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곡, APTERR, TRQ쌀)의 보관, 가공, 운송 등 관리 소요경비 및 지자체 정부양곡 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정부양곡(공공비축미곡, TRQ쌀, 밀, APTERR)의 보관, 가공, 운송 등 관리소요 경비 및 지자체 정부양곡 관리 경비지원
사업기간	'94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공공비축 미곡 350천톤, APTERR 미곡 10천톤, TRQ쌀 409천톤, 17개 시도 지자체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고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공공비축 미곡 등 정부양곡의 매입·운송·보관·가공·판매 등 양곡관리를 위한 사업비 455,051백만원

▪ 정부관리양곡 적정 재고 수준 유지를 위한 가공물량 증가로 '18년도 부족분(추가 발생 손실분)을 반영하여 '18년 대비 19.8% 증액

* 가공물량 비교 : '17) 1,040천톤 → '18p) 1,425

○ 지자체 정부양곡관리 경비지원 17,689백만원

* 복지부 양곡할인 지원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택배비 지원(16,527백만원)

○ 정부양곡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공비축 매입품종 검정비 880백만원

① 정부양곡관리비 : 455,051백만원

○ 업무대행수수료 : 5,059백만원
- '18년산 공공비축미곡(350천톤) 매입대행수수료 : 3,342백만원
  * 350,000톤×9,550원/톤
- '18년산 판매대행 수수료 : 756백만원
  * 90,000톤(산물)×8,399원/톤
- 해외원조 위탁관리 수수료 : 955백만원
  * 100,000톤 × 9,550원/톤
- 신문공고료 : 7.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수입양곡관세) : 19,600백만원
- 386,505백만원(수입양곡대)×5%=19,325백만원
- 검정료, 통관수수료 등 : 275백만원

○ 양곡포장재 구입비 : 18,402백만원
- PP대 (40kg) : (163,000톤×1,000kg/40kg)×480원×1.1 = 2,152백만원
- 지대 (20kg) : (28,000톤×1,000kg/20kg)×480원×1.1 = 739백만원
- 지대 (10kg) : (80,000톤×1,000kg/10kg)×420원×1.1 = 3,696백만원
- 톤백 (1,000kg) : (850,000톤×1,000kg/1,000kg)×12,500원×1.1 = 11,687백만원
- 조달수수료 : 포장재구입비 총액(18,274백만원)×수수료율(0.7%) = 128백만원

○ 훈증소독제 구입비 : 1,210백만원
- 훈증제 : 1,656,000×660원×1.1 = 1,202백만원
  * 1톤당 훈증비용 : 1can×19,800원/100정=19,800원/30톤(660원/톤당)

- 조달수수료 : 훈증소독제 구입비(1,202백만원)×수수료율(0.7%) = 8백만원

○ 보관료 : 106,084백만원
- 벼 보관료 : 866,000톤÷0.72×147.6원/톤×365일×1.1× = 71,278백만원
- TRQ 쌀 : 408,700톤÷0.9×190.9원/톤×365일×1.1 = 34,806백만원
- 보관료 : 정곡물량÷환산계수(쌀→벼/현미)×단가×보관일×1.1(부가가치세)

○ 가공임 : 133,230백만원(* 가공임 : 물량 × 단가 × (부가가치세))
- 쌀 가공임(벼→쌀) : 497,000톤×95,671원/톤×1.1 = 52,303백만원
- 현미 가공임(현미→쌀) : 380,000톤×84,856원/톤×1.1 = 35,470백만원
- 사료용 가공임(벼→현미) : 790,000톤×52,309원/톤×1.1 = 45,457백만원

○ 운송료 : 71,254백만원
- 공공비축 매입 운송(벼) : 640,000톤÷0.72×17,800원/톤×1.1 = 17,404백만원
- APTERR 운송 : 10,000톤÷0.72×17,800원/톤×1.1 = 272백만원
- TRQ쌀 운송 : 618,700톤÷0.9×22,770×1.1 = 17,218백만원
- 원료곡 운송 : 1,337,000톤÷0.72×17,800×1.1 = 36,359백만원

○ 상·하차료 등 : 56,884백만원
- 공공비축 미곡 입고 및 직송 상차료 : 13,229백만원
  · 입고료: 461,000톤÷0.72×14,815원/톤×1.1 = 10,434백만원
  · 직송상차료 : 108,000톤÷0.72×16,940원/톤×1.1 = 2,795백만원
- APTERR 매입 입고료 : 10,000톤÷0.72×14,815원/톤×1.1 = 226백만원
- TRQ 보관창고 입고료 및 상차료 : 618,700톤÷0.9×7,165원/톤× 1.1 = 5,418백만원
- 국내보관창고 상·하차료 : 63,300백만원
  · 쌀 : 1,127,000톤÷0.72(쌀→벼)×36,764원{(출고료 4,113+상차료 3,365+하차료 3,052+입고료 4,113+출고료 4,113+상차료 3,365+하차료 3,052+입고료 4,113+출고료 4,113+상차료 3,365)}×1.1 = 63,300백만원
- 포장임 : 12,400백만원

  * 1,127천톤 × 11,003원(평균단가/톤) × 1.1

- 정부양곡 화재공제료 : 1,258백만원
  · 보관화재 : 1,826,111톤×0.98원/톤/일×365일 = 653백만원
  · 가공화재 : 1,127,000톤×536.63원/톤 = 605백만원
- 포장재 보관료 : 548백만원
- TRQ 쌀 위탁 수수료 : 3,903백만원

  * 408,700톤 × 9,550원

② 품종검정비 : 880백만원

○ 매입농가 중 표본추출 2% 범위내(4.4천호×200천원)

③ 과오납 반환금 : 95백만원

④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 17,689백만원

○ 양곡관리 서식 및 제용품 : 266백만원

○ 차량 등 양곡관리 필요 기구관리 : 202백만원

○ 매입현장 난방비 등 : 38백만원

○ 양곡관리 사업 관련 여비 지원 : 606백만원

○ 정부소유 양곡창고 시설 장비 유지 : 50백만원

○ 택배비 : 16,527백만원(기초수급자 13,421, 차상위 3,106)

* 조정: △71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사업명	**381,434백만원**	**473,715백만원**
▪ 정부양곡관리비	379,894 * 공공비축34, TRQ41, APTERR1 * 정부양곡 233만톤 보관·운송·가공 등 소요비용	379,894 * 공공비축34, TRQ41, APTERR1 * 정부양곡 233만톤 보관·운송·가공 등 소요비용
▪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1,162 (17개시도)	17,689 (17개시도 관리비 + 택배비 추가)
▪ 정부관리양곡 자능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83 (업무표준화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 품종검정비	-	880 (4.4천호×200천원)
▪ 과오납 반환금	95	95

□ 지원 필요성

○ 매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판매 및 TRQ쌀 도입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송·보관·가공·판매 등 양곡관리 지원

○ APTERR(아세안+3 비상쌀비축제) 추진에 필요한 운송·보관에 따른 재원확보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쌀 적정 재고 보유 등 쌀 시장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쌀산업 육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정부양곡관리비	252,966	381,434	473,715	92,281	24.2
▪ 정부양곡관리비	251,804	379,894 (공공비축35 TRQ41, APTERR1, 해외원조6)	455,051 (공공비축35, TRQ41, APTERR1, 해외원조5)	75,157	19.8
▪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1,162	1,162 (17개 시도)	17,689 (17개 시도 관리비, 택배비)	16,527	1,422
▪ 정부관리양곡 지능형 관리시스템구축 시범사업	-	283 (업무표준화 및 ISP수립)	-	△283	순감
▪ 품종검정비	-	-	880 (4.4천호×200천원)	880	순증
▪ 과오납 반환금	-	95 (반환율 0.05%)	95 (반환율 0.05%)	-	-
□ 비목(합계)	252,966	381,434	473,715	92,281	24.2
◦ 일반수용비(210-01)	-	5,416	5,059	△357	△6.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6,905	19,548	19,600	52	0.3
◦ 재료비(210-11)	10,232	11,648	19,613	7,965	68.4
◦ 기타운영비(210-16)	224,667	343,282	410,779	67,497	19.7
◦ 연구용역비(260-01)	-	283	-	△283	순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162	1,162	17,689	16,527	1,422
◦ 민간경상보조(320-01)	-	-	880	880	순증
◦ 반환금 및 기타	-	95	95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 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영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93년까지는 양곡관리기금에서 추·하곡 수매사업 수행
- '93년 8월에 실시한 양정개혁에 따라 '93년 이전까지의 양곡관리사업 부채는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승계하고, '94년부터 양곡수매·관리 사업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양곡 판매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 '05년부터 정부수매제를 개편하여 시가 매입·방출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시행
- '14년부터 APTERR미곡 매입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정부양곡관리비	2,094	2,028	2,028	2,028	2,480	3,81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도

- 불용사유 : 기타운영비 등 집행 잔액

○ 2016년도

- 전용사유 : 정부양곡 재고량 증가에 따른 정부양곡 가공, 운송, 보관 등 기타 운용비 부족으로 전용
- 불용사유 : 수입양곡 도입 미완료에 따른 수입관세 미집행 및 정부양곡 보관료 집행잔액

○ 2017년도

- 전용사유 : 정부양곡 재고량 증가에 따른 정부양곡 가공, 운송, 보관 등 기타 운용비 부족으로 전용
- 불용사유 : 지자체 정부양곡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약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028		-	2,028	2,025		3
’16년	2,028		501	2,529	2,527		2
’17년	2,478		53	2,531	2,529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양곡매입(정부) → 양곡 보관·가공·매출 등 관리(시·도 등) → 업체별 대금지급
○ 정부양곡관리비 요청 (시도) → 보조사업비 교부(정부) → 양곡관리 업무 수행

7. 쌀소비활성화(재량, 계속, 국정과제)

< 양특회계 - 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쌀소비활성화	6,400	6,400	6,400	-	-

* 사업코드 : 20 - 51 - 1 - 100 - 101 - 2100 - 213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식량산업과장(김정주), 사무관(이가인, ☏ 044-201-298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쌀·쌀가공제품 개발 여건 조성, 식습관 학교 운영 등 쌀 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한 식량자급 기반유지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쌀 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한 식량자급 기반 유지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사업기간	'03~계속
총사업비	-억원 ('18년까지 투자액 536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쌀소비) 국고보조 100%, (라이스랩) 국고 50%, 지자체 50%
사업시행주체	(쌀소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라이스랩) 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미래세대 대상 쌀 중심 식생활 교육 사업비 1,500백만원
: ('18) 1,500 → ('19) 1,500
- 쌀 가공식품 급·간식 제공 및 쌀 섭취 식습관 교육(1,500)

○ 쌀·쌀 가공식품 소비 촉진 활동을 위한 사업비 1,300백만원
: ('18) 1,300 → ('19) 1,300
- 쌀가공식품산업대전(200), 쌀가공품 품평회(200), 쌀가공품 판매망 확충 지원(200), 아침밥 먹기 캠페인(400), 쌀 가치 확산 행사 등(300)

○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비 3,200백만원 : ('18) 3,200 → ('19) 3,200
- 다큐·광고 제작 및 방송·신문·온라인 홍보(2,700), 쌀 가공식품 관련 정보제공 등(400), 홍보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100)

○ 라이스랩 운영·설치 400백만원 : ('18) 400 → ('19) 400
- 4개소 × 200백만원 × 지자체 보조 50%

구 분	'17 예산	'18 예산
□ 쌀소비활성화	**6,400백만원**	**6,400백만원**
▪ 쌀소비활성화	6,000백만원	6,000백만원
▪ 라이스랩 설치·운영	400백만원	4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쌀 관세화, 지속적 소비감소에 대응하여 식량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쌀 소비 활성화 지원 필요
- 쌀 섭취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미래세대 대상 교육, 일상생활 속 쌀·쌀가공제품 직접적 소비 유도 등
- 고혈압, 당뇨 등 서구식 식단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 및 국민식생활 개선

○ 정부의 적극적인 쌀소비 확대 노력('03년 이후)으로 쌀 및 쌀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연평균 쌀 소비 감소율 둔화 등 성과

* 긍정적 인식 변화비율 : ('14) 87.3 → ('15) 91.8 → ('16) 93.1 → ('17) 94.2

* '17년은 전년 대비 0.2% 감소, '90년 이후 가장 적은 감소량으로 쌀 소비 감소 추세의 정체 가능성 시사

○ 소비자 맞춤형 쌀가공식품을 개발·육성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운영을 통한 쌀가공품 인지도 제고 및 판매망 확충 실시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쌀소비활성화**	**6,400**	**6,400**	**6,400**	**-**	**-**
▪ 쌀소비활성화 (산출근거)	6,400	**6,000** •쌀중심 식생활 홍보 : 1,500 •쌀·쌀가공품 개발·판매망 구축 : 1,300 •대중매체 활용 홍보 : 3,200	**6,000** •쌀중심 식생활 홍보 : 1,500 •쌀·쌀가공품 개발·판매망 구축 : 1,300 •대중매체 활용 홍보 : 3,200	-	-
▪ 라이스랩 설차운영 (산출근거)	400	**400** (4개×200백만×50%)	**400** (4개×200백만×50%)	-	-
□ **비목**(합계)	**6,400**	**6,400**	**6,4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6,000**	**6,000**	**6,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00**	**400**	**4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6조(융자 및 보조)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식품 소비패턴 변화,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전통적 방식의 밥쌀 소비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
  - *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소비량(kg) : ('97) 102.4kg → ('07) 76.9 → ('17) 61.8
- 이에 쌀 소비 촉진을 통해 쌀의 안정적 수급관리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03년부터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쌀 소비 활성화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쌀소비활성화	40	40	60	60	64	6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액 : 집행잔액

○ ’17년 이월액 : 사업추진 지연, ‘18.2월 집행완료

○ ‘17년 불용액 :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0 ( )	- ( )	- ( )	60 ( )	59.99 ( )	- ( )	0.01 ( )
’16년	60 ( )	- ( )	- ( )	60 ( )	60 ( )	- ( )	- ( )
’17년	64 (64)	- (-)	- (-)	64 (64)	64 (62.97)	- (1)	- (0.0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6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쌀 수급안정과 가격 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쌀 소비 촉진 정책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2019회계연도 예산 지적사항) 쌀가공식품산업대전 참가 기업의 계약 건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 시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우수제품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 식량자급률 향상 등 식량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30여년간 일본식 밥 중심 식생활의 우수성 홍보·교육 및 쌀 가공제품 소비 촉진 활동 추진 중

- 농업인, 식품업계, 교육관계자 등 현장과의 연계 강화 및 연령대, 성별 등을 고려한 소비자 맞춤형 쌀 소비 활성화 사업 추진
- 쌀 가공제품 수요 창출을 위해 쌀가루용 쌀 가공기술·제품 개발, 소비 촉진 활동 전개

*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2015) 발표

(5) 사업추진절차

○ 쌀소비 활성화 사업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1월~2월)	▪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3월초 까지)	▪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쌀 소비 활성화 사업별 계약 체결	(연중)	▪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별 계약 체결(농정원)
⇓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연중)	▪ 사업비 정산 및 지급 요청(농정원 취합→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확정 및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농정원 → 사업주관 단체·기관)
⇓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및 현장 점검	(연중)	▪ 계약조건에 따라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사업주관 단체·기관) ▪ 사업 추진상황 점검·보고(농정원→농식품부)
⇓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	(연중)	▪ 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농림축산식품부)

○ 라이스랩 사업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라이스랩 사업 기본계획 수립	(1월~2월)	▪ 라이스랩 사업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 및 선정	(연중)	▪ 지자체 공모 및 라이스랩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지자체, 라이스랩)
⇓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연중)	▪ 보조금 내시 확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지급 요청(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확정 및 지급(농식품부→지자체→라이스랩)
⇓		
라이스랩 사업 추진	(연중)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라이스랩) ▪ 사업 추진상황 점검·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업 평가	(연중)	▪ 라이스랩 사업 평가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8. 한은차입금이자상환(의무, 계속)

< 양특회계 - 손익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한은차입금이자상환	2,526	10,486	10,050	△436	△4.2

* 사업코드 : 20 - 51 - 1 - 100 - 101 - 2100 - 2171
* 담당자 : 식량국장(김인중), 식량과장(전한영), 사무관(서정우)☎(044-201-182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양곡의 매입·관리 사업과정에서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부족자금을 차입·운용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양특회계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은일시차입금을 차입하여 운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
사업기간	'94~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채무상환사업 : 한은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한 사업비 10,050백만원

- 한은차입금 : 1조 1,388억원
- 이자율 : 1.765%
- 산출 내역 : 한은일시차입금 × 평잔율 × 이자율 = 1조 1,388억원 × 50% × 1.765%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한은차입금 이자상환	10,486**백만원**	10,050**백만원**
▪ 한은차입금 이자상환	□ **10,486백만원** * 12,388억원× 50%(평잔율) × 1.693%(금리)	□ **10,050백만원** * 11,388억원× 50%(평잔율) × 1.765%(금리)

□ 지원 필요성

○ 한은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으로 의무적 지출사업으로 지속적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한은차입금이자상환**	**2,526**	**10,486**	**10,050**	**△436**	**△4.2**
▪ 한은차입금이자상환 (한은일시차입금×평잔율×이자율)	2,526	10,486 (12,388억원×50%×1.693%)	10,050 (11,388억원× 50%× 1.765%)	△436	△4.2
□ **상환지출(510)**	**2,526**	**10,486**	**10,050**	**△436**	**△4.2**
○ 차입금이자(510-03)	2,526	10,486 (12,388억원×50%×1.693%)	10,050 (11,388억원× 50%× 1.765%)	△436	△4.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기업예산법 제11조(자금의 차입)

② 특별회계는 지불 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 예산총칙: 한은 일시차입금 한도 20,000억원

○ 추진경위

- '93년까지는 양곡관리기금에서 추·하곡 수매사업을 하면서 소요재원은 양곡증권을 발행하여 조달
- '93년 8월에 실시한 양정개혁에 따라 '93년 이전까지의 양곡관리사업 부채는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승계하고, '94년부터 양곡수매·관리 사업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양곡 판매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 '98년부터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은 일시차입금을 차입하여 운용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한은차입금이자상환	289	297	283	137	119	1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한은차입금 이자금리 하락 등에 따른 집행잔액 212억원 불용

* 이자율 (예산) 2.81% → (집행) 2.04

○ '16년 정부양곡관리비 부족에 따라 정부양곡관리비로 120억원 전용

* 이자율 (예산) 2.46% → (집행) 1.59

○ '17년 정부양곡관리비 부족에 따라 정부양곡관리비로 94억원 전용

* 이자율 (예산) 1.86% → (집행) 1.44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83 (-)	- (-)	- (-)	283 (-)	116 (-)	71 (-)	212 (-)
'16년	137 (-)	- (-)	△120 (-)	17 (-)	17 (-)	- (-)	- (-)
'17년	119 (-)	- (-)	△94 (-)	25 (-)	25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차입 → 차입금이자 분기별 상환(농식품부 → 한국은행)

농 업 신 산 업 육 성

1.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00	10,500	28,000	17,500	166.7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2220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박혜민, ☏ 044-201-22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규모화 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로 신선농산물 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유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ICT 기술이 융복합된 생산·유통시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 전기, 부지정리,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사업기간	'17~'25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25년까지 스마트원예단지 7개 단지 조성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자치구청장)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18) 10,500백만원→ ('19) 28,000 (+17,500)**

*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166.7% 증액: ('18) 2년차 1개소, 1년차 2개소 → ('19) 2년차 2개소, 신규 4개소

- 2개소 × 10,000백만원 × 70% × 50%(2년차) + 2개소 × 10,000백만원 × 70% × 100% + 2개소 × 5,000백만원 × 70% × 100% = 28,0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10,500백만원**	**28,000백만원**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1개소(2년차), 3,500백만원 ·2개소(1년차), 7,000백만원	·2개소(2년차), 7,000백만원 ·2개소, 14,000백만원 ·2개소, 7,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을 보급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설원예 경영체 집적화로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여 국내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 노후시설 현대화 및 이전 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경영체의 소득 증가 및 농업구조개선 촉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00**	**10,500**	**28,000**	**17,500**	**166.7**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00	10,500 (보조) 1개소×10,000백만원×70%×50%(2년차)+2개소×10,000백만원×70%×50%(1년차)	28,000 (보조) 2개소×10,000백만원×70%×50%(2년차)+2개소×10,000백만원×70%+2개소×5,000백만원×70%	17,500	166.7
□ 비목(합계)	**3,500**	**10,500**	**28,000**	**17,500**	**166.7**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500	10,500	28,000	17,500	166.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08조(자금지원) 등

○ 관련 시책

- 「스마트팜 확산 방안」('18.4, 관계부처 합동)

○ 추진경위

-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 소비 감소, 수출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09년부터 원예시설의 현대화 추진
-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14년부터 추진
- 노후화·산재된 원예시설을 규모화·집적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7년부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1개소, 충남 부여)
- '스마트팜'이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선정('17.11),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수립('18.4)하고 '18년부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스마트팜 확산 거점(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연계* 추진

  * 신규조성: ('18) 2개소, 경북 상주, 전북 김제 → ('19) 4개소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	-	-	-	35	1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네덜란드 시설원예 클러스터(Greenport)

- 원예산업이 6개의 클러스터에 집중, 생산, R&D, 물류, 인프라, 수출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를 통해 네덜란드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
- 대규모 시장, 물류에 좋은 항구·공항 등과 인접, 집중화를 통해 기술, 자재, 물류 등 연관 산업이 발달하고 환경문제*를 효율적 관리

* 태양전지 사용, 자연광 혹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전등사용, 지열 에너지 발전시설 등을 권장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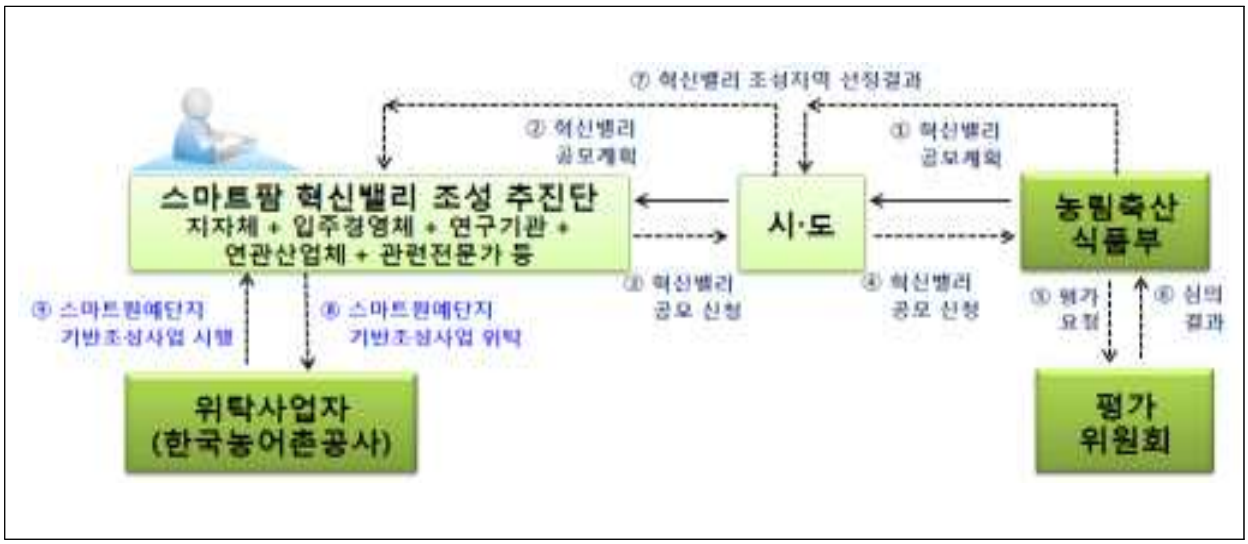

참고 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개요

❑ **(지원내용) ICT기술이 융복합된 생산·유통시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 전기, 부지정지, 도로 등 **기반시설**

* 시설원예 생산에는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전기 시설 등이 필수요소

❑ **(사업규모)** 2개소(2년차) + 4개소(신규)

❑ **(지원비율)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보조사업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제108조(자금지원)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자체 등이 시행

○ **(지원조건 근거) 농업기반정비 관련 기준보조율** 및 **타 유사 보조사업** 수준의 국고보조, 지방비 조건 설정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 농어업기반정비 8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등

** 유사사업 지원기준(%)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과수주산지 대상 용수공급, 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구축) : (조사설계비)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사업비) 국고보조 80, 지방비20
- 농업기반정비사업(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한 논·밭을 대상으로 밭기반정비,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기초 인프라 확충) : 국고 80, 지방비 20

❑ **(총사업비) 20ha 기준 기반조성**에 **약 100억원** 소요

구분		사업비	내용
부지조성	부지정지	5,200	·논을 시설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 등
	도로	375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지선 도로
생산 필요시설	용수	200	·시설원예 재배시 필요한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경영에 필요한 생활용수
	전기	2,909	·ICT융복합 장비, 에너지공급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
	오폐수처리	400	·시설원예 재배시 발생되는 폐양액 및 생활폐수 등 처리시설
기타 부대비	설계·감리비 등	916	
합계		10,000	

참고 2 스마트원예단지 면적(20ha) 산정 기준

※ 과채류 중 수출이 가장 활발한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분석

❑ 파프리카 작기

○ 9~10월 정식 → 12~다음해 6월까지 수확

❑ 수확 가능 물량

○ 일주일에 3번 정도 수확이 이루어지며, 날씨·주당 생육정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100~800box(5kg상자)/ha 생산

❑ 수출 컨테이너 물량

○ 40ft 컨테이너 기준, 약 1760box 선적(5kg상자)

❑ 생산 필요면적

○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연중 균일한 양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최저물량 생산시기 기준으로 필요면적 산정

* 연중 고른 계약물량을 충당할 수 없는 생산시스템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 제약요인 중 하나로 지적(바이어들의 계약 기피현상 발생)

⇒ 최저 수확물량이 발생하는 시기 기준, 100box/ha 수확시 40ft 컨테이너 수출을 위해 약 17ha 생산시설 필요

* 유통·가공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면적 2~3ha 예상

참고 3 기존 스마트팜 지원사업과의 비교

	기존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팜 시설보급,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등)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목적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모델 확산	시설원예분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산업화를 위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대상	**개별 경영체**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시·군·자치구)
지원내용	기존 시설 내 ICT 시설장비 설치 및 개별 온실 신·개축 * (스마트팜 시설보급)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스마트팜 온실신축) ICT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	도로, 전기, 용수, 오폐수처리시설 등 시설원예 생산에 필요한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방식	농업인 신청 후 지자체에서 사업자 선정·지원	농식품부에서 단지 조성에 의지·역량이 있는 지자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 - 체계적 계획 수립에 의한 단지 조성 및 관리

참고 4 시설원예 선진국의 산업동향

❑ (네덜란드) 중·대농 구조, 대규모 유리온실 복합단지 조성

○ **유리온실 면적은 10,374ha**이며, 9,463ha(91%)가 가온재배

○ 정부의 「농업발전과 구조개선 기금」을 통한 경영이양 및 기업화 촉진, 농지의 교환분합과 경지정리 사업을 통해 중대농 구조로 전환

- 경영체당 영농 규모 : ('50년대) 5ha/경영체 → (최근) 24ha
- 노지채소 경영체당 면적은 7ha, 유리온실은 2ha

○ 전문화·기계화를 통해 전업농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초대형 농가급증

- 유리온실의 5%가 5ha 이상이며, 이들이 전체 면적의 1/4 이상을 차지
  * 작목별 경영체 규모 : 토마토 3.3ha, 파프리카 3.0ha, 딸기 0.6ha

<대규모 유리온실 복합단지 조성>

○ Flevoland주 북동부 Luttlegeest시, 100ha 규모의 대규모 유리온실 복합단지 건립('08)
- 주요 생산작물 : 토마토, 피망 등

○ 환경 친화적 시설설치에 초점
- 자체발전소 보유, 생산전력의 일부는 온실 사용, 나머지 전력회사 판매
- 발전폐열을 난방에 재사용

❑ (영국)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Thanet Earth) 조성

○ 켄트 지방 Thanet 섬의 구릉지를 평탄화한 부지에 220에이커(89ha) 규모의 유리온실 단지 건설

- 사업비는 8천만 파운드(약 1,600억원) 소요, 500여명 인력 고용
- 가스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한 후 남는 전기는 발전소에 판매, 발전 부산물인 열과 CO_2는 재배에 활용
- 단지 내에서 수거된 물로 자체 저수지 조성, 생물학적 천적 방제

○ 자국의 비수기철에 신선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

- '09년부터 토마토·오이·고추 등 공급, 자국 샐러드 공급량의 15% 충당

2.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	1,100	3,000	1,900	172.7

* 사업코드 : 20 - 15 - 04 - 100 - 101 - 3200 - 3232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심동욱, ☏ 044-201-242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설원예·축산분야에서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은 확산 중이며, 노지분야의 새로운 성장분야 발굴·육성 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노지작물 분야에 생산·경영·유통 등 ICT융복합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간으한 성과모델 발굴·확산 * 현장수요가 높은 지정공모(관수·관비모델)와 현장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은 자유공모(신규모델 발굴) 과제를 병행하여 추진
사업기간	'18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3,000백만원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노지작물에 ICT기술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 3,000백만원

▪ ICT모델개발비 : 10개모델×600백만원×50%(국비) = 3,00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 영농 모델개발	**1,100백만원**	**3,000백만원**
▪ ICT모델개발	**1,100백만원**	**3,000백만원** ·10개모델×600백만원×50%(국비)

□ 지원 필요성

○ 스마트팜은 시설원예, 축산분야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분야 발굴·확산을 위한 노지분야 스마트팜 모델개발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1,100**	**3,000**	**1,900**	**172.7**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1,100	3,000	1,900	172.7
□ 비목(합계)		**1,100**	**3,000**	**1,900**	**172.7**
○ 민간경상보조(320-01)		1,100	-	△1,100	순감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3)		-	3,000	3,0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촉진)

○ 추진경위

-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대책('16.3월)에서 스마트팜의 영역을 노지로 확대
- '스마트팜 확산방안' 추진계획 수립('18.4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노지채소 ICT시범사업 추진 포함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노지작물과원 스마트 영농 모델개발	-	-	-	-	-	1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이스라엘) 작물의 상태 및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뿌리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적정 시기 물과 비료 공급결정을 지원하는 자동시스템 개발로 효과적인 물관리

(5) 사업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공모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포함)	⇒	심사평가 및 선정
농식품부		주관기관(지자체) → 전담기관(농정원)		농식품부, 전담기관(농정원)

⇒	사업계획 협의·조정	⇒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	사업시행 (사업비 배정)
	주관기관·전담기관		농식품부, 농정원		농정원, 지자체

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재량, 신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온실조성)	-	-	12,190	12,190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04 - 100 - 101 – 2220 – 222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심동욱, ☏ 044-201-242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창업초기 전문컨설팅까지 전과정 보육관리를 통한 영농조기정착 도모

-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생의 장기 실습교육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설치
사업기간	'19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2,190백만원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에 청년창업 보육센터 장기 실습교육을 위한 온실설치 비용

- 4.5ha×2,900백만원×70%(지방비)×2개소×66.7%(1년차) = 12,19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12,190백만원**
▪ 실습온실구축	-	4.5ha×2,900백만원×70%(지방비)× 2개소×66.7%(1년차)

□ 지원 필요성

○ 농업의 고령화는 심화되는 반면, 청년인력 유입은 미흡해 노동력부족, 생산성 둔화 등으로 농업 성장동력 약화

- 특히 청년 농업인들은 전문 교육프로그램 부족, 초기 투자비용, 농지 확보 애로 등 호소, 기존 산발적, 기존농업인 대상 이론중심 교육에서 체계적이고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	12,190	12,190	순증
▪ 실습농장 조성	-	-	12,190 (4.5ha×2,900백만원×70%(지방비)× 2개소×66.7%(1년차))	12,190	순증
□ 비목(합계)	-	-	12,190	12,190	순증
○ 지자체자본보조 (330-03)	-	-	12,190 (4.5ha×2,900백만원×70%(지방비)× 2개소×66.7%(1년차))	12,19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 추진경위

-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정('17.11), 혁신성장 선도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17.12월~)
- '18년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팜 확산 방안' 발표 및 보육센터를 포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추진('18.4)
- VIP 주재 혁신성장 선도과제 성과 보고대회('18.5.17)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네덜란드 'World Horti Center'는 원예기술 분야의 글로벌 지식 및 기술혁신 센터로 비즈니스, 교육, 연구 및 정부 정책을 연계

- 연구, 시범 및 교육의 융합을 이루고 있으며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고객대상 교육, 연구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50여개 국의 농업인, 유통업자, 원예, 재배기술 요구자, 온실 건설업자, 육종회사 등에서 매년 약 25,000여명이 방문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업실용화재단		농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정원
대상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 승인	➡	세부계획 추진상황 이행 (실습농장조성/운영, 지방비확보 등)	➡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참고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권역별 보육센터 4개소선정 후, 스마트팜 영농교육(입문·교육실습·경영실습)을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

* '22년까지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500명 양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안정적 창·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

○ (사업기간) 2019 ~

○ (지원대상) **스마트팜 창농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지원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 (시행주체) 지자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전문교육기관 등

* 실습농장 조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 (사업규모) 혁신밸리와 연계된 **보육센터 4개소 조성**(실습농장* 포함)

<교육과정 개요>

* (입문과정 1~2개월) 창농 지식, 투자유치 컨설팅, 경영·마케팅, ICT 사례, 정착 지원 등 / 온실 설계·관리, 양수분 급배액, 양액재배, 스마트 팜 운영관리 등 / 해외전문가 특강
* (교육실습 6개월) 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습장을 활용하여 6개월간 현장실습하며 경험 축적, 현장실습시 컨설팅·현장지도, 우수 스마트팜 사례 벤치마킹 등
* (경영실습 1년) 보육센터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설치하여 경영실습, 컨설팅·현장지도 교육, 교육생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정보공유

4. 임대형 스마트팜(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	16,400	16,400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222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정정희, ☏ 044-201-24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교육, 실습 등을 마친 청년농 등이 임대하여 운영하며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의 조성 및 운영·관리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청년농에 임대할 스마트팜 온실 조성 지원
사업기간	'19~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22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24ha 조성
지원조건	고보조 70%, 지방비 3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16,400백만원

▪ 산출내역 : 2,900백만원 x 6ha x 70% x 66.7%(1년차) x 2개소

* 신규 : ('18년) - → ('19년) 2개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임대형 스마트팜	-	16,400
▪ 임대형 스마트팜	-	16,400 2,900백만원x6hax70%x66.7%(1년차)x2개소

□ 지원 필요성

○ 정부 8大 혁신성장 선도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과 산업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년까지 4개소 조성)

-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전 주기(이론교육→실습→창·취업) 지원 및 창업 시의 초기 리스크 완화 필요
- 아울러, 기자재 표준화,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스마트팜 관련 기술·장비의 실증 및 R&D 강화 등으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산업을 육성

○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보급 확대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집적화·규모화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로 농업경쟁력 강화

- 스마트팜 확산*으로 소비자는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 가능, 생산자는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로 시장개방 대응 및 수출시장 진출 가능

* '국정과제 83-3.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에 따라 '22년까지 스마트팜 온실을 7천ha 보급 예정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임대형 스마트팜			**16,400**	**16,400**	**순증**
□ 비목(합계)			**16,400**	**16,400**	**순증**
○ 지자체자본보조(330-03)			**16,400**	**16,4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제108조(자금지원)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가능
  * 농어촌정비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포함

○ 추진경위

- 농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본격 추진('14~)
-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정('17.11), 혁신성장 선도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17.12월~)
- '18년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팜 확산 방안' 발표('18.4), 임대형 스마트팜을 포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추진('18.4.23~)
- VIP 주재 혁신성장 선도과제 성과 보고대회('18.5.17)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선정('18.8.2) 및 세부 사업계획 마련('18.12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임대형 스마트팜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네덜란드) GreenPort 프로젝트
- 시설원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6개 지역에 정부주도의 원예산업단지 조성
-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가 산·학·연 협업을 이루며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물류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제공

* Noord-Holland Noord, Westland-Oostland, Venlo, Alsmeer 등

○ (멕시코) Agropark는 미국, 캐나다 수출을 목표로 2006년에 시작된 온실생산단지
- 농촌개발투자펀드의 지원과 사모펀드의 투자유치로 총 823ha의 부지에 최첨단 온실을 건축, 고품질 채소와 화훼류를 생산하여 수출
- 사계절 화훼 및 채소의 생산을 위한 적지, 300일 이상의 청명일수와 연평균 17.4도, 평균고온 30도, 평균저온 6도, 낮은 습도를 갖는 해발 1,900,의 고지대에 조성

○ (일본) 2013년 "차세대 시설원예 도입 가속화 지원 사업", 2016년 "차세대 시설원예 지역전개 촉진사업", 2016년 “일본 재흥 전략”,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차세대 시설원예 거점 우선 사업)"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 시설의 개량, 에너지 합리화, ICT 활용 복합환경제어, 정보교류, 거점을 활용한 실천적 연수 등의 인재육성 지원
- 일본은 최근 네덜란드와의 기술교류에 적극적이며 자국 내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
- 미야기현은 지진 및 쓰나미(2011년 피해)의 재건을 위해 지역특산물인 딸기의 생산단지를 신규 조성, 집단화 및 규격화를 진행하여 센다이시 일대에 30ha가 넘는 딸기 생산단지 조성

○ (대만)·정부 주도의 난초재배단지(Taiwan Orchid Plantation) 200ha 조성하여 온실(120여개 업체 입주), 국제전시장 등 설치
- 난초 사육·개발·생산·마케팅·수출에 이르는 난초산업 전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해 기술교육 및 자금 지원

○ (이외 국가) 스페인의 El Jido, Almeria 지역은 25,000ha 비닐온실 보유, 세계 최대 단일 비닐온실 단지 운영, 영국 켄트지방의 Thanet Earth라는 첨단 유리온실 단지 조성,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조성하여 난방과 CO2 동시 공급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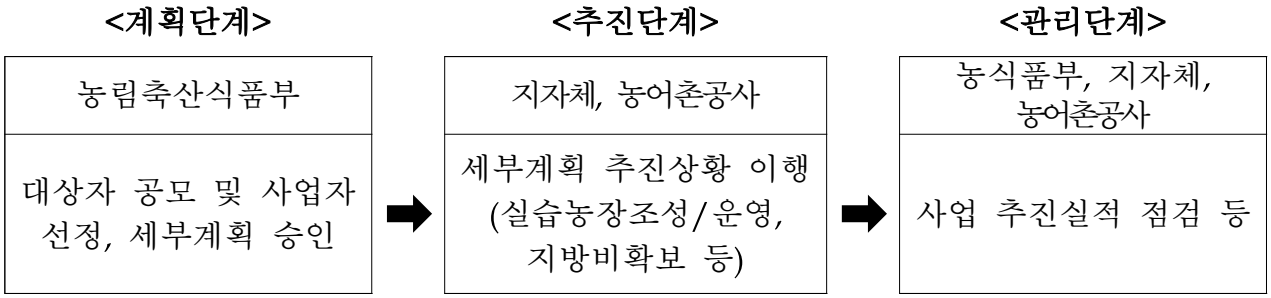

5. 스마트팜 실증단지(재량, 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19,227	19,227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222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정정희, ☏ 044-201-24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팜 기자재 및 품목 실증공간 및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공공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성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스마트팜 기자재 및 품목 등의 실증용 온실, 지원센터 등 조성 지원
사업기간	'19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실증단지 3ha 2개소 조성
지원조건	국고 보조(50 ~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실증단지 시설구축비 : 기업·연구기관 등이 관련 기술들을 실증할 수 있는 필수기반(전기, 용수 등)만 조성된 공간 조성비

- (유리30억+지열14억)×70%×3ha×2개소×66.7%(1년차) = 12,320백만원

○ 지원센터 구축비 : 창업농과 실증 참여기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

- 4,350m^2×2.3백만원/m^2×2개×50%×66.7%(1년차) = 6,667백만원

○ 자문단 운영비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운영비

- 월 20백만원×12개월 = 24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스마트팜 실증단지	-	19,227
▪ 실증단지 구축	-	12,320 (44억×3ha×70%×2개소×66.7%(1년차)
▪ 지원센터 구축	-	6,667 (2,175m^2×2.3백만원/m^2×2개소 ×50%×66.7%(1년차))
▪ 자문단 운영비	-	240 (월 20백만원×12개월)

□ 지원 필요성

○ 정부 8大 혁신성장 선도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과 산업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년까지 4개소 조성)

-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전 주기(이론교육→실습→창·취업) 지원 및 창업 시의 초기 리스크 완화 필요
- 아울러, 기자재 표준화,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스마트팜 관련 기술·장비의 실증 및 R&D 강화 등으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산업을 육성

○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보급 확대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집적화·규모화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로 농업경쟁력 강화

- 스마트팜 확산*으로 소비자는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 가능, 생산자는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로 시장개방 대응 및 수출시장 진출 가능

* '국정과제 83-3.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에 따라 '22년까지 스마트팜 온실을 7천ha 보급 예정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스마트팜 실증단지			19,227	19,227	순증
▪ 실증용 온실 조성			12,320 (44억×3ha×70%×2개소 ×66.7%(1년차))	12,320	
▪ 지원센터 조성			6,667 (2,175m2×2.3백만원 /m2×2개소×50%×66.7%(1년차))	6,667	
▪ 자문단운영비			240 (월 20백만원×12개월)	240	
□ 비목(합계)			19,227	19,227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240 (월 20백만원×12개월)	240	
○ 지자체 자본보조(330-03)			18,987 (44억×3ha×70%×2개소 ×66.7%(1년차) + (2,175m2×2.3백만원 /m2×2개소×50%×66.7%(1년차))	18,98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6조(농업 및 식품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추진경위

-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정('17.11), 혁신성장 선도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17.12월~)
- '18년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팜 확산 방안' 발표 및 실증단지를 포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추진('18.4)

- VIP 주재 혁신성장 선도과제 성과 보고대회('18.5.17)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선정('18.8.2) 및 세부 사업계획 마련('18.12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스마트팜 실증단지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네덜란드) GreenPort 프로젝트
- 시설원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6개 지역에 정부주도의 원예산업단지 조성
-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가 산·학·연 협업을 이루며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물류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제공

* Noord-Holland Noord, Westland-Oostland, Venlo, Alsmeer 등

○ (멕시코) Agropark는 미국, 캐나다 수출을 목표로 2006년에 시작된 온실생산단지
- 농촌개발투자펀드의 지원과 사모펀드의 투자유치로 총 823ha의 부지에 최첨단 온실을 건축, 고품질 채소와 화훼류를 생산하여 수출
- 사계절 화훼 및 채소의 생산을 위한 적지, 300일 이상의 청명일수와 연평균 17.4도, 평균고온 30도, 평균저온 6도, 낮은 습도를 갖는 해발 1,900,의 고지대에 조성

○ (일본) 2013년 "차세대 시설원예 도입 가속화 지원 사업", 2016년 "차세대 시설원예 지역전개 촉진사업", 2016년 “일본 재흥 전략”,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차세대 시설원예 거점 우선 사업)"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 시설의 개량, 에너지 합리화, ICT 활용 복합환경제어, 정보교류, 거점을 활용한 실천적 연수 등의 인재육성 지원
- 일본은 최근 네덜란드와의 기술교류에 적극적이며 자국 내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
- 미야기현은 지진 및 쓰나미(2011년 피해)의 재건을 위해 지역특산물인 딸기의 생산단지를 신규 조성, 집단화 및 규격화를 진행하여 센다이시 일대에 30ha가 넘는 딸기 생산단지 조성

○ (대만)·정부 주도의 난초재배단지(Taiwan Orchid Plantation) 200ha 조성하여 온실(120여개 업체 입주), 국제전시장 등 설치
- 난초 사육·개발·생산·마케팅·수출에 이르는 난초산업 전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해 기술교육 및 자금 지원

○ (이외 국가) 스페인의 El Jido, Almeria 지역은 25,000ha 비닐온실 보유, 세계 최대 단일 비닐온실 단지 운영, 영국 켄트지방의 Thanet Earth라는 첨단 유리온실 단지 조성,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조성하여 난방과 CO2 동시 공급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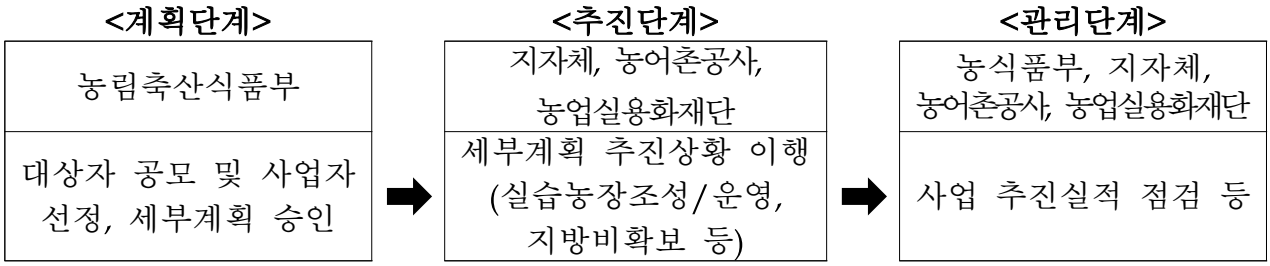

6.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 개발사업	29,184	20,000	15,000	△5,000	△25.0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2200 - 223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정책과장(김기훈), 사무관(김준현, ☏ 044-201-151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수익금은 부족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하여 국가 재정부담 완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태양광 발전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9년 에너지개발사업 4지구 11.3MW 건설
지원조건	출자,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사업 추진 : 15,00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4지구 11.3㎿ 건설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사업	**20,000백만원**	**15,00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규모 12지구 21MW 건설 · 준공 12MW, 15,615백만원 (9지구 x 1,735백만원) · 계속 7.3MW, 4,285백만원 (2지구 x 2,142백만원) · 신규 2MW 100백만원 (1지구 × 100백만원)	-발전규모 4지구 11.3MW 건설 · 준공 9.3MW, 14,508백만원 (3지구 x 4,836백만원) · 신규 2MW 492백만원 (1지구 × 49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동 사업은 부족한 공사 법정자본금(정부출자 5조원)에 대한 출자와 동시에 수익기반이 약한 농어촌공사에 에너지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으로 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출자 필요

* 공공기관 자본율('17년기준): 농어촌공사(27.9%), 한전(54%), LH(84%), 도공(92%), 수공(81%), 석유공사(80%)

○ 아울러, 국정과제 37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 20%로 대폭 확대)에 따른 신정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반영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	**29,184**	**20,000**	**15,000**		
▪ 준공지구 (산출근거)	10,175	15,615 (준공12㎿, 9지구x1,735 백만원	14,508 (준공9.3㎿, 3지구x4,836 백만원		
▪ 계속지구 (산출근거)	6,637	4,285 (계속7.3㎿, 2지구x2,142 백만원	-		
▪ 신규지구 (산출근거)	12,372	100 (신규2㎿, 1지구×100 백만원	492 (신규2㎿, 1지구×492 백만원		
□ 비목(합계)					
○ 출자금(460-01)	**29,184**	**20,000**	**15,0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 추진경위 : 3개 기관 통합(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으로 2000년 설립된 공사의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자금을 재원으로 경영여건을 개선

*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에 부합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150	135	150	150	230	2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6년 이월·불용 실적 : 6,184백만원

- 내역 및 사유 : ’16년의 출자금 150억원은 사업시행주체인 농어촌공사에 이월액 없이 집행되었으나, 사업진행 중 인허가 지연과 민원발생으로 사업기간이 조정되어 6,184백만원 이월되었음(태양광 9지구 8,658㎾ 5,520백만원, 소수력 3지구 790㎾ 664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0**			150	**150**		
	(150)	( )	( )	(150)	**(150)**	( )	( )
’16년	**150**			150	**150**		
	(150)	( )	( )	(150)	**(88)**	(62)	( )
’17년	**230**	62		292	**292**		
	(230)	(62)	( )	(292)	**(29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82점(’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 국회(예결위, 상임위, 국정감사 포함) 등의 지적사항

- ’17년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시 기본계획 수립 필요(’16년 예결위)
- 태양광 사업추진 관련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17년 상임위)
- 태양광 설비의 환경 안정성에 관한 대책(’18년 상임위)

○ 조치사항

- ’17년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지구 기본계획 수립 완료 (’16.12월)
-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태양광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유지, 지역주민 동의, 경관유지, 환경안전을 확보한 지구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조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분류	프로세스	주관	시기	주요내용
준비단계	수요조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년도 4월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예정지 조사
	예산요구	농림축산식품부	전년도 6월	·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식품부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확정단계	사업지구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당년도 2월	· 사업시행지구 확정 - 확정예산 반영 및 추진여건 변화 등 재검토
추진단계	출자금요청	한국농어촌공사	당년도 3·9월	· 사업비(출자금)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출자금요청	농림축산식품부	당년도 4·10월	· 사업비(출자금)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출자금배정	기획재정부	당년도 4·10월	· 사업비(출자금) 배정 · 기획재정부→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당년도 12월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익년도 1월	· 사업집행실적 점검 및 정산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익년도 2월	·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익년도 3월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익년도 4월	·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참고 1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시행방법 및 주체 : 출자(국고 100%), 한국농어촌공사

○ 총 출자금 : 1,265억원('09～'18)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누계
5,000	10,000	-	10,000	15,000	13,500	15,000	15,000	23,000	20,000	126,500	141,500

□ 운영현황 및 연도별 수익 현황

○ 사업운영지구 현황(82지구, 44MW) (단위 : 백만원, '18.12월 기준)

구 분	지구수	발전용량 (kW)	'17년 발전량 (MWh/년)	총 사업비	'18년도 예상수익	'17년까지 누적수익
합 계	82	44,343	46,829	147,582	13,200	76,960
태양광	41	20,284	21,291	75,550	7,895	44,206
소수력	39	19,059	17,691	62,913	4,048	29,630
풍력	2	5,000	7,847	9,119	1,257	3,124

○ 연도별 수익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누계
합 계	**868**	**1,485**	**2,050**	**2,638**	**3,470**	**4,324**	**5,613**	**6,942**	**7,862**	**35,252**
소수력	-	-	473	1,103	1,379	1,903	1,492	2,679	2,055	11,084
태양광	868	1,485	1,577	1,535	2,091	2,421	3,211	3,454	4,402	21,044
풍력	-	-	-	-	-	-	910	809	1,405	3,124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총 소 요 액	**343,805**	**333,862**	**333,749**	**352,195**	**338,252**	**334,636**
국 고 보 조 액	76,993	124,254	156,509	161,038	163,000	154,700
공사 자체충당	266,812	209,608	177,240	191,157	175,252	179,936
- 자산매각수익	206,618	144,695	111,133	125,070	104,334	117,078
- 에너지개발사업	**2,638**	**3,470**	**4,324**	**5,613**	**6,942**	**7,862**
- 기 타	57,556	61,443	61,783	60,474	63,976	54,996

참고 2 한국농어촌공사 출자금 현황

□ 연도별 출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출자금 내역				
	계	승계자본금	현물출자	현금출자	현금출자 사유
합 계	**1,396,529**	**990,307**	**29,722**	**353,500**	
통합시	990,307	990,307			
'00	40,000			40,000	· 통합공사 경영 조기안정 지원
'01	40,000			40,000	· 통합초기 생산성 향상 (정보인프라 구축 및 장비구입)
'02	40,000			40,000	· 통합초기 생산성 향상(정보인프라 구축, 장비구입 및 노후지사 신축)
'03	69,722		29,722	40,000	· 통합초기 생산성 향상(정보인프라 구축, 장비구입 및 노후지사 신축)
'04	40,000			40,000	· 경영안정기반 구축(자체사업 투자 및 김포간척지 사후관리 이자지원)
'05	30,000			30,000	· 경영안정기반 구축(자체사업 투자 및 김포간척지 사후관리 이자지원)
'07	20,000			20,000	· 취득 원인이 없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취득
'08	20,000			20,000	· 취득 원인이 없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취득
'09	5,000			5,000	· 신재생에너지(소수력발전)사업 투자
'10	10,000			10,000	· 신재생에너지(소수력발전)사업 투자
'12	10,000			10,000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13	15,000			15,000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14	13,500			13,500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15	15,000			15,000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16	15,000			15,000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17	23,000			23,000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투자

□ 주요 공공기관 자본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법 정 자본금 (A)	납입자본금								납입률 (B/A)
		'11까지	'12	'13	'14	'15	'16	'17	계(B)	
계	1,064,000	676,000	32,594	27,671	35,296	32,566	32,810	32,693	869,630	81.7%
□ 한국농어촌공사	**50,000**	**13,050**	**100**	**150**	**135**	**150**	**150**	**230**	**13,965**	**27.9%**
□ 공공기관 소계	**1,014,000**	**662,950**	**32,494**	**27,521**	**35,161**	**32,416**	**32,660**	**32,463**	**855,665**	**84.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862	442	-	-621	-	-	-	683	22.8%
◦한국전력공사	60,000	32,098	-	-	-	-	-	-	32,098	53.5%
◦한국광물자원공사	20,000	10,003	2,600	2,250	2,249	1,802	679	300	19,883	99.4%
◦한국석유공사	130,000	89,652	7,717	2,936	395	1,378	1,391	879	104,348	8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00	320	180	-	-	-	-	-	500	100.0%
◦한국도로공사	350,000	238,565	13,733	13,373	13,054	16,777	13,744	13,606	322,852	92.2%
◦한국토지주택공사	350,000	224,176	6,616	8,131	18,902	10,667	11,882	13,513	293,887	84.0%
◦한국수자원공사	100,000	66,950	1,206	831	1,182	1,792	4,964	4,165	81,090	81.1%
◦한국관광공사	500	324	-	-	-	-	-	-	324	64.8%

※ 자료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ALIO) 기관별 공시자료 참조
주1)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4.11.10.일자로 62,102백만원 유상감자로 납입률 저조

참고 3 에너지개발사업 관련 법령

□ 법적 근거(공사법 및 정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15.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33조

제33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0.3.4, 2014.3.10>
15.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
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 에너지개발사업 관련 법령

관련법	관련사항	내 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법 제4조 (시책과 장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 법 제7조 (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 발전설비용량 3천㎾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법 제31조 (전력거래)	○ 전기 판매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고 4 신재생에너지사업 개요

□ 신재생에너지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총 12개 종류)

□ 전경 및 조감도

구 분	발전원리	전경사진 및 조감도
소수력 (출자사업)	하천 또는 호수 등에서 물이 가지는 위치에너지를 수차에 의해 기계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설 **[저수지, 취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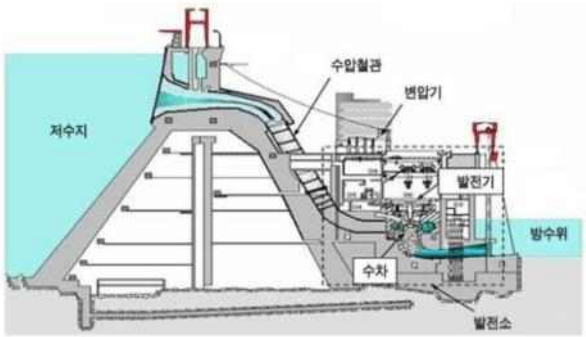 소수력발전 개념도
태양광 (출자사업)	태양의 빛에너지를 태양전지 모듈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설 **[유휴부지, 저수지수면, 방조제 사면, 양배수장 옥상 등]**	 영암 태양광발전소 전경

구 분	발전원리	전경사진 및 조감도
풍력 (출자사업)	바람이 풍력발전기 날개를 회전시켜 날개의 회전력을 발전기로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설 **[서·남해안 방조제 주변]**	 천수만 홍성풍력 전경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현황

('18.02월 통계연보 자료발췌)

구 분	저수지 (소수력,태양광)	취입보 등 (소수력)	양배수장 (태양광)	방조제 (풍력,태양광)	용·배수로 (태양광)
개소수	3,403	5,891	4,473	144	102천㎞
수혜면적	338천ha	8천ha	154천ha	-	(토공53,구조물49)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인프라와 자원 및 기존인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최적화

□ 공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사례

 <화성 태양광발전소(2014년 준공)> • 발전규모 : 2,993㎾	 **<대도 수상태양광발전소(2015년 준공)>** • 발전규모 : 500㎾
 <동화 소수력발전소(2005년 준공)> • 발전규모 : 1,000㎾	 **<가력 풍력발전소(2014년 준공)>** • 발전규모 : 3,000㎾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사례

<table>
<tr><td> </td><td> </td></tr>
<tr><td><산수배수펌프장 태양광발전소(광주광역시)>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준공연도 : 2012년
• 발전규모 : 2,000㎾</td><td><모곡 태양광발전소(한국도로공사)>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 준공연도 : 2013년
• 발전규모 : 4,600㎾</td></tr>
<tr><td> </td><td> </td></tr>
<tr><td><보령 소수력발전소(한국중부발전)>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 준공연도 : 2009년
• 발전규모 : 7,500㎾</td><td><대관령풍력발전소(㈜강원풍력발전)>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 준공연도 : 2006년
• 발전규모 : 98,000㎾</td></tr>
</table>

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재량, 계속)
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재량, 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융자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42,593	41,669	36,605	△5,064	△12.2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28,258	30,304	27,273	△3,031	△10.0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4,335	11,365	9,332	△2,033	△17.9

* 사업코드 : 20 - 24 - 4(투자), 5(융자) - 100 - 101 - 2200 - 223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박혜민, ☏ 044-201-22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기간	'09년~계속 (지열·목재펠릿: '10 ~, 폐열: '15 ~)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2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시설 1,461ha 지원 및 에너지절감시설 14,800ha 보급
지원조건	보조 + 융자 - 신재생에너지시설: 국비 70%(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목재펠릿: 국비 50%(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에너지진단 컨설팅: 민간보조(국비 100%) - 에너지절감시설: 국비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자치구청장)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신재생에너지시설: ('18) 19,093백만원→ ('19) 18,585 (△508)

* 지원방식 변경[1] 및 사업 수요 감소[2] 등을 고려하여 '18년 대비 2.7% 감액 요구

1)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통합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농가별 특성에 맞게 저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너지진단 컨설팅 도입

2) 사업수요가 감소 중인 목재펠릿난방기 예산 감액편성(△276백만원, △16.7)

- (보조) 15,75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시설 22ha × 1,125백만원 × 60% = 14,850
  · 목재펠릿난방기 20ha × 150백만원 × 30% = 900

- (민간보조) 375백만원
  · 에너지진단 컨설팅 15호 × 25백만원 × 100% = 375

- (융자) 2,46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시설 22ha × 1,125백만원 × 10% × 80%(실집행률) = 1,980
  · 목재펠릿난방기 20ha × 150백만원 × 20% × 80%(실집행률) = 480

○ 에너지절감시설: ('18) 22,576백만원→ ('19) 18,020 (△4,556)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투자계정: 미흡, 융자계정: 보통)를 반영하여 감액(△20.2%)

- (보조) 11,148백만원
  · 절감시설 672ha × 83백만원 × 20% = 11,148

- (융자) 6,872백만원
  · 절감시설 672ha × 83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6,872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41,669백만원**	**36,605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시설 38ha, 13,398백만원 · 지중열 시설 3ha, 1,795백만원 · 폐열 시설 3ha, 2,244백만원 · 목재펠릿난방기 24ha, 1,656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시설 22ha, 16,830백만원 · 목재펠릿난방기 20ha, 1,380백만원 · 에너지진단 15호, 375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	· 에너지절감시설 850ha, 22,576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 672ha, 18,0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제 기후변화협약(IPCC, ‘05.2 교토의정서)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농약·비료 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강화 추세

- 최근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5.12.) 출범에 따라 농축산 분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

*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 중 농업분야는 7.9% 감축 필요)

- 농축산분야 에너지부분은 작물재배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대체 및 절감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 추진

○ 시설농가 경영비 중 난방비가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 및 농자재가격 변동 반복 발생함에 따라 농가 경영불안 요인 해소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42,593**	**41,669**	**36,605**	**△5,064**	**△12.1**
▪ 신재생에너지시설	13,515	19,093	18,585	△547	△2.9
- 지열냉난방시설	11,700	13,398 (보조) 신규 10ha×1,400백만원×50%+개보수 28ha×325백만원×50% (융자) 신규 10ha×1,400백만원×10%×80%(실집행률)+개보수 28ha×325백만원×10%×80%(실집행률)	-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통합)	△13,398	△100.0
- 지중열냉난방시설	684	1,795 (보조) 3ha×880백만원×60% (융자) 3ha×880백만원×10%×80%(실집행률)	-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통합)	△1,795	△100.0
- 폐열재이용시설	-	2,244 (보조) 3ha×1,100백만원×60% (융자) 3ha×1,100백만원×10%×80%(실집행률)	-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통합)	△2,244	△100.0
- 목재펠릿난방기	1,135	1,656 (보조) 24ha×150백만원×30% (융자) 24ha×150백만원×20%×80%(실집행률)	1,380 (보조) 20ha×150백만원×30% (융자) 20ha×150백만원×20%×80%(실집행률)	**△276**	△16.7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신재생에너지시설	-	-	16,830 (보조) 22ha×1,125백만원×60% (융자) 22ha×1,125백만원×10%×80%(실집행률)	16,830	순증
- 에너지진단 컨설팅	-	-	375 (보조) 15호×25백만원×100%	375	순증
▪ 에너지절감시설	14,742	22,576 (보조) 850ha×83백만원×20% (융자) 850ha×83백만원×30%×40%(실집행률)	18,020 (보조) 672ha×83백만원×20% (융자) 672ha×83백만원×30%×40%(실집행률)	△4,517	△20.0
□ 비목(합계)	42,593	41,669	36,605	△5,064	△12.2
○ 민간경상보조(320-01)	-	-	375	375	순증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8,258	30,304	26,898	△3,406	△11.2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4,335	11,365	9,332	△2,033	△17.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고유가 대책방안 추진('08)
-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보고(범 부처, '09. 5. 4.)
-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보고(범부처, '09. 6. 40)
- 농어업용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 보고(농식품부, '09. 6. 14.)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022	787	748	524	494	41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730	618	514	360	340	30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292	169	234	164	154	11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내수경기 침체, 환율하락(엔저현상)으로 인한 신선채소·화훼 수출감소 추세로 시설원예분야 투자심리 저하에 따른 지열냉난방시설 등 초기 투자비(8.8~14억원/ha) 부담이 큰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업 수요 감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48**	-	-	748	**695**	-	53
	(695)	(264)	(-)	(959)	**(352)**	(386)	(220)
'16년	**524**	-	-	524	**508**	-	16
	(508)	(386)	(-)	(895)	**(365)**	(155)	(375)
'17년	494	-	-	494	426	-	68
	(426)	(157)	(-)	(582)	**(289)**	(115)	(17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담보여력 부족 등에 따른 집행부진('16년 결산, 예결위)

⇒ (조치사항) 농가의 담보력 확보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증액 추진: 사업비 단가가 큰 신재생에너지시설(공기열냉난방시설 포함)에 대해 예외한도 적용('18년 시행)

* 보증한도 : (현행) 개인 10억, 법인 15 → (변경) 개인 30, 법인 70

- (지적내용)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16년 결산, 예정처)

⇒ (조치사항) 실집행률과 지자체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예산 축소('17년 시행)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17년) 494억원 → ('18) 417(△15.6%)

- (지적내용) 중도포기율에 대한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평가 등을 통한 성과제고 필요('17 예산안 검토보고, 예정처)

⇒ (조치사항)

- 지방비, 융자, 자부담 확보 및 조기 시공체계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제도 도입: 전년도 예비사업자 선정 시 사전 컨설팅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적격 대상자 선정으로 중도포기 방지 및 집행률 제고('17년 시행)
- 사업자 선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 미착수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취소 후 즉시 대체사업자 선정('18년 시행)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융자금 수요 및 실집행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예산 편성요구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16년 융자실태감사)

⇒ (조치사항)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국고융자 소요예산 대비 40~80% 수준으로 '18년 예산 반영('17년 시행)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7) 154억원 → ('18) 114(△26%)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79.00, 융자), 미흡(75.25, 투자)

- 미흡사유 : 집행 부진

⇒ (조치사항) 사업 실수요를 감안하여 ’19년 예산 축소 편성(△12.1%)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조치사항) ’17년 예산 축소편성(△5.6%)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네덜란드,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시설현대화, 비용절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40～50%보조 및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추진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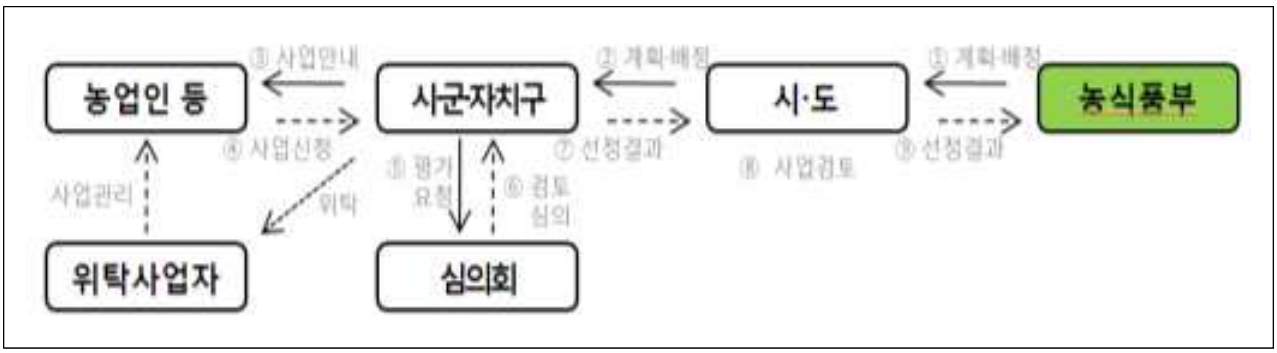

참고 1 지열냉난방시설 개요

❑ 기술원리

○ 지열은 지표면 15m 이하에서는 연중온도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지하 300m 이내 연중 12~25℃ 온도를 유지하는 범용지열을 회수하여,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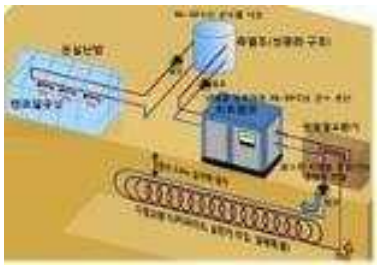
지열히트펌프의 원리

땅 굴착 및 파이프 매설(열 흡수)

히트펌프(열 증폭)

온실내 열교환기(열 공급)

❑ 유형별 공법 비교

구 분	수직 밀폐형	수평 밀폐형	개방형(SC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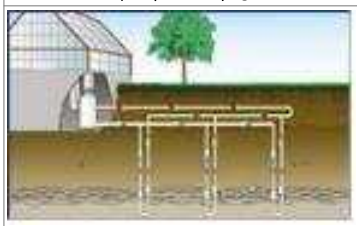		
방 식	순환루프로 지중열을 회수	표토층의 열을 이용하는 방식	지하수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
시추깊이	100m ~ 200m	2m ~ 3m	200m ~ 400m
치비용	높음	가장 낮음	비교적 저렴
용 량	중대용량에 적합	소용량에 적합	중대용량 적합
지열설비용량	0.02RT/㎡	0.02RT/㎡	0.02RT/㎡
천공수	0.0066공/㎡	약 0.5m 매설길이/㎡	0.0008공/㎡
천공면적	20㎡/공	난방면적의 약160% 필요	약 20㎡/공
공간이격거리	5m	1m	15m
기계실 면적 (규모가 클수록 감소)	0.4㎡/1RT	0.4㎡/1RT	0.4㎡/1RT
인·허가	굴착행위 신고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스템의 특징	•시공기간 길다	•시공기간 짧다	•시공기간 짧음 •동절기 성능우수
장 점	•시공 후 유지관리 불필	•수직형 보다 공사비 저렴 •천공이 필요 없어 비교적 시공이 쉽다	•타 공사보다 공사비 가장 저렴 •고효율, 면적이 좁은 곳에 유리(필요 면적이 가장 적음)
단 점	•부지면적 과다 소요 •설치비가 고가	•부지면적이 가장 많이 소요 •지중 배관 루프길이가 길다 •외기 기온의 영향을 받음	•지하수 연장허가 비용 (5백만원/5년, 영향조사)

참고 2 폐열 재이용시설 개요

❑ 도입배경

○ 농가 경영비 절감에 필요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높아 영세 농업인의 경우 참여가 어려워 사업 확산 지연

○ 소각장 및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자원을 활용해 집단에너지 공급형태로 지원하여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농가의 경영소득 증대

❑ 경제성 분석

구분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시스템	지중 일정 온도(15±5℃) 열을 활용하여 히트펌프의 열원 및 매개체로 얻는 방식	소각장 및 발전소 등의 폐열을 히트펌프 열원으로 활용하여 냉난방
구성기기	- 지중열교환기(수직 150m, 수평 3m) - 히트펌프, 축열조, 실내기	- 이송관로, 열교환기, 순환펌프 - 히트펌프, 축열조, 실내기
특징	- 일정 지중온도 열원으로 안정적 - 천공작업 시 굴착 소음 발생 - 열교환기 수질 문제 발생(개방형)	- 안정적이며 저가 열원 활용 - 초기 투자비 저렴 - 열원공급 인근 연관산업 집단화단지 조성 - 열원기기의 내구성 확보 필요
사업비	14억원/ha	11~13억원/ha

○ 폐열 공급원으로부터의 이송거리가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커져 경제성이 낮아지지만 3km 이내 사업장이 위치할 경우 경제성이 높음

○ 발전소 폐열을 활용해 히트펌프 시스템을 온실 난방에 도입할 경우 1ha 기준 연간 157백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투자비 회수기간 6.1년)

* 난방비(1ha) : 경유 210백만원, 폐열활용 53백만원

❑ 시스템 적용 사례(발전소 온배수 이용)

<이용도>

<이송배관>

<온수탱크>

<파파야 재배>

참고 3 에너지절감시설 개요

❑ 다겹보온커튼

○ (예인식) 온실내 커튼을 예인줄로 끌어당겨 커튼을 열거나 닫는 방식

○ (권취식) 커튼을 감는 개폐축이 수평 또는 경사를 따라 이동 회전하면서 커튼을 감거나 펼치는 방식

○ (예인권취식) 예인식과 권취식의 단점을 보완 개량한 것으로 권취축은 온실 내 기둥 물받이 아래 설치되어 이동하지 않고 회전만 하면서 커튼을 예인줄로 끌어당기거나 풀면서 커튼을 감거나 펼치는 방식

<예인식>

<예인권취식>

❑ 순환식수막시설

○ 비닐하우스 이중피복 사이에 14~15℃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이중비닐 위에 물커튼을 형성하여 보온하는 기술

○ 순환식 수막은 사용한 지하수를 재순환해 활용하므로 지하수 부족 지역에서도 수막재배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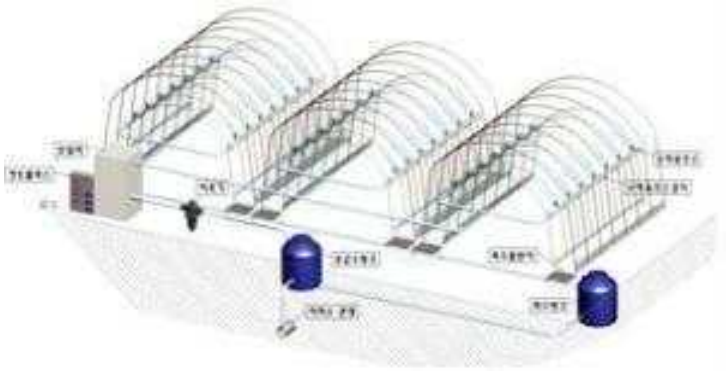

<순환식 수막시스템의 구조>

9.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3,243	3,358	3,190	△168	△5.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224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노승환, ☏ 044-201-24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 3개의 내역 사업을 통한 농가·식품기업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목표관리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지원 확대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로 농가소득 창출 ○(저탄소인증) 인증 건수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추진
사업기간	'11~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18년까지 투자액 182억원)
사업규모	○21개 농식품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이행 관리 및 지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인증 컨설팅(280건) 등 지원
지원조건	민간보조(국비 100%) (감축기술 실증사업 : 국비 50%, 자담 50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지원 : 국비 70%(대기업 자담 30), 국비 100%(중소·중견기업))
사업시행주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 3,190백만원**

- **농식품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 1,048백만원**
  - ▪ 농식품기업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관리 및 사업 운영
  - ▪ 지원내역 : 관리업체 지정, 감축목표 설정, 실적 점검·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 ✓ 관리업체: ('18) 20개 업체(사업장 포함 50여개소) → ('18) 19개 업체(약 45여개소)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1,056백만원**
  - ▪ 농업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감축실적 인센티브 제공, 배출권거래제 연계 지원(외부사업 전환 등록, 방법론 개발) 등
  - ▪ 지원내역: 컨설팅(사업등록, 모니터링·검증) 및 감축실적 인센티브 제공
    - ✓ 사업등록 : ('18) 76건 → ('19) 77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지원: 1,086백만원**
  - ▪ 저탄소 인증 참여 농업경영체(280건) 인증 및 교육 지원
  - ▪ 지원내역 : 컨설팅, 인증심사, 심사원 교육, 유통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 인증건수 : ('18) 350건 → ('19) 280건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3,358백만원**	**3,190백만원**
▪ 목표관리제	1,048 (50개 사업장×21백만원) * 관리업체 지정, 감축목표 설정, 이행점검, 이행실적 평가 등	1,048 (45개 사업장×23.3백만원) * 좌동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1,056 (76건×13.9백만원) * 사업등록 및 모니터링·검증, 방법론 개발 등	1,056 (77건×13.7백만원) * 좌동
▪ 저탄소 인증제	1,254 (350건×3.6백만원) * 인증 컨설팅, 인증심사교육홍보 등	1,086 (280건×3.8백만원) * 좌동

□ 지원 필요성

○ **(목표관리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 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정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감축목표를 설정·달성하도록 지원해야하며, **점검과 지원은 법적의무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

* 목표관리제는「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

○ **(자발적 감축사업)** 농업분야는 규모가 영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가 부족. 또한 '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에 농업인이 참여하여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저탄소 인증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7조에 의하여 정부는 생산 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농축산분야에서도 저탄소 농축산물 국가 인증제를 시행하여 **저탄소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부문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 운영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3,243	3,358	3,190	△168	△5.0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048	1,048 (50개소×21백만)	1,048 (45개×23.3백만)	-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936	1,056 (76건×13.9백만)	1,056 (77건×13.7백만)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259	1,254 (350건×3.6백만)	1,086 (280건×3.8백만)	△168	△13.4
□ 비목(합계)	3,243	3,358	3,190	△168	△5.0
○ 민간경상보조(320-01)	3,243	3,358	3,190	△168	△5.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2조(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추진경위

- 농식품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09.11.) 및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 설정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14.1.)
    - * 식품분야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5.0%(29만톤CO_2) 감축목표 수립
  -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16.12.)
    - * 식품분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6.5%(42만톤CO_2) 감축목표 수립('18.7)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반영('11.5.)
  - ▪ 농림수산식품산업 탄소상쇄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2.3) 및 고시 제정('12.5)
  -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 규정」 고시 개정('13.5.)
  -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본 사업 추진계획 수립('14.12) 및 사업추진('15.3)
  - ▪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MOU(농식품부-충남도청-서부발전)체결('15.11)
  - ▪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MOU(농식품부-경남도청-남동발전)체결('17.12)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반영('11.5.)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고시) 제정 및 시행('14.3.)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그린카드(환경부) MOU 체결('14.10)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18	20	27	27	32	3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7.4 (27.4)	- (-)	- (-)	27.4 (27.4)	27.4 (27.0)	- (-)	- (0.4)
'16년	27.4 (27.4)	- (-)	- (-)	27.4 (27.4)	27.4 (27.0)	- (-)	- (0.4)
'17년	32.4 (32.4)	- (-)	- (-)	32.4 (32.4)	32.4 (31.6)	- (-)	- (0.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기재부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정상추진**

- 평가대상 : 32개 부처, 472개 보조사업(우리부 76개)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은 존속기한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하고 존속기한 만료 전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참고, 평가 결과 유형은 "즉시폐지<단계적 폐지<통폐합<사업규모 축소<사업방식 변경<정상추진"으로 구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 농업 탄소상쇄 사업 현황>

구분	옵셋 제도	농업부문 해당 내용	비 고
EU	▪ CDM	▪ 농업에너지, 논 물관리, 토양탄소흡수, 농업부산물 활용 등	에너지 및 비에너지 포함
호주	▪ CFI 제도	▪ 농업·임업분야의 탄소격리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	-
일본	▪ 크레디트 제도	▪ 농가·중소기업의 에너지 절감 기기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만 해당
캐나다	▪ 탄소크레디트제도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농업부문 배출 아산화질소 감축사업, 보존경운법 등	에너지 및 비에너지 포함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해외 탄소표시제 운영 현황>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일본	스웨덴
제도명	Carbon reduction label	Indice carbon	Climatop	Climate conscious carbon label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Climate declaration
시행년도	2008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09년	1998년
대상제품	전제품	B2C	B2C	전제품	전제품	전제품
마크						
농축산물 인증 현황	-	계란	아스파라거스	-	쌀, 토마토 등 6품목	-

(5) 사업추진절차

○ 농식품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구분	세부 절차	기한
관리업체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9조)	○ 관장기관 관리업체 선정,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4월 30일
	○ 환경부 장관 확인하여 결과 관장기관에게 통보 ○ 통보받은 관장기관 관리업체 지정·고시	6월 30일
	○ 관리업체 이의 있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신청 - 관장기관 재심사 → 환경부 장관 확인거쳐 관리업체에 통보(30일 이내) → 지정에 변경있는 경우 관보 고시	
감축목표 설정 (시행령 30조)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설정 ○ 설정된 목표 관리업체·센터에 통보	9월 30일
이행계획서 제출 (시행령 30조)	○ 관리업체 다음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장기관에 제출	12월 31일
이행실적 제출 (시행령 30조)	○ 관리업체는 이행계획 실행실적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 센터에 제출 ○ 센터는 이행실적 제출받으면 등록부 작성,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	차차년도 3월 31일
명세서 작성 제출 (시행령 34조)	○ 관리업체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작성 ○ 관리업체 검증기관 검증결과 첨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 센터는 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	매년 3월 31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시행령 30조)	○ 관장기관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 ① 관리업체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 보고 내용 중 MRV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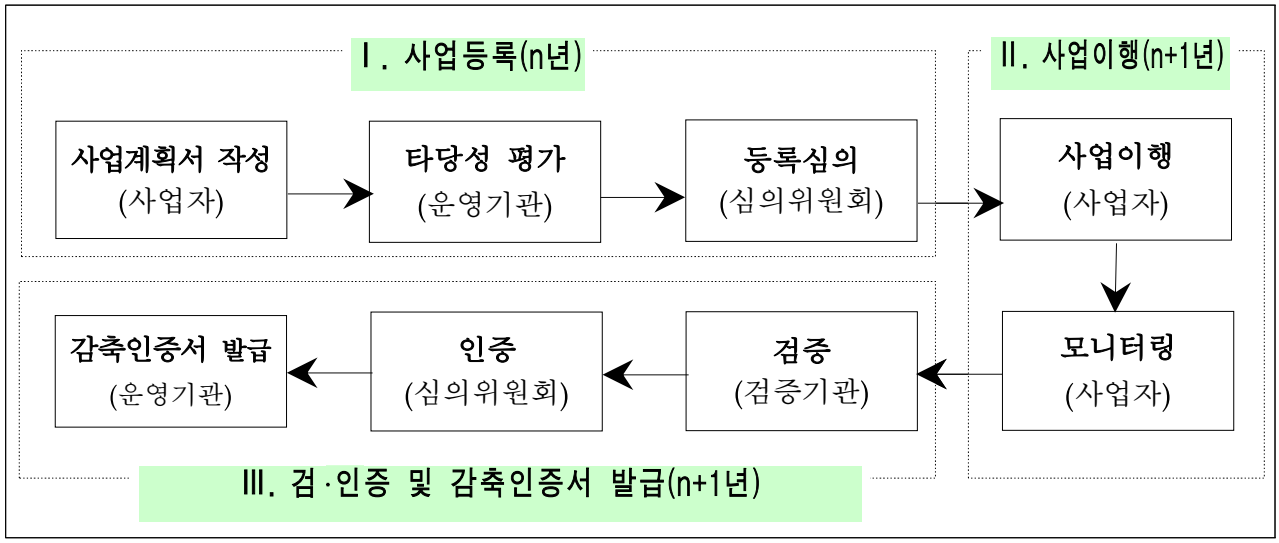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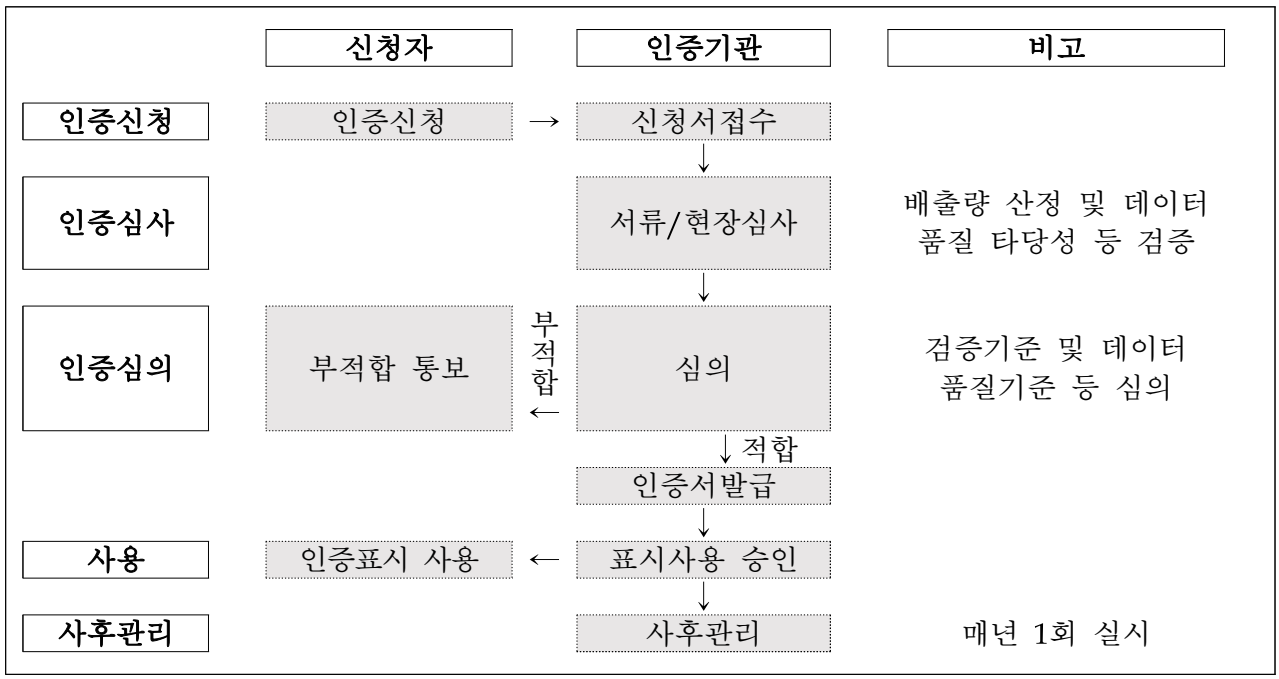

참고 1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제도개요

○ (추진배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 국가 전체 감축 목표 : 2030년 배출전망치(850.6백만톤) 대비 37% 감축

○ (개념) 대규모 온실가스배출업체(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44조 ('10.4.14 시행)

○ 추진절차

관리업체 지정(n년) → 차년도 감축목표 설정(n+1) → 감축활동 (n+2) → 실적점검 (n+3)

□ 제도 운영체계

○ 총괄기관(환경부) : 총괄·조정, 기준·지침 제정, 관장기관 점검·평가 등

○ 우리부는 **농업·임업·축산·식품** 부문의 관리업체 지정,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 관리 역할 수행

* 부문별 관장기관: 농식품부(농업・임업・축산・식품), 산업부(산업・발전), 환경부(폐기물), 국토부(건물・교통), 해수부(해양·수산·해운·항만)

□ 지정대상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기준(최근 3년간 평균)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업체 지정

구 분	'11.12.31까지		'12.1.1부터		'14.1.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CO_2 ton)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500	100	350	90	200	80

참고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table>
<tr><th></th><th>목표관리제</th><th>배출권거래제</th></tr>
<tr><td>배경</td><td>•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2011~)</td><td>• 좌동(2015~)</td></tr>
<tr><td>개념</td><td>•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정부와 관리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감축목표를 정하며,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목표달성 유도</td><td>•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할당업체로 지정하여 정부가 감축목표를 강제 할당하며, 기업에게 배출권 여분 또는 부족분 거래를 허용하여 목표달성 유도</td></tr>
<tr><td>차이</td><td>• 정부와 기업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상을 통해 감축이행(미이행시 과태료)
* 과태료: 최대 1천만원 과태료</td><td>•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제 부여 및 감축이행(미이행시 과징금)
* 과징금: 배출권 거래가격의 3배</td></tr>
<tr><td>기준</td><td><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14.1.1부터</th></tr><tr><th>업체 기준</th><th>사업장 기준</th></tr><tr><td>온실가스 배출량 (CO_2 ton)</td><td>50,000</td><td>15,000</td></tr><tr><td>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td><td>200</td><td>80</td></tr></table></td><td><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15.1.1부터</th></tr><tr><th>업체 기준</th><th>사업장 기준</th></tr><tr><td>온실가스 배출량 (CO_2 ton)</td><td>125,000</td><td>25,000</td></tr></table></td></tr>
<tr><td>업체수</td><td>• 17년 관리업체 지정 식품 21개*(전체 362개)
* 6월 고시 기준(→10월 변경고시 지정 19개)</td><td>• 식품 25개, 목재 7개(전체 525개)</td></tr>
<tr><td>업무</td><td>• 총괄기관(환경부) : 제도 총괄·조정
• 부문별 관장기관(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관리, 실적평가 및 관련 행정처분 담당</td><td>• 할당계획: (기존)환경부 → (변경)기재부*
* 총할당량 결정 및 부문별 취합·조정
- 업종·업체: 소관부처가 할당량 내에서 결정
• 시장운영·집행: (기)환경부 → (변)기재부
• 평가 및 인증*: (기)환경부→(변)인증위원회(기재부)
* 소관부처가 환경부와 협의, 인증위 상정
• 외부사업(상쇄)*: (기)환경부 → (변)소관부처가 환경부와 협의
* 방법론 타당성 평가, 승인 및 감축량 인증
< 환경부 등록 방법론('16.2월 현재) >
* (원예시설)①목재펠릿, ②왕겨이용, ③지열히트펌프, ④발전온배수,
* (축산) ⑤바이오가스 플랜트</td></tr>
<tr><td>감축 목표</td><td>• 매년 관리업체와 ①기존 시설의 예상성장률(생산량) 및 ②신·증설시설 설치 계획을 협상, 업체별 배출허용량 및 감축목표 부여</td><td>• 14년도에 1차 계획기간('15-'17)의 배출권을 한번에 할당하고, 이행기간별 감축의무 부과</td></tr>
</table>

참고 3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사업 개요 >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 검인증하여 정부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농가 에너지 절감 및 소득 창출

□ 주요내용

○ (사업대상) 바이오가스플랜트, 지열 냉난방, 발전폐열회수, 목재펠릿 이용, 녹비재배 등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농가

* 사업건수/참여농가수(누적) : ('16) 35 / 388 → ('17) 46 / 429 → ('18) 56 / 446

* 인증실적/정부구매 : ('16) 16,480 / 16,755 → ('17) 16,547 / 16,547 ('18) 14,047 / 14,047

○ (사업내용) 감축사업 선정·모니터링·인증서 발급,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타당성평가·검증 비용 지원 및 감축실적 구매지원

* 방법론 : 저탄소 농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

□ 운영체계

○ 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심의위원회 : 기후·농업전문가로 구성 / 검증기관 : 민간 전문검증업체

○ 감축사업자 : 사업관리자* + 사업참여자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에 생소한 분야로서 사업관리자를 통해 컨설팅 등 지원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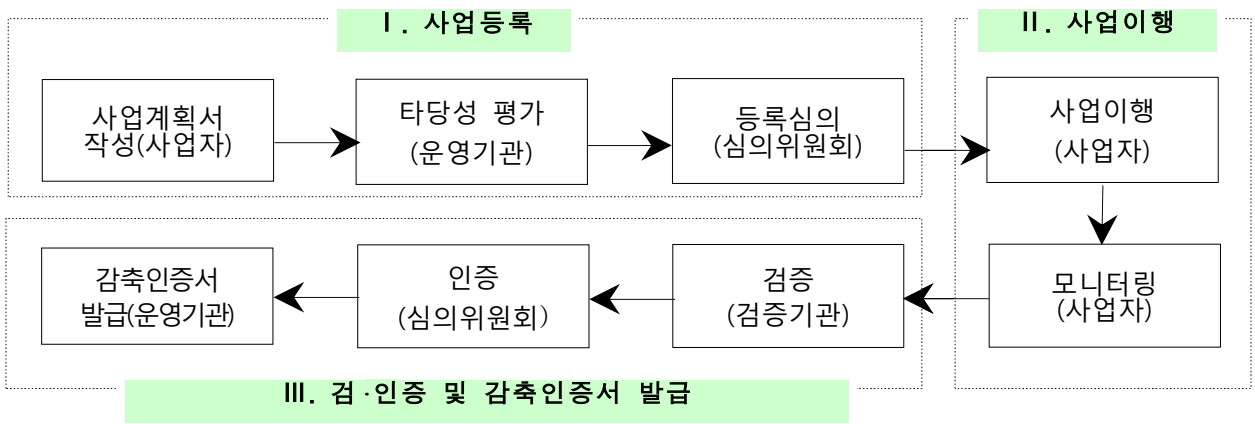

참고 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친환경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

* 저탄소 농업기술 :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저탄소 (Low Carbon)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인증 로고*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4-18호, '14.3.14.)에 근거 '14년부터 "농식품 통합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함

□ 추진 배경

○ 농식품분야 '30년까지 배출전망치(36.5백만톤CO_2) 대비 8.3%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 농가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시장기반형 감축제도 시행

□ 사업 내용

○ **(인증기준)**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적은" 농산물

○ **(인증대상)**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51 품목

○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적합 여부 최종 심의

○ **(유효기간)** 2년

<인증 기준>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배출량이 적은 경우

* 농산물 온실가스 산정 기초 자료 등 데이터가 축적된 후 인증기준 강화 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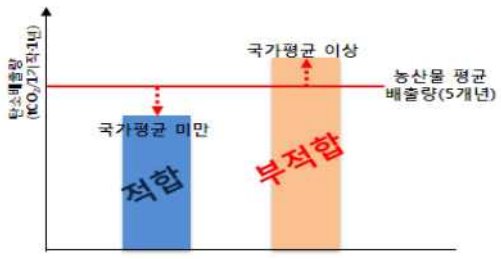

○ 추진절차

단계	인증 신청	산정보고서 제출	심사 및 심의	인증서 교부	인증 표시 및 출하	사후관리
주체	신청자	신청자 →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 신청자	인증농업인	인증기관

10.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조성(재량, 신규)

< 농특회계 - 구조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조성	-	-	500	500	순증

* 사업코드 : 10 - 15 - 4 - 100 - 101 - 2200 - 224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노승환, ☏ 044-201-24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정책·연구·기술 개발, 신소득 작목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체계적·장기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19년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사업기간	'19~미정
총사업비	미정
사업규모	미정
지원조건	미정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구 분	'18 예산	'19 예산
□기후변화대응농업 연구단지조성	-	**500백만원**
▪ 기후변화대응농업 연구단지조성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기후변화 등 미래농업 환경에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조성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연구 수행
-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의 적정규모와 설립 방안을 검토하여 단지 조성 사업 구체화

○ 미래 농업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농업분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의 연구·발굴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	**-**	**500**	**500**	**순증**
▪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조성 (산출근거)	-	-	**500**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500**	**순증**
□ **비목**(합계)	**-**	**-**	**500**	**500**	**순증**
○ 일반연구비(260-01)	**-**	**-**	**500**	**500**	순증

3. 고려사항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기후변화대응농업 연구단지 조성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11.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재량, 계속)

< 에특회계 - 투자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3,610	3,649	2,823	△826	△22.6

* 사업코드 : 20 - 24 - 4 - 100 - 101 - 2200 - 2241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노승환, ☏ 044-201-24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지원
사업기간	'17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할당대상업체 34개 업체(식품27, 목재7)
지원조건	국고 보조(50 ~ 100%)
사업시행주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음식료품·목재 업종의 배출권 거래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2,823백만원**

▪ 산출내역 : 2,823백만원 × 국고보조 50~100%

- 배출권 거래제도 및 외부사업 운영 : 1,227백만원

* 18백만원×국고보조 100%×68개소 ≒ 1,227백만원

-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지원**(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중소기업 지원 사업) **: 1,596 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600백만원×국고보조50%×5개소=1,500백만원) +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30백만원×국고보조50%×6개소=90백만원) + **중소·신규기업 지원**(6백만원×국고보조50%×2개소=6백만원) =1,596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3,649백만원	2,823백만원
▪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2,368 백만원 (외부용역, 외부사업,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등)	1,227 백만원 (외부용역, 외부사업,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등)
▪ 온실가스 감축 지원	1,281 백만원 (감축설비 구축,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중소·신규기업 지원사업)	1,596백만원 (감축설비 구축,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중소·신규기업 지원사업)

□ 지원 필요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 필요

-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큰 제도로 감축설비·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3,610	3,649	2,823	△826	△22.6
▪ 배출권거래제 운영	2,329	2,368 (112개×21.1백만원×100%)	1,227 (68개×18백만원×100%)	△1,141	△48.1
▪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중소·신규기업 지원사업)	1,281	1,281 1,200(4개×600백만×50%) + 75백만원(5개×30백만×50%) + 6백만원(2개×6백만×50%)	1,596 1,500(5개×600백만×50%) + 90백만원(6개×30백만×50%) + 6백만원(2개×6백만×50%)	△315	△24.5
□ 비목(합계)	3,610	3,649	2,823	△826	△22.6
○ 일반수용비(210-01)	-	39	-	△39	순감
○ 국내여비(220-01)	2	2	1	△1	△50.0
○ 국외여비(220-02)	6	6	-	△6	순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3,602	3,602	2,822	△780	△21.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국조실, '18.3.20)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환경부, 17.7.26)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17.12.29) 제1조(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18.5.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18.7.31)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18.6.28)

○ 추진경위

- UN 기후변화협약('92)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채택('97)되면서 선진국에 한해 '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08～'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년 BAU* 대비 30% 감축 선언('09.11)

  * BAU(Business As Usual) :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산정된 배출량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채택('15.11.)함에 따라 신기후체제 출범

  * 선진국·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방안 마련('16.2.25, 녹색위)
-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16.6.1)

  *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5조)

- 관장부처 책임제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완료 및 시행('16.6.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새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17.12)에 따라 총괄 및 집행기능은 환경부로 일원화, 외부사업·지원사업은 기존 관장부처 책임제 유지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	-	-	3	36	36

* 배출권거래제 관장부처 책임제로 변경되면서 '16.6 환경부에서 이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할당대상업체 소송건수 미발생으로 소송액 ('16년) 1,900만원, ('17년) 3,900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3)	- (-)	- (-)	- (3)	(3)	- (-)	- (0.19)
'17년	36 (36)	- (-)	- (-)	36 (36)	36 (36)	- (-)	0.39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EU를 시작으로 도입국가와 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총39개 국가에서 시행중

- EU·뉴질랜드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중이며, 미국·일본·중국* 지역 단위로 시행중

  * 중국은 시범기간을 거쳐 '17년에 전국 단위로 도입 예정이며, 멕시코·칠레·브라질·베트남·러시아·터키·대만 등도 도입 준비 중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연간 운영계획 수립 사업시행지침 마련 국고보조금 교부 등		운영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공고 및 홍보 지원사업 프로그램 추진 등		감축실적 사후 관리 외부사업 참여 지속 관리 성과점검 등

참고 1 배출권거래제 개요

□ 배출권거래제 개념

○ **(정의)**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에서 기업별로 **남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5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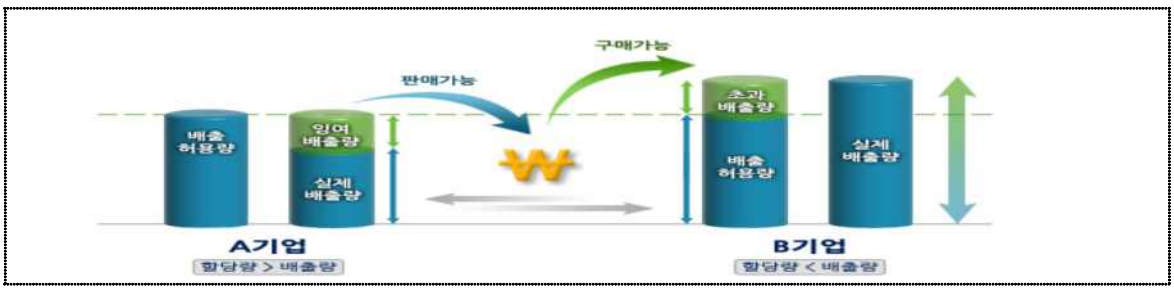

○ **(기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

□ 배출권거래제 경과

○ UN 기후변화협약('92)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채택('97)되면서 선진국에 한해 '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08~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파리협정 채택('15.12)과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식품·목재기업 배출권거래제 업무이관('16.6.1일부터)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BAU 대비 37%)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환경부 중심에서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16.2, 녹색위)

* 파리총회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15.12, VIP지시)

* BAU(Business As Usual) :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산정된 배출량

○ 농식품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주체 변경('16.6)

- (기존) 환경부 → (변경) 기재부 총괄, 소관부처별 책임운영

* 관장기관: 농식품부(농업·임업·축산·식품), 산업부(산업·발전), 환경부(폐기물), 국토부(건물·교통)

○ 새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18.1~)

- **총괄** 및 집행기능은 **환경부로 일원화**, **외부사업·지원사업**은 기존 **관장부처 책임제** 유지

참고 2 외부사업 개요

□ 개요

○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경우 **감축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는 사업**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18년 591개소가 해당 됨

- ①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 관련 조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관한 법률 제29조(상쇄), 동 법 시행령 38조(상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정에 관한 지침(농식품부고시 제2016-37호, '16.6.8)

- ②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한 경우에도 **외부사업**(상쇄)**으로 인정**(예: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외부사업자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 → 할당대상업체는 ①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정부에 제출**, ② **할당배출권(KA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판매**

<외부사업(상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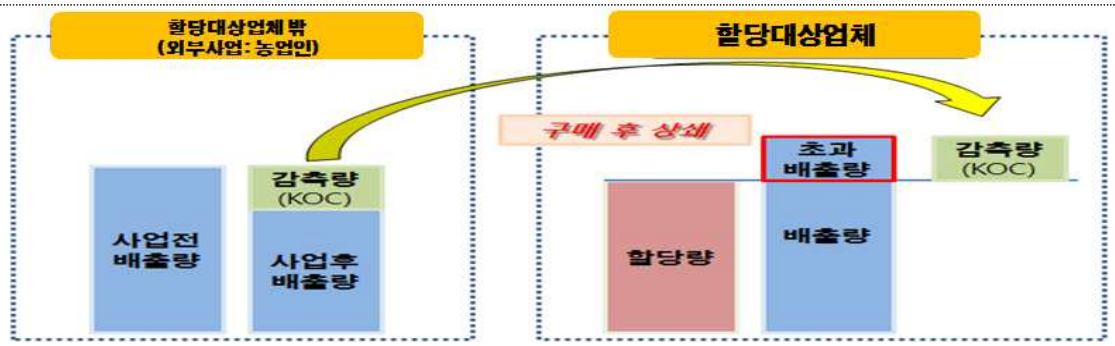

- KOC(Korean Offset Credit)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 KCU(Korean Credit Unit) : KOC를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 1KOC = 1KCU
- KAU(Korean Allowance Unit) : 사전할당 받은 배출권

12.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1,731	3,141	1,710	△1,431	△45.6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225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종자생명산업과장(최근진), 사무관(조병희, 박치형 044-201-2472,247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명자원 정보 통합DB를 구축하고,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 지원을 통해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생명자원 정보 통합DB 구축 ○ 무병·우량한 종자보급을 위한 곤충종자보급센터 건립 추진
사업기간	'11~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① 생명자원 통합DB구축(1식) ② 곤충종자 보급센터조성(1개소)
지원조건	① 생명자원통합DB구축(민간경상보조 100%) ② 곤충종자보급센터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50%)
사업시행주체	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② 지방자치단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생명자원 통합DB구축** : 생명자원 통합DB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 확대, 나고야 의정서 관련 정보 조사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을 위해 65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650백만원 × 1식 × 국고보조 100%

○ **곤충종자보급센터조성 : 무병·우량한 곤충종자의** 공급 및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곤충종자보급센터」조성 사업비 1,06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센터 연구·사육, 질병관리시설(2년차) 1,060백만원 × 국고 50% × 1개소

ㅇ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국고 2,500백만원) : 5,000백만원 × 국고 50% × 1개소

① 실시설계비('17, 240백만원) : 240백만원 × 국고 100% × 1개소

② 건축비('18년 1,200백만원) : 2,400백만원 × 국고 50% × 1개소

- 철근 콘크리트 3층(400만원/평)

③ 연구·사육시설(560백만원) : 1,120백만원 × 국고 50% × 1개소

- 항온항습&환기시스템, 곤충휴면처리용 저온저장실, 사료제조실, 산란생태원 및 사육기구 일체

④ 질병관리시설(500백만원) : 1,000백만원 × 국고 50% × 1개소

- ICT질병진단서버, 실시간 생리환경조사실, 검사실, 열화상분석시스템, pcr 분석기계, 3D이미지시스템, 주사현미경 등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3,141	1,710
▪ 생명자원통합DB구축	661 * 1식 ×661백만원×국고100%	650 * 1식 ×650백만원×국고100%
▪ 생명산업대전	200	-
▪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	300	-
▪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	250 (실시설계비)	-
▪ 곤충종자보급센터	1,200 *1개소×2,400백만원×국고50% (건축비)	1,060 *1개소×2,120백만원×국고50% (장비 구입 등)
▪ 곤충유통사업단	1개소(130백만원)	-
▪ 인체장내미생물은행건립타당성용역	200	-
▪ 곤충산업클러스터조성및타당성용역	200	-

□ 지원 필요성

○ (생명자원통합 DB구축) 생명 자원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생명자원 활용 산업 및 연구 활성화

- 특히,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조사 및 인식제고를 위해 예산 지원 필요

* 생명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제공국에 사전승인(PIC)을 받고,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14.10발효, 18.9 현재 111개국 비준, 69개국 관련 법안 마련)

○ (**곤충종자보급센터**) 곤충종자를 농가간 거래함에 따라 질병 및 품질관리가 안되어, 우량하고 병이 없는 곤충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

- 실시 설계('17년), 센터 건립 건축비('18년 1,200백만원), 장비구입비('19년 1,060백만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1,731	3,141	1,710	△1,431	△45.6
▪ 생명자원 통합DB구축	661 (1식×661백만×100%)	661 (1식×661백만×100%)	650 (1식×650백만×100%)	△11	△1.6
▪ 생명산업대전	300 (1식×300백만×100%) -관주도형(300백만원)	200 (1식×200백만×100%) -관주도형(200백만원)	-	-	-
▪ 곤충가치 및 산업정책홍보	100 (1개×100백만×100%)	-	-	-	-
▪ 곤충종자보급센터조성	240 (1개소×240백만×100%)	1,200 (1개×2,400백만×50%)	1,060 (1개소×2,120백만×50%)	△140	△11.7
▪ 곤충유통사업단운영	130 (1개×260백만×50%)	130 (1개×260백만×50%)	-	-	-
▪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	300 (1개×1,000백만×30%)	300 (1개×1,000백만×30%))	-	-	-
▪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	-	250 (1개×500백만×50%)	-	-	-
▪ 인체장내미생물은행건립 타당성 용역	-	200 (1식×200백만×국고100%)	-	-	-
▪ 곤충산업클러스터조성 및 타당성 용역	-	200 (1식×200백만×국고100%)	-	-	-
□ 비목(합계)	1,731	3,141	1,710		
○ 민간경상보조(320-01)	1,061	861	650		
○ 민간자본보조(320-07)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30	43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40	1,450	1,060		
○ 정책연구비(260-02)		4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생명자원통합DB구축('11～)>

- 농업유전자원법('08. 8월 시행)에 종합정보 구축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농업유전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09.8월), 시행계획 수립·시행('10.1월)
-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및 「생명자원통합DB구축 계획 보고(연두업무, '09.12월)
- 생명자원통합DB구축 사업 추진('11~'14)
-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명자원통합DB구축 연장('15~')

<곤충산업육성지원('11～)>

- '곤충 등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육성' 및 '동식물자원 통합 DB 구축 계획' 보고(대통령 연두업무 보고, '09.12월)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10.2.4),「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수립·시행('10.12월)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12～'16, 3개소 건립)
- "곤충생태지원관건립"('13～'16, 1개소건립)
-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2016～2020) 마련('16.3.21)
- "곤충종자보급센터건립" 추진('17~'19년, 1개소 건립)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84	95	93	98	17	3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수요를 실시하여 3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희망, 사업선정하였으나, 지자체 내부 예산확보 어려움 및 기존 사업 추진 대상자와의 경쟁에 따른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1,000백만원 불용

○ '16년: 경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공사지연 등

○ '17년: 경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축 설계 지연으로 인한 이월, 건축물 준공 승인의 지연에 따른 센터 개소가 늦어져 민간기업의 사업신청 저조로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3** **(97)**	14 (21)	( )	107 (118)	**97** **(63)**	- (55)	10 (-)
'16년	**98** **(98)**	- (55)	( )	98 (153)	**98** **(87)**	- (64)	- (2)
'17년	**17** **(17)**	- (-)	( )	17 (17)	**17** **(79)**	 (173)	 (0.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사업으로 선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ⅰ) 곤충기반식품 : ‘식의약화장품법(FFCDA)’에 따라 GMP시설에서 제조, ⅱ) 곤충사료 : ‘일반적 안전기준(GRAS)’에 의해 승인

○ (일본) 동물애호관리법(애완곤충), 식품위생법(식용곤충) 법률을 정비, ‘02년부터 산학연 연계 「곤충테크놀로지프로젝트」추진

○ (프랑스) 정부에서 식용곤충 연구팀 설립(‘15), 스타트업 기업인 Entomo Farm에서는 세계 최초로 대량 곤충사육시스템 도입(‘15)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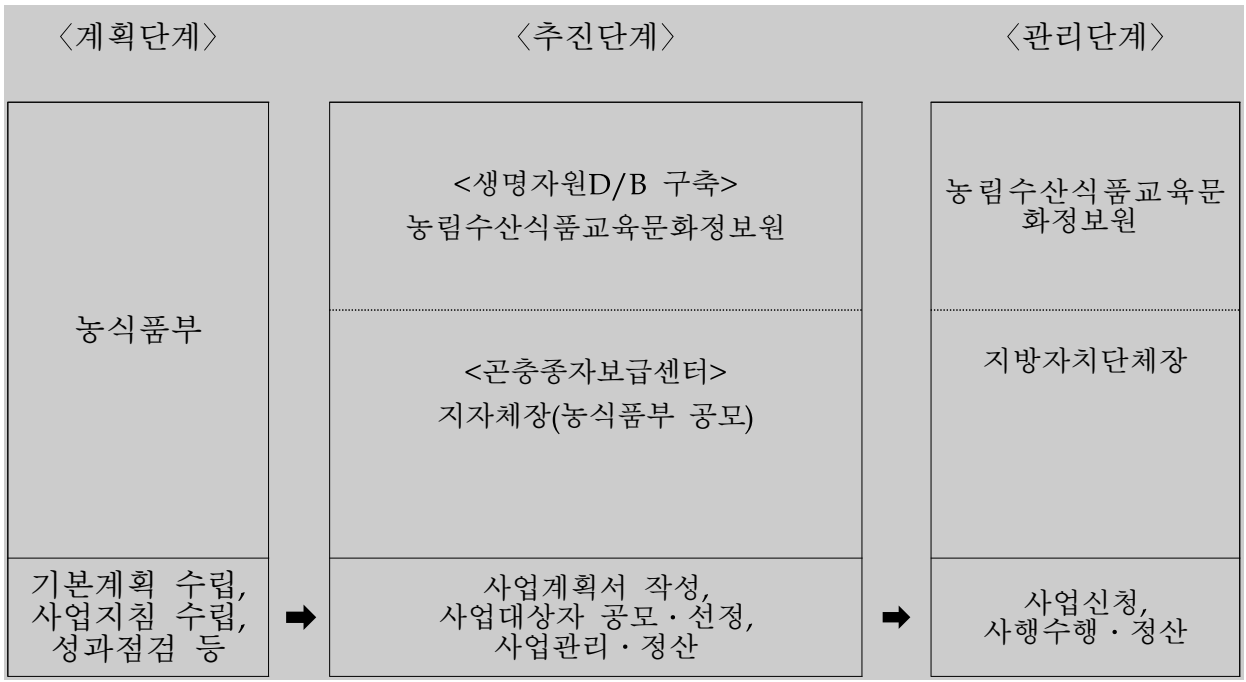

13. 도시농업활성화사업(재량, 신규)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도시농업활성화	(1,308)	(1,600)	1,600	-	

* 사업코드 : 20 - 15 -4 - 2200 - 2250

* 담당자 :농업생명정책관 국장(박수진), 종자생명산업과장(최근진), 사무관(우미옥, 044-201-247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도시농업 공간조성, 박람회개최, 교육·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기간	'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① 도시농업박람회 개최(1식, '12~) ②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지원(20개소, '14~) ③ 도시농업공간조성(10개소, '15~) ④ 도시농업정책홍보(1식, '15~) ⑤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식, '15~) ⑥ 도시양봉지원(1식, '16~)
지원조건	①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민간보조 국고100%) ② 도시농업교육·인력양성지원(민간보조, 국고50%~100%) ③ 도시농업공간조성(지치단체보조, 국고50%) ④ 도시농업정책홍보(민간보조, 국고100%) ⑤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민간보조, 국고100%) ⑥ 도시양봉지원(자치단체보조, 국고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국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16~18년)**이었으나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타 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18.3.)에 따라 **'19년부터 농생명국의 세부사업으로 이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300백만원**

▪ 산출내역 : 박람회 300백만원 × 국고보조 100% × 1회

○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 지원** :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체험지원을 위한 사업비 370백**만원**

▪ 확대되는 도시농업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 충당 및 학교텃밭 도시농업관리사 파견지원을 위해 '18년(300백만원) 대비 **70백만원(23.3%) 증액**

▪ 산출내역 : **300백만원**(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6개소 × 100백만원 × 국고보조 50%) + **70백만원**(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체험지원 14개교 × 5백만원 × 국고보조 100%)

○ **도시농업공간조성** : 그린벨트 유휴지, 도시농업공원, 건물옥상 및 벽면 등에 도시농업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비 **500백만원**

▪ 산출내역 : 도시농업공간조성 10개소 × 100백만원 × 국고보조 50%

○ **도시농업 정책홍보** : 도시농업의 가치 및 정책홍보를 위한 사업비 30**백만원**

▪ 산출내역 : 정책홍보 **30백만원**(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15백만원 + 국회생생텃밭행사 15) × 국고보조 100% × 1식

○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 도시농업 실태조사 DB구축 및 도시농업관리사 일자리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300**백만원**

▪ '18년(370백만원) 대비 **70백만원(18.9%) 감액**

▪ 산출내역 : 300백만원 × 국고보조 100% × 1식

- 도시농업 실태조사 DB구축 : 1식 × 200**백만원**

- 도시농업관리사 일자리연계 포털 시스템 구축 : 1식 × 80백**만원**

- 유지보수 : 1.7백만원 × 12개월 = 20백**만원**

○ **도시양봉지원** : 도시민 벌통구입비, 선도농가 교육을 위한 예산 **100백만원**

▪ 산출내역

- 벌통구입비 : 10개 시군 x 20명 x 2통 x 200천원 x 50%= 40**백만원**

- 선도농가교육 : 10개 시군 x 1회 x 2,000천원 x 100%= 20**백만원**

- 도시민 교육 : 10개 시군 x 4회 x 200천원 x 5개월 x 100%= 4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도시농업활성화	**(1,600백만원)**	**1,600백만원**
▪ 도시농업박람회	박람회 1회 개최	박람회 1회 개최
▪ 교육·인력양성	교육기관 6개소 지원	교육기관 6개소 지원,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체험 지원 14개교 추가**
▪ 도시농업공간조성	10개소 조성 지원	10개소 조성 지원
▪ 정책 홍보	2개 행사	2개 행사
▪ 종합정보시스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실태조사 DB구축** 및 **일자리연계 포털 시스템 구축,** 종합정보시스템 컨텐츠 확충·고도화
▪ 도시양봉지원	10개 시군 지원	10개 시군 지원

□ 지원 필요성

○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적합하고, 교육·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체험지원을 추가로 실시하므로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도시농업활성화	(1,308)	(1,600)	1,600	-	
▪ 도시농업박람회	300 (1식×300백만 ×100%)	300 (1식×300백만 ×100%)	300 (1식×300백만 ×100%)	-	
▪교육인력양성① *	300 (6개소×100백만×50%)	300 (6개소×100백만×50%)	370 (6개소×100백만 ×50%)+ (14개교×0.5백만 ×10회×100%)	70	23.3
▪도시농업공간조성	400 (8개소×100백만×50%)	500 (10개소×100백만×50%)	500 (10개소×100백만×50%)	-	
▪정책 홍보	30 (2회×15백만×100%)	30 (2회×15백만×100%)	30 (2회×15백만×100%)	-	
▪종합정보시스템	150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50백만+컨텐츠확충 55백만+이용활성화 45백만)×100%	370 (도시농업관리사 200백만+기능개선 120백만+컨텐츠확충 50백만)×100%	300 (DB구축 130백만+ 일자리연계포털 100백만+ 유지보수 70백만)×100%	△70	18.9
▪도시양봉지원	128 (10개 지자체 ×128백만×100%)	100 (10개 지자체 ×10백만×100%)	100 (10개 지자체 ×10백만×100%)	-	
□ 비목(합계)	(1,308)	(1,600)	1,600	-	
○ 민간경상보조(320-01)	780	1,000	1,000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28	600	600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체험과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 제14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 제1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1년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시 '저탄소 녹생성장,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보고
-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13.5.31)
  ·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도시농업공간 확충, R&D 확대, 인력양성, 홍보 강화 등 정책 구체화
- 도시농업 활성화방안 마련('15.3.31)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제고에 기여하고자 5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하는 향후 10년('24년까지)간의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마련
- '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핵심과제 선정('15.3월)

- 행정자치부의 “국민디자인단 과제”로 도시농업활성화 선정(‘15.4.15)
-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17.12.29)
  · 도농상생사업 기반 구축, 융복합서비스 창출, 교육·인력양성, 홍보 등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의 틀 구축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도시농업활성화	3	12	15	15	13	1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도시양봉지원은 ‘1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설계 시 일부 지자체의 수요량 예측 미흡으로 인한 불용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 **(15)**	- (-)	- (-)	15 (15)	15 **(14)**	- (1)	- (-)
’16년	15 **(15)**	- (1)	- (-)	15 (16)	14 **(16)**	- (-)	1 (-)
’17년	13 **(13)**	- (-)	- (-)	13 (13)	13 **(1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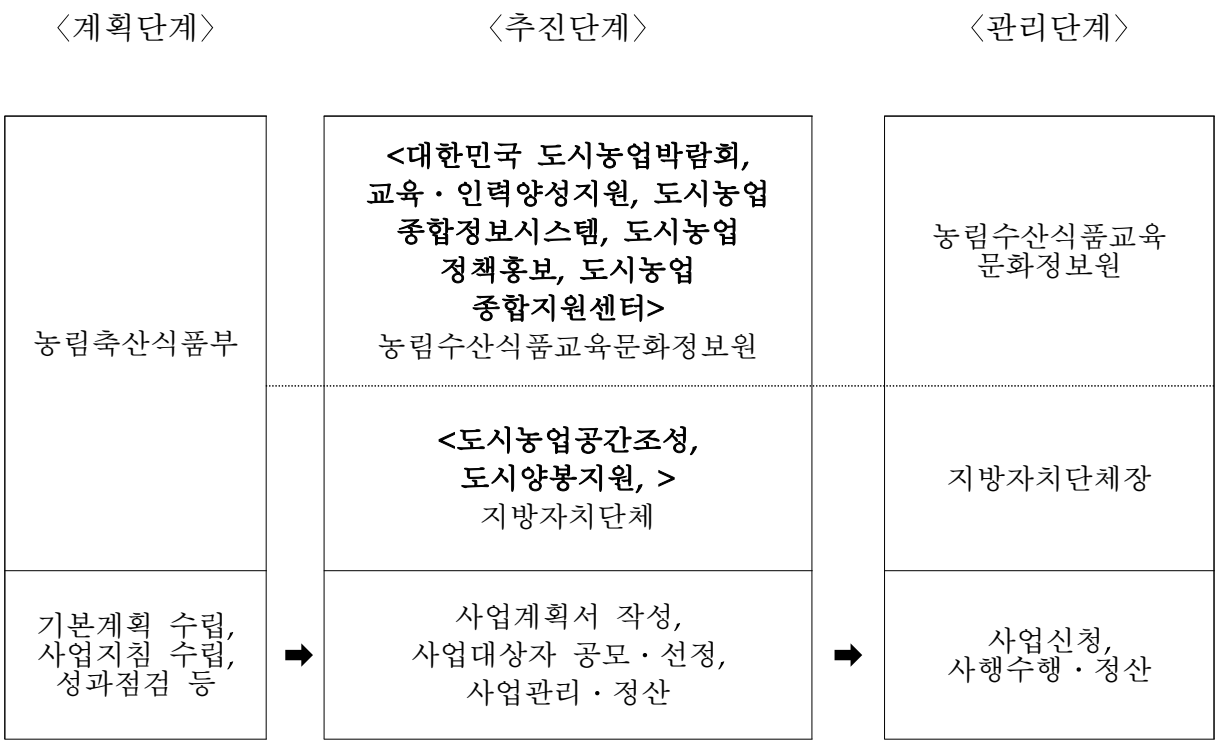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교육・인력양성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도시농업 정책홍보, 도시농업 종합지원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도시농업공간조성, 도시양봉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수립, 성과점검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사업관리・정산
사업신청, 사행수행・정산

참고 1 도시농업 현황

❑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텃밭 면적, 참여자수가 꾸준히 **확대 추세**

○ 2017년 기준, 참여자 수는 1,894천명, 도시텃밭 면적은 1,106ha로 **'10년 대비 각 12.4배, 10.6배 증가**

* 참여자수 : ('10) 153천명 → ('15) 1,309 → ('16) 1,599 → ('17) 1,894

** 텃밭면적 : ('10) 104ha → ('15) 850 → ('16) 1,001 → ('17) 1,106

< 연도별 도시텃밭 현황 >

(단위 : 천명, ha, ㎡, 개소)

구 분	'10년	'12년	'14년	'16년 (A)	'17년 (B)	증감 (B-A)	(B-A)/A
참여자수	153	769	1,084	1,599	1,894	295	18.4
텃밭면적	104	558	668	1,001	1,106	105	10.5
1인당면적	6.8	7.3	6.2	6.3	5.8	-0.5	-7.9
텃 밭 수	-	12,662	69,244	101,680	121,605	19,925	19.6

* 도시텃밭 유형 : 옥상텃밭, 학교 텃밭, 공공형 텃밭, 주말농장 등

< 지방조례 제정 현황(누계) >

구 분	'11년	'14년	'16 (A)	'17 (B)	증감 (B-A)	(B-A)/A
합 계	**21**	**76**	**91**	**98**	**7**	**7.7%**
광역자치단체	4 (서울·광주·대구·대전)	9 (부산·인천·울산·세종·경기)	10 (전북)	11 (경남)	1	10.0
기초자치단체	17 (서울 종로·성북구 등)	67 (안성, 청주, 전주, 여수 등)	81 (인천 남구, 목포, 여주 등)	87 (인천 동구, 공주, 울진 등)	6	7.4

❑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수요가 지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사업예산은 답보상태**

* 예산현황 : ('14) 1,200백만원 → ('15) 1,480 → ('17) 1,308 → **('18) 1,600**

참고 2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8~'22)

□ 비전 및 목표

비전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구현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의 틀 구축=

목 표 ('22)	도농상생사업 기반 구축	융복합 서비스 창출	도시텃밭 면적 2,000ha	도시농업 참여 4,000천명

4대 핵심 과제

1.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	①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운영 ② 도·농간 교류활동 강화 ③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2.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	① 미래세대 텃밭교육 체계화 ②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구축 ③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
3.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	① 4차산업 대응 미래도시농업사업 발굴 ②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확산 ③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
4.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	① 법·자격제도 정비 ②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③ 정보화 서비스 확대 ④ 홍보채널 다양화

14. 농기자재수출활성화(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기자재수출활성화	617	973	931	△42	△4.3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226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기자재정책팀장(김수일), 사무관(이창형, ☏ 044-201-189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포화상태인 국내 농기자재 시장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수출정보 지원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용 지원

- 농기자재 수출확대에 따른 국내 농기자재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정보지원 : 국가별, 지역별, 품목별 산업 현황 및 수출입정보 등 체계적인 농기자재 수출입 정보 구축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 해외 인허가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사업기간	'17~계속
총사업비	- ('18년까지 투자액 15억원)
사업규모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정보시스템 1식,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18개소
지원조건	○ 농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정보지원 : 보조 100%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 보조 70%
사업시행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총괄)** 빅데이터 기반 농기자재 품목별 수출입정보 수집, 핵심수출국 대상 시장분석·수출전략정보 제공 및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931백만원 편성(전년대비 △42백만원)

① 농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정보지원 : 553백만원(전년대비 △42백만원)

- 수출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출전략정보 제공 : 420백만원
- 농기자재 수출지원 교육 및 운영비 등 133백만원

② 농기자재 신규 수출기업 육성지원 : 378백만원(전년동일)

- 해외 인허가·인증 취득 지원 : 9개업체×30백만원×70%=189백만원
- 마켓테스트 지원 : 9개업체×30백만원×70%=189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기자재수출 활성화	973백만원	931백만원
▪ 농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정보지원	594백만원 (1식)	553백만원 (1식)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378백만원 (18개업체×30백만원×70%)	378백만원 (18개업체×30백만원×70%)

□ 지원 필요성

○ 농기자재 산업의 수출활성화를 통해 포화상태인 국내 농기자재 시장의 외연확대 및 신수요 창출

- 국내 농기자재 시장은 규모가 작고 침체되어 있어 내수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활성화 촉진 필요

○ 농기자재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별, 지역별, 품목별 산업현황 및 수출입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 현재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시스템이 없어 기존 수출업체 및 신규 업체의 수출확대에 애로

○ 또한, 대부분의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는 신규 수출품목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어려워 수출시장 진입에 애로

- 국내 농기자재 5,000여개 업체의 90% 이상이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 (시장규모: 6조원)

○ 이에 따라, 농기자재 산업의 외연 확대를 목표로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사업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기자재수출활성화	617	973	931	△42	△4.3
▪ 농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정보지원 (산출근거)	617	595 (시스템 구축 및 수출전략정보제공 420 +농기자재 수출지원 교육 등 122 +시스템 운영비 53)	553 (시스템 구축 및 수출전략정보제공 420 +농기자재 수출지원 교육 등 116 +시스템 운영비 17)	△42	△7.1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산출근거)	-	378 (해외인허가 취득 9개업체×30백만×70%, +마켓테스트 비용 9개업체×30백만×70%)	378 (해외인허가 취득 9개업체×30백만×70%, +마켓테스트 비용 9개업체×30백만×70%)	-	-
□ 비목(합계)	617	973	931	△42	△4.3
○ 민간경상보조(320-01)	617	973	931	△42	△4.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두 업무보고 등에 따른 '16년 중점추진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농기자재수출활성화 계획 수립('16.4～)
- 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16.12),
- '17년 신규사업 예산 확보('16.12) 및 추진('17.1～)

- 농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내수 진작 및 수출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경우 영세하여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대와 함께 가격 경쟁력이 요구됨
- ('17년 추진실적) 농기자재 4개 품목 10개 국가 수출 정보 구축('17.12)

* 해외 유망수출국 정보 수집·분석 제공, 수출교육, 농기자재 수출입 통계 수집 등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기자재수출활성화	-	-	-	-	6	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6 (6)	- ( )	- ( )	6 (6)	6 (6)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 국회 예결소위 삭감대상 논의내역(’17년 예산심의, ’16.11.8)

- 산업부(코트라)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나, 코트라는 전반적인 산업 지원 측면이고, 농식품(기자재) 분야의 특화된 지원 필요성 인정
- 코트라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기업에서 스페셜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코트라 부사장)

⇒ **농기자재 분야 특화사업으로 인정하여 ’17년 신규사업으로 국회 심의 완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확산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정보확산기관(관련협회)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성과점검 등	➡	세부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행	➡	수출 희망기업 발굴, 수집정보 확산, 네트워크 연계 등

15. 친환경농업직불(계속, 국정과제)

< 균특회계 - 지원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41,096	43,545	38,110	△5,435	△12.5
▪ 친환경농업직불	23,943	26,392	22,445	△3,947	△14.9
▪ 친환경축산직불	17,153	17,153	15,665	△1,488	△8.7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1000 - 2270
* 담당자: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친환경농업과장(이상혁), 사무관(김진수,☏ 044-201-2432)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환경자원과장(박홍식), 사무관(남기헌,☏ 044-201-235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사업기간	'99~계속 (축산 : '09~계속)
총사업비	- 억원(국고 억원)
사업규모	(농업직불) 224억원 / (축산직불) 157억원
지원조건	(농업직불) 지자체보조 100% / (축산직불) 민간경상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축산협회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친환경농업직불: 22,445백만원

▪ 논 : 8,729백만원(16,002ha)

* (유기) 3,638ha×700천원=2,547백만원
* (무농약) 12,364ha×500천원=6,182백만원

▪ 채소·특작·기타 : 7,582백만원(6,583ha)

* (유기) 1,702ha×1,300천원=2,213백만원

* (무농약) 4,881ha×1,100천원=5,369백만원

▪ 과수 : 2,664백만원(2,127ha)

* (유기) 555ha×1,400천원=778백만원

* (무농약) 1,572ha×1,200천원=1,886백만원

▪ 지속직불(유기) : 3,470백만원(7,311ha)

* (논) 4,396ha×350천원=1,539백만원

* (채소·특작·기타) 2,198ha×650천원=1,429백만원

* (과수) 717ha×700천원=502백만원

○ 친환경축산직불: 15,665백만원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 15,165백만원

* (유기농가) 21호× 30백만원= 630백만원

* (유기, 신규) 7호 × 30백만원 ×6월 = 105백만원

* (무항생제) 1,443호×20백만원×35% = 14,430백만원

▪ 교육·홍보 : 50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친환경농업직불	43,545백만원	38,110백만원
▪ 친환경농업직불	- 인증면적 39천ha의 직불금 지원을 위한 26,392	- 인증면적 32천ha의 직불금 지원을 위한 22,445
▪ 친환경축산직불	- 친환경축산 농가 2,321호의 직불금 지원을 위한 16,653 - 교육·홍보비 500	- 친환경축산 농가 1471호의 직불금 지원을 위한 15,165 - 교육·홍보비 500

□ 지원 필요성

○ 친환경농축산업은 생산비 증가 및 생산수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가져오므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행농업과의 소득 및 생산비 차이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필요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공공재인 토양, 수질, 생물다양성 등 농업환경의 개선 및 보전효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 축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친환경축산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A)	'19예산(B)	(B-A)	%
□친환경농업직불	33,610	43,545	38,110	△5,435	△12.5
▪ 친환경농업직불	17,945	26,392 - 논: 8,729 - 밭: 2,664 - 유기지속: 3,470	22,445 - 논: 8,729 - 밭(과수): 2,664 - 밭(기타): 7,582 - 유기지속: 3,470	△3,947	△14.9
▪ 친환경축산직불	15,665	17,153 - 유기: 735 - 무항생제: 14,430 - 교육·홍보: 500	15,665 - 유기: 735 - 무항생제: 14,430 - 교육·홍보: 500	△1,488	△8.7
□비목(합계)	33,610	43,545	38,110	△5,435	△12.5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7,945	26,392 - 논: 8,729 - 밭: 2,664 - 유기지속: 3,470	22,445 - 논: 8,729 - 밭(과수): 2,664 - 밭(기타): 7,582 - 유기지속: 3,470	△3,947	△14.9
○ 민간경상보조(320-01)	15,665	17,153 - 유기: 666 - 무항생제: 15,987 - 교육·홍보: 500	15,665 - 유기: 735 - 무항생제: 14,430 - 교육·홍보: 500	△1,488	△8.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 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 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농업직불 】

-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불 보조('99~'01)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 전국으로 확대 시행('02)
- 인증단계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 지급단가 차등화 지원('03)
- 친환경농업직불의 논·밭 예산 통합 지원('06)
- 친환경농업직불제 연구용역('09.12)을 통해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10년)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12년)
  *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논 : 유기 392천원/ha → 600천원, 무농약 307천원/ha → 400천원
  · 밭 : 유기 794천원/ha → 1,200천원, 무농약 674천원/ha → 1,000천원
  *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 유기 3년 → 5
- 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15년)
  * 유기지속직불 지급기간 : (현행) 유기 5년 → (변경) 유기 5년 + 유기지속직불 3년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영구 지급 등 사업 확대 검토)
  * 유기지속직불 지급단가 :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
- 친환경농업직불금 저농약직불제 폐지('16년)
  * 2010년까지 저농약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함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차등 인상, 유기지속직불 영구지급

<참고>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 변동표

구분	지급기간(년)				지급단가(천원/ha), (논/밭 기준)			
	저농약	무농약	유기	유기지속	저농약	무농약	유기	유기지속
~ '11	3	3	3	-	217/524	307/674	392/794	-
'12~'14	3	3	5	-	217/524	400/1,000	600/1,200	-
'15	3	3	5	3	217/524	400/1,000	600/1,200	300/600
'16~'17	-	3	5	3	-	400/1,000	600/1,200	300/600
'18~	-	3	5	영구	-	500~1,200	700~1,400	유기의 50%

【 축산직불 】

- '04～'06(3년간)「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실시
- 친환경축산직불제도의 도입·시행관련 연구용역('07.12～'08.3, 농경연)
- '08년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회의('08.1./BH사회정책수석 주재)
- '09년 친환경축산농가(무항생제, 유기)에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
-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한도 확대('15)

* 지급기간 : (현행) 3년 → (변경) 5, 지급한도 : (현행) 2천만원 → (변경) 3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	'13	'14	'15	'16	'17
○ 친환경농업직불	506	478	442	508	437	41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용: ('15) 조건불리직불금 부족분 지원에 따른 이용(△1,412백만원)

○ 불용: 인증포기, 인증취소 등에 따른 인증면적 감소로 직불금 지급대상도 감소하여 ('14) 10,242백만원, ('15) 10,349, ('16) 7,423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08 (390)	- (-)	14 (-)	494 (390)	390.5 (348)	- (-)	103.5 (41.5)
'16년	437 (362)	- (-)	- (-)	437 (362)	362 (346)	- (-)	75 (16)
'17년	411 (336)	- (-)	40 (-)	371 (336)	336 (324)	- (-)	35 (1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결산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상임위)**

- (지적)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지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 (조치①) '15년 한시적으로 필지별 3년간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하는 유기지속직불금 제도를 도입, '18년부터 지급기한 폐지
- (조치②)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 및 경영비 증가분에 대한 농가조사를 통해 품목군별 적정 지원단가 산출

- (조치③) 경영체 형태(농가/법인)에 따라 지급상한 면적을 재설정하고, 논·밭에 따른 개별기준 마련 검토('16)

* (현행) 모두 5ha → (개선) 농가 30, 법인 50(논: 농가 30, 법인 50, 밭: 농가 5, 법인 10)

* 유사사례 : 쌀직불(농가 30ha, 법인 50), 밭직불(농가 4, 법인 10)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기재부)**

- (지적) 연례적인 불용액 발생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예산의 20%를 감액, 지급단가 세분화 등 사업방식 변경 권고(농업직불)

- (조치) '16년 대비 00.0% 감액하여 예산과 집행의 균형성 제고, 인증 단계별·품목군별로 지급단가를 차등 인상하여 소득보전 효과 확대

○ **'18년 국회 상임위·예결위**

- (지적) 직불금에 의한 소득보전 효과가 낮으며,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음.

- (조치)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및 생산비를 재조사하여 달라진 농업여건을 반영한 소득보전 효과 파악할 계획('19년), 지급단가 인상 등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집행률은 상승할 전망('18년 88% 수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친환경농업직불제**

- 경작형태별(경작지, 목초지, 채소·과일류, 영구작물 등) 차등 지급

- 유기농가에 유기농 전환직불금과 유기농 지속직불금을 지급

- 유기농 전환직불금은 연차별(5년) 차등 지급

- EU의 직불금 산정방식은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총 마진(조수입-비용) 또는 추가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

구 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일본
면적비중	6.2%	3.4%	11.4%	0.5%	0.2%
경작형태별 차등제도	경작지, 영구작물, 목초지, 채소류	콩류, 목초지, 와인, 1년생 작물	개활지, 일반농경지, 포도, 홉, 과일 등	없음	일반작물, 잡곡·사료작물
지급단가	(전환)21만원~680만원 (지속)18만원~490만원	(전환)114만원~126만원 (지속)111만원~82만원	24만원~160만원	연간 2천만원 이내로, 6년 합계 8천4백만원 미만	30~80만원
지속직불제도	6년차이상 농가에 지급	6년차이상 농가에 지급	연차별 구분없이 지급	없음	연차별 구분 없음
직불금 산정방식 및 예산지원	EU 산정방식, 연방정부 60%, 주정부 40%	EU 산정방식	EU 산정방식	소득감소분의 75% 수준	추가비용 비교,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

○ **친환경축산직불제**

- (영국)
  · 유기축산직불: 유기축산 육성위해 낙농분야 대상, 3~5년간 차등지급
  · 조방화장려금: 가축생산 억제와 저사육밀도 유지위해 지급
  · 중산간지역직불: 조건불리지역의 활성화와 농촌경관유지위해 실시

- (독일)
  · 유기축산직불: 유기 이행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 지원, 95% 이상 유기사료 사용, 항생제·성장촉진제 사용금지 등
  · 조방적초지경영직불: 환경보전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하지 않는 초지경영

(5) 사업추진절차

○ 친환경농업직불

<업무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8.12월~'19. 3. 3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3.31)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5.10)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1. 18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5.)	·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 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2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6.~12.31)	·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2월)

○ 친환경축산직불

<업무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8.1월 ~ 2월)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홍보(농관원)
② 사업신청	(3.1~3.20)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선정 신청 (농관원 지원, 사무소)
③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보고	(4.5~4.30)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농관원→농식품부·관련기관·사업대상자, 2.28)
④ 이행점검	(연 중)	· 이행여부 확인(농관원,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⑤ 보조금 지급신청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1)	· ‘17.1.1~17.10.31까지 실적자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농관원, 11.1~11.11) · 소요예산액 신청(농관원→농식품부, 12.10)
⑥ 보조금 지급	(12.20)	· 보조금 지급(농관원 → 사업대상자)

16.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친환경농자재지원	220,940	203,210	188,752	△14,458	△7.1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2271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기자재정책팀장(김수일), 서기관(김규욱) ☎(044-201-189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 **토양개량제**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 **유기농업자재** : 화학농약을 절감,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 **교육·홍보** : 친환경비료 제도의 교육, 우수사례 발굴, 언론홍보 등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 **비료품질관리시스템** : 비료의 원료사용,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까지 관리하는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99～계속 /'57～계속 /'13~계속 / '12~계속 / '15~계속
사업규모	최근 5년간('14~'18) 1조1,075억원(누적)/2,215억원(평균)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 : 정액지원(1,000원/20kg) ○ 토양개량제 : 규산(국고 60%, 지방비 40), 석회(국고 80%, 지방비 20) ○ 유기농업자재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 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농협중앙회(교육·홍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친환경농자재지원**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8,752백만원('18년 대비 △ 14,458백만원, △7.1%)

▪ **유기질비료 지원 : 134,100백만원 ('18년 대비 △ 14,900, 10.0%)**

· ('18) 2,980천톤, 149,000백만원 → ('19) 2,682천톤, 134,100 (△ 298천톤, △ 10.0%)

· 산출식 : 유기질비료 2,682천톤 x 50천원/톤(지원단가) = 134,100백만원

* 유기질비료 신청 대비 지원율 : ('16) 71.2%→('17) 69.0%→('18) 67.5%(신청량 4,000천톤)

▪ **토양개량제 : 51,272백만원 ('18년 대비 442백만원 증가, 0.8%)**

· ('18) 522천톤, 50,830백만원 → ('19) 440천톤, 42,472(△82천톤, △15.7%) + 공동살포 8,800

· [규산 280천톤x137천원/톤x60%]+[석회 160천톤x152천원/톤x80%]+[공동살포440천톤x20천원/톤] ≒ 51,272백만원

* 적용단가 ('18년 기준) : 규산 137천원/톤, 석회 152

▪ **유기농업자재** : ('18) 3,105백만원 → ('19) 3,105

· 녹비작물 종자 : 6.7천ha(신청면적)×300천원/ha(단가)×20%(국고) ≒ 400

· 유기농업자재등 : 유기3.8천ha(신청면적)×2,000천원/ha(단가)×20%(국고) + 무농약 4.0천ha(신청면적)×1,500천원/ha(단가)×20%(국고) ≒ 2,705

▪ **교육·홍보** : ('18) 200백만원 → ('19) 200백만원

· 사업신청 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흙의날 기념식 등

▪ **비료품질검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 ('18) 75백만원 → ('19) 75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친환경농자재지원	**203,210백만원**	**188,752백만원**
▪ 유기질비료	149,000백만원 (2,980천톤×50천원/톤)	134,100백만원 (2,682천톤×50천원/톤)
▪ 토양개량제	522천톤, 50,830백만원 - 지원물량 : 규산 322천톤, 석회 200 - 국비 보조율 : 규산 60%, 석회 80% - 지원단가 : 규산 137천원/톤, 석회 152	440천톤, 51,272백만원 - 지원물량 : 규산 280천톤, 석회 160 - 국비 보조율 : 규산 60%, 석회 80% - 지원단가 : 규산 137천원/톤, 석회 152 - 공동살포 : 440천톤, 20천원/톤
▪ 유기농업자재	3,105백만원 - 녹비종자 : 870 · 14.5천ha×300천원/ha × 20%) - 천적등 유기자재 : 2,235 · 유기 6.9천ha×24% 2,000천원/ha × 20% · 무농약 6.9천ha×76% 1,500천원/ha × 20%	3,105백만원 - 녹비종자 : 400 · 6.7천ha×300천원/ha × 20%) - 천적등 유기자재 : 2,705 · 유기 3.8천ha× 2,000천원/ha × 20% · 무농약 4.0천ha× 1,500천원/ha × 20%
▪ 교육·홍보비	- 200백만원 *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 200백만원 *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 비료품질관리시스템	- 75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 75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친환경농자재지원	220,940	203,210	188,752	△14,458	△7.1
▪ 유기질비료	160,000 (3,200천톤×50천원/톤)	149,000 (2,980천톤×50천원/톤)	134,100 (2,682천톤×50천원/톤)	△14,900	△10.0
▪ 토양개량제	57,560 (규산 390천톤×137천원/톤×60% + 석회 210천톤×152천원/톤×80%)≒	50,830 (규산 322천톤×137천원/톤×60% + 석회 200천톤×152천원/톤×80%)≒	51,272 (규산 280천톤×137천원/톤×60% + 석회 160천톤×152천원/톤×80%)+440천톤×20천원/톤≒	442	0.8
▪ 유기농업자재	3,105 (녹비종자:870 14.5천ha×300천원/ha×20% 유기농업자재등: 2,235 유기:6.9천ha×24%×2,000천원/ha×20% + 무농약: 6.9천ha×76%×1,500천원/ha×20%)	3,105 (녹비종자:870 14.5천ha×300천원/ha×20% 유기농업자재등: 2,235 유기:6.9천ha×24%×2,000천원/ha×20% + 무농약:6.9천ha×76%×1,500천원/ha×20%)	3,105 (녹비종자:400 6.7천ha×300천원/ha×20% 유기농업자재등 : 2,705 유기:6.9천ha×24%×2,000천원/ha×20% + 무농약:6.9천ha×76%×1,500천원/ha×20%)	-	-
▪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200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200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200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	-
▪ 비료품질관리시스템	75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75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75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
□ 비목(합계)	220,940	203,210	188,752	△14,458	△7.1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20,665	202,935	188,477	△14,458	△7.1
○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75	275	-	-
○ 사업출연금(350-02)	75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업분야의 환경보전, 화학자재의 감축방안, 친환경농업의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등

○ 농지법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유기질비료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비료를 공급
- 토양개량제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교육·홍보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비료의 가격안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흙의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가능
-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제18조(품질 검사),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2. 추진경위

○ 유기질비료 :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구입비의 일부 지원('99~)

○ 토양개량제 : (규산질비료) 토양개량, 병해충 억제, 지력 증진 등을 위해 지원('65~), (석회질비료) 산성토양, 지력증진 등을 위해 지원('57~)

○ 교육·홍보 : 친환경비료 제도의 교육, 우수사례 발굴,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비료 사업 내실화 도모('12~)

○ 유기농업자재 :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05~'10), 미생물농약 지원사업('09~'1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13~)

○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 비료 원료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불량비료 유통 방지('15~)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친환경농자재지원		2,272	2,286	2,276	2,209	2,03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28,602**	73,387	-	301,989	301,451	148	390
	(228,602)	(1,410)	(-)	(230,012)	**(219,319)**	(640)	(10,053)
'16년	**227,552**	148	-	227,700	**227,500**	-	200
	(227,552)	(640)	(-)	(228,192)	**(217,752)**	(143)	(10,297)
'17년	220,940	-	-	220,940	**220,940**	-	-
	(220,940)	(143)	(-)	(221,083)	**(211,227)**	(2)	(9,71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 평가결과('14) : 78.6 (보통)
- 가축분뇨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 목적 및 성과 인정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유기질비료 잔여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협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향을 마련할 것('15년 결산 상임위)
- '15년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16.6)
-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시스템 상호 연계(16.11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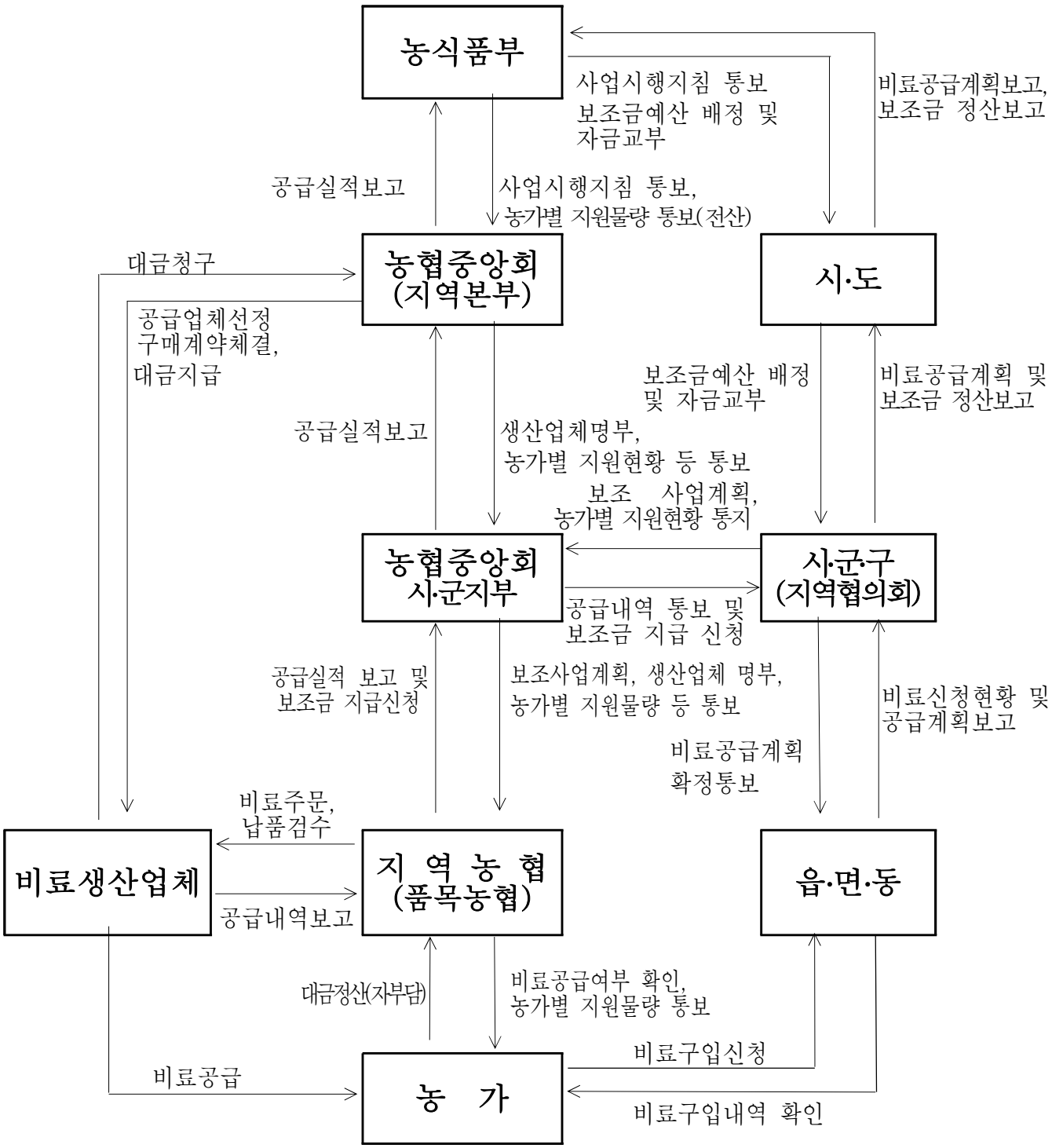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경제지주)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참고 1 친환경농자재 지원 현황 및 성과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토양을 유자보전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57년 토양개량제, ' 99년부터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음

○ **(유기질비료)** 축산부산물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토양을 살리기 위해 공급하고 있으며,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작물이 생육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유기질은 토양에서 양분 보유능력을 향상시키고 토양을 다공성 구조를 촉진시켜 비료의 유효성과 통기성을 높여주고, 비료 용탈을 감소시켜 오염을 감소시킴.

○ **(토양개량제)** 산성화 되어 있는 토양을 약산성~중성으로 개량하기 위해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고, 벼가 필요로 하는 규산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논에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음

* 산성토양에서는 토양의 양분 흡착율이 낮아 시비효과가 떨어져 과다 시비하게 되고, 병해충이 발생하여 생산량과 품질도 떨어져 농약을 과다 살포하게 되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어려움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는 각 75만호와 89만호가 지원받아 대부분의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음

* 1962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거쳐 화학비료 지원을 위해 투입한 2조 5678억원의 지원을 중지하고, 농업인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토양을 살리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이행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

□ (성과) 정부·지자체의 친환경농업 확산 노력,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으로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 및 인증면적 증가

* 지난 15년간('99 → '15) 변화 : (화학비료 소비량) 401kg/ha → 268, (농약사용량) 12.2kg/ha → 9.3, (친환경농산물 출하 비중) 0.1% → 7

참고 2 친환경농자재 연도별 공급 현황

□ 유기질비료 연도별 신청·공급 현황

구분(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청농가수(천호)	798	754	754	753	749
농가신청량(천톤)	3,810	3,715	3,986	4,053	3,999
지원예산(억원)	1,613	1,603	1,600	1,600	1,600
지원계획량(천톤)	3,227	3,206	3,200	3,200	3,200
실제지원량(천톤)	2,732	2,617	2,788	2,886	2,773
신청량대비 지원율(%)	71.7	**68.5**	**69.9**	**71.2**	**69.3**

□ 토양개량제 연도별 신청·공급 현황

구분(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청농가수(천호)	320	291	284	387	247
지원예산(억원)	629	637	642	640	576
공급량(천톤)	671	701	657	660	603

* 토양개량제는 살포할 농지를 신청하면 소요량을 산출하여 공급량을 결정함

□ 유기농업자재 신청·공급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지원예산	녹비작물종자	-	9	6	2
	천적, 자재원료 등	26	24	26	29
	합 계	26	33	32	31
지원실적	녹비작물종자(톤)	(3,817)	1,566	932	482
	유기농업 자재,원료 사용면적(ha)	10,300	8,790	8,967	12,522

17.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재량, 신규)

< 농특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	2,050	2,050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2271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종자생명산업과장(최근진), 사무관(조병희, 박치형 044-201-2472,247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미생물 제품 시설·장비 구축지원을 통해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환경정화용 곤충 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곤충인식개선 추진 · 미생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장비·시설 구축 추진
사업기간	· '19 ~ 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① 사료용곤충산업화(2개소) ② 곤충유통활성화(1식) ③ 미생물효능평가지원(1개소) ④ 미생물제형화장비(1개소) ⑤ 유용미생물은행구축(1개소)
지원조건	① 사료용곤충산업화(자치단체 자본보조 30%) ② 곤충유통활성화(민간경상보조 100%) ③ 미생물효능평가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30%) ④ 미생물제형화장비(자치단체 자본보조 50%) ⑤ 유용미생물은행구축(자치단체 자본보조 50%)
사업시행주체	① 사료용곤충산업화(지자체) ② 곤충유통활성화(농식품부) ③ 미생물효능평가지원(지자체) ④ 미생물제형화장비(지자체) ⑤ 유용미생물은행구축(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사료곤충산업화: 환경정화 곤충 산업화를 위한 사업비 600백만원

- 산출내역 : 2개소 × 10억원 × 국고 30%

  * 거점 생산자단체·농가 : 660백만원(사육사, 가공시설, 종자생산 등)

  * 협력농가 : 340백만원(사육사, 사육장비, 저장고 등)

○ 곤충유통활성화: 곤충의 날, 심포지엄 등 추진을 위한 50백만원

- 산출내역 : 1식 × 50백만원 × 국고 100%

○ 농축산용 미생물효능 평가지원 : 300백만원

• **농축산용 미생물효능평가지원(국고 300백만원)** : 1,000백만원 × 국고 30% × 1식

ⅰ) 미생물 효능검증(96백만원)

: 400개 균주 × 800천원 × 30% = 96백만원

ⅱ) 미생물 안전성 검증 (96백만원)

: 400개 균주 × 800천원 × 30% = 96백만원

ⅲ) 미생물 표준화(108백만원)

- 배양 표준화 : 200개 균주* × 900천원 × 30% = 54백만원
- 공정 표준화 : 200개 균주 × 900천원 × 30% = 54백만원

* 새롭게 발굴하는 미생물 중,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미생물은 약 50%수준임을 반영

○ 미생물제형화장비지원 : 600백만원

- 1,200백만원* × 1식 × 국고 50% = 600백만원

* 100kg/h 분무건조기(5억), 100kg 동결건조기(3억), 분쇄기(2억), 열풍건조기(1억), 타정기(1억)..

○ 유용미생물은행구축 : 500백만원

- 1,000백만원(실시설계비) × 1식 × 국고 50% = 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요구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2,050
▪ 사료곤충산업화지원	-	600 (2개소×10억원×국고30%)
▪ 곤충유통활성화	-	50 (1식×50백만원×국고100%)
▪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 평가지원	-	300 (1식×1,000×국고30%)
▪ 미생물제형화장비지원	-	600 (1식×1,200×국고50%)
▪ 유용미생물은행구축 (실시설계비)	-	500 (1개소×1,000×국고50%)

□ 지원 필요성

○ 음식물 쓰레기 분해 및 양어용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환경정화용 곤충을 산업화를 위한 농가, 법인에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미생물 관련 기업, 연구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구축하여 관련 산업·연구 촉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	2,050	2,050	순증
▪ 사료곤충산업화지원	-	-	600 (2개소 × 10억원 × 국고 30%)	600	순증
▪ 곤충유통활성화	-	-	50 (1식 × 50백만원 × 국고 100%)	50	순증
▪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 평가지원	-	-	300 (1식×1,000백만원×30%)	300	순증
▪ 미생물제형화장비	-	-	600 (1개×1,200백만원×50%)	600	순증
▪ 유용미생물은행구축	-	-	500 (1개소×1,000백만원×50%)	500	순증
□ 비목(합계)			2,050	2,050	
○ 민간경상보조(320-01)			50	50	순증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00	300	순증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700	1,7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3조(지방자체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4조(제정 및 기술지원 등)**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 곤충유통활성화(농식품부) ○ 사료곤충산업화(지자체) ○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전북도, 정읍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 미생물제형화장비지원(전라북도) ○ 유용미생물은행구축(지자체)	➡	곤충관련 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수립, 성과점검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사업관리·정산	➡	사업신청, 사행수행·정산

참 고 1 사료용 곤충(동애등에) 산업화

❑ 동애등에 가치

○ **동애등에 유충**(애벌레)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항균 효과**가 있어 **양계, 양돈, 양어 사료**로 **이용 확대** 추세

- **수입 어분**(5만톤) 가격 증가('05. 625$/톤 → '17. 1,6924/톤)로 **대체제**로 개발되고 있음

○ 또한 **동애등에**는 **음식물 분해 효과가 탁월**하여, 농촌의 농산물 부산물과 음식물 처리를 통한 **비료(분변토)로 활용** 가능함

- 1톤 음식물에 동애등에 유충 6백만마리(1kg) 투입시 2일후 완전분해

❑ 사료용 곤충 산업화 모델

○ **거점농가**(생산자단체)는 동애등에 **알을 농가에 공급, 협력 농가**는 **사육**후 거점농가를 통해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

참 고 2 국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시장규모

□ 시장현황

○ **(해외)** 세계 미생물시장의 규모는 **민간기업의 주도**로 '12년 128억 달러에서 '16년 224억 달러(약 25조)로 **연평균 7%정도**로 성장

○ **(국내)** 미생물 산업의 규모는 1,400억**원로 세계시장의 약 0.5%**이며, **농축산용 미생물 시장은 매우 협소**

* 미생물농약 139억원, 미생물비료 297억원, 가축 생균제 1,000억원 등

□ 기업현황

○ **(해외)** 해외기업은 **블록버스터급 M&A**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엘은 미국 농약회사인 아그라퀘스트('12)를, 중국의 화학기업 켐차이나는 스위스의 종자회사 신젠타를 인수 합병('16)

○ **(국내)** 국내 기업은 **대체로 영세**하여 상품성이 높은 **스타제품이 부족**하고 **자체 기술력도 취약**한 실정

대기업	LG팜한농, 농협케미칼, 하림 팜스코, 동원 팜스 * 5조이상 자산 보유, 상호출자제한기업(현재 57개) + 계열회사
중견기업	경농,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팜스토리, 우성사료 등 * 상시직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1,500억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우진비앤지, 효성오앤비, 고려바이오, 제일바이오 등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미만 등

□ 분석결과

○ 종사자 200명이상,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업체는 팜한농, 농협케미칼(이상 대기업), 경농, 한국삼공(이상 중견기업) 등임

○ 이를 제외한 타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50명 내외,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인 영세한 중소업체(87%)로 구성되었으나,

- 대·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7.8%(12.7배), 평균 매출액은 2.7% 수준(36배)**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큰 상황

중점 분야	조사기업				평균 종사자('16, 명)			평균 매출액('16, 억원)		
	대표 업체 (A)	대·중견 (B)	중소 (C)	% (C/A)	대표 업체	대·중견	중소	대표 업체	대·중견	중소
미생물 농약	16	6	10	63	165	374	40	828	2,080	76
미생물 비료	58	1	57	98	24	221	20	76	1,648	49
사료 첨가제	33	7	26	79	87	299	30	943	3,874	153
계	107	14	93	87	64.7	325	25.5	456	2,946	81

* 출처 :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보고서(한국바이오협회, 2016), 한국신용평가정보 발췌

18.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사업(계속, 국정과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5,800	856	1,000	144	16.8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2200 - 305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친환경농업과장(이상혁), 사무관(이윤식, ☏ 044-201-243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신뢰 확보를 위해 유기농업 체험·소비·교육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유기농업 체험·소비·교육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기간	'2015~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2,000백만원(국고50%)
지원조건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비, 건축비 등 지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민간업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설계비 1,000백만원

- 2개소 신규 추진을 위한 설계비를 반영하여 '18년 대비 16.8%(144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 : 1,000백만원(설계비) × 국고보조 50% × 2개소(충북, 전남)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856백만원**	**1,000백만원**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충북(4년차) 건축공사비 (1,712백만원) × 국고50% = 856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비(1,000백만원)× 50% × 2개소(충북, 전남)

□ 지원 필요성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는 확대되나, 부실인증 사건 등으로 '12년 이후 성장이 정체

-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는 '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 '16년도부터 증가 추세

  * 인증면적/농가수 : ('01) 2천ha/2천호 → ('12) 127/107 → ('16) 79/62 → ('17) 80/59

- (매출) 친환경농산물 매출은 '1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안정적 판로 확보에 어려움

  * 판매장/매출액 : ('10) 4122개소/7,541억원 → ('12) 4,688/9,830 → ('16) 5,446/14,723

  * 친환경농업의 어려움('16. 설문조사) : 생산기술 39.9%, 판로확대 23.8 등

- (소비자 인식) 친환경인증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친환경농산물 선호도는 낮음

  * 인지도/선호도 : ('15) 95.8%/ - → ('16) 97.1/ - → ('17) 94.8/49.8

○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소비·체험·교육·홍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필요

- 맑은 물과 수변공간,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친환경농업

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체험·학습공간 제공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통해 소비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식당·농장·숙소 등의 편의시설 제공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소비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융복합산업 공간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5,800**	**856**	**1,000**	**144**	**16.8**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단지조성 (산출근거)	5,800	**856** 1개소×건축비1,712백만×50%)	**1,000** 설계비(2개소)×1,000백만×50%	**144**	**16.8**
□ **비목**(합계)	5,80	**856**	**1,000**	**144**	16.8
○ 비목(비목번호)	5,80	**856**	**1,000**	**144**	16.8
○ 지 자 체 자 본 보 조 (330-03)	5,80	**856**	**1,000**	**144**	16.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추진경위

- 생산기반과 상품화-가공-마케팅을 결합하는 '(가칭)유기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대두

*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1～2015) 계획에 반영('11.1월)

- 충북 청주에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15~’18년)‘ 추진

< 충북충주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 60,975㎡**

◇ **사업기간 : 2015~2018년**(4년)

◇ **총사업비 : 18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낙찰차액(16.88억원) 조정예산 : 163.12억원(국비 81.56, 도비 24.47, 시비 57.09), 청주시 추가투입 예산 16.88억원

◇ **사업내용** : 판매장, 레스토랑, 카페, 키즈파크, 학습·체험장 등

구 분		규 모	주요 사업내용
아람ZONE		18,696㎡	유기농마케팅센터(전문매장, 팜투유마켓, 레스토랑, 카페), 유기농키즈파크, 주차장 등
뜨락 ZONE	배움뜨락	13,874㎡	유기농야외학습장, 열대작물관(유리온실) 등
	체험뜨락	14,875㎡	유기농법관찰연못, 허브사계원, 나비원(이벤트정원), 유실수원 등
	키움뜨락	13,530㎡	유기농연구산업체험관, 원예/다육체험관(유리온실) 등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	-	5	10	58	8.5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	( )	( )	( )	**(5)**	( )	( )
’16년	**(10)**	( )	( )	( )	**(10)**	( )	( )
’17년	**(58)**	( )	( )	( )	**(58)**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사업명 : 충북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 사업기간 : 2015~2018년(4년),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 60,975㎡

○ 총사업비 : 18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낙찰차액(16.88억원) 조정예산 : 163.12억원(국비 81.56, 도비 24.47, 시비 57.09), 청주시 추가투입 예산 16.88억원

○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8,000**	**1,000**	**2,000**	**11,600**	**3,400**
국 비	8,156	500	1,000	5,800	856
도 비	2,447	150	300	1,740	257
시 군 비	7,397	350	700	4,060	2,287

○ 사업내용

구 분		규 모	주요 사업내용
아람ZONE		18,696㎡	유기농마케팅센터(전문매장, 팜투유마켓, 레스토랑, 카페), 유기농키즈파크, 주차장 등
뜨락 ZONE	배움뜨락	13,874㎡	유기농야외학습장, 열대작물관(유리온실) 등
	체험뜨락	14,875㎡	유기농법관찰연못, 허브사계원, 나비원(이벤트정원), 유실수원 등
	키움뜨락	13,530㎡	유기농연구산업체험관, 원예/다육체험관(유리온실) 등

(5) 사업추진절차

○ 사업 타당성조사(~'19.4) →지방재정투자심사(~'19.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9.8~11)

19.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지원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7,741	6,277	3,858	△2,419	△38.5

* 사업코드 : 20 - 39 - 2 - 100 - 101 - 2200 - 2274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친환경농업과장(이상혁), 사무관(최병인, ☏ 044-201-244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하여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중·소규모 지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H/W) 및 교육·마케팅(S/W), 인센티브(개·보수 등) 지원
사업기간	'95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연 20여 개소 선정, 지원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30%, 지방비 40~50%, 자부담 20~30%
사업시행주체	시·도(시·군·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친환경농업지구 : 3,414백만원

▪ 10개소 × 1,138(총사업비) × 30%(국고보조율) = 3,414백만원

○ 보완 : 420백만원

▪ 2개소 × 700(총사업비) × 30%(국고보조율) = 420백만원

○ 사업관리비 : 24백만원

▪ 일반수용비 20, 국내여비 4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6,277백만원	3,858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	·16개소×1,211('17년 사업비)×30%(국고 보조율)=5,813백만원	·10개소×1,138(총사업비)×30%(국고 보조율)=3,414백만원
▪ 보완	·1개소×1,333(총사업비)×30%(국고 보조율)=400백만원	·2개소×700(총사업비)×30%(국고 보조율)=420백만원
▪ 사업관리비	· 64백만원 (일반수용비36, 국내여비4, 일반연구비40)	· 24백만원 (일반수용비20, 국내여비4)

□ 지원 필요성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 소규모·고비용 친환경농업 → 저비용·고효율의 협업방식으로 전환 유도

< 세부 내역>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7,741**	**6,277**	**3,858**	**△2,419**	**△38.5**
▪ 친환경농업지구	6,313	5,813 ·16개소×1,211('17년 사업비)×30%(국고 보조율)	3,414 ·10개소×1,211(총사업비)×30%(국고 보조율)	△2,399	△41.3
▪ 보완	1,354	400 ·1개소×1,333(총사업비)×30%(국고 보조율)	420 ·2개소×700(총사업비)×30%(국고 보조율)	20	5
▪ 사업관리비	74	64 (수용비20 국내여비4, 일반연구비40)	24 (수용비 20 국내여비 4)	△40	△62.5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 비목(합계)	7,741	6,277	3,858	△2,419	△38.5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667	6,213	3,834	△2,379	△38.3
○ 일반수용비(210-01)	35	20	20	-	-
○ 국내여비(220-01)	4	4	4	-	-
○ 일반연구비(260-01)	35	40	-	△40	△10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친환경농업지구>

-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95～'97)
- 중소농고품질농산물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98～'99)
-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사업('99～'01)
-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00～'03)
- '04년도부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 '18년까지 1,200개소 선정·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04.4)
- '05년도에 광역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모형 개발(385백만원)
- '06년 3개소, '07년 6개소를 시범사업단지로 선정
- '15년부터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통합
- '16년까지 48개소 선정·지원

<지구·단지 보완>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사업 지원방안 마련('14.10)
- '15년 보완사업 3개소 선정, '18년까지 7개소 선정·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54	172	115	95	77	6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6년도 불용사유

-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신청 미달로 사업비 579백만원, 업무용역비 입찰 차액으로 7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5 **(114)**	- (171)	- (-)	115 (285)	115 **(142)**	- (110)	- (33)
'16년	95 **(89)**	- (110)	- (-)	95 (199)	89 **(87)**	- (92)	6 (20)
'17년	77 **(77)**	- (92)	- (-)	77 (169)	77 **(133)**	- (23)	- (1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기재부 주관, ‘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투입 위주의 정책 추진 관행 개선을 위해 자부담율의 점진적 상향 및 국고보조 감축(20%)

○ 균형발전위원회 주관, ’17년도 균특회계 지원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기여도와 사업기획·집행·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로 판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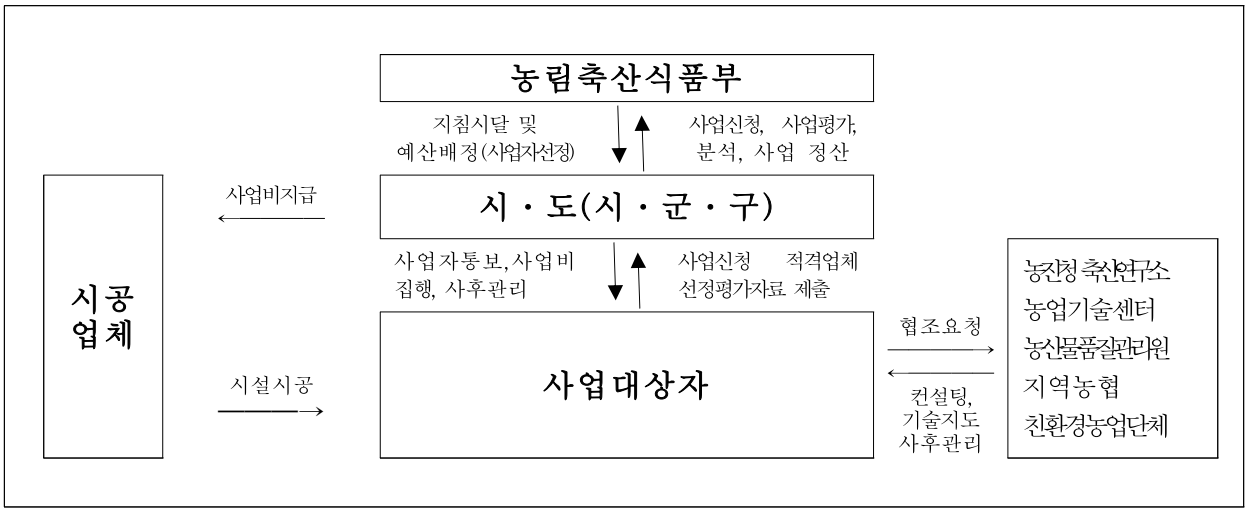

20. 농생명산업기술개발(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37,239	34,250	23,903	△10,347	△30.2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생명 자원(동물, 식물, 곤충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동·식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생명 자원 확보부터 환경변화 대응 기술,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수확 후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식의약 및 기능성소재 발굴, 농업·농촌 부가가치 제고 및 농산업 소득 증대를 위한 6차 산업화 등 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자원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기간	'94~'20(일몰)
총사업비	해당없음 ('18년까지 투자액 5,217억원)
사업규모	'19년 23,903백만원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생명자원부가가치제고기술개발)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발굴, 농업·농촌 부가가치제고 등 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081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 11개×506백만×12/12=5,562백만원
  (계속)8개×458백만×10/12=3,051백만원
  (종료)9개×267백만×12/12=2,400백만원, 3개×718백만×4/12=718백만원
  (다/상)1개×467백만×9/12=350백만원

○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농생명 자원 확보부터 환경변화 대응 기술,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수확 후 관리 등 농생명자원의 생산·관리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171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14개 × 470백만 x12/12= 6,575백만원
  (계속) 1개 × 214백만 x10/12= 178백만원
  (종료)10개×315백만×12/12=3,151백만원, 8개×295백만×4/12=787백만원
  (다/상)1개 × 640백만 x9/12= 48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비 651백만원

- 산출내역 : 사업비(23,252백만)×2.8%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	**34,250백만원**	**23,903백만원**
▪ 생명자원부가가치 제고기술개발	18,187백만원 (기일치)15개× 325백만×12/12= 4,871 (계속)11개× 507백만×10/12=4,634 (종료)28개× 226백만×12/12=6,325 (다/상)5개 × 618백만 x9/12= 2,317	12,081백만원 (기일치) 11개×506백만×12/12=5,562 (계속)8개×458백만×10/12=3,051 (종료)9개×267백만×12/12=2,400 (종료)3개×718백만×4/12=718 (다/상)1개×467백만×9/12=350
▪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개발	15,155백만원 (기일치)21개 × 369백만 x12/12= 7,752 (계속)9개 × 244백만 x10/12= 1,827 (종료)17개 × 241백만 x12/12= 4,094 (다/상) 3개 × 659백만 x9/12= 1,482	11,171백만원 (기일치)14개 × 470백만 x12/12= 6,575 (계속) 1개 × 214백만 x10/12= 178 (종료)10개×315백만×12/12=3,151 (종료)8개×295백만×4/12=787 (다/상)1개 × 640백만 x9/12= 480
▪ 기획평가관리비	948 사업비(33,302백만)×2.8%	651 사업비(23,252백만)×2.8%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新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항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의 전환의지 표명

- 특히,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대국민 안전과 농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4대 복합·혁신과제 연관성 》

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과제목표 :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4대 복합·혁신과제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주요내용 : 기초과학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전적 과제 등 R&D 혁신체계 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초 연구 및 중소기업 R&D 적극지원

○ **(농생명 소재)** 농업은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뛰어넘어 외연확장을 통한 체질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핵심정책토의, '17.8.30(VIP 말씀) 》

◈ 농축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처의 역량 집중
◈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창출을 위해 역량 집중

- 국내외 생명산업 시장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농생명 소재 산업의 경우 '16년 9.6조원에서 '20년 16.5조원으로 연평균 14.2% 성장 중

  * 국내 농생명소재 시장규모 : ('14) 7.4조 → ('16) 9.61조 → ('18) 12.56조 → ('20) 16.54조

- 궁극적으로 농생명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천연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 및 노가소득 증대 기대

《 기타 유관 정책 및 계획 》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부합
- 국가전략기술 개발(5분야 20과제)
* 5대 전략 중 신산업 창출 추진과제인 ICT융합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부합

◈ 농림수산식품 생명산업 2020+ 발전전략
- 생명산업 R&D 및 산업화 기술개발(R&BD)투자 강화에 해당

- 국내 고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확보와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반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생명자원의 활용에 대한 국제규범 흐름에 대응하고 천연물 유래 유용자원 확보를 통해 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입지 구축 필요

《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7.9.20 》

◈ 해외 유전자원 대체 자생식물 발굴 및 소재개발을 통한 수입대체를 위한 범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R&D 투자* 필요

* 종자, 농생명소재, 해양수산 바이오소재, 토종한약소재 개발 등

○ **(동·식물 질병대응)** 병해충과 같은 동·식물 질병으로 인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등 동·식물 질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의적으로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시급

- 불개미('17.9월), 과실파리, LMO 유채('17.8월) 등 돌발 병해충의 국내유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는 등 동·식물 질병 대응력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관련 기술 고도화 및 개발 필요

  * 1900년대 이래 87종(병 40, 해충 47)이 유입, 이 중 32종(37%)이 2000년 이후 유입

-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농림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로 고위험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국내 피해 방지 및 조기 박멸 필요

  * 국내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총 100농가 79.6ha('15년 : 68농강 59.9ha, ‘16년 : 32농가 19.7ha)의 과수원이 폐원되어 117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등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발생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36,639**	**34,250**	**23,903**	**△10,347**	**△30.2**
▪ 생명자원부가가치제고기술 (산출근거)	20,321	18,187 (기일치)15개×325백만×12/12=4,871 (계속)11개×507백만×10/12=4,634 (종료)28개×226백만×12/12=6,325 (다/상)5개×618백만x9/12=2,317	12,081 (기일치) 11개×506백만×12/12=5,562 (계속)8개×458백만×10/12=3,051 (종료)9개×267백만×12/12=2,400 (종료)3개×718백만×4/12=718 (다/상)1개×467백만×9/12=350	△6,066	△33.4
▪ 생명자원생산관리기술 (산출근거)	16,003	15,155 (기일치)21개×369백만x12/12=7,752 (계속)9개×244백만x10/12=1,827 (종료)17개×241백만x12/12=4,094 (다/상) 3개×659백만x9/12=1,482	11,171 (기일치)14개×470백만x12/12=6,575 (계속) 1개×214백만x10/12=178 (종료)10개×315백만×12/12=3,151 (종료)8개×295백만×4/12=787 (다/상)1개×640백만x9/12=480	△3,984	26.3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915	948 33,302백만×2.8%	651 23,252백만×2.8%	△297	△31.3
□ **비목**(합계)	**37,239**	**34,250**	**23,903**	**△10,347**	**△30.2**
○ 연구개발활동비(360-05)	37,239	34,250	23,903	△10,347	△30.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연구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94. 2.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방향 발표(농어촌발전위원회)
  *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림수산 특정연구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
- ’94. 8.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 ’98. 9.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변경(수산분야 해양수산부 이관)
- ’04. 1. 농림과학기술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09.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법률 제9619호)
- ’09. 1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1. 1.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사업개편)
- ‘13. 7.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22) 수립
- ‘14. 1.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15. 12.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7.4 제3차 생명공학 기본계획 마련(범부처)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생명산업기술개발	443	467	475	458	372	34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4년도 농특세 세수 부족으로 이월액 발생

○ 기획비용, 전문가 수당, 과제평가비 절감으로 기획평가관리비 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75 (633)	158 (-)	- (-)	633 (633)	633 (630)	- (-)	- (3)
'16년	458 (458)	- (-)	- (-)	- (-)	458 (456)	- (-)	- (2)
'17년	372 (372)	- (-)	- (-)	- (-)	372 (37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상위평가 : 보통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재점검 필요

▪ 타 부처의 유사사업과 비교하는 등 연구성과 분석방법의 개선 필요

(4)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신문 공고 및 홍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년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시점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배포 및 연구개발보고서 발간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21. Golden Seed 프로젝트(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Golden Seed 프로젝트 (R&D)(농림부)	20,450	20,450	26,199	5,749	28.1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종자생명산업과장(최근진), 연구관(양미희, ☏ 044-201-24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통한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점으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 - 채소종자사업단(5) : 고추, 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 - 원예종자사업단(6) : 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 - 수산종자사업단(4) : 넙치, 전복, 바리과, 김 - 식량종자사업단(3) : 벼, 감자, 옥수수 - 종 축 사 업 단(2) : 돼지, 닭
사업기간	'12~'21
총사업비	4,911억원 ('18년까지 투자액 총 2,713억원, 농식품부 1,306억원) * 정부 3,985억원 = 농식품부 2,153 + 해수부 745 + 농진청 975 + 산림청 112
사업규모	20개 품목(5개 사업단 176개 세부프로젝트)
지원조건	정부출연 100%(대기업 50%이상,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GSP운영지원센터)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9년도 연구사업비 : 채소종자사업단 및 원예종자사업단 지원을 위한 사업비 26,199백만원

- **(채소종자사업단)** 고추, 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 등 5개 품목 품종개발 및 관련 기반 조성 : (’18) 9,712 → (’19) 11,221백만원
- **(원예종자사업단)** 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 등 6개 품목 품종개발 및 관련 기반 조성 : (’18) 9,454 → (’19) 13,333백만원
- **(센터 관리·운영비)** GSP사업 통합 기획·평가·관리 : 1,645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Golden Seed 프로젝트	**20,450백만원**	**26,199백만원**
▪ 채소종자사업단	9,712 (배추, 고추, 무, 수박, 파프리카)	11,221 (배추, 고추, 무, 수박, 파프리카)
▪ 원예종자사업단	9,454 (토마토, 양파, 양배추, 감귤, 백합, 버섯)	13,333 (토마토, 양파, 양배추, 감귤, 백합, 버섯)
▪ 센터 관리운영비	1,284	1,645

□ 지원 필요성

○ 종자산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기반산업으로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산업**

- 국립종자원의 2015년 기준 종자업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결과 등록된 종자기업 중 87.9%가 종자 판매액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 국내 종자산업은 산업기반 및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민간산업 육성 필요

  * IMF 이후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는 내수 위주 사업을 위한 품종육성으로 수출 품종 육성 실적 저조

○ 종자개발은 **대규모 자금 및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상 영세한 국내 종자업체가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시장 기능에 맡겨둘 경우 신품종 개발이 어려움

-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몬산토 26%, 듀퐁 18%, 신젠타 9% 등으로 이들 3개 기업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75% 수준임

* 연구개발 투자액('14) : 몬산토(세계1위) 1조 8천억원, 농우바이오(국내1위) 100억원

○ **따라서 종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종자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지원 필요**

- Golden Seed 프로젝트는 종자를 개발·수출하는 R&BD사업으로 정부의 초기 투자가 충분해야 종자산업 기반구축, 민간기업의 투자와 종자의 수출로 결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Golden Seed 프로젝트	**20,405**	**20,450**	**26,199**	**5,749**	**28.1**
▪ 채소종자사업단 (산출근거)	9,712	**9,712** (69개×141백만×100%)	**11,221** (73개×154백만×100%)	1,509	15.5
▪ 원예종자사업단 (산출근거)	9,454	**9,454** (52개×182백만×100%)	**13,333** (57개×234백만×100%)	3,879	41.0
▪ GSP운영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산출근거)	1,284	**1,284** (1,284백만×100%)	**1,645** (1,645백만×100%)	361	28.1
□ 비목(합계)	**20,405**	**20,450**	**26,199**	**5,749**	**28.1**
○ 연구개발출연금등(360-05)	20,405	20,450	26,199	5,749	28.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근거 법령 : 「종자산업법」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생산·보급·가공·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종자생산 농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추진경위

- 농림수산업의 기초·원천 산업인 종자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지시('09.6.9, 국무회의)
-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09.10)에 따른 구체적 R&D 사업 기획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부·청 공동기획협의회 구성 및 사전 기획 추진('10.6)
- 「Golden Seed 프로젝트」 '11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 인정('11.9)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12.1.), 운영지원센터 출범('12.3.), 품목별 상세 기획 추진('12.5.)
- 1단계 연구 추진('13.7.~'16.12.), 2단계 1년차 연구 시작('17.1.)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Golden Seed 프로젝트	211	221	227	215	205	2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실집행불용) 회의축소, 낙찰차액, 인건비 미집행 등 집행잔액(217백만원)

○ ('16년 실집행불용) 회의축소, 낙찰차액, 인건비 미집행 등 집행잔액(178백만원)

○ ('17년 실집행불용) 연구용역비 절감, 센터장 신규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집행잔액(42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27 (227)	- (-)	- (-)	227 (227)	227 (227)	- (-)	- (2)
'16년	215 (215)	- (-)	- (-)	215 (215)	215 (213)	- (-)	- (2)
'17년	204.5 (204.5)	- (-)	- (-)	204.5 (204.5)	204.5 (204.1)	- (-)	- (0.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GSP 1단계 사업성과가 목표 대비 저조하므로 2단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17년 국정감사)

→ 2단계부터는 기업중심 과제개편 및 사업 특성에 맞춘 비즈니스성과 관리모델을 도입하여, 수출 지원 사업 강화 등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화 중점 추진 중임

- **(과제구성)** 종자 상품화 기술 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 해외 유통채널 확충 등 사업화 과제 포함 구성
- **(성과평가)** 비즈니스모델(7-block)을 이용, 실질지표(유통채널, 전시포 확보, 수출액 등) 중심으로 관리 및 평가
- **(수출지원)** 종자기업들의 국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해 박람회·전시회 참여 및 시범포 사업 지원 등 마케팅 강화

*** 2단계 1년차(2017년) 성과 : 수출을 포함한 주요성과 지표 목표달성**

- 수　　출 (목표) 2,329만 달러 → 2,447 (105.1%달성)
- 국내매출 (목표) 6,812백 만원 → 12,825 (188.3%달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종자시장 규모)** 세계 농작물 종자시장은 370억 달러('16.기준)

* ('10) 307억 달러 → ('14) 410 → ('16) 370

○ **(세계 종자업체 집중도)** 10대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이 266억 달러로, 시장의 70% 이상 점유('16.기준)

-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 추세, '16년 경우 소폭(1%) 증가

* 10대 다국적 기업 매출액 : ('11) 240억 달러 → ('15) 264 → ('16) 266

- 최근 종자기업의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 편중 현상 더욱 심화

* ①듀폰(미국, 세계 2위)과 다우케미컬(미국, 4위) 합병(143조원) 발표('15.12.12)
②켐차이나(중국 화학기업)에서 신젠타(스위스, 3위) 인수(52조원) 합의 발표('16.2.24)
③바이엘(독일, 5위)에서 몬산토(미국, 1위) 인수(74조원) 합의 발표('16.9.14.)

(5) 사업추진절차

사전기획	품목별 상세기획	• 기획과제 추진 (연구목표 설정 및 세부 연구과제 구성 등 철저한 사전기획) • R&D기획 예산 지원(별도의 전문팀이 참여)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 공모	• 각 분야별 사업단장 공모 - 연구수행 능력, 경영관리 능력, 리더십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선정 및 사무국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선정 • 사업단 운영계획에 따라 사무국 구성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	프로젝트 RFP 확정	• 품목별 상세기획을 통해 20개 품목별 연차별/단계별 종자개발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등 세부프로젝트별 RFP 확정
	프로젝트 연구기관 공모	• 사업단장 주관으로 선정평가 진행 - 사업단장이 평가계획 수립 → 전문기관 장이 승인
	선정 및 연구개시	•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정책부합성 평가 및 연구계획에 대한 공개발표 평가 실시 후 연구기관 선정 확정 및 통보 • 프로젝트 협약 및 각 프로젝트 종자개발 연구 추진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계획 확정 및 진도관리 계획 수립	• 각 사업단별 프로젝트 협약 이후 확정된 사업단 운영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후 심의·확정 • 사업단장은 매 연차별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진도관리 계획 수립 → 전문기관 장이 승인
	사업단 중간점검	• 사업단 구성 후 6개월 이내 사업단별 중간점검 실시(전문기관)
진도관리 및 평가	연차평가	• 사업단장 주관으로 연차평가위원회 구성, 프로젝트(세부프로젝트) 연차실적 계획에 대하여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세부프로젝트) 중단 및 조정 가능
	중간·단계 평가	• 연구시작 2년차마다 사업단 프로젝트(세부프로젝트) 중간 실적·계획에 대하여 중간평가 실시 - 중간평가 결과 프로젝트(세부프로젝트) 중단 및 조정 가능 • 단계평가는 연구시작 4년차에 사업단별 단계실적 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 단계평가 결과 사업단장 연임 여부 결정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	최종평가	• 종료되는 프로젝트 및 사업단에 대하여 최종평가 실시
	추적평가	• 종료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종료 후 5년간 추적관리 • 추적평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세 평가 실시

22.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R&D)	4,732	4,775	6,355	1,580	33.1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사무관(배태현, ☏ 044-201-246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유용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산업화·실용화 촉진 및 정보 자원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산업 분야 유용 미생물을 발굴하여 유전체 해독 등 정보 분석을 통한 산업화 지원 및 연구역량 강화
사업기간	'14 ~ '21
총사업비	382.9억원 ('18년까지 투자액 192억원)
사업규모	'19년 6,355백만원
지원조건	출연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생명 유용 미생물의 자원화(유전체정보, 실물균주 등 유전자원) 및 기초·응용 연구역량 강화, 산업화 기술개발 등에 6,355백만원 반영

▪ 산업화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 : 산업적 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발효식품 종균,건강기능성 미생물(헬스케어), 친환경 농업 분야 고부가가치 기능성 미생물제품 산업화 기술개발에 5,151백만원 반영

- 산출내역 : (기일치) 18개×285백만원×12/12=5,151백만원

▪ 부처연계(Host-Microbe Interaction)

- 작물, 경제·반려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숙주-미생물 상호작용(Host-Microbe Interaction, HMI) 연구 및 산업화·실용화 지원에 1,104백만원 반영

- 산출내역 : (기일치) 4개×276백만원×12/12=1,104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6,255백만×1.6%=100백만원('18년 대비 동등 요구)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4,775백만원**	**6,355백만원**
▪ 산업화 지원 미생물 유전체 전략연구	3,847백만원 (다/상)18개 × 285백만 x9/12개월	5,151백만원 (기일치)18개×285백만×12/12개월
▪ Host-microbe interaction	828백만원 (다/상) 4개 × 276백만 x9/12개월	1,104백만원 (기일치)4개×276백만×12/12개월
▪ 기획평가관리비	100백만원 4,675백만×2.2%	100백만원 6,255백만×1.6%=100

□ 지원 필요성

<유전체 연구의 농업분야 활용 필요성>

○ 미생물은 고부가가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생물소재로 각광받고 있고, 순수 미생물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억 달러로 추정

* 미생물은 세계 바이오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BT분야의 핵심기술 영역임

○ 유전체 연구를 통해 생산된 유전체 정보, 유전자, 분자마커 등은 고부가 농식품산업 창출의 기반 제공이 가능한 연구분야임

▪ 미생물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특성을 구명하고, 유전체 정보를 연계하여, 식품, 비료, 농약, 사료첨가제 등 농식품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

▪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선진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작물·동물 및 식품 생명자원에 대한 유전체 연구 기반 확보 필요

* 세계 농업생명공학 시장은 '12년 144억불 규모이며, 매년 10%이상 성장하는 추세

○ 이에 따라, 농업 전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해독하여 산업화를 지원하는 연구는 국가차원에서 우선투자 필요

<농식품 미생물 유전체 연구개발 개념>

● 미생물은 세균, 진균, 원생동물, 조류, 바이러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생물의 유전체 분석·활용 연구**를 통해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자원화**하고 산업적으로 연계하여 농식품 산업과 바이오경제 활성화에 기여

<최근 주요 이슈>

○ 미생물 유전체 분야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인 '국가전략기술 개발', '신산업 창출 지원'의 중점과제임

▪ 고부가가치 첨단 융합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전체 연구를 통해 농식품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기여

○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의 도입으로 유전체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전체 기반 정보 활용분야 확대 추세

▪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우수 농림수산식품 생산, 신에너지 생산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

* 최근 Nature, Science 誌에 기재된 전체 논문의 약 80%가 생명과학 분야이며 이중 40%가 유전체 관련 논문일 정도로 세계적인 이슈분야임

<우리나라 기술력>

○ 국가주도의 기반 구축 투자에도 불구하고 유전체 연구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상황

▪ 기초·기반 단계의 유전체 연구 분야는 정립된 반면 실용화 연구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

- 기술수준을 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57.7%, 기술격차는 4.2년 정도로 파악

▪ 유전정보를 축적·분석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하는 역할 등 기능 확대 필요

* 출처 : 2016년 농림식품 기술수준 평가

○ 또한, 농업 미생물분야 산업체의 영세성, 기초·원천 기술 확보 미비 등으로 산업체 주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역량과 기반이 미흡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 투자 필요

<주요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내용 등 대응계획>

○ 산업화지원 미생물 유전체 전략 연구

▪ (조기성과창출 분야) 사업화 진입을 위한 전략분야 미생물의 핵심 유전체 정보를 생산·분석 및 기능 규명하여 농림축산식품 미생물 유전체 연구의 실용산업화를 지원

- 식품미생물, 농용미생물, 경제동물미생물, 건강기능성미생물 등 자원 개발 및 사업화

▪ (연구역량 강화) 바이오 빅데이터를 해독하고 기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필수 유전체 및 오믹스 정보 분석 과제의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역량 강화

-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줄 수 있는 참조(표준)유전체 연구의 수요에 대응하고 종 단위 및 종 내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 등 지원

○ (부처연계) **Host-Microbe Interaction**(숙주-미생물 상호작용) **연구**

▪ 학술적,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동식물 병원균을 대상으로 병리기전을 밝히고 응용기술을 개발, 미래부/농진청의 신규 과제와 연계성을 강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4,732	4,775	6,355	1,580	33.1
▪ 산업화 지원 미생물 유전체 전략연구 (산출근거)	3,832	3,847 (다/상)18개× 285백만x9/12개월	5,151 (기일치)18개 ×286백만 ×12/12=5,151	1,304	33.9
▪ Host-microbe interaction (산출근거)	800	828 (다/상)3개× 368백만x9/12개월	1,104 (계속)4개×276백만×12/12=1,104	276	33.3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100	100 4,675백만×2.2%	100 6,255백만×1.6%=100	-	-
□ 비목(합계)	4,732	4,775	6,355	1,580	33.1
○ 연구개발출연금(360-05)	4,732	4,775	6,355	1,580	33.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조
- 「생명공학육성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15-'19)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17조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의 추진전략인 '국가전략기술 개발', '신산업 창출 지원'의 중점 과제

○ 추진경위

- 유전체 연구 공동기획 추진을 위한 부처 협의('10.10.~'10.11.)
- 국과위 BT 5개 중점분야 투자전략 수립 추진('10.11.~'11.2.)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	25	25	47	47	4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5** **(25)**	- (-)	- (-)	25 (25)	**25** **(25)**	- (-)	- (-)
'16년	**47** **(47)**	- (-)	- (-)	47 (47)	**47** **(47)**	- (-)	- (-)
'17년	**47** **(47)**	- (-)	- (-)	47 (47)	**47** **(47)**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과심 바이오특위 및 전문위, 미래부 특정평가에서 다부처 공동연구의 협력(기획, 성과연계 등) 강화를 통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체계 효율성 제고 요구

⇒ 공동사무국 구축, 부처간 투자 및 성과활용연계 전략 수립('18.1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미국은 농무성(USDA)과 에너지성(DOE)에서 미생물유전체 분석 및 산업화를 대규모 프로젝트로 중점 추진

- 농무성 ARS는 안전한 농산물생산, 자연자원과 환경보존 등 농업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74개의 유전체 연구 과제를 수행

  * 주요 연구주제는 동식물, 곤충 등의 병원균 미생물의 기작연구와 곰팡이, 바이러스, 동식물 등 유전체 정보해독으로 구분

-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인 JGI(Joint Genome Institute)는 곰팡이, 메타지놈, 미생물, 식물유전체 등 다양한 생물에 대한 유전체 연구를 산업적 관점에서 추진
- 민간 연구단체인 JCVI(J. Craig Venter Institute)에서는 6개의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미생물 분야에서 11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 극지미생물, 체내미생물, 원핵생물, 유전체분석 파이프라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미생물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추진
* 현재까지 100종 이상의 미생물에 대한 유전체를 해독하여 600만개 이상의 유전자 발견

▪ 식물/토양, 장내미생물, 병원균, 바이오매스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메타게놈 분석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성과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저널에 발표

* 'TerraGenome'(토양 메타게놈 시퀀싱), 'Phytobiomes Initiative'(식물 미생물체) 등 토양과 식물 미생물 국제 프로젝트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
* 경제동물, 바이오매스 분해, 장내미생물 등에 대한 대규모 메타게놈 분석 연구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저널에 발표

○ **(유럽)** 유럽 각국은 미생물을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유전체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미생물 활용연구 활발히 추진

▪ 영국은 과거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세계 2위 유전체 연구 강국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유전체 연구에 투자

* 2006년 약 3억7천만 달러를 유전체 연구에 투자(세계 총 투자액의 12%)

▪ 러시아 정부는 비노그라드스키 미생물학 연구소를 통해 미생물을 활용하여 탄저병 백신개발 프로젝트 추진

○ **(일본)** 문부과학성(MEXT)과 농림수산성(MAFF)을 중심으로 비인간 분야 유전체연구가 추진되며, 이화학연구소, 국립유전학연구소에서 직접적 연구 수행

▪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게놈네트워크 프로젝트'와 '혁신적 세포 해석 프로그램(Cell Innovation)'을 추진하여 NGS를 이용한 유전체 대량해독과 세포 이미징을 적극적으로 수행

* '09년 약 693억 원이 유전체 연구에 투입되는 등 매년 수백억 원이 유전체 분석연구에 투입

○ **(중국)** 과거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NGS기술을 이용한 동식물, 미생물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유전체 연구를 선도

▪ 미생물 유전체 분야에서는 EU와 공동으로 'MetaHIT'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독자적으로 10,000종의 미생물 유전체 정보 해독작업 진행

* BGI(Beijing Genome Institute)를 설립하고, 중국전역 3,500명 규모의 연구인력이 유전체 연구를 수행(2010년 기준)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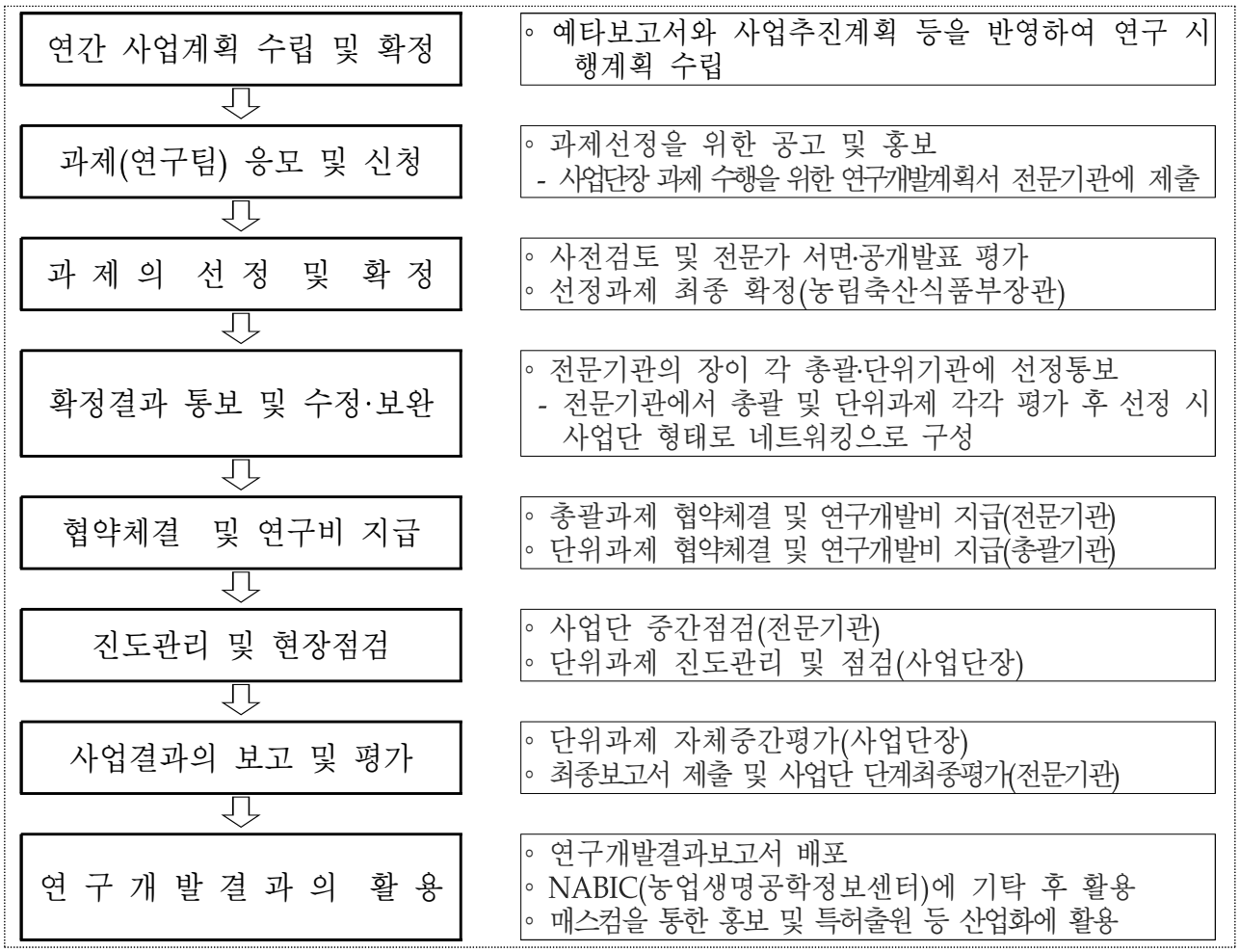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예타보고서와 사업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연구 시행계획 수립
과제(연구팀) 응모 및 신청
◦ 과제선정을 위한 공고 및 홍보
- 사업단장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전문기관에 제출
과 제 의 선 정 및 확 정
◦ 사전검토 및 전문가 서면·공개발표 평가
◦ 선정과제 최종 확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이 각 총괄·단위기관에 선정통보
- 전문기관에서 총괄 및 단위과제 각각 평가 후 선정 시 사업단 형태로 네트워킹으로 구성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총괄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전문기관)
◦ 단위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총괄기관)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 사업단 중간점검(전문기관)
◦ 단위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사업단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 단위과제 자체중간평가(사업단장)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단 단계최종평가(전문기관)
연 구 개 발 결 과 의 활 용
◦ 연구개발결과보고서 배포
◦ NABIC(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에 기탁 후 활용
◦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

2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8,320	8,912	9,354	442	5.0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사무관(류성훈, ☏ 044-201-245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R&D사업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관리전문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 등) 지원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운영 출연금 : 9,354백만원

- 인건비 : 5,880백만원(446 증)
  - ▪ 인건비(82명)* 5,740백만원(357) 및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수당 140백만원(89) 반영으로 '18년 대비 8.2% 증액
    * '19년도 11명 증원 반영
- 경상운영비 : 2,113백만원(197 증)
  - ▪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이사비 및 청사신축 취득세 등 197백만원 추가 반영으로 '18년 대비 10.3% 증액
- 기관고유사업비 : 1,361백만원(201 감)
  - ▪ R&D역량제고 527백만원(177), 정보화추진 283백만원(△667), R&D총괄조정지원 93백만원(-), 신기술 및 우수기술인증 250백만원(100), 녹색인증평가 19백만원(-), 기록물관리 및 DB구축사업비 189(189) 반영으로 '18년 대비 12.9% 감액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912백만원**	**9,354백만원**
▪ 인건비	• 5,434백만원 - (인건비)69명×78백만원=5,383 - (이주수당)63명×0.2백만원×4개월=51	• 5,880백만원 - (인건비)82명×70백만원=5,740 - (이주수당)70명×0.2백만원×10개월=140
▪ 경상운영비	• 1,916백만원 - 1식×1,916백만원	• 2,113백만원 - 1식×2,113백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 1,562백만원 - R&D역량제고 : 350 - 정보화추진 : 950 - R&D총괄조정지원 : 93 - 신기술 및 우수기술인증 : 150 - 녹색인증평가 : 19	• 1,361백만원 - R&D역량제고 : 527 - 정보화추진 : 283 - R&D총괄조정지원 : 93 - 신기술 및 우수기술인증 : 250 - 녹색인증평가 : 19 - 기록물관리 및 DB구축사업비: 189

□ 지원 필요성

○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과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평가원의 기관운영경비로, R&D투자효율성 제고 및 정부위탁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320	8,912	9,354	442	5.0
▪ 인건비 (산출근거)	5,247 (1식×5,247백만×100%)	5,434 인건비(69명×78백만×100%) 이주수당(63×0.2백만×4개월×100%)	5,880백만원 인건비(82명×70백만×100%) 이주수당(70명×0.2백만×10개월×100%)	446	8.2
▪ 경상운영비 (산출근거)	1,883 (1식×1,883백만×100%)	1,916 (1식×1,916백만×100%)	2,113백만원 (1식×2,113백만×100%)	197	10.3
▪ 기관고유사업비 (산출근거)	1,190 (1식×1,190백만×100%)	1,562 (1식×1,562백만×100%)	1,361백만원 (1식×1,361백만×100%)	△201	△12.9
□ 비목(합계)	8,320	8,912	9,354	442	5.0
○ 연구개발인건비(360-01)	5,247	5,434	5,880	446	8.2
○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1,883	1,916	2,113	197	10.3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1,190	1,562	1,361	△201	△12.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한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국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06년부터 “농림기술관리센터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
- ‘09. 4.1「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정・공포

  * 같은 법 제8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9. 4.~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9. 9.1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초대 임원진 구성
- ‘09. 9.1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설립등기
- ‘09. 10.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개원
- ‘10. 1.29.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10. 4.20.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 ‘11. 1.24.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 ‘12. 7.5. 지방이전대상기관으로 지정(광주전남혁신도시)
- ‘17. 6.28. 기관명칭 변경(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74	76	82	91	83	8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2 **(82)**	- (-)	- (-)	82 (82)	82 **(76)**	- (6)	- (-)
’16년	91 **(91)**	- (6)	- (-)	91 (97)	91 **(84)**	- (14)	- (-)
’17년	83 **(83)**	- (14)	- (-)	83 (97)	83 **(85)**	- (1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부처별로 R&D 육성, 사업관리 등의 효율성·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운영 중

○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년월일	'09.6.26.	'02.12.30.	'06.05.11.	'09.10.02.
설립근거	한국연구재단법	건설기술진흥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주요기능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양성·활용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관련 조사, 수집, 분석, 평가, 관리, 활용 및 정책개발지원 등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기획 -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리, 활용촉진 -새로운 기술 심사,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정책수립 지원 -연구개발사업 등 기획, 평가, 관리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정책개발 수립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기술개발인력 육성지원 등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 확정
○ 이사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 관련규정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10조

⇩

운영계획의 수립
○ 예산 운영계획 이사회 의결
○ 관련규정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12조

⇩

예산집행
○ 원장 결재 후 예산집행
○ 관련규정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회계규정 등

⇩

결산
○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수감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 관련규정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13조

24. 기술사업화지원(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기술사업화지원(R&D)	10,284	8,910	7,181	△1,729	△19.4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사무관(배태현, ☏ 044-201-246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품화·제품화를 위한 사업화 연구(R&BD)를 지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R&BD) 지원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
사업기간	'08~'18(일몰)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년 7,181백만원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기개발된 농식품 R&D 성과물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7,181백만원 반영

- (현장연계 고부가가치 제품사업화)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의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해 6,268백만원 반영
  - ▪ (종료)20개×285백만×12/12=5,708, (종료)6개×280백만×4/12=560백만원
-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 CRO·CMO 등 생산기술·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을 위해 788백만원 반영
  - ▪ (계속)1개×400백만×10/12=333백만원, (종료)1개×201백만×12/12=201백만원, (종료)2개×381백만×4/12=254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 125백만원 반영
  - ▪ 기획평가관리비 : 7,056백만×1.8%=125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기술사업화지원	**8,910백만원**	**7,181백만원**
▪ 현장연계고부가가치제품사업화	7,390백만원 (기일치)20개×285백만×12/12=5,708 (계속)6개×278백만×10/12=1,390 (종료)1개×292백만×12/12=292	6,268백만원 (종료)20개×285백만×12/12=5,708 (종료)6개×280백만×4/12=560
▪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	1,367백만원 (계속)3개×386백만×10/12=966 (기일치)1개×401백만12/12=401	788백만원 (계속)1개×400백만×10/12=333 (종료)1개×201백만×12/12=201 (종료)2개×381백만×4/12=254
▪ 기획평가관리비	153백만원 8,757백만×1.75%=153	125백만원 7,056백만×1.8%=125

□ 지원 필요성

○ **(농식품 분야 사업화 촉진)** 우리나라 농산업체는 영세*하여 스스로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국가차원의 R&BD 지원이 절실한 상황

* 농식품분야 기업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영세하고 소기업(종업원 10명 이상~49명 이하) 비중이 25,666개(9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또한, 연구개발에는 성공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서 추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부에서 추가 기술개발의 마중물 역할 필요

* 농식품분야 국가 R&D에서 창출된 특허는 2,072건으로 이중 비이전기술은 1,489건(71.9%), 비이전기술 중 상업화가 가능한 특허는 537건(36.1%) ('13년 농림식품 R&D 기술사업화 촉진 대책)

○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민간 농식품 산업체(농업회사법인 포함)가 기개발한, 농식품 산업에 활용 가능한 R&D기술을 사업화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차별성을 지님

* 농촌진흥청(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사업)은 농촌진흥청 또는 시·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체에 지원

<사업 개요 및 추진 방향>

※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세스 II단계인 사업기획에 1차 지원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과제에 III~IV단계 후속 지원

<기술사업화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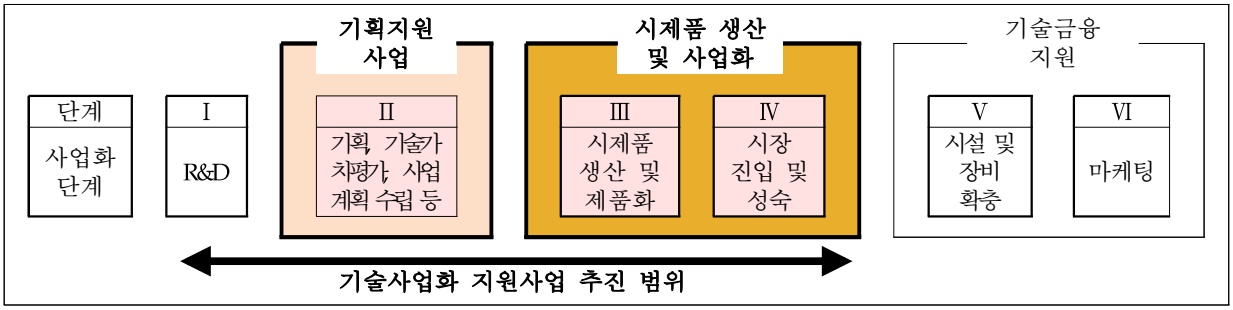

○ 현장연계고부가가치제품사업화 : 기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

- **(기획지원)** 시장성, 경제성 등 기술가치평가와 사업전략이 포함된 사업기획 지원(20~30백만원/4~5개월)

* 기술동향 및 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예비시험, 마케팅 등 사전기획분야 중심지원

- **(후속지원)** 기획지원 과제의 후속지원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스타상품·기술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의 R&D 지원 강화(2~3억원/연간)

○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 : 축적된 농업과학기술을 활용한 목적 지향적·맞춤형 기술개발 및 성과창출을 위한 민간연구조직 육성에 지원

- **(CRO)** 농업 R&D로 얻어진 연구결과물을 산업화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원해 주는 연구조직 육성

  * 질병 위탁 실험 대행, 식물유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미생물제재 개발 등

- **(CMO)** 농식품 분야에 활용 가능한 실험용 시료 생산에서부터 공정개발, 완제품에 이르는 전문적인 서비스 대행조직 육성

  * 스마트팜 기자재 제품기준 검증, 동물의약품 생산대행, 천연물제재 원료 및 완제품 생산대행 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기술사업화지원**	**10,284**	**8,910**	**7,181**	**△1,729**	**△19.4**
▪ 현장연계고부가가치제품사업화 (산출근거)	7,410	7,390 (기일치)20개×285백만×12/12=5,708 (계속)6개×278백만×10/12=1,390 (종료)1개×292백만×12/12=292	6,268 (종료)20개×285백만×12/12=5,708 (종료)6개×280백만×4/12=560	△1,122	△15.2
▪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 (산출근거)	2,200	1,367 (계속)3개×386백만×10/12=966 (기일치)1개×401백만12/12=401	788 (계속)1개×400백만×10/12=333 (종료)1개×201백만×12/12=201 (종료)2개×381백만×4/12=254	△579	△42.4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185	153 8,757백만×1.75%=153	125 7,056백만×1.8%=125	△28	△18.3
□ **비목**(합계)	**10,284**	**8,910**	**7,181**	**△1,729**	**△19.4**
○ 연구개발출연금(360-05)	10,284	8,910	7,181	△1,729	△19.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제2차('07~16)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생명공학 산업화 명시
  ☞ 4대 전략과제에 "생명공학 실용화/산업화 연구개발 지원 가속" 설정
- '07. 7. 『'08 농림바이오 기술산업화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 '09. 12.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서 민간 투자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사업화(R&BD) 지원 확대' 추진
- '13. 7. 농식품 R&D 기술사업화 촉진 대책 마련
- '13. 7.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22) 수립
- '14. 4. '14년도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마련
- '15. 12.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6.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몰제 적용에 따른 사업 일몰 확정('18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기술사업화지원	72	58	70	98	103	8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0 (70)	- (-)	- (-)	70 (70)	70 (70)	- (-)	- (-)
'16년	98 (98)	- (-)	- (-)	98 (98)	98 (98)	- (-)	- (-)
'17년	103 (103)	- (-)	- (-)	103 (103)	103 (10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결과 : 보통

- 지적·권고사항

· 사업 성과 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재점검 필요

☞ 조치사항

· '18년도 상위평가 검토의견(성과지표 재점검)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재설정을 위해 전문가 검토회의 추진('18.8)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중소기업의 기술력 개발 및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미 중기청에서 R&D예산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SBIR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TTR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SBIR과 STTR프로그램은 기술혁신단계를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3단계*로 구분하고 1~2단계를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중

* (1단계) 제안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기업 평가/(2단계) 후속지원/(3단계) 상업화지원

○ (일본) 지적재산 전략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민간기업 사업화촉진 연구사업*'과 '新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시행

* 민간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실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과제의 90%이상 사업화 실현을 목표로 설정('14년 30여개 과제 지원/예산 28억엔)

** 기술이전 가속화, 수요와 직결된 연구개발의 관리방식 개혁, 다양한 지식 창출 위한 환경 정비 등이 기본 방향

○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사업화연계기술개발 '16년 246억원), 중기청(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16년 546억원) 등 각 부처에서도 해당 분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사업화를 위해 상용화·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중

* 기 개발된 기술을 단기간에 사업화할 수 있는 우수기술을 선정하여 지원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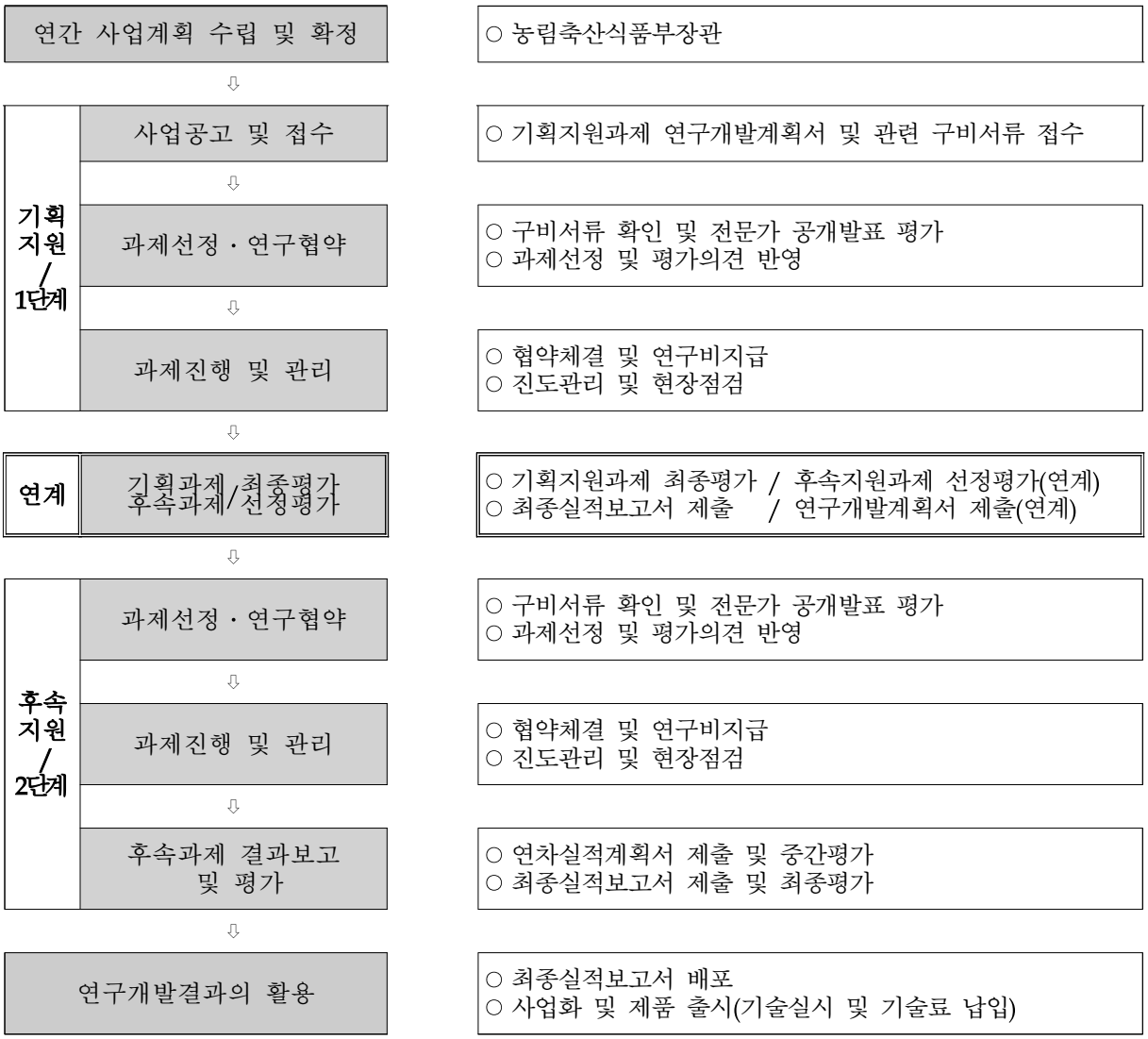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지원/1단계
사업공고 및 접수
○ 기획지원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접수
과제선정·연구협약
○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공개발표 평가
○ 과제선정 및 평가의견 반영
과제진행 및 관리
○ 협약체결 및 연구비지급
○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연계
기획과제/최종평가
후속과제/선정평가
○ 기획지원과제 최종평가 / 후속지원과제 선정평가(연계)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연계)
후속지원/2단계
과제선정·연구협약
○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공개발표 평가
○ 과제선정 및 평가의견 반영
과제진행 및 관리
○ 협약체결 및 연구비지급
○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후속과제 결과보고 및 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중간평가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 최종실적보고서 배포
○ 사업화 및 제품 출시(기술실시 및 기술료 납입)

25.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첨단생산기술개발(R&D)	29,909	30,678	28,505	△2,173	△7.1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업 경영비 상승 등 불리 여건 최소화를 위한 농업과 ICT융복합, 농기계, 농자재 개발 지원을 통해 농산업의 첨단화 및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견인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업 경영비 상승 등 불리 여건 최소화를 위한 농업과 ICT융복합, 농기계, 농자재 개발 지원을 통해 농산업의 첨단화 및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견인
사업기간	'11 ~ '21(일몰)
총사업비	해당없음 ('18년까지 기투자액 1,879억원)
사업규모	'19년 28,505백만원
지원조건	출연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기계 개발 및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을 위한 핵심기술분야의 투자를 위해 28,505백만원 반영

▪ (ICT융복합시스템)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미래농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13,303백만원 반영

- (계속) ICT 기자재 국산화, 스마트팜 산업화 기술과 유통·소비단계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첨단화 기술개발 투자 지원
- (신규)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농업 첨단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지원
- 산출내역 : (기일치)20개×458백만×12/12=9,153,
  (종료)11개×285백만×12/12=3,137,
  (종료)6개×277백만×4/12=554,
  (다/상)2개×306백만×9/12=459

▪ (첨단농기계생산) 고령자, 여성친화형 농기계, 수입의존 핵심부품 국산화,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품목별 이앙기, 수확기 개발 등을 위해 12,153백만원 반영

- (계속) 배추·무 수확기, 이식기, 과수 방제용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원예·노지 등의 농기계 개발 첨단기술의 농업 적용에 지원
- (신규) 수입 의존 핵심부품 국산화(전자장치, 미션 등) 및 고령자·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자율주행 농기계 등에 투자 지원
- 산출내역 : (기일치)8개×407백만×12/12=3,257,
  (계속)1개×1,020백만×10/12=850,
  (종료)5개×427백만×12/12=2,136, (종료)2개×330백만×4/12=220,
  (다/상)17개×446백만×9/12=5,690

▪ (첨단농자재생산) ‘18년도 내역사업 일몰에 따라 계속 과제 783백만원 반영

- (계속) 시설원예용 발열필름, 유기농자재, 점적관수시스템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 등 농자재 개발 등 계속 지원
- 산출내역 : (종료)2개×359백만×12/12=717, (종료)1개×200백만×4/12=66

▪ (스마트팜해외진출실증연구) 해외 적용 가능 온실 개발 및 현지 시범수출 지원, 해외 적용 온실 냉방시스템 시제품 개발 및 현지 실증 지원, 해외 적용 가축 헬스케어 시제품 개발 및 현지 실증 지원 등 연구개발

- 산출내역 : (신규)3개×622백만×9/12=1,400

▪ 기획평가관리비 : 866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첨단생산기술개발	**30,678백만원**	**28,505백만원**
▪ ICT융복합 시스템	17,418백만원 (기일치)9개×351백만×12/12=3,156 (계속)10개×317백만×10/12=2,635 (종료)17개×321백만×12/12=5,450 (다/상) 24개×333백만×9/12=6,000 (단/상)2개×88백만×9/12=176	13,303백만원 (기일치)20개×458백만×12/12=11,663 (종료)11개×285백만×12/12=3,137 (종료)6개×277백만×4/12=554 (다/상)2개×306백만×9/12=459
▪ 첨단농기계 생산	9,444백만원 (기일치)2개×700백만×12/12=1,400 (계속)2개×750백만×10/12=1,250 (종료)10개×262백만×12/12=2,620 (다상)12개×463백만×9/12=4,174	12,153백만원 (기일치)8개×407백만×12/12=3,257 (계속)1개×1,020백만×10/12=850 (종료)5개×427백만×12/12=2,136 (종료)2개×330백만×4/12=220 (다/상)17개×446백만×9/12=5,690
▪ 첨단농자재 생산	2,830백만원 (기일치)1개×261백만×12/12=261 (계속)1개×200백만×10/12=167 (종료)6개×293백만×12/12=1,760 (다상)8개×107백만×9/12=642	783백만원 (종료)2개×359백만×12/12=717 (종료)1개×200백만×4/12=66
▪ 사막형스마트팜 패키지기술개발	-	1,400백만원 (신규)3개×467백만×12/12=1,400
▪ 기획평가관리비	986백만원 29,692백만×3.3%=986	866백만원 27,639백만×3.1%=866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등 스마트농업 추진

- 농업인구 감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농업·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스마트팜 등 투자 강화

- 첨단 농기계 및 농자재 개발은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직면한 농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속 투자 및 관리 필요

○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바이오와 ICT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시스템 구축으로 농림·축산업 고부가가치화와 빅데이터, 로봇·무인기 등 혁신성장 동력 성과를 국민 생활과 연계된 분야에 활용 확대 (‘18.02)

○ **(시장추이)** 첨단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도**되고 있고, 관련 **시장도 지속 확대**

* 세계 농기계시장생산규모 1,490억 달러('13년, **약 160조**) 수준으로 연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18년에는 2080억 달러)/국내는 **1조 8,440억원**('13년) 수준

○ **(기술수준 및 격차)** 국내 첨단 농업분야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저조하고, 주요 핵심기술은 수입에 의존함

* 농림식품기계시스템 분야 기술수준 : 미국(100%) > 네덜란드(97.0) > 일본(95.8) > **한국(75.3)**

* '16년 기술격차 : 미국>네덜란드(1.4년)>독일(1.5년)>일본(1.6년)>영국·프랑스(2.2년)>호주(3.6년)>**한국(4.3년)**>중국(5.2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첨단생산기술개발**	**29,909**	**30,678**	**28,505**	**△2,173**	**△7.1**
▪ ICT융복합시스템	15,834	17,418 (기일치)9개×351백만×12/12=3,156 (계속)10개×317백만×10/12=2,635 (종료)17개×321백만×12/12=5,450 (다/상)24개×333백만×9/12=6,000 (단/상)2개×88백만×9/12=176	13,303 (기일치)20개×458백만×12/12=9,153 (종료)11개×285백만×12/12=3,137 (종료)6개×277백만×4/12=554 (신규)2개×306백만×9/12=459	△4,115	△23.6
▪ 첨단농기계 생산	8,439	9,444 (기일치)2개×700백만×12/12=1,400 (계속)2개×750백만×10/12=1,250 (종료)10개×262백만×12/12=2,620 (다상)12개×463백만×9/12=4,174	12,153 (기일치)8개×407백만×12/12=3,257 (계속)1개×1,020백만×10/12=850 (종료)5개×427백만×12/12=2,136 (종료)2개×330백만×4/12=220 (신규)17개×446백만×9/12=5,690	2,709	28.7
▪ 첨단농자재 생산	4,925	2,830 (기일치)1개×261백만×12/12=261 (계속)1개×200백만×10/12=167 (종료)6개×293백만×12/12=1,760 (다상)8개×107백만×9/12=642	783 (종료)2개×359백만×12/12=717 (종료)1개×200백만×4/12=66	△2,047	△72.3
▪ 사막형스마트팜 패키지기술개발	-	-	1,400 (신규)3개×467백만×12/12=1,400	1,400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711	986 29,692백만×3.3%=986	866 27,639백만×3.1%=866	△120	△12.2
□ **비목**(합계)	**29,909**	**30,678**	**28,505**	**△2,173**	**△7.1**
○ 비목(360-05)	29,909	30,678	28,505	△2,173	△7.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04. 1. 농림과학기술중장기계획 수립
- '13. 7.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22) 수립
- '14. 12.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수립
- '15. 8. 밭농업 기계 개발 촉진을 위한 R&D 계획 수립
- '15. 12. ICT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 계획 수립
- '15. 12.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6.12 농림수산식품분야 ICT융복합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미래부)
- '17. 2 농업기계 전자제어 장치 등 핵심부품 품질고도화 대책 마련(농식품부)
- '17. 2 2017년 스마트팜 R&D 투자계획 마련(부·청 공동)
- '17. 2 2017년 고령자 여성친화형 소형 첨단 농기계 투자 계획 마련(농식품부)
- '18. 4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스마트팜 기획(다부처)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첨단생산기술개발	188	210	225	273	299	30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4년도 농특세 세수 부족으로 이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25 (225)	67 (67)	( )	292 (292)	292 (292)	( )	( )
'16년	273 (273)	- (-)	- (-)	- (-)	273 (273)	( )	( )
'17년	299 (299)	- (-)	- (-)	299 (299)	299 (299)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결과 “우수”

○ ‘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여성·고령농의 편의성을 위한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조치결과) 여성, 고령화를 포함한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15년 6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진청, 한국기계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의 ’밭농업 기계 개발 촉진 대책‘ 및 ’17년 12월 ‘밭작물 기계화 촉진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22)

- (조치결과) R&D 과제 선정평가 단계부터 종료 후까지 사업화를 고려한 사업관리 추진

  * (과제 공고 시) 산업체 참여 및 제품화·매출발생 등 상용화 목표 제시 의무화, 평가 시 기술사업화 전문가 참여

  * (계속과제) 연차평가 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여부를 중심으로 최종평가 추진

  * (과제종료 후) 연구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종료 3년차까지 매년 추적 평가 실시 및 과제종료 5년차까지 성과관리 의무화하여 관리(보고 누락 시 매년 감점 부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농기계시장 생산규모는 1,490억 달러(’13년) 수준으로 연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18년도 2,080억달러)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내수(9,252억원) 및 수출(4,770억원)시장을 합쳐 1조 8440억원(’13년) 수준

※ 농기계 : 트랙터, 수확기, 이식기, 시비기, 농업용 로봇 등

- 농업로봇 시장은 9억 달러(‘13년) 규모였으나 191억 달러(’20년)로 증가하고, 특히 제초·방제·수확 로봇의 급속한 성장 예상과 지능화된 트랙터, 콤바인, 임베디드 로봇 형태로 진화되고 있음

< 정책 방향 등 >

○ **(유럽)** 유럽연합집행기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EU 차원의 농업분야 ICT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총 980만 유로, 약 131억원 투자)

▪ 정밀축산업, 실내기후·품질통제·농장관리 자동화, 농업 로봇 개발 등 수행

※ 네덜란드 : '10년부터 4년에 걸쳐 민관 공동 출자에 기반해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프로젝트 추진

※ 주요기술 : 채광량, 온도, 이산화탄소 등을 컴퓨터를 통해 관리하는 첨단 하우스 설비인 하이테크 하우스 기술 보유

○ **(미국)** '14년 미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142.8조원으로 '10년 이후 감소하나, 재난 안전 R&D예산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5.8조원 규모로 투입

○ **(일본)** "고성능 농업기계 등의 시험연구, 실용화 촉진 및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해 농업기계화 사업을 ①고성능 농업기계 개발 보급 ②저비용 농업 기계화 ③농작업의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추진

※ '93년~'13년까지 88과제 수행(120억엔 투자)을 통해 67개 기종 실용화(28만대 농촌에 보급)

(5)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연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45일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26.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출전략기술개발(R&D)	17,501	16,551	13,010	△3,541	△21.4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개발, 가공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수출 기반 구축

- (수출전략형상품개발) FTA 확대, 할랄시장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제품·기술개발
- (수출지원 유통·검역) 수출검역 현장애로 및 농식품 부패로 인한 유통과정에서의 경제적 손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기술 개발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출전략형 제품개발 및 수출 유통·검역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농식품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11~'19(일몰)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년 13,010백만원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출전략형 상품개발 및 유통·검역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13,010백만원 반영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 : 동물의약품, 반려동물 사료, 농기자재 등 농업 후방산업 분야의 수출상품화 기술개발 및 중국, 동남아 등 수출대상국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9,657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14개×472백만×12/12=6,603백만원
  (계속)2개×400백만×10/12=666백만원
  (종료)7개×289백만×12/12=2,020백만원
  (종료)5개×221백만×4/12=368백만원

▪ 수출지원유통·검역 : 각국의 검역기준 강화에 대응한 수출검역 현장애로 및 신선농산물 부패로 인한 유통 과정에서의 경제적 손실 해결을 위한 사업비 3,129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2개×486백만×12/12=971백만원
  (계속)1개×500백만×10/12=416백만원
  (종료)5개×334백만×12/12=1,668백만원
  (종료)1개×224백만×4/12=74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224백만원('18년 대비 21.4% 감액 요구)

- 산출내역 : 12,786백만×1.7%=224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수출전략기술개발	**16,551백만원**	**13,010백만원**
▪ 수출전략형상품개발	11,884 (기일치)8개×384백만×12/12=3,071 (계속)18개×434백만×10/12=6,516 (종료)4개×353백만×12/12=1,410 (단/상)4개×20백만×12/12=80 (다/상)2개×538백만×9/12=807	9,657 (기일치)14개×472백만×12/12=6,603 (계속)2개×400백만×10/12=666 (종료)7개×289백만×12/12=2,020 (종료)5개×221백만×4/12=368
▪ 수출지원유통검역	4,382 (기일치)8개×330백만×12/12=2,639 (계속)2개×346백만×10/12=577 (종료)4개×292백만×12/12=1,166	3,129 (기일치)2개×486백만×12/12=971 (계속)1개×500백만×10/12=416 (종료)5개×334백만×12/12=1,668 (종료)1개×224백만×4/12=74
▪ 기획평가관리비	285백만원 (16,266백만×1.8%)	224백만원 (12,786백만×1.8%)

□ 지원 필요성

< 주요 대책과의 연계성 >

○ **(수출확대)** FTA 등 세계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산품 수출 촉진 기술개발 필요(농식품부, '16. 1)

※ 농산물 수출 동향 : ('11) 5,077백만달러 → ('15) 6,100백만달러

농식품 시장규모 확대 : ('11) 7조 890억달러 → ('14) 7조 7,990억달러

○ 저장유통기술의 발전으로 농식품 산업의 국가간 경계가 무너지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식품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에 정책 및 기술지원(컨설팅, R&D 투자 등) 및 현지 빅바이어 및 유통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가 필요
- 신규 시장개척,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 우선품목 검역협상 추진, 이를 위해 수출맞춤형 검역시스템, 유통기술확보 등 기술개발필요

* 관련 대책: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 대책(농식품부, '16. 1)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사업단 형태로 품목/분야별 생산·유통·수출까지 전단계에 걸친 전주기적인 기술개발 추진이 절실함

* 관련 대책: 수출연구사업단 추진계획 수립(농식품부, '17. 5)

< 그 간의 성과 사례 >

○ 수출연구사업단 운영('08~'14)으로 해외시장 진출시 경쟁력이 높은 국내 농산물 품목에 대한 수출기반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액 창출

* '배 수출단지 조성 및 포장규격화를 통한 수출(320억 달성), 단감의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440억 달성) 등 수출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함('16년 기준)

○ 수출유망국가인 중국시장에 진출 가능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통한 수출 창출에 기여함

* 천연원료(옥수수) 추출물을 이용하여 화장품용 피부진성소재 개발(중국 Ruiyu사 5,500 USD 판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17,501	16,551	13,010	△3,541	△21.4
▪ 수출전략형상품개발 (산출근거)	12,832	11,884 (기일치) 8개×384백만×12/12개월=3,071 (계속)18개×434백만×10/12개월=6,516 (종료)4개×353백만×12/12개월=1,410 (단/상) 4개×20백만×12/12개월=80 (다/상) 2개×538백만×9/12개월=807	9,657 (기일치)14개×472백만×12/12=6,603 (계속)2개×400백만×10/12=666 (종료)7개×289백만×12/12=2,020 (종료)5개×221백만×4/12=368	△2,227	△18.7
▪ 수출지원유통·검역 (산출근거)	4,338	4,382 (기일치) 8개×330백만×12/12개월=2,639 (계속)2개×346백만×10/12개월=577 (종료)4개×292백만×12/12개월=1,166	3,129 (기일치)2개×486백만×12/12=971 (계속)1개×500백만×10/12=416 (종료)5개×334백만×12/12=1,668 (종료)1개×224백만×4/12=74	△1,253	△28.6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331	285 16,266백만×1.75%	224 (12,786백만×1.8%)	△61	△21.4
□ 비목(합계)	17,501	16,551	13,010	△3,541	△21.4
○ 연구개발출연금 (360-05)	17,501	16,551	13,010	△3,541	△21.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09. 1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 '13. 6. 농식품 수출 희망 찾기 플랜(2013년~2017년)

- ‘13. 7.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22) 수립
- ‘14. 8. 농수산식품 수출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15. 3. 이슬람권 할랄제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R&D 계획 수립
- ‘15. 5.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농식품부)
- ‘15. 5. 할랄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R&D 대책
- ‘15.12.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6. 1.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경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수립(농식품부)
- ‘16. 2. 농식품 수출대책 합동업무보고
- ‘16. 4. ’17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6. 5.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농식품부)
- ‘16. 1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농식품부)
- ‘17. 5. 수출연구사업단 추진계획 수립(농식품부)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수출전략기술개발	160	160	172	184	175	1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4년도 : 농특세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액 41억원 발생

○ 기획비용, 전문가 수당, 과제평가비 절감으로 기획평가관리비 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72 (213)**	41 (-)	- (-)	213 (213)	**213 (212)**	- (-)	- (1)
’16년	**184 (184)**	- (-)	- (-)	184 (184)	**184 (183)**	- (-)	- (1)
’17년	**175 (175)**	- (-)	- (-)	175 (175)	**175 (17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 농산물 수출관련 R&D 사업을 해외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를 통해 추진

- 시장개척사업(Market Development Program)하에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과 연계된 사업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특수작물 지원사업'이 대표적

○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농산물 수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

-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가공기술 개발, 코드와 표준의 수정, 새로운 시장의 발견, 새로운 사용 용도의 개발 등이며, 주로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

○ '특수작물 지원사업'은 해외 수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식물검역 및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

- 밀, 쌀, 면화 등 일부 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이 대상

[미국 농무부의 해외시장 관련 사업 예산[1)]]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1)]
시장접근사업(Market Access Program)	184	186	186	188	200
신흥국 시장사업(Emerging Markets Program)	9	9	9	8	10
해외시장 개척사업(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30	30	30	32	35
특수작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 Program)	8	8	8	8	9
양모면화 신탁기금(Agricultural Wool/Pima Agriculture Cotton Trust Funds)	32	32	32	42	44
합 계	263	265	265	278	298

주석 : 실행예산 기준이며, 다만 2018년은 예산 편성 기준임.

자료 : USDA, 「FY2019 Budget Summary」 및 각년도 동일 자료

< 일본 >

○ 일본은 '19년까지 농식품 수출 1조엔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

- 판로지원과 정보수집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의 경우는 '전략적 식물검역 대책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단위 : 백만엔)

구 분	사 업 내 용	예산('18)
해외수요창출 등 지원대책 사업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상담매칭, 새로운 판로개척 등을 지원	4,850 (3,219)
수출환경정비 추진 사업	외국의 수입 규제 완화·철폐 등을 위한 정부간 협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을 지원	776 (293)
전략적 식물검역 대책사업	식물검역 상의 기술적 문제 대응을 위한 사업	292 (179)
축산농장 청정화 지원 대책사업	농장의 사육위생관리의 향상이나 가축의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농장지도, 검사, 백신주사 등 사업실시	596 (581)
해외 농업.무역 투자환경 조사분석사업	농식품 및 음식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외국의 제도·투자환경 등을 조사·분석	878 (697)

주 : 예산은 '18년 요구액이며, ( )속의 수치는 '17년 예산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平成３０年度予算概算要求の概要」

(5)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연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45일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27.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R&D)	7,347	7,989	7,794	△195	△2.4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거점 R&D 육성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을 통해 핵심 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사업기간	'11~ '20(일몰)
총사업비	해당없음 ('18년까지 투자액 431억원)
사업규모	'19년 7,794백만원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연구센터 : 농림축산식품 핵심기술개발 및 농업 R&D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사업비 7,794백만원

▪ 연구센터 : 시장개방의 확대, 지식기반 경제화·산업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의 융복합 신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역거점 연구센터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선도 사업비 '18년 대비 2% 감액(학부생지원금액 감액)

- 산출내역 : (계속) 9개×839백만×12/12=7,545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249백만원

- 산출내역 : 7,545백만×3.3%=249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연구센터	**7,989백만원**	**7,794백만원**
① 연구센터	7,733백만원 (기일치)1개×1,000백만×12/12=1,000백만원 (계속)8개×1,010백만×10/12=6,733백만원	7,545백만원 (기일치)1개×950백만×12/12=950 (계속)8개×989백만×10/12=6,595
② 기획평가관리비	256백만원 (7,733×3.3%=256)	249백만원 (7,545×3.3%=249)

□ 지원 필요성

○ 농산업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세계 농산업 시장에서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의 장기투자 및 농식품 R&D 기술혁신과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 증대

※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

▪ 첨단 융복합 분야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석·박사 배출을 통한 농식품 R&D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농산업체와 채용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학제 간 융합형 연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기초부터 산업화 연구에 이르는 기술 全단계 지원 사업의 추진 요구 증대

*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기초 → 응용 → 개발의 기술 全단계 R&D지원사업 추진

▪ 특히 4차 산업 핵심기술인 농식품분야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미래 신성장 분야인 메디푸드 산업 대응을 위한 첨단 식의약소재 발굴 등 융·복합 기술분야 투자 시급

*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융합의 효과가 보건, 신약 등 유관 산업에 비해 농업에서 더욱 신속하고 경제적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전망

○ 본 사업은 고급 농산업 전문인력의 지역별 균등 양성을 위한 R&D 투자를 통해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지원을 통해 개설한 8개 연구센터에서 ’17년 누적 526명의 석·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310명의 취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

* ‘17년 스마트팜 연구센터(신규) 1개소 확대하여 현재 총 9개소 운영

▪ 향후, ’22년까지 최소 15개(년/150억) 이상의 연구센터를 출범하여 권역별 인재양성·보급 및 융복합기술 선진화 프로그램 추진 예정

▪ 또한, 해당 사업으로 배출된 농식품분야 우수 연구인력은 해당 지역 농식품 기업과의 채용으로 연계하여, 우수 전문 인력 양성과 유휴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이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연구센터**	**7,347**	**7,989**	**7,794**	**△195**	**△2.4**
① 연구센터	7,193	7,733 (기일치)1개×1,000백만×12/12=1,000 (계속)8개×1,010백만×10/12=6,733	7,545 (기일치)1개×950백만×12/12=950 (계속)8개×989백만×10/12=6,595	△188	△2.4
② 기획평가관리비	154	256 7,733×3.3%=256	249 7,545×3.3%=249	△7	△2.7
□ **비목**(합계)	**7,347**	**7,989**	**7,794**	**△195**	**△2.4**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7,347	7,989	7,794	△195	△2.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10. 1. 농업연구센터(ARC) 지원방안 추진
- '11. 5.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분리(융복합연구센터)
- '13. 6.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 '13. 7.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22) 수립
- '15. 12.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연구센터지원사업	'13	'14	'15	'16	'17	'18
○연구센터	30	50	59	79	73	8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연구센터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9 (59)	- (-)	- (-)	59 (59)	59 (59)	- (-)	- (-)
'16년	79 (79)	- (-)	- (-)	79 (79)	79 (79)	- (-)	- (-)
'17년	73 (73)	- (-)	- (-)	73 (73)	73 (7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융복합 관련 R&D) 세계 주요국가들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융복합 기술분야에 중점 지원 강화

- (미국) 융합신산업 발전정책(NNI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선언('01)
  * 융합관련 분야 투자액 : ('01) 4.2억불 → ('04) 8.5 → ('05~'07) 37
- (EU) 'FP7'*에서 융합기술개발 확대 및 학제간 연구개발 추진 강화
  * 7th Framework Programme('07~'13년), 융합기술개발에 약 116억유로 투입
- (일본) 신기술 간 융합 혁신을 통해 7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신산업창조전략('04)'을 마련하여 집중 투자
  * 7대신성장산업 :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헬스케어, 환경에너지, 비즈니스지원서비스

○ (센터지원사업) R&D 연구와 국가발전 목표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점 지원 분야 센터 선정 및 지원

- (일본 COE) 대학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거점 형성 및 창조적 인재육성 도모
- (미국 STC) 이종분야간 선도적 연구, 교육, 상호 지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 협력 연구
- (스위스 NCCR) 국가 중점 전략 분야의 장기연구 프로젝트 수행

(5)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연구센터 선정 및 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연구센터)/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단계평가	○ 중간평가(자체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세부과제 → 연구센터) : 당해년차 종료 2개월전 - 공개평가 : 센터장 주관으로 세부과제 자체평가 실시 ○ 단계평가 - 1단계(3년차), 2단계(7년차)에 전문기관에서 단계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매 연차별 연구 종료 후)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45일 이내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참고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개요 및 주요 현황

□ 개요

○ **(정책방향)**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핵심기술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융·복합 기술 분야에 투자 시급

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대선공약)

○ **(지원내용)** 기초부터 산업화연구에 이르는 기술 全단계 R&D 지원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농업 응용 가능한 융복합분야, 석·박사 과정 설치 대학

○ **(지원규모)** 센터 당 연간 10억원 이내(정부출연금)

○ **(지원기간)** 센터 당 최대 7년(3+4), 후속산업화 연구 3년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센터명	주관기관	책임자	정부출연금 ('19년)	기간	선정
1	채소육종연구센터	서울대	강병철	797	7+3	'10
2	식품안전성 독성연구센터	서울대	최상호	813	7+3	'10
3	지능형식품포장센터	동국대	이승주	794	7+3	'10
4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전남대	이경환	802	7+3	'14
5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연구센터	단국대	정윤화	785	7+3	'14
6	축산물 고품질 생산 관리 연구센터	제주대	박세필	746	7+3	'15
7	밭농업 기계개발 연구센터	경북대	김태한	910	7+3	'16
8	가금규 질병방제 연구센터	전북대	장형관	949	7+3	'16
9	스마트팜 연구센터	경상대	김현태	952	7+3	'17
	기획평가관리비	-	-	249	-	-
합계				7,794	-	-

2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R&D)	7,724	13,347	13,581	234	1.8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사업기간	'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18년까지 기투자액 462억원)
사업규모	'19년 13,581백만원
지원조건	출연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3,581백만원

▪ 진단·예방기술 : 가축질병의 신속 진단 및 예방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질병 노출 최소화 지원에 196백만원

- 산출내역 : (종료)2개×294백만×4/12=196백만원

▪ 검역·방역기술 : 국경 검역, 축사 및 농장출입구, 권역내 등 간편 설치용 소독시스템 개발 통한 방역체계 구축 지원에 2,779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7개×361백만×12/12=2,530백만원
  (다/상)1개×332백만×9/12=249백만원

▪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 질병확산 방지, 질병 발병 후 사후관리를 통한 질병 확산 최소화 지원에 4,201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9개×371백만×12/12=3,339백만원
  (종료)1개×300백만×4/12=100백만원
  (다/상)4개×190백만×9/12=762백만원

▪ 동물의약품개발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및 각종 질병 퇴치를 위한 화학치료제 및 사료용 첨가제 개발 지원에 2,336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3개×336백만×12/12=1,010백만원
  (종료)5개×285백만×4/12=471백만원
  (다/상)3개×380백만×9/12=855백만원

▪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 조류 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및 닭진드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2,735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3개×252백만×12/12=757백만원
  (종료)3개×282백만×4/12=282백만원
  (다/상) 7개×323백만×9/12=1,696백만원

▪ 방역연계 감염병 공통연구개발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야외 방역용 장비 개발 등 방역 관련 범부처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900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4개×170백만×9/12=500백만원
  (다/상)2개×267백만×9/12=4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434백만원

- 산출내역 : 13,147백만원×3.3%=434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13,347백만원**	**13,581백만원**
▪ 진단·예방기술	856백만원 (계속)2개×294백만×10/12=490 (종료)2개×183백만×12/12=366	196백만원 (종료)2개×294백만×4/12=196
▪ 검역·방역기술	2,447백만원 (종료)2개×274백만×12/12=549 (다/상)7개×361백만×9/12=1,898	2,779백만원 (기일치)7개×361백만×12/12=2,530 (다/상)1개×332백만×9/12=249
▪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3,148백만원 (종료)1개×393백만×12/12=393 (계속)1개×300백만×10/12=250 (다/상)9개×371백만×9/12=2,505	4,201백만원 (기일치)9개×371백만×12/12=3,339 (종료)1개×300백만×4/12=100 (다/상)4개 × 190백만원 = 762
▪ 동물의약품개발	2,503백만원 (종료)1개×500백만×12/12=500 (계속)5개×299백만×10/12=1,245 (다/상)3개×336백만×9/12=758	2,336백만원 (기일치)3개×336백만×12/12=1,010 (종료)5개×299백만×4/12=471 (다/상) 3개×380백만×9/12=855
▪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대응기술 개발	2,764백만원 (종료)5개×298백만×12/12=1,490 (계속)3개×282백만×10/12=706 (다/상)3개×252백만×9/12=568	2,735백만원 (기일치)3개×252백만×12/12=757 (종료)3개×282백만×4/12=282 (다/상)7개×323백만×9/12=1,696
▪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공통연구 개발	1,200백만원 (다/상)4개×400백만×9/12=1,200	900백만원 (계속)4개×170백만×9/12=500 (다/상)2개×267백만×9/12=400
▪ 기획평가관리비	429백만원 12,918백만×3.3%	434백만원 13,147백만×3.3%

□ 지원 필요성

○ 매년 구제역, AI 등 재난형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방역·살처분 대응을 위한 직접적 재정 지출과 발생지역 이동통제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2차적 경제피해는 심각한 수준

○ 문재인정부 출범('17.5.10)에 따라 대선 중점 공약인 축산방역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정비와 연계하여 사전·후 방역 조기 대응 매뉴얼 정비, 살처분 기술, 소독제 등 예방제 개발, AI·구제역 백신 개발

< VIP 말씀, '17.6.8 >

▸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 관성적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 방식을 수립 지시**

- 구제역·AI, 닭진드기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친 중장기 R&D 투자 로드맵 마련, 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간 역할 분담 및 사업체계 개편

*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AI) 대응 연구개발」 중장기('17~'21) 추진방안 수립('17.3)

**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 전략(안)」 수립('17.9)

*** 「'18년 닭진드기 방제 R&D 추진 계획」 수립('17.12)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기축질병대응기술개발	7,724	13,347	13,581	234	1.8
▪ 진단·예방기술	1,134	856 (계속)2개×294백만×10/12=490 (종료)2개×183백만×12/12=366	196 (종료)2개×294백만×4/12=196	△660	△77.1
▪ 검역·방역기술	900	2,447 (종료)2개×274백만×12/12=549 (다/상)7개×361백만×9/12=1,898	2,779 (기일치)7개×361백만×12/12=2,530 (다/상)1개×332백만×9/12=249	332	13.6
▪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897	3,148 (종료)1개×393백만×12/12=393 (계속)1개×300백만×10/12=250 (다/상)9개×371백만×9/12=2,505	4,201 (기일치)9개×371백만×12/12=3,339 (종료)1개×300백만×4/12=100 (다/상)4개 × 190백만원 = 762	1,053	33.5
▪ 동물의약품개발	2,117	2,503 (종료)1개×500백만×12/12=500 (계속)5개×299백만×10/12=1,245 (다/상)3개×336백만×9/12=758	2,336 (기일치)3개×336백만×12/12=1,010 (종료)5개×299백만×4/12=471 (다/상) 3개×380백만×9/12=855	△167	△6.7
▪ 사회문제해결형감염병대응기술개발	2,483	2,764 (종료)5개×298백만×12/12=1,490 (계속)3개×282백만×10/12=706 (다/상)3개×252백만×9/12=568	2,735 (기일치)3개×252백만×12/12=757 (종료)3개×282백만×4/12=282 (다/상)7개×323백만×9/12=1,696	△29	△1.0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공통연구개발	-	1,200 (다/상)4개×400백만×9/12=1,200	900 (계속)4개×170백만×9/12=500 (다/상)2개×267백만×9/12=400	△300	△25.0
▪ 기획평가관리비	193	429 (12,918백만×3.3%)	434 (13,147백만×3.3%)	5	1.2
□ 비목(합계)	7,724	13,347	13,581	234	1.8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7,724	13,347	13,581	234	1.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한다.

○ 추진경위

- ‘11. 1. 가축질병관련, 근본대책 마련지시(VIP주재 관계 장관회의)
- ‘11. 1. 범부처 구제역 R&D 대책 지시(총리실 주관 회의)
- ‘11. 3. 지식경제부 등과 공동으로 “구제역 R&D기획단”을 구성하여 시급히 추진할 과제 발굴

· 백신개발 등 단기 및 중·장기 총 6개 과제(총 투자액 231억, ‘11년 80억)

· 우리부(4과제) : 백신개발, 분뇨처리기술, 살처분가축의 처리·관리기술, 구제역 전파 예측 모델 개발

· 미래부(2과제) : 신속진단키트, IT 활용 조기경보시스템

- 우리부에서는 효율적인 R&D추진을 위하여 ‘구제역R&D기획단’을 구성하여 과제발굴 및 공동기획 추진
- ‘13. 7.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22) 수립
- ‘14. 2. AI 대응을 위한 R&D 추진 계획 수립(장관보고)

- ‘15. 12.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7. 3. 구제역·AI 대응 연구개발 중장기(‘17~’21) 대책 수립(농식품부-검역본부)
- ‘17. 5. 과학기술기반 재난형 가축질병 범부처 대응 전략 마련(농식품부, 미래부 등)
- ‘17. 9.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 전략 수립(국과심 바이오특위)
- ‘17. 12. 닭진드기 방제 R&D 추진계획 수립(농식품부)
- ‘18. 7.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 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마련 (국과심 바이오특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40	40	37	58	77	13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8 58	- (-)	- (-)	58 58	58 58	- (-)	- (-)
’16년	76 76	- (-)	- (-)	76 76	76 76	- (-)	- (-)
’17년	77 77	- (-)	- (-)	77 77	77 77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과기부) 결과,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국제협력)** 세계보건기구와 주요 국제기구들은 ‘One Health’ 관점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노력 결집 (예 : ‘OFFLU*’, ‘GLEWS**’, ‘GloPID-R***’)

* UN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동물인플루엔자전문가 네트워크 동물인플루엔자의 연구분야 발굴 및 감시전략 수립

** Global Early Warning System for Major Animal Diseases including Zoonoses. FAO, OIE 및 WHO 세 국제기구가 구축한 글로벌 조기경보시스템

*** 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 WHO와 각국 research funder들이 구축한 감염병 대비 글로벌 연구협동 네트워크

- FAO*, OIE, WHO 3개 국제기구는 '10년 "Tripartite Concept Note"를 발표, 'One Health' 개념을 바탕으로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고 시스템의 협력을 강화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진단예방-**미국) 미국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tion service, APHIS)는 농축산 자원의 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농림부 산하의 연방정부 기관으로 동물 및 식물 질병의 진단과 전염 방지 활동을 실시.

- '16년 재량지출 예산은 약 8억 5,900만 달러, 그 중 8억 5,600만 달러는 프로그램 운영, 약 300만 달러는 시설투자로 구성
- 미국 농업부(USDA)의 중심 연구기관인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은 동물원성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축산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6년 연구 프로그램에 약 11억 달러를 투자

○ **(진단예방-**영국) 인수공통감염병 및 신흥동물질병에 관한 협력프로그램 및 IFAH(국제동물건강연맹)-EU공통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신흥 동물질병 연구를 위한 ERA-NET 설립하여 2011년 총 2,000만 유로 투자

○ **(진단예방-**일본) 농림수산성은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및 위기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 종합대책* 마련 및 예방차원의 후속 연구 사업** 추진 중

* '17년(平城29년) 5,655 백만 엔 예산수립 (그 중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예방·확산 방지에 4,877 백만 엔 예산배정)

** 가축연구('13-'17) : 「식품안전성과 동물위생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 **(진단예방-중국)** 중국 고병원성 H5Nx 및 H7N9 가금백신 제품 개발 완료 및 임상시험 진행

* Clade 2.3.4.4 (H5N6 및 H5N8) 예방용 백신 제품 개발 완료 및 H7N9 가금백신 광동성 및 광시성에서 시험중(Zeng *et al.*, 2016 Avian Diseases 60:253-255; China Daily, 2017.06)

* 그러나 중국의 전문가들은 예찰 및 살처분 정책이 백신정책 보다 경제적이며 가금 사육환경 및 소비패턴 개선을 통해 백신정책 대체 필요성 보고(Sun 등, 2017 Sci Rep 7:46441; Sun과 Liu, 2014 Front Agr Sci Eng 1:277-281).

○ **(동물의약품)** 세계 시장규모는 300억 달러로 연평균 8% 이상 증가 추정 ('15년 300억$ → '20 추정 430억$)

- 국내시장은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조원('15) 규모로 이중 내수 시장은 6,4544억원, 수출시장은 2,700억원으로 구성

※ 시장점유율 : 국내생산('10 : 68%→'14 : 64), 수입('10 : 32%→'14 : 36)

- 해외 수출은 아시아, 중남미 등 80여개국에 2.36억불 수출하였고, 매년 고성장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필요

※ 연간 수출액(천만불) : ('13) 15.2 → ('14) 18.1→ ('15) 21.6 → ('16) 23.6

○ **(One Health 접근)** 사람, 동물 및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인류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동물, 생태계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의사, 수의사 등)과 기관들의 협업과 소통의 필요성을 위하여 OIE의 "One World, One Health", 미국의 "Veterinary Services 2015 Project: One Health Strategic Direction" 등은 대표적인 사례임

- 신종, 재출현 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효과적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는 학제간 융합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필수적임

* 사람에서 신종 질병의 60%는 인수공통질병이며, 이등 병원체 중 71%는 야생동물에서 유래함(Cutler, 2010). 바이오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80%가 인수공통병원체임(Ryan, 2008)

(5)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연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45일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29.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R&D)	-	964	2,843	1,879	194.9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농축산 자재를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농축산 자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농축산 자재를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농축산 자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18 ~ '20
총사업비	해당없음 ('18년까지 투자액 9.64억원)
사업규모	'19년 2,843백만원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이상, 중소기업 30% 이상 현금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농축산 자재를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2,843백만원

▪ (에너지절감자재) 원유 등 화석연료 가격 변동 대비 난방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 자원순환 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등 에너지 절감 분야 지원에 783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 1개×296백만×12/12=296백만원, (다/상) 2과제×325백만×9/12=487백만원

▪ (환경부하저감자재) 농업 생산에 다량 투입되는 화학 농약, 비료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 자재 개발에 845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 1개×475백만×12/12=475백만원, (다/상) 1과제×493백만×9/12=370백만원

▪ (노동력절감자재) 수입 농축산자재 대체 국산화 기술 개발, 농촌인구 고령화 및 여성인구 증가 등 시설재배 고도화 기술 개발, 현장 수요형 농축산 자재 개발·보급 등 지원에 1,127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 1개×475백만×12/12=475백만원, (다/상) 2과제×435백만×9/12=652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88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축산자재산업화 기술개발	**964백만원**	**2,843백만원**
▪ 에너지절감자재	222백만원 (다/상)1개×296백만×9/12개월=222	783백만원 (기일치)1개×296백만×12/12개월=296 (다/상)2과제×325백만×9/12개월=487
▪ 환경부하 저감자재	356백만원 (다/상)1개×475백만×9/12개월=356	845백만원 (기일치)1개×475백만×12/12개월=475 (다/상)1과제×493백만×9/12개월=370
▪ 노동력절감자재	356백만원 (다/상)1개×475백만×9/12개월=356	1,127백만원 (기일치)1개×475백만×12/12개월=475 (다/상) 2과제 × 435백만 x9/12개월= 652
▪ 기획평가관리비	30백만원 934백만×3.2%	88백만원 2,755백만×3.2%

□ 지원 필요성

○ 국내 농축산자재 산업 영세성 및 국내 농가 10a 당 경영비 대비 농자재 비중은 50% 이상으로 수입 위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농업경영비 부담 가중

* 농업경영비(천원) : 15,231('06) → 22,398('16), 47% 급등

* 작물 경영비 대비 농자재비 비중(10a) : 봄감자 46.8%, 대파 63.2%, 딸기 59.4%딸기 56.2%(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16)

- 유가 및 요소·원광석 등 원자재의 높은 수입의존성으로 국제 가격 급등시 업체의 경영악화 및 농자재 가격 상승 초래

* 원자재 수입의존도 : 화학비료 100%, 농약 88%

- 농자재 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초기 R&D 투자비용 부담 과다로 기술개발에 한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 자재산업 활성화
- 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국정과제 83(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추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964	2,843	1,879	194.9
▪ 에너지절감자재	-	222 (다/상)1개×296백만×9/12=222	783 (기일치)1개×296백만×12/12=296 (다/상)2과제×325백만×9/12=487	561	252.7
▪ 환경부하저감자제	-	356 (다/상)1개×475백만×9/12=356	845 (기일치)1개×475백만×12/12=475 (다/상)1과제×493백만×9/12=370	489	137.3
▪ 노동력절감자재	-	356 (다/상)1개×475백만×9/12=356	1,127 (기일치)1개×475백만×12/12=475 (다/상)2과제×435백만×9/12=652	771	216.5
▪ 기획평가관리비	-	30 934백만×3.2%=30	88 2,755백만×3.2%=88	58	193.3
□ 비목(합계)	-	964	2,843	1,879	194.9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964	2,843	1,879	194.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13년 4월 『농자재산업 육성 종합 대책』 수립
- '15년 12월『제2차 농림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수립
  * 국내·외 다양한 농정 환경변화와 새로운 기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육성 전략 필요
- '16년 2월『2016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수립
- '18년 미래부 일몰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사업 재기획('16~'17)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	-	-	-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국외 환경변화

- 세계 비료시장은 3.4억 톤, 1,53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 '19년에는 약 4억 톤, 1,78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 성장 예상.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생물농약 시장은 26억 달러('13년)에서 35억 달러('19년)로 연평균 6.1% 성장 예상

○ 국내 환경변화

- 국내 농자재 시장 규모는 12~13조원('13년)으로 농업 총 생산액 42조원의 30%를 차지. 국내 약 600여개 농자재 업체의 영세성으로 향후 농자재 시장 정체 예상
- 국내 농약 산업은 원제와 중간 합성원료를 거의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형태로 수입 의존률이 87%. 2011~2013년 농약 평균 수입은 4.6억 달러로 농약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4억 달러 수준

(5)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연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45일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30.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	3,043	4,321	1,278	42.0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80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사무관(배태현, ☏ 044-201-246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R&D로 확보된 농식품 분야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영세 창업·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식품 분야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영세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기간	'18~'20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년도 4,321백만원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정부 농식품 R&D 우수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용화·산업화 지원을 위해 4,321백만원 반영

▪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농식품 R&D 우수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및 신규과제 1,640백만원 반영

- (종료) 6개×220백만×12/12=1,320백만원, (다/상) 2개×214백만×9/12=320백만원

▪ (벤처·창업바우처지원)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확산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600백만원 반영

- (종료) 10개×100백만×12/12=1,000백만원, (다/상) 14개×105백만×9/12=1,100백만원, (단/상) 5개×100백만×12/12=5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연구과제 평가관리비 81백만원 반영

- 기획평가관리비 : 4,240백만×2.5%=81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3,043백만원**	**4,321백만원**
▪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1,470백만원 (다/상)6개×220백만×9/12=990 (단/상)24개×20백만×12/12=480백만원	1,640백만원 (종료)6개×220백만×12/12=1,320 (다/상)2개×214백만×9/12=320
▪ 벤처·창업바우처지원	1,500백만원 (다/상)10개×100백만×9/12=708 (단/상)11개×72백만×12/12=792	2,600백만원 (종료)10개×100백만×12/12=1,000 (다/상)14개×105백만×9/12=1,100 (단/상)5개×100백만×12/12=500
▪ 기획평가관리비	73백만원 2,970백만×2.5%=73	81백만원 4,240백만×2.5%=81

□ 지원 필요성

○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화 단계에 근접한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제품화 등에 집중 투자 필요

- 신규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장기 지원하는 것 보다, 기 개발 우수기술의 선별 및 후속지원이 효율성이 높고 사업화 성공률 제고 가능

* 농식품 국유특허 기술이전 계약체결 456건(농림축산식품부, '14)

○ 사업화 병목현상(Death valley) 극복 애로사항을 지닌 旣개발 우수기술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경우 사업화 초기 단계부터의 장기적 지원보다 사업화 애로사항이 발생한 旣개발 우수기술 후속지원

* '농약 호스 유도장치' 기술을 개발하여 지재권 출원 지원으로, 이를 활용한 매출액 총 50,000(천원) 창출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R&D 제도는 초기 상태

- 최근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기업에 R&D 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바우처를 지급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급속히 확산 중

* 중소기업 R&D 바우처 확대 : '16년 3,775억원 → '17년 7,147억원

-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농식품 분야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R&D바우처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약 3배 가량 수요 발생

* 농생명 R&D 및 첨단생산 R&D의 ICT 융복합 기술분야 창업·벤처 기업 88개 지원 중 32개를 선정하여 R&D 바우처 지원(IPET, '17)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	**3,043**	**4,321**	**1,278**	**42.0**
▪ 국가연구개발성과 후속지원 (산출근거)	-	**1,470** (다/상)6개×220백만×9/12=990 (단/상)24개×20백만×12/12)=480백만원	**1,640** (종료)6개×220백만×12/12=1,320 (다/상)2개×214백만×9/12=320	170	11.6
▪ 벤처·창업바우처지원 (산출근거)	-	**1,500** (다/상)10개×100백만×9/12=708 (단/상)11개×72백만×12/12=792	**2,600** (종료)10개×100백만×12/12=1,000 (다/상)14개×105백만×9/12=1,100 (단/상)5개×100백만×12/12=500	1,100	73.3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	**73** 2,970백만×2.5%=73	**81** 4,240백만×2.5%=81	8	11.0
□ **비목**(합계)	**-**	**3,043**	**4,321**	**1,278**	**42.0**
○ 연구개발출연금(360-05)	-	3,043	4,321	1,278	42.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18년 미래부 일몰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재기획('18)
- '18년 정부 R&D 예산심의 대응을 통해 신규예산 30억원 확보('17.12.)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18.2.)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	-	-	-	-	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공공R&D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중이며, 'Lab-to-Market'활동을 추진하는 등 우수성과의 후속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강조

○ (중국) '국가급 기술이전 시범기구 건설활동'을 통해 '국가 기술이전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기술이전 모델을 확산

○ (일본)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新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술이전 가속화'를 위하여 '향후 5년간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후 신속한 생산현장 보급'을 중점 목표로 설정

○ (유럽) 창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화연구와 더불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데 집중

○ (핀란드) 기술혁신투자청(Tekes)을 통한 효과적인 R&D 지원 및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지원 및 지원 후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50%이상의 상업화 성공률을 달성.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창업기업에는 초기성장 지원 및 사업모델의 심화를 돕는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중소기업은 혁신 역량 증진 및 글로벌화 지원에 집중. R&D 지원 후 프로젝트 양도등의 방식을 통한 기술혁신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

(5) 사업추진절차

구분	추진절차	수행주체	제출 서류	
			주관기관 (기업)	참여기관 (비영리기관)
공고	사업 공고	소관부처	-	-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단독)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
선정	사전검토	전담기관	-	-
	주관기관(기업)평가 (순위 도출)	전담기관	발표평가 자료	-
	매칭데이 개최·매칭	전담기관	-	-
	참여기관(비영리기관) 평가 또는 검토	전담기관/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매칭형)**
	선정과제 확정	소관부처	-	-
	협약	전담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협약서 or 공동연구협약서**	사업비 청구서
수행	사업추진	주관기관/참여기관	-	-
	진도점검	전담기관	진도점검 보고서 (연구노트 포함)	사업비 청구서
	최종평가	전담기관	최종 보고서 (연구노트 포함)	현장평가서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보고서	-
성과 확산	성과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서	-

31. 농촌기반기술연구사업(재량, 계속, R&D)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기반기술연구	-	1,527	1,802	275	18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정책과장(김기훈), 사무관(강봉규, ☏ 044-201-152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자산을 안전하고 농촌답게 관리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호

- 농업·농촌의 재해 대응력 강화와 농촌 과소화 예방을 목적으로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안전기술,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농촌지역의 과소화 대응 기술개발 연구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안전기술,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기술개발 연구 지원
사업기간	'18~'24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18년까지 투자액 15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참여기관)기업 및 대학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안전기술** : 노후 농업용저수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저수지 제체 월류 및 내부침식 보호공법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전관련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지속추진에 따라 계속과제 지원

- 산출내역 : (계속과제) 2개 × 300백만원 × 100%× 12/12= 600백만원
  * '19년 계속과제의 지속수행을 위해 회계연도 일치 소요예산 반영 : '18년 대비 33.3%(150백만원) 증액

○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 국가 중요 농업기반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위주의 과학적인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지속추진에 따라 계속과제 지원

- 산출내역 : (계속과제) 1개 × 500백만원 × 100%× 12/12= 500백만원
  * '19년 계속과제의 지속수행을 위해 회계연도 일치 소요예산 반영 : '18년 대비 33.3%(125백만원) 증액

○ **농촌과소화 대응 정주여건개선 기술 :** 과소화 지역의 정주성과 기능성 개선을 통한 농촌의 활성화 위한 연구과제 지속추진에 따라 계속과제 지원

- 산출내역 : (계속과제) 3개 × 234백만원× 100%× 12/12= 702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촌기반기술연구	**1,527백만원**	**1,802백만원**
▪ 기후변화 농업재해대응	450 · 위성기반 농업가뭄 모니터링 모델 개발 과제 등 (2개×300백만원×9/12개월)	600 · 위성기반 농업가뭄 모니터링 모델 개발 과제 등 (2개×300백만원×12/12개월)
▪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375 · 농업생산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자율학습 물관리 기술개발 (1개×500백만원×9/12개월)	500 · 농업생산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자율학습 물관리 기술개발 (1개×500백만원×12/12개월)
▪ 농촌과소화대응 정주여건개선	702 ·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활용체계 개발 등 (3개×312백만원×9/12개월)	702 ·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활용체계 개발 등 (3개×234백만원×12/12개월)

□ 지원 필요성

○ **(국가 중요농업SOC 및 국민안전 확보)** 국내 농업용저수지의 82%는 5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으며 저수지의 붕괴는 월류(41%), 내부침식(42%)이 주된 원인으로, 저수지의 제체 월류 및 내부침식 보호공법 개발 필요

* 저수지 하류부에 주민 1천명 이상 밀집지역 저수지 341개소(주민 382만 명)
* '98년 이후 농업용 저수지 붕괴발생 104개소

(기대효과) 저수지 **하류부 국민 인명·재산 보호**, 경제적인 시설물 내진보강

지진으로 저수지 균열/침하 피해 | **저수지 하류부의 도시화로 피해위험 증가**

○ **(빈번하는 농업가뭄 문제의 선제적·과학적 해결위한 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부족, 지역적 불균형 등 농업가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과학적 농업재해 대응 기술 개발 연구 필요

* 최근 7년간(2012~2017년) 연속 농업가뭄 발생으로 사전대책비용 지속 발생

(기대효과)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농업가뭄 초기대응 가능으로 **구조적 가뭄대책 비용(2015년, 양수장·관정 설치 등 가뭄지원비 1,700억원) 절감**

○ **(사회적 자산의 효율적 관리 위한 연구 시급)**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급격한 유지관리비용(최근3년 8,855억원/년) 증가와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농업인프라 효율적 관리기술 적극개발 연구 필요

* 50년 이상된 노후 농업용 저수지·방조제가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적기에 유지보수 안될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의사결정은 점점 어려워짐

(기대효과) 수명연장을 통한 국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10% 절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	1,527	1,802	275	18.0
▪ 기후변화 농업재해대응 (산출근거)	-	450 (2개×300백만원×100%×9/12개월)	600 (2개×300백만원×100%×12/12개월)	150	33.3
▪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기술 관리 효율화 (산출근거)	-	375 (1개×500백만원×100%×9/12개월)	500 (1개×500백만원×100%×12/12개월)	125	33.3
▪ 농촌과소화대응 정주여건 개선 (산출근거)	-	702 (3개×312백만원×100%×9/12개월)	702 (3개×234백만원×100%×12/12개월)	-	-
□ 비목(합계)	-	1,527	1,802	275	18.0
○ 민간경상보조(320-01)	-	1,527	1,802	275	18.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효율화 방안에 따라 '94년부터 추진해오던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후속·연계할 수 있는 신규사업 재기획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촌기반기술연구	-	-	-	-	-	1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연구과제 선정과정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속의 관계자를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 확보('17년 예정처)

○ (지적사항)연구개발사업의 보조사업 방식 편성 부적절('18년 상임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구분	추진절차	내 용
1	과제발굴·기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연구원)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2	연구과제 선정	▪ 외부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2-1	과제선정 실무위원회	▪ 연구과제 1차 선정(전년 과제수의 2배수)
2-2	과제선정 위원회	▪ 연구과제 최종 선정
3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4	연구자 선정	▪ 서면평가/공개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5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6	연구 착수·중간검토 결과 보고회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서면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실시
7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배포 및 연구개발보고서 발간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8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	▪ (연구완료 시) 최종경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수립 ▪ 연구완료 후 5년간 활용보고서 누적 관리
9	추적평가	▪ 평가단 구성, 연구완료 3년 후 추적평가 실시

참고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업·농촌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농촌답게 관리 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호

❑ 사업 기간 / 사업비 : 2018~2024(7개년) / 246억원

❑ 사업 주요내용

○ 3개 내역사업 및 6개 대과제

- (내역사업1) 기후변화(가뭄·홍수) 및 농업재해대응 안전 기술 개발사업
  - * 대과제1 위성·드론 기반의 농업재해 탐지·평가·대응 기술 개발
  - * 대과제2 4차산업 기술기반 농업기반시설 재해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
- (내역사업2)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개발사업
  - * 대과제3 ICT/IoT 기반 자율학습 물관리 기술 개발
  - * 대과제4 노후 농업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기술 개발
- (내역사업3)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기술 개발사업
  - * 대과제5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 개발
  - * 대과제6 과소화대응 농촌생활서비스 스마트화 기술 개발

❑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백만 원)

내 역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계	1,527	3,804	3,626	3,775	4,369	3,783	3,766	**24,650**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대응 안전 기술 개발사업	450	1,502	1,496	1,782	1,921	1,864	2,075	**11,090**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효율화 기술 개발사업	375	1,154	1,028	1,167	1,292	1,154	1,043	**7,213**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기술 개발사업	702	1,148	1,102	826	1,156	765	648	**6,347**

❑ 지원 필요성

○ '농촌'에 대한 유일한 R&D사업으로서, 농촌 재해방지 및 농촌 거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

- **(농촌재해 최소화)** 가뭄·홍수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및 농작물 침수피해와 농업용저수지 붕괴 및 하류부 인명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 '13년 가뭄 제주지역 농작물 소득 감소액 1,700억원 추산, 최근 저수지 붕괴 104개소
- **(효율적 사회자산 관리)** ICT/IoT 융합한 '인공지능 물관리' 기술 및 노후수리시설물의 수명연장 위한 관리기술 개발
  * '17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3,662억원 (2002년 이후 15년간 65% 증가)
- **(농촌 과소화 대응)** 농촌다움을 강조한 농촌마을개발과 스마트기술 활용 농촌 생활서비스 고도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근본이 되는 활력 있는 농촌공간 유지 * 농촌인구 : '07년 3,274천명→'15년 2,569천명 (21.5% 감소)

❑ 사업 추진전략

사업 목표

스마트한 농업·농촌 인프라 운영관리 기술개발로
재해 대응력 강화 및 농촌 과소화 예방

전 략 체 계

	(내역사업1)	(내역사업2)	(내역사업3)
내역사업 및 성과목표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안전기술**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기술 개발 10건 이상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저비용·고효율 농업용수 및 기반시설 관리 기술 개발 7건 이상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기술** 농촌 인프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생활서비스 개선 기법 개발 7건 이상
지원분야	위성/드론기반의 농업재해 탐지 평가 대응 기술개발	ICT/IoT기반 자율학습 물관리 기술개발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개발
	농업기반시설 재해 예측 저감 기술개발	노후 농업기반시설 장수명화 기술개발	농촌 생활서비스 스마트화 기술개발

❑ 성과목표

대과제명	정성적 성과	정량적 성과
위성·드론 기반의 농업재해 탐지·평가·대응 기술 개발	❍ 농업재해대응 시스템 개발 ❍ 농업재해 통합모니터링 및 지능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 농업재해수요자맞춤형 정보시스템 개발	❍ (사업화) 가뭄·홍수 위험지역 위성/드론 영상 DB 구축 외 2건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등록 2건('24) ❍ (논문) SCI 2건, 비SCI 게재 5건 ❍ (기타) 신기술 인증 2건('24)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 기술 개발	❍ 재해예측 및 예방 기술 개발 3건, ❍ 재해 대응 및 적응기술 개발 3건, ❍ 재해관리 및 기능 회복기술 개발 3건	❍ (사업화) 월류 저수지 제체 보수 및 보강 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외 2건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등록 8건('19~'24) ❍ (논문) SCI 4건, 비SCI 17건 ❍ (기타) 신기술 인증 1건('24)
ICT/IoT 기반 인공지능 물 관리 기술 개발	❍ ICT/IoT 기반 농업용수 인공지능 물관리 시스템개발 및 인공지능 물관리 네트워크 기술, 재해대응 물 확보 기술	❍ (사업화) 물관리 자동화 사업연계 인공지능 물관리 사업화 1건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등록 2건('20,'21) ❍ (논문) SCI 4건, 비SCI 7건
노후 농업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기술 개발	❍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성능저하 지도 구축 1건 ❍ 확률론기반 성능저하 예측모델 및 성능개선효과 검증모델 각 1건	❍ (사업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성능저하 지도 시범구축 ❍ (지식재산권) S/W 특허등록 1건 ❍ (논문) SCI 2건, 비SCI 14건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 개발	❍ 과소화 마을 진행상태 진단 및 관리기술 개발 2건 ❍ 실증모델 1건, 가이드라인 개발 2건 ❍ 설계 및 시공 기술개발 2건	❍ (논문) 비SCI급 게재 5건 발표 3건 ❍ (기타) 농촌과소화마을 관리지원을 위한 실증모델(Test-Bed) 구축
농촌생활서비스(교육,문화,의료,복지) 스마트화 기술 개발	❍ 공간 및 각종 데이터를 구조화한 DB 구축 ❍ 법 및 제도 개선, 기술 매뉴얼 1건, ❍ 과소화지역 생활서비스 효용성진단, 예측가능 확장형 오픈플랫폼 구축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등록 각4건 ('19,'21,'24) ❍ (논문) SCI 3건, 비SCI 6건 ❍ (기타) 신기술 인증 2건('24)

❑ 기대성과

내역 사업	기대 성과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안전기술	◦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가뭄·침수피해 사전 예방 ◦ 저수지 붕괴방지로 하류부 인명(382만명)보호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 10% 물 절약(15억톤, 3,000억원)확보 기술개발 ◦ 예방적 유지관리/ 성능개선/ 장수명화 기술개발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기술	◦ 도시와 차별화된 품격 있는 농촌 실증모델 제시 ◦ 농촌 생활 서비스 스마트화로 공공투자 효율화

32.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재량, 계속,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 기술개발(R&D)	-	3,417	5,558	2,141	62.7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성분을 사전에 탐지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축산물의 생산 및 관리·유통·소비 단계에 걸쳐 전 주기적 안전관리체계 개발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위·변조 기술개발 지원,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및 지원방안 다변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시범사업
사업기간	'18~'20
총사업비	해당없음('18년까지 투자액 34.2억원)
사업규모	'19년 5,558백만원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대학, 농산업체, 출연연, 기업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축산물 위해성분 제어기술) 생산 및 관리·유통·소비단계에 걸쳐 전 주기적 '농축산물 종합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667백만원

▪ (계속)2개×334백만×12/12=667백만원

○ (농축산물 신뢰성 강화 기술) 생산 단계 이후의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위·변조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667백만원

▪ (계속)2개×334백만×12/12=667백만원

○ (역매칭시범사업) 민간R&D 투자 활성화 및 지원방안 다변화를 위해 시도하는 농식품 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152백만원

▪ (계속)8개×394백만×12/12개월=3,152

▪ (신규)4개×333백만×9/12개월=1,000

○ (기획평가관리비)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비 72백만원

▪ 사업비(5,484백만)×1.3%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축산물안전 유통소비기술개발	**3,417백만원**	**5,558백만원**
▪ 농축산물위해 성분제어기술개발	500백만원 (신규)2개×250백만=500백만원	667백만원 (계속)2개×333백만×12/12개월=667
▪ 농축산물 신뢰성 강화기술개발	500백만원 (신규)2개×250백만=500백만원	667백만원 (계속)2개×333백만×12/12개월=667
▪ 역매칭시범사업	2,364백만원 (신규)8개×296백만=2,364백만원	4,152백만원 (계속)8개×394백만×12/12개월=3,152 (신규)4개×333백만×9/12개월=1,000
▪ 기획평가관리비	53백만원 3,364백만×1.6%	72백만원 5,486백만×1.3%

□ 지원 필요성

○ (정책적 측면) 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 및 원산지 위조 등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농축산물 안전정책을 뒷받침하는 R&D 및 산업기반 확충 시급

* 관련법:「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법」등

▪ 구제역·AI 확산, 농산물 안전성 논란,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안감 증폭 등 다양한 요소로 농축산물 안전의 불확실성 증가

- 안심농축산물 제공을 위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정책 마련 필요

▪ 현행 정책기준은 생산행위가 진행되는 과정 중 농약, 항생제, 비료 사용에 따른 유해성분 탐지·검측에 집중

▪ 농축산물의 생산·공급 중심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정책으로의 개선 필요

○ (기술적 측면) 농축산물 안전은 규제위주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안전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 필요

- 관련 기술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전체 예산의 9.6% 수준으로 투자가 미흡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중점추진분야별 비중]

구분	소재/자원	미생물	동식물질병	안전관리	합계
예산	45,119	31,162	19,942	10,224	106,447
비중	42.4%	29.3%	18.7%	9.6%	100%

자료: 18개 중점추진분야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분석 자료 재구성(NTIS, '10~'14)

○ (산업/시장측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도 하락, 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농축산물 안전 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이 필요

-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농약·항생제 사용, 오염물질 잔류, 불량농축산물 유통이 소비자 불신 초래

▪ '국내 농가 사육·출하 가축 잔류물질 검사('16.3월)' 결과,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3년간 잔류위반율: ('14) 0.21% → ('15) 0.23% → ('16) 0.25%

** 항목별 잔류물질건수('16): 항생물질(7,255건), 합성항균제(12,723건), 농약(1,210건)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국내 농산물 안전성조사('16.12.) 결과, 전체 부적합 비율은 15%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3년간 부적합 비율: ('14) 1.3% → ('15) 1.4% → ('16) 1.5%

- 각 국가들 사이에서 농축산물의 판매에 의한 가격 차이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산지를 위조하여 시장질서 교란
- 실제,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농수축산물이 201건으로 발생

○ (정부차원 지원 필요) 농축산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주도로 생산-유통-소비 전주기의 '농축산물 종합 안전 체계' 구축이 필요

- 기술 간 유기적 연계 및 시중 유통 과정까지의 '농축산물 종합 안전 체계' 구축이 요구
- 연쇄적 유통과정이 이루어지는 농축산분야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농식품부 주관의 사업 기획・운영・관리가 필요

○ (일몰 검토의견 반영) 연구대상이 광범위한 '농생명산업기술개발'을 개편하여,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세부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기획

- 전신사업인 '농생명산업기술개발'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연구개발 역량 결집이 어렵고, 연구의 명확성 및 구체성이 부족함과 동시에 세부사업 및 성과 간 연계가 어려운 한계
- 본 사업 연구범위는 농식품부의 농산물 안전관리 범위 내에서, '농축산물 안전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안전성 향상 기술 및 제품 개발'이란 구체적 방향을 설정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 기술개발	-	3,417	5,558	2,141	62.7
▪ 농축산물 위해성분 제어 기술개발 (산출근거)	-	500 (다/상)2개 ×333백만 x9/12=500	667 (기일치) 2개×333백만×12/12=667	167	33.7
▪ 농축산물 신뢰성 강화 기술개발 (산출근거)	-	500 (다/상)2개 ×333백만 x9/12=500	667 (기일치) 2개×333백만×12/12=667	167	33.7
▪ 역매칭시범사업 (산출근거)	-	2,364 (다/상)8개 ×394백만 x9/12=2,364	2,364 (기일치)8개 ×394백만x12/12=3,152 (다/상)4개 ×333백만x9/12=1,000	1,788	75.6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	53 3,364백만×1.6%	72 5,486백만×1.3%	19	35.8
□ 비목(합계)	-	3,417	5,558	2,141	62.7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3,417	5,558	2,141	62.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16년 2월『2016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수립
- '18년 미래부 일몰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재기획('16~'17)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 기술개발	-	-	-	-	-	3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기획비용, 전문가 수당, 과제평가비 절감으로 기획평가관리비 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신문 공고 및 홍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년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시점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배포 및 연구개발보고서 발간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33.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재량, 신규,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 모델구축(R&D)	-	-	3,159	3,159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으로 수출 시장·기술 선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수출 시장·기술 선점을 위한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사업기간	'19~'23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년 3,159백만원
지원조건	출연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농산업체, 영농조합법인, 대학, 연구소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전략품목 육성 모델 : 주요 수출 수요분석을 통한 수출대상 국가별 유망 농식품 제품 후보군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과제 신규 반영 2,063백만원

○ 신시장 개척지원 모델 : 품목별 양허관세 적용 도래에 따라 수출국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한 해당품목의 선제적 경쟁력 확보 지원 2과제 신규 반영 1,007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식품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구축	-	**3,159백만원**
▪ 전략품목 육성 모델	-	**2,063백만원** (다/상)4개×688백만×9/12=2,063
▪ 신시장 개척지원 모델	-	**1,007백만원** (다/상)2개×671백만×9/12=1,007
▪ 기획평가관리비	-	**89백만원** 3,070백만×2.9%

□ 지원 필요성

○ FTA에 따른 농식품 시장개방 및 환경 변화를 기획요인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지니즈 전략 모델 구축 필요

-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 모델구축**	**-**	**-**	**3,159**		
▪ 전략품목 육성 모델	-	-	2,063 (다/상)4개×688백만×9/12=2,063	**2,063**	**(순증)**
▪ 신시장 개척지원 모델	-	-	1,007 (다/상)2개×671백만×9/12=1,007	**1,007**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	-	89 3,070백만×2.9%	**89**	**(순증)**
□ **비목**(합계)	**-**	**-**	**3,159**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	-	3,159	3,159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16년 2월『2016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수립
- '17년 추진한 '19년 일몰예정사업 대상 미래부 일몰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재기획('17~'18)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식품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구축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국내 농식품 수출)** '17년 국내산 농식품 수출규모는 67억 7,686만달러 수준

-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순
- 상위 3개국은 전체 수출액의 48.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함
- 상위 10개국 준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 권역으로 이는 농식품 수출에 식문화 및 지리적 요인이 적용한 것으로 분석
- 아시아, 중동 등 수출확대 유망 국가에 대한 수출기술 개발 필요

< 한국 농식품 상위 수출국 >

구분	국가	수출량(톤)	수출액(천달러)	비중
	전체	3,370,505	6,776,863	100
1	일본	756,122	1,568,067	23.1
2	중국	681,856	991,400	14.6
3	미국	227,466	745,077	11.0
4	베트남	209,153	356,823	5.3
5	아랍에미리트	39,780	344,341	5.1
6	태국	124,565	320,835	4.7
7	홍콩	160,499	283,920	4.2
8	대만	191,405	278,478	4.1
9	인도네시아	159,764	150,930	2.2
10	호주	97,761	139,979	2.1

○ (미국) 자국 농축산물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체계 마련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제품 수출장려프로그램(DEIP)	2	-	-	-	-
시장 접근 프로그램(MAP)	200	200	200	200	200
외국시장 개발 프로그램(FMDP)	34	34	34	34	24.6
신흥국 시장 프로그램(EMP)	9	10	10	10	10
특수 작물 기술지원(TASC)	8	9	9	9	9
양질샘플프로그램(QSP)	2	2	3	3	3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GSM)	3,090	4,123	5,400	5,400	5,500
전체	3,345	4,378	5,656	5,656	5,703

출처: Annual Budget Summaries, USDA(2014)

○ (일본)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액 1조엔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10.3)에서는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액을 1조엔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목표 수립

구분	내용
수출전략실행사업	▪ (예산) 1억 5,200만 엔
수출배증프로젝트	▪ (예산) 17억 9,900만 엔 ▪ 사업자 발굴에서 상담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확대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
식품산업 글로벌 전개 기반시설 정비사업	▪ (예산) 1억 9,800만 엔 ▪ 식품산업이 글로벌화 전개 시, 장벽이 되는 식품의 규격기준 등에 대한 대응이나 인재확보를 수행
수출 대응형 시설 정비	▪ (예산) 133억 9,000만 엔 ▪ 이슬람권의 할랄 대응형 육류처리시설이나 청과물 장기보존 가능하게 하는 저온저장 설비 등, HACCP기준을 만족시키는 화물 처리장 등을 구비한 고도위생관리형 어항의 정비 등을 추진
일본음식.식문화 보급 추진 종합대책	▪ (예산) 11억 4,000만 엔 ▪ 2014년 신규사업으로 요리학교나 해외급식 사업자 등과 제휴하여 메뉴 개발에 의한 일본산 식재 활용 촉진

출처: 세계농업 2015. Vol.1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5)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연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45일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참고 |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축 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필요성)** FTA에 따른 농식품 시장개방 및 환경 변화를 기획요인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지니즈 전략 모델 구축 필요

○ **(추진 경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몰제 시행에 따라 旣추진한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일몰('19년)예정에 따른 신규기획 추진('18.4)

□ 사업 개요

○ **(목적)**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으로 수출 시장·기술 선점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

○ **(사업비전)**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으로 수출 시장·기술 선점

○ **(전략목표)** '23년까지 7개 품목을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액 500억원 달성

○ **(주요내용)** 국가별 현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전략 모델 연구 개발

☞ **(전략 품목 육성 모델)** 주요 수출 실적분석을 통한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유망 농식품 제품 후보군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신시장 개척 지원 모델)** 품목별 양허관세 적용 도래에 따라 수출국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한 해당품목의 선제적 경쟁력 확보 지원

※ 내역사업별 주요 품목 과제 도출 프로세스에 따라 국가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전략 품목을 발굴

□ 기대효과

○ 신제품개발을 통해 농식품 수출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 맞춤형 개발을 통해 사업모델 다각화 추진

- 수출대상국의 現수요 및 예측된 미래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개발을 통해 농식품 수출가능성 극대화
- 기존 보유한 가공기술을 통해 현지 시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 가능

○ 시장 개방 및 트렌드 변화에 맞춘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수익창출 프로세스 수립

- 기존 관세, 현지 인허가 등의 사유로 애로사항을 겪었던 농식품 분야에 수익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제공 가능

34.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재량, 신규,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 기술개발(R&D)	-	-	5,750	5,750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청 R&D 역량을 결집하여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 및 주요 품목별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한국형 스마트팜 산업화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시설원예 분야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단기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팜 모델 확산
사업기간	'19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년 5,750백만원
지원조건	출연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농산업체, 영농조합법인, 대학, 연구소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플랜트팜 산업화 기술 : 1세대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및 편의성 향상 기반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 11개 과제 신규반영 5,583백만원

▪ (단/상)11개×508백만×12/12=5,583

○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 평가 관리를 위한 167백만원 신규 반영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1세대스마트 플랜트팜 산업화 기술개발	-	**5,750백만원**
▪ 플랜트팜 산업화기술	-	**5,583백만원** (단/상)11개×508백만×12/12=5,583
▪ 기획평가관리비	-	**167백만원** 5,583백만×3.0%

□ 지원 필요성

○ 농업 고령화 및 농업 인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농업에 4차산업 관련 기술의 융합 필요

○ 국정과제 : 83번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기반조성(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 스마트팜 확산 방안('18.4.16. 경제관계장관회의) : '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 확대, 스마트팜 혁신벨리 4개소 구축 목표

○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정부 R&D투자 혁신방안(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 2세대 스마트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산업적 기반 조성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선정('17), 다부처특위 및 미래성장동력특위 안건 심의('18.5)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1세대스마트플랜트팜 산업화기술개발	**-**	**-**	**5,750**	**5,750**	**(순증)**
▪ 플랜트팜 산업화기술	-	-	5,583 (단/상)11개×508백만×12/12=5,583	5,583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	-	167 5,583백만×3.0%	167	(순증)
□ 비목(합계)	**-**	**-**	**5,750**	**5,750**	**(순증)**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	-	5,750	5,75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 수립('13.8, 농식품부)
- 스마트팜 R&D 추진 계획 수립('15.12, 농식품부·농진청)
- 농식품부-농진청 공동 4차산업 혁명 대응 농식품 R&D 중장기 대책 마련('17.5)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로 스마트팜 선정('17.11)
- 혁신성장동력 스마트팜 다부처기획 추진('18.1~'18.3)
  * 참여부처 : 농식품부(주관), 해수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진청
- 스마트팜 R&D 투자패키지 모델(PIE모델) 작성('18.1, 과기정통부)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다부처 공동기획('18.2~'18.4)
  * 참여부처 : 농식품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진청
- '19년 중기재정 'Fast Track 다부처협력사업'으로 기획 추진('18.3)
  * 참여부처 : 농식품부(주관), 농진청
- '19년 다부처협력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 확정('18.4, 기재부·과기부)
  * 참여부처 : 농식품부(주관), 농진청
- 부처간 협력 추진체계 :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 활용 및 연계, 제도개선 사항 등의 도출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 운영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스마트팜" 기획 보고('18.4.30)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1세대스마트플랜트팜 산업화기술개발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시장규모 >

○ (외국)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2012년 1,198억 달러에서 2016년 1,974억 달러로 연평균 13.3%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본격 경쟁체계에 돌입

- 미국은 ICT 외에도 나노,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복합 접목하는 단계에 이미 돌입
- 네덜란드는 전체 온실의 99%가 유리온실이며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
- 일본은 2009년 농지법이 개정 이후 다른 업종의 농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후지쯔, NEC, NTT 등 일반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

* 농업에 진출한 일반 법인 수는 2010년 6월 기준 175개사에서 2014년 12월 1,712개

○ (국내) 국내 스마트농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2조 4,295억원에서 연평균 14.5%씩 성장하여 2016년에는 4조 1,699억 원, 2020년에는 약 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세계 스마트팜 관련 시장 규모

국내 스마트팜 관련 시장 규모

< 관련 정책 동향 >

○ **(유럽)** 유럽연합집행기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EU 차원의 농업분야 ICT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총 980만 유로, 약 131억원 투자)

▪ 정밀축산업, 실내기후·품질통제·농장관리 자동화, 농업 로봇 개발 등 수행

* 네덜란드 : '10년부터 4년에 걸쳐 민관 공동 출자에 기반해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프로젝트 추진

** 주요기술 : 채광량, 온도, 이산화탄소 등을 컴퓨터를 통해 관리하는 첨단 하우스 설비인 하이테크 하우스 기술 보유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중심으로 ICT 융합 기반 원천기술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2014년 부터는 오픈데이터 정책을 기반으로 에는 국립기상서비스와 농무부를 중심으로 농업·ICT 융합 R&D 정책을 추진하여 각종 농업 서비스 개발 진행 중

○ **(일본)** 2011년 i-JAPAN 전략 6대 중점분야에 농업의 ICT 융합을 포함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

* 지능형 농작물생산, ICT 활용 농업 생산지도시스템, 청과물 유통정보 플랫폼 개발

** 밭작물 등의 기계화를 위해 농업기계 등 긴급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14년 5억엔 투자)

○ **(중국)** 2015년 중국제조 2020에 ICT 기반 농업장비 제조업 육성 계획 발표

* 대형 트랙터와 멀티 공작기계, 고효율 콤바인 등 첨단 농업장비와 핵심부품을 중점 육성

○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적 성장토대 마련을 위해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 집약적인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정책 추진 및 로드맵(농식품부)>

(5)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부·청 공동 기술개발 수요 조사 및 과제 기획(부·청 협의체)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연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45일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참고 1 | 1세대 스마트플랜트팜 산업화 기술개발 설명자료

□ 추진 목적

○ 부·청 R&D 역량을 결집하여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 및 한국형 스마트팜 조기 산업화 촉진

*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단일사업단'을 구성·운영

기존사업		'19년 신규사업		'20년 이후 예타사업
(농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진청) 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 스마트팜기술개발	기반기술 공급	• 1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기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 애로사항 해소(부·청) • '생산' 기술 중심	확산기반 조성	• 2~3세대 핵심기술 확보 및 고도화를 통해 산업 적용(다부처 공동) • '생산→소비·유통'까지 패키지형 솔루션 모델

□ 주요 내용

○ **(플랜트팜)** 온실을 중심으로 기 개발된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기술 개발 추진

- 1세대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및 편의성 향상 기반 산업화 기술개발

  * 스마트 온실 ICT기기 사용 편의성 향상 기술, 스마트 온실 초기 도입비용 경감 및 ICT 기기 품질 향상 기술 등

- 개방형 온실 통합제어시스템의 품목별 테스트베드 구축

  * (품목) 토양재배 채소·화훼 15품목, 시설과수 5품목, 수경재배 작물 10품목, 인삼·약용작물 5품목, 버섯 5품목

- 다품종 적용 온실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 **(인력 제도 등 유관사업 연계)** 사업('19년 단기 산업화)과 '스마트팜 다부처 기술개발('20년 예정)'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이행

* 각 핵심과제별 부·청 담당관을 지정하여, 규제개선·정책연계·유관 사업 매칭 등 지원

□ 기대효과

○ 동 사업은 스마트팜 현장 적용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단기 사업으로 스마트팜 확산 사업 등 관련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 가능

○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 및 편의성 향상을 통해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생산비 절감, 소득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 기대

* 스마트 온실 도입 농가 경영성과 분석(서울대, '15년) 결과, 딸기 소득 21.5% 증가, 참외는 수량 9.6% 증가 등 경제적 효과 또한 입증

35.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재량, 신규, R&D)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 기술개발(R&D)	-	-	4,250	4,250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과학기술정책과장(지성훈), 연구관(안형근, ☏ 044-201-24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청 R&D 역량을 결집하여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 및 주요 품목별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한국형 스마트팜 산업화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1세대 스마트 축산 기술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축산물의 안정생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저렴하고 효율적인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팜 모델 확산
사업기간	'19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년 4,250백만원
지원조건	출연100%(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농산업체, 영농조합법인, 대학, 연구소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애니멀팜 산업화 기술 : 1세대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및 편의성 향상 기반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 10과제 신규 반영 4,125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 평가 관리를 위한 125백만원 신규 반영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1세대스마트 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	-	4,250백만원
▪ 애니멀팜 산업화 기술	-	4,125백만원 (단/상)10개×413백만×12/12=4,125
▪ 기획평가관리비	-	125백만원 4,125백만×3.0%

□ 지원 필요성

○ 농업 고령화 및 농업 인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농업에 4차산업 관련 기술의 융합 필요

○ 국정과제 : 83번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기반조성(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 스마트팜 확산 방안('18.4.16. 경제관계장관회의) : 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 확대, 스마트팜 혁신벨리 4개소 구축 목표

○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정부 R&D투자 혁신방안(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 2세대 스마트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산업적 기반 조성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선정('17), 다부처특위 및 미래성장동력특위 안건 심의('18.5)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1세대스마트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	**-**	**-**	**4,250**	**4,250**	**(순증)**
▪ 애니멀팜 산업화기술			4,125 (단/상)10개×413백만×12/12=4,125	4,125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125 4,125백만×3.0%	125	(순증)
□ 비목(합계)			**4,25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4,250	4,25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추진경위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 수립('13.8, 농식품부)
- 스마트팜 R&D 추진 계획 수립('15.12, 농식품부·농진청)
- 농식품부-농진청 공동 4차산업 혁명 대응 농식품 R&D 중장기 대책 마련('17.5)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로 스마트팜 선정('17.11)
- 혁신성장동력 스마트팜 다부처기획 추진('18.1~'18.3)
  * 참여부처 : 농식품부(주관), 해수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진청
- 스마트팜 R&D 투자패키지 모델(PIE모델) 작성('18.1, 과기정통부)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다부처 공동기획('18.2~'18.4)
  * 참여부처 : 농식품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진청
- '19년 중기재정 'Fast Track 다부처협력사업'으로 기획 추진('18.3)
  * 참여부처 : 농식품부(주관), 농진청
- '19년 다부처협력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 확정('18.4, 기재부·과기부)
  * 참여부처 : 농식품부(주관), 농진청
- 부처간 협력 추진체계 :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 활용 및 연계, 제도개선 사항 등의 도출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 운영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스마트팜" 기획 보고('18.4.30)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1세대스마트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시장규모 >

○ (외국)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2012년 1,198억 달러에서 2016년 1,974억 달러로 연평균 13.3%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본격 경쟁체계에 돌입

- 미국은 ICT 외에도 나노,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복합 접목하는 단계에 이미 돌입
- 네덜란드는 전체 온실의 99%가 유리온실이며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
- 일본은 2009년 농지법이 개정 이후 다른 업종의 농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후지쯔, NEC, NTT 등 일반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

* 농업에 진출한 일반 법인 수는 2010년 6월 기준 175개사에서 2014년 12월 1,712개

○ (국내) 국내 스마트농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2조 4,295억원에서 연평균 14.5%씩 성장하여 2016년에는 4조 1,699억 원, 2020년에는 약 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세계 스마트팜 관련 시장 규모

국내 스마트팜 관련 시장 규모

< 관련 정책 동향 >

○ **(유럽)** 유럽연합집행기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EU 차원의 농업분야 ICT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총 980만 유로, 약 131억원 투자)

▪ 정밀축산업, 실내기후·품질통제·농장관리 자동화, 농업 로봇 개발 등 수행

* 네덜란드 : '10년부터 4년에 걸쳐 민관 공동 출자에 기반해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프로젝트 추진

** 주요기술 : 채광량, 온도, 이산화탄소 등을 컴퓨터를 통해 관리하는 첨단 하우스 설비인 하이테크 하우스 기술 보유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중심으로 ICT 융합 기반 원천기술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2014년 부터는 오픈데이터 정책을 기반으로 에는 국립기상서비스와 농무부를 중심으로 농업·ICT 융합 R&D 정책을 추진하여 각종 농업 서비스 개발 진행 중

○ **(일본)** 2011년 i-JAPAN 전략 6대 중점분야에 농업의 ICT 융합을 포함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

* 지능형 농작물생산, ICT 활용 농업 생산지도시스템, 청과물 유통정보 플랫폼 개발

** 밭작물 등의 기계화를 위해 농업기계 등 긴급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14년 5억엔 투자)

○ **(중국)** 2015년 중국제조 2020에 ICT 기반 농업장비 제조업 육성 계획 발표

* 대형 트랙터와 멀티 공작기계, 고효율 콤바인 등 첨단 농업장비와 핵심부품을 중점 육성

○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적 성장토대 마련을 위해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 집약적인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정책 추진 및 로드맵(농식품부)>

(5)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기획	○ 부·청 공동 기술개발 수요 조사 및 과제 기획(부·청 협의체)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연구개발 수행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연차 종료 2개월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45일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연구결과의 활용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참고 |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 설명자료**

□ 추진 목적

○ 부·청 R&D 역량을 결집하여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 및 한국형 스마트팜 조기 산업화 촉진

*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단일사업단'을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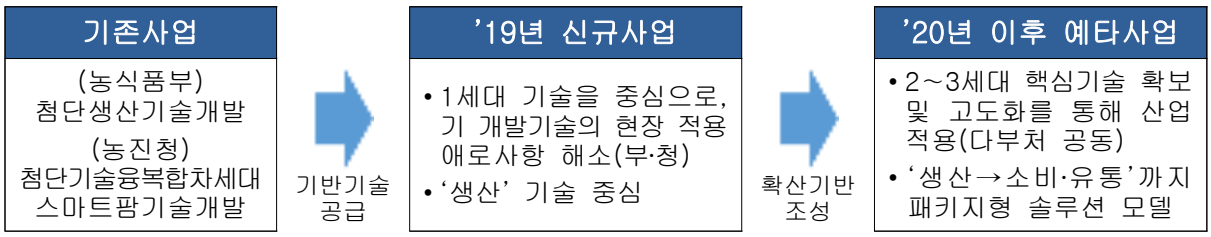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애니멀팜)** 기존 기술 고도화와 함께 자돈 중심의 축산 스마트팜을 젖소, 육계 등 다 축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추진

- 1세대 스마트 축산 기술 고도화 및 편의성 향상 기반 산업화 기술개발

* 스마트 축사 ICT기기 사용 편의성 향상 기술, 스마트 축사 기기의 호환성 향상을 위한 개방형 제어기기 개발 등

- 1세대 스마트 축산 모델의 축종별 현장 실증 및 제품 고도화

* (대상모델) 비육돈사, 번식돈사, 한우사, 육우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 다축종 적용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 **(인력 제도 등 유관사업 연계)** 사업('19년 단기 산업화)과 '스마트팜 다부처 기술개발('20년 예정)'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이행

* 각 핵심과제별 부·청 담당관을 지정하여, 규제개선·정책연계·유관 사업 매칭 등 지원

□ 기대효과

○ 동 사업은 스마트팜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관련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

○ 현장에 본격 보급될 경우 농가 생산성과 경영비 절감 등 농산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 기대

* 축산 분야에 가장 많이 보급된 스마트 양돈관리 시스템의 경우, 양돈 출하두수 15%향상, 사료비 10%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 발생

36.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R&D)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R&D)	400	1,800	1,811	11	0.6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2200 - 2280
* 담당자 : 식물검역부장(노수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이경일), 연구관(현익화, ☏ 054-912-067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물안전 및 생태계 가치 제고를 위한 미유입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는 기술 개발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생물다양성 미유입 외래생물의 형태학적·분자생물학적 판별기술 개발 확대
사업기간	· '17～'20(일몰)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1개 과제 총1,811백만원 · 기평비 : -백만원 · 최근 5년간('15~'19) 누적예산/평균예산 : 40.11억원/13.37억원
지원조건	·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생물다양성 미유입 외래생물의 형태학적·분자생물학적 판별기술 개발 확대

- 미유입 환경위해종 41종에 대한 형태학적 판별기술 개발('18년 120백만원→'19년 120)
- 화본과 등 중요 7개과 잡초종자의 분류동정법 개발 및 도감제작('18년 80백만원→'19년 80)
- 검역잡초 20종 분자생물학적 판별기술 및 진단 시스템 구축('18년 100백만원→'19년 100)
- 검역해충 종진단을 위한 웹기반 분석 기술 개발('18년 50백만원→'19년 50)
- 딱정벌레목, 선충 동정집 업데이트 및 DB 구축('18년 150백만원→'19년 161)
- 미유입 농업·환경위해 식물 5개속 분자생물학적 판별기술 개발('18년 500백만원→'19년 500)
- 미유입 외래 해충의 분자생물학적 진단기술 개발('18년 800백만원→'19년 8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	1,800백만원	1,811백만원
▪ 생물다양성 위협 미유입 외래생물 판별기술 개발	1개×1,800백만×12/12개월	1개×1,811백만×12/12개월

□ 지원 필요성

○ 검역본부에서 지정·운영중인 검역잡초(식물)에 대한 형태학적·분자생물학적 진단법 개발을 통해 주요 유입경로인 국경에서 국내유입 사전차단

○ 환경부 지정 미유입 유해 식물류에 대한 진단법 개발 적용하여 악성 외래식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 외래생물 관리 관련 부처별 관리체계, 역할 및 담당업무를 기반으로 부처별 관련 정책, 기 추진 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부처별 역할 필요

< 부처별 역할 >

구분		사유 및 근거	역할	대상생물
환경부		생물다양성법 주관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정책 총괄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자연생태계 확산 및 영향 예측, 위해성 평가, 제거** 등 외래생물 관리 전반 기술 개발	식물.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농식품부	검역본부	외래생물 검역 총괄	**미유입 위해우려 외래생물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판별기술 개발	식물, 무척추동물류
	농진청	농경지 등 농지생태계 외래생물(병해충) 관리	**농지생태계 대상** 외래생물 **모니터링, 확산 및 영향 예측, 경제적 피해평가, 제거 기술** 개발	식물(잡초). 무척추동물 (곤충)
	산림청	산림 등 산림생태계 외래생물(병해충) 관리	**산림생태계 대상 외래생물 확산 및 영향 예측** 기술 개발	무척추동물 (곤충)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생물다양성위협 미유입 외래생물 판별기술 개발**	**400**	**1,800**	**1,811**	**11**	**0.6**
▪ 생물다양성 위협 미유입 외래생물 판별기술 개발	1개×400백만×12/12개월	1개×1,800백만×12/12개월	1개×1,811백만×12/12개월	11	0.6
□ **비목**(합계)	**400**	**1,800**	**1,811**	**11**	**0.6**
○ 비목(비목번호)					
○ 시험연구비(201-13)	**400**	**940**	**536**	**△404**	△42.9
○ 일반연구비(260-01)	**-**	**860**	**860**	**0**	0
○ 상용임금 (110-03)	**-**	**-**	**346**	**346**	346
○ 고용부담금(320-09)	**-**	**-**	**65**	**65**	65
○ 복리후생비(210-12)	**-**	**-**	**4**	**4**	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기술개발)

* 국가와 지자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 식물방역법 제7조의 4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법률 제13383호, 2015)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2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등 (제26754호)
-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7
- 제2차 식물검역기술개발 종합계획(2016~2020)
-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90.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 기후-생태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및 생물자원조사 발굴, 위해외래생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014. 7
-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평가 적합 통보(미래부) : 2014. 9
-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통보 : 2014. 11
-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재부) : 2014. 11 ~ 2016. 4
-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통보(기재부) : 2016. 4. 20

구 분	총 사업비		B/C	AHP
	부처요구	예타결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 사업	996억 (국고 920억)	795억 (국고 742억)	비용-효과 분석	0.756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 개발					4	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7년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4 (4)	( )	( )	4 (4)	3.94 (3.94)	( )	0.06 (0.0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내부 수요조사	주관부서 : 과제발굴을 위한 내부 공모 → 과제제안서(RFP) 접수
⇩	
1차 제안과제 심의·평가	심의회 구성(센터 자체), 심의 : RFP의 기술평가, 타당성평가→ 우선순위 설정 → 시행계획(안) 기획
⇩	
수행과제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	검토 : 평가의견, 우선순위, 예산범위 검토 → 수행과제 선정, 시행계획 확정 → 센터장(승인)
⇩	
선정결과 통보 및 보고	수행과제 선정결과 보고 → 식검부장 통보 → 과제 수행담당자
⇩	
과제별 설계서 접수	과제 신청자 → 주관부서
⇩	
자체·용역 신규 수행과제 설계발표	과제 신청자 → 주관부서
⇩	
발표결과 통보 및 보고	발표결과 보고 → 식검부장
⇩	
최종과제설계서 작성	협의체-과제제안자 : 연구비조정, 연구내용협상→ 과제별 최종과제설계서 작성
⇩	
용역기술개발과제 수행자 공모	주관부서 : 시행계획·과업지시서 공고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확정 계약체결	평가점수에 따른 수행자 확정→ 계약체결
⇩	
기술개발과제별 예산배정·과제수행	주관부서 → 주관연구기관, 수행부서
⇩	
중간평가	평가단 : 중간진도관리 및 기술개발사업 방향조정
⇩	
종합평가	과제책임자 : 연차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단 : 당해연도 연구성과 등 평가표에 의한 평가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1. 농업관측(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관측	8,339	8,518	8,520	2	0.02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000 - 303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산업과장(서준한), 서기관(강효주, ☏ 044-201-223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하여 기상, 재배면적, 작황 예상 생산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토대로 가격 및 수급을 전망하여 농업인, 유관단체,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 제공

○ 관측정보는 농업인 및 단체의 합리적인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 등에 활용되어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기상, 재배면적, 작황, 생산량, 재고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분석하여 가격 및 수급 전망정보를 생산하여 농업인, 농업유관 기관·단체,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 제공
사업기간	'99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농업관측 35개 품목(국내 31, 국제 4)
지원조건	직접수행, 출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본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 3,306백만원

- 농업관측 전문인력 인건비(42명, 정규직): 3,276
- 공과금, 공공요금, 장비유지보수 등 경상운영비: 30

○ 국내 관측사업비: 4,674백만원

- 현지조사 및 정보수집 국내외 여비: 201
- 사례금(표본농가, 모니터, 소비자패널 등): 917
- 관측보 발간(관측월보 181만부/년) 유인 및 발송비: 905
- 회의비·전문가활용비(중앙·지역자문회의 수당 등): 340
- 연구정보활동비(연구자료구입 및 특근매식비 등): 139
- 외부용역비(전망대회 개최 및 전화조사대행 등): 783
- 품목별 사업인건비(20명, 계약직): 687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전망시스템 유지보수 등): 75
- 유관기관 워크숍(연 2회) 개최: 10
- 관측기동반 운영(여비, 위촉인건비, 상황실 임대 및 차량렌트 등): 150
- 관측상황실 운영(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 비상근무조 운영 등): 200
- 산지정보 수집시스템(USN, CCTV) 운영: 140
- 관측리포터를 활용한 산지정보시스템 구축: 27

  * 관측리포터 50명×0.5백만원×1년=25백만원, 관측리포터 모집 및 운영 교육: 2백만원×1회=2백만원

- GIS를 활용한 작황정보시스템 개선: 100

  * 작황정보시스템 및 현장조사 어플리케이션 개선 20백만원×5개월=100백만원

○ 국제곡물 관측사업비(인건비 제외) : 497백만원

* 국제곡물(4개품목 : 밀, 옥수수, 대두, 쌀) 관측정보 제공

- 시스템구축비(모형개발 및 운영): 88
- 위촉인건비(1명: 거시경제및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모형운영 등): 40
- 자료(데이터) 구입비: 228
-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비: 57
- 관측보 유인 및 발송비: 84

○ **직접운영비(농식품부): 43백만원**

- 표본농가용 영농일지 제작: 43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관측	**8,518백만원**	**8,520백만원**
▪ 인건비·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3,142 ○공과금, 공공요금 등 30	○전문인력 인건비 3,276 * 정원대비 부족 예산 증액(134) ○공과금, 공공요금 등 30
▪ 국내관측	○관측보 발간 등 4,674	○관측보 발간 등 4,674
▪ 국제곡물관측	○시스템구축비 88 ○위촉인건비(2명) 및 국외여비 128 ○데이터 구입비 228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57 ○관측보 유인 및 발송 124	○시스템구축비 88 ○위촉인건비(1명) 40 * 데이터 구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비 및 위촉인건비 삭감(88) ○데이터 구입비 228 ○자문단 회의 개최 57 ○관측보 유인 및 발송 84 * 관측보 단가 및 부수 조정
▪ 직접운영비	○표본농가용 영농일지 제작 43 ○국내외 현지조사 4	○표본농가용 영농일지 제작 43 ○국내외 현지조사 0 * 국내외 여비 순감(4)

□ 지원 필요성

○ 농산물 **소비**는 **안정적**이나, 농산물 **생산량**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증감폭이 커**,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 상존

○ 안정적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작물 재배의향, 면적, 생산량, 가격 등 정보를 토대로 **정책추진** 및 **농가의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 필요

○ 농업관측을 통해 품목별 재배의향, 파종면적, 작황, 가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분석한 후 **수급·가격전망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확성 높은 농업관측이 뒷받침되어야 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관측	8,339	8,518	8,520	2	0.02
▪ 농업관측	8,339 (인건비·경상경비 3,029백만원, 국내관측 4,547백만원, 국제관측 625백만원, 이주지원 91, 직접운영비 47백만원)	8,518 (인건비·경상경비 3,172백만원, 국내관측 4,674백만원, 국제관측 625백만원, 직접운영비 47백만원)	8,520 (인건비·경상경비 3,306백만원, 국내관측 4,674백만원, 국제관측 497백만원, 직접운영비 43백만원)	2	0.02
□ 비목(합계)	8,339	8,518	8,520	2	0.02
○ 일반수용비(210-01)	41	41	41	-	-
○ 특근매식비(210-05)	3	2	2	-	-
○ 국내여비(220-01)	1	1	-	-	-
○ 국외여비(220-02)	2	3	-	-	-
○ 사업출연금(350-02)	8,292	8,471	8,477	6	0.0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농업관측실시요령」

○ 추진경위

- 1999년 : 정부의 농업관측 의무화(농업농촌기본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실시, 9개 품목
- 2000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농업관측센터 설치, 18개 품목
- 2001년 : 24개 품목(감자, 호박, 단감, 당근, 양배추, 토마토 추가)
- 2002년 : 26개 품목(딸기, 복숭아 추가),
- 2006년 : 27개 품목(풋고추 추가)
- 2007년 : 28개 품목(쌀 추가)
- 2008년 : 29개 품목(콩 추가)
- 2010년 : 31개 품목(버섯, 오리 추가)
- 2012년 : 34개 품목(국제곡물(밀, 옥수수, 대두) 추가)
- 2013년 : 35개 품목(국제곡물(쌀) 추가)
- 2016년 : 농업관측센터를 농업관측본부로 명칭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관측	80	80	81	83	85	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16)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17백만원 실집행 이월
('17)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21백만원 실집행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1 (81)	- (-)	- (-)	81 (81)	81 (81)	- (-)	- (-)
'16년	83 (83)	- (-)	- (-)	83 (83)	83 (83)	- (-)	- (-)
'17년	83 (83)	- (-)	- (-)	83 (83)	83 (8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 우수(92.75)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ERS(농업경제연구국)에서 곡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여타품목에 대해서는 2~3개월 마다 "Situation and Outlook"을 공표

○ (일본) 농업경제동향 및 전망, 품목별 수급 및 가격동향 전망, 해외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전망 등을 공표

○ (호주) 식량, 식육 등의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작물보고서를 연간 5회에 걸쳐 발간 배포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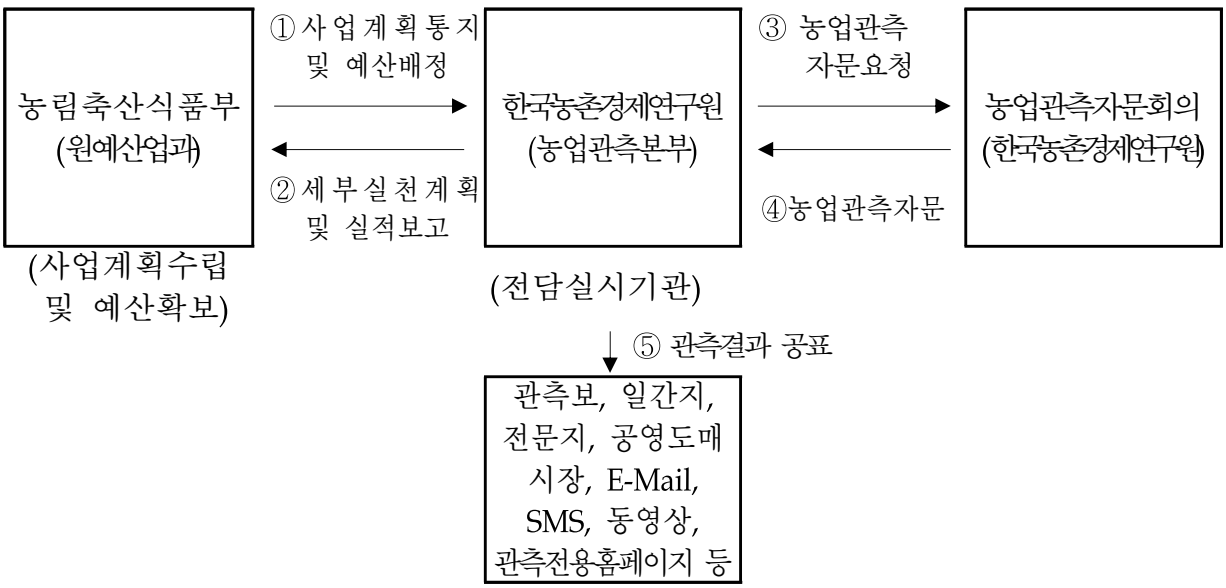

2. 밭작물산업육성(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밭작물산업육성	8,450	10,200	10,950	750	7.4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000 - 3032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이행은, ☏ 044-201-22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화 확대 및 밭작물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 경영체별 계획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기간	'09년~계속 - '09~'13 : 밭작물브랜드육성, '13~'15 : 밭식량작물산업육성 - '16년~ : 밭작물산업육성으로 확대 개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내역사업 신설)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목표(누계) - ('16년) 15개소 → ('17) 35 → ('18) 55 → ('22) 170
지원조건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컨설팅 및 홍보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농가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및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0,950백만원

▪ 신규사업 대상자 전년대비 5개소 추가로 '18년 대비 7.4% 증액

▪ 산출내역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10,750백만원
  (1년차, 3,750백만원) 25개소×1,000백만원×30%(연차지원비율)×50%(보조율) +
  (2년차, 7,000백만원) 20개소×1,000백만원×70%(연차지원비율)×50%(보조율)

- 밭작물공동경영체 컨설팅 및 홍보: 20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밭작물산업육성	**10,200백만원**	**10,950백만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10,200 * 신규 20개소, 계속 20개소	10,950 * 신규 25개소, 계속 20개소

□ 지원 필요성

○ 한·중 FTA 대책으로 밭작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주산지 현황 분석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시설·장비 및 경영·마케팅·교육·컨설팅 등)으로 밭작물산업의 자생력 도모 및 경쟁력 제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밭작물산업육성**	**8,450**	**10,200**	**10,950**	**750**	**7.4**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8,450 (신규20개소×300백만×50%+계속15개소×700백만×50%+200)	10,200 (신규20개소×300백만×50% + 계속20개소×700백만×50% + 200)	10,950 (신규25개소×300백만×50% + 계속20개소×700백만×50% + 200)	750	7.5
□ **비목**(합계)	**8,450**	**10,200**	**10,950**	**750**	**7.4**
○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200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8,250	10,000	10,750	750	7.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주산지 지역조합, 농업법인 등이 공동생산·수확후 관리·가공·유통에 참여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16년 15개소 → '22년 170개소)

○ 추진경위

- FTA 체결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밭작물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축산·과수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FTA(한·칠레, 한·미 등)와 달리 한·중, 한·베트남 FTA는 밭작물에 피해가 집중될 전망
  - 쌀값하락으로 밭농업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 대책은 쌀, 축산 등에 집중되어 밭작물에 대한 관심 부족
-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유형별(내수확대형, 수출지향형, 6차산업형 등)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방안' 마련('15.4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밭작물산업육성	54	50	47	60	85	10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 사업수요 부족(351백만원 불용)

('16) 연구용역 집행 잔액(108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7.25 **(55.74)**	12 (20.07)	- (-)	59.25 (75.81)	55.74 **(16.7)**	- (47.19)	3.51 (11.92)
'16년	60.07 **(58.99)**	- (47.19)	- (-)	60.07 (106.18)	58.99 **(60.85)**	- (41.26)	1.08 (4.07)
'17년	8,450 **(84.50)**	- (41.26)	- (-)	8,450 (125.76)	8,450 **(103.68)**	- (20.28)	- (1.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계열화경영체육성지원'과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내역사업에 대해 '17년도 예산안 편성시 하나의 내역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16예산 부대의견)

⇒ (조치사항) 기존 계열화경영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편(보조비율, 사업방식 및 조건, 사업주체 등)을 하였으며, '16년부터 밭작물산업육성 세부사업 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내역사업으로 통합 운영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점) * 경쟁력제고(농특) 단위사업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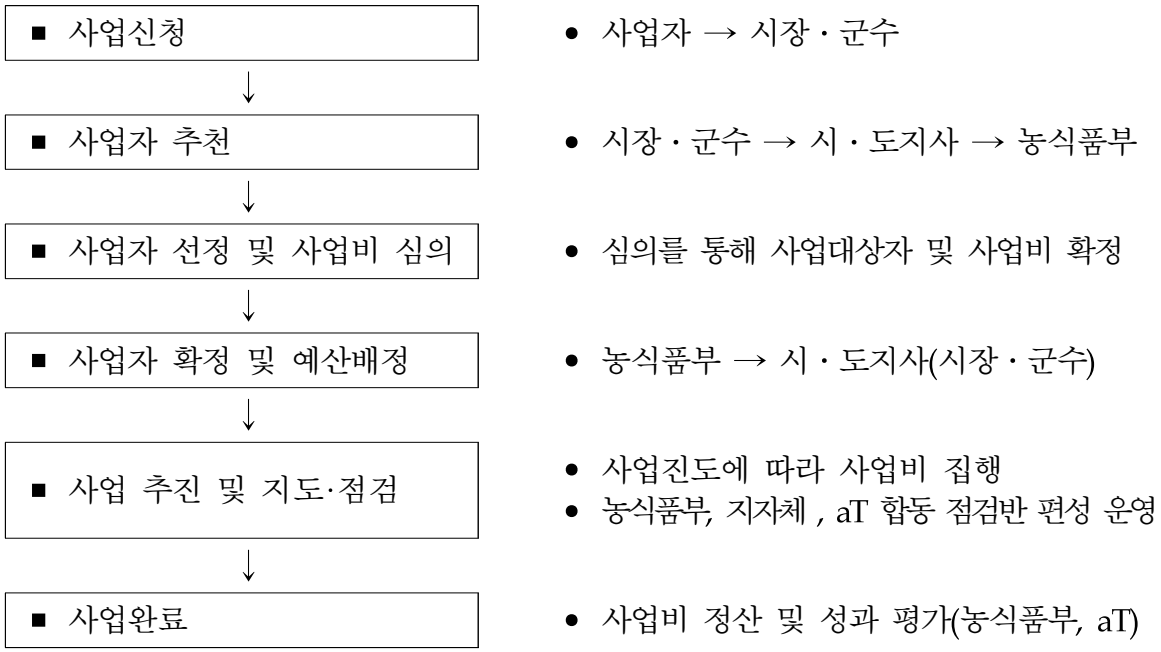

참고 1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정책

< 기본 방향 및 목표 >

◆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경영체를 조직화**하고 **관련 정책을 집중.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밭작물 생산**과 **자율적 수급조절 역할 수행 주체로 육성**

○ **공동경영체 육성** : (`16) 15 → (`17) 35 → (`22) 170 → (`25) 290

□ **(공동경영체) 주산지별**로 조직화하고 **생산전담 및 유통 참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유형별 지원 추진**

○ 개별 경영체의 조직화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지, 공동영농 형태 등 **조직화 정도(초기, 정착, 심화)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품목 특성 및 주산지별 여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모델(운영주체별, 경영전략별)을 양성**하여 **차별화된 경영체 육성**

▶ 유형별

운영주체	기능 강화 분야(예)
지역농협	품종 보급 및 시비 등 재배 지도, 농작업 지원, 유통망 확대 등
농업법인	소비지 맞춤형 상품 다양화, 가공품 개발, 체험 등 6차 산업화 등
공 선 회	단계별 품질관리, 상품 차별화, 공동계산 이익 환원 및 적립 등

▶ 경영전략별

경영전략	지원 필요 항목(예)	
	공 통	**선 택**
내수확대형	육묘장, 기계류, S/W	비가림 등 생산시설, 물류기반 등
수출지향형		저온저장시설, 시설현대화, 세척.포장시설 등
로컬푸드형		GAP기반, 친환경자재, 소포장시설 등
6차산업형		가공시설, 체험기반, 판매장 등

□ **(주산지협의체)** 공동경영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측면 지원하는 지역단위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거버넌스 구성**

○ **경영체 발전 전략, 세부 육성계획과 관련 지원 방안** 및 관측정보, 수급여건 토대로 적정재배면적 확보 등 **선제적 수급안정방안 수립**

○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지도, 고품질 생산 및 저급품 출하 억제 등 품질관리, 출하조절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 **(생산기반 정비)** 공동경영체 육성 지역은 우선적으로 **밭 생산기반 정비 및 맞춤형 기계화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 **주산지의 집단화·규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원 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등 **복합 또는 종합정비**

○ 생산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밭농업기계를 공동경영체에 공급하여 **일관기계화 생산직접화단지 조성**

□ **(유통계열화)** 유통계열화를 통한 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직거래 등 **판로 다양화로 소득 제고**

○ 공동경영체와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계열화(출하약정)를 구축하여 **통합적 산지 생산-유통 정책 체계 구축**

○ 통합마케팅조직의 지속적인 고품질 상품 공급 능력 확보로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고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통합마케팅 여건 조성**

3.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	1,150	4,500	3,350	291.3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3000 ~ 3032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나인지)☎(044-201-221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푸드플랜의 효과적 수립·운영을 지원하고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지역 푸드플랜 수립 용역 지원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 융자 지원
사업기간	'1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계획수립 지원: 5개소 ○ 지역농산물 원물구입 융자 지원: 8개소
지원조건	○ 계획수립 지원: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농산물 원물 구매: 융자(국비 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군·구), 농협(대출취급기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지자체 계획수립 : 지자체별 심층실태조사, 먹거리 공급모델 개발, 실증연구 등을 위한 푸드플랜 연구용역비 500백만원

▪ 5개 지역 × 200백만원 × 50%

○ 푸드플랜 운영지원(신규) : 원물구입 자금 4,000백만원

▪ 원물 구입(융자) : 8개소 × 1,000백만원 × 50%

* 8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 융자 지원

구 분	'18예산	'19요구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1,150백만원**	**4,500백만원**
▪ 지자체 계획수립	800 (8개소)	500 (5개소)
▪ 푸드플랜 확산 기반조성	350 (푸드플랜 모델 개발 100, 교육·거버넌스 지원 250)	-
▪ 푸드플랜 운영(융자)	-	4,000 (8개소)

□ 지원 필요성

○ 지역 푸드플랜은 외부에서 조달되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식품안전사고 증가, 푸드마일리지 상승, 지역자본 유출)를 지역 내 순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임

○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선순환 시킴으로서 ①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②먹거리 신뢰 구축, ③일자리 창출 가능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복지 증진, 물류거리 단축을 통한 환경부담 완화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	1,150	4,500	3,350	291.3
▪ 지자체 계획수립 지원	-	800 (8개소×200백만×50%)	500 (5개소×200백만×50%)	△300	△37.5
▪ 푸드플랜 확산 기반 조성		350 (푸드플랜 모델개발 100) (교육·거버넌스지원 250)	-	△350	순감
▪ 푸드플랜 운영 지원 (원물 구매 융자)	-	-	4,000 (8개소×1,000백만×50%)	4,000	순증
□ 비목(합계)	-	1,150	4,500	3,350	291.3
○ 일반연구비(260-01)	-	100	-	-	순감
○ 민간경상보조(320-01)	-	250	-	-	순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800	500	△300	△37.5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	4,000	833	10.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 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혁신성장과제 선정
-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마련('17.12)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추진('18.1~)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	-	-	-	-	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8년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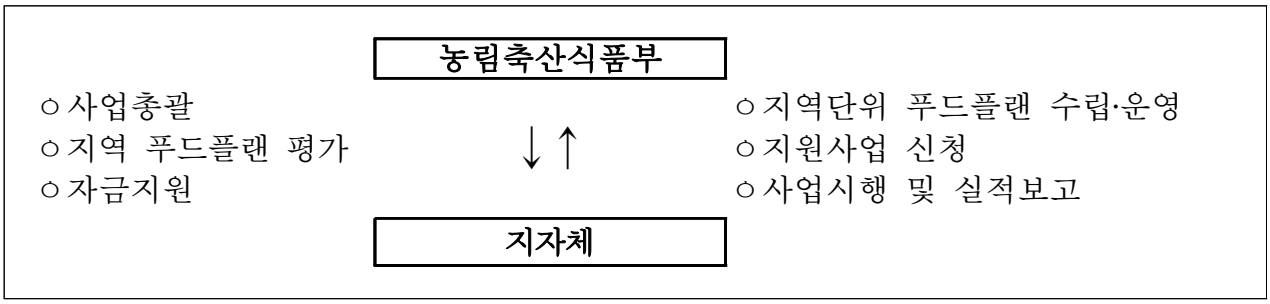

참고 1 지역단위 푸드플랜 주요 개념 및 효과

1. 개 념

□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신선·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공급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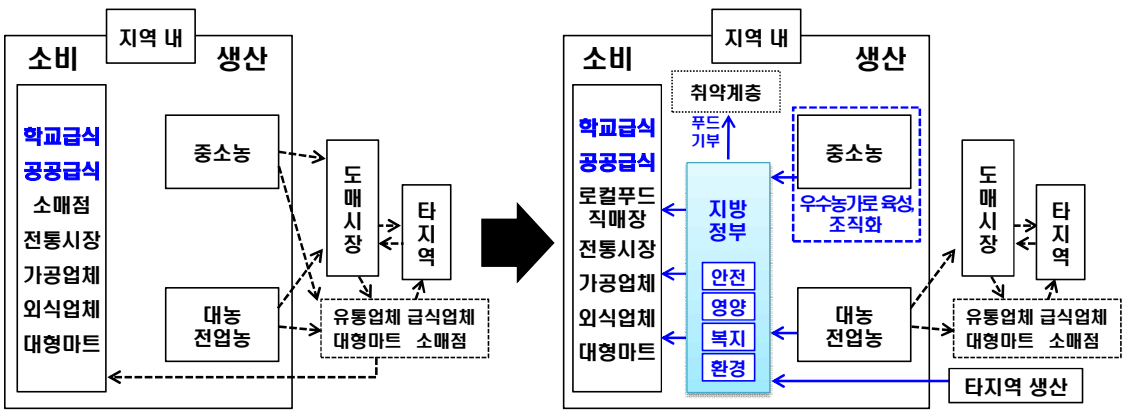

<기존 생산-소비> <지역 푸드플랜 하

2. 주요 요소

① (**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
공공기관 등), 직매장, 하나로마트, 외식·가공업체 등 **지역**

② (**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공급**) **지역 수요**를 조사하여 이
산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먹거리를 확보(지역 농가·마

* 기후요인 등으로 **지역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지역 간**

③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당일수확·당일판매**
으로 **신선도 보장**, **친환경·GAP·HACCP 의무적용**

④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조달, 안전, 식교육, 도농교류
- 급식단체, 청년네트워크,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조직과

3. 기대효과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통합운영센터, 취약계층 지원 등 푸드플랜 운영에 필요
공공급식 등 관련 산업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참고 2 지역단위 푸드플랜 주요 개념 및 효과

1. 부문별 기대효과

구분	경제·사회적 효과
농업인	안정적 판로 확보, 가공·관광 등 추가 소득 창출,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수취 가격 제고, 자존감 상승, 소비자 이해 증진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소비자	신선·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 지역 중소농이 공급하는 다양한 농산물 소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지역경제	외부로의 자본 유출 축소,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가, 귀농·귀촌 증가, 소비자·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 등
지역사회	농가 교류 확대로 유대감 강화, 고령·여성·영세농의 이탈 방지,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등
환경	푸드마일리지 감소, 포장재 감소,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2.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완주]

▸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급식지원센터, 직매장·레스토랑, 물류(수집·배송), 가공, 관광 등 **586억원 매출**로 **3천여명**의 관련 일자리 창출(**고용 : 659명**, 참여 농가 : 2,526명)

- 로컬푸드 직매장에 외식, 가공, 체험,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고용 확대
- 마을/지역 공동체회사*, 두레농장**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 마을/지역단위 생산, 가공, 체험, 교육 등, ** 공동생산시설, 건강 케어 등

- 영세소농, 고령농에 대해 고정 판로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 보장

구 분	일자리 창출(명)			비 고
	계	직원	참여농가	
계	**3,185**	**659**	**2,526**	
직매장(12) 및 농가레스토랑(3)	2,156	156	2,000	농협포함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227	27	200	
건강한밥상 꾸러미	160	10	150	
거점농민가공센터	181	5	176	
농촌체험관광	5	5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356	356		농업인, 귀촌인, 일반인 등이 업무 수행 병행
기타 사회적경제조직	100	100		

4.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22,668	22,668	23,501	833	3.7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000 - 3032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이행은, ☏ 044-201-22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 판로 확대, 일관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에서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 지원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공동선별비지원: 지자체보조 - 시·군단위 사업대상자: (수탁)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매취)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수탁)국비 50%, 자부담 50 (매취)국비 20%, 자부담 80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민간보조(국비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20% 추가지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공동선별비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공동선별비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 사용 경영체에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출하·계산 등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8,921백만원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공동선별 물량 확대로 '18년 대비 10.3% 증액

▪ 산출내역 : 600천톤×85원×17.5%(평균보조율)

○ 물류기기공동이용 : 공산물 출하시 사용하는 물류기기(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임대에 필요한 사업비 14,580백만원 반영

▪ 산출내역 : 3,645천세트×10,000원(기준단가)×40%(보조비율), 전년수준 반영

구 분	'18 예산	'19 예산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22,668백만원**	**23,501백만원**
▪공동선별비지원	8,088 (544천톤×85원/kg×17.5%)	8,921 (600천톤×85원/kg×17.5%)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14,580 (3645천세트×10천원×40%)	14,580 (3645천세트×10천원×40%)

□ 지원 필요성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로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조직의 유통경쟁력 제고 및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선별비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22,668**	**22,668**	**23,501**	**833**	**3.7**
▪ 공동선별비 지원	8,088 (544천톤×85원/kg×17.5%)	8,088 (544천톤×85원/kg×17.5%)	8,921 (600천톤×85원/kg×17.5%)	833	10.3
▪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	14,580 (3,645천세트×10천원×40%)	14,580 (3,645천세트×10천원×40%)	14,580 (3,645천세트×10천원×40%)	-	-
□ **비목**(합계)	**22,668**	**22,668**	**23,501**	**833**	**3.7**
○ 민간경상보조(320-01)	14,580	14,580	14,580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088	8,088	8,921	833	10.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을 중심으로 지원

○ 추진경위

- ’95. 8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물류표준화 추진 시달
- ’97년도에 물류표준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을 통한 물류이동 규모화, 복합 운송실현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00년부터 사업 실시
- ’05년 12월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 마련(물류기기·장비 지원을 통한 농산물의 하역기계화 촉진)
- ’06년 12월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 추진(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무 포장유통 추진)
- ‘11년 표준규격출하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추진
- ‘12년 6월 물류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T/F 운영
- ‘13년 2월 민·관 합동 농산물 유통포럼을 통해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240	243	248	243	227	2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 사업수요 부족(200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48 **(263)**	17 (-)	- (-)	265 (263)	263 **(249)**	- (-)	2 (14)
’16년	243 **(243)**	- (-)	- (-)	243 (243)	243 **(2293)**	- (0.7)	- (13)
’17년	227 **(227)**	- (0.7)	- (-)	227 (227)	227 **(224)**	- (-)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75) * 농산물유통개선(농특)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16년): 감축

- (평가결과)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17년부터 3년간 사업비 10% 단계적 감축

⇒ (조치사항) '17년 예산 축소 편성(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10%)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기본계획 수립/통지(농림축산식품부)

↓

② 세부계획 수립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세부시행 계획 수립 후 농식품부 보고

↓

③ 세부계획 승인(농림축산식품부)

↓

④ 사업 추진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 자금 지원 등 사업추진

↓

⑤ 사업수행 및 정산, 사후관리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정산, 사업 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

5.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7,200	7,200	-	-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3000 - 3040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최종순)☎(044-201-22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과일간식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1인 150g) 제공
사업기간	'1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여 명) - 주 1회, 연간 30회 과일간식 공급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단, 서울시는 국고보조율 3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군·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주 1회, 연간 30회) 위한 사업비 ('18) 7,200 → **('19) 7,200**

- 과일간식 : 240,000명 × 2천원/1식 × 30회 × 50%(보조) = 7,200백만원

* 과일(과실, 과채) 원물 구입, 전처리 등 제품화 공정, 포장, 운송 비용 등 포함

□ 지원 필요성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산과일 소비 위축

* 사과·배 등 6대과일 1인당 소비량 : ('95) 46.4kg → ('15) 43.7 → ('20p) 40.6

- 수입과종 및 수입국 다양화로 전체 과일 공급량에서 수입과일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추세

* 수입과일 공급률 : ('05) 15.6% → ('10) 19.4 → ('15) 20.9 → ('16) 22.5(p)

○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어린이 등의 비만율 지속 증가

* 어린이·청소년 비만율(과체중 포함) : ('10) 19.6% → ('12) 20.4 → ('14) 21.0

* 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3) : 1조 3,638억원(전체의 20.1%)

○ 국산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과일간식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	**-**	**7,200**	**7,200**	**-**	**-**
▪ 과일간식	-	7,200 (24만명×2천원×30회×50%)	7,200 (24만명×2천원×30회×50%)	-	-
□ **비목**(합계)	**-**	**7,200**	**7,2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7,200	7,2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19대 대통령 공약(172-4) 및 대통령 지시사항('17.8.30.)
  - [대선공약] (중앙)학교 과일간식, (지역) 전국 초등 돌봄교실 무상 과일간식 지원
  - [지시사항] 과일이 공공급식, 군급식 등에 제공된다면 소비가 촉진될 것

◀ 대선공약(172-4) ▶

172. 친환경 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④ 학교 과일 급식 실시 및 우유 급식 확대

○ 추진경위

- 「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 도입방안」연구용역 추진 : '16. 2.~12.
- 19대 대선공약_ '학교 과일급식 지원'(127-4) : '17. 5.
- '17년 과일간식 공급 시범사업 실시 : '17. 5.10.~7. 14.
  * 전국 43개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1,585명/ 주 3회 10주간 공급
- '18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예산 국회단계 반영 : '17. 12.
-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18. 9.(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개정)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	-	-	-	72	7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8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 운영)

○ (일반현황) 유년기에 형성된 식습관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미각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과 함께 **과일·채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안정적 과일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 '02.시범, '08.본사업, 무상공급, (캐나다) '05. 무상공급, (EU) '09. 50% 보조

* (프랑스) 어린이 대상 "요리미각예술 5개년 계획", "미각주간" 및 농업 지역요리 체험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교육농장제도 활성화"

* (이탈리아) 학교 교육과정에 과일·채소 간식시간(15분) 배정 및 미각교육 실시

○ (국제사례)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은 「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을 운영

◀ 주요 선진국 사례 ▶

※ 농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담당

○ (미국) Fresh Fruit & Vegetable Program, 농무부(USDA)

○ (EU) School Fruit Schemes, EU집행위 농업총국(회원국은 농업부)

○ (캐나다) School Fruit & Vegetable Nutritional Program, 보건·교육·농업부

(5) 사업추진절차 : 학교 과일간식 공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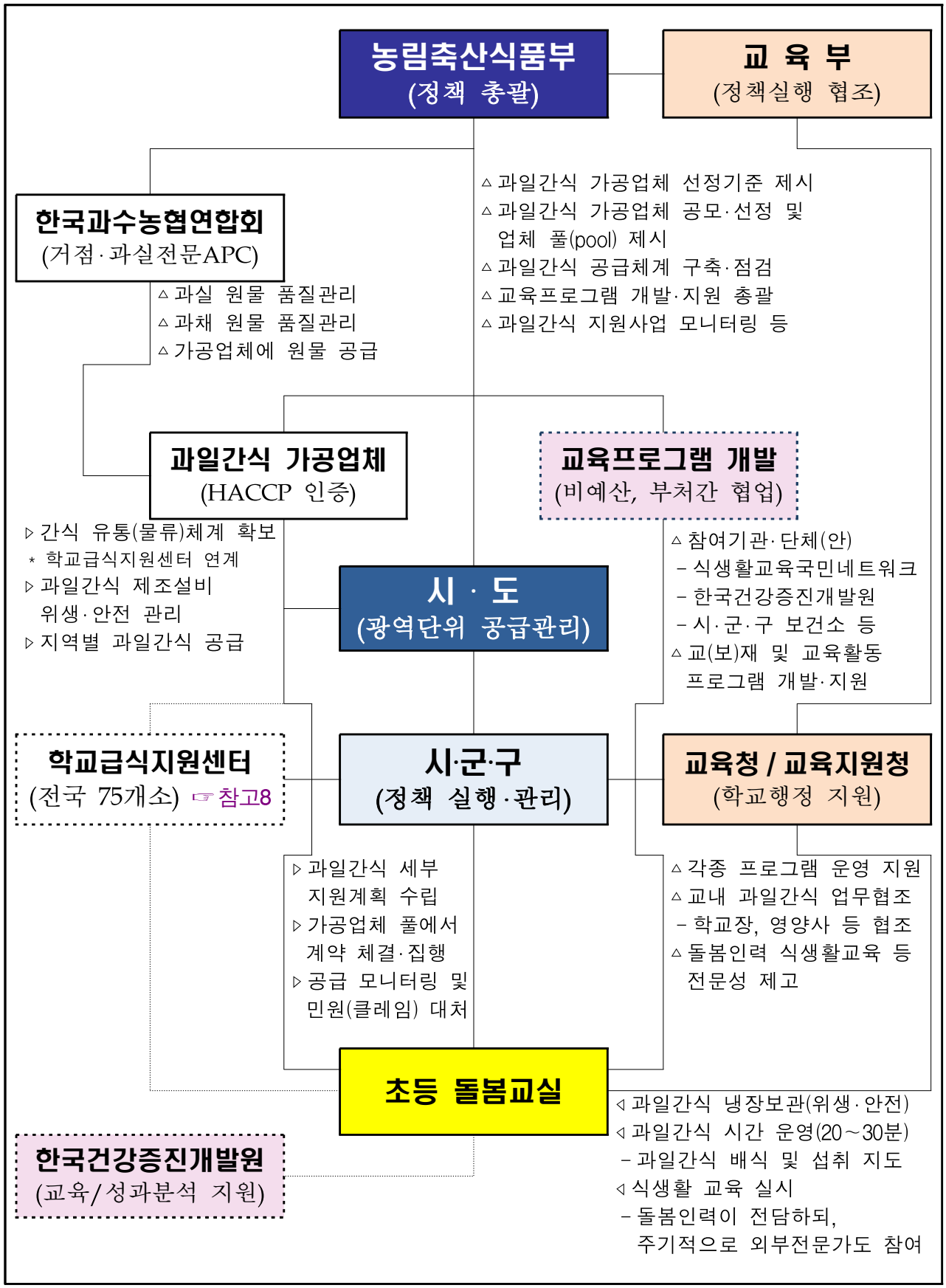

참고 1 과일간식 프로그램 관련 외국 사례

국가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현황
미 국	Fresh Fruit & Vegetable Program	• 시범사업('02), 본사업('08) • 연방정부의 법제화 • 사업대상: 초등학생 • 급식과 분리된 간식, 2회/주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무상 또는 구입금액 보조	• **농업부(USDA) 주관** • 지원예산 - 40백만달러('08/'09) - 165백만달러('13/'14)
캐나다	BC School Fruit & Vegetable Nutritional Program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 '04년부터 실시(점진적 확대) • 사업대상: 초등학생 • 급식과 분리된 간식, 40회/년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무상 지원(주정부 부담)	• 보건부·교육부·농업부 주관 • 참여학생: 549천명 ('15/'16) • 로컬푸드 연계성 강화
E U	School Fruit Schemes	• '09년부터 실시(25개 회원국) • 법제화: 원예농산물 공동시장 정책 • 사업대상: 6~10세 권고 (회원국 자율)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의무)	• **EU집행위 농업총국 주관** • EU 지원예산 - 90백만유로('13까지) - 150백만유로('14부터) (EU 50%, 회원국 50)
프랑스 (EU회원국)	Un Fruit pour la Recre	• 사업대상: 3~18세 • 연간 23식/년, 100~150g/식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민간(학부모) 부담 자발적	• **농업부 주관** (사회보건부·교육부 협조) • 지원예산: 3백만유로 • 참여학생: 404천명 ('15/'16)
이탈리아 (EU회원국)	Frutta e verdura nelle scuole	• 사업대상: 6~11세 • 연간 50식/년, 230g/식 •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 민간(학부모) 부담 자발적	• **농업부 주관** (보건부·교육부 협조) • 지원예산: 32백만유로 • 참여학생: 1,044천명 ('15/'16)

6.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재량, 신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8,351)	- (7,201)	6,781	△420	△5.8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000 - 304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식생활소비정책과장(정혜련), 사무관(신기태, ☏ 044-201-227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식생활 교육 및 우수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바른 식문화와 지속가능한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맞춤형 소비자 교육·홍보를 통해 농식품 소비 촉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건전한 식생활 확산)** 식(食) 체험·교육 기회제공 및 우수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바른 식문화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기반 확보 ○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제철 농산물 포스터 제작, 소비자단체 협력 교육·홍보, 정책포럼, 간담회 등 추진 ○ **(농식품 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농식품소비정보망(웹) 운영, '농식품 소비공감' 발간, 제철 농산물 홍보 등 소비자에게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사업기간	'19~계속(건전한 식생활 '09~계속 , 소비정책 '10~계속 , 소비정보망 '07~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건전한 식생활 확산)** 5,084백만원 ○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1,178백만원 ○ **(농식품 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519백만원
지원조건	○ **(건전한 식생활 확산)** 민간보조 국비 100%, 지자체보조 국비 50% ○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민간보조 국비 100%, 지자체보조 국비 50% ○ **(농식품 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민간보조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 **(건전한 식생활 확산)**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 ○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식품 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건전한 식생활 확산 : 5,084백만원**

-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1,220) : 실태조사 및 학술대회 370, 교육제공 플랫폼 운영 300,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550
- 맞춤형 식생활 교육(3,424) : 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 2,840, 영양사 교육 100, 예비교사 학과목 개설 지원 50, 바른 식생활 체험관 운영 100, 행복나눔이 교육 80, 교구 및 교재 개발 254
-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440) : 식생활교육 전문방송 200, 식생활 캠페인 240

○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 1,178백만원**

- 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90,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1,046, 소비자단체 소통 강화 42

○ **농식품 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 519백만원**

-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313, 농식품소비정보망 운영관리 206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7,201백만원**	**6,781백만원**
▪ 건전한 식생활 확산	5,504 식생활 인프라 강화 1,590, 맞춤형 식생활교육 3,424,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 490	5,084 식생활 인프라 강화 1,220, 맞춤형 식생활교육 3,424,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 440
▪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1,178 농식품 소비문화조성 90,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1,046, 소비자 단체 소통강화 42	1,178 농식품 소비문화조성 90,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1,046, 소비자 단체 소통강화 42
▪ 농식품 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519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313, 농식품 소비정보망 운영관리 206	519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313, 농식품 소비정보망 운영관리 206

□ 지원 필요성

○ 바른 식문화 정착 및 미래 농식품의 지속가능한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농식품 소비 문화조성 및 소비자단체 소통 강화,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등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8,351)	- (7,201)	6,781	△420	△5.8
▪ 건전한 식생활 확산	- (6,378)	- (5,504)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1,590, 맞춤형 식생활교육 3,424,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 490)	5,084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1,220, 맞춤형 식생활교육 3,424,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 440)	420	△7.6
▪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 (1,370)	- (1,178) (농식품 소비 문화 조성 90,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1,046, 소비자 단체 소통강화 42)	1,178 (농식품 소비 문화 조성 90,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1,046, 소비자 단체 소통강화 42)	-	-
▪ 농식품 소비정보망 이용 활성화	- (603)	- (519)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313, 소비정보망 운영관리 206)	519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313, 소비정보망 운영관리 206)	-	-
□ 비목(합계)	- (8,351)	- (7,201)	6,781	△420	△5.8
○ 민간경상보조(320-01)	- (5,656)	- (4,461)	3,601	△860	△19.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695)	- (2,740)	3,180	440	16.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건전한 식생활 확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14조(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식품소비정보망 이용활성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3조(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요청할 수 있다.

○ 추진경위

사업명(소관국)	시작연도	특이사항
건전한 식생활 확산	2009년	'16년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통합
농식품소비정보망 이용활성화	2007년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 교류 활성화	2010년	

➔ '19년 농식품소비 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사업 으로 분리하여 신규 세부사업 편성

<건전한 식생활 확산>

- '09.5월 : 식생활개선 및 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
- '10.2월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10.4월 : 제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0~'14) 수립
- '13.5월 : 학교급식 및 학교 식생활교육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교육부 MOU체결
- '14.4월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바른 식생활 대표 캠페인* 및 5대** 실천과제 발대식

  * 바른 밥상, 밝은 100세

  ** 과일·채소 많이 먹기, 아침밥 먹기·가족밥상 실천하기, 텃밭 가꾸기,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15.3월 :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계획('15~'19) 수립
- '15.5월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16.2월 : 영·유아 어린이 식생활교육 강화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관련 민간기업,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 추진
- '16.4월 : 관계부처(복지부,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제정
- '16.5월 : 가족밥상 실천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농식품 소비촉진 전국민 선포식(여가부 협업)
- '16.12월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17.11월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18.1월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재지정·운영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 '08.07 : 범정부 식품안전종합대책

- ’08.12 :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
- ’08.12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08.06)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 ’09.05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10.01 : 소비자단체 등 이해그룹간 정기교류 및 협력 추진
- ’11.07 : 민·관 합동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T/F」 설치
- ’12.02 :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으로 소비자와 참여·소통 강화
- ’13.03 : 정부 조직개편 및 식품안전 정보제공 기능 식약처로 일원화
- ’13.12 : 기존 ‘농식품안전 예방 및 긴급대응사업’에서 ‘소비자정보교류사업’으로 확대 개편·운영
- ’14.01 : 농식품 신(新) 소비정책 추진계획 마련
- ’15.01 : 농식품 소비자정책 추진계획 마련
- ’15.03~’15.11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농식품 정책 교육·홍보(15개 단체, 16개 과제), 지역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운영(17개 시도)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

- ’03.08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를 전자정부로드맵과제로 확정
- ’03.11 :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전자정부로드맵과제 세부과제로 확정 (농림부(구), 해양수산부(구) 공동주관)
- ’05.08 :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05.10~’08.02 :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08.11 : 농수산식품안전상담센터 구축・운영
- ’09.08 : 농식품안전정보사이트와 수산물안전정보사이트 일원화
- ’13.04~05 : 식품종합정보망 구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협의 및 의견수렴
- ’13.12 : 기존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에서 ‘식품종합정보망’으로 확대 개편·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77	73	74	72	84	7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 집행잔액, ('17) 일부 지차체 매칭 지방비 미확보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4 (74)	- (-)	- (-)	74 (74)	74 (74)	- (-)	0.1 (0.1)
'16년	72 (72)	- (-)	- (-)	72 (72)	72 (72)	- (-)	- (0.1)
'17년	84 (84)	- (-)	- (-)	84 (84)	84 (83)	- (-)	0.5 (0.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4.50) * 식품산업육성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8년): 사업방식 변경 *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 세부사업

- (평가결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내역사업)는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목적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사업(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치사항) '19년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세부사업으로 분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건전한 식생활 확산>

○ 일본, 프랑스, 미국, 이태리 등은 '90년대부터 전통 식문화 계승 및 자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실시

- **(일본)** 식육기본법('05.7월 시행) 및 식육추진기본계획('06.3월 수립)에 따라 민관 협력 하에 범국민운동으로 식생활 교육 전개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교육, 학생 대상 농림어업·식품폐기물 재생 관련 체험, 식생활 지침 보급, 식육월간(6월)·식육의날(19일) 운영

▪ 제2차 식육추진기본계획('11.3)을 수립하여 새로운 식육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식육추진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육의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범국가적으로 추진

- **(프랑스)** 어린이들의 미각 형성 및 조리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이 국민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 어린이 대상 「요리미각예술 5개년 계획(PAC)」, 「미각주간」, 농업·지역요리 체험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교육농장제도' 활성화

- **(미국)** 영양교육 및 농업 체험을 통한 식생활 교육 실시

▪ 1974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영양프로그램(참여 : 830만명, 출생아의 50% 해당) WIC* 운영

*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미국 농무부(USDA)는 2010년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이 기초하여 소비자가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Choose My Plate', 'Let's Eat for the Health of it' 브로셔 보급, 학교에서의 '교실농업 운동', '건강국민 2010 프로그램' 등 추진

▪ 미국 농무부(USDA)는 2016년 식량공급의 불안정과 비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급식에서의 식습관 등 질적 영양교육*에 주력(영양지원 및 식생활교육이 전체 예산 중 73% 차지)

* (사업현황) 식품영양서비스국(FNS)이 영양지원 및 학교급식과 관련된 15개 연방정부 프로그램 운영

- **(이탈리아)** 슬로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미각체험·교육 실시

▪ 미국의 패스트푸드와 상반되는 개념의 슬로푸드 운동('86) 처음으로 전개, 슬로푸드 프래시디아(지킴이 활동), 떼라 마드레, 미각체험·교육을 위한 '맛의 방주'·'살론 델 구스토' 등 개최

▪ "학교 과일 계획 프로그램" 운영

* 오전 3시간 수업 후 15분의 휴식시간 동안 과일과 채소를 간식으로 무상제공 및 학교 텃밭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교육 병행

- (영국) 로컬푸드, 농민직거래장터, 탄소발자국 등으로 교육 실시

  ▪ 농민직거래장터를 통하여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인증하는 탄소라벨·탄소발자국으로 제품에 표기하는 운동 등 추진

  ▪ 학교 교과과정 내 식생활 개선을 위한 '푸드 듀디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들이 과일과 채소 섭취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화 DVD 개발

  (1단계 : 야채·과일을 먹는 만화 속 주인공 행동 따라하기 → 2단계 : 야채와 과일 섭취 시 보상점수 부여 → 3단계 : 과일과 채소 섭취량에 대한 자기주도 평가)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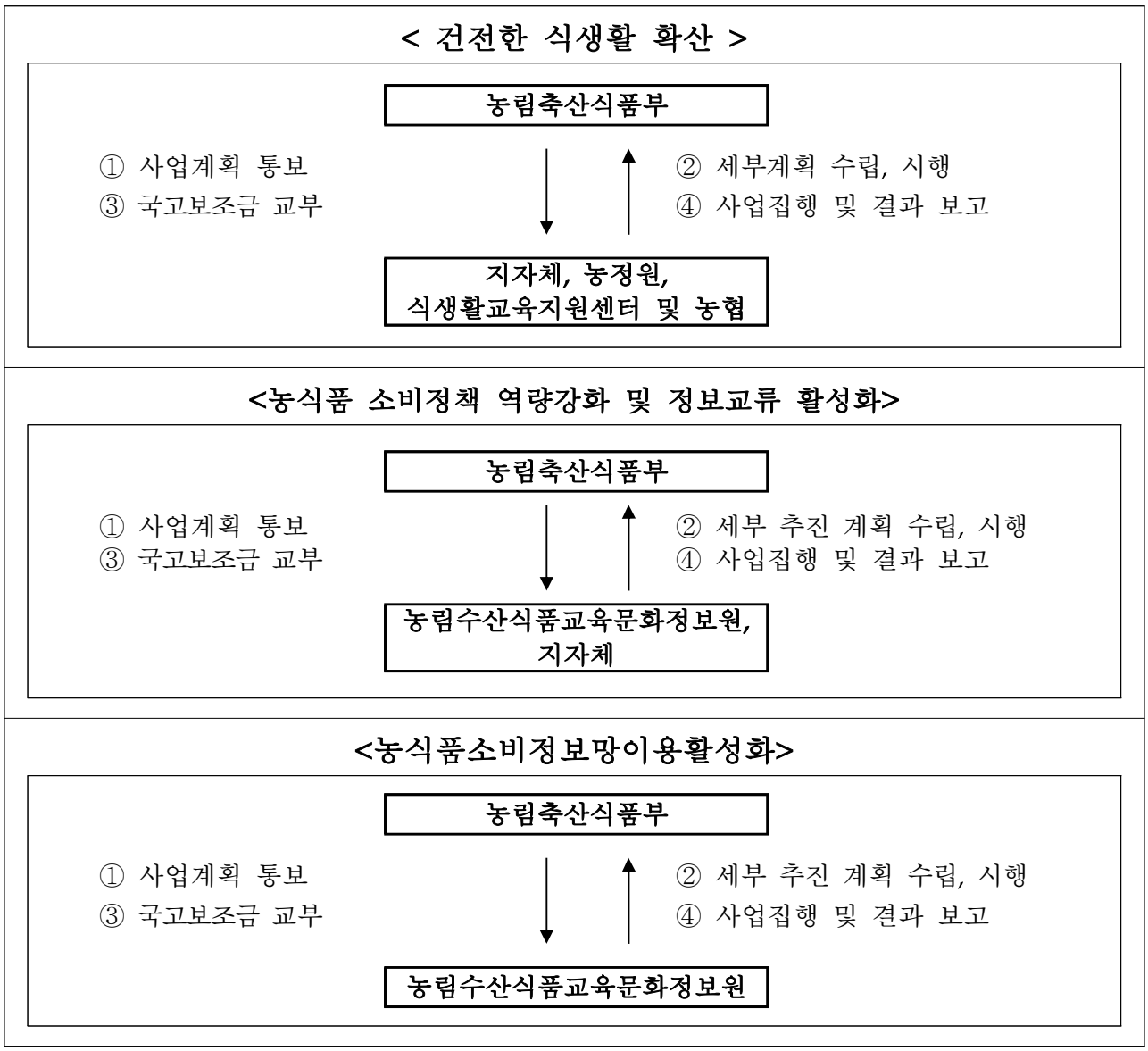

참고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비교

구분	건전한 식생활 확산	소비정책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농식품 소비정보망 이용활성화
목적	○(食 교육) 식생활 교육·식문화 개선 *국정과제 및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 제2차('15~'19)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정책홍보) 소비정책 홍보·단체소통 *소비자단체 협력, 정책 참여를 통한 농정현안 공유 및 소통 강화	○(정보화) 농식품 소비정보망 운영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거진, 웹을 통한 소비정보 제공
대상	○어린이, 성인, 고령자 등 맞춤형 ○교사, 영양사, 강사 등 교육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농업인	○농식품 소비자 (전 국민)
사업 내용	○지자체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식생활 교육(1,000여개소), 어르신 건강밥상 교실 운영 등 ○교육·체험 인프라 조성 *우수체험공간(누적 232개소), 식생활교육기관(누적 60개소) 지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교안DB 구축, 관련 학회활동 등 ○전문인력 양성 *교사 직무연수(1,000여명) *대학교 식교육 관련 강의 개설(8개교) *영양사 보수교육 연계 온라인 교육 ○행복나눔이 대상 교육 *고령자 식생활 관리 교육(2,000여명) ○식생활지침 제정 및 대국민 캠페인 ○식생활 조사·연구	○소비자단체 협력사업(13개 사업) *소통협의체(농산물 수급,안전) 운영, GAP·LMO 모니터링, 한식당 캠페인 등 ○농사랑 알리미 역량강화 및 홍보 *농사랑알리미(513명) 전문성 강화교육 및 지역 현장방문 농정 교육·지도 지원 ○소비자단체와 정책포럼 및 간담회 *정책포럼(분기 1회), 단체장 간담회(연 2회) ○제철 농산물 포스터 제작·홍보 *관측정보, 수급상황을 고려 매월 2품목을 포스터 제작·배포(매월 총 714부, 로컬푸드매장 등 427개소) ○농식품 소비정책 인식도 조사(평가) *일반국민 대상 1천명에게 성과평가	○농식품 소비공감(정보 매거진) 농식품·지식·농촌·독자공감 4개분야 콘텐츠로 구성/ 농산물 정보, 농식품 트렌드, 인증품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정보 제공 *소비자단체, 농·축협, 초등학교 영양교사, 대형마트 문화센터, 지자체 민원실 등 배포 *분기별 1만부(연4만부) 발행·배포 및 온라인 무료 배포(http://www.foodnuri.kr) ○농식품 정보누리 www.foodnuri.go.kr 웹, 모바일을 통해 농식품 소비·식생활 콘텐츠 관리 *농식품 콘텐츠 관리, 온라온 홍보 및 소비자 참여형 커뮤니케이션 웹 *aT, 농관원, 소비자원, 식약처 등 16개 기관 24개 싸이트 모니터링·정비
법적 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등) 제25조(식생활교육기관 지정)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3조 (정보의 제공)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련 사진	 	 	

7. 국가인증농식품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가인증농식품지원	9,680	9,099	9,178	79	0.9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000 - 3050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식생활소비정책과장(정혜련), 사무관(민동명, ☏ 044-201-22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GAP, 친환경, 지리적표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인증 농식품 소비촉진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다각적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친환경 및 GAP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분석 지원, GAP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보완 지원 등 ○ 농식품의 지리적표시품 활성화, 판로 지원 등 체계적 관리로 지역 특산품 부가가치 제고,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 유기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연구·운영 및 실태조사 ○ PLS 전면시행('19.1)에 관련하여 농약안전사용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기간	'06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직접수행: 유기식품 등 운영활성화,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운영, GAP 사업추진 ○ 민간보조(국비 100%):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심판위원회 운영 제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 지자체보조(30%*, 50%**): GAP위생시설보완, 안전성 분석지원 * GAP위생시설보완(국비:지방비:자부담 = 30:20:50,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국비:지방비 = 50:50) ** 토양·용수·안전성 분석(국비:지방비 = 50:50)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농림축산식품부), 민간보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자체보조(시장·군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GAP 안전성 분석지원(토양·용수 분석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GAP 시설보완 사업비, 운영비 등 6,812백만원

▪ 산출내역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토양·용수)** 81,039ha(전 농지의 5%수준) * 69천원(ha당 분석단가) * 50%(국고 지원비율) = 2,796백만원
  · **(농산물)** 28,203농가(농가 증가 수) * 210천원(농가당 지원단가) * 50%(국고 지원비율) = 2,961백만원
- GAP위생시설보완 : 35개소×100백만원×30% = 1,050백만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운영 : 5백만원

○ **【농식품국가인증 홍보】**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 800백만원**(전년 동)**

▪ 산출내역

- TV, 신문·전문지, 대중교통 등 다매체 활용 홍보(326)
- SNS, 포털사이트 등 모바일·온라인 활용 홍보(224)
- 대형마트 연계 소비접점 활용 홍보(200), 소비자 인지도 조사(50)

○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지리적표시품 유통 활성화 및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439백만원**(전년 동)**

▪ 산출내역

-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지원(429)

  * 지리적표시 농식품 전시판매전, 기획전 추진 및 홈쇼핑을 통한 판로 강화
- 지리적표시 관련 심판 및 재심을 위해 심판위원회 운영(10)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친환경농업 체험단 기획·활동, 대중매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397백만원**(전년 동)**

▪ 산출내역

- 전문가 기고 및 기획보도, 홍보영상 제작 등 대중매체 홍보(250)
- 현장 중심 친환경가치홍보 등(147)

○ **【유기식품 등 운영 활성화】** 유기식품 등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 및 친환경농식품 산업 활성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 150백만원**(전년 동)**

▪ 산출내역

- 유기식품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점검 등 운영(100백만원)
- 유기식품 등 친환경 인증제도 및 친환경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자문, 실태조사 등 용역(50백만원)

○ **【농약 안전사용 교육·홍보 지원】** PLS 시행으로 인한 농약 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사업비 580백만원

▪ PLS 시행으로 인한 농업현장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집중추진을 위하여 '18년 대비 193%증액

▪ 산출내역

- 농약안전사용 및 안전관리 캠페인 영상제작·송출(460백만원)
  * 영상제작(2회, 50백만원), TV방송 송출(60회, 6백만원)
- 생산자·소비자 대상 홍보물 제작(12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국가인증농식품지원	**9,099백만원**	**9,178백만원**
▪ 농산물우수관리 제도(GAP) 운영	**5,508** - 대규모 재배지 중심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5,508) - GAP 리더 육성(450)	**5,757** - 대규모 재배지 및 개별농가 단위 토양·용수·농산물 안전성 분석(5,757) * 농관원 사업 통합 - GAP 리더 육성(-) * 농관원 이관
▪ 국가인증 홍보	**800**	**800**
▪ 지리적표시 활성화	**439**	**439**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397**	**397**
▪ 유기식품 등 운영 활성화	**150**	**150**
▪ PLS 교육·홍보지원	**300** - 대중매체 홍보(190), 소비자단체 교육 지원(110)	**580** - 농약안전사용 및 안전관리 캠페인 영상제작·송출(460백만원) - 생산자·소비자 대상 홍보물 제작(1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배환경 관리, 농약 안전사용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중요성 부각

-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인 GAP 인증의 전국적 확산 필요

- GAP 인증 시 필요한 안전성 검사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이며 인증비용 중 많은 비중(77%)을 차지하므로, 예산 지원을 통해 농업인 참여 유도 필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 조사)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소요비용(집단인증, 40농가 기준): (전체) 211,420원 / (안전성 검사) 182,920원

-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시설 확충필요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국가인증제도 활성화 및 농식품 소비촉진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의 인증표지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12.1.1)된 농식품 국가인증 공통표지(logo) 집중 홍보 필요

  * 주요 소비자인 30~60대 여성에 대한 농식품 인증제도(10종) 인지도 조사 결과: ('14) 56.9 → ('15) 60.7 → ('16) 60.6 → ('17) 64.17 → ('18) 72.4

- 고품질·안전 농식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비인증품과의 시장차별화를 통한 생산자 소득증대에 기여

○ 지리적표시는 국가지식재산의 중요한 분야로 국가적인 보호와 활성화 필요

- 품질관리 등 질적인 측면의 관리와 투자가 미흡, 중앙정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사후 관리 및 유통활성화 지원 필요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수요계층의 인식부족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 한계

-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 유기식품 제도 등의 운영 및 친환경농식품산업 실태조사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식품 등의 가공, 유통, 소비 등의 분야별 자문 및 조사·연구,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친환경농식품의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의 전면시행('19.1.1)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의 증가가 우려되는 바,

- 농업인, 농업판매상 대상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중심 교육・홍보 필요

- 아울러, 소비자 대상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하고 국내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가인증농식품지원	9,680	9,099	9,178	79	0.9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 안전성 분석 - GAP위생시설보완 - GAP 운영비	7,013	7,013 (토양·용수분석 40,064점×250천원×50%+ 지자체 운영비 300백만원) +(모니터링 40개소, 200백만원) (35개×100백만×30%) (12,810명/450백만원) GAP 운영비 5	6,812 (토양·용수분석 81,039ha×69천원×50% + 농산물 분석 28,203농가×210천원×50%) (35개×100백만×30%) GAP 운영비 5	△201	△2.9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 매체 활용 홍보 - 온라인·모바일 홍보 - 소비접점 홍보 - 소비자 인지도 조사	800	800 (TV 등 다매체 홍보 326) (온라인 홍보 132) (오프라인 홍보 292) (소비자 인지도조사 50)	800 (TV 등 다매체 홍보 326) (온라인 홍보 224) (오프라인 홍보 200) (소비자 인지도조사 50)	-	-
▪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 지리적표시품 유통 활성화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운영	581	439 (판로 지원 200 + 전시판매전 등 229) (참석수당 등 10)	439 (판로 지원 200 + 전시판매전 등 229) (참석수당 등 10)	-	-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 대중매체 활용 홍보 -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397	397 (전문가기고 및 기획보도 100 + 홍보영상제작 50) (신유통채널 발굴 및 확대 80) (현장 중심의 친환경가치 홍보 등 (167)	397 (전문가기고 및 기획보도 및 홍보영상 250) (현장 중심의 친환경 가치 홍보 등 147)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유기식품 등 운영 활성화 -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 - 친환경농식품 활성화 연구·용역	407	150 (제도조사, 이행실태 점검, 간담회 등 100) (조사·연구 용역 50)	150 (제도조사, 이행실태 점검, 간담회 등 100) (조사·연구 용역 50)	-	-
▪ PLS 교육홍보 지원	-	300 (대중매체 홍보 190 + 소비자단체 교육지원 110)	580 농약안전사용영상제작·송출(460백만원) 생산자·소비자 대상 홍보물 제작(120백만원)	280	93.3
□ 비목(합계)	**9,680**	**9,099**	**9,178**	**79**	**0.9**
○ 일반수용비(210-01)	121	110	110	-	-
○ 관리용역비(210-15)	74	-	-	-	-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 일반연구비(260-01)	214	50	50	-	-
○ 민간경상보조(320-01)	2,908	2,576	2,206	△370	△14.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308	5,308	5,757	449	8.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50	1,050	1,05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110조(자금 지원)
- 「식품산업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5의2,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 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9조(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관련 공약
  ▪ 83-4.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GAP 인증 확대

○ 추진경위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운영

· ('03) 약용작물 GAP 실시 지침 마련
  * FAO 17차 농업위원회 GAP 논의과정에서 한국은 약용작물을 대상으로 GAP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준비를 하고 있음을 표명('03.4)
· ('04) 과일, 채소, 약용작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3개 기관, 357농가)
· ('05)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도입 근거 마련)
· ('06)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본사업 시행('06년 3,659농가)
· ('09)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로 명칭 변경
· ('14) GAP 제도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10월)
· ('15) 웰빙·안정·개방화 시대 GAP 농산물 확산방안 마련(1월)
· ('1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83번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포함
  * GAP 인증 확대 포함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사업

· ('09) 국가인증 농식품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확산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도입
· ('12) 국가인증 통합로고 도입·시행
· ('14)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 ('16)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
· ('16)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 도입

- 지리적 표시 활성화 사업

· 농식품 지리적표시제 도입('99.1)
· 지리적표시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9.6)
  * 지리적표시 보호심판위원회 운영, 민사적 구제절차 근거 등 마련

·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국무총리실장) 구성,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 추진('09.10)

*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 보고(제2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10. 5.12)

· 지리적표시 등록('18년 말 기준): 158건(농산물 102, 임산물 56)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 ('09) 친환경농산물의 급격한 생산 확대에 따라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내역사업 실시

· ('10) 친환경인증활성화 사업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어 시행

· ('11) 국가인증농식품지원사업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

- 유기식품 등 운영 활성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08.6) 이후 국제 기준과의 조화, 국내 유기산업 육성 등을 위한 유기식품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10. 7)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12.6.1)

· 한-미,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발효('14.7.1, '15.2.1)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16.2)

- PLS 교육·홍보 지원

· ('17)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인 0.01ppm으로 적용하는 PLS 제도 확대 시행('16.12.31.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 → '19.1.1. 전품목)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 ('18) 농약 등록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대한 직권등록 확대 추진(1,670적용작물) 및 PLS 시행대비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추진

* (예산) 직권등록 127억, PLS 교육·홍보 3억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국가인증농식품지원	49	51	53	101	96	9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 월

- ('15, 106백만원): 유기식품 등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액 발생(106)
- ('16, 117백만원): 유기식품 등 운영 활성화사업 계약 완료시기 미도래
  - ▪ 유기식품 판매장 현황조사('16.12.20~'17.2.13, 19백만원),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 위탁계약('16.8.8~'17.6.4, 73,750천원),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관련 업무용역('16.11.11~'17.2.11, 24,250천원)

○ 불 용

- ('15, 333백만원): GAP시설보완 신청 저조(304), 유기식품제도 관련 연구 용역 낙찰 차액(16) 및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운영 등 사업비 잔액(13)
- ('16, 294백만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낙찰차액 등(265), 용역 낙찰 차액(15), 지리적표시 심판청구 미발생으로 인한 심판위원회 운영비 잔액(14)
- ('17, 18백만원): 지리적표시 심판청구가 1건으로 적어 잔액 발생(8), 일반 연구비 낙찰차액(10)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3 (51)	2 (1)	- (-)	55 (52)	51 (35)	1 (14)	3 (3)
'16년	101 (98)	1 (14)	- (-)	102 (112)	98 (85)	1 (11)	3 (16)
'17년	96 (97)	1 (11)	- (-)	97 (108)	97 (93)	- (4)	18 (1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4.75) * 식품안전 및 규격(농특)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평가결과) 불용액 발생에 대해 향후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 요구(10% 정도 감축)

⇒ (조치사항) '17년 보조예산 감축('16년 대비 △5.4%) 및 예산 불용이 많았던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방식을 개선('16년)

* 사업자선정방식 변경(5억원 이상 대규모시설 → 1억원 이상 소규모 참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참고 1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개요**

1. 농산물 우수관리(GAP)의 개념

□ 농업환경(용수, 토양 등)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06년 도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일본은 농업생산공정관리, 중국은 양호농업규범으로 번역

(생산환경관리) 재배지역의 토양과 수질 등이 깨끗한 지역
(재배관리) 농약, 비료 등을 안전기준에 맞게 사용
(수확관리)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선별, 포장
(위해요소관리) 생산 농산물에 대한 연1회 농약, 중금속 분석
(이력추적관리)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기록, 정보제공

2. GAP 인증 절차

〈 우수관리인증 절차 〉

〈생산자집단, 농업인〉	**사전 준비**		ㅇ 교육이수, 조직결성, 영농일지 작성 등
〈생산자집단, 농업인〉	**신청서 제출 전문인증기관**	**첨부서류**	ㅇ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인 경우) 등 - 생육기간 2/3경과 전 신청
〈전문인증기관〉	**인증심사**	심사	○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 농업현장(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필수기준 27개, 권장기준 20개 준수 여부** ○ 토양 및 용수 분석 등
〈전문인증기관〉	**심사결과 (인증서발급)**	심의	○ 적합여부 판정
〈인증농업인〉	**인증품 생산 (인증표시)**	생산 및 출하	○ 생산, 수확·유통 과정 우수관리기준 준수 ○ 수확 전 농약 등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 수확 후 관리시설 처리
〈인증기관〉 〈농관원〉	**사후관리**		○ 생산·출하 유통과정 조사 점검

3. GAP 인증기준

<table>
<tr>
<td>
</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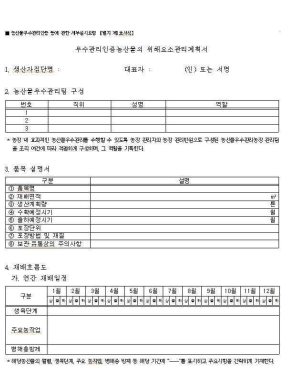 </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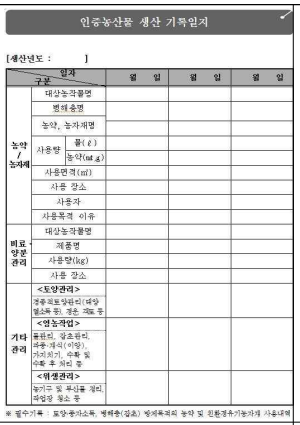
</td>
<td> </td>
</tr>
<tr>
<td>GAP기본교육(2시간) 이수
-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관리하기 위한 교육</td>
<td>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및 준수</td>
<td>영농일지 작성(생산정보 기록 · 1년 이상 보관)</td>
<td>농장 청결
- 환경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td>
</tr>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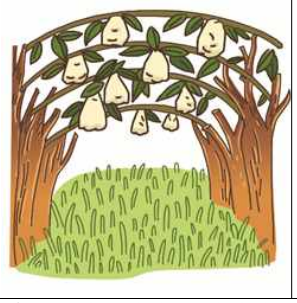 </td>
<td> </td>
<td colspan="2">

</td>
</tr>
<tr>
<td colspan="2">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농작물 재배
(토양중금속 검사)</td>
<td colspan="2">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농작물 재배
(수질검사)</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td>
<td>농약보관함 관리
(위험경고, 잠금장치)</td>
<td>화장실, 손세척 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td>
<td>위생적인 농산물
수확 작업</td>
</tr>
<tr>
<td> </td>
<td>
</td>
<td> </td>
<td>[생산년도 :]
연·월·일 | 품목 | 품종 | 판매처 (수확 후 관리시설) | 단량 (kg) | 수량 (대) | 비 고 (이력관리번호)</td>
</tr>
<tr>
<td>수확작업 용기 청결</td>
<td>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검사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td>
<td>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 작업 및 작업장 청결</td>
<td>이력추적관리
(출하내역 기록 관리)</td>
</tr>
</table>

4. 연도별 GAP인증 현황

(단위: 개, 건, 호, 톤)

연도	대상품목	인증품목	인증기관	관리시설	인증건수	농가수	생산계획량
2007	100	50	31	316	364	16,796	331,421
2008	105	59	38	417	1,053	25,158	419,842
2009	전품목	59	43	484	1,233	28,562	434,047
2010	전품목	86	45	565	1,459	34,421	509,931
2011	전품목	89	49	606	1,756	37,146	642,165
2012	전품목	110	51	718	1,969	40,215	691,228
2013	전품목	129	48	756	2,499	46,000	749,274
2014	전품목	136	44	681	2,689	46,323	795,886
2015	전품목	153	44	717	4,019	53,583	1,068,167
2016	전품목	174	46	802	6,059	74,973	1,592,052
2017	전품목	223	52	799	6,909	86,091	2,036,860
2018	전품목	239	55	800	7,781	86,407	2,372,844

참고 2 농식품 국가인증 제도 현황

번호	제도명칭 (도입시기)	인증표지	근거법령	주요내용
1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99~)	지리적표시 (PGI)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제도('06~)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약, 중금속, 위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한 농산물
3	안전관리인증(HACCP)제도 ('98~)	안전관리인증 HACCP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제5항	가축 사육에서 최종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4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 (유기농'01~) (유기식품'08~)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 유기농축산물: 합성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과 100% 유기사료를 먹여 사육한 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5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제도('01~)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최소화하여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16년 폐지
6	(친환경)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07~)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항생제·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이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육 조건, 질병관리 등의 인증기준을 지켜 사육한 축산물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12~)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쾌적한 일정수준 이상의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농장
8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93~)	전통식품 (TRADITIONAL FOOD)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전통제조 방식 등으로 만든 식품
9	식품명인 지정제도('94~)	식품명인 (GRAND MASTER)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우수한 우리 식품의 가공·조리 분야 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
10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86~)	KS 가공식품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에 따라 생산된 가공식품
11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12~, 시범사업) ('14, 고시제정)	저탄소 (LOW CARBON)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12	술 품질인증제도('11~)	품질인증 <"가"형> 품질인증 <"나"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막걸리(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나"형 100% 국내산 농산물 사용
13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제도('16~)	원재료 원산지 한국산 100% 농림축산식품부 / 원재료 원산지 한국산 95%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조 및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가공식품과 음식의 주원료가 동일 국가산 95% 이상일 경우 원산지 인증
14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16~)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

참고 3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 **설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적부 판단, 기준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 유통 차단**

잔류허용기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기준 **有**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 **無**	다음 순위에 따라 기준(잠정기준) 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잠정기준 폐지하고 일률기준(0.01ppm) 적용

* (**PLS 적용 예시**)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배추용 농약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 농약을 사용한 경우,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이 0.03ppm 검출 시 기존에는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됨

□ **(목적) 국산·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

□ **(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 식약처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공전으로 작성

□ **(시행시기)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1차: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16.12.31부터 기 시행)

* 견과종실류: 호두, 땅콩, 참깨, 커피원두 등, 열대과일류: 참다래, 망고 등

○ 2차: 전체 농산물 대상('19.1.1. 시행 예정)

□ **(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업진흥

1. 반려동물산업육성(재량, 신규)

< 균특회계 - 지역자율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반려동물산업육성	-	-	9,450	9,450	100

* 사업코드 : 20 - 39 - 1 - 100 - 101 - 3700 ~ 3740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동물복지정책팀장(김동현), 사무관(박종현, ☏ 044-201-237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반려동물 교육·문화·행동교정 전용운동 놀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 ○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개선을 통한 유기·유실동물 보호·분양 여건 개선 ○ 불법 매립·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반려동물 소유자 장례비 부담 완화, 지역 님비현상 극복 등 성숙한 동물장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사업기간	'19~계속, '09~'18(*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은 '18까지 농특으로 지원)
총사업비	- 억원 ('18년까지 투자액 84억원)
사업규모	반려동물지원센터 4개소, 유기동물보호센터 4개소, 공공동물장묘시설 2개소, 놀이시설 9개소
지원조건	반려동물지원센터(국비50%, 지방비50%),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일반: 국비30%, 지방비70%, 광역: 국비40%, 지방비60%),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국비30, 지방비70),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국비30, 지방비7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 2,100백만원

- 환경오염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비 2,10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2,100백만원(2년차사업비)(2개소×50억원×30%(국비)×70%(2년차)

* 회계 변경(농특('18)→균특('19))에 따른 신규 예산 2,100백만원 요구

** ('18) 900(2개소×50억원×30%(국비)×30%(1년차))

○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 2,280백만원

-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비 2,10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2,280백만원(일반)1,800(3개소×20억원×30%),(광역)480(1개소×40억원×40%×30%)](1년차)

* 회계 변경(농특('18)→균특('19))에 따른 신규 예산 2,280백만원 요구

** ('18) 2,920 [일반:1,800(3개소×20억원×30%), 광역:1,120(1개소×40억원×40%×70%)](2년차)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 : 4,800백만원

- 반려동물·반려인 교육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반려문화 개선과 함께 사회갈등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 4,80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4,800백만원(1년차) (4개소×80억원×50%×30%(1년차)

○ 반려동물 놀이시설지원 : 2,700백만원

- 반려동물 전용 운동·놀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시설지원 270백만원 예산 요구

▪ 산출내역 : ('19) 9개소×1억원×30%

구 분	'18예산	'19요구
□ 반려동물산업육성	0	9,450
▪ 공공동물 장묘시설 지원	0	2,100 (2개소×50억원×30%(보조)×70%(2년차))
▪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0	2,280 (일반 3개소×20억원×30%, 광역 1개소×40억원×40%(보조)×30%(1년차))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	0	4,800 (4개소×80억원×50%(보조)×30%(1년차))
▪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0	270 (9개소×1억원×30%)

□ 지원 필요성

○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반려견 및 반려인 교육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반려문화 개선과 함께 사회 갈등 완화 필요

-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는 지속 강화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불편함과 여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문화기반은 매우 미흡

  * '17년 지자체 동물놀이터 설치 현황 : 19개소

- 반려동물 교육·문화·행동교정, 놀이시설 등 설치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문화 개선 필요

  * '19년 지원센터 지원요구 지자체 : 5개 시도, 놀이시설 48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필요

- 유실·유기동물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지속 축소되고 있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지원 절실

  * 동물 유기·유실 발생건수(건) : ('14) 81,147 → ('15) 82,082 → ('16) 89,732

  * 동물보호센터 현황 : ('14) 368개소 → ('15) 307 → ('16) 281

-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확대에 따른 시설부담 완화 필요(유실·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구조·보호비용은 지자체가 부담 중)

  * ('14)10,439백만원/81,147마리 → ('15)9,745/82,082 → ('16)11,477/89,732

○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동물장묘업 25개 업체가 등록 영업중이며, 연간 **2만두**의 동물사체 처리를 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 확대 필요

  * 한해 동안 발생하는 반려동물 사체는 40만두 수준으로 추정

-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는 '17년도 약 2.1조원으로 추정되며, 가구당 지출규모가 점차 늘어 '20년도에는 5.8조원(농협경제연)으로 성장 전망되어 애견훈련·미용 등 관련직종 자격증 운영 필요

  * 미국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62%(반려동물 수 2.2억마리), 관련시장은 약73조원 규모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반려동물산업육성			9,450	9,450	100
▪ 공공동물장묘시설설치지원 (산출근거)			2,100 2개소×50억원×30%(국비)×70%(2년차)	21,00	100
▪ 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 (산출근거)			2,280 (일반)3개소×20억원×30% (광역)1개소×40억원×40%×30%(1년차)	2,280	100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 (산출근거)			4,800 4개소×80억원×50%×30%(1년차)	4,800	100
▪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산출근거)			2,700 9개소×1억원×30%	2,700	100
□ 비목(합계)			9,450	9,450	1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9,450	9,450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보호법 제4조>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정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 추진경위

- ‘14. 12월「동물 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발표·추진
- ‘16.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발표
- ‘16.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발표
- ‘17. 3월 「동물보호법」 개정 · 공포
- ‘18.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 ‘18. 3월 「동물보호법」시행령 개정 · 공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반려동물산업육성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가 보조 유사사례

▪ 환경부 : ‘04년부터「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전체 사업비의 50%(국고보조)를 지원

- 지원내역 :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및 운영 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액 : 500백만원, 국비 50%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재정지원) : 국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사업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 외국의 지원 사례

▪ 일본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06.6.2 시행)에 근거

- 법 제35조제6항에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국가의 수용시설, 도살처분 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2분의 1이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동물애호주간 행사, 가정동물관리시스템 지원, 법률개정에 따른 홍보 등

** 지원내역 : '06년 동물애호관리 추진비 107백만엔

▪ 인도 : 동물학대방지법 제2장 동물복지위원회

- 법 제9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 촉진
- 지원대상 :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비 및 교육·홍보비 지원
- 지원내역 : '06년 51,700천원

▪ 미국 : 동물 보호·복지 시책 지원('07년 19백만달러)

▪ 싱가포르 : SPCA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담당하며 보호소 시설은 정부로부터 저가의 임대료로 부지를 30년간 임대 설치, 보호소 운영비의 일부 보조 받음

- AVA(농식품검역부)는 SPCA, CWS와 공조하여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중성화수술 시행 중(AVA와 SPCA에서 중성화수술비 50%씩 지원)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수립(시군) → 사업계획검토·제출(시·도→농식품부) → 사업계획검토·평가(농식품부→기재부) → 사업반영 및 예산확정(기재부) → 사업시행(시군) → 준공(사업시행자)

○ **예산편성 절차**

- 시·도별 신청 예산한도 배정(4월, 기재부) →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각 부처에 예산 신청(5월초, 시·도) → 시·도별 신청예산 검토 및 기재부에 예산요구(6.5일, 담당부처) →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9월, 기재부) → 국회 예산안 심사 및 확정

참고 동물보호·복지 관련 주요 통계

□ (**반려동물**) 지속 증가로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돌입

* 개 662만마리, 고양이 233만마리 등 총 894만마리('17년 기준)

**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만가구)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
: ('15) 457/21.8% → ('17) 593/28.1%

*** 전국 반려견 놀이터 현황('17) : 19개소

○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반려동물이 **'26년에 1,320만 마리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17.10월)

구분		'15	'16	'17
동물등록 현황 누계(마리)		979,198	1,070,707	1,175,516
	신규등록 현황(천 마리)	91	92	105
	대행기관(개소)	3,602	3,450	3,649
유실·유기동물 현황(마리)		82,082	89,732	102,593
	인도율(%)	14.6	15.2	14.5
	분양율(%)	32.0	30.4	30.2
	안락사율(%)	20.0	19.9	20.2
동물보호센터 현황(개소)		307	281	292
	시군 직영(개소)	28	26	33
	시설위탁(개소)**	-	5	8
	위탁보호(개소)	279	250	251
	운영비용(백만원)	9,745	11,477	15,551

* 동물학대행위 고발/기소(건수) : ('13) 160/70 → ('14) 271/131 → ('15) 287/115

** 반려견 물림사고(건수, **한국소비자원**) : ('12) 560 → ('15) 1,448 → (**'16**) 1,019

- 반려견 물림사고(건수, **질병관리본부**) : ('12) 1,578 → ('15) 1,929 → (**'16**) 2,176

□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2조 3,322억에서 '27년 6조 5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KREI, '17.10월)

* 장묘 및 보호 서비스 산업, 사료 산업, 수의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산업, 보험 산업 등

○ (**기존**) 동물생산업 545개소, 판매업 3,991, 장묘업 26, 수입업 30('17년 기준)

○ (**신규 서비스업**, '18.3월~) 동물전시업 82개소(660)*, 위탁관리업 516(1,404), 미용업 896(2,511), 운송업 64(78) ('18.6.23 기준) *괄호 안 숫자는 '16년 실태 조사

2. 반려동물산업육성(재량, 신규)

< 균특회계 - 제주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반려동물산업육성	-	-	30	30	100

* 사업코드 : 20 - 39 - 1 - 100 - 101 - 3700 ~ 3740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동물복지정책팀장(김동현), 사무관(박종현, ☏ 044-201-0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반려동물 전용 운동·놀이공간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시설지원
사업기간	'19~계속, '09~'18(*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은 '18까지 농특으로 지원)
총사업비	- 억원 ('18년까지 투자액 -억원)
사업규모	반려동물 놀이시설 1개소
지원조건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국비30, 지방비70)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반려동물 놀이시설지원 : 30백만원

- 반려동물 전용 운동·놀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시설지원 30백만원 예산 요구

▪ 산출내역 : ('19) 1개소×1억원×30%

구 분	'18예산	'19요구
□ 반려동물산업육성	0	30
▪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0	30 (1개소×1억원×30%)

□ 지원 필요성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반려동물산업육성			30	30	100
▪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산출근거)			30 1개소×1억원×30%	30	100
□ 비목(합계)			30	30	1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0	30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보호법 제4조>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정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 추진경위

- ‘14. 12월「동물 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발표·추진
- ‘16.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발표
- ‘16.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발표
- ‘17. 3월 「동물보호법」 개정 · 공포
- ‘18.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 ‘18. 3월 「동물보호법」시행령 개정 · 공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반려동물산업육성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가 보조 유사사례

▪ 환경부 : ‘04년부터「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전체 사업비의 50%(국고보조)를 지원

- 지원내역 :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및 운영 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액 : 500백만원, 국비 50%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재정지원) : 국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사업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 외국의 지원 사례

▪ 일본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06.6.2 시행)에 근거

- 법 제35조제6항에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국가의 수용시설, 도살처분 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2분의 1이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동물애호주간 행사, 가정동물관리시스템 지원, 법률개정에 따른 홍보 등

** 지원내역 : '06년 동물애호관리 추진비 107백만엔

▪ 인도 : 동물학대방지법 제2장 동물복지위원회

- 법 제9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 촉진
- 지원대상 :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비 및 교육·홍보비 지원
- 지원내역 : '06년 51,700천원

▪ 미국 : 동물 보호·복지 시책 지원('07년 19백만달러)

▪ 싱가포르 : SPCA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담당하며 보호소 시설은 정부로부터 저가의 임대료로 부지를 30년간 임대 설치, 보호소 운영비의 일부 보조 받음

- AVA(농식품검역부)는 SPCA, CWS와 공조하여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중성화 수술 시행 중(AVA와 SPCA에서 중성화수술비 50%씩 지원)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수립(시군) → 사업계획검토·제출(시·도→농식품부) → 사업계획검토·평가(농식품부→기재부) → 사업반영 및 예산확정(기재부) → 사업시행(시군) → 준공(사업시행자)

○ **예산편성 절차**

- 시·도별 신청 예산한도 배정(4월, 기재부) →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각 부처에 예산 신청(5월초, 시·도) → 시·도별 신청예산 검토 및 기재부에 예산요구(6.5일, 담당부처) →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9월, 기재부) → 국회 예산안 심사 및 확정

참고 **동물보호·복지 관련 주요 통계**

□ (**반려동물**) 지속 증가로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돌입

* 개 662만마리, 고양이 233만마리 등 총 894만마리('17년 기준)

**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만가구)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 : ('15) 457/21.8% → ('17) 593/28.1%

*** 전국 반려견 놀이터 현황('17) : 19개소

○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반려동물이 **'26년에 1,320만 마리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17.10월)

구분		'15	'16	'17
동물등록 현황 누계(마리)		979,198	1,070,707	1,175,516
	신규등록 현황(천 마리)	91	92	105
	대행기관(개소)	3,602	3,450	3,649
유실·유기동물 현황(마리)		82,082	89,732	102,593
	인도율(%)	14.6	15.2	14.5
	분양율(%)	32.0	30.4	30.2
	안락사율(%)	20.0	19.9	20.2
동물보호센터 현황(개소)		307	281	292
	시군 직영(개소)	28	26	33
	시설위탁(개소)**	-	5	8
	위탁보호(개소)	279	250	251
	운영비용(백만원)	9,745	11,477	15,551

* 동물학대행위 고발/기소(건수) : ('13) 160/70 → ('14) 271/131 → ('15) 287/115

** 반려견 물림사고(건수, **한국소비자원**) : ('12) 560 → ('15) 1,448 → (**'16**) 1,019

- 반려견 물림사고(건수, **질병관리본부**) : ('12) 1,578 → ('15) 1,929 → (**'16**) 2,176

□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2조 3,322억에서 '27년 6조 5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KREI, '17.10월)

* 장묘 및 보호 서비스 산업, 사료 산업, 수의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산업, 보험 산업 등

○ (**기존**) 동물생산업 545개소, 판매업 3,991, 장묘업 26, 수입업 30('17년 기준)

○ (**신규 서비스업**, '18.3월~) 동물전시업 82개소(660)*, 위탁관리업 516(1,404), 미용업 896(2,511), 운송업 64(78) ('18.6.23 기준) *괄호 안 숫자는 '16년 실태 조사

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재량, 계속)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419	7,364	4,109	△3,255	△44.2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700 - 3741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동물복지정책팀장(김동현), 사무관(김철기, ☏ 044-201-23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추진 등을 통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조기 정착

○ 동물보호센터 구조(포획) 및 질병검진·백신 등 기초 치료비용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구조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

□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보호법 제4조>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정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② 추진경위

- '14. 12월「동물 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발표·추진

- ‘16.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발표
- ‘16.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발표
- ‘17. 3월 「동물보호법」 개정 · 공포
- ‘18.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 ‘18. 3월 「동물보호법」시행령 개정 · 공포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동물보호 · 복지 교육·홍보사업, 유기 · 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기간	‘08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교육·홍보(1,813백만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2종, 1,156백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38천마리, 1,140백만원)
지원조건	· 교육·홍보사업: 국비100%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지원 - 입양비 지원: 국비20%, 지방비30%, 자부담50% - 구조·보호비 지원: 국비20%, 지방비80%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국비20%, 지방비8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교육·홍보> (’18) 1,105 → (’19) 1,813**

▪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 (‘18) 480 → (’19) 1,180

- 홍보매체 추가에 따른 전년대비 700백만원 예산 증액 요구

* 산출근거 : (‘18) 480백만원(공익광고 제작, 아파트 모니터 및 온라인 홍보) → (‘19) 1,180(공익광고 제작·송출, 라디오, 옥외광고, 온라인 홍보)

▪ 동물복지현장 체험 방문단 운영 : (’18) 50 → (’19) 50

* 산출근거 : (‘18) 10회×5백만원 → (‘19) 전년 동일

▪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 (’18) 295 → (’19) 295

* 산출근거 : (‘18) 초등학생 대상 1,400회 → (‘19) 전년 동일

▪ 영업자・동물보호명예감시원 온라인교육 : (’18) 45 → (’19) 45

* 산출근거 : (‘18) 45백만원(온라인 교육 2개 운영) → (‘19) 전년 동일

▪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등 : ('18) 45 → ('19) 45

* 산출근거 : ('18) 45백만원(지자체공무원·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실험윤리위원회 워크숍) → ('19) 전년 동일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운영 : ('18) 90 → ('19) 98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8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근거 : ('18) 90백만원(인건비 2명 포함) → ('19) 98

▪ 동물보호문화축제 : ('18) 100 → ('19) 100

* 산출근거 : ('18) 1회×100백만원 → ('19) 전년 동일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 ('18) 756 → ('19) 1,156**

- 구조·보호비 추가에 따른 증액 요구

* 산출근거 : ('18) 입양지원 756(27천마리×20만원×20%×70%(참여율)) → ('19) 입양지원: 전년 동일, 구조·보호비: 400(30,774마리×64,990원×20%(보조))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8) 780 → ('19) 1,140**

- 길고양이 마리 수 증가('15: 26,306마리→'17: 38,059)에 따른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18) 780(26천마리×15만원×20%) → ('19) 1,140(38천마리×15만원×20%)

(단위 :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7,364	4,109
▪ 교육·홍보	1,105 (홍보 530, 교육 340, 상담센터운영 90, 동물보호문화축제 100,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등 45)	1,813 (홍보 1,230, 교육 340, 상담센터운영 98, 동물보호문화축제 100,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등 45)
▪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개선 지원	756 (27천마리×20만원×20%(보조)×70%(참여율))	1,156 (입양지원 27천마리×20만원×20%×70%(참여율), 구조·보조비 30,774마리×64,990원×20%)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780 (26천마리×15만원×20%)	1,140 (38천마리×15만원×20%)
▪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2,920 (일반 3개소×20억원×30%, 광역 1개소×40억원×40%(보조)×70%(2년차))	-
▪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900 (2개소×50억원×30%(보조)×30%(1년차))	-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703 (1식×703백만원×100%)	-
▪ 동물복지 실태조사	200 (1식×200백만원×100%)	-

□ 지원 필요성

○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 · 홍보)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동물보호·복지 정책·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추진

- 동물등록제 홍보, 동물복지 상담센터 운영,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복지 교육, 동물복지인증제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등

○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기동물 발생현황(천두) : ('13) 97 → ('14) 81 → ('15) 82 → ('16) 89 → ('17) 102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2,419	2,641	4,109	△3,255	△44.2
▪ 교육·홍보 내역사업 (산출근거)		1,105 (홍보 530, 교육 340, 상담센터운영 90, 동물보호문화축제 100,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등 45)	1,813 (홍보 1,230, 교육 340, 상담센터운영 98, 동물보호문화축제 100,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등 45)	708	64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산출근거)		756 (27천마리×20만원×20%(보조)×70%(참여율))	1,156 (입양지원 27천마리×20만원×20%×70%(참여율), 구조·보조비 30,774마리×64,990원×20%)	400	53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산출근거)		780 (26천마리×15만원×20%)	1,140 (38천마리×15만원×20%)	360	46
□ 비목(합계)		2,641	4,109		
○ 민간경상보조(320-01)		1,105	1,813	708	64
○ 자제단체경상보조(330-01)		1,536	2,296	760	4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① 법령상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보호법 제4조>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정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 추진경위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에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증가
- 반려동물 문화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미 성숙 등에 따른 동물학대행위 및 유기동물 급증*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

  * 유기동물 발생현황(천두) : ('13) 97 → ('14) 81→ ('15) 82 → ('16) 89 → ('17) 102
- '06.3월 동물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동물보호과가 신설
- '07.11월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계가 구성・운영됨
- '08.1월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및 동법하위법령 제정・시행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을 '08년 신규사업으로 반영
- '08.7월 제1차「동물 보호・복지 5개년 종합대책」수립・추진
- '12.2월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법」전면 개정 및 동법하위법령 제정・시행
- '13.1월 전국의 3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시행

  * '14.7.1일부터 동물등록제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
- '14.12월 제2차「동물 보호・복지 5개년 종합대책」수립·추진
- '16.1월 동물장묘업 등록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 고시

- ‘16.3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고시
- ‘16.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발표
- ‘16.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 발표
- ‘17.3월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신규서비스업 4종(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신설, 신고포상금제 등 동물보호법 개정
- ‘17.7월 반려동물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18.3월 맹견의 정의 신설,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장치 의무화 근거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교육·홍보(1,8130백만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2종, 1,156백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38천마리, 1,14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교육·홍보대행기관 및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조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보조	보조 2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5	11	15	17	24	74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 **(15)**	- (-)	- (-)	15 **(15)**	15 **(12)**	- (3)	- (-)
’16년	17 **(17)**	- (-)	- (-)	17 **(17)**	15 **(9)**	- (5)	2 (3)
’17년	24 **(24)**	- (5)	- (-)	24 **(29)**	24 **(12)**	- (12)	- (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및 동물복지 운송차량 실집행 제고 필요('15결산 예결위, '17예산 예정처)
- 동물복지 운송차량 수요확보 관리 철저('16예산 예결위)
-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시 수용 가능 두수 등 지역별 편차 고려 필요('15결산 예정처)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성과지표를 동물복지 정책 평가에 맞게 설정하고 동물보호 전담인력 확충 등 사업체계 보완 필요('15결산 예정처)
-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16결산 예정처)
- 재정융자사업의 집행실적 검토('16결산 상임위, 예결위)
-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 관리 및 사업기간 단년도에서 다년도 조정하는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필요('17결산 상임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계획을 조기 수립('16.10월)하여 수요 조사 및 집행 추진
- '16년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시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17.2월 방역관리과 내 '동물복지팀', '18.6월 과 단위 '동물복지정책팀' 신설로 동물보호 업무 담당 인력 확충
-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등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불성실한 지자체는 향후 일정기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사업 지원 일체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 검토
- 융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제고 노력
- 사업기간을 단년도에서 다년도로 변경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가 보조 유사사례

▪ 환경부 : '04년부터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전체 사업비의 50%(국고보조)를 지원

- 지원내역 :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및 운영 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액 : 500백만원, 국비 50%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재정지원) : 국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사업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 외국의 지원 사례

▪ 일본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06.6.2 시행)에 근거

- 법 제35조제6항에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국가의 수용시설, 도살처분 시설 또는 소각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2분의 1이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동물애호주간 행사, 가정동물관리시스템 지원, 법률개정에 따른 홍보 등

  ** 지원내역 : '06년 동물애호관리 추진비 107백만엔

▪ 인도 : 동물학대방지법 제2장 동물복지위원회

- 법 제9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 촉진
- 지원대상 :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비 및 교육·홍보비 지원
- 지원내역 : '06년 51,700천원

▪ 미국 : 동물 보호·복지 시책 지원('07년 19백만달러)

▪ 대만 : 동물 보호·복지 시책 지원('06년 24억원)

(5) 사업추진절차

<교육・홍보>

- 사업추진기본계획수립(농식품부) →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농정원 등 단체・기관) →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자금배정(농식품부) → 사업추진, 자금집행・정산보고(단체・기관 등)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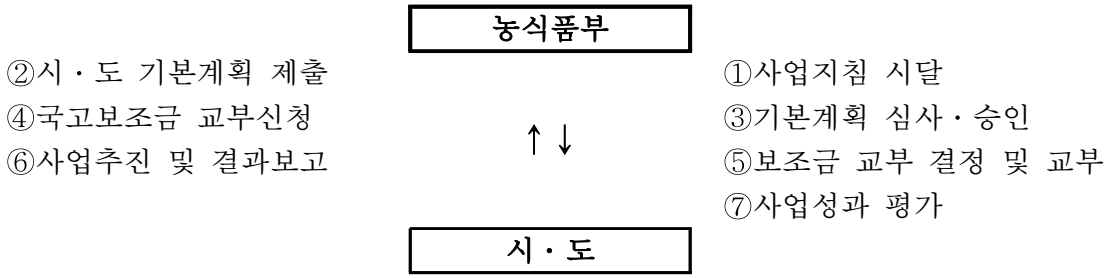

가 축 방 역 및
축 산 물 안 전 관 리

1. 살처분보상금 사업(의무,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 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살처분보상금	245,279	40,000	60,000	20,000	5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900 - 3940

* 담당자 : 방역정책국장(오순민), 구제역방역과장(김대균), 서기관(이제용, ☏ 044-201-254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 BSE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식품안전의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골절 등 명백한 부상을 제외한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도살·처리를 금지하고 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
사업기간	'82～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국비 80%, 지방비 20%(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은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가축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을 농가에 지원

○ 살처분보상금 지원 :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00백만원

▪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확보를 위해 '18년 대비 50% 증액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살처분보상금	**40,000백만원**	**60,000백만원**
▪ 살처분보상금	○ 살처분보상금(39,000백만원) -브루셀라병 : 12,280백만원 (=4.3천두×4.5백만원×64%) -결핵병 : 25,200백만원 (=7천두×4.5백만원×80%) -돼지열병 : 320백만원 (=2.5천두×0.2백만원×64%) -기타 : 1,200백만원(3천두×0.5백만원×80%) ○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1,000백만원) -한우 : 350백만원(540두×652천원) -육우 : 10백만원(41두×244천원) -젖소 : 640백만원(2,600두×246천원)	○ 살처분보상금(59,000백만원) -브루셀라병 : 21,280백만원 (=7.4천두×4.5백만원×64%) -결핵병 : 36,200백만원 (=10천두×4.5백만원×80%) -돼지열병 : 320백만원 (=2.5천두×0.2백만원×64%) -기타 : 1,200백만원(3천두×0.5백만원×80%) ○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1,000백만원) -한우 : 350백만원(540두×652천원) -육우 : 10백만원(41두×244천원) -젖소 : 640백만원(2,600두×246천원)

□ 지원 필요성

○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보상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살처분 등의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수행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245,279	40,000	60,000	20,000	50
▪ 살처분보상금 (산출근거)	245,279	○ 살처분보상금 (39,000백만원) -브루셀라병: 12,280 백만원(=4.3천두 ×4.5백만원×64%) -결핵병: 25,200백만원 (=7천두×4.5백만원×80%) -돼지열병: 320백만원 (2.5천두×0.2백만원×64%) -기타: 1,200백만원 (3천두×0.5백만원×80%) ○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 (1,000백만원) -한우: 350백만원 (540두×652천원) -육우: 10백만원 (41두×244천원) -젖소: 640백만원 (2,600두×246천원)	○ 살처분보상금 (59,000백만원) -브루셀라병: 21,280 백만원(=7.4천두 ×4.5백만원×64%) -결핵병: 36,200백만원 (=10천두×4.5백만원×80%) -돼지열병: 320백만원 (2.5천두×0.2백만원×64%) -기타: 1,200백만원 (3천두×0.5백만원×80%) ○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 (1,000백만원) -한우: 350백만원 (540두×652천원) -육우: 10백만원 (41두×244천원) -젖소: 640백만원 (2,600두×246천원)	20,000	50
□ 비목(합계)	245,279	40,000	60,000	20,000	50
○ 지자체경상보조(330-01)	245,279	40,000	60,000	20,000	5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살처분보상금은 1982년부터 매년 소요예산 지원
- 기립불능소 폐기보상금 지급은 2009.11.9일부터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살처분보상금	400	600	600	600	400	4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농업자금 이차보전금으로부터 35,600백만원을 이용

○ (2016년)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16년 재해대책비를 100억원 이용

○ (2017년)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예비비 1,687억원, 재해대책비에서 250억원, FTA기금지원에서 116억원을 이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00 (600)	- ( )	356 ( )	956 (956)	956 (956)	- ( )	- ( )
'16년	600 (600)	- ( )	100 ( )	700 (700)	700 (700)	- ( )	- ( )
'17년	400 (400)	-	2,053 *예비비1,687억 ( )	2,453 (2,453)	2,453 (2,453)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시·군·구) 보상금 평가반의 보상금 산정 평가액을 농가에 통보

○ (농가)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신청서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구) 보상금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군·구)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2. 시도가축방역(의무,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 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시도가축방역	132,981	132,603	130,891	△1,712	△1.3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900 - 3940
* 담당자 : 방역정책국장(오순민), 방역정책과장(김상경), 사무관(박경일, ☏ 044-201-25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조기 근절을 위한 예방약, 검진·병성감정 및 장비 등 지원 추진
사업기간	'4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① 지원형태 : 민간·지자체 보조 ② 지원조건 : 국비 22~97%, 지방비 3~78%, 자부담 0~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대한수의사회,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시·도가축방역)** ('18) 5,648백만원 → ('19) 6,398 (증750)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방역비, 공중방역 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 5,548백만원* 및 Asia1형 구제역 백신 완제품 비축 예산 850백만원 반영

* 긴급방역비 2,700백만원,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55백만원, 개업수의사 보수교육 등 2,793백만원

○ **(시·도가축방역-지자체)** ('18) 126,955 → ('19) 124,493(감2,462)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 사업(예방백신·병성감정·모니터링 검사 등 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 124,493백만원 반영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등 지원 113,314백만원, 방역장비 등 지원 11,179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시도가축방역	**132,603백만원**	**130,891백만원**
▪ 긴급방역비 등	긴급방역비 등 : 2,700백만원 ○ 긴급방역비 : 2,700백만원	긴급방역비 등 : 3,550백만원 ○ 긴급방역비 : 2,700백만원 ○ 구제역 백신(Asia1형) 비축비 : 850백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공중방역 수의사 교육 : 55백만원 ○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비 : 150명×310,000원×100%=46,500천원 ○ 공중방역 수의사 임관식 여비 : 150명×53,333원×100%=8,000천원	공중방역 수의사 교육 : 55백만원 ○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비 : 150명×310,000원×100%=46,500천원 ○ 공중방역 수의사 임관식 여비 : 150명×53,333원×100%=8,000천원
▪ 개업 수의사 보수 교육	개업 수의사 보수교육 등 : 2,893백만원 ○ 공·개업 수의사 보수교육비 : 4,000명×20,000원×50%=40,000천원 ○ 공중방역수의사 담당 공무원 워크샵 : 180명×100,000원×100%=18,000천원 ○ 산업동물 임상 인터넷교육시스템 운영 : 100,000천원×50%=50,000천원 ○ 수의사처방제 관리시스템 운영 : 300,000천원×100%=300,000천원 ○ 수의학교육 인증 지원 : 100,000천원×100%=100,000천원 ○ 말 예방백신 접종 : 48천두×39.8천원×100%=1,910,000천원 ○ 지역축협 소독차량 구입 지원 : 15대×40,000천원×50%=300,000천원 ○ 수의과대학생 임상교육비 :175,000천원	개업 수의사 보수교육 등 : 2,793백만원 ○ 공·개업 수의사 보수교육비 : 4,000명×20,000원×50%=40,000천원 ○ 공중방역수의사 담당 공무원 워크샵 : 180명×100,000원×100%=18,000천원 ○ 산업동물 임상 인터넷교육시스템 운영 : 100,000천원×50%=50,000천원 ○ 수의사처방제 관리시스템 운영 : 300,000천원×100%=300,000천원 ○ 수의학교육 인증 지원 : 100,000천원×100%=100,000천원 ○ 말 예방백신 접종 : 48천두×39.8천원×100%=1,910,000천원 ○ 지역축협 소독차량 구입 지원 : 10대×40,000천원×50%=200,000천원**(감100)** ○ 수의과대학생 임상교육비 :175,000천원

▪ 예방백신 등 지원	예방백신 등 지원 : 114,776백만원 ○ 예방약품 등 구입비 :46,849,020천원 ○ 구제역 예방백신 소요액(돼지) : 24,557,000천원 ○ 조류인플루엔자 검진비용 : 2,913,000천원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 1,650,000천원 - 컨설팅 : 300호×10,000천원×30% ≒900,000천원 - 모니터링 검사 : 300호×5,000천원×50% ≒750,000천원 ○ 가금농가 질병관리 : 2,500,000천원 - 컨설팅 : 500호×10,000천원×30%=1,500,000천원 - 모니터링 검사 : 500호×4,000천원×50%=1,000,000천원 ○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 : 1,331.2천두×10천원×30%=3,993,600천원 ○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비용 : 19개소×30,000,000원×50%=285,000천원 ○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 241명×10,000천원×50%=1,205,000천원 ○ 방역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 103,400대×9,900원×12월×25%=3,071,000천원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관리중) : 1,250개소×5,000천원×40%=2,500,000천원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관리해제) : 940개소×5,000천원×40%=18,800,000천원 ○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 2,400천두×5천원×50%=6,000,000천원 ○ 가축방역 가상훈련 : 20개소×15,000천원×50%=150,000천원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42개소×18,000천원×40%=302,400천원	예방백신 등 지원 : 113,314백만원 ○ 예방약품 등 구입비 : 46,849,020천원 ○ 구제역 예방백신 소요액(돼지) : 29,557,000천원 **(증5,000백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검진비용 : 3,216,000천원(증303백만원)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 1,650,000천원 - 컨설팅 : 300호×10,000천원×30% ≒900,000천원 - 모니터링 검사 : 300호×5,000천원×50% ≒750,000천원 ○ 가금농가 질병관리 : 2,500,000천원 - 컨설팅 : 500호×10,000천원×30%=1,500,000천원 - 모니터링 검사 : 500호×4,000천원×50%=1,000,000천원 ○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 : 1,331.2천두×10천원×30%=3,993,600천원 ○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비용 : 19개소×30,000,000원×50%=285,000천원 ○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 241명×10,000천원×50%=1,205,000천원 ○ 방역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 106,900대×9,900원×12월×25%=3,175,000천원 **(증104백만원)**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관리중) : 1,250개소×5,000천원×40%=2,500,000천원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관리해제) : 543개소×5,000천원×40%=10,853,000천원 **(감7,947백만원)** ○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 2,400천두×5천원×50%=6,000,000천원 ○ 가축방역 가상훈련 : 20개소×15,000천원×50%=150,000천원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00개소×18,000천원×40%=720,000천원**(증418백만원)** ○ 축산차량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단말기3만대×44천원×50%=660,000천원**(순증)**
▪ 방역장비 등 지원	방역장비 등 지원 : 12,179백만원 ○ 방역차량 : 13대×30,000천원×50%=195,000천원 ○ 소독차량 : 9대×40,000천원×50%=180,000천원 ○ 검사장비 : 108대×50,000천원×50%=2,700,000천원 ○ 소독장비 및 설비 : 10개×10,000천원×50%=50,000천원 ○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지원 20개소×586,400천원×50%=5,864,000천원 ○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 : 1개소×1,800,000천원×30%=540,000천원 ○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 10개소×100,000천원×25%=250,000천원 ○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2개소×1,000,000천원×50%=1,000,000천원 ○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1개소×400,000천원×50%=200,000천원 ○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20대×200,000천원×30%=1,200,000천원	방역장비 등 지원 : 11,179백만원 ○ 방역차량 : 13대×30,000천원×50%=195,000천원 ○ 소독차량 : 9대×40,000천원×50%=180,000천원 ○ 검사장비 : 108대×50,000천원×50%=2,700,000천원 ○ 소독장비 및 설비 : 10개×10,000천원×50%=50,000천원 ○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지원 20개소×586,400천원×50%=5,864,000천원 ○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 : 1개소×1,800,000천원×30%=540,000천원 ○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 10개소×100,000천원×25%=250,000천원 ○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1개소×1,000,000천원×50%=500,000천원**(감500)** ○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1개소×400,000천원×50%=200,000천원 ○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12대×200,000천원×30% ≒700,000천원(**감500**)

□ 지원 필요성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보다는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

- 가축방역사업은 축산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백신, 기생충 구제, 혈청검사·병성감정 등을 지원
- 가축전염병 판정에 사용되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노후된 검사장비 및 내구연수가 경과한 소독·방역차량 교체 등

○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중단**할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 우려**

- 따라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인수 공통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전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반영 필요<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시도가축방역**	**134,236**	**132,603**	**130,891**	**△1,712**	**△1.3**
○시도가축방역	12,911	5,648	6,398	750	13.3
▪긴급방역비 등	9,500	2,700	3,550	850	23.9
▪공중방역수의사교육	55	55	55	0	0
▪개업수의사보수교육 등	3,356	2,893	2,793	△100	△3.5
○시도가축방역(지자체)	121,325	126,955	124,493	**△2,462**	**△0.02**
▪예방백신 등 지원	112,226	114,776	113,314	△1,462	△1.3
▪검사장비 등 지원	9,099	12,179	11,179	△1,000	△8.2
□ **비목**(합계)	**134,236**	**132,603**	**130,891**	**△1,712**	**△1.3**
○일반수용비(210-01)	6	6	6	0	0
○재료비(210-11)	9,500	2,700	3,550	850	23.9
○여비(220-01)	49	49	49	0	0
○민간경상보조(320-01)	3,056	2,593	2,593	0	0
○민간자본보조(320-07)	300	300	200	△100	△33.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12,226	114,776	113,314	△1,462	△1.3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9,099	12,179	11,179	△1,000	△8.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7조·제20조·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945년부터 시·도가축방역사업 소요예산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 업 명	'13	'14	'15	'16	'17	'18
○시도가축방역	783	770	1,038	1,126	1,078	1,3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38 (1,038)	( )	268 (268)	1,306 (1,306)	1,306 (1,306)	( )	0.2 (0.2)
'16년	1,126 (1,126)	( )	0 (0)	1,126 (1,126)	1,124 (1,124)	( )	2 (2)
'17년	1,142 **(1,142)**	0.25 (0.25)	4 (4)	1,342 (1,330)	1,330 **(1,330)**		12 (12)

※ '17년 이·전용 예산 중 예비비 19,582백만원 포함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연도	구분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7	상임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개선하여 불용액 최소화('17년 결산)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독려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수립·통보(농림축산식품부) → 세부계획 수립·추진(지자체, 대한수의사회 등) →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지급 → 결과보고(지자체, 대한수의사회 등→농림축산식품부)

3.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신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개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	-	-	13,700	13,700	신규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900 - 3940
* 담당자 : 방역정책국장(오순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이기중), 사무관(김승래, ☏ 044-201-256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확산 방지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지원
사업기간	'1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국비 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군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가축질병 발생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700백만원

· 산출내역 : 27,400백만원 × 지자체 보조 50%

* 최근 5년간 연평균 국비 지원 평균금액 : 13,700백만원

* 아전용 비용(백만원) : ('13) 0 → ('14) 25,000 → ('15) 23,938 → ('16) 0 → ('17) 19,607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사업	**-백만원**	**13,700백만원**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사업	-	13,700

□ 지원 필요성

○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통제초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가축질병은 사회재난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의 소요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이 타당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사업**	**-**	**-**	**13,700**	**13,700**	**신규**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사업	-	**-** (0개×0백만×00%)	**13,700** (27,400백만×50%)	**13,700**	
□ **비목**(합계)	**-**	**-**	**13,700**	**13,70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13,700**	**13,7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

○ 추진경위

- 가전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에 따라 지자체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토록 정하고 있으나 그 간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소요비용 지원
- 통제초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예비비·추경 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9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신규사업)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예산 소요액 제출(시・도 → 농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농식품부) → 예산배정(시・도) →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시・도) → 사업실적 보고(시・도 → 농식품부)

4.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630	720	3,020	2,300	319.4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900 - 3940

* 담당자 : 방역정책국장(오순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이기중), 사무관(김돈환, ☏ 044-201-2552)
종자생명산업과장(최근진), 사무관(박치형, ☏ 044-201-247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시장개척, GMP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GMP(Good-Manufacturing-Practice) : 제조시설 구조·설비부터 원자재 구입·제조·포장·출하까지 모든 생산 공정의 전반에 걸친 우수 관리 구축 시스템

○ 식물백신* 생산 기술 지원을 통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 선점 필요

* 식물백신 : 식물체의 단백질 발현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예방용 백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해외수출시장개척, 교육·홍보 사업, GMP 컨설팅 지원 및 식물백신 기업지원 시설 건립
사업기간	'13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①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② 지원조건 : 민간보조 70~100%, 지자체보조 40~50% - 해외 수출시장개척 지원(보조) : 70~100%(자부담 30%) - 교육 및 홍보(보조) : 국비 100% - GMP 컨설팅사업 : 국비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 식물백신 기업지원 시설 건립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동물약품협회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3,020백만원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3,020백만원**

①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민간보조)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600백만원**

- 해외전시회 한국관 단체참가 : 308
  * 산출내역 : 10백만원 x 70%(보조) x 44개 기업
-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 98
  * 산출내역 : 10백만원 x 70%(보조) x 14개 기업
-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 108.6
  * 산출내역 : 108.6백만원 x 100%(보조) x 1회
-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등 해외 마케팅비 : 85.4
  * 산출내역 : 122백만원 x 70%(보조)

② **교육 · 홍보**(민간보조) : **20백만원**

- 국제 동물약품 심포지움 등 : 20
  * 산출내역 : 20백만원 x 1회 x 100%

③ **GMP 컨설팅 지원**(지자체 보조) : **100백만원**

- GMP 컨설팅 지원 100백만원
  * 산출내역 : 50백만원 x 40%(국비 보조) x 5개업체
    보조율(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④ **식물백신기업 지원시설건립**(지자체 보조) : **2,300백만원**

* 1개소×11,500백만×50%×1년차 4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720백만원**	**3,020백만원**
▪ 수출시장 개척 등	□ **600백만원** · 308(해외전시회 참가 10백만원×44개소×70%) · 98(시장개척단 파견 10×14개소×70%) · 108.6(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108.6×100%) · 85.4(해외수출마케팅 122×70%)	□ **600백만원** · 308(해외전시회 참가 10백만원×44개소×70%) · 98(시장개척단 파견 10×14개소×70%) · 108.6(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108.6×100%) · 85.4(해외수출마케팅 122×70%)
▪ 교육 및 홍보	□ **20백만원** · 20(동물약품국제협력포럼 20백만원 × 1회 × 100%)	□ **20백만원** · 20(동물약품국제협력포럼 20백만원×1회×100%)
▪ GMP 컨설팅 지원	□ **100백만원** · 100(GMP컨설팅 지원 50백만원×40%(국비보조)× 5개업체	□ **100백만원** · 100(GMP컨설팅 지원 50백만원×40%(국비보조)× 5개업체
▪ 식물백신기업 지원시설건립	-	□ **2,300백만원** · 1개소×11,500백만×50%×1년차 40%

□ 지원 필요성

○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가축사육수 증가와 반려동물 시장 확대, 인수공통전염병 등 공중보건과 직결된 기간산업으로 축산분야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유망산업임

○ 국내 산업의 한계 극복, 수출확대 등 글로벌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 농식품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해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16～’20)”을 수립(’16.4.18), 추진중임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파견·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확대 등 수출활성화
- 국제수준의 GMP 기술 등 컨설팅을 통한 수출 진흥 도모
- 식물백신 생산 기술 지원을 통한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 선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630	720	3,020	2,300	319.4
▪ 해외수출시장 개척	600 (해외전시회참가 44개소) (시장개척단파견 6개소) (국가간네트워크 구축 2개국 4명) (해외마케팅 13개업체)	600 (해외전시회 참가 44개소×10백만×70%) (시장개척단 파견 14개소×10백만×70%)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1회×108.6백만×100%) (해외마케팅 12개소× 10백만×70%)	600 (해외전시회 참가 44개소×10백만 ×70%) (시장개척단 파견 14개소×10백만×70%)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1회×108.6백만×100%) (해외마케팅 12개소× 10백만×70%)	-	-
▪ 교육 및 홍보	30 (1회×300백만×100%)	20 (1회×20백만×100%)	20 (1회×20백만×100%)	-	-
▪ GMP 컨설팅	-	100 (5개소×50백만×40%)	100 (5개소×50백만×40%)	-	-
▪ 식물백신기업 지원시설건립	-	-	2,300 (1개소×11,500백만×50% ×1년차 40%)	2,300	순증
□ 비목(합계)	630	720	3,020	2,300	319.4
○ 민간경상보조(320-01)	630	620	620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	100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300	2,3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우수동물의약품 생산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사업 소요예산 지원
- '식물백신 기업지원 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확정('18.7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300	500	700	600	630	7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 해당없음

○ **'16년 :**

- 불용 :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17년 :** 해당없음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00 (700)	- (-)	- (-)	700 (700)	700 (700)	- (-)	- (-)
'16년	600 (600)	- (-)	- (-)	600 (600)	582 (582)	- (-)	18 (18)
'17년	630 (630)	- (-)	- (-)	630 (630)	630 (63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	지자체 등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마련		보조금 관리 주관, 예산 집행, 성과점검 등		생산시설 및 수출시장 개척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

참고 1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비전 및 목표

비전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목표 2020년까지 국내생산 1조원, 수출 5억불 달성, 수출비중(38% → 54)

	2015	2017	2020
·국내생산	6,454억원	7,800	10,600
·수출액	2,433억원 (214백만불)	3,400 (300)	5,700 (500)
·수출비중	38%	44%	54%
·10억원 이상 수출품목	15개	24	40
·수출업체수	67개사	75	90
·제조업체 일자리수	3,070명	3,710	5,050

추진 전략

1 동물용 의약품등 관리제도 선진화

1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 구축
2 제조·수입 및 유통관리 체계개선 3 인허가 및 품질관리 시스템 선진화

2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1 제조(연구)시설 등 산업기반 지원 2 제조·품질관리 기술지원
3 개발·허가단계 민관협력강화 4 민간검사기관 운영 활성화

3 수출초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1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지원 및 국가간 협력 강화
2 유관기관 수출인프라 연계 및 수출등록 지원 강화

4 글로벌 제품개발 등 전략적 R&D 지원

1 수출유망 및 미래주도형 제품개발 등 전략적 지원
2 정부기관 및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활성화, 해외특허 지원

5 동물약품 관리 및 수출지원 기능강화

1 관련제도 마련을 통한 관리 및 수출지원 강화
2 동물용 의약품등 업무체계 개편

참고 2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사업

□ 추진 배경

○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신규 백신생산 시스템** 도입 시급

- 식물을 이용한 백신생산 방식은 유정란, 동물세포 등을 이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 우수

○ '18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설계비 2.5억이 반영되고, **기재부는 이를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

- 국회는 식물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백신을 제조하는 연구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추진 필요성 제기

* (농해수위) 김현권, 이만희, 이완영 의원, (예결위) 김광림 의원

○ 검역본부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사업규모 등 점검('18.1~6월, 4회),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진행('18.6.4, 기재부 주관)

□ 사업 개요

○ **(목적)**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

* 식물백신 : 식물체의 단백질 발현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질병 예방용 백신

○ **(사업 기간)** 총 3년('18: 실시설계, '19~'20: 건축)

○ **(소요예산안)** 총사업비 120억원 수준(국고 50%, 지방비 50%)

* 실시설계('18) 이후 건축비는('19~'20)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의 내역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 경상북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 **예산투입 계획**

(단위: 억원)

	'18	'19	'20	합 계
국 비	2.5	23	34.5	60
지방비	2.5	23	34.5	60
합 계	5	46	69	120

□ 주요 시설

○ 음압설비, 공기정화시스템이 구비된 완전 밀폐형 식물재배시설

○ 우수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준 준수 백신생산시설

○ 독성·효능평가 시설 및 중소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시설

□ 추진 경과

○ 사업시행 지자체 공모('18.7~8월)

○ 사업시행 지자체 선정('18.9월)

○ 지자체의 사업시행 기본계획 승인('18.10월)

□ 향후 일정

○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실시설계('19.6)

○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축('19~'20)

○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운영('21~)

5.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융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8,790	21,403	10,011	△11,392	△53.2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3900 - 3940

* 담당자 : 방역정책국장(오순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이기중), 사무관(김돈환, ☏ 044-201-2551)
구제역방역과장(김대균), 사무관(이병용, ☏ 044-201-253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 운영자금지원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GMP(Good-Manufacturing-Practice) : 제조시설 구조·설비부터 원자재 구입·제조·포장·출하까지 모든 생산 공정의 전반에 걸친 우수 관리 구축 시스템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국제 기준의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개보수, 수출업체 운영지원
사업기간	'13~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① 지원형태 : 민간 융자 ② 지원조건 : 융자 70~100%(자부담 30) - 제조시설 신축· 개보수(융자)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 수출·혁신업체 운영지원(융자) : 1년 거치 일시상환, 연 0~3%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동물약품협회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0,011백만원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10,011백만원

①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융자) : 9,011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 4,305백만원

  * 신축 : 2개소 × 2,127백만원 × 70%(융자) = 2,978백만원

  ** 시설 개보수 : 3개소 × 632백만원 × 70%(융자) = 1,327백만원

-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신축 : 4,706백만원

  * 구제역 백신제조 시설 신축 : 67,243백만원 × 70%(융자) × 10%(진척률)

②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해외수출용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를 위한 원료 구입 및 운영비 : 1,000백만원

  * 산출내역 : 500백만원 x 100%(융자) x 2개 기업

구 분	'18예산	'19예산
□ 동물용의약품 산업종합지원	21,403백만원	10,011백만원
▪ 제조시설지원	20,403백만원 · 개축 567.5백만원×4개소×70% = 1,589백만원 · 구제역 백신제조시설 신축 67,243×40%(건축률)×70%= 18,814백만원	9,011백만원 · 신개축 1,230백만원×5개소×70% = 4,305백만원 · 구제역 백신제조시설 신축 67,243×10%(건축률)×70%=4,706 백만원
▪ 수출업체 운영 지원	1,000백만원 · 수출업체운영 지원 2개소×500백만원×100%	1,000백만원 · 수출업체운영 지원 2개소×500백만원×100%

□ 지원 필요성

○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가축사육수 증가와 반려동물 시장 확대, 인수공통전염병 등 공중보건과 직결된 기간산업으로 축산분야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유망산업임

○ 국내 산업의 한계 극복, 수출확대 등 글로벌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 농식품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16~'20)"을 수립('16.4.18), 추진중임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신축·개보수, 수출업체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8,790	21,403	10,011	11,392	53.2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6,790 (신축 : 3개소 4,900백만원) (개보수 : 1개소 1,890백만원) (구제역백신제조시설 : 1개소 1,193백만원, 전액이월)	20,403 (개보수 : 4개소×567.5백만×70%) (구제역백신제조시설 : 1개소×67,243백만×39.97%×70%)	9,011 (신축 : 2개소×2,127백만×70%) (개보수 : 3개소×632백만×70%) (구제역백신 제조시설 : 1개소×67,243백만×9.997%×70%)	11,392	55.8
▪ 수출업체 운영지원	2,000 (500백만×4개소×100%)	1,000 (2개소×500백만×100%)	1,000 (2개소×500백만×100%)	-	-
□ 비목(합계)	8,790	21,403	10,011	11,392	53.2
○ 기타민간융자금(450-04)	8,790	21,403	10,011	11,392	53.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우수동물의약품 생산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사업 소요예산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148	148	82	96	79	21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 불용 : 자부담 대체
- 이월 : 공사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이월

○ **'16년**

- 이월 :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대출심사 지연

○ '17년

- 이월 : 공사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이월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221** **(8,221)**	8,532 (8,532)		16,753 (16,753)	**15,353** **(15,353)**	604 (604)	796 (796)
'16년	**9,600** **(9,600)**	604 (604)		10,204 (10,204)	**8,104** **(8,104)**	2,100 (2,100)	-
'17년	**7,883** **(7,883)**	2,100 (2,100)		9,983 (9,983)	**8,790** **(8,790)**	1,193 (1,19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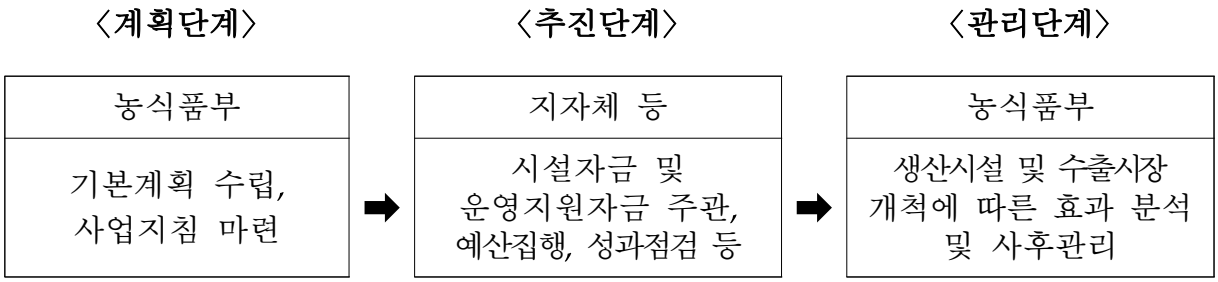

참고 1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비전 및 목표

비전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목표 2020년까지 국내생산 1조원, 수출 5억불 달성, 수출비중(38% → 54)

	2015	2017	2020
·국내생산	6,454억원	7,800	10,600
·수출액	2,433억원 (214백만불)	3,400 (300)	5,700 (500)
·수출비중	38%	44%	54%
·10억원 이상 수출품목	15개	24	40
·수출업체수	67개사	75	90
·제조업체 일자리수	3,070명	3,710	5,050

추진 전략

1 동물용 의약품등 관리제도 선진화

1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 구축
2 제조·수입 및 유통관리 체계개선 3 인허가 및 품질관리 시스템 선진화

2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1 제조(연구)시설 등 산업기반 지원 2 제조·품질관리 기술지원
3 개발·허가단계 민관협력강화 4 민간검사기관 운영 활성화

3 수출초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1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지원 및 국가간 협력 강화
2 유관기관 수출인프라 연계 및 수출등록 지원 강화

4 글로벌 제품개발 등 전략적 R&D 지원

1 수출유망 및 미래주도형 제품개발 등 전략적 지원
2 정부기관 및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활성화, 해외특허 지원

5 동물약품 관리 및 수출지원 기능강화

1 관련제도 마련을 통한 관리 및 수출지원 강화
2 동물용 의약품등 업무체계 개편

참고 2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지원 사업

❑ **(사업개요)** 백신 국산화 일환으로 국내 생산을 위해 백신제조시설 건립

○ (사업내용)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건축

○ (사업기간) '17～'20년(4개년) * 정부 융자사업 지원기간(인증 등은 미포함)

○ (총사업비) 690억원(융자 483억원, 자부담 207억원) * 사업부지와 운영비는 사업자 부담

구 분	2017 (설계)	2018 (건축 진척률 40%)	2019 (건축 진척률 10%)	2020 (건축 진척률 50%)	계
합 계	1,704	26,877	6,718	33,648	68,947
국고융자	1,193	18,814	4,706	23,550	48,263
자 부 담	511	8,063	2,012	10,098	20,684

○ (지원조건)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 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

○ (사업체계) 농식품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검역본부는 사업관리 주체로서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등 사업시행 관리(TF 운영 등)

❑ **(사업추진)** 사업계획 수립('17.4월) 및 사업자를 선정('17.9월)하여 추진 중

○ **(사업자 선정)** 사업기본계획 수립('17.4.24) → 사업자 모집(6.1~7.31) → 내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8.9~8.10) → ㈜FVC*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9.7)*

* FVC(FMD Vaccine Consortium) : 3개社(녹십자수의약품, 고려비엔피, 코미팜) 컨소시엄

○ **(사업추진)** 사업자 선정 이후, FVC 법인 설립('17.11.23) → FVC와 검역본부 기술이전 업무협약 체결('18.7.12) → FVC와 충북도 간 토지계약 체결('18.10.31)

< 사업 추진 일정 >

◈ **(사업일정)** '17～'20 건축 및 설비 완료 → '21 검증 및 인증 → '22～ **생산**

(연차별 시범가동을 통해 스케일업하여 최적화 생산체계 구축)

농 업 생 산 기 반 정 비

1. 배수개선(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배수개선	228,071	277,800 (추경 1,100백만원 제외)	256,750	△21,050	△7.6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3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간척지농업과장(박재수), 서기관(유재중, ☏ 044-201-18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상습침수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 및 논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사업기간	'75년 ~ '30년
총사업비	118,491억원 ('18년까지 투자액 57,379억원)
사업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302.7천ha
지원조건	국고 100%(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상습침수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 및 논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을 위한 배수개선 256,750백만원 지원

- 배수개선(사업비) : 254,450백만원(169지구×1,519백만원×국고100%)
  - · 준공 : 55,000백만원(23지구×2,391백만원×국고100%)
  - · 계속 : 183,700백만원(110지구×1,670백만원×국고100%)
  - · 신규 : 5,750백만원(36지구×160백만원×국고100%)
  - · 재해대비유보 10,000백만원
- 배수개선(기본조사비) : 2,300백만원
  - · 배수개선 기본조사 : 2,300ha × 1백만원/ha = 2,30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배수개선	**277,800백만원** (추경 1,100백만원 제외)	**256,750백만원**
▪ 배수개선 (사업비)	**275,800백만원** (156지구×1,768백만원 ×국고100%)	**254,450백만원** (169지구×1,519백만원 ×국고100%)
▪ 배수개선 (기본조사비)	**2,000백만원** (2,000ha×1백만원/ha ×국고100%)	**2,300백만원** (2,300ha×1백만원/ha ×국고100%)

□ 지원 필요성

○ 총리실주관 범정부 차원의「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11)」수립

-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11.12) 배수개선사업 연간 3,000억원 투자 필요

○ 후속대책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조기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13, 농식품부) 수립

- 배수개선목표(율) : ('18) 62%(189천ha) → ('24) 80%(243) → ('30) 100%(303)
- 중장기 투자규모 : 1단계 2.5조원('13～'18), 2단계 5.4조('19~'30)

○ 중장기 계획상 침수 농경지 303천ha 중 배수개선율은 '18년까지 61%로 추진하고 있으나, 잔여 117천ha는 침수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여름철 집중호우(30mm/h이상) : ('80)60회/년→('90)70회/년→('11)133회/년(기상청)
- 최근 10개년('07~'16)간 농경지 침수피해 34천ha 발생(국민안전처 재해연보)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배수개선**	**228,071**	**277,800** (추경 1,100백만원 제외)	**256,750**	**△21,050**	**△7.6**
▪ 배수개선(사업비) (산출근거)	225,071	**275,800 (156지구)** (준공) 23지구 30,400백만 (23지구×1,322백 ×100%) (계속) 94지구, 230,000백만 (94지구×2,447백 ×100%) (신규) 36지구, 5,400백만 (36지구×150백 ×100%) (재해대비유보) 10,000백만	**254,450 (169지구)** (준공) 23지구 55,000백만 (23지구×2,391백 ×100%) (계속) 110지구, 183,700백만 (110지구×1,670백 ×100%) (신규) 36지구, 5,750백만 (36지구×160백 ×100%) (재해대비유보) 10,000백만	△21,350	△7.7
▪ 배수개선(기본조사비) (산출근거)	3,000	**2,000 (2,000ha)** (2,000ha×1백만/ha ×100%)	**2,300 (2,300ha)** (2,300ha×1백만/ha ×100%)	300	15.0
□ **비목**(합계)	**228,071**	**277,800**	**278,900**	**△21,050**	**△7.6**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25,071	275,800	254,450	△21,350	△7.7
○ 민간자본보조 (320-07)	3,000	2,000	2,300	300	15.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추진경위

- ’75년부터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해소로 안정영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추진

·‘74년이전 : 경지정리 또는 대단위종합개발로 추진(4천ha준공)

·‘75~’78 : 배수개선 명칭으로 사업 시행(시범사업 수준)

·‘03.12월 : 국무총리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수해방지대책과제

·‘11.12월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과제

·‘13. 2월 :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배수개선	3,000 (추경300억원포함)	2,900	3,160	3,007	2,915	2,789 (추경11억원포함)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 2016, 2017 :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

○ 2016 : 세부부족으로 인한 이월, 용지매수 지연으로 인한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160 (3,160)	1,180 (1,180)	- (-)	4,340 (4,340)	3,327 (3,327)	1,013 (1,013)	- (-)
’16년	3,007 (3,007)	1,013 (1,013)	- (-)	4,020 (4,020)	3,383 (3,383)	558 (558)	79 (79)
’17년	2,915 (2,915)	558 (558)	- (-)	3,473 (3,473)	2,281 (2,281)	1,192 (1,19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년도 보조사업 존치평가(기획재정부)
- 배수개선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상습침수농경지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이라는 외부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 재해예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기획재정부)
- 배수개선사업은 재난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업으로 동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 20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기획재정부)
-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 방지와 안전영농 도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과 법령의 연계성이 인정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 지구 신청(시·도, 시·군) → 기본조사 지구선정(농식품부) → 기본조사(농어촌공사)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신규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시·군, 농어촌공사) → 시행계획 승인(시·도) → 사업시행(시·군, 농어촌공사) → 준공(시·군, 농어촌공사)

참고 1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종합대책(요약)

□ **기후변화 및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재정립 등 선제적 방재 체계 구축 필요**

○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 상승(0.75℃)의 2배가 넘는 1.8℃(6대도시) 상승

○ 강수 일수는 18% 감소한 반면, 강수량은 17% 증가로 강수 강도(집중호우 일수) 증가

* 일 80mm이상 집중호우 발생 일수가 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지난해 연평균 강수량(1,451mm)의 약 40%에 해당하는 588mm가 7.26~28(3일간) 집중

□ **범 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재난관리개선 민관합동 TF」구성·운영('11.8.10~12.31)**

○ 방재청, 농식품부, 국토부 등 11개 기관별 단위과제 163개(농식품부 소관 11개)를 포함한「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마련 발표('11.12.9)

<농식품부 소관 주요 내용>

- **재해위험 대비 수리시설 기준 강화** : 배수개선 설계기준 개선, 배수장 안전기준 개선,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 확대
-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설 재정비** : 수리시설 및 배수시설 개선 확충, 내재해형 규격시설 확대 지원, 농어업재해보험품목 확대
-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조제 등 정비** :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보강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이후
계	10,010 [800]	10,800	12,247	11,840	90,05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450 [-]	2,600	3,050	3,000	10,430
배수개선	2,700 [300]	2,900	3,160	3,000	45,658
수리시설개보수	4,300 [500]	4,800	5,487	5,000	30,352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60 [-]	500	550	840	3,610

* 상기 표 [ ] 외서는 '13년도 추경예산, '15까지는 반영예산

참고 2 배수개선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요약)

□ 추진배경

○ 최근의 기후변화 및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재정립 등 선제적 방재 체계 구축 필요

○ 총리실 주관,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으로 농촌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련 사업 추진계획 수립('11.12)

➡「재난관리 종합대책」후속조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13~'18)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재배작물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대상면적 확대(232천ha→303천ha)

- 배수개선율 : ('12) 52%(158천ha) → ('18) 62%(189) → ('30) 100%(303)

* 강우량 증가추세를 반영한 시설능력 보강(44천ha) 및 시설원예 등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사업 확대(27천ha)

○ 원예작물 등 밭작물 집단 재배지역은 재배작물, 침수피해정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된 설계기준에 맞춰 배수개선 추진

* (당초) 20년 빈도 강우 → (개선) 30년 빈도

□ 투자계획

○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침수피해 농경지조기 해소를 위해 배수개선사업 시행 확대 추진

*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11.12월) 수준(연간 3,000억원) 이상 투자계획 반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목표량 ①=②+③	'12까지 ②	'13 이후			
			계③	'13	'14~'18	'19~'30
사 업 량 (천ha)	303 (44)	158	145	2	29	114
사 업 비 (억원)	118,491	39,687	78,804	2,700	22,000	54,104

* ( )내서는 배수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보강 면적임

참고3 배수개선 사업시행 전·후 비교

시행전	시행후

제월지구(곡성)	
배수장 설치전	배수장 설치후
농경지 71ha 침수피해 발생('10.8월, 일강우량 126mm)	침수피해 없음('13.7월, 일강우량 209.5mm)

연봉지구(고흥)	
배수장 설치전	배수장 설치후
농경지 90ha 침수피해 발생('07.7월, 일강우량 102.5mm)	침수피해 없음('11.5월, 일강우량 112.5mm)

참고 4 배수개선사업 효과

□ 사업 시행전·후 대비 ha당 농업수익 3,767천원/ha(138%) 증대

구 분	시행전(A)	시행후(B)	B-A	B/A
경지이용률(%)	114.2	119.7	5.5	104.9
쌀 생산량(kg/ha)	4,024	4,712	688	117.1
노동력 투하시간(hr/ha)	157.6	126.8	△30.8	80.5
ha당 생산비(천원)	4,847	4,074	△773	84.1
ha당 수익(천원)	10,082	13,849	3,767	137.4

* '16년 기본계획수립 23지구('14년지시) 2,587ha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매년 전년도 기본계획 수행지구 대상으로 실시)

※ 기 타 : 재배작목 선택폭 확대, 영농편의, 농촌정착 의욕고취, 심리적 안정감 유지 등

□ 침·관수시간을 설계기준 이하로 단축하여 농작물 피해 해소

지구명 (수혜면적)	주요공사	침수피해원인	시행전·후 침·관수 시간	
			시행전(hr)	시행후(hr)
대 흥 (565ha)	배수장 배수로 매 립	배수시설물 단면부족 외수위상승으로 자연배제 불가 배수로 정비미비	침수 : 32 관수 : -	침수 : 21.5 관수 : -
중 정 (52ha)	배수장 배수로 매 립	배수시설물 단면부족 외수위상승으로 자연배제 불가 배수로 정비미비	침수 : 15~21 관수 : 5~8	침수 : 7 관수 : -
평 사 (140ha)	배수문 배수로 매 립	배수시설물 단면부족 외수위상승으로 자연배제 불가 배수로 정비미비	침수 : 17~33 관수 : 2~24	침수 : 13~19 관수 : -
복 산 (51ha)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매 립	배수시설물 단면부족 외수위상승으로 자연배제 불가 배수로 정비미비	침수 : 51~70 관수 : 15~38	침수 : 15~23 관수 : -
야 대 (65ha)	배수장 배수로 매 립	배수시설물 단면부족 외수위상승으로 자연배제 불가 배수로 정비미비	침수 : 6~30 관수 : 6~23	침수 : 0~24 관수 : -

참고 5 배수개선사업 문제점 및 대책

□ 추진현황

○ 총리실주관 범정부 차원의「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11)」수립

-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11.12) 배수개선사업 연간 3,000억원 투자요구

○ 후속대책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조기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13, 농식품부) 수립

- 배수개선목표(율) : ('18) 62%(189천ha) → ('24) 80%(243) → ('30) 100%(303)
- 중장기 투자규모 : 1단계 2.5조원('13~'18), 2단계 5.4조('19~'30)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

구 분	총계획	'18까지	누계(%)	'19계획	누계(%)	'20이후
사업량(천ha)	302.7	185.8	61.4	**3.7**	**62.6**	113.2
사업비(억원)	118,491	57,247	48.3	2,568	50.5	58,676

* 사업량은 준공면적 기준, '18계획 추경포함(11억원)

□ 문제점

○ 중장기 계획상 상습침수 농경지 303천ha 중 배수개선율은 60%에 불과하여 잔여 122천ha는 침수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 총 대상면적 302.7천ha, '17년까지 180.9천ha, 잔여면적 121.8천ha
* 여름철 집중호우(30mm/h이상) : ('80)60회/년→('90)70회/년→('11)133회/년(기상청)
* 최근 10개년('07~'16)간 농경지 침수피해 34천ha 발생(국민안전처 재해연보)

○ 신규착수 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혜면적은 감소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규모가 축소하여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움

- 최근 10개년 신규착수 지구 비교시 평균 지구수는 16지구('08년~'12년)에서 31지구('13년~'17년)로 **15지구가 증가**하였으나, 평균 수혜면적은 166ha에서 128ha로 38ha(△23%)가 감소

< 지구당 5개년 평균수혜면적 비교 >

구 분	'08년 ~ '12년 (5개년)	'13년 ~ '17년 (5개년)	증 감	비고
신규착수 지구수	16	31	15	
수혜면적(ha)	2,789	3,856	1,067	
평균 수혜면적(ha)	166	128	**△38**	**△23%**

< 배수개선 지구수 변화 추이 >

□ 개선방향

○ '30년까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규착수 규모를 기존 지구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전환하여 추진이 필요

- 현재 수준(지구기준)으로 사업 추진시 **당초 계획대비 '13년 추가소요**

  * 총 면적 302.7천ha 중 '18년까지 201.5천ha 착수 완료(잔여면적 101.2천ha)

  * 신규지구 수혜면적 4,608ha (5개년 평균수혜면적 128ha × '18년 36지구)

  * 매년 4,608ha씩 추진 가정시 사업완료는 '43년으로 당초 계획대비 13년 추가소요

- 중장기 계획상 '19년이후 잔여면적 101천ha를 '3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11.2천ha(88지구) 수준의 신규착수 필요**

  * 101.2천ha/9년('19~'27)=11.2천ha, 11.2천ha/128ha(최근 5년 평균수혜면적)=88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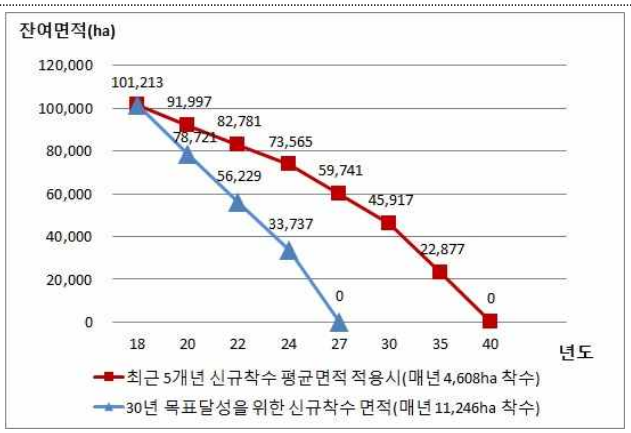

[신규면적에 따른 연도별 잔여면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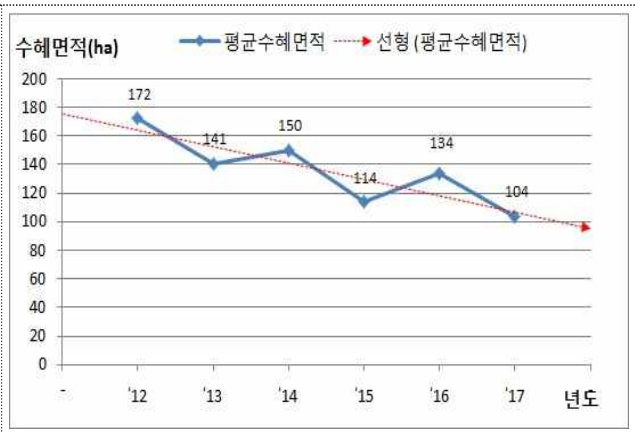

['12년 이후 신규지구 평균수혜면적 추세]

* 2018년 신규지구 지구당 평균수혜면적 115ha (4,162ha÷36지구)

2. 한발대비용수개발(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한발대비용수개발	52,500	12,100	11,700	△400	△3.3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3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강대일)☎(044-201-18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뭄발생지역 및 천수답 등 상습가뭄지역에 급수대책비 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농업피해 최소화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관정개발, 양수장 등 간이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급수, 저수지 준설(시·군 관리) 등 가뭄대비 급수대책비용 지원
사업기간	'94~계속
총사업비	('18까지 7,392억원 지원)
사업규모	가뭄발생지역 및 천수답 등 상습가뭄지역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국고 80%, 지방비 20%)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빈발하는 가뭄지역의 재해발생에 대비한 긴급 급수대책(관정·양수장·하천굴착·양수기 유류·전기료 등) 추진 지원

○ 시·군별 예산지원은 강우량, 저수율, 가뭄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정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한발대비용수개발	**12,100**	**11,700**
▪ 한발대비용수개발	가뭄대비 급수대책 비용 12,100백만원 지원	가뭄대비 급수대책 비용 11,700백만원 지원

□ 지원 필요성

○ 전체 논 934천ha 중 19.4%인 181천ha는 수리시설이 없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경감)을 위한 긴급급수대책비 등 지원 필요

○ 가뭄대책비는 가뭄발생시 지원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지출사업으로 기정예산이 없으면 타 사업비에서 이·전용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 '12년의 경우, 5월 이후 강수부족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여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별 가뭄상황에 따라 긴급지원, 조기 대응으로 피해 예방

  * 충남(104년만의 가뭄) 지역 중심의 가뭄지역 111천ha에 대해 '12.6.7~27 기간중 가뭄대책비(국고 595억원 : 한발대비용수개발 145, 예산이·전용-재해대책 등 450) 지원 (1,760개소 : 관정 804공, 준설793, 간이양수장 등 163)

- '13년의 경우, 6~8월 중부 내륙지방 장마전선 정체에 따라 제주(90년만의 가뭄)로부터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가뭄이 발생하여 대통령 지시 등에 따라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지원

  * 제주를 비롯한 전남·경북·경남지역 가뭄지역 20천ha에 대해 '13.8~10월 기간중 가뭄

대책비(국고 145억원) 지원을 통해 제주지역 월동채소(마늘, 당근 등 13천ha) 파종·정식 등 가뭄대책 긴급지원을 통해 가뭄 피해 예방(375개소: 관정 140공, 준설 89개소, 간이양수장 등 146개소)

- '14년의 경우, 4~6월 임진강하류 양수급수지역(5.2천ha) 가뭄발생 및 서해 조석의 영향에 따른 염분농도 증가로 긴급급수대책(통일대교 횡단 송수 등) 추진과 6~7월 중북부 마른장마 지속에 따라 가뭄대책비 선제적 지원을 통해 농업부문 재해예방 도모

- '15년의 경우, 인천(강화), 경기 북부, 강원 영동지방 등의 강수량이 평년의 50% 미만으로 현저히 적어 가뭄이 발생하여 긴급 영농급수대책 지원

  * 한강물을 강화에 송수하는 임시관로 등 설치, 강원도 여름 고랭지채소 밭 용수원 개발 등 추진

- '16년의 경우, 6~8월 적은 강우(강수량 446mm, 평년의 62% 수준)로 전국적 가뭄이 발생하였고 저수율도 7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가뭄대책비 지원

  * 가뭄발생지역 긴급 급수대책비, 가뭄취약지역 선제적 용수확보대책비,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태백 귀네미, 정선 방제리) 용수원 개발 등

- '17년의 경우, 5~6월 적은 강우(강수량 90mm, 평년의 34% 수준)로 경기·충남지역에 가뭄이 발생하였고, 저수율도 이시기에 급락하여 가뭄대책비 지원

  * 가뭄발생지역 긴급 급수대책비, 가뭄취약지역 선제적 용수확보대책비,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태백 매봉산) 용수원 개발 등

- '18년의 경우, 7.11일 장마가 끝난 이후, 무강우와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밭작물 중심의 가뭄이 발생하여 밭 중심의 가뭄대책비 지원

  * 가뭄발생지역 긴급 급수대책(살수차 운영, 스프링클러 임대지원 등), 가뭄취약지역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양수저류 등) 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한발대비용수개발	52,500	12,100	11,700	△400	△3.2
▪ 긴급급수대책비 (산출근거)		7,000 (8,750백만×80%)	6,800 (8,500백만×80%)		
▪ 간이양수장 설치 (산출근거)		1,450 (129개×14백만×80%)	1,400 (125개×14백만×80%)		
▪ 대형관정 개발 (산출근거)		3,650 (97개×47백만×80%)	3,500 (93개×47백만×80%)		
□ 비목(합계)	52,500	12,100	11,700	△400	△3.3
○ 지자체자본보조 (330-03)	52,500	12,100	11,7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사업 : 농어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저수지 준설 등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대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 추진경위

- ‘93년 까지 : 가뭄대책에 따른 소요액을 타사업비에서 이·전용

- ‘94년～ : 가뭄대책비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예산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한발대비용수개발	145	125	575	425	525	12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6년 : 하반기 가뭄 미발생에 따라 용수원개발 등 지출수요가 감소하여 일부 예산 미집행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75 (575)	- (-)	- (-)	575 (575)	**575** **(338)**	- (234)	- (3)
’16년	425 (300)	- (233)	- (-)	420 (533)	**300** **(401)**	- (129)	125 (3)
’17년	525 (525)	- (129)	- (-)	525 (654)	**525** **(484)**	- (166)	- (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정감서 지적(’15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 내년에도 심각한 가뭄이 예상되는바 중장기 가뭄대책 수립 및 예산・인력・장비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 (2015년)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마련 (’15.11월) - 계획적·다각적 용수개발, 물 복지 소외지역 용수관리, 물 이용 효율화 및 시설개선, 상시 가뭄대응체계로 재편 등 4대전략 16개 세부추진계획 마련(’16.1.13) ※ 한발대비용수개발 예산 확보 (’15) 575억원(추경450억) → (’16) 425억원
○ 충남 홍성·보령·예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뭄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 충남 서부권의 항구적 가뭄대응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대책 수립 및 추진 - (항구대책) 공주보-예당지 농업용수공급

실천할 것 (2015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16.2.5), 공사발주 및 착공(2~3월) - (긴급대책) 저수지준설(116개소, 107억원) 및 용수원개발(212개소, 102억원)
○ 금번 가뭄은 길게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재난수준의 가뭄대책을 마련할 것(4대강 물을 활용한 하천수활용사업 등) (2015년)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마련('15.11월) - 계획적·다각적 용수개발, 물 복지 소외지역 용수관리, 물이용 효율화 및 시설개선, 상시 가뭄대응체계로 재편 등 4대전략 16개 세부추진 계획 마련('16.1.13) - 제2차 물관리협의회('15.11.6), 당정협의('15.11.11) 관련 추가대책 추진 ※ 한발대비용수개발 예산 확보 ('15) 575억원(추경450억) → ('16) 425억원

(5) 사업추진절차

○ 가뭄지역조사(시·군) → 사업비 지원요청(시·도) → 예산배정(농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도)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참고 1 농업분야 「가뭄대응 종합대책」(요약)

◇ 물 부족이 예상되고 가뭄피해가 반복되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앞당기고 신규사업 확대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응 종합대책' 수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의결('17.8.24)

1 확보된 물 이용 효율성 제고

○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량을 체계적으로 연계·배분하는 **수계연결**사업 확대 추진

* 아산호-금광·마둔저수지,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영산강Ⅳ지구 사업 등

○ 저수지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 보수·보강, 용수로 구조물화 등을 통해 **용수 손실량 최소화**

○ 농업용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를 통해 저수용량을 추가 확보하여 가뭄시 용수 활용 및 홍수 저류 등 이·치수 능력 향상

2 기존의 수자원 확보사업을 조속히 추진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용수이용체계재편, 하천수 개발 등 **용수확보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수리안전답률 확대

* 수리안전답률 목표 : ('12년) 56%(541천ha)→('18년) 62%(580)→('30년) 80%(692)

○ 농경지 퇴수·지하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가속화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및 농로 등 기반정비

3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통한 적재적소 물 사용

○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타용도 활용 유도** 등을 통해 체계적 **수요관리**

○ 가뭄 예경보 고도화 등 **선제적 가뭄대응 시스템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현으로 용수이용 효율성 제고

○ 용수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평가를 통한 **중장기 수요량 재산정**

4 R&D를 통한 미래 가뭄대비 기반 확충

○ 가뭄예측지도 등 **유역별 가뭄정보 제공** 및 영농정보 제공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맞는 **작물재배체계 개발·보급** 및 재해 취약성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재해대응 체계 구축**

○ 농작물 가뭄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및 **가뭄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

3.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0,762	40,890	43,463	2,573	6.3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31
* 담 당 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김수현, ☎044-201-185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된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시설 붕괴, 농경지 유실 및 해수침투에 의한 농작물 염해 등 방지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방조제 비탈면 보강, 방조제 덧쌓기, 문비 도장 및 보수,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 교체·보수 등
사업기간	'68년~계속
총사업비	- 억원 / 해당없음
사업규모	노후 방조제 2,869개소(국가관리 241, 지방관리 2,628) 개보수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 국가관리(국고 100%),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 34,763백만원

- 준공 3지구 4,258, 계속 17지구 29,905, 신규 6지구 600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8,700백만원

- 준공 18지구 4,521, 계속 7지구 3,179, 신규 20지구 1,0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40,890백만원	43,463백만원
▪ 국가관리 방조제	○ 23지구 28,119백만원 - 준공 3지구 6,303 - 계속 14지구 20,616 - 신규 6지구 1,200	○ 26지구 34,763백만원 - 준공 3지구 4,258 - 계속 17지구 29,905 - 신규 6지구 600
▪ 지방관리 방조제	○ 46지구 12,771백만원 - 준공 21지구 7,801 - 계속 5지구 3,970 - 신규 20지구 1,000	○ 45지구 8,700백만원 - 준공 18지구 4,521 - 계속 7지구 3,179 - 신규 20지구 1,000

□ 지원 필요성

○ 전체 방조제(1,597개소) 중 94.4%(1,507개소)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부식·균열·탈락 등이 발생하여 재해에 취약

○ 방조제는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내측에는 농경지 및 주택 등이 위치한 중요 시설로서, 붕괴 등의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우려

○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량 증가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하여 노후 방조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40,762**	**40,890**	**43,463**	**2,573**	**6.3**
▪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국가관리 국고 100%) (지방관리 국고50, 지방비50)	40,762	**- 국가관리 : 28,119(23지구)** · (준공 3) 6,303 · (계속14) 20,616 · (신규 6) 1,200 **- 지방관리 : 12,771(46지구)** · (준공21) 7,801 · (계속 5) 3,970 · (신규20) 1,000	**- 국가관리 : 34,763(26지구)** · (준공 3) 4,258 · (계속17) 29,905 · (신규 6) 600 **- 지방관리 : 8,700(45지구)** · (준공18) 4,521 · (계속 7) 3,179 · (신규20) 1,000	2,573	6.3
□ 비목(합계)	**40,762**	**40,890**	**43,463**	2,573	6.3
○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40,762	40,890	43,463	2,573	6.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방조제 관리법」제7조,「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 추진경위

▪ 1968 : 방조제관리법('63.12.) 제정 후 1968년부터 국고 보조

▪ '99.12: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수해방지종합대책 실천과제 (방조제의 안전성 재검토 및 보강)

▪ '03. 4: 국무총리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수해방지대책 실천과제(농업용 방조제의 안정성 점검・보완)

▪ '11.12: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실천과제

▪ '16.12: 지진방재 종합대책 과제 포함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 강화)

▪ '18.12: 지진방재 종합계획 과제 포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보강)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560	500	550	450	370	40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 발생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50**	115	0	665	**565**	100	0
	(550)	(115)	(0)	(665)	**(565)**	(100)	(0)
'16년	**450**	100	0	550	**402**	148	0
	(450)	(100)	(0)	(550)	**(402)**	(148)	(0)
'17년	**370**	148	0	518	**408**	110	0
	(370)	(148)	(0)	(518)	**(408)**	(11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 재정사업평가) 한국정책평가 연구원 주관으로 재해예방사업(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포함)에 대한 심층분석 평가 실시

- 방조제개보수 완료지역 염해피해액의 경우 본 사업의 가치를 밝히는 지표로 볼 수 있고, 사업대상지구와 비대상 지구를 비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측정 할 수 있고, 사업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에 대해 평가 가능

-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노후 방조제(30년이상 경과)의 둑마루 높임 및 사면 기울기 조정 등 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수 및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염해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규모, 공공의 안녕 등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적은 타당

- 다만, 사업물량 예측과 우선순위 선정에 보다 체계화가 요구되며,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 (3년간 총 10%감축)

○ ('18년 국회 예산심사)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방조제개보수 예산 증액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신청(시설관리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신규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설계(사업시행자 :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계획승인(시·도지사)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시·도지사)

참 고 **전국 방조제 관리 현황** * 2016년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2017) 기준

□ 시·도별 현황

구분	지 구 수			총 연장(㎞)			포용면적(천ha)		
	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합계	1,597	107	1,490	1,018.2	221.5	796.7	155.4	119.7	35.7
부산	1	-	1	-	-	-	-	-	-
인천	94	9	85	59.8	29.9	29.9	19.0	17.8	1.2
경기	53	6	47	98.2	15.9	82.3	6.0	4.0	2.0
충남	279	20	259	172.4	49.5	122.9	40.0	34.3	5.7
전북	46	3	43	72.0	30.6	41.4	2.2	0.4	1.8
전남	987	63	924	557.4	86.7	470.7	84.9	62.1	22.8
경남	136	6	130	58.2	8.9	49.3	3.3	1.1	2.2
제주	1	-	1	0.2	0.0	0.2	0.0	-	-

□ 국가관리 방조제 결정·해제현황

구 분	~'90	'91	'92	'94	'96	'98	'99	'01	'03	'08	'09	'11	'14	'15	'16
시설수	72	71	74	76	80	91	96	98	103	105	108	115	116	118	107
증·감	-	△1	3	2	4	11	5	2	5	2	3	7	1	2	△11
결정	-	-	8	2	4	11	6	2	5	2	3	7	1	2	1
해제	-	1	5	-	-	-	1	-	-	-	-	-	-	-	12

○ **세부내용** (91년 이후 결정 54, 해제 19, 증 35)

년도	구 분	시·도별 결정 및 해제
'91	해제(1)	**군암**(경기 안산)
'92	결정(8)	**수산**(전북 군산), **어은**(전북 군산), **오마**(전남 고흥), **창포**(전남 무안), **석용**(전남 무안), **외남**(전남 신안), **장포**(전남 신안), **우의포**(전남 신안)
	해제(5)	**동방**(경기 화성), **군암**(경기 안산), **도둔**(충남 서천), **태안**(충남 태안), **모월**(충남 서산)
'94	결정(2)	**복길**(전남 무안), **구일**(전남 무안)
'96	결정(4)	**금산**(전남 무안), **도락**(전남 신안), **마명**(전남 신안), **비아**(전남 신안)
'98	결정(11)	**홍왕**(인천 강화), **곰섬**(충남 태안), **동아**(전북 고창), **구암**(전남 고흥), **여호**(전남 고흥), **신월**(전남 해남), **목나리**(전남 신안), **목일**(전남 신안), **상동서**(전남 신안), **하동서**(전남 신안), **호화**(전남 신안)
'99	결정(6)	**남포**(충남 보령), **옥실**(전남 영광), **주포**(전남 함평), **태천**(전남 신안), **산두**(전남 신안), **해창만**(전남 고흥)
	해제(1)	**삼덕**(전남 해남), **길상**(인천 강화) 부분 해제
'01	결정(2)	**대호**(충남 당진), **완도**(전남 완도)
'03	결정(5)	**금강**(전북 군산), **약산**(전남 완도), **영암**(전남 영암), **금호**(전남 해남), **영산강**(전남 목포)
'08	결정(2)	**해남**(전남 해남), **진촌**(인천 옹진)
'09	결정(3)	**서산A**(충남 서산), **홍성**(충남 홍성), **보령**(충남 보령)
'11	결정(7)	**석문**(충남 당진), **화성**(경기 화성),**탄도·불도·대선**(경기 안산), **삼산**(전남 장흥), **강산**(전남 고흥)
'14	결정(1)	**이원**(충남 태안)
'15	결정(2)	**고흥만**(전남 고흥), **사내**(전남 강진)
'16	결정(1)	**새만금**(전북 군산)
	해제(12)	**어은**(전북 군산), **수산**(전북 군산), **미성**(전북 군산), **광활**(전북 김제), **대창**(전북 김제), **서포**(전북 김제), **화포**(전북 김제), **진봉**(전북 김제), **도선장**(전북 부안), **계화1**(전북 부안), **계화2**(전북 부안), **회현**(전북 군산)

4.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특)(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대단위농업개발(농특)	94,200	**96,000**	**99,500**	3,500	3.6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34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간척지농업과장(박재수), 사무관(류광현)☎(044-201-187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방조제 축조 등으로 조성된 담수호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간척지 농업기반시설이 노후 또는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보수·보강 및 기능개선을 통해 재해대응 능력강화 및 영농편의 도모	
사업기간	○ 금강Ⅱ지구	'89 ~ '20
	○ 홍보지구	'91 ~ '25
	○ 영산강Ⅳ지구	'01 ~ '20
	○ 서산A재정비	'08 ~ '21
총사업비	○ 금강Ⅱ지구	9,417억원('18년까지 투자액8,572억원)
	○ 홍보지구	5,048억원('18년까지 투자액 4,846억원)
	○ 영산강Ⅳ지구	8,870억원('18년까지 투자액 4,344억원)
	○ 서산A재정비	2,979억원('18년까지 투자액 1,880억원)
사업규모	○ 금강Ⅱ지구	양수장13개소, 용수로610㎞, 경지재정리 16,251ha
	○ 홍보지구	방조제 2.9㎞, 양수장 6개소, 용수로 365㎞, 배수개선 1,070ha, 수질개선 192㏊
	○ 영산강Ⅳ지구	양수장 10개소, 조절지 7개소, 용수로 487km
	○ 서산A재정비	방수제 34.9㎞, 양·배수장 13개소, 용·배수로 499㎞
지원조건	민간보조,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지구명	금액 및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계	99,500	
○ 금강Ⅱ지구	25,500	○ 용수로(제2대간선) 0.8㎞, 경지재정리 509ha - (용수로) 0.8㎞ × 3,262백만원/㎞ = 2,610 - (경지재정리) 509ha × 45백만원/ha = 22,905
○ 홍보지구	8,000	○ 양수장 2개소(계속), 용수로 5.9㎞ - (양수장) 2개소 × 1,260백만원/개소 = 2,520 - (용수로) 5.9㎞ × 930백만원/㎞ = 5,487
○ 영산강Ⅳ지구	50,000	○ 양수장 1개소(완료), 용수로 46.7㎞ - (양수장) 1개소 × 4,455백만원/개소 = 4,455 - (용수로) 46.7㎞ × 976백만원/㎞ = 45,579
○ 서산A재정비	16,000	○ 배수장 3개소(계속), 용수로 12.2㎞, 배수로 10.6㎞ - (배수장) 3개소 × 2,007백만원/개소 = 6,021 - (용수로) 12.2㎞× 328백만원/㎞ = 4,002 - (배수로) 10.6㎞× 567백만원/㎞ = 6,010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단위농업개발(농특)	96,000	99,500
▪ 금강Ⅱ지구	27,000 용수로 10.1㎞ 경지재정리 637ha	25,500 용수로 0.8㎞ 경지재정리 509ha
▪ 홍보지구	10,000 양수장 3개소, 용수로 5.9㎞	8,000 양수장 2개소, 용수로 5.9㎞
▪ 영산강Ⅳ지구	41,000 양수장1개소, 용수로 32.4㎞	50,000 양수장 1개소, 용수로 46.7㎞
▪ 서산A재정비	18,000 양수장 2개소, 배수장 2개소 용수로 10.6㎞, 배수로 11.4㎞	16,000 배수장 3개소 용수로 12.2㎞, 배수로 10.6㎞

□ 지원 필요성

지구명	지원 필요성
○ 금강Ⅱ지구	○기 완공된 시설인 금강호, 양수장 등을 활용하여 물 부족지역의 용수 공급 확대 등 잔여사업 마무리 추진 - 제2대간선의 사업구역을 지나는 용수로(1945년 설치)는 농경지보다 낮아 자연급수가 어려워 신규 용수로 필요 ○용수로가 완료된 지역은 경지재정리 시행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 '01년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라 용수공급시설 선행 후 경지재정리사업을 시행토록 권고함에 따라 '05년부터 본격 추진 - 사업구역은 1920~30년대 경지정리되어 용·배수로는 흙수로로 단면이 작아 용수공급에 애로가 많고, 농경지로 물이 월류하는 등 재해발생시 대응능력이 없어 매년 침수피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상당함.
○ 홍보지구	○가뭄피해 상습지역의 조속한 용수공급을 위한 착공 필요 - 용수로 공사는 편입토지의 용지매수협의, 시공기간, 정부예산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구당 최소 4~5년 이상 소요되므로, 가뭄피해 상습지역의 조속한 용수공급을 위해 천북, 은하공구(미착공공구)의 '19년 착수 추진 및 사업비 집중투자
○ 영산강Ⅳ지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영농급수 필요 - 무안·함평 등 사업지역은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저수지가 없어 소형관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수공급시설 조기 확충 필요 ○'13년 수원공(무안·현경양수장) 시설이 완료되어 용수로공사에 투자하는 만큼, 급수면적 확대 등 사업효과 가시화 가능 ○'17년 극심한 가뭄으로 부처합동 '가뭄대응 종합대책('17.8)'에서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500억원 수준의 지원 필요
○ 서산A재정비	○안전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배수개선 및 용수공급 집중 투자 - 지구내 배수장의 배제량은 현재 설계기준인 20년 빈도 배제량의 14~28%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반복적인 침수피해 발생 - 양수장 시설 노후, 기능저하 및 용수로 단면부족 등으로 영농기 용수공급에 차질 초래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 대단위농업개발(농특)	94,200	96,000	99,500	3,500	3.6
▪ 금강II지구	30,000	27,000 용수로 10.1㎞ 경지재정리 637ha	25,500 용수로 0.8㎞ 경지재정리 509ha	△1,500	△5.6
▪ 홍보지구	6,000	10,000 양수장 3개소 용수로 5.9㎞	8,000 양수장 2개소 용수로 5.9㎞	△2,000	△20.0
▪ 영산강IV지구	37,000	41,000 양수장 1개소 용수로 32.4㎞	50,000 양수장 1개소 용수로 46.7㎞	9,000	22.0
▪ 서산A재정비	21,200	18,000 양수장 2개소 배수장 2개소 용수로 10.6㎞ 배수로 11.4㎞	16,000 - 배수장 3개소 용수로 12.2㎞ 배수로 10.6㎞	△2,000	△11.1
□ 비목(합계)	94,200	96,000	99,500	3,500	3.6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94,200	96,000	99,500	3,500	3.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금강Ⅱ지구 >

- 1989. 12 : 사업착수
- 1995. 10 : 배수개선 준공
- 1999. 04 : 서천1공구 준공
- 2003. 10 : 서천2공구 준공
- 2004. 05 : 익산1공구 준공
- 2005. 12 : 경지재정리공사 착수
- 2006. 11 : 옥구1공구 준공
- 2008. 09 : 김제2공구 준공
- 2009. 12 : 옥구2공구 준공
- 2012. 08 : 익산2-2공구 착수
- 2014. 04 : 익산2-1공구 준공
- 2015. 06 : 김제1공구 준공

< 홍보지구 >

- 1991. 10 : 사업 착수
- 2001. 12 : 방조제 완공
- 2003. 12 : 결성3공구 준공
- 2004. 12 : 오천공구 착수
- 2007. 12 : 청소공구 착수
- 2009. 12 : 사호공구 착수
- 2010. 02 : 하촌공구 착수
- 2012. 9 : 하촌공구 준공
- 2012. 12 : 수질개선사업 착수
- 2013. 4 : 사호공구 준공
- 2015. 08 : 장은공구 착수
- 2015. 12 : 홍성호공구 준공
- 2016. 12 : 오천공구 준공
- 2016. 12 : 보령호공구 준공

< 영산강Ⅳ지구 >

- 2001. 12 : 1-1, 1-2공구 착수
- 2008. 12 : 2-1, 2-2공구 착수
- 2010. 10 : 5-1공구 착수
- 2011. 12 : 1-2공구 준공
- 2013. 12 : 3-1, 5-2공구 착수
- 2017. 12 : 2-1공구 준공

< 서산A재정비 >

- 2008. 10 : 사업 착수(1·2공구 착공)
- 2011. 07 : 서산3공구 착수
- 2013. 08 : 서산5공구 착수
- 2016. 12 : 서산4공구 착수
- 2017. 12 : 서산1·2공구 준공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대단위농업개발(농특)	900	1,071	1,110	1,026	872	960
▪ 금강Ⅱ지구	350	350	373	355	300	270
▪ 홍보지구	150	197	210	189	122	100
▪ 영산강Ⅳ지구	250	300	302	279	270	410
▪ 서산A재정비	150	224	225	203	180	18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실적

- '17년 : 홍보지구 감30억(총사업비 협의지연에 따라 치수능력확대사업으로 전용)

○ 이월실적

- '15년, 16년, 17년 :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

○ 불용실적

- '16년 : 금강Ⅱ지구 25억(총사업비 협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따른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10 **(1,110)**	417 (417)	- (-)	1,527 (1,527)	1,295 **(1,295)**	232 (232)	- (-)
'16년	1,026 **(1,026)**	232 (232)	- (-)	1,258 (1,258)	1,019 **(1,019)**	214 (214)	25 (25)
'17년	872 **(872)**	214 (214)	70* (70)	1,156 (1,156)	757 **(757)**	399 (399)	- (-)

* '17년 이·전용 : 영산강Ⅳ지구 추경(100억) 및 홍보지구 전용(△30억원)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구 분	지적년도	지적기관	지적내용
- 금강Ⅱ지구 - 홍보지구 - 영산강Ⅳ지구 - 서산A지구	2010 2011	국정감사	사업추진 실적 저조 및 사업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확대 필요성 지적
	2015	결산국회	사업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예산편성 및 완공 위주의 집중적인 투자 필요성 지적
	2016	결산국회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완공 위주 추진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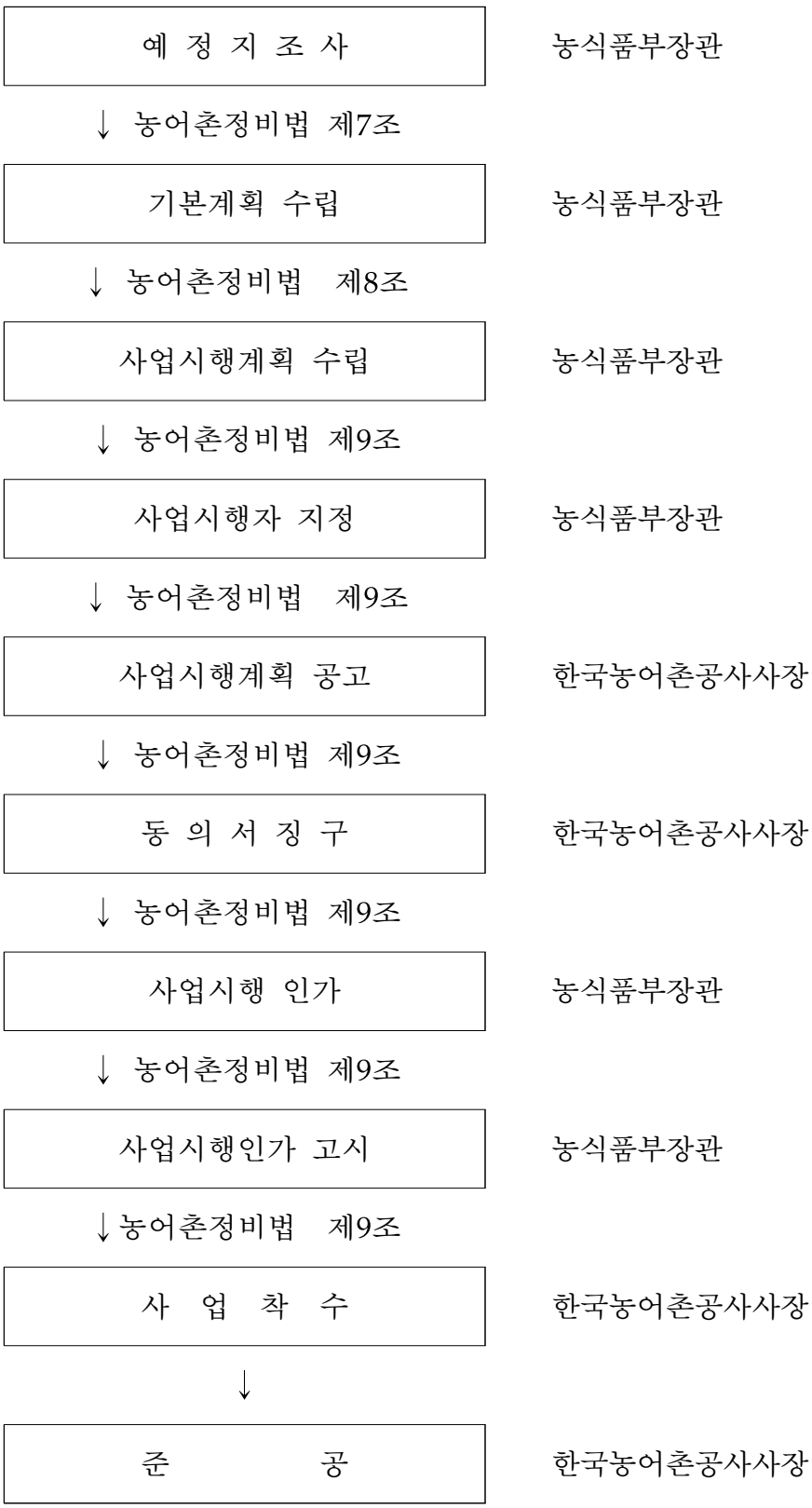
예 정 지 조 사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8조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자 지정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계획 공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농어촌정비법 제9조
동 의 서 징 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 인가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인가 고시
농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 업 착 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준 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29,217**	**39,000**	**42,000**	**3,000**	**7.7**
-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	15,284	18,000	12,700	△5,300	△29.4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	9,800	12,000	12,000	-	-
-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	747	4,000	6,000	2,000	50.0
- 이동저수지 치수능력확대	300	3,065	10,000	6,935	226.3
- 남양호	300	-	-	-	-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사후환경조사	2,786	1,935	1,300	△635	△32.8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34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간척지농업과장(박재수), 서기관(유재중, ☏ 044-201-18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 등 대규모 시설물(물넘이, 제당, 배수갑문) 보강을 통해 홍수 배제능력 향상 및 재해예방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거 사업준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 및 제체 보강으로 저수지 치수안전성 확보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방지 등 재해예방 도모		
	불갑저수지	물넘이 확장 및 제체 보강으로 저수지 치수안전성 확보		
	이동저수지	물넘이 확장 및 제체 보강으로 저수지 치수안전성 확보		
	사후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준공 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사업기간	예당저수지	2013 ~ 2019	불갑저수지	2017 ~ 2022
	삽교방조제	2014 ~ 2021	이동저수지	2016 ~ 2021
	사후환경조사	2015 ~ 2021		
총사업비	예당저수지	1,108억원 ('18년까지 투자액 891억원)		
	삽교방조제	802억원 ('18년까지 투자액 402억원)		
	불갑저수지	636억원 ('18년까지 투자액 47억원)		
	이동저수지	416억원 ('18년까지 투자액 44억원)		
	사후환경조사	153억원 ('18년까지 투자액 78억원)		
사업규모	예당저수지	물넘이확장(폭6.0m×높이3.6×26련→폭15.0m×높이6.5m×11련(L=190m)) 제체신설(길이247.5m×높이19.1m), 방수로확장(폭269m×길이320m)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120m→240m), 갑문식 어도(폭7.0m×길이30.0m) 등		
	불갑저수지	고압레디얼게이트(2련), 측수로 물넘이(L=49.5m), 제방 화단형 옹벽(H=0.4m)		
	이동저수지	제체증고(H=1.0m, 중심점토 보강), 자연형 여수로(L=96.0m), 롤러게이트(6.0m×4.3m×3련) 등		
	사후환경조사	21개소		
지원조건	국고 100%(민간자본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 시설물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 능력 향상 및 노후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42,000백만원 지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사업명	**39,000백만원**	**42,000백만원**
▪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	**18,000백만원** (물넘이, 레디얼게이트 등)	**12,700백만원** (준공)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	**12,000백만원** (사토, 언주, 수문 등)	**12,000백만원** (수문, 정수지 94% 등)
▪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	**4,000백만원** (세부설계, 우선시공(F/T))	**6,000백만원** (용지매수, 진입도로 등)
▪ 이동저수지 치수능력확대	**3,065백만원** (세부설계, 용지매수)	**10,000백만원** (굴착 및 발파 100%, 가물막이 등)
▪ 사후환경조사	**1,935백만원** (11지구)	**1,300백만원** (10지구)

□ 지원 필요성

○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

- 예당저수지 홍수배제능력 향상으로 댐 안전성 확보
- 예당저수지 홍수위험 저감으로 주변지역 침수피해 방지

・사업시행전후 침수면적은 약 107ha 감소하고 피해액은 37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 (사업계획적정성검토('12.09), KDI)

- 홍수 예·경보 시스템 설치로 인한 효율적인 홍수조절 가능
- 제체 보강을 통해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균열, 붕괴 등 재해예방
- 스톱로그를 설치함으로써 수문 고장 등 비상시에 즉시 대처 가능
-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

- 삽교호 홍수위 저감으로 침수피해 방지

・홍수피해 경감면적 : 19.426㎢(예타보고서('12.10), KDI)
・침수피해 경감 기대액 : 20.37억원/년(예타보고서('12.10), KDI)

- 홍수관리능력 증대
- 수질개선에 의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

・어도 및 수질개선시설 연간 편익 : 10.38억원/년(예타보고서('12.10), KDI)

- 하천・하구 생물 다양성 등의 수생태계 환경복원

- 종합개발을 통한 난개발 및 중복시행 방지 등 예산절감

○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

- 불갑저수지 홍수배제능력 향상으로 재해예방
- 불갑저수지 홍수위 저감으로 상·하류부 침수피해 방지
  · 홍수위 32.92m로 2.07m 저하시킬 수 있어 불갑저수지 상류 34ha와 하류부(댐붕괴시) 3,462ha(가옥 151동)의 침수면적 감소 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 **이동저수지 치수능력확대**

- 홍수배제시설 확대로 PMF발생시 상류부 홍수위 저감에 따른 침수피해 방지
- 제방 월류 방지로 이동저수지 하류의 재해예방
- 제체 여유고 확보를 통한 홍수의 제방월류 방지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사후환경조사**

-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 수행으로 사업시행 전·후 변화상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농어촌환경 조성
- 사후환경영향조사비의 안정적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 준공이후 예측치 못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적극적 대처 가능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29,217**	**39,000**	**42,000**	3,000	7.7
▪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	15,284	**18,000** (물넘이, 레디얼게이트 등)	**12,700** (준공)	△5,300	△29.4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	9,800	**12,000** (사토, 언주, 수문 등)	**12,000** (수문, 정수지 94% 등)	-	-
▪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	747	**4,000** (세부설계, 우선시공(F/T))	**6,000** (용지매수, 진입도로 등)	2,000	50.0
▪ 이동저수지 치수능력확대	300	**3,065** (세부설계, 용지매수)	**10,000** (굴착 및 발파 100%, 가물막이 등)	6,935	226.3
▪ 남양호	300	-	-	-	-
▪ 대형농업기반시설사후환경조사	2,786	**1,935** (11지구)	**1,300** (10지구)	△635	△32.8
□ **비목**(합계)	**29,217**	**39,000**	**42,000**	**3,000**	**7.7**
○ 민간자본보조(320-07)	**29,217**	**39,000**	**42,000**	**3,000**	7.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치수능력확대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 사후환경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별표 1

○ 추진경위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사업

- ’64. 12 : 예당저수지 준공
- ’05. 08 : 삽교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국토부) - 저수지 증고
- ’10. 12 : 정밀안전진단 실시(시설안전공단) - 여수토 확장, 제체보강 필요
  ※ 주요시설별 평가 “B~C”등급,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E”등급
- ’11. 02 :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수립(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련부처 합동, 대형저수지 물넘이 확장 조기 추진)
- ’11. 07 :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국가주요시설 지진방재실태 정부합동점검결과) 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방수로 확장 또는 비상수문 설치)
- ’11. 07 : 취약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통보(국토해양부, 설계기준강화에 따른 보수·방수로 확장 또는 비상수문 설치)
- ‘11. 10 : 국정감사 및 언론의 시급한 대책마련 촉구
- ’11. 11 : 예비타당성조사신청(농식품부→기획재정부)
- ’12. 03 :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완료(‘12.4~10)
- ’13. 12 : 예당저수지 물넘이확장공사 기본계획 수립
- ’14. 02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공고(국토교통부)
- ‘14. 03 : 일괄입찰 공고
- ‘14. 07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계룡건설)
- ‘14. 09 : 우선시공분(F/T) 계약 및 공사착공
- ‘15. 05 : 시행계획 승인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 ’96.11 : 삽교천 수해원인조사 보고서(건교부, 갑문확장 필요성 최초 제기)
- ’00.12 : 아산·삽교호 주변 침수원인분석 보고서(농림부)
- ’05.08 : 삽교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국토부, 갑문120m확장계획 수립)
- ’08.06 : 삽교천 하천정비기본계획(국토부, 갑문120m확장계획 수립)
- ’11.02 :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에 포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11.12 : KDI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12.10 : KDI 예비타당성조사 종료(B/C : 0.88, AHP : 0.512)
- ’14.12 : 기본계획 수립완료
- ’15.02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의결(국토교통부)
- ’15.04 :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
- ‘15.12 : 우선시공분(F/T) 계약 및 공사착공
- ‘16. 8 : 시행계획 승인(충청남도)

이동저수지 물넘이 확장사업

- ’06.10 : 이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기본계획 착수
- ’07.04 : 안성천 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지 통보(농식품부)
  (사유)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홍수조절을 위해 저수지 2m 증고 계획 → 증고할 경우 용지보상이 어렵고 보상비 과다 소요 (1천억원 이상)
- ’08.05 : 안성천 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 (증고계획 수록)
- ’14.09 : 안성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증고계획 삭제)
- ’14.11 : 이동지구 기본조사 착수
- ’17.10 : 시행계획 승인(경기도)
- ’18.01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18.02 : 공사착공

불갑저수지 물넘이 확장사업

- ’04.12 : 저수지숭상보강 준공
- ’04.12 : 비상대처계획(농림부)
- ’10.12 : 기존저수지 수문조사 보고서작성, 제체여유고부족
- ’13.12 : 정밀안전진단실시(홍수배제능력부족)
- ’14.06 : 사전타당성조사(PMF유입시 홍수배제능력부족)
- ’14.09 :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통보(농식품부)
- ’14.11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KDI, ’15.6 완료)
- ’17.08 : 기본계획수립(전라남도)
- ’17.12 : 발주공고
- ’18. 6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금광기업 컨소시엄)

대형농업시설사후환경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거 간척지,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은 사업 준공 이후 5년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여 함
- 사업시행 중에는 당해 사업비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준공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재원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내역사업 신규 추가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34**	**162**	**263**	**302**	**314**	**390**
▪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	34	130	173	191	183	180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	-	32	70	80	100	120
▪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	-	-	-	6	10	40
▪ 이동저수지 치수능력확대	-	-	-	3	2	31
▪ 남양호	-	-	-	3	-	-
▪ 대형농업기반시설사후환경조사	-	-	20	19	19	1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월) 2015, 2016, 2017 :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

○ (불용) 2015 : 사후환경영향조사 1지구(대야지구)를 총사업비내 집행(285백만원)

2016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낙찰차액 66백만원

<총 괄>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63 **(263)**	102 (102)	- (-)	365 (365)	307 **(307)**	55 (55)	3 (3)
′16년	302 **(302)**	55 (55)	- (-)	357 (357)	286 **(286)**	70 (70)	1 (1)
′17년	284 **(284)**	70 (70)	30 (30)	384 (384)	292 **(292)**	92 (92)	- (-)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73 (173)	90 (90)	- (-)	263 (263)	263 (263)	- (-)	- (-)
′16년	191 (191)	- (-)	- (-)	191 (191)	161 (161)	30 (30)	- (-)
′17년	140 (140)	30 (30)	43 (43)	213 (213)	153 (153)	60 (60)	-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0 (70)	12 (12)	- (-)	82 (82)	27 (27)	55 (55)	- (-)
'16년	80 (80)	55 (55)	- (-)	135 (135)	115 (115)	20 (20)	- (-)
'17년	90 (90)	20 (20)	10 (10)	120 (120)	98 (98)	22 (22)	- (-)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6 (6)	- (-)	- (-)	6 (6)	- (-)	6 (6)	- (-)
'17년	24 (24)	6 (6)	△23 (△23)	7 (7)	7 (7)	- (-)	- (-)

<이동저수지 치수능력확대>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3 (3)	- (-)	- (-)	3 (3)	- (-)	3 (3)	-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사후환경조사>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0 (17)	- (-)	- (-)	20 (17)	17 (17)	- (-)	3 (-)
'16년	19 (18)	- (-)	- (-)	19 (18)	10 (10)	9 (9)	1 (-)
'17년	20 (20)	9 (9)	△1 (△1)	28 (28)	28 (28)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 기본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시행지구 선정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착수

참고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개요

예당저수지 물넘이확장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응봉면 입침리 일원
○ 사 업 비 : 101,762백만원 (2013.~2019.12)
○ 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시 공 사 : 계룡건설산업(주) 컨소시엄

□ 주요사업 계획

○ 물 넘 이 : 폭15.0m×높이6.5m×11련(190m) → 배제량 5,364㎥/sec
○ 제체보강 : 콘크리트 복합댐(길이247.5m × 높이19.1m)
○ 친수공간 조성(2.0ha), 통합 홍수 예·경보시스템

예당저수지 물넘이확장공사 조감도

현장사진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원
○ 사 업 비 : 80,202백만원 (2014.~2021.12)
○ 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시 공 사 : 금광기업(주) 컨소시엄

□ 주요사업 계획

○ 배수갑문 : 폭24.0m×높이10.6m×5련(120m) → 통수량 4,088㎥/sec
○ 어도 겸 통선문(폭7m×높이13.1m×길이30m), 통합 홍수 예·경보시스템

현재 배수갑문 폭 120m(20mX6련)

확장 후 배수갑문 폭 240m(120mX2개소)

불갑저수지 물넘이확장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일원
○ 사 업 비 : 63,567백만원 (2017.～2022.12)

□ 주요사업 계획

○ 보조여수로(고압레디얼게이트 폭9.5m×높이6.5m×2련, PK Weir 길이 49.5m 등)

기존 제방 전경

기존 물넘이 전경

이동저수지 물넘이확장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일원
○ 사 업 비 : 41,565백만원 (2016.～2021.12)
○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 시 공 사 : 계룡건설산업(주)

□ 주요사업 계획

○ 여수토방수로 : 여수로(L=96m), 개수로형 방수로, 롤러게이트(3련)
○ 제 체 : 증고(H=1.0m), 중심점토 보강
○ 하천바닥 보호공(26,012㎡), 진입도로 및 관리용도로 3조

이동저수지 물넘이확장사업 조감도

현장사진

대형농업생산기반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 목 적

○ 간척지, 저수지 둑높임 등 대형사업은 준공 이후 5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방안 마련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 후 5년(토취장 3년)까지의 의무적 이행

□ 대상지구 : 21지구

○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9지구)

- 궁, 대아, 백곡, 탑정, 장성, 담양, 함동, 나주, 광주

○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1지구)

○ 농촌용수개발사업(5지구)

- 성읍, 옹포, 함덕, 서림, 마동

○ 대단위 간척사업(6지구)

- 시화, 화옹, 화옹7공구 토취장, 홍보, 새만금, 영산강3

□ 추진방향

○ 지구별 환경부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환경질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시행 전·중·후 환경변화상을 분석

구 분	대상지구	연도별 소요예산(백만원)								비고
		계	'15	'16	'17	'18	'19	'20	'21 이후	
계	21개소	15,277	1,755	1,851	1,935	1,935	1,300	1,218	5,283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9)	9개소	7,339	1,535	1,564	1,525	1,532	786	454	-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1)	1개소	1,310	220	287	273	265	265	-	-	
농촌용수 개발사업(5)	5개소	2,586	-	-	137	138	249	249	1,813	
대단위 간척사업(6)	6개소	4,042	-	-	-	-	-	515	3,527	

6. 수리시설유지관리(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154,700	162,232	150,000	△12,232	△7.5

* 사업코드 : 20 - 11 - 100 - 101 - 4000 - 4037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서은희, ☏ 044-201-185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공사관리 수리시설 본래 기능의 유지·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 • 가뭄·홍수 등에 신속 대응하여 국가 재난예방 및 국민생명 보호 * '00년 통합이후 농업용수이용료를 면제하고, 유지관리비용 국고지원 법제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사업기간	• '88~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공사관리지역 499천ha에 대한 농업용수 급수 및 배수관리 • 수리시설물 13,911개소, 용·배수로 101,655㎞ 보수 및 관리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유지관리 총 비용 중 공사 자체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국고 지원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노후 수리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관리와 안정적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150,000백만원 국고지원

○ 산출내역

- '18년 국고지원 : 150,000백만원 = 총비용(A) 375,210 - 자체충당(B) 225,210

○ 총 비용 : 375,210백만원 ('18년 365,042백만원 대비 10,168백만원, 2.8% 증액)

- 직접비 : 175,595백만원 (전년 165,427 대비 10,168 증액, ↑6.1%)

• 수선·정비가 긴급히 필요한 시설물 보수비, 전력료·수리시설관리원 운영비·수초 및 퇴적물 제거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비, 기타 직접비(지방세) 등

• 수리시설 안전 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비 전년 대비 증액 편성

- 인건비 : 144,101백만원 (6년 연속 동결)

- 경비(통계조사 포함) : 55,514백만원 (6년 연속 동결)

○ 자체충당금(B) : 225,210백만원

- '18년 202,810백만원 대비 11.0% 증액된 225,210 백만원 편성(전년대비 22,400백만원 증액)

- 부대운영수익 : 66,946백만원 (전년 68,724백만원 대비 1,778백만원 감액)

· 급수 및 임대는 최근 3개년('16~'18) 평균 26,023백만원에 물가상승률을 고려 1% 수준 증액 편성

· 준설은 사업지구 등을 고려 '18년 수준 반영

- 자산매각수익 : 158,264백만원

· '18년 134,536백만원 대비 최근 3개년 평균수준(122,156백만원) 및 수도권 보상금 수령 시기 등을 고려 17.6% 증액 반영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수리시설유지관리	**162,232백만원**	**150,000백만원**
▪ 수리시설유지관리	○ 총 비 용 : 365,042백만원 - 공사자체충당: 202,810백만원 - 국고 지원 : 162,232백만원	○ 총 비 용 : 375,210백만원 - 공사자체충당: 225,210백만원 - 국고 지원 : 150,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노후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 유지관리 및 개보수 필요

- 용·배수로 101,655km중 52%(53천km)가 흙수로로 용수 손실 발생

- 공사 관리 수리시설물 13,911개소 중 30년 이상이 8,818개소(63.4%)
  특히, 저수지의 경우 3,1013개소(88.5%)가 30년 이상으로 노후

○ 유지관리비는 국가 시설물 기능유지를 위한 의무 지출적 비용

- 예산부족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 미흡 시 안정영농 및 재난예방 곤란

○ 필요 재원은 우선 공사가 자체 충당하고 있으나, 부족분의 국고보조금 지원 필요

- 매년 약 3,700억원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나, 공사 자체충당(부대사업수익, 자산매각수익)에는 한계, 부족분 국고지원 필요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고보조금(A-B)	**154,700**	**162,232**	**150,000**	**△12,232**	**△7.5**
□ 총 비용(A)	**334,636**	**365,042**	**375,210**	**10,168**	**2.8**
1. 시설관리비(직접비)	153,322	165,427	175,595	10,168	6.1
가. 시설물 보수비	57,729	64,891	75,059	10,168	15.7
나. 자재대	6,932	1,419	1,419	0	0
다. 사업소 운영경비	394	522	522	0	0
라. 시설물 관리비	80,559	87,661	87,661	0	0
마. 공과금 등 기타	7,708	10,934	10,934	0	0
2. 인 건 비	133,671	144,101	144,101	0	0
3. 경 비	47,343	55,214	55,214	0	0
4. 통계조사	300	300	300	0	0
□ 공사 자체충당금(B)	**179,936**	**202,810**	**225,210**	**22,400**	**11.0**
1. 부대운영수익	62,857	68,274	66,946	△1,328	△1.9
가. 급수수익	21,430	27,548	26,283	△1,265	△4.6
나. 임대수익	23,527	24,642	24,029	△613	△2.5
다. 준설수익	2,836	2,480	2,480	0	0
라. 기타수익	15,064	13,604	14,154	550	4.0
2. 자산매각수익	117,078	134,536	158,264	23,728	17.6
□ 비목(합계)	154,700	162,232	150,000	△12,232	△7.5
○민간경상보조(320-01)	154,700	162,232	150,000	△12,232	△7.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및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88년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용수이용료(조합비)를 대폭 인하하고, 부족한 조합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농업용수이용료(10a당) : ('87) 벼26kg ⇒ ('88) 10kg ⇒ ('89~'95) 5kg
⇒ ('96~'99) 6천원 ⇒ ('00) 100% 면제

- '00년 통합공사로 출범하면서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조합비를 100%면제하고, 국가시설물 관리 대행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국고 지원 법제화
- 통합 이후 유지관리 재원 국고부담률은 유지관리사업비 총액의 47% 수준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수리시설유지관리	1,243	1,565	1,610	1,630	1,547	1,62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10 **(1610)**	( )	( )	1,610 (1610)	1,610 **(1610)**	( )	( )
'16년	1,630 **(1,630)**	( )	( )	1,630 (1,630)	1,630 **(1,630)**	( )	( )
'17년	1,623 **(1,623)**	( )	( )	1,623 (1,623)	1,623 **(1,62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정상추진

▪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홍수조절 및 가뭄대비 기능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므로 안전영농과 재해관리 차원에서 국가적 추진이 타당한 사업임

○ ‘16년 통합재정사업 자체평가 : 우수(95점), 5위/65개 사업

○ ‘16년 결산검토보고서 (예정처)

- (지적사항) 사업비를 직접 경비와 간접경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적 교육과정에 대한 집행은 공통관리비로 집행
- (조치사항) 경비를 직접 및 간접경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회계담당 직원 교육 등 실시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전년 12월	유지관리시행계획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시행계획, 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
⇓		
1월	보조금 교부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공사)	○ 교부신청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
⇓		
1월~ 12월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 (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매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
⇓		
1월~ 12월	보조금 개산급 교부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공사)	○ 개산급 신청에 의한 자금교부 및 집행
⇓		
12월	유지관리사업 정산서 제출 (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유지관리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
⇓		
12월	보조금 심사·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공사)	○ 보조금 교부확정 통보

참고 1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출 및 수입구성

❑ 지출(비용) : 시설관리비, 인건비, 경비

❑ 수입(재원) : 국고보조금, 공사자체충당금(부대사업수익, 자산매각수익)

구 분			수입재원 및 사용용도
지출(비용)	시설관리비		저수지, 양·배수장, 보 등 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보수비, 전력료 및 유류대, 용·배수로 수초 및 퇴적물 제거, 수질조사 및 관리비, 계절인부임 등 시설물관리비
	인건비		유지관리 직·간접 종사자의 인건비
	경비	직접	유지관리 직원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교육훈련비 등
		간접(공통)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획, 총무, 감사 등 공통인력과 이에 따른 경비
수입(재원)	국고보조금		공사법 제29조에 의한 정부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공사자체충당금	유지관리부대운영수익	급수사업, 임대사업, 준설사업, 기타사업 수익
		자산매각수익	통합시 농조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매각이익 중 유지관리사업 수익으로 대체되는 금액

❑ 수리시설유지관리 수입(재원)조달 관련 법적 근거

○ **국고보조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공사법") 제29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 **유지관리부대사업 수익**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4항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징수한 비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개·보수 비용,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유지관리부대사업

·급수사업 : 저수지 등 수원공의 잉여용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판매

·임대사업 : 시설물 및 시설부지, 저수지 수면 등을 임대하여 수수료 징수

·준설사업 : 저수지 등의 모래, 자갈 등 골재 판매

·기타사업 : 신재생에너지사업(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 등 공사 자체수익사업

○ **자산매각 수익** : 공사법 부칙 제9조

- 공사가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2 '19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A)	'19 예산 (B)	증감 (B-A)	산 출 내 역
□ 총 계 〈가〉	365,042	375,210	10,168	전년대비 2.8% 증
1. 직 접 비	165,427	175,595	10,168	전년대비 6.1% 증
가. 시설물보수비	64,891	75,059	10,168	
- 저 수 지	2,020	2,020	-	- 전년 수준 반영(3개년 평균 2,416의 83.6% 수준) * 3년 평균 2,416 ('15) 2,809 ('16) 2,420 ('17) 2,020 * 저수지 청소비용, 최근 수질 악화로 증가 추세
- 양·배수장	10,871	10,871	-	- 전년 수준 (3개년 평균11,885의 91.5%) * 3년 평균 11,885 ('15) 12,456 ('16) 12,330 ('17) 10,870
- 용·배수로	21,661	21,661	-	- 전년 수준(3개년 개년 평균 26,213의 83% 수준) * ('15) 28,979 ('16) 28,000 ('17) 21,661
- 기 타	30,339	40,507	10,168	- 보, 집수암거 등 6,035개소 보수비(개소당 340만원) - 재해, 안전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경비 증액 * 건축물내진보강 27억원, 비상전원장치 167억원 등 포함
나. 자 재 대	1,419	1,419	-	- PP마대, 말목, 비닐 등 보수 및 수방대비 비용으로 시설물 보수비의 2% 수준 반영
다. 사업소운영경비	522	522	-	- '18년 예산수준 * 105개소 : 본사(1), 지역본부(9), 지사(93), 사업단(2)
라. 시설물관리비	87,661	87,661	-	
1) 전력료 및 유류대	14,652	14,652	-	- 전년수준 * '17년 실정산액 13,857백만원의 5% 증액 반영 -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증가 수요 반영
2) 수리시설관리원 운영비	24,763	24,763	-	- '17년 인원 7,719명 × 54만원 × 6개월(년324만원) * 인원 ('14)7,699명 ('15)7,700명 ('16)7,596명
3) 용배수로 수초제거	3,558	3,558	-	-전년수준 * ('14) 3,821 ('15) 2,879 ('16) 3,195백만원
4) 용배수로 퇴적물제거	7,025	7,025	-	-전년수준 * ('15) 8,274 ('16) 6,289 ('17) 9,716백만원
5) 현장관리비	4,316	4,316	-	-전년수준 * 현장인력 (직접종사 1,760명의 상시 구역 내 근무, 특별당직, 휴일근무 실비)
6) 유지부대(수질)	3,326	3,326	-	-전년수준 * 수질조사, 단기수질개선대책, 수질정화시설, 사후관리, 환경정화활동 등 실소요액
7) 유지부대(관정)	1,465	1,465	-	-전년수준 * 지하수법(관정) 강화로 연장허가, 사후관리, 수질검사 등을 위한 실소요액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산 출 내 역
8) 유지부대 (물관리과학화)	3,339	3,339	-	-전년수준 TM/TC, 자동수위계 등 점검·정비 및 보수비, 통신비
9) 유지부대 (지소관리)	1,104	1,104	-	-전년수준 ※ 172개소 무인경비, 전력료 등 관리비
10) 유지부대(기타)	24,113	24,113	-	-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23억원, 시설부담금 16억원, 자체충당금 우수부서 지원금 40억원, 저활용저수지 대체시설 설치 30억원 등
마. 기타 직접부대비	**10,934**	**10,934**	-	- 수리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 3,000백만원 - 시설계약직 운영비 : 6,998백만원(220명×32백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인지대 등 : 936백만원
2. 인 건 비	**144,101**	**144,101**	-	-'18년 예산수준으로 동결('14년부터 6년째 동결) ※ 수리시설유지관리 종사자 2,419명
3. 경 비	**55,214**	**55,214**	-	-'18년 예산수준으로 동결('14년부터 6년째 동결) ('16) 52,214 ('17) 55,214 ('18) 55,214
4 통계조사	300	300	-	-지자체 수리시설물 통계자료 보완 등에 필요한 조사분석비 실비 300백만원 반영 ※ ('16) 300 ('17) 300 ('18) 300 ※ 통계연보 발행, 교육비 등
□ 재 원	**365,042**	**375,210**	**10,168**	**전년대비 2.8% 증**
○공사자체충당 〈나〉	**202,810**	**225,210**	**22,400**	**전년대비 11.0% 증**
1. 부대 운영수익	**68,274**	**66,946**	△1,328	
가. 급수수익	27,548	26,283	△1,265	- 최근 3개년 평균에 물가상승률 1% 인상 반영 ※ 최근 3개년('16~'18) 평균 26,023백만원*1.01
나. 임대수익	24,642	24,029	△613	- 최근 3개년 평균에 1% 인상 반영 ※ 최근 3개년('16~'18) 평균 23,791백만원*1.01
다. 준설수익	2,480	2,480	-	- '18년 예산 수준 반영 ※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신규 불가하며 2개 지구 운영 (아산호, 간월호)
라. 기타수익	13,604	14,154	550	- 신재생은 '18년 대비 5.7% 인상(8,868백만원) ※출자금 수익 8,268백만원, 자체자금 수익 600백만원 - 수탁은 최근 3개년 평균에 물가상승률 1% 인상(5,286) ※ 최근 3개년('16~'18) 평균 5,324백만원*1.01
2. 자산 매각대금	**134,536**	**158,264**	**23,728**	- '18년 대비 17.6% 증액 반영 (평택 보상금 수령 등 수도권지역 보상액 증가 예상) - 전년 이월액 16,361백만원 반영
○국고보조금 〈가-나〉	**162,232**	**150,000**	**△12,232**	**전년대비 7.5% 감**

참고 3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 현황

❑ 公社관리 시설 : 13,911개소

❑ 公社관리 수혜면적 : 499천ha(수리답 728천ha의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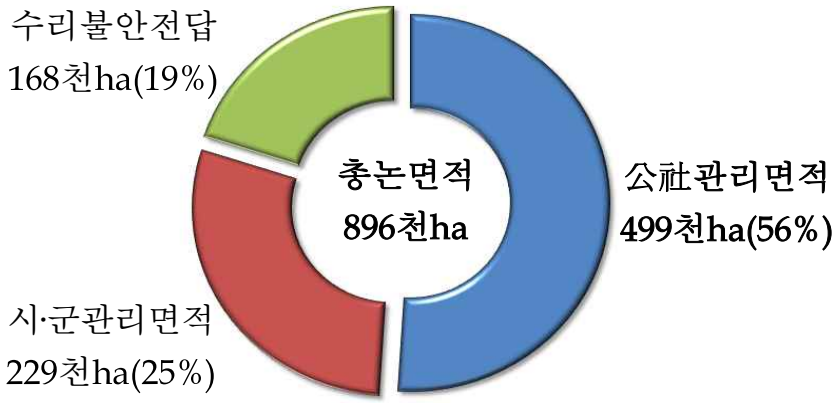

❑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 수 원 공(방조제 포함)

(단위 : 개소, ha)

구 분	계		公 社 관 리		시·군 관 리	
	개소수	면적(ha)	개소수	면적(ha)	개소수	면적(ha)
계	72,786	727,876	13,911	498,785	58,875	229,091
저 수 지	17,313	440,281	3,403	337,561	13,910	102,720
양배수장	8,233	181,947	4,473	153,606	3,760	28,341
취입보등	45,643	100,918	5,891	7,618	39,752	93,300
방 조 제	1,597	-	144	-	1,453	-
기타	-	4,730	-	-	-	4,730

○ 용·배수로

(단위 : km)

구 분	계	公 社 관 리	시·군 관 리
계	185,847 (100%)	101,655 (100%)	84,192 (100%)
토 공	99,507 (53.5%)	52,671 (51.8%)	46,836 (55.6%)
구 조 물	86,340 (46.5%)	48,984 (48.2%)	37,356 (44.4%)

❑ 경과연수별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공사관리)

(단위 : 개소, ha)

구분	계		30년미만 ('88년이후)		30년이상~50년미만 ('68~'87)		50년이상 ('67년이전)		수혜 면적 (ha)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3,911	100	5,093	36.6	4,682	33.7	4,136	29.7	498,785
저수지	3,403	100	390	11.5	609	17.9	2,404	70.6	337,561
양수장	3,558	100	2,080	58.5	1,245	35.0	233	6.5	127,710
양배수장	107	100	69	64.5	25	23.4	13	12.1	25,896
배수장	808	100	697	86.3	93	11.5	18	2.2	-
취입보	4,156	100	611	14.7	2,219	53.4	1,326	31.9	7,349
집수암거 집수정	309	100	70	22.7	199	64.4	40	12.9	264
관 정	1,426	100	1,156	81.1	265	18.6	5	0.3	5
방 조 제	144	100	20	13.9	27	18.7	97	67.4	-

❑ 용·배수로 현황(공사 관리)

(단위: km)

구 분	계	간 선	지 선	지 거
계	101,655	21,995	27,162	52,498
- 토 공	52,671	7,062	11,936	33,673
- 구조물	48,984	14,933	15,226	18,825
○ 용수로	65,713	17,095	18,543	30,075
- 토 공	25,270	3,641	5,930	15,699
- 구조물	40,443	13,454	12,613	14,376
○ 배수로	35,942	4,900	8,619	22,423
- 토 공	27,401	3,421	6,006	17,974
- 구조물	8,541	1,479	2,613	4,449

7. 수리시설개보수(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리시설개보수	504,300	460,000	558,018	98,018	21.3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38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이재천, ☏ 044-201-186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파손되거나,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수원공 개보수)

○ 노후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사전에 정밀진단하여 보수·보강법 제시 및 개보수와 연계 시행함으로써 재해사전대비(수리시설 안전진단)

○ 노후·파손된 수로 보수·보강, 흙수로 구조물화 등(평야부 개보수)

○ 저수지내 토사 등 퇴적물을 준설하여 용수량 확보(저수지 준설)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재해취약 시설 보수·보강(수원공 개보수), 수로 및 농로 정비(평야부 개보수), 수리시설 안전진단, 준설 등
사업기간	'68～'30
총사업비	149,323억원 ('18년까지 투자액 92,127억원)
사업규모	수원공 개보수 5,842개소, 평야부 수로정비 21.6천km 등
지원조건	국고 100%(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재해대비 분야 : 404,644백만원

- 수원공 준공 101지구 106,710, 계속 119지구 143,416, 신규 100지구 8,000
- 수리시설 안전진단 30,000
- 양수장시설개선 116,518

○ 영농편의 분야 : 153,374백만원

- 용배수로 준공 32지구 28,337, 계속 128지구 117,087, 신규 70지구 4,900
- 저수지 준설 3,05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수리시설개보수	**460,000백만원**	**558,018백만원**
○ 재해대비 분야	341,179백만원	404,644백만원
▪ 수원공	376지구 311,179백만원 ·준공 156지구 154,660백만원 ·계속 120지구 146,519백만원 ·신규 100지구 10,000백만원	320지구 258,126백만원 ·준공 101지구 106,710백만원 ·계속 119지구 143,416백만원 ·신규 100지구 8,000백만원
▪ 수리시설안전진단	30,000백만원	30,000백만원
▪ 양수장시설개선	-	116,518백만원
○ 영농편의 분야	118,821백만원	153,374백만원
▪ 용배수로	181지구 108,821백만원 ·준공 22지구 20,841백만원 ·계속 89지구 82,030백만원 ·신규 70지구 5,950백만원	229지구 150,324백만원 ·준공 31지구 28,337백만원 ·계속 128지구 117,087백만원 ·신규 70지구 4,900백만원
▪ 준설	10,000백만원	3,0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노후된 수리시설이 많고 최근 기후변화(홍수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해대비를 위한 저수지 등 보수·보강 시급

- 농어촌공사 관리시설 총 13,767개소 중 8,694개소(63%), 저수지는

3,403개소 중 3,013개소(89%)가 설치된지 30년 이상 경과

○ 원활한 물관리 및 용수절약 등을 위한 흙수로 정비 필요

- 농어촌공사 관리 용·배수로 102천km 중 53천km(52%)가 흙수로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리시설개보수**	**504,300**	**460,000**	**558,018**	**98,018**	**21.3**
○ 재해대비분야	379,588	341,179	404,644	63,465	18.6
▪ 수원공	349,588	311,179 ·준공156지구 154,660 ·계속120지구 146,519 ·신규100지구 10,000	258,126 ·준공101지구 106,710 ·계속119지구 143,416 ·신규100지구 8,000	△53,053	△17.0
▪ 안전진단	30,000	30,000	30,000	-	-
▪ 양수장시설개선	-	-	116,518	116,518	순증
○ 영농편의분야	124,712	118,821	153,374	34,553	29.0
▪ 용배수로	102,222	108,821 ·준공22지구 20,841 ·계속89지구 82,030 ·신규70지구 5,950	150,324 ·준공 31지구 28,337 ·계속128지구 117,087 ·신규 70지구 4,900	41,503	38.1
▪ 준설	22,490	10,000	3,050	△6,950	△69.5
□ **비목**(합계)	**504,300**	**460,000**	**558,018**	**98,018**	**21.3**
○ 민간자본보조(320-07)	504,300	460,000	558,018	98,018	21.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정부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968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행('89년부터 전액 국고지원)
- '11.12 총리실 주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 '13.02 농식품부 주관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13~'18)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수리시설개보수	4,300 (500)	4,800 (65)	5,487 (2,835) [403]	5,400 (247)	4,743 (300)	4,600

* ( ) 외서는 추경, [ ] 외서는 예비비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월 :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 발생

○ 불용 : 농특세 세수부족으로 인한 자금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수요가 적었던 긴급재해대비 유보액(태풍 등 재해 미발생) 50,000백만원과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7,362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725 (8,725)	2,063 (2,063)	- (-)	10,788 (10,788)	8,913 (8,913)	1,875 (1,875)	- (-)
'16년	5,647 (5,647)	1,875 (1,875)	- (-)	6,948 (6,948)	4,588 (4,588)	2,360 (2,360)	574 (574)
'17년	5,043 (5,043)	2,360 (2,360)	- (-)	7,403 (7,403)	5,300 (5,300)	2,103 (2,103)	- (-)

* ('15년) 예비비 403억원, 추경 2,835억원 ('16년) 추경 247억원 ('17년) 추경 300억원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로 대체) : 우수

○ 가뭄극복 및 노후 수리시설의 재해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증액 필요 (국회 상임위·예결위 예산안 심사시)

○ 세입재원이 부족한데 공사 계약·시행(국회 상임위·예결위 '17결산 심사시)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안전진단(시설관리자) → 예정지 조사(시·도) →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시·도) → 기본계획 수립(시·도)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시행계획 승인(시·도) → 착공(사업시행자) → 준공(시·도)

8. 농촌용수관리(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용수관리	38,772	47,263	51,092	3,829	8.1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38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강대일)☎(044-201-18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갖춰 용수 절약, 재해 사전 예방 및 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 전국 농업용수원의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평가하여 수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농업용수원의 수질보전 및 오염용수원의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과 농촌환경 개선

○ 지하수 자원관리

- 농어촌지역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도모

○ 농촌용수 국제협력

- 농촌용수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기술 홍보를 통한 국격 제고 및 관련 기술 수출에 기여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여 안정영농 및 가뭄피해 최소화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저수지, 수문 등의 현장인력 수동조작방식을 중앙원격 자동조작화 하여 용수절약, 재해대응력 제고 등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 수질조사 : 전국 농업용수원의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평가하여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수질개선 : 오염된 농업용수원의 수질 개선으로 안전농식품 생산 ◦ (지하수자원관리) 농어촌지역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조사·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도모 - 농촌지하수관리 : 농어촌 지하수 개발·이용, 오염원, 수질 등 조사·분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하수 고갈, 오염, 장애현상 등 사전예방 - 해수침투조사 : 해안·도서지역 농경지에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운영하여 해수유입으로 인한 농경지 염해피해 사전예방 ◦ (농촌용수 국제협력) 농촌용수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적 물관련 주요 이슈를 선도하고 농업용수 기술분야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을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여 안정영농 및 가뭄피해 최소화 도모
사업기간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01~’30년 ◦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 : ‘90~계속(조사 ‘90~계속, 개선 ’07~계속) ◦ 지하수자원관리 : ’82~계속(농촌지하수관리 ’01~’21년, 해수침투조사 ’91~계속, 가뭄대비 지하수공급능력조사(수맥조사) ’82~계속 ◦ 농촌용수 국제협력 : ’13~계속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18~계속
총사업비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4,765억원 (‘17까지 1,354억원) ◦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 - 수질조사 : (‘17까지 490억원) - 수질개선 : (‘17까지 1,289억원) ◦ 지하수자원관리 - 농촌지하수관리 : 1,044억원 (‘17까지 770억원) - 해수침투조사 : 49억원 (‘17까지 35억원)

구 분	내 용
사업규모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27지구(93개 지사) ◦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 - 수질조사 : 950지점(년 4회 조사) * 약 17천개 저수지 일제조사는 격년 조사(짝수해) - 수질개선 : 53지구('07년 환경부와 공동조사, Ⅰ단계 사업계획) ◦ 지하수자원관리 : 농촌지하수관리 352지구, 해수침투조사 388개소 ◦ 농촌용수 국제협력 : 농촌용수 관련 국제교류회의, 워크숍 개최, 발간물 제작 등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가뭄 예·경보 : 연 12회(매월) - 농업가뭄조사 : 농촌용수구역(511개소) 조사, 논/밭 가뭄모니터링(매년) - 농업가뭄평가 : 전국 167개 시·군 가뭄평가, 물절약 교육/홍보 평가관리(매년)
지원조건	민간보조,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12,669백만원

▪ 신규 : 300백만원(1지구×300백만원)

▪ 계속 : 12,369백만원(9지구×1,374백만원)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 수질조사 및 개선을 위한 소요 사업비 31,122백만원

- 농업용수 수질조사 : 4,500백만원

▪ 측정망조사 : 4,000백만원 [(950개소(상시측정망) × 1.1백만원 × 4회)]

▪ 수질 중금속조사 : 80백만원 [(112개소 × 179천원 × 4회)]

▪ 농업용 저수지 수질전수조사 : 300백만원(11천여개소/3년, 3,786개소)

▪ 저수지 호내 퇴적물조사 : 120백만원 [(195개소 × 615천원)]

- 농업용수 수질개선 : 22,242백만원

▪ 신규 : 700백만원(7지구×100백만원)

▪ 계속 : 14,878백만원(5지구)

▪ 준공 : 5,264백만원(5지구 잔사업비)

▪ 기본조사 : 1,190백만원(7지구×170백만원)

▪ 수질개선 완료지구 모니터링 : 210백만원(21지구×10백만원)

-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계속) : 3,000백만원

  * ('18) 3,000백만원 → ('19) 3,000백만원

- 연제저수지 수질개선사업(신규, 단년) : 980백만원(준설사업비)

- 입장저수지 수질조사 : 400백만원(기본조사)

○ 지하수자원관리 : 6,019백만원

▪ 농촌지하수관리 : 5,920백만원(20지구×296백만원)

▪ 해수침투조사 : 99백만원(9개소×11백만원)

○ 농촌용수 국제협력 : 300백만원

▪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총회(멕시코), 한일 실무급 워크숍, INWEPF 운영위 참석 및 개최, INWEPF WG-2 활동 등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982백만원

▪ 가뭄 예·경보 구축·운영 : 354백만원(시스템 구축·운영, 농업가뭄지도 작성 등)

▪ 가뭄조사 및 평가 : 628백만원(관개계획 및 실적조사, 논/밭 가뭄상황 모니터링, 지역별 가뭄대응능력 평가 등)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촌용수관리	47,263백만원	51,092백만원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10,373백만원	12,669백만원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 신규 : 300백만원(1지구×300백만원) - 계속 : 10,073백만원(8지구×1,259백만원)	- 신규 : 300백만원(1지구×300백만원) - 계속 : 12,369백만원(9지구×1,374백만원)
○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개선	29,500백만원	31,122원
▪ 수질조사	4,300백만원	4,500백만원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4,000백만원 (950개소×1.1백만원×4회)	4,000백만원 (950개소×1.1백만원×4회)
- 농업용수 중금속조사	-	80백만원 (112개소×179천원×4회)
- 농업용 저수지 수질 전수조사	300백만원(11천여개소/3년)	300백만원(11천여개소/3년)
- 저수지 호내 퇴적물 조사	-	120백만원 (195개소×615천원)
▪ 수질개선	22,200백만원	22,242백만원
- 수질개선사업	20,840백만원 - 신규 : 400백만원(4지구×100백만원) - 계속 : 13,339백만원(7지구) - 준공 : 7,101백만원(6지구 잔사업비)	20,842백만원 - 신규 : 700백만원(7지구×100백만원) - 계속 : 14,878백만원(5지구) - 준공 : 5,264백만원(5지구 잔사업비)
- 기본조사	1,190백만원(7지구×170백만원) ※기본조사 7지구(전략환경평가포함)	1,190백만원(7지구×170백만원) ※기본조사 7지구(전략환경평가포함)
- 사후모니터링	170백만원(준공지구 17지구)	210백만원(준공지구 21지구)
▪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3,000백만원(계속공사비)	3,000백만원(계속공사비)
▪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	980백만원(수질개선 준설사업비)
▪ 입장저수지 수질조사	-	400백만원(중금속 기본조사)
○ 지하수자원관리	6,019백만원	6,019백만원
▪ 농촌지하수관리	5,920백만원(20지구×296백만원)	5,920백만원(20지구×296백만원)
▪ 해수침투조사	99백만원(9개소×11백만원)	99백만원(9개소×11백만원)
○ 농촌용수국제협력	100백만원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총회(멕시코), 한일 실무급 워크숍, INWEPF 운영위 참석, INWEPF WG-2 활동 등	300백만원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총회(멕시코), 한일 실무급 워크숍, INWEPF 운영위 개최 및 참석, INWEPF WG-2 활동 등
○ 농업가뭄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671백만원	982백만원
▪ 가뭄예·경보 구축·운영	354백만원(가뭄예·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농업가뭄지도 작성 등)	354백만원(가뭄예·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농업가뭄지도 작성 등)
▪ 가뭄조사 및 평가	317백만원(관개계획 및 실적조사, 논/밭 가뭄상황 모니터링, 지역별 가뭄대응능력 평가 등)	628백만원(관개계획 및 실적조사, 논/밭 가뭄상황 모니터링, 지역별 가뭄대응능력 평가 등)

□ 지원 필요성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태풍, 집중호우 및 가뭄 등에 대비한 실시간 물 관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적재·적소·적량 용수공급 등 효율적 물관리 도모
- 최근 유지관리 인력 및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어 재해대처능력 강화 및 영농편의를 위해 자동화시스템 구축 필요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농업용수 수질조사>

- 국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등에 근거한 국가차원의 법정 조사
  ▪ 수질측정망 업무분장 : 환경부(하천, 일반호소), 농식품부(농업용호소)
- 국정과제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구 구현」을 적극 지원
  ▪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GAP(농산물우수관리) 적용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필수조건 :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의 수질조사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빈도 및 강도 증가 등으로 농촌지역 수질오염 심화
  * 수질기준 초과율 : ('11)13.6%→('12)16.7%→('13)17.8%→('14)21.1%→('15) 22.6%

<농업용수 수질개선>

- 농촌지역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화 등으로 수질오염물질 및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수질개선이 시급
  ▪ 초과시설: ('11) 114 → ('12) 138→ ('13) 147 → ('14) 174 → ('15) 220개소
- 수질개선이 시급한 농업용저수지 53지구(1단계)에 대해 환경부의 상류대책과 연계하여 계획기간('17년)내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사업비 계속 지원 필요
  ▪ 농식품부·환경부 공동 '17년까지 53개 지구 수질개선 사업착수 추진
  ▪ '15년까지 31지구 착수(58%), 사업비 726억원(43.2%) 투자
- '14년까지 준공 17지구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효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 수질개선사업 시설별(인공습지, 침강지 등), 시기별로 수질정화효율이 다르지만,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
- 신정부 국정과제인「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의 실천계획임

▪ 실천계획 : 녹조 발생 원인물질 적극 감축 등으로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확대 설치

-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위해 청정 농업용수 필요
  ▪ '08년 충남 아산 및 '11년 전남 함평 등 수질악화로 친환경인증 취소
  ▪ '12년 홍동저수지 수질개선사업('07～'09) 시행으로 친환경인증 유지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13년) 3.1조원 → ('20년) 7.5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
  ▪ '14년 전체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 예상
- 매년 국정감사시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확대 및 종합대책 마련 요구

<수질개선 사후 모니터링>

- 수질개선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연차별, 시설별 정화효율 검증 및 현장 운영 적용성 향상방안 강구
  ▪ 지속적인 수질개선 사업효과 유지를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마련

○ 지하수 자원관리

- 농어촌지역의 지하수는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 이용량 40억㎥ 중 37억㎥(92%)을 차지하는 중요 수자원
  ▪ 농어촌지역은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질오염에 취약한 환경
-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100%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군·구는 8개(4%), 50～100%를 이용하는 시·군·구는 57개(25%)로서 체계적인 관리 시급 (국토부, 2015년 지하수조사연보)
- 지하수는 공적자원으로서 국가는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조기구축 지원 필요
  ▪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예산투자 및 지하수정보 구축 미흡으로 폐공 과다 발생 및 오염초래 등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지적(감사원)

- 「농촌지하수관리」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난개발 방지, 폐공 방지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 ▪ 지하수 과다이용, 지하수오염 취약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맞춤식 관리대책(대체관정개발 등) 제안/활용('13년까지 3,616/2,905건)
  - ▪ 지하수는 특성상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 및 정화가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 예방체계 조기 구축이 중요

※ '14년까지 발생된 폐공 132천공 중 수량/수질 문제로 발생된 폐공은 21.9천공으로 17% 차지, 약 2,400억원의 경제적 손실 추정

※ 부산시 문현동 32천평 오염복원에 120억원 소요, 전남 무안군 무안읍 지역의 지하수 난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대책에 '12까지 255억원 투자

- 가뭄시 「농촌지하수관리」 성과인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방안도」를 활용하여 가뭄우심지구에 대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즉시 활용 가능
-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 물 부족, 수질오염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하수 자원관리」 체계 조속 정비 필요

○ 농촌용수 국제협력

- INWEPF(논농업 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 워킹그룹2 의장국으로서 관련 워크숍 개최, 보고서 발간 등 활동지원 필요
- 한・일 실무급 공동워크숍 및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집행위원회(프랑스) 활동 등 기타 국제협력 지원 등
- 기타 농업용수분야 각종 국제협력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 등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가뭄 예·경보 : 시스템 구축·운영, 농업가뭄지도 작성, 가뭄우심지역 도출 등
- 농업가뭄조사 : 농촌용수구역 수리시설 관개계획 및 관개실적 조사·분석, 논/밭 가뭄상황 모니터링 등
- 농업가뭄평가 : 지역별 가뭄대응능력 평가·분석, 가뭄발생원인 파악 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 농업용수관리	38,772	47,263	51,092	3,829	8.1
▪ 농업용수관리자동화	11,523	10,373 <신규>300 (1지구×300백만) <계속>10,073 (8지구×1,259백만)	12,669 <신규>300 (1지구×300백만) <계속>12,369 (9지구×1,374백만)	2,296	22.1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20,783	29,500	31,122	1,622	5.5
< 농업용수 수질조사>		4,300	4,500	200	4.7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4,000 (950개×1.1백만원×4회)	4,000 (950개×1.1백만원×4회)	-	-
- 농업용수 중금속조사		-	80 (112개×179천원×4회)	80	(순증)
- 농업용 저수지 수질전수조사		300	300	-	-
- 저수지 호내 퇴적물조사		-	120 (195개×615천원)	120	(순증)
< 농업용수 수질개선>		22,200	22,242	42	0.2
- 수질개선사업		20,840 <신규>400 (4지구×100백만) <계속>13,339 (7지구) <준공>7,101 (6지구 잔사업비)	20,842 <신규>700 (7지구×100백만) <계속>14,878 (5지구) <준공>5,264 (5지구 잔사업비)	2	0.01
- 기본조사		1,190(7지구×170백만)	1,190(7지구×170백만)	-	-
- 사후 모니터링		170(준공 17지구)	210(준공 21지구)	40	23.5
<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3,000 (계속공사비)	3,000 (계속공사비)	-	-
<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	980 (준설사업비)	980	(순증)
< 입장저수지 수질조사>		-	400 (기본조사)	400	(순증)
▪ 지하수자원관리	6,266	6,019	6,019	-	-
- 농촌지하수관리		5,920 (20지구×296백만)	5,920 (20지구×296백만)	-	-
- 해수침투조사		99 (9지구×11백만)	99 (9지구×11백만)	-	-
▪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100	600 (1지구 잔사업비)	- (완료)	△600	(순감)
▪ 농촌용수 국제협력	100	100	300	200	200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671	982	311	46.3
- 예·경보 시스템 개발		300 (외주용역비)	300 (외주용역비)	-	-
- 예·경보 시스템 운영		54 (1인×150천×365일)	54 (1인×150천×365일)	-	-
- 가뭄 정보조사 * 수리시설 관개계획 및 관개실적 조사, 가뭄우심지역조사		117 (9개도×13백만)	208 (9개도×23백만)	91	77.8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 가뭄 평가·분석 * 시나리오별 응급대책수립, 가뭄 대응능력평가		200 (9개도×22백만)	420 (9개도×47백만)	220	110
□ **비목**(합계)	**38,772**	**47,263**	**51,092**	**3,829**	**8.1**
○민간경상보조(320-01)	4,030	5,071	5,782	**711**	14.0
○민간자본보조(320-07)	34,642	41,592	45,310	**3,718**	8.9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	600	-	**△600**	(순감)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108조

· 정부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 농업용수 수질조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농어업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 설치, 수질·수생태계 현황, 수질오염도 상시 측정

- 농업용수 수질개선

·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수자원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농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시행

<농촌용수 국제협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국가정책조정회의('15.9.24), 가뭄대응 종합대책 보고(국무회의, '15.12.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34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가뭄 예경보 시행, 농업농촌분야 가뭄대응 종합대책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국가가 가뭄에 대한 예방과 대책 시행

○ 추진경위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 '00년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추진지시(장관) 및 과학화 추진보고
- '01년 : 신규사업 추진
- '03년 : 농업・농촌종합대책(IT기술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용수 개발・관리 효율화 추진)
- '06년 : 사업시행체계 개선(371권역→93지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단위)
- '08년 :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Ⅰ단계('01년~'16년) : 공사 관리면적의 60% 수준(321천ha, 1,641억원)
▪Ⅱ단계('17년~'21년) : 공사 관리면적의 80% 수준(425천ha, 3,457억원)

- ’15년 : 사업추진방식 개선 및 중장기계획 조정(27지구 93개 지사)

▪Ⅰ단계(‘01년~‘25년) : 공사 관리면적의 70% 수준(377천ha, 3,319억원)
▪Ⅱ단계(‘26년~‘30년) : 공사 관리면적의 90% 수준(485천ha, 1,446억원)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

- ‘90년부터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실시(‘90:30개소→‘14현재:800개소)
- ‘96년부터 :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매 2년마다 17천여개소) 실시
- ‘98년 : 오염된 주요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99～’03년 : 수질개선 시범사업지구 조사·설계 및 사업시행(전남 감돈)
- ‘06～’08년 : 농업용수 수질개선 관계부처 공동조사(환경부·농식품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구 선정
- ‘07～’09년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충남 홍성 홍동, 경북 의성 개천)
- ‘08년 : 국정감사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질관리 지적
- ‘08～’10년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경남 밀양 가산)
- ‘09년부터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지점 확대 실시(500지점→800지점)
- ‘09～’11년 : 퇴적물처리시범사업 실시 및 사업성과 평가(16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시행(전북 고창 궁산, 전남 함평 월천)
- ‘12～’13년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준공(경기 이천 설성 등 8지구)
- ‘14년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800개소, 년 4회 조사)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17천여개소, 매 2년마다 간이수질조사)
- ‘15년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950개소, 년 4회 조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15지구)
- ‘16년 :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대책 수립

< 지하수 자원관리 >

- 농촌지하수관리
  · ‘01년부터 농촌지역 지하수의 난개발·오염예방을 지하수자원관리 추진
  · ‘12년 : 사업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계획 조정(464지구→352지구)
- 해수침투조사 : 농작물의 염해예방을 위하여 ‘91년부터 추진
- 가뭄대비 지하수공급능력조사(수맥조사) : ‘82～’06년 1단계추진

< 농촌용수 국제협력>

- ’14년 : 2014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한국총회 개최
- ’15년 : 2015 WWF(세계물포럼, 대구·경북) 참가
- ‘04년 : INWEPF* 설립 및 워킹그룹 2 의장국으로 활동 중

* 논에서의 물, 생태계에 관한 국제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Network on Water and Ecosystem in Paddy Fields)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 '15. 9.24 : 가뭄 예·경보 시행(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 확정, 국가정책조정회의
- '15. 10. 1 : 제1차 물관리협의회(국민안전처,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가뭄 예·경보 시범운영
- '15. 12. 1 : 농업·농촌 분야 가뭄대응 종합대책 보고(국무회의), 선제적 농업가뭄 대응 등 16개 정책 제시
- '16. 1. 20 : 농업가뭄지원단(한국농어촌공사) 설치·운영
  · 농업가뭄 예·경보 운영을 위한 전국단위 농업가뭄지도 작성, 기술지원
- '16. 2. 24 : 제3차 물관리협의회(국무조정 실장, 관계부처 차관)
  · 범부처 가뭄 예·경보 시범운영('16.3～12월)
- '16. 3. 10 이후 : 국가 가뭄 예·경보 1회 발표(매월 10일 가뭄 예·경보 발표, 국민안전처/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등)
  ·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가뭄 주의단계 전망(제1회 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촌용수관리	282	293	336	370	386	47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안 된 신규지구 공사비 불용('16년), 입장저수지 오염원조사용역 낙찰차액('17년)

○ 이월사유 : 농특세 세수부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36** (336)	29	-	365 (365)	**318** (318)	47 (-)	- (-)
'16년	**370** (370)	47 (-)	- (-)	417 (417)	**279** (279)	109 (-)	29 (-)
'17년	**386** (386)	109 (-)	- (-)	494 (494)	**388** (388)	106 (-)	0.28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보조사업 운용평가('15년) :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혜자가 모든 농민이므로 국가적인 보조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 감사원 수질관련 감사('15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농업용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면의 목적 외 사용중인 농업용 호소에 대해서는 수질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수질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15.4월)	○농업용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면임대시설의 수질보호대책 시행 - 수면임대시설의 지속적 수질 악화시 휴식년제 실시 - 중점관리시설의 오염원 정밀조사 및 감시 강화 -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농식품부-환경부)를 통해 상류 환경기초시설 확충 협조 요청

○ 국회 결산 심사시 지적('14년, '15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추진방식 개선과 수리시설 유지관리인력 운용방안 마련 ('13년 결산 심사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추진('15.12) - 사업추진방식 개선, 중장기계획 재수립 및 시설설치기준 개선, 표준 운영프로그램 개발 - 사업지구 재편(지사단위→광역단위) - 고비용 일반직 수리시설 유지관리 인력을 축소하고, 저비용·고효율기사·상용직 중심의 체제로 개편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용수간선에 대한 수질측정 실시, 방류수 수질 허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실시 ('13년 결산 심사시)	○수질측정망 및 용수간선 수질조사 대상 확대 - 측정망 : '14) 825개소 → '15) 975 - 용수간선 : 24개소(48지점) ○농업용수 수원공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허용기준의 적정성 분석('14.9~'15.11) - 환경부에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개선 협조요청
○농업용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에 대해 수질보호조치(휴식년제 실시 등)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4년 결산 심사시)	○농업용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면임대시설의 수질보호대책 시행 - 수면임대시설의 지속적 수질 악화시 휴식년제 실시 * '15년 4개 저수지(당진 오봉지, 서천 문산지, 진도 봉암지/내연지)에 대해 휴식년제 실시

(5) 사업추진절차

○ 수질조사 및 개선,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예정지조사(시·도)→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농식품부)→사업시행자 지정(시・도)→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자)→사업시행계획승인(시·도)→사업시행(사업시행자)→준공

○ 지하수자원관리

▪ 사업지구 신청(시·도, 시·군) → 예정지 답사(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지구 선정(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수립(농어촌공사) → 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사업시행(농어촌공사) → 성과품 제출(농식품부, 시·도, 시·군)

참고 1 농업용수 수질조사 결과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

□ 농업용 호소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 975개소 중 Ⅳ등급 초과 82개소(8.4%)

시설수 (TOC,mg/L)	Ia등급 (2이하)	Ib등급 (3이하)	Ⅱ등급 (4이하)	Ⅲ등급 (5이하)	Ⅳ등급 (6이하)	Ⅴ등급 (8이하)	Ⅵ등급 (8초과)
975개소	207	285	182	133	86	60	22
(100.0)	(21.2)	(29.2)	(18.7)	(13.7)	(8.8)	(6.2)	(2.2)

※ 수질측정망 : 저수량 20만톤 이상 또는 수혜면적 30ha 이상의 주요 농업용 호소

※ 수질측정망 975개소는 전체호소(17천여개) 중 저수량 기준 78%, 수혜면적 기준 72%에 해당

□ 연도별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수질악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조사시설	492	526	826	825	825	825	825	825	975	975	975
기준초과시설	101	112	165	122	114	67	57	82	95	98	82
기준초과율(%)	(20.5)	(21.3)	(20.0)	(14.8)	(13.8)	(8.1)	(6.9)	(9.9)	(9.7)	(10.1)	(8.4)
기준항목	COD	COD	COD	COD	COD	TOC	TOC	TOC	TOC	TOC	TOC

□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계획	'17년까지	누계(%)	'18년	누계(%)	'19년이후
사 업 량	87	25 (준공)	28.7	7 (준공)	36.8	55 (준공)
사 업 비	3,805	1,031	27.1	252	33.7	2,522

※ 사업시행 : ('17년) 17지구(준공3, 계속10, 신규4) → ('18년) 18지구(준공7, 계속7, 신규4)

※ 수질개선대상 87개소는 5년간 수질기준(TOC 혹은 T-P) 초과시설 대상('16년 중장기계획)

9. 농업기반정비사업(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지역자율계정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기반정비	154,753	156,978	160,995	4,017	2.6

* 사업코드 : 20 - 39 - 1 - 100 - 101 - 4000 - 4041
* 담당자 : 식량정책국장(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정경현)☎(044-201-186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집단화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생산성향상 및 편의영농을 위한 농로 확·포장, 용수개발, 구획정리 등 기반정비 ○ 시·군관리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5개 내역사업(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소규모배수개선)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8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사업비 : 5개 내역사업, 160,995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업기반정비	156,678백만원	160,995백만원
▪ 밭기반정비	45,933백만원	43,588백만원
▪ 대구획경지정리	38,587백만원	43,678백만원
▪ 시군수리시설개보수	57,470백만원	57,325백만원
▪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4,382백만원	5,600백만원
▪ 소규모배수개선	10,306백만원	10,80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 농업기반정비	**154,753**	**156,978**	**160,995**	**4,017**	**2.6**
▪ 부산	800	640	720	80	12.5
▪ 대구	1,820	1,840	1,656	-184	-10.0
▪ 인천	2,600	3,055	1,920	-1,135	-37.2
▪ 경기	5,624	6,454	8,469	2,015	31.2
▪ 강원	7,659	9,708	10,176	468	4.8
▪ 충북	9,835	8,496	14,170	5,674	66.8
▪ 충남	6,912	9,090	8,136	-954	-10.5
▪ 전북	29,093	27,350	24,607	-2,743	-10.0
▪ 전남	52,320	48,713	53,373	4,660	9.6
▪ 경북	16,759	16,118	11,749	-4,369	-27.1
▪ 경남	21,331	25,514	26,019	505	2.0
□ 비목(합계)	**154,753**	**156,978**	**160,995**	**4,017**	**2.6**
○ 지자체자본보조(330-03)	154,753	156,978	160,995	4,017	2.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8조(자금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 추진경위

- '05～'09년 : 균특회계 세부사업별 추진
- '10～'12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09.4)에 따라 광특회계 농어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
- '13년이후 : 조직개편('13.3월)에 따라 농업기반과 어업기반 분야 세부사업 분리·시행(해양수산부 : 어업기반정비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기반정비	1,228	1,191	1,492	1,519	1,709	1,57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세수부족으로 '15년 494억원, '16년 180억원, '17년 341억원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92 (1,492)	312 (312	- (-)	1,804 (1,804)	1,310 (1,310)	494 (494)	- ( )
'16년	1,519 (1,519)	494 (494)	- (-)	2,013 (2,013)	1,833 (1,833)	180 (180)	- ( )
'17년	1,709 (1,709)	180 (180)	- (-)	1,889 (1,889)	1,548 (1,548)	341 (341)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예산 및 사업신청(시·도) → 사업계획 검토(농식품부 및 기재부) → 예산 확정(기재부)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10. 농업기반정비사업(세종)(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세종계정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예산 (A)	2019 예산 (B)	(B-A)	%
○ 농업기반정비(세종)	1,000	1,000	**1,000**	-	-

* 사업코드 : 20 - 39 - 4 - 100 - 101 - 4000 - 4042
* 담당자 : 식량정책국장(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정경현)☎(044-201-186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노후·재해취약 시군관리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개 내역사업(시군수리시설개보수)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80%
사업시행주체	세종특별자치시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사업비 : 1개 내역사업, 1,000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업기반정비(세종)	1,000백만원	1,000백만원
▪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000백만원	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 농업기반정비(세종)	**1,000**	**1,000**	**1,000**	**-**	**-**
▪ 세종	1,000	1,000	1,000	-	-
□ 비목(합계)	**1,000**	**1,000**	**1,000**	**-**	**-**
○ 지자체자본보조(330-03)	1,000	1,000	1,0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8조(자금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 추진경위

- ‘05～‘09년 : 균특회계 세부사업별 추진
- ’10～‘12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09.4)에 따라 광특회계 농어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
- ‘13～‘14년 : 조직개편(’13.3월)에 따라 농업기반과 어업기반 분야 세부사업 분리·시행(해양수산부 : 어업기반정비사업)
- ‘15년이후 : 세종계정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기반정비(세종)	-	-	17	10	10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7 (17)**	- (-)	- (-)	17 (17)	**17 (17)**	- (-)	- (-)
’16년	**10 (10)**	- (-)	- (-)	10 (10)	**10 (10)**	- (-)	- (-)
’17년	**10 (10)**	- (-)	- (-)	10 (10)	**10 (1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예산 및 사업신청(시·도) → 사업계획 검토(농식품부 및 기재부) → 예산 확정(기재부)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11. 농업기반정비사업(제주)(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제주계정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예산 (A)	2019 예산 (B)		
				(B-A)	%
○ 농업기반정비(제주)	19,563	16,079	**16,840**	761	4.7

* 사업코드 : 20 - 39 - 3 - 100 - 101 - 4000 - 4042
* 담당자 : 식량정책국장(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정경현)☎(044-201-186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밭기반정비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생산성향상 및 편의영농을 위한 농로 확·포장, 용수개발 등 기반정비 ○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6개 내역사업(밭기반정비,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교육훈련, 원원종 및원종생산, 가축분뇨처리지원, 소규모배수개선)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8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사업비 : 7개 내역사업, 16,840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업기반정비(제주)	16,079백만원	16,840백만원
▪ 밭기반정비	12,250백만원	13,300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56백만원	100백만원
▪ 농업인교육훈련	300백만원	335백만원
▪ 원원종및원종생산	40백만원	40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지원	673백만원	510백만원
▪ 소규모배수개선	1,600백만원	1,500백만원
▪ 시군수리시설개보수	960백만원	1,05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8예산 (B)	(B-A)	%
□ 농업기반정비(제주)	**19,563**	**16,079**	**16,840**	**761**	**4.7**
▪ 제주	19,563	16,079	16,840	761	4.7
□ 비목(합계)	**19,563**	**16,079**	**16,840**	761	4.7
○ 지자체자본보조(330-03)	19,563	16,079	16,840	761	4.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8조(자금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 추진경위

- ‘05～‘09년 : 균특회계 세부사업별 추진
- ’10～‘12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09.4)에 따라 광특회계 농어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
- ‘13년이후 : 조직개편(’13.3월)에 따라 농업기반과 어업기반 분야 세부사업 분리·시행(해양수산부 : 어업기반정비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기반정비(제주)	240	269	233	194	196	16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33	-	-	233	233	-	-
	(233)	(-)	(-)	(233)	(233)	(-)	(-)
’16년	194	-	-	194	194	-	-
	(194)	(-)	(-)	(194)	(194)	(-)	(-)
’17년	196	-	-	196	196	-	-
	(196)	(-)	(-)	(196)	(19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예산 및 사업신청(시·도) → 사업계획 검토(농식품부 및 기재부) → 예산 확정(기재부)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12. 농촌용수개발(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용수개발	**420,760**	**381,287**	**350,200**	**12,600**	**3.7**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308,786	295,745	246,900	10,800	4.6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91,774	64,422	71,800	1,800	2.6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20,200	20,000	17,500	0	0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1,120	14,000	0	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46
* 담당자 : 식량정책국장(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서기관(강경만, ☏ 044-201-185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환경개선 도모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부족, 잉여)을 체계적으로 연계 배분·활용하여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간·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북한 황강댐 담수로 인한 임진강 수위감소 및 수량부족에 대해 양수장 보강, 용수로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체계 유지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제주도내 밭작물의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해 권역별 균형된 용수공급 및 배분에 필요한 용수원개발, 대용량 저수조 및 관로연계 등 설치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환경개선 도모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부족, 잉여)을 체계적으로 연계 배분·활용하여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간·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북한 황강댐 담수로 인한 임진강 수위 감소 및 수량부족에 대해 양수장 보강, 용수로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체계 유지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제주도내 밭작물의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해 권역별 균형된 용수공급 및 배분에 필요한 용수원개발, 대용량 저수조 및 관로연계 등 설치 지원
사업기간	·'90년~'30 - 다목적농촌용수 : '96~'30, 이용체계재편 : '08~'20,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 '10~'18,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17~'24)
총사업비	(다목적농촌용수개발) 107,192억원('18년까지 73,140억원)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4,854억원('18년까지 3,163억원)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1,342억원('18년까지 1,040억원)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1,375억원('18년까지 26억원)
사업규모	- 350,200백만원 - 최근 5년간('14~'18) 1조 7,730억원(누적)/3,546억원(평균)
지원조건	· 국비 100%(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 국고 80%, 지방비 20%(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246,900백만원

- 64지구 사업비 246,000백만원 및 기본조사 3지구, 900백만원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71,800백만원

- 9지구 사업비 71,500백만원 및 기본조사 1지구 300백만원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 17,500백만원(계속)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 14,000백만원(본격사업 착수)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촌용수개발	**381,287백만원**	**350,200백만원**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 295,745백만원** · 사업비 : 293,145백만원 (준공 : 40,871=13지구×3,143 계속 : 249,774=53지구×4,713 신규 : 2,500=5지구×500) · 기본조사비 : 2,400백만원 (2,400=8지구×300) · 사후평가 : 200백만원 (200=2지구×100)	**□ 246,900백만원** · 사업비 : 246,000백만원 (준공 : 26,420=10지구×2,642 계속 : 216,580=48지구×4,512 신규 : 3,000=6지구×500) * 1지구 국회지정(구례 중산지구) · 기본조사비 : 900백만원 (900=3지구×300) * 1지구 국회지정(파주 민북지구)
▪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 64,422백만원** · 사업비 : 63,522백만원 (계속 : 6지구, 63,522) * 철동 9,000 /원남 6,000 순창 10,000/초계 5,100 한림 3,422 /아산-삽교-대호 16,000 아산-금광·마둔 14,000 · 기본조사비 : 900백만원 (900=3지구×300)	**□ 71,800백만원** · 사업비 : 71,500백만원 (계속 : 6지구, 70,000) * 철동 5,500 /원남 3,431 순창 7,589 /초계 5,000 아산-삽교-대호 33,000 아산-금광·마둔 15,500) (신규 3지구, 1,500, 국회지정) * 충북중북부 500 / 아산부부 500, 금호-군내 500) · 기본조사비 : 300백만원(국회지정) * 천안북부 300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 20,000백만원** · 사업비 : 20,000백만원	**□ 17,500백만원** · 사업비 : 17,500백만원
▪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 1,120백만원** · 사업비 : 1,120(3개 권역 세부설계비)	**□ 14,000백만원** · 사업비 : 14,000(사업 착공)

□ 지원 필요성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 가뭄에 대비한 안전영농기반 조성 미흡

- 전체 논(934천ha) 중 수리시설이 없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천수답 181천ha(19%)는 적당한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수리시설이 설치된 수리답(753천ha) 중에서도 수리안전답(561천ha)*을 제외한 192천ha(25%)는 가뭄 심화시 별도 급수대책 추진 필요

  * 10년빈도 가뭄 발생시 안정적 영농급수 가능

-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이 상례화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재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기상 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 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방재청 등 11개 기관 합동으로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11.12)

  · 동 계획 상 매년 3천억원 수준을 투자하도록 계획

- 국회에서 '15년도 예산 심의 시, 재난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지원 필요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 '05년부터 추진된 사업('08착공)으로 사업효과 조기 확보 및 사업장기화 방지를 위한 적정 사업비 지원 필요

- 기 개발된 여유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활용을 통해 신규개발 예산절감 등 효과가 큰 사업이나, 사업 장기화로 효과 확보에 애로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

○ 임진강 상류 북한 황강댐으로 인한 하천수위 감소, 수량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 취수가 어려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대책 추진 시급

○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내('20까지) 완료되도록 예산 집중지원 필요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해수면 상승 및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제주도지역 밭작물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급수체계 구축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381,287**	**337,600**	**△43,687**	**△11.5**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308,786	295,745	246,900	**△48,845**	**△16.5**
· 사업비	308,186	준공 40,951 (13지구×3,150) 계속 249,694 (53지구×4,711) 신규 2,500 (5지구×500)	준공 24,039 (10지구×2,404) 계속 218,961 (48지구×4,562) 신규 3,000 (5지구×500)		
· 기본조사비	600	2,400 (8지구×300)	900 (3지구×300)		
· 사후영향조사	-	200 (2지구×100)	-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91,774	64,422	71,800	**7,378**	**11.5**
· 철동지구	91,774	9,000	5,500		
· 원남지구		6,000	3,431		
· 순창지구		10,000	7,569		
· 초계지구		5,100	5,000		
· 한림지구		3,422	-('18준공)		
· 공주보-예당지		-('17준공)	-('17준공)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16,000	33,000		
· 아산호-금광·마둔지		14,000	15,500		
· 충북중북부		-	500('19신규)		
· 아산북부		-	500('19신규)		
· 금호-군내		-	500('19신규)		
· 조사·설계		900 (3지구×300)	300 (1지구×300)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20,200	20,000 (1지구)	17,500 (1지구)	**△2,500**	**△12.5**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1,120 (1지구)	14,000 (1지구)	**12,880**	**1,150.0**
□ **비목**(합계)		**381,287**	**350,200**	**△31,087**	**△8.2**
○ 민간자본보조(320-07)		**380,167**	**336,200**	**△43,967**	**△11.6**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8)		1,120	14,000	**12,880**	**1,15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 추진경위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 '95년 이전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 '99년 :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립(농식품부)
- '11. 12 :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수립(총리실)
- '13. 2 : 기후변화대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농식품부)
- '14. 12 :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립(농식품부)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 '02. 5 :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 「농업생산기반 중장기 세부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기 개발된 여유수량 활용 및 기존시설 능력보강을 위한 "농촌용수공급체계재편계획 수립" 과제 선정
- '02. 7～'03.12 : 농촌용수공급체계재편계획 수립
  - 전국 464개 용수구역을 대상으로 수계별 용수수급상황 검토를 통한 농촌용수의 효율적 개발·이용·관리체계 구축
- '05. 1~현재 : 타당성조사 8지구,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5지구, 공사착수 5지구
  - '08(초계지구 착수), '09(철동 착수), '10(원남,한림 착수), '14(순창 착수)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

- '08. 4 : 북한 황강댐 관련 국회에서 문제제기 및 언론보도
- '09. 3～8 : 임진강수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기획재정부)
  - 경제적 타당성 인정(B/C 1.03)
- '10.1～'12.4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수혜면적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간이타당성 재조사 실시('11.9～'12.3)
- '12. 5～11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경기도)
- '13. 5 :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

- '13. 5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체계 구축 TF 구성(제주도)
- '13. 9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전타당성조사 착수(제주도)

- ‘14. 8~12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농식품부) 및 선정(기재부)
- ‘15. 1~’16.7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기획재정부) → 결과 B/C 1.04(타당성 있음)
  * 사업비 확정 : 144,707백만원
- ‘16.8 : ‘17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17예산(기본조사비) 1,470백만원 요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촌용수개발	2,683	2,871	3,365	4,033	3,660	3,813
- 다목적농촌용수	2,450	2,600	3,050	3,000	2,749	2,958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133	151	175	893	746	644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00	120	140	140	150	200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	-	-	15	1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월사유 : 농특회계 세수 부족(‘15·’16·‘17년)
○ 불용사유 : 용지매수 협의 지연 및 인허가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안된 공사비 311억원 불용(‘16년)
○ 이·전용사유 : ‘15년 예산(905억원)은 중부지방의 가뭄에 따른 추경 편성 예산이며, ’16년 공주보-예당지 이용체계재편 사업의 준공을 위해 내역변경

<총괄>

○ 2016년의 경우 농특회계 세수부족 최소화를 위해 용지매수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31,065백만원 예산 불용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27,000 (400,475)	124,849 (-)	- (-)	551,849 (400,475)	**400,475** **(400,475)**	151,374 (-)	- (-)
’16년	403,325 (316,374)	151,374 (-)	- (-)	554,699 (316,374)	**316,374** **(316,374)**	207,260 (-)	31,065 (215)
’17년	391,570 (420,760)	207,260 (-)	- (-)	598,830 (420,760)	**420,760** **(420,760)**	178,070 (-)	- (-)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 2015~2017 :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 및 불용(사업은 정상 추진)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1,000 (344,046)	114,000 (-)	- (-)	495,000 (344,046)	**344,046** **(344,046)**	150,954 (-)	- (-)
'16년	300,000 (209,064)	150,954 (-)	△739 (-)	450,215 (209,064)	**209,064** **(209,064)**	160,086 (-)	31,065 (-)
'17년	296,500 (308,786)	160,086 (-)	- (-)	450,486 (308,786)	**308,786** **(308,786)**	141,700 (-)	- (-)

* '16년 불용 : 용지매수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31,065백만원 불용
* '16년 내역변경 : 공주보예당지 용지매수비 단가인상 등 총사업비 증액분(7억원)
* '17년 내역변경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21억원),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사업(40억원)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 2015~2017 :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은 정상 추진)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7,000 (31,909)	5,329 (-)	- (-)	32,329 (31,909)	**31,909** **(31,909)**	420 (-)	- (-)
'16년	89,325 (49,510)	420 (-)	739 (-)	90,484 (49,510)	**49,510** **(49,510)**	40,974 (-)	- (-)
'17년	78,600 (91,774)	40,974 (-)	2,100 (-)	121,674 (91,774)	**91,774** **(91,774)**	29,900 (-)	- (-)

* '15년 추경예산 75억원 집행/ 예비비 20억원 집행(조사설계비 : 공주보예당지 15억원, 상주1 5억원)
* '16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으로 7억원 내역변경
* '17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으로 21억원 내역변경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

○ 2015~2017 :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은 정상 추진)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000 (24,520)	5,520 (-)	- (-)	24,520 (24,520)	**24,520** **(24,520)**	- (-)	- (-)
'16년	14,000 (7,800)	- (-)	- (-)	14,000 (7,800)	**7,800** **(7,800)**	6,200 (-)	- (-)
'17년	15,000 (20,200)	6,200 (-)	4,000 (-)	25,200 (20,200)	**20,200** **(20,200)**	5,000 (-)	- (-)

* '15년 추경예산 50억원 집행
* '17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사업으로 40억원 내역변경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 2017 :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은 정상 추진)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1,470 (-)	- (-)	- (-)	1,470 (-)	- (-)	1,470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 시행 중 지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예산확대를 통해 지구당 평균사업비를 확대해 나가고, 가뭄재해에 대비하고 수리안전답 확대 및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 등을 감안하여 준공지구 규모와 신규지구 규모를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 나갈 필요('15 예산 상임위 검토 보고서)

○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성과 및 재해예방 안전영농이라는 본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달성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15년 결산 상임위, 예결위)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적정한 예산 확보를 도모할 것('16년 결산 상임위)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

○ 사업장기화 방지를 위해 예산 증액 필요('1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시)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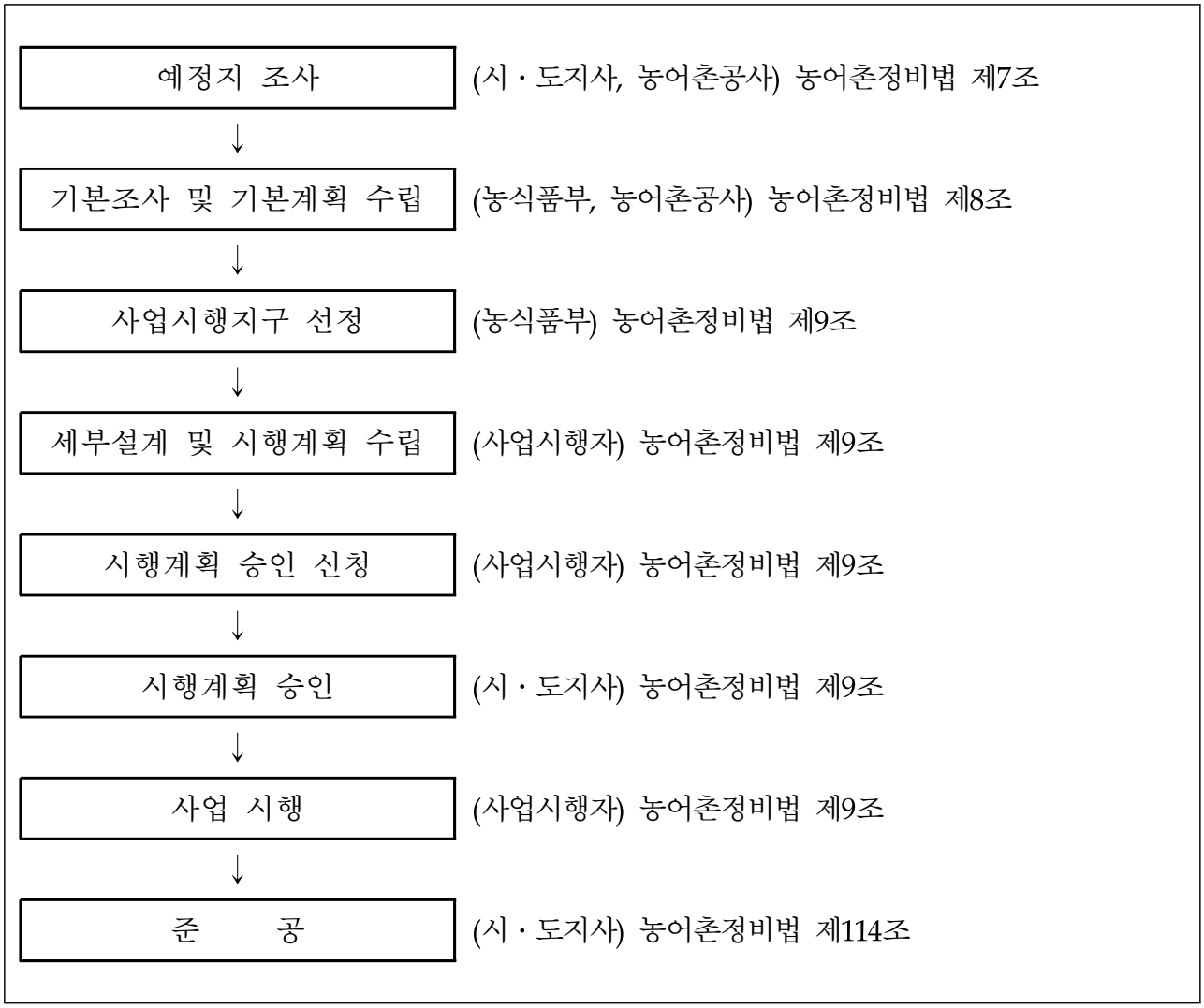
예정지 조사
(시・도지사,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제7조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제8조
사업시행지구 선정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제9조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시행계획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시행계획 승인
(시・도지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 시행
(사업시행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준 공
(시・도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참고 1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10년)

□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시·도)→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농식품부)→사업시행자 지정(시·도)→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자)→사업시행계획 승인(시·도)→사업시행(사업시행자)→준공

□ 최근 10년간 사업 추진현황

(금액 : 억원)

년 도			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예산	계		24,835(26,691)	2,300(3,098)	1,900	1,729	2,100	2,450	2,600	3,050(3,810)	3,000	2,749(2,965)	2,957
	정부안		23,196	1,900	1,825	1,330	1,800	2,200	2,550	2,800	2,996	2,715	2,823
	국회증액		1,896	400	75	399	300	250	50	250	4	34	134
지구수	계		757	80	67	66	71	81	80	83	82	76	71
	준공		80	18	1	1	6	9	4	7	12	10	13
	계속		610	55	61	65	59	56	68	68	64	60	53
	신규	계	67	7	5	-	6	16	8	8	6	6	5
		정부안	50	-	5	-	4	8	8	8	6	6	5
		국회증	17	7	-	-	2	8	-	-	-	-	-
	기본조사	계	37	3	-	-	1	3	7	6	6	6	8
		정부안	32	3	-	-	-	3	5	5	5	6	5
		국회증	5	-	-	-	1	-	2	1	1	-	3
준공 면적			27,006	5,309	347	83	2,051	3,017	1,622	2,518	4,306	4,286	3,467
누계 면적(천ha)			103.0	81.2	81.6	81.7	83.7	86.7	88.4	90.9	95.2	99.5	103.0
급수율(%) * 대상 136.4천ha			75.5	59.5	59.8	59.9	61.4	63.6	64.8	66.6	69.8	72.9	75.5
지구당 평균			34	39	28	26	30	30	33	37	37	36	42

※ ( )는 추경 반영 예산

참고 2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사업 내용

○ **수량이 풍부한 하천, 저수지의 여유 수자원을** 양수장, 송수관로를 이용하여 **물이 부족한 저수지에 배분·활용**

○ **기존 소규모 수리시설을 리모델링** 등으로 통합·재편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해진 용수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08 ~ 2021
- 총사업비 : 4,850억원('17년까지 기투자액 2,529억원, 52.1%)
-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방법 : 국고 1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기본개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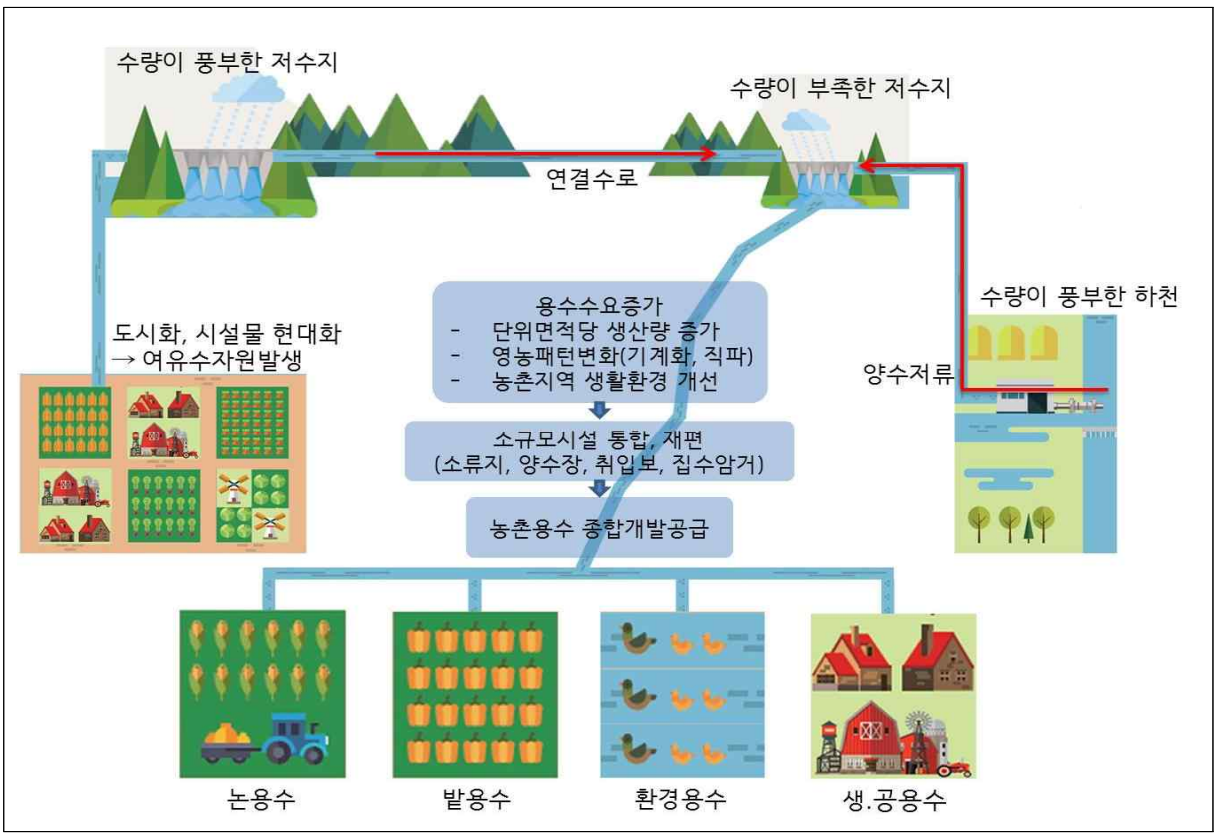

❑ 사업추진중 지구 현황 : 9지구(추진중 7지구, 준공 2지구)

(단위 : 백만원)

시도	지구명	시군	사업기간		개발면적(ha)	총사업비	'16까지	'17예산			'18예산(B)	'19	'20이후	주요내용
			착공	준공				계(A)	당초	증감				
계	7				6,304	484,923	172,154	80,700	74,600	6,100	**63,522**	**70,000**	**160,422**	
경기	아산 금광 마둔	평택 안성	'17	'20	-	49,308	-	1,500	-	1,500 (추경)	14,000	15,500	18,308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36.2km
강원	철동	철원	'09	'21	1,939	58,008	25,846	5,300	4,000	1,300 (전용)	9,000	5,500	12,362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5.8㎞ 연결수로 3.9㎞ 용수로 44.1㎞
충북	원남	괴산	'10	'19	408	32,929	19,531	3,500	3,500	-	6,000	3,431	-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7.6㎞ 연결수로 7.7km 용수로 19.3㎞
전북	순창	순창	'13	'20	393	49,671	8,696	3,300	2,500	800 (전용)	10,000	7,569	19,073	저수지 2개소 이설도로 4,1㎞ 용수로 20.8㎞
경남	초계	합천	'08	'21	1,076	48,339	25,656	3,708	3,708	-	5,100	5,000	10,375	저수지 1개소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3.6㎞ 용수로 44.6㎞
경남	한림	김해	'10	'18	720	23,520	16,986	3,000	3,000	-	3,422	-	-	양수장 1개소 배수조 1개소 송수관로 2.7㎞ 용수로 18.8㎞
충남	공주 보예 당지	공주 예당	'15	'17	970	102,229	44,337	57,892	57,892	-	-	-	-	양수장 4개소 송수관로 27.5㎞ 용수터널 0.7㎞
	아산 삽교 대호	아산 당진	'17	'20	-	89,817	-	2,500	-	2,500 (추경)	16,000	33,000	38,317	취수문 2개소 연결수로 9.9km 수로터널 2.1km
경북	상주 1	상주	'15	'16	798	31,102	31,102	-	-	-	-	-	-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3.7㎞ 용수로 6.7㎞

* '17년 수계연결사업(2지구) 설계비(40억원,추경)지원, 다목적농촌용수 전용 21억원(철동 13억원, 순창 8억원)
* '19년 신구착수 예정 3지구는 미포함

참고3 임진강수계 농촌용수 공급사업

○ 위　　치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외 9, 고양시 고봉동 외 3, 연천군 왕징면 외 2 일원

○ 수혜면적 : 6,679ha

○ 주요공사 : 양수장 6개소 신설·보수·보강, 흡입수조 보강 및 펌프 교체, 도수로 40.8㎞(2.8km 개거 보강, 38km 관수로)

○ 총사업비 : 132,163백만원 (ha당 19백만원)

○ 사업효과 : B/C 1.03, AHP 0.565

○ 사업기간 : 2010～2018(7년)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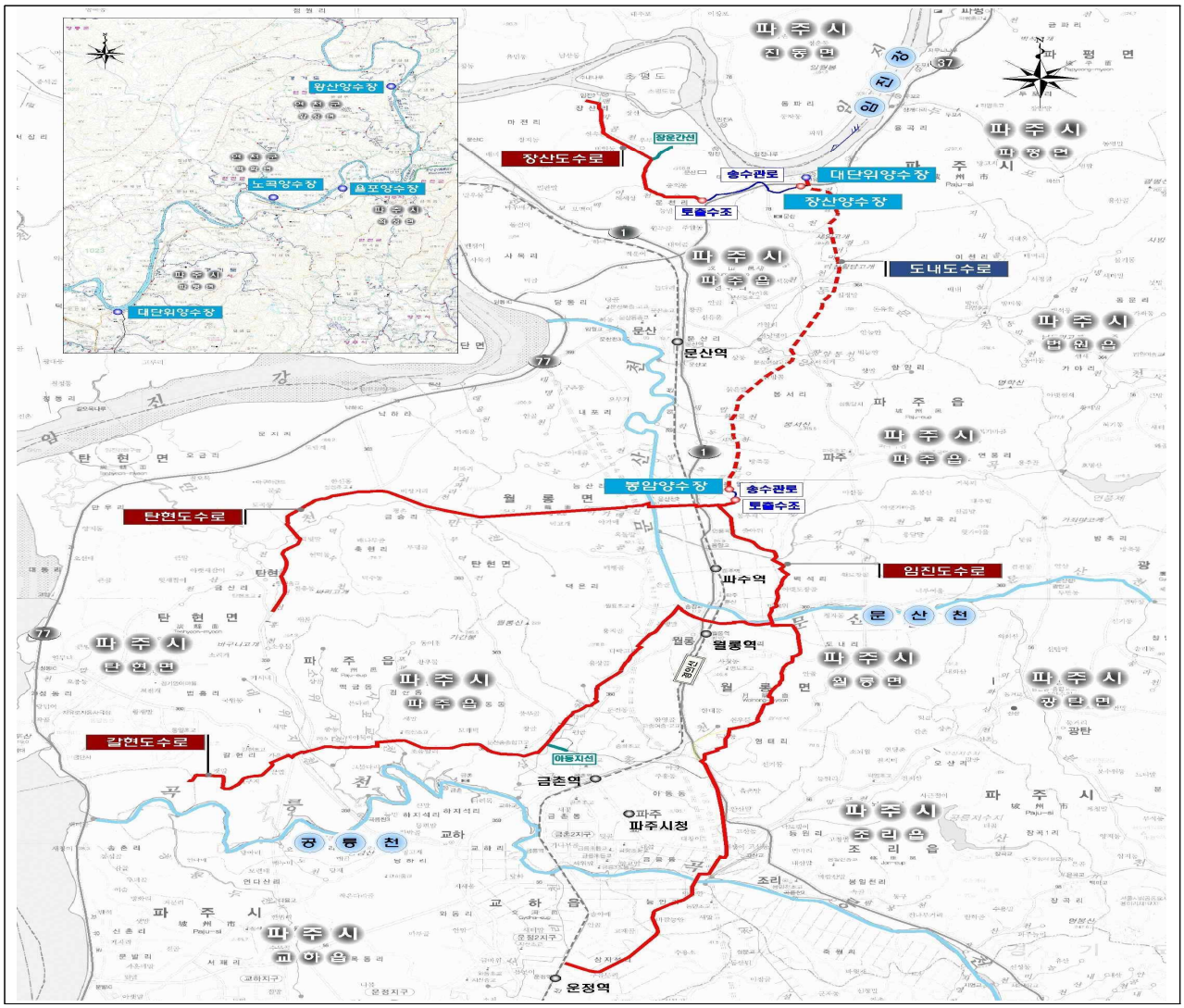

참고4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수혜면적 : 33,824ha (신규 5,374, 보충 28,150)

○ 주요공사 : 대용량 저수조(54개소), 급수관로 통합연계(504km), 용수원 개발(관정 58공, 용천수 6개소), 물관리 자동화시설(1식)

○ 총사업비 : 1,447억원(국비 1,158, 지방비 289)

○ 사업기간 : 2017～2024년(8개년)

○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한국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위탁 예정)

□ 통합광역화사업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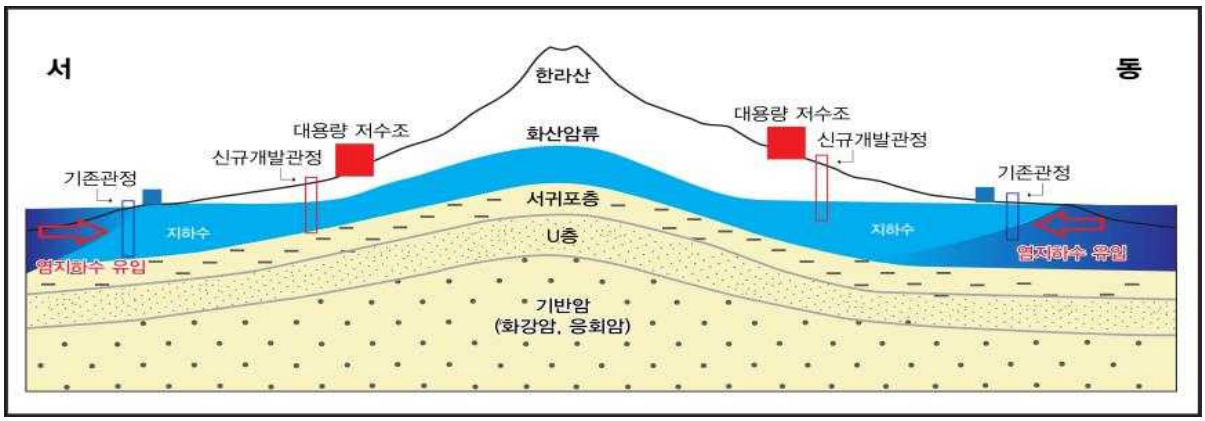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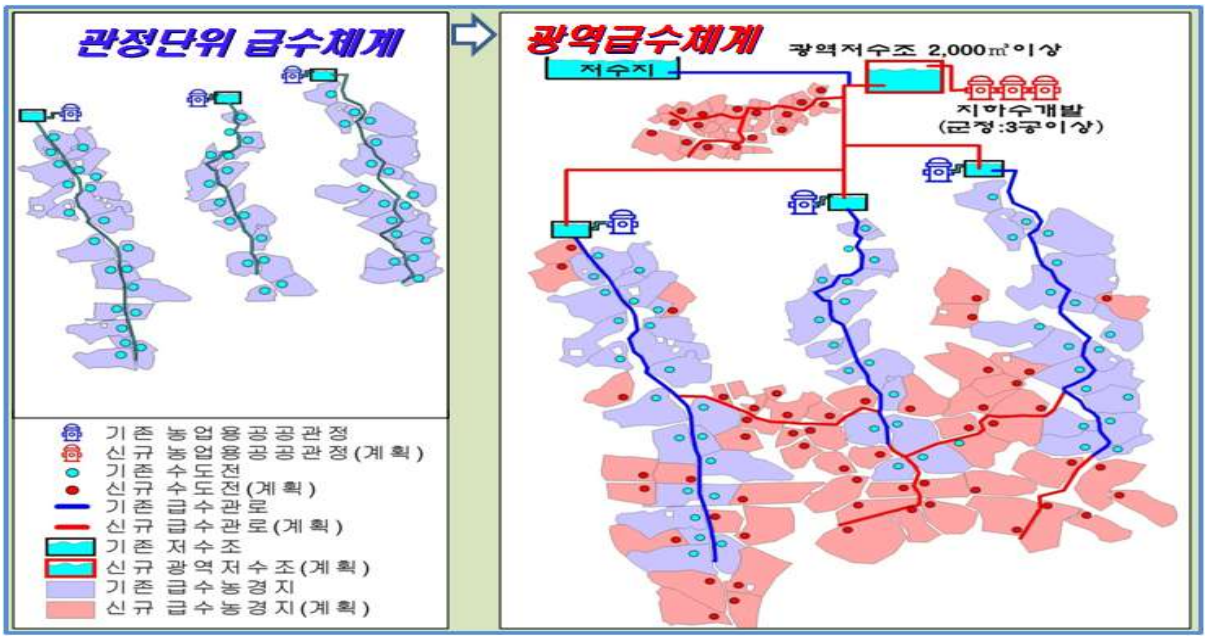

13.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재량/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지개량시설 장기채상환	12,833	8,152	14,203	6,051	74.2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000 - 407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업기반과장(박종훈), 사무관(서은희, ☏ 044-201-185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구 농지개량조합구역)내 농지개량시설 설치 시 농업인이 차입금으로 부담한 금액(농지개량시설장기채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상환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 업 내 용	구)농지개량조합구역(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개량시설 설치 시 농업인이 차입금으로 부담한 금액(장기채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사 업 기 간	'89～'23년
총 사 업 비	해당 없음
사 업 규 모	매년 농업인이 상환해야 할 장기채 원리금
지 원 조 건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2019년 장기채 상환 원리금 14,203백만원

- 상환규모 및 장기채 이자(연5.5%)를 고려 장기채 상환 완료 기간 단축

  * 상환기간 : (당초) '89～'23년 (35년) → (변경) '89～'19 (31년)

- 기간 단축을 통한 '20~'23 중 상환 이자 절감

  * 상환이자내역 : ('19～'23) 1,525백만원 → ('19) 741 (△784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8,152백만원	14,203 백만원
▪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원금 7,025백만원 +이자 1,127백만원 = 8,152백만원	원금 13,462백만원 +이자 741백만원 = 14,20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구. 농지개량조합구역(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개량시설 설치 시 농업인이 차입금으로 부담한 금액(장기채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3조 강제조항 (종전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거 의무 지출사항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12,833**	**8,152**	**14,203**	**6,051**	**74.2**
▪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산출근거)	12,833	8,152 (원금 7,025, 이자 1,127)	14,203 (원금 13,462, 이자 741)	6,051	74.2
□ 비목(합계)	**12,833**	**8,152**	**14,203**	**6,051**	**74.2**
○ 민간경상보조(320-01)	12,833	8,152	14,203	6,051	74.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3조

○ 지원경위

-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89.4월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이후 상환해야 할 장기채 원리금을 매년 국고에서 지원

▪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 분	내 용
▶ 개 정 (1989. 4. 1 법률 제4114호)	○ 개정이유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장기채와 일반조합비에 대한 농민부담이 과중하므로 장기채는 전액감면하여 국고보조하고, 일반조합비도 '87기준 1,000㎡ 28.7㎏(18,903원)에서 5㎏/1,000㎡(약300평)로 대폭 경감 ○ 주요내용 - 1988.12.31 이전 농지개량사업에 융자 및 차입된 장기채중 남은 원리금 전액 국고 보조 - 1989이후 조합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관정사업, 지하댐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배수개선 및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을 위하여 발생하는 장기채는 전액 국고보조 - 조합비는 농지면적 1,000㎡당 벼 2등품 5㎏의 당해연도 정부수매가격에 해당금액이하로 하고, 초과금액은 국고 보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구 분	내 용
▶ 법률제정 (1999. 2. 5, 법률 제5759호)	○ 부칙 - 제13조(장기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제4114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

①1988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개량사업에 융자 또는 차입된 장기채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금융기관에 상환(농업진흥공사에의 상환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은 매년 정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1989년이후 조합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발생하는 장기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1. 농업용수개발·지하댐 및 관정사업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238	198	177	147	129	8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78 (178)	( )	( )	178 (178)	177 (177)	( )	1 (1)
'16년	147 (147)	( )	( )	147 (147)	146 (146)	( )	1 (1)
'17년	128 (128)	( )	( )	128 (128)	128 (128)	( )	-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장기채 징수 및 상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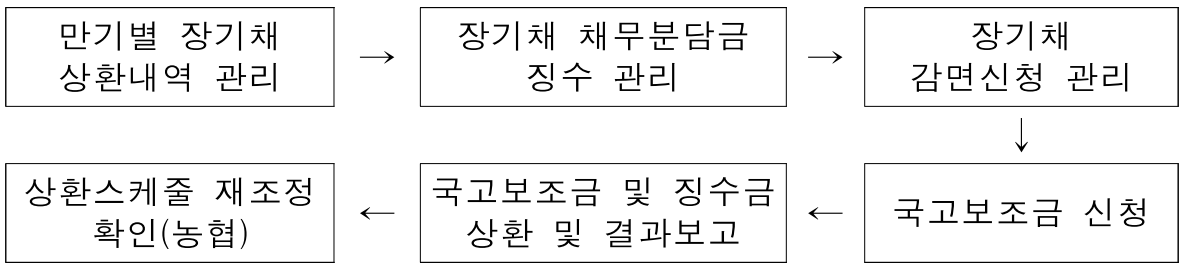

참고 연도별 농지개량시설 장기채상환 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연도별	'89~'23 (A)			'89~'19 (B)			증감액 (B-A)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89~'17	304,946	376,967	681,913	304,946	376,967	681,913	-	-	-
2018	7,002	1,125	8,127	7,002	1,125	8,127	-	-	-
2019	5,231	741	5,972	13,462	741	14,203	8,230	-	8,230
2020	4,044	453	4,497	-	-	-	△4,044	△453	△4,497
2021	2,509	230	2,739	-	-	-	△2,509	△230	△2,739
2022	1,524	93	1,617	-	-	-	△1,524	△93	△1,617
2023	153	8	161	-	-	-	△153	△8	△161
총 계	**325,409**	**379,617**	**705,025**	**325,409**	**378,833**	**704,242**	**-**	**△784**	**△784**

* 금리 5.5%, 5년 거치 30년 상환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1.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의무,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344,431	347,197	353,525	6,328	1.8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3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복지여성과장(이연숙), 사무관(이승규, ☏ 044-201-15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업인의 건강·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건강보험료 : 농어업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 * 농식품부 0~28% + 복지부 22% 경감 · 연금보험료 : 농어업인이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
사업기간	· 건강보험료 : '04년~계속 · 연금보험료 : '95년~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19 건강보험료 325천세대, 연금보험료 380천명
지원조건	·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353,525백만원

○ **건강보험료** : 151,475백만원, 전년대비 10.7% 감액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7월)에 따른 지원세대 증가(317천세대→325천세대) 및 1인당 평균지원액 감소 예상치 반영

* (325천세대 × 37,637원 × 12개월 = 146,783백만원) + '17년 부족액 4,692백만원 = 151,475백만원

○ **연금보험료** : 202,050백만원, 전년대비 13.7% 증액

▪ 가입인원 증가(370천명→380천명), 기준소득금액 인상(91만원→97만원) 반영

* (380천명×43,650원×95.73%×12월 = 190,544백만원) + '17년 부족액 11,506백만원 = 202,05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예산
□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347,197백만원**	**353,525백만원**
▪ 건강보험료	지원규모 : 317천세대 지원금액 : 169,544백만원	지원규모 : 325천세대 지원금액 : 151,475백만원
▪ 연금보험료	지원규모 : 370천명 지원금액 : 177,653백만원 기준소득금액 : 91만원	지원규모 : 380천명 지원금액 : 202,050백만원 기준소득금액 : 97만원

□ 지원 필요성

○ (건강보험료) 농어업인의 오랜 영농활동과 고령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의료비 지출이 도시민보다 많은 상황으로,

- 건강보험료 지원이 없을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 상승으로 의료보장에 차질 우려

○ (연금보험료) 농어업인은 개방화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노후준비에 어려움

- 연금보험료 지원이 없을 경우 농어업인의 노후준비 부실로 향후 복지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344,431	347,197	353,525	6,328	1.8
▪ 건강보험료 (산출근거)	168,579 (327천세대× 41,940원×12개월, 부족액 4,006)	169,544 (317천세대×42,780원×12개월, 부족액 6,809)	151,475 (325천세대× 37,637원×12개월, 부족액 4,692)	△18,069	△10.7
▪ 연금보험료 (산출근거)	175,852 (350천명× 40,950원×96.13% ×12개월,부족액10,519)	177,653 (370천명×40,950원 ×95.34%×12개월, 부족액 4,308)	202,050 (380천명× 43,650원×95.73% ×12개월,부족액 11,506)	24,397	13.7
□ 비목(합계)	344,431	347,197	353,525	6,328	1.8
○ 비목(310-04)	344,431	347,197	353,525	6,328	1.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건강보험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 추진경위

<건강보험료>

- '01년~'03년까지 농어촌 거주자에 한하여 보험료의 22% 경감
- '04년부터 농어촌거주 농어민에게 보험료 30% 경감(복지부22%+농림부8%)
- '04. 7월 경감대상지역 확대(시의 녹지·관리지역, 특·광역시의 준농어촌)
- 국고지원율 상향하여 최대 50% 지원('04, 8% → '05, 18% → '06, 28%)
- '06. 7월 경감대상지역 확대(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지정 후 해제 지역)
- '08. 4월 경감대상지역 확대(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 '15.8월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 차등지원(0~28%)

<연금보험료>

- '95년 7월 농어촌지역가입자 연금적용 확대(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
- '03년 1월 최저등급보험료의 1/2금액 지원
- '04년 7월 기준등급이하 소득자 본인보험료의 1/2금액 정률지원, 기준등급초과 소득자 기준등급 보험료의 1/2금액 정액 지원
- '07년 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 이관

  * 기준소득금액(천원) : ('06) 480 → ('07) 520 → ('08) 620 → ('09) 730 → ('10~13) 790 → ('14) 850 → ('15) 910 → ('19) 970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2,820	3,241	3,367	3,433	3,444	3,472
- 건강보험료	1,761	1,838	1,730	1,682	1,686	1,695
- 연금보험료	1,059	1,403	1,637	1,751	1,758	1,77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367 (3,367)	- (-)	- (-)	3,367 (3,367)	3,367 (3,367)	- (-)	- (-)
'16년	3,433 (3,433)	- (-)	- (-)	3,433 (3,433)	3,433 (3,433)	- (-)	- (-)
'17년	3,444 (3,444)	- (-)	- (-)	3,444 (3,444)	3,444 (3,44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유사사업(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은 140만원)에 크게 못 미치므로 기준소득금액을 93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15, 상임위 검토보고서)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어업인

○ (신규신청) 지원대상인 농어업인은 각 공단에 지원신청

각 공단(지사)

○ 제출 받은 지원대상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이 원칙이나, 신청 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소급 가능

농식품부 및 각 공단, 지자체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실시(연2회)

- 부적격자 지원 여부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참고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및 근거법령

○ 사업목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복지증진 도모

○ 사업기간 : '04～계속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3조
- 농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보건복지증진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읍·면지역,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준농어촌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 건강보험료 지원금액 및 조건

○ 건강보험료 최대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체계

○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

-「연간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및 자동차의 각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

-「연간소득 500만원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각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부담능력을 점수로 표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18년 183.3원)을 곱하여 산정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국고 지원율 (복지부 22% 포함)		28 % (50%)	28 % (50%)	28 % (50%)	28 % (50%)	28 % (50%)	0~28 % (50%)	0~28 % (50%)	0~28 % (50%)	0~28 % (50%)
예산	월평균 지원세대 (천세대)	463	436	402	393	380	358	347	327	317
	예산액 (억원)	1,594	1,544	1,669	1,761	1,838	1,730	1,682	1,686	1,695

참고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및 근거법령

○ 사업목적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사업기간 : '95년 ~ ('07 농식품부로 이관)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17년 기준 232만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2,783만원)을 초과하는 자

□ 연금보험료 지원내용 및 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년 최고 43,6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금액 970,000원)

* 기준소득액 : ('06) 480천원 → ('08) 620 → ('09) 730 → ('10~13) 790 → ('14) 850 → ('15~'17) 910

□ 연금보험료 지원예산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기준 소득금액		62만원	73만원	79만원	79만원	79만원	79만원	85만원	91만원	91만원	91만원	91만원
1인당 최대 지원가능액(월)		27,900원	32,850원	35,550원	35,550원	35,550원	35,550원	38,250원	40,950원	40,950원	40,950원	40,950원
예산	월평균 지원인원	273	253	243	219	230 (266)	257 (290)	291	311	350	350	370
	예산액	884	917	940	869	924	1,059	1,403	1,638	1,751	1,759	1,777

2. 취약농가 인력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취약농가 인력지원	8,610	8,610	**9,968**	1,358	15.8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35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복지여성과장(이연숙), 사무관(이승규, ☏ 044-201-15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고령농·장애인·조손가구 등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영세 취약농가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
사업기간	· '06 ~ 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17년까지 기투자액 858억원)
사업규모	· '19년 영농도우미 17천 가구, 행복나눔이 14천가구
지원조건	· 지원형태(민간보조), 지원조건(국고 70%, 기타 30%)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취약농가 인력지원 : 9,968백만원, 전년대비 15.8% 증액

- 영농도우미 지원가구 증가(15→17천농가) 및 행복나눔이 활동비 인상(12→15천원)

▪ (영농도우미) 사고·질병 17천농가 × 70천원 × 70% × 10일 = 8,330백만원

▪ (행복나눔이) 농촌 취약계층 14천가구 × 15천원 × 70% × 11일 = 1,617백만원

▪ (일반수용비) 정책 만족도 조사 및 지원홍보 : 21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취약농가인력지원	**8,610백만원**	**9,968백만원**
▪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 70천원 지원일수 : 10일 지원인원 : 15천가구	지원단가 : 70천원 지원일수 : 10일 지원인원 : 17천가구
▪ 행복나눔이	지원단가 : 12천원 지원일수 : 11.5일 지원인원 : 14천가구	지원단가 : 15천원 지원일수 : 11일 지원인원 : 14천가구
▪ 일반수용비	정책만족도 조사 및 지원 홍보 : 21백만원	정책만족도 조사 및 지원 홍보 : 21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업인의 사고·질병으로 영농 적기를 상실할 경우 영농포기, 농업인의 소득 저하 등의 문제 발생

- 특히, 영세·고령농의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유도

○ 고령농, 다문화가정 등 농촌 취약농가에 사업 중단 시 기본적인 가사생활 및 최소한의 삶의 질 영위 곤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취약농가 인력지원	8,610	8,610	9,968	1,358	15.8
▪ 영농도우미 (산출근거)	7,140 (17천농가×60천원 ×70%×10일)	7,252 (15천농가×70천원 ×70%×10일)	8,330 (17천농가× 70천원×70%× 10일)	1,078	14.9
▪ 행복나눔이 (산출근거)	1,449 (15천농가×12천원 ×70%×11.5일)	1,337 (14천농가×12천원 ×70%×11.5일)	1,617 (14천농가× 15천원×70%× 11일)	280	20.9
▪ 일반수용비 (산출근거)	21	21	21 (만족도조사 용역)	-	-
□ 비목(합계)	8,610	8,610	9,968	1,358	15.8
○ 일반수용비(210-01)	21	21	21	-	-
○ 민간경상보조(320-01)	8,589	8,589	9,947	1,337	15.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추진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관련 연구용역 실시('05.12월)
- '06년에 「취약농가 인력지원」을 신규사업, 8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 실시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3ha미만 농가 65세 미만 농업인('06)→ 5ha미만 농가 69세 이하('07)→ 2주 이상 입원한 질병도 지원사유에 포함('08)→ 70세 이하('09)→ 10일 이상 입원, 75세 이하('10)→ 입원일수(5~10일)에 따라 차등 지원('11)→ 사고(2주 이상) 및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지원, 80세 이하('13)→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포함, 연령제한 폐지('16)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 확대 : 65세 이상 단독 고령농가('06년) → 65세 이상 농촌 고령가구(편조손 가구 포함)로 확대('07) → 다문화 가족포함 및 단독 고령농가 제외('09) → 농어촌 지역 경로당 확대('12) → 농촌 지역 고령단독가구 포함('14)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취약농가 인력지원	71	76	86	86	86	86
- 영농도우미	63	67	71	71	71	73
- 행복나눔이	8	8	15	15	15	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6 (86)	- (-)	- (-)	86 (86)	86 (72)	- (-)	- (14)
'16년	86 (86)	- (-)	- (-)	86 (86)	86 (73)	- (-)	- (13)
'17년	86 (86)	- (-)	- (-)	86 (86)	86 (78)	- (-)	- (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무총리실) ‘15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조정 결과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존치하되, 사업명칭 변경 및 복지부 ’단기가사지원‘의 지원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조정

- ‘16년 시행지침 개정 시 명칭변경(기존: 가사도우미→행복나눔이) 등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농식품부)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농협중앙회) → 지원신청(농업인) → 대상자 선정, 도우미 선정 및 파견(지역농협) → 임금신청(도우미)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지역농협)

참고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고·질병 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내용

- **(영농도우미)**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사고·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입원 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70천원)의 70%인 49천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 수급자(중위소득50%이내),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최대 12일(경로당 24일) 지원
  * 행복나눔이 1일 활동비(15천원)의 70%인 10.5천원 국고 지원(30%는 농협부담)

○ 사업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농식품부)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농협중앙회) → 지원대상자 선정(지역농협) → 도우미 선정 및 파견(지역농협) → 임금신청(도우미)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농협중앙회)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2	15,000	5,460	14,244	4,958	10,000	840	13,007	740
'13	15,000	6,300	15,605	6,231	10,000	840	12,053	764
'14	16,000	6,720	15,118	6,061	10,000	840	12,285	821
'15	17,000	7,140	14,577	5,879	15,000	1,449	13,613	1,274
'16	17,000	7,140	14,746	5,963	15,000	1,449	13,303	1,306
'17	17,000	7,140	15,844	6,387	15,000	1,449	14,440	1,449

3.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재량, 계속, 국정과제)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1,804	1,805	**1,500**	△305	△16.9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35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복지여성과장(이연숙), 사무관(이승규, ☏ 044-201-15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예방 교육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 연구 및 예방 교육
사업기간	· '13~(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18년까지 투자액 114억원)
사업규모	· '18년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운영
지원조건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센터별 3억원 범위내 국고 지원, 국고지원액의 10%는 센터 자체 조달
사업시행주체	· 농업안전보건센터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1,500백만원

- (농업안전보건센터) 센터 5개소 × 300백만원* = 1,500백만원

* 농업인 전문 질환 조사 연구 및 예방 활동 사업비 및 센터 운영비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1,805백만원**	**1,500백만원**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5개소 지정 및 운영 지원금액 : 1,500백만원	5개소 지정 및 운영 지원금액 : 1,500백만원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준비	여성농업인 검진 항목 마련 등 1식 : 300백만원	-
▪ 일반수용비	5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및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농업인은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농가인구 고령화율/전국 : ('01) 24.4%/7.6% → ('10) 31.8/11.3

○ 따라서, 농업인의 농작업간 발생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예방 교육 활동을 수행할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1,805	1,805	1,500	△305	△16.9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산출근거)	1,800 (6개소×300백만원×100%)	1,500 (5개소×300백만원×100%)	1,500 (5개소×300백만원×100%)	-	-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준비 (산출근거)	-	300 (여성농업인 검진항목 마련 1식)	-	△300	-
▪ 일반수용비 (산출근거)	5	5	-	△5	-
□ 비목(합계)	1,805	1,805	1,500	△305	△16.9
○ 일반수용비(210-01)	5	5	-	△5	-
○ 민간경상보조(320-01)	1,800	1,800	1,500	△300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 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어업인의 질환예방 등 지원에 관한 조항 마련('10.7)
- 농업인 직업성 질환연구 관련 연구용역 실시('10.12)

  * (단기) 대학병원 등 기존의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 등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농어업인 질환 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계획(안) 수립('12. 6)

-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13. 3) → 2개소 추가 지정('14.4) → 1개소 추가 지정('15.4) → 2개소 사업종료('15.12) → 1개소 사업종료('16.12)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15	21	24	18	18	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7년 동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종료로 인한 285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4 (23)	- (-)	- (-)	24 (23)	23 (23)	- (-)	1 (-)
'16년	18 (18)	- (-)	- (-)	18 (18)	18 (18)	- (-)	- (-)
'17년	18 (18)	- (-)	- (-)	18 (18)	15 (15)	- (-)	3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참고 2(농업안전보건센터 관련 해외사례)

(5) 사업추진절차

사업비 확보(농식품부) ⇒ 지정 및 운영지침 작성(농식품부) ⇒ 지정신청(대학병원 등→ 농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농식품부 → 신청기관) ⇒ 예산배정(농식품부)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농업안전보건센터 → 농식품부)

참고 1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예방 교육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사업기간 : ’13～계속 (신규)

○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사업내용 : 농업인 직업성 질환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질환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학병원, 의과대학

○ 사업추진절차 : 센터공모(농식품부) ⇒ 지정신청(대학병원 등→ 농식품부) ⇒ 센터 지정(농식품부 → 신청기관) ⇒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농식품부)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센터 → 농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현황 및 연구주제

지정년도	지정기관	연구주제
2013	강원대농업안전보건센터	허리질환의 분석 및 예방사업
2013	조선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무릎골관절염 질환
2013	경상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2014	단국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농약 중독 질환
2015	제주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업무상 손상

참고 2 농업안전보건센터 관련 해외사례

구 분	미 국	핀란드	캐나다
	농업안전보건센터	국립농업보건센터	농업건강안전센터
기관조직	NIOSH 산하 10개소	FIOH 산하 1개소	CCHSA 1개소
연구인력	개소당 20~40여명	20여명	20~30여명
기술수준	감시, 예방기술 적용	예방효과 구명단계	학제간 연계 및 학문적 접근
주요 기능	▸농업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해 농작업관련 질병과 상해 연구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교육, 작업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수행	▸농업인 건강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수혜 확대 지원 ▸홍보와 훈련 - 4년 주기 안전 점검을 받은 농가는 재해보험의 20% 감면 - 농작업 사고 제로화 PG 운영	▸농촌지역(오지 포함) 농업인 건강과 복지 조사, 교육 및 건강 증진 PG 작성 (실제 도움을 위한 지식 공유) ▸국가적 연구 수행 : 호흡, 음식 환경, 작업 건강,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평가체계	▸5년 단위 센터 지정 및 평가 ▸평가기준 : 연구업적의 중요성, 영향력, 지식전파도, 혁신 정도 ▸평가반영 : 일정점수 이하면 예산 삭감	-	-

4.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계속, 재량)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	13,700	13,090	13,995	905	6.7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35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복지여성과장(이연숙), 사무관(이한병, ☏ 044-201-157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고교생 장학금 지원 등 지원
사업기간	'15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 등 68.5백명(대학생 55.5, 고교생 13)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100%)
사업시행주체	농어촌희망재단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995백만원**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규 추진 등으로 '18년 대비 905백만원 증액(6.9%)

▪ 대학장학금: 11,825(전년대비 625백만원 증)

- 농업인자녀장학금: 150만원×1,550명×2학기 = 4,700백만원
- 영농후계장학금(농대 재학생) : 250만원×975명×2학기 = 4,875백만원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에 따라 저학년(1~2학년) 중심 지원 등 지원대상 축소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450만원×500명 = 2,250백만원
  * 청년창업농 육성정책('22년까지 청년창업농 1만명 육성)과 연계, 고학년(3~4학년생) 대상, 졸업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장학금 신규 지원(2학기부터)

《참고. 영농후계장학금(대학) 개편 방향》

○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

* 3학년 이상 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에 학업장려금을 포함하여 지원, 지원기간만큼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부여(미 이행시 장학금 환수)

○ **기존 영농후계장학금**은 **우수 학생 농대 유입 촉진**을 위해 2학년 이하 등 저학년 대상으로 병행 지원(신뢰보호 차원에서 계속장학생은 지원 유지(한시))

▪ 고교장학금: 650백만원(전년 동일)

- 영농후계장학금(농고 재학생): 50만원 × 1,000명 = 500백만원
- 농촌지역 학교 예체능 우수학생: 50만원 × 300명 = 150백만원

▪ 운영·관리 및 기타 장학사업: 1,520백만원(전년대비 280백만원 증)

- 농고·농대생 현장실습 지원: 700백만원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장학생 선발·관리, 홍보 등 : 82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3,090**	**13,995(+905)**
▪ 대학장학금	**11,200**	**11,825(+625)**
· 농업인자녀	4,700 (1,550명 × 150만원×2학기)	4,700 (1,550명 × 150만원×2학기)
· 영농후계	6,500 (1,300명 × 250만원×2학기)	4,875(△1,625) (975명 × 250만원×2학기)
· 청년창업농육성	-	2,250(순증) (500명 × 450만원×1학기)
▪ 고교장학금	**650** (1,300명 × 50만원)	**650** (1,300명 × 50만원)
▪ 운영·관리 등	**1,240** - 농업실습 지원 : 700백만원 - 장학사업 운영관리 : 540백만원	**1,520(+280)** - 농업실습 지원 : 700백만원 - 장학사업 운영관리 : 8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업인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농업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으로 농업·농촌에 청년층 인력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

* 현재 전체 농가경영주 중 40세 미만 경영주는 0.9%에 불과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3,850	13,090	13,995	905	6.9
▪ 대학장학금	11,750	11,200	11,825	625	5.6
- 농업인자녀	5,250 (150만원×3,500명)	4,700 (150만원×3,100명)	4,700 (150만원×3,100명)		
- 영농후계	6,500 (250만원×2,600명)	6,500 (250만원×2,600명)	4,875 (250만원×1,950명)	△1,625	△25.0
- 청년창업농육성	-	-	2,250 (250만원×2,600명)	2,250	순증
▪ 고교장학금	650	650	650		
- 영농후계(농고생)	500 (50만원×1,000명)	500 (50만원×1,000명)	500 (50만원×1,000명)		
- 농어촌학교 예체능분야	150 (50만원×300명)	150 (50만원×300명)	150 (50만원×300명)		
▪ 운영관리 및 기타장학	1,300 (농업연수 700, 운영관리 600)	1,240 (농업연수 700, 운영관리 540)	1,520 (농업연수 700, 운영관리 820)	280	22.6
□ 비목(합계)	13,700	13,090	13,995	905	6.7
○ 민간경상보조(320-01)	13,700	13,090	13,995	905	6.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 여건의 개선)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세입및세출)

○ 추진경위

- 마사회특별적립금지원사업의 재정편입에 따라 적립금으로 지원하던 '농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 장학사업'을 예산(농특회계)으로 지원('15)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52	139	137	13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사유) 장학금 반납금 6.2백만원, 계약 낙찰차액 등 잔액 9.4백만원

○ ('16년 불용사유) 장학금 반납금 23백만원, 사업비 절감 등 잔액 63백만원

○ ('17년 불용사유) 계약 낙찰차액 등 잔액 50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150 **(15,150)**	( )	( )	15,150 (15,150)	15,150 **(15,134)**	- ( )	- (16)
'16년	13,850 **(13,850)**	( )	( )	13,850 (13,850)	13,850 **(13,764)**	- ( )	(86)
'17년	13,700 **(13,700)**	( )	( )	13,700 (13,750)	13,700 **(13,650)**	( )	(5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농업인자녀장학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15 결산 상임위 시정요구, '16)

○ 장학사업의 시행주체 이관 검토 필요('17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16)

○ 영농후계장학생 선정 시 소득수준과 연계, 저소득층에 일부 가점 부여 등 강구 필요 ('16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17)

○ 유사 장학금과 비교시 의무종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지원대상도 중복될 소지, 소득분위 상관없이 지원 및 의무종사 유예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진 여부 신중 검토 필요('19 예산 예결위 소위 심사, '18

○ 20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세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신청(농어촌희망재단) ⇨ 자금배정(농식품부→재단) ⇨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재단) ⇨ 사업추진결과 보고(재단→농식품부) ⇨ 사업평가 및 환류(농식품부)

참고 **장학금 지원현황['13~'18]**

구분	항 목	인원(명)	금액(백만원)
2013	○ 대학장학금	6,377	11,657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3,182	6,863
	- 농업인자녀 장학금	3,195	4,792
	○ 고교 장학금(농식품계열)	1,024	512
2014	○ 대학장학금	6,339	11,442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3,210	6,749
	- 농업인자녀 장학금	3,129	4,693
	○ 고교 장학금(농식품계열)	1,000	500
2015	○ 대학장학금	7,397	12,557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3,239	6,950
	- 농업인자녀 장학금	4,158	5,607
	○ 고교 장학금	2,586	1,293
	- 농식품계열	1,386	693
	- 체육분야	1,200	600
2016	○ 대학장학금	7,273	11,298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2,762	6,428
	- 농업인자녀 장학금	4,511	4,870
	○ 고교 장학금	2,688	1,344
	- 농식품계열	2,121	1,061
	- 예체능분야	567	283
2017	○ 대학장학금	7,970	11,530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2,607	6,517
	- 농업인자녀 장학금	5,363	5,013
	○ 고교 장학금	1,862	931
	- 농식품계열	1,562	781
	- 예체능분야	300	150
2018	○ 대학장학금	7,432	10,827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2,578	6,445
	- 농업인자녀 장학금	4,854	4,382
	○ 고교 장학금	2,045	1,023
	- 농식품계열	1,745	873
	- 예체능분야	300	150

5.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재량, 신규)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	(1,608)*	2,776	1,168	72.6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35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복지여성과장(이연숙), 사무관(김경은, ☏ 044-201-1572)

* '18년 신규사업인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 및 기존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축제' 등 개별 지원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농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축제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및 혁신을 도모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축제 지원
사업기간	'1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18개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5개소, 농촌축제 지원 50개소 등
지원조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국비 100%), 농촌축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등
사업시행주체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1,446백만원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756백만원
  - 9개소×60백만원×70%, 연구용역(2018년) → 18개소×60백만원×70%(2019년)
-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550백만원
  - 홈페이지 개발·운영관리, 포럼 운영, 홍보 등(2019년 신규)
-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 바우처 : 140백만원
  - 100개소×2백만원×70%(2019년 신규)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 750백만원

- 지자체와 마을 간 협약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활동 지원
  - 실증 연구용역(시범마을 3개소)(2018년) → 5개소×150백만원×100%(2019년)

○ 농촌축제 지원 : 580백만원

- 마을·권역 단위 농촌축제 지원 : 500백만원
  - 50개소×20백만원×50%(2018년) → 50개소×20백만원×50%(2019년)
- 농촌축제 지원사업 운영관리 : 80백만원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예산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업농촌사회적 가치확산지원	(1,608)*	2,776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528) (9개소 지원, 연구용역)	1,446 (18개소 지원, 플랫폼 구축, 바우처 지원 신설)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500) (실증 연구용역 시범마을 3개소)	750 (본 사업 실시 5개소)
▪ 농촌축제 지원	(580) (50개소 지원, 운영관리)	580 (50개소 지원, 운영관리)

* '18년 신규사업인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 및 기존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축제' 등 개별 지원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 지원 필요성

○ 사회적 농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축제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	(1,608)	2,776	1,168	72.6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528)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60백만원×70%=378백만원, 연구용역 150백만원)	1,446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18개소×60백만원×70%=756백만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550백만원, 사회적경제 조직 바우처 100개소×2백만원×70%=140백만원)	918	173.9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500) (실증 연구용역, 시범마을 3개소)	750 (5개소×150백만원×100%)	250	50.0
▪ 농촌축제 지원		(580) (50개소×20백만원×50%=500백만원, 운영관리 80백만원)	580 (50개소×20백만원×50%=500백만원, 운영관리 80백만원)	-	-
□ 비목(합계)		(1,608)	2,776	1,168	72.6
○ 일반수용비(210-01)		(150)	25	△125	△83.3
○ 정책연구비(260-02)		(500)	-	△500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80)	745	665	831.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78)	2,006	1,128	128.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추진경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17.9.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농촌 사회적경제 인력 육성, 사회적 농업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 지원 등 과제 제시)
- '17. 정부 국정과제 포함(81-3.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18.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
- '18.4.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9개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16. 농업환경 보전 정책을 담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제3차(2011～2015) 세부 추진과제 중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관리, 농업환경 자원별 관리 및 이용 개선 등
◈ 제4차(2016～2020) 세부 추진과제 중 '농업환경 보전 강화'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확산,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등

- '17.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포함
- '17.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기초자료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계획 수립('17)
- '18. 프로그램 도입방안 정책 및 실증 연구용역(시범마을 3개소) 실시

<농촌축제 지원>

- '08. 시범사업 추진 19개소/8억원(국고) 지원 → ('11) 27/5 → (14) 39/5 → ('18) 60/5
- '17.~ 차년도 농촌축제 개최 의지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예비컨설팅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농촌사회적가치 확산지원	-	-	-	-	-	(16)*

* '18년 신규사업인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 및 기존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축제' 등 개별 지원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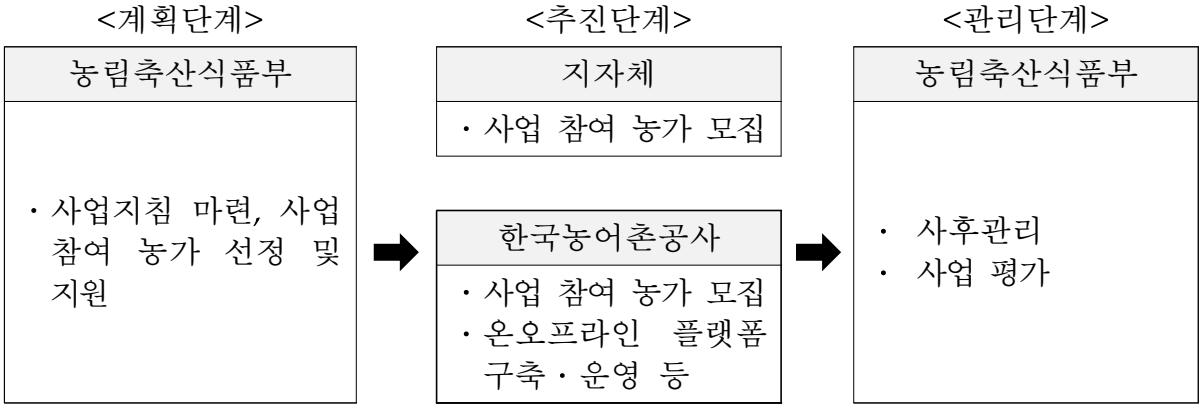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순서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 신청·선정	전년도 9월 ~전년도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사업시행지침 시·도 시달 및 사업공모(농식품부)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제출(지자체)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지자체) 및 확정(농식품부)
사업 시행	1월~4월	지자체	▪ 사업대상자 교육·컨설팅, 환경조사·진단 ▪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이행협약 체결 ▪ 관리계획에 따른 활동 이행(마을)
이행 점검	상·하반기	지자체	▪ 마을별 이행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자금 집행	10월~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자금교부 신청(지자체) 및 자금교부(농식품부)
사업 평가	12월~ 차년도 2월	농식품부, 지자체	▪ 사업실적 제출 및 결과보고

<농촌축제 지원>

- 사업계획 수립 · 시달(농식품부) → 축제계획서 제출(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지원축제 선정 · 통보(농식품부) → 축제시행계획 수립 · 제출(시군 → 시도) → 시행계획 승인(시도, 농식품부에 보고) → 축제 시행(시군) → 정산 및 실적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참고1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안)

□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19년 18개소, 756백만원)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고용으로 연결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활동

○ 돌봄, 재활, 직업훈련, 교육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개소당 최대 50백만원)

* 프로그램 예시 : 농업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노인 돌봄서비스, 직업 농업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대상 농산업 일자리 제공 등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가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농업·농촌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전문서비스 지원 바우처 지급**('19년 100개소, 140백만원)

* 사회적 농업 조직 18개소, 농촌공동체회사 31개소, 농식품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51개소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을 위한 **회계, 세무, 법률, 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료 지원(개소당 최대 1.4백만원/자부담 30% 매칭 조건)

* 기장 수수료, 법인 결산 수수료, 법률 자문서비스 이용료, 노무 자문서비스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19년, 525백만원)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간 **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 해결 창구

○ 사회적 농업의 **개념, 정책,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현황** 소개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및 관련 네트워크 조직 **생산품 판매**

□ 사회적 농업 **홍보 책자** 발간, **언론 홍보** 등('19년, 25백만원)

참고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

* 농업환경(Agri-environment) : 토양, 용수 등 농업 생산활동의 기반 및 농업 활동으로 인해 조성된 농촌 지역의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적 유적 등

○ **(대상활동) 토양 양분관리**와 침식 방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활동

분야	주요 활동
토양	비료·가축분뇨 사용량 감축, 농업부산물의 농지 환원,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병해충·잡초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제초 등
용수	농경지 말단부 경작 금지, 농업용수원에 수생식물 식재, 논 절수 관개 등
대기	무경운·최소경운 등 보전경운, 미생물 등 축산악취 저감 제재 사용 등
경관 생활	공동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배출 등
유산 생태	전통농법 및 농업경관의 관리·보전, 농업 및 공동체문화 유지·계승,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 생태교란 식물 제거, 생태둠벙 조성 등

○ **(추진절차)**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 활동 지원**(기본 5년)

- **(1년차)** 주민 교육·컨설팅,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농업환경 **조사·진단*,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마을 간 **협약** 및 활동 이행

  * 토양 양분수지, 농업용수 수질, 보유 경관 및 유산, 생물종 및 개체수 등

- **(2~5년차)** 주민 교육,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 환경 지표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평가, 활동비 지원** 등 프로그램 계속 추진

□ 사업 추진계획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18: 5억원)

- 해외 사례와 농가 조사, 프로그램 활동·이행점검 등 **추진체계 구체화**
- 실제 마을을 선정(3개소)하여 프로그램 **시범 적용** 및 시사점 도출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추진내용 구체화 및 **본사업 도입**('19)

6. 경관보전직불(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첨부1 세부사업명)	9,170	9,320	8,356	△964	△10.3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4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지역개발과장(김철), 사무관(이교남, ☏ 044-201-156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경관 서비스는 국민들이 공동으로 누리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부문에서 지원 필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시장·군수와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관리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경관보전활동 지원
사업기간	'05～계속
총사업비	- 억원 ('18년까지 투자액 1,282억원)
사업규모	'18년 기준 11,462ha, 579지구
지원조건	보조(지속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시장·군수, (참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경관보전직불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8,356백만원

▪ 작물재배직불금 8,356백만원(11,462ha)

- (경관) 7,500ha×170만원×50%=6,375백만원
- (준경관) 3,962ha×100만원×50%=1,981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사업명	**9,320백만원**	**8,356백만원**
▪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재배 8,356(경관 7,500ha, 준경관 3,962ha), 마을경관활동비 1,088, 행정비 104	경관작물재배 8,356(경관 7,500ha, 준경관 3,962ha)

□ 지원 필요성

○ 경관작물 재배 및 경관보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편익(아름다운 농촌경관의 형성·유지, 환경 보전, 휴양·힐링 자원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기여 등) 확대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 '90년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농촌의 경관훼손 심화,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사업 실시

*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시('04년)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아름답게 형성된 농촌경관서비스 및 쾌적한 농촌경관은 국민들이 공동으로 누리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큼

○ 경관형성을 통한 방문객 유치(지역축제, 도농교류 연계) 등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배려 필요

- 농촌이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을 형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자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 경관보전직불 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및 지역축제 연계 등 농촌지역 활성화 효과의 지속적인 유지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9,170	9,320	8,356	△964	△10.3
▪ 경관보전직불 (산출근거)	9,170	8,356 경관: 7,500ha×170만원×50% 준경관: 3,962ha×100만원×50%	8,356 경관: 7,500ha×170만원×50% 준경관: 3,962ha×100만원×50%	-	-
		860 마을경관활동비: 11,462ha×15만원×50%	-	△860	△100
		104 행정비(경관개선지원)	-	△104	△100
□ 비목(합계)	9,170	9,320	8,356	△964	△10.3
○ 일반수용비(210-01)	87	92	-	△92	△100
○ 국내여비(220-01)	5	5	-	△5	△100
○ 국외여비(220-02)	5	5	-	△5	△100
○ 사업추진비(240-01)	5	2	-	△2	△1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068	9,216	8,356	△860	△9.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직불제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 추진경위

- ’02. 12월 : 제16대 대선 공약(직불예산을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
- ’04. 3월 : 농림어업인삶의질특별법 제정 시 법적근거 마련
- ’04. 2월 :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반영
- ’05. 1월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15. 4. 7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시행 규칙 개정

* 면적상한(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및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자 제외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경관보전직불	141	141	139	136	116	9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지자체 불용은 기상이변에 따른 사업포기 및 이행점검에 따른 감액지급으로 인한 집행 잔액임.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9 (138)**	- (-)	- (-)	**139 (138)**	**139 (99)**	- (-)	- **(39)**
’16년	**136 (122)**	- (-)	- (-)	**136 (122)**	**123 (113)**	- (-)	**13 (9)**
’17년	**116 (91)**	- (-)	△22 (-)	**94 (91)**	**92 (89)**	- (-)	**2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경관작물 재배협약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협약 이행실적 및 보조금 실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국회 상임위 김종회의원, 이만희의원)

⇒ ‘18년도 사업대상 선정 시 전년도 경관작물 재배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사업에서 제외하고, 이후 파종면적을 매년 5%씩 확대, ’22년에 파종면적이 70%이하 사업지구 제외

* (‘18) 50% 이하 → (’19) 55% → (‘20) 60% → (’21) 65% → (‘22) 70%

○ 필지 전체의 생육·개화가 안된 경우 파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직불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후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의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16회계연도 결산)

⇒ '18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작물재배관리 불성실 사업대상자(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 된 경우가 2회)의 사업참여 배제

○ 경관보전직불금의 사업체계를 살펴보면 기상이변 등에 따른 생육 및 개화불량, 협약 미이행 등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과거 실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규모의 지속적 축소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18예산안 상임위 검토보고서)

○ '1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의 환경경관보전사업(ES ; Environmental Stewardship)

- 환경민감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 및 농촌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경관을 복구·재창출하여 친환경적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대상, 지원단가 및 시행지침을 정하고, 국가와 지역주민간의 협약방식으로 추진

  * 경종작물 재배관리, 토지경계 시설관리, 역사적 유적지 복원, 강·호수관리 등

○ 프랑스 지속적 농업계약(CAD; Le Contrat d'Agriculture Durable)

- 자연자원, 토양의 비옥도, 수자원,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전과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농촌공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개별농민, 지역조합, 농민조직, 꼬뮌 연합체 등) 스스로 농업환경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경관보전적 사업계획서(경관·문화보전을 위한 토지이용방식의 유지, 초지의 조방관리 등)를 작성하여 국가와 계약 체결을 통해 추진

  * 경지의 목초지 전환, 동계 휴경지 축소, 경관요소(생울타리, 연못 등) 형성 등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지침시달	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지침시달
⇓			
경관직불사업 신청 (수요조사)	3월	농업경영체	·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수립
⇓			
사업면적 요청	4월	시장, 군수	·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면적을 취합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 대상면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사업면적 확정	8월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면적 등에 따라 시도별 사업면적을 확정하여 통지 (농식품부→시·도→시·군)
⇓			
농가별 사업면적 배정	9월	시장, 군수	· 대상지구 선정 통지(시·군→읍·면, 추진위)
⇓			
협약체결완료	10월	시장, 군수와 농업경영체	·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점검	개화기	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농관원→시군)
⇓			
보조금 지급	이행실태 점검 후	시장, 군수	·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미이행 및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액 지급

7.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지역자율, 세종, 제주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25,819	131,883	126,766	△5,117	△3.9
- 지역자율계정	122,189	125,739	121,192	△4,547	△3.6
- 세종계정	795	2,800	1,785	△1,015	△36.3
- 제주계정	2,835	3,344	1,579	△1,765	△52.8

* 사업코드 : 20 - 39 - 1 - 100 - 101 - 4100 - 4150(지역자율계정)
20 - 39 - 4 - 100 - 101 - 4100 - 4150(세종계정)
20 - 39 - 3 - 100 - 101 - 4100 - 4150(제주계정)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산업과장(김신재), 사무관(김동남, ☎ 044-201-1586)
농촌복지여성과(이연숙), 사무관(김경은, ☎ 044-201-157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농산물 제조·가공, 농산물 체험·전시, 농촌체험·관광,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등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촌 활력증진에 기여

* 농촌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농촌의 인력, 농산물,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구축,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 체험전시, 농촌체험관광,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6차산업화지원,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 억원 ('17년까지 투자액 15,398억원)
사업규모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계정별 : ('18) 355, 131,883백만원→('19) 396, 126,766

- 생활기반계정 : ('18) 335개소, 125,739백만원→('19) 372, 121,192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18) 3개소, 2,800백만원→('19) 5, 1,785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8) 17개소, 3,344백만원→('19) 19, 3,789

○ 유형별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18) 8개소, 527백만원→('19) 8, 698
-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 : ('18) 81개소, 45,122백만원→('19) 138, 43,070
-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 ('18) 66개소, 33,764백만원→('19) 63, 32,655
- 농산물 체험·전시지원 : ('18) 2개소, 445백만원→('19) 10, 2,823
- 농촌 체험·관광지원 : ('18) 55개소, 27,085백만원→('19) 35, 17,359
- 농공단지 조성·개보수 : ('18) 58개소, 9,895백만원→('19) 70, 13,554
- 6차산업화 지원 : ('18) 47개소, 14,100백만원→('19) 41, 15,837
- 농촌공동체회사우수 : ('18) 38개소, 945백만원→('19) 31, 770

□ 지원 필요성

○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제조·가공, 체험·전시, 체험관광 및 농공단지 조성(정비)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25,819	131,883	126,766	△5,117	△3.9
▪ 기획평가체계구축	493	527	698	171	32.4
▪ 농산물생산·유통	40,802	45,122	43,070	△2,052	△4.5
▪ 농산물제조·가공	27,903	33,764	32,655	△1,109	△3.3
▪ 농산물체험·전시	6,360	445	2,823	2,378	534.4
▪ 농촌체험·관광	26,368	27,085	17,359	△9,726	△35.9
▪ 농공단지조성·정비	10,804	9,895	13,554	3,659	37.0
▪ 6차산업화지원	11,439	14,100	15,837	1,737	12.3
▪ 농촌공동체회사우수	1,650	945	770	△175	△18.5
□ 비목(합계)	125,819	131,883	126,766	△5,117	△3.9
○ 지자체자본보조(330-03)	125,819	131,883	126,766	△5,117	△3.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육성),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정비법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추진경위

-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예산을 편성, 개별 세부사업*으로 각각 시행

  * 세부사업 : 특화품목육성, 농촌테마공원조성, 농공단지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한우명품화 등

-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세부사업을 시·도 재원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내역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

  *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제조·가공, 체험·전시, 농촌체험·관광,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6차산업화 지원,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등의 7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 2017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을 동 사업으로 이관(농특회계→지특)

  * '10. 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농촌공동체회사 지원근거 마련
  * '11. 1 :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신규사업 추진
  * '13.11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사회서비스제공형 육성 중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106	1,762	1,578	1,567	1,563	1,31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매년 지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차년이월, '15년 불용(384백만원)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29 (1,993)	979 (611)	-	2,508 (2,604)	1,993 (1,684)	511 (825)	4 (95)
'16년	1,519 (1,849)	511 (508)	-	2,030 (2,357)	1,850 (1,471)	181 (800)	- (86)
'17년	1,526 (1,403)	181 (782)	-	1,708 (2,185)	1,403 (1,335)	304 (753)	- (9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예산신청가이드라인 시달(5월초, 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예산신청(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부처별 검토의견 제출(농식품부 → 기획재정부) → 정부예산 편성 및 국회제출(기획재정부 → 국회) → 예산확정(국회) → 보조금예산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비 집행(시·군·구)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토목·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시·도는 매년 3.20일까지 농식품부에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5.31까지 예산신청)

참고 ‘19 예산 요구 시도별 · 유형별 내역

(단위: 개, 백만원)

시도	총계		기획평가 체계 구축지원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 관광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개수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계	**396**	**126,766**	**8**	**527**	**138**	**43.070**	**63**	**32,655**	**10**	**2,823**	**35**	**17,359**	**70**	**13,554**	**41**	**15,837**	**31**	**770**
생활계정	**372**	**121,192**	**7**	**515**	**127**	**41,167**	**56**	**30,926**	**10**	**2,823**	**34**	**16,359**	**68**	**12,675**	**41**	**15,837**	**29**	**720**
부산	1	240	-	-	-	-	-	-	1	240	-	-	-	-	-	-	-	-
대구	2	500	-	-	-	-	-	-	2	500	-	-	-	-	-	-	-	-
광주	1	110	-	-	-	-	1	110	-	-	-	-	-	-	-	-	-	-
대전	2	313	-	-	1	285	1	28	-	-	-	-	-	-	-	-	-	-
경기	13	4,925	1	25	1	900	4	2,500	-	-	1	100	1	100	2	1,300	4	100
강원	27	6,021	1	25	4	1,825	5	1,850	1	200	1	174	1	174	6	1,222	6	150
충북	15	3,985	-	-	1	354	4	1,993	-	-	1	150	1	150	-	-	3	75
충남	51	18,931	1	315	8	6,601	8	5,520	1	500	2	1,150	2	1,150	3	1,630	2	45
전북	143	44,645	1	150	90	21,628	12	10,240	-	-	19	7,225	19	7,225	14	4,460	-	-
전남	47	15,414	1	50	10	4,840	3	3,370	1	100	4	1,290	4	1,290	3	1,650	10	250
경북	35	12,724	1	80	6	2,145	6	1,405	4	1,283	2	3,600	2	3,600	8	3,475	3	75
경남	35	13,384	1	40	6	2,589	12	3,910	-	-	4	2,670	4	2,670	5	2,100	1	25
제주계정	**19**	**3,789**	**1**	**13**	**10**	**1,318**	**6**	**1,579**	**-**	**-**	**-**	**-**	**2**	**879**	**-**	**-**	**-**	**-**
세종계정	**5**	**1,785**	**-**	**-**	**1**	**585**	**1**	**150**	**-**	**-**	**1**	**1,000**	**-**	**-**	**-**	**-**	**2**	**50**

8. 토양개량제(제주)(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제주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2,297	2,000	1,500	△500	△25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4100 - 415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기자재정책팀장(김수일), 서기관(김규욱) ☎(044-201-189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사업기간	'14~계속
사업규모	'17년까지 지원물량 106천톤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농협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제주지역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백만원

▪ **('18) 2,000백만원 → ('19) 1,500 ('1년 대비 △ 500, △25%)**

・[규산 1,500톤 x 137천원/톤x70%]+[석회 12,700톤 x 152천원/톤 x 70%] ≒ 1,500백만원

* 적용단가 ('18년 기준) : 규산 137천원/톤, 석회 152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2,000백만원	1,500백만원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 지원물량: 규산3000톤, 석회16,100 - 지원단가 : 규산 137천원, 석회 152	- 지원물량: 규산1,500톤, 석회12,700 - 지원단가 : 규산 137천원, 석회 152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2,297	2,000	1,500	△500	△25
▪ 토양개량제 (산출근거)		▪ (규산 3,000톤× 137천원/톤×70% + 석회 16,100톤×152천원/톤×70%)	▪ (규산 1,500톤×151천원/톤×70% + 석회 12700톤×167천원/톤×70%) ▪ 공동살포 14,200톤×20천원/톤×35%		
□ 비목(합계)	2,297	2,000	1,500	△500	△25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297	2,000	1,500	△500	△2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업분야의 환경보전, 화학자재의 감축방안, 친환경농업의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등

○ 농지법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법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추진경위

- ’09이후 ’13년까지 광특회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의 내역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타지역의 농특회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국비 70%, 지방비 30%와 맞추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요구
- 2008년도 향토산업육성 및 특화품목육성사업에 신규사업 계획반영
- 기능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친환경특화단지에 생산·가공·유통 일괄처리시스템을 갖춘 전문생산단체 육성
- 제주산 신선농산물 안정적 수급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 제주산 신선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제품화로 소비확대
- 2014년부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친환경농자재지원		23	25	33	23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5 (25)	- (-)	- (-)	25 (25)	25 (25)	- (-)	- (-)
'16년	33 (33)	(-)	(-)	33 (33)	33 (33)	(-)	(-)
'17년	23 (23)	- (-)	- (-)	23 (23)	23 (2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 편성체계의 일관성 확보 등을 고려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이관 필요('17년 결산 상임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해당없음)

9.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6,967	13,703	18,536	4,833	35.3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6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박경희), 사무관(김기성, ☏ 044-201-1542, 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 균형발전과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캠페인 추진,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의료·문화·보육·주거환경개선 등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촌 활력증진에 기여
-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및 농촌주민 체감복지 제고
-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창출 활성화를 위한 포괄보조사업의 사업성 검토, 추진실적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추진 지원
- 우수인력 및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복지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한 행정경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의료·문화·보육·주거환경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국토 균형발전과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기간	'11~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19년 9개소),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100여개 직능 ·사회봉사단체 등), 농촌집고쳐주기('19년 1천가구), 농촌사회복지증진사업(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19년 32천명), 농촌형교통모델 사업 운영·관리), 농촌지역 종합개발지원 및 농촌활력정착지원 사업추진·모니터링 등
지원조건	· 주민주도마을만들기 : 국비 50%, 지방비 50%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 국비 100% · 농촌재능나눔 및 농촌집고쳐주기 : 국비 100% · 농번기 주말돌봄방 : 국비 100% ·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 : 국비 100% · 농업인행복버스 : 80%, 자부담 20%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촌형교통모델 운영 : 국비 100% ·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 국비 100% · 농촌활력정착지원 :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시도·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재)다솜둥지복지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재)농어촌희망재단,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어촌문화미래연구소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18,536백만원(전년대비 4,833 증) 반영

○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 754백만원

▪ 주민 역량조사 및 주민주도 마을발전 계획수립 등 : 540백만원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9개도 × 120백만원 × 50%

  * (지자체경상보조) 국고 50%, 지자체 50%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모니터링, 평가 및 운영지원, 마을대상 : 214백만원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 219백만원(전년대비 84백만원 증)

▪ 농촌공동체회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등 : 219백만원

- 공동체회사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설명회 및 교육·모니터링·홍보 지원(80), 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비(139)

○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 2,302백만원(전년대비 539백만원 증)

▪ 직능·사회봉사단체 등 활동지원 공모사업 : 1,300백만원

* 일반단체, 의료활동·단체, 대학생봉사동아리, 코디마을 등 최대 20백만원까지 단체별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공모·선정 후 차등 지원

▪ 스마일재능뱅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365백만원

▪ 농촌재능나눔 전국민 확산·활성화 연계사업 : 637백만원

- 농촌재능나눔 캠프, 농촌재능나눔 공모전, 통합캠페인, 행사현장 홍보부스 운영 등

○ 농촌집고쳐주기 지원 : 4,500백만원(전년대비 3,257백만원 증)

▪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 4,500백만원(전년대비 3,257백만원 증)

- 농촌 집고쳐주기 : 1천가구 × 4.5백만원 × 100% = 4,500백만원

○ 농촌사회 복지증진사업 : 5,580백만원(전년대비 746백만원 증)

▪ 농번기 주말돌봄방 : 235백만원

- 시설 개보수 : 3개소×20백만원 × 100%, 돌봄방 운영 : 15개소×12백만원×100%

▪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 2,700백만원

- 200개소 × 13.5백만원 × 100% = 2,700백만원

  * 최대 25백만원 범위 내 사업별 차등 지원

▪ 농업인 행복버스(의료·문화 지원) 운영 : 791백만원

- 30천명 × 32,958원 × 80% = 791백만원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 1,456백만원(807백만원 증)

- 시설비 및 이동식 놀이교실 : 10개소 × 152백만원 × 70%

  * (지자체경상보조) 국고 70%, 지자체 30%

- 돌봄센터 운영비 : 37개소 × 11백만원 × 100%

  * (지자체경상보조) 국고 100%

▪ 농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선정·평가·모니터링 등 : 398백만원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운영·관리비 96백만원,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 302백만원

○ 농촌지역 종합개발지원 : 3,485백만원(전년대비 112백만원 증)

▪ 농촌지역개발사업 모니터링・컨설팅 등 : 492백만원
▪ 지역 역량강화 및 농촌지역개발 정책 및 홍보 지원 : 1,247백만원
▪ 지역개발지원단 운영 : 1,466백만원, 행정경비 280백만원

○ 농촌활력정착지원 : 1,696백만원(전년대비 240백만원 증)
▪ 농촌산업육성 관련 사업 추진 위한 경비 등 : 81백만원
▪ 농촌산업육성 관련 심의·평가·모니터링·관리 : 127백만원
▪ 농어촌자원개발원 운영 : 1,48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주민주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주민주도 마을발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인적자원육성, 정보공유 등 체계적인 마을지원체계 구축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역량강화 지원 필요

* 일자리와 소득창출 및 농촌에 부족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농촌공동체회사의 역할 및 필요성 증대

○ 도시민 등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농촌마을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농촌재능나눔활동 확산과 재능기부자와 농촌마을 연계를 위한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확대 추진 필요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돌봄방 추가 설치・운영 필요

* 농번기 주말돌봄방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운영 개소수 및 운영기간 확대 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동식 놀이교실을 확대·운영하여 농촌 보육여건 개선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433개소로 전체 읍·면의 30.6% 차지('17)

○ 문화 접근성 취약, 농촌학교 소규모화 가속 등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의 교육·문화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교육·문화·복지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3,703백만원	18,536백만원
▪ 주민주도마을만들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모니터링, 평가 및 농촌마을대상	□ 799백만원 ·540(9개도×운영비 120백만원×50%) ·259(농촌마을대상 및 모니터링 등)	□ 754백만원 ·540(9개도×운영비 120백만원×50%) ·214(농촌마을대상 및 모니터링 등)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컨설팅·설명회·교육홍보등	□ 135백만원 ·135(컨설팅 20개×3백만원=60, 설명회 교육·홍보지원·센터 운영 등 75)	□ 219벡만원 ·219(컨설팅 20개×3백만원=60, 설명회 교육·홍보지원·센터 운영 등 159)
▪ 농촌재능나눔 ·작능·사회봉사단체 등 지원 ·스마일재능뱅크 운영·관리 ·전국민 확산·활성화사업	□ 1,763백만원 ·800(최대 20백만원 단체별 지원) ·300(시스템 운영·관리) ·663(캠프, 대상 시상식, 공모전 등)	□ 2,302백만원 ·1,300(100개단체×최대20백만원 지원) ·365(시스템 운영·관리) ·637(캠프, 대상 시상식, 공모전 등)
▪ 농촌집고쳐주기 ·농촌집고쳐주기 지원	□ 1,243백만원 ·1,243(320가구×4.5백만원×100%)	□ 4,500백만원 ·4,500(1천가구×4.5백만원×100%)
▪ 농촌사회복지증진사업 ·농번기주말돌봄방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 ·농업인행복버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형교통모델	□ 4,834백만원 ·245(3개소×2천만원, 19개운영×12백만) ·3,015(135개×20백만원, 컨설팅 315) ·825(30천명×34,375원×100%) ·649(시설비 3개소×152백만×70%, 센터운영비 31개소×11백만원이내) ·100(18개소 사업평가 등 운영비 100)	□ 5,580백만원 ·235(3개소×2천만원, 15개운영×12백만) ·3,002(200개×13.5백만원, 컨설팅 302) ·791(30천명×32,958원×80%) ·1,456(시설비 10개소×152백만×70%, 센터운영비 37개소×11백만원) ·96(82개소 사업평가 등 운영비)
▪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농촌지역개발 및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개발단 운영	□ 3,373백만원 ·280(행정경비) ·512(선정·모니터링 ·컨설팅) ·1,085(농촌지역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지원) ·1,496(지역개발지원단 운영비)	□ 3,485백만원 ·280(행정경비) ·492(선정·모니터링 ·컨설팅) ·1,247(농촌지역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지원) ·1,466(지역개발지원단 운영비)
▪ 농촌활력정착지원 ·농촌산업육성사업추진경비 ·농촌산업육성 ·농어촌자원개발원 운영비	□ 1,456백만원 ·81(행정경비) ·127(심의·평가·모니터링·관리) ·1,248(운영비)	□ 1,696백만원 ·81(행정경비) ·127(심의·평가·모니터링·관리) ·1,488(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지리상 여건으로 의료·문화 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적은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문화(클래식,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제공 필요

*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수 5,145개소로 도시(54천여개)의 1/10 수준('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지특사업(농촌형교통모델, 농촌자원복합, 향토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관리 필요

-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의 확대·운영에 따른 사업모니터링 및 관리, 농촌

산업육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심의 및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추진실적 평가, 모니터링 등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6,967**	**13,703**	**18,536**	**4,833**	**35.3**
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산출근거)	2,316)	799 (활성화센터 9개×120백만원×50%=540백만원, 마을대상 및 모니터링 = 259백만원)	754 (활성화센터 9개×120백만원×50%= 540백만원, 마을대상 및 모니터링 = 214백만원)	**△45**	**△5.6**
②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산출근거)	135	135 (컨설팅 9개×3백만원=27백만원, 교육·홍보 등 58, 센터 운영 50)	219 (컨설팅 20개×3백만원=60백만원, 교육·홍보·센터 운영 159)	84	62.2
③ 농촌재능나눔 (산출근거)	2,363	1,763 (80개×2천만원×100%=800, 시스템 운영 300, 캠프·대상 시상식, 공모전 등 663)	2,302 (100개×2천만원×100%=1,300, 시스템 운영 365, 캠프·대상 시상식, 공모전 등 637)	539	30.6
④ 농촌집고쳐주기 (산출근거)	1,243	1,243 (312개×4.5백만원×100%)	4,500 (1천가구×4.5백만원×100%)	3,257	262.0
⑤ 주말돌봄방 (산출근거)	245	245 (시설개보수 3개소×2천만원, 운영비 19개소×12백만원이내)	235 (시설개보수 3개소×2천만원, 운영비 15개소×12백만원이내)	△10	△4.1
⑥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 (산출근거)	3,015	3,015 (공동체 192개소×14백만원, 운영비 315백만원)	3,015 (공동체 200개소×13.5백만원, 운영비 302백만원)	△13	△0.4
⑦ 농업인행복버스 (산출근거)	825	825 (30천명×34,375원×80%)	791 (30천명×32,958원×80%)	**△34**	**△4.1**
⑧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산출근거)	649	649 (시설비 3개소×152백만원×70%, 운영비 29개소×12백만원×100%)	1,456 (시설비 10개소×152백만원×70%, 운영비 37개소×11백만원×100%)	807	124.3
⑨ 농촌형교통모델 운영 (산출근거)	1,000	100 (사업비 지특회계 이관, 평가·관리 등 100백만원)	96 (평가·관리 등 96)	△4	△4.0
⑩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산출근거)	3,703	3,373 (행정비 280, 사업선정, 컨설팅, 모니터링 512, 지역역량강화 및 농촌지역개발 정책지원1,085, 지역개발단 운영비 1,496)	3,485 (행정비 280, 사업선정, 컨설팅, 모니터링 492, 지역역량강화 및 농촌지역개발 정책지원1,247, 지역개발단 운영비 1,466)	112	3.3
⑪ 농촌활력정착지원 (산출근거)	1,450	1,456 (심의·평가·모니터링 등 208, 운영비 1,248)	1,696 (심의·평가·모니터링 등 208, 운영비 1,488)	240	16.5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⑫ 활기찬농촌행정경비 (산출근거)	100	100 (자문료·여비·운영비 78, 정책지원 및 홍보 22)	사업종료	△100	△100
□ 비목(합계)	16,967	13,703	18,536	4,833	35.3
○ 일반수용비(210-01)	97.7	141.1	141.1	-	-
○ 임차료(210-07)	10.6	-	-	-	-
○ 국내여비(220-01)	26.6	20.5	20.5	-	-
○ 국외여비(220-02)	8.4	5.9	5.9	-	-
○ 사업추진비(240-01)	16	8.5	8.5	-	-
○ 포상금(310-03)	200	200	2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12,478	12,138	16,164	4,026	33.2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130	1,189	1,996	807	67.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 주민의 복지 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사업육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 제71조(기술지원 등)
-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 추진경위
- ’09.5.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보고
- ’10.4.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발표
- ‘10.12. 연두 업무보고시 ’11년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증진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추진키로 보고(농식품부내 TF 구성)
- ‘11.4.26. 국무회의에「스마일 농어촌운동」추진계획 보고
- ‘11.9.26.「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으로 명칭 변경
- ‘11.5~12월 스마일재능뱅크 및 콜센터(1577-7820) 구축, 농어촌 현장포럼 시작
- ‘11.12.「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시작(’14년 4회)
- ‘12.4 농촌재능기부 일반공모 사업 시작(’13년 지자체 공모 시작)

- ‘13.3. 해양수산부 분리(사업명 :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 ’13.11.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사회서비스제공형 육성 중심)
- ‘13.12.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 추진계획 마련
- ‘15년부터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업이 재정 편입됨에 따라,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던 ‘농촌사회 복지증진사업(농촌형교통모델 발굴사업, 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공동체 육성)’, ‘농업인 행복버스(방문콘서트) 운영’ 및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중 일부(일반단체 공모, 집 고쳐주기)가 예산(농특회계)으로 이관
- ‘15.8.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 행자부, 2015년 상반기 정부3.0 우수사례 20선 선정
- ‘16년부터 ‘농촌지역활성화지원(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농촌활력정착지원)’ 세부사업이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운영
- ‘16년부터 ‘활기찬농촌행정경비’ 신규 지원
- ‘17년부터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운영
- ‘18년부터 주민주도 현장포럼, 농촌재능나눔 지자체활동지원, 농촌형교통모델지원 내역사업을 균특회계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44	54	131	184	171	1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월·불용실적

- ‘15년도 불용액 187백만원은 일부 지자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액
- ‘16년도 불용액 140백만원은 일부 지자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액(122백만원) 및 행정경비 절감액(18백만원)
- ‘17년도 불용액 93백만원은 지자체 집행잔액 및 행정경비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1	-	-	131	129 **(120)**	-	187
’16년	184	-	-	184	183 **(175)**	-	140
’17년	171	-	-	171	170 **(165)**	-	9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령과 연계성이 높으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보조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보조사업의 규모는 현상 유지함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의 국토부 사업과 조정 필요('16년 결산 상임위)

② 예산의 목적 외 사용(다른 사업의 부족 경비나 농촌정책국의 기본경비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어 농촌지역활성화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발 방지 필요('15결산 상임위)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및 마을공동체 유지 등 농촌 거주민의 복지향상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 지역은 농식품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시 지역은 국토부가 사업을 주관하기로 합의되어 지역간 중복은 해소되었음

②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지원**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추천 시달(농식품부 → 도)
각 도에서 2개 대학교 선정, 보고

▼

농식품부는 대학내 사무실, 관련 전문 인력 및
기본 시설장비, 연계 전문기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도에 결과 통보**

▼

각 도는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 소요예산 등 제출

▼

농식품부 사업 검토 및 승인

▼

각 도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풀 운영관리, 농촌 현장포럼 지원, 현장활동가 및 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

각 도는 운영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활성화지원센터 운영실태 평가
※ 1년 1회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사업선정시 반영 및 인센티브 등 부여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등 시달 : 농식품부 → 지원센터,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 지원센터 → 농식품부
- 사업추진 : 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 · 군 및 일반단체에 사업시행지침 · 기본계획 통보

▼

시 · 군 및 일반단체 등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공모 신청서 접수

▼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대상 심사 및 선정
※ 농식품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및 선정

▼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 · 군 및 일반단체에 사업대상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자(시 · 군, 일반단체 등) 대상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재능나눔 중장기 추진방향 및 우수사례 발표 등(연 1회 이상)

▼

시 · 군 및 일반단체 등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시행하고,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추진상황 모니터링(연 2회 이상)

▼

시 · 군 및 일반단체 등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활동지원 내역을 점검 및 평가

□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시행계획 승인	1 ~ 2월	농식품부, 다솜둥지복지재단
↓		
후원회원모집 및 사업홍보	1 ~ 12월	다솜둥지복지재단
↓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가구 추천	4월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가구 확정	5월	다솜둥지복지재단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발대식	5 ~ 6월	다솜둥지복지재단
↓		
집 고쳐주기 현장 활동실시	5 ~ 11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건축학회, 일반
↓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	11월	다솜둥지복지재단
↓		
결산, 정산서 제출	12월	다솜둥지복지재단

□ 농촌사회 복지증진사업

○ 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운영·관리

사업시행 지침 등 시달(농식품부 → 농어촌희망재단)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농어촌희망재단)

▼

자금배정(농식품부 → 농어촌희망재단)

▼

사업추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등(농어촌희망재단)

▼

사업추진 결과보고(농어촌희망재단 →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내역을 점검, 평가 및 환류

○ 농업인 행복버스(의료·문화 지원) 운영

-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등 시달 : 농식품부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 → 농식품부
- 사업추진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 놀이교실 포함) 지원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시·도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지원신청		사업대상선정 및 현지점검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사업전년도 9~10월)		(사업전년도 10~11월)		(연중)		(완료 후 2개월 이내)

○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지원

사업선정 지자체(군)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각 시·도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확인 및 사업대상지 선정(각 시·도)

▼

자금배정(농식품부)

▼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각 시·도)

▼

농식품부는 활동지원 내역을 점검, 평가 및 환류

□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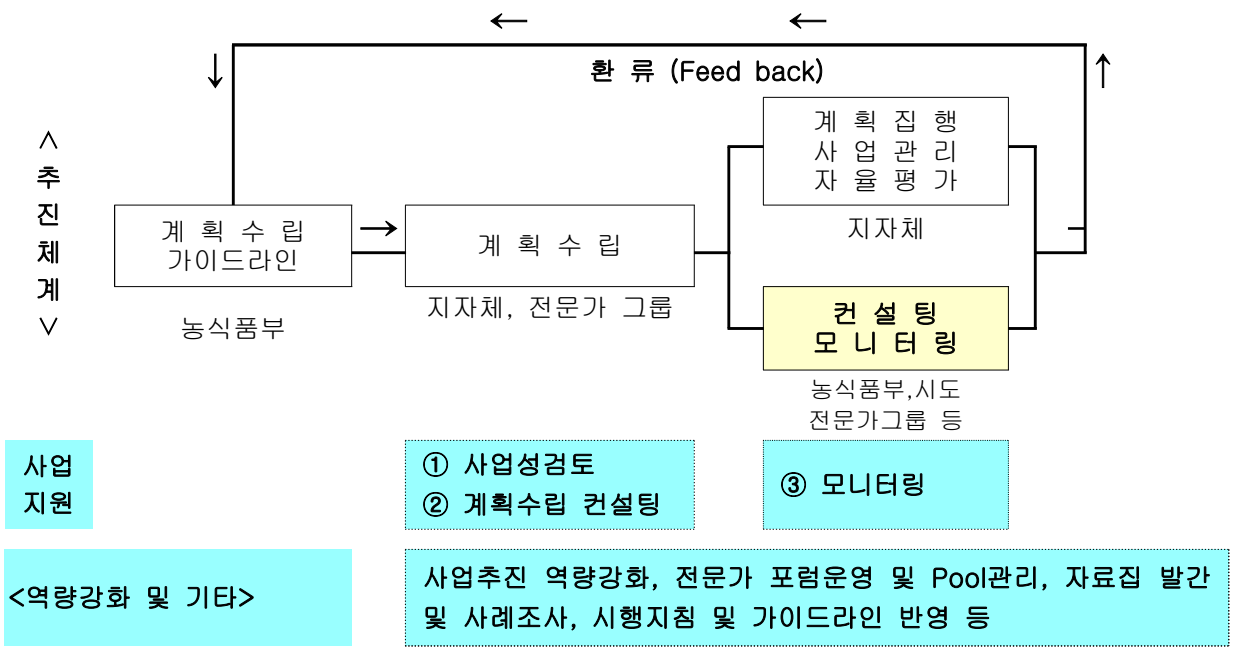

□ 농촌활력정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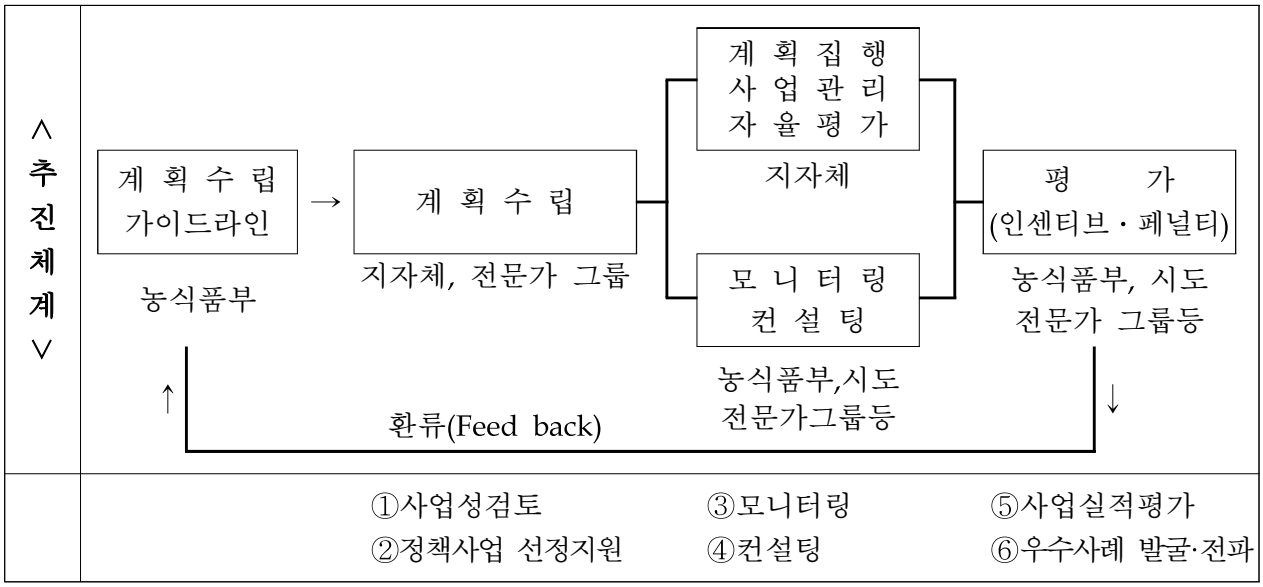

10. 농촌다원적자원활용(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2,139	2,440	2,638	198	8.1

* 사업코드 : 20 - 18 - 5 - 100 - 101 - 4100 - 416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박경희), 사무관(정장식, ☏ 044-201-154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경관,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유·무형의 농업·농촌 유산자원 지속 발굴 및 가치제고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모니터링 및 보수를 통한 보전관리로 국가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다원적자원활용 : 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복원·관리, 주변 환경정비 및 활용사업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농업유산 보수정비 및 모니터링
사업기간	○ 다원적자원활용 : '13~계속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 '18~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사업규모	○ 다원적자원활용 : '19년 6개소('22까지 총 20개소 발굴)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 '19년 4개소
지원조건	○ 다원적자원활용 : 지자체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민간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 다원적자원활용 : 시장·군수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 지자체보조(시장·군수), 민간보조(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다원적자원활용>

○ 농업유산자원 복원·발굴·정비 및 활용(지자체 보조) : **('18)2,100 → ('19)1,995백만원**

- 475백만원×지자체보조 70%×6개소=1,995

○ 행정경비(직접수행비) : **('18)40 → ('19)43백만원**

-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운영 및 홍보 등 : 37백만원
- 농업유산지정 심의위원 현장심사 등(국내여비) : 4백만원
- 유산자원관련 전문가 회의 등 : 2백만원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지자체 보조) : **('18) 200 → ('19) 400백만원**

- ('19) 200백만원×지자체보조 50%× 4개소 = 400백만원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가 : 하동전통차농업('17.11), 금산전통인삼농업('18.7)

○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등 운영관리(민간경상보조) : **('18) 100 → ('19) 200백만원**

- ('18) 50백만원×4개소 = 20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2,440백만원**	**2,638백만원**
▪ 다원적자원활용	2,140백만원	2,638백만원
· 농업유산자원 발굴 복원정비 및 활용	2,100(6개소×500백만원×70%)	1,995(6개소×475백만원×70%)
· 행정경비	40(자문위원회 운영, 현장점검 등)	43(자문위원회 운영, 현장점검 등)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300백만원	600백만원
· 보전관리	200(2개소×200백만원×50%)	400(4개소×200백만원×50%)
· 모니터링 등	100(2개소×50백만원×100%)	200(4개소×50백만원×100%)

□ 지원 필요성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농업경관 등이 산업화 및 개발

논리 등 외적요소로 인해 대부분이 점차 소멸되고 훼손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차원의 보전·관리와 농업유산자원의 가치화를 통해 전통을 유지하고 보전할 필요

- 또한 농촌의 전통적인 농업유산자원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리는 자원으로서 자원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한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농촌 주민은 자원가치 인식과 관리 참여의사 등 내적인 요소가 부족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됨.

*** 문화재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도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도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유산사업(Heritage industry)의 추진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부창출 및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2,139**	**2,440**	**2,638**	**198**	**8.1**
▪ 다원적자원활용	2,139	**2,140** ·유산자원발굴정비 : 2,100 (6개×500백만×70%) ·행정경비:40	**2,038** ·유산자원발굴정비 : 1,995 (6개×475백만×70%) ·행정경비:43	**△102**	**△4.8**
▪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	-	**300** · 보전관리 : 200 (2개×200백만×50%) · 모니터링 등 : 100 (2개×50백만×100%)	**600** · 보전관리 : 400 (4개×200백만×50%) · 모니터링 등 : 200 (4개×50백만×100%)	**300**	**100**
□ **비목**(합계)	**2,139**	**2,440**	**2,638**	**198**	**8.1**
○ 일반수용비(210-01)	**30**	**34**	**37**	**3**	8.8
○ 국내여비(220-01)	**6**	**5**	**4**	**△1**	**△20**
○ 사업추진비(240-01)	**3**	**1**	**2**	**1**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	**100**	**200**	**100**	1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100**	**2,300**	**2,395**	**95**	4.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① 법령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④항
  *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 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12.12.6 :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고시) 제정
- '113.1.10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 '13.1.21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준비위원회 구성
- '13.6.3. : FAO GIAHS 전문가 국가유산 2개소 현장실사
- '13.6.17 : 장관님 FAO 사무총장 면담(협조요청)
- '13.12.16 : 등재 신청 유산의 보전관리계획 보완·제출
- '14.4.1 : GIAHS 집행위원의 심의를 거쳐 등재 결정(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 '14.4.4 : FAO GIAHS 지정서 전달식 개최(대전, FAO 관계자 방한)
- '14.4.1 : GIAHS 집행위원의 심의를 거쳐 등재 결정(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 '14.6.10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 밭)
- '15.2.3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삶의질특별법 개정)
- '15.3.16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 '16.2.18 :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대상지 선정(보성 계단식전통차농업, 부안 유유동양잠농업)
- '16.12.28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개소,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 ‘17.4.28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대상지 선정(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고성 해안지역 둠병관계농업)
- ‘17.11.29 :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결정(하동 전통차농업)
- ‘17.12.28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부안 유유동양잠농업, 울릉 화산섬밭농업)
- ‘18.7.4 :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결정(금산 전통인삼농업)
- ‘18.11.30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12	15	14	20	21	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1백만원), 2017년(1백만원) 집행잔액 불용 발생

(단위 :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20 **(1,380)**	- (1,275)	- (-)	1,420 (2,655)	1,419 **(1,365)**	- (1,265)	1 (25)
’16년	1,950 **(1,910)**	- (1,265)	- (-)	1,950 (3,175)	1,950 **(2,023)**	- (1,025)	- (127)
’17년	2,140 **(2,100)**	- (1,025)	- (-)	2,140 (3,125)	2,139 **(2,424)**	- (694)	1 (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 착수연도에 바로 시설사업을 담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추진계획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상임위 13년 결산보고서, ‘14)
- (조치사항) 3년간 총사업비 15억을 균등지원에서 ‘15부터 년차별 차등지원으로 개선 : (1년) 5억, (2년) 5억, (3년) 5억 → (1년) 2.1, (2년) 6.5, (3년) 6.4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EU는 유럽농촌문화유산가이드(European Rural Heritage Guide)*를 제정, 농촌문화유산을 자원으로 하는 개발계획 중요성과 원리 규정

*** 2003년 EU회원국의 지역개발 관련부처 장관회의(CEMAT)에서 채택**

(5) 사업추진절차

□ 다원적자원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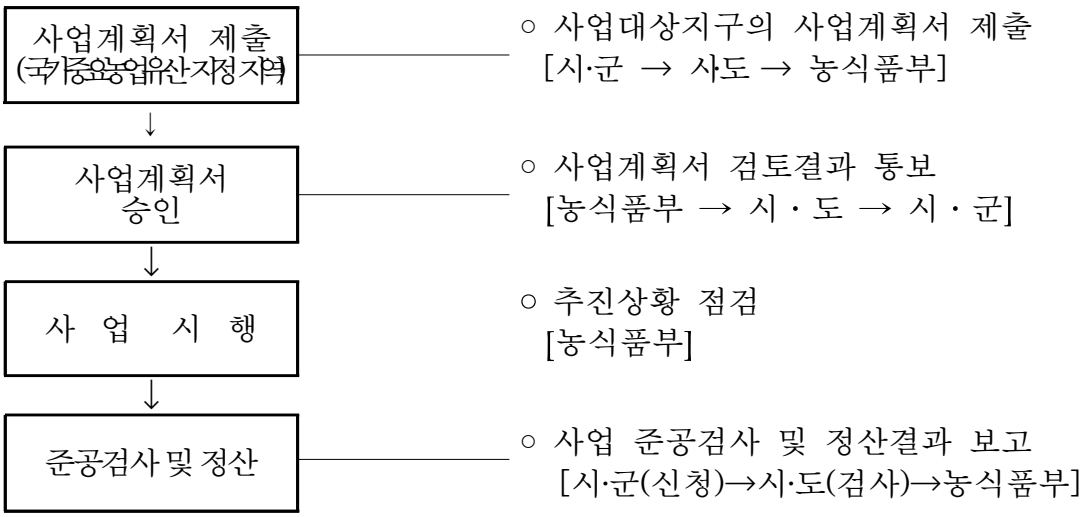

□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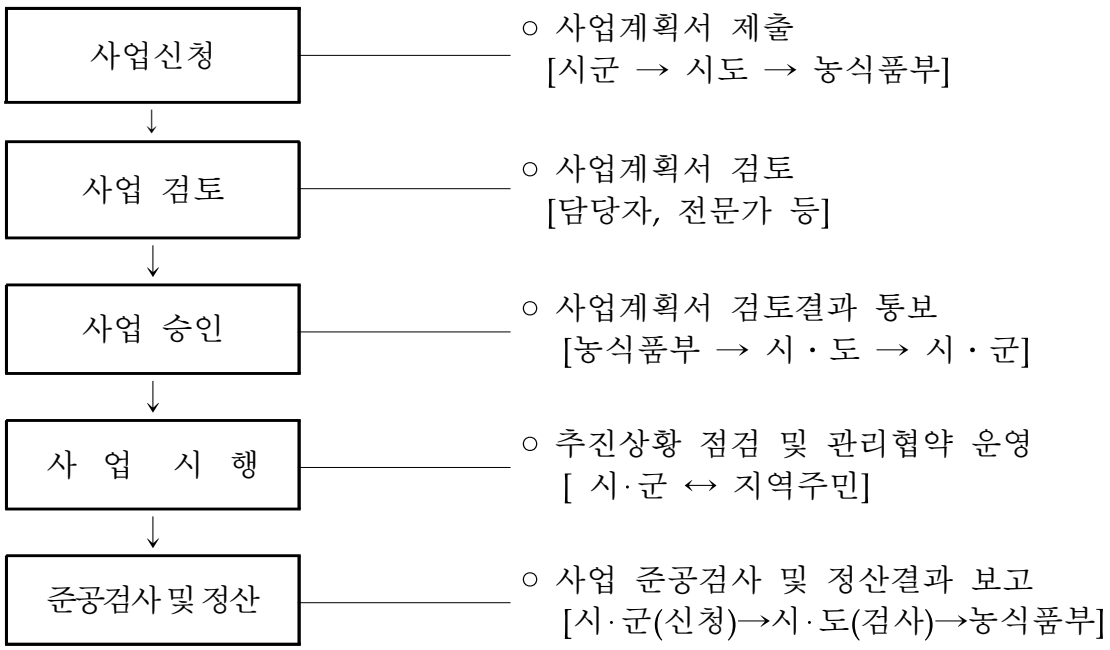

11.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농특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31,316	31,697	31,375	△322	△1.0

* 사업코드 : 20-15-5-100-101-4100-416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산업과장(김신재), 사무관(유경숙 044-201-1582, 이창일 044-201-1584, 김동남 044-201-1586, 이동민 044-201-1592, 정혜영 044-201-159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이 농촌지역 유·무형 자원(1차)을 제조업(2차), 서비스업(3차)과 융복합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을 통해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유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 농촌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유치 지원, 체험마을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를 통한 방문객 유치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업생산과 제조·가공, 유통·체험·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 및 농외소득 증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자원 개발, 체험 및 안전보험, 정보제공, 농촌관광 정보제공 및 도시민 유치 확대 등을 지원
사업기간	■ '15 ~ 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 조성(20개소),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38개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1,524개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 **(농촌관광활성화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1,002개소), 관광농원(639개소), 농어촌민박(25,026개소) 등
지원조건	■ 직접수행, 보조(지자체보조 : 국고 50%, 민간보조 : 국고 100%, 지속지원)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18) 31,697 → ('19) 31,375백만원(△322)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18) 16,355백만원 → **('19) 14,018 (△2,337)**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지역농업을 2차, 3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농촌융복합산업 모델을 발굴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8) 5,550 → **('19) 4,400백만원(△1,150)**

▪ (2018년) [4개소(3년차)×600백만원]+[3개소(2년차)×450백만원)]+[4개소(1년차)×450백만원)]=5,550

(2019년) [3개소(3년차)×600백만원]+[4개소(2년차)×450백만원]+[4개소(1년차)×200백만원]=4,400

* ('18년)3년사업(1년:2년:3년=450:450:600백만원) → ('19년)4년사업(1년:2년:3년:4년=200:400:600:300백만원)

** 사업계획 수립·승인, 인허가 등으로 1차년도에 총사업비의 30% 집행이 어려워, '19년부터 사업기간을 1년 연장(3→4년)하고, 1년차 지원비율을 축소(30→13%)하여 예산요구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등)**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관리, 현장코칭, 안테나숍 운영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8) 7,055 → **('19) 6,390백만원(△665)**

▪ (2018년) 10개소(시도별 지원센터수)×886백만원(센터별지원액)×50%(국비보조율)=4,430
(2019년) 11개소(시도별 지원센터수, 인천추가지정)×889백만원(센터별지원액×50%(국비보조율)=4,890
*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코칭, 우수제품 안테나숍 운영 등을 지원하고, '18년 인천지원센터 추가지정

▪ (2018년) 35개소(1년차 13, 2년차 22)×300백만원×50%(국비보조율)×50%(1년간보조율)=2,625
(2019년) 20개소(1년차 7, 2년차 13)×300백만원×50%(국비보조율)×50%(1년간보조율)=1,500
* 지역단위네트워크지원: '18년(13개소) 대비 '19년 예상수요(7개소) 감소

-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지자체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지속적 판매망 구축 지원 ('18) 450 → **('19) 450백만원(-)**

▪ (2018년) 9개소×100백만원×50%(국비)=450
(2019년) 11개소×82백만원×50%(국비)=450

- **(농촌융복합산업 홍보·마케팅)**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공감대 형성 및 성공모델 확산 ('18) 1,059 → **('19) 939백만원(△120)**

▪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72, 우수사례 및 제품판촉 연계 홍보 등 867,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120 =1,059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72, 우수사례 및 제품판촉 연계 홍보 등 867=939

- **(우수상품 판촉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앙단위 온·오프라인 판촉 등 추진 ('18) 1,600→ **('19) 1,240백만원(△360)**

▪ (2018년)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480, QR코드 제작 지원 200,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60, 대한민국 특산물페스티벌 참가지원 100, 제품 브랜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60=1,300
(2019년)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780, QR코드 제작 지원 200,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60, 대한민국 특산물페스티벌 참가지원 100, 농촌융복합산업 실증화센터 연구용역 100=1,240

-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온라인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우수사례 콘텐츠 제작·홍보 ('18) 591→ **('19) 549백만원(△42)**

▪ (2018년) 온라인시스템 유지 및 관리 163, 콘텐츠 제작 및 홍보 428=591
(2019년) 온라인시스템 유지 및 관리 121, 콘텐츠 제작 및 홍보 428=549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운영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업운영비 ('18) 50 → **('19) 50백만원(직접수행비)**

  * 농촌융복합산업 자문단 운영, 사업담당자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집 제작 등

○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 ('18) 15,342백만원 → **('19) 17,357 (증2,015)**

- **(농촌관광자원개발)** 농촌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체험 및 유학 등의 우수한 농촌 관광자원개발 지원 ('18) 2,643 → **('19) 2,758백만원(증115)**

  ▪ (2018년) 농촌관광등급제 563, 마을공동협의체육성 290, 우수관광농원개발 50, 체험프로그램개발 100, 농촌축제 500,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385, 농촌유학 755=2,643
  (2019년) 농촌관광등급제 563, 마을공동협의체육성 290, 우수관광농원개발 50, 체험프로그램개발 100,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600(15개소×80백만원×50%), 농촌유학 1,155=2,758

-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홍보, 운영 등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무장 채용 지원 ('18) 4,485 → **('19) 4,967백만원(증482)**

  ▪ (2018년) 475개소×158만원×12개월×50%(국비)=4,485
  (2019년) 475개소×175만원×12개월×50%(국비)=4,967
  *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보험가입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체험안전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18) 400 → **('19) 400백만원(-)**

  ▪ (2018년) 체험안전보험 250, 화재보험 150=400
  (2019년) 체험안전보험 250, 화재보험 150=400

- **(역량강화 지원)** 농어촌민박 사업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대상 서비스 개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18) 380 → **('19) 380백만원(-)**

  ▪ (2018년)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 교육 200, 응급처치교육 180=380
  (2019년)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 교육 200, 응급처치교육 180=380

- **(정보제공 지원)** 도시민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촌관광 포털서비스(웰촌) 등 운영 ('18) 965 → **('18) 965백만원(-)**

  ▪ (2018년) 웰촌포털 유지보수 180,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 50, 농촌관광 정보제공 콘텐츠 확충 335,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 운영 400=965
  (2019년) 웰촌포털 유지보수 180,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 50, 농촌관광 정보제공 콘텐츠 확충 335,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 운영 400=965

-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 교통 및 통역서비스 지원 등 서비스 제공 ('18) 1,638 → **('19) 1,048백만원(△590)**

▪ (2018년) 관광객 정보제공 548, 맞춤형 상품 개발 500, 외국인 통역 및 교통서비스 지원 590=1,638
(2019년) 관광객 정보제공 548, 맞춤형 상품 개발 500=1,048

- **(도시민 유치확대 지원)** 도시민, 학생 등을 대상 농촌체험관광 정보 제공 및 도농교류 협력 지원 ('18) 1,928 → **('19) 1,836백만원(△92)**

▪ (2018년)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120, 농촌여행 유치 확대 328, 도농교류협력사업 1,180, 농촌축제 및 유학홍보 300=1,928
(2019년)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108, 농촌여행 유치 확대 328, 도농교류협력사업 1,180, 농촌 축제 및 유학홍보 220=1,836

- **('19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농식품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의 확대로 농업의 활로 개척과 농촌의 활성화 도모 ('18) - → **('19) 2,010백만원(격년개최)**

▪ (2019년) 비즈니스 561, 행사운영 159, 전시이벤트 833 시설 457=2,010

- **(농촌관광 활성화 운영비)**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사업운영비 지원('18) 2,903 → **('19) 2,993백만원(증90)**

▪ (2018년) 도농교류센터운영비 2,724(1,907/817), 업무지원 경비 179=2,903
(2019년) 도농교류센터운영비 2,814(1,965/849), 업무지원 경비 179=2,993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요구 내용

구 분	'18예산	'19요구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31,697 (6차산업 16,355, 농촌관광 15,342)	31,375 (6차산업 14,018, 농촌관광 17,357)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5,550** [4개소(3년차)×600백만원]+[3개소(2년차)×450백만원)]+[4개소(1년차)×450백만원)]	**4,400** (2019년) [3개소(3년차)×600백만원]+[4개소(2년차)×450백만원]+[4개소(1년차)×200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7,055** 단년사업 :10개소×886백만원×50%(국비)=4,430 2년사업 : 35개소×300백만원×50%(국비)×50% (1년차 13, 2년차 22)=2,625	**6,390** 단년사업 :11개소×889백만원×50%(국비)=4,890 2년사업 : 20개소×300백만원×50%(국비)×50% (1년차 7, 2년차 13)=1,500

구 분	'18예산	'19요구
▪ 농촌융복합산업 홍보·마케팅	**1,059**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72, 우수사례 및 제품판촉 연계 홍보 등 867,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120,	**939**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72, 우수사례 및 제품판촉 연계 홍보 등 867
▪ 우수상품 판촉지원	**1,600**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480, QR코드 제작 지원 200,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60, 대한민국 특산물 페스티벌 참가지원 100, 제품브랜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60	**1,240**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780, QR코드 제작 지원 200,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60, 대한민국 특산물 페스티벌 참가지원 100, 농촌융복합산업 실증화센터 연구용역 100
▪ 온라인시스템운영 및 콘텐츠 개발	**591** 온라인시스템 유지 및 관리 163, 콘텐츠 제작 및 홍보 428	**549** 온라인시스템 유지 및 관리 121, 콘텐츠 제작 및 홍보 428
▪ 농촌관광 자원개발	**2,643** 농촌관광 등급제 563, 마을공동협의체 육성 290, 우수관광농원 개발 50, 체험프로그램 개발 100, 농촌유학 755,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385, 농촌축제 500	**2,758** 농촌관광 등급제 563, 마을공동협의체 육성 290, 우수관광농원 개발 50, 체험프로그램 개발 100, 농촌유학1,155,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600
▪ 사무장 활동비 지원	**4,485** 475개소×158만원×12개월×50%	**4,967** 475개소×175만원×12개월×50%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1,638**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보제공 548,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 500, 교통 통역서비스 590	**1,048**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보제공 548,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 500
▪ 도시민 유치확대 지원	**1,928**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120 농촌여행 유치확대 328, 도농교류협력사업 1,180, 축제 및 유학홍보 300	**1,836**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108 농촌여행 유치확대 328, 도농교류협력사업 1,180, 축제 및 유학홍보 220
▪ 국제농업박람회	-	**2,010** 비즈니스 561, 행사운영 159, 전시이벤트 833 시설 457
▪ 농촌관광 사업 운영비	**2,903** 도농교류센터운영비 2,724, 업무지원경비 179	**2,993** 도농교류센터운영비 2,814 업무지원경비 179

□ 지원 필요성

○ 농업생산 기반만으로 농가소득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2차(제조·가공), 3차(체험·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주여건 마련 및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농촌관광 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농촌관광 유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31,316**	**31,697**	**31,375**	**△322**	**△1.0**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6,750	5,550 [4개소(3년차)×600백만원]+[3개소(2년차)×450백만원)]+[4개소(1년차)×450백만원)]	4,400 [3개소(3년차)×600백만원]+[4개소(2년차)×450백만원]+[4개소(1년차)×200백만원]	△1,150	△20.7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6,205	7,055 지원센터10개소×886백만원×50%(국비)=4,430 35개 네트워크 자구×300백만원×50%(국비)×50%=2,625	6,390 지원센터11개소×889백만원×50%(국비)=4,890 20개 네트워크 자구×300백만원×50%(국비)×50%=1,500	△665	△9.4
▪ 시설디렉토리 구축 (3년제 사업)	225	-	-	-	-
▪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450	450 (9개소×100백만원×50%)	450 (11개소×82백만원×50%)	-	-
▪ 농촌융복합산업 홍보·마케팅	1,059	1,059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경진대회 72, 우수사례 및 제품판촉 연계홍보 등 867,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20	939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경진대회 72, 우수사례 및 제품판촉 연계 홍보 등 867	△120	△11.3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우수상품 판촉지원	1,100	1,600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480, QR코드 제작 지원 200, 온라인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60, 대한민국 특산물 페스티벌 참가지원 100, 제품브랜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60, 농식품통합관리 지원센터 연구용역 300	1,240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780, QR코드 제작 지원 200, 온라인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60, 대한민국 특산물 페스티벌 참가지원 100, 농촌융복합산업 실증화 센터 연구용역 100	△360	△22.5
▪ 온라인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591	591 온라인시스템 유지 및 관리 163, 콘텐츠제작 및 홍보 428	549 온라인시스템 유지 및 관리 121, 콘텐츠제작 및 홍보 428	△42	△7.1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운영비	50	50 직접수행비(자문단운영,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집 제작 등)	50 직접수행비(자문단운영,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집 제작 등)	-	-
▪ 농촌관광 자원개발	2,173	2,643 농촌관광 등급제 563, 마을공동협의체 육성 290, 우수관광농원 개발 50, 체험프로그램 개발 100, 농촌유학 755,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385, 농촌축제 500	2,758 농촌관광 등급제 563, 마을공동협의체 육성 290, 우수관광농원 개발 50, 체험프로그램 개발 100, 농촌유학 1,155,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600	115	4.4
▪ 사무장 활동비 지원	3,418	4,485 475개소×158만원×12개월×50%	4,967 475개소×175만원×12개월×50%	482	10.7
▪ 보험가입 지원	400	400 체험안전보험 250, 화재보험 150	400 체험안전보험 250, 화재보험 150	-	-
▪ 역량강화 지원	380	380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 교육 200, 응급처치교육 180	380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 교육 200, 응급처치교육 180	-	-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정보제공지원	1,035	965 웰촌포털 유지보수 180,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 50, 농촌관광 정보 제공 콘텐츠 확충 335,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 운영 400	965 웰촌포털 유지보수 180,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 50, 농촌관광 정보 제공 콘텐츠 확충 335,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 운영 400	-	-
▪ 외국인 관광객 유치	1,638	1,638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보제공 548, 외국인 맞춤형상품 개발 500, 교통 통역서비스 590	1,048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보제공 548, 외국인 맞춤형상품 개발 500	△590	△36.0
▪ 도시민 유치확대 지원	1,748	1,928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120 농촌여행 유치확대 328, 도농교류협력사업 1,180, 축제 및 유학홍보 300	1,836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108 농촌여행 유치확대 328, 도농교류협력사업 1,180, 축제 및 유학홍보 220	△92	△4.8
▪ 국제농업박람회 (격년개최)	1,600	-	2,010 비즈니스 561, 행사운영 159, 전시이벤트 833, 시설 457	2,010	-
⑰농촌관광 사업 운영비	2,494	2,903 도농교류센터 운영비 2,724, 업무지원경비 179	2,993 도농교류센터운영비 2,814, 업무지원경비 179	90	3.1
□ **비목**(합계)	31,316	31,697	31,375	△322	△1.0
○일반수용비(210-01)	198	209	214	5	2.4
○국내여비(220-01)	15	14	9	△5	△35.7
○국외여비(220-02)	7	6	6	-	-
○민간경상보조(320-01)	10,088	11,098	10,574	△524	△4.7
○지자체경상보조(330-01)	21,008	20,370	20,172	△198	△9.7
○지자체자본보조(330-03)	-	-	400	400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창업지원), 제23조(판로지원사업), 제26조(홍보 및 교육) 및 제34조(지구 지원), 제35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운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 및 시행('15.6), 동 법률('17.3) 및 시행령·시행규칙('17.9) 개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81조(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6조(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도·농 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 주민의 복지증진), 제11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 추진경위

< VIP 지시사항 >

◈ 농축산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농산물 단순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으로 제조, 판매하고 관광까지 연계하는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데 노력 필요('13.3.19. 연두업무보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농촌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13.6)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 및 시행('15.6), 동 법률('17.3) 및 시행령·시행규칙('17.9) 개정
- 제1차 6차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15.11)
-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성장 가능한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선정('15~'18, 1,524개소)
- 농촌의 1·2·3차산업 자원을 활용 및 연계하여 전후방 연관산업이 융복합된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 지정('14～'18, 20개소)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 '02년부터 마을단위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촉진 지원을 위한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운영
  * 도농교류업무 전담지원 등을 위해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04.4)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04.3)
- '06년부터 '녹색농촌체험활동'과 '도농교류센터운영'사업을 통합하여 추진
  * '08년부터 농소정 협력사업을 도농교류활성화지원에 통합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12) 및 시행('08.6)
- '06년부터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전담인력으로 사무장 지원
- '08년부터 농촌의 시설 및 경관, 체험, 어메니티 등을 소재로 하는 농촌 마을 및 지자체 축제 지원
- '10년부터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유학사업 지원('09.11)·추진('10～)
- 농촌관광등급 평가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13~'17, 1,002개소)
- 도농교류촉진법 개정에 따라 '13년부터 도농교류의 날 법정화(7.7)
- 농어촌 민박에 대한 조식제공 및 서비스안전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15.7.7)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	-	127	255	313	31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691 (12,641)	- (-)	- (-)	12,691 (12,641)	12,614 (12,566)	- (-)	77 (75)
’16년	25,472 (25,243)	- (-)	- (-)	25,472 (25,243)	25,429 (25,243)	- (-)	43 (-)
’17년	31,327 (31,098)	- (-)	- (-)	31,327 (31,098)	31,316 (31,096)	- (-)	11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없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16) 보통, (’17) 보통, (‘18)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종합포탈 사이트(www.6-ch.jp)를 통해 6차산업 개념, 지원정책 및 제도, 우수사례 정보 등을 제공하여 6차산업화 활성화 도모,「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 **(EU)** 유럽의 농촌개발 전략 가이드라인 중 Axis 3(농촌지역의 삶의 질 농촌경제 다각화)으로 농가구성원의 농업활동 다각화(상품화, 농업관광, 서비스, 수공업, 승마, 경관관리)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소기업의 창업, 경영이양, 시설 및 운영지원 등)

(5) 사업추진절차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어촌공사 등 → 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등) → 사업시행 →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한국농어촌공사 등 → 농식품부)

○ 지자체경상보조

1)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 구성 및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사업추진계획 수립(농식품부) → 발전계획 수립(시·군) → 발전계획 검토·평가(시·도) → 사업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시행계획 수립(시·군) → 세부시행계획 승인(시·도) → 사업시행(시·군) → 정산(시·도) → 평가(농식품부, 시·도)

2)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 사업시행지침시달 및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시군) →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시군→시도)→지원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마을)→사업시행→사업정산 및 실적보고(시군→시도→농식품부)

3) 농촌민박 서비스·안전

- 사업계획 수립・시달(농식품부) → 세부 계획 수립·시달(시·도,시・군) → 교육 실시(시·군) →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시·군→시·도→농식품부)

4) 농촌축제

- 사업계획 수립・시달(농식품부) → 축제계획서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 지원축제 선정・통보(농식품부)→축제시행계획수립제출(시군→시도)→시행계획승인(시도, 농식품부에 보고) → 축제시행(시군)→정산 및 실적보고(시군→시도→농식품부)

5) 농촌유학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시·군)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확정)→자금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사업시행(시·군,농촌유학센터) → 정산 및 실적보고(시·군→시·도→농식품부)

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건립(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특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	4,396	8,614	6,200	△2,414	△28.0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6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박경희), 사무관(송영호, ☏ 044-201-154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 및 식품산업의 역사와 IT·BT 등과 연계된 첨단산업화 된 농촌의 미래모습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시·교육·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및 도시민의 농업·농촌 인식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전시·체험·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기간	'16 ~ '21
총사업비	1,549억원 ('18년까지 투자액 43억원)
사업규모	건물(신축1, 리모델링1, 연면적 18,000㎡), 부지 94,000㎡(연계부지 포함)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6,200백만원 반영

- 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설비 및 유물수집 등을 위한 재원 소요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2,414백만원 감액
  - ▪ 건 설 비 : 2,600백만원
  - ▪ 자산취득비 : 3,000백만원
  - ▪ 연구용역비 : 50백만원
  - ▪ 인건비 등 : 55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	**8,614백만원**	**6,200백만원**
♦ 건설비	7,230 (83,265백만원×8.7%)	2,600 (83,265백만원×3.2%)
♦ 자산취득비	450 (유물 수집 884점×509천원)	3,000 (유물 수집 5,900점×509천원)
♦ 연구용역비	300 (정보화계획수립 연구용역)	50 (유물관리시스템 연구용역)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34 (학예사 인건비, 운영비 등)	550 (학예사 인건비, 운영비 등)

□ 지원 필요성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통해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은 상위법령 및 정부시책에 부합하므로 국가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하며,

○ 농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역사 등과 연계된 첨단산업화 된 모습, 농업의 미래가치, 귀농·귀촌, 도시농업 정보 등 농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시민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농업에 대한 미래가치 확산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	732	8,614	6,200	△2,414	△28.0
□ 비목(합계)	732	8,614	6,200	△2,414	△28.0
○ 상용임금(110-03)	70	139	157	18	12.9
○ 일반수용비(210-01)	48	147	147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	12	6	100.0
○ 특근매식비(210-05)	-	7	4	△3	△42.8
○ 임차료(210-07)	-	183	56	△127	△69.3
○ 유류비(210-08)	-	-	5	5	순증
○ 일반용역비(210-14)	-	126	130	4	3.1
○ 국내여비(220-01)	8	5.6	8	2.4	42.8
○ 국외여비(220-02)	4	3.5	4	0.5	14.2
○ 연구용역비(260-01)	-	300	50	△250	△83.3
○ 고용부담금(320-09)	12	17	27	10	58.8
○ 실시설계비(420-02)	553	596	-	△596	순감
○ 공사비(420-03)	-	6,235	1,600	△4,635	△74.3
○ 감리비(420-04)	-	230	400	170	73.9
○ 시설부대비(420-05)	37	169	600	431	255.0
○ 자산취득비(430-01)	-	450	3,000	2,550	566.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 제46조 및 제51조

▪ 제45조(전통 농경·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어업 문화, 농경·어업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7.05 「농업·농촌 가치홍보관 건립 기본방향 설정연구」실시
- ’12.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내부 방침 확정
- ‘13.08 농식품부-수원시 MOU 체결(부지 102천㎡ 무상제공 협의)
- ‘13.12 건립 부지(농진청 이전부지 102천㎡) 확보 완료
- ‘15.11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
- ‘16.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7.08 기본계획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기본계획 고시
- ‘17.09 기본 및 실시설계연구용역 착수
- ‘18.12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공사 발주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	-	-	10	53	8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6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지연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이 순연되어,

- 용역기간 부족으로 차년도 이월과 낙찰차액·집행잔액 등은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10 (**10**)	( )	( )	10 (10)	3 (**3**)	( )	7 (7)
′17년	53 (**53**)	( )	( )	53 (53)	7 (**7**)	37 (37)	9 (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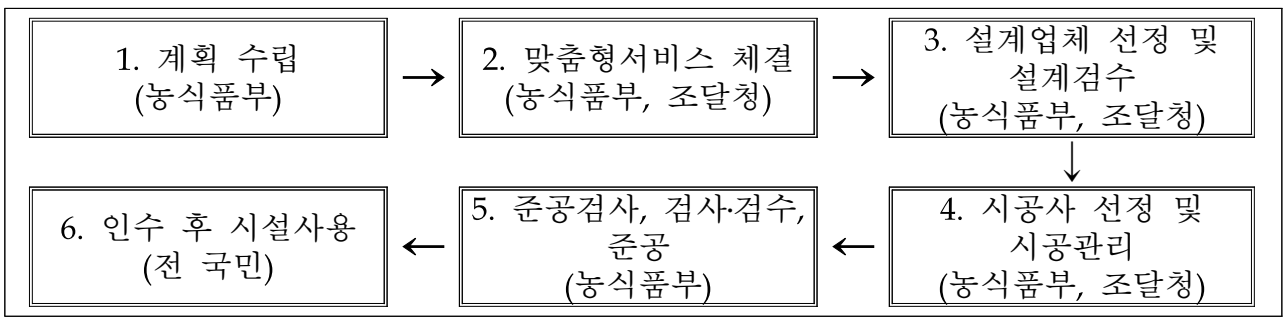

참고 1 사업 개요

□ 추진경위

○ ’12.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3.08 농식품부-수원시 MOU 체결(부지 102천㎡ 무상사용 MOU체결)
○ ‘13.12 건립 부지(농진청 이전부지 102천㎡) 확보 완료
○ ‘15.11 예비타당성 조사(KDI) 결과 타당성 인정
○ ‘16.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추진계획 수립
○ ‘17.08 기본계획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기본계획 고시
○ ‘17.09 기본·세부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발주
○ ‘18.12 기본·세부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완료 후 공사발주

□ 대상지역

○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舊 농촌진흥청 부지 일원)
○ (사업규모) 부지면적 96천㎡, 건축연면적 18천㎡
○ (사업기간) 2016 ~ 2021년 (‘22.상반기 개관 목표)
○ (총사업비) 1,549억원 (공사비 833, 보상비 716(부지 무상사용))

□ 주요시설

○ 본관 및 온실, 별관으로 구성, 옥외는 각종체험 시설(다랭이논, 밭경작), 정원 등 관람객 휴식·체험 공간으로 구성

건 물	연면적	주요 구성
본관 (신축)	12,548㎡	▪ (관람·체험) 역사관, 농업관, 첨단농업관, 농업·전시 체험관, 식물공장, 기획전시실 등 ▪ (지원시설) 수장고(항온항습 및 전처리실 포함), 다목적 회의실, 사무실 및 용역원실 등
유리온실 (신축)	1,900㎡	▪ 스마트팜, 곤충 전시체험, 열대식물, 희귀식물 등 구성
별관 (리모델링)	3,555㎡	▪ 식문화관, 식생활교육실, 세미나실,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라운지, 어린이도서관, 식당 등

□ 배치계획

보행자
진출입구
차량
진출입구
대지경계선
사무연구
세형전시
오산
별관
잔디마당
서호
보행자 진출입구
버스·차량 진출입구
다항마크

□ 조감도

13. 농촌공간계획수립(재량, 신규)

<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공간계획수립		-	1,000	1,000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60 - 43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정책과장(김기훈), 서기관(김소형, ☏ 044-201-151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바람직한 농촌 공간 미래상 정립 및 농촌 공간발전 전략 도출

- 농촌 공간 활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농촌 공간체계 재구성방향 마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촌 공간 실태 진단과 중장기 전망을 통해 농촌 미래상 정립, 정책 어젠다 및 핵심과제를 설정하는 농촌공간계획수립 연구 추진
사업기간	2019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농촌공간계획수립 연구
지원조건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촌공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비 1,00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촌공간계획수립	-	**1,000백만원**
▪ 농촌공간계획수립	-	1,000 (농촌공간계획수립 정책연구비×100%)

□ 지원 필요성

○ 중장기 농촌발전 비전 설정 및 통합적 농촌공간정책 추진기반 마련

-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정책연구비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공간계획수립	-	-	1,000	1,000	순증
▪ 농촌공간계획수립	-	- (0개×0백만×00%)	1,000 (연구용역 수립개×0백만×00%)	1,000	순증
□ 비목(합계)	-	-	1,000	1,000	순증
○ 연구용역비(260-02)	-	-	1,000 (연구용역 수립개×0백만×00%)	1,0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 지역의 현황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4. 추정사업비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국정과제 81번 '살고싶은 농산어촌 공간 조성' 추진('17.7월)

* 지역 특성과 역량 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통합 지원하여 주민체감형 지역개발 추진

-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내 농촌협력팀 신설('17.9월)

* 통합적 농촌개발을 위해 농촌정책과 주관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본격 추진 대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농촌공간계획 도입 포함('18.1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촌공간계획수립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관 선정 예산 집행 등	➡	연구추진 착수·중간·결과보고	➡	중간점검 및 성과관리 연구결과 활용

참고 | **「농촌 공간계획 수립」 연구 추진방향**

□ 농업·농촌 현황 및 문제점

○ **(위기)** 귀농·귀촌으로 농촌의 오랜 인구 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로 반전했으나, **저출산·초고령화**로 농촌 **공동화(空洞化), 지방소멸 위기** 심각

* 고령화율(농촌/전국, %) : ('10) 20.9/11.3 → ('15) 20.6/13.2 → ('16) 20.7/13.6

** **농촌** 지역(1,413개 읍·면) 중 **84.2%**가 **초고령화 읍·면**이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읍·면은 17개, **10명 이하 출생 읍·면은 568개**

- '31년을 정점으로 국가적 인구 감소 시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은 이보다 빠르게 **향후 5~10년 내 인구 감소 추이**로 돌아설 전망

- 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도 농촌 지역은 **매우 열악**하여 신규 인구 유입 가능성을 저해하는 악순환 초래

*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하위 20%)이 대부분(92.5%) 농촌에 위치하고, 국가최소서비스 항목인 농어촌서비스 기준 시군 달성률('16)은 37.8% 수준

○ **(기회)** 농촌 정주·체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은 농업 생산공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 전환** 추세

* 귀농귀촌인구(천 명) : ('14) 458 → ('15) 487 → ('16) 496 → ('17) 517
* 농촌 관광객 수(만 명) : ('14) 829 → ('15) 871 → ('16) 1,001 → ('17) 1,111

- 또한, 최근 젊은 귀농·귀촌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급증**하는 등 농촌은 **혁신창출공간**으로서 **잠재력** 보유

- 농업 생산 외 가공, 체험·관광 확대 등 **농촌형 산업생태계 출현** 시작

○ **(문제점)** 국토계획에서 **농촌**은 농업 생산지로만 간주되는 **공백지대**에 불과,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을 형성·정비하기 위한 **전략 기능 부재**

- 농촌 대상 부문별(sectorial) 사업계획은 많으나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장기 비전, 정책목표, 전략은 부재하여 정책 효과성 저하

☞ **사람이 살 만한 정주환경 조성, 국가 최저한(National Minimum) 보장, 농촌의 혁신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농촌 공간 발전의 新 비전 마련 시급**

□ 해외 동향

○ 최근 **EU, 일본 등 선진국**은 농촌 **축소,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쟁력 저하**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농촌정책 수립**

◇ **일본의 지방창생전략(2014)** :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면서 과소화 마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압축도시 개발 방식의 국토공간 정비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 **프랑스의 농촌협약(2016)** :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 개최('15~'16)를 통해 도출한 어젠다 별 104개 정책수단에 대해 국가·지자체 간 협약을 맺고, 패키지 지원

- 2000년대 들어 영국, 핀란드 등은 농촌의 중장기 전망, 미래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농촌 미래연구 프로젝트 추진

◇ **2054년 영국 농촌 공간 시나리오(2013-2014)** : ① Vibrant variety(관광, 여가 등 소비공간), ② Garden & Guild(거주·경제활동공간), ③ Fortness & fences(상류층의 주거지), ④ The preserved heritage(농촌성 보전)

◇ **핀란드 미래연구센터(2015)** : ① Dispressed bioeconomy(농촌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② Colonial countryside(농업·농촌의 경제적 가치 제고) ③ Museum countryside(농업 비중 감소) ④ Rural business islets(외부 자본에 의한 활용)

□ 지방분권시대 농촌 공간계획 수립 필요성

○ **지방분권시대** 지역 스스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지방분권 확대 이후 지역 중심으로 농촌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하나, 대부분 지자체는 농촌정책 수립 경험과 역량 미축적

- 정부 차원에서는 농촌의 장기 비전, 정책방향 및 달성 목표 등을 先 제시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주요 연구내용

① 농촌 공간의 현황 진단 및 '20~'40년까지의 여건 변화 전망

- 사례지역 선정 및 장소 기반(place-based)의 분야별(인구·정주·경제·문화·복지·환경(경관)·각종 시설 입지나 배치 상황 등) 실태조사 실시

- '40년까지의 농촌 변화 시나리오 전망 도출

② 농촌 미래상 정립과 정책 어젠다,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농촌 정책방향 공론화

◇ **EU 농촌정책의 6대 우선사항** : ① 지식전파와 혁신, ② 농가의 생존력과 경쟁력, ③ 식품 공급망 조직과 위기관리, ④ 생태계의 복원, 보전, 강화, ⑤ 자원 효율적이고 기후 복원력이 있는 경제, ⑥ 사회적 포용과 경제개발

◇ **일본의 지방(농촌) 창생전략 :**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Network) 원칙에 충실하도록 지역공간구조의 재편 유도 및 지원 → 농촌지역에는 작은 거점을 조성하여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전략 추진

◇ **프랑스 농촌정책 어젠다 :** ① 서비스 및 치료·돌봄 접근, ② 중심부르 활성화, ③ 지역의 매력, ④ 이동, ⑤ 생태적 전환, ⑥ 사회적 연대

- 사업 아이템 발굴, 법·제도적 기반 정비, 농촌공간 정보시스템 구축방향 등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③ 농촌 공간체계 재구성 및 농촌 혁신모델 제시

- (ⅰ) 도농격차 완화를 위한 농촌지역 **생활권 재정비,**
  (ⅱ) 기능별 **공간 재배치**(예시: 주거구역, 축산구역, 경관구역 등)
  (ⅲ) **특화마을 조성 모델** 발굴(예시: 청년유치형, 도시은퇴자·휴양 희망자 유치형, 특화산업 콤플렉스 형 등)

- 국가·지자체·민간(마을 주민, 민간 투자자) 역할 정립

□ 활용방안

○ 중장기 농촌 발전 비전 설정 및 **통합적 농촌 공간정책 추진기반** 마련

- 농업·농촌 기본계획인 '농발계획'(법정 의무계획)에 농촌 공간정책 포함

○ **지역**의 농촌 공간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14.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재량, 신규)

< 농특회계 - 농특세 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예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년농촌보금자리	-	-	**6,420**	**6,420**	**순증**

* 사업코드 : 20-15-5-100-101-4100-416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지역개발과장(김철), 사무관(이강석, ☏ 044-201-15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보육부담 완화, 문화·여가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활력 창출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육아나눔시설 및 문화·여가·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 각 1개동 씩 복합하여 설치
사업기간	'19～'20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4개소(개소당 80.25억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문화·여가 수요 해소를 통한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6,420백만원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4개소) : 6,420백만원
- (산출근거) 4개소 × 80.25억원 ×50%(국비) × 40%(1/2년차)
▪ 공공임대주택 : 24,420백만원(4개소 * 6,105백만원)
▪ 공동보육(육아나눔) 시설(개소당 1동): 788백만원(4개소 * 197백만원)
▪ 커뮤니티 시설(개소당 1동) : 6,892백만원(4개소 * 1,723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	**6,4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성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년농촌보금자리	**-**	**-**	**6,420**	**6,420**	**순증**
□ 비목(합계)	**-**	**-**	**6,420**	**6,420**	**순증**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6,420	6,42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동법 제34조(농어촌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 추진경위

- 국정과제(81-1-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8~'22) '22년까지 귀농가구 중 40세 미만 가구 비율 12%('17년 8%)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지자체 농촌형 임대주택 수요조사('17.8~9월) 및 현장 방문('17.10.19, 서천·고창·장성·장수 등),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17.11.16)
- 청년농 유치를 위한 임대주택 단지 조성 추진계획(안) 마련 및 복수 전문가 자문('18.6~7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나기정' 청년층 주거·보육 지원 사례

- (주거지원) 40세 미만 세대주인 청년가구를 위해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3개소, 총 21호)를 조성, 저가에 임대하여 정착 유도

- (육아지원) 공동체 차원의 육아 인프라 구축 및 생애주기별 보육·의료비 지원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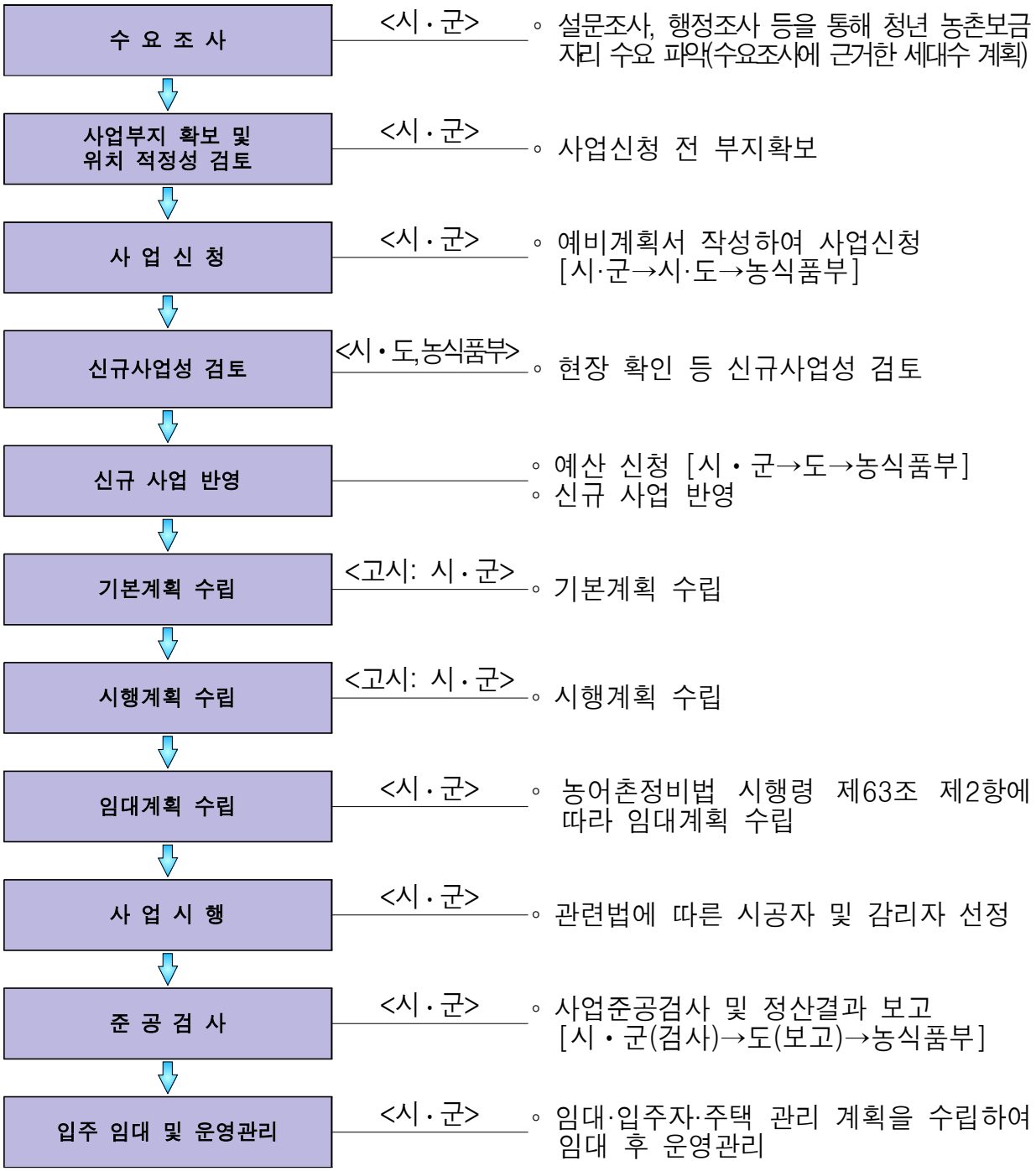

15.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재량, 신규, 국정과제)

<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	3,000	3,000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4100 - 416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산업과장(김신재), 사무관(유경숙, ☏ 044-201-158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기 구축되어 있는 유휴시설을 창업을 원하는 귀촌 희망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외부 인력의 농촌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을 원하는 귀촌 희망자 등에게 제공, 외부 인력의 농촌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및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19 ~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3,000백만원(신규)
지원조건	민간 보조(국고 50%, 농협 50% / 국고 50%, 농협 20%, 자부담 30%)
사업시행주체	농협중앙회, 민간사업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농촌지역 창업 희망자 공간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0백만원

▪ 산출내역 : 300백만원 × 민간 보조 50% × 20개소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	-	**3,000백만원**
▪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		3,000백만원 (20개소×300백만원×50%)

□ 지원 필요성

○ 대다수 농촌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농촌지역 유지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외부 인력의 농촌 유입·정착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필요

* 소멸위험지수(해당지역 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여성인구)가 0.5 미만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

○ 농촌지역 창업 및 외부인력 유입 수요는 있으나, 창업 초기비용 부족으로 사무공간 및 시설 구비가 어려워(농촌지역에서 신규 소득기반 조성 미흡) 정부지원 필요

* 창업 초기 애로사항('16년,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조달 52.6%, 홍보·마케팅 14.9%, 사무실·작업공간 확보 9.0% 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	**3,000**	**3,000**	**순증**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산출근거)	-	-	**3,000** (20개×300백만×50%)	3,000	순증
□ **비목**(합계)	**-**	**-**	**3,000**	**3,000**	**순증**
○ 민간자본보조(320-07)	**-**	**-**	**3,000** (20개×300백만×50%)	3,0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창업지원)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 추진경위

- 민간분야 기 구축 인프라 활용 농어촌 일자리 창출 회의('18.2.28, BH 농어업비서관실・농식품부・해수부・농협・수협 등)
-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농촌 청년창업 지원방안 논의('18.7.4, 8.8, 농식품부・농협)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수립 ・사업대상 선정 ・이행, 성과점검	➡	・사업시행 ・사업대상자(수혜자) 선정, 연계사업 지원 ・추진현황 점검 등	➡	・창업공간 관리・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모니터링・평가 등

16. 농촌형교통모델(자율)(재량, 계속, 국정과제)

< 균특회계 - 자율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	41	28,744	24,644	601.1

* 사업코드 : 20 - 39 - 1 - 100 - 101 - 4100 - 417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정책과장(김기훈), 사무관(강봉규, ☏ 044-201-152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지역 활력 창출 및 주민 체감복지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사업기간	'18~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18년까지 투자액 41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19년 82개군 지원 계획)
지원조건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 농촌형교통모델(택시·버스형) 지원을 위한 사업비 28,744백만원

- 전국 82개 군(郡) 사업 대상으로 농촌형교통모델(버스형 등)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601.1%(24,644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 : 82개소×701백만원×국비 5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4,100백만원**	**28,744백만원**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4,100 · 농촌형교통모델 (4,100=82×100×50%)	28,744 · 농촌형교통모델 (28,744=82×701×50%)

□ 지원 필요성

○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벽지 등 교통 오지의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감축 예상되어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제약이 우려

- 농촌 고령 주민 대부분이 자가용 이용이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 진료, 관공서 등 기관방문, 마트 등 기초 생활 중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운행을 지원

* 농촌형 교통 : 경제성이 낮거나 진입로가 좁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소형버스, 택시를 활용하여 기존의 버스노선을 보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	**4,100**	**287,44**	**24,644**	**601.1**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산출근거)	-	**4,100** (82개×100백만원×50%)	**28,744** (82개×701백만원×50%)	**24,644**	**601.1**
□ **비목**(합계)	**-**	**4,100**	**28,744**	**24,644**	**601.1**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100**	**28,744**	**24,64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다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 마련('13.12월)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14년~)

* 마사회특별적립금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내역 사업으로 회계 이관('15년~)

-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공약 발표('17.4월)

* 농어촌구조개선틀별회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내역사업 이관하여 '농촌형교통모델(생활)' 세부사업 신설('18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촌형교통모델(자율)	-	-	-	-	-	4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17년 예정처)

○ (지적사항)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18년 예정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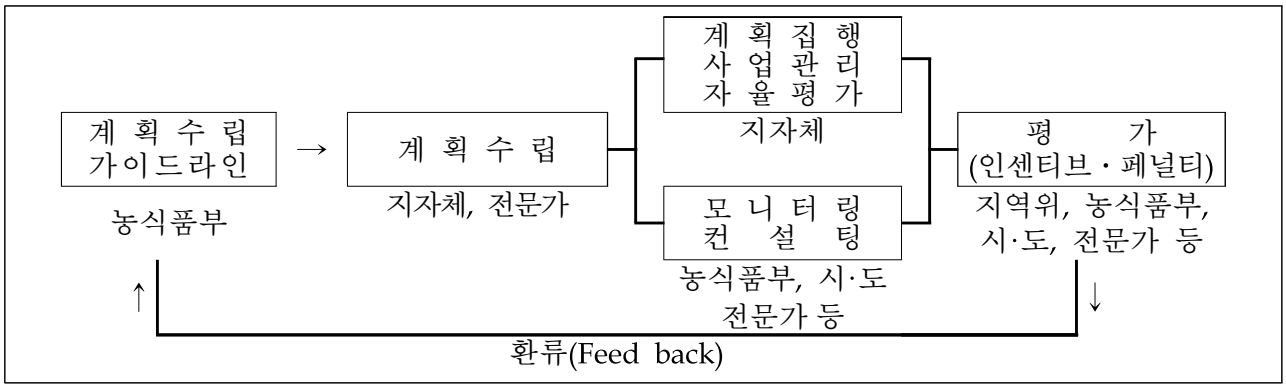

참고	농촌형 교통모델 개요

< 사업 개요 >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운행을 지원

* 농촌형 교통 : 경제성이 낮거나 진입로가 좁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소형버스, 택시를 활용하여 기존의 버스노선을 보완하는 준대중교통

□ 목적

○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체감복지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관리 및 시행 :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 : 지자체(군 지역)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지자체 직접, 운수사업체, 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 연계

○ 지원금액 : 최대 701백만원(국고50%, 지방비 등 50%)

○ 지원내용

- (버스형) 차량구입 및 개조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
- (택시형) 운행손실보상금 등

□ ('19년 예산규모)

○ 농촌형 교통모델(균특) : 28,744백만원

- 82개소 × 701백만원 × 50% = 28,744백만원

17. 일반농산어촌개발(재량, 계속, 국정과제)

< 균특회계 - 지역자율, 제주, 세종 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예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일반농산어촌개발	**872,334**	**879,351**	**925,595**	**46,244**	**5.3**
-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자율)	**849,041**	**856,355**	**901,412**	45,057	5.3
-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8,219**	**18,103**	**18,701**	598	3.3
-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5,074**	**4,893**	**5,482**	589	12.0

* 사업코드 : 20-39-1-100-101-4100-4180, 20-39-3-100-101-4100-4180, 20-39-4-100-101-4100-4180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지역개발과장(김철), 사무관(이강석, ☏ 044-201-15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신활력플러스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 억원 ('18년까지 투자액 8조 1,222억원)
사업규모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123개 시·군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초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925,595백만원

○ 계속사업 : 799,815백만원	○ 신규사업 : 125,780백만원
▪ 기초생활기반확충 : 528,793	▪ 기초생활기반확충 : 41,095
▪ 지역소득증대 : 11,144	▪ 지역소득증대 : 637
▪ 지역경관개선 : 151,168	▪ 지역경관개선 : 10,582
▪ 지역역량강화 : 94,010	▪ 지역역량강화 : 63,666
▪ 신활력플러스 : 14,700	▪ 신활력플러스 : 9,8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일반농산어촌개발	**865,355백만원**	**901,412백만원**
▪ 기초생활기반확충	527,265	555,778
▪ 지역소득증대	13,207	9,430
▪ 지역경관개선	159,281	157,405
▪ 지역역량강화	151,702	154,299
▪ 신활력플러스	4,900	24,500
□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8,103백만원**	**18,701백만원**
▪ 기초생활기반확충	9,538	10,722
▪ 지역소득증대	2,573	2,351
▪ 지역경관개선	3,234	3,279
▪ 지역역량강화	2,758	2,349
□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4,893백만원**	**5,482백만원**
▪ 기초생활기반확충	4,070	3,388
▪ 지역소득증대	-	-
▪ 지역경관개선	14	1,066
▪ 지역역량강화	809	1,028

□ 지원 필요성

○ 농산어촌지역은 인구는 적은 반면 면적이 크고, 소득·소비 수준이 낮아 민간투자가 어려워 공공투자가 필수적임

○ 123개 시·군의 농산어촌 마을의 경관 및 복지·문화·체험 인프라개선 사업으로 수혜범위가 넓고, 기초인프라가 열악한 읍·면의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기에 공익성이 담보됨

○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원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에 따른 인구 유지, 지역발전 도모 및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 개발로 지역 주민 소득 향상과 기초생활 수준 확충 가능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성화 함으로서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

  * 세부항목 :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마을정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 (지역소득증대) 지역자원 및 특산물 및 농어촌체험시설을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도농교류 활성화 등

  * 세부항목 : 소득기반(특산물 공공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선별장 등), 체험관광(폐교 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등)

- (지역경관개선) 농산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 보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

  * 세부항목 : 마을경관(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등), 생태·환경(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마을도랑 살리기 등),

-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 마케팅,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홍보, 컨설팅 등 프로그램 지원

  * 세부항목 : 교육·훈련(교육훈련, 교육비품,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홍보마케팅, 지역축제 활성화 등), 부대비용 등

- (신활력플러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한 다양한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세부항목 : 신상품 개발(R&D 등) 및 상품화, 가공 시설·장비 개선, 창업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일반농산어촌개발**	**849,041**	**856,355**	**901,412**	**45,057**	**5.3**
▪ 기초생활기반확충	499,180	527,265	555,778	28,513	5.4
▪ 지역소득증대	22,767	13,207	9,430	△3,777	△28.6
▪ 지역경관개선	188,077	159,281	157,405	△1,876	△1.2
▪ 지역역량강화	139,017	151,702	154,299	2,597	1.7
▪ 신활력플러스	-	4,900	24,500	19,600	400.0
□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8,219**	**18,103**	**18,701**	**598**	**3.3**
▪ 기초생활기반확충	9,820	9,538	10,722	1,184	12.4
▪ 지역소득증대	1,225	2,573	2,351	△222	△8.6
▪ 지역경관개선	4,046	3,234	3,279	45	1.4
▪ 지역역량강화	3,128	2,758	2,349	△409	△14.8
□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5,074**	**4,893**	**5,482**	**589**	**12.0**
▪ 기초생활기반확충	1,732	4,070	3,388	△682	△16.8
▪ 지역소득증대	-	-	-	-	-
▪ 지역경관개선	2,785	14	1,066	1,052	7,514.3
▪ 지역역량강화	557	809	1,028	219	27.1
□ **지방자치단체이전**(33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872,334**	**879,351**	**925,595**	**46,244**	5.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방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 추진경위

- 국정과제(1-2-8) "낙후지역을 新발전지대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수립·추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09. 04.22 시행), '10년부터 농산어촌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일반농산어촌개발	9,182	8,723	8,733	8,723	8,723	8,79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지특회계 세수부족에 의한 이월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73,334**	417,510	-	1,290,844	**891,033**	399,841	-
	(891,003)	(227,600)	(-)	(1,118,603)	**(886,167)**	(229,385)	(3,051)
'16년	**872,334**	399,841	-	1,272,175	**1,125,935**	146,240	-
	(1,125,935)	(229,385)	(-)	(1,355,320)	**(1,128,709)**	(224,612)	(1,999)
'17년	**872,334**	146,240		1,018,574	**849,574**	169,000	-
	(849,574)	(224,612)	(-)	(1,074,186)	**(843,856)**	(225,698)	(4,63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상임위) :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 일반농산어촌개발 연례적 집행부진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사업비 지원한도 상향

  * ('16년) 1.5억원 → ('17년) 2억원 → ('18년) 2.5억원 한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어촌·산촌 비중 미흡 :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어촌과 산촌 성격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17년부터 해수부·산림청이 사업추진 및 관리

-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관리 미흡 : 신규사업 검토 시 시설물의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적정성 및 구체성을 핵심지표로 반영하여 적용 중

○ 국회(상임위) :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 신규마을조성사업 성과부진원인 분석 및 사업대상 선정·관리 철저 : '17년도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점검, 지구별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지자체 통보, '18년도 시행지침개정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및 관리강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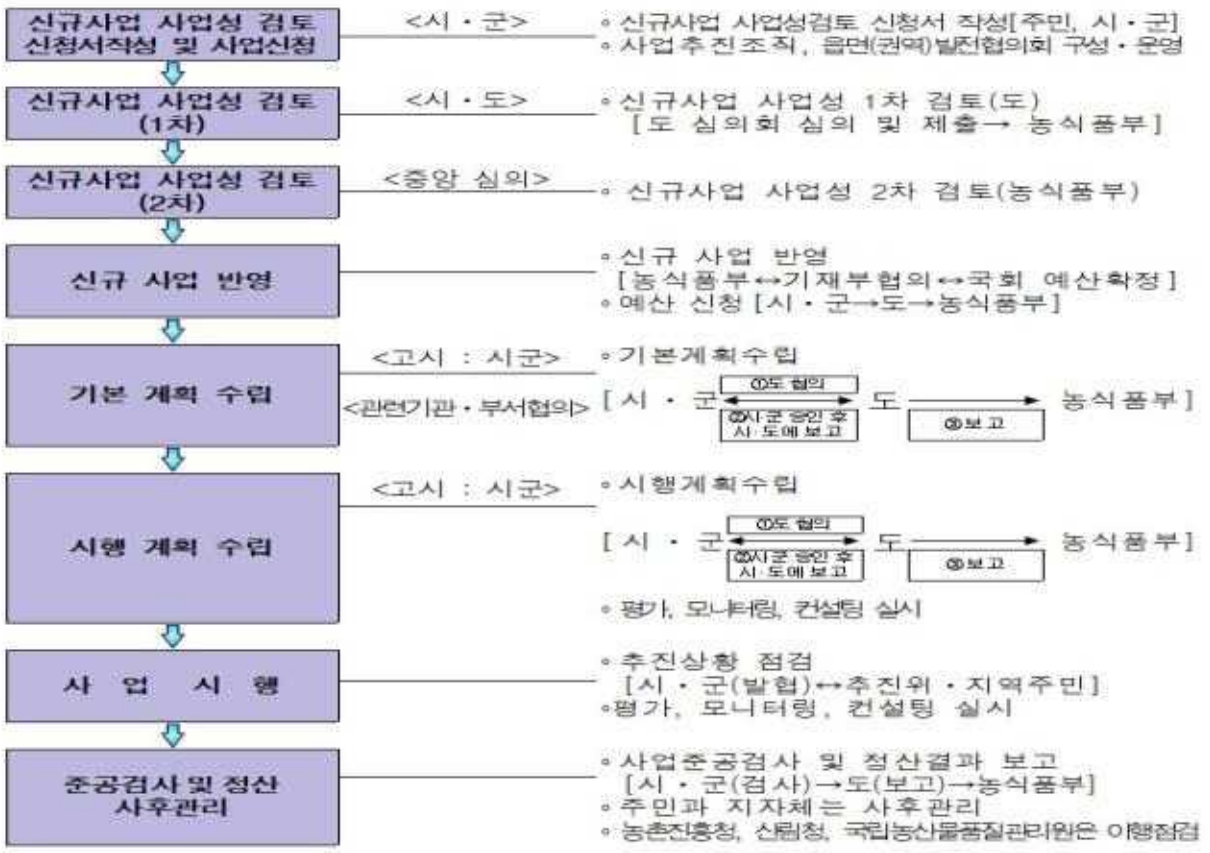

18. 지역행복생활권협력(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지역자율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43,605	123,600	118,335	△5,265	△4.3

* 사업코드 : 20 - 39 - 1 - 100 - 101 - 4100 - 4180

* 담당자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오병석), 지역개발과장(김철), 사무관(김재학, ☏ 044-201-1552)
사무관(이재영, ☏ 044-201-1558)
국토부 도시정책관(이성해), 도시재생과장(김남균), 사무관(백선영, ☏ 044-201-373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계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 추진

○ (취약지역개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농어촌 등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기간	(연계협력) '13년 ~ 계속, (취약지역 개조) '15 ~ 계속
총사업비	- ('18년까지 투자액 6,311억원)
사업규모	(연계협력) 35개소, (취약지역개조) 173개소
지원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 연계협력 : 5대중점분야(님비해소, 교육, 주민 안전 및 의료, 생활인프라, 일자리) 국고 80% 지원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 국고 80% 지원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연계협력 : 35개소, 20,000백만원

- ‘17년 선정사업(’19년 완료) : 20,000백만원(계속사업비 3년차, 35개소)

○ 취약지역개조 : 147개소, 90,500백만원

<농어촌> : 105개소, 45,300백만원

- ‘17년 선정사업(’19년 완료) : 24,291백만원(계속사업비 3년차, 35개소)
- ‘19년 선정사업(’21년 완료) : 21,009백만원(신규사업비 1년차, 70개소)

<도시> : 68개소, 53,035백만원

- ‘16년 선정사업(’19년 완료) : 26,100백만원(계속사업비 4년차, 22개소)
- ‘17년 선정사업(’20년 완료) : 8,935백만원(계속사업비 3년차, 16개소)
- ‘19년 선정사업(’22년 완료) : 18,000백만원(신규사업비 1년차, 30개소)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123,600백만원**	**118,335백만원**
▪ 연계협력	65개소 33,100백만원	35개소 20,000백만원
▪ 취약지역 개조	147개소 90,500백만원	173개소 98,33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한 프로젝트를 추진

-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함

○ (연계협력)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서비스 연계, 지역 자원의 공동개발·관리 등을 포괄하여 지원

* (5대 중점분야) NIMBY 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안전 등을 포괄하여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43,605	123,600	118,335	△5,265	△4.3
▪ 연계협력 (산출근거)	58,010	33,100	20,000	△13,100	△39.6
- 계속사업	58,010	33,100 2년차 20,000 (35개×17억원×33.3%) 3년차 13,100 (30개×20억원×21.8%)	20,000 3년차 20,000 (35개×17억원×33.3%)	△13,100	△39.6
▪ 취약지역개조 (산출근거)	85,595	90,500	98,335	8,335	9.2
- 농어촌	47,200	38,000 2년차 6,000 (35개×10.4억원×16.5%) 3년차 32,000 (44개×12.3억원×59.1%)	45,300 신규 21,009 (70개×15억원×20.0%) 3년차 24,291 (35개×10.4억원×66.7%)	7,300	19.2
- 도시	38,395	52,500 2년차 4,000 (16개×16.2억원×15.4%) 3년차 13,000 (22개×24.2억원×24.4%) 4년차 35,500 (30개×36.7억원×32.2%)	53,035 신규 18,000 (30개×30억원×20.0%) 3년차 8,935 (16개×16.2억원×34.5%) 4년차 26,100 (22개×24.2억원×49.0%)	535	1.0
□ 비목(합계)	143,605	123,600	118,335	△5,265	△4.3
○ 자치단체자본보조(310-03)	143,605	123,600	118,335	△5,265	△4.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추진경위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09년부터 지역특화발전과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09.4.22 시행)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자체간 공동추진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초지자체간 공동사업 추진을 독려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사업 신설하여 지자체 주도의 연계협력사업 발굴·추진('13년)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개발계정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14년)
- 기존연계협력사업 이외에 농어촌 등의 생활여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을 개선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규 추진('15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300	650	1,200	1,380	1,545	1,2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17년 지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00 (1,134)	284 (114)	( )	1,484 (1,248)	1,134 (562)	350 (676)	(10)
’16년	1,380 (1,543)	350 (676)	( )	1,730 (2,219)	1,543 (1,306)	187 (883)	(30)
’17년	1,545 (1,436)	187 (883)	( )	1,732 (2,319)	1,436 (1,492)	296 (777)	(5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동 사업에 비농업·비농촌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16년 상임위)

→ 지역행복생활권은 ‘14년부터 지자체간 연계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2~3개의 시군으로 구성된 생활권 단위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농촌과 무관한 도시지역 위주의 사업은 최소화하여 추진 중

* ‘17년부터 취약지역개조사업 도시분야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지역발전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추진 체계는 아래와 같음

추진절차	추진주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가이드라인·추진계획 마련	지역발전위원회/농식품부
⇩	
신규사업 신청	시·군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선정	지역발전위원회/농식품부
⇩	
예산지원	농식품부
⇩	
사업시행	시·군
⇩	
지도관리 및 평가	지역발전위원회/농식품부

국 제 협 력 협 상

1. 국제농업협력사업(ODA)(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국제농업협력사업	17,218	65,133	**66,413**	1,280	102.0

* 사업코드 :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회계 - 100 - 101 - 5000 - 5031
* 담당자 : 국제협력국장(정일정), 국제협력과장(박상호), 사무관(문경덕) ☎(044-201-203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

○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인적물적 지원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 방식의 기획협력사업, 우리 농정 성과 확산을 위한 컨설팅사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다자성 양자(Multi-bi)사업
사업기간	'0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18년까지 기 투자액 1,698억원)
사업규모	12개국, 4개 국제기구, 28개 사업(기획협력 20개, 컨설팅 3개, 다자성양자 5개)
지원조건	민간보조(보조율 100%), 출연금, 국제부담금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산출근거

○ 기획협력사업 : 인적·물적 지원이 결합된 중장기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비 16,663백만원(민간경상보조 100%)

▪ ('18년 15,567백만원 대비 7% 증액) 계속사업 16개, 신규사업 4개

* '18년 : 22개사업 추진(계속16, 신규6)

▪ 사업비 16,663백만원 : 프로젝트 15,808, 연수 155, 타당성조사 300, 평가 150, 사후관리 250

- 프로젝트 : 15,808백만원(18개 사업 × 878백만원)
- 타당성조사 : 300백만원(5개 × 60백만원)
- 평가 : 150백만원(3건×50백만원)
- 사후관리 : 250백만원(3건×83.3백만원)
- 연수 : 155백만원(2개국 × 77.5백만원)

○ 컨설팅사업 :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으로 개도국 식량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비 1,200백만원(출연금 100%)

▪ ('18년과 同) : 400백만원×3개국(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 다자성 양자사업 : FAO, IFAD 등 국제기구와 다자성양자 방식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8,550백만원(국제부담금 100%)

▪ ('18년 대비 184백만원 증액) : FAO(1,550백만원: 2개사업), IFAD (500백만원: 1개사업), ADB(500백만원×1개사업), WFP(46,000×1개사업)

구 분	'18년	'19년
□ 국제농업협력사업	65,133백만원	66,413백만원
▪ 기획협력사업 (기획협력) (타당성조사) (평가 및 사후관리) (연수사업)	□ 15,567백만원 - 14,787백만원(20개×739백만원) - 300백만원(5개×60백만원) - 325백만원(평가3, 사후2) - 155백만원(2개국×77.5백만원)	□ 16,663백만원 - 15,808백만원(18개×878백만원) - 300백만원(5개×60백만원) - 400백만원(평가3, 사후3) - 155백만원(2개국×77.5백만원)
▪ 컨설팅사업	□ 1,200백만원 - 1,200(3개국×400백만원)	□ 1,200백만원 - 1,200(3개국×400백만원)
▪ 다자성양자사업	□ 48,366백만원 - (3개 기구, 2,366백만원) - (1개사업×46,000백만)	□ 48,550백만원 - (3개 기구, 2,550백만원) - (1개사업×46,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ODA사업 확대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 필요

- 정부의 개발협력 4대구상에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이 포함되면서 국제농업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ODA 사업을 통해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 기반 마련 가능

○ 식량안보, 기상이변, 동식물 질병 예방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ODA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격에 맞는 의무 이행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 예산 (B)	증 감 (B-A)	%
국제농업협력사업	**17,218**	**65,133**	**66,413**	1,280	102.0
▪ 기획협력사업	13,858	15,567	16,663	1,096	107.0
(프로젝트)	12,378 (17개X728백만)	14,787 (20개×739백만)	15,808 (18개×878백만)	1,021	106.9
(타당성조사)	300 (5개×60백만)	300 (5개×60백만)	300 (5개×60백만)	-	
(평가 및 사후관리)	325 (평가2,사후3)	325 (평가3,사후2)	400 (평가3,사후3)	75	123.0
(사업관리)	700 (인건비7, 경비)	(프로젝트에 포함)	(프로젝트에 포함)	-	
(연수사업)	155 (2개국×77.5백만)	155 (2개국×77.5백만)	155 (2개국×77.5백만)	-	
▪ 컨설팅사업	1,200 (3개국×400백만)	1,200 (3개국×400백만)	1,200 (3개국×400백만)	-	
▪ 다자성양자사업	2,160 (4개사업×540백만)	48,366 (4개사업×592백만) (1개사업×46,000백만)	48,550 (4개사업×638백만) (1개사업×46,000백만)	184	100.4
□ **비목**(합계)	**17,218**	**65,133**	**66,413**	1,280	102.0
○ 운영비(210-1)	26	-	-	-	-
○ 여비(220-02)	18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13,814	15,567	16,663	1,096	107.0
○ 국제부담금(340-02)	2,160	48,366	48,550	184	100.4
○ 출연금(350-01)	1,200	1,200	1,2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세계의 농어업·농어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주무부장관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 등은 제1조의 목적과 및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② 국가 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③ 국가 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

○ 추진경위

- 우리나라 위상제고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여요구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개도국과의 농업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ODA(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추진
- ('06-'08년)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마을 조성 등 사업 추진
- ('09년) 베트남 가공용감자 생산시설 및 기술 지원 등 사업 추진
- ('10년) 사업관리주체를 농촌경제연구원(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로 지정, 국제농업협력사업을 기획협력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 일반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 ('11년) 사업관리주체를 한국농어촌공사(해외사업처)로 지정, 농림수산분야 ODA발전방안 수립,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추진체계 정비
- ('12년) 중장기 기획협력사업 및 국제사회와 공동협력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해외농업개발협력법) 마련
- ('13년) 국제기구(FAO, IFAD)와 공동협력, 농업정책컨설팅(KAPEX) 신규 추진
- ('14년) 농림분야 ODA 협업체계화 방안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마련 등 사업 내실화 추진
- ('15년) 초청연수 체계 개선방안 마련, 단계별 현장점검 및 자체 평가지표 마련, 진출기업 간담회 및 민간협력체 구성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 ('16년) ODA 운영실태 평가, 아시아진출협의회 개최로 민관협력사업 발굴, ODA 사후평가 실시, 전문가 회의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17년) 농업ODA 개선방안 수립(4월)하여 사업 성과제고 기반 마련, 대외경제장관회의(3.24.) 등을 통해 식량원조협약 가입 및 이를 통한 식량원조에 관계부처가 합의
- ('18년) 식량원조협략 가입(1월) 및 식량원조추진(460억, 5만톤, 케냐·예멘·에티오피아·우간다)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국제농업협력사업	128.1	141.1	148.1	156.1	172.5	65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센터 역량강화사업 및 AFSIS 사업 출장여비 절감, 컨설팅용역계약 낙찰 차액 발생 등으로 29백만원 불용

○ ‘16년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센터 역량강화사업 승인 지연에 따른 수용비, 여비 49백만원 불용

○ ‘17년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14~’18)의 베트남의 사업 승인 지연으로 인한 출장기간 단축으로 5백만원 불용, 사업 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30백만원 이월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8.1 (148.1)	- ( )	- ( )	148.1 (148.1)	147.8 (147.8)	- ( )	0.3 (0.3)
’16년	156.1 (156.1)	- ( )	- ( )	156.1 (156.1)	155.6 (155.6)	- ( )	0.5 (0.5)
’17년	172.5 (172.5)	 ( )	 ( )	172.5 (172.5)	172.2 (172.2)	0.3 (0.3)	0.05 (0.0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사항

○ 기획협력과제를 통해 수행되는 ODA사업의 품목이 농진청의 ODA 사업 대상 농작물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농촌진흥청 ODA 사업과 연계 강화 필요(예정처, 2017)

○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을 대표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예정처, 2017)

○ 체계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 구축 필요 및 기획 과정에서의 수원국 수요 적극 반영 필요(상임위, 2017)

○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시행)와 농진청의 ODA 사업 내용은 농업기술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사업추진 대상국가도 유사·중복(상임위, 2018)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농진청과 농식품부의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18년부터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사업 연계 추진

* (캄보디아) KOPIA에서 개발한 양계기술을 농식품부 영농기술센터 커리큘럼에 포함, (우즈벡) 농식품부사업 채소재배 농민 대상으로 KOPIA에서 개발한 채소 재배기술 교육 등

○ 2018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지표 변경 완료(댐공사진행률, 사업평가 점수→ 해당년도 종료 기획협력 ODA 사업의 총 수혜자 수)

○ 2018년부터 평가기관(농어촌공사→농촌경제연구원)을 변경하였으며, 신규사업발굴은 국내 관련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하던 방식에서 수원국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완료('17.4)

○ 농진청의 연구개발을 통해 실증된 기술을 농식품부에서 인프라 지원을 통해 규모화하고 확대 보급 추진

- 농식품부와 농진청간 ODA 사업을 연계, 유사·중복을 최소화('18.6, 농식품부(농어촌공사)/농진청간 MOU체결)

* 농식품부는 시설구축 등 인프라 지원 중심, 농진청은 KOPIA 센터를 통한 농업기술 개발·전수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되어 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발굴→사업심의→타당성조사→실시협의(R/D 체결)→사업자 선정→사업 착수 및 시행→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실적보고→사업평가

○ (계속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시행계획 승인→계약 체결→사업 착수 및 시행→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실적보고→사업평가

참 고 | 2019년 국제농업협력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9년
총 계 (①+②+③)			12개국, 4개 국제기구 / 총 28개 사업(계속22, 신규6)		73,192	66,413
① 기획협력	소계 (ⓐ+ⓑ+ⓒ)		기획협력 12개국, 20개 사업(계속16, 신규4)		60,992	16,663
	ⓐ 프로젝트	아시아	아시아 6개국, 9개 사업 (계속5, 신규4)		30,818	5,743
			미얀마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범단지 조성사업	'16-'19	3,884	1,642
			캄보디아 영농기술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사업	'17-'21	4,168	1,442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사업	'18-'22	3,210	742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2단계 협력사업(베트남, 캄보디아	'19-계속	630	630
			라오스 채소 생산성 증대를 위한 채소재배 기술전수사업(신규)	'19-'22	4,236	309
			미얀마 벼농업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쌀산업 역량강화 사업(신규)	'19-'23	4,695	309
			몽골 수의진료 역량강화사업(신규)	'19-'23	4,695	309
			베트남 홍강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사업(신규)	'19-'23	5,300	360
		아프리카	아프리카 3개국, 7개 사업(계속7)		20,624	7,086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사업	'16-'20	3,626	984
			에티오피아 낙농기술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18-'21	3,168	742
			에티오피아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수사업	'17-'20	1,684	742
			우간다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수사업	'17-'19	1,684	1,042
			에티오피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사업	'17-'20	3,126	1,292
			우간다 낙농기술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18-'20	3,126	1,092
			모잠비크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체계 강화사업	'18-'22	4,210	1,242
		기타	CIS 및 남아메리카 각 1개국, 2개사업(계속2)		8,210	2,979
			우즈베키스탄 시설농업 지원 및 기술전수 사업	'16-'19	4,084	2,137
			볼리비아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기술 전수사업	'16-'20	4,126	842
	ⓑ 연수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에 대한 초청 연수(계속2) - 베트남, 인도네시아	'18-'21	640	155
	ⓒ 발굴/관리		타당성조사(5건)	계속	300	300
			사후관리(3건)	계속	250	250
			평가(3건)	계속	150	150
②컨설팅 (KAPEX)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계속3) -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계속	1,200	1,200
③ 다자성양자	소계		다자성 양자 4개 기구, 5개 사업(계속3, 신규2)		11,000	48,550
	FAO		FAO 2개 사업		7,000	1,550
			미래 세대 스마트 팜 지원 사업(신규)	'19-'22	5,000	1,250
			수원국 쌀 가치사슬 발전을 위한 남남 및 삼각협력 사업(신규)	'19-'22	2,000	300
	IFAD		IFAD 1개 사업		2,000	500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지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6-'19	2,000	500
	ADB		ADB 1개 사업		2,000	500
			아태지역 농업 및 가치사슬 발전 사업	'18-'21	2,000	500
	WFP		WFP 1개 사업			46,000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18-계속	-	46,000

2. 농업협상대응(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농업협상대응	1,985	1,970	**3,090**	1,120	56.9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5000 - 5031
* 담 당 자 : 국제협력국장(정일정),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 서기관(안완기)
  (OECD 협력사업)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정책과장(김기훈), 사무관(김준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DDA/FTA 농업협상 및 쌀 관세화 검증 대응을 위한 국외여비·운영비 및 효과적인 협상 대응 논리 개발을 연구용역비 지원

○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설명회, 토론회,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DDA/FTA 농업협상 및 쌀 관세화 검증 대응을 위한 여비, 운영비 등 협상경비 및 협상대응 전략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비 등 지원
사업기간	'99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보조율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운영비, 여비, 정책연구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국제통상지원, FTA해외정보조사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국제협상 및 협력업무 관련 운영비 : **368백만원**

- 협정문해석·통상분쟁·통상정책 자문 등 : 142백만원
- 협상·양자면담 장소 임차, 자료 번역 및 제작·유인 등 : 226백만원

○ 국내·외 여비 지원 : **393백만원**

- WTO/DDA 협상 12회
- 쌀 관세화 WTO회원국 검증 10회
- FTA 협상 16회(한-중미/에콰도르/인도/아세안, 한·중·일, RCEP)
- 농산물 수출 검역협상, SPS이행위원회 등 12회

○ 협상 관련 업무추진비 : **41백만원**

- 협상동향 전파·설명, 해외출장, 농업인단체·관련기관 등 면담·접촉활동 등

○ 연구용역 : **250백만원**

- 개도국 우대를 포함한 WTO 개혁에의 전반적 대응(90), WTO TRQ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분석(20), 메가FTA 추진 대응 전략연구(40),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검역 분야 정책연구(100) 등

○ 민간보조 사업 : **1,623백만원**

- 국제통상지원사업 : 417백만원
  • 쌀 관세화 검증, DDA 협상 관련 효과적인 협상전략, OECD 국제회의 의제 대응전략 수립 및 SPS, CODEX 업무관련 정보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 FTA 해외정보조사사업 : 120백만원
- OECD 농촌 컨퍼런스(Rural Conference) 개최: 300백만원
  • 34개 OECD 회원국 및 중국 등 비회원국 장·차관급 참가, 농촌정책분야 정책발전 논의, 사례 및 경험 공유 등
  * 행사장대여, 통역고용, 자료집 등
- FTA정보조사 시스템구축 : 786백만원
  • FTA관련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분석・활용
  * DB구축시스템400백만원, 협상통합지원시스템331, 관세검증솔루션 55

○ 국제규격 조사 연구위원 운영 : **415백만원**

- 연구위원 9명을 운영하여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OIE(세계동물보건기구), CODXE(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 규격, 주요 수출국의 SPS 조치 및 수입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여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도모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협상대응	1,970백만원	3,090백만원
▪ 국제협력협상운영비지원	○ 369백만원 - 국제통상법률자문(143) - 협상·양자면담 장소 임차, 자료 번역, 유인 등(250)	○ 368백만원 - 국제통상법률자문(142) - 협상·양자면담 장소 임차, 자료 번역, 유인 등(226)
▪ 협상단 여비지원	○ 393백만원 - 국내여비(43) - 국외업무여비(350)	○ 393백만원 - 국내여비(43) - 국외업무여비(350)
▪ 협상단업무추진비지원	○ 42백만원	○ 41백만원
▪ 협상관련 연구용역	○ 248백만원 - 국제통상협상 및 FTA 등연구용역	○ 250백만원 - 국제통상협상 및 FTA 등 연구용역
▪ 국제통상지원 FTA해외정보조사	○ 537백만원 - 국제통상지원사업(417) - FTA정보조사(120)	○ 537백만원 - 국제통상지원사업(417) - FTA정보조사(120)
▪ 국제규격조사 연구위원 운영	○ 199백만원 - OIE, IPPC, CODEX의 국제규격 및 주요 수출국 의 수입 관련 법령 등 규격조사 (3,677천원×9명×6개월×100%)	○ 415백만원 - OIE, IPPC, CODEX의 국제규격 및 주요 수출국 의 수입 관련 법령 등 규격조사 (3,843천원×9명×12개월×100%)
▪ OECD농촌컨퍼런스 개최	○ 182백만원 - OECD 컨퍼런스 행사 개최 비용	○ 300백만원 - OECD 컨퍼런스 행사 개최 비용
▪ FTA정보조사시스템구축	-	○ 786백만원 - DB구축시스템 400백만원, 협상통합지원시스템 331, 관세검증 솔루션55

□ 지원 필요성

○ 2019년은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차로서,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 철회를 유도하고 WTO 검증을 마무리하기 위한 양자협상 활동 및 전문가 자문·포럼 등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검증절차 : 이의제기국과 양자협의 → 이의제기 의사 철회 → WTO 인증서 발급 → 우리측, 국내절차 완료 확인 공문 WTO 발송 → 양허표 효력 발생

○ WTO/DDA협상은 선·개도국간 이해대립으로 정체되다가 '13.12월 발리패키지(제9차 WTO 각료회의) 및 '15.12월 나이로비 패키지(제10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진행이 가속화된 상황

○ 우리나라 FTA 체결이 빠르게 증가하여 국가별, 품목별 FTA 관련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아시아 최초로 OECD 농촌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국제 위상 제고와 농촌 발전에 기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협상대응	1,985	1,970	3,090	1,120	56.9
▪ 국제협력·협상 운영비 지원	216	369 (자문 142, 양자면담경비 250)	368 (자문 142, 자료제작 226)	△1	△0.3
▪ 협상단 여비 지원	473	393 (국내 43, 국외 350)	393 (국내 43, 국외 350)	-	-
▪ 협상단 업무추진비 지원	46	42 (대외협상 37, 국내간담회 5)	41 (대외협상 35, 국내간담회 6)	△1	△2.3
▪ 협상 관련 연구용역	214	248 (1식×248백만×100%)	250 (1식×250백만×100%)	2	0.8
▪ 국제통상지원, FTA정보조사	1,037	537 (국제통상지원 417, FTA정보조사 120)	537 (국제통상지원 417, FTA정보조사 120)	-	-
▪ 국제규격 조사 연구위원 운영	-	199 (3,677천원×9명×6개월×100%)	415 (3,843천원×9명×12개월×100%)	216	108.5
▪ OECD 농촌컨퍼런스 개최	-	182 (1식×182백만×100%)	300 (1식×300백만×100%)	118	64.8
▪ FTA정보조사 시스템 구축	-	-	786 (DB구축 400, 시스템 331, 관세검증 55)	786	순증
□ 비목(합계)	1,985	1,970	3,090	1,120	56.9
▪ 상용임금(110-03)	-	181	390	209	115.4
▪ 일반수용비(210-01)	206	359	358	△1	△0.3
▪ 특근매식비(210-05)	-	3	3	-	-
▪ 임차료(210-07)	10	10	10	-	-
▪ 복리후생비(210-12)	-	-	4	4	순증
▪ 국내여비(220-01)	44	43	43	-	-
▪ 국외업무여비(220-02)	429	350	350	-	-
▪ 업무추진비(240-01)	46	42	41	△1	△2.4
▪ 일반연구비(260-01)	148	248	250	2	0.8
▪ 정책연구비(260-02)	66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1,037	719	1,623	904	125.7
▪ 고용부담금(320-09)	-	15	18	3	2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5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정부의 FTA 추진로드맵(대외경제장관회의, '03.8, '04.5)
- 정부 국정과제 중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포함
  * 동아시아 역내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창출 및 선장동력 확보

○ 추진경위

< 쌀 관세화 >

- '14.7.18 : 쌀 관세화 결정 발표
- '14.9.18 : 쌀 관세율 513% 및 쌀산업발전대책 발표
- '14.9.30 : 국회 상임위 보고 및 쌀 양허표수정안 WTO 통보
- '14.12월 :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총 5개국이 유보표명
- '14.12.30 :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 → 513% 반영
  관세법 시행령 개정 → SSG 부과 근거 마련
- '15.1.1 : 쌀 관세화 시행
- '15.1.1~현재 : 쌀 관세화 검증 협의 진행 중

< DDA협상 >

- 1999년 : 차기 농산물 협상 대책지원(운영비)사업으로 시작
- 2001년 11월 : DDA협상 개시
- 2003년 9월 : WTO각료회의(칸쿤), 기본골격합의 실패
- 2004년 8월 : WTO각료회의에서 DDA협상 기본골격 합의
- 2005년 12월 : WTO 각료회의 개최(홍콩), 세부원칙합의 실패
- 2006년 7월 : WTO무역협상위원회, 협상 일시중단 선언
- 2007년 1월 :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협상 본격 재개 합의
- 2007년 7월 : 농업협상그룹의장, 세부원칙 초안 제시
- 2008년 2월 : 농업협상그룹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 2008년 5월 : 농업협상그룹의장, 세부원칙 2차 수정안 제시
- 2008년 12월 :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제시
- 2009년 12월 : 세부원칙 잔여쟁점 및 양허표 양식 등 논의
- 2010년 11월 : G20 서울정상회의 및 APEC 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 조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11년 협상타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2011년 5월 :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를 구성하는 방안 논의
- 2011년 12월 :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진전을 위해 가능한 분야에 집중, 조기 부분 타결하자는데 합의
- 2013년 1월 : 다보스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13.12월 제9차 각료회의에서 일부라도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
- 2013년 12월 : 제9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TRQ,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수출경쟁 등 5개 농업관련 분야에 대한 결정문 합의
- 2014년 7월 : 무역원활화 관련 의정서 기탁 마감을 앞두고 인도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관련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무역원활화 협정체결을 거부
- 2014년 11월 : 미-인도 합의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정이 체결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유지기간을 명확화
- 2014년 12월 :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2015년 7월까지 발리 이후 워크프로그램 작성을 마감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영구적 해결방법을 2015년 말까지 모색할 것을 제안
- 2015년 3월 :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에 대한 제안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기존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벗어나 목표수준을 낮춘 새로운 접근 시도
- 2015년 7월 : 발리이후 워크프로그램 실패가 공식 선언되고, 하반기 협상은 제10차 각료회의에서의 성과도출을 목표로 진행키로 함
- 2015년 12월 : 제10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농업 분야 수출보조금 철폐,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합의
- 2016년 6월 : 국내보조 감축방안을 제시한 브라질 제안서가 회람되는 등 국내보조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2016년 11월 : 제11차 각료회의('17.12월)에 대비, 국내보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시장접근 등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 진행 중

< FTA협상 >

- 발효 및 타결(15건 52개국)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아세안('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콜롬비아('16.7), 호주('14.12), 캐나다('15.1), 중국('15.12), 뉴질랜드('15.12), 베트남('15.12)
- 협상중(5건 23개국) : 한·중·일, RCEP, 이스라엘, 에콰도르, 중미
- 협상재개준비(4건 9개국) : 인도네시아, 멕시코, 일본, GCC등
- 협상이전단계 : 말레이시아, 태국, MERCOSUR 등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협상대응	19.5	19.5	19.2	21	21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하반기 대두된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인해 이월 발생('14)

○ 국제통상지원사업 및 FTA해외정보조사사업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불용('15)

○ DDA/FTA 협상 관련 연구용역(2건) 계약 연장으로 이월('16)

○ 쌀관세화, 한중FTA 등 관련 연구용역(3건) 계약 연장으로 이월('17)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2 (10.5)	0.6 (-)	- (-)	19.8 (10.5)	18.6 (9.3)	- ( )	1.2 (1.2)
'16년	21 (10.4)	- (-)	- (-)	21 (10.5)	19.4 (10.4)	0.6 (-)	0.7 (0.1)
'17년	20 (10.4)	0.6 (-)	 (-)	20.6 (10.4)	19.9 (10.4)	1.1 (0.7)	0.5 (0.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DDA/FTA협상 >
DDA/FTA농업협상국면」도래 → 협상전략 마련 및 참가 준비자료 → 「협상대표단 구성」, 협상 대응 → 협상동향 등 농업단체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의견 수렴 → 양자 및 다자간 협상

참고 1 FTA 협상지원시스템 구축계획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FTA 체결*이 빠르게 증가하여 국가별, 품목별 FTA관련 **방대한 정보**가 우리부에 **담당자별로 산재되어 축적** 중

* '18.3 기준으로 15건 52개국

○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분석·활용** 하는 **체계**가 **미흡**해 협상대응보다 **기초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협상 노하우의 축적에 애로

□ 구축 내용

(목표) FTA협상관련 정보·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활용할 수 있는 「FTA협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상력 고도화

FTA협상지원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통계DB	▪ **FTA협상관련 통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DB화하고 손쉽게 통계표 생산** - 협상정보, 무역정보, 국내시장정보 DB화 - 통계표(Hwp파일) 자동생성, 통계 시각화
협상지식DB	▪ **협상과정에 축적된 노하우를 타 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장-관리** - FTA 표준추진절차 기반 지식DB 구축 - FTA별 지식축적 현황 상황판 운영
협상지원 고도화 서비스	▪ **모바일 기기, 대쉬보드로 협상지원 고도화** - 모바일 기기로 협상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 FTA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보는 대쉬보드 운영

□ 추진일정, 예산, 운영인력

○ 한미FTA 재협상 지원시스템 시범구축('17년, 0.4억) → FTA협상지원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18년, 0.3억) → FTA협상지원시스템 구축('19년, 786백만원)

참고 2 제12차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 개최

❑ 제12차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 개요

○ **(일시/장소)** ‘19 상반기, 서울 일원 및 현장방문지

○ **(담당기관)** OECD 지역개발위원회(RDPC) 농촌작업반

* (OECD 담당자) Enrique Garcilazo, head of rural policy unit

○ **(개최목적)** 한국 정책사례 홍보 및 선진국 농정 경험 공유, OECD 행사 개최를 통한 **우리 농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스코틀랜드 담당자는 농촌정책 공유 이외에도 국내 민간 분야의 참여를 통한 역량 배양, 전통문화 홍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대외이미지 제고의 개최효과가 있음을 강조

○ **(행사의의)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농촌정책 컨퍼런스이며 수원국에서 지원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상징성 강조**

○ **(참여인원)** 각국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 유관 사회적 기업 및 단체 등 **300명 이상**(국내 150명, 국외 150명 이상)

○ **(논의사항) 아시아지역 경험**(한·중·일·ASEAN 등) 적극 공유,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성 및 농촌 삶의질·정주여건 개선 방향 토론 등

○ **(‘19 소요예산) 행사개최비용** 총 3억원

3. 국제기구분담금(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제기구분담금	2,171	1,810	1,537	△273	△15.1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5000 - 5031
* 담 당 자 : 국제협력국장(정일정),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 서기관(안완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식물품종보호 및 종자자원 확보 등 농업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우리나라 국격제고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분담금 납부
사업기간	'06 ~ 계속('05년까지 외교부에서 집행)
총사업비	
사업규모	농업분야 10개 국제기구 및 1개 민간협회(FAO한국협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국제부담금), FAO한국협회(민간경상보조)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0개 농업분야 국제기구분담금 **944백만원**

- **(의무분담금)** 기구별 총회 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우리나라 분담금 **710백만원**
  - ◦ 아세안+3 쌀 비축제기금(APTERR) : ('18)314 → ('19)83
  - ◦ 아태지역 식물보호기구(APPPC) : ('18)45 → ('19)47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18)261 → ('19)265
  - ◦ 국제낙농연맹(IDF) : ('18)49 → ('19)53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8)30 → ('19)40
  - ◦ 국제곡물이사회(IGC) : ('18)55 → ('19)47
  - ◦ 국제사탕기구(ISO) : ('18)82→ ('19)85
  -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 ('18)96 → ('19)90
- **(자발적기여금)**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역할강화 및 국격제고를 위한 자발적기여금 **234백만원**
  -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 ('18)167 → ('19)176
  -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18)118 → ('19)58

○ FAO한국협회 보조사업 예산 **593백만원**

- 직원 인건비 237백만원, 간행물 발간 등 사업비 356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제기구분담금	**1,810백만원**	**1,537백만원**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의무)	261백만원 (€205,525)	265백만원 (€205,525)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의무)	96백만원 (SFr80,462)	90백만원 (SFr80,462)
▪ 국제곡물이사회(IGC, 의무)	55백만원 (£33,614)	47백만원 (£32,000)
▪ 아태지역 식물보호기구(APPPC, 의무)	45백만원 ($41,112)	47백만원 ($43,168)
▪ 아세안+3쌀 비축제기금(APTERR, 의무)	314백만원 ($275,000)	83백만원 ($75,000)
▪ 국제낙농연맹(IDF, 의무)	49백만원 (€40,000)	53백만원 (€41,000)
▪ 국제설탕기구(ISO, 의무)	82백만원 (£50,844)	85백만원 (£57,000)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의무)	30백만원 (€27,000)	40백만원 (€31,000)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자발)	167백만원 ($150,000)	176백만원 ($160,000)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자발)	118백만원 ($110,000)	58백만원 ($52,735)
▪ FAO한국협회 보조사업비	593백만원 (인건비 237,사업비 356)	593백만원 (인건비237,사업비356)

* 환율 : 1USD=1,100원, €1=1,290원, 1SFr=1,115원, 1£=1,487원

□ 지원 필요성

○ 동식물 전염병 예방, 식량안보 등 농업정책 현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조약 및 정관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우리나라와 UN식량농업기구(UN/FAO)간 연락, FAO 회원국간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활동을 위해『FAO 한국협회』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제기구분담금	2,171	1,810	1,537	△273	△15.1
▪ 국제기구분담금 (산출근거)	1,628	1,217 (10개 국제기구)	944 (10개 국제기구)	△273	△15.1
▪ FAO한국협회 보조사업 (산출근거)	543	593 (인건비 4인 237, 사업비 356)	593 (인건비 4인 237, 사업비 356)	-	-
□ 비목(합계)	2,171	1,810	1,537	△273	△15.1
○ 민간경상보조(320-01)	543	593	593	-	-
○ 국제부담금(340-02)	1,628	1,217	944	△273	△15.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및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제협력)
- OIE, IPPC, APTERR 등 각 국제기구의 설립에 관한 협정(국별분담금) 등 국제기구 정관(참고 자료)
- UN/FAO 총회 결의(1951년),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제3조(FAO 사업조성 필요경비 금액 교부)

○ 추진경위

- 국제기구 가입 이후 회원국으로서 분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해당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납부

* 농업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이관 : ('05이전) 외교통상부 → ('06이후) 농림수산식품부

* 국제기구분담금(5031-530)이 2012년부터 국제기구분담금(5031-530)과 국제기구분담금(ODA)(5031-531)으로 분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국제기구분담금	15	19	20	24	17	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국제기구의 해당년도 분담금 납부 당시 환율이 예산편성 기준 환율보다 낮아져 실 납부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15~'17)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5 (6)	- (-)	- (-)	19.5 (6)	19.5 (6)	- (-)	- (-)
'16년	24.1 (6)	- (-)	- (-)	24.1 (6)	19.1 (6)	5 (-)	- (-)
'17년	16.9 (6)	5 (-)	- (-)	21.9 (6)	21.7 (6)	- (-)	0.2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국제기구) 각국에 납입 분담금 확정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외화 분담금 검토 → 환율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납부 → 해외 주재관 및 외교부 국제기구과를 통해 납부 금액 최종 확인

4. 국제기구분담금(ODA)(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제기구분담금(ODA)	14,410	15,248	16,216	968	6.3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5000 - 5031
* 담 당 자 : 국제협력국장(정일정),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 서기관(안완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적개발원조 관련 국제기구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사회의 재정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강화, 국격제고 및 국제협력 증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관련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분담금 납부
사업기간	'06 ~ 계속(05년 까지 외교부에서 집행)
총사업비	-
사업규모	ODA(공적개발원조)관련 국제기구에 지원 : FAO, IFAD, WFP, AARDO 및 AARDO극동지역사무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공적개발원조(ODA)관련 국제기구분담금 **15,068백만원** 요구

- **(의무분담금)** 국제기구별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우리나라 분담금 11,119백만원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분담금 11,022($5,519천+€3,837천)
▸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분담금 97($88천)

* FAO 분담금 중 51%는 ODA이며, AARDO는 ODA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개도국 농촌개발을 지원하는 ODA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므로 '13년부터 포함('12년까지는 국제기구분담금에 포함하여 지원)

- **(자발적기여금)**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강화 및 국격제고를 위한 자발적기여금 3,949백만원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분담금 3,839($3,490천)('18년 대비 381증)
▸ 세계식량계획(WFP) 분담금 110($100천)

○ 국내에 설치된 AARDO극동지역 사무소 운영비 **268백만원**

▸ AARDO 극동지역사무소 : 268백만원 [인건비187(62.3×3명)+운영비81]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자발적분담금 : **880백만원**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자발적 분담금 : 880백만원($800천원×1,100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국제기구분담금(ODA)	**15,248백만원**	**16,216백만원**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의무)	11,310 ($5,444,138.44+€3,830,135.02)	**11,022** ($5,519.568.81+€3,837,632.49)
▪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의무)	99 ($88,000)	**97** ($88,000)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자발)	3,458 ($3,060,000)	**3,839** ($3,490,000)
▪ 세계식량계획(WFP, 자발)	113 ($100,000)	**110** ($100,000)
▪ AARDO극동지역사무소	268백만원 (인건비 3명 187, 운영비 81)	**268백만원** (인건비 3명 187, 운영비 81)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발)	-	**880** ($800,000)

* 환율 : 1USD=1,100원, €1=1,290원

□ 지원 필요성

○ 공적개발원조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원조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의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분담금 납부의무 이행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제기구분담금(ODA)	14,410	15,248	16,216	968	6.3
▪ 국제기구분담금(ODA)	14,410	15,248 (4개 국제기구, 1개 국내사무소)	16,216 (4개 국제기구, 2개 국내사무소)	968	6.3
□ 비목(합계)	14,410	15,248	16,216	968	6.3
○ 국제부담금(340-02)	14,410	15,248	16,216	968	6.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및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제협력)

- FAO, IFAD, WFP 등 각 국제기구의 설립에 관한 협정(국가별 분담금) 등 국제기구 정관

국제기구별	분담금 납부 근거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FAO)	○FAO헌장 제18조 2항 : 각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분담금을 매년 FAO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FAD설립협정('77년 채택)에 따라 결정
세계식량계획(WFP)	○'61년 UN 총회 결의 1714호 및 FAO 총회 결의 1/61호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	○AARDO헌장 제8조 1항 : 회비 분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중략) 국제연합 및 식량농업기구가 채택한 회비분담금 규모를 지침 으로 삼는다.

○ 추진경위

- 국제기구 가입 이후 회원국으로서 분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며, 기구에서 정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납부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국제기구분담금(ODA)	155	148	151	144	148	15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국제기구 분담금 환차익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및 FAO연락협력사무소 설치 지연에 따른 운영비 예산 미집행액 불용('14~'17)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1 (-)	- (-)	- (-)	151 (-)	139 (-)	- (-)	12 (-)
'16년	148 (-)	- (-)	- (-)	148 (-)	148 (-)	- (-)	- (-)
'17년	148 (-)	- (-)	- (-)	148 (-)	144 (-)	- (-)	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국제기구) 각국에 납입 분담금 확정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외화 분담금 검토 → 환율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납부 → 해외 주재관 및 외교부 국제기구과를 통해 납부 금액 최종 확인

농 산 물 품 질 관 리

1. 농산물안전성조사(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산물안전성조사	20,051	23,267	23,590	323	1.4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000 - 6032
*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조재호), 소비안전과장(김지현), 사무관(손병철, ☏ 054-429-413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산·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사료의 품질· 안전성 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사료)의 시중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생산·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국가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기간	'9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농산물안전성조사 : 70,000건, 사료검정 : 3,750건
지원조건	직접수행(국비100%)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산물(사료)의 생산(제조)·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소요 재원 **23,590백만원 요구**

□ **분석 보조원·연구원 인건비** : **('18) 1,642백만원 → ('19) 1,965(증 323, 19.7%)**

○ **상용임금(110-03) : ('18) 1,492백만원 → ('19) 1,631(증 139)**

▪ 공무직 안전성보조원 : ('18) 1,236백만원 → ('19) 1,351(증 115)

- 인건비: 8,350원×209시간×12월×58명=1,215백만원 ('19 최저시급 반영)
- 상여금: 800천원×58명=46백만원 (전년 동)
- 정액급식비: 130천원×12월×58명=90백만원 (공무직 전환)

▪ 연구원 : ('18) 256백만원→ ('19) 280(증 24)

- 인건비 : 8,350원×209시간×12월×12명=251백만원 ('19 최저시급 반영)
- 정액급식비: 130천원×12월×12명=19백만원
- 상여금: 800천원×12명=10백만원

○ **운영비(210) : ('18) - → ('19) 28백만원 (순증)**

▪ 복리후생비(210-12) : ('18) - → ('19) 28백만원 (순증)

- 복지포인트(공무직,기간제) 400천원×70명=28백만원

○ **민간이전(320) : ('18) 150백만원 → ('19) 306 (증 156)**

▪ 고용부담금(320-09) : ('18) 150백만원 → ('19) 306 (증 156)

- 공무직 분석보조원(정규직) 4대보험료 1,351,504,400원×10.4%=141백만원 (증 59)
- 공무직 분석보조원(정규직) 퇴직금 1,351,504,400원/12월=113백만원 (증 99)
- 분석연구원 4대보험료 279,621,600원×10.4%=29백만원 (전년 동)
- 분석연구원 퇴직금 279,621,600원/12월=23백만원 (감 2)

□ **유해물질 조사·분석 운영비** : **('18) 15,151백만원 → ('19) 15,151(전년 동)**

○ **운영비(210) : ('18) 7,632백만원 → ('19) 7,651(증 19)**

▪ 일반수용비(210-01) : ('18) 1,232백만원 → (19) 1,251(증 19)

- 안전성 조사·분석 업무수행 120개소(지원·사무소)×10,265천원=1,232백만원 (전년 동)
- PLS홍보 스티커 등 186,410장×100원=19백만원 (순증)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8) 562백만원 → ('19) 562(전년 동)

- 분석실 전기요금 등 51,091천원×11개소=562백만원

▪ 피복비(210-03) : ('18년) 40백만원 → ('19) 40백만원(전년 동)

- 분석실근무자 실험복 등 62.5천원×4회×160명=40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18) 95백만원 → ('19) 95(전년 동)

- 안전성조사·분석담당자 6천원×10식×144명×11개소=95백만원

▪ 임차료(210-07) : ('18년) 4백만원 → ('19) 4 (전년 동)
- 워크숍 등 회의장 임차료 300천원×2일×2회×3개소=4백만원
▪ 유류비(210-08) : ('18년) 63백만원 → ('19) 63 (전년 동)
- 안전성조사 시료수거용 차량 1,514원×2,972L×14대=63백만원
▪ 재료비(210-11) : ('18년) 4,694백만원 → ('19) 4,694 (전년 동)
- 분석용 시료구입비 : 978백만원
* 정밀분석(일반농산물 420백만원, 친환경216, 인삼236) 872백만원
* 정도관리 시료구입(CRM) 100천원×25개소×5종×2회×2건=50백만원
* 방사능 및 병원성미생물 8,000원×7,000건=56백만원
- 분석 재료비 : 3,469백만원
* 정밀분석(일반농산물 2,280백만원, 친환경760, 인삼 76)
* 전문보수교육용(3백만원), 방사능 분석(150), 병원성미생물분석(200)
- 분석(사료검정) 재료비 : 247백만원
* 일반조성분(19백만원), 첨가제(98), 유해물질(49), 광물질(25), 기타(11)
* 생균제 등(15백만원), BSE관련(15), 말라카이트그린, 멜라민 등 모니터링(15)
▪ 복리후생비(210-12) : ('18) 5백만원 → ('19) 5 (전년 동)
- 안전성연구모임 5과제×500천원×2회=5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18) 900백만원 → ('19) 900 (전년 동)
- 유해물질(사료 포함) 분석법연구 20과제×45,000천원=900백만원 (전년 동)
▪ 기타운영비(210-16) : ('18) 37백만원 → ('19) 37 (전년 동)
- 안전성업무 우수부서 시상 250천원×5명×3회×10개소=37백만원

○ **여비(220) : ('18) 639백만원 → ('19) 620(감 19, △3%)**
▪ 국내여비(220-01) : ('18) 519백만원 → ('19) 508(감 11, △2.1%)
- 안전성조사·분석 담당자 시료수거·교육 등 국내여비 69.2천원×30회×245명=508백만원(감 11)
▪ 국외업무여비(220-02) : ('18) 120백만원 → ('19) 112(감 8, △6.7%)
- Codex·국제학회참석·안전관리실태조사 1,120천원×10회×10명=112백만원(감 8)

○ **업무추진비(240) : ('18) 13백만원 → ('19) 13(전년 동)**
▪ 사업추진비(240-01) : ('18) 13백만원 → ('19) 13 (전년 동)
- 농소정협의회 운영 등 260천원×5회×10개소=13백만원 (전년 동)

○ **민간이전(320) : ('18) 6,867백만원 → ('19) 6,867 (전년 동)**
▪ 민간경상보조(320-01) : ('18) 1,260백만원 → ('19) 1,260 (전년 동)
- 농경지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210천원×6,000건=1,260백만원 (전년 동)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8) 5,607백만원 → ('19) 5,607 (전년 동)
- 유통단계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 위탁분석 140천원×10,000건=1,400백만원(전년 동)
- 유해물질(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다이옥신) 위탁분석 200천원×5,040건=1,008백만원(전년 동)
- 안전성검사(검정)기관 유해물질 분석 숙련도평가 2,500천원×50개소=125백만원(전년 동)
-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위탁용역 5,000천원×20성분=100백만원 (전년 동)

- 사료용 볏짚 잔류농약검사 위탁분석 408천원×1,800건=734백만원 (전년 동)
- 축산물(계란) 잔류농약 분석 160천원×4,000농가=640백만원 (전년 동)
- 축산물(계란) 항생물질 분석 400천원×4,000농가=1,600백만원 (전년 동)

□ **미생물분석 미국공동 연구과제 수행비 : ('18) 111백만원 → ('19) 111 (전년 동)**

○ **해외이전(340) : ('18) 111백만원 → ('19) 111 (전년 동)**

▪ 해외경상이전(340-01) : ('18년) 111백만원 → ('19 요구) 111(전년 동)

- 미생물분석 미국공동연구 $100,988×1,100원×1명=111백만원

□ **분석실 시설보완 및 장비구매 : ('18) 6,363백만원 → ('19) 6,363 (전년 동)**

○ **운영비(210) : ('18) 963백만원 → ('19) 963(전년 동)**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8년) 893백만원 → ('19) 893 (전년 동)

- 분석장비 유지비 4,014천원*20대*10개소=803백만원
- KOLAS 및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비 9,000천원*10개소=9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8) 70백만원 → ('19) 70(전년 동)

- 분석실 유지관리(청소 등)용역 583,333원*10개소*12개월=70백만원 (전년 동)

○ **건설비(420) : ('18) 300백만원 → ('19) 300 (전년 동)**

▪ 공사비(420-03) : ('18년) 300백만원 → ('19 요구) 300 (전년 동)

- 안전성분석실 시설보완·환경개선 30백만원×10개소=30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8) 5,100백만원 → ('19) 5,100 (전년 동)**

- 질량분석기(MS/MS) 구입 500백만원×6set=3,000백만원 (전년 동)
- 노후장비 교체 24백만원×83대=1,992백만원 (전년 동)
- 안전성조사 시료수거용 차량구입 18,000천원×6대=108백만원 (전년 동)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산물안전성조사**	**23,267백만원**	**23,590백만원**
▪ 분석보조원·연구원 운용	**1,642백만원** (23.45백만원×70명)	**1,965백만원** (28.07백만원×70명)
▪ 유해물질 조사분석 관리	**15,151백만원** (11.40백만원×120개소×12개월)	**15,151백만원** (10.18백만원×124개소×12개월)
▪ 미생물분석 미국공동 연구과제 수행	**111백만원** ($95,000×1,130원×1명+3,790천원)	**111백만원** ($100,910×1,100원×1명-1,000원)
▪ 분석실 시설보완 및 장비구매	**6,363백만원** (578백만원×11개소)	**6,363백만원** (578백만원×11개소)

□ 지원 필요성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먹을거리 안전으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이행하고 생산·유통 일부단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안전관리 지속적으로 강화 필요

-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농약 등 인위적 사용량 증가 및 생산·유통·저장 과정에서 비의도적 유해물질의 혼입 등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사고 증가

-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안전관리, 유럽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및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사고 증가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대두

-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을 위해서는 식품의 원료이며, 그 자체가 식품으로 이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수 요소임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의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 지원 확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산물안전성조사	19,966	23,267	23,590	3,216	1.4
▪ 분석 보조원·연구원 운용	1,199 (17.13백만원×70명)	1,642 (23.45백만원×70명)	1,965 (23.45백만원×70명)	+323	1.4
▪ 유해물질 조사·분석 관리	11,882 (8.25백만원×120개소×12개월)	16,414 (11.40백만원×120개소×12개월)	16,414 (11.40백만원×120개소×12개월)	-	-
▪ 미생물분석미국공동연구과제 수행	110 ($95,000×1,157원×1명)	111 ($95,000×1,130원×1명+3,790천원)	111 ($100,909×1,100원×1명-1,000원)	-	-
▪ 분석실 시설보완 및 장비구매	6,775 (678백만원×10개소)	5,100 (510백만원×10개소)	5,100 (510백만원×10개소)	-	-

□ 비목(합계)	20,989	23,267	23,267	323	1.4
○ 상용임금(110-03)	-	1,492	1,631	139	순증
○ 일용임금(110-04)	1,063	-	-	-	-
○ 일반수용비(210-01)	1,649	1,232	1,251	+19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62	562	562	-	-
○ 피복비(210-03)	39	40	40	-	-
○ 특근매식비(210-05)	91	95	95	-	-
○ 임차료(210-07)	4	4	4	-	-
○ 유류비(210-08)	47	63	63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916	893	893	-	-
○ 재료비(210-11)	4,258	4,694	4,694	-	-
○ 복리후생비(210-12)	-	5	33	28	-
○ 시험연구비(210-13)	647	900	900	-	-
○ 일반용역비(210-14)	5	-	-	-	-
○ 관리용역비(210-15)	145	70	70	-	-
○ 기타운영비(210-16)	30	37	37	-	-
○ 국내여비(220-01)	526	518	508	△10	-
○ 국외업무여비(220-02)	123	121	112	△9	-
○ 사업추진비(240-01)	14	13	13	-	-
○ 민간경상보조(320-01)	1,260	1,260	1,260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624	5,607	5,607	-	-
○ 고용부담금(320-09)	136	150	306	156	-
○ 해외이전(340-01)	110	111	111	-	-
○ 공사비(420-03)	300	300	300	-	-
○ 자산취득비(430-01)	5,414	5,100	5,1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제32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 「**사료관리법**」 제19조(사료검정)
  *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료에 대하여 잔류농약, 항생물질, 일반성분 등 검정을 실시하여야함

○ 추진경위

- ’96. 8 :「농수산물안전성검사업무처리요령」고시 및 농산물안전성조사 개시
- ’97. 3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조문 신설
- ’98. 12 : 사료의 공시료 검정기관의 조정
- ’99. 1 :「농산물품질관리법」공포(’99. 7. 1 시행)
- ’04. 2 :「농식품 안전종합대책」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06. 1.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09. 6. : 식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09. 12.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유통・판매단계 안전성 조사, 유해물질 잔류조사,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 ’12. 7. :「농산물품질관리법」이「수산물품질관리법」과 통합되어「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시행
- ’13.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안전성관리가 일원화되고, 안전성조사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산물안전성조사	215	191	197	210	201	23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불용사유 : 집행잔액(65백만원)

○ 2016년 불용사유 : 집행잔액(158백만원), 분석소모품 납품지연에 따른 이월액(111백만원)

○ 2017년 불용사유 : 집행잔액(134백만원), 외자분석장비 수수료 등 지급 이월액(59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7 (197)	-- (-)	- (-)	197 (197)	196 (196)	- (-)	0.65 (0.65)
'16년	210 (210)	- (-)	- (-)	210 (210)	207 (20,7)	1.11 (1.11)	1.58 (1.58)
'17년	201 (201)	1.11 (1.11)	△3 (△3)	202 (202)	200 (200)	0.59 (0.59)	1.34 (1.3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보통(75점)

○ 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우수(93.7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국가별 안전성조사 현황

국 별	담당기관	관련법규	관련 업무 내용
미 국	농무부 농업유통청 (AMS)	신선 농산물법, 식품품질보호법	○ 농무부장관은 환경보호청, 후생부와 협력하여 유아 및 어린이가 많이 먹는 농산물에 대한 식이섭취량을 조사함 ○ PDP(Pesticide Data Program)에 따라 농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및 성분분석 자료를 환경보호청에 제공 · 농약잔류 분석 : 2개의 연방정부 실험실과 7개 주정부 실험실에서 분담실시
일본	국립위생시험소 지방위생연구소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에 관한 규제 및 기준 제정 ○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 위생검사 및 단속
영국	건강안전청	식품 및 환경보호법	○ 농약판매 및 사용규제 ○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 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캐나다	캐나다 식품 검사청 (CFIA)	농산물검사법식물 보호법, 행정벌금법	○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설정 ○ 동식물의 위생을 위한 조사 및 기준설정 ○ 식품 및 축산물의 농약잔류검사 ○ 식품의 표시사항 점검

(5) 사업추진절차

<집행체계>

○ 농산물 안전성조사 : 기본계획수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조사계획수립(농관원) → 조사사업 시행(농관원) → 조사결과 조치(농관원)

○ 사료검정 : 검정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검정사업시행(농관원) → 검정결과조치(장관, 시・도지사)

<집행절차>

○ 농산물 안전성조사(정밀분석) : 시·군 사무소에서 분석 시료채취 → 시험연구소 및 지원분석실에서 분석 → 분석기관에서 사무소에 분석 결과 통보 및 조치

시료채취	→	안전성 분석	→	분석결과 통보
· 시·군사무소 · 신청 의뢰인		시험연구소·지원 정밀분석기관(10개소)		분석기관 → 사무소·신청 의뢰인 - 부적합의 경우 폐기, 출하연기 등 조치

※ 관련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 제65조

○ 사료검정 :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식품부 및 시・도로부터 검정의뢰 받은 사료에 대해 영양성분 함량이나,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등을 분석하여 검사기관에 결과 통보

농식품부 및 시・도	검정의뢰 →	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정결과통보 →	농식품부 및 시・도
- 사료검사 · 시료채취 · 중량·서류·시설검사		- 사료검정 · 영양성분 · 유해물질 · 잔류농약 · 동물약품 등		- 위반업체 행정처분 · 과징금부과 · 영업정지등

※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제19조

참고 1 농산물 안전성조사 관련 법령(발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18.12.13] [법률 제15707호, 2018.6.12, 일부개정]

제61조 (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2조 (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65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6조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7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2013.3.23, 일부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2.13] [총리령 제1508호, 2018.12.13, 일부개정]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비자 교육·홍보·교류 등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13.>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用水)·자재 등
나. 출하되기 전인 농산물
다. 유통·판매되기 전인 농산물
2. 유통·판매 단계 조사: 출하되어 유통 또는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③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13.>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나.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
2. 저장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조사: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④ 안전성조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조사의 단계별로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

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수산물(생산자가 저장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 연기
2. 해당 농수산물의 유해물질의 분해·소실 기간이 길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안정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1. 객토(客土), 정화(淨化)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2.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이용·사용 중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이용·사용 금지

③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통보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검사 관련 법령(발췌)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료검사기준

제29조(사료검정기관 등) ① 법 제22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신설 2002.3.9, 개정 2014.4.29, 2014.12.8>

사료검정기관(제29조제1항관련)

지정번호	기관명	검정내용	비 고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 재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료검정	
2	국립축산과학원	○ 사료공정설정을 위한 사료검정 ○ (삭 제) ○ (삭 제)	
3	국립수산과학원	○ 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 재검사 시료의 검정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검사에 한함

참고 3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산출물량(18년기준)

유해물질	조사항목	조사대상	산출기준	비고
잔류농약	취약분야 등 상시관리 및 기획조사	*취약품목, 부적합 발생 농가 상시관리	·최근 3년간 부적합농가 전수조사 ·품목별 부적합율에 따라 농가수의 1~30%	
		*동·하절기, 추석, 김장철 *지역별, 테마별 기획조사	-	본원, 지원별 별도계획 수립
	공동브랜드 조사	*농협 연합조직 참여농가 수 **= 72,982명**	**5% 내외**	
		*APC수 **= 184개**	**분기 2회**	
	로컬푸드	*매장별 납품계약 농가 수 **= 10,186명**	**30% 내외**	
		*매장수 **= 141개**	**월 1회**	
	지역특화	*지자체 수요 및 협의를 통해 결정	-	
	수출	*수출농가 수 **= 5,397호**	**100%**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직불금 수령농가 수 **= 685,000명**	**0.3~0.4%**	
	RPC 유통 쌀	*RPC/정미소 **= 2,699개**	**5~6%**	
	공공비축미(가공)	*정부양곡 도정공장 **= 124개**	**연 1회**	
	공공비축미 (보관 훈증제)	*정부양곡 보관창고 수 **= 3,736개**	**1~2%**	
	수삼	*3년근 이상 재배 농가 수 **= 22,986명**	**5% 내외**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친환경 농가 수 **= 60,018명**	**10% 내외**	
		*친환경 취급자 인증수 **= 2,200개**	**반기 1회**	
		*GAP 농가 수 **= 53,583명**	**5% 내외**	공동브랜드, 학교급식 등에서 일부 물량 병행
	학교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농가 수 **= 3천명**	**100%**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업체 92개소	**분기 4회**	
	소비자 협력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분석지원 수요	-	

유해물질	조사항목	조사대상	산출기준	비고
	국가잔류	*잔류조사 요령(고시) -부적합 미발생 품목은 3년 주기로 조정	-	
	재배환경 실태 (농지, 용수, 퇴비)	*탐색잔류	-	
	단성분	*국가잔류조사건수 **= 7,750건**	**10% 내외**	
중금속	폐광산 주변 농산물	*관리지구 **= 431개소** *필지정보 및 재배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조정	-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통해 별도계획 수립
	폐광산 주변 농경지	*농어촌공사 보조사업으로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	
	국가잔류	*잔류조사 요령(고시)		
	재배환경 실태 (농지, 용수, 퇴비)	*탐색잔류	**50~300건**	
	농산물 중 잔류비소	*탐색잔류	**50~300건**	
곰팡이 독소	잡곡류, 두류 등에 대해 취약시기에 기획조사	*재배포장, 농가창고, 양곡시장 등	-	본원에서 별도계획 수립
	국가잔류	*잔류조사 요령(고시) 적용	-	
방사능 방사선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원전 4개 *방사능측정소 15개 **= 19개**	**월 2~3건**	
	방사능핵종	*탐색잔류	**50~300건**	
	방사선	*탐색잔류	**50~300건**	
병원성 미생물	생식채소	*탐색잔류	**50~300건**	
	단순가공	*탐색잔류	**50~300건**	
	노로바이러스	*탐색잔류	**50~300건**	
	가축 매몰지	*탐색잔류	**50~300건**	
항생제	농산물, 토양, 퇴비 잔류실태	*탐색잔류	**50~300건**	
다이옥신	소각장 주변 잔류실태	*탐색잔류	**50~300건**	
이산화황	건조, 박피 농산물 잔류실태	*탐색잔류	**50~300건**	

2. 농산물안전성조사(ODA) (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산물안전성조사 ODA	63	69	69	-	-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000 ~ 6032 - 302
*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조재호), 소비안전과장(김지현), 사무관(손병철, ☏ 054-429-413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도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의 선진 농식품 안전관리제도 및 첨단기술을 아시아 개도국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확대에 호의적인 환경조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우리의 선진 농식품 안전관리제도 및 유해물질 분석법 등 첨단기술을 아시아 개도국에 제공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국제적으로 수입 농산물로 인한 사고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사업기간	'12~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아시아지역 개도국(12개국) 안전성 관계자 초청연수
지원조건	직접수행(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국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우리의 선진 농식품 안전관리제도 및 유해물질 분석법 등 첨단기술을 아시아 개도국에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식품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요 재원 69백만원 요구

□ 농산물안전성조사(ODA) : ('18) 69백만원 → ('19) 69(-)

○ 운영비(210) : ('18) 14백만원 → ('19) 14

▪ 일반수용비(210-01) : ('18) 9백만원 → ('19) 9(-)

산출내역: 385천원*24명=9백만원(통역, 현장견학, 교육교재)

▪ 임차료(210-07) : ('18) 3백만원 → ('18) 3(-)

산출내역: 1,000천원*3일=3백만원(차량, 회의실)

▪ 기타운영비(210-16) : ('18) 2백만원 → ('18) 2(-)

산출내역: 500천원*4명=2백만원(교육 강사수당)

○ 여비(220) : ('18) 53백만원 → ('19) 53(-)

▪ 국외여비(220-02) : ('18) 53백만원 → ('19) 53(-)

산출내역: 2,225천원*24명=53백만원(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 업무추진비(240) : ('18) 2백만원 → ('19) 2(-)

▪ 초청연수 환영·환송회 : ('18) 2백만원 → ('19) 2(-)

산출내역: 42천원*24명*2회=2백만원(환영회, 환송회)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산물안전성조사ODA	69	69
▪ 운영비(210)	-개도국 초청연수 운영비 (14백만원)	-개도국 초청연수 운영비 (14백만원)
▪ 여비(220)	-개도국 초청연수 여비 (53백만원)	-개도국 초청연수 여비 (53백만원)
▪ 업무추진비(240)	-개도국 초청연수 사업추진비 (2백만원)	-개도국 초청연수 사업추진비 (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내농산물 수출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통상마찰 및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 수준이 강화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수입 농산물로 인한 사고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필요

- 세계 각국에 우리의 선진적인 농식품 안전성관리 제도 및 유해물질 분석법 등을 소개하고, 교류를 강화하여
-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수출확대에 호의적인 환경조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농산물안전성조사	**67**	**69**	**69**	**0**	**0.0**
일반수용비	9	9	9		
		-통역비(2.5) (500천원*1명*5일)	-통역비(2.5) (500천원*1명*5일)	-	-
		-현장견학비(2.5) (100천원*25명)	-현장견학비(2.6) (328천원*8명)	-	-
		-교육교재 제작 등운영비(3) (120천원*25명)	-교육교재 제작 등 운영비 (4.2) (521천원*8명)	-	-
임차료	3	3	3		
		-차량 임차료(1.5) (500천원*3일)	-차량 임차료(1.5) (500천원*3일)		
		-회의장 임차료(1.5) (500천원*3일)	-회의장 임차료(1.5) (450천원*3일)		
기타운영비	1	2	2	-	-
		-교육 강사료(2) (500천원*4명)	-교육 강사료(2) (450천원*4명)	-	-
국외업무여비	52	53	53	-	-
		-항공료(26) (1,020천원*25명)	-항공료(8.6) (1,085천원*8명)	-	-
		-일비(3) (20천원*25명*7일)	-일비(4.4) (20천원*8명*28일)	-	-
		-숙박비(17) (120천원*25명*6일)	-숙박비(29) (130천원*8명*28일)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B-A)	%
		-식비(7) (40천원*25명*7일)	-식비(11) (50천원*8명*28일)		
업무추진비	2	2	2	-	-
		-환영, 환송회(2) (40천원*25명*2회)	-환영, 환송회(2) (98.5천원*8명*2회)	-	-
□ 비목(합계)	67	69	69	0	0.0
○ 일반수용비(210-01)	9	9	9	-	-
○ 임차료(210-07)	3	3	3	-	-
○ 기타운영비(210-16)	1	2	2	-	-
○ 국외업무여비(220-02)	52	53	53	-	-
○ 업무추진비(240-01)	2	2	2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어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어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어업·농어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농관원 내부방침(소비안전과-1130, 2010.4.8)

* 개도국 농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관 초청 계획(안)

- ‘10년 제4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에서 몽골측에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초청연수 사업소개
- ‘11년 5월 아시아개도국 10개국 19명 초청연수 실시
- ‘12년 5월 아시아개도국 9개국 17명 초청연수 실시
- ‘13년 5월 아시아개도국 9개국 18명 초청연수 실시
- ‘14년 5월 아시아개도국 10개국 19명 초청연수 실시
- ‘15년 6월 아시아개도국 12개국 25명 초청연수 실시
- ‘16년 7월 아시아개도국 12개국 23명 초청연수 실시
- ‘17년 3월~9월 아시아개도국 6개국 6명 초청연수 실시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산물안전성조사 ODA	0.73	0.73	0.69	0.69	0.69	0.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실적

- 불용액 6백만원(전체 예산 대비 8.6%)은 연수자 불참 집행 잔액

○ 2016년 실적

- 불용액 2백만원(전체 예산 대비 2.9%)은 집행 잔액임

○ 2017년 실적

- 불용액 6백만원(전체 예산 대비 8.6%)은 집행 잔액임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9 ( )	( )	( )	69 ( )	63 ( )	( )	( )
’16년	69 ( )	( )	( )	69 ( )	67 ( )	( )	( )
’17년	69 ( )	( )	( )	69 ( )	63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14.5월) : "보통"

○ 2017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18.3월)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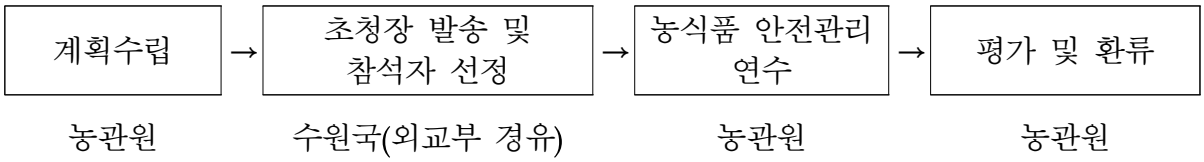

3.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사업(재량, 계속)

< 농어촌구조개선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LMO및농산물표시관리	4,010	4,424	4,543	119	2.7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000 - 6032
*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조재호), 품질관리과장(서문교), 사무관(김황립, ☏ 054-429-4112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

○ 농산물의 표시관리를 통해 상품성 향상 및 공정·투명한 거래를 유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LMO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 ○ 양곡표시 및 인삼류 사후관리, 농산물 검사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LMO 수입승인 3.1천건(약 8백만 톤), 취급관리업체 308천 개소, 양곡표시 대상업체 123천 개소, 농산물 검사물량 1,922천 톤, 지정검사기관 7개소,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33개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산출근거: ('18) 4,424백만원 → ('19) 4,543(증 119)

○ 보조원 인건비: ('18) 390백만원 → ('19) 477(증 87)

- LMO수입승인 및 검정보조원: 1,745,150원×12개월×5명=105백만원
- 벼 품종검정법 개발 및 검정 보조원: 1,745,150원×8개월×4명=56백만원
- 농산물검사 및 쌀 단백질 분석 보조원: 1,745,150원×3개월×58명=303백만원
- 명절휴가비: 400,000원×5×2회=4백만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5명×12개월=8백만원

○ 운영비: ('18) 1,988백만원 → ('19) 2,001(증 13)

- 안내·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8)286백만원 → ('19)297(증 11)
  * LMO·농산물표시조사업무수행 2,357천원×126개소(지원·사무소)=297백만원 (홍보, 교육교재 제작, 시료수거, 학회참가비, 자문관수당 등)

- 검정장비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18)220백만원 → ('19)220
  * 분석실 전기요금 등 20,000천원×11개소=220백만원

- LMO 분석요원 및 수입쌀 착항검사원 등 피복비: ('18)6백만원 → ('19)6
  * LMO분석원·수입쌀검사원 검사복 등 65천원×4회×23명=6백만원

- LMO 검정요원, 단백질 분석요원 등 특근매식비: ('18)23백만원 → ('19)23
  * LMO·단백질 분석요원 6천원×15일×23명×11개소=23백만원

- LMO 관련 회의장 임차료: ('18)5백만원 → ('19)5
  * 회의장 등 임차료 300천원×2회×9개소=5백만원

- LMO 분석실 및 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8)92백만원 → ('19)92
  * 유전자 등 분석실・장비 유지보수비 708천원×130개소=92백만원

- LMO·양곡·인삼류 조사관리 재료비: ('18)1,202백만원 → ('19)1,202
  * 시료・검정시약 등 42,929천원×28개소=1,202백만원

- LMO수입승인 및 검정보조원 복리후생비: ('18)0 → ('19)2백만원(순증)
  * 보조원(무기직) 복지포인트 400천원×5명=2백만원

- LMO 분석법 개발 등 시험연구비: ('18)120백만원 → ('19)120
  * 유전자 마커(50백만원×1품목) 및 쌀・현미 연산 판별법(35백만원×2품목)

- 업무의 대행을 위한 일반용역비: ('18)30백만원 → ('19)30
  * 양곡표시 이행실태조사: 20백만원×1회=20백만원
  * LMO 영상 홍보물 제작: 10백만원×1회=10백만원

- 우수 직원 격려 등 기타운영비: ('18)4백만원 → ('19)4
  * LMO・농산물관리 등 우수직원 격려 200천원×25명=5백만원

○ **여비**: ('18) 418백만원 → ('19) 407(감 11)
- LMO 및 양곡 지도·단속 등 국내여비: ('18)367백만원 → ('19)360(감 7)
  * LMO표시 조사업무 관련 국내여비 34,720원×60회×120명=250백만원
  * 농산물표시 조사업무 관련 국내여비 15,280원×60회×120명=110백만원

- LMO 및 수입농산물 선적지 검정 등 국외여비: ('18)51백만원 → ('19)47(감 4)
  * LMO 수입승인・지도검정 등 국외 여비: 2,143천원×2명×7회=30백만원
  * 농산물 표시 관련 국외여비: 1,417천원×2명×6회=17백만원

○ **사업추진비**: ('18) 2백만원 → ('19) 2
- 수입농산물 검사 관련기관 간담회 등 사업추진비 : 10천원×20명=2백만원

○ **고용부담금**: ('18) 48백만원 → ('19) 59(증 11)
- 수입승인 및 검정 보조원 사회보험료: ('18) 11백만원 → ('19) 12(증 1)
  * 상용임금(117백만원)×10.4%=12백만원

- 쌀 단백질분석 및 검사 보조원 사회보험료: ('18) 28백만원 → ('19) 37(증 9)
  * 일용임금(360백만원)×10.4%=37백만원

- 수입승인 및 검정 보조원 퇴직금: ('18) 8백만원 → ('19) 9(증 1)
  * 상용임금(117백만원)÷12개월=9백만원

○ **공사비**: ('18) 84백만원 → ('19) 84
  * 양곡 품위감정실 시설보완・보수 : 667천원×126개소=39백만원

○ **자산취득비**: ('18) 1,494백만원 → ('19) 1,513(증 19)
- LMO 검정 및 농산물 표시관리용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구입 (18종 25대) 등: ('18) 1,494백만원 → ('19) 1,513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 분	'18예산	'19예산
□ LMO 및 농산물 표시관리	4,424	4,543(증 119)
▪ 인건비	390 · LMO수입승인 및 검정 보조원(5명) 94 · 일용직 농산물 검사보조원(49명) 283 · 명절휴가비 4 · 정액급식비 8	477(증 87) · LMO수입승인 및 검정 보조원(5명) 105 · 일용직 농산물 검사보조원(62명) 359 · 명절휴가비 4 · 정액급식비 8
▪ 운영비	1,988 · 순증 · 순증	2,001(증 13) · 일반수용비(농산물검사 신뢰도 조사) 11 · 복리후생비(상용직 근로자 5명) 2
▪ 여비	418 · 국내여비 367 · 국외 업무여비 51	407(감 11) · 국내여비 360 * 7백만원 감액(공통경비 조정) · 국외 업무여비 47 * 4백만원 감액(공통경비 조정)
▪ 고용부담금	48 · 보조원 사회보험료 39 · 보조원 퇴직금 9	59(증 11) · 보조원 사회보험료 50 · 보조원 퇴직금 9
▪ 자산취득비	1,494 · 벼 제현율 자동판정기 296 · 순증 · 순증 · LMO 및 농산물검사장비(26종) 1,198	1,513(증 19) · 순감 · 벼품위 자동계측장비 250 · LMO검정용 노후장비 교체 108 · LMO 및 농산물검사장비(26종) 1,155

□ 지원 필요성

○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LMO 안전관리 체계 구축

- 「LMO법」('08.1.1.)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반비율을 0.1%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19년 이후에도 위반비율 최소화 추진

  * LMO 취급관리 위반비율 : ('15) 0.1% → ('16) 0.1% → ('17) 0.1%이하 → ('18) 0.1%이하

○ 과학적인 쌀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쌀·현미의 연산 판별법 개발 및 쌀 품종 유전자 분석 확대를 통해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등 위반행위 단속의 효율성 제고

○ 공정·정확한 농산물 검사기반 구축을 통해 정부공급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수입농산물의 검사 강화로 규격미달품의 국내 도입을 차단하고, 검사 시스템을 정비하여 수검자의 편익 증진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

  * 농산물 검사실적: ('12) 171만톤 → ('13) 182 → ('14) 196 → ('15) 200 → ('16) 230 → ('17) 270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4,010**	**4,424**	**4,543**	**119**	**2.7**
① LMO 표시관리 (산출근거)	1,625 (120개소×13.5백만원)	1,776 (120개소×14.8백만원)	1,891 (126개소×15.01백만원)	**115**	**6.5**
② 농산물 표시관리 (산출근거)	2,385 (120개소×19.9백만원)	2,648 (120개소×22.1백만원)	2,652 (126개소×21.05백만원)	4	0.2
□ 비목(합계)	4,010	4,424	4,543	119	2.7
○ 상용임금(110-03)	0	106	117	11	10.4
○ 일용임금(110-04)	322	283	360	77	27.2
○ 일반수용비(210-01)	469	286	297	11	3.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81	220	220	0	0
○ 피복비(210-03)	6	6	6	0	0
○ 특근매식비(210-05)	23	23	23	0	0
○ 임차료(210-07)	17	5	5	0	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37	92	92	0	0
○ 재료비(210-11)	725	1,202	1,202	0	0
○ 복리후생비(210-12)	0	0	2	2	100
○ 시험연구비(210-13)	120	120	120	0	0
○ 일반용역비(210-14)	78	30	30	0	0
○ 기타운영비(210-16)	10	4	4	0	0
○ 국내여비(220-01)	361	367	360	△7	△1.9
○ 국외업무여비(220-02)	49	51	47	△4	△7.8
○ 사업추진비(240-01)	2	2	2	0	0
○ 고용부담금(320-09)	29	48	59	11	22.9
○ 공사비(420-03)	83	84	84	0	0
○ 자산취득비(430-01)	1,198	1,494	1,513	19	1.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4조 내지 26조 등

· LMO 수출입등*을 하는 경우 LMO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며,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 수출입등 :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이용 등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 양곡의 생산연도 · 품질 등에 관한 거짓표시를 하거나 미곡*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 미곡 :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 농산물의 수급조절,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입하거나 수출입하는 농산물의 국정검사 실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

·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정검사를 대행

- 「인삼산업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6, 제19조

· 인삼류 판매·수출입 시 자체검사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 의무화

* 검사기준 미달품,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은 수거・폐기 또는 압류 등 조치

○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 2000년

- '98년 국회 국정감사 시 문제제기에 따라 GMO표시제 시행 검토

-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99.1.21)하여 GMO표시제 실시

· 시행령 제32조에서 GM농산물표시 조사권한을 농관원에 위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제정('00.1,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 LMO 국가간 이동·취급·활용 시 인체 및 생물 안전성을 보장

· '03.9.11 국제적으로 발효('03.6.13. 50개국 비준, 90일 경과)

* '15.12월 현재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국(EU, 일본, 중국 등 170개국)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제정 공포('01.3.28.)

· '00.9월 의정서에 서명하고, 산자부에서 LMO법 제정

-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전담기관 농관원 지정(농림부, '04.1.9.)

-「LMO법」시행령('05.9.), 시행규칙('06.3.) 제정 시행('08.1.1.), LMO 관계부처 통합고시('07.12.), 사료용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실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양곡표시제 실시('05.7.1.)

· 양곡(가공품 포함) 판매·유통 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표시

·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항에서 양곡표시 조사권을 농관원에 위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07.6.29)으로 GMO 표시품목 확대(4→7)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08.2.4)으로 쌀 품질 표시항목에 '단백질' 추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11.4.13)으로 '등급·단백질함량' 표시 의무화

-「LMO법」개정('12.12.11.), 시행('13.12.12.)으로 LMO 안전관리, 수입승인 및 취소, 표시방법, 취급관리 등 개선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GMO표시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13.3.)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13.10.2.)으로 쌀 등급 단순화(5등급→3등급(특·상·보통))하고,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으로 변경

-「양곡관리법」개정('15.1.6.), 시행('15.7.7.)으로 국산 미곡과 동일 종류의 수입 미곡 혼합과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금지

-「인삼산업법」제정('95.12.6.), 시행('96.7.1.)으로 홍삼 전매제 폐지, 자체검사업체 도입 및 검사품 확인검사 실시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LMO및농산물표시관리	45	43	40	41	40	4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 이월 37백만원, 집행잔액 72백만원 발생

○ '16년 : 집행잔액 42백만원 발생

○ '17년 : 집행잔액 47백만원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0			40	39		1
'16년	41			41	41		0
'17년	40			41	4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단위사업명: 농산물안전성관리(농특회계, 직접)
- 평가결과: 종합점수 83.2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국('15.12월 현재 EU·일본·중국 등 170개국)은 LMO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를 의무화하여 운영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UN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정한「생물다양성협약(CBD)」부속의정서로 '00.1.29.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BD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50개국이 비준하여 '03.9.11. 발효되었음

(5) 사업추진절차

○ LMO 수입승인 절차

절차	처리 요령	비 고
신청	(첨부서류) 1.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 계획서 3. 취급·보관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 인력·설비 현황 등	수수료 5만원
⬇		
접수	1. 환경위해성 심사 필요한 건은 농촌진흥청에 이송 2. 처리기간 270일, 다만 위해성 심사를 받은 경우는 10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심사	1. 운반경로·수단, 안전관리 전문인력·설비현황 등을 현지검토 2. 수입승인 자문위원회 및 그 외 사회·경제적 영향 고려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협조)
⬇		
결정	수입승인, 수입거절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LMO 취급관리 절차(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절차	처리 요령	비 고
운송과정 조사	1. 승인신청시의 운반경로에 따라 운송여부 2. 낙곡방지 장치시설을 갖춘 곡물수송전용차량 이용여부 3.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유무	운송업체 및 수입업체
⬇		
승인용도 사용	1. 사료용으로의 사용 확인을 위해 관련 장부 점검 2. 수입승인량과 판매·가공량을 조사	수입업체 및 가공업체
⬇		
관리상태 조사	1. 포장, 적재, 가공 작업 중 LMO 구분관리여부 2. 전담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 관계서류 점검 3. 콘베어벨트 등 시설 및 구조물로 환경방출 방지	수입업체, 가공업체, 보관업체
⬇		
처벌	1. LMO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양곡표시제 단속 및 위반사범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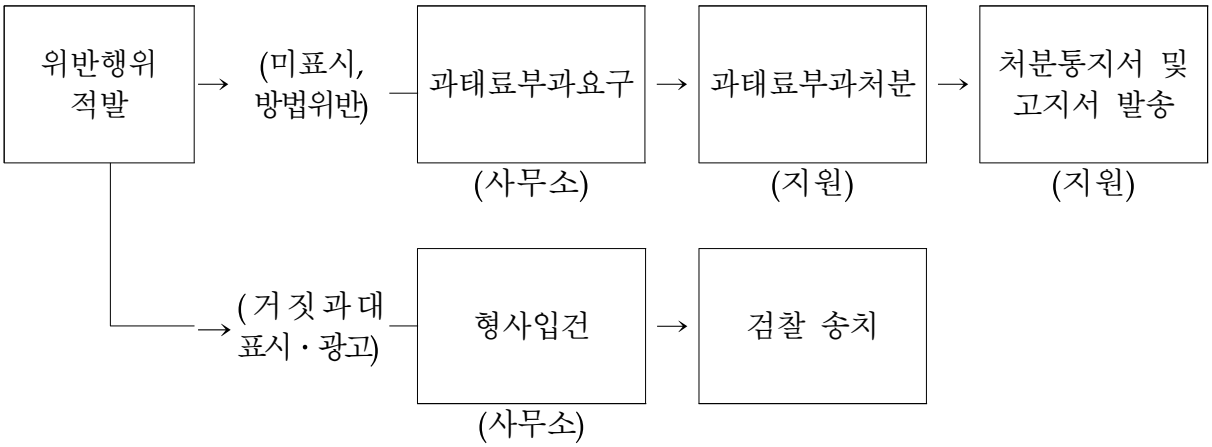

○ 수입농산물 검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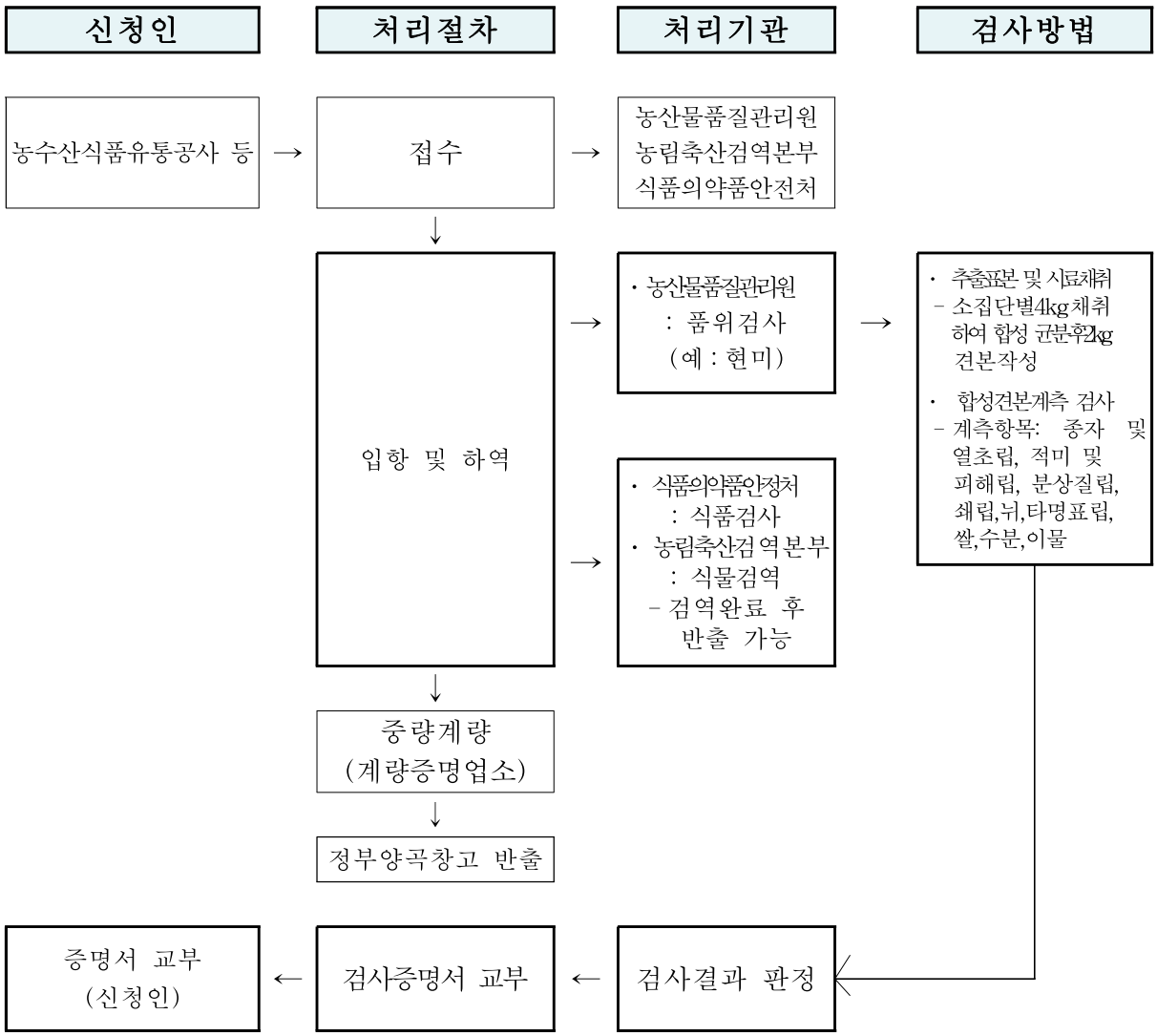

○ 인삼류 검사합격품 확인검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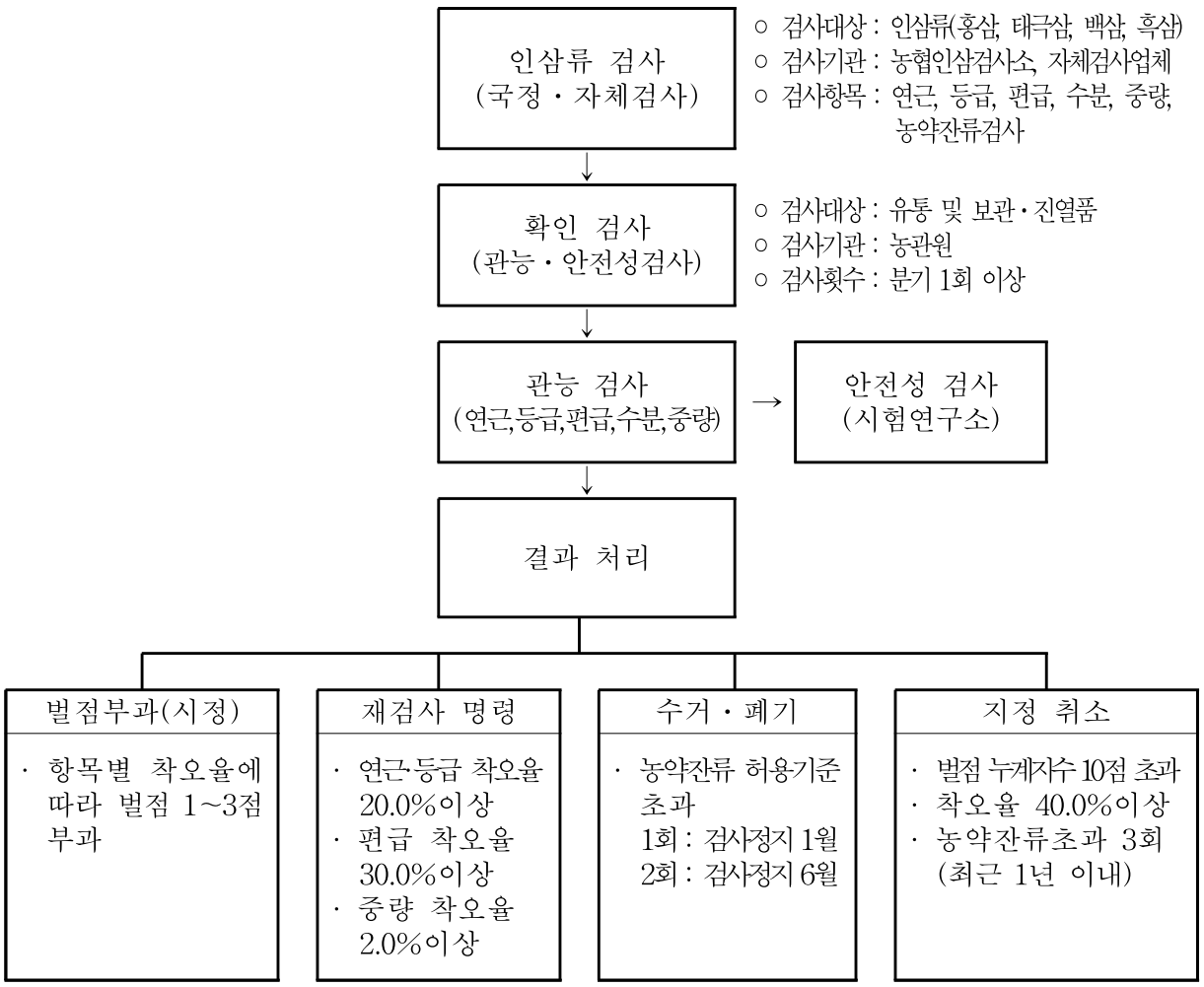

참고 1 LMO 및 농산물표시 관련 법령(발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표시)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취급관리)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관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관리·운영기록의 보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 · 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 · 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 · 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 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 과대의 표시 및 거짓 · 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농산물의 검사)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 · 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 · 기준 · 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0조(자금 지원)

7. 제80조, 제89조 및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

□ 인삼산업법

제17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가상표(自家商標)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참고 2 공공비축벼 · 추잡곡 매입검사 현황

❑ 공공비축벼 등 검사실적

(단위: 천톤)

연산	생산량	검사실적 (정곡환산)	생산량 대 비	종류별(조곡)				비고
				공공비축	격리곡	피해벼	애프터	
'12	4,006	504(363)	9.1	504	-	(3.6)		
'13	4,230	510(367)	8.7	510	-			
'14	4,241	781(563)	13.3	514	225	(0.2)	42	
'15	4,327	1,038(747)	17.3	500	496		42	218('16검사)
'16	4,197	957(689)	16.4	500	415	(4.4)	42	
'17	3,972	988(711)	24.9	473	502		13	

* 1963년 54kg 단위로 최초 정부매입 / 2005년 공공비축 매입으로 전환
* '15년산 격리곡 중 218천톤은 2016년도 검사 실적임(쌀값 안정용 격리곡)

❑ 공공비축벼 등 품위별 실적

(단위: 천톤, %)

연산	검사실적	등급별 비율					비 고
		특등	1등	2등	3등	잠정등외	
'12	504	16.2	69.2	11.8	2.1	0.7	
'13	510	26.1	70.9	2.9	0.1	-	
'14	739	27.9	68.4	3.5	0.2	0.0	
'15	778	28.1	68.0	3.7	0.2		
'16	915	22.6	67.6	8.0	1.3	0.5	
'17	988	43.0	55.1	1.8	0.1	-	

* 제외 : 애프터 미곡(2등급 이상), '15년산 격리곡(1등급 이상)

❑ 보리·두류 매입검사 실적

(단위: 톤, %)

연 산	종 목	생산량	매입 실적	생산량 대비 매입비율	등 급 비 율			
					1등	2등	3등	등외
'12	겉 보 리	19,746	-	-	-	-		-
	쌀 보 리	52,143	0.6	0.0	100			
	맥주보리	12,636	140	1.1	56.3	35.7		8.0
	합 계	**84,525**	**140**	**0.2**	**-**	**-**		**-**
'13	맥주보리	15,058	1,376	9.1	48.9	50.7		0.4
'15	일반콩	119,080	9,789	8.2	71.7	22.1	3.7	2.5
'16	일반콩	75,448	2,064	2.7	62.6	32.8	2.5	2.1
'17	일반콩	85,644	8,789	10.2	93.1	6.8		0.1

참고 3 비축농산물 및 수입농산물 검사 실적

❑ 비축농산물 검사실적

(단위: 톤)

연도	비축농산물(톤)								서류(톤)				군납	합 계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감귤	땅콩	소계	감자	생 고구마	절 간 고구마	소계	고추	
'04	-	-	-	-	-	-	169	169	-	-	2,335.9	2,335.9	-	2,504.9
'05	296	-	-	-	-	-	997.2	1,293.2	-	-	2,784.8	2,784.8	-	4,078
'06	326	-	-	-	-	-	39	365	-	-	-	-	-	365
'07	-	-	-	-	-	-	19	-	-	-	-	-	-	19
'13	12,362	-	6,103	-	-	-	-	18,465	-	-	-	-	-	18,465
'14	1,973	15,459	-	-	-	-	-	17,432	-	-	-	-	-	17,432
'15	-	18,803	7,000	-	-	-	-	25,803	-	-	-	-	-	25,803
'16		10,716						10,716						10,716
'17	2,000	2,000						4,000						4,000

❑ 수입농산물 검사실적

(단위: 톤)

연도별	품목수	검사물량	검사결과		
			합격	부적격	부적격비율(%)
'11	11	885,787	747,288	138,499	15.6
'12	9	768,299	657,083	111,216	14.5
'13	10	861,647	752,029	109,618	12.7
'14	8	788,601	772,067	16,534	2.1
'15	10	778,432	755,049	23,383	3.0
'16	10	637,647	615,227	22,420	3.5
'17	9	785,388	735,305	50,083	6.4

(단위: 톤)

품목 \ 연도	'12	'13	'14	'15	'16	'17
현미	165,158	327,948	340,908	348,975	246,994	429,943
쌀(쇄미포함)	170,587	209,147	91,110	85,812	66,122	42,132
콩(콩나물콩 포함)	334,941	259,561	285,467	256,834	244,511	233,946
팥	31,828	20,000	20,600	16,990	19,374	22,304
녹두	4,000	4,002	4,692	2,500	3,500	4,000
메밀	828	828	828	828	828	828
참깨	41,985	34,497	41,996	39,973	42,317	40,235
땅콩	-	-	-	-	-	-
고추	2,925	440	-	160	-	-
마늘	16,047	324	3,000	13,300	13,800	20
양파	-	4,900	-	13,060	200	11,980
합계	768,299	861,647	788,601	778,432	637,646	785,388

4.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재량, 계속)

< 농특회계 - 농어촌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2,899	13,922	11,847	△2,075	△14.9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000 - 6032

*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조재호), 인증관리팀장(안재록), 사무관(최남근, ☏ 054-429-417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인증관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관리, 유기농업자재 생산·유통 관리, 유기가공식품 국가간 동등성 협정 및 유통 관리

○ **(GAP 인증)**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및 이력추적제도 운영, GAP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관리

○ **(우수식품 인증)** 우리 차·김치 전문가 양성 및 관련산업 진흥, 식자재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등 우수식품 관리,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개정

○ **(술 품질인증)** 술 품질인증제 시행, 전통 주류의 품질관리로 국산 주류의 양조기술 및 품질향상, 우리 술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 **(농산물 규격화)** 농산물 표준규격화 관리로 소비지 농산물 쓰레기 발생 방지 및 농산물 물류표준화로 유통비용 절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제도 운영 및 농업인 교육, 소비자 홍보, 인증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인증품 생산·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우수식품의 전통적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인증기준으로 인증품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사후관리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 관리 ○술 품질인증제 시행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산 주류의 양조기술 및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 ○농산물의 통일된 기준에 맞도록 선별·포장하여 등급 분류, 규격 포장재로 출하토록 하여 상품성 향상 및 유통 효율성 제고
사업기간	'92~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친환경인증) 70천호 (GAP인증) 86천호 (우수식품) KS식품 122개소, 전통식품 627개소, (술품질인증) 127건
지원조건	국비 100%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식품 인증의 생산·유통관리 강화로 인증기준에 적합한 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해 잔류유해물질 분석 사업, 인증기준 등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증기준 위반자 감소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식품의 홍보,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전년대비 △2,075백만원, △14.9%)

구분	'18년도	'19년도	증감	증감(%)
친환경인증관리	3,631	4,049	418	11.5
GAP 및 이력관리제도	6,163	3,846	△2,317	△37.6
우수식품 인증	2,787	2,690	△97	△3.5
술품질인증	942	900	△42	△4.5
농산물규격화	399	362	△37	△9.3
계	13,922	11,847	△2,075	△14.9

□ 친환경농산물인증 : (`18)3,631백만원 → (`19)4,049 (증 418, 11.5%)

○ 인건비 : (`18) 85백만원 → (`19) 93 (증 8)

- 동등성인정 등 근로자 인건비: 1,745,150천원×4명×12개월=843,767천원
- 동등성인정 등 근로자 상여금: 800,000원×4명=3,200천원
- 동등성인정 등 근로자 정액급식비: 130,000원×4명×12개월=6,240천원

○ 운영비 : (`18) 1,261백만원 → (`19) 1,764 (증 503)

- 일반수용비 : (`18) 960백만원 → **(`19) 1,343 (증 383)**
  - 친환경인증 의무교육 교재 제작 35,000부×8,400원=294,000천원
  - 친환경인증 의무교육 문자안내 등 운영비 125개소×456천원=57,000천원
  -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 사후관리 125개소×5회×339천원=211,875천원
  - 친환경인증 제도 규정집 등 제작 125개소×1,728천원=216,000천원
  - 친환경인증 시료구입 등 125개소×2,112천원=264,000천원
  - 친환경축산물 안전성검사 수수료 1,250건×240천원=300,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 : (`18) 65백만원 → **(`19) 86 (증 21)**
  - 친환경인증 현장점검용 기기 요금 159대×45천원×12개월=85,800천원
- 특근매식비 : (`18) 9백만원 → **(`19) 9 (변동없음)**

- 친환경인증업무 근로자 특근매식비 6천원×3명×4일×12=86,400천원

▪ 임차료: (`18) 25백만원 → (`19) 25 (변동없음)

- 친환경농산물 선도 및 우수농장 체험행사 차량 임차 50회×500천원=25,000천원

▪ 재료비 : (`18) 101백만원 → (`19) 101 (변동없음)

- 친환경농산물 시료구입비 4,000건×12천원=48,000천원
- 친환경축산물 시료구입비 1,250건×15천원=18,750천원
- 친환경유기농자재 시료구입비 500건×15천원=7,500천원
- 친환경지구조성사업 분석재료비 175건×150천원=26,250천원

▪ 복리후생비 : (`18) - → (`19) 1 (순증)

- 동등성인정 무기직근로자 복지포인트 4명×400천원=1,600천원

▪ 시험연구비 : (`18) 50백만원 → (`19) 50 (변동없음)

- 유기식품 등 기준설정 연구 1개과제×50,000천원=50,000천원

▪ 일반용역비: (`18) - → (`19) 98 (순증)

- 친환경 의무교육 사이버컨텐츠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98백만원

▪ 관리용역비: (`18) 50 → (`19) 50 (변동없음)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유지·보수 50백만원

▪ 기타운영비 : (`18) 1 → (`19) 1 (변동없음)

- 친환경인증 업무 우수직원 격려 100천원×10명=1,000천원

○ 여비 : (`18) 177백만원 → (`19) 170 (△ 7)

▪ 국내여비 : (`18) 92백만원 → (`19) 91 (△ 1)

-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여비 126개소×720천원=90,742천원

▪ 국외여비 : (`18) 85백만원 → (`19) 79 (△ 6)

- 해외유기농장 및 인증기관 점검, 동등성 협정, CODEX회의 3,950천원×20명=79,000천원

○ 업무추진비 : (`18) 14백만원 → (`19) 14 (변동없음)

- 친환경농산물 농가 간담회 (30천원×10개소×24명×2회)-479,000=13,921천원

○ 일반용역비 : (`18) 150 → (`18요구) 150 (변동없음)

- 상호 동등성 인정 국가별 대응지원 및 유기식품인증제도 국제화연구비 150백만원

○ 민간이전 : (`18) 1,944백만원 → (`19) 1,857 (△ 87)

▪ 민간경상보조 : (`18) 1,230백만원 → (`19) 1,140 (△ 90)

* 유기가공식품인증 활성화 지원 350백만원

- 중소 제조업체 판로 개척 20,000천원×10개 업체=200백만원

-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 지원 50,000천원×3회=15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690백만원

- 친환경인증기관 활성화 지원 10,000천원×34개소=340백만원
- 인증심사원 교육, 생산관리자 위탁교육 등 70천원×5,000명=350백만원

* 친환경 인증기관 등급제 신설에 따른 평가(62개기관) 10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 **(`18) 700백만원 → (`19) 700 (변동없음)**

-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분석 : 4,000건×150천원=600,000천원
-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위탁분석비: 800,000원×125건=100,000천원

▪ 고용부담금 : **(`18) 14백만원 → (`19) 17 (증 3)**

- 동등성 상용근로자 보험금 (93,207,200원×10.4%)=9,694천원
- 동등성 상용근로자 퇴직금 (93,207,200원×8.33%=7,764천원

□ **GAP 및 이력추적관리 : (`18) 6,163백만원 → (`19) 3,846 (△2,317, △37.6%)**

○ **운영비 : (`18) 426백만원 → (`19) 426 (변동없음)**

▪ 일반수용비 : (`18) 380백만원 → **(`19) 380 (변동없음)**

-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홍보 126개소×1,936천원=244백만원
- GAP인증농가 등 교육 및 교재제작 126개소×1,079천원=136백만원

▪ 특근매식비 : (`18) 9백만원 → **(`19) 9 (변동없음)**

- 친환경인증업무 근로자 특근매식비 6천원×3명×4일×12=86,400천원

▪ 임차료 : (`18) 31백만원 → **(`19) 31 (변동없음)**

- GAP농산물 우수농장 체험행사 차량 및 회의장 임차 50회×620천원=31,000천원

▪ 재료비 : (`18) 6백만원 → **(`19) 6 (변동없음)**

- GAP인증 농산물 시료구입비 600점×10천원=6,000천원

▪ 기타운영비 : (`18) 1백만원 → **(`19) 1 (변동없음)**

- GAP인증업무 우수직원 시상 11명×100천원=1,100천원

○ **여비 : (`18) 107백만원 → (`19) 104 (△3)**

▪ 국내여비 : (`18) 83백만원 → **(`19) 82 (△1)**

- GAP농산물 사후관리 여비 126개소×646천원=81,347천원

▪ 국외여비 : (`18) 24백만원 → **(`19) 22 (△2)**

- GAP인증 해외인증기관 등 자료조사 6명×3,950천원=22,261천원

○ **민간이전 : (`18) 3,630백만원 → (`19) 3,316 (△ 314)**

▪ 민간경상보조 : (`18) 3,180백만원 → **(`19) 3,016 (△164)**

* GAP 인증기관 운영비 지원 (`18) 1,910백만원 → (`19) 1,910 (변동없음)
- 37,450천원×51개소= 1,910,000천원

* GAP 생산여건 조성사업 (`18) 500백만원 → (`19) 350 (△150)
- 인증농가 컨설팅 90,000원×3,900농가=350,000천원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활성화 지원(`18) 770백만원 → (`19) 756 (△14)
-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GAP인증 농산물 기획 판매전, 언론 홍보 등

* GAP 인증 심사원 및 양성자 교육 (`18) 450백만원 → (`19) 300 (△150)
- 우수관리시설관리자, 생산관리자, 유통업체, 심사원 등 교육

○ 자치단체이전 : (`18) 2,000백만원 → (`19) - (순감)

▪ 자치단체경상보조 : (`18) 2,000백만원 → (`19) - (순감)

□ 우수식품인증 : (`18) 2,787백만원 → (`19)2,690 (△ 97, △3.5%)

○ 인건비 : (`18) 57백만원 → (`19) 63 (증 6)

▪ 우수식품분석보조원 인건비 3명×8,350원×209시간×12월=62,825천원

○ 운영비 : (`18) 999백만원 → (`19) 999 (변동없음)

▪ 일반수용비 : (`18) 493백만원 → (`19) 493 (변동없음)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분석시료 운송료: 5천원×50개소×60건=15,000천원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심의위원 수당: 100천원×10명×9회×2개소=18,000천원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홍보: 2,621,100원×10개소=26,211천원
- 우수식품 표준규격집, 사후관리메뉴얼, 교육교재 제작 (20천원×2,500부×2종)+12,000천원=112,000천원
- 우수식품 전시회 및 홍보 (26,371천원×3회)+(3,000천원×2회×6종)=115,113천원
- 우수식재료 품질규격 책자 제작 및 홍보: 11천원×10,000매=110,000천원
- 학교급식 식재료 분석시료 운송료 6천원×30개소×10품목×15회=25,000천원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교육교재 제작: 15천원×60개소×50명=45,000천원
- 우수식품 전문교육, 강사료, 식품안정성 검사 수수료, KS시료 구입 14,400천원
- 인증관련 업무 법률자문 등 수수료 500천원×25건=12,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18) 90백만원 → (`19) 90 (변동없음)
- 우수식품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비 : 90,000천원

▪ 재료비 : (`18) 375백만원 → (`19) 375 (변동없음)
- 우수식품 사후관리용 시료구입비 및 분석재료비 900건×342천원=308,200천원
- 학교급식식재료 안전관리 시료구입비 7,500건×7.5천원=56,000천원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안전관리 시료구입비 1,500건×7.5천원=11,000천원

▪ 시험연구비 : (`18) 40백만원 → (`19) 40 (변동없음)
- 우수식품 오염도조사 분석법 연구 : 1개과제×40,000천원=40,000천원

▪ 기타운영비 : (`18) 1백만원 → (`19) 1 (변동없음)
- 우수식품업무추진 우수직원 시상 : 11명×100천원=1,100천원

○ 여비 : (`18) 117백만원 → (`19) 113 (△ 4)

▪ 국내여비 : (`18) 94백만원 → (`19) 92 (△ 2)
- 우수식품 사후관리 여비 : 126개소×727천원=91,644천원

▪ 국외여비 : (`18) 23백만원 → (`19) 21 (△ 2)
- CODEX회의참석, 우수식품인증기관사후관리점검 : 2,879천원×8명=21,241천원

○ 민간이전 : (`18) 1,496백만원 → (`19) 1,396 (△100)

▪ 민간경상보조 : (`18) 100백만원 → (`19) - (순감)
- 김치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 지원 사업 (`18) 50,000천원 → (`19) - (순감)
- 김치교육훈련기관 교육 지원 사업 (`18) 50,000천원 → (`19) - (순감)

▪ 민간위탁사업비 : (`18) 1,390백만원 → (`19) 1,390 (변동없음)
- 식재료우수관리업체 안전성검사 100개소×200천원×17건=340,000천원(변동없음)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위탁사업비: 4,500건×200천원=800,000천원(변동없음)
- 전통식품 표준규격 재개정: 10건×25,000천원=250,000천원(변동없음)

▪ 고용부담금 : (`18) 6백만원 → (`19) 7 (증 1)
- 우수식품분석보조원 고용부담금 62,825천원×10.4%=6,534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8) 118백만원 → ('19) 118 (변동없음)

▪ 식품첨가물 분석장비 구입: 100,000천원×1대=100,000천원

▪ 용적중 곡립계 : (1,530,000*(12대)+120,000원=18,480천원

□ 술 품질인증 : (`18) 942백만원 → (`19) 900 (△ 42, △4.5%)

○ 운영비 : (`18) 231백만원 → (`19) 231 (변동없음)

▪ 일반수용비 : (`18) 174백만원 → (`19) 174 (변동없음)
- 술 품질인증 사후관리 매뉴얼, 교육교재 등 : 126개소×191천원=24,059천원
- 술 품질인증 교육·홍보비 : 126개소×1,190천원=15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8) 18백만원 → (`19) 18 (변동없음)
- 술 품질인증 시험분석용 전기료 등: 1개소×18,588천원=18,588천원

▪ 특근매식비 : (`18) 6백만원 → (`19) 6 (변동없음)
- 술 품질인증 분석담당자 특근매식비 : 6,000원×80일×12개월=5,760천원

▪ 재료비 : (`18) 32백만원 → (`19) 32 (변동없음)

- 술 품질인증 시료구입 및 분석소모품 구입 : 150건×213천원=32,000천원

▪ 기타운영비 : (`18) 1백만원 → (`19) 1 (변동없음)

- 술 품질인증 업무추진 우수직원 시상 : 11명×100천원=1,100천원

○ 여비 : (`18) 75백만원 → (`19) 73 (△2)

▪ 국내여비 : (`18) 65백만원 → (`19) 64 (△1)

- 술 품질인증 조사 및 사후관리 여비 : 126개소×508천원=64,028천원

▪ 국외여비 : (`18) 10백만원 → (`19) 9 (△1)

- 해외 술 규격 및 인증현황 등 조사 : 3명×2,941천원=8,824천원

○ 업무추진비 : (`18) 6백만원 → (`19) 6 (변동없음)

- 술 기준설정 관계기관 및 인증기관 협의회 : 4회×1,375천원=5,500천원

○ 민간이전 : (`18) 480백만원 → (`19) 440 (△ 40)

▪ 민간경상보조 : (`18) 480백만원 → (`19) 440 (△ 40)

- 우리술 교육훈련 교육지원 사업 : 930명×400천원×70%=260,000천원
-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지원 사업 : 100명×2,000천원×70%=140,000천원
- 우리술 품질인증 신청 지원사업

(1,600천원×20개소×50%)+(1,600천원×21개소×70%)=40,000천원

○ 유형자산 : (`18) 150백만원 → (`19) 150 (변동없음)

▪ 자산취득비: (`18) 150백만원 → (`19) 150 (변동없음)

- 술 품질인증품 분석용 장비 구입 : 10대×150,000천원=150,000천원

□ 농산물 표준규격관리 : (`18) 399백만원 → (`19)362 (△ 37, △9.3%)

○ 운영비 : (`18) 277백만원 → (`19) 242 (△ 35, △12.6%)

▪ 일반수용비 : (`18) 149백만원 → (`19) 149 (변동없음)

- 표준규격담당자 교육교재 등 : 126개소×1,181천원=148,801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8) 21백만원 → (`19) - (△21)

- 친환경인증 내역사업으로 사용 내역 변경

▪ 피복비 : (`18) 9백만원 → (`19) 9 (변동없음)

- 품질규격품 등 사후관리 방한복 : 125개소×74천원=9,180천원

▪ 특근매식비 : (`18) 14백만원 → (`19) 14 (변동없음)

- 농산물 규격업무 특근매식비 : 6천원×38명×5일×12월=13,700천원

▪ 연료비 : (`18) 14백만원 → (`19) - (△14)

- 친환경인증 내역사업으로 사용 내역 변경

▪ 시설장비유지비 : (`18) 15백만원 → (`19) 15 (변동없음)

- 표준규격시험장비 유지보수비 : 23대×263천원=6,049천원
- 표준규격품 사후관리 장비 유지보수비 : 25개소×180천원×2종=9,000천원

▪ 재료비 : (`18) 55백만원 → (`19) 55 (변동없음)

- 표준규격농산물 유통활성화 교육시료 : 60종×53천원×3회=9,450천원
- 표준규격조사 공시료 구입 등 : 100종×152천원×3회=45,550천원

○ 여비 : (`18) 53백만원 → (`19) 53 (변동없음)

▪ 국내여비 : (`18) 42백만원 → (`19) 41 (△ 1)

- 농산물 표준규격 사후관리 여비 : 126개소×330천원=41,564천원

▪ 국외여비 : (`18) 10백만원 → (`19) 10 (변동없음)

- 포장유통농산물 의무표시도입 자료조사 : 5,079천원×2명=10,159천원

○ 업무추진비 : (`18) 1백만원 → (`19) 1 (변동없음)

▪ 기획제도 분과위원회 운영경비 : 2회×385천원=770천원

○ 유형자산 : (`18) 68백만원 → (`19) 68 (변동없음)

▪ 자산취득비: (`18) 68백만원 → (`19) 68

- 표준규격 조사용 장비구입 64대×271천원×4종=68,000천원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요구 내용 >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 예산
□ 친환경우수 농식품인증	**13,922백만원**	**11,847백만원**
①친환경인증관리	**3,631백만원** · 무기직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99 (85=4명×(1,574천원+130천원)×12월+4명×800천원) (14=(75,541천원×10.1%)+(75,541천원/12개월) · 친환경인증 사후관리 및 위탁분석 등 2,302 (2,302=125개소×18,416천원) · 친환경인증활성화 및 심사원 등 교육 750 (630=2천건×170천원+133대×451천원+3,200명×73천원) (120=300부×400천원) · 친환경인증기관 등급 평가 100 (100=62개기관×1,613천원) · 유기가공식품 활성화사업 380	**4,049백만원** · 무기직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110 (93=4명×(1,745천원+130천원)×12월+4명×800천원) (17=93,207천원×18.73%) · 친환경인증 사후관리 및 위탁분석 등 2,350 (2,350=125개소×18,800천원) · 친환경인증활성화 및 심사원 등 교육 690 (690=2천건×170천원+133대×451천원+4,000명×73천원) · 친환경인증기관 등급 평가 100 (100=62개기관×1,613천원) · 유기가공식품 활성화사업 350

	(380=40개소×5백만+12개소×100.6백만원)	(350=20,000천원×10개소+50,000천원×3회) · 친환경인증농가 의무교육 교재제작 등 351 (294=35,000부×8,400원) (57=20,000명×1,500원+35,000명×400원 +105천원×125개소) · 친환경인증의무교육 사이버컨텐츠제작 등 98
②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6,163백만원**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533 (533=125개소×4,264천원) · GAP인증 활성화 사업 1,720 (1,720=5,500농가×313천원) · GAP인증기관 운영비 지원 1,910 (1,910=46개소×41,500천원) ·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2,000 (2,000=2,000농가×1.430천원)	**3,846백만원**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530 (530=125개소×4,264천원) · GAP인증 활성화 사업 1,406 (1,406=5,000농가×281천원) · GAP인증기관 운영비 지원 1,910 (1,910=46개소×41,500천원)
③우수식품 인증	**2,787백만원** · 우수식재료 및 학교급식 사후관리 등 2,347 (2,437=125개소×19,496천원) · 전통식품 규격 연구용역 사업 250 (250=10품목×25백만원) · 김치교육훈련기관 등 교육지원 100 (100=5천명×14천원×70%+35명×2,000천원×70%)	**2,690백만원** · 우수식재료 및 학교급식 사후관리 등 2,440 (2,440=125개소×19,520천원) · 전통식품 규격 연구용역 사업 250 (250=10품목×25백만원)
④술 품질인증	**942백만원** · 술 품질인증제 사후관리 등 운영비 462 (462=125개소×3,696천원) · 전통주교육훈련기관 등 교육지원 440 (440=1,070명×400천원×70%+100명×2,000천원×70%) · 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 40 (40=20개소×1,600천원×50%+21개소×1,600천원×70%)	**900백만원** · 술 품질인증제 사후관리 등 운영비 460 (460=125개소×3,680천원) · 전통주교육훈련기관 등 교육지원 400 (400=930명×400천원×70%+100명×2,000천원×70%) · 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 40 (40=20개소×1,600천원×50%+21개소×1,600천원×70%)
⑤농산물표준규격	**399백만원** · 표준규격품 조사 및 유통관리 운영비 399 (399=125개소×3,192천원)	**362백만원** · 표준규격품 조사 및 유통관리 운영비 362 (362=125개소×2,896천원)

□ 지원 필요성

○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품질, 위생 및 안전성 등이 확보된 믿을 수 있는 인증 농식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식품인증품(친환경농산물, GAP, 우수식품, 술)의 관리를 위해 민간기관 활성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2,899	13,922	11,847	△2,075	△14.9
▪ 친환경인증관리	3,154	3,631 (120개소×30.26백만원)	4,049 (126개소×32.13백만원)	418	11.5
▪ GAP인증 및 이력추적제	5,630	6,163 (120개소×51.36백만원)	3,846 (126개소×30.52백만원)	△2,317	△37.6
▪ 우수식품인증	2,774	2,787 (120개소×23.22백만원)	2,690 (126개소×21.35백만원)	△97	△3.5
▪ 술 품질인증	942	942 (120개소×7.85백만원)	900 (126개소×7.14백만원)	△42	△4.5
▪ 농산물규격화	399	399 (120개소×3.33백만원)	362 (126개소×2.87백만원)	△37	△9.3
□ 비목(합계)	12,899	13,922	11,847	△2,075	△14.9
○ 상용인금(110-03)	-	85	93	8	9.4
○ 일용임금(110-04)	111	57	63	6	10.5
○ 일반수용비(210-01)	1,693	2,156	2,539	383	17.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3	104	104	-	-
○ 피복비(210-03)	9	10	10	-	-
○ 특근매식비(210-05)	36	37	37	-	-
○ 임차료(210-07)	72	56	56	-	-
○ 유류비(210-08)	12	14	-	△14	순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1	105	105	-	-
○ 재료비(210-11)	455	569	569	-	-
○ 복리후생비(210-12)	-	-	2	2	순증
○ 시험연구비(210-13)	90	90	90	-	-
○ 일반용역비(210-14)	437	-	98	98	순증
○ 관리용역비(210-15)	-	50	50	-	-
○ 기타운영비(210-16)	2	4	4	-	-
○ 국내여비(220-01)	382	377	369	△8	△2.1
○ 국외여비(220-02)	145	151	141	△10	△6.6
○ 사업추진비(240-01)	21	20	20	-	-
○ 일반연구비(260-01)	-	150	150	-	-
○ 민간경상보조(320-01)	4,884	5,440	4,896	△544	△1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078	2,090	2,090	-	-
○ 고용부담금(320-09)	11	20	24	4	2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000	2,000	-	△2,000	순감
○ 자산취득비(430-01)	337	337	337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장 제1절 제5조(표준규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장 제6절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절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절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절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장 제110조(자금지원)**

▷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6조(우수식품인증의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김치산업진흥법 제11조(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김치산업진흥법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품질인증인증기관의 지원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92년부터 (계속)
- 추진배경 : 친환경, GAP, 우수식품, 술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농산물의 등급화·포장화 촉진으로 유통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원
- '92. 7. 1 : 품질인증제 및 농산물표준규격화 실시
- '93. 6.11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93. 7. 5 : 농산물표준규격 제·개정 등 담당
- '93. 12.1 :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 품질인증 실시
- '95. 9.19 : 축산물품질인증 실시
- '96. 3.28 : 저농약재배 농산물 품질인증 실시
- '98. 11.6 :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실시
- '98.12.14 : 환경농업육성법시행(환경농산물 품질관리 실시)
- '99. 7. 1 : 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
- '00. 7. 1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친환경농산물 인증 시행)
- '02. 1. 1 : 포장재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전담(시·군에서 이관)

- ’07. 3.28 : 무항생제축산물・재포장자 인증 시행
- ’08. 3.21 : 우수식품(KS/전통/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및 사후관리 실시
- ’09. 1. 1 : 친환경축산물 직불제 도입
- ’10. 1. 1 :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09.4월 법 개정, 기존 인증은 ’15.12.31까지 유지)
- ’10. 8 5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술 품질인증제 실시
- ’11. 9. 6 :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등 관리 시행
- ’12. 1.22 : 김치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김치산업진흥법)
- ’12. 5.23 :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쌀가공산업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12. 6. 1 : 비식용유기가공품인증, 재포장자 인증 의무화, 해외 국가와의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등에 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
  * 법명 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12. 5.23 :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쌀가공산업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13. 5.7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지원(농식품부-교육부 MOU 체결)
- ’16. 1.21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란 법률 시행(차문화의 교육지원)
- ’16. 7.12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친환경공시자재 관리를 농진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01	122	132	132	130	13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사유: 집행잔액

○ ’16년 불용사유: 집행잔액

○ ’17년 불용사유: 집행잔액

○ ’17년 이월사유: 위탁사업 미완료로 이월액 발생(105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162 (13,162)	- ( )	 ( )	13,162 (13,162)	12,964 (12,964)	 ( )	198 (198)
’16년	13,160 (13,160)	- ( )	- ( )	13,160 (13,160)	12,895 (12,895)	167 (167)	98 (98)
’17년	13,020 (13,020)	167 (167)	 ( )	13,187 (13,187)	12,899 (12,899)	105 (105)	183 (18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6회계연도 예결위 지적사항: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적사항)**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및 인증비리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인증기관 평가지표의 개선, 등급제도 실효성제고, 인증체계 일원화 등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조치사항)** 인증기관 관리 및 인증기관 평가에 대한 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 중

① 부실 인증 방지를 위한 인증심사원 등 요건 강화

* 인증심사원 1인당 관리농가수 단계적 축소 및 비상근 심사원제의 폐지
* 1인당 관리농가수: (현행)400명→('21.) 300

② 친환경 인증농가 연중 상시 점검 등 관리 강화

* 2중 점검(인증기관-농관원, 6%→10) / 현장 모니터링(30%→40)

③ 등급제 평가지표 개선 및 실효성 제고

- 인증기관의 경제성(양적) 척도인 인증건수, 인증사업자 수, 전년도 매출액의 배점 비중을 낮추고 인증기관의 책임성(질적) 척도인 사후관리 빈도에 대한 배점 높여 인증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 인증건수: (기존) 5점 → (개정) 4점/ 인증사업자수: (기존) 5점 → (개정) 4점
  매출액: (기존) 5점 → (개정) 4점/ 인증사업자 점검: (기존) 7점 → (개정) 10점
*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친환경인증기관 62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및 인증기관 등급 결정 추진 중
* 우수인증기관 실질적인 지원 강화하고 하위 등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3회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 2017회계연도 상임위 지적사항

- **(지적사항)**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에서 인증기관 임직원의 자기인증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인증기관 임직원의 자기인증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친환경인증: ('13) 10개 인증기관 임직원 13명 17건 자가인증, ('16) 1개 인증기관 임원 1명 자가인증
* GAP인증: ('13) 3개 인증기관 임원 3명 4건 자가인증[1)]

[1)] 2014.9월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개정을 통해 인증기관 임직원의 자기 인증 금지 규정 신설

- **(조치사항)** 인증기관 지정기준(농관원 고시) 개정 중(규제·법제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중)

현 행	개 정 안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2)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2)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인증기관의 임직원, 주주, 인증심사원 등의 자기 인증 금지)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정: 임직원·주주·인증심사원 등의 자기인증 금지
** 인증기관의 인증심사과정 참여 횟수 확대: 연 1회 → 2회(비상근심사원 우선)
*** 인증기관 등급평가 결과 '미흡' 기관 사후관리 강화: 연 1회 → 2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수행>

< 친환경 농산물 인증 >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계획 시달	수시	본원	· 인증관리 절차 및 세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달
⇓			
인증심사 및 승인	수시	지원·사무소 ·인증기관	· 친환경인증 신청인의 제출서류 및 생산과정에 대한 적합성 확인 이후 적부 판정
⇓			
인증 사후관리	수시	지원·사무소	· 사후관리 자체 계획 수립 및 인증품 생산 유통과정 조사 실시

< 민간인증기관 지정 체계 >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지침	수시	본원	· 민간인증기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 민간인증기관 지정 신청 및 접수
⇓			
심사 및 승인	수시	본원	·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현장 심사 이후 지정서 발급

⇓			
사후관리	수시	본원 및 지원	· 연 1회 이상 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여부 점검 · 인증심사나 방법 절차의 적정성 확인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조치

< GAP 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수시	본원	· 인증관리 절차 및 세부 운영 규정 마련 및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달
⇓			
인증심사 및 승인	수시	지원·사무소·인증기관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의한 심사 및 생산과정부터 판매과정에 대한 적합성 확인
⇓			
인증 사후관리	수시	지원·사무소	· 유통,판매과정의 인증품에 대하여 표시사항의 적정성, 비인증품의 혼입여부 점검 및 인증사업자의 작업장 방문표시사항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우수식품 관리 사후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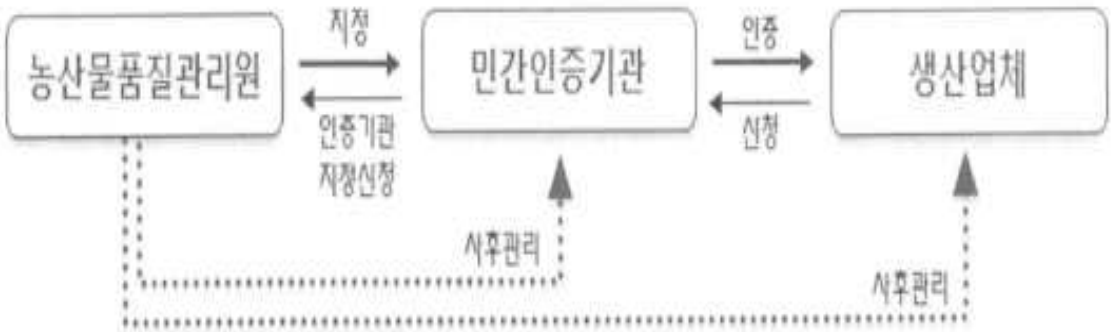

< 술 품질인증 관리 >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수시	본원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기관 지원 사업지침 마련 및 술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수립 · 술 품질인증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			
인증심사 및 승인	수시	인증기관	· 신청서류 확인,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제품심사의 과정을 거쳐 인증
⇓			
인증 사후관리	수시	본원·지원·사무소	·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시판품조사 연2회, 인증업체별 현장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 농산물 표준규격 관리 >

구분	규격조사(SR)	규격 제·개정(SE)	규격관리(SM)
기능	생산, 유통, 소비실태 조사	포장, 등급기준 설정	산지, 도매시장, 유통업체 지도점검 및 홍보
담당	농관원 (본원 · 시험연구소)	농관원 (본원·시험연구소)	농관원 (지원 · 사무소)

제·개정(고시)

규격(안) 작성	○ 규격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반영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상정	○ 기획·제도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규격 확정 및 고시	○ 홈페이지 고시 및 규격집 제작 배부

<보조사업 수행>

◦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과정	시기	주요내용
① 사업계획 시달	(1~2월)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통보 (농관원→보조사업자)
⇓		
② 인증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보고	(3~4월)	· 인증활성화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보고 (보조사업자→농관원)
⇓		
③ 인증활성화 사업 계획 승인	(4월)	· 인증활성화 사업 계획 검토 · 승인 (농관원 → 보조사업자)
⇓		
④ 개산급 교부신청	(4월)	· 인증활성화 자금 개산급 교부신청 (보조사업자→농관원)
⇓		
⑤ 개산급 교부결정 및 통지	(4월)	· 인증활성화 자금 개산급 교부결정 · 통지 (농관원→보조사업자)
⇓		
⑥ 보조사업 수행결과 보고	(5~10월)	· 인증활성화 사업 수행결과 보고 (보조사업자→농관원)
⇓		
⑦ 보조금 금액확정(정산) 및 통지	(5~10월)	· 인증활성화 사업비 확정 통보 (농관원→보조사업자)
⇓		
⑧ 정산급 지급요청	(5~10월)	· 인증활성화 사업비 지급요청 (보조사업자→농관원)
⇓		
⑨ 보조금 지급	(5~10월)	· 보조금 지급 (농관원→보조사업자)

참고 1 농식품 인증제도

❑ **농식품 품질 차별화**를 통한 생산자 소득 증대와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유기농, GAP 등 11종의 다양한 인증제 운영**

* 국가 인증마크를 부착한 농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농식품보다 평균 32.9%가 비싸도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10, 소시모)

○ 농식품 인증제는 인증내용에 따라 친환경(4종), 안전성(2종), 품질·특성 인증(5종) 등으로 구분

< 농식품 인증제 현황 >

구분	인증제도명	인증표지	관련 법령	관리기관	도입
친환경 인증	유기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원	'01년
	친환경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원	'08년
	무농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원	'01년
	무항생제			농산물품질관리원	'01년
안전성 인증	GA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원	'06년
	HACCP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	'98년
품질·특성 인증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원	'99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원	'93년
	수산물등 품질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원	'93년
	전통주 품질인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 관리원	'10년
	식품명인 지정		식품산업진흥법	농식품부	'94년
	가공식품 KS		식품산업진흥법 산업표준화법	농산물품질관리원	'86년

* 유기농은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등으로 표시 가능

참고 2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추진배경

○ 살충제 계란('17.8.) 이후 친환경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내실화를 위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수립('17.12.)

○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신규), 인증을 받은 자(보수) **모두** 인증제도 **교육 의무화**

* (현행) 생산관리자에 의한 전달교육 및 인증기관별 자체교육(연 1회 이상) → (개선) 전체 인증농가 대상 집합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모두 포함)

○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인해 추락한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이해도 증진, 환경·안전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인증농가 의무교육 필요**

* 기준위반 등 인증취소 현황 : ('15) 3,223건 → ('16) 2,806 → ('17) 2,592

* 농식품 인증신뢰도 하락(언론보도) : ('16) 71.5% → ('17) 54.5%(△17%)

□ 법적 근거 마련 :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중

○ 친환경농업 단체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8.5.10.) 후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 진행 중

* 부처협의(5.16~5.28) → 입법예고(7.2~8.13) → 규제심사(8월말) → 법제심사 중(11월)

○ **교육 이수 인증기준 신설** 및 **인증신청 구비서류**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추가**(안 제10조, 제16조, 별표3, 별표11)

- **'20. 1. 1.부터** 신규 인증 및 갱신 신청 건부터 **적용**하여, 그 이전에 **교육 완료 되어야 인증 신청이 가능함(부칙 제2조2항 참고-2)**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참고 3 시·도별 친환경인증사업자 현황('17.12.현재)

시도	총계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유기가공식품	비식용 유기 가공품
		유기	무농약	유기	무항생제			
서울	252	4	63	-	7	159	18	1
부산	178	1	99	-	-	68	10	-
대구	335	10	185	-	11	121	8	-
인천	432	60	293	-	35	38	6	-
광주	646	48	522	-	7	57	12	-
대전	138	6	39	-	1	88	4	-
울산	153	5	71	-	56	20	1	-
세종	207	19	121	-	52	9	6	-
경기	7,724	1,143	4,183	8	1,670	569	150	1
강원	3,284	673	1,957	15	518	78	43	-
충북	4,368	956	2,580	7	601	140	84	-
충남	5,110	1,699	2,622	19	577	128	63	2
전북	5,795	1,222	3,578	23	780	133	58	1
전남	28,121	4,741	21,372	11	1,672	198	126	1
경북	6,111	1,006	3,973	4	849	208	71	-
경남	5,996	1,454	3,619	14	640	209	59	1
제주	1,270	332	767	4	94	50	23	-
총계	**70,120**	**13,379**	**46,044**	**105**	**7,570**	**2,273**	**742**	**7**

참고 4 유기농업자재 관리

✍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만든 제품

❑ **(목적)**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자재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 유기농업자재 업무 우리원 이관

○ 공시제품 사후관리 강화와 친환경인증 업무와 통합 관리 목적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원으로 이관('17.1.)

❑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효능·효과 표시 및 미표시 제품으로 구분

* 기존 공시 및 품질인증제로 운영되다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17.6.3.)으로 공시제로 통합되고 품질인증제는 효능·효과 표시 공시제품으로 전환

❑ 공시 절차

공시신청 → **심사(서류,현장,제품)** → **공시 인증서 교부** → **사후관리(생산.유통)**

○ 공시기관(3개소) 및 시험연구기관(45개소)

* [공시기관]유효기간 도래로 갱신지정(3월), [시험연구기관]신규 2개소 지정(3,7월)

❑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 유효기간(3년) 내 2회이상 조사 목표로 제품 전수 조사 및 시판품 조사

○ (농관원)생산·유통 및 시판품 조사, (공시기관)생산·유통조사

참고 5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관리

✍ 유기가공품에 대한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

❑ **(목적)**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유기가공품 인증기준 및 제도의 확립**을 통해 유기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인증종류 및 기준**

○ **(유기가공식품)** 유기원료 95% 이상 사용, 첨가물·가공보조제 최소화

○ **(비식용유기가공품)** 항생제·합성항균제 등 화학물질 사용 금지

* 현재 **양축용 유기사료**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제도 운용, 애완동물용 유기사료 기준 및 제도 마련('17.6월 시행, 기존 제품 표시유예 '18.12.31.)

❑ **사후관리: 유기농축산물의 인증절차 및 제품 사후관리와 동일하게 운용**

○ **(유기가공식품)**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유기식품 관리 및 유해물질 검사

* 농관원 및 인증기관: 생산·유통단계, 식약처: 수입통관단계

○ **(비식용유기가공품)** 우리원에서 양축용 사료에 대한 수입 통관검사 실시

* 착항지: 인천, 평택, 광양, 부산항 / 통관검사 실적('16): 362건, 153억원

❑ **인증현황(업체수)**

○ **유기가공식품:** ('13)419 → ('14)575 → ('15)642 → ('16)730 → ('17)741

* 해외 소재 인증업체: 147건(필리핀 16, 호주 12, 콜롬비아 11, 터키 11 등)

○ **비식용유기가공품:** 8개국 21업체

* 인증업체: 21(한국 5, 중국 10, 독일·터키·이태리·베트남·필리핀·인도 1)

참고 6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 유기식품의 국가 간 교역을 위해 **상대국의 유기식품 인증 원칙과 기준 등이 동등**한 것으로 **검증**되면 **유기로 수입·판매** 가능

❑ **(목표)** 신청국 인증제도 검증 철저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 WTO/SPS·TBT에서 상호 동일한 목적 달성 가능한 경우 제도 간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동등성 인정을 고려하도록 규정

❑ **법적근거 :「친환경농어업법」 제25조(동등성 인정)**

*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양국 간 상호동등성 인정만 가능하며, 동등성 인정 협정 대상은 유기가공식품(1차 농·축산물 제외)으로 한정

❑ **동등성 인정 협정 절차**

신청서 접수 (농관원)	→	동등성 검증 (농관원)	→	기술협의 (농관원)	→	검증결과 보고 (농관원)	→	협정체결 (농식품부)	→	사후관리 (농관원)
구비요건 확인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상호협의		농관원 ↓ 농식품부		협정서 작성·교환		수입품 적정성 조사

❑ **동등성 인정 협정 현황**

○ 협정 체결(2개국): 미국('14.7.1 발효), EU('15.2.1)

○ 협정 진행(9개국): 일본('14.1 신청), 호주('14.1), 칠레('14.1), 뉴질랜드('14.8), 캐나다('14.11), 에콰도르('15.4), 인도('16.2), 터키('16.2), 스위스('16.6)

* 협정 진행국가들은 관련부처 및 대사관을 통해 조속한 협정 진행 요구

참고 7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관리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산물과 농업 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유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 **(목적)**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06년부터 시행

❑ **(대상 품목)**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재배 · 관리한 농산물(축산물 제외)

❑ **인증 절차**

인증 신청 → 심 사 (서류/현장) → 심사관 평가 → 인증서 교부 → 사후 관리 (생산/시판품)

* 인증심사: GAP인증기준 47 항목(필수 24 권장 23)에 따라 서류 및 현장 평가

❑ **인증/지정 현황**

○ 인증농가: ('10) 34천호→('12) 39→('15) 53→('16) 75→('17.) 86→('18.) 86

* '17년 GAP인증 점유비율: 농가수(7.5%), 재배면적(5.6%)

○ 인증기관: ('10) 45개소→('12) 50→('15) 44→('16) 49→('17.) 51→('18.) 55

○ 관리시설: ('10) 565개소→('12) 718→('15) 717→('16) 791→('17.) 827→('18.) 801

❑ **사후 관리**

○ 인증품: (농관원) 연1회 이상 생산 및 시판품 조사 · 성수기 특별 조사, (인증기관) 연 1회 이상 심사대상 농가수 이상 생산과정 조사

○ 우수관리시설: (농관원) 연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인증기관: (농관원) 연1회 지도 · 점검 * 짝수년도 현장심사 입회 점검

❑ **기관별 역할**

○ (농식품부) 사업총괄 운영, (농관원) 교육 · 홍보, 인증기관 · GAP 시설 ·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농진청) GAP기준설정 · 농가 기본교육

○ (인증기관) GAP인증 및 인증농가 사후관리

참고 8 우수식품(전통식품 · KS)제도

✍ **우수식품(전통, KS) 인증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인증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KS식품인증**으로 구분

❑ 목 적

○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우수식품 인증제도 운영

❑ 법적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26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9조, 제20조

❑ 인증 및 사후관리

○ 인증기관: 한국식품연구원

○ 사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대상품목

○ 전통식품 품질인증: 된장, 한과류 등 83개 품목

○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설탕, 간장 등 166개 품목

❑ 인증현황('18.6.)

구 분	계	KS식품	전통식품
인증건수	**752**	125	627
인증업체	**452**	60	392

❑ 우수식품 사후관리

○ 현장조사: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표준규격의 준수 여부 등

○ 시판품조사: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성 여부 및 성분조사

○ 위반자에 대한 조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처분

❑ '18년 업무 추진실적

○ 우수식품 사후관리: 현장조사 780건, 시판품조사 1,041, 행정처분 24

○ 우수식품 품질인증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125명)

○ 전통식품 표준규격화 연구사업: 규격 제정 3품목, 개정12, 폐지3

참고 9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 학교 등 단체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반 구축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의 우수식재료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업체 지정육성

❑ 목 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 농식품 소비를 촉진

❑ 법적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주요 지원내용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등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안전성분석 지원
- 원산지 관리, 종사자 교육 등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홍보

- 우수 농식품 소비촉진 등을 위한 지정업체 홍보
- 우수 식재료 교육·홍보물 제작, 식재료 유통관계자 등 배부

❑ 지정 과정

○ 지정 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심의 위원회	⇨	지정서 교부	⇨	사후관리 지원
(지원)		(지원)		(본원)		(본원)		(지원)

○ 지정 신청

- 신청기간: 연 1회(6월)
- 신청서류: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신청서 등

❑ 업무 추진실적('18.12. 현재)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신규지정: 3개소 / 총 82개소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지원: 1,000건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사후관리 현장점검(연 1회 이상): 82개소

참고 10 술 품질인증 관리

✍ 술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며 전통주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 목 적

○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 법적근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훈련),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제22조(품질인증)

❑ 인증 및 사후관리

○ 인증기관: 한국식품연구원('18.9.28. 재지정) ※'10.12.31. 최초지정

○ 사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대상품목(농식품부 고시, '16.12.)

○ 8개 품목: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인증 현황(113건)

○ 탁주 57, 약주 19, 과실주 8, 증류식소주 23, 일반증류주 5, 기타주류 1

❑ 전통주 등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관리

○ 교육훈련기관(14개소): 막걸리학교, 한국가양주연구소 등

○ 전문인력 양성기관(4개소): 한국식품연구원, 신라대학교 등

❑ 업무 추진실적('18.9. 현재)

○ 술 품질인증 관리: 현장조사 43건, 시판품조사 131

○ 술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40백만원, 21건(신규 14, 연장 7)

○ 술 품질인증기준 개정: 품질기준 중 보존료 삭제에 의한 규제 완화

○ 술 품질인증 홍보 추진: 우리술 대축제 홍보관 운영(11.23~25) 등

○ 교육 지원사업: 교육훈련 300백만원(12개소), 전문인력양성 140(4개소)

참고 11 농산물 표준규격 관리

✍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고르기, 색택, 결점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

❑ 목 적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

❑ 법적 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제30조(사후관리)

❑ 농산물 표준규격 구성

○ 등급규격: 품질수준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

○ 포장규격: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및 표시사항 규정

❑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현황

(단위 : 품목)

구분	계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버섯류	화훼류
등급규격	66	-	11	23	2	5	5	20
포장규격	118	16	16	50	2	5	3	26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표시 구분	표 시 내 용
의무 표시	표준규격품,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 표시	당도 및 산도, 크기구분에 따른 호칭 또는 개수,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영양성분표시

❑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운영(자격증 보유현황: 3,979명)

○ '04년부터 우리원에서 시행, '08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5. 농산물원산지관리(재량, 계속)

< 농어촌구조개선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산물원산지관리	15,591	16,479	17,012	533	3.2

* 사업코드: 20 - 15 - 4 - 100 - 101 - 6000 - 6032

*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조재호), 원산지관리과장(한성권), 사무관(이상욱, ☏ 054-429-415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로 늘어나는 수입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산물·가공품·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와 위반행위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 ○ 지리적 명성이 있는 우수 특산물의 지속적인 발굴·등록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제고 및 생산·유통 활성화 촉진 ○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등급,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포장처리·판매단계별 관리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사업기간	'94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원산지 표시대상 638개 품목, 판매업체 570천개소, 음식점 817천개소, 통신판매업체 11천개소, 특별사법경찰관리 1,110명 및 명예감시원 15천명,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업체 78천개소, 지리적표시 등록 102건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18) 16,479백만원 → ('19) 17,012(증 533)

ㅇ **인건비**: ('18) 2,435백만원 → ('19) 2,664(증 229)
- 원산지 조사원: 1,745,150원×12개월×95명=1,990백만원
- 원산지 검정 보조원: 1,745,150원×12개월×16명=335백만원
- 원산지 검정 연구원: 1,745,150원×12개월×2명=52백만원
- 명절휴가비: 400,000원×113명×2회=90백만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113명×12개월=176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12,525원×15시간×111명)+(15,490원×15시간×2명)=21백만원

ㅇ **운영비**: ('18) 8,246백만원 → ('19) 8,375(증 129)
-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홍보물 제작,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 일반수용비: ('18) 4,203백만원 → ('19) 4,304(증 101)
  * 원산지 관리 업무수행 등 2,847천원×12월×126개소(지원·사무소)=4,304백만원
- 원산지 단속·홍보차량(158대) 자동차세·보험료, 검정장비 전기요금, 부정유통신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18) 659백만원 → ('19) 659(변동 없음)
  * 단속용 자동차세·통신요금 등 5,230천원×126개소(지원·사무소)=659백만원
- 원산지 검정요원 실험복 등 피복비: ('18) 2백만원 → ('19) 2(변동 없음)
  * 원산지 검정요원 실험복 등 63천원×4회×9명=2백만원
- 원산지 검정요원 등 특근매식비: ('18) 65백만원 → ('19) 95(증 30)
  * 원산지 검정요원 등 6천원×250명×5일×12개월=95백만원
- 명예감시원 교육장 등 임차료: ('18) 33백만원 → ('19) 33(변동 없음)
  * 교육장 등 임차료 500천원×66회=33백만원
- 단속·홍보용 차량(158대) 유류비: ('18) 626백만원 → ('19) 473(감 153)
  * 단속·홍보용 차량 유류비 1,556원×160.3ℓ×12월×158대=473백만원
- 원산지 검정장비 유지보수비 및 단속·홍보용 차량(158대)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8) 274백만원 → ('19) 427(증 153)
  * 검정장비 및 단속·홍보용 차량 유지보수비 3,389천원×126개소=427백만원
- 원산지 검정 및 시료·시약 등 재료비: ('18) 1,954백만원 → ('19) 1,832(감 122)
  * 원산지 시료 및 검정시약 등 구입 1,212천원×12개월×126개소=1,832백만원
- 원산지 연구모임 지원 및 보조원 복리후생비: ('18) 3백만원 → ('19) 48(증 45)
  * 원산지 연구모임 활동지원 275천원×10개소=3백만원, 원산지 보조·연구원(공무직) 복지포인트 400천원×113명=45백만원
-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정 시험연구비: ('18) 330백만원 → ('19) 330(변동 없음)
  * 이화학적·유전자 분석 원산지 검정법 등 개발·보정 33백만원×10품목=330백만원
- 업무 대행을 위한 일반용역비: ('18) 87백만원 → ('19) 162(증 75)
  *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조사(20), 원산지 홍보용 영상물 제작(30), MOU 전통시장 평가 용역비(20), 지리적표시 활성화 사업(50), 원산지 표시 관련 용역비 등(42)

- 우수 특사경 격려 등 기타운영비: ('18) 10백만원 → ('19) 10(변동 없음)
  * 원산지 단속 우수 특사경 격려 200천원×50명=10백만원

○ **여비**: ('18) 1,079백만원 → ('19) 1,040(감 39)
-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특사경(1,110명) 교육 등 국내여비: ('18) 1,016백만원 → ('19) 981(감 35)
  * 원산지 단속 조사업무 관련 국내여비 74천원×12월×1,110명=981백만원
- 원산지 검정법 연구용 시료수집 등 국외여비: ('18) 63백만원 → ('19) 59(감 4)
  * 원산지 연구용 시료수집 및 실태조사 2,107천원×4명×7회=59백만원

○ **사업추진비**: ('18) 14백만원 → ('19) 14(변동 없음)
  * 원산지 관리 등 협의회(간담회, 홍보 등) 9천원×12월×126개소=14백만원

○ **특정업무경비**: ('18) 1,339백만원 → ('19) 1,339(변동 없음)
  * 원산지 단속 특사경 수사활동비 100천원×12월×1,110명=1,339백만원

○ **일반연구비**: ('18) -백만원 → ('19) 200(순증)
  * 원산지검정법 유효성 정립 사업비 50백만원×4품목(돼지고기, 쌀, 고춧가루, 마늘)=200백만원

○ **보전금**: ('18) 264백만원 → ('19) 264(변동 없음)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18) 260백만원 → ('19) 260(변동 없음)
  * 원산지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200만원 지급
  * 최근 3개년 포상금 지급건수: ('15) 282건 → ('16) 281 → ('17) 263
- 참고인 출석실비 기타보전금: ('18) 4백만원 → ('19) 4(변동 없음)
  * 원산지 수사 참고인 출석실비 25천원×160명=4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18) 1,033백만원 → ('19) 730(감 303)
-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18) 399백만원 → ('19) 399(변동 없음)
  * 명예감시원 교육 등 참가수당(50천원×6,880명=344백만원)+교육장 임차료(400천원×20회=8백만원)+강사료(200천원×20회=4백만원)+교재비(6천원×6,880명=43)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 지원: ('18) 381백만원 → ('19) 331(감 50)
  * 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 및 지도 50천원×6,615회=331백만원

○ **고용부담금**: ('18) 182백만원 → ('19) 499(증 317)
- 보조원·연구원(공무직) 사회보험료: ('18) 178백만원 → ('19) 277(증 99)
  * 상용임금(2,664백만원)×10.4%=277백만원
- 보조원·연구원(무기직) 퇴직금: ('18) 4백만원 → ('19) 222(증 218)
  * 상용임금(2,664백만원)÷12개월=222백만원

○ **공사비**: ('18) 20백만원 → ('19) 20(변동 없음)
  * 분석장비 확대에 따른 시험실 확장·보수 20,000천원×1개소=20백만원

○ **자산취득비**: ('18) 1,867백만원 → ('19) 1,867(변동 없음)
- 원산지 검정용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구입(15종 25대) 등: ('18) 1,867백만원 → ('19) 1,867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예산 내용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산물원산지관리	**16,479백만원**	**17,012백만원**
▪ 원산지관리	15,479 · 원산지 보조원 인건비 (2,435=113명×12월×1.796백만원) · 원산지 교육·홍보 등 운영비 (7,509=126개소×12월×4.966백만원) · 원산지 단속 등 여비 (922=126개소×12월×0.61백만원) · 원산지 관리 업무추진비 (8=126개소×12월×0.005백만원) · 원산지 특사경 직무수행경비 (1,339=1,110명×12월×0.101백만원) - · 신고 포상금 등 (264=605건×0.436백만원) · 원산지 활성화 민간이전비 -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399=7,980명×0.05백만원)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 지원 (381=7,620명×0.05백만원)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사업 (153=127회×1.205백만원) - 원산지 보조원 고용부담금 (182=113명×12월×0.134백만원) · 원산지 검정실 보수 건설비 (20=1개소×20백만원) · 원산지 검정장비 등 자산취득비 (1,867=126개소×12월×1.235백만원)	16,068 · 원산지 보조원 인건비 (2,664=113명×12월×1.965백만원) · 원산지 교육·홍보 등 운영비 (7,594=126개소×12월×5.022백만원) · 원산지 단속 등 여비 (883=126개소×12월×0.584백만원) · 원산지 관리 업무추진비 (8=126개소×12월×0.005백만원) · 원산지 특사경 직무수행경비 (1,339=1,110명×12월×0.101백만원) · 원산지검정법 일반연구비 (200=4품목×50백만원) · 신고 포상금 등 (264=605건×0.436백만원) · 원산지 활성화 민간이전비 -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399=7,980명×0.05백만원)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 지원 (331=6,620명×0.05백만원) - - 원산지 보조원 고용부담금 (182=113명×12월×0.134백만원) · 원산지 검정실 보수 건설비 (20=1개소×20백만원) · 원산지 검정장비 등 자산취득비 (1,867=126개소×12월×1.235백만원)
▪ 지리적표시등록관리	254 · 지리적표시 교육·홍보 등 운영비 (113=126개소×12월×0.075백만원) · 지리적표시 사후관리 여비 (35=126개소×12월×0.023백만원) · 지리적표시 등록 업무추진비 (6=1개소×10회×0.6백만원) · 지리적표시 활성화 민간이전비 (100=5단체×2부문×10백만원)	198 · 지리적표시 교육·홍보 등 운영비 (157=126개소×12월×0.104백만원) · 지리적표시 사후관리 여비 (35=126개소×12월×0.023백만원) · 지리적표시 등록 업무추진비 (6=1개소×10회×0.6백만원) -
▪ 축산물이력관리	746 · 축산물이력 교육·홍보 등 운영비 (624=126개소×12월×0.413백만원) · 축산물이력 사후관리 여비 (122=126개소×12월×0.081백만원)	746 · 축산물이력 교육·홍보 등 운영비 (624=126개소×12월×0.413백만원) · 축산물이력 사후관리 여비 (122=126개소×12월×0.081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쌀 관세화 및 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의 원산지 관리 강화 요구

- 저가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단속 및 대국민 홍보 필요
- 소비행태 변화로 인터넷·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농식품 거래 증가로 원산지 표시 관리 필요성 증대
  * 농축산물 수입물량: ('14) 33,854천톤 → ('15) 34,244 → ('16) 34,832 → ('17) 34,624

○ 현장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법의 개발 및 종전 검정법의 DB 구축·보정 필요성 증대

- 원산지검정법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법적 증거능력 보강을 위하여 원산지 검정법 유효성 정립 검증·평가 지원 필요
  * 검정법 개발 현황: ('95) 7품목 → ('13) 111 → ('15) 123 → ('18) 134
  * 보정·검증 현황: ('15) 123품목 → ('16) 129 → ('17) 134 → ('18) 67
  * 검정법 활용 실적('18.11.): 2,393건(농관원 1,993, 지자체 386, 경찰 13, 검찰청 1)

<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산물원산지관리**	**15,591**	**16,479**	**17,012**	**533**	**3.2**
▪ 원산지관리	14,422	**15,479** (126개소×12월×10.24백만원)	**16,068** (126개소×12월×10.63백만원)	**589**	**3.8**
▪ 지리적표시등록관리	467	**254** (126개소×12월×0.17백만원)	**198** (126개소×12월×0.13백만원)	**△56**	**△22.0**
▪ 축산물이력관리	702	**746** (126개소×12월×0.50백만원)	**746** (126개소×12월×0.49백만원)	**-**	**-**
□ **비목**(합계)	**15,591**	**16,479**	**17,012**	**533**	**3.2**
○ 상용임금(110-03)	1,740	2,435	2,664	229	9.4
○ 일반수용비(210-01)	4,475	4,203	4,304	101	2.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86	659	659	-	-
○ 피복비(210-03)	2	2	2	-	-
○ 특근매식비(210-05)	53	65	95	30	46.2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임차료(210-07)	50	33	33	-	-
○ 유류비(210-08)	517	626	473	△153	△24.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26	274	427	153	55.8
○ 재료비(210-11)	1,408	1,954	1,832	△122	△6.2
○ 복리후생비(210-12)	-	3	48	45	1,500.0
○ 시험연구비(210-13)	330	330	330	-	-
○ 일반용역비(210-14)	58	87	162	75	86.2
○ 기타운영비(210-16)	17	10	10	-	-
○ 국내여비(220-01)	1,033	1,016	981	△35	△3.4
○ 국외업무여비(220-02)	64	63	59	△4	△6.3
○ 사업추진비(240-01)	14	14	14	-	-
○ 특정업무경비(250-03)	1,334	1,339	1,339	-	-
○ 일반연구비(260-01)	-	-	200	200	순증
○ 배상금(310-02)	13	-	-	-	-
○ 포상금(310-03)	173	260	260	-	-
○ 기타보전금(310-04)	1	4	4	-	-
○ 민간경상보조(320-01)	1,182	1,033	730	△303	△29.3
○ 고용부담금(320-09)	180	182	499	317	174.2
○ 공사비(420-03)	19	20	20	-	-
○ 자산취득비(430-01)	1,716	1,867	1,867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2조
  · 농산물 및 그 가공품(638개 품목) 및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음식점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김치, 콩 등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 제4조, 제32조 내지 제55조
  ·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제 실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제24조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의무화

○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연도: 1994년
- (추진배경)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93.6.11.「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내 유통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 ’97.12.1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원산지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위반사범 직접수사
  · ’99.1.2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리적표시제도 도입
  · ’08.5.22.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시행
  · ’07.12.2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
  * 식육포장처리업자·판매업자의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제 도입 시행
  · ’09.5.8.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제 도입
  · ’10.2.4.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 ’12.12.27. 김치류 고춧가루, 음식점 양고기·배달용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13.12.27.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4.6.3.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15.6.22.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제 도입
  · ’16.5.29.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도입
  · ’16.12.2. 상습 원산지 거짓표시자 형량하한제(1년 이상 징역 등) 도입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산물원산지관리	149	149	153	157	157	16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이월 35백만원(원산지 검정장비 납품 지연), 집행잔액 140백만원 발생

○ '16년: 이월 109백만원(원산지 검정장비 납품 지연), 집행잔액 213백만원 발생

○ '17년: 전용 △9백만원(LMO및농산물표시관리 일용임금으로 전용), 집행잔액 281백만원 발생

(단위: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2.8 (10.3)	- (-)	- (-)	152.8 (10.3)	151.0 (10.2)	0.4 (-)	1.4 (0.1)
'16년	157.0 (10.3)	0.4 (-)	- (-)	157.4 (10.3)	154.2 (10.1)	1.1 (-)	2.1 (0.2)
'17년	157.7 (11.8)	1.1 (-)	△0.1 (-)	158.7 (11.8)	155.9 (11.7)	- (-)	2.8 (0.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기재부) 결과

- 단위사업명: 농산물안전성관리(농특회계, 직접)
- 평가결과 요약: 보통(종합점수 83.25점)

○ '18년 감사원 및 상임위(농해수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구분	지적사항	조치사항
감사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농산물 공매 낙찰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과 연계·활용하여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 계획 수립 방안 마련 필요	· aT의 수입 농산물 공매 낙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하여 원산지 단속에 활용 추진('18.9.)
상임위 (농해수위)	· '15.6.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원산지인증제'의 인증기관 미지정 및 인증실적이 없음	· 법령 보완(인증품 사후관리, 인증대상·기준, 농수산물 혼합 가공품·조리음식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인증기관 조기 지정 및 원산지인증제도 홍보를 추진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EU, 일본 등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

- 최근 일본은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5) 사업추진절차

○ 원산지 단속 및 위반사범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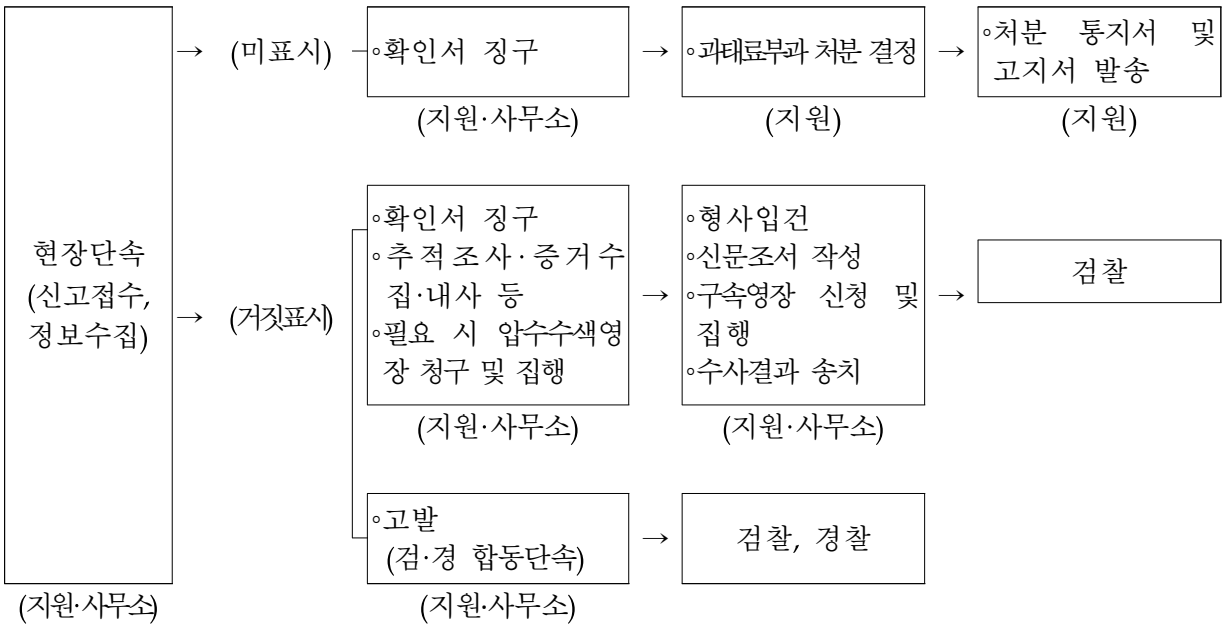

○ 축산물이력제 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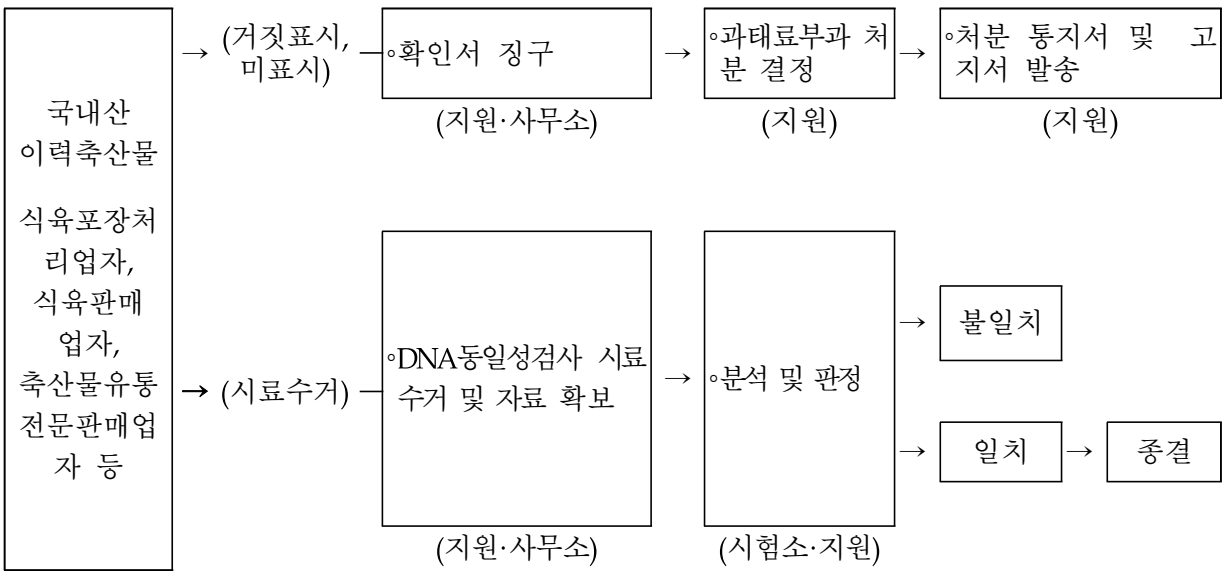

○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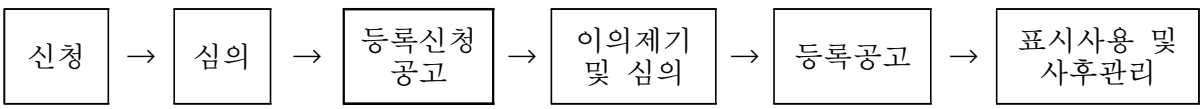

*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 15명(당연직 6, 위촉직 9)

참고 1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

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2의2. 관세청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27. (생략)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53. (생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24. (생략)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50. (생략)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참고2 원산지 표시 관리 현황

□ **목적**: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

□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0.2.4.제정)

* 농산물과 가공품은 '94년부터, 음식점은 '08년부터 시행(「농산물품질관리법」)

□ **대상품목**: 농산물·가공품 638, 음식점 8

구 분	대 상 품 목
농산물, 가공품	- 국산농산물: 220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내가공품: 257개(식품공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 수입농산물·가공품: 161개(HS 4단위 기준)
음식점 (일반·휴게음식점, 급식소 포함)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콩

□ **대상업체**: 1,387천개소(농산물 570, 음식점 817)

구분	농산물 판매·가공			음식점				
	판매업체	가공업체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 급식소	집단 급식소	**계**
업체(개소)	420,024	149,795	**569,819**	638,404	123,021	10,303	45,577	**817,305**

* 판매·가공업: 통계청 주제별통계 도소매업조사, 전통시장 실태조사('14.12.)
*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소('16.12.)

□ **표시 기준 및 방법**

○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외국산은 '통관 시 국가명'을 표시하고, 가공품은 '원료의 국가명'을 표시

○ 농산물과 가공품은 포장재, 푯말, 표시판 등에, 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주간메뉴표 등에 표시

□ **위반자 처벌**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5년내 재범자: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위반업체 인터넷 공표: 위반 업소명, 위반사항 등을 단속기관, 포털 등 홈페이지에 공개
* 위반자 의무교육 부과: 2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회 이상 미표시 적발: 위반업체 공표, 위반자 의무교육

□ 특별사법경찰 지명 인원: 1,110명

○ 기동단속반: 171명(단속・수사 전담자)

○ 일반단속반: 102명(사무소 원산지 담당자)

○ 지원단속반: 837명(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지원)

□ 명예감시원: 12,273명(소비자단체 8,062, 생산자단체 3,114, 기타 1,097)

○ 역할: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캠페인, 민간 감시기능 등

□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현황

○ 유전자: 10품목(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보리, 찹쌀, 녹두)

○ 이화학: 124품목(쌀, 돼지고기, 율무쌀, 귀리, 적하수오, 참기름 등)

* 검정법 개발 현황: ('95) 7품목 → ('13) 111 → ('15) 123 → ('18) 134
* 보정·검증 현황: ('15) 123품목 → ('16) 129 → ('17) 134 → ('18) 67
* 검정법 활용 실적('18.11.): 2,393건(농관원 1,993, 지자체 386, 경찰 13, 검찰청 1)

□ MOU 전통시장 현황: 128개소

○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시상(12월)

* 연도별 현황: ('11) 13개소 → ('12) 123 → ('15) 128 → ('18) 128

□ 위반자 적발・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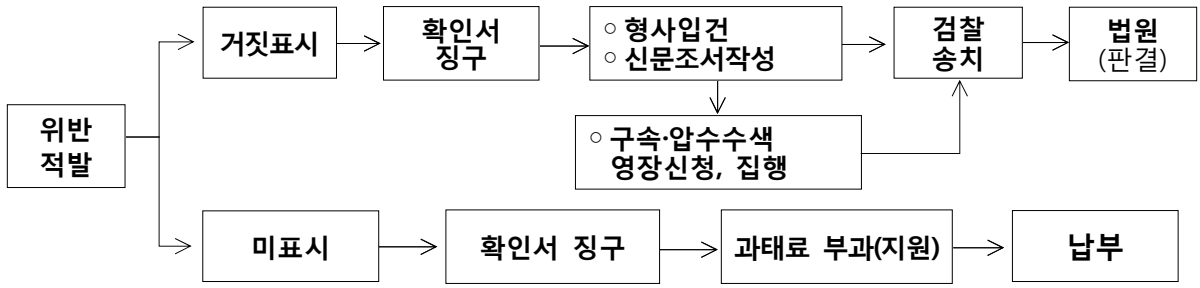

□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연도	조사장소 (개소)	단속실적					
		합계	거짓표시(개소)			미표시	
			형사입건	고발	소계	실적 (개소)	과태료 (천원)
'16	261,546	4,283	2,734	171	2,905	1,378	314,985
'17	230,380	3,951	2,441	81	2,522	1,429	401,674
'18.11.	259,077	3,749	2,323	9	2,332	1,417	366,481

6. 농업경영체등록(재량, 계속)

< 농어촌구조개선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경영체등록	21,587	23,519	25,213	1,694	7.2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1 - 6000 - 6034
* 담당자 : 농관원장(조재호), 맞춤형농정과장(문태섭), 사무관(임미정, ☏ 054-429-419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분야 구조개선 및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육성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각종 농림지원사업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17년말 현재 165만 농업경영체 등록)

* 농림사업 연계수(누계) : ('13) 5개 → ('14) 22 → ('15) 63 → ('16) 102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 · 관리 * 농업경영정보 : 토지이용, 작물재배, 축산정보 등 - 전산검증(토지정보 등)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실경작 및 농축산물 경영정보 확인 ○ 등록정보를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사업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농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직불사업 이행점검, 면세유 배정 및 사용실태 점검 등을 통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방지
사업기간	'0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650,000 경영체 ('17.12.31. 기준)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8) 23,519백만원 → ('19) 25,213(증 1,694)

□ 등록조사원 운영 : ('18) 17,907백만원 → ('19) 18,877(증 970)

○ 상용임금 : ('18) 14,891백만원 → ('19) 15,689(증 798)

- 무기계약직 기본급 : 1,747,940원×12개월×621명=13,025,649천원
- 명절휴가비 : 450천원×2회(설, 추석)×622명=559,800천원
- 정액급식비 : 130천원×12개월×622명=970,320천원
- 직무수당 : 50천원×12개월×621명=372,600천원
- 시간외 근무수당 : 13,836원×70시간×621명=601,451천원
- 연월차수당 : 73,796원×3일×621명-11,948원=137,470천원
- 근로면제자 대체 인건비 : 8,350원×2,600시간=21,710천원

○ 복리후생비 : ('18) 248백만원 → ('19) 248

-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 : 400천원×1년×621명=248,400천원

○ 고용부담금 : ('18) 2,768백만원 → ('19) 2,940(증 172)

- 퇴직금 : 15,689백만원(임금 총액)÷12개월+1,227천원=1,308,644천원
- 4대 보험 : 15,689백만원(임금 총액)×10.4%=1,631,656천원

□ 등록정보 관리 : ('18) 3,756백만원 → ('19) 4,524(증 768)

○ 일반수용비 : ('18) 1,446백만원 → ('19) 1,488(증 42)

- 농업인 교육 및 설명회 : 197,770천원
  - 본원 : 10천원×100명=1,000천원, 지원 : 10천원×50명×9개소=4,500천원
  - 사무소 : 5천원×20명×2,262개소×85%=192,770천원
- 홍보 리플릿 : 100원×150천매×2회=30,000천원
- 출력용지 : 7원×5매×1,630 천 경영체×30%=17,115천원
- 프린트 토너 : 25원×5매×1,630천 경영체×30%=61,125천원
- 기타 사무용품 : 50천원×12개월×124개소+3,000천원=77,400천원
- 협조자 답례품 : 500원×1,630천 경영체+3,068천원=850,668천원
- 업무편람(메뉴얼) : 1,500부×10천원=15,000천원
- 언론홍보 : 1,500천원×20개(신문사)=30,000천원
- 현장조사 비품 : 100천원×757개=75,700천원
- 원격지원 서비스 사용료 : 125천원×12개월×10개(CH)=15,000천원

▪ 교육강사료 : 230천원×2회×2명×10개소-210천원=8,990천원

▪ 직권조치 심사위원 수당 : 150천원×3회×2명×124개소-2,700천원=111,600천원

○ 공공요금 : ('18) 1,039백만원 → ('19) 1,039

▪ 사무실 공공요금(전화료 등) : 200천원×125개소×12개월-14,400천원=285,600천원

▪ 우편물 발송료 : 400원×1,630천 경영체×93.8%-37,164천원=614,836천원

▪ 임대형 콜센터 사용료 : 11,000천원×12개월+226천원=132,226천원

▪ 무인항공기 보험료 : 600천원×10대=600천원

○ 특근매식비 : ('18) 273백만원 → ('19) 276(증 3)

▪ 본원 : 6천원×8명×20식×12개월=11,520천원

▪ 지원 : 6천원×3명×10식×12개월×9개소=19,440천원

▪ 사무소 : 6천원×1명×8식×12개월×115개소-416천원=65,824천원

▪ 계약직 : 6천원×621명×4식×12개월=178,848천원

○ 임차료 : ('18) 10백만원 → ('19) 10

▪ 등록제 교육장 : 500천원×2회×10개소=1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18) 156백만원 → ('19) 156

▪ HW 유지보수 : 1,563,330천원×6%+200원=93,800천원

▪ 백신 프로그램 : 30천원×621개=18,630천원

▪ 녹취기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 226,000천원×6%+10천원=13,570천원

▪ 무인항공기 유지보수 : 50백만원×10대×6%=30,000천원

○ 일반용역비 : ('18) -백만원 → ('19) 730(증 730)

▪ 무인민원 발급기 : 1식×730,000천원=730,000천원

○ 관리용역비 : ('18) 34백만원 → ('19) 34

▪ 현장조사시스템(지적도 및 항공사진) 유지관리 : 30,000천원×1년=30,000천원

▪ 시스템 암호화 및 SW 유지보수 : 40,000천원×10%=4,000천원

○ 기타운영비 : ('18) 19백만원 → ('19) 19

▪ 외부위원 면접수당 : 150천원×2명×3회×9개소+100천원=8,200천원

▪ 우수 직원 및 조사원 시상금 : 200천원×27명×2회=10,800천원

○ 사업추진비 : ('18) 31백만원 → ('19) 30(△ 1)

▪ 등록제 간담회 및 설명회 비용 : 32,490천원

- 본원 : 10천원×35명×9회=3,150천원,지원 : 10천원×24명×1회×9개소=2,160천원

- 사무소 : 10천원×24명×1회×115개소-420천원=27,180천원

○ 일반연구비 : ('18) 52백만원 → ('19) 52

▪ 무인항공영상 활용방안 연구 : 52,000천원×1회=52,000천원

○ 자산취득비 : ('18) 696백만원 → ('19) 690(△ 6)

▪ 업무용 PC(내용연수 경과) : 1,200천원×193대=231,600천원

▪ 현장조사장비(내용연수 경과) : 500천원×191대=95,500천원

▪ 현장조사 차량 : 19,375천원천원×2대=38,750천원,

▪ 복사기 등 출력장치 : 3,500천원×9대-1,350천원=30,150천원

▪ 무인항공기 : 49,000천원×6대=294,000천원

□ 정확도 관리 : ('18) 1,856백만원 → ('19) 1,812(△ 44)

○ 국내여비 : ('18) 1,833백만원 → ('19) 1,791(△ 42)

▪ 직원 여비 : 211,952천원

- 본원 : 210천원×11명×2회×12개월=55,440천원
- 지원 : 100천원×2명×2회×12개월×9개소=43,200천원
- 사무소 : 11천원×1명×7회×12개월×115개소-6,000천원=95,672천원
- 도서지역 : 63천원×(28천개소×5%÷5농가)=17,640천원

▪ 무기직 여비 : 1,579,024천원

- 상시출장 : 205천원×595명(콜센터 제외)×12개월=1,463,700천원
- 도서지역 : 63천원×(28천개소×10%÷5농가)=35,280천원
- 교육여비 : 129천원×621명-65천원=80,044천원

○ 국외업무여비 : ('18) 23백만원 → ('19) 21(△ 2)

▪ 항공료 및 체재비 등 : 3,552천원×6명=21,312천원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예산내용>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업경영체등록	**23,519백만원**	**25,213백만원(증 1,694)**
▪ 등록조사원 운영	· 상용임금 14,891(621명×23,979천원) * 정액급식비 인상(8만원→13) · 복지포인트 248(621명×400천원) · 고용부담금 2,768 * 상용임금 증액에 따른 퇴직금, 4대보험료 증액	◦ 상용임금 15,689(25,183천원×621명) ◦ 복지포인트 248(400천원×621명) ◦ 고용부담금 2,940백만원 * 퇴직금: 15,689백만원÷12개월=1,309백만원 ** 4대보험: 15,689백만원×10.4%=1,631백만원

▪ 등록정보 관리	· 일반수용비 1,446(119개소×12,151천원) · 공공요금 1,039(119개소×8,731천원) · 특근매식비 273(119개소×2,294천원) · 임차료 10(10개소×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6(119개소×1,311천원) · 사업추진비 31(119개소×261천원) · 자산취득비 696(119개소×5,849천원) 일반연구비 52(52,000천원*1회) 기타운영비 19(150천원*2명*3회*9개소+100천원) (*27명*2회*200천원) - ◦관리용역비 34(지적도,항공사진) 유지 현장조사시스템 유지 30,000×1년 시스템 암호화 및 SW유지 40,000천원×10%	◦ 일반수용비 1,488(11,904천원×125개소) ◦ 공공요금 1,039(8,312천원×125개소) ◦ 특근매식비 276(359천원×768명) ◦임차료 10(10개소×1,000천원) ◦ 시설장비 유지비 156(1,248천원×125개소) ◦ 사업추진비 30(125개소×240천원) ◦ 자산취득비 690(5,520천원×125개소) 일반연구비 52(52,000천원*1회) 기타운영비 19(150천원*2명*3회*9개소+100천원) (*27명*2회*200천원) 일반용역비 730(1식*730,000천원) ◦ 관리용역비 34(지적도,항공사진)유지 현장조사시스템 유지 30,000천원×1년 시스템 암호화 및 SW유지 40,000천원×10%
▪ 정확도 관리	국내여비 1,833(1283.6천원×119개소×12개월) 국외업무여비 23(3,824천원×6명)	국내여비 1,791(1,194천원×125개소×12개월) ◦ 국외업무여비 21(3,552천원×6명)

□ 지원 필요성

○ FTA 확대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경영정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

* 농업경영정보 : 토지이용, 작물재배, 축산정보 등

- 등록정보의 농업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상시관리 필요

* 정책기초자료 및 102개 농림사업 연계,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 등

○ 경영체 DB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보완 및 현행화 추진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드론 도입계획 : ('17) 4대 → ('18) 6 → ('19) 6 → ('20이후) 4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경영체등록**	**21,587**	**23,519**	**25,213**	**1,694**	**7.2**
① 등록조사원 운영	16,195 (621명×26.08백만원)	17,907 (621명×28.84백만원)	18,877 (621명×30.40백만원)	**970**	**5.4**
② 등록정보 관리	3,499 (119개×29.40백만원)	3,756 (125개×30.05백만원)	4,524 (125개×36.19백만원)	768	20.4
③ 정확도 관리	1,893 (119개×15.91백만원)	1,856 (125개×14.85백만원)	1,812 (125개×14.50백만원)	-44	-2.4
□ **비목**(합계)	21,587	23,519	25,213	1,694	7.2
· 상용임금(110-03)	13,473	14,891	15,689	798	5.4
· 일반수용비(210-01)	1,503	1,446	1,488	42	2.9
· 공공요금(210-02)	841	1,039	1,039	-	-
· 특근매식비(210-05)	281	273	276	3	1.1
· 임차료(210-07)	12	10	10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7	156	156	-	-
· 복리후생비(210-12)	245	248	248	-	-
. 일반용역비(210-14)	22	-	730	순증	순증
· 관리용역비(210-15)	-	34	34	-	-
· 기타운영비(210-16)	17	19	19	-	-
· 국내여비(220-01)	1,871	1,833	1,791	-42	-2.3
· 국외업무여비(220-02)	22	23	21	-2	-8.7
· 사업추진비(240-01)	32	31	30	-1	-3.2
· 일반연구비(260-01)	49	52	52	-	-
· 고용부담금(320-09)	2,477	2,768	2,940	172	6.2
· 자산취득비(430-01)	595	696	690	-6	-0.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 경영정보의 등록, 등록정보의 확인, 등록정보의 수정, 자금지원 제한 등

○ 추진경위

- '04.2월 :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근거 제시
- '07.8~12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실시(전국 9개 읍·면)
- '08.5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추진 방안 확정·시행
- '09.1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추진과제로 선정
- '09.4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9.10.2. 시행)
-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 '11.2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 자발적인 변경등록 활성화, 정책자금 부당수급 사례 사업기관 통보
- '11.6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대상 연계 및 사후관리
- '12.1월 : 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등 5개 직불사업 이행점검 연계
- '13.8월 :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 '14.2월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실시
- '15.5월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전담부서(맞춤형농정과)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경영체등록	181	199	198	206	216	2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 : 집행잔액 101백만원

- 등록조사원 조기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국내여비 등 불용

○ ‘16년 불용 : 집행잔액 26백만원

- 본원 및 지원 사무소등 전국 119개 기관의 집행잔액

○ ‘17년 불용 : 집행잔액 34백만원

- 본원 및 지원, 사무소 등 전국 119개 기관의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8	-	-	198	197	-	1
’16년	206	-	-	206	206	-	0.2
’17년	216	-	-	216	215	-	0.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국가	제도명	담당기관	관련 업무 내용
EU	IACS (통합관리 통제시스템)		■ EU 이사회법령 EC 1782/2003 ■ ’92년 직불제중심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편 이후 효과적 사업관리를 위해 제도 도입 ■ 일반경종농가는 임의등록, 축산(소)은 의무등록 - 등록내용 : 지원자격 검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 * 신청인 및 공동종사자 인적사항, 신청사업, 경작면적 등
독일	〃	주 농업부, 농업회의소	■ 임의등록이나 미등록 시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능 ■ 축산업등록제(의무등록) : ’02년 도입 후 ’05년부터 농가등록제의 통합운영

영국	〃	농촌지불청	■ 농업보조금지급, 통계 목적 등에 사용 ■ 농가·농지·가축등록 등 3개 요소로 구성
프랑스	〃	단일지불청	■ 농업보조금의 효과적인 관리와 공정한 집행 ■ 농업인 경영정보 등 기본데이터를 등록·관리
이탈리아	〃	지불청	〃
미국	USDA 고객보고서	농무성 부설 농가지원처 (FSA)등	■ 농업인 자신이 참여하는 연방농무성(USDA)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 ■ 수혜혜택정보, 농가대출프로그램, 보존계획 등 정부 구축
일본	인정농업자 제도	시정촌	■ 등록제가 아니며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관리제도 ■ 대상 : 지자체별 희망 농업인(법인 포함)

(5) 사업추진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신규・변경)**

○ 언제든지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현지확인 및 전산검증 등을 통해 등록정보의 현행화 추진

◈ 사업주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118개소)
↓	
② 신청정보 전산검증(농관원)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전산연계검증
↓	
③ 작물재배정보 등 현지확인(농관원)	실경작 및 작물재배정보에 대한 현지확인
↓	
④ 농업경영체 등록(농관원)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전산관리
↓	
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농관원)	신청농가에게 확인서 발급(우편 등)

*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여부 확인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직불금 신청 경영체)

○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통합하여 1회 방문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one stop service)으로 개선

◈ 사업주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① 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농업인) → 공동접수센터에 신청(2,079개 읍면동에 설치)
* 신청기간 : 2.1.~4.28.

↓

② 신청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한 적격 여부 확인 → (경영정보) 농관원에서 등록・관리
(직불정보) 지자체에서 등록・관리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보조금 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경영체 DB와 농림사업(102개) 간 연계하여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경영정보 제공
② 농업경영체 증명서 제출(농관원 → 농업인 → 농림지원사업 담당기관)
* 농관원, 농협간 경영정보 공유(Agrix 시스템)로 농업용면세유 지급대상 확인

참고 1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농업인 혜택

구 분	관련기관	주요 내용
세금감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 농지 취·득세 감면, 법인면허세 면제
	국세청 (국세)	· 법인세 감면,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인의 농지 등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감면
국고 보조·융자금 지원대상	농식품부	· 전체 국고 보조·융자사업 지원대상 (쌀직불 등 각종 농림사업의 기본요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농업인 감면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한국장학재단	·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지원규모 선정 기준	농식품부 중앙부처 등	· 농업용 면세유 배정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 (충청북도) 볏짚 환원사업 지원 ·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전라남도) 양봉관련 자재 지원 · (경 기 도) 예비청년 창업농 육성지원
인력지원	농식품부	· 영농도우미 지원
	고용노동부	· 외국인 고용 쿼터배정 기준
양육서비스	보건복지부	· 맞벌이부부 영·육아 양육지원(보육료 감면)
농업인 자격증명 대체	농·축협	· 농·축협 조합원 가입
	농어촌 공사 등 농업분야 기관	· 농·축산업 경력직 사원 채용 시 증빙 · 한국농수산대학교 입학 · 농협 장학관(농업대학생 숙소) 입사 · 농업 취업자 대학 학점 면제 * 성균관대학교
	지자체, 농협, 각종 농업인 협회	· 전국 직거래장터 참여
		· (제주도)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교육 · (서 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 (춘천, 홍천) 농업인 대학 교육

참고2 경영체와 연계한 직불금 및 면세유 절감액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303	171	177	316	762
직불제	소 계	117	95	123	298	728
	쌀	-	-	-	206	595
	밭농업	53	40	63	49	71
	경관보전	43	30	19	31	50
	조건불리	21	25	41	12	12
농업용 면세유 관리		186 (1,841만ℓ)	76 (834만ℓ)	54 (679만ℓ)	18 (328만ℓ)	34 (550만ℓ)

7.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	5,457	5,633	6,161	528	9.4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000 - 6035
*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조재호), 농업경영정보과장(권혁일), 사무관(박윤희, 054-429-408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증진

○ 행정업무 정보화 확산, 통신망 운영 및 정보자원 확충 등 정보화 지원기반 강화 및 원스톱(One-Stop)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본원, 시험소, 9개지원, 123개 사무소(분소)의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정보화 추진 - 23종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및 정보통신망, 보안 등 정보인프라 운영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8년) 5,633 → ('19년) 6,161백만원(증528)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8년) 0 → ('19년) 290백만원(증290)

- 원산지 공동활용 시스템 확대구축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17년)로 행정처분 누락 방지를 위한 단속기관 공동활용 통합시스템 확대구축

·농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자 관리 일원화 추진 및 단속·교육이수 정보 공유

* 농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농관원과 수품원의 정보 공유 미흡에 따른 감사원 감사 지적('17.11월)

· 관세청, 경찰청, 농관원, 수품원, 지자체 등 개별 단속기관의 과장금 분산 처리로 행정처분 누락발생 가능

·농식품부·해수부간 통합시스템 구축 협의('18.3.)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통합관리 및 과징금 부과 지원

* 개발비: 기능점수 480 × 604천원 =290백만원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총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천원)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8,648	480	0.9	1.00	1.10	-	46,877
설계	124,609					-	59,214
구현	166,145					0.84	66,320
시험	129,801						51,812
합계(개발원가)							224,224
이윤(개발원가 17%)							38,188
합계: (개발원가 224,224천원 + 이윤 38,188 + 직접경비 1,400)× 부가세 1.1 = 290,116							

▪ 정보시스템 구축(임차) : ('18년) 1,530 → ('19년) 1,433백만원(△97)

- 정보통신망 망분리 구축 : ('18년) 666 → ('19년) 666백만원

* 3,084백만원×12개월×임차요율 1.8% = 666백만원

- 전산장비교체 : ('18년) 406 → ('19년) 203백만원(△203)

* 1,907백만원×6개월×임차요율 1.775% = 203백만원

* '19년 6월 계약만료로 리스료 상환기간(12개월 → 6개월) 감소

- 네트워크 장비 교체: ('18년) 352 → ('19년) 352백만원

* 1,628백만원×12개월×임차요율 1.8%

- 정보보안 장비 교체:('18년) 106 → ('19년) 212백만원(증 106)

  * 982백만원×12개월×임차요율 1.8%

임 차 사 업 명		구축 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530	1433	1230	1054	721
정보통신망 망분리 구축		2017	666	666	666	666	333
노후 장비 교체/ 증설	소 계		864	767	564	388	388
	전산장비교체 및 농산물이력시스템	2014	406	203	-	-	
	네트워크 장비 교체	2016	352	352	352	176	-
	정보보안 장비 교체	2018	106	212	212	212	212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8년) 1,341 → ('19년) 1,520백만원(증 179)

- 개발 SW 유지보수: ('18년) 805 → ('19년) 834백만원(증 29)

  * ('18년) 개발비 8,050백만원 × 유지보수요율 10% = 805백만원

  * ('19년) 개발비 8,335백만원 × 유지보수요율 10% = 834백만원

  * '17년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추가 개발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 상용 SW 유지보수: ('18년) 295 → ('19년) 352백만원(증 57)

  * ('18년) 도입비 2,813백만원 × 유지보수요율 10.5% = 295백만원

  * ('19년) 도입비 3,351백만원 × 유지보수요율 10.5% = 351백만원

  * '17년 망분리 사업 시 도입된 상용SW 하자보증기간 종료에 따른 자연 증가

- HW 유지보수: ('18년) 241 → ('19년) 335백만원(증 94)

  * ('18년) 도입비 4,020백만원 × 유지보수요율 6% = 241백만원

  * ('19년) 도입비 5,581백만원 × 유지보수요율 6% = 335백만원

  * '17년 망분리 사업 시 도입된 전산장비 하자보증기간 종료에 따른 자연 증가분

<도입비 현황>

구 분	'18년 (a)	증 감 현 황			'19년 (a+d)
		'17년도입 (b)	폐기 (c)	합 계 (d=b-c)	
개발 SW 구축비	8,050	482	197	285	8,335
상용 SW 도입비	2,813	613	75	538	3,351
전산 HW 도입비	4,020	1,596	35	1,561	5,581
합 계	14,883	2,691	307	2,384	17,267

▪ pc도입: ('18년) 84 → ('19년) 122백만원(증 38)

- 기존 PC구매 임차료 및 리스료 상환기간 증가(6개월 → 12개월)

  * ('18년) 11.5백만×4회+(PC 350대×1백만×1.8%×6개월) = 84백만원

  * ('19년) 11.5백만×4회+(PC 350대×1백만×1.8%×12개월) = 122백만원

< PC 임차계약 리스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도입 년도	2016년	23	46	46	46	46	23	-	-
	2018년	-	-	38	76	76	76	76	38
합 계		23	46	84	122	122	99	76	38

▪ 회선 이용료: ('18년) 2,310 → ('19년) 2,428백만원(증 118)

- 전용회선 이용료: ('18년) 2,272 → ('19년) 2,390백만원(증 118)

·'16년 이후 8개 사무소(분소) 신설에 따른 신규 개설된 전용회선 사용료 미반영에 따른 부족액 증액(118백만원)

* ('18년) 행자부-본원-지원(9)-사무소(114) 사용료 189.3백만×12개월 =2,272백만원

* ('19년) 행자부-본원-지원(9)-사무소(122) 사용료 199.2백만×12개월=2,390백만원

- IT콜센터 장비 임대·회선 이용료 : ('18년) 31 → ('19년) 31백만원

* 2,335천원 × 12개월 × 1.1 = 31백만원

- SMS 이용료 : ('18년) 7 → ('19년) 7백만원

* 15원 × 40천건 × 12개월 = 7백만원

▪ 전산 기타 운영비 : ('18년) 368 → ('19년) 368백만원

- 전산 소모품 등 구매비

* 전산 소모품 4백만원 × 1식 = 4백만원

- 전산장비 운영 전기료

* 12개월 × 3.3백만원 = 40백만원

- PC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 백신 4,620개× 28천원 + 알툴즈 3,100대 × 27.5천원 = 215백만원

- IT 콜센터 운영

* 임금 94천원 × 4명 × 21일 × 12월 = 95백만원

- 정보화역량평가 등 시상

*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 2회 × 1백만원 = 2백만원

- 해외 선진기관 현지조사

* 산출근거: 4명 × 3백만원 = 12백만원

· 항공료 4명×1.25백만원=5백만원, 일비: (($30×1명)+($26×3명))×8일=1백만원

· 숙박비: (($137×1명)+($123×3명))×7일=4백만원, 식비: (($59×1명)+($49×3명))×8일=2백만원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예산내역>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산물품질 관리정보화	5,633백만원	6,161백만원
▪ 정보시스템 고도화	<순증>	- 원산지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290백만원 · 기능점수 480×604천원=290백만원
▪ 정보시스템 구축(임차)	- 전산장비교체: 406 · 1,907백만×12개월×요율 1.775% - 정보보안 장비교체: 106 · 982백만×6개월×요율 1.8%	- 전산장비교체: 203백만원 · 1,907백만×6개월×요율 1.775% * ’14년 계약 사업으로 리스료 상환기간 감소 - 정보보안 장비교체: 212백만원 · 982백만×12개월×요율 1.8% * ’18년 계약 사업으로 리스료 상환기간 증가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개발 SW유지보수: 805 · 개발비 8,050백만원×10% - 상용 SW유지보수: 295 · 도입비 2,813백만원×10.5% - 전산장비 유지보수: 241 · 도입비4,020백만원×6%	- 개발 SW유지보수: 834백만원 · 개발비 8,335백만원×10% * ’17년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추가 개발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 상용 SW유지보수: 351백만원 · 도입비 3,351백만원×10.5% * ’17년 망분리 사업 시 도입된 상용SW 하자보증기간 종료에 따른 자연 증가분 - 전산장비 유지보수: 335백만원 · 도입비 5,581백만원×6% * ’17년 망분리 사업 시 도입된 전산장비 하자보증기간 종료에 따른 자연 증가분
▪ PC교체(임차)	- PC 교체: 84백만원 · (11.5×4회)+(PC 350대×1백만×1.8%×6개월)	- PC 교체: 122백만원 · (11.5×4회)+(PC 350대×1백만×1.8%× 12개월) * ’18년 임차도입 컴퓨터의 리스료 납부기간 증가(6개월 → 12개월)
▪ 전용회선 이용료	- 전용회선 이용료: 2,272 · 본원,지원(9), 사무소(114) 전용회선 이용료 · 이용료 189.3백만×12개월	- 전용회선 이용료: 2,390백만원 · 본원,지원(9), 사무소(123) 전용회선 이용료 · 이용료 199.2백만×12개월 * 8개 사무소(분소) 신설에 따른 8회선 신규개설

□ 지원 필요성

○ 농식품 안전관리 및 농산물 재배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상황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의 농업분야 적용 활성화 및 공간정보 확대를 통해 현장업무의 현안해결 및 농업혁신 도모

○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잡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정보서비스 제공확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증감 (B-A)	%
□ **농산물품질관리 정보화**	**5,457**	**5,633**	**6,161**	**528**	**9.4**
▪ 원산지 공동활용 시스템 확대구축	-	-	290 기능점수480×604천원	**290**	
▪ 통신망 망분리 구축	287 (2,826백만×5.65개월×1.8%)	666 (3,084백만원×12개월×임차요율 1.8%)	666 (3,084백만원×12개월×임차요율 1.8%)		
▪ 전산장비교체	407 (1,907백만×12개월×1.78%)	406 (1,907백만×12개월×1.775%)	203 (1,907백만× 6개월×1.775%)	△203	△50.0
▪ 네트워크 교체	325 (1,505백만×12개월×1.8%)	352 (1,628백만×12개월×1.8%)	352 (1,628백만×12개월×1.8%)		
▪ 정보보안 장비 교체 및 증설	-	106 (985백만×6개월×1.8%)	212 (985백만×12개월×1.8%)	106	100.0
▪ 통신망 교체	386 (1식×368백만)	-	-		
▪ 개발SW 유지관리	827 (도입비8,050×요율10.27%)	805 (개발비 8,050×요율10%)	834 (개발비 8,335×요율10%)	29	3.7
▪ 상용SW 유지관리	302 (도입비2,466×요율12.25%)	295 (도입비2,813×요율10.5%)	351 (도입비3,351×요율10.5%)	56	19.0
▪ HW 유지관리	229 (도입비3,498×요율6.55%)	241 (도입비4,020×요율6%)	335 (도입비5,581×요율6%)	94	39.0
▪ PC 등 도입	46 (11.5백만원×4분기)	84 (11.5백만원×4분기)+ (350대×1백만× 요율1.8%×6개월)	122 (11.5백만원×4분기)+ (350대×1백만× 요율1.8%×12개월)	38	45.2
▪ 통신망 회선사용료	2,434 (12개월 ×202.8백만)	2,310 (12개월×192.5백만)	2,428 (12개월×199.2백만)	118	5.1
▪ 전산기타 운영비	214 (214백만×1식)	368 (368백만×1식)	368 (368백만×1식)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증감 (B-A)	%
□ 비목(합계)	5,457	5,633	6,161	528	9.4
○ 일반수용비(210-01)	2	3	4	1	33.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474	2,350	2,468	118	5.0
○ 임차료(210-07)	1,451	1,614	1,555	△59	△3.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0	215	215		
○ 관리용역비(210-15)	1,472	1,436	1,615	179	12.5
○ 기타운영비(210-16)	1	2	2		
○ 국외업무여비(220-02)	7	13	12	△1	△7.7
○ 일반연구비(260-01)	-	-	290	29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3조(정보제공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53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전자정부법, 정부기록물관리법

○ 추진경위

- '98 : 『농산물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99-'01 : 『농산물 품질관리정보시스템』 단계별 구축
- '02-'06 : 농산물 품질관리시스템 기능 확충, 친환경인증농산물관리시스템 구축
- '07 :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 LMO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08 : 정곡검사시스템 고도화사업, 수입농산물검사시스템 구축, 농산물중금속조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고도화
- '09 : 우수식품인증시스템, 품질검정시스템 구축
- '10 : 현장정보서비스시스템, 과태료징수관리시스템, 소모품관리시스템구축
- '11 : 중금속오염정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QR코드관리시스템 구축

- ’12 : 중금속오염정보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2차), 술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앱 개발 등
- ’13 : 세잎큐인(SafeQIn)정보시스템 및 친환경인증시스템 고도화 등
- ’14 : 전산장비 교체 및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재구축 등
- ’15 : 농산물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기능 확충
- ’16 :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노후 네트워크 교체 등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 ’17 : 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사료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18 : 인트라넷 범정부 표준업무포털 전환, 노후 보안장비 교체 등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	54.8	53.6	47.1	55.4	55.1	56.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15년 : 집행 잔액(2백만원)
- ’16년 : 정보화 구축 용역사업 낙찰차액(65백만원) 및 임차 사업 등 집행 잔액(65백만원)으로 130백만원 불용액 발생
- ’17년 : 망분리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2백만원 불용

○ 이월사유 : ’14년 홈페이지구축사업 납품지연에 따른 이월 집행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7.09 ( )	1.7 ( )	- ( )	48.79 ( )	48.77 ( )	- ( )	0.02 ( )
’16년	55.39 ( )	- ( )	- ( )	55.39 ( )	54.09 ( )	- ( )	1.3 ( )
’17년	55.09 ( )	- ( )	- ( )	55.09 ( )	54.57 ( )	- ( )	0.5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 '17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 '1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사업 추진 절차 >	< 사업 수행 기관 >
정보화수요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계획수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달청
⇓	
제안서 접수 및 기술평가	조달청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정보화개발사업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업자
⇓	
시범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완료 및 정상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기존 정보시스템 상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고 1 원산지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 예산내역 : 2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목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C=B-A)	증감률 (C/A)
260-01(일반연구비)	-	290	290	순증

□ 사업내용(개요)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17년)로 **행정처분 누락방지**를 위해 **단속기관 공동활용 통합시스템 확대구축**

- **농식품부·해수부의 농산물 및 수산물 정보 일원화방안**을 위한 협의 결과, 농관원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합의('18.3월)

* '17.10.13 관련 조항 개정(농수산물 위반행위별 회수 및 위반금액 합산)

** 농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농관원과 수품원의 시스템별 별도 관리에 따른 감사원 감사 지적('17.11월)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권고에 따라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11.5월)

- 농산물은 원산지공동활용시스템(농관원), 수산물은 원산지단속시스템(수품원)을 활용하여 정보관리 이원화

○ 단속기관인 지자체, 관세청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개별 사용에 따른 업무불편 및 **정보관리 일원화를 통한 관련법 준수('17.10월 개정) 필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에 대한 농수산물 위반행위별 회수 및 금액합산에 위한 정보관리 시급

□ 개선방안(당위성)

○ 단속기관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통합관리 및 과징금부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산지관련 정보공유 창구 일원화**

- 지자체, 관세청 업무담당자의 농산물, 수산물별 위반자 관리를 위하여 개별 시스템 접속없이 한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 단속기관의 효율적 원산지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 **가상사설망(VPN) 및 노후화된 플랫폼을 개선**하여 단속기관의 업무처리 통합 및 농관원·수품원의 정보시스템간 실시간 연계 지원

  *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각 부처간의 정보 연계 모듈인 ESB(Enterprise Service Bus) 활용

- **거짓표시 위반정보 상호 연계 확대**로 공표대상 자동 선정기능 구축

- 단속기관(농관원, 수품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과 원산지위반 의무교육기관(농정원)간의 **정보연계를 통한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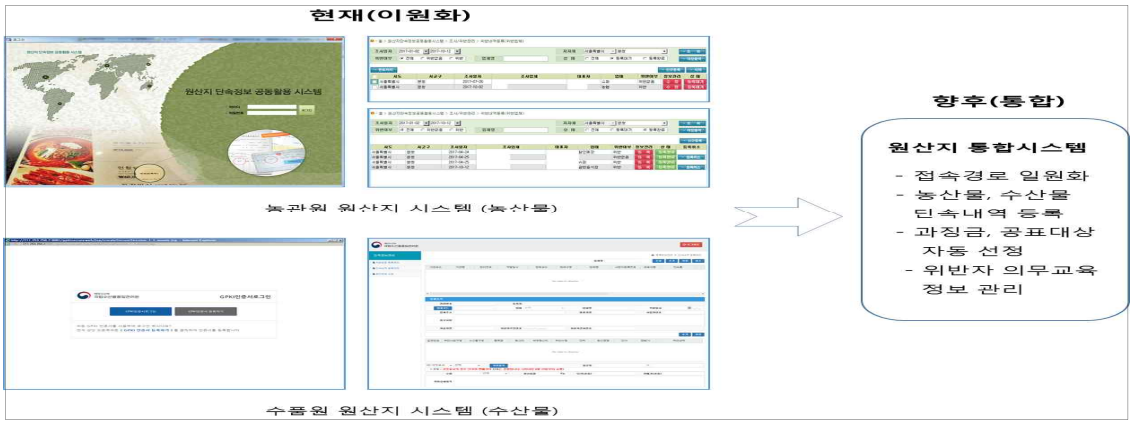

*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실적(농관원)

년 도	조사업체(개소)	단속실적(개소)	과태료(천원)
2017	230,380	3,951	401,674
2016	261,546	4,283	314,985
2015	300,608	4,331	335,355

□ 산출내역 : 증 290백만원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총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천원)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8,648	480	0.9	1.00	1.10	-	46,877
설계	124,609					-	59,214
구현	166,145					0.84	66,320
시험	129,801						51,812
합계(개발원가)							224,224
이윤(개발원가 17%)							38,188
합 계 : (개발원가 224,224 천원 + 이윤 38,188 + 직접경비 4,000)× 부가세 1.1 = 290.116							

□ 기대 효과

○ 농산물·수산물 통합정보 관리를 통해 과징금 대상자 누락방지 등 원산지단속 업무의 공정성 제고 및 행정업무 처리시간 단축

농 림 축 산 검 역 검 사

1.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8,780	10,107	9,211	△896	△8.9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200 - 6231
* 담당자 : 동물질병관리부장(양주필), 방역감시과장(조옥현), 서기관(홍승길, ☏ 054-912-037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동축산물·식물 검역, 가축방역,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 동물보호, 동물용의약품 관리 등 검역본부 고유업무 정보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본부 및 6개 지역 본부, 사무소간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 행정정보화 지원, 동축산물·식물 검역, 가축 방역, 축산물안전, 동물용의약품, 연구, 동물보호의 고유 업무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확대 구축
사업기간	'98 ~ 계속
총사업비	- 억원 ('18년까지 투자액 902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18)1,989백만원 → ('19)694 (△1,295)

-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ISP) 수립 : ('18) - → ('19)100백만원
  · '02년 시스템 구축 이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시스템 전면 재개편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3인 × 11백만원 × 3개월)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차량 소독실시 정보 확인 : ('18)489백만원→ ('19)200백만원 (△289)
  · 축산관계시설(농장, 도축장 등) 관리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축산 차량의 소독 여부를 모바일로 사전 확인하여 조치(306FP × 0.66백만원)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18)350백만원→ ('19)394백만원 (증44)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외부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운영 등 식물방역 관련 고시 제개정에 따른 기능 확충(599FP × 0.66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 : ('18)7,015백만원 → ('19)6,790 (△225)

- 전산장비 운영 임차료 : ('18)3,716백만원 → ('19)3,392 (△324)
  · 노후 전산장비 교체 임차 계약(11건)의 연간 집행 소요액 반영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8)3,299백만원 → ('19)3,398 (증99)
  · 운영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 ('18)1,854백만원 → ('19)1,953 (증99)
  · HW 유지보수 : ('18)563백만원 → ('19)563
  · 상용SW 유지보수 : ('18)882백만원 → ('19)882

○ 기타 운영지원 : ('18)1,103백만원 → ('19)1,727 (증624)

- 회선 사용료 : ('18)693백만원 → ('19)1,281 (증588)
  · 국가정보통신망 : ('18)608백만원 → ('19)924 (증316)
  · 구제역, AI 긴급방역문자 발송 : ('18)24백만원 → ('19)296 (증272)
  · 식물검역 현장업무 모바일 요금 : ('18)43백만원 → ('19)43

· 국경검역 선사입국 정보 수신 요금 : ('18)18백만원 → ('19)18

- 축산차량 GPS 상담센터 운영 : ('18)314백만원 → ('19)314

· 상담센터 인력 상주(9인) : 2.9백만원 × 9인 × 12개월

- 축산차량 신규 GPS단말기 심사 : ('18) - → ('19)40백만원

· '19년 신규 GPS단말기 심사(3년 주기)를 전문기관(전파법 제58조에 근거한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진행

- 백신SW 연간 사용권 갱신 : ('18)37백만원 → ('19)37

- 전산장비 소모품 교체 : ('18)4백만원 → ('19)5 (증1)

- 국내외 여비 : ('18)21백만원 → ('19)19 (감2)

- 일반수용비 : ('18)3백만원 → ('19)31 (증28)

·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수당 지급 : 20백만원,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 11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검역본부정보화	**10,107백만원**	**9,211백만원**
▪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1,150백만원 ○ 식물병해충 통합 예찰정보 관리 체계 구축 : 350백만원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 489백만원	○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수립 : 100백만원 ○ KAHIS 축산차량 소독 실시 정보 확인 : 200백만원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394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자원(HW, 상용SW) 유지보수 : 1,445백만원 ○ 개발 유지보수 : 1,854백만원 ○ 장비 임차료 : 3,716백만원	○ 정보자원(HW, 상용SW) 유지보수 : 1,445백만원 ○ 개발 유지보수 : 1,953백만원 ○ 장비 임차료 : 3,392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	○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현장업무 모바일, 가축방역 등 문자메세지 발송 : 693백만원 ○ 축산차량 GPS 상담센터 운영 : 314백만원 ○ 백신SW 갱신 : 37백만원 ○ 전산소모품 교체 : 4백만원 ○ 국내외 여비 : 21백만원 ○ 일반수용비 : 3백만원 ○ LAN 시설공사 : 31백만원	○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현장업무 모바일, 가축방역 등 문자메세지 발송 : 1,281백만원 ○ 축산차량 GPS 상담센터 운영 : 314백만원 ○ 백신SW 갱신 : 37백만원 ○ 전산소모품 교체 : 5백만원 ○ 국내외 여비 : 19백만원 ○ 일반수용비 : 31백만원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인증 심사 :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최근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요구 대폭증가

- 구제역,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 등을 위해서는 정보화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사업
- ICT기반의 국가차원의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발생시 막대한 손실이 따르는 가축질병에 대응 필요
-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조기 탐지 및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ICT기반의 동물방역 통합 상황관제·대응체계 마련 요구

○ 살충제 계란 문제 발생 이후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수입 축산물의 이력관리 확대를 위해 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요구 증가

- '18년 12월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였으며 향후 닭고기, 계란 등으로 품목 확대 요구 증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검역본부정보화	8,780	10,107	9,211	△896	△8.9
▪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산출근거)	1,172	1,989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고도화 : 489 식물병해충 통합 예찰정보 관리 체계 구축 : 350 수입축산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 1,150)	694 (KAHIS 축산차량 소독 실시 정보 확인 : 200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394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ISP) 수립 : 100)	△1,295	△65.1
▪ 정보시스템 운영 (산출근거)	6,287	7,015 (정보자원(HW,상용SW) 유지보수 : 1,44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854 노후 전산장비 교체 임차료 : 3,716)	6,790 (정보자원(HW,상용SW) 유지보수 : 1,44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953 노후 전산장비 교체 임차료 : 3,392)	△225	△3.2
▪ 기타 운영지원	1,321	1,103	1,727	624	56.6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산출근거)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현장업무 모바일, 가축질병 대응 방역 문자발송 : 693 축산차량 GPS상담센터 운영 : 314 백신SW 사용권 갱신 : 37 전산소모품 교체 : 4 국내외 여비 : 21 기술평가 수당,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 3 LAN 시설공사 : 31)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현장업무 모바일, 가축질병 대응 방역 문자발송 : 1,281 축산차량 GPS상담센터 운영 : 314 백신SW 사용권 갱신 : 37 전산소모품 교체 : 5 국내외 여비 : 19 기술평가 수당,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 31 축산차량 신규 GPS단말기 인증심사 : 40)		
□ 비목(합계)	8,780	10,107	9,211	△896	△8.9
○ 일반수용비(210-01)	20	3	31	28	933.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55	693	1,281	588	84.8
○ 임차료(210-07)	3,064	3,716	3,392	△324	△8.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1	41	82	41	100
○ 일반용역비(210-14)	287	314	314	-	-
○ 관리용역비(210-15)	3,223	3,299	3,398	99	3.0
○ 국내여비(220-01)	6	7	6	△1	△14.3
○ 국외여비(220-02)	14	14	13	△1	△7.1
○ 일반연구비(260-01)	1,172	1,989	694	△1,295	△65.1
○ 공사비(420-03)	20	31	-	△31	순감
○ 자산취득비(430-01)	168	-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장 가축의방역, 제3장 수출입의 검역

* 대통령 지시사항 : 국무회의('08.4.22), 포천 지역의 구제역 발생보고('10.1.7), 대통령 주재 구제역 대책 관계장관 회의('11.1.6)에서 효율적인 국가가축방역정보체계 구축 지시

* 대통령 지시사항('14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14.2.24) : AI근절을 위해 IT기술을 활용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수입축산물의신고 등),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 '08.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총리실, 관계부처합동)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를 도입하였고 관계 법률 개정('16.12월)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18.12월)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자료유지및정보의공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제 16조(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제공)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 신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식품 등의 수입 신고), 염관리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정부기록물관리법(행정문서의 전자화)

○ 추진경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촉진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 구축(99)
- 웹기반의 수출입 검역·검사정보시스템 구축(01) 및 DW 사업(02)
-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구축('02), 식물검역검사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03)
- 식물검역 전자위생증시스템 구축('04)
- 동물용의약품관리정보시스템 및 가축전염병대응시스템 구축(04~06)
- 식물검역 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06)
- 식물검역병해충 원격진단네트워크 구축, 격리재배관리시스템 구축('07)
- 검사정보시스템기능 확충 및 검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06~)
- 통합전자민원시스템 및 실험동물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07)
- 방제업체·열처리업체 업무관리시스템 구축('08)
- 전자정부사업으로 국가동물방역정보시스템 구축('08~'12)
- 동물보호 웹접근성 개선, 수출검역통합시스템 구축 및 DB암호화 등('11)
-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보안강화사업('12)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12)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개선('13)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항공영상·축산차량관리 및 PC보안관리 강화('13)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14)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장비교체 및 고도화 사업('14)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및 기능개선사업('14)

- KAHIS 축산농장 통합DB 구축 및 검역본부 시스템 고도화('14)
- 정보통신망 망분리 및 가축방역 통계시스템 구축('14)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능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15)
- 동축산물 전자검역증시스템 구축 및 축산차량등록제 차량DB 분리('16)
-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17)
- 수입축산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8)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검역본부정보화	71	71	78	78	89	10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 '17년 불용사유: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8 ( )	( )	( )	78 ( )	78 ( )	( )	0.3 ( )
'16년	78 ( )	( )	( )	78 ( )	77 ( )	( )	1 ( )
'17년	89 ( )	( )	( )	89 ( )	88 ( )	( )	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평가결과

- '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평가시기 : '17.3월, 평가등급 : 우수)
- '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평가시기 : '18.3월, 평가등급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방역 및 예찰분야

[벨기에] : SANITEL이라는 전산시스템 운영

[뉴질랜드]: 가축질병통제를 위한 EpiMAN운영

[EU]: ANIMO, RASFF, SHIFT(제 3국 수입 Alive & Dead Animal) 및

ADNS(Animal Disease Notification 가축질병방생국가 정보) 등 수의정보시스템 운영

○ 동·축산물 검역·검사 및 축산물안전분야

[미국] : 식품의약품안전청(FSIS)의 검역검사정보시스템(AIIS) 운영

NAHMS(NAtional Animal Health Monitoring System) 운영

[호주] : 검역검사청의 EXDOC시스템으로 수출 EDI운영

○ 식물 검역·검사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 전자위생증 구축 운영

○ 유전자원 관리분야

[미국] :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운영

(5) 사업추진절차

① 정보화수요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	
② 사업계획수립	농림축산검역본부
↓	
③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달청
↓	
④ 제안서 접수 및 기술평가	조달청 내·외부 평가위원 위촉
↓	
⑤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⑥ 정보화사업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사업자
↓	
⑦ 시범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	
⑧ 사업완료 및 서비스 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 정보시스템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0,427	15,889	17,677	1,788	11.3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200 - 6232
* 담당자 : 식물검역부장(노수현), 식물검역과장(고경봉), 사무관(김환구, ☏ 054-912-060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확대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 수요증가, 기후변화와 우리나라의 아열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정착 가능성이 증가 등 국내·외적으로 검역여건이 변화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수출입 식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로 외래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림자원 및 자원생태계를 보호하고,
- 농산물 수출검역 기반 마련 및 검역 안전성 확보로 수출 유망 농산물의 수출제한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확대에 기여코자 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통한 농림업보호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 FTA확대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 수요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병해충 유입 정착 가능성 증대 등 국내·외 식물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사업기간	'93~계속
총사업비	- ('18까지 투자액 7,888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해외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강화 ('18) 6,602 → ('19) 7,824백만원(증1,222)**

- 붉은불개미 확산방지 4,155백만원
- 식물검역 정밀검사 업무보조 2,125백만원
- 국경검역강화를 위한 검역소모품 구입 등 1,544백만원

○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18) 1,474 → ('19) 887백만원(감587)**

- 수출상대국 검역병해충 분류동정기법 개발연구비 435백만원(15과제)
- 수출검사 등 검역지원 452백만원

○ **검역선진화를 위한 기반확충 ('18) 4,548 → ('19) 4,548백만원(-)**

- 식물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시약 구입 921백만원
- 식물검역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2,195백만원
- 검역장비 등 구입 1,432백만원

○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관리체계 개선 ('18) 1,393 → ('19) 2,557백만원(증1,164)**

- 김해격리재배시설 온실 신축 948백만원
- 외래병해충 예찰활동 707백만원
- 침입병해충 국제공동연구 216백만원
- 외래흰개미 피해방지 예찰 및 분류동정, 긴급방제, 역학조사 등 686백만원

○ **식물검역·검사 운영 ('18) 1,548 → ('19) 1,548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 식물검역 기관운영비 1,548백만원

○ **국제검역협력 확대로 글로벌 리더쉽 구현 ('18) 324 → ('19) 313백만원(감11)**

- 식물검역 국제협력사업 313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15,889백만원	17,677백만원
▪ 해외식물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강화	6,602백만원	7,824백만원
◦ 붉은불개미 확산방지	2,933백만원	4,155백만원
◦ 식물검역 정밀검사 업무보조	1,393백만원	2,125백만원
◦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2,276백만원	1,544백만원
▪ 농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1,474백만원	887백만원
◦ 병해충 분류동정 기술개발연구	1,022백만원	435백만원
◦ 수출검사 등 검역지원	452백만원	452백만원
▪ 검역선진화를 위한 기반확충	4,548백만원	4,548백만원
◦ 식물병원체 검사시약 구입	921백만원	921백만원
◦ 식물검역기술개발연구	2,195백만원	2,195백만원
◦ 검역장비 구입 등	1,432백만원	1,432백만원
▪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관리체계 개선	1,393백만원	2,557백만원
◦ 김해격리재배시설 온실 신축	-	948백만원
◦ 침입병해충 국제공동연구	-	216백만원
◦ 외래병해충 예찰활동	707백만원	707백만원
◦ 분류동정, 역학조사 등	686백만원	686백만원
▪ 식물검역검사 운영	1,548백만원	1,548백만원
◦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 식물검역 기관운영비	1,548백만원	1,548백만원
▪ 국제검역협력 확대로 글로벌 리더쉽 구현	324백만원	313백만원
◦ 국제회의 개최 등 식물검역 국제협력사업	324백만원	31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수입검역] 농림산물 교역확대 및 해외여행의 증가로 외래병해충의 유입 위험요인 지속 증가

- 수입검역건수(화물): ('00) 71천건 → ('17) 4,859 (2,126% 증)

  * 병해충 검출 : ('00) 360종 6,233건 → ('17) 718, 12,749 (105% 증)

- 해외여행객수 : ('00) 2,180만명 → ('17) 8,040 (269% 증)

  * 금지품(열대과실 등) 적발건수 : ('00) 12천건 → ('17) 113(841% 증)

- 재식용식물 검출율 : ('10) 8.3% → ('17) 22%

▣ 철저한 수출입식물 검역으로 병해충 유입차단 및 수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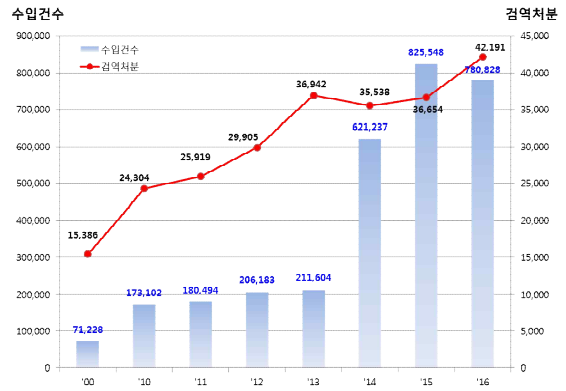

<수입식물 검역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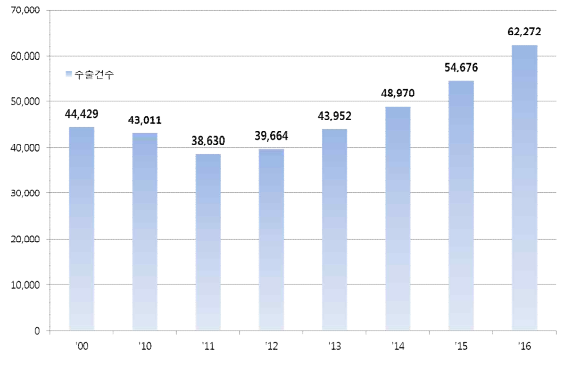

<수출식물 검역실적>

○ [예찰·방제] 외래병해충 유입 및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찰·방제 관련 기관간 협업의 필요성 증대

- '17년 붉은불개미 발견, '15~'17년 과수화상병 발생, '16년에는 자두곰보병(PPV), 호두나무갈색썩음병 발생 등 악성 외래병해충 지속 발생

* 1900년 이래 87종(병40, 해충 47) 유입, 이중 32종이 2000년 이후 유입

- 국내 미발생 병해충 발생시 과수원 피해 발생 및 수출 중단으로 과수산업에 심각한 문제 초래

- 따라서 상시 예찰 시스템이 가동되어져야 하며 병해충 생태 특성상 농진청, 산림청, 학계, 민간 등과의 협업·공조 필요

< 연도별 병해충 발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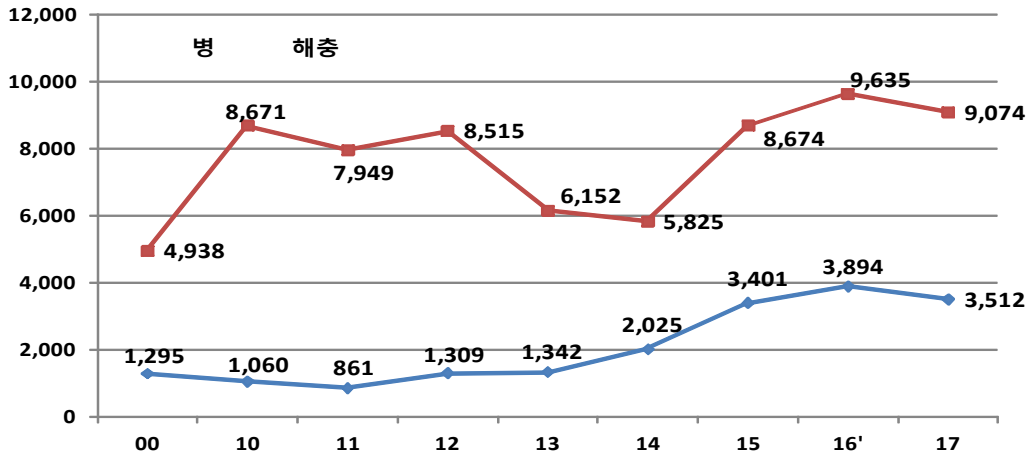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병
해충
4,938
8,671
7,949
8,515
6,152
5,825
8,674
9,635
9,074
1,295
1,060
861
1,309
1,342
2,025
3,401
3,894
3,512
00
10
11
12
13
14
15
16'
17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식물검역 정밀검사 업무보조		1,393 (53명×26,283백만)	2,125 (70명×30,357백만)		
· 검역소모품 구입 등		2,276 (7개소×325.1백만)	1,544 (7개소×220.5백만)		
▪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1,809	**1,474** (15과제×98.2백만×100%)	**887** (15과제×59.1백만× 100%)	**△587**	**△39.8**
· 병해충 분류동정개발연구		1,022 (7과제×146백만)	435 (7과제×62.1백만)		
· 수출검사 등 검역지원		452 (7개소×64.5백만)	452 (7개소×64.5백만)		
▪ 검역선진화 위한 검역지원	4,071	**4,548** (7개소×649.7백만×100%)	**4,548** (7개소×649.7백만×100%)	-	-
· 식물병원체 검사시약 구입		921 (7개소×13.1백만×10종)	921 (7개소×13.1백만×10종)		
· 식물검역기술개발연구		2,195 (22과제×99.8백만)	2,195 (22과제×99.8백만)		
· 검역장비 구입 등		1,432 (7개소×14.6백만×14종)	1,432 (7개소×14.6백만×14종)		
▪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관리체계 개선	1,742	**1,393** (7개소×199백만×100%)	**2,557** (7개소×365.2백만×100%)	**1,164**	**83.6**
· 김해격리재배 온실신축		-	948 (4개동×237백만)		
· 침입병해충 국제공동연구		-	216 (4개국×54백만)		
· 외래병해충 예찰활동		707 (7개소×101백만)	707 (7개소×101백만)		
· 분류동정, 역학조사 등		686 (7개소×98백만)	686 (7개소×98백만)		
▪ 식물검역검사 운영	1,425	**1,548** (7개소×221.1백만×100%)	**1,548** (7개소×221.1백만×100%)	-	-
· 식물검역 기관운영비		1,548 (7개소×221.1백만)	1,548 (7개소×221.1백만)		
▪ 국제검역협력 확대로 글로벌 리더쉽 구현	768	**324** (27회×2명×6백만원×100%)	**313** (25회×2명×6.2백만원×100%)	**△11**	**△3.4**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제협력 회의개최 등		324 (25회×6.48백만×2명)	313 (25회×6.26백만×2명)		
□ **비목**(합계)	**11,217**	**15,889**	**17,677**	**1,788**	**11.3**
○ 상용임금(110-03)	451	1,160	1,771	611	52.7
○ 일반수용비(210-01)	1,239	1,411	1,433	22	1.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7	120	120	-	-
○ 피복비(210-03)	90	130	130	-	-
○ 특근매식비(210-05)	29	64	64	-	-
○ 임차료(210-07)	183	256	256	-	-
○ 유류비(210-08)	133	170	170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33	419	450	31	7.4
○ 재료비(210-11)	1,820	1,941	2,674	733	37.8
○ 복리후생비(210-12)	4	21	28	7	33.3
○ 시험연구비(210-13)	3,274	1,568	981	△587	△37.4
○ 일반용역비(210-14)	494	3,037	3,440	403	13.3
○ 기타운영비(210-16)	20	20	20	-	-
○ 국내여비(220-01)	836	682	786	104	15.2
○ 국외업무여비(220-02)	164	202	191	△11	△5.4
○ 업무추진비(240-01)	60	55	54	△1	△1.8
○ 특정업무경비(250-03)	41	46	46	-	-
○ 일반연구비(260-01)	-	2,089	2,089	-	-
○ 보상금(310-01)	460	-	-	-	-
○ 포상금(310-03)	-	4	4	-	-
○ 고용부담금(320-09)	90	212	326	114	53.8
○ 해외경상이전(340-01)	100	101	317	216	213.9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10	10	-
○ 실시설계비(420-02)	-	-	20	20	-
○ 공사비(420-03)	-	-	905	905	-
○ 감리비(420-04)	-	-	13	13	-
○ 자산취득비(430-01)	1,379	2,181	1,379	△802	△36.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 내 법 : 식물방역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제규범 : WTO/SPS, FAO/IPPC 등

○ 추진경위

- UR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해외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3년부터 검역기능강화 대책 추진
  - 제1단계 : 식물검역기능강화대책 ('93～'95년)
  - 제2단계 : 식물검역기능강화대책 ('96～'98년)
  - 제3단계 : 정부투・융자계획 ('99년～'06년)
  - 제4단계 : 식물검역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07년～'16년)
  - 제5단계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16년～'20년)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확대 5개년 종합계획" 발표('08. 5.)
  - '12년부터 농식품 수출 100억$ 달성을 목표로 수출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신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기반 구축이 되지 않으면 검역적 안전성 확보와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한계
- 농산물 수출검역지원 기반구축사업 방침(농식품부장관, '09. 3.)
  - 수출 상대국의 검역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검역적 안전성 확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병해충 방제방법 개발 추진
- 기후변화대응 식물검역종합대책 수립('12～'20년)
  -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식물검역 여건 변화를 예측,『사전대비시스템』구축
-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추진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 '13. 12.)
  - 새로운 검역수요와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동식물 검역관련 법령·제도·조직 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16～'20년)
  - 기능강화 계획을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 세부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20	107	103	114	104	15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도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억원

○ 2016년도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억원
- 이월 사유 : 당초 2016년에 IPPC 총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총회 연기('17.4.5.~4.11., 개최확정)로 인한 일반용역비(5억원) 이월

○ 2017년도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억원
- 이용 사유 : 붉은불개미 손실보상금 충당 5억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3 ( )	- ( )	- ( )	103 ( )	102 ( )	- ( )	1 ( )
'16년	114 ( )	- ( )	- ( )	114 ( )	108 ( )	5 ( )	1 ( )
'17년	104 ( )	5 ( )	5 ( )	114 ( )	112 ( )	- ( )	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통합재정사업평가 : ('16.3.) 우수, ('17.4.)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수입식물검역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검역신청	연중	수입자	◦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없이 검역신청(10일 이내) -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현장검역 (검역장소)	연중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 신청 건에 대한 현장 출장검역 실시 - 수입 화물의 품명·수량 및 병해충 감염여부 확인
실험실정밀검역	병해충 발견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현장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 분류동정 실시 ◦ 정밀검역 대상 품목의 병해충 부착 유무 확인
합격통보	병해충이 없거나 검역조치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거나 소독 등의 검역조치 후 합격증 발부

○ 수출식물검역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검역신청	연중	수출자	◦ 수출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여 신청 -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재배지검역	4~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 상대국 검역요건 준수사항 확인 - 수출농가 등록·관리 - 재배중 병해충 발생 및 방제 모니터링
현장검역	연중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자가 원하는 장소·시간에 현장 출장검역 실시 - 필요시 공휴일에도 검역지원
실험실정밀검역	병해충 발견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현장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 분류동정 실시 ◦ 정밀검역 대상 품목의 병해충 부착 유무 확인
합격증 발부	병해충 없을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발급

○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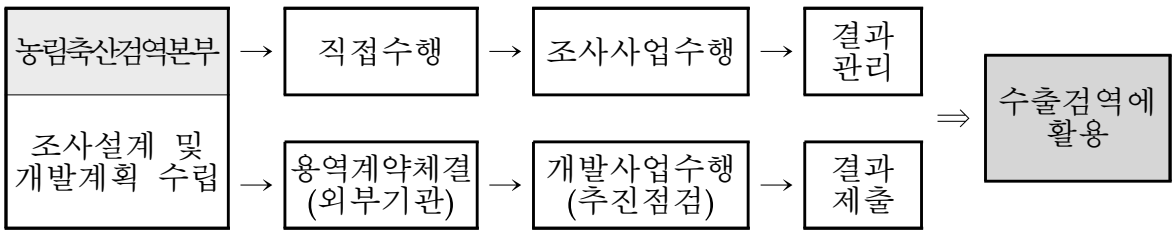

○ 수출입 식물검역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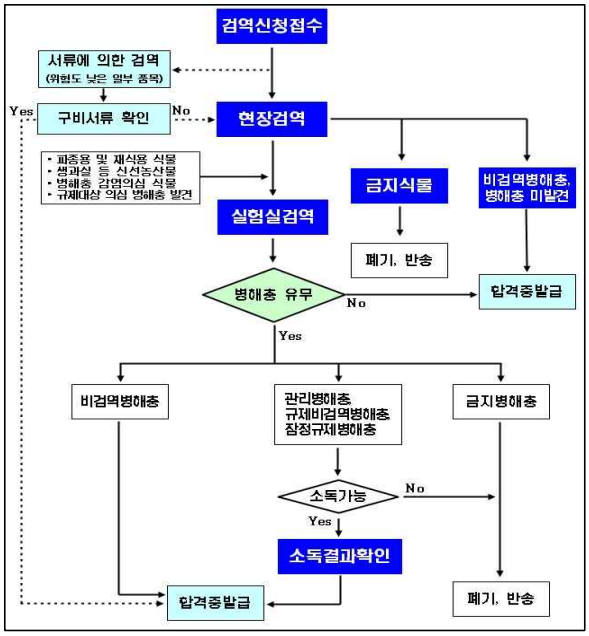

[수입식물검역 세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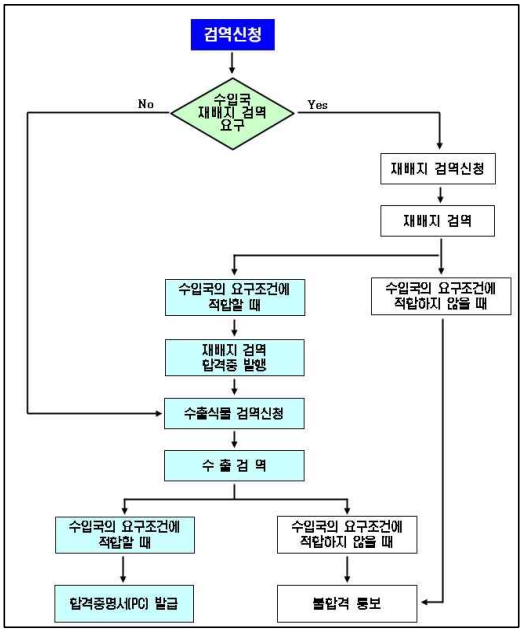

[수출식물검역 세부절차]

○ 조사연구사업 시행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계획수립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개요, 추진방향, 사업 분야, 사업비 투자계획 등 수립
설계 평가	2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당해연도 계속과제 설계서 평가 (미비점 보완 후 수행)
수행자 선정심의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규과제 공모, 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
과제 수요조사	4~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차기년도 수행할 과제 공모
책자 발간	5~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당년 사업설계서 및 전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사업결과 활용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완료과제에 대한 현장교육, 세미나, 현장 점검 등
진도 평가	6~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 수행여부 점검
과제수행점검	11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이 수요처의 활용도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
연차평가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심의회를 개최하여 당년도 연구목표 수행 여부 평가
정산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산운용의 적합성 및 적정 집행 여부 검토

3. 동식물검역검사(ODA)(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식물검역검사(ODA)	345	230	230	-	-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200 - 6232
* 담당자 : 식물검역부장(노수현), 수출지원과장(이영구), 연구관(임규옥, ☏ 054-912-062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제농림협력사업으로 한-아세안 협력체계 구축 및 개도국 동식물검역능력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 향상을 위한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국제기준 워크숍 개최 및 참가 지원,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기간	'06~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230백만원 -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역량강화 사업(181백만원) - 개도국 국경검역시스템 구축 지원(49백만원)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역량강화 사업(181백만원)

○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역량강화 사업 : 개도국 식물검역국제기준 마련 워크숍 참석 및 식물검역전문가 초청연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1백만원

- 개도국 지원 및 사업유지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0% 증액
- 산출내역 : 181백만원

* 일반수용비: ('18) 자료집 등 24(485천원×50명) → ('19) 자료집 등 30 (500천원×60명)

* 공공요금: ('18) 보험료 3 (60천원×50명) → ('19) 보험료 3 (60천원×50명)

* 임차료: ('18) 19 (회의장 14 (1,000천원×14일) + 차량 5 (500천원×10일))
→ ('19) 23 (회의장 16 (1,000천원×16일) + 차량 7 (700천원×10일))

* 재료비: ('18) 교육기자재 10 (400천원×25명) → ('19) 교육기자재 10 (400천원×25명)

* 국내여비: ('18) 6 (120천원×4명×12일) → ('19) 5 (120천원×3명×14일)

* 국외여비: ('18) 전문가초청 116 (항공료 41 (1,200천원×34명), 일비 75 (153천원×35명×14일))
→ ('19) 개도국초청 107 (항공료 38 (1,200천원×32명), 일비 69 (153천원×32명×14일))

* 사업추진비: ('18) 만찬 등 3 (40천원×43명×2회) → ('19) 만찬 등 3 (40천원×43명×2회)

○ 개도국 국경검역시스템 구축지원 사업(49백만원)

○ 개도국 국경검역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 미얀마 식물검역시스템 구축 및 검역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한 사업비 49백만원

- 개도국 지원 및 사업유지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0% 증액
- 산출내역 : 49백만원

* 일반수용비: ('18) 자료집 등 4 (400천원×10명) → ('19) 자료집 등 4 (400천원×10명)

* 재료비: ('18) 실험실기자재 등 10 (300천원×33개) → ('19) 실험실기자재 등 10 (300천원×33개)

* 국내여비: ('18) 2 (140천원×3명×5일) → ('19) 2 (140천원×3명×5일)

* 국외여비: ('18) 개도국초청 등 31 (항공료 10 (1,000천원×10명), 일비 21 (150천원×10명×14일))
→ ('19) 개도국초청 등 31 (항공료 10 (1,000천원×10명), 일비 21 (150천원×10명×14일))

* 사업추진비: ('18) 만찬 등 2 (40천원×25명×2회) → ('19) 만찬 등 2 (40천원×25명×2회)

구 분	'18 예산	'19 예산
□동식물검역검사 (ODA)	**230백만원**	**230백만원**
▪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역량강화 사업	**181 백만원** ▪ 일반수용비: 24 ▪ 공공요금: 3 ▪ 임차료: 19 ▪ 재료비: 10 ▪ 국내여비: 6 ▪ 국외여비(개도국초청): 116 ▪ 사업추진비: 3	**181 백만원** ▪ 일반수용비: 30 ▪ 공공요금: 3 ▪ 임차료: 23 ▪ 재료비: 10 ▪ 국내여비: 5 ▪ 국외여비(개도국초청): 107 ▪ 사업추진비: 3
▪ 개도국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49백만원** ▪ 일반수용비: 4 ▪ 재료비: 10 ▪ 국내여비: 2 ▪ 국외여비(개도국초청): 31 ▪ 사업추진비: 2	**49백만원** ▪ 일반수용비: 4 ▪ 재료비: 10 ▪ 국내여비: 2 ▪ 국외여비(개도국초청): 31 ▪ 사업추진비: 2

□ 지원 필요성

○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역량강화 사업

①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 '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써 워크숍 개최 및 아시아지역 사무국의 추천을 받은 개도국 참가자중 1개국 1명씩의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우리나라는 '식물검역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제기구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 ▪ FAO/IPPC 측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표시(제13차 총회, '18. 4월)

→ 국제기구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개도국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7년간 국제기준 아시아지역 워크숍의 수원국 >

연도	수 원 국
2012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2013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파키스탄
2014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2015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오세아니아
2016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오세아니아
2017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필리핀, 오세아니아
2018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오세아니아

②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

- ‘ASEAN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사업으로 ‘04년 제8차 한 ASEAN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05년 제5차 ASEAN+3 농림장관 회의 사업 실시 제안, ‘06년부터 국제농림 협력사업으로 계속 실시 (제12차 ASEAN+3 농림장관 회의 시(’12. 9.) 동 사업 계속 실시 보고)
- 제10차 한-ASEAN FTA경제 협력 작업반회의(‘10.7)에서 지속 추진을 희망함 (ASEAN 회원국들로부터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 평가)
- 아세안 개도국들은 자국에서 식물검역 전문교육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지원을 희망하여 매년 참가 요청하고 있음
- 검역본부 임규옥연구관의 IPPC 의장 선출(‘14.4월)에 따라 입지 강화 및 리더쉽 발휘를 위해 ODA 지속 추진 필요(농식품부 장관, 4.11.)

→ 매년 아세안+3 농림장관 회의에 보고되는 국제농림 협력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7년간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의 수원국 >

연도	수 원 국
2012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가나, 이집트
2013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피지
2014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2015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2016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2017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부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쿡제도, 피지
2018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네팔

○ 개도국 국경검역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대상국 미얀마)

- '11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 라오스에 대한 사업이 종료('13.12월)됨에 따라 차기 대상국으로 미얀마 선정
-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제도 및 기술을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파하여 미얀마의 식물검역 능력 배양에 기여
- 우리 전문가들의 교육, 평가 등에 대한 노하우와 능력함양 기회 확보
- 농식품부의 '농림유관기관 공동협력 ODA 시범사업'(대상국: 미얀마)에 부합하는 대상국 선정으로 국제농림협력사업 시너지효과 제고
- 검역본부 임규옥 연구관의 IPPC 의장 선출('14.4월)에 따라 입지 강화 및 리더쉽 발휘를 위해 ODA 확대 필요(농식품부장관, 4.11.)

▸ 우리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분야 3개 ODA 사업을 통하여 아시아지역 처음으로 국제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의장 배출(임규옥 연구관, '14.4 ~ '16.4)

▸ 2017.4월, 세계최초로 IPPC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120여개국 20개 국제기구 등 약 36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17.4.5.~11, 인천 송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식물검역검사(ODA)	345	230	230	-	-
▪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역량강화 사업 (참가자 50명×3,620천원)	179	181 (운영비 50천원×10일×2회×50명) (재료비 400천원×25) (참가자 초청 등 464천원×25명×10일) (환영만찬 등 40천원×43명×2회)	181 (운영비 60천원×10일×2회×50명) (재료비 400천원×25) (참가자 초청 등 428천원×25명×10일) (환영만찬 등 40천원×43명×2회)	-	-
▪ 개도국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참가자 10명×4,900천원)	49	49 (자료집 등 400천원×10명) (재료비 400천원×25) (참가자 초청 등 370천원×6명×14일) (환영만찬 등 40천원×25명×2회)	49 (자료집 등 400천원×10명) (재료비 400천원×25) (참가자 초청 등 370천원×6명×14일) (환영만찬 등 40천원×25명×2회)	-	-
▪ 몽골 동물질병 자료정리 및 방역기술 지원 (참가자 20명×5,900천원)	117	-	-	-	-
□ 비목(합계)	345	230	230	-	-
○ 일반수용비(210-01)	33	28	34	6	21.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3	-	-
○ 임차료(210-07)	19	19	23	4	21.1
○ 재료비(210-11)	70	20	20	-	-
○ 일반용역비(210-15)	57	-	-	-	-
○ 국내여비(220-01)	8	8	7	△1	△12.5
○ 국외여비(220-02)	149	147	138	△9	△6.1
○ 사업추진비(240-01)	6	5	5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추진경위

- '04년 제8차 한-ASEAN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05년 제5차 ASEAN+3 농림장관 회의 시 아세안 개도국과의 협력 사업 실시가 제안되어 '06년부터 국제농림 협력사업으로 실시(ASEAN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 국제기준 초안 검토를 위한 IPPC 아태지역 워크숍 개최)
- '14년 미얀마와 식물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미얀마간 국제협력사업 실시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동식물검역검사(ODA)	2.43	2.43	2.30	3.48	3.48	2.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불용액(17백만원) : 집행잔액

○ 2016년 불용액(3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17년 불용액(3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30 ( )	- ( )	- ( )	2.30 ( )	2.13 ( )	- ( )	0.17 ( )
'16년	3.48 ( )	- ( )	- ( )	3.48 ( )	3.45 ( )	- ( )	0.03 ( )
'17년	3.48 ( )	- ( )	- ( )	3.48 ( )	3.45 ( )	- ( )	0.0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7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선진국(미, 캐, 호, 유럽 등)은 워크숍 등을 개최 및 지원하여 자국입장 강화

- 워크숍, 교육연수 등 다양한 식물검역관련 ODA 사업을 개최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역량강화 사업

①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집행 과정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워크숍 개최 통보 (국제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태지역 식물보호기구 사무국에 워크숍 개최 통보
⇓		
참가국 및 참가국 결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태지역 식물보호기구 사무국의 추천을 통해 참가자 결정
⇓		
세부계획 수립	농림축산검역본부	워크숍 의제, 국제기준에 대한 세부 안건 등 계획 수립
⇓		
사전 전문가 회의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규 국제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워크숍 개최 준비상황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워크숍 장소, 예산, 집행계획 등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채택, 검역현장 견학등 실시
⇓		
최종 결과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산 결산 등 추진사항 보고 및 참가국/국제기구의 평가 분석

②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집행 과정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연수사업 개최 통보 (국제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태지역 식물보호기구 사무국에 연수사업 개최 통보
⇓		
개도국 참가자 추천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태지역 식물보호기구 사무국을 통해 개도국 참가자 추천
⇓		
세부계획 수립	농림축산검역본부	연수 프로그램 발굴, 현장 견학 등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		
참가자확정 및 초청서신 송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참가자 확정을 통한 행사 규모 최종 확정 및 각국에 초청 서신 송부
⇓		
연수사업 준비상황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연수사업 장소, 예산, 집행계획 등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		
연수사업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에 대한 식물검역 시스템 연수 실시
⇓		
최종 결과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산 결산등 추진사항 보고 및 참가자/국제기구의 평가 분석

○ 개도국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 지원

집행 과정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검역시스템 구축사업 시행통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혜국에 식물검역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 통보
⇓		
수혜국 담당자 초청 교육 훈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수혜국 식물검역 관리자를 초청하여 식물검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검역용 물품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여건이 빈약한 수혜국에 검역용 물품 지원
⇓		
우리측 전문가 현지파견 기술전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우리측 병해충 분류전문가를 수혜국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기술전수 실시
⇓		
결과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시스템 구축사업의 효과 및 향후 훈련 수요 발굴

4. 동축산물검역검사(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축산물검역검사	7,761	9,210	9,748	538	5.8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200 - 6233
* 담당자 : 동물질병관리부장(양주필), 동물검역과장(이지우), 사무관(하용우, ☏ 054-912-041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입 동·축산물의 검역 강화를 통한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 축산물 수출검역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 주요 공항만 검역 탐지견 기동배치·국제 공항만 국경검역(축산관계자) 소독 등 CIQ 검역 사무실 등 운영·소독약품·검역장비 구입 ○ 수입 동축산물 전염병 정밀검사 재료비·실험장비 구축 ○ 해외작업장 현지점검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검역 지원 등 ○ 검역계류장 등 노후 검역시설·실험실 장비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사업기간	'92~현재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국비 100%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해외가축전염병 유입방지 국경검역> ('18) 1,914백만원 → ('19) 2,044백만원(증 130)

○ 검역업무 차량, 소독장비 등 장비구입 ('18) 712백만원 → ('19) 573백만원

○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위탁사업 ('18) 410백만원 → ('19) 657백만원

- 검역 X-ray 검색요원(8명) 신규 및 통역용역 인건비 증액 ('18) 365원 → ('19) 612 (증 247)

○ 검역 재료비, 검역장비 유지보수비, 임차료 등 ('18) 792백만원 → ('19) 814백만원

<동축산물 검역검사 인력보강> ('18) 3,484백만원 → ('19) 3,900백만원(증 416)

○ 공무직 112명 최저시급 및 고용부담금 인상분 반영

< 동축산물 검역검사 운영경비 > ('18) 1,442백만원 → ('19) 1,496백만원(증 54)

○ 신규 국제공항(인천 T2) 및 영남 신축계류장 운영 등

< 해외작업장 점검 및 검역검사 현장업무 > ('18) 593백만원 → ('19) 531백만원(△ 62)

○ 해외작업장 점검 등 국외여비 ('18) 214백만원 → ('19) 202백만원

○ 검역 현장업무 수행 등 국내여비 ('18) 379백만원 → ('19) 329백만원

< 수입 동·축산물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 ('18) 553백만원 → ('19) 553백만원(전년 동)

○ 정밀검사 실험 재료비 ('18) 470백만원 → ('19) 전년 동

○ 노후 정밀검사 장비 교체 및 실험장비유지보수 등 ('18) 83백만원 → ('19) 전년 동

< 계류장 등 검역시설 개보수 > ('18) 1,224백만원 → ('19) 1,224백만원(전년 동)

○ 동물검역 계류장 시설 개조공사 ('18) 689백만원 → ('19) 전년 동

○ 노후 검역시설 개보수 ('18) 535백만원 → ('19) 전년 동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동축산물검역검사	**9,210백만원**	**9,748백만원**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국경검역** · 신규 공항만 개항관련 검역사무실 구축 및 검역장비 구입 등 ·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위탁사업 * 통역 및 X-ray 검색보조용역, 영상제작 · 검역 재료비, 장비 유지보수, 파견 검역관 임차료 등 운영경비	□ **1,914백만원** · 712백만원 (6개소×118.7백만원) · 410백만원 (12명×34.2백만원) · 792백만원 (6개소×132백만원)	□ **2,044백만원** · 573백만원 (6개소×95.5백만원) · 657백만원 (20명×32.85백만원) · 814백만원 (6개소×135.6백만원)
▪ **동축산물 검역검사 인력보강** · 검역탐지견 사양관리·정밀검사 및 공항만 검역지원 공무직 운영	□ **3,484백만원** · 3,484백만원 (112명×31.11백만원)	□ **3,900백만원** · 3,900백만원 (112명×34.82백만원)
▪ **동축산물 검역검사 운영경비** · 신규 공항만 개항 등에 따른 검역 운영경비(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 **1,442백만원** · 1,442백만원 (7개소×12월×17.17백만원)	□ **1,496백만원** · 1,496백만원 (7개소×12월×17.81백만원)
▪ **해외작업장 점검 및 검역검사 현장업무** · 해외 작업장 점검 등 국외여비 · 검역 현장업무 수행 등 국내여비	□ **593백만원** · 214백만원 (24개국×2명×4.46백만원) · 379백만원 (7개소×4.51백만원×12회)	□ **531백만원** · 202백만원 (22개국×2명×4.59백만원) · 329백만원 (7개소×4.7백만원×10회)
▪ **수입 동축산물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 정밀검사 실험 재료비 등 · 노후 정밀검사 장비 교체·구입 및 실험장비 유지보수 등	□ **553백만원** · 471백만원 (15종×185건×169.7백만원) · 82백만원 (3종×27.3백만원)	□ **553백만원** · 471백만원 (15종×185건×169.7백만원) · 82백만원 (3종×27.3백만원)
▪ **계류장 등 검역시설 개보수** · 시설 개보수 등 계류장 공사 · 노후 검역시설 개보수 등	□ **1,224백만원** · 689백만원 (1건×689백만원) · 535백만원 (6개소×89.2백만원)	□ **1,224백만원** · 689백만원 (1건×689백만원) · 535백만원 (6개소×89.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본 사업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축산업 보호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1992년부터 동물검역기능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전(前) 축산물작업장 현지점검, 사전 위해평가, 수입단계 동축산물 검역검사를 수행하는 대표적 국가주도 사무임

※ 현행 WTO/SPS 협정은 동물·축산물 검역·검사 업무를 국가사무로 간주하고 있고, WTO는 회원국에서 국민건강 보호 목적의 검역·검사조치를 주권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로 인정

○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해외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위해요인의 사전 차단 및 국경검역 조치 부재, 동축산물의 수출입 중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져,

-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및 축산업 등 관련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FTA 체결확대, 해외여행객 증가, 중국 구제역·ASF 발생 등 주변국의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으로 인한 국내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사전 예방적 국경검역」 조치 지속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동축산물검역검사	**7,761**	**9,210**	**9,748**	**538**	**5.8**
▪ 해외가축전염병 유입방지 국경검역	3,889	1,914 (6개소×12월×26.58백만원)	2,044 (6개소×12월×28.39백만원)	130	6.8
▪ 동·축산물검역검사 인력보강	358	3,484 (112명×12월×2.592백만원)	3,900 (112명×12월×2.902백만원)	416	11.9
▪ 동·축산물 검역 검사 운영경비	1,333	1,442 (7개소×12월×17.17백만원)	1,496 (7개소×12월×17.81백만원)	54	3.7
▪ 해외작업장 점검 및 검역검사 현장업무	602	593 (7개소×12월×7.06백만원)	531 (7개소×12월×6.32백만원)	△62	△10.5
▪ 수입 동·축산물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546	553 (15종×12월×3.07백만원)	553 (15종×12월×3.07백만원)	-	-
▪ 계류장 등 검역 시설 개보수	1,033	1,224 (공사비 689 + 유지보수 535백만원)	1,224 (공사비 689 + 유지보수 535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비목(합계)	7,761	9,210	9,748	538	5.8
○ 상용임금(110-03)	292	3,020	3,250	230	7.6
○ 일반수용비(210-01)	900	870	920	50	5.7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58	320	320	-	-
○ 피복비(210-03)	118	152	152	-	-
○ 특근매식비(210-05)	30	58	58	-	-
○ 임차료(210-07)	83	83	97	14	16.9
○ 유류비(210-08)	88	132	132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11	554	554	-	-
○ 재료비(210-11)	1,005	1,047	1,055	8	0.8
○ 복리후생비(210-12)	3	45	45	-	-
○ 일반용역비(210-14)	-	410	657	247	60.2
○ 관리용역비(210-15)	2,249	-	-	-	-
○ 국내여비(220-01)	402	379	329	△50	△13.2
○ 국외업무여비(220-02)	200	214	202	△12	△5.6
○ 사업추진비(240-01)	15	13	13	-	-
○ 보전금(310-04)	12	29	33	4	13.8
○ 고용부담금(320-09)	63	419	605	186	44.4
○ 실시설계비(420-02)	20	24	23	△1	△4.2
○ 공사비(420-03)	616	661	653	△8	△1.2
○ 감리비(420-04)	3	-	9	9	순증
○ 시설부대비(420-05)	2	4	4	-	-
○ 자산취득비(430-01)	991	776	637	△139	△17.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조~제10조, 제30조~제45조

○ 추진경위

- 1992년부터 동물검역기능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BSE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와 국가단위의 수입금지에서 지역화의 국제추세에 따른 해외악성가축질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수입 전(前)

축산물작업장 현지점검, 사전 위해평가, 수입단계 동축산물 검역검사를 수행하는 대표적 국가주도 사무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동축산물검역검사	135	94	92	93	80	9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불용(304백만원) : 건설비 낙찰차액(149), 국내·외 여비(48), 특근매식비(38) 등 집행 잔액

○ ('16년)·불용(346백만원) : 건설비 낙찰차액 74, 특근매식비 38, 위탁사업비 낙찰차액 27 등 집행 잔액

·이월(53백만원) : 공항시설물 건축승인절차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공사계약 후 시설비 일부 이월

○ ('17년)·불용(304백만원) : 건설비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157), 공공요금및제세(32), 시설장비유지비(27) 등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2 (-)	0.08 (-)	- (-)	92 (-)	89 (-)	- (-)	3 (-)
'16년	97 (-)	- (-)	- (-)	97 (-)	93 (-)	0.5 (-)	3.5 (-)
'17년	80 ( )	0.5 ( )	( )	81 ( )	78 ( )	- ( )	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 : 우수(91.9점)

* 재난안전사업(행안부) 평가로 통합재정평가(농식품부) 대체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연간 업무 추진계획 수립	'18.12 ~ '19.1	농림축산 검역본부	· 구제역·AI 유입방지 국경검역 종합대책 수립 · 분기별/단위업무별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사업예산 배정 계획 수립	'19.1	농림축산 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6개 지역본부별 동축산물검역검사 사업예산 배정 및 운영계획 수립 ·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사업 집행	연중	농림축산 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6개 지역본부 소관 사무별 국경검역 및 수입축산물 검역업무 수행
⇓			
예산집행현황점검	월별/ 분기별	농림축산 검역본부	·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예산 집행 현황 및 집행 부진사유 등 점검
⇓			
연간 업무 추진 결과 분석	'19.11 ~'19.12	농림축산 검역본부	· 당해 연도 구제역·AI 유입방지 국경검역 종합 추진 결과 분석
⇓			
예산 결산	'19.12	농림축산 검역본부	· 연간 사업예산 집행실적 결산

5. 축산식품안전관리(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축산식품안전관리	1,704	2,540	1,910	△630	24.8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200 - 6233
* 담당자 : 동물질병관리부장(양주필), 동물검역과장(이지우), 사무관(하용우, ☏ 054-912-041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적·체계적인 생산단계 축산물안전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내 축산업 보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관리 강화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공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안정화"를 통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지도·점검, 콜센터 운영 및 이력시스템 보급대상자 교육 등 ○ 잔류물질·병원성미생물 탐색조사, 원유공영화 검사 등 정밀검사 및 실험장비 구입 ○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 위생점검, 도축장, 집유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실시, Codex 국제회의 참석 등
사업기간	'98~현재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국비 100%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수입축산물 이력제 운영> ('18) 957백만원 → ('19) 747백만원 (△ 210)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점검 및 홍보, 이력제 콜센터 운영

<미생물 등 실험실 검사> ('18) 1,291백만원 → ('19) 862 (△ 429)

○ 항생제내성균 등 정밀검사 보조인력 운영, 검사장비 구입·유지보수

<위생감시·HACCP 평가> ('18) 292백만원 → ('19) 301 (증 9)

○ 생산단계 작업장 관리, 위생 특사경 활동, 국제회의(Codex) 참석·대응 등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축산식품안전관리	2,540백만원	1,910백만원
▪ 수입축산물 이력제 운영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점검 및 이력제 상담 콜센터운영 · 민간경상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위탁)	□ 957백만원 · 756백만원 (6개소×12월×10.5백만원) · 201백만원 (3명×67백만원)	□ 747백만원 · 747백만원 (6개소×12월×10.37백만원) · △201백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관)
▪ 미생물 등 실험실 검사 · 실험실 운영경비 (재료비, 시료운송비 등) · 정밀검사 보조인력 운영 ('19년 신규 6명 증원) · 노후화된 정밀검사 장비 교체, 검사장비 유지보수	□ 1,291백만원 · 333백만원 (4개소×83.25백만원) · 58백만원 (2명×2.42백만원×12월) · 900백만원 (5종×180백만원)	□ 862백만원 · 333백만원 (4개소×83.25백만원) · 191백만원 (8명×23.88백만원) · 338백만원 (3종×112.7백만원)
▪ 위생감시·HACCP 평가 ·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 HACCP 평가 등 안전관리사업 운영 · 국제회의 국제기준 대응 등 국외 업무여비	□ 292백만원 · 247백만원 (6개소×12월×3.43백만원) · 45백만원 (5회×9백만원)	□ 301백만원 · 258백만원 (6개소×12월×3.58백만원) · 43백만원 (5회×8.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중점 국정과제인「식품안전 강국」실현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대국민 신뢰 제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 주 도 사무임

- 현행 WTO/SPS 협정은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업무를 국가사무로 간주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에서 국민건강 보호 목적의 검사조치를 주권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로 인정

○ 본 사업은 농장·도축장·집유장 등 생산단계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점검, 병원성미생물, 식중독균, 항생제 등 잔류물질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 예방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 사업이 중단될 경우 축산물 위생감시·안전성 검사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 조성 및 농장·축산물작업장 등 관련 산업의 피해 발생 예상

☞ **축산물(식육·식용란·원유)는 식품의 원료로서 생산 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식품안전강국 실현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축산식품안전관리**	**1,704**	**2,540**	**1,910**	**△630**	**△24.8**
▪ 수입축산물 이력제 운영	738	957 (6개소×12월×13.29백만원)	747 (6개소×12월×10.37백만원)	△210	△21.9
▪ 미생물 등 실험실 검사	700	1,291 (4개소×12월×26.9백만원)	862 (4개소×12월×17.96백만원)	△429	△33.2
▪ 위생감시·HACCP 평가	266	292 (6개소×12월×4.05백만원)	301 (6개소×12월×4.18백만원)	9	3.1
□ **비목**(합계)	1,704	2,540	1,910	△630	△24.8
○ 상용임금(110-03)	32	316	410	94	29.7
○ 일반수용비(210-01)	385	500	514	14	2.8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8	7	700
○ 특근매식비(210-05)	7	12	12	-	-
○ 임차료(210-07)	11	14	14	-	-
○ 유류비(210-08)	5	7	7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9	60	60	-	-
○ 재료비(210-11)	311	339	339	-	-
○ 복리후생비(210-12)	-	4	7	3	75
○ 관리용역비(210-15)	197	-	-	-	-
○ 국내여비(220-01)	138	143	124	△19	△13.3
○ 국외업무여비(220-02)	47	45	43	△2	△4.4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 특정업무경비(250-03)	7	9	9	-	-
○ 포상금(310-03)	-	1	1	-	-
○ 민간경상보조(320-01)	196	201	-	△201	순감
○ 고용부담금(320-09)	5	45	81	36	80
○ 자산취득비(430-01)	300	840	278	△562	△66.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8조

○ 추진경위

- 본 사업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및 품질향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확보 및 축산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98년부터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였음
- 2013.3.23. 정부조직개편으로 축산물위생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되었으며, 이 중 축산물의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농장, 식육,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제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축산식품안전관리	16	15	16	16	17	2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불용(88백만원) : 위탁사업비 낙찰차액 13, 국내·외 여비 19, 특근매식비 11 등 집행 잔액

○ ('16년)·불용(45백만원) : 특근매식비 12, 임차료 4 등 집행 잔액

○ ('17년)·불용(35백만원) : 관리용역비 낙찰차액(4), 특근매식비(10), 국내여비(9) 등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9 (1.9)	- (-)	- (-)	15.9 (1.9)	15.0 (1.9)	- (-)	0.9 (-)
'16년	16 (1.9)	- (-)	- (-)	16 (1.9)	15.6 (1.9)	- (-)	0.4 (-)
'17년	17.4 (2.0)	- (-)	- (-)	17.4 (2.0)	17.0 (2.0)	- (-)	0.4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 : 보통(85.7점)

* 재난안전사업(행안부) 평가로 통합재정평가(농식품부) 대체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			
연간 업무 추진계획 수립	전년 '12월	농림축산 검역본부	· 연간 축산물 위생감시, 수입쇠고기 이력제 관리 추진계획 수립
⇓			
사업예산 배정 계획 수립	1월	농림축산 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6개 지역본부별 축산식품안전관리 사업 예산 배정 및 운영계획 수립 ·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사업 집행	연중	농림축산 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6개 지역본부 소관 사무별 HACCP 제도 운영, 위생감시 등 업무 수행
⇓			
예산집행현황 점검	월별/ 분기별	농림축산 검역본부	·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예산 집행현황 및 집행 부진사유 등 점검
⇓			
연간 업무추진 결과 분석	11월 ~ 12월	농림축산 검역본부	· 당해 연도 축산물안전관리 업무추진결과 취합 · 각 업무별 실적 분석 및 차년도 연간 계획 수립
⇓			
예산 결산	12월	농림축산 검역본부	· 연간 사업예산 집행실적 결산

6.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 개발(R&D)	21,121	21,498	22,513	1,015	4.7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200 - 6234
* 담당자 :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윤동진), 연구기획과장(안종현), 연구관(허문, ☏ 054-912-070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방역기술, 동·축산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로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

○ 인수공통전염병, 동물질병제어기술 및 동물용의약품 품질, 축산물 위생관리기술개발로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식물병해충 유입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기술개발과 축산위생관리기술개발로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
사업기간	'98～계속
총사업비	- ('18년까지 기투자액 : 3,260억)
사업규모	전문연구실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장비 및 시설 확충
지원조건	국고지원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구제역백신국산화기반기술개발 : 새로운 백신주 및 평가기법 개발 및 '17~'18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별 특성조사, 변이예측, 작용 기전 연구 등의 발병 원인 규명 연구 및 구제역 방역 정책 변화에 따른 예찰 및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제 및 '21년까지 완공 예정인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백신 제조공정 표준화 연구 추진을 위해 4,228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17개 × 177백만원 = 3,012백만원
(신규) 6개 × 203백만원 = 1,216백만원

* ('18년) 4,477백만원 → ('19요구) 4,228백만원

○ AI예방제어기술개발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 구축, 국내 분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적 다양성 분석 연구, 바이러스 유사 입자 이용 AI 백신 개발 연구 등 새로운 진단기술 및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신속·정확한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효과적인 방제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1,945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12개 × 106백만원 = 1,275백만원
(신규) 6개 × 112백만원 = 670백만원

* ('18년) 1,705백만원 → ('19요구) 1,945백만원

○ 가축질병예방·제어기술 개발 : 소, 돼지, 가금, 꿀벌 등 가축의 생산성 저하질병 대응 및 청정화를 위한 동물질병의 예찰, 진단, 예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18년과 동일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27개 × 46백만원 = 1,246백만원
(신규) 20개 × 52백만원 = 1,044백만원

* ('18년) 2,290백만원 → ('19요구) 2,290백만원

○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 결핵, 브루셀라, 동물 변종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 진단, 예방 기술개발 및 항생제 내성 등 축산물 안전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1,662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7개 × 118백만원 = 829백만원

(신규) 7개 × 119백만원 = 833백만원

* ('18년) 1,866백만원 → ('19요구) 1,662백만원

○ 미래변화대응 신기술개발 : 국가신산업으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산업 확대에 따른 반려동물 전염성 질병 진단 예방 관리 기술 개발 및 기후온난화에 따른 신종매개체 질병 대응을 위한 과제 수행을 위해 1,572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4개 × 84백만원 = 336백만원
(신규) 16개 × 77백만원 = 1,236백만원

* ('18년) 842백만원 → ('19요구) 1,572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 기술개발 : 안전한 동물약품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법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628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6개 × 51백만원 = 304백만원
(신규) 3개 × 108백만원 = 324백만원

* ('18년) 665백만원 → ('19요구) 628백만원

○ 국제표준실험실인정 및 연구선진화 : 동물질병 제어기술의 선진화 달성과 세계 동물질병분야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증한 7개 국제표준실험실 운영·유지 및 학술정보관리, 실험실 안전 등 연구기반 안정화를 위한 과제 수행을 위해 '18년과 동일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7개 × 68백만원 = 475백만원

* ('18년) 475백만원 → ('19요구) 475백만원

○ 동식물검역기술개발 : 국내 미유입 동물 질병 대응(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검역불개미류 소독방법, 수입금지 식물 판별기술 개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462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계속) 6개 × 60백만원 = 360백만원
(신규) 2개 × 51백만원 = 102백만원

* ('18년) 587백만원 → ('19요구) 462백만원

○ 연구지원 및 기획 : 생물안전3등급 차폐실험실 등 시설유지비 및 실험실 의료폐기물 단가 상승, 구제역진단 BL3 실험실 신축공사

설계비 및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9,251백만원 반영

▪ 산출내역

- 상용임금 : 276백만원
  · 무기계약직 임금 및 상여금 : 276백만원
- 특근매식비 : 45백만원
  · 90명×5,000원×100회=45백만원
- 복리후생비 :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등 복지포인트 : 400,000원×162명=65백만원
- 시험연구비 : 4,656백만원
  · 일반수용비 956백만원
  · 피복비 5백만원
  · 임차료 8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3,337백만원
    * 차폐실험동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 BL3 유지관리 2,813백만원
    * 일반 장비 유지보수 130종×4,030천원=524백만원
  · 국외여비(외빈초청포함) 3,645천원×96명=350백만원
- 관리용역비 : 415백만원
  · 실험시설 폐기물, 폐수처리 등 : 415백만원
- 업무추진비 : 18백만원
- 고용부담금 : 929백만원
- 건설비 : 954백만원
  · 구제역진단 BL3 실험실 신축공사 설계 : 548백만원
  · 꿀벌질병실험동 건립 공사 : 406백만원
- 자산취득비 : 1,893백만원

* ('18년) 8,591백만원 → ('19요구) 9,251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R&D)	**21,498백만원**	**22,513백만원**
▪ 구제역백신 국산화기반기술 개발	**4,477** (계속) 2개 × 205백만= 410백만원 (종료) 8개 ×183백만=1,465백만원 (다/상)15개 × 173백만=2,602백만원	**4,228** (계속) 6개 ×166백만×12/12=95백만원 (종료) 11개×183백만×12/12=2,017백만원 (다상) 6개×203백만×12/12=1,216백만원
▪ AI예방제어기술 개발	**1,705** (계속) 2개×95백만 =190백만원 (종료) 2개×95백만 =190백만원 (다/상) 10개×109백만=1,085백만원 (단/상) 3개 ×80백만=240백만원	**1,945** (계속) 7개×115백만×12/12=804백만원 (종료) 5개×94백만×12/12=471백만원 (다상) 4개×114백만×12/12=455백만원 (단상) 2개×108백만×12/12=215백만원
▪ 가축질병예방 및 제어기술 개발	**2,290** (계속) 12개×51백만=607백만원 (종료) 16개×51백만=821백만원 (다상) 15개×43백만=639백만원 (단상) 4개×56백만 =223백만원	**2,290** (계속) 15개×44백만×12/12=653백만원 (종료) 12개×50백만×12/12=593백만원 (다상) 18개×54백만×12/12=964백만원 (단상) 2개×40백만 ×12/12=80백만원
▪ 인수공통전염병 제어기술개발	**1,866** (계속) 7개×118백만 =829백만원 (종료) 10개×104백만=1,037백만원	**1,662** (계속) 2개×111백만×12/12=222백만원 (종료) 5개×121백만×12/12=607백만원 (다상) 7개×119백만×12/12=833백만원
▪ 미래변화대응 신기술개발	**842** (계속) 3개×83백만 =250백만원 (종료) 7개×64백만=446백만원 (다상) 1개×86백만=86백만원 (단상) 1개×60백만=60백만원	**1,572** (계속) 3개×83백만×12/12=250백만원 (종료) 1개×86백만×12/12=86백만원 (다상) 14개×78백만×12/12=1,086백만원 (단상) 2개×75백만×12/12=150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 기술개발	**665** (계속) 4개×58백만=230백만원 (종료) 6개×52백만=310백만원 (다상) 2개×37백만=74백만원 (단상) 1개×51백만=51백만원	**628** (계속) 2개×60백만×12/12=119백만원 (종료) 4개×46백만×12/12=185백만원 (다상) 3개×108백만×12/12=324백만원
▪ 국제표준실험실 인정 및 연구선진화	**475** (계속) 6개×68백만 =407백만원 (다상) 1개×68백만 =68백만원	**475** (계속) 7개×68백만×12/12= 475백만원
▪ 동식물검역기술 개발	**587** (계속) 4개×60백만=241백만원 (종료) 4개×57백만=227백만원 (다상) 2개×59백만=119백만원	**462** (계속) 5개×58백만×12/12=290백만원 (종료) 1개×70백만×12/12=70백만원 (다상) 2개×51백만×12/12=102백만원
▪ 연구지원및기획	**8,591** · 공통경비 6,119백만원 · 자산취득비 2,472백만원	**9,251** · 공통경비 7,358백만원 · 자산취득비 1,89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적극적 R&D)**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감시, 진단, 예방, 치료법 개발**로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진단·검역·방역 기술 개발 확대 필요

○ **(구제역OIE표준실험실 BL3증축) 구제역 진단과 구제역 백신개발 연구를 위한 BL3실험실 공동사용으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긴급 진단, 백신개발 업무 지연 발생 및 실험실내 오염 및 바이러스 유출 우려

○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확대)**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개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법' 제정 등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질병조사, 진단, 예방 등 국가차원의 관리 미비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 기술개발 연구 확대)** '17년 닭진드기 창궐로 살충제 계란 잔류, 동물용의약품 잔류 등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확대 및 동물복지 관련 기술개발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R&D)	21,121	21,498	22,513	1,015	4.7
▪ 구제역백신국산화기반기술개발	4,035	4,477 (25개×179.1백만×100%)	4,228 (23개×183.8백만×100%)	△249	△5.6
▪ AI예방제어기술개발	-	1,705 (17개×100.3백만×100%)	1,945 (18개×108.1백만×100%)	240	14.1
▪ 가축질병예방및제어기술개발	2,277	2,290 (47개×48.7백만×100%)	2,290 (47개×48.7백만×100%)	-	-
▪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3,493	1,866 (17개×109.8백만×100%)	1,662 (14개×118.7백만×100%)	△204	△10.9
▪ 미래변화대응신기술개발	842	842 (12개×70.2백만×100%)	1,572 (20개×78.6백만×100%)	730	86.7
▪ 동물의약품및동물복지기술개발	816	665 (13개×51.2백만×100%)	628 (9개×69.8백만×100%)	△37	△5.6
▪ 국제표준실험실인정및연구선진화	426	475 (7개×67.9백만×100%)	475 (7개×67.9백만×100%)	-	-
▪ 동식물검역기술개발	771	587 (10개×58.7백만×100%)	462 (8개×57.8백만×100%)	△125	△21.3
▪ 연구지원 및 기획	8,461	8,591 공통경비 6,119백만원 자산취득비 2,472백만원	9,251 공통경비 7,358백만원 자산취득비 1,893백만원	660	7.7
□ 비목(합계)	21,121	21,498	22,513	1,015	4.7
○상용임금(1110-03)	435	3,747	4,519	772	20.6
○특근매식비(2110-05)	34	45	45	-	-
○복리후생비(2110-12)	8	56	65	9	16.1
○시험연구비(2110-13)	15,414	11,257	11,617	360	3.2
○관리용역비(2110-15)	304	300	415	115	38.3
○사업추진비(2140-01)	20	18	18	-	-
○연구용역비(2160-01)	-	2,120	1,532	△588	△27.7
○고용부담금(3120-09)	641	784	929	145	18.5
○해외경상이전(3140-01)	470	400	526	126	31.5
○실시설계비(4120-02)	19	-	571	571	순증
○공사비(4120-03)	171	280	375	95	33.9
○감리비(4120-04)	-	18	5	△13	△72.2
○시설부대비(4120-05)	1	1	3	2	200
○자산취득비(4130-01)	3,604	2,472	1,893	△579	△23.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① 법령상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4977호, '17.10.31)

제10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39호, '18.04.30)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식물방역법(법률 제14299호, '16.12.02)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진단·소독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물방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450호, '17.11.28)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식물방역법」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911년부터 기관고유업무로서 동물질병연구 시작
- 1998년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의 양 기관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 후 방역, 검역, 동물용의약품 관리, 축산물 위생, 동물복지 분야 등 연구사업 규모 확대
- 2005년 동물질병연구와 동·축산물 안전성연구를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으로 통합
- 2011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
- 농축수산물검역검사, 축수산물위생관리, 동물질병방역, 식물병해충예찰방제, 수산물품질인증·원산지표시, 기술개발연구, 동물약품관리, 동물보호·복지로 업무영역 확대
- 201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와 식물검역기술개발연구 통합 운영(2011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결과, 국과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226	213	199	210	209	21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9 (-)	1 (-)	- (-)	200 (-)	194 (-)	1 (-)	5 (-)
'16년	210 (-)	1 (-)	- (-)	211 (-)	193 (-)	6 (-)	12 (-)
'17년	209 (-)	6 (-)	- (-)	215 (-)	211 (-)	1 (-)	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6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 : 우수(2017.4.)

○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주의(시험연구비를 활용한 홍보물품 구입 부적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7. 가축방역(재량, 계속)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가축방역	16,111	19,263	18,147	△1,116	△5.8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200 - 6240
* 담당자 : 동물질병관리부장(양주필), 방역감시과장(조옥현), 사무관(임종율, ☏ 054-912-036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병원성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고병원성 AI,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진단액 구입·생산 및 공급, 가축질병 진단, 혈청검사, 항원검사 실시 ▪ BSE, 결핵병, 소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사업 추진 ▪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강화로 우수하고 경쟁력 높은 제품 생산・공급 ▪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확대
사업기간	'98~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가축방역 인력운용 : ('18)1,622 → ('19)1,796백만원(증174)

▪ 가축방역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

('18)479 → ('19)562백만원(증83)

* 공중방역수의사 10명 증원(58명→68명)

* 산출내역 : 68명×12월×689천원=562백만원

▪ 가축방역 보조인력 상용임금

('18)943 → ('19)1,020백만원(증77)

* 산출내역 : 39명×12월×2,180천원=1,020백만원

▪ 가축방역 보조인력 연금지급금 및 복지포인트(고용보험, 연금보험, 복지포인트 등)

('18)200 → ('19)214백만원(증14)

* 산출내역 : 39명×5,488천원=214백만원

○ 가축질병 예방 및 정밀진단 등 방역활동 지원 : ('18)14,325 → ('19)13,447백만원(감878)

▪ 긴급방역 예방약 구입 및 생산 ('18)3,048 → ('19)720백만원(감2,328)

* AI 항원뱅크 유지관리 및 검사비 678백만원(신규)

- 산출내역 : 11개 업체×61,650천원=678백만원

* 항원뱅크 유지관리비 ('18)30 → ('19)30백만원

- 1건×30,000천원=30백만원

* 공수병(광견병) 예방약 구입 ('18)12 → ('19)12백만원

- 40명×4회×75천원=12백만원

* AI 항원뱅크 구축 ('18)2,500 → ('19)0백만원(감2,500)

* 구제역 항원뱅크 구축 ('18)506 → ('19)0백만원(감506)

▪ 가축방역 진단액류 생산 및 구입 ('18)7,109 → ('19)7,417백만원(증308)

* 소 브루셀라병 TUBE 등 25품목(소) : 111,930두×3,976원=445백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HI 등 20품목(닭) : 619,576수×1,354원=839백만원

* 일본뇌염 HI 등 37품목(돼지) : 421,270두×4,556원=1,919백만원

* 구제역 신속진단킷트 등 28품목(기타) : 683,092두×6,169원=4,214백만원

▪ 혈청 및 항원검사 ('18)1,522 → ('19)1,689백만원(증167)

* 계속사업 : 51,150건×21,213원= 1,085백만원

* BSE 검사 ('18)62 → ('19)132백만원(증70)

- 1,500건×88천원=132백만원

* 돼지열병 검사 ('18)98 → ('19)146백만원(증48)

- 21,209두×6,884원=146백만원

* 구제역 검사 ('18)240 → ('19)270백만원(증30)
- 51,830두×5,210원=270백만원
* 유전자 변이 분석검사 ('18)37 → ('19)56백만원(증19)
- 850두×66천원=56백만원

▪ 가축질병 병성감정 ('18)974 → ('19)1,004백만원(증30)
* 계속사업 : 10,267건×89,024원=914백만원
* 꿀벌질병 중독물질 검사 ('18)35 → ('19)60백만원(증25)
- 59종×1,017천원=60백만원
* 병성감정용 SPF 종란 ('18)25 → ('19)30백만원(증5)
- 10,000개×3천원=30백만원

▪ 소보툴리즘 시험백신 생산 및 검사 ('18)50 → ('19)50백만원
* 산출내역 : 4,090건×12,225원=50백만원

▪ 돼지열병 항원검사 102백만원 ('18)0 → ('19)400백만원(신규)
* 산출내역 : 20,000건×20,000원=400백만원

▪ 돼지 신종질병 의심축 감별진단 ('18)0 → ('19)150백만원(신규)
* 산출내역 : 100두×15종×100천원=150백만원

▪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18)0 → ('19)102백만원(신규)
* 산출내역 : 1,881건×54,227원=102백만원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억제제 ('18)0 → ('19)50백만원(신규)
* 산출내역 : 5,000봉군×10,000원=50백만원

▪ 재해지역 및 긴급방역지원 ('18)421 → ('19)532백만원(증111)
* 산출내역 : 10개 지역×53,200천원=532백만원

▪ 동물약품검정 및 모니터링 검사 ('18)689 → ('19)821백만원(증132)
* 계속사업 : 7개 사업×98,429천원=689백만원
* 구제역 백신 항혈청 생산 : 11종×12,000천원=132백만원(신규)

▪ 동물약품 수거검사 등 ('18)512 → ('19)512백만원
* 2,087건×245,329원=512백만원

○ 방역현장 업무 및 국제협력 강화 여비 : ('18)690 → ('19)736백만원(증46)

▪ 국내여비
('18)589 → ('19)640백만원(증51)
* 산출내역 : 4,924명×130천원=640백만원

▪ 국외여비
('18)101 → ('19)96백만원(감5)
* 산출내역 : 36명×2,667천원=96백만원

○ 가축질병 연구개발 : ('18)270 → ('19)270백만원

▪ 야생조류 이동경로 연구

('18)270 → ('19)270백만원

* 산출내역 : 500수×480천원=240천원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수행조사 연구

('18)30 → ('19)30백만원

* 산출내역 : 1건×30,000천원=30백만원

○ 가축방역 진단강화 장비 구입 : ('18)361 → ('19)541백만원(증180)

▪ 정밀진단장비 구입

* 산출내역 : 22대×24,591천원=541백만원

○ 가축방역 기관 운영비 : ('18)1,995 → ('19)1,357백만원(감638)

▪ 가축방역 운영비

('18)1,243 → ('19)1,228백만원(감15)

▪ 가축질병방역센터 신설

('18)0 → ('19)129백만원(증129)

* 산출내역 : 3개 센터×43,000천원=129백만원

▪ 축산차량관제 센터 구축

('18)752 → ('19)0백만원(감752)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사업명	**19,263백만원**	**18,147백만원**
▪ 가축방역 인력운용	**1,622** ◦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479백만원 ◦ 가축방역 보조인력 급여 1,143백만원	**1,796** ◦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562백만원 ◦ 가축방역 보조인력 급여 1,234백만원
▪ 가축질병 예방 및 정밀진단 등 방역활동 지원	**14,325** ◦ 긴급방역 예방약 구입 및 생산 3,048백만원 ◦ 가축방역 진단액 생산 및 구입 7,109백만원 ◦ 혈청 및 항원검사 1,522백만원 ◦ 가축질병 병성감정 974백만원 ◦ 동물약품검정 및 모니터링 검사 689백만원 ◦ 소보툴리즘 시험백신 생산 및 검사 50백만원 ◦ 재해지역 및 긴급방역지원 421백만원 ◦ 동물약품 수거검사 등 512백만원	**13,447** ◦ 긴급방역 예방약 구입 및 생산 720백만원 ◦ 가축방역 진단액 생산 및 구입 7,417백만원 ◦ 혈청 및 항원검사 1,689백만원 ◦ 가축질병 병성감정 1,004백만원 ◦ 동물약품검정 및 모니터링 검사 821백만원 ◦ 소보툴리즘 시험백신 생산 및 검사 50백만원 ◦ 재해지역 및 긴급방역지원 532백만원 ◦ 동물약품 수거검사 등 512백만원 ◦ 돼지열병 항원검사 400백만원 ◦ 돼지 신종질병 의심축 감별진단 150백만원 ◦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102백만원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억제제 5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방역현장 업무 및 국제협력 강화 여비	690 ◦ 국내여비 589백만원 ◦ 국외여비 101백만원	736 ◦ 국내여비 640백만원 ◦ 국외여비 96백만원
▪ 가축질병 연구개발	270 ◦ 야생조류 이동경로 연구 240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수행조사 연구 30백만원	270 ◦ 야생조류 이동경로 연구 240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수행조사 연구 30백만원
▪ 가축방역 진단강화 장비 구입	361 ◦ 19종 29대 361백만원	541 ◦ 16종 22대 541백만원
▪ 가축방역 기관 운영비	1,995 ◦ 가축방역 운영비 1,243백만원 ◦ 축산차량관제센터 752백만원	1,357 ◦ 가축방역 운영비 1,228백만원 ◦ 가축질병방역센터 신설 12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내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일본뇌염, 브루셀라, 탄저, 광견병 등의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공익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국가주도의 가축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하므로 재정지원이 불가피함

- 구제역 및 AI 피해액 : 구제역 2조 9,575억원(2010~2018), AI 8,648억원(2008~2017)

※ 관계부처 합동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2017.4.13.)” 및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2017.9.)” 발표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가축방역	16,111	19,263	18,147	△1,116	△5.8
▪ 가축방역 인력운용	1,073 (90.5명×12월×988천원)	1,622 (97명×12월×1,394천원	1,796 (107명×12월×1,399천원)	174	10.7
1. 공중방역수의사	468 (58명×12월×673천원)	479 (58명×12월×689천원)	562 (68명×12월×689천원)	83	17.3
가. 활동장려금	278 (58명×12월×400천원)	278 (58명×12월×400천원)	326 (68명×12월×400천원)	48	17.3
나. 위험수당	35 (58명×12월×50천원)	35 (58명×12월×50천원)	41 (68명×12월×50천원)	6	17.1
다. 초과근무수당	155 (58명×34시간×12월×6,537원)	166 (58명×34시간×12월×6,995원)	195 (68명×34시간×12월×7,020원)	29	17.5
2. 가축방역 보조인력	605 (32.5명×12월×1,552천원)	1,143 (39명×12월×2,443천원)	1,234 (39명×12월×2,637천원)	91	8.0
▪ 가축질병 예방 및 정밀진단 등 방역활동 지원	11,957 (5,322천건×2,246.8원)	14,325 (7,411천건×1,933원	13,447 (2,024천건×6,644원)	△878	△6.1
1. 긴급방역 예방약 구입 및 생산	1,882 (3,500천두×537.8원)	3,048 (5,700천두×534.8원)	720 (3건×240백만원)	△2,328	△76.4
가. 구제역 항원뱅크 유지관리	30 (1회×30백만원)	30 (1회×30백만원)	30 (1회×30백만원)	-	-
나. 공수병 예방 백신	12 (40명×75천원×4회)	12 (40명×75천원×4회)	12 (40명×75천원×4회)	-	-
다. 구제역 항원뱅크	1,840 (3,500천두×525.8원)	506 (700천두×723원)	-	△506	순감
라. AI 항원뱅크	-	2,500 (5백만수×5종×50원×2회)	-	△2,500	순감
마. AI 항원뱅크 유지관리 및 정밀검사	-	-	678 (11개업체×61,650천원)	678	순증
2. 가축방역 진단액 생산 및 구입	6,843 (1,712천두×3,997원)	7,109 (1,560천두×4,557원)	7,417 (1,836천두×4,040원)	308	4.3
3. 혈청 및 항원검사	1,181 (85,525건×13,809원)	1,522 (124,655건×12,210원)	1,689 (124,655건×12,202원)	167	11.0
가. BSE 검사	12 (1,020건×11,765원)	62 (1,300건×47,693원)	132 (1,500건×88,000원)	70	112.9
나. 돼지열병 검사	94 (20,000두×4,700원)	98 (20,000두×4,900원)	146 (21,209두×6,884원)	48	49.0
다. 구제역 검사	169 (26,730건×6,323원)	240 (51,730건×4,640원)	270 (51,830건×5,210원)	30	12.5
라. 유전자 변이 분석검사	37 (475건×78천원)	37 (475건×78천원)	56 (850건×66천원)	19	51.4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마. 광견병 등 혈청 및 항원검사	869 (37,300두×23,298원)	1,085 (51,150건×21,213원)	1,085 (51,150건×21,213원)	-	-
4. 가축질병 병성감정	932 (20,277건×45,964원)	974 (20,277건×48,035원)	1,004 (30,326건×33,107원)	30	3.1
가. 꿀벌질병 중독물질 검사	34 (10종×3,400천원)	35 (10종×3,500천원)	60 (59×1,017천원)	25	71.4
나. 병리검사 등	898 (20,267건×44,309원)	939 (20,267건×46,332원)	944 (20,267건×46,579원)	5	0.5
5. 동물약품검정 및 모니터링 검사	552 (5개사업×110,400천원)	689 (7개사업×98,429천원)	821 (8개사업×102,625원)	132	19.2
6. 소보툴리즘 시험백신 생산 및 검사	46 (4,090건×11,247원)	50 (4,090건×12,225원)	50 (4,090건×12,225원)	-	-
7. 재해지역 및 긴급방역지원	226 (24종×19,177농가×491원)	421 (24종×32,306농가×543원)	532 (10개지역×53,200원)	111	26.4
8. 동물약품 수거검사 등	295 (437건×675,058원)	512 (2,087건×245,329원)	512 (2,087건×245,329원)	-	-
9. 돼지열병 항원검사	-	-	400 (20,000건×20,000원)	400	순증
10. 돼지 신종질병 의심축 감별진단	-	-	150 (100두×15종×100천원)	150	순증
11.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	-	102 (1,881건×54,227원)	102	순증
12.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억제제	-	-	50 (5,000봉군×10,000원)	50	순증
▪ 방역현장 업무 및 국제 협력 강화 여비	**521 (3,578명×145,613원)**	**690 (4,570명×151,018원)**	**736 (4,960명×148,388원)**	**46**	**6.7**
1. 국내여비	456 (3,508명×130천원)	589 (4,532명×130천원)	640 (4,924명×130천원)	51	8.7
2. 국외여비	65 (24명×2,709천원)	101 (38명×2,658천원)	96 (36명×2,667천원)	△5	△5.0
▪ 가축질병 연구개발	**1,299 (3회×433백만원)**	**270 (2회×135백만원)**	**270 (2회×135백만원)**	**-**	**-**
1. 야생조류 이동경로 연구	538 (620수×868천원)	240 (270수×889천원)	240 (270수×889천원)	-	-
2.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수행조사 연구	29 (1회×29,000천원)	30 (1회×30,000천원)	30 (1회×30,000천원)	-	-
3. HPAI 방역용 소독제 함량 및 효력검사	732 (1회×732,000천원)	-	-	-	-
▪ 가축방역 진단강화 장비 구입	**301 15종 20대**	**361 19종 29대**	**541 16종 22대**	**180**	**49.9**
▪ 가축방역 기관 운영비	**960**	**1,995**	**1,357**	△638	△32.0
1. 가축방역 운영비	960	1,243 (27개소×46,038천원)	1,228 (27개소×45,482천원)	△15	△1.2
2. 가축질병방역센터 신설	-	-	129 (3개소×43,000천원)	129	순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3. 축산차량관제센터	-	752 (1식×752백만원)	-	△752	순감
□ 비목(합계)	**16,111**	**19,263**	**18,147**	**△1,116**	**△5.8**
ㅇ 인건비(110)	**803**	**1,422**	**1,582**	**160**	**11.3**
- 기타직보수(02)	556	479	562	83	17.3
- 상용임금(03)	247	943	1,020	77	8.2
ㅇ 운영비(210)	**13,048**	**15,885**	**14,504**	**△1,381**	**△8.7**
- 일반수용비(01)	559	762	707	△55	△7.2
- 공공요금및제세(02)	7	65	67	2	3.1
- 피복비(03)	23	6	6	-	-
- 특근매식비(05)	58	75	79	4	5.3
- 임차료(07)	62	635	63	△572	△90.1
- 유류비(08)	49	40	40	-	-
- 시설장비유지비(09)	38	35	47	12	34.3
- 재료비(11)	11,460	13,449	12,505	△944	△7.0
- 복리후생비(12)	1	16	16	-	-
- 시험연구비(13)	692	689	821	132	19.2
- 일반용역비(14)	-	-	40	40	순증
- 관리용역비(15)	79	100	100	-	-
- 기타운영비(16)	20	13	13	-	-
ㅇ 여비(220)	**521**	**690**	**736**	**46**	**6.7**
- 국내여비(01)	456	589	640	51	8.7
- 국외업무여비(02)	65	101	96	△5	△5.0
ㅇ 업무추진비(240)	**13**	**17**	**17**	**-**	**-**
- 사업추진비(01)	13	17	17	-	-
ㅇ 직무수행경비(250)	**52**	**67**	**67**	**-**	**-**
- 특정업무경비(03)	52	67	67	-	-
ㅇ 연구용역비(260)	**1,299**	**270**	**270**	**-**	**-**
- 일반연구비(01)	1,299	270	270	-	-
ㅇ 민간이전(320)	**43**	**371**	**385**	**14**	**3.8**
- 민간위탁사업비(02)	-	187	187	-	-
- 고용부담금(09)	**43**	**184**	**198**	**14**	**7.6**
ㅇ 건설비(420)	**31**	**180**	**-**	△180	**순감**
- 실시설계비(02)	-	7	-	△7	순감
- 공사비(03)	31	168	-	△168	순감
- 감리비(04)	-	4	-	△4	순감
- 시설부대비(05)	-	1	-	△1	순감
ㅇ 유형자산(430)	**301**	**361**	**586**	**225**	**62.3**
- 자산취득비(01)	301	361	586	225	62.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14977호, ’17.10.31.) 제3・6・12・13・15・50조 등
- 약사법(법률 제15891호, ‘18.12.11.) 제85조

○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조류인플루엔자, BSE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의 발생차단으로 경제적 손실방지 및 국민건강 향상
- 정책변화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방역사업은 대부분 조류인플루엔자, BSE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액 생산 및 이들 질병의 정밀검사가 주된 사업으로 매년 국고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음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가축방역	112	114	152	153	162	19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도 : 불용 1,408백만원(집행잔액), 이월 65백만원

○ ‘16년도 : 불용 146백만원(집행잔액), 이월 556백만원

○ ‘17년도 : 불용 658백만원(집행잔액), 이월 70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2 ( )	- ( )	- ( )	152 ( )	137 ( )	1 ( )	14 ( )
’16년	153 ( )	1 ( )	- ( )	154 ( )	147 ( )	6 ( )	1 ( )
’17년	162 ( )	6 ( )	- ( )	168 ( )	161 ( )	1 ( )	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7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국가방역 계획 수립(가축방역종합대책,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특별방역대책,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가축방역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식품부·농림축산 검역본부) → **사업시행·예산 집행**(농림축산검역본부)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국가방역사업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전년 9 ~ 12월	농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가축방역종합대책 · 구제역·AI 등 특별방역대책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 가축방역 주요업무 추진계획
⇓			
가축방역예산 배정계획 수립	당해 1월초	농림축산 검역본부	· 국가방역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 수립
⇓			
가축방역예산 배정	1월중순 · 수시	농림축산 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관련 부서 예산배정(1월 중순)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긴급방역예산 배정(수시)
⇓			
가축방역사업실시 (예산집행)	수시	농림축산 검역본부	· 검역본부, 대학, 지자체 및 민간병성감정기관에 진단액 생산 및 공급 · 가축전염병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 ·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검정 ·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 등
⇓			
가축방역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분기별 · 수시	농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실시(분기별) · 검역본부·지자체 가축방역기관과의 간담회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추진실태 점검 등
⇓			
가축방역사업 결과 평가	11 ~ 12월	농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지자체, 민간병성감정기관 진단액 사용내역 등 평가 · 농림사업평가(가축방역) · 기타 가축방역사업 관련 결과 평가

종 자 관 리

1.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종자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종자원)	6,357	25,543	**23,299**	△2,244	△8.8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400 - 6432

* 담당자 : 원장(최병국), 식량종자과장(이태용), 사무관(유관종, ☏ 054-912-018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종자 정선시설 신축과 노후화 된 정선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하여 종자의 품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종자 공급을 통해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 정밀한 종자검사로 순도 높고 무병건전한 고품질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도모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선시설 신축과 노후시설 현대화 추진 ○ 종자 검사인력 및 장비·기자재 구매 등
사업기간	○ '94년~계속
총사업비*	○ - 억원 * '18년까지 기투자액 : 337억원 ○ 전남 제2정선센터 193, 충북정선센터 144
사업규모	○ 강원지원 등 종자정선시설 전국 9개소 ○ 강원지원 등 종자검사지원 전국 10개소(제주지원 포함)
지원조건	○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 국립종자원

* 총사업비 '18년까지 기투자액 337억원('18년 전남 제2정선센터 신축 4년차 사업 193억원 및 충북 정선시설 이전신축 3년차 사업비 144억원 포함 등)

2. 2019 예산

□ 산출내역

□ 예산(안) : ('18) 25,543백만원 → ('19) 23,299 / (감) 전년대비 2,244백만원

○ 기존시설현대화 : 4,021백만원

- 예산 : ('18년) 5,522백만원 → ('19) 4,021백만원 / (감) 1,501백만원
- 내용 : 장기간 사용에 따라 노후화 된 정선기자재 교체 등 종자정선시설 개·보수 비용

· **(일반수용비)** 정선부산물 폐기처리 비용 등 **14백만원(신설)**

· **(유류비)** 9개지원 지게차 운영 유류비 **18백만원**

* ('18) 13.5백만원 → ('19) 18백만원, **증 4.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정선기기 수리·계측장비 교정 외 유지관리비 **240백만원**

* ('18) 209백만원 → ('19) 240백만원 **증 31백만원**

· **(일반용역비)** 전남제2정선센터 준공식 개최 비용 **35백만원(신설)**

· **(기존시설 개선)** 정선부산물 포집장치 설치 등 874**백만원(9건)**

* ('18) 2,713백만원 → ('19) 874백만원, **감 1,839백만원**

· **(노후시설 교체)** 정밀정선기 교체 등 **2,596백만원(13건)**

* ('18) 1,969백만원 → ('19) 2,596백만원, **증 627백만원**

· **(설계)** 노후시설 교체 설계비 등 **169백만원(20건)**

* ('18) 205백만원 → ('19) 169백만원, **감 36백만원**

· **(건설보상비)** 전북지원 청사 내 공유지분 토지(63.41㎡) 구입 **4백만원**

· **(자산취득 물품)** : 종자운반용 지게차 외 3건 **71백만원**

* ('18) 413백만원 → ('19) 71백만원, **감 342백만원**

○ **(총사업비) 전남지원 제2정선센터 신축 : 5,214백만원(5년차)**

- 예산 : ('18년) 6,043백만원 → ('19) 5,214백만원 / (감) 829백만원

· **(공사비)** 4,750백만원, **(감리비)** 432백만원, **(시설부대비)** 32백만원

○ **(총사업비) 충북지원 정선센터 신축 : 12,085백만원(4년차)**

- 예산 : ('18년) 12,086백만원 → ('19) 12,085백만원 / (감) 1백만원

· **(공사비)** 11,202백만원, **(감리비)** 850백만원, **(시설부대비)** 33백만원

○ **종자검사업무 : 1,938백만원**

- 예산 : ('18년) 1,840백만원 → ('19) 1,938백만원 / (증) 98백만원
- 내용 : 보급종 및 원원종·원종 등 검사업무, 순도검정, 유전자 분석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상용임금)** 종자검사 등 품질관리 업무 수행 인건비 819백만원

* ('18) 721백만원 → ('19) 819백만원, **증 98백만원**

· **(복리후생)** 16백만원, **(고용부담금)** 132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8개지원 검사 장비 교정료 35백만원

* ('18) 721백만원 → ('19) 819백만원, **증 4.5백만원**

· **(재료비)**유전자분석용 DNA 및 PCR키트 등 342백만원

· **(국내여비)** 종자검사(포장, 수매 지도, 출하 등) 위한 수행여비 69백만원

· **(자산물품취득)** 종자검사 기자재(수분측정기, 신설사무소 기자재 등) 525백만원

* ('18) 490백만원 → ('19) 525백만원, **증 35백만원**

○ **역량강화 : 41백만원**

- 예산 : ('18년) 52백만원 → ('19) 41백만원, / (감) 11백만원
- 내용 : 9개지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요경비

· **(임차료)** 4백만원, **(국외여비)** 13백만원, **(피복비)** 19백만원, **(기타운영비)** 3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종자원)	**합계 : 25,543백만원(25,543,000천원)**	**합계 : 23,299백만원(23,299,,000천원)**
▪ 기존시설 현대화	**소계 : 5,522백만원(5,522,055천원)**	**소계 : 4,201백만원(4,021,362천원)**
- 운영비	소계 : 222백만원(222,238천원)	소계 : 307백만원(307,362천원)
▪ 일반수용비	-	소계 : 14백만원(14,000천원)
	-	○ 정선기재자 불용품 감정평가료 - 200천원*9개소=1,800천원 ○ 정선부산물 폐기처리 비용 - 90천원*135톤=12,150천원 ○ (조정) : 50천원
▪ 유류비	소계 : 13백만원(13,500천원)	소계 : 18백만원(18,000천원)
	○ (종자정선) - 1,500천원*9개소=13,500천원(지게차 유류비)	○ (종자정선) 18,247천원 - 436ℓ*1,350원*31대= 18,247천원 ○ (조정) : -247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소계 : 209백만원(208,738천원)	소계 : 240백만원(240,362천원)
	○ (종자정선) 208,738천원 - 23,193천원*9개소=208,738천원(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 * 전남지원 제2정선센터 개청에 따른 수요 반영	○ (종자정선) 240,362천원 - 26,706천원*9개소=240,362천원(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
▪ 일반 용역비	-	소계 : 35백만원(35,000천원)
	-	○ 전남제2정선센터 준공식 개최 비용 - 35,000천원*1식=35,000천원
- 건설보상비	-	소계 : 4백만원(4,000천원)
	-	○ 전북지원 경계측량편입토지(공유지분) 구입 4,000천원 - 55천원*64제곱미터=3,520천원 ○ (조정) : 480천원
- 건설비	소계 : 4,887백만원(4,887,207천원)	소계 : 3,639백만원(3,639,000천원)
▪ 설계·감리비	소계 : 205백만원(205,459천원)	소계 : 169백만원(169,000천원)
	○ (종자정선) 205,459천원 - 실시설계비 205,459천원 · (강원) 정밀정선기 교체 외 2건 52,000천원 · (전북) 정선공장, 저장고 누수개선 24,000천원 · (전남) 트럭스케일 교체 외 3건 36,850천원 · (경남) 색체 선별기 교체 외 2건 32,609천원 · (본원) 부산물포집장치, 색체선별기 등 60,000천원 - 감리비 : 해당사항 없음	○ (종자정선) 169,000천원 - 실시설계비 168,700천원 · (강원) 승강기 교체 외 1건 16,790천원 · (충남) 제망기 교체 외 2건 20,000천원 · (전북) 콩 정선시설 교체 외 7건 75,000천원 · (전남) 종자운반용 리프트 교체 15,000천원 · (경남) 비중 정선기 교체 외 2건 36,860천원 · (경북) 콩 소독기 교체 5,050천원 ○ (조정) : 300천원 - 감리비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공사비	소계 : 4,682백만원(4,681,846천원) ○ 작업효율 및 예산절감 시설개선 2,712,500천원 - (강원) 하급부산물 포집장치 설치 1건 163,900천원 - (전북) 공장, 저장고 누수개선 외 3건 727,400천원 - (전남) 정선센터 외벽 및 지붕 도색공사 101,200천원 - (경남) 부산물 저장창고 신축 1건 220,000천원 - (본원) 부산물포집장치, 색체선별기 등 1,500,000천원 ○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시설 교체 1,969,248천원 - (강원) 정밀정선기 교체 외 2건 584,900천원 - (충남) 정선 기계실 바닥공사 외 3건 282,068천원 - (전북) 집진기 백필터 교체 외 1건 35,800천원 - (전남) 정밀 집진시설 교체 외 5건 451,400천원 - (경북) 콩정선기 교체 외 1건 147,200천원 - (경남) 색체선별기 교체 외 2건 467,880천원 ○ (조정) : 98천원	소계 : 3,470백만원(3,470,000천원) ○ 작업효율 및 예산절감 시설개선 873,800천원 - (강원) 정선센터 LED 등 설치 및 교체공사 30,000천원 - (충남) 정선센터 바닥 포장공사 250,000천원 - (전북) 부산물 포집라인 설치공사 외 6건 593,800천원 ○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시설 교체 2,596,760천원 - (강원) 승강기 교체 외 1건 335,000천원 - (충남) 제망기 교체 외 1건 120,000천원 - (전북) 콩 정선시설 개보수 외 1건 980,000천원 - (전남) 종자운반용 리프트 교체 외 1건 370,000천원 - (경북) 콩소독기 교체 외 1건 91,760천원 - (경남) 정밀정선기 교체 외 3건 700,000천원 ○ (조정) : -560천원
- 자산취득비	소계 : 413백만원(412,610천원) ○ (종자정선) 412,610천원 - (강원) 지게차 1대 교체 40,000천원 - (전북) 지게차 2대 교체 93,000천원 - (전남) 지게차 2대 교체 외 1건 155,000천원 - (경남) 전기히터 2,400천원 - (본원) 전남제2정선센터 소요물품 35건 :122,210천원	소계 : 71백만원(71,000천원) ○ (종자정선) 412,610천원 - (강원) 낙곡 회수기 10,000천원 - (충북) 정선 작업대 외 1건 13,000천원 - (충남) 지게차 교체 45,000천원 - (경남) 소독약 펌프 3,000천원
▪ 전남 제2정선센터 신축공사	**소계 : 6,043백만원(6,043,000천원)**	**소계 : 5,214백만원(5,214,000천원)**
-	○ 설계비 : 해당사항 없음 ○ 건설보상비 : 해당사항 없음 ○ 4년차 공사비 : 5,547백만원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사비 소요 ○ 감리비 : 496백만원 ○ 시설부대비 : 해당사항 없음	○ 5년차 공사비 : 4,750백만원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사비 소요 ○ 감리비 : 432백만원 ○ 시설부대비 : 32백만원
▪ 충북 정선센터 이전신축공사	**소계 : 12,086백만원(12,086,000천원)**	**소계 : 12,085백만원(12,085,000천원)**
	○ 2차분 건설보상비 : 1,455백만원(13,211.6㎡) ○ 설계비 : 해당사항 없음 ○ 3년차 공사비 : 9,748백만원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사비 소요 ○ 3년차 감리비 : 850백만원 ○ 3년차 시설부대비 : 33백만원(원인자부담금 등)	○ 4년차 공사비 : 11,202백만원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사비 소요 ○ 4년차 감리비 : 850백만원 ○ 4년차 시설부대비 : 33백만원(원인자부담금 등)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종자검사업무	**소계 : 1,840백만원(1,839,680천원)**	**소계 : 1,938백만원(1,937,290천원)**
- 인건비	소계 : 869백만원(868,695천원)	소계 : 967백만원(966,695천원)
▪ 상용임금	**ㅇ (상용임금) 720,545천원** ○ (무기계약직) 382,414천원 - 임금 : 7,530원*18명*12개월*209시간=339,934천원 - 상여금 : 800,000원*18명=14,400천원 - 급식비 : 130,000원*18명*12개월=28,080원 ○ (기간제근로자) 338,347천원 - 검사 및 정선보조 임금: 7,530원*15명*10개월*209시간=236,066천원 - 유전자분석 보조 임금: 7,530원*15명*6개월*209시간=47,213천원 - 본원 포장관리 보조 임금: 7,530원*2명*1개월*209시간=3,148천원 - 상여금 : 800,000원*22명=17,600천원 - 급식비 : 130,000원*22명*12개월=34,320원 ○ (조정) : -216천원	**ㅇ (상용임금) 818,545천원** ○ (무기계약직) 435,233천원 - 임금 : 8,700원*18명*12개월*209시간=392,753천원 - 상여금 : 800,000원*18명=14,400천원 - 급식비 : 130,000원*18명*12개월=28,080원 ○ (기간제근로자) 382,851천원 - 검사 및 정선보조 임금: 8,700원*15명*10개월*209시간=272,745천원 - 유전자분석 보조 임금: 8,700*5명*6개월*209시간=54,549천원 - 본원 포장관리 보조 임금: 8,700원*2명*1개월*209시간=3,637천원 - 상여금 : 800,000원*22명=17,600천원 - 급식비 : 130,000원*22명*12개월=34,320원 ○ (조정) : 461천원
▪ 복리후생비	**ㅇ (복리후생비) 16,000천원** ○ (무기계약직) 7,200천원 - 18명*400,000천원=7,200천원 ○ (기간제근로자) 8,800천원 - 22명*400,000천원=8,800천원	**ㅇ (복리후생비) 16,000천원** ○ (무기계약직) 7,200천원 - 18명*400,000천원=7,200천원 ○ (기간제근로자) 8,800천원 - 22명*400,000천원=8,800천원
▪ 고용부담금	**ㅇ (고용부담금) 132,150천원** ○ (무기계약직) 68,871천원 - 339,934,320원*20.26%=68,871천원 ○ (기간제근로자) 63,622천원 - 314,026,140원*20.26%=63,622천원 ○ (조정) : -343천원	**ㅇ (고용부담금) 132,150천원** ○ (무기계약직) 68,871천원 - 339,934,320원*20.26%=68,871천원 ○ (기간제근로자) 63,622천원 - 314,026,140원*20.26%=63,622천원 ○ (조정) : -343천원
- 운영비	소계 : 377백만원(376,650천원)	소계 : 377백만원(376,65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소계 : 35백만원(34,650천원) ○ (종자검사) 34,650천원 - 20종×192.5천원×9개소=34,650천원(검사장비 교정비용)	소계 : 35백만원(34,650천원) ○ (종자검사) 34,650천원 - 20종×192.5천원×9개소=34,650천원(검사장비 교정비용)
▪ 재료비	소계 : 342백만원(342,000천원) ○ (종자검사) 342,000천원 - 유전자분석용 DNA 및 PCR 키트 등 : 240,000천원 · 750점×320천원=240,000천원 - 종자검사용 발아시험지, 시약, 육묘시험재료 : 54,000천원 · 6,000천원×1식×9개소=54,000천원 - 키다리병 검정용 배지, 상토 등 : 36,000천원 · 4,000천원×1식×9개소= 36,000천원 - 종자검사원 전문교육 재료 : 12,000천원	소계 : 342백만원(342,000천원) ○ (종자검사) 342,000천원 - 유전자분석용 DNA 및 PCR 키트 등 : 240,000천원 · 750점×320천원=240,000천원 - 종자검사용 발아시험지, 시약, 육묘시험재료 : 54,000천원 · 6,000천원×1식×9개소=54,000천원 - 키다리병 검정용 배지, 상토 등 : 36,000천원 · 4,000천원×1식×9개소= 36,000천원 - 종자검사원 전문교육 재료 : 12,000천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30명×3회×140천원=12,000천원 ○ (조정) : -600천원	· 30명×3회×140천원=12,000천원 ○ (조정) : -600천원
- 국내여비	소계 : 69백만원(68,945천원) ○ (종자검사) 68,945천원 - 정부 보급종 포장 및 종자 검사 : 60,900천원 · (포장검사)35천원*10명*52회=18,200천원 · (종자검사)35천원*10명*62회=21,700천원 · (포장관리)35천원*10명*60회=21,000천원 - 원원종·원종·자체 보급종 포장 및 종자검사: 4,500천원 · (포장검사)30천원*2명*20회=1,200천원 · (종자검사)30천원*2명*16개소*3회=2,880천원 · (포장관리)30천원*2명*7회=420천원 - 보급종 고객관리 : 2,940천원 ·30천원*2명*7회*7개소=2,940천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 420천원 ·30천원*2명*7개소=420천원 ○ (조정) : 185천원	소계 : 69백만원(68,945천원) ○ (종자검사) 68,945천원 - 정부 보급종 포장 및 종자 검사 : 60,900천원 · (포장검사)35천원*10명*52회=18,200천원 · (종자검사)35천원*10명*62회=21,700천원 · (포장관리)35천원*10명*60회=21,000천원 - 원원종·원종·자체 보급종 포장 및 종자검사: 4,500천원 · (포장검사)30천원*2명*20회=1,200천원 · (종자검사)30천원*2명*16개소*3회=2,880천원 · (포장관리)30천원*2명*7회=420천원 - 보급종 고객관리 : 2,940천원 ·30천원*2명*7회*7개소=2,940천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 420천원 ·30천원*2명*7개소=420천원 ○ (조정) : 185천원
- 자산취득비	소계 : 525백만원(525,390천원) ○ (종자검사) 525,390천원 - (강원) 단립식수분측정기 5,500천원 - (전북) 식물생장상 외 1품목 21,700천원 - (전남) 제2정선센터 기자재 87종 489,940천원 - (경남) 유전자검사 장비 8,250천원	소계 : 525백만원(525,000천원) ○ (종자검사) 156,791천원 - (강원) 유리온실 구입설치 13,000천원 - (충남) 유전자분석 장비 외 1품목 50,000천원 - (전북) 유전자분석 장비 구입 47,791천원 - (경남) 유전자분석 장비 구입 43,000천원 - (제주) 콩 수분측정기 구입 3,000천원 - (본원) 유전자 분석 장치 등 신설사무소 추가 소요 기자재 구입 368,000천원 ○ (조정) : 209천원
▪ 직원역량강화	**소계 : 52백만원(52,167천원)**	**소계 : 41백만원(41,348천원)**
- 운영비	소계 : 26백만원(26,000천원)	소계 : 26백만원(26,000천원)
▪피복비	소계 : 19백만원(19,000천원) ○ (종자정선) 9,500천원 - 25명*380천원=9,500천원 ○ (종자검사) 9,500천원 - 25명*380천원=9,500천원	소계 : 19백만원(19,000천원) ○ (종자정선) 9,500천원 - 25명*380천원=9,500천원 ○ (종자검사) 9,500천원 - 25명*380천원=9,500천원
▪ 임차료	소계 : 4백만원(4,000천원) ○ (종자정선) 1,000천원 - 500천원*2일=1,000천원(정선업무 담당자 위크샵) ○ (종자검사) 1,000천원 - 500천원*2일=1,000천원(보증업무 담당자 위크샵) ○ 400천원*5일=2,000천원(국외연수 차량 임차)	소계 : 4백만원(4,000천원) ○ (종자정선) 1,000천원 - 500천원*2일=1,000천원(정선업무 담당자 위크샵) ○ (종자검사) 1,000천원 - 500천원*2일=1,000천원(보증업무 담당자 위크샵) ○ 400천원*5일=2,000천원(국외연수 차량 임차)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기타운영비	소계 : 3백만원(3,000천원) ○ (종자검사) 3,000천원 - 8개지원*1명*300천원=2,400천원(종자검사 경진대회 개별시상) - 최우수1개 지원*600천원=600천원(종자검사 경진대회 부서시상)	소계 : 3백만원(3,000천원) ○ (종자검사 경진대회 시상금) 3,000천원 - (개별시상) 300천원*5명=1,500천원 - (부서시상) 300천원=*5개부서=1,500천원
- 국외여비	소계 : 24백만원(23,601천원) ○ (종자정선·검사) 23,601천원 - 항공료·체재비 : 2,360천원*10명=23,601천원(EU)	소계 : 13백만원(12,700천원) ○ (종자정선·검사) 12,700천원 - 항공료·체재비 : 1,600천원*8명=12,800천원 ○ (조정) : -100천원
- 사업추진비	소계 : 2백만원(2,566천원) ○ (종자정선) 2,566천원 - 64,150원*20명=1,283천원 ○ (종자검사) 1,500천원 - 64,150원*20명=1,283천원	소계 : 2백만원(2,648천원) ○ (종자정선) 750천원 - 25천원*30명=750천원 ○ (종자검사) 1,750천원 - 25천원*70명=1,750천원 ○ (조정) : 148천원

□ 지원 필요성

○ (시설현대화) 종자 정선시설 신축과 노후화 된 정선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하여 종자의 품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종자 공급을 통해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 (품질관리) 채종농가로부터 수매한 고품질 종자에 대한 검사·관리를 농가에 공급시기까지 지속 실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에 기여

<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종자원)	**6,357**	**25,543**	**23,299**	**△2,244**	**△8.8**
▪ 기존정선시설현대화	2,611 (8개소×326.4백만원)	5,522 (8개소×690백만원)	4,021 (9개소×446.7백만원)	△1,501	△27.2
▪ 전남제2정선센터 신축	2,097 (1개소×2,097백만원)	6,043 (1개소×6,043백만원)	5,214 (1개소×5,214백만원)	△829	△13.7
▪ 충북정선시설이전신축	333 (1개소×333백만원)	12,086 (1개소×12,086백만원)	12,085 (1개소×12,085백만원)	△1	0.0

(단위: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종자검사업무	1,265 (8개소×158.1백만원)	1,840 (8개소×230백만원)	1,938 (10개소×193.8백만원)	98	105.3
▪ 직원역량강화	51 (8개소×6.4백만원)	52 (8개소×6.5백만원)	41 (10개소×4.1백만원)	△11	△21.2
□ 비목(합계)	6,357	25,543	23,299	△2,244	△8.8
○상용임금(110-03)	-	721	819	98	113.6
○일용임금(110-04)	573	-	-	-	-
○일반수용비(210-01)	-	-	14	14	순증
○피복비(210-03)	12	19	19	-	-
○임차료(210-07)	11	4	4	-	-
○유류비(210-08)	-	13	18	5	138.5
○시설장비유지비(210-09)	229	243	275	32	113.2
○재료비(210-11)	321	342	342	-	-
○복리후생비(210-12)	-	16	16	-	-
○일반용역비(210-14)	-	-	35	35	순증
○기타운영비(210-16)	3	3	3	-	-
○국내여비(220-01)	62	69	69	-	-
○국외여비(220-02)	23	24	13	△11	△45.8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고용부담금(320-09)	-	132	132	-	-
○건설보상비(410-00)	32	1,455	4	△1,451	△99.7
○실시설계비(420-02)	1,238	205	169	△36	△17.6
○공사비(420-03)	3,393	19,977	19,422	△555	△2.8
○감리비(420-04)	-	1,346	1,282	△64	△4.8
○시설부대비(420-05)	14	33	65	32	197.0
○자산취득비(430-01)	444	938	596	△342	△36.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① 법령상 근거

- 종자산업법 제22조 (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시행 2013.6.2>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종자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종자생산 농어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④항에 의거 국가보증 종자의 보증업무를 국립종자원에서 수행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41.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42. 법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

43. 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 추진경위

- '75년 :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위해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협정으로 종자정선공장설치 추진

- '94년 : 정선시설 및 기자재의 노후화로 고품질 종자의 공급이 어려워 연차적으로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 및 개·보수 추진

- '04년 : WTO 출범에 따른 쌀시장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품종 벼 종자의 확대공급을 위해 부족한 종자 정선시설 증축

- '09년 : 보급종 종자 검사업무 이관(농관원→종자원)에 따른 검사 장비 구매 등 보증업무 수행 기반 조성

- '12년 : 종자 검사업무가 종자원으로 일원화되고 품질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검사장비 구매 등 보증업무 수행 기반 확대 필요

- '14년 : '15년 예산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쌀 시장개방 대응 및 지역간 공급율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 보급종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남지역에 종자 정선시설 1개소 신축 필요성 지적('15년 예산에 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중 일부 반영, 7억원)

- '15년 : '16년 예산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충북도가 운영중인 정선시설은

'87년 신축 당시 사용하던 재래식 옥수수 정선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벼 보급종 종자 정선시 일부 무리가 있어, 관련시설 이전신축을 위해 '16년 예산에 1년차 사업비 37억원(토지매입비 30억원, 설계비 7)반영 필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56	57	70	162	94	25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이월) 외자물품 반입지연 494백만원, 콩 정선 이설장치 설계변경 509백만원
(불용) 낙찰차액 110백만원 및 집행잔액 52백만원

○ 2016년 (이월) 전남제2정선센터 (계속)공사비 이월 8,953백만원
(불용) 낙찰차액 77백만원

○ 2017년 (이월) 전남제2정선세터 설계지연에 따른 건설비 10,451백만원, 충북정선시설 이전 신축 설계기간 미도래로 설계비 488, 저온저장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비 420
(불용)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33백만원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989 (-)	486 (-)	- (-)	7,475 (-)	**6,310** **(-)**	1,003 (-)	162 (-)
'16년	16,205 (-)	1,003 (6,633)	- (-)	17,208 (-)	**8,178** **(-)**	8,953 (-)	77 (-)
'17년	9,396 (-)	8,953 (-)	- (-)	18,349 (-)	**6,357** **(-)**	11,359 (-)	63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5년 예산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

· (상임위) 전남지역 종자 정선시설 신축을 위한 소요예산 17억원과, 충북지역 종자 정선시설 현대화를 위한 소요예산 17억원 편성 필요

· (예결위) 전남지역 종자 정선시설 신축 예산 토지매입비 7억원 반영

- '16년 예산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

· (상임위) 충북지역 종자 정선시설 신축 1년차 소요 37억원 필요성
: 현재, 충북도가 운영중인 정선시설은 '01년 지방이양당시 사용하던 재래식 옥수수 정선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벼 보급종 종자 정선시 일부 무리가 있어 관련시설 재건축 등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16년 예산에 1년차 사업비 37억원(토지매입비 30억원, 설계비 7)반영 필요
※ 노영민, 박성호, 박완주, 안덕수, 홍문표, 황주홍, 경대수, 박덕흠 의원
· (예결위) 충북지원 종자 정선시설 현대화를 위한 1년사 사업비 10억원 반영
: 노후화된 충북지원 재건축 등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1년차 사업비 10억원(토지매입비) 반영
- '16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 (지적사항) 전남 제2정선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년에 건설보상비·설계비·공사비를 모두 편성하였고, 공사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또한, 부족한 설계비를 건설보상비에서 전용을 통해 충당하였는데 이는, 설계용역 계약 이후 전용이 이루어져 배정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의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위반하였음
· (시정요구) 대규모 건축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단계 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준수할 것
- '1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79.5,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본원 및 지원)	⇒	각 지원별 예산배정 (본원)	⇒	사업추진 (본원 및 지원)	⇒	결과평가 (본원 및 지원)	⇒	시설운영 (지원)

참고 1 내역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1.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기존정선시설 현대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내용	·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고품질 보급종을 공급하기 위해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정선기자재 교체 및 작업효율 증진을 위해 최신 정선시설 도입
'19년 사업규모 (최근 5년간 예산)	· 최근 5년간('14~'18) : 233억원(누적), 47억원(평균)
사업위치	· 해당없음
사업기간	· '94~계속
지원형태(지원조건, 지원율)	· 내역사업1 국비100%
사업시행주체(실 집행주체)	· 국립종자원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18년 국회증감	· 해당없음
재정사업자율평가	· ('18) 보통, ('17) 보통, ('16) 보통
보조사업연장평가	· 해당없음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농업인에게 고품질 보급종을 공급하기 위해 종자 정선시설 확충 및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정선기계장비 등을 최신장비로 교체

□ 기대효과·성과

○ 노후화된 정선시설의 연차적인 개·보수로 종자 정선능력 향상 및 고품질 종자 공급으로 쌀 산업 기반 조성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자동화 구현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

○ 정선처리 능력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시설 개선

○ 종자 활력 지속유지 등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 도입

2.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전남제2정선센터 신축]

□ 사업개요

사업목적/내용	·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 공급으로 전남지역 쌀 품질 고급화 도모를 위해 전남지원 벼 종자 정선시설 규모 확충
'19년 사업규모 (최근 5년간 예산)	· 최근 4년간('15~'18) : 193억원(누적), 48억원(평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245억원(국비 245억원)<국고>
사업위치	· 해당없음
사업기간	· '15~'19
지원형태(지원조건, 지원율)	· 내역사업2 국비100%
사업시행주체(실 집행주체)	· 국립종자원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18년 국회증감	· 해당없음
재정사업자율평가	· ('18) 보통, ('17) 보통, ('16) 보통
보조사업연장평가	· 해당없음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현재 전남지역은 최대 쌀 생산지역이나, 전남지원의 정선능력은 3.9천톤으로 정선 수요의 45% 수준에 불과하며 공급량 일부(15%, 600톤)를 타지원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 실정

○ 전남지역 정선능력 부족에 따른 지역별 벼 보급종 공급률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선처리능력 2천톤 규모의 종자정선시설 신축

□ 기대효과·성과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벼 보급종 공급을 2015년 60% 수준에서 '19년까지 농업인 수요의 70%까지 확대하여 쌀 안정적 생산에 기여

* 벼 공급계획 : ('15) 24.0천톤(60%) → ('16) 24.3(62) → ('17p) 24.5(64) → ('19p) 25.6(70)

○ 타 지역에 비해 벼 종자 공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지역(47%)에 우선적으로 종자저장 및 정선시설 신축을 통해 보급종 공급률 불균형 해소

3.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충북정선센터이전)

□ 사업개요

사업목적/내용	· 노후화된 재래식 옥수수 전용시설을 벼 정선시설로 전환 신축하여 정부 보급종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쌀 생산과 보급종의 지역간 공급률 불균형 해소
'19년 사업규모 (최근 5년간 예산)	· 최근 3년간('16~'18) : 144억원(누적), 48억원(평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276억원(국비 276억원)<국고>
사업위치	· 해당없음
사업기간	· '16～'20
지원형태(지원조건, 지원율)	· 내역사업3 국비100%
사업시행주체(실 집행주체)	· 국립종자원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18년 국회증감	· 해당없음
재정사업자율평가	· ('18) 보통, ('17) 보통, ('16) 보통
보조사업연장평가	· 해당없음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재래식 옥수수 전용시설을 벼 정선시설로 확대·신축하고 최첨단 시설 도입에 따른 시설자동화로 정선 비용절감과 정부 보급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 정부 보급종의 지역 간 공급률 불균형 해소

□ 기대효과·성과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벼 보급종 공급을 2015년 60% 수준에서 '19년까지 농업인 수요의 70%까지 확대하여 쌀 안정적 생산에 기여

* 벼 공급계획 : ('15) 24.0천톤(60%) → ('16) 24.3(62) → ('17p) 24.5(64) → ('19p) 25.6(70)

○ 최첨단 시설 도입에 따른 시설 자동화로 정선비용 절감기대

- 무인자동포대봉합기 및 로봇적재기 등 자동화장비 도입으로 인건비 등 정선비용 절감

○ 기존의 '포장수매'에서 '산물수매'방식으로 전환하여 종자 채종농가의 편의 제공

4.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종자검사 및 품질관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내용	·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각종 검사기자재 및 검사 보조원을 활용하여 차질 없는 종자검사 수행
'19년 사업규모 (최근 5년간 예산)	· 최근 5년간('14~'18) : 66억원(누적), 13억원(평균)
사업위치	· 해당없음
사업기간	· '94~계속
지원형태(지원조건, 지원율)	· 내역사업4 국비100%
사업시행주체(실 집행주체)	· 국립종자원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제24조(종자의 보증)
'18년 국회증감	· 해당없음
재정사업자율평가	· ('18) 보통, ('17) 보통, ('16) 보통
보조사업연장평가	· 해당없음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종자검사 업무 및 유전자분석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검사장비 구매 및 검사보조원 활용

○ 벼 키다리병(특정병) 검정을 위한 배지 및 유묘시험

○ 보급종 수매·정선·보관·공급까지 각 단계별 발아율 검정

□ 기대효과·성과

○ 정밀한 종자검사 추진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보급종 공급

- 품종순도 진위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 실시로 종자검사 정밀도 향상

○ 유전자분석 등 검사 정밀도 향상을 위한 최첨단 분석장비 확대 도입으로 종자 보증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5.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직원역량강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내용	· 종자검사 및 정선시설운영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 세미나, 기술연수 등의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
'19년 사업규모 (최근 5년간 예산)	· 최근 5년간('14~'18) : 2억원(누적), 1억원(평균)
사업위치	· 해당없음
사업기간	· '94~계속
지원형태(지원조건, 지원율)	· 내역사업5 국비100%
사업시행주체(실 집행주체)	· 국립종자원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18년 국회증감	· 해당없음
재정사업자율평가	· ('18) 보통, ('17) 보통, ('16) 보통
보조사업연장평가	· 해당없음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종자 검사 및 정선업무 등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 세미나, 기술연수 등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종자검사원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실시

○ 신규 종자검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격전형 정례화

□ 기대효과·성과

○ 정선실무교육, 종자정선 현장학습, 선진기술 습득,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로 종자정선 전문역량 강화

○ 검사원교육, 경진대회,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학습 등 종자검사원 전문성 강화

참고 2 **설명자료**

종자 정선 주요과정

사진	주요과정	내용 설명
	수매	○ 수매검사에 합격한 종자를 채종농가로부터 수매
	투입	○ 수매종자 투입
	대략정선	○ 크기에 의한 선별 - 줄기, 잎, 죽은 곤충, 먼지, 모래 등 제거
	건조	○ 수분함량 14%까지 열풍순환에 의한 반복 건조 - 1회 건조시 2~3%이내 수분 감소 - 종자가 직접 받는 열풍 온도 : 43℃이하 유지
	정밀정선	○ 바람과 적정 체에 의한 종자 선별 - 피해립(파쇄립, 현미 등), 미숙립, 깜부기, 이종종자 등 정밀 제거
	비중정선	○ 종자의 무게에 의한 선별 - 갑판의 진동과 풍량에 의해 가볍고, 무거운 종자 제거
	색채선별	○ 원료의 색상 차이에 의한 선별 - CCD카메라, 에어건 등에 의해 깜부기, 현미 등 정밀 제거
	소독	○ 종자 전염 및 토양전염병균으로부터 종자 보호 - 자동 소독장치에 의한 슬러리 용액 분의처리
	포장 및 적재	○ 자동계량하여 포장 및 적재(품종특성표 동봉) - 포장단량 : 벼・보리・밀 20kg, 콩 5kg
	공급	○ 단위농협을 통한 수요농가에 종자 공급

포장검사 절차

검 사 신 청

◦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
- 신청서에 포장의 위치도(필지별 지번표시), 해당품종의 특성,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채종단계, 채종기관) 및 재배상황 등을 첨부

↓

달 관 검 사

◦ 대　　상 : 전 포장(포장전체를 관찰)
◦ 검사항목 : 포장격리, 전작물 조건, 포장조건, 이품종주, 이종종자주, 병주(특정병, 기타병), 작황 등

↓

표 본 검 사

◦ 대　　상 : 달관검사에 합격한 포장

↓

(표본조사구 선정)

2.0a 까지	2.1~10.0a	10.1~20.0a	20.1a 이상
전체면적 또는 전체 면적의 50% 검사	3개 조사구 이상	5개 조사구 이상	20a 초과시마다 1구씩 추가

↓

(표본조사구당 조사 수량)

◦ 조사주수 : 1㎡당 이삭(주)수×조사구 면적(㎡)
◦ 조사항목 : 포장검사 전항목
◦ 병주 판정기준 : 종자검사요령 『별표 1』에 따름

↓

검사결과 판 정 → **합 격 / 불 합 격 / 재관리검사** → 포장검사부에 기록하고 → 결과처리 현장에서 판정

*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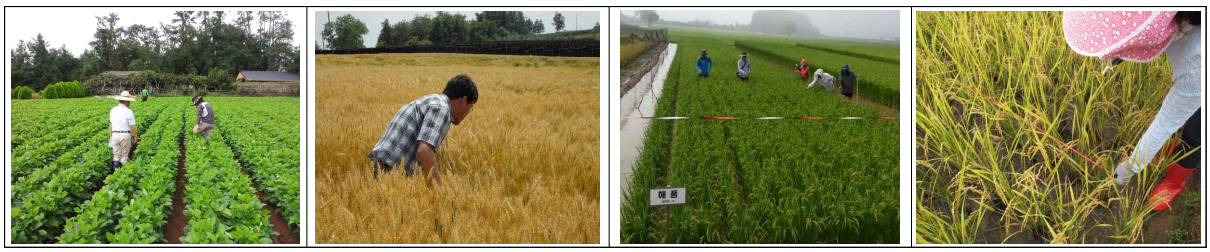

* 작물별 업무시기(포장검사 → 수매검사 → 제품검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벼	제품																					포장						수매			제품					
보리·밀													포장					수매				제품														
콩							제품															포장									수매					

종자검사 절차

검 사 신 청	◦ 대　상: 포장검사결과 합격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 – 검사신청서에 품종별, 생산자별 명세표를 첨부
↓	
소 집 단(Lot)	◦ 생산자별, 종류별, 품위별로 소집단 편성
↓	
포장(包裝)검사	◦ 포장재, 포장상태, 표시사항 등의 적정여부 검사
↓	
중 량 검 사	◦ 포장물: Lot 크기에 따라 100대까지(5대 이상 조사), 101~500대(5%이상), 501대이상(3%이상) ◦ 산　물: 소집단 전량의 실중량을 검사
↓	
시 료 추 출	◦ Lot별로 매 포장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채취하여 합성시료 조제 – 제출시료는 합성시료의 전부 또는 적당량으로 축분하여 봉인한 후 Lot 번호 기록
↓	
실 내 검 사	◦ 수분, 정립,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이물, 발아율, 병해립 등을 검사
↓	
검사결과판정	◦ 현장검사와 실내검사결과에 따라 결과판정
↓	
검 사 표 시	◦ 보증표시종자: 보증표지 우측하단에 검사일부인 날인
↓	
결과 처리	◦ 검사결과 검사신청기관에 통보(검사완료 후 7일 이내)

*** 참고사진**

<table>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순도분석</td><td>발아검정</td><td>TZ검정</td><td>사후관리시험포장 운영</td></tr>
<tr><td colspan="2"> </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벼 키다리병 검정</td><td colspan="2">유전자 순도 분석</td></tr>
</table>

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재량, 계속)

<농특회계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8,314	21,947	15,870	△6,077	△27.7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400 - 6432
* 담당자 : 국립종자원장(최병국), 품종보호과장(방문진), 사무관(금경연, ☏ 054-912-020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제도를 운영, 종자산업·민간육종가 지원을 통해 국내 및 해외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자유통조사(LMO안전관리 포함) 및 국제협력(국제 전문가 양성), 종자통계조사(정책의 개발 및 관리)를 추진

○ 육성가 권리보호 및 심사기관 협업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제도를 운영, 종자산업·민간육종가 지원을 통해 국내 및 해외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자유통조사(LMO안전관리 포함) 및 국제협력(국제 전문가 양성), 종자통계조사(정책의 개발 및 관리)를 추진
사업기간	· '98~계속
총사업비	· 236억원(국비 236억원)
사업규모	· 15,870백만원 · 최근 5년간('14~'18) 750억원(누적)/150억원(평균)
지원조건	·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 국립종자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품종심사: 341백만원

- 보조원 인건비 48,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7, 연구용역비 100, 일반수용비 103, 피복비 6, 임차료 7, 재료비 19, 국내여비 45, 사업추진비 4, 보전금 1

○ 재배시험: 9,351백만원

- 보조원 인건비 1834, 복리후생비 26, 고용부담금 310, 일반수용비 180, 공공요금 410, 피복비 13, 임차료 45, 유류비 52, 시설장비유지비 265, 재료비 378, 시험연구비 209, 국내여비 116, 사업추진비 7, 시설비 4993, 감리비 79, 자산취득비 434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607백만원

- 기간제 인건비 90, 복리후생비 3, 고용부담금 14, 일반수용비 177, 공공요금 및 제세 45, 임차료 13, 재료비 100, 유류비 6, 시설장비유지비 17, 국내여비 7, 일반용역비 35, 자산취득비 100

○ 종자산업: 3,583백만원

- 채종기반구축사업 3380, 해외현지 품종전시표 172, 종자수출협의회 지원 13, 국제종자기술세미나 18

○ 국제협력: 177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107, 국제회의 개최 70

○ 민간육종가지원: 859백만원

- 민간육종가지원 544, 대한민국우수품종상 315

○ 종자유통조사: 673백만원

- 종자유통조사 244, LMO 안전관리 429

○ 종자통계조사: 279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사업명	**21,947백만원**	**15,870백만원**
▪ 품종심사	390 · 보조원 인건비 55 (임금 43,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11) · 품종보호제도, 책임운영기관 컨설팅 100 · 신품품종 심사 운영비 235 (235=47백만원×5개소)	341 · 보조원 인건비 56 (임금 48,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7) · 품종보호제도, 책임운영기관 컨설팅 100 · 신품품종 심사 운영비 185 (185=37백만원×5개소)
▪ 재배시험	15,819 · 보조원 인건비 1,853 (임금 1,641, 복리후생비 26, 고용부담금 186) · 재배시험 포장 운영비 1,518 (1,518=303.6백만원×5개소) · 국내여비 118	9,351 · 보조원 인건비 2,170 (임금 1,834, 복리후생비 26, 고용부담금 310) · 재배시험 포장 운영비 1,552 (1,552=310.4백만원×5개소) · 국내여비 116

구 분	'18 예산	'19 예산
	(118=23.6백만원×5개소) · 사업추진비 8 (8=1.6백만원×5개소)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제주지원 신축 공사비 12,001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건물신축 6,252, 시설장비 2,700, 감리비 216, 시설부대비 415, 제주지원 신축 공사비 1,823) · 재배시험 기기 291 (291=58.2백만원×5개소)	(116=23.2백만원×5개소) · 사업추진비 7 (8=1.4백만원×5개소)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공사비 4,993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5년차 공사비 532, 제주지원 신축공사비 4,461) · 감리비 79 · 재배시험 기기 434 (434=86.8백만원×5개소)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	607 · 기간제 인건비 107 (임금 90, 복리후생비 3, 고용부담금 14) · 교육센터 운영비 393 (일반수용비 177, 공공요금 45, 유류비 6, 시설장비유지비 17, 일반용역비 35, 임차 13, 재료 100) · 국내여비 7 · 실습기기 구입비 100 (실습기기, 식당주방기기 등)
▪ 종자산업	3,700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3,538 (운영경비 6, 여비 11, 민간경상보조 3,521=11품목×40업체×8백만) ·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129 (3개지역×43백만) · 종자수출협의회 지원 14 (운영경비 3, 여비 11) · 국제종자검정세미나 19 (운영경비 12, 여비 7)	3,583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3,380 (운영경비 6, 여비 11, 민간경상보조 3,363=11품목×40업체×7.643백만) ·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172 (5개지역×34.3백만) · 종자수출협의회 지원 13 (운영경비 2, 여비 11) · 국제종자검정세미나 18 (운영경비 11, 여비 7)
▪ 국제협력	185 ·국제회의 참석 114 (30명×3.8백만) ·국제회의 개최 71 (1회×71백만)	177 ·국제회의 참석 107 (39명×3.69백만) ·국제회의 개최 70 (1회×70백만)
▪ 민간육종가지원	899 · 민간육종가 지원 555 (홍보 운영경비 202, 여비 23, 민간경상보조 330=신품종개발비 240, 해외출원비 15, 특수검정비 25, 교육비지원 10, 국외연수지원 40)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344 (운영비 151, 여비 9, 민간경상보조 24=국외연수지원14, 포장재지원10, 시상금 160=대통령상 1점(5천만), 총리상 2점(6천만), 장관상 5점(5천만)	859 · 민간육종가 지원 544 (홍보 운영경비 181, 여비 19, 민간경상보조 344=신품종개발비 240, 해외출원비 15, 특수검정비 25, 교육비지원 10, 국외연수지원 54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315 (운영비 136, 여비 9, 민간경상보조 10=포장재지원10, 시상금 160=대통령상 1점(5천만), 총리상 2점(6천만), 장관상 5점(5천만)
▪ 종자유통조사	675 · 종자유통조사 258 (종자유통단속 190, 특사경 직무수행경비 15, 홍보 운영경비 53) · LMO안전관리 417	673 · 종자유통조사 244 (종자유통단속 171, 특사경 직무수행경비 15, 홍보 운영경비 58) · LMO안전관리 419

구 분	’18 예산	’19 예산
	(LMO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367, LMO 환경방출 차단 사전 홍보경비 50) * ‘17년 대규모 종자용 LMO 환경방출 지역에 대한 중점 사후관리(유채 98개소, 면화 62)	(LMO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379, LMO 환경방출 차단 사전 홍보경비 50) * ‘17년 대규모 종자용 LMO 환경방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및 LMO 종자의 사전 차단을 위한 파종전 검사 및 모니터링 추진)
▪ 종자통계조사	279 · 종자통계조사 일반연구비 (현장조사 149=2,500업체×60천원, 조사결과분석 130=2,500업체×52천원)	279 · 종자통계조사 일반연구비 (현장조사 130, 조사결과분석 149) * 종자산업통계 체계 구축 사업으로 민간연구용역업체를 통한 종자업 및 육묘업등록업체 실태조사(‘19년 조사부터 육묘업 등록업체까지 포함)

□ 지원 필요성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제도 운영을 통해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자산업 육성

- 출원등록 후 독점적 권리부여하여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의욕 고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1,664**	**21,947**	**15,870**	**△6,077**	**△27.7**
▪ 품종심사	351	390 ○ 보조원 인건비 43 (1.2백만원×3명×12월) ○ 복리후생비 1 (0.4백만원×3명) ○ 고용부담금 11 (0.3백만원×3명×12월) ○ 연구용역비 100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정부 3.0 등 조직진단) ○ 일반수용비 128 - 강사수당(0.82백만원×13명) - 책자(0.0122백만원×3,350부) - 언론홍보(1백만원×10개언론) - 기념품(0.127백만원×206개) - 소모품(0.01백만원×16종×250점)	341 ○ 보조원 보조원48 (2백만원×2명×12월) ○ 복리후생비 1 (0.4백만원×2명) ○ 고용부담금 7 (0.3백만원×2명×12월) ○ 연구용역비 100 (품종보호제도, 책임운영기관 운영, 조직진단) ○ 일반수용비 103 - 강사수당 (0.82백만원×13명) - 책자(0.0122백만원×3,350부) - 언론홍보(1백만원×10개언론) - 기념품(0.127백만원×206개) - 소모품(0.01백만원×16종×80점) - 전자지불 대행수수료 (0.167백만원×12월) ○ 피복비 6	△49	△12.6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임차료 1 - 표준식물명위원회(0.5백만원×2회) ○ 재료비 19 (0.01백만원×25종×25점×3지역) ○ 국내여비 37 (0.03백만원×70회×17.5명) ○ 사업추진비 3 (0.011백만원×90명×3회) ○ 자산취득비 47 (3.1백만원×15점)	(0.6백만원×10명) ○ 임차료 7 - 표준식물명위원회(3백만원×2회) - 삼시관합동심의회(0.5백만원×2회) ○ 재료비 19 (0.01백만원×25종×25점×3지역) ○ 국내여비 45 (0.03백만원×79회×19명) ○ 사업추진비 4 (0.01백만원×103명×4회) ○ 보전금 1 (0.025백만원×3건×11개소)		
▪ 재배시험	5,595	15,819 ○ 보조원 인건비 1,641 (1.753백만원×78명×12월) ○ 복리후생비 26 (0.4백만원×66명) ○ 고용부담금 186 (0.199백만원×78명×12월) ○ 일반수용비 179 (35.8백만원×5개소) ○ 공공요금 410 (82백만원×5개소) ○ 피복비 16 (0.25백만원×65명) ○ 임차료 45 (9백만원×5개소) ○ 유류비 52 (10.4백만원×5개소) ○시설장비유지비 231 (46.2백만원×5개소) ○ 재료비 376 (75.2백만원×5개소) ○ 시험연구비 209 (41.8백만원×5개소) ○ 국내여비 118 (0.03×24명×14.9회×5개소) ○ 사업추진비 8 (0.062백만원×25명×5회)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신축공사비 6,252	9,351 ○ 보조원 인건비 1,834 (1.698백만원×90명×12월) ○ 복리후생비 26 (0.4백만원×65명) ○ 고용부담금 310 (0.287백만원×90명×12월) ○ 일반수용비 180 (36백만원×5개소) ○ 공공요금 410 (82백만원×5개소) ○ 피복비 13 (0.25백만원×52명) ○ 임차료 45 (9백만원×5개소) ○ 유류비 52 (10.4백만원×5개소) ○시설장비유지비 265 (53백만원×5개소) ○ 재료비 378 (75.6백만원×5개소) ○ 시험연구비 209 (41.8백만원×5개소) ○ 국내여비 116 (0.03×24명×14.6회×11개소) ○ 사업추진비 7 (0.056백만원×25명×5회) ○ 시설비 4,993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5년치	△6,468	△40.1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6,300㎡×2.3백만원×43.15%) ○ 시설장비비 2,700 ○ 감리비 216 (1,074백만원20.12%) ○ 시설부대비 415 (1,033백만원×40.18%) ○ 시설비 2,418 - 제주지원 재배시험포장 토지기반조성 (22,790m²×0.08백만 원 =1,823백만원) - 버섯사 공사(119백만원 ×5개소=595백만원) ○ 실시설계비 30 - 포장관수용 저수조 설계비 (15백만원×2개소)) ○ 자산취득비 291 (58.2백만원×5개소)	공사비 532, 제주지원 건물신축 4,461) ○ 감리비 79 ○ 자산취득비 434 (86.8백만원×5개소)		
▪ 국제종자 생명교육센터	-	-	607 ○ 기간제 인건비 90 (1.875백만원×8명×6월) ○ 복리후생비 3 (0.4백만원×8명) ○ 고용부담금 14 (0.145백만원×8명×12월) ○ 일반수용비 177 (강의료, 전산용품 등 177) ○ 공공요금 45 (45백만원×1개소) ○ 임차료 13 (13백만원×1개소) ○ 재료비 100 (100백만원×1개소) ○ 유류비 6 (6백만원×1개소) ○ 시설장비유지비 17 (17백만원×1개소) ○ 국내여비 7 ○ 일반용역비 35 ○ 자산취득비 100 (실습기기, 식당주방 기기 구입 등 100)	순증607	
▪ 종자산업	3,688	3,700 (채종기반구축사업 3,538,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129, 종자수출협의회 지원 14, 국제종자기술세미나 19)	3,583 (채종기반구축사업 3,380,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172, 종자수출협의회 지원 13, 국제종자기술세미나 18)	△117	△3.2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제협력	143	185 (국제회의 참석 114=30명×3.8백만원, 국제회의 개최 71(1회))	177 (국제회의 참석 107=29명×3.69백만원, 국제회의 개최 70(1회))	△8	△4.3
▪ 민간육종가지원	890	899 (민간육종가지원 555, 대한민국우수품종상 344)	859 (민간육종가지원 544, 대한민국우수품종상 315)	△40	△4.4
▪ 종자유통조사	817	675 (종자유통조사 258, LMO안전관리 417	673 (종자유통조사 244, LMO안전관리 429)	△2	△0.3
▪ 종자통계조사	180	279 (1식×279백만원×100%)	279 (1식×279백만원×100%)	-	-
□ 비목(합계)	**11,664**	**21,947**	**15,870**	△6,077	△27.7
상용임금 (110-03)	348	1,238	1,468	230	18.6
일용임금 (110-04)	872	695	771	76	10.9
일반수용비 (210-01)	717	582	720	138	23.7
공공요금제세 (210-02)	347	422	457	35	8.3
피복비 (210-03)	16	16	19	3	18.8
임차료 (210-07)	62	87	101	14	16.1
유류비 (210-08)	45	52	58	6	1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83	231	282	51	22.1
재료비 (210-11)	507	485	588	103	21.2
복리후생비 (210-12)	1	26	34	8	30.8
시험연구비 (210-13)	116	209	209	-	-
일반용역비 (210-14)	344	323	383	60	18.6
기타운영비 (210-16)	4	5	-	△5	순감
국내여비 (220-01)	280	337	329	△8	△2.4
국외여비 (220-02)	126	168	158	△10	△6.0
업무추진비 (240-01)	31	33	31	△2	△6.1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직무수행경비 (250-03)	13	15	15	-	-
일반연구비 (260-01)	347	379	379	-	-
포상금 (310-03)	160	160	161	1	0.6
민간경상보조 (320-01)	3,875	3,875	3,717	△158	△4.1
고용부담금 (320-09)	7	230	374	144	62.6
건설보상비 (410-00)	690	-	-	-	-
실시설계비 (420-02)	200	30	-	△30	순감
시설비 (420-03)	1,780	11,370	4,993	△6,377	△56.1
감리비 (420-04)	-	216	79	△137	△63.4
시설부대비 (420-05)	19	415	-	△415	순감
자산취득비 (430-01)	574	348	544	196	56.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식물식품종 보호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54조, 제10조,

· 종자산업법 제6조,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종자산업법 제8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등)

○ 추진경위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제도를 운영, 종자산업·민간 육종가 지원을 통해 국내 및 해외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자유통조사(LMO안전관리 포함) 및 국제협력(국제 전문가 양성), 종자통계조사(정책의 개발 및 관리)를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품종심사및재배시험	85	88	94	165	183	21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405	333	-	9,738	**8,584**	500	654
	(9,405)	(333)	(-)	(9,738)	**(8,584)**	(500)	(654)
'16년	16,521	500	-	17,021	**13,965**	2,545	511
	(16,521)	(500)	(-)	(17,021)	**(13,965)**	(2,545)	(511)
'17년	18,314	2,545	-	20,859	**11,664**	8,344	851
	(18,314)	(2,545)	(-)	(20,859)	**(11,664)**	(8,344)	(85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상임위) 편성지침 상 기준 미준수에 따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시설부대비 불용 문제 지적

- 2017년 예산편성 시 시설부대비를 기준(공사비 0.23%)보다 초과하여 편성하여 대규모 불용(5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고, '18년 예산에 추가 편성함(4억 1,500만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품종심사

신품종 출원접수	○ 직접수행, 출원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문서)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9,10,14,17,30,31,32,35,107조
↓	
출원공개	○ 직접수행, 품종보호공보 발간(매월 15일, 전자공보 게시)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
↓	
서류심사 및 재배시험	○ 직접수행, 소관부서 지정, 심사방법 결정, 재배심사계획서 작성, 계획서 작성, 재배심사 보고서 작성, 종합심사보고서 작성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
↓	
품종보호 결정	○ 직접수행, 품종보호료 납부(민간), 공보에 게시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3조
↓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 직접수행, 등록증 발급, 효력 발생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

② 재배시험

심사/재배시험계획 수립	○ 직접수행, 대조품종 선정 및 수급, 종자시료요청,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19조
↓	
출원품종/대조품종 /표준품종 재배	○ 직접수행, 시험설계, 파종·정식, 재배관리, 병충해방제 등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19조
↓	
특성조사	○ 직접수행 ·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제·개정 전문가 협의회 · 품종보호 심사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특성조사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19조
↓	
조사결과 검정 및 결과보고	○ 직접수행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19조

③ 종자산업 지원

○ 국내채종기반 구축

설문조사 및 간담회	○ 직접수행, 사업계획 수립 ○ 종자산업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	
사업공고 및 접수	○ 직접수행 ○ 종자산업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	
심의	○ 직접수행,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 종자산업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	
계약접수 및 현지실사	○ 직접수행 ○ 종자산업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	
지원금 교부	○ 직접수행,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교부 ○ 종자산업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 해외 품종전시포 운영

설문조사 및 간담회	○ 직접수행, 전시포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종자산업법 제8조
↓	
사업공고 및 접수	○ 직접수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심의	○ 직접수행,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 ○ 종자산업법 제8조
↓	
위탁사업자 선정	○ 직접수행,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 종자산업법 제8조
↓	
품평회 개최	○ 직접수행 ○ 종자산업법 제8조

④ 국제협력

○ 국제회의, 기획연수 참석

심의위원회(16.2)	○ 직접수행, 국제회의 및 기획연수 참석자 심의 ○ 종자산업법 제8조
↓	
실시(연중)	○ 직접수행 ○ 종자산업법 제8조
↓	
결과보고(연중)	○ 직접수행, 국제회의 및 기획연수 추진 결과보고 ○ 종자산업법 제8조
↓	
성과환류(연중)	○ 직접수행 ○ 종자산업법 제8조

○ 국제회의 개최

국제회의 개최 계획수립	○ 직접수행, 사업추진 기본방향 수립 ○ 종자산업법 제8조
↓	
행사준비	○ 직접수행, 국외 참석자 초청장 발송, 개최 장소 등 ○ 종자산업법 제8조
↓	
개최	○ 직접수행, 국제회의 개최 ○ 종자산업법 제8조
↓	
결과보고	○ 직접수행, 국제회의 개최결과 보고 ○ 종자산업법 제8조

⑤ 민간육종가 지원

○ 민간육종가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직접수행, 사업계획 수립 ○ 종자산업법 제10조, 제11조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직접수행, 서류검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교부결정 및 지원금 교부	○ 직접수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

계획수립	○ 직접수행, 시상식 기본계획 수립(종자산업법 제10조)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직접수행(대회공고 및 포스터 배포, 신청서 검토 등)
↓	
위원회 구성·운영	○ 직접수행(운영·분야별·종합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분야별 현지심사	○ 간접수행(일반용역)
↓	
시상식 개최	○ 직접수행(포상금 지급) ○ 종자산업법 제10조
↓	
결과보고	○ 직접수행

⑥ 종자유통조사(LMO 안전관리 포함)

기본계획 수립	○ 직접수행, 기본계획 수립 ○ 종자산업법 제42조의2, 제4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의2
↓	
정기·특별 유통조사 및 LMO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직접수행, 위반업체 단속(과태료, 검찰송치 등) 추진 ○ 종자산업법 제42조의2, 제45조
↓	
결과보고	○ 직접수행(종자산업법 제42조의2, 제45조)

⑦ 종자통계

통계대행의뢰	○ 직접수행, 통계청 의뢰 ○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종자업실태조사	○ 직접수행, 통계청 현지조사 실시 ○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결과분석 및 평가	○ 직접수행, 통계조사 분석(농경연) 및 결과평가(종자원) ○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3.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원원종 및 원종 생산	4,809	5,692	5,692	-	-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400 - 6432
* 담당자 : 원장(최병국), 식량종자과장(이태용), 사무관(우제현) 주무관(박선영 ☏054-912-018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원원종·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인건비·재료비) 지원을 통해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벼, 콩, 보리, 밀 등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상위단계 종자인 원원종 및 원종의 확보를 위해 상위단계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생산비를 각 도에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기반 조성
사업기간	'76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원원종 및 원종 생산면적 : 28,421a(원원종 1,705, 원종 26,716)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국립종자원 / 지자체(각 도 농업기술원 및 원종 생산기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사업계획) 내역사업 중 사업계획(생산면적)은 '18년도 대비 277a 증가

* 사업계획 : ('18) 28,144a(원원종 1,688, 원종 26,456) → ('19) 28,421a(원원종 1,705, 원종 26,716)

○ (지원조건) '19년도 최저임금 미반영되어 '18년도 최저임금 기준(7,530원/시간)을 동일하게 유지

○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 :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상위단계 종자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 5,692백만원

▪ 지원조건 미변경 : 인건비 60,240원/8시간(시간당 7,530원)

▪ 산출내역 : 5,692백만원(42년차 사업비) × 국고보조100% × 17개소(8개 시·도)

* 사업확대(생산면적) : ('18년) 28,144a → ('19) 28,421a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원원종및원종생산	**5,692백만원**	**5,692백만원**
▪ 원원종및원종생산	▪ **원원종 617** - 인건비 471 (1,688a × 279천원) - 재료비 146 (1,688a × 86천원) ▪ **원종 5,075** - 인건비 3,579 (26,456a × 135천원) - 재료비 1,496 (26,456a × 57천원	▪ **원원종 617** - 인건비 471 (1,705a × 276천원) - 재료비 146 (1,705a × 86천원) ▪ **원종 5,075** - 인건비 3,579 (26,716a × 134천원) - 재료비 1,496 (26,716a × 56천원

□ 지원 필요성

○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벼, 보리, 밀, 콩 등의 보급종은「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을 통한 상위단계 종자를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상위단계 종자의 원활한 공급 없이는 보급종 확대공급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가 불가능

- 종자갱신 미흡시 생산성 저하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차질
- 식량안보차원에서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상위단계 종자확보는 반드시 필요

○ FTA 등 시장개방확대와 국제시장 변화에 대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사업)

-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 및 사료작물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등 국내 시장 불안정에 대비할 필요
- 생산성이 높은 정부 보급종에 대한 농업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종자 공급부족 시 쌀 수급안정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에 차질 발생

○ 정부의 종자 생산·공급사업은 기본식물·원원종·원종 단계를 거쳐 보급종을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원가로 공급하는 공익사업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원원종 및 원종생산**	**4,809**	**5,692**	**5,692**	**-**	**-**
▪ 원원종 및 원종생산		▪ **원원종 617** - 인건비 471 (1,688a × 279천원) - 재료비 146 (1,688a × 86천원) ▪ **원종 5,075** - 인건비 3,579 (26,456a × 135천원) - 재료비 1,496 (26,456a × 57천원	▪ **원원종 617** - 인건비 471 (1,705a × 276천원) - 재료비 146 (1,705a × 86천원) ▪ **원종 5,075** - 인건비 3,579 (26,716a × 134천원) - 재료비 1,496 (26,716a × 56천원	-	-
□ **비목**(합계)	**4,809**	**5,692**	**5,692**	**-**	**-**
○ 지자체경상보조(330-01)	4,809	5,692	5,692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1」 60호.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 : 기준보조율 100%

○ 추진경위

- '76년 : IBRD와 종자차관협정 체결('73)이후, 1976년부터 벼, 보리,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순도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원원종·원종생산 사업비 지원
- '07년 : 고품질 품종의 벼 종자 갱신율을 '08년까지 50% 수준으로 공급(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 '09년 :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에 의한 지자체 식량작물 보급종자 생산·공급 추진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예산 확대('20년 54억원)
- '11년 : 주요곡물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밀, 콩, 팥 등 밭작물 종자는 점차 확대하여 전체 종자소요량의 35%수준으로 공급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원원종 및 원종 생산	41	41	44	44	48	5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4 (44)	- (-)	- (-)	44 (44)	44 (44)	- (-)	- (-)
'16년	44 (44)	- (-)	- (-)	44 (44)	44 (44)	- (-)	- (-)
'17년	48 (48)	- (-)	- (-)	48 (48)	48 (48)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77.5점)

○ '15년도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 정상추진

○ '16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88.4점)

○ '16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 94.6점

○ '17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92.0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사업비 배정(국립종자원 → 광역지자체) → 지자체별 종자 생산사업 수행 → 원종 전량 인계·인수(광역지자체→국립종자원)하여 정부보급종 생산에 활용 → 도별 사업평가 → 차년도 예산 차등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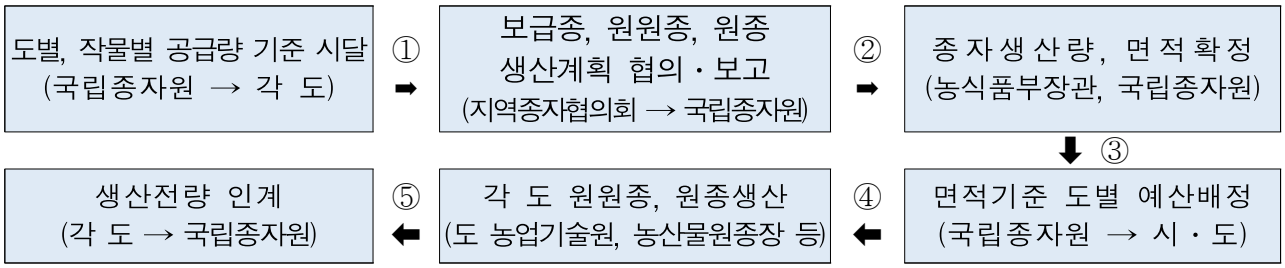

< 정부 보급종 생산 단계 >

채종단계	:	기본식물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생산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원종 생산기관)		(국립종자원, 지자체)

* 식량작물 종자는 일시에 대량 생산이 어렵고 품종별 순도유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생산

참고 1 `18~`19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 면적

(단위 : a)

작물	원원종			원종		
	'18년	'19년	증△감	'18년	'19년	증△감
계	**1,688**	**1,705**	**17**	**26,456**	**26,716**	**-**
벼	259	259	-	8,469	8,469	-
보리	309	334	25	4,248	4,248	-
밀	119	95	△24	1,815	1,815	-
콩	468	478	10	7,204	7,204	-
감자	450	450	-	4,470	4,470	-
옥수수	-	-	-	250	250	-
기타	83	89	6	-	260	

주) 1. '18~'19년도 종자생산 면적은 농식품부 동·하계 주요작물 종자 생산·공급계획 기준
2. '19년 기타(원원종) :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호밀
'19년 기타(원종) : 호밀, 팥

참고 2 연도별 원원종 및 원종생산 생산비 단가 변동내역

(단위 : a, 백만원, 천원/a)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 체	사업면적	27,075	27,177	27,085	27,491	28,485	28,788	28,144
	사 업 비	3,983	4,083	4,083	4,411	4,411	4,809	5,692
	지원단가	147	150	151	161	155	167	202
원원종	사업면적	1,798	1,691	1,626	1,648	1,729	1,715	1,688
	사 업 비	441	437	425	468	468	518	514
	지원단가	245	258	261	284	270	302	305
원종	사업면적	25,277	25,486	25,459	25,843	26,756	27,063	26,456
	사 업 비	3,542	3,646	3,658	3,943	3,942	4,291	4,295
	지원단가	140	143	144	153	147	159	162

* 지원단가는 작물별 평균값임(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작물별 단가는 상이함)

참고 3 정부보급종 생산 절차

□ 보급종 생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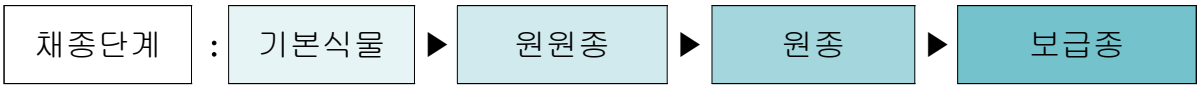

(생산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원종 생산기관) (국립종자원, 지자체)

* 식량작물 종자는 일시에 대량 생산이 어려워 단계적으로 생산

◦ 생산작물 : 벼, 보리, 밀, 콩, 감자

◦ 보급종은 농업인과 종자생산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생산

< 채종단계별 생산기관 >

단계 / 작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벼, 보리, 밀, 콩	각 도 농업기술원	각 도 원종 생산기관	국립종자원 (경기도 종자관리소 포함)
옥수수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
감자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전북(무주군) 경북(영양군, 봉화군)

□ 보급종 공급체계

◦ 공급량 배정 : 국립종자원과 지자체에서 품종 및 물량을 도별로 배정(단, 감자는 강원도) → 도 농업기술원이 시·군 배정

◦ 신청 접수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

◦ 종자 공급 : 지역농협이 대행

< 종자공급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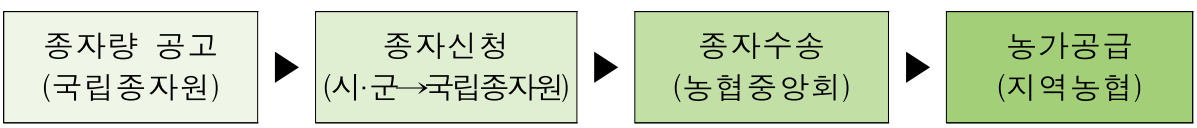

4.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종자산업및품종보호	359	87	87	- - -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400 – 6432

* 담당자 : 국립종자원장(최병국), 종자산업지원과장(안종락), 사무관(전희영, ☏ 054-912-017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시아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선진 종자검정 기술전수 등을 추진하여 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종자수출의 기반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컨설팅 및 실무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사업기간	'08~단년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87백만원 최근 5년간('14～'18) 14억원(누적)/2.8억원(평균)
지원조건	무상원조(국비100%)
사업시행주체	국립종자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초청연수 추진을 위해 사업비 87백만원 요구

('18) 87백만원 → **(19) 87백만원(전년 동일)**

▪ 산출내역 : 1회(초청연수)×87백만원×100%=87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87백만원**	**87백만원**
▪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87백만원** (초청연수 1회×87백만×100%) 15개국 15명 통역, 현장학습, 강사료, 실습비 등 16 회의실, 버스임차료 6 항공료 및 체재비 52 환영만찬 및 환송오찬, 다과 13	**87백만원** (초청연수 1회×87백만×100%) 15개국 15명 통역, 현장학습, 강사료, 실습비 등 26 회의실, 버스임차료 6 항공료 및 체재비 42 환영만찬 및 환송오찬, 다과 13

□ 지원 필요성

○ 정부는 OECD DAC 가입,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국정과제(133) 등에 따라 ODA 규모 및 ODA/GNI 비율을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아시아지역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지원은 아시아지역 중점협력대상국에 집중되어 있음

○ 정부는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수출목표 달성 및 국내 종자업체의 해외수출시장개척 지원을 위하여 '16년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총회를 유치하는 등 한국종자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본 사업은 아국의 입지 강화 및 우호적 분위기 조성, 지역동반 발전 기여에 반드시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359	87	87	-	
▪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산출근거)	62 12개국 12명	87 15개국 15명 (1회×87백만×100%)	87 15개국 15명 (1회×87백만×100%)	-	
▪ 미얀마 종자품질 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 (산출근거)	297	-	-	-	
□ 비목(합계)	359	87	87	-	-
○ 일반수용비(210-01)	98	16	26	10	62.5
○ 임차료(210-07)	21	6	6	-	
○ 국내여비(220-01)	5	-	-	-	
○ 국외여비(220-02)	78	52	42	△10	△19.2
○ 사업추진비(240-01)	11	13	13	-	
○ 해외경상이전(340-01)	146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세계의 농어업·농어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① 주무부장관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농촌지역 개발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국가등의 책무)** : ① 국가 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② 국가 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③ 국가 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

○ 추진경위

- 2008～2009년 :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농업협상 및 농업협력지원 운영비(101-5031-300-210-01)
- 2010년 : 국립종자원 “종자관리” 예산으로 추진
- 2013년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및 재배시험(ODA)" 예산으로 분리
- 2013.9월 : 미얀마 정부의 요청으로 벼 보증종자 생산공급을 위한 품질인증기술 및 보급종 운영절차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발굴 추진
- 2015~2018. 3 : 미얀마 벼 종자품질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 추진완료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0.87	0.87	3.87	4.19	4.19	0.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 불용 10백만원, 전용 40백만원(전문가 주택임차료→강사 국외여비 등)

- 메르스 국내확산에 장기간의 전문가파견 대신 현지교육 강사파견 및 초청연수로 변경하였음

▪ ('16) 불용 55백만원

- '15년도 보급종 직원 비위사건 발생에 따라 관련자 인사조치(13명) 됨에 따라 시급한 현안 관련 우선 대응 및 기관운영 정상화* 등을 위해 내부인력 대신 외부전문가 파견으로, 부족한 인력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변경 운영함(내부전문가 1명, 12월 → 외부 2명, 1월)

  * '16년 책임운영기관 평가 "A" 회복 등 기관운영 정상화 지속 노력

▪ ('17) 이월 14백만원, 불용 46백만원

- 당초 미얀마 농업국 예산으로 종자저장고를 건립한 후 우리 측이 저장고내 기자재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미얀마측 사정(예산부족)으로 저장고 건립(양곤, 만달레이)을 추진하지 못함. 이에 미얀마 측은 현지 세미나 및 워크숍('17.12.6~7)시 종자검정실(네피도, 양곤, 만달레이)내 기자재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운송면세 처리기간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차년도로 이월

- '17년도의 경우 미얀마 현지 새로운 외교정책(정부에서 인원수 축소조정)으로 미얀마 연수생 참여감소(국외여비) 및 미얀마, 아시아 ODA 초청연수가 동일기간에 진행되어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불용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7 ( )	( )	( )	3.87 ( )	3.77 ( )	( )	0.10 ( )
'16년	4.19 ( )	( )	( )	4.19 ( )	3.64 ( )	( )	0.55 ( )
'17년	4.19 ( )	( )	( )	4.19 ( )	3.59 ( )	0.14 ( )	0.4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초청연수사업 :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준비	개요 수립	- 사업추진 기본방향설정 등 개요 수립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7조
승인	계획 수립	- 세부주제・커리큘럼 편성 등 계획 수립
	시행 승인	- 농식품부의 예산배정을 포함하여 초청연수 시행 승인
시행	행사 고지	- 농식품부, 외교부(각 수원국 대사관) : 연수생 선발협조
	연수생 초청	- 아시아 국가의 적임자 추천 및 선정 - 초청대상자 초청장・안내장 송부 및 절차 추진
	강사 섭외	- 자체・외부(산・학・연) 강사 섭외 및 원고 준비
	행사 준비	- 장소, 시설, 기자재, 항공여정, 숙박, 현장학습 등
	연수 시행	- 강의, 실습, 발표, 견학 등 워크숍 추진
	평가	- 설문조사 등을 통한 평가(연수 주제・내용, 강사, 숙식・교통, 강의실 등 연수 인프라 만족도)
	연수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사후 관리	피드백	- 연수생 평가결과・자체평가를 통해 향후 주요이슈 및 연수생 요구사항, 개선사항 발굴・반영

5. 종자원정보화(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종자원정보화	1,304	1,556	1,793	237	15.2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6400 ~ 6433
* 담당자 : 국립종자원장(최병국), 식량종자과장(이태용), 사무관(고성혁, ☏ 054-912-019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립종자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식물신품종 출원·심사·등록 업무와 재배시험 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과 전자출원시스템 운영으로 출원인의 편리 도모

○ 정부가 생산한 고품질 우수 종자의 신청·생산·공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국립종자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통신료, 임차료, 노후 PC교체, HW 및 개발SW · 상용SW 유지보수, 업무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종자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기능개선 160백만원

▪ 산출내역 : 시스템 개발비 160백만원

○ 통신요금 612백만원

▪ 산출내역 : 통신회선 요금 608백만원 + SMS요금 4백만원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유지보수 544백만원

▪ 산출내역 : 개발SW 371백만원 + 상용SW 108백만원 + HW 65백만원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임차료 419백만원

▪ 산출내역 : 도입장비 104.8백만원 × 4회

○ 기타 운영지원 58백만원

▪ PC 및 프린터 교체 32백만원

▪ 백신프로그램 갱신 23백만원 + 여비 3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종자원정보화	**1,556백만원**	**1,793백만원**
▪ 종자원정보화	· 통신망 분리구축 (113=2회×56.5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47=8.7%×6,268백만원) · 도입장비 임차료 (193=4회×48.3백만원) · 통신요금 (437=12월×36.4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 (266=기능개선 160백만원 + PC교체·백신갱신 등 106)	· 통신망 분리구축 (226=4회×56.5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544=8.8%×6,171백만원) · 도입장비 임차료 (193=4회×48.3백만원) · 통신요금 (612=12월×51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 (218=기능개선 160백만원 + PC교체·백신갱신 등 58)

□ 지원 필요성

○ 종자원 정보화는 농식품부 국정과제(단위과제)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우리 농업의 신성장 동력인 종자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020 종자산업 육성 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자원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2020 종자산업 육성 대책 :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 중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종자원정보화(정보화)	1,304	1,556	1,793	237	15.2
▪ 종자원정보화	1,304 (1,304백만원 ×100%)	1,556 (1,556백만원 ×100%)	1,793 (1,793백만원 ×100%)	237	15.2
□ 비목(합계)	1,304	1,556	1,793	237	15.2
○ 일반수용비(210-01)	26	23	23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34	437	612	175	40.0
○ 임차료(210-07)	123	306	419	113	36.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75	547	544	△3	△0.5
○ 국내여비(220-01)	2	1	1	-	-
○ 국외업무여비(220-02)	0	2	2	-	-
○ 연구개발비(260-00)	78	160	160	-	-
○ 자산취득비(430-01)	66	80	32	△48	△6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2~14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추진경위

- '03 ~ '08년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구축
- '09년 : 노후 장비 교체 및 품종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10년 : 홈페이지 재구축 및 보급종 생산, 정선시스템 재개발
- ‘11년 : 보급종 검사업무 시스템 재개발, 정보보안 강화
- ‘12년 : 보급종 신청시스템 재구축, 정보인프라 개선 사업
- ‘13년 : 품종보호 전자출원시스템 개편(전자서명 도입)
- ‘14년 : 종자원 홈페이지 개편
- ‘15년 : 전자민원시스템 통합, 정보보안 강화사업
- ‘16년 : 재배심사시스템 고도화
- ‘17년 : 전자민원시스템 확대(품질검정, 과수바이러스검정)
- ‘18년 :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방지를 위한 망분리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종자원정보화	15.1	15.1	14.1	13.8	14.3	15.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 불용액(67백만원)은 조달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 ‘16년 : 이월액(84백만원)은 2개년에 걸친 유지보수계약(’16.2~’17.2) 금액 중 ’17년에 집행할 잔금

○ ‘17년 : 불용액(133백만원)은 노후장비 교체 연기(67백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66백만원)

이월액(76백만원)은 용역 수행기간이 2개년에 걸치게 되어 ’18년에 집행할 잔금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 ( )	- ( )	- ( )	14 ( )	**13** ( )	- ( )	0.7 ( )
’16년	**14** ( )	- ( )	- ( )	14 ( )	**13** ( )	0.8 ( )	- ( )
’17년	**14** ( )	0.8 ( )	- ( )	15 ( )	**13** ( )	0.8 ( )	1.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평가시기 : 2018. 4
- 평가등급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EU 등 종자산업의 선진국들은 육종가 및 종자회사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임

- 일본 : 화훼류 이미지 검색시스템(http://www.hinsyu.maff.go.jp/)
- EU : 품종보호 출원, 등록품종 검색시스템(http://www.cpvo.europa.eu/)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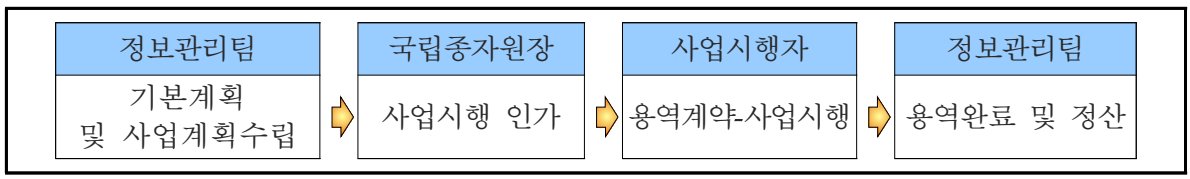

참고 1 망분리에 따른 임차료 통신료 증액

❑ 망분리 임차료 : 113백만원

○ 상환스케줄에 따른 임차료 증액분 : 56.5백만원×2회(2회→4회로 증액)

리스기간(60개월, 20회) 2018.12.1. ~ 2023.12.1.	상환 스케쥴						
	'18년 2회	'19년 4회	'20년 4회	'21년 4회	'22년 4회	'23년 2회	합계
금 액(백만원)	113	226	226	226	226	113	1,130

❑ 망분리 통신료 : 175백만원

○ (증설 12회선) 12.4백만원×12월 + (신설 2회선) 4.4백만원×6월

○ **망분리에 따른 통신회선 증설**

- 물리적 망분리에 따른 본원·지원 회선 증설(지원별 1회선 → 2회선)
  - 본원 : 2.5G MSPP 집선 스위치 1식 추가
  - 지원 : 155M MSPP 스위치 12식 추가
- **통신비용 : 년 432,709,200원 → 582,093,600원(149,384,400원 증가)**
  (12.4백만원 × 12월)

구 분		회선서비스(Mbps)			임대장비	합 계 (VAT포함 금액)		비고
		전용회선	행안부 내부망	행안부 외부망	라우터/스위치			
현재 지급액	속도	10M(12)	80M(1)	40M(1)	1,535,000	1년	432,709,200 (A)	협정요금
	요금	30,219,000	527,000	500,000				
망분리후 지급액	**속도**	**10M(24)**	**80M(1)**	**80M(1)**	**2,825,000 (L3*12+집선* 1추가)**	**1년**	**582,093,600 (B)**	**협정요금**
	요금	**40,219,000**	**527,000**	**527,000**				
증가액(C)		B - A					**149,384,400**	연간

※ 국가융합망 전환(2021년) 시 약 1/2수준으로 절감 예상

○ **영암사무소 신설에 따른 통신회선 신설**

- 본원·영암사무소 2회선 신설 및 통신장비(L2) 임대
- 4.4백만원 × 6월

참고 2 종자관리통합시스템 기능개선

1. 사업내용(개요)

○ 종자관리(민원업무)시스템의 ActiveX를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G-클라우드 전환에 대비

2. 추진현황

○ 종자관리시스템(보급종 생산·공급, 품종심사, 재배시험)을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반영하여 '20년까지 단계적으로 ActiveX 제거

- 보급종 생산공급 시스템은 예산 사정상 공급부분과 생산·검사·정선 부분으로 분리하여 추진
- '16년 재배시험 → '18년 보급종 공급 → '19년 보급종 생산·검사·정선 → '20년 품종심사

구분		규모 (FP)	최근 재개발	기능개선 (예정)	개발도구
보급종 생산공급					MiPlatform(ActiveX기반)
	공급	589	'10년~'12년	'18년	Nexacro(Non ActiveX)
	생산.검사.정선	983	'10년~'12년	'19년	Nexacro(Non ActiveX)
품종심사		1,509	'09년	'20년	MiPlatform(ActiveX기반)
재배시험		314	'16년	완료	Nexacro(Non ActiveX)

* '17년은 종자검정 부분을 신규로 개발(Nexacro 적용)

3. 예산 투입 계획

년도	계	'16년	'18년	'19년	'20년
규모(FP)	3,395	314	589	983	1,509
예산(백만원)	1,002	108	160	281	453

4. 19년 소요예산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원)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8,648	신규	-	0.967	1.35	1.18	-	42,268,249
설계	124,609	재개발	983.4				-	53,391,900
구현	166,145	보정 후 점수	279.3				0.8	71,189,058
시험	129,801						0.8	55,616,545
개발원가 합계								222,465,752
합계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5%)) × 1.1(VAT)								**281,419,175원**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 국립종자원 업무 정보 시스템으로 업무시스템과 외부사용자(민원인)을 위한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으로 구성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구성도 >

참고3 종자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장기 3차)

❑ 사업 내역

○ 종자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HW,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 유지보수 대상

- 개발 SW : 보급종 생산·공급 시스템, 품종보호 시스템, 재배시험시스템, 전자민원 시스템, 행정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등
- HW 장비 : 서버 23대, 스토리지 3대, 네트워크 장비 21대, 기타 9대 등 56종
- 상용 SW : DBMS, 개발도구, DB 암호화, WEB/WAS, 백업SW, 보안장비 등 43종

❑ 필요성

○ 국립종자원 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보급종 신청인, 품종보호 출원인 등 민원인 대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고객 대상 서비스 수준 향상

❑ 소요 예산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유지보수료	개발SW 유지보수(5인 상주)	371백만원	고급1, 중급2, 초급2
	HW 유지보수 (PC 유지보수 1인 상주)	65백만원	유지보수 요율 4.7%
	상용SW 유지보수	108백만원	유지보수 요율 10%
합 계		**544백만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435	450	450	-	-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500 - 6531
* 담 당 자 : 원장(서해동), 운영지원과장(안규정), 사무관(백승인,), 주무관(박용석, 061-338-102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협회 임직원 등에 대한 유료교육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산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유료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유료교육 : 농식품 정책 및 농정과제 추진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에 농식품산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여하면서 교육비를 납부하는 교육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직무전문교육 130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수입>

○ '19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상) : 500백만원

▪ 산출내역

- 유료교육비 : 유료교육생 연 인원 8,880명 × 43천원/1일 = 382백만원
- 합숙비 : 합숙생 10,000명 × 11천원 = 110백만원
- 시설대여료 : 30회 × 270천원 = 8백만원

<지출>

○ 직무전문교육 운영경비 : ('18) 385백만원 ⇒ ('19) 385(-)

▪ 일반수용비: ('18) 184백만원 ⇒ ('19) 184(-)

* (직무전문교육 130회 × 강사료·교재 제작 등 1,41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18) 100백만원 ⇒ ('19) 100(-)

▪ 기타 운영비(공공요금, 피복비, 특근매식비 등): ('18) 101백만원 ⇒ ('19) 101(-)

○ 여비: ('18) 20백만원 ⇒ ('19) 20(-)

▪ 현장학습 사전답사 및 인솔: ('18) 12백만원 ⇒ ('19) 12(-)

▪ 교육운영협의회 등 업무협의 참석: ('18) 8백만원 ⇒ ('19) 8(-)

○ 업무추진비: ('18) 5백만원 ⇒ ('19) 5(-)

▪ 교육발전협의회 등 직무전문교육 관련 회의 운영

○ 자산취득비: ('18) 40백만원 ⇒ ('19) 40(-)

▪ 직무전문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 (조리용기기 1식×30,000천원)+(강의실탁자40개×250천원)

구 분	'18예산	'19요구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450백만원	450백만원(-)
▪ 직무전문교육 운영	450백만원 - 130회×3.4백만원	450백만원(-) - 130회×3.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식품산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유료교육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435	450	450	-	-
▪ 직무전문교육 운영	435 (124회×3.5백만원)	450 (130회×3.5백만원)	450 (130회×3.5백만원)	-	-
□ 비목(합계)	435	450	450	-	-
○ 상용임금(110-03)	130	-	-	-	-
○ 일반수용비(210-01)	75	184	184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8	38	38	-	-
○ 피복비(210-03)	8	8	8	-	-
○ 특근매식비(210-05)	1	3	3	-	-
○ 임차료(210-07)	12	16	16	-	-
○ 유류비(210-08)	16	32	32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91	100	100	-	-
○ 재료비(210-11)	1	2	2	-	-
○ 기타운영비(210-16)	1	2	2	-	-
○ 국내여비(220-01)	18	20	20	-	-
○ 사업추진비(240-01)	6	5	5	-	-
○ 자산취득비(430-01)	38	40	4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국고금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 국가재정법 제53조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수입대체경비)
- 2017년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인사혁신처)
- 2019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장관방침, '18.12.21.)

○ 추진경위

- 1999년 : 수입대체경비 도입(계속)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4.5	3.5	3.5	3.5	4.5	4.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15~’17) : 구제역, AI, 메르스 등의 발생으로 현장업무 담당자의 교육 참여율 저하로 일부 교육과정의 폐강 등에 따라 미집행 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5 ( )	( )	1.2 ( )	4.7 ( )	4.6 ( )	( )	0.1 ( )
’16년	3.5 ( )	( )	1.8 ( )	5.2 ( )	5.0 ( )	( )	0.2 ( )
’17년	4.5 ( )	( )	( )	4.5 ( )	4.3 ( )	( )	0.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7년 감사원 지적 사항

- 교육훈련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수입대체경비 증가가 예상됨에도, ’15~’16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과소 계상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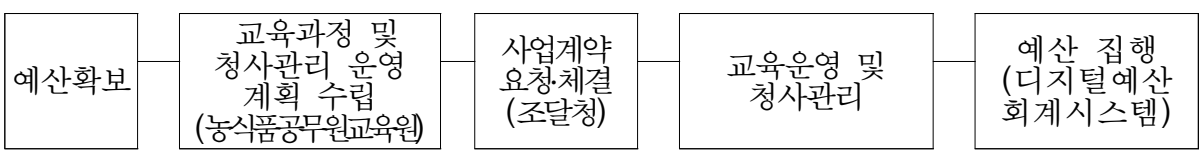

2.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2,318	2,435	2,465	30	1.2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500 - 6531
* 담 당 자 : 원장(서해동), 운영지원과장(안규정), 사무관(백승인,), 주무관(박용석, 061-338-102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하고 창의적인 공직자를 육성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과제인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축산·식품 산업과 농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하고 창의적인 공직자를 육성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35개 교육과정 30천명 교육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인적자원개발(HRD)교육** : 농·축산 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하고 창의적인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운영비 1,084백만원 요구

▪ 신임실무 등 기본교육 운영 : ('18) 191백만원 ⇒ ('19) 191 (-)

* (신임실무 3회 × 60백만원) + (농정교육 1회 × 12)

▪ 공직자 역량향상교육 운영 : ('18) 592백만원 ⇒ ('19) 744 (증 152)

- 직급별 공직역량 교육(필수) : 602백만원
- 공직자 리더십 및 직무역량강화 : 32백만원
-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향상교육 : 14백만원
- 문제해결 역량 교육 : 13백만원
- 기초 역량 교육 : 12백만원
- 인성개발 교육 : 38백만원
- 미디어홍보 역량강화 : 18백만원
- 공직가치확산 교육 : 15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비 고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직급별 공직역량 교육(필수)	16회×7,500천원	120,000	16회×30,125천원	482,000	4회 증
공직자 리더십 및 직무역량강화	4회×5,630천원	22,520	4회×2,250천원	9,000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향상교육	2회×7,000천원	14,000	-	-	
문제해결 역량 교육			1회×13,000천원	13,000	
기초 역량 교육	2회×1,000천원	2,000	2회×5,000천원	10,000	
인성개발 교육	6회×3,833천원	23,000	6회×2,500천원	15,001	
미디어홍보 역량강화			2회×9,000천원	18,000	
공직가치확산 교육	4회×750천원	3,000	4회×3,000천원	12,000	
계		184,520		559,000	

▪ 강사수당 현실화 유지 : ('18) 149백만원 ⇒ ('19) 149 (-)

- 수도권 등의 우수강사 유치를 위해 강사수당을 우리원과 여건이 비슷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 산출내역 : 연간 198회 과정 × (최근 3년간 평균) 과정당 강사수 9.1명 × 83천원

○ **교육발전 연구용역** : 중장기적 사이버 교육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스마트학습기법 및 모델개발 : ('18) 60백만원 ⇒ ('19) 60 (-)

○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 : 고품질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1,179백만원 요구

▪ 공무직 인건비 : ('18) 200백만원 ⇒ ('19) 884 (증 684)

- 공무직 30명(조리원 5, 운전 1, 사서 1, 청소 11, 시설 6, 경비 6) : 884백만원

* 공무직 30명 × 2,455천원(인건비 2,067, 복리후생 33, 고용부담 355) × 12월

▪ 시설 유지 및 관리 : ('18) 216백만원 ⇒ ('19) 216 (-)

- 본관 및 생활관 옥상 방수 공사비 : 93백만원

* 산출내역 : 3,200㎡ × 29천원 = 93,000천원

- 생활관 숙소 단열 및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창 공사비 : 90백만원

* 산출내역 : 150실 × 600천원 = 90,000천원

- 교육원 부지(71,000㎡) 내 산책로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공사비 : 33백만원

* 산출내역 : 배나무 등 90주 이식 × 366천원 = 33,000천원

▪ 청사관리 외주용역비 : ('18) 823백만원 ⇒ ('19) 21 (감 802)

-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 산출내역 :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12월 × 1,750천원 = 21,000

▪ 기타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비용 : ('18) 59백만원 ⇒ ('19) 58 (감 1)

- 전기, 디지털방송,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38
- 생활관 냉난방, 도시가스요금 등 유류비 20

○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생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 및 합숙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물품 구입

▪ 수도권 교육생 및 직원 수송 버스임차 : ('18) 72백만원 ⇒ ('19) 72 (-)

* 산출내역 : 교육생수송 120회 × 600천원 = 72,000천원

▪ 합숙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물품 구입 : ('18) 70백만원 ⇒ ('19) 70 (-)

* 산출내역 : 생활관 침대·매트리스 100개 × 700천원 = 70,000천원

구 분	'18예산	'19요구
□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2,435백만원	2,465백만원(증 30)
■ 인적자원개발(HRD) 교육	932백만원 - 역량강화 등 17과정 37회 1,655명	1,084백만원(증 152) - 역량강화 등 17과정 41회 1,727명
■ 교육발전 연구용역	60백만원 -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1회	60백만원(-) - 사이버교육 연구용역 1회
■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	1,301백만원 - 공무직 인건비 등 200 - 청사시설 개보수 220 - 청사관리 용역 823 - 공공요금 및 유류비 58	1,179백만원(감 122) - 공무직 인건비 등 884 - 청사시설 개보수 216 - 청사관리 용역 21 - 공공요금 및 유류비 58
■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	142백만원 - 교육생수송72, 물품70	142백만원(-) - 교육생수송72, 물품70

□ 지원 필요성

○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의 농식품부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할 공직자의 기본·전문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세계 제일의 농식품행정 실현을 뒷받침

- 기본·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 지속 개발
-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있는 우수 강사 확보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확대 및 평가체계 마련

○ 교육원 직접고용 공무직 등의 인건비 소요 반영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명품 교육기관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생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시설 보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2,318**	**2,435**	**2,465**	**30**	**1.2**
▪ 인적자원개발(HRD) 교육	771 (34회×22백만원)	932 (37회×25백만원)	1,084 (41회×26백만원)	**152**	**16.3**
▪ 교육발전 연구용역	-	60 (1회×60백만원)	60 (1회×60백만원)	-	-
▪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	1,311 (12월×109백만원)	1,301 (12월×108백만원)	1,179 (12월×98백만원)	△122	△9.4
▪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	236 (12월×20백만원)	142 (12월×12백만원)	142 (12월×12백만원)	-	-
□ **비목**(합계)	2,318	2,435	2,465	30	1.2
○ 상용임금(110-03)	338	166	741	575	346.4
○ 일용임금(110-04)	2	3	3	-	-
○ 일반수용비(210-01)	232	486	518	32	6.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7	38	38	-	-
○ 임차료(210-07)	62	72	72	-	-
○ 유류비(210-08)	23	20	20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8	216	216	-	-
○ 복리후생비(210-12)	1	3	12	9	300.0
○ 일반용역비(210-14)	340	439	559	120	27.3
○ 관리용역비(210-15)	796	823	21	△802	△97.4
○ 국내여비(220-01)	5	6	6	-	-
○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 일반연구비(260-01)	-	60	60	-	-
○ 고용부담금(320-09)	23	31	128	97	312.9
○ 공사비(420-03)	196	-	-	-	-
○ 자산취득비(430-01)	174	70	70	-	-
○ 무형자산(440-00)	-	1	-	△1	10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 2017년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인사혁신처)
- 2019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장관방침, ‘18.12.21.)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의 총괄과 관리), 제29조(관리위탁)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추진경위

- ‘97. 12 : 청사 신축 준공(연찬관은 ’84년 건축)
- ‘13. 3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으로 출범
- ‘13. 12 : 광주·전남 혁신도시인 나주로 청사 이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31.0	23.5	20.9	20.8	23.3	24.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15~’17) : 구제역, AI, 메르스 등의 발생으로 현장업무 담당자의 교육참여율 저하로 일부 교육과정의 폐강 등에 따라 미집행 잔액 발생

- (‘15년) 91백만원, (’16년) 32백만원, (‘17년) 15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0.9 ( )	( )	( )	20.9 ( )	20.0 ( )	( )	0.9 ( )
’16년	20.8 ( )	( )	( )	20.8 ( )	20.5 ( )	( )	0.3 ( )
’17년	23.3 ( )	( )	( )	23.3 ( )	23.1 ( )	( )	0.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18년) : 우수

○ 국회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감사원 지적사항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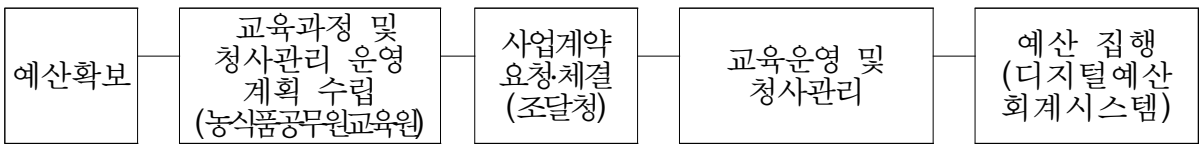

3.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화	457	457	477	20	4.4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6500 - 6532
* 담 당 자 : 원장(서해동), 운영지원과장(김춘기), 사무관(박노선,), 주무관(윤희정, 061-338-104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농식품인력의 역량강화 및 교육만족도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사행정업무의 정보화 및 사이버교육운영으로 교육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농축산식품산업분야 인력의 역량강화 및 교육만족도 제고
사업기간	'03~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477백만원**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1식×115백만원=115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1식×190백만원=190백만원
-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임차료 분납** : 1회×43백만원=43백만원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1식×121백만원=121백만원
- **바이러스 프로그램 갱신** : 1식×8백만원=8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요구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화	457백만원	477백만원(증 20)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95 (1식×95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190 (1식×190백만원) · 학사관리시스템고도화 리스료 :86 (2회×43백만원)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78 (1식×78백만원) · 바이러스 프로그램 갱신 : 8 (1식×8백만원)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115 (1식×115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190 (1식×190백만원) · 학사관리시스템고도화 리스료 : 43 (1회×43백만원)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121 (1식×121백만원) · 바이러스 프로그램 갱신 : 8 (1식×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 및 학사관리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이용 및 최적상태 보장을 위하여 H/W 및 S/W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지속 수행

○ 농식품분야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의 상시학습 지원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콘텐츠 지속 확충 필요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장비 교체로 안정적 정보화서비스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화	**457**	**457**	**477**	**20**	**4.4**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95 (1식×95백만원)	95 (1식×95만원)	115 (1식×115백만원)	20	21.0
▪ 학사관리시스템 리스료	86 (2회×43백만원)	86 (2회×43백만원)	43 (1회×43백만원)	△43	△50.0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65 (1식×165백만원)	190 (1식×190백만원)	190 (1식×190백만원)	-	-
▪ 노후 장비 교체	78 (1식×78백만원)	78 (1식×78백만원)	121 (1식×121백만원)	43	55.1
▪ 전산소모품 등 구입	33 (1식×33백만원)	8 (1식×8백만원)	8 (1식×8백만원)	-	-
□ 비목(합계)	**457**	**457**	**477**	**20**	**4.4**
○ 일반수용비(210-01)	33	8	8	-	-
○ 임차료(210-07)	86	86	43	△43	△50.0
○ 관리용역비(210-15)	165	190	190	-	-
○ 일반연구비(260-01)	95	95	115	20	21.0
○ 자산취득비(430-01)	78	78	121	43	55.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제1항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에 지원가능(강제규정)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20%)의 교육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에 지원가능(임의규정)

○ 추진경위

- ’03년 : 농업연수원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수립(’03)
- ’04년 : 농업연수원 사이버교육 실시(’04)
- ’06년 :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06)
- ’07년 :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07)
- ’10년 : 사이버 농정홍보 실시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10)
- ’11년 : 농업연수원, 수산인력개발원이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11)
- ’13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으로 직제 개정(’13)
- ’14년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13.12.23) 및 개청식(’14.3.26)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화	6.6	4.6	4.6	4.6	4.6	4.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15~’17) :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6 ( )	( )	( )	4.6 ( )	4.4 ( )	( )	0.1 ( )
’16년	4.6 ( )	( )	( )	4.6 ( )	4.6 ( )	( )	- ( )
’17년	4.6 ( )	( )	( )	4.6 ( )	4.6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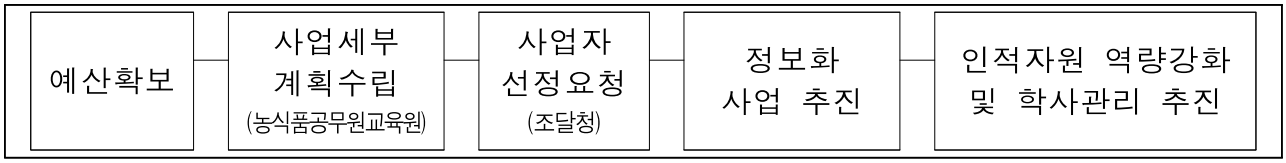

농 림 축 산 식 품 행 정 지 원

1. 행정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행정운영	128	217	217	-	-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7000 - 7033
* 담당자 : 운영지원과장(김정빈), 사무관(김광회), 주무관(권택만) ☏(044-201-128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통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정책환경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지원을 통한 행정 효율화 도모

- 각종 국가소송 및 분쟁의 적절한 대응 및 농어업발전에 기여하는 차세대 농어업경영인 등 포상을 통해 행정서비스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림축산식품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예산지원을 통한 행정 효율화 도모
사업기간	'08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국가소송 수행 경비, 차세대농어업경영인 포상금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국가소송 수행경비 지원 : 188백만원(전년동)

-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 수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평균 6.7백만원(착수금 및 성공보수) × 28건

○ 차세대농어업경영인 포상금 : 29백만원(전년동)

-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위한 젊고 우수한 농어업인 선발·시상
- 대통령 1점(6백만원), 국무총리 1점(3백만원), 장관 10점(20백만원)

＊ '81년에 제정되어 매년 시행

○ 국가소송 수행경비 지원 : 188백만원
  ▪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평균 6.7백만원(착수금 및 성공보수) × 28건
○ 차세대농어업경영인 포상금 : 29백만원
  ▪ 대통령 1점(6백만원), 국무총리 1점(3백만원), 장관 10점(2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행정운영	**217백만원**	**217백만원**
▪ 국가소송수행경비	국가소송 대리인 선임경비 지원 188백만원	국가소송 대리인 선임경비 지원 188백만원
▪ 차세대농어업 경영인포상금	차세대농어업경영인 포상금 29백만원	차세대농어업경영인 포상금 2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 대응 필요

-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법률자문 수행 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우리 부 정책에 대한 오해로 인한 소송 수행 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예산 유지 필요

* 미반영 시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소송수행 대처 미흡으로 패소사례 증가 우려

○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농어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여 농어업에 대한 사명감 및 자긍심 고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행정운영	128	217	217	-	-
▪ 국가소송수행경비 (소송대리인비용·소송수행旅비 등)	99	188 (6.7백만원 × 28회)	188 (6.7백만원 × 28회)	-	-
▪ 차세대농어업경영인 포상	29	29 ((대통령 1점(6백만) 국무총리 1점(3백만), 장관 10점(20백만))	29 (대통령 1점(6백만) 국무총리 1점(3백만), 장관 10점(20백만))	-	-
□ 비목(합계)	128	217	217	-	-
○ 일반수용비(210-01)	99	188	188	-	-
○ 포상금 등(310-03)	29	29	29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 대응 및 차세대농어업경영인에 농어업에 대한 사명감 및 자긍심 고취 필요

*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수행 시 변호사 선임경비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행정운영	9.0	7.97	7.79	3.1	2.28	2.1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2015년 홍보예산 부족분 전용(△80백만원)

○ (불용) 2015년~ ’17년 국가소송 미종결 등 집행잔액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94 (-)	0.72 (-)	△0.80 (-)	7.86 (-)	5.62 (-)	- (-)	2.24 (-)
’16년	3.1 (-)	- (-)	- (-)	3.1 (-)	0.98 (-)	- (-)	1.67 (-)
’17년	2.28 (-)	- (-)	- (-)	2.28 (-)	1.28 (-)	- (-)	1.00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계약체결요청 (소송수행부서)	연중	농식품부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부본을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접수
⇓			
내부 방침 결정 및 계약 요청	연중	농식품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법무법인과 소송 대리 계약 체결 관련 방침 결정 후 계약부서로 소송 대리 계약 체결 요청
⇓			
국가소송대리인 선임 계약 체결	연중	농식품부	계약요청 문서와 관련 규정 검토 후 법무법인과 소송 대리 계약 체결
⇓			
소송수행	연중	농식품부	소송 대리 수행을 위한 위임장을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에 송부하고, 이후 소관과와 법무법인은 답변서 작성·제출, 변론 등 소송 수행

2.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협업지원	1,155	1,169	1,155	14	△1.2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7000 - 7033

* 담당자 :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정책과장(김기훈), 사무관(김준현, ☏ 044-201-151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범정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정책 총괄·조정,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용, 삶의 질 향상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정책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범정부 삶의 질 위원회의 총괄, 기획기능 강화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 경비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지원조건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범정부 삶의 질 위원회의 총괄, 기획 기능 강화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 경비

- 분과위, 특별위 운영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경비 반영
  (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 등 : '18년 157백만원 → '19년 157백만원)
- 전문지원기관인 '삶의질 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하는 필요 경비 반영
  (일반용역비 : '18년 1,012백만원 → '19년 998백만원)

구 분	'18예산안	'19예산안
□농어업인삶의질 향상정책협업지원	**1,169백만원**	**1,155백만원**
▪ 운영비 (일반수용비)	129백만원	129백만원
▪ 운영비 (일반용역비)	1,012백만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운영)	998백만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운영)
▪ 여비	13백만원	13백만원
▪ 업무추진비	15백만원	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범정부 삶의 질 위원회의 총괄, 기획 기능 강화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필요

- 삶의 질 위원회는 농어촌의 주거·복지·의료여건 등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하는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로서 범부처 삶의 질 대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필요

○ 그 일환으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4.12월)' 수립 시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및 총괄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

- 분과위·특별위 설치 등 위원회 개편, 부처간 협업·조정 활성화, 기획·조정 기능 강화, 점검평가단 운영 등 평가·환류 기능강화, 정책홍보·소통 확대 등 국민소통 강화

○ 삶의 질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운영 필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품질 제고 추진
- 농식품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삶의 질 정책이슈 발굴·개선, 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한 정책연구 확대
- 또한,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 삶의 질 계획 심층연구,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19.12월) 등은 객관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정책 협업지원	**1,155**	**1,169**	**1,155**	**14**	**△1.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협업지원	1,155	1,169	1,155	14	△1.2
□ **비목**(합계)	**1,155**	**1,169**	**1,155**	**14**	**△1.2**
○ 일반수용비(210-01)	116	129	129		
○ 일반용역비(210-14)	1,010	1,012	998	14	△1.2
○ 국내여비(220-01)	7	7	7		
○ 국외여비(220-02)	6	6	6		
○ 사업추진비(240-01)	16	15	1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

○ 추진경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04.3.5 공포, '04.6.6 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04.6.6시행)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04.12.8)
  · 위원회에는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농어업인 대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는 농식품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농어업인 대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05.4.16)를 거쳐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연도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추진('05~)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의 신뢰제고 및 투융자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점검·평가체계 구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09.12.17)를 거쳐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0~'14) 기본계획 수립·시행(34.5조원 투융자 계획)
  ·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영향평가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 결정
- 법명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10.7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용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 지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10.7.23개정), 농어촌영향평가제도('11.7.25개정), 전문지원기관 지정·지원('11.7.25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12.5월~)

-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 개최('14.11.13)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 국가관리 핵심항목(7개 부문, 17개 항목)과 지자체 자율관리 선택항목으로 이원화
- '1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14.12.19)' 심의를 거쳐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 수립('14.12.29.)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	7	7	12	12	12	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 불용 28백만원
- 사유 : 전문지원기관 위탁사업비 낙찰차액(23백만원), 집행잔액(5백만원)

○ '16년 : 불용 107백만원
- 사유 : 전문지원기관 위탁사업비 낙찰차액(22백만원), 집행잔액(85백만원)

○ '17년 : 불용 14백만원
- 사유 : 전문지원기관 위탁사업비 낙찰차액(2백만원) 등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3** ( )	( )	( )	12.3 ( )	**12.0** ( )	( )	0.3 ( )
'16년	**12.3** ( )	( )	( )	12.3 ( )	**11.2** ( )	( )	1.1 ( )
'17년	**11.7** ( )	( )	( )	11.7 ( )	**11.6** ( )	( )	0.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국회, 국무총리 등)
- 농어촌 서비스기준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16년 국회 예결위)
-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주요 시행계획(정책)을 추진하여한다'며, 당해년('19년) 시행계획은 전년도 말('18.12)까지 수립을 완료할 것을 지시('18년 12월, 국무총리 지시사항)

○ 조치사항

-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을 통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19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 시달 완료('18.12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7대 분야 17개 항목별 국가 최소기준을 선정하여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 측정 및 정책 준거로 활용
- (활용) 매년 138개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원배분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 (법적근거)「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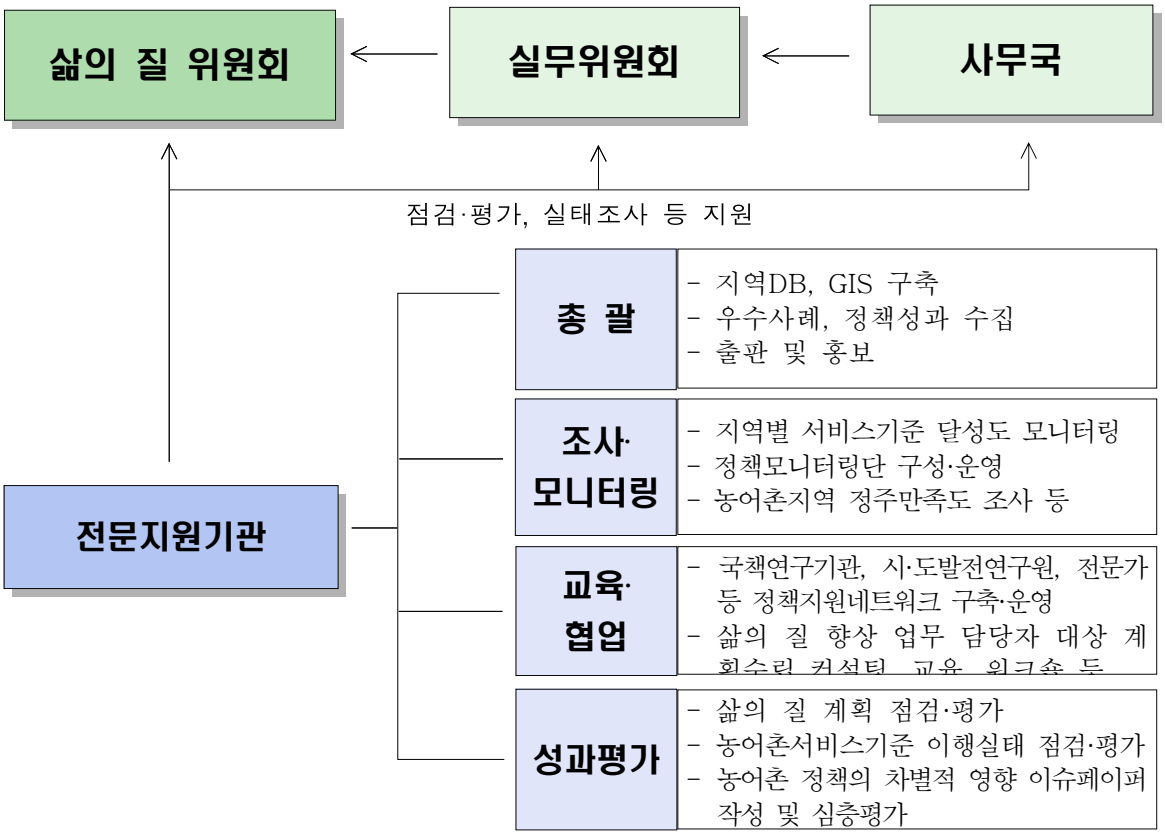

참고 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지정 운영

□ **(법적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전문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제46조) 마련('11.7.25 공포, '12.1.26 시행)

□ **전문지원기관 개요**

○ **개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 **역 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의 점검·분석
- 농어촌영향평가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연구 지원 수행

○ **지정 요건**(삶의질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 조직 : 국립·공립연구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출연·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 중에서 삶의 질 향상 계획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인력 :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원이 3명 이상으로,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 업무에 전담
- 시설 :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 확보

□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

○ 제1차 전문지원기관 지정 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운영('12.4.19~'14.12.31)

○ 제1차 운영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공고 및 심의를 거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副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제2차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15.3.17~'19.12.31) 중

참고 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1. 추진 경과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04.3),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1차)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교육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중점 추진

*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22.8조원 투융자(계획 20.3조원 대비 112%)

○ (제2차)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마련, 자원발굴 및 가치창출 중점 추진

*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2. 제3차 기본계획('15~'19) 주요내용

□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의 도농간 격차 완화 중점 추진

○ 특히, 일자리분야·안전분야 신설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 대폭 강화

○ 보건복지·교육·정주기반등 7대 분야, 46조 5천억원 투융자(18개 부처·청 협력)

□ 분야별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한 분과위·특별분과위 설치방안 포함

【 제3차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 (보건복지) 국민연금 지원 등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응급·분만 등 거점의료기관 지원, 농협의 찾아가는 행복버스 등 확대

◇ (교육·문화) 스마트러닝 ICT 기반을 확충하고 시군별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농어촌 진로교육 강화, 작은 영화관 등 생활문화공간 확대

◇ (정주여건·환경) 읍·면 중심지 개선, 고령자 공동홈, 소형 LPG 저장 시설, 영농폐기물·축산분뇨처리시설, 농촌형 교통 등 체감형 인프라 확충

◇ (일자리) 농어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농수산물 가공, 체험관광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 도농연계 일자리중개센터 활성화

◇ (안전) 자연재해 취약시설 개선, 마을 CCTV확충, 농기계 등 생활안전 강화

3.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재량, 계속)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413	1,563	1,563	-	-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7000 - 7033
* 담당자 : 정책기획관(김정희), 혁신행정담당관(김상진), 서기관(남현수, ☏ 044-201-134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직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업무추진

○ 농식품 정책의 품질 제고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환류 체계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공직자의 창의역량 강화 및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업무 추진, 농림사업 상시 모니터링·성과평가 및 결과 환류를 통한 농식품 정책 품질 제고
사업기간	'05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 농림사업정책평가지원 및 농업보조금 관리 관련 설명회(워크숍)는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행정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18) 675백만원 → **('19) 675**

- **(운영비 등)** 행정효율화, 정부혁신 추진, 대외평가(정부혁신,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등) 대응 운영비 및 일반 용역비
  : ('18년) 335백만원 → ('19) 413(증 78)

※ 산출근거
· 정부혁신 추진, 역량강화 학습포럼(도시락포럼 등) 운영, 각종 평가위원회 운영 경비 : ('18년) 128백만원 → ('19년) 206(증 78)
* 역량강화학습포럼 확대(25회→46회), 국민디자인단 운영 내실화 : ('18년) 15백만원 → ('19년) 41(증26)
- 역량강화학습포럼: 2,760만원(60만원X 46회), 국민디자인단: 1,400만원(50만원X4과제X7회)
* 정부혁신, 보조금관리, 대외심사·평가 대응강화 : ('18년) 48백만원 → ('19년) 100(증52)
· 기타 워크숍 장소 및 차량 임차료 : ('18년) 7백만원 → ('19년) 7
· 정부혁신 우수사례 확산(성과확산 경진대회 등) : ('18년) 150백만원 → ('19년) 150
·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18년) 50백만원 → ('19년) 50

- **(여비)** 농식품분야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 ('18년) 37백만원 → ('19) 37
- **(업무추진비)** 행정효율화, 정부혁신 관련 간담회·업무협의 등
  : ('18년) 2백만원 → ('19) 2
- **(연구용역비)** 정책만족도평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비용 : ('18년) 251백만원 → ('19) 173(△78)

※ 산출근거
· 공공기관 경영평가 : ('18년) 30백만원 → ('19년) 30
· 주요 정책고객 만족도조사 : ('18년) 21백만원 → ('19년) 30(증 9)
· 정부혁신 과제 추진 : ('18년) 130백만원 → ('19년) 52(△78)
* ('18) 8개 과제 (100백만원) → ('19) 4개 과제(52백만원)
·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연구 : ('18년) 50백만원 → ('19년) 40(△10)
· 조직, 인사혁신 용역 : ('18년) 20백만원 → ('19년) 21(증 1)

- **(보전금)** 행정제도 개선, 공무원제안 정부혁신 업무유공 등 포상 : ('18년) 50백만원 → ('19) 50

※ 산출근거

·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포상 : ('18년) 18백만원 → ('19년) 18

· 공무원제안 포상 : ('18년) 2백만원 → ('19년) 2

· 정부혁신 우수사례 포상 : ('18년) 20백만원 → ('19년) 20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 ('18년) 2백만원 → ('19년) 2

· 기타 행정혁신 우수성과 포상 : ('18년) 8백만원 → ('19년) 8

○ **농식품사업 정책평가 지원 :** ('18년) 826백만원 → **('19) 826**

- 농식품 분야 정책 및 재정사업의 효율성 증진·성과 제고를 위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 운영비용

※ 산출근거

·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운영 소요비용 지원 : ('18년) 826백만원 → ('19년) 826

○ **농업보조금 관리 관련 업무 :** ('18) 62백만원 → **('19) 62**

- 농업보조금 관리 업무를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등 소요비용

※ 산출근거

· 설명회(26백만원) : 지자체,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등 설명회 개최(6회, 2,000여명)

· 워크숍(16백만원) : 지자체 주요 보조사업 담당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등 대상 보조금 집행방안 개선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2회, 200여명)

· 부대경비(20백만원) : 설명회 교재 제작 등 제경비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563	1,563
▪ 행정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675 (운영비 335, 여비37, 업무추진비2, 연구용역비251, 포상금50)	675 (운영비 413, 여비37, 업무추진비2, 연구용역비173, 포상금50)
▪ 농림사업 정책평가 지원	826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 기관 운영비 826)	826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 기관 운영비 826)
▪ 농업보조금 관리 관련 업무	62 (운영비 62)	62 (운영비 62)

□ 지원 필요성

○ 행정혁신,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자의 창의역량 강화 및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동 예산 지속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393	1,563	1,563	-	-
▪ 변화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513	675	675	-	-
▪ 농림사업 정책 평가 지원	818	826	826	-	-
▪ 농업보조금 관리 관련 업무	62	62	62	-	-
□ 비목(합계)	1,393	1,563	1,563	-	-
○ 일반수용비(210-01)	206	128	206	78	60.9
○ 임차료(210-07)	5	7	7	-	-
○ 일반용역비(210-14)	880	1,038	1,038	-	-
○ 관리용역비(210-15)	48	50	50	-	-
○ 국외업무여비(220-02)	30	37	37	-	-
○ 사업추진비(240-01)	1	2	2	-	-
○ 일반연구비(260-01)	136	251	173	△78	△31.1
○ 정책연구비(260-02)	37	-	-	-	-
○ 포상금(310-03)	50	50	5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국무총리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15.7.7일 시행)

○ 추진경위

- 정부혁신 추진 및 평가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각 부처 실정에 맞는 혁신 추진을 위해 '05년부터 예산 편성·지원
- '08년부터 업무효율화 추진 등 실질적 변화와 구체적 성과 향상 추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부문의 세부이행과제로 보조금 개혁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포함('14.3.)
-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및 경제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강조('14.3., 규제개혁장관회의시 VIP 말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5.7.7시행)에 따라 농식품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0.5	8.8	14.3	16.1	14.1	15.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이월) 연구개발비(1개 과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지출잔액 22백만원
(불용) 시설장비유지비·위탁사업비·연구개발비 낙찰 차액 등 62백만원

○ '16년: (이월) 연구개발비(2개 과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지출잔액 37백만원
(불용) 시설장비유지비·위탁사업비·연구개발비 낙찰 차액 등 54백만원

○ '17년: (불용)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등 57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3 ( )	0.4 ( )	- ( )	14.7 ( )	13.9 ( )	0.2 ( )	0.6 ( )
'16년	16.1 ( )	0.2 ( )	0.4 ( )	16.7 ( )	15.8 ( )	0.4 ( )	0.5 ( )
'17년	14.1 ( )	0.4 ( )	- ( )	14.5 ( )	13.9 ( )	0 ( )	0.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16년 결산 상임위)

- 연도말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 연구과제 추진 부적정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과제와 '정책연구개발 사업(R&D)'으로 추진되는 연구과제의 차별성 부족

○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 이월·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철저
-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과제 선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직접수행

* 농림사업정책평가지원 및 농업보조금 관리 관련 설명회(워크숍)는 용역 계약을 통해 추진

4. 행정정보화(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행정정보화(정보화)	4,403	5,248	5,200	△48	△0.9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32
* 담당자 : 정책기획관(김정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원석), 사무관(서윤아, ☏ 044-201-14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온-나라, 포털운영, PC 및 행정SW 구입 등 부내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행정능률 제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상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24시간 보안관제 및 취약점 점검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농림사업의 신청·선정·집행·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전산처리하여 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내부 행정정보화, 사이버안전센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기간	'98~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내부행정정보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행정정보화
지원조건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내부행정정보화 및 사이버안전센터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 ('18) 1,656 → ('19요구) 1,609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 ('18)382 → ('19)100백만원 (구축비(추가), 연구개발비)

- e-현장농정 현황판시스템 개선, 법령안 관리 개발 등 부내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업무통합시스템 개선 : 100백만원

  * (산출근거) 기능점수 236FP × 0.425백만원

▪ 보안장비 및 노후장비교체 : ('18)300 → ('19)300백만원 (구축비(추가), 임차료)

- ('14년도)보안관제확대사업 : 51백만원×1회
- ('18년도)정보보안 강화 사업 : 104.5백만원×2회
- ('19년도 신규)노후 보안관제장비 교체 : 40백만원×1회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시 도입된('11) 관제장비(IMS) 노후화 및 신규 탐지기능 부재 등 교체 필요

▪ 행정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 ('18)692 → ('19)709백만원 (위탁운영, 관리용역비)

- H/W 3,414백만원×3.23%=110백만원
- 기존S/W 445백만원×10%=45백만원, '18추가S/W 227백만원×10%×8개월=15백만원
- 행정지원시스템 위탁 : 421백만원(총 8명 12개월 운영)
- 홈페이지 위탁 : 118백만원

  * 위탁운영 103백만원 = 중급 웹개발 1명, 디자인 및 퍼블리싱 1명 2.5개월

  * 직접경비 15백만원 = 개인정보노출점검, 웹접근성 평가 2회, 보안인증서 갱신

▪ 업무용 PC 임차 : ('18)140 → ('19)134백만원 (PC도입, 임차료)

- 망분리PC 및 모니터(340대) : 67백만원×2회

▪ 전자문서 FAX 및 태블릿PC 통신료 : ('18)20 → ('19)20백만원 (회선사용료, 공공요금및제세)

- 온-나라 FAX 회선 통신료 : 17백만원
- 태블릿 PC 통신료 : 3백만원

▪ 전산장비 구입 : ('18)0 → ('19)224백만원 (PC도입, 자산취득비)

-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윈도우7→10) : 852대×22만원 = 183백만원
- 노후PC 교체 : 18대 × 227만원 = 41백만원

▪ 단순전산장비구입 : ('18)30 → ('19)30백만원 (단순 전산장비, 자산취득비)

- 노후 프린터 교체 : 67대×45만원=30백만원

▪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 : ('18)76 → ('19)76백만원 (기타 운영지원, 일반수용비)

-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글 NEO ILA : 300대×82,500원=25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 35백만원
- 통계프로그램 SAS 갱신 : 6백만원
-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 2백만원, - 조달수수료 등 : 8백만원

▪ 농업농촌 정보화현장 실태조사 : ('18)3 → ('19)3백만원 (기타 운영지원, 국내여비)

- 1년 10명×3회×0.1백만

▪ 해외 정보화 기술개발 관련 회의참석 및 조사 : ('18)5 → ('19)5백만원 (기타 운영지원, 국외여비)

- 일 비 : $35×11.5/12.3×2명×2회×6일×11/13=
- 숙박비 : $92×11.5/12.3×2명×2회×5일×11/13=
- 식 비 : $58×11.5/12.3×2명×2회×6일×11/13=
- 항공료 : 600,000원×2명×4회+753,000원=

▪ CIO 협의회 운영수당 : ('18)4→ ('19)4백만원(기타 운영지원, 기타운영비)

- 1년 4회 × 1백만원

▪ 정보화역량평가 시상금 : ('18)4→ ('19)4백만원(기타 운영지원, 포상금)

- 포상금 : 정보화대회 및 정보화활용평가 시상금 4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운영 : ('18) 1,648 → ('19요구) 1,647백만원**

▪ 정보보안인프라 강화 : ('18)348 → ('19)300백만원(구축비(초기), 임차료)

- 보안솔루션도입 및 망 이중화 구성 등 : 150백만원×2회

▪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및 관제장비 유지보수 : ('18)1,300→ ('19)1,347백만원 (위탁운영, 관리용역비)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 938백만원

· (산출근거)보안관제 위탁운영 : 전문인력 13명(고급3, 중급5, 초급5)×12개월

- 보안관제장비 유지보수비 : 326백만원

· (산출근거) HW 2,049백만원×7%, SW 1,770백만원×10%, 기타장비 187백만원×5%

* 보안관제장비 추가 도입('18)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27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 59백만원

· (산출근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 전문인력 3명(고급1, 중급1, 초급1)×3개월

* 대상기관 :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15개 기관)

- '보안적합성 검증*' 전문기관 위탁 : 24백만원

· (산출근거) 보안적합성 검증 위탁 : 보안장비 2종×12백만원

* 보안적합성 검증 : 정보보안장비 도입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의무사항으로 (기존) 국정원→(변경)부처 위임)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운영 : ('18) 1,944 → ('19요구) 1,944백만원

▪ 기존 노후장비 교체 또는 증설 : ('18)520 → ('19)520백만원 (구축비(추가), 임차료)

- DB 장비 CPU 및 RAM 증설, 상용S/W(암호화)구입 : 260백만원×2회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8)1,364 → ('19)1,364백만원 (위탁운영, 민간경상보조금)

- 응용시스템 위탁운영(특급1, 고급2, 중급2, 초급3, 총8명) = 1,235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 도입비 996백만원×13% = 129백만원

▪ 직불제 등 사업관리 진행 SMS 사용료 : ('18)60 → ('19)60백만원 (회선사용료, 공공요금및제세)

- 20원×150만명×2회 = 60백만원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예산 내용 >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사업명	**5,248 백만원**	**5,200 백만원**
▪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1,656백만원** - 클라우드 전환 : 382 - 보안 및 노후장비 교체 임차 : 300 - 행정시스템 유지운영 : 692 - 업무용PC 임차 : 140 - 기타 : 142	**1,609백만원** - 부내행정정보시스템개발 : 100 - 보안 및 노후장비 교체 임차 : 300 - 행정시스템 유지운영 : 709 - OS업그레이드 및 PC도입 : 224 - 업무용PC 임차 : 134 - 기타 : 142
▪ 사이버안전센터운영	**1,648백만원** - 위탁운영비 : 1,300 - 정보보안인프라 강화 임차 : 348	**1,647백만원** - 위탁운영비 : 1,347 - 정보보안인프라 강화 임차 : 300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운영	**1,944백만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1,364 - 장비도입 임차료 : 520 - SMS 이용료 : 60	**1,944백만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1,364 - 장비도입 임차료 : 520 - SMS 이용료 : 60

□ 지원 필요성

○ 부내 행정업무 지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종합설계도 구축·운영, 정보보안관제 등을 위한 내부 행정정보화 사업임

- 업무에 활용할 온라인 소통 콘텐츠 강화 및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 확대, 정책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지속적 지원 필요
- 본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기대응,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모의해킹 훈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관제 총괄 기능 수행

○ 수작업에 의존하던 농림사업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 중복 신청 방지 및 보조·융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행정정보화(정보화)	4,403	5,248	5,200	△48	△0.9
▪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1,503	1,656 ○ 클라우드 전환 : 382 ○ 노후장비 교체 : 300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692 ○ 업무용PC임차 : 140 ○ 기타 운영 : 142	1,609 ○ 부내행정시스템 개발 : 100 ○ 노후장비 교체 : 300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709 ○ OS업그레이드 및 PC도입 : 224 ○ 업무용PC임차 : 134 ○ 기타 운영 : 142	△47	△2.8
▪ 사이버안전센터운영	1,517	1,648 ○ 유지보수비 : 1,300 ○ 보안장비임차: 348	1,647 ○ 유지보수비 : 1,347 ○ 보안장비임차료 : 300	△ 1	△0.0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운영	1,383	1,944 ○ 위탁운영비 : 1,364 ○ 장비고도화 : 520 ○ 회선사용료 : 60	1,944 ○ 위탁운영비 : 1,364 ○ 장비고도화 : 520 ○ 회선사용료 : 60	-	-
□ 비목(합계)	4,403	5,248	5,200	△48	△0.9
○ 일반수용비(210-01)	79	76	76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80	80	-	-
○ 임차료(210-07)	638	1,308	1,254	△54	△4.1
○ 관리용역비(210-15)	1,896	1,992	2,056	64	3.2
○ 기타운영비(210-16)	-	4	4	-	-
○ 국내여비(220-01)	3	3	3	-	-
○ 국외여비(220-02)	-	5	5	-	-
○ 일반연구비(260-01)	284	382	100	△282	△73.8
○ 포상금(310-03)	2	4	4	-	-
○ 민간경상보조(320-01)	1,364	1,364	1,364	-	-
○ 자산취득비(430-01)	106	30	254	224	746.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및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추진경위

- 농림부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운영('98)
- 소속기관 및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01~'03)
-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필요성 대두, 농림사업통합 정보시스템 로드맵 보고('04.4)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04.11～'05.5)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1차~9차 사업추진('05.9～'13.11)
- 업무관리시스템, 농림지식포털시스템 구축('06.3)
- 농림수산식품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및 운영('11.6)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사업관리 EA개선('14.10)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42개 지원사업 운영('14.12)
- 본부 및 소속기관 전자결재시스템 통합('15.12)
-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계획 수립('15.09~12)
- 농식품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추진('16.5~11)
- 농식품 행정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16.11~12)
- 내부메일, 업무포털, 문서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의 범정부 공통행정시스템으로 전환 ('17.1~12)
- 농림축산식품 홈페이지의 G-클라우드 전환 및 개선('17.11~'18.2)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행정정보화(정보화)	66	51	48	49	49	5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7년 사업내용 변경과 조달계약 지연 등에 따른 사업추진 차년도 연기로 임차료 불용

○ 이월사유 : 계약완료시기 미도래('17.11~'18.2)로 인한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8 **(48)**	( )	( )	48 (48)	46 **(46)**	( )	2 (2)
'16년	49 **(49)**	( )	( )	49 (49)	47 **(46)**	( )	2 (2)
'17년	49 **(49)**	( )	( )	49 (49)	44 **(44)**	1 (1)	4 (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부내 행정정보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① 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② 제안요청서(RFP) 작성(농림축산식품부) → ③ 사업자공고(조달청) → ④ 사업자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 ⑤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조달청) → ⑥시스템 개발 및 구축 → ⑦ 사업평가 및 검수(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운영(민간보조)

①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② 시행계획 수립(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 ③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공고(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 ④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⑤ 사업평가 및 결산(농식품부)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	12,782	13,858	17,341	3,483	25.1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19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경영인력과장(강동윤), 서기관(김호균, ☏ 044-201-15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12년 5월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인건비, 경상운영비, 고유목적사업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13~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정부출연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8) 13,858백만원 → ('19) 17,341(증 3,483, 25.1%)

○ 인건비 : 임직원 연봉, 제수당(가족수당 등),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인건비 8,687백만원(('18) 7,840백만원 → ('18) 8,687)

○ 경상운영비 : 기관운영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2,120백만원(('18) 1,900백만원 → ('19) 2,120)

○ 고유목적사업비 : 기관 설립의 고유 기능 사업비 3,534백만원(('18) 3,618백만원 → ('19) 3,534)

○ 신청사건립비 : 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3,000백만원(('18) 500백만원 → ('19) 3,000, 연차별 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요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	13,858	17,341
▪ 인건비	7,840 (임직원인건비 7,552, '18년 인상분 196, '18년 증원 5명 인력 인건비 92)	8,687 (임직원인건비 7840, '18년 증원 5명 인력 인건비 92, '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력 14명 인건비 525, '19년 인상분 152, '19년 증원 5명 인력 인건비 78)
▪ 경상운영비	1,900 (기관 경상운영비 1,900)	2,120 (기관 경상운영비 1,900, '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력, 14명 경상비 60, e-나라도움 연계 160)
▪ 고유목적사업비	3,618 (농업인력양성기반 1,700, 대국민소통강화 610, 농업법인조사및분석 858, 농식품해외정보수집및분석 450)	3,534 (농업인력양성기반 1,700 대국민소통강화 610 농업법인조사및분석 858, 농식품해외정보수집및분석 366)
▪ 신청사건립비	500 (신청사건립 설계비 500)	3,000 (신청사건립 공사비 3,000)

□ 지원 필요성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인건비, 경상운영비, 청사건립비, 고유목적사업비 등 기관운영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	**12,782**	**13,858**	**17,341**	**3,483**	**25.1**
▪ 인건비	7,733 (임직원 인건비 7,514, 증원인력 19, 이주수당 200)	7,840 (임직원 인건비 7,552, '18년 인상분 196, '18년 증원인력 92)	8,687 (임직원인건비 7840, '18년 증원 5명 인력 인건비 92, '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력 14명 인건비 525, '19년 인상분 152, '19년 증원 5명 인력 인건비 78)	847	10.8
▪ 경상운영비	2,181 (기관경상운영비 1,781, 기관ERP시스템구축 400)	1,900 (기관경상운영비 1,900)	2,120 (기관 경상운영비 1,900, '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력 14명 경상비 60, e-나라도움 연계 160)	220	11.6
▪ 고유목적사업비	2,868 (농업인력양성기반 1,400, 대국민소통강화 610,농업법인조사및분석 858)	3,618 (농업인력양성기반 1,700, 대국민소통강화 610, 농업법인조사및분석 858, 농식품해외정보수집및 분석 450)	3,534 (농업인력양성기반 1,700, 대국민소통강화 610 농업법인조사및분석 858, 농식품해외정보수집및분석 366)	△84	△2.3
▪ 신청사 건립비	-	500 (신청사건립 설계비 500)	3,000 (신청사건립 공사비 3,000)	2,500	500
□ **비목**(합계)	12,782	13,858	17,341	3,483	25.1
○ 일반출연금(350-01)	9,914	10,240	13,807	3,567	34.8
○ 사업출연금(350-02)	2,868	3,618	3,534	△84	△2.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추진경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12.5.23.)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 운영비 지원	78	95	85	101	129	13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515 (8,515)	- (-)	- (-)	8,515 (8,515)	8,515 (8,515)	- (-)	- (-)
'16년	10,106 (10,106)	- (-)	- (-)	10,106 (10,106)	10,106 (9,859)	- (247)	- (-)
'17년	12,782 (12,782)	- (-)	- (-)	12,782 (12,782)	12,782 (11,996)	- (78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농정원의 보조사업 중 설립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출연금 형태의 고유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14년 국정감사 유성엽의원)

○ 농정원의 고유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 1%도 미치지 못하므로 고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15년 국정감사 황주홍의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기본방향 설정	1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운영 기본방향 설정
⇓			
계획수립 및 예산신청	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기본방향에 따라 기관 운영 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분기별 예산 교부 신청
⇓			
예산교부	매분기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집행계획에 맞추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분기별 예산 교부
⇓			
예산집행	수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기관이 운영되도록 예산 집행
⇓			
중간점검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차질없이 기관이 운영되고 예산이 집행되는지 수시 확인
⇓			
완료보고	연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예산 집행결과 및 완료보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비 정산	연말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집행결과 및 완료보고를 확인하고 사업비 정산

6.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3,955	5,826	5,883	57	1.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30
* 담당자 : 정책기획관(김정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원석), 서기관(손경자, ☏ 044-201-141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제공 및 ICT융합모델 확산으로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및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수요자 중심의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농식품 데이터지도 구축 및 빅데이터 융복합 활용서비스 제공 ○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기반 조성 및 사후관리 등
사업기간	'98~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국고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식품 지식정보 제공 및 확산 : ('18) 1,249 → ('19) 1,249백만원 (0)**

- 농식품 분야 데이터(통계, 행정데이터, 민간 빅데이터 등)를 활용한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지원 및 정책지원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생산·유통·소비 통합 정보 DB 구축 및 제공
  - 294백만원 = 420FP*0.7백만원
- 농식품 이슈정보 수집·분석·제공
  - 185백만원 = 10개월*18.5백만원
- 현장 중심 농식품 지식미디어 서비스
  - 410백만원 = 140편*2.5백만원 + 스마트 TV운영 12월*5백만원
-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운영 및 이용활성화
  - 360백만원 = 10개월*36백만원

○ **농식품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정보서비스 : ('18)622 → ('19) 622백만원 (0)**

- 농식품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비용절감, 정보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기반 농식품 정보컨텐츠 관리
  - 504백만원 = 웹서비스21개*24백만원
- EA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 관리
  - 118백만원 = 특급1・중급1 * 12M/M

○ **데이터기반 맞춤서비스 제공 : ('18)2,105 → ('18)2,162백만원 (57)**

- 지속적인 농식품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발굴·개방 확대로 민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전문, 청년창업농)에 필요한 빅데이터 기반 영농의사결정지원 및 정책서비스 모델 개발
-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 체계 강화
  - 512백만원 = 공공데이터 수집・개방(350백만원, 500FP×0.7백만원) + 공공데이터 시각화서비스(162백만원, 231FP×0.7백만원)

- 농식품 빅데이터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 ▪ (활용기반) 중점활용DB 및 빅데이터 분석활용 포털 구축(600백만원)
    - ▷ 농식품 분야 중점활용 DB구축 : 100백만원(4종 × 25백만원)
    - ▷ 내・외부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활용 포털 구축 : 500백만원
  - ▪ (분석모델)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 의사결정지원 분석 모델 3종 개발(1,050백만원)
    - ▷ 빅데이터 기반 귀농귀촌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구축 : 350백만원
    - ▷ 농림사업 빅데이터 기반 지원정책 안내서비스 구축 : 420백만원
    - ▷ 스마트팜 병해관리서비스 : 280백만원

○ **농업경영체정보화지원 : ('18)1,850 → ('19)1,850백만원 (0)**

-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영농관리 S/W 보급 확산 및 현장 중심 스마트 팜 확산 지원
- 농업경영장부 기능 고도화
  - ▪ 19백만원 = 48FP*0.4백만원
- 시스템(H/W, S/W 등) 관리
  - ▪ 290백만원 = S/W 132(1,100백만원*12%) + H/W 158(1,970백만원*8%)
- 농업경영장부 교육 및 보급확산
  - ▪ 66백만원 = 12개월*5.5백만원
- 고객지원 및 대표번호 운영
  - ▪ 34백만원 = 12개월*2.8백만원
- 기타(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 ▪ 31백만원 = 여비 29백만원(시내출장 9, 시외 20) + 업무추진비 2백만원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기반조성
  - ▪ 775백만원 = 현장설명회(75) + 스마트팜 교육과정운영(296) + 박람회 참여(354) + 콜센터 운영(50)
- 모델 발굴·운영 및 성과분석
  - ▪ 215백만원 = 협의회운영(30) + 스마트팜 성과분석(70) + 학습조직 운영(115)
- ICT 융복합 요소기술 DB 구축
  - ▪ 200백만원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00)
- ICT 융복합 표준관리
  - ▪ 220백만원 = 협의회・포럼운영(100) + 워킹그룹 운영(120)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요구 내용 >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업정보이용활성화	**5,826백만원**	**5,883백만원**
▪ 농식품 지식정보 제공 및 확산	1,249 - 농식품 지식정보 수집·분석·제공 및 통합정보서비스(옥답4.0) 운영	1,249 - 농식품 지식정보 수집·분석·제공 및 통합정보서비스(옥답4.0) 운영
▪ 농식품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정보서비스	622 -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전환 - EA운영 및 정보자원 관리	622 - 클라우드 기반 정보콘텐츠 관리 - EA운영 및 정보자원 관리
▪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 제공	2,105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 농식품 데이터지도 구축 - 빅데이터 공동활용기반 구축	2,162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 (완료) - 빅데이터 공동활용기반 구축 - 빅데이터 융복합활용모델(3종) 개발
▪ 농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1,850 - ICT융복합 확산지원(스마트팜 교육·홍보 등) - 농업경영장부 운영 등	1,850 - ICT융복합 확산지원(스마트팜 교육·홍보 등) - 농업경영장부 운영 등

□ 지원 필요성

○ 사업의 공공성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정보화수준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타 소외계층과 비교하여 여전히 정보화수준이 낮음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17호) 제22조(정보제공 촉진)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유통·제공 촉진 등 시행

- 동 사업은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해결을 위해 지속 장려해야 할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의 목적과 부합하고, 사업 시행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므로 국고에서 분담하는 것이 적절함

○ 타사업과의 차별성

- 농업정보이용활성화는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대한 농업·농식품 통합 정보 제공 및 공공데이터(19개 기관, 374종)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유 사업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정보이용활성화**	**3,955**	**5,826**	**5,883**	**57**	**1.0**
▪ 농식품 지식정보 제공 및 확산	1,249 (통합DB 구축 294, 농식품 이슈정보 제공 185, 지식미디어 서비스 : 410, 지식정보서비스 운영 360)	1,249 (통합DB 구축 294, 농식품 이슈정보 제공 185, 지식미디어 서비스 : 410, 지식정보서비스 운영 360)	1,249 (통합DB 구축 294, 농식품 이슈정보 제공 185, 지식미디어 서비스 : 410, 지식정보서비스 운영 360)	-	-
▪ 농식품 클라우드전환 및 통합정보서비스	314 (클라우드전환 314)	622 (클라우드전환 504, EA시스템 운영 118)	622 (클라우드전환 504, EA시스템 운영 118)	-	-
▪ 데이터기반 맞춤서비스 제공	512 (공공데이터 개방 512)	2,105 (공공데이터개방 512, 빅데이터 기반구축 1,593)	2,162 (공공데이터개방 512, 빅데이터 기반구축 600, 빅데이터활용모델개발 1,050)	57	1.0
▪ 농업경영체 정보화지원	1,880 (농업경영장부 개발 149, 시스템 관리 290, 기타운영비 31, ICT융복확지원 1,410)	1,850 (농업경영장부 개발 119, 시스템 관리 290, 기타운영비 31, ICT융복확지원 1,410)	1,850 (농업경영장부 개발 119, 시스템 관리 290, 기타운영비 31, ICT융복확지원 1,410)	-	-
□ **비목**(합계)	**3,955**	**5,826**	**5,883**	**57**	**1.0**
○ 민간경상보조(320-01)	**3,955**	**5,826**	**5,883**	**57**	**1.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 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 정보화 촉진)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국정과제, 핵심개혁과제)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농업 미래성장동력화 - 스마트 팜·창조마을

○ 추진경위

- '99년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및 웹 기반 아피스넷 서비스 개시
- '03년 품목중심의 사이트로 아피스넷 개편
- '04년 인터넷방송 서비스 실시, '05년 농림지식검색기능 강화
- '07년 아피스넷 기능확충 및 정보연계기관 확대(40개 기관)
- '08년 농업인 정보화역량진단 도구 개발
- '09년 농식품정보서비스 개선 및 확충
- '10년 정보화전문교육, 온라인교육 강화, 농수축산분야 IT융합 모델화사업 추진(5개 과제)
- '11~'13년 농식품 ICT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운영, ICT 융복합 교육농장 지정
- '13년도 시범확산 2개 사업 추진 및 '14년도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 확산사업 추진
- '13년 농식품 3.0 기반(옥답) 구축
- '14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 '15년 농식품 클라우드 전환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16년 농식품 통합정보서비스(옥답 4.0) 및 고객 맞춤형 정보 이용 체계 확대
- '17년 농식품 데이터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맵 구축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18년 농식품 빅데이터 융·복합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정보이용활성화	45	45	40	40	40	5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0 **(40)**	- ( )	- ( )	40 (40)	40 **(39.9)**	- ( )	- ( )
’16년	40 **(40)**	- ( )	- ( )	40 (40)	40 **(39.4)**	- ( )	- ( )
’17년	40 **(40)**	- ( )	- ( )	40 (40)	40 **(38.6)**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등급(89점) 판정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타 용도 집행 지양 필요(예결위, ’16년)

- 정보화사업관련 낙찰차액은 전액반납 및 타 용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주의 조치(‘16.7월)

○ 옥답사이트의 정확한 운영성과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개선 필요(상임위, ’16년)

- 성과지표 변경(지식정보 활용도 → 농식품 지식정보 이용활성화율)

○ 옥답4.0 구축사업 성과제고 노력 필요(상임위, ’17년)

- 옥답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 토론회,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 사용자 의견수렴 및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17.7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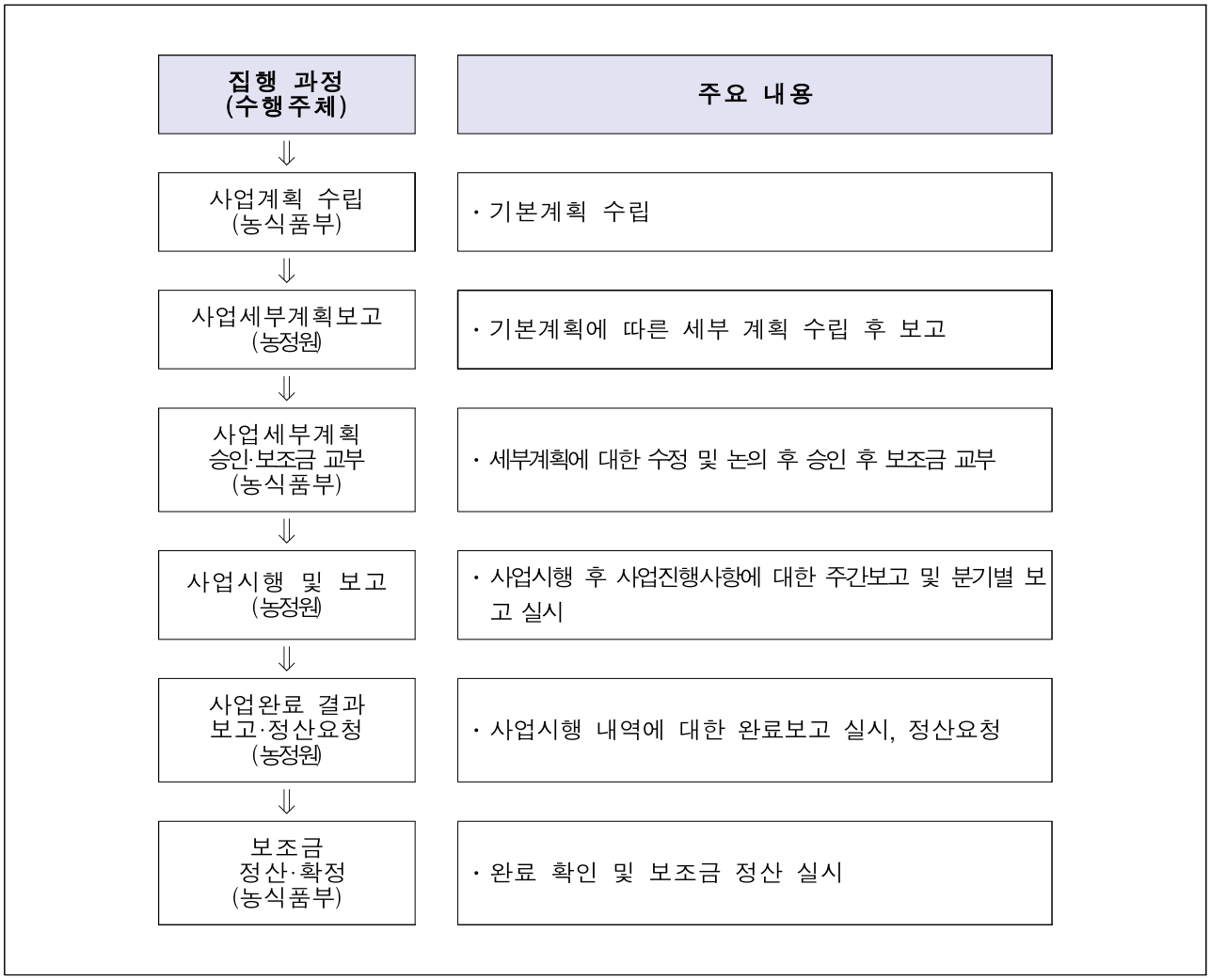
집행 과정
(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계획 수립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사업세부계획보고
(농정원)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후 보고
사업세부계획
승인·보조금 교부
(농식품부)
· 세부계획에 대한 수정 및 논의 후 승인 후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및 보고
(농정원)
· 사업시행 후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주간보고 및 분기별 보고 실시
사업완료 결과
보고·정산요청
(농정원)
· 사업시행 내역에 대한 완료보고 실시, 정산요청
보조금
정산·확정
(농식품부)
·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정산 실시

참고	‘19년 농식품 빅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주요내용

1 빅데이터 기반 귀농귀촌 정착지원 서비스

○ 추진 타당성(ISP 결과 기반)

◇ 귀농귀촌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서비스 및 책자에 의존한 정보수집 및 지원 정책 파악으로 실제 영농 현실과 괴리감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

⇒ **개인별 관심과 상황을 고려한 지역별 영농 현황 및 정주여건 빅데이터 기반 “귀농귀촌센터” 상담서비스 지원 모델 수요 발생**

○ 시급성 및 필요성

-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년도 시범 모델 개발 완료 이후 ’19년 전국 기반 귀농귀촌 지원 모델 구축 필요
-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 및 상담 체계 개선 요구(국회) 및 대국민 개선 요구 발생으로 서비스 체계 개편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귀농·귀촌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요인(생활여건, 경제, 농업환경, 개인, 지원 정책 등) 분석
- 농촌 정주여건, 농지, 농업기상 등 전국 데이터 조사 및 분석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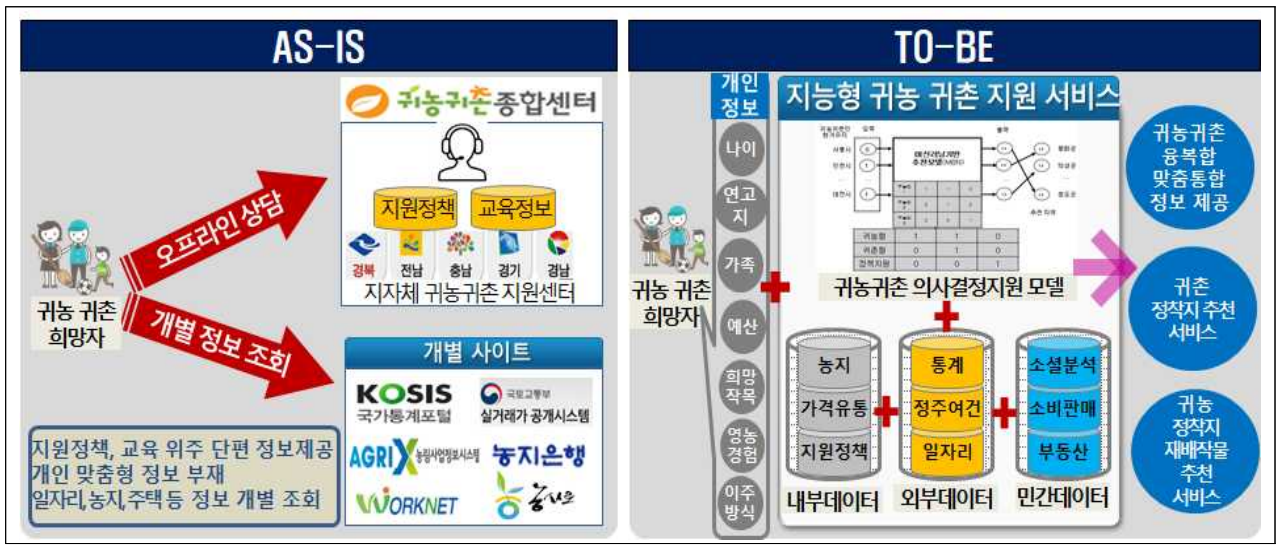

2 농업인 영농상황별 정책지원 안내서비스

○ 수요 및 추진 타당성(ISP 결과 기반)

◇ 매년 농림 분야 지원정책 사업이 증가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격조건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영농현황에 맞춘 지원정책 정보 수급 및 지원 신청 행정서비스가 어려워지고 있음

⇒ **농업인별 영농현황(농지 면적, 재배품목, 수혜이력 등) 분석을 통해 농업인 눈높이 맞는 지원정책 안내서비스 필요**

○ 추진내용

- 농림사업별 자격조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분석하여 영농유형별 지원사업 DB 구축(직불금, 농기자재, 시설지원 등)
- 전국 기반 농업경영체(농지, 품목 등) 데이터 기반 농가현황 DB 구축
- 농업인 영농형태 및 품목 기준 개인별 농업 지원정책 안내서비스 구축
  * (서비스안) 기존 지원정책 안내, 품목 변경 시 신규 지원가능 정책 안내, 유사 영농그룹 간 비교 서비스 제공
- 지자체 및 관련기관 상담센터 대상 서비스 확산으로 행정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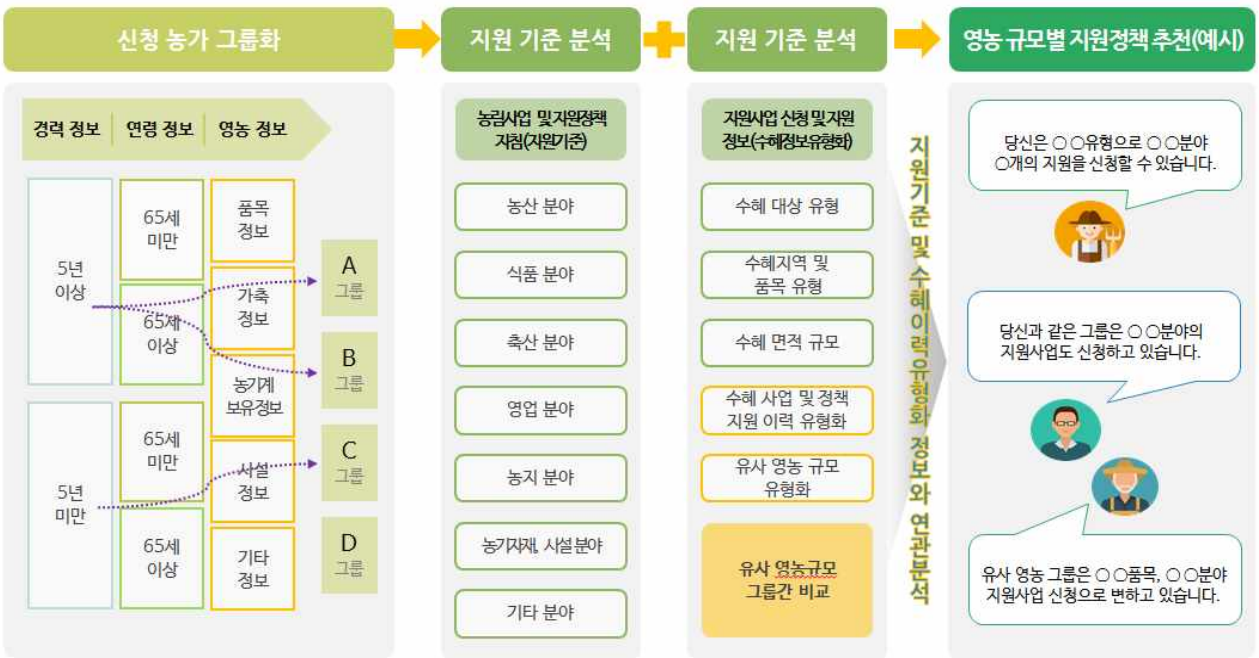

3 스마트팜 병해관리 서비스

◈ 빅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지향
· **(현재 수준)** 스마트팜 선도농가의 **환경·생육정보를 수집·공유** →
('19 목표)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병해예측 서비스 모델 상용화**

□ **기본개념** : 병해예측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환경데이터 3종**(온·습도, 일사량)만을 가지고 **병해관리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 온실의 온·습도, 일사량 등 센서 데이터 수집·분석하여 병발생 예측 서비스 제공

○ 활용방안 : 농업인에게 모바일 등을 활용 실시간 병 예측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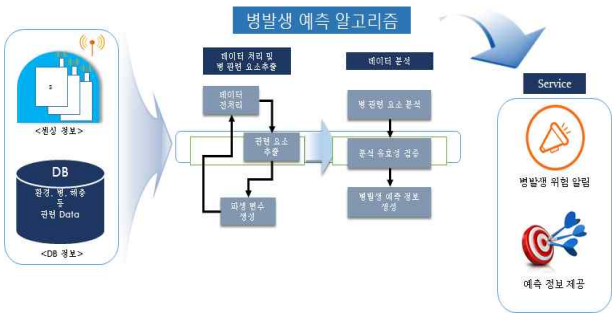

□ **장애요인**

○ 단기간 내 성공적인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품목, 온실유형, 규모** 등을 **한 개 품목으로 특정화** 할 필요가 있음

⇒ 1개 품목(100농가)에 대해 지속 수집(2년간), 병해관련 필수 데이터(3종)만 집중

○ 서비스 모델의 단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자재 및 SW 국산화·표준화 등을 감안 **역량 있는 기업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가 필요

⇒ 사업 추진체계 마련시 정부·연구기관·기업체 등 협의체 구성·운영

□ **향후계획**

○ **(수집·저장)** 고부가가치 **단일 품목 대상**으로 농업 현장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지속 수집한 병해충 예보시스템 구축**('18)

○ **(분석·활용) 병발생 예측 관리 S/W(알고리즘)**는 현장 실증을 거쳐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기술이전** 되어 **서비스 상용화**('19~)

7. 농식품 ICT융복합 촉진 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 ICT융복합촉진 (농가활용서비스개발)	3,052	1,632	1,982	350	21.4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30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심동욱, ☏ 044-201-242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팜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체계 확립으로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

- 스마트팜 우수농가의 정보를 농가·기업·연구기관 등에 공유하여 최적 생장환경 조성 및 보급제품의 성능향상 유도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ICT 융복합 확산농가의 현장 활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 * 스마트팜 선도농가의 생육·환경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지원 * 축적된 정보를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제공하여 작물생육 연구 및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 최소한의 환경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병해관리 및 방제시기 의사결정 지원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100%, 지속지원
사업시행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에 ICT를 융복합한 **스마트팜 우수농가를 발굴**하여 빅데이터 수집 **(156백만원)**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확대

▪ 산출내역 : (농가조사) 우수농가현황조사 260호x0.3백만원 = 78백만원
(농가선정) 우수농가선정 130호x0.3백만원 = 39백만원
(정보연계) 연계 프로그램 설치 130호x0.3백만원 = 39백만원

* 정보연계 농가 확대 ('18) 60호, 9품목 → ('19) 130호, 10품목

○ 정보 활용대상별(농업인, 컨설턴트, 연구자, 기업 등) **분석서비스 확대 및 데이터 품질 개선(650백만원)**

▪ 분석서비스 및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산출내역 : (시스템개발) 포털, 업무지원, 분석서비스 시스템 개발 = 500백만원
(품질개선) 자동수집 데이터 품질개선 = 150백만원

* ('18)시스템 개발 498백만원 → ('19)시스템 개발+데이터품질개선 650

○ 양질의 선도농가 **생육·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컨설팅 및 A/S 지원 확대**(663백만원)**

▪ 스마트팜 정보연계 농가지원 강화(70% 증)

▪ 산출내역 : (컨설팅) 신규정보연계농가(130호)x2회x0.5 = 130백만원
(A/S) 신규정보연계농가(130호)x0.5 = 65백만원
(생육조사) 정보연계농가(130호)x36회x0.1 = 468백만원

* 정보연계 농가 지원확대 ('18) 60호 → ('19) 130호 지원

○ 우수사례 발굴·홍보로 **데이터 활용 확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서비스 개발 및 현장애로사항 해결(35백만원)**

▪ 산출내역 : (우수사례발굴) 우수사례선정 및 발표회 = 25백만원
(전문가협의회) 외부전문가 자문 5명x5회x0.4 = 10백만원

○ 스마트팜 빅데이터 **전산자원 관리 및 운영**지원**(110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전년 동)

▪ 산출내역 : (시스템유지관리) S/W, H/W유지비 = 110백만원

○ **병해관리 알고리즘 실증**을 위한 **환경데이터 수집대상 확대(368백만원)**

▪ 산출내역 : (농가선정심사) 200호(선정대상의 2배수)×0.3백만원=60백만원
(센서 제작) 100호×1백만원=100백만원
(센서·네트워크 설치) 100호×2백만원=200백만원
(농가선정 지원) 농가선정을 위한 여비 40회×0.2백만원×=8백만원

※ 단기 체감서비스란? 스마트팜 미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온·습도 등 센서 5개 내외만 설치하여 환경정보를 수시로 문자전송하여 병해관리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팜 장점 인식 및 전환 유도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1,632백만원**	**1,982백만원**
▪ ICT융복합 모델 개발	**500백만원**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 (500=1식×500)	-
▪ 농가활용서비스 개발	**1,132백만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확대(72=60호×1.2백만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493=1식×493백만원) ·농가 지원 강화 (390=60호×6.5백만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강화 (67=1식×67백만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10=1식×110백만원)	**1,614백만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확대(156=130호×1.2백만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650=1식×650백만원) ·농가 지원 강화 (663=130호×5.1백만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강화 (35=1식×35백만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10=1식×110백만원)
▪ 현장 체감서비스 개발	-	**368백만원** · 체감 모델 데이터 수집을 위한 농가 100호 추가 선정 및 장치 제작 설치 - 농가 선정심사(200호) 60백만원 - 센서 제작 및 설치(100호) 300백만원 - 농가 선정지원(40회) 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업에 ICT를 융복합한 스마트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스마트팜에서 축적되는 생육,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활용체계를 확립할 필요

- 축적한 정보를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활용하여 스마트팜 제품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단기체감 서비스(병해관리 등)을 발굴하고, 기업·연구기관 기술이전을 통해 서비스 상용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3,052**	**1,632**	**1,982**	**350**	**21.4**
▪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	1,920	500	-		
_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1,920 (1식x1,920백만원)	-	-		
_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	500 (1식x500백만원)	-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확대	60	72	156	84	116.7
_ 농가조사 (민간경상보조)	30 (100호x0.3백만원)	36 (120호x0.3백만원)	78 (260호x0.3백만원)		
_ 농가선정 (민간경상보조)	15 (50호x0.3백만원)	18 (60호x0.3백만원)	39 (130호x0.3백만원)		
_ 정보연계 (민간경상보조)	15 (50호x0.3백만원)	18 (60호x0.3백만원)	39 (130호x0.3백만원)		
▪ 스마트팜 빅데이터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495	493	650	157	31.8
_ 포털,업무지원, 분석서비스 개발 (민간경상보조)	495 (1식x495백만원)	493 (1식x493백만원)	500 (1식x500백만원)		
_ 자동수집 데이터 품질개선 (민간경상보조)	-	-	150 (1식x150백만원)		

▪ 농가 지원 강화	340	390	663	273	70
- 컨설팅지원 (민간경상보조)	50 (50호x0.5백만원x2회)	60 (60호x0.5백만원x2회)	130 (130호x0.5백만원x2회)		
- A/S지원 (민간경상보조)	50 (50호x0.5백만원x2회)	60 (60호x0.5백만원x2회)	65 (130호x0.5백만원)		
- 생육조사지원 (민간경상보조)	240 (50호x0.1333백만원x36회)	270 (60호x0.125백만원x36회)	68 (130호x0.1백만원x36회)		
▪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강화	67	67	35	-	-
- 우수사례발굴 및 발표회 개최 (민간경상보조)	25 (5건x5백만원)	25 (5건x5백만원)	25 (5건x5백만원)		
- 교육 및 교제제작비 (민간경상보조)	40 (8건x5백만원)	30 (60호x0.5백만원)	-		
- 전문가협의회 (민간경상보조)	2 (5명x0.3백만원)	12 (4명x0.3백만원x10회)	10 (5명x0.4백만원x5회)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70	110	110	-	-
- 감리사업비 (민간경상보조)	70 (1식x70백만원)	-	-		
- 시스템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	100 (1식x100백만원)	110 (1식x110백만원)	110 (1식x110백만원)		
▪ 단기 체감서비스 데이터 수집대상 확대	-	-	368	-	-
- 농가선정심사 (민간경상보조)	-	-	60 (200호x0.3백만원)		
- 센서제작 (민간경상보조)	-	-	100 (100호x1백만원)		
- 센서,네트워크설치 (민간경상보조)	-	-	200 (100호x2백만원)		
- 농가선정 지원 (민간경상보조)	-	-	8 (40회x0.2백만원)		
□ 비목(합계)	**3,052**	**1,632**	**1,982**	**350**	**21.4**
○ 민간경상보조(320-01)	1,132	1,632	1,982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92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추진경위

- '10년도 농수축산분야 IT융합 모델화사업 추진(5개 과제)
- 농림수산식품 IT융합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12.7월)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수립('13.8월)
- '14년부터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중
-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수립('16.3월)
- 스마트 팜 확산방안 추진계획 수립('18.4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식품 ICT 융복합촉진	12	19	31	31	31	1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17년 ICT융복합 모델개발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이월

○ '15~'17년 농가활용서비스 개발사업 구축사업 잔금 집행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1 **(31)**	- (10)	- (-)	31 (41)	31 **(19)**	- (16)	- (6)
'16년	31 **(31)**	- (16)	- (-)	31 (46)	31 **(20)**	- (20)	- (6)
'17년	31 **(31)**	- (20)	- (-)	31 (50)	31 **(35)**	- (12)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농업 선진국에서도 농업분야에 ICT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

구 분		추진 내용
시설 원예	네덜란드	o 불리한 환경 요건을 자동화 온실 등의 첨단 농법으로 극복 - 첨단 유리온실이 핵심으로, 적기 수분 공급, 비료배합 등 관리 업무 자동화를 통한 최적의 생산 재배 조건을 유지 - 채광량, 온·습도, CO2 등의 **데이터를 통해** 관리하는 첨단하우스 설비
	일본	o 센서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 온실에 온·습도, CO2 센서를 설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클라우드를 통해 온실상태정보 및 병(흰가루병)발생 통보(52시간전) 서비스 제공 - 예측에 의해 농약 살포회수 감소(약 28.6%) 및 과실 수확량 증대
축산	한국	o 축우관리 - 축우의 반추위(反芻胃)에 바이오캡슐을 투여하여 축우의 체온, pH 변화 등의 **데이터를 통해** 상태(임신여부, 병발생 등)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스마트폰으로 전송
	오스트리아	o 全세계 **낙농업 빅데이터** 구축 - 소형기기를 젖소의 체내에 삽입하여 질병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5) 사업추진절차

- 예산편성 흐름

각국별예산요청 → 예산편성 실무위원회 → 정보화예산편성 →
자체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 회 심 사

- 사업추진 흐름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결과통보(조달) →
조달청 입찰 → 조달청 계약요청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검 사 및 완 료

참고1 농식품ICT융복합촉진(농가활용서비스 개발)

□ 개방화와 고령화, 영세한 영농 규모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정부는 '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스마트팜 보급 예산 : ('14) 220억원 → ('16) 468억원 → ('18) 761

< 연도별 정부의 스마트팜 보급 물량 >

구분(누계)	'13년 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	~'22년(목표)
시설원예(ha)	345	60	769	1,912	4,010	7,000
축산(호)	-	30	186	420	799	5,750

○ 기존 온실·축사·과수에서 노지 밭작물·수직형 농장 실증 조성 등 새로운 모델 보급을 통한 **스마트팜 유형 다양화**

○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ICT 기자재 표준화·국산화 등 **R&D 중점과제 추진**, 제품 테스트 등을 위한 실증단지 구축 등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에 따른 **전후방 산업 동방성장**을 위한 **사업 영역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인공지능·IoT 등 기술 진보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시대 도래

○ 영국과 유럽, 중국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정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중국) 13.5 규획(2016~2020년) 정책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집중육성 대상으로 지정

- 정책 지원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추진 중

* (미국) 행정부 중심의 추진을 시작으로 각 연방정부 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협업 프로젝트와 연방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스마트팜 보급 확산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 수집·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지원 필요성 대두**

○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개발 및 제품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공유 요구 증대(붙임)

>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의 '자동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장의 환경정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동제어 알고리즘 연구팀은 농정원에서 2014년부터 100여개의 농장의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를 수집하여 Open API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이를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최적의 자동제어 알고리즘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안XX 대표>

○ 빅데이터 수집을 체계화하고, 현장 체감형 서비스 발굴·확산 등에 대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18.4.16.)

* 수집된 데이터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일반농가의 벤치마킹을 돕고, 대학·기업의 연구 및 제품개발 등에 활용

* 최소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병해충 예보 및 방제 의사결정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우선 추진(~'19)

○ 스마트팜 기업 간담회('18.6.20.)업에서 정부 주도로 우수농가 생육 데이터 등 수집 및 확산 요청

□ 스마트팜 빅데이터로 **돈 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 수행

○ 현장의 양질의 데이터가 **수집·저장·공유**되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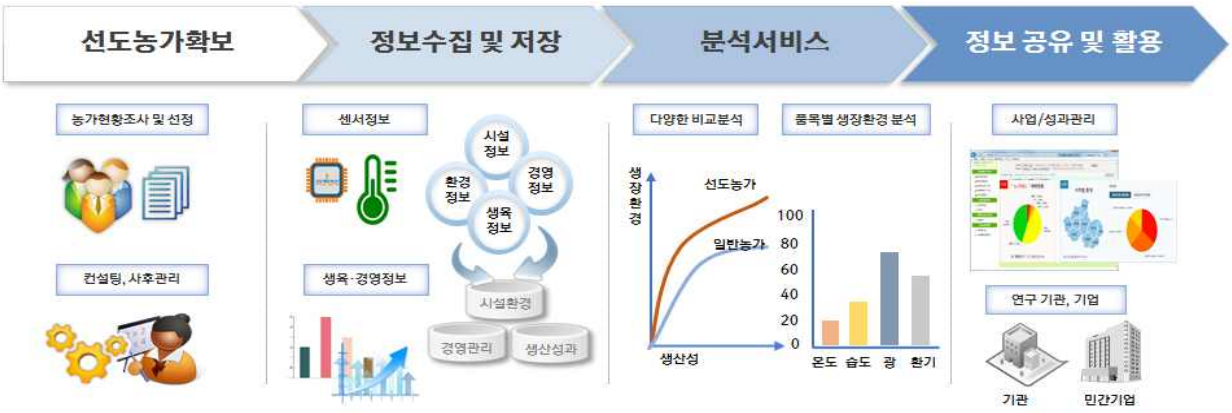

8. 정책연구개발사업(R&D)(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2,139	2,139	2,139	-	-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서기관 송인달, ☏ 044-201-17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연구를 통하여 농식품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 추진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6) 46개 → ('17) 49개 → ('18) 44개
지원조건	직접수행(국고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참여기관) 연구계약체결업체 다수

2. 2018년 예산

□ 산출내역

○ 정책연구용역 추진 : FTA 대책, 직불제 개편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수요충족, 국정과제 등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139백만원

▪ 산출내역 : 연구과제 40건 × 건당(53.5백만원) = 2,139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예산
□ 정책연구개발 사업(R&D)	2,139백만원	2,139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신규) 40개 ×53.5백만 =2,139백만원	(신규) 40개 ×53.5백만 =2,13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정책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국정과제 수행, 농발계획 수립, IT융복합 등 농업 구조변화, 신수요에 따라 연구과제 수요 증가추세 지속, 연구결과물 질적 제고 필요성 증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정책연구개발(R&D)**	2,075	**2,139**	**2,139**	**-**	**-**
▪ 정책연구용역 (산출근거)	2,075	2,139 (40개×53.5백만))	2,139 (40개×53.5백만)	-	-
□ **연구용역비**(합계)	2,075	2,139	2,139	-	-
○ 정책연구비(260-02)	2,075	2,139	2,139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2조(통일대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통일대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연금에 포함되어 원하던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99년 연구기관 소관부처로 변경하면서 각 부처 예산에 별도로 계상, 정책연구용역 추진

* 2007년부터 북한농업연구사업, FTA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합하여 예산편성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정책연구개발(R&D)	2,507	2,580	2,503	2,252	2,139	2,13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6) 미완료 과제 이월(319백만원) 및 집행잔액(2백만원) 불용

○ ('17) 미완료 과제 이월(370백만원) 및 집행잔액(13백만원) 불용

○ (‘18) 미완료 과제 이월(388백만원) 및 집행잔액(16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6년	2,252 ( )	620 ( )	- ( )	2,872 ( )	2,551 ( )	319 ( )	2 ( )
’17년	2,139 ( )	319 ( )	- ( )	2,458 ( )	2,075 ( )	370 ( )	13 ( )
’18년	2,139 ( )	370 ( )	- ( )	2,509 ( )	2,105 ( )	388 ( )	1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연구용역 숫자를 줄이고 예정가를 상향 조정하여, 입찰 기관을 확대하고 보고서 수준도 향상시킬 필요성 있음(‘14 예결위)

○ 발주 이전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상반기에 발주진행, 하반기에는 현안 과제를 발주 하는 방식으로 개선(‘14 상임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과제수요조사

총괄과제 담당자과→ 각 실국 → 총괄과제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및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총괄과제 담당과 → 심의위원(외부위원 포함)
(과제 선정 심의)

↓

과제 선정(방침)

총괄과제담당과(장관결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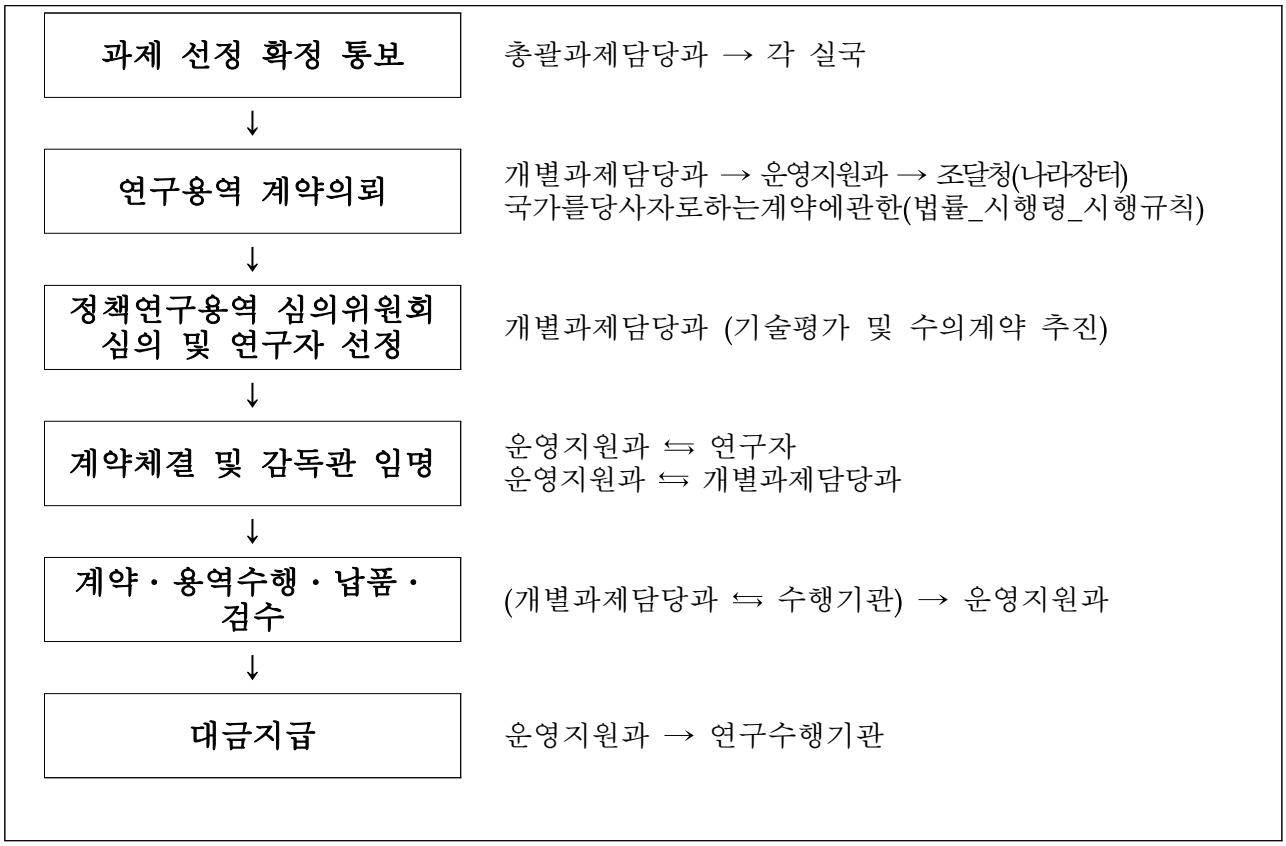
과제 선정 확정 통보
총괄과제담당과 → 각 실국
연구용역 계약의뢰
개별과제담당과 → 운영지원과 → 조달청(나라장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_시행령_시행규칙)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및 연구자 선정
개별과제담당과 (기술평가 및 수의계약 추진)
계약체결 및 감독관 임명
운영지원과 ⇆ 연구자
운영지원과 ⇆ 개별과제담당과
계약·용역수행·납품·검수
(개별과제담당과 ⇆ 수행기관) → 운영지원과
대금지급
운영지원과 → 연구수행기관

9.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재량, 계속, 정보화)

< 농특회계 - 구조개선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	2,950	3,162	2,993	△169	△5.3

* 사업코드 : 20 - 15 - 04 - 100 - 101 - 7000 - 7032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김정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원석), 사무관(최상만, ☏044-201-1410)
농촌정책국장(이재욱), 지역개발과장(김철), 사무관(이강석, ☏044-201-15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조·융자금의 중복·편중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와 지역·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정보를 통합관리

○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DB구축 및 GIS를 활용한 업무관리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융자금 사업(5조원 규모)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DB구축 및 GIS를 활용한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기간	'13～계속
총사업비	대상 아님
사업규모	농식품 보조·융자사업 102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6) 농림축산식품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개선(17~),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32,761건에 대한 단계적 DB 구축
지원조건	직접수행(국고100%), 민간보조(국고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18)2,562 → ('19) 2,393백만원 169 감

- 보조·융자금의 부당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사업비 보조·융자금의 부당·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연계통합 구축 : 1,268백만원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612백만원
  - '13년~'17년 개발금액(5,333백만원) * 유지보수요율(7.93%) = 422,930,147원
  - '14년 도입 상용SW 유지보수 : 도입가(1,655,403,750원) * 유지보수요율(10.5%) = 173,817,393원
  -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 도입가(157,070,573원) * 유지보수요율(10.5%) = 16,492,410원
- 통합관리망 장비(HW, SW) 임차료 513백만원(총도입액 3,409백만원)
  - 통합DB/사업안내/지침관리 서버, 스토리지, DBMS, WEB/WAS, 암호화 SW 등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 ('18) 600 → ('19) 600백만원 전년동

- 전국단위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DB 구축 및 GIS 기반 농산어촌지역개발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493백만원
  -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 사업현황자료(5,000건), 농촌마을 현황, 정주여건 등 관련 행정데이터 및 통계 DB 구축 : 113백만원
  - 공간정보 및 정주여건 기반 전국 단위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관리, 평가, 통계 관리 등 시스템 기능 신규 개발 : 380백만원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07백만원
  - 시스템Help Desk운영(36), HW/SW유지보수 및 공통경비(60)
  - 이용활성화 교육홍보 및 직접경비(11)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림축산식품 통합관리망(정보화)	**3,162백만원**	**2,993백만원**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2,562백만원 ○ 통합관리시스템개선 - 1,268 × 1건 ○ 운영 및 유지관리 - 612 × 1건 ○ '14년 도입장비 임차료 - 170.5 × 4회	2,393백만원 ○ 통합관리시스템개선 - 1,268 × 1건 ○ 운영 및 유지관리 - 612 × 1건 ○ '14년 도입장비 임차료 - 171 × 3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600백만원 ○ 기존시스템 개선 - 490 × 1건 ○ 운영 및 유지관리 - 110 × 1건	600백만원 ○ 기존시스템 개선 - 493 × 1건 ○ 운영 및 유지관리 - 107 × 1건

□ 지원 필요성

○ 보조·융자금 사업 통합관리(농업경영체 지원사업 5조원 규모)

- 보조·융자금의 부당·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
- 사업별 유사한 내용으로 농업인이 각각 신청에 따라 동일 농업인·농지에 대해 공무원이 각각 등록·점검하는 행정불편 해소

○ 지역균등발전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농산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지역별 투자내역 등의 모니터링·관리를 위한 자료 전산화 및 GIS 정보를 활용한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매년 1천개소 이상의 사업이 진행(매년 약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현행 행정시스템으로는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시·도, 시·군별 예산 편중 및 동일 사업의 중복 투자 가능성 발생
- 사업 자료 DB화 및 정보제공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균형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지자체의 지역개발 기획기능을 지원하게 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	2,950	3,162	2,993	△169	△5.3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2,350	2,562 (2,562백만원×1식)	2,393 (2,393백만원×1식)	△169	△6.6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600	600 (600백만원×1식)	600 (600백만원×1식)	-	-
□ 비목(합계)	2,950	3,162	2,993	△169	△5.3
○ 임차료(210-07)	682	682	513	△169	△24.8
○ 민간경상보조(320-01)	2,268	2,480	2,48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추진경위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차단을 위해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와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12.12, 농식품부 사업관리 체계개편TF)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계획 보고('13. 5, 농식품부 소득추진단)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 ISP 및 시범사업('13.12)
- 농업DB 활용 보조금 정상화 및 스마트농정 추진계획 마련('14.2)
-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22개 사업 추가개발 (14.12)
-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41개 사업 추가개발 ('15.12)
-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39개 사업 추가개발 ('16.12)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스템 개선 및 경영체DB를 활용한 지방농정 지원 추진('17.11, 29개 사업 기능개선 및 7개 신규구축)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파일럿 시스템 구축('11.12, 일반농산어촌개발지원사업비)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12.2~12)
  *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현황 제공(GIS 활용) 및 업무관리 시스템 마련
- 농림수산식품 사업관리 체계개편 기획단 구성·운영('12.5～9)
- '13~'17년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지속 구축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	17	28	26	32	30	3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7년 2백만원(집행잔액), 2016년 불용 150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15년 불용 126백만원(낙찰차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6 (7)	- (-)	- (-)	26 (7)	24 (7)	- (-)	1 (-)
'16년	32 (32)	- (-)	- (-)	32 (32)	30 (30)	- (-)	2 (-)
'17년	30 (23)	- (-)	- (-)	30 (23)	30 (2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감사원)

- (지적사항①) 국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 오류가 발생하여 공부상 면적을 자동으로 가져오지 못해 공부상 농지면적보다 과다하게 지급 및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에 연계하지 않아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쌀직불금을 신청하더라도 무단경작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당 지급사례 발생('15.3월)
- (조치결과①) 필지정보 실시간 검증을 위해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국토부의 일부 노후장비 교체 완료, 오류 및 시스템 속도 저하 문제를 최소화('14.12월)
  · 입력된 농지정보에 대한 대량검증(일괄검증)을 2차례 실시('14.6월, 10월), 일치하지 않는 건에 대한 지자체 확인 강화 및 입력방법 개선('15.8월)
  ·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자 정보(임차권자) 확인방안 추진('15.7월)
- (지적사항②)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농업인 조합원 5인 이상의 명단이 함께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16.3월)
- (조치결과②) 영농조합법인을 농업경영체로 등록·변경등록시 경영주 포함 5인 이상의 농업인이 필수로 등록되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16.3월)

○ (기타 : 2015년 보조사업운용평가) : 정상추진
- (지적사항①) 해당없음
- (조치계획①) 해당없음

○ (기타 : 2016년 보조사업연장평가) : 정상추진
- (지적사항①) 해당없음
- (조치계획①)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유럽 농촌개발(ERD) : 농촌개발과 관련 인구학적, 경제적, 정치적, 과학과 기술, 환경과 자원의 5개 차원에서의 GIS DB 등 통합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분석을 통해 혁신적 의사결정지원

○ 미국 USDA : 농촌개발, 농장서비스부서, 자연자원보전부서가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환경 및 자연자원 데이터 등 관련 공간데이터를 언제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획득 가능한 서비스

(5) 사업추진절차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안요청서 작성(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자공고(조달청) → 사업자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달청)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조달청)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사업평가 및 검수(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행계획 수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공고(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평가 및 결산(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계획 수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공고(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사업평가 및 결산(농림축산식품부)

10.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사업(재량, 계속)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1,800	1,800	2,080	280	15.6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34
* 담당자 : 정책기획관(김정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원석), 사무관(강종수, ☏ 044-201-140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기초통계 확충 및 미래지향적인 통계기반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농지 변화를 반영한 **전국 기반 팜 맵을 통해 농업농촌 공간정보와 행정정보·통계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통계기반 구축 ▪ 기관별로 생산·관리되고 있는 **농식품 국가승인통계 또는 행정자료의 통합적인 관리, 운영**으로 통계 활용 체계 마련
사업기간	'14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전국 기반 팜 맵(1식) 및 활용모델 ▪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1식), 농식품통계 DB(108종)
지원조건	민간보조 국비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팜맵 : ('18) 1,410백만원→('19) 1,590백만원**

(목적) 현실에 가까운 면적과 농경지 속성정보에 특성화된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지향형 통계 기반 구축 및 **과학적 농정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발굴·확산**

※ 팜 맵 기반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 기본계획(안)('16.12., 장관방침)

(기대효과) 농업정책 추진의 기초자료인 경지에 대한 정확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농경지 필지별로 시행되는 정책 효율성 검증 및 행정업무 효율화

- 농경지 경계도 제작·운영 : 800백만원

▪ 항공·위성영상,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농경지 속성정보 및 경계 등에 대한 지도 갱신

* 팜 맵 변화 지역 판독 및 갱신 : 14.6천원×54,930㎢(2018년) →15.1천원×44,100㎢(2019년)

* 행정자료 활용 갱신 방안 수립 및 갱신 : 133백만원(2019년)

- 행정자료 연계·융복합 활용 및 성과발굴 : 550백만원

▪ 팜 맵과 농식품 통계 및 행정자료 간 연계 및 성과발굴

* 행정자료 연계·활용 맵 제작 : 67종×350원×15,856㎢(2018년) →67종×350원×15,856㎢(2019년)

* GIS기반 직불제 등 행정자료 DB 구축 및 ISP : 180백만원(2019년)

- 팜 맵 활용지원 및 확산 : 240백만원

▪ 전국 팜 맵과 분야별로 제작된 주제도 제공을 위한 서비스 기반 운영관리

*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376.1FP × 638천원(2018년) →318.3FP × 754천원(2019년)

○ **스마트농정(통계) 확산 기반 구축 : ('18) 390백만원→('19) 490**

(목적) 농업·식품 승인통계 및 행정통계 관리 체계의 표준화 및 정보화로 분야별 **농식품 통계 데이터 품질 제고와 분야별 활용 확산**

※ 국가농식품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기관(28개 기관 및 협회)의 안정적인 통계생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필요

(기대효과) 분산된 농업·농식품 통계 생산·관리·제공 체계 정립으로 대국민 및 관련 기관 대상 통계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편의성 제고

- 스마트농정(통계) 개발·운영관리·활용지원 : 490백만원

▪ 국가농식품통계 서비스 운영관리 : 400백만원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3262.8FP × 92천원(2018년) →3262.8FP × 92천원(2019년)

* 통계 및 행정자료 연계개방 서비스 개발 : 246.7FP × 405천원(2019년)

▪ 통계DB 분석 및 활용 : 90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스마트농정 통계 체계 구축	**1,800백만원**	**2,080백만원**
▪ 팜맵	1,410 · 농경지 경계도 제작·운영(800) (800=14.6천원 × 54,930㎢) · 행정자료 연계·융복합 활용 및 성과발굴(370) (370=67종 × 350원 × 15,856㎢) · 팜 맵 활용지원 및 확산(240) (240=376.1FP × 638천원)	1,590 · 농경지 경계도 제작·운영(800) (800=15.1천원 × 44,100㎢ + 133) · 행정자료 연계·융복합 활용 및 성과발굴(550) (550=67종 × 350원 × 15,856㎢ + 180) · 팜 맵 활용지원 및 확산(240) (240=318.3FP × 754천원)
▪ 스마트농정(통계) 확산 기반 구축	390 · 스마트농정(통계) 개발·운영관리·활용지원(390) (390=3262.8FP × 92천원 + 90)	490 · 스마트농정(통계) 개발·운영관리·활용지원 (490) (490=3262.8FP × 92천원+ 246.7FP × 405천원 + 90)

□ 지원 필요성

○ 전국 기반 농경지 디지털 지도인 팜 맵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통계·행정자료와의 융·복합을 통한 공간기반 스마트농정 확산 체계 및 성과 발굴 가능

- 전국 구축완료 된 팜 맵을 공간정보와 각종 행정정보 등 융·복합하여 농업 정책 업무에 맞는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필요

○ 4차산업혁명과 함께 농업·농촌 통계 등 데이터의 필요성 증가

- 농식품통계의 활용을 위해 통계 검증 및 품질 강화를 통한 내실화 필요
- 농업·농촌·농식품 분야 통계 간 융합 분석을 통한 활용 가치 제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1,800	1,800	2,080	280	15.56
▪ 팜맵 (산출근거)	1,500	1,410 (·농경지 경계도 제작·운영(800) ·행정자료 연계·융복합 활용 및 성과발굴(370) ·팜맵 활용지원 및 확산(240))	1,590 (·농경지 경계도 제작·운영(800) ·행정자료 연계·융복합 활용 및 성과발굴(550) ·팜맵 활용지원 및 확산(240))	180	12.7
▪ 스마트농정(통계) 확산 기반구축 (산출근거)	300	390 (스마트농정(통계) 개발·운영관리·활용지원(390))	490 (스마트농정(통계) 개발·운영관리·활용지원(490))	100	25.6
□ 비목(합계)	1,800	1,800	2,080	280	15.56
○ 민간경상보조(320-01)	1,800	1,800	2,080	280	15.5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및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 기본계획('16.12. 장관방침)

○ 추진경위

- 팜 맵 구축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완료('13)

* 스마트 팜 맵 성과확인을 위한 도별 1개면 시범 구축(전국 9개면)

- 농식품통계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4)
- '14년~'16년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사업 추진
  * 팜 맵 활용개방을 위한 **농식품 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서비스 체계 구현('17.1)
  *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농업농촌 공간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16.12, 장관방침)
  * 농축산식품 주요통계(6종) 및 분야별(농촌복지, 축산 등 10종) 주요 통계 자료 수집·분석
- **'16년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구축('16.12)
- 농식품 분야 27개 기관행정자료 90종, 승인통계 12종 DB 현행화('17.11)
- 전국 구축 이후 팜 맵 4개도, 3개 광역시 갱신('17.12)
  * 팜 맵 기반 공간정보 활용모델 8종 개발, 기존 주제도(50종) 및 활용맵 갱신(5종)
  * 팜 맵 활용개방을 위한 **농식품 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서비스 개선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		24	22.8	22.8	18	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내역 사업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2.8 **(22.8)**	- (-)	- (-)	22.8 **(22.8)**	22.8 **(22.8)**	- (-)	- (-)
'16년	22.8 **(22.8)**	- (-)	- (-)	22.8 **(22.8)**	22.5 **(22.5)**	- (-)	0.3 (0.3)
'17년	18 **(18)**	- (-)	- (-)	18 **(18)**	18 **(16.5)**	- (-)	- (1.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2018년 보통

○ 보조사업연장평가 : 2018년 정상추진

○ 외부지적사항

- 팜 맵 현행화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요구(상임위, '16.11)

- 팜 맵 품질 정비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감사원, ‘17.2)

○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 팜 맵의 현행화 비용 절감(정기+수시 갱신) 방안 마련(‘16.12)
- 기 구축 지역에 대한 품질 재검수 및 품질 정비 완료(’17.2)
- 행정자료 활용 팜 맵 현행화 및 관리체계 정립 완료(‘17.2)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농업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은 주무부처에서 농경지지도 구축 활용

▪ (미국) 농무부(USDA) 농업진흥청(FSA)에서 경지경계도인 CLU*를 구축, 경영체등록제 정보와 연계 갱신 및 관리

* CLU(Common Land Unit) : 소유가 아닌 식부현황을 중심으로 최대한 경지경계를 세분해서 구획한 전자지도

▪ (EU) 농지확인 및 농업직불금 지급·관리를 위해 LPIS (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를 ’03년부터 운영 중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지경계정보를 지도정보화 하고 관계기관 공동활용DB를 구축하여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 경작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각종 지원정책과 연계

▪ (국외) 정밀농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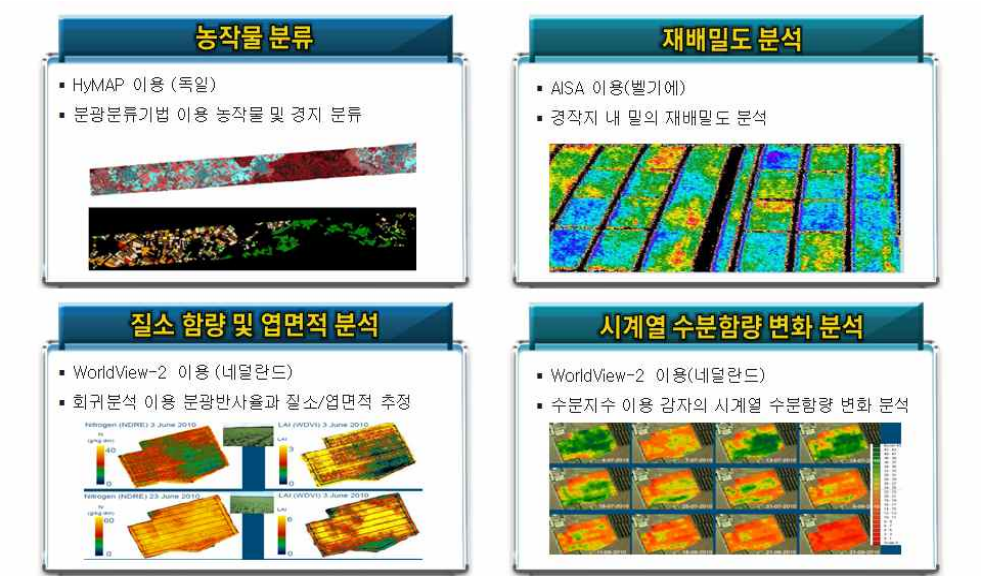

○ 농업통계 국제사례 현황조사 및 벤치마킹(’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수행주체)	주요 내용
⇓	
사업계획 수립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	
사업세부계획보고 (농정원)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후 보고
⇓	
사업세부계획 승인·보조금 교부 (농식품부)	· 세부계획에 대한 승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및 보고 (농정원)	· 사업시행 후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보고
⇓	
사업완료 결과 보고·정산요청 (농정원)	· 사업시행 내역에 대한 완료보고 실시, 정산요청
⇓	
보조금 정산·확정 (농식품부)	·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정산 실시

참고 1 팜맵 설명 자료

1. 사업 개요

○ '팜맵' 구축사업은 현실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정보를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이용, 디지털 맵으로 제작한 농경지 전자지도

○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농작물 재배면적, 생산량 등)와 행정자료(직불제, 경영체등록제 등)를 종합 연계하는 '팜맵' 구축

2. 사업 내용

○ 농경지 경계도(팜 맵) 제작·운영

○ 농작물 재배면적, 생산량 등 통계와 행정자료(직불제, 재해보험 등)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 쌀소득직불제(2종), 밭농업직불제(4종), 조건불리직불제(5종), 경영체 농지명세(5종) 등

○ **타 부처 및 기관 간 연계·협업**을 통한 팜 맵 이용 확산

* 환경부 '토지피복도', 통계청 '경지면적조사', 농진청 '흙토람' 등

3. 사업 효과

○ 농식품관련 통계·행정자료 정확도 향상, 정책 의사결정지원 고도화

- 공간적으로 다양한 정보의 연계분석 및 신속한 농정 의사결정에 기여
- 정책 기획-집행-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괴리 문제 해소

참고 2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설명

1. 사업 개요

○ 농업·농촌의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통계기반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농정을 지원하고, 다부처 연계 기반 마련

2. 사업 내용

○ (종합DB구축) 통계·행정자료 등의 디지털 DB화 및 메타데이터 구축

- 실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 27개 기관에서 각각 생산하던 90종 통계·행정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농식품통계 종합DB구축

○ (수집·관리) 종합DB의 현행화를 위한 생산·수집·관리시스템* 구축

- 통계표 생성, 입력, 검증, 마감 등 통계 생산 전과정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계관리 일원화
- 외부자료수집연계, 메타관리, 오류검증 등

3. 사업 효과

○ 데이터 기반의 농식품통계 종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통계 이용자의 검색·활용 편의성 제공, 농식품 보고통계 자료의 수집 편의성 제고

○ 통계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농업·농촌과 연관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통계자료 수집·제공 등 다부처 연계 기반 마련

11.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5,676	5,177	5,450	273	5.3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35
* 담당자 : 대변인(김종구), 홍보담당관(송지숙), 서기관(유영수, ☏ 044-201-11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농업·농촌의 이해도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 동력 홍보 및 주요 이슈별 선제적 대응 및 관리

○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의 발굴 및 격려 등

* 농업인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행사로, 정부·소비자 및 농업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 농정공감 실현 주요 농정홍보,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 동력 홍보, 지역농정 소통활성화 홍보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사업기간	'05~계속
총사업비	- 억원( )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보조율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농촌가치 및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4,890백만원

- 농업·농촌 가치(중요성),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6차 산업화, 스마트팜 등) 및 디지털소통(온라인 홍보) 강화등의 '19년 홍보수요에 대응한 예산 요구

-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중요성) 홍보 : 1,241백만원

· 농촌복지, 귀농귀촌 등 농업·농촌 가치확산 방송홍보 240(TV프로그램 10×24회)
· 도농상생(1사1촌 등) 연중 기획 300(지면홍보 200, 온라인 50, 심포지엄 50)
·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701(광고영상 제작송출, 오프라인 프로모션, 국민참여형 공모전 (영화제, 사진, 수기공모, 토크콘서트 등)

-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홍보 : 860백만원

· 취농창농 등 농업일자리 성공사례 방송홍보 160(TV프로그램 10×16회)
·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공동기획 및 광고 200(10백만원×20회) : 청년농업인 우수·성공사례
· 취농·창농 성공사례 공모전 500(공모전 운영·시상 200, 성공사례 확산 300)

-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6차산업화, 스마트팜 등) 홍보 : 500백만원

· 6차산업화, 스마트팜, 수출 등 미래성장동력 우수사례 방송홍보 180(TV프로그램 10×18회)
· 미래성장동력 공동기획 및 광고 170(10백만원×17회)
· 생활접점매체 활용 홍보 150(영상제작 50(10×5), 송출 100(10회×10))

- 현장소통을 통한 농촌 활력 창출 홍보 : 500백만원

· 현장농정, 지역농업 성공사례 등 방송홍보 200(지역방송 5백만원×40회)
· 현장소통 강화 240(전국·시군농정협의회 220, 지역홍보관 운영 20)
· 농정소식지를 통한 농정소통 강화 60(오피니언리더 60)

- 현안이슈 대응 및 홍보기반 : 466백만원

· 농정현장 홍보콘텐츠 제작확산 270(영상콘텐츠 제작확산 200/200회, 사진취재 45/65회, 사진촬영 지원 25/100회)
· 농정홍보 역량강화 136(홍보자문단 운영, 협업홍보, 국민인식조사, 홍보품질제고 등)
· 우발현안 대응 홍보 60(현안 홍보수요 발생 대응)

- 온라인 및 모바일 홍보 강화 : 810백만원

·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810(콘텐츠 제작 650(청년농업인 성공스토리 영상, 미디어파사드, 로고송 등), 채널 운영 100, 정책기자단 60)

- 디지털 소통팀 운영비 및 홍보전문요원 인건비 : 513백만원

·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스튜디오 구축 200,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매 100
· 인건비 144, 온라인 콘텐츠 저작도구·인쇄물 등 27, 전자책 및 정책자료 바로보기 유지보수 30, 고용부담금 등 12

○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한 사업비 560백만원**

· 기념식 및 오찬(150) : 1식×150백만원×100%
· 부대행사(240) : 1식×240백만원×100%
· 온·오프라인 홍보(170) : 1식×170×100%

구 분	'18예산	'19예산
□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5,177백만원	5,450백만원
▪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4,617백만원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중요성) 홍보, 농업 미래성장동력 홍보 등 : 4,408백만원 ○ 홍보전문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209백만원	5,450백만원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중요성) 홍보,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홍보, 농업 미래성장동력 홍보 등 : 4,377백만원 ○ 디지털소통팀 운영비 및 홍보전문요원 인건비: 513백만원
▪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560백만원 ○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 560백만원	전년동

□ 지원 필요성

○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인들과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기회 마련

○ 도시민에게는 농업의 중요성, 농업인에게는 자신감과 희망을 줄수 있는 취농·창농 성공사례 확산 및 농촌 체험관광, 6차산업화, 신농업 기술 전파 등 우수 현장체험 프로그램 제작·확산으로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농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력 제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활한 농정 수행

-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의 비전, 농업의 국가발전의 기여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될 때 농정의 원활한 수행 가능

○ 농업·농촌 분야 예산 지원에 대한 일반국민 공감대 형성

- 도시민 등 비 농업계 납세자의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농업·농촌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 가능

-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여 장래에 농업분야 위축 방지 효과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5,676	5,177	5,450	273	5.3
▪ 농업농촌가치및소비촉진홍보	5,116	4,617	4,890	273	5.9
▪ 농업인의 날	560	560	560	-	-
□ 비목(합계)	5,676	5,177	5,450	273	5.3
○ 110-03(상용임금)	127	140	144	4	2.9
○ 210-01(일반수용비)	27	27	27	-	-
○ 210-09(시설장비유지비)	21	30	230	200	667
○ 210-12(복리후생비)	-	1	1	-	-
○ 320-01(민간경상보조)	5,482	4,968	4,937		△0.6
○ 320-09(고용부담금)	19	11	11	-	-
○ 430-01(자산취득비)	-		100	1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및 동법 제11조의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추진경위

- (농업·농촌 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 농산물의 소비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05년부터 추진
-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 부각 및 발전하는 농업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96년부터 추진

· '89. 1 : 농민신문사 "농민의 날"제정 캠페인 전개 및 대정부 건의
· '90. 5 : 정부(농림부)에서 농민의 날 제정에 관한 여론수렴(공청회 등)
· '93～'95 : 정부 부처내 협의
· '96. 5.30 : 국무회의에서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민의 날」로 공식 제정
· '96.11.11 : 해양수산부 신설('96.8.8)에 따라 「농업인의 날」로 변경
· '11.11.22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업인의 날 조항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48	43	83	65	60	5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4 (84)	- (-)	- (-)	84 (84)	83 (83)	 (-)	 (-)
'16년	65 (65)	 (-)	 (-)	65 (65)	65 (65)	0.1 (-)	0.3 (-)
'17년	57 (57)	 (-)	 (-)	57 (57)	57 (57)	0.3 (-)	0.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17)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농업·농촌 가치 홍보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 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농식품부) → 사업추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 정산·사업비 검증 및 환류(농식품부)

② 농업인의 날 행사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사업추진(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 → 정산 및 보조금 확정(농식품부)

12. 농업농촌알리기(재량, 신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업농촌알리기	-	-	1,200	1,200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35
* 담당자 : 대변인(김종구), 홍보담당관(송지숙), 서기관(유영수, ☏ 044-201-11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의 성장 가능성, 도·농공감 확산 및 농업인에게 필요한 신기술 제공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신기술 정보제공(농업인), 농업·농촌 가치홍보(도시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기간	'19~계속
총사업비	- 억원( )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보조율 100%)
사업시행주체	공모사업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농업의 성장가능성 및 신기술 정보제공 등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비 1,200백만원

- 농업의 신기술 전파, 농업 성공사례, 농업의 미래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200

□ 지원 필요성

○ 농업인에게는 신기술 정보제공 및 취농·창농 성공사례 확산,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 가치홍보 등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기반 유지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농업농촌알리기	-	-	1,200	1,200	
▪ 농업농촌알리기	-	-	1,200	1,200	순증
□ 비목(합계)	-	-	1,200	1,200	
○320-01(민간경상보조)	-	-	1,200	1,2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및 동법 제11조의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공모사업자)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사업추진(공모사업자)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공모사업자) → 정산·사업비 검증 및 환류(농식품부)

13. 기후변화 실태조사(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기후변화 실태조사	365	833	833	-	-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1 - 7000 - 7036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농산업정책과장(박순연), 사무관(노승환, ☏ 044-201-24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위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실태조사
사업기간	'17~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농촌용수구역 및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기후변화 실태조사
지원조건	민간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833백만원**

- 기후변화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제반 비용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기후변화 실태조사	**833백만원**	**833백만원**
▪ 기후변화 실태조사	833 * 구역·배수상황 및 홍수대응 조사·평가, 시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조사·평가, 수질오염 자정능력 조사·평가 등	833 * 좌동

□ 지원 필요성

○ **농업분야는** 기후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필요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의 법적근거가 신설('14.11)*됨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해 법적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7조의2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기후변화 실태조사**	**365**	**833**	**833**	**-**	**-**
▪ 기후변화 실태조사 (산출근거)	365	833 (농어촌용수구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실태조사)	**833** (농어촌용수구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실태조사)	**-**	**-**
□ **비목**(합계)	**365**	**833**	**833**	**-**	**-**
○ 민간경상보조 (320-01)	**365**	**833**	**833**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 추진경위

- 국가 기후변화 1차('11~'15) 적응대책('10.10) 및 2차('16~'20) 적응대책 수립('15.12)
  * 각 부처별로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및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 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1~'20) 수립('11.5)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법적근거 최초 마련('14.1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 2 신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를 근거로 동법에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구체화 규정 신설(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도록 위임·위탁 규정 신설('15.1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신설 : 농업·농촌분야(농촌진흥청), 임업분야(산림청), 농촌용수·농업생산기반시설분야(한국농어촌공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기후변화 실태조사	-	-	-	-	4	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 ('17) 낙찰차액 불용에 따른 반납(35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4 (4)	- (-)	- (-)	4 (4)	3.7 (3.7)	- (-)	0.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적으로 농업기상은 식량생산이라는 사회경제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기상과 별도의 체계로 관리

○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에서 전국 850개 지점의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모델 결합형 작물기상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 전국 벼 생육 추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주요 벼 품종의 생육단계와 출수 및 개화기 예측 정보 제공

- 동북농업연구센터에서는 동북지역을 1km격자단위로 나눈 기상정보와 식량작물을 위한 냉해 조기경계 정보 서비스를 제공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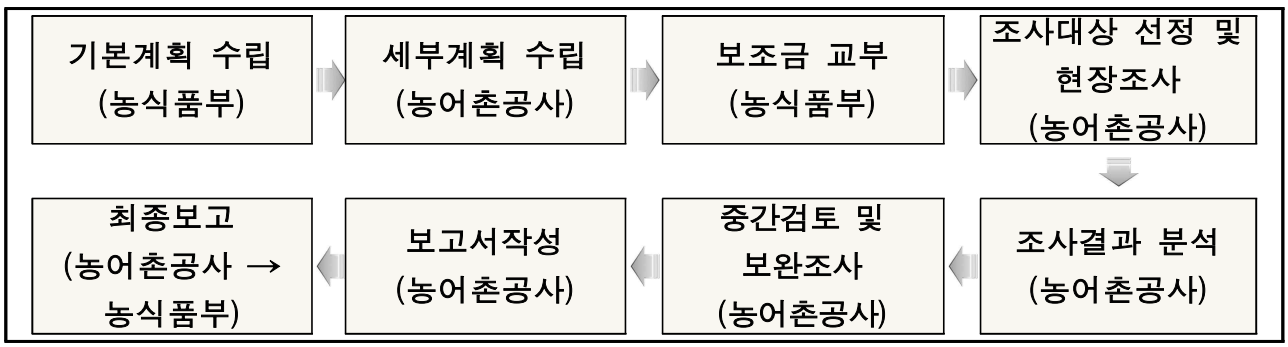

14. 청사시설지원(본부)(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사시설지원(본부)	170	200	200	-	-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7000 - 7049
* 담당자 : 운영지원과장(김정빈), 사무관(김광회), 주무관(차재율) ☏(044-201-128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무환경 개선 등으로 공간의 효율성 확보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여 행정능률 향상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무환경 개선 등으로 공간의 효율성 확보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여 행정능률 향상 도모
사업기간	'08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청사시설 유지보수, 방송통신장비 유지관리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청사 및 관사 유지보수 : 200백만원(전년동)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공통시설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및 칸막이 공사에 따른 전기 및 통신케이블 공사
- 회의실 및 사무실 방송설비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 본부 청사 시설관리 등(146백만원)

▪ 각종 공사(백만원) : 11백만원(4년간 건당 평균 금액) × 17건(4년간 평균건수) × 78%

○ 회의실 및 방송실 유지보수(54백만원)

▪ 방송설비시스템(28.8백만원) : 240만원(1개월, 용역비) × 12개월

▪ 통신설비시스템(25.2백만원) : 210만원(1개월, 용역비) × 12개월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청사시설지원(본부)	**200백만원**	**200백만원**
▪ 청사시설지원	▪ 청사시설지원 - 본부 청사 시설 유지보수(200백만원)	▪ 청사시설지원 - 본부 청사 시설 유지보수(2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사무공간의 효율적 확보를 통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

- 조직의 통합 재·개편,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반영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사시설지원(본부)	170	200	200	-	-
▪ 청사시설유지보수	121	146 (17건(4년 평균 건수)×11백만원(4년 평균 금액)×78%)	146 (17건(4년 평균 건수)×11백만원(4년 평균 금액)×78%)	-	-
▪ 방송통신장비 유지관리	49	54 ((방송)2.4백만원×12월, (통신)2.1백만원×12월)	54 ((방송)2.4백만원×12월, (통신)2.1백만원×12월)	-	-
□ 비목(합계)	170	200	200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21	146	146	-	-
○ 관리용역비(210-15)	49	54	54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쾌적한 사무환경으로 직원복지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청사시설지원(본부)	4.0	2.75	4.11	2.75	2.75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소속기관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전용

- '15년 소속기관 석면제거로 인한 전용(△72백만원)
- '16년 소속기관 석면제거 및 LED조명등 교체 예산 부족분 전용(△100백만원)
- '17년 소속기관 조경보수, 옥상 및 차고 방수공사 예산 부족분 전용(△100백만원)

○ (불용) 2015년~'17년 청사시설 개선 공사 및 관리용역비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11 (-)	- (-)	△0.72 (-)	3.39 (-)	3.34 (-)	- (-)	0.05 (-)
'16년	2.75 (-)	- (-)	△1.00 (-)	1.75 (-)	0.89 (-)	- (-)	0.86 (-)
'17년	2.75 (-)	- (-)	△1.00 (-)	1.75 (-)	1.70 (-)	- (-)	0.05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청·관사 시설 유지보수 수요 파악	연중	농식품부	청사 및 관사 등의 인테리어, 전기·냉난방 설비 등 시설개선 공사 수요 등 파악
⇓			
시방서, 산출내역 작성	연중	농식품부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시방서 및 공사 원가계산(산출내역 작성)
⇓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연중	농식품부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게시 및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착공	연중	농식품부, 계약상대자	낙찰자 와 계약체결 및 착공
⇓			
준공 및 준공검사	연중	농식품부, 계약상대자	공사 완료 후 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준공 내역 확인하여 준공검사 실시
⇓			
대금 지급	연중	농식품부	준공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금 지급

15. 청사시설관리(농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사시설관리(농관원)	2,957	3,638	4,705	1,067	29.3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7000 - 7049
* 담당자 : 국립농산물질관리원장(조재호), 운영지원과장(안창근), 사무관(김명수, ☏ 054-429-40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청사 대수선, 사무용 집기 교체, 청소 용역 등 청사시설관리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업무 생산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노후청사 대수선, 청소용역 등 청사시설 유지보수
사업기간	'01~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청사시설 유지보수, 청소용역 및 대수선 공사> 청사 133개소(본원·시험연구소 1, 지원 9, 사무소 115, 별관·분소 8) 기준연도 / 10년 이하 / 11~20년 / 21~30년 / 31년 이상 / 계 '18년 / 45 / 37 / 30 / 21 / 133 '19년 / 48 / 37 / 27 / 26 / 133 <직원 사무용 집기 구입 등> ('18) 3,000여명(정원 1,425명, 무기직 809명, 기간제 800여명*) * 직불이행점검 조사원, 원산지단속보조원, 안전성분석 보조원 등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133개 청사시설 대수선,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및 3,000여명의 노후 사무용집기 교체 등 4,705백만원 요구('18대비 1,067백만원, 29.3% 증액)

□ 청사시설 유지·보수 : ('18)3,102백만원 → ('19) 4,191 (증 1,089, 35.1%)

○ 상용임금 : ('18) - → ('19) 182,945 (순증)

- 전기안전관리자 : 3,200천원×12개월×1명=38,400천원
  * 위탁사업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관리용역비→상용임금)
- 기계안전관리자 : 2,600천원×12개월×1명=31,200천원
  * 위탁사업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관리용역비→상용임금)
- (본원)청소미화원 : 2,350천원×12개월×4명=112,800천원
  * 위탁사업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관리용역비→상용임금)
- 계약직 연차수당 : {22,960원+18,660원+(16,860원×4명)}×5일=545천원

○ 일반수용비 : ('18) 160,000천원 → ('19) 365,000 (증 205,000)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의무인증비용 : 44,000천원(감 9,000)**
  - 8,800천원×5개소=44,000천원
- **청사 안전진단 : 32,000천원**(전년 동일)
  - 8,000천원×4개소=32,000천원
- **부산사무소 합동청사 이전비 : 214,000천원(순증)**
  * '19년 9월 이전예정(2015년 부산임시청사 이전 시 소요액)
- **신축사무소 이전비 : 75,000천원**(전년 동일)
  - 25,000천원×3개소=75,000천원
  * 사무소 신축 현황 : ('18) 3개소 : 보은·정읍·구리 → ('19) 3개소 : 인제 순창 포함

○ 복리후생비 : 2,400천원 (순증)

- **전기 및 기계 안전관리자 복지포인트 : 800천원**
  - 복지포인트 : 400천원×2명=800천원

■ **청소 미화원 복지포인트 : 1,600천원**

- 복지포인트 : 400천원×4명=1,600천원

○ **관리용역비 : ('18) 1,317,000천원 → ('19) 1,286,876 (감 30,124)**

■ **사무소 청소용역 : 963,240천원(감 83,160)**

- 사무소 청소용역 : 698천원×12월×115개소=963,240천원

■ **원주사무소(지방합동청사) 청사시설 관리비 : 132,636천원**

- 원주사무소(지방합동청사) 관리비 : 11,053천원×12월=132,636천원(증 6,036)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관리비 인상(2~3%)

■ **부산사무소 합동청사 관리비 : 191,000천원(순증)**

- 부산청사 관리비 : 47,750천원×4월=191,000천원

* '19년 9월 입주 예정

** 부산 통합청사 면적(7,985㎡)×평균관리비(5,985원/월)

○ **고용부담금 : 39,914천원 (순증)**

■ 전기안전관리자 4대보험 : 38,400천원×10.4%=3,940천원

■ 전기안전관리자 퇴직금 : 38,400천원÷12월=3,200천원

■ 기계안전관리자 4대보험 : 31,200천원×10.4%=3,201천원

■ 기계안전관리자 퇴직금 : 31,200천원÷12월=2,600천원

■ (본원)청소미화원 4대보험 : 28,200천원×10.4%×4명=17,573천원

■ (본원)청소미화원 퇴직금 : 28,200천원÷12월×4명=9,400천원

○ **실시설계비 : ('18)10,000천원 → ('19)48,000 (증 38,000)**

■ 대규모 청사대수선공사 설계 5,000천원×2개소=10,000천원

■ 충남지원 리모델링 설계비 668,000천원×5.7%=38,000천원(순증)

○ **공사비 : ('18)1,615,460천원 → ('19)2,266,040 (증 650,580)**

■ 노후청사 시설개보수(대수선) : 26,634천원×60개소=1,598,040천원

* 청사현황 : 133개소(본원·시험연구소 1, 지원 9, 사무소 115, 별관·분소 8)

** 매년 노후청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방수, 단열, 이중창 공사 등 필요성 증대

■ 충남지원 리모델링 : 668,000천원×1회=668,000천원(순증)

□ 노후집기 교체 : ('18) 384백만원 → ('19) 384 (-)

○ 자산취득비 : ('18) 383,500천원 → ('19) 383,500 (-)

■ 신축사무소(3개소) 회의실·방송장비 및 책상·키폰 등 집기 구입 : 40,000천원×3개소 = 120,000천원

* **신축사무소 현황 : ('18)3개소 : 보은, 정읍, 구리 → ('19) 3개소 : 인제, 순창, 포항**

■ 노후사무용 집기 교체 : (본원)50,000천원+(지원)5,000천원×10개소×(사무소)1,420천원×115개소=263,500천원

* 주요 물품 내용연수(책상·의자 등 8년, PC 5년 등)를 고려하여 최소 10년 주기로 교체

□ 청·관사 임차 등 : ('18) 152백만원 → ('19) 130 (감 22, 14.5%)

○ 임차료 : ('18) 116,040천원 → ('19) 130,325 (증 14,285)

■ 화성사무소 임차(월세) : 136천원(연간)×359㎡=48,840천원

* 동일 건물 내의 임차료 수준으로 인상요구(136천원/1㎡, 사용면적 359㎡)

■ 강원지원 관사임차(월세) : 450천원×2개소×12월=10,800천원

■ 시험연구소 관사임차(월세) : 500천원×1개소×12월=6,000천원

■ 본원·시험연구소 직원 숙소 월세 : 400천원×12개월×2실=9,600천원

■ 인사교류자 주거지원비 : 200천원×15명×12월 = 37,085천원

■ 강화사무소 관사 임차료(월세) : 500천원×12개월×3실=18,000천원

○ 무형자산 : ('18) 36,000천원 → ('19) 순감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청사시설관리(농관원)	3,638	4,705
▪ 청사시설유지보수	3,102 청소관리 및 대수선 3,102 (126개소×24.6백원)	4,191 청소관리 및 대수선공사 3,080 (126개소×24.4백원) 부산합동청사이전 및 관리비 405 (214백만원+(48백만원×4개월)) 충남지원 리모델링 706 (668백만원+(668백만원×5.7%))
▪ 노후집기 교체	노후집기 교체 384 (126개소×3백만원)	노후집기 교체 384 (126개소×3백만원)
▪ 청·관사임차 등	152 청·관사임차료 등 116 (6개소×19.3백만원) 전세보증금 36 (2개소×18백만원)	130 청·관사임차료등 112 (6개소×18.7백만원) 강화사무소 관사임차료 18 (500천원×12개월×3실)

□ 지원 필요성

○ 신축청사 이전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청사 노후화와 직원(계약직 포함) 증가에 따른 대수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

* 지원근거 :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청사관리규정(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 등

○ 사무소 청소용역, 전기안전관리 위탁 등 청사유지관리비용 지원

○ 지방합동청사 입주에 따른 이전비, 관리비 지원

○ 내진 미설계 청사의 연차별 내진보강 공사 추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사시설관리(농관원)	2,957	3,638	4,705	1,067	29.3
▪ 청사시설관리 (산출근거)	2,489	3,102 (131개소×23.7백만원)	4,191 (131개소×32백만원)	1,089	35.1
▪ 사무용 집기교체 (산출근거)	379	384 (126개소×3백만원)	384 (126개소×3백만원)	-	-
▪ 청관사 임차 등 (산출근거)	89	152 (6개소×25.3백만원)	130 (6개소×21.7백만원)	△22	△14.5
□ 비목(합계)	2,957	3,638	4,705	1,067	29.3
○ 상용임금(110-03)	-	-	183	183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143	160	365	205	128.1
○ 임차료(210-07)	89	116	130	14	12.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	-	-	-	-
○ 복리후생비(210-12)	-	-	2	2	순증
○ 관리용역비(210-15)	712	1,317	1,287	△30	△2.3
○ 고용부담금(320-09)	-	-	40	40	순증
○ 실시설계비(420-02)	10	10	48	38	380.0
○ 공사비(420-03)	1,623	1,615	2,266	1,389	40.3
○ 자산취득비(430-01)	379	384	384	-	-
○ 무형자산(440-00)	-	36	-	△36	순감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정부청사관리규정(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 추진경위

- 2001년부터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청사를 대수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집기 교체 지원 등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청사시설관리(농관원)	41	25	27	28	30	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이·전용 : 72백만원[청사건축물의 석면제거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청사시설지원(본부)'로부터 내역변경]

'15년 불용 : 집행잔액 1백만원

○ '16년 불용 : 집행잔액 5백만원

○ '17년 불용 : 집행잔액 19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745		72	2,817	2,816		1
'16년	2,779			2,779	2,774		5
'17년	2,976			2,976	2,957		1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소요예산파악	1월・6월	농관원 본원	각 지원・사무소별 청사 대수선 및 노후 집기 교체 등 소요 파악
⇓			
현장확인	2월・7월	농관원 본원	각 지원・사무소별 예산 투입 필요성・시급성 등 현장 확인
⇓			
예산집행	3~6월 8~12월	농관원 본원	각 지원・사무소별 청사대수선 및 집기 교체 등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16. 청사시설지원(종자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사시설지원(종자원)	559	917	376	△541	△59.0

* 사업코드 : 20 - 11 - 00 - 100 - 101 - 7000 - 7049

* 담 당 자 : 국립종자원장(최병국), 과장(조정래), 사무관(양오순, ☏ 054-912-013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청·관사 시설에 대한 신·증축 및 개보수를 통해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무환경 개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본·지원의 청사 및 관리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개보수 지원(11개 사무소)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
사업기간	'7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본원 및 지원 10개사무소(청사, 관리사 총 24개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종자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임차료) 청사, 관리사 임차료 26백만원

('18) 26백만원→ ('19) 26백만원

▪ 산출내역 : 청사 840㎡×1,389원×12월 = 14백만원

관사 1,000천원×12월 = 12백만원

○ (공사비) 본·지원 청·관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221백만원

('18) 679백만원→ ('19) 221백만원

▪ 산출내역 : 24개소×6,875천원(균열, 방수, 창호, 도색 등 기존건물 유지보수) = 165백만원

1지원(동부)×56,000천원(석면 천장재 제거 및 재설치) = 56백만원

○ (자산취득비)

- 본·지원 청사, 관리사 집기구입 17백만원

('18) 12백만원→ ('19) 17백만원

▪ 산출내역 : 24개소×700천원 = 17백만원

- 전남 영암사무소 관용차량 구입 77백만원

('18) 0백만원→ ('19) 77백만원

▪ 산출내역 : 3대×25.5백만원 = 77백만원

○ (일반용역비)

- 전남 영암사무소 개소('19.5월)에 따른 준공식 비용 35백만원

('18) 0백만원→ ('19) 35백만원

▪ 산출내역 : 116천원×300명×1회 = 35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청사시설지원(종자원)	**917백만원**	**376백만원**
▪ 청사시설유지 관리	**679** 청관사 대수선 24개소×7백만=168 석면제거공사 62백만원×2개소(1,768㎡)=124 상·하수도보수공사 54백만원×2개소=108 내진성능평가 29,343㎡×95천원×10%=279	**221** 청관사 대수선 24개소×6.9백만=165 석면제거공사 56백만원×1개소(573㎡)=56
▪ 청·관사 임차운영	**26** 청사 840㎡×1.4천원×12월=14 관리사 3개×333천원×12월=12	**26** 청사 840㎡×1.4천원×12월=14 관리사 3개×333천원×12월=12
▪ 전남 영암사무소 준공식	-	**35** 116천원×300명×1회=35
▪ 기관장 관사 임차	**200** 관사1개×8.4백만원×24월=200	-
▪ 청·관사 노후 집기 구입	**12** 24개소×500천원=12	**17** 24개소×700천원=17
▪ 영암사무소 관용차 구입	-	**77** 25.5백만원×3대=77

□ 지원 필요성

○ 본원 및 10개 지원의 청·관사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건물의 안전성 유지와 청사시설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원 필요

- 특히, 최근 소속직원의 건강과 위생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위해 시설물 대수선에 필요한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동부)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재 제거공사 예산 소요

<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사시설지원(종자원)	559	917	376	△541	△59.0
▪ 청사시설유지·관리	524	679	221	△458	△67.5
- 공공요금 및 제세	120	-	-	-	-
- 청·관사 시설보수 (노후청사 대수선)	404 24개소×16.83백만원 =404	679 청관사 대수선 24개소×7백만=168 석면제거공사 62백만원×2개소 (1,768㎡)=124 상·하수도보수공사 54백만원×2개소=108 내진성능평가 29,343㎡×95천원 ×10%=279	221 청관사 대수선 24개소×6.9백만 =165 석면제거공사 56백만원×1개소 (573㎡)=56	△458	△67.5
▪ 청·관사 임차 운영	23	26	26	-	-
- 청사 및 관리사 임차(제주지원)	23 청관사 4개소×5.7백만 =23	26 청사 840㎡×1.4천원 ×12월=14 관리사 3개×333천원 ×12월=12	26 청사 840㎡×1.4천원 ×12월=14 관리사 3개×333천원 ×12월=12	-	-
▪ 전남 영암사무소 준공식	-	-	35	35	순증
- 영암사무소 준공 및 개소	-	-	35 116천원×300명×1회	35	순증
▪ 기관장 관사 임차 (기관장 관사)	-	200 관사1개×8.4백만원×24월= 200	-	△200	순감
▪ 청·관사 노후 집기 구입	12 24개소×500천원=12	12 24개소×500천원=12	17 24개소×700천원=17	5	41.7
▪ 영암사무소 관용차 구입	-	-	77 25.5백만원×3대=77	77	순증
□ 비목(합계)	559	917	376	△541	△59.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0	-	-	-	-
○ 임차료(210-07)	23	26	26	-	-
○ 일반용역비(210-14)	-	-	35	35	순증
○ 공사비(420-03)	404	679	221	△458	△67.5
○ 자산취득비(430-01)	12	12	94	82	683.3
○ 무형자산(440-00)	-	200	-	△200	순감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정부청사관리규정(청사수급관리계획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처리법

○ 추진경위

-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청사의 대수선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추진
- 업무능률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집기 교체 지원
-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및 철거로 직원 건강 및 근무환경 개선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청사시설지원(종자원)	2	2	4	2	6	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 13백만원(청·관사 임차료 집행 잔액)

○ '16년 : 10백만원(청·관사 임차료 집행 잔액)

○ '17년 : 4백만원(청·관사 임차료 등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 ( )	- ( )	- ( )	4 ( )	4 ( )	- ( )	- ( )
'16년	2 ( )	- ( )	- ( )	2 ( )	2 ( )	- ( )	- ( )
'17년	6 ( )	- ( )	- ( )	6 ( )	6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시기	주요내용		수행 주체
2월	청사 및 관사 유지보수 소요 및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		10개 각 지원 → 종자원 본원
	↓		
3월	청,관사 유지보수 내역파악 및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제출		종자원 →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자치부
	↓		
4월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행정자치부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원
	↓		
5월	청·관사 유지보수 예산안 편성 제출		종자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참고 1 국립종자원 청·관사 현황

□ 청·관사 : 11개 기관(24개소)

(2018. 12월 현재)

(청사)

구 분	보유수량/개소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준공년도	비 고
전국 8개도	12 본원(1) 강원(1),충북(1) 충남(1),전북(2) 전남(1),경북(1) 경남(2),동부(1) 서부(1),제주(-)	402,953 (121,893평)	14,883 (4,502평)	소계 : 12 '70~'80 : (1) '81~'90 : (1) '91~'00 : (3) '01~'10 : (5) '11~현재 : (2)	

(관리사)

구 분	보유수량/개소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준공연도	비 고
전국 8개도	12 〈지원〉 강원(1),충북(1) 충남(1),전북(2) 전남(1),경북(1) 경남(2),동부(2) 서부(1),제주(-)	402,953 (121,893평)	3,114 (942.0평)	소계 : 12 '70~'80 : (2) '81~'90 : (2) '91~'00 : (3) '01~'10 : (4) '11~현재 : (1)	

□ 청사 임차현황(1개소)

지원명	임차건물	임차면적(㎡)	비 고
제주 지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7,987 (청사 3,273, 포장 등 4,714)	-

참고 1 부산사무소 통합청사 이전관련 현황

❑ (배경)

○ 부산사무소 통합청사 이전('19년 9월 예정) 소요예산 발생

❑ (현황)

○ 농관원 부산사무소, 부산식약청, 동남통계청 3개 기관 통합청사 개발사업

- 농관원 입주층: 사무동 총 9층중 **2~3층**, 실험동 총 10층중 **9~10층**
- 사용면적: 부산농관원 7,985㎡ / 부산식약청 23,798㎡ / 동남통계청 4,848㎡
- 사업기간: 2015년 1월 ~ 2019년 7월('19년 3분기 입주 예정)
- 사업주체: (국)기획재정부장관 / 사업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요예산)

○ 이전비 : 214백만원(임시청사 이전 기초금액 기준)

- 직접재료비(9,322,245원), 노무비(20,047,602원), 직접경비(32,481,944원), 보험료 및 기타경비(2,292,714원), 손해보험료(2,939,633원), 일반관리비(3,207,742원), 이윤(5,804,034원), 특수포장설치비용(119,161,295원), 부가가치세(19,232,791원)

○ 관리비: 지방소재 오피스 빌딩 평균 관리비 5,985원/㎡적용

※ 오피스빌딩 평균관리비(2013년 4분기 서브원 오피스마켓리포트 자료 적용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평균관리비)

- 부산 통합청사 면적(7.985㎡) × 평균관리비(5,985원) = 월 48백만원

참고 2 충남지원 청사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계획

❑ (배경) 청사 노후화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새단장 필요

○ 1978년 준공(40년)된 건축물로 **외벽이 많이 노후화** 되어 벽에 틈이 발생하는 등 보수 필요

○ 사무실 벽 마감재 노후화로 파손된 곳이 많으며 난방용 방열기 외부 노출 등 **직원 근무여건 매우 열악**

* 당초 대전지방검찰청 청사로 사용, 2000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관리이전

전경(1978년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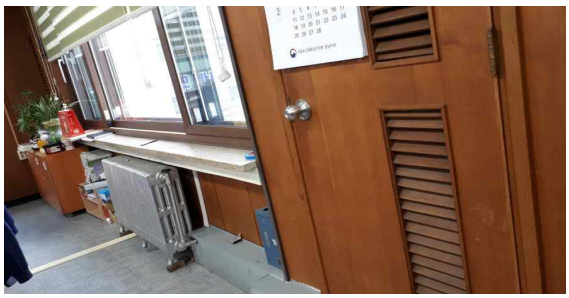

사무실 내부(방열기외부 노출, 벽 노후화)

❑ (필요성) 전체적인 청사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절실

○ 청사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

❑ 공사비 산출: 706백만원

○ 설계비(실시설계비 420-02): 38백만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청사외벽·내부 공사(공사비 420-03): 1식×645백만원 = 645백만원

* 외벽대리석공사, 캐노피공사, 내부리모델링, 창호교체

○ 전기배전반 교체 공사(공사비 420-03): 1식×23백만원 = 23백만원

참고3 충남지원 청사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계획

❑ (현황) 2008년 증축한 강화사무소의 관사가 없음

○ 강화사무소 현재 6명이 근무 중이며, 전 직원이 관외 연고자 임

일련번호	직급	성별	연고지	현 주거
1	5급(기관장)	남	수원시 권선구	출·퇴근
2	6급	남	인천시 계양구	출·퇴근
3	6급	여	서울시 성북구	출·퇴근
4	7급	여	경기 고양시	출·퇴근
5	7급	남	수원시 영통구	출·퇴근
6	8급	여	안양시 만안구	출·퇴근

○ 강화군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등 수도권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관광객 및 도서민들의 잦은 출입으로 1년 365일 차량 정체가 심함

❑ (필요성) : 장거리 출·퇴근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 강화지역은 도서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불가하여 6명 전원이 자가 출퇴근 중이며 출퇴근 거리는 왕복 100~200km 시간은 2~5시간 소요되며 통행료 및 주유비 등 1일 4만원 정도의 부담이 있음

○ 폭설, 강우 등의 좋지 못한 기상이 발생할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소요예산) : 18백만원/ 원룸 3실

○ 월세 : 500천원×12개월×3실=18,000천원

17.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10,385	13,417	13,414	△3	-

* 사업코드 : 20 - 11 - 0 - 100 - 101 - 7000 - 7049
* 담당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운영지원과장(변동주), 사무관(조헌준, ☏ 054-912-031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관사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안전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관리를 통한 국유재산 가치 증대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 도모
사업기간	'98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보유 청사 167개동, 관사 108개동
지원조건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청사 공공요금 : 4,566백만원
▪ 산출내역 : 380.5백만원*12월
○ 청·관사 임차 등 : 5,339백만원
▪ 산출내역 : 청·관사 임차료 442.4백만원*12월, 관사 전세금 인상분 30백만원
○ 청사 냉난방용 가스요금 : 1,555백만원
▪ 산출내역 : 129.6백만원*12월
○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 667백만원
▪ 산출내역 : 9.26백만원*6개소*12월
○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 129백만원
▪ 산출내역 : 10.75백만원*12월
○ 청사 공사비 : 819백만원
▪ 산출내역 : 보안등 설치 등 시설보완 438백만원, LED전등 교체 290백만원, 서울청사 시스템냉난방기 설치 91백만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 339백만원
▪ 산출내역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302백만원, 교재·교구 구입비 37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청사시설관리 (검역본부)	**13,417백만원**	**13,414백만원**
▪ 청사시설 운영	청사 공공요금 5,040백만원 * LH 대납 재산세(감643) * 제2여객터미널, 신설기관, 신축청사 공공요금(증298)	청사 공공요금 4,566백만원 * 공공요금 현실화 반영(감474)
	청·관사 임차 등 4,942백만원 * 제2여객터미널, 신설기관 임차료(증1,120)	청·관사 임차 등 5,339백만원 * 임차료 현실화 반영(증312)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 사무실, 인천공항 검역지원요원 사무실, 신규 관사 임차료(증85)
	청사 냉난방용 가스요금 1,555백만원	청사 냉난방용 가스요금 1,555백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667백만원 * 지역본부 내진성능평가(증75) * 신설기관 청사시설 유지보수(증15)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667백만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28백만원 * 지역본부 신축청사 시설관리 위탁(증50)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29백만원
	청사 공사비 1,085백만원 * 연구동 업무시설 증축(증647)	청사 공사비 819백만원 * 연구동 업무시설 증축(감647) * LED전등 교체(증290) * 서울청사 시스템냉난방기 설치(증91)
	직장어린이집 운영 0백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339백만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증302) *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증37)

□ 지원 필요성

○ 최근 안전 관련 사고 대비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청사 노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이상으로 향상 지원이 필요

○ 무인경비시스템의 위탁을 통해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중요문서 등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음

○ '18～'19년 청사수급관리 및 조직신설·청사신축 등 효율적 청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청·관사 임차료 예산 확보로 근무여건 개선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확보로 직원들이 육아부담 완화 및 자녀와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를 통한 직무만족도 제고 및 업무생산성 향상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10,385	13,417	13,414	△3	-
▪ 청사시설 운영	청사 공공요금 3,919	청사 공공요금 5,040 (420백만원×12월)	청사 공공요금 4,566 (380.5백만원×12월)	△474	△9.4
	청·관사 임차 등 3,765	청·관사 임차 등 4,942 (청·관사 임차료 409.3백만원×12월 + 관사 전세금 인상분 30백만원)	청·관사 임차 등 5,339 (청·관사 임차료 442.4백만원×12월 + 관사 전세금 인상분 30백만원)	397	8.0
	청사 냉난방용 가스요금 954	청사 냉난방용 가스요금 1,555 (129.6백만원×12월)	청사 냉난방용 가스요금 1,555 (129.6백만원×12월)	-	-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907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667 (9.26백만원×6개소×12월)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667 (9.26백만원×6개소×12월)	-	-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79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28 (10.7백만원×12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29 (10.75백만원×12월)	1	0.8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청사 공사비 761	청사 공사비 1,085 (연구동 증축 647백만원 + 보안등·CCTV 설치 438백만원)	청사 공사비 819 (보안등 설치 등 시설보완 438백만원 + LED전등 교체 290백만원 + 서울청사 시스템냉난방기 설치 91백만원)	△266	△24.5
	직장어린이집 운영 0	직장어린이집 운영 0	직장어린이집 운영 339 (직장어린이집 운영 302백만원 +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37백만원)	339	-
□ 비목(합계)	10,385	13,417	13,414	△3	-
○ 일반수용비(210-01)	60	-	-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919	5,040	6,121	1,081	21.4
○ 임차료(210-07)	3,755	4,912	5,309	397	8.1
○ 유류비(210-08)	954	1,555	-	△1,555	△100.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27	667	667	-	-
○ 관리용역비(210-15)	79	128	129	1	0.8
○ 민간경상보조(320-01)	-	-	302	302	-
○ 민간자본보조(320-07)	-	-	37	37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6	22	12	△10	△45.5
○ 실시설계비(420-02)	16	36	32	△4	△11.1
○ 공사비(420-03)	729	1,004	761	△243	△24.2
○ 감리비(420-04)	7	16	8	△8	△50.0
○ 시설부대비(420-05)	3	7	6	△1	△14.3
○ 자산취득비(430-01)	20	-	-	-	-
○ 무형자산(440-00)	10	30	3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5133호)』

○ 추진경위

- 보유 청사 167개동, 관사 108개동에 대한 지원 및 유지보수
- 청·관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청·관사 및 시설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 도모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23.2	14.7	25.5	76.9	123.3	134.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

- 이월 사유 : 신청사 정보시스템기반구축 통신공사 시설비 6건 395백만원, 호남지역본부 전주사무소 홍보관 공사비 채권가압류로 지급유예 31백만원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46백만원, 지급사유미발생 등 집행잔액 50백만원

○ 2016

- 불용 사유 : 청사이전 지연 및 실험실 가동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공공요금및제세 1,139백만원, 유류비 1,180백만원 등 2,364백만원

○ 2017

- 이용 사유 : 붉은불개미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등 긴급 조치명령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지급 충당 460백만원

- 전용 사유 : AI 방역추진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65백만원, 붉은불개미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방제·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70백만원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61백만원, 지급사유미발생 등 집행잔액 공공요금 및제세 412백만원, 유류비 659백만원 등 1,148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5.5 ( )	- ( )	- ( )	25.5 ( )	20.3 ( )	4.3 ( )	0.9 ( )
'16년	76.9 ( )	4.3 ( )	- ( )	81.2 ( )	57.6 ( )	- ( )	23.6 ( )
'17년	123.3 ( )	- ( )	△8.0 ( )	115.3 ( )	103.9 ( )	- ( )	11.4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6회계연도 국회(상임위) 결산검토보고서 지적사항

- 김천청사 신축 이전 후 미비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청사시설관리 운영비 중 공공요금및제세(210-02)에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538백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함
- 세목조정 집행액 538백만원 중 163백만원은 시설비로 집행해야 하나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여 예산집행지침 및 국회 통제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
- 김천청사 신축 이전 후 신속한 정상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시설의 보완이 불가피하였으며 당시 청사시설 보완을 위한 공사비용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였으나 향후 예산집행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청·관사 유지보수 수요 파악 및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	검역본부 6개 지역본부→검역본부 국유재산법 제6조, 정부청사관리규정
↓	
청·관사 유지보수 내역 파악 및 청사수급관리계획 제출	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국유재산법 제6조, 정부청사관리규정
↓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6조, 정부청사관리규정
↓	
청·관사 유지보수 예산안 편성 제출	검역본부 6개 지역본부→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식 품 외 식 산 업 육 성

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재량, 계속, R&D)

<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R&D)	34,400	32,508	20,981	△11,527	△35,5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4 - 2800 - 2810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식품산업정책과장(박성우), 사무관(정찬민, ☏ 044-201-21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식품산업 핵심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기능성식품 및 핵심소재 개발, 식품포장재 개발, 식품품질관리 등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기간	· '10년 ~ '19년 (일몰)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최근 5년간('14~'18) 1,733억원(누적)/347억원(평균)
지원조건	· 출연100%(대기업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 기업,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기능성·전통식품)** 기능성식품 및 전통식품 개발을 위해 5,426백만원 반영

- **('18년) 6,451백만원 → ('19년) 5,426**
  - (계속) 17과제×319백만×12/12개월=5,426백만원

○ **(식품품질관리)** 식품 품질관리·제어 연구지원을 위해 4,426백만원 반영

- **('18년) 10,407백만원 → ('19년) 4,426**
  - (계속) 14과제×316백만×12/12개월=4,426백만원

○ **(식품핵심소재)** 식품 핵심소재 육성·지원을 위해 4,966백만원 반영

- **('18년) 6,765백만원 → ('19년) 4,966**
  - (계속) 17개×292백만×12/12개월=4,966백만원

○ **(기자재·신가공)** 식품산업의 유통안전 및 효율성 증진 등 식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5,691백만원 반영

- **('18년) 8,167백만원 → ('18) 5,691**
  - (계속) 16개×356백만×12/12개월=5,691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의 기획·평가 등 운영을 위해 472백만원 반영

- 사업비의 2.3%

구 분	'18 예산	'19 예산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R&D)	32,508백만원	20,981백만원
▪ 기능성·전통식품	6,451백만원 24개×269백만=6,451백만원	5,426백만원 17개×319백만=5,426백만원
▪ 식품품질관리	10,407백만원 43개×242백만=10,407백만원	4,426백만원 14개×316백만=4,426백만원
▪ 식품핵심소재	6,765백만원 27개×251백만=6,765백만원	4,966백만원 17개×292백만=2,338백만원
▪ 기자재·신가공	8,167백만원 33개×247백만=8,167백만원	5,691백만원 16개×356백만=5,691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718백만원 31,790×2.3%=718백만원	472백만원 20,509백만×2.3%=47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 식품 R&D는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전체적으로 79.5% 수준으로 추격그룹에 포함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농식품 편이가공(80.5%), 발효식품(77.4%), 기능성식품(76.4%) 및 가공공정(72.0)

○ 식품산업은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족까지 영역 확대 추세

-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에 큰 기여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14년 약 5.3조 달러로 IT(2.9), 자동차(1.7)보다 큰 시장이며, 국내 시장도 164조원에 이르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크나,

- 국내 식품기업의 영세한 기반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확대 필요

* '15년 기준 **식품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6%로 타 제조업(전체 제조업 평균 : 1.6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출처 : 한국은행「2015년 기업경영분석」)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1% 이상 식품기업은 4곳에 불과('16년 금감원 전자공시 분석결과)

○ 최근 부각되는 4차 산업분야와 연계한 식품 가공공정 개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식품기업의 인력부족* 극복 및 성장성 제고

* '15년 기준 식품제조업의 인력부족 비율은 4.6%로 타 제조업(전체 제조업 평균 : 2.0%)에 비해 심각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4,400	32,508	20,981	△11,527	△35.5
▪ 기능성·전통식품 (산출근거)	9,016	6,451 (기일치)4,110백만=13개×316백만×12/12개월 (종료)1,200백만=7개×171백만×12/12개월 (다/상)1,141백만=4개×380백만×9/12개월	5,426 (기일치)2,216백만=6과제×369백만×12/12개월 (종료)3,210백만=11개×292백만×12/12개월	△1,025	△15.9
▪ 식품품질관리 (산출근거)	9,771	10,407 (기일치)2,480백만=8개×310백만×12/12개월 (종료)6,620백만=29개×228백만×12/12개월 (다/상)1,307백만=6개×290백만×9/12개월	4,426 (기일치)2,396백만=7과제×342백만×12/12개월 (종료)2,030백만=7개×290백만×12/12개월	△5,981	△57.5
▪ 식품핵심소재 (산출근거)	7,378	6,765 (기일치)3,329백만=12개×277백만×12/12개월 (종료)2,020백만=10개×202백만×12/12개월 (다/상)1,416백만=5개×378백만×9/12개월	4,966 (기일치)2,338백만=6과제×390백만×12/12개월 (종료)2,628백만=11개×239백만×12/12개월	△1,799	△26.6
▪ 기자재·신가공 (산출근거)	7,461	8,167 (기일치)1,350백만=4개×338백만×12/12개월 (종료)3,850백만=17개×226백만×12/12개월 (다/상)2,967백만=12개×330백만×9/12개월	5,691 (기일치)4,356백만=12과제×363백만×12/12개월 (종료)1,335백만=4과제×334백만×12/12개월	△2,476	△30.3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774	718 (32,508백만×2.3%)	472 (20,981백만×2.3%)	△246	△34.3
□ 비목(합계)	34,400	32,508	20,981	△11,527	△35.5
○ 연구개발출연금-연구활동비 등(360-05)	34,400	32,508	20,981	△11,527	△35.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농림수산식품부 출범('08. 2.)으로 농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본격적인 식품산업 R&D 추진 필요
-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으로 '고부가 식품산업' VIP보고(총리실, '09.5.26)

* 4대 분야(고부가가치 식품·식품소재, 미래수요대응 융·복합기술, 식품안전성 확보, 전통(발효)식품산업 고도화)에 대한 기술로드맵 마련(한식연, '09.4)

-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수립('09. 6.) : 농림기술개발(R&D)사업에서 식품 부문을 분리·확대하여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분야와 지원방식 등으로 차별화하여 추진

- ’11년부터 6대 분야* 18개 핵심기술로 구분하여 투자

* ①기능성강화식품 ②전통웰빙식품 ③식품품질관리 ④식품핵심소재 ⑤식품기자재 ⑥저탄소·신가공

- ’13년부터 자유응모과제 선정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토록 의무화
- ’14년부터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단기·소액과제(1년, 5천만원 이내) 추진
- 식품R&D 중장기계획(’15~’19) 수립(’15.4.)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을 통한 농업의 신수요 창출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16년부터 지정공모·자유응모 관계없이 신규과제 선정 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토록 의무화
- ’17년부터 4대 분야* 18개 핵심기술로 구분하여 투자

* ①기능성·전통식품 ②식품품질관리 ③식품핵심소재 ④식품기자재·신가공

- ’18년 예산을 활용하여 사전기획형 현장애로기술(10억 원 이내), 경쟁형기획 후속지원 과제(5억 원 이내)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고부가가치식품기술 개발	313	376	383	351	344	32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4년 농특회계 세수 부족에 따라 6,633백만원 ‘15년 예산으로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2** (382)	66 (66)	- (-)	449 (449)	**449** (447)	- (-)	- (-)
’16년	**351** (351)	- (-)	- (-)	351 (351)	**351** (348)	- (-)	- (-)
’17년	**344** (344)	- (-)	- (-)	344 (344)	**344** (34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식품산업은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족까지 영역 확대 추세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15년 약 5.6조억 달러로 IT(2.9), 자동차(1.7)보다 큰 시장이며, 2018년 6.3조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사례) 스위스 진사나社는 장기적·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 인삼 추출물의 표준화에 성공하여 인삼 생산없이 가공으로만 40개국 수출, 연 3억 달러 매출 달성

○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1인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세련되고 간편한 1인 식품, 즉석조리 식품 등 간편·편의식품 시장 확대 전망

* 유로모니터, '11년 1인 가구 28,000만 → '20년 33,000만(18%↑) 가구 예측

- 현재의 간편식품은 식사 해결은 가능하나,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고령인구나 취약계층의 섭취가 어려운 문제 상존

○ 웰빙은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로 신선 유기농 식품 및 건강 식재료를 활용한 슬로우·로컬푸드 확대 필요

- 생산 계절성, 지역성에 따른 수급조절 문제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수급·저장관리 및 유통 시스템에 관한 체계 정비가 필요

(5) 사업추진절차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과제(연구팀) 응모 및 신청	◦ 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 - 산.학.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과 제 의 선 정 및 확 정	◦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서면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 ◦ 최종 확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이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검토(전문기관)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전문기관)
⇩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전문기관) ◦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점검
⇩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전문기관)
⇩	
연 구 개 발 결 과 의 활 용	◦ 최종보고서 배포 ◦ 중앙 및 지방시책사업에 반영 ◦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

2.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R&D) (재량, 신규, R&D)

<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 개발(R&D)	-	-	5,631	5,631	순증

* 사업코드 : 20 - 15 - 5 - 100 - 104 - 2800 - 2810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식품산업정책과장(박성우), 사무관(정찬민, ☏ 044-201-21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는 미래 식품소비 트렌드 대응 및 글로벌 신규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 식품전략산업의 新시장창출 및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첨단 식품 가공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혁신 식품 및 소비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식품개발, 천연물기반 식품첨가물 등 개발
사업기간	· '19년 ~ '21년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해당없음
지원조건	· 출연 100%(대기업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매칭)
사업시행주체	· 기업,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소비트렌드 맞춤형 식품개발을 위해 2,500백만원 반영

- **('18년) - 백만원 → ('19년) 2,500백만원**
  - ▪ (신규) 7과제×476백만×9/12개월=2,500백만원

○ **(천연 첨가물 산업화)** 화학첨가물 대체 천연물 기반 첨가물 산업화 연구 지원을 위해 2,969백만원 반영

- **('18년) - 백만원 → ('19년) 2,969백만원**
  - ▪ (신규) 9과제×440백만×9/12개월=2,969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의 기획·평가 등 운영을 위해 162백만원 반영

- ▪ 사업비의 2.3%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 개발	-	5,631백만원
▪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	2,500백만원 (신규) 7개×476백만x9/12
▪ 천연첨가물 산업화	-	2,969백만원 (신규) 9개×440백만x9/12
▪ 기획평가관리비	-	162백만원 (5,469백만×3%)

□ 지원 필요성

○ 소비패턴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미래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식품산업에 대한 국내 핵심역량은 미흡

- 소비패턴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식품에 대한 수요 증대(싱글슈머, 일봉족, 혼밥족, 포미족, 편도족 등)
- 육류, 유제품 소비 증대에 따른 공급 부족 및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체 육류, 인공 우유, 인공 계란 등 대체 신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개발 기술 역량 강화 필요
- '18년 정부 업무보고에 따라 가정간편식, 바이오, 고령친화식품, 푸드테크 산업 등 미래 식품 산업화 수행에 필수 사업

* ‘18년 3,800명에서 ‘22년 24,13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에 맞는 시장 확대 추진

○ 인공 식품첨가소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천연물 기반의 대체 첨가소재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및 경제성은 미흡

- 국내에서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우려로 노케미족·노푸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국제식품규격과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식품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무첨가 식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대 추세

* 해외 식품첨가물 시장 규모는 ‘15년 329억 달러 → 20년 442억 달러로 연평균 3.5% 성장 전망

* 북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첨가 식품 식별표인 ‘클린라벨(Clean-label)’이 부상

- 그동안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색소·향료 등 첨가물 연구를 통해 핵심기술이 일부 개발되었으나 이를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산업화 기술은 미흡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 개발**	**-**	**-**	**5,631**	**5,631**	**순증**
▪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산출근거)	-	-	**2,500** (다/상)2,500백만=7과제×476백만×9/12개월	2,500	순증
▪ 천연첨가소재 산업화 (산출근거)	-	-	**2,969** (다/상)2,969백만=9과제×440백만×9/12개월	2969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산출근거)	-	-	**162** (5,469백만×3.0%)	162	순증
□ **비목**(합계)	**-**	**-**	**5,631**	**5,631**	**순증**
○ 연구개발출연금·연구활동비 등(360-05)	-	-	5,631	5,631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의 ‘19년 일몰 확정(’17.12.)
- 일몰 검토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재기획 추진(‘18.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민간)** 가습기 살균제, 치약 파동, 살충제 계란 등 석유·화학소재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케미포비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전한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

- 기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이슈로 대국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천연자원 유래의 인간친화적인 제품 확보가 시급
- 그간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식품첨가소재로 인해 가공 제품의 색소, 향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

○ **(해외)** 최근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Clean label' 열풍으로 기존 변성 및 합성 식품소재를 천연 원료로 대체하는 추세

* Clean label : 제품 내 함유 성분을 분명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한 것으로, 각종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고 가공을 최소화한 원료로 생산된 제품

○ **(미국)** '11년 설립한 임파서블푸드는 최근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한 대체육 제품을 개발하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17년 뉴욕, LA, 시카고 등 10여 곳의 매장이 운영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

- 식물성 대체고기, 배양육, 저항성 전분 등 새로운 식품에 대한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
- 2050년까지 세계인구는 100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1]되고 이에 따른 육류소비 충당을 위한 환경부담, 대량 사육으로 인한 전염병 등의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육류가 주목
- 육류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은 전세계적인 환경이슈로 대체육류 개발기술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

○ **(일본)** 고령사회, 1인가구 등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춘 편의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 고령자 맞춤형 개호식품 개발에 민간의 R&D 투자가 집중되고 섭취자의 연하능력 맞춤형 적정 식품개발의 단계까지 기술개발을 달성
- 고령자 외에도 영유아, 임산부, 1인가구 등 다양한 소비계층을 타겟으로 한 특수용도식품, 소포장 식품의 개발이 활성화

1) UN 식량농업기구(`15)

(5) 사업추진절차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과제(연구팀) 응모 및 신청	◦ 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 - 산.학.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과 제 의 선 정 및 확 정	◦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서면·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 ◦ 최종 확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이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검토(전문기관)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전문기관)
⇩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전문기관) ◦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점검
⇩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전문기관)
⇩	
연 구 개 발 결 과 의 활 용	◦ 최종보고서 배포 ◦ 중앙 및 지방시책사업에 반영 ◦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

3. 기능성식품산업육성(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2,636	2,636	2,806	170	6.4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4 - 2800 - 2832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식품산업진흥과장(이용직), 사무관(김성만 ☏ 044-201-21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원료등록 컨설팅, 산업활성화 등 체계적 산업 육성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원료등록 컨설팅, 산업활성화 등 체계적 산업육성
사업기간	'09년~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국고 50%, 자부담 50%, ('18)60%→('19)50%)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식품기능성평가** : 식품의 기능성을 규명하여 기능성식품 개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2,606백만원

- '18년대비 지원품목수 증가(40→50개품목), 지원단가 상향(100→120백만원), 국고지원비율 축소(60→50%)

▪ 인체적용前시험 900백만원 : 10품목 × 120백만원 × 50%,

▪ 인체적용시험 1,500백만원 : (1년차) 15품목 × 120백만원 × 50%
(2년차) 10품목 × 100백만원 × 60%

* 지원조건 변경 : ('18) 국고보조 60% → ('17) 50% (단, 18년 선정 사업대상자의 2년차 지원은 60% 적용)

▪ 원료등록지원 125백만원 : 10품목 × 25백만원 × 50%,

▪ 사업관리비 81백만원 : 사업비 2,525백만원 × 3.2%

○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 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 기능성 농식품 자원 및 실태조사 100백만원 : 1회 × 100백만원 × 100%

▪ 농식품 자원 통합DB 운영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 1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사업명	**2,636백만원**	**2,806백만원**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2,106 기능성평가(30품목×100백만원×60%) 원료등록지원(10품목×25백만원×50%) 사업관리비(81백만원)	2,606 기능성평가(40품목×120백만원×50%) 원료등록지원(10품목×25백만원×50%) 사업관리비(81백만원)
▪ 기능성농식품산업 활성화	530 실태조사(1회×100백만원×100%) DB구축(1식×330백만원×100%) 유통판매활성화(1회×100백만원×100%)	200 실태조사(1회×100백만원×100%) DB구축(1식×330백만원×100%)

□ 지원 필요성

○ 기능성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평가, 원료등록컨설팅, 산업활성화 등 체계적 산업육성 필요

* 소재발굴 → 원료표준화 → 인체적용전시험 → 인체적용시험 → 원료등록 → 상품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2,636	2,636	2,806	170	6.4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산출근거)	2,636	2,106 기능성평가(30품목×100백만원×60%) 원료등록지원(10품목×25백만원×50%) 사업관리비 81	2,606 기능성평가(40품목×120백만원×50%) 원료등록지원(10품목×25백만원×50%) 사업관리비 81	500	23.7
▪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산출근거)	-	530 실태조사(1회×100백만원×100%) 통합DB구축(1식×100백만×100%) 유통·판매지원(1회×100백만×100%)	200 실태조사(1회×100백만원×100%) 통합DB 운영(1식×100백만×100%)	△330	62.3
□ 비목(합계)	2,636	2,636	2,806	170	6.4
○ 민간경상보조(320-01)	2,636	2,636	2,806	170	6.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8년 대통령 연두업무 보고 시('08.3.18.) 미래 성장형 핵심 식품기술(발효식품, 고기능성, BT)에 대한 집중 투자계획 보고
-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방안」 마련('09.11.26.)
- 기능성 규명을 위한 인체적용前시험(세포,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지원(~'09년) 및 기능성 원료등록 지원('17년~)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83-4)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등 전략식품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17.7)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기능성식품산업육성	21	25	27	27	26	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7 **(27)**	- (-)	- (-)	27 (27)	27 **(26)**	- (0.8)	- (0.2)
'16년	27 **(27)**	- (-)	- (-)	27 (28)	27 **(28)**	- (-)	- (0.6)
'17년	26 **(26)**	- (-)	- (-)	26 (26)	26 **(26)**	- (-)	- (0.0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 미흡

* 식품기능성평가는 예산집행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단위사업(식품산업육성) 내의 세부사업 중 감액 대상에서 제외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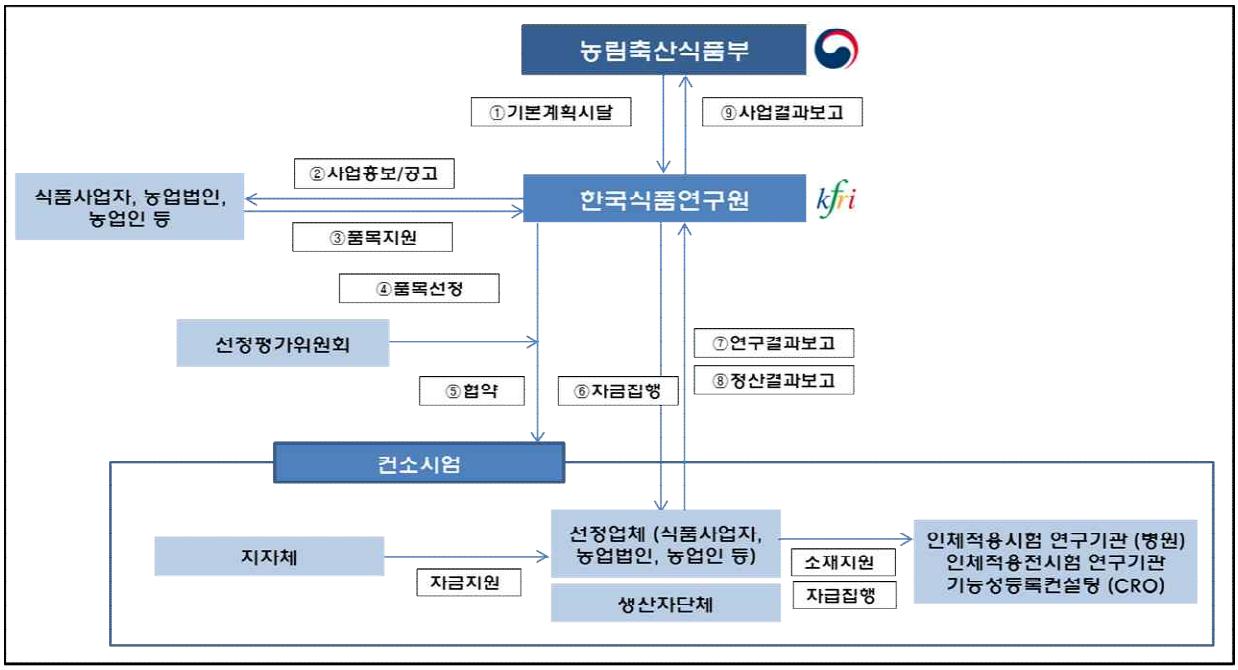

□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계획단계>		<관리단계>		<추진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추진 계약 체결기관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이행, 성과점검 등	➡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DB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예산집행	➡	실태조사 추진, DB운영

4.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재량, 계속, 국정과제, 정보화 포함)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3,303	△25.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4 - 2800 - 2832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식품산업정책과장(박성우), 사무관(정성문☏044-201-211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식품산업 주체 역량 강화 및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식품표준화)** 국내·외 식품표준 규격 제·개정 대응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규격화를 통한 산업 기초인프라 확충 -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청년층 중심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식품·외식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 **(식품외식정보분석)** 식품·외식산업 통계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식품·외식기업 등에 제공 및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유도 등 연계 강화 및 중소 식품기업의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보증보험 지원 -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기 개발된 식품 관련 우수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한 특허거래전문기관 활용 및 기술료 지원으로 식품산업 성장 도모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한 HACCP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가공업체의 위생 품질 경쟁력 제고 필요 - **(식품판로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에 대한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을 통해 농촌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16년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및 민간보조(50~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한국식품연구원, 지자체 등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식품표준화 : 1,100백만원

- 가공식품KS 개발 및 국제표준대응(800), 국제식품규격 대응(100), 원산지인증 제도 운영(200)

○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 1,462백만원

- 교육 인프라 구축(256),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1,206)

○ 식품외식 정보분석 : 1,681백만원

- 국가승인통계조사 3종(697), 식품외식 시장 및 트렌드 조사 (759), 통계정보 전파(225)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 1,700백만원

- 연계 지원 (1,200), 연계 관리 (250),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료 지원 (250)

○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 1,000백만원

- 식품 기술거래이전 인프라구축(200), 전주기 기술이전 지원(500), 성과확산 지원(300)

○ 식품 품질·위생 역량제고 : 1,000백만원

- 품질컨설팅(700), 멘토링(250), 운영·관리(50)

○ 식품판로 지원 : 1,985백만원

- 대한민국 식품대전(1,000), 농공상기업 판로지원(985)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	**13,231백만원**	**9,928백만원**
▪ 식품표준화	**1,187백만원** *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연구(500), 수출전략 식품 CODEX 규격화 및 국제규격 대응(350), 원산지 제도 운영 개선(337)	**1,100백만원** * 가공식품KS 개발 및 국제표준대응(800), 국제식품규격 대응(100), 원산지 인증 제도 운영(200)
▪ 식품기술거래이전 지원	-	**1,000백만원** * 식품 기술거래이전 인프라구축(200), 전주기 기술이전 지원(500), 성과확산 지원(300)
▪ 식품품질·위생 역량제고	-	**1,000백만원** * 품질컨설팅(700), 멘토링(250), 운영·관리(50)
▪ 식품판로지원	-	**1,985백만원** * 대한민국 식품대전(1,000), 농공상기업 판로지원(985)

□ 지원 필요성

○ **(식품 표준화)** 소비자 중심·미래 지향적 농식품 국가표준 개발을 통한 업계의 생산효율·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수출전략식품의 세계규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 원산지인증제를 통한 국산농산물 사용증대 등 국내외 산업경쟁력 강화로 식품산업 성장 기반 구축

- 1인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HMR, 즉석밥 등 시장이 확대되는 품목의 한국산업표준 마련으로 관련 업계 가이드라인 활용
- 고추장 등 전통식품 및 즉석밥 수출증대를 위한 세계규격화 추진 필요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으로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의 제·개정 및 고시, 심의회·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 국제표준화 조사 및 연구 등의 권한이 산자부로부터 농식품부로 위탁

○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희망자(청소년·대학생·대학원생 등)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 필요

- 식품산업의 인력부족률(4.9%)은 전산업 평균(2.9%)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타 산업 대비 취업 희망자의 역량이 낮아 인력난 심각
  * 자료: 식품산업 인력수급 전망 및 교육수요 연구('14.3, 연구용역)
-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기업과 취업 희망자 간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 필요
- 특히 음식료품 산업은 취업유발계수(18.0)가 전산업 평균(12.9)에 비해 높은 특성을 가지므로 맞춤형 인력을 양성시 취업효과 증대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14년 기준)

○ **(식품외식정보분석)** 식품·외식산업은 기업이 직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인구구조·트렌드 변화 등에 민감하나 대다수 기업이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양질의 통계정보를 취득하는데 애로가 있음

  * 식품업/외식업 10인 미만업체 비중('15): 91.9%(53천개) / 97.3%(639천개)

- 중소 식품외식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행태, 트렌드 등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전략수립 및 신제품개발 등 경영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기업계와의 매칭 및 농가 소득·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전 계약재배를 통한 규격생산 지원 필요

- 농가 조직화 및 규격화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비용 발생 불가피

* 균일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법 통일, 비료살포 및 병해충 방제 시기 조절, 수확·저장관리 등 단계별 공동관리를 위한 비용 발생

- 또한, 산업체의 농산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산 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의 식품업계 연계가 필요

* 산업체 쌀 소비량(가공용) : '00) 18만톤 → '05) 32 → '10) 55 → '15) 61

○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식품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R&D 투자가 미흡하여 식품제조업의 원천기술(특허 등)이 낮아, 식품분야 우수 R&D 성과를 보유한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산업적 활용이 절실

- 산·학·연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식품산업 기술 수준 향상 필요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중소식품기업의 위생·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 필요

- 식약처에서 HACCP 적용 품목 확대 등으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가공시설은 자금부족 등으로 HACCP 인증에 애로

* HACCP 적용 확대 품목 :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묵소시지, ⑤음료, ⑥즉석 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⑨순대

○ **(식품판로지원)**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지원 필요

- 매년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업체를 확대해가고 있으나, 동 사업외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

* 2017년도 182개 업체 지정(신규 85, 재지정 97) 등 401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3,303**	**△25.0**
▪ 식품표준화 (산출근거)	1,380	1,187 (가공식품KS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 800, 국제식품규격대응 187, 원산지인증 제도운영 200)	1,100 (가공식품KS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 800, 국제식품규격대응 100, 원산지인증제도운영 200)	△87	△7.3
▪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산출근거)	1,700	1,462 (교육인프라구축 256,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206)	1,462 (교육인프라구축 256,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206)	-	-
▪ 식품외식정보분석 (산출근거)	1,955	1,681 (국가승인통계조사 697, 식품외식시장 및 트렌드 조사 759, 통계정보 전파 및 운영 225)	1,681 (국가승인통계조사 697, 식품외식시장 및 트렌드 조사 759, 통계정보 전파 및 운영 225)	-	-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산출근거)	1,000	1,700 (연계 지원 1,200, 연계 관리 250, 보증보험 250)	1,700 (연계 지원 1,200, 연계 관리 250, 보증보험 250)	-	-
▪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산출근거)	-	-	1,000 (식품 기술거래이전 인프라구축200, 전주기 기술이전 지원 500, 성과 확산 지원 300)	1,000	순증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산출근거)	-	-	1,000 (품질컨설팅 700+멘토링 250+운영50)	1,000	순증
▪ 식품판로 지원 (산출근거)	-	-	1,985 (농공상융합협 중소기업 육성 985, 대한민국 식품대전 1,000	1,985	순증
▪ 농식품 소비정책 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활성화 (산출근거)	1,370	1,178	-	△1,178	순감
▪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 (산출근거)	603	519	-	△519	순감
▪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산출근거)	6,423	5,504	-	△5,504	순감
□ **비목**(합계)	**14,431**	**13,231**	**9,928**	**△3,303**	**△25.0**
○ 민간경상보조(320-01)	10,691	9,291	8,728	△563	△6.1
○ 자치단체보조(330-01)	3,740	3,940	1,200	△2,740	△69.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식품표준화>

-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2(가공식품의 원산지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외식산업진흥법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외식정보분석>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통계법」을 준용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부 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판로지원>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식품표준화>

- 가공식품 표준화 제도('86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91년),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제도('98년) 도입에 따라 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식품표준화 사업 도입('06년)

※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제도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로 변경('08년)

- 정부조직개편으로 식품산업 진흥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08년)과 함께 전통식품 세계규격화를 역점 추진

※ 김치('01년)에 이어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의 코덱스 지역규격화('09년), 인삼제품의 세계규격화 전환작업 승인('13.7) 및 총회 최종 승인('15.7)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개정('15.7)으로 가공식품 산업표준의 제·개정 및 확인·폐지, 심의회 운영, 인증업무 등에 대한 업무가 농식품부로 위탁되어 산업표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 「식품산업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 마련('12.12)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13.3)
  *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인력과, ICT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심의 거침
  → 「식품산업취업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정보화담당관실 정책용역과제 추진(14.1～4)
- '15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식품인력양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 '15.5.26(국무회의) : 각 부처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토록 지시
- '16년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강화" 사업으로 통합, 내역사업으로 추진
-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목표: ('18~'22) 30,730개 일자리 창출

<식품외식정보분석>

- '08.11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발표
  *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농식품 통계·정보 시스템 선진화 추진
- '09.1월 : 식품·외식 정보분석사업 신규 추진
- '10.7월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 신규 오픈
- '11.9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2~'17)」발표
  *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식품통계 기능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통계조사 단계적 추진
- '14.3월 :「'新식품정책 추진계획」발표
  *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규 통계 개발,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 등
- '16.6월~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식품산업 정보자료의 일관성·연속성 확보 및 심층적인 분석·활용 수행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 '14.08.12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기업 참여방안* 발표(제6차 무투회의)
  * 농식품부·해수부 합동 '농수산식품 수출추진 현황 및 확대방안' : MOU 체결, 농가와 식품·수출업체간 상생협력을 확대(정부가 조정자가 되어 기업과 생산자간 원료구매 협의 유도)
- '14.08.20 : 대한상의-농식품부「농식품 수출 및 소비확대 MOU」체결
- '14.09.15 : 대한상의 내「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설치
- '14.10.23 : 농업와 기업의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 '15.03.13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추진방안 마련
- '16년 : 농업-기업 상생협력 예산 반영
- '17년 : 참여 지자체 확대('16. 4개 도→ '17년 10개 시·도)
- '18년 :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도입

<식품기술거래이전지원>

- '17.12. :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8~'22) 수립

  * 출연연·대학 등이 개발한 식품분야 기술이전 지원을 위해 특허거래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 활성화

-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17.12, '18.4, '18.5)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수행기관 및 거래전문기관 공모·지정 등 검토

- 식품분야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18.6)

  * 식품분야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학·연 전문가 간 주요 사례 공유 및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농수산식품기업 지원센터' 시범 운영('11.7~12)을 통하여, 애로 상담・컨설팅 등 실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범 계기, '농수산식품기업 지원센터' 공식출범('12.1.26)

<식품판로지원>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1.9.23) 수립
  * 농어업-식품, 벤처·중소기업-대기업간 동반 성장 체계 구축
  * 식품산업과 농어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연계 지원
  * 융합기업의 제품개발·생산·판매에 필요한 일괄지원체계 구축
- 201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	-	-	126	144	13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126 (126)	- (-)	- (-)	126 (126)	126 (124)	- (1.8)	- (0.2)
'17년	144 (144)	- (1.8)	- (-)	144 (145.8)	144 (141.8)	- (1)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식품 표준화>

○ 일본은 '일본농림규격'(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운영

- 농림수산대신이 농림물자의 종류(품목)을 지정하여 제정
- 사회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고 필요성이 없는 규격 정리를 위하여 기존 JAS 규격을 매 5년마다 검토 수정

○ 중국은 표준인증업무를 총괄하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산하에 표준화를 전담하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S)와 적합성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운영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 **(네덜란드)** 고교에서 직업교육 시작, 실무중심 대학은 식품 기술인력, 연구중심 대학은 연구개발 인력 양성

- 농업·자연·식품부는 직접적 교육제공, 교육인프라 확충, 교육관련 정책수립 등 농식품 관련 교육에 대한 관리 및 지원(지속적 교육내용 갱신, 평생학습 패러다임 구축, 교육의 질 개선, 노동시장 및 학습자 요구에 대응한 교육과정 제공 등)
- 대학과 연구기관이 융합된 와게닝겐 UR을 운영하여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인력 양성

○ **(덴마크)** 소비자 기반의 교육 연구, 정부는 직업교육 담당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컨트롤타워인 농식품위원회 중 농업 및 식품 분과위원회는 식품 정책연구, 교육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농식품 관련 통계자료 제공 등 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양성 및 기반확충 역할 수행
- 식품클러스터와 인력양성을 연계하여 기초연구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학 - 연구소간 역할분담을 통해 고급 R&D 인력 양성

○ **(독일)** 식품산업 인력양성은 직업학교와 대학에서 이루어짐

- **(하우프트슐레)** 제과, 제빵 등 식품관련 전문 기술 인력양성, 도제식 직업교육
- **(대학)** 일반적으로 기초학습과정과 전공과목 학습으로 구성, 전공과목 학습 시 특정분야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심화선택 모듈 운영(강의,세미나,콜로퀴엄, 연습, 실습, 견학 등이 포함, 실습 및 연습이 가장 큰 비중)하며, 폭넓은 기업체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함
- **(자격제도)** 세분화(기능사, 마이스터)하여 저직능 탈피

○ **(일본)** 식품산업 인력양성은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에서 이루어지며,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실무 교육 실시

- **(고등학교)**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 제과, 조리 등 과목에 대한 기본이론 학습, 실습중심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각 교육단계별 체계적 실험·실습 장비 보유하여 실제 제품화 과정에 대한 경험 제공
- **(전문학교)** '60년 설립된 세계적 제과·조리전문학교인 츠지조그룹교에서는 각국 전통 요리 및 제과 등요리전반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및 졸업 시 조리사 면허 취득
- **(대학)** 전문적 식품지식 및 산업체 연계 실무교육을 통한 식품기업 중간관리자 양성에 주안점
- **(기타)** 식의 안전·안심 재단(외식산업 전체교육훈련담당, 대학기부강좌실시) 및 일본 푸드서비스협회(회원사 대상으로 교육과 세미나 운영하며 점장역량강화교육, 신입사원 리더십교육도 포함) 등에서 외식업교육 수행
- **(정부)** 해외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식품산업 전문가를 인재뱅크에 등록하고 해외 현지법인 파견, 조리사를 해외 파견하여 일식 레스토랑 수준 제고, 인력 인증제(밥 소믈리에), 해외식당 종사자 교육, 전문요리학교 등을 통한 글로벌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양성

○ **(호주)** FTAA(Food Technology Association of Australia)는 '49년 식품기술협의회 기반 아래 설립된 국가기구로 식품산업 통계제공, 식품관련 교육기관 인정 및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품질인증 사업

- **(전문직업교육기관(TAFE))** 교육과정이 제빵, 초콜릿 제조 등 전문분야별 특화되어 있으며, 1차농업과 연계한 실용화 과정을 운영,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기술 교육을 위해 현장전문가 중심 실습을 실시하며, 필요 시 교육강사가 산업체 업무에 참여하여 실무지식 익힘, 또한 다양한 교육을 위해 전담 풀타임 교수 외 파트타임, 계약직 트레이너 등을 활용
- **(대학)**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문제해결능력 높여줌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 **(일본)** 계약재배 안정화사업

- 채소법 개정('02.)

- 농가와 기업 간의 안정적인 계약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농가의 계약 거래 위험을 완화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계약채소 안정공급사업' 도입('02) 및 가공용으로 대상 채소 확대('13.)

- 채소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와 기업(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양판점 등) 간 계약거래 장려 및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

▪ 수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 보전 지원 : 지정채소(국가 1/2, 지자체·자부담 각 1/2), 특정채소(국가·지자체·자부담 각 1/3)

▪ 대상 채소 : ① 가격안정대책 지정채소 14개 품목* ② 가공원료용 채소 ③ 간이 처리 채소 등

* 양배추, 시금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양상추, 무, 배추, 당근, 토란, 감자

▪ 대상 계약거래 : ① 생산자-실수요자 간 사전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거래 ② 생산자-중간업자 간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거래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일본)** 식품 품질관리 체제 강화 대책사업

- 식품의 안정성 향상을 추진해 HACCP의 제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내 식품사업자의 인재육성 등 대책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식품 사업자 단체에 의한 안내서 작성을 지원

▪ 위생 품질관리 체계 지원, HACCP 지도자 양성연수 등의 개최, HACCP 안내 강화 등 사업(예산: 137백만 엔('18) / 정액지원)

- 업종별 업무 최적화 실증 사업

▪ 전문가로부터 식품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 최적화 및 인재 육성의 조언을 받는 비용의 전액을 보조(보조금 상한 500만 엔)

<식품판로지원>

○ **(일본)** 농상공연계사업

-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8.)

-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 등이 통상의 상거래를 넘어서 협력하여 판매할 신상품/신서비스의 개발, 생산 및 수요 개척 지원

▪ 국가의 보조금(500만 엔 이내, 보조율 2/3) 및 정부계역의 금융기관에 무이자 융자 등 지원

▪ 지원 요건 : ①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 농림어업자 및 중소기업자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 ③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생산 및 수요 개척 ④ 농림어업자의 경영 개선 및 중소기업자의 경영 향상 실현될 것

(5) 사업추진절차

<식품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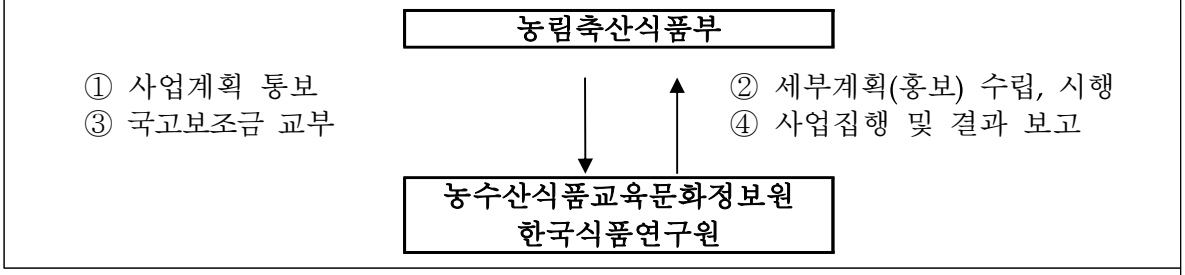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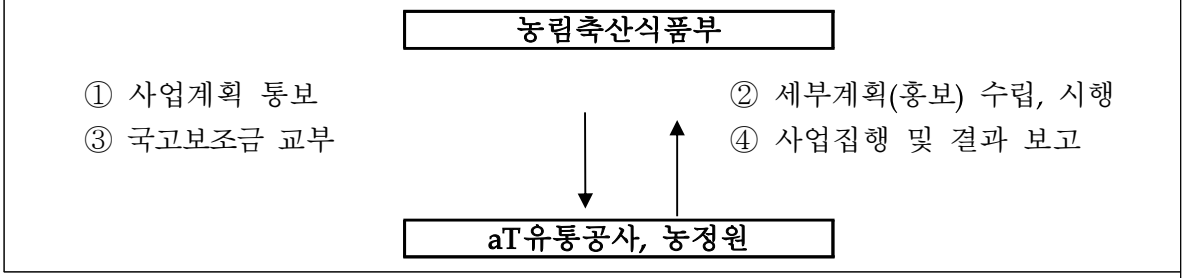

<식품외식정보분석, 식품품질·위생 역량강화, 판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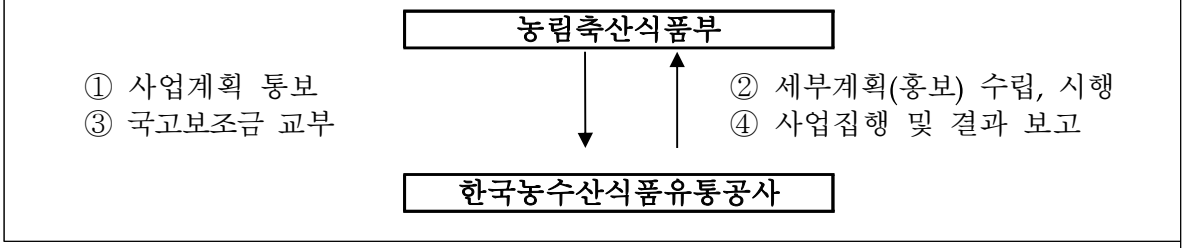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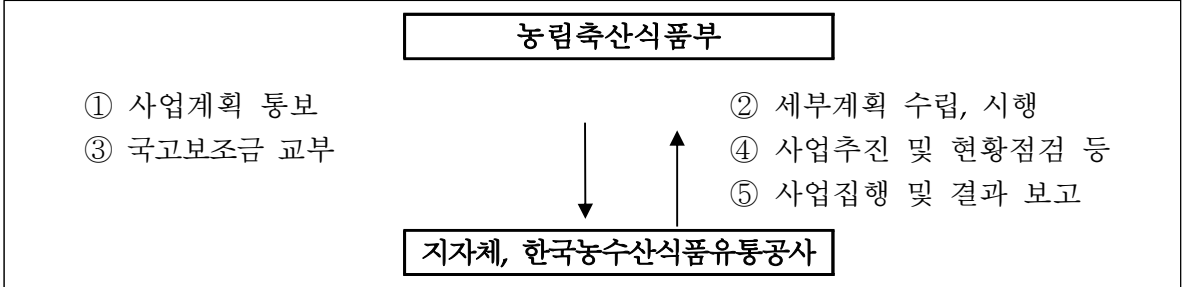

5.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 전략품목육성지원	4,400	3,000	2,700	△300	△10.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4 - 2800 - 2835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수출진흥과장(김민욱), 사무관(정수연, ☏ 044-201-216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2파프리카(인삼・화훼・버섯・유자차・유제품) 및 對중국 검역해소 품목, 우리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對중국 수출 확대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제2파프리카(인삼・화훼・버섯・유자차・유제품)' 및 대중국 검역해소 품목(김치·삼계탕·쌀·포도), 국산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장류·전통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 국내 수출기반조성(상품화), 수출통관애로해소, 현지마케팅 단계별 종합 지원 ・중국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 및 新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공모 사업인 '新비즈니스모델' 창출 사업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 개선
사업기간	'15년~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 ('18) 3,000백만원 → ('19) 2,700백만원

對중국전략품목(10개)에 대해, 중국 시장에 맞는 상품개발 및 新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공모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 개선

- (제2파프리카 품목) : ('18) 4개사업 600백만원 → ('19) 1개 150백만원

  * 제2파프리카품목 : '15년) 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5개 → '16년) 15년과 동일 5개 → '17년~'19년) 버섯 제외 4개품목, 지원율 : 100%

  * (지원단가) : 150백만원(인삼·화훼·유자차·유제품 공통사업)

- (대중국 검역해소품목) : ('18) 4개사업 600백만원 → ('19) 1개 150백만원

  * '16년 검역해소품목 : 쌀, 김치, 삼계탕, 포도, 지원율 : 100%

  * (지원단가) : 150백만원(쌀·김치·삼계탕·포도 공통사업)

- (농산가공) : ('18) 2개사업 300백만원 → ('19) 1개 150백만원

  * '18년 농산가공품목 : 전통주, 면류 등, 지원율 : 100%

- (민간공모) : ('18) 11개사, 1,500백만원 → ('19) 15개사, 2,250백만원

  * 품목군 : 대중국전략품목 10개품목내, 지원율 : 70~8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 전략품목육성지원	**3,000백만원**	**2,700백만원**
▪ 제2파프리카 (인삼, 유자차, 유제품, 화훼)	4개사업, 600백만원 (국비 100%)	1개사업, 150백만원 (국비 100%)
▪ 검역해소 (쌀, 김치, 삼계탕, 포도)	4개사업, 600백만원 (국비 100%)	1개사업, 150백만원 (국비 100%)
▪ 농산가공 (전통주, 면류 등)	2개사업, 300백만원 (국비 100%)	1개사업, 150백만원 (국비 100%)
▪ 新비즈니스모델 (민간공모)	10개사업, 1,500백만원 (국비 80%)	15개사업, 2,250백만원 (국비 70~80%)

□ 지원 필요성

○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은 한중 FTA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 '제2파프리카'와 같은 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 중국은 WTO가입('01.12) 이후 농식품 수입이 **'02년 103.2억불**에서 **'17년 1,259억불**로 급증, 세계 1위 농식품 수입국으로 급 부상
  * 전체 수입 중 농식품 비중 : ('02) 3.5% → ('10) 4.4 → ('14) 5.5 → ('16) 7.3
- 중국의 전체 농식품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기준 **0.8%에 불과**, 확대 가능한 잠재시장이 큰 상황
  * 국가별 비중 : (미국) 20.3%, (브라질) 15.4, (캐나다) 5.1, (태국) 4.6, (뉴질랜드) 4.5 등

○ 전략품목 육성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고, 품목 육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지속 추진해 나갈 필요

○ 농가 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 전략품목육성지원**	**4,400**	**3,000**	**2,700**	**△300**	**△10.0**
▪ 제2파프리카품목 (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1,570** **(4개품목)** ·인삼:450 ·화훼:340 ·유자차:330 ·유제품:450	**600** **(4개품목)** ·인삼:150 ·화훼:500 ·유자차:200 ·유제품:150	**150** (1개사업 공통) ·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450	△75.0
▪ 검역해소품목 (쌀, 김치, 삼계탕, 포도, 장류)	**2,100** **(5개품목)** ·쌀:600 ·김치:600 ·삼계탕:400 ·포도:150 ·장류:350	**600** **(4개품목)** ·쌀:150 ·김치:150 ·삼계탕:150 ·포도:150	**150** (5개품목 공통) · 쌀, 김치, 삼계탕, 포도, 장류	△450	△75.0
▪ 농산가공(장류, 전통주 등)	**730** (2개품목) 730백만원	**300** (2개품목) 300백만원	**150** (2개품목, 공통) 150백만원	△150	△50.0
▪ 新비즈니스모델 (민간공모)	-	**1,500** (10개사)	**2,250** (15개사)	750	50.0
□ **비목**(합계)	**4,400**	**3,000**	**2,700**	**△300**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4,400**	**3,000**	**2,700**	△300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3.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으로 "제2파프리카" 선정 및 육성계획을 발표
- '14.4월, 품목별 전문가들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상품목을 선정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
  * '대중국 수출 전략 품목 발굴' : 검역해소품목(쌀·삼계탕·김치·포도) 및 장류 추가
- 제8차 농수산식품수출개척협의회(4.16일) : 대중국 농식품수출 경쟁력 확대 방안
  * '17년 對중 농식품 수출 18억불 달성 대책 발표(품목별 추진 계획 등)
- 사드대응,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 발표('17.7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 전략품목육성지원	-	-	15	34	44	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사유) 중국 내 고가품 소비 감소, 시중 유통가격 인하 등으로 일부 품목 수요 감소*로 사업량 축소

* 춘절 선물용 심비디움, 고가품 인삼선물 수요 감소, 중국 내 버섯공장 증가 등

○ ('17년 불용사유) 사드 영향으로 인한 對중국 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사업 시기 연기·사업 내용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 축소 등 실집행율 저조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 (15)	- (-)	- (-)	15 (15)	15 (10)	- (-)	- (5)
'16년	34 (34)	- (-)	- (-)	34 (34)	34 (34)	- (-)	- (-)
'17년	44 (44)	- (-)	- (-)	44 (44)	44 (37)	- (-)	- (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지적

- ('15년 결산 예결위) 수출실적 저조 및 홍보비위주의 사업 집행 방식 부적절
- (후속조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상품개발 및 민간공모 방식으로 사업 추진('17)

○ '18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 변경(新비즈니스모델 확대) 의견

- (후속조치) '19년 예산 반영 예정 - '18년) 11개사업 15억 → '19년) 16개사업, 22.5억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미흡 의견

- 중국 사드 사태로 인한 대중국 수출실적 급감으로 수출 목표 미달성
- (후속조치) '19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실시(전년대비 10% 감축), 신남방정책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신시장 개척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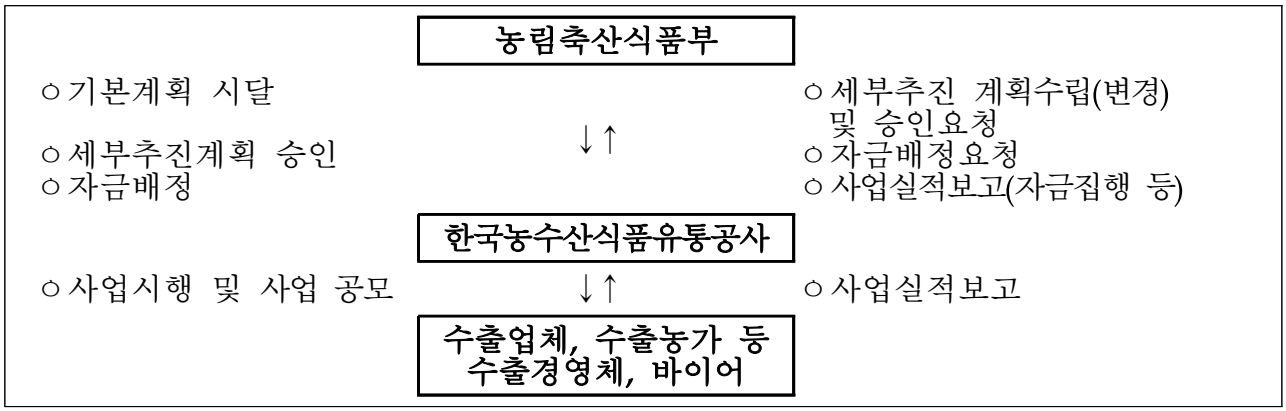

6. 수출인프라강화사업(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출인프라강화	43,478	47,896	43,106	△4,790	△10.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4 - 2800 – 2835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수출진흥과장(김민욱), 서기관(김전호, ☏ 044-201-21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계적인 농식품 수출인프라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 수출 업체에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 및 맞춤형 수출 정보 제공,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FTA 등 개방화에 대응, 해외시장정보조사, 한국 농식품 현지 수출 마케팅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기간	'15년~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50~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해외정보조사 및 제공 : ('18) 4,700백만원 → ('19) 4,500 >

○ 정보조사(30건, 2,900백만원), 시스템 운영(2개, 1,600백만원)

< 수출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 ('18) 3,700백만원 → ('19) 3,700 >

○ 해외공동물류센터 : 2,200백만원

- 냉동ㆍ냉장창고 지원 : 1,880백만원(16.8백만원×112업체)
- 상온창고 지원 : 320백만원(20백만원×16업체)

○ 콜드체인 구축 : 1,500백만원

- 중국지역 : 1,100백만원(30백만원×37업체)
- 아세안지역(신남방정책지역) : 400백만원(27백만원×15업체)

< 수출농식품 홍보 : ('18) 37,646백만원 → ('19) 33,106 >

○ 농식품 홍보관(5개소, 700백만원), 박람회 참가(57회, 8,036백만원)

○ K-FOOD 페어(36회, 6,310백만원)

○ 안테나숍(24개소, 4,060백만원), 재외공관(26개소, 1,100백만원)

○ 온라인·모바일 마케팅(20회, 1,600백만원), 미디어마케팅(36회, 4,200백만원)

○ 해외판촉지원(145회, 5,500백만원)

○ 판매플랫폼 구축지원(7개소, 1,600백만원)

< 민·관 수출협의체 운영 등 : ('18) 750백만원 → ('19) 700 >

○ 수출탑 시상식 : 100백만원(100백만원 × 1회)

○ 수출개척협의회 등 현장간담회 : 600백만원(10백만원 × 60회)

< 외식산업 수출지원 : ('18) 1,100백만원 → ('19) 1,100 >

○ 해외진출 협의체 운영 : 100백만원(20백만원 × 5회)

○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지원 : 1,000백만원(125백만원 × 8회)

구 분	'18예산	'19예산
□ 수출인프라강화	**47,896백만원**	**43,106백만원**
▪ 해외정보조사 및 제공	**4,700백만원** · **2,900**(정보조사 30건×97) · **1,800**(시스템운영 2식×900)	**4,500백만원** · **2,900**(정보조사 30건×97) · **1,600**(시스템운영 2식×800)
▪ 수출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3,700백만원** · **2,200**(냉동냉장: 112업체×21 ×80%, 상온: 32업체×20×50%) · **1,500**(63업체×30×80%)	**3,700백만원** · **2,200**(냉동냉장: 112업체×21 ×80%, 상온: 32업체×20×50%) · **1,500**(63업체×30×80%)
▪ 수출농식품 홍보	**37,646백만원**	**33,106백만원**
·농식품홍보관	· **700**(5개소×140)	· **700**(5개소×140)
·국제박람회참가지원	· **8,036**(57회×141)	· **8,036**(57회×141)
·K-Food페어	· **8,600**(40회×215)	· **6,310**(36회×175)
·해외안테나숍 운영	· **4,560**(24개소×238×80%)	· **4,060**(24개소×212×80%)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홍보	· **2,100**(50개소×42)	· **1,100**(26개소×42)
·온라인·모바일마케팅	· **1,600**(20회×80)	· **1,600**(20회×80)
·미디어홍보	· **4,900**(36회×136)	· **4,200**(36회×117)
·지자체공동마케팅	· **1,350**(15개소×90)	-
·해외판촉지원	· **5,800**(145회×50×80%)	· **5,500**(145회×47×80%)
·판매플랫폼 구축·지원	-	· **1,600**(7개소×229)
▪ 만관 수출협의체 운영 등	**750백만원**	**700백만원**
·수출개척협의회	· **650**(65회×10)	· **600**(60회×10)
·수출탑시상식	· **100**(1회×100)	· **100**(1회×100)
▪ 외식산업 수출지원	**1,100백만원**	**1,100백만원**
·해외진출협의체운영	· **100**(5회×20)	· **100**(5회×20)
·외식프랜차이즈박람회	· **1,000**(8회×125)	· **1,000**(8회×125)

□ 지원 필요성

○ 우리 농식품 중소수출업체의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 지원 추진 필요

○ 대부분의 중소식품수출업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할 때, 해외정보조사, 물류인프라, 해외 거래선 발굴지원, 해외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이 절실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수출인프라강화	**43,478**	**47,896**	**43,106**	**△4,790**	**△10.0**
▪ 해외정보조사 및 제공 (산출근거)	**4,492** (정보조사27건, 2,692, 시스템운영 2개 1,800 백만원)	**4,700** (정보조사30건 2,900, 시스템운영 2개 1,800 백만원)	**4,500** (정보조사30건 2,900, 시스템운영 2개 1,600백만원)	△200	△4.3
▪ 콜드체인구축 (산출근거)	**3,700** (해외공동물류센터 50개소 2,200, 냉장·냉동운송지원 5개국 1,500백만원	**3,700** (해외공동물류센터 50개소 2,200, 콜드체인 구축 1개국 1,500백만원)	**3,700** (해외공동물류센터 50개소 2,200, 콜드체인구축 1개국 1,500백만원)	-	-
▪ 수출농식품홍보 (산출근거)	**31,436** (홍보관 5개소 700, 박람회 57회 7,936, K-FOOD 페어 40회 8,600, 안테나숍 18개소 4,100, 재외공관 50개소 2100,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8개소 1,600, 미디어마케팅 20회 4,900, 지자체 공동마케팅 15회 1,500 백만원)	**37,646** (홍보관 5개소 700, 박람회 57회 8,036, K-FOOD 페어 40회 8,600, 안테나숍 24개소 4,560, 재외공관 50개소 2100,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8개소 1,600, 미디어마케팅 20회 4,900, 지자체 공동마케팅 15회 1,350, 해외판촉지원 145회 5,800백만원)	**33,106** (홍보관 5개소 700, 박람회 57회 8,036, K-FOOD 페어 36회 6,310, 안테나숍 24개소 4,060, 재외공관 26개소 1100,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20회 1,600, 미디어마케팅 36회 4,200, 해외판촉지원 145회 5,500, 판매플랫폼 구축 지원 7개소 1,600 백만원)	△4,540	△12.1
▪ 외식산업수출지원 (산출근거)	**3,100** (식문화홍보 12회 2,000, 해외진출협의체 운영 100,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10회 1,000 백만원)	**1,100** (해외진출협의체운영 100, 외식프랜차이즈박람회 10회 1,000)	**1,100** (해외진출협의체운영 100, 외식프랜차이즈박람회 8회 1,000)	-	-
▪ 민관수출협의회운영 등 (산출근거)	**750** (개척협의회 등 520, 수출탑시상식 100)	**750** (수출개척협의회 등 운영 65회 650, 수출탑시상식 100)	**700** (수출개척협의회 등 운영 60회 600, 수출탑시상식 100)	△50	△6.7
□ 비목(합계)	43,478	47,896	43,106	△4,790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41,978	46,546	43,106	△3,440	△7.4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500	1,350	-	△1,350	순감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88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독일 베를린 농업박람회에 처음 참가하기 시작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박람회 참가사업으로 추진
- '95년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및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사업 본격 추진
- 2015년 사업개편을 통해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신설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수출인프라강화	-	-	380	501	435	47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7년 실집행)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진행되었으나,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 사드문제로 인한 반한감정 등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일부사업 취소) 및 입찰차액 등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0 (380)	- (-)	- (-)	380 (380)	380 (380)	- (-)	- (-)
'16년	501 (501)	- (-)	- (-)	501 (501)	501 (490)	- (-)	- (11)
'17년	435 (435)	- (-)	- (-)	435 (435)	435 (383)	- (-)	- (5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 단계적 감축(3년간 10%) 의견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미흡 의견

- 중국 사드 사태로 인한 대중국 수출실적 급감으로 수출 목표 미달성
- (후속조치) '19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실시(전년대비 10% 감축), 신남방정책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신시장 개척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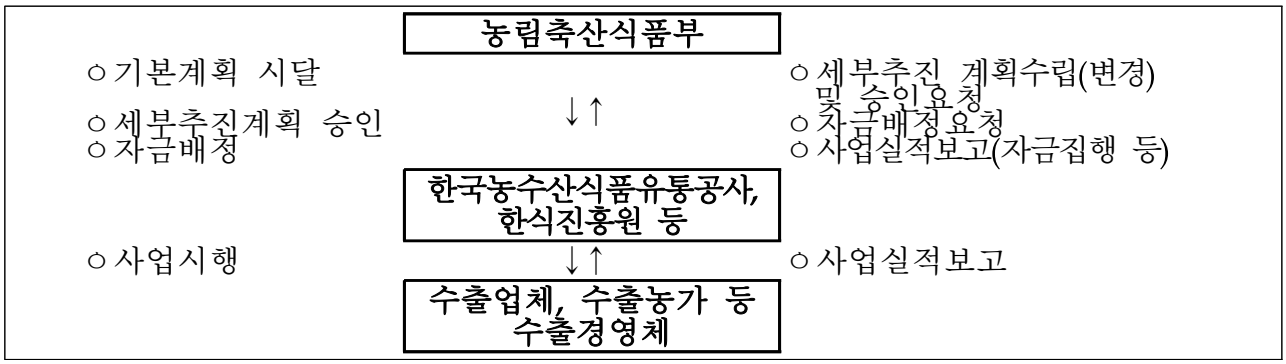

7.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8,420	8,420	7,578	△842	△10.0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4 - 2800 - 2835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수출진흥과장(김민욱), 사무관(이세환, ☏ 044-201-217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세안, 인도, 몽골, 폴란드 등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추진, 중동·동남아 등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정·운영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추진
사업기간	'17년~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80~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개척플랫폼구축, 수출전략형제품 인큐베이팅)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 5,030백만원(보조 100%)

○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 1,270백만원(보조 80%)

○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 1,278백만원(보조 1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농식품수출시장대변화	**8,420백만원**	**7,578백만원**
▪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6,470** · 현지요원팀, 시장개척단 파견 등 (5개권역×2개국가×575백만원× 100% = 5,750백만원) · 프론티어업체 현지 마켓 테스트, 맞춤형 홍보전략수립 지원 (5개권역×3개업체×60백만원× 80% = 720백만원)	**5,030** · 현지요원팀, 시장개척단 파견 등 (5개권역×2개국가×460백만원× 100% = 4,600백만원) · 프론티어업체 현지 마켓 테스트, 맞춤형 홍보전략수립 지원 (5개권역×3개업체×36백만원× 80% = 430백만원)
▪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1,950** · 권역별 소비자 선호부합제품개선 지원 (5개권역×3개품목×100백만원× 80% = 1,200백만원) · 제품화지원 (5개권역×3개품목×62.5백만원× 80% = 750백만원)	**1,270** · 권역별 소비자 선호부합제품개선 지원 (5개권역×3개품목×65백만원× 80% = 780백만원) · 제품화지원 (5개권역×3개품목×41백만원×80% = 490백만원)
▪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	**1,278** · 지원센터 운영 1개소(인증지원, 할랄 관련 수출정보제공, 인력양성 등 수행) (1×1,278백만원×100% = 1,27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우리 농식품 시장은 일본, 미국, 중국으로 수출이 약 50%가 편중되어 있어 대외변수로 인한 수출액 변동 위험이 큰 상황으로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액 변동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지원 필요

○ 기존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은 초기 수출 이후 수출을 확대하기 용이하나, 네트워킹·전략형 제품개발 지원 등 신규 시장개척 기능은 다소 미흡

- 시장 개척 역량이 부족한 중소 농식품 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신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집중적 지원 사업 운영 필요

○ 권역별로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개발-제품화-생산시설 지원), 개척단 파견을 통한 진출 여건 조성 지원 등을 통해,

- 아세안, EU, 중동 시장에서 프리미엄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 선점 필요

○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관련 수출정보 제공, 인증 획득 지원 및 한국형 표준 관리, 인력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8,420**	**8,420**	**7,578**	**△842**	**△10.0**
▪ 시장개척플랫폼 구축운영 (산출근거)	6,470	6,470 (현지요원팀 운영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5개권역 × 2개국가 × 575백만원 × 100% = 5,750백만원) (프론티어업체 현지 마켓테스트, 맞춤형 홍보전략수립 지원 5개 권역 × 3개 업체 × 60백만원 × 80% = 720백만원)	5,030 (현지요원팀 운영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5개권역 × 2개국가 × 460백만원 × 100% = 4,600백만원) (프론티어업체 현지 마켓테스트, 맞춤형 홍보전략수립 지원 5개 권역 × 3개 업체 × 36백만원 × 80% = 430백만원)	△1,440	△22.3
▪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산출근거)	1,950	1,950 (권역별 소비자 선호부합제품개선 지원 5개권역 × 3개품목 × 100백만원 × 80%) (제품화지원 5개권역 × 3개품목 × 62.5백만원 × 80%)	1,270 (권역별 소비자 선호부합제품개선 지원 5개권역 × 3개품목 × 65백만원 × 80% = 780백만원) (제품화지원 5개권역 × 3개품목 × 41백만원 × 80% = 490백만원)	△680	△34.9
▪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산출근거)	-	-	1,278 (지원센터 운영 1개소×1,278백만원 ×100% = 1,278백만원)	1,278	-
□ **비목**(합계)	8,420	8,420	7,578	△842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8,420	8,420	7,578	△842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 (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농식품 수출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이에 관련한 예산 수립이 불가피

  · 아세안·유럽·중동 등 기존 권역 內 수출 약진이 필요한 국가와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규 권역 內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심으로 지원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	-	-	-	84	8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7년 불용사유) 사업 초기 시행 및 미개척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불용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84 (84)	- (-)	- (-)	84 (84)	84 (64)	- (-)	- (2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미흡 의견

- 중국 사드 사태로 인한 대중국 수출실적 급감으로 수출 목표 미달성
- (후속조치) '19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실시(전년대비 10% 감축), 신남방정책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신시장 개척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 사업시행지침 - 자금배정 등	➡	- 세부시행계획 마련 - 지원대상자선정 - 자금지원 - 결과보고 등	➡	- 성과점검 및 보완 등

8.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재량, 계속)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1,734	12,056	21,378	9,322	77.3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4 - 2800 - 2836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황규광), 사무관(김양일, ☏ 044-201-218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일정 지역에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R&D와 수출 중심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R&D 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구축 및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 투자 유치 비용 지원
사업기간	'09년~계속
총사업비	5,535억원('18년까지 기투자액: 1,016) * 건축비(648억)만 총사업비 관리대상('18년까지 기투자액 : 648억원)
사업규모	1개소(전북 익산, 산업단지 232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기업지원 시설 및 장비: 국고 100% - 기업지원 서비스, 투자유치·홍보 등 : 국고 90%, 지방비 1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북도, 익산시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기업지원 시설 구축 : 3,864백만원

- 원재료 중계·공급 기반 및 기능성식품 제형 연구센터 구축 등 사업 확대, '18년 대비 109% 증액
- 산출내역: 장비구축비 1,850백만원 × 100%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기반 구축 설계비 1,000백만원 × 100%
  기능성식품 제형 연구센터 구축 설계비 1,000백만원 × 100%
  인력 증원(7명) 컴퓨터 등 사무기기 14백만원 × 100%

○ 기업지원 S/W사업 : 5,490백만원

- 지원조건 변경 등 국비 지원율 상승에 따른 '18년 대비 80% 증액
- 산출내역 : 원료·인력·마케팅 지원 1,000백만원 × 90%
  기업공동 기술개발 40백만원 × 90% × 100개
  국제공동 기술개발 275백만원 × 90% × 4개

* 지원조건 변경 : ('18) 국고보조 50% → ('19) 90%

○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 3,420백만원

- 지원조건 변경 등 국비 지원율 상승에 따른 '18년 대비 80% 증액
- 산출내역 :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720백만원 × 90%
  투자컨설팅 자문단 운영 140백만원 × 90%
  투자유치 및 기관홍보 900백만원 × 90%
  입주기업 활성화 1,190백만원 × 90%
  국제포럼 150백만원 × 90%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250백만원 × 90%
  청년 식품창업 Lab 운영 450백만원 × 90%

* 지원조건 변경 : ('18) 국고보조 50% → ('19) 90%

○ 시설 운영관리비 : 3,694백만원

▪ 지원조건 변경 등 국비 지원율 상승에 따른 '18년 대비 44% 증액

▪ 산출내역: 위탁사업비 131백만원 × 90% × 12개월

공공요금·제세 등 120.8백만원 × 90% × 12개월

시설장비 유지비 73.1백만원 × 90% × 12개월

정보화시스템 구축 200백만원 × 90%

* 지원조건 변경 : ('18) 국고보조 50% → ('19) 90%

○ 지원센터 운영 : 4,910백만원

▪ 지원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84% 증액

▪ 산출내역: 인건비 67.2백만원 × 90% × 55명

일반수용비, 여비 등 120.8백만원 × 90% × 12개월

시설장비 유지비 73.1백만원 × 90% × 12개월

신규인력 인건비 17.3백만원 × 90% × 7명

* 지원조건 변경 및 인력 증원 : ('18) 국고보조 50% → ('19) 90%, 7명 증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2,056백만원**	**21,378백만원**
▪ 기업지원시설 구축	1,850백만원	3,864백만원 * (신규) 원재료 중계·공급 기반 구축 설계비 1,000백만원 * (신규)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구축 설계비 1,000백만원 * 인력증원(7명)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14백만원
▪ 기업지원 S/W사업	3,050백만원	5,490백만원 * 지원조건 변경: 국비 50% → 90%
▪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1,900백만원	3,420백만원 * 지원조건 변경: 국비 50% → 90%
▪ 시설 운영·관리비	2,573백만원	3,694백만원 * 지원조건 변경: 국비 50% → 90%
▪ 지원센터 운영	2,668백만원	4,910백만원 * 지원조건 변경: 국비 50% → 90% * 인력증원(7명)에 따른 인건비 반영 109백만원
▪ 추진단 운영비	15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은 식품 생산시설과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진국과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

- 박근혜 정부 전북지역 공약사업('12.12. 대선) 및 140대 국정과제('13)
- VIP 지시사항('14.11.) 이행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과제('14), 지역전략 육성산업 규제프리존 지정·운영('16.3.)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조성되는 유일한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서,

- 기술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One-Stop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식품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

○ 식품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운영

- 식품기업의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술지원센터*와 3개 기업지원시설** 제공

* 기술지원센터 : 식품품질안전, 기능성평가지원, 식품패키징

** 기업지원시설 : 지원센터, 파일럿프랜트, 식품벤처센터

○ '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17.7)**** 등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성공적 이행 및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생태계 기반조성**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하는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 대표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육성 및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19년은 기업유치 확대 및 입주기업 가동이 본격화 되면서 전문 인력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식품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필요

- 입주기업(150여개) 대상 기술지원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노력
-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으로 기업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입주기업 가시적 성과를 도출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産室)로 육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사업명	**11,734**	**12,056**	**21,378**	**9,322**	**77.3**
▪ 기업지원시설 구축	1,850	1,850 (국비 100%)	3,864 (국비 100%)	**2,014**	**108.9**
▪ 기업지원 S/W사업	3,422	3,050 (국비 50%)	5,490 (국비 90%)	**2,440**	**80.0**
▪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1,683	1,900 (국비 50%)	3,420 (국비 90%)	**1,520**	**80.0**
▪ 시설운영 관리비	2,391	2,573 (국비 50%)	3694 (국비 90%)	**1,121**	**43.6**
▪ 지원센터 운영	2,374	2,668 (국비 50%)	4,910 (국비 90%)	**2,242**	**84.0**
▪ 추진단 운영	14	15 (국비 100%)	-	**△15**	**△100**
□ 비목(합계)	**11,734**	**12,056**	**21,378**	**9,322**	77.3
○ 국내여비(220-01)	12	12	-	△12	순감
○ 국외업무여비(220-02)	2	3	-	△3	순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260	10,191	-	△10,191	순증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460	1,850	-	△1,850	순증
○ 민간경상보조(320-01)	-	-	**17,514**	17,514	순증
○ 민간자본보조(320-07)	-	-	**3,864**	3,864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추진경위

- 제1차 균형발전 정책보고회 '식품클러스터 조성방향' VIP 보고('07.11.27.)
-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5개 지자체 신청)에서 전북도 선정('07.12.17.)
- '08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계획 보고('08.3.18.)
- 국가식품클러스터 최종입지(익산) 및 기본계획 발표('08.12.26.)
- 신성장 동력 과제(신기술 융합형 식품산업) 선정('09.1.)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대통령 보고('09.1.)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09.11.5.)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수립(LH공사, '10.12.~'11.12.))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11.2.)
- 국가식품클러스터 6개 기업지원시설* 설립기본계획 수립('12.3.)

* 식품기능성평가센터·품질안전센터·패키징센터·파일럿플랜트·식품벤처센터·지원센터

- 국가식품산업단지 지정('12.6., 국토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12.7.)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박근혜 정부 전북지역 공약에 포함('12.12.)
- 국가식품클러스터 6개 기업지원시설 준공 및 지원센터 이전(과천→익산)('16.9.)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17.7.)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조성(국가식품클러스터 본격 운영으로 식품·외식산업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50개 기업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17.12.)
- '18년 4월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5대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 선정
- '18년 12월 현재까지 식품기업 66개사(국내 65, 해외 1), 연구소 4 분양완료

* 기 착공 27개사(20개 준공완료) 향후 착공 예정: 38개사

** 벤처센터내 벤처기업 38개사 계약(29개 입주) / 청년창업 Lab 지원: 21개팀(5개팀 창업)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34	348	100	167	117	12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0 (328)	228 (-)	- (-)	328 (328)	328 (328)	- (-)	50 (-)
'16년	167 (167)	- (-)	- (-)	167 (167)	167 (167)	- (-)	- (-)
'17년	117 (117)	- (-)	- (-)	117 (117)	117 (117)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예정처, '16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사항) 당초 투자협약을 맺은 국내 선도기업의 입주를 촉진시켜 본격적인 클러스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자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조치사항) 입주기업에 대한 R&D 및 원료확보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One-stop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식품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강화로 기업입주 촉진 적극 노력

○ 국회 상임위, '17년 예산안 검토

- (지적사항) 입주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강화, 국내외 주요 투자유치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신규 투자기업 발굴 및 유망 식품기업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조치사항) 국내외 지역별 투자설명회, 주요 식품박람회 투자유치관 운영, 유관기관(KOTRA, aT 등) 네트워크 협업, 인센티브 강구 및 기업 One-stop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 유치 성과를 제고
- (지적사항) 지원센터 및 입주기업 직원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내버스 노선수 확대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 (조치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확보와 식당시설 개선 등 입주기업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 **국회 상임위·예결위, '18 예산안 검토**

- **(지적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시설·장비구축, 센터 인력증원, 제형기반 구축 등 예산 투자 확대 필요
- **(조치사항)** 미래식품 소비트렌드인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제형기술센터 건립 설계비가 '19년 예산으로 반영
  - · 다만, 국클지원센터 인력증원은 일부(7명) 반영되어, 식품 R&D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의 장비가동률 제고, 법적 필수인력 확보, 국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인력 증원이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외사례 >

○ Food Valley(푸드밸리, 네덜란드)

- 와게닝겐 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결합된 대표적 식품 수출 클러스터
  - · 2000년 클러스터 로드맵 발표 이후 단기간에 세계적 클러스터로 성장
- 유럽 물류중심지인 입지를 활용하여 수입 원료를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수출
  - · 70여개 식품기업, 20여개 연구소, 1,000여개 연관업체가 입주하여 연 460억 유로 매출

* Unilever, Danone, Monsanto, Heinz 등 세계적 기업 참여

○ Öresund Cluster(외레순클러스터, 덴마크-스웨덴)

- Öresund 대학과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간 혁신적 R&D 체계 구축
  - · 연 480억불 매출, 61,000명 직접 고용

* Nestle, ARLA, TetraPak, Danish Crown Beauvais 등 세계적 기업 참여

- Proviva 브랜드(건강기능식품)는 기업과 농업인이 상생(win-win)하여 상업화한 사례(연 600억원 매출)

< 국내사례 >

○ 오송생명과학단지

- 조성기간 : 2003 ~ 2010년(8년간)
- 총사업비 : 6,636억원
- 조직 : 보건복지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2개팀 18명) 직제 신설
- 첨단 바이오 보건의료복합단지 조성
  · 국내외 바이오 관련 우수 업체 및 연구소 유치
  · 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일원화
  · 식약청 등 보건의료 관련 국책기관 이전
- BT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시설 등 인프라 구축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08.12	농식품부	· 한미 FTA국내 보완대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선정	'08.12	농식품부	· 사업대상지 공모를 통해 전북 익산을 선정
⇓			
예비타당성 조사	'09.11	기획재정부	· 5,535억원 사업지원계획 확정
⇓			
산업단지 지정	'12.6	국토해양부	·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			
연도별 사업비 집행 기본계획 수립	전년 12월	농식품부	· 농식품부에서 전북도, 익산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전북, 지원센터)
⇓			
연도별 사업비 집행 세부추진 계획 수립	매년 1월	지자체 국클지원센터	·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을 근거하여 전북(익산시)과 협의 등을 통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추진	연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는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			
중간점검 및 완료후 사업비 정산	사업 완료 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실시 및 농식품부 보고

참고 1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체계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 중계·공급 가능한 비축(저장)시설 및 공급연계 시스템 기반 구축

□ **'19년 예산 : 1,000백만원**('21년까지 국고보조 총액 19,500백만원)

○ (필 요 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기업에게 안정적인 농식품 원재료를 적기에 중계·공급하기 위한 원료 중계·비축·공급 센터 기반 구축

* 추진경위: 입주기업 등 의견수렴('17.7월, 12월)→원료 공급센터 구축방안 회의('17.9.6, '18.1.4, 1.12, 2.12, 3.21)→연구용역 결과(~'18.3월)

* 비용대 편익(B/C)은 공공성 및 정책성을 포함하여 1.16으로 경제성·사업타당성 확보

○ (기대효과) 중소(입주기업의 93%) 식품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과 국내 식품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원료 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업인 소득 증대 기여

* 입주기업 원가절감, 품질경쟁력 강화, 식품기업과 농가의 예측가능 수급 시스템 구축,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기간	'19~21년(3년)	지원대상	입주기업, 농업인, 전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지원조건	국비 100% * 부지매입비 별도(지자체)		
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라북도·익산시		
사업 추진방향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에게 꼭 필요한 비축(저장)시설 및 공급연계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효과	1년차에는 787명 직간접 고용효과 창출, 4년차에는 1,008명 * 정규직: ('22년) 7명→('25년) 10명이상 ** 일용직/간접고용(연간일수): ('22년) 600명/180명→('25년) 750/248		

□ **예산 세부내역**

(백만원)

○농식품 원재료 비축·공급센터 설계 용역	('19) 1,000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기업수요·원료정보연계 전산시스템 구축	('20) 400	* 원료 정보 연계 전산시스템 구축
○농식품 원재료 비축·공급 센터 구축	('20~21) 18,100	* 저온창고, 냉동창고, 단순전처리시설 등 ·건축:약 13,834㎡, 부지: 약 30,000㎡내외

참고 2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

❖ (기능성)식품의 평가와 선택에 있어 소비자가 가장 중시하는 식품 제형기술에 대한 기업지원 역량구축 및 기업지원 수행

□ **'19년 예산 : 1,000백만원**('22년까지 국고보조 총액 17,640백만원)

○ (필 요 성) 기능성 식품의 제형은 제품의 성공적 상품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점차 중요시 되고 있음(예: 정관장 에브리타임)

○ (기대효과) 제형기술 플랫폼 구성을 통한 농생명 원료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구축, 중소·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식품산업 역량강화 및 미래대응 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 효과) 약 386명의 고용효과 창출(직접고용 27, 간접고용 359)

□ **사업개요**

사업기간	'19~22년(4년)	지원대상	기능성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 중소기업, 일반 중·소 식품기업
지원조건	국비 100% * 부지매입비 별도(지자체)		
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사 업 추진방향	입주기업을 위한 제형관련 기능성 테스트, 제형 적합성 평가 등 제형기술 지원기반 구축		
일 자 리 창출효과	약 386명의 고용효과 창출(직접고용 27, 간접고용 359) * 수행산업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유발계수 적용 및 투자대비 매출기대 증가액 감안		

□ **예산 세부내역**

(백만원)

○기능성 식품 제형기술센터 설계 용역	('19) 1,000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기능성 식품 제형기술센터 구축	('20~21) 9,000	* 건축: 약 5,160㎡, 부지: 약 10,000㎡내외
○기능성 식품 제형관련 장비도입	('21~22) 7,640	* 55종 약 126개

9. 푸드서비스 선진화(재량, 계속, 국정과제)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푸드서비스 선진화	1,800	1,450	1,350	△100	△6.9

* 사업코드 : 20 - 15 - 4 - 100 - 104 - 2800 - 2837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외식산업진흥과장(이재식), 사무관(도경록, ☏ 044-201-21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푸드페스타 개최를 통해 외식산업의 질적 성장 및 외식업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푸드페스타 및 캠페인 개최 등
사업기간	· '17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5개소 운영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50개소 지원 · 푸드페스타&캠페인 개최 등
지원조건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국비 70%, 자부담 30%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개소당 500만원 지원, 지원액의 2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푸드페스타&캠페인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비 700백만원

▪ 산출내역 : 200백만원 × 5개소 × 70%

○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를 위한 사업비 250백만원

▪ 산출내역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개소당 5백만원 × 50개소

* 기존 레스마켓 설치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

○ 푸드페스타&캠페인 개최 :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페스타&캠페인 개최 사업비 400백만원

▪ 산출내역 : (푸드페스타&캠페인 개최 350백만원×100%) + (외식업 경진대회 50백만원×10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푸드서비스 선진화	**1,450백만원**	**1,350백만원**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700 - 청년키움식당 200백만×5개소×70%	700 - 청년키움식당 200백만×5개소×70%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250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10백만×20개소×50%) - 레스마켓 설치지원(5백만×40개소×50%) - 식재료총서 제작 50백만	250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개소당 5백만×50개소) * 레스마켓 설치지원과 통합운영
▪ 푸드페스타&캠페인		400 - 푸드페스타&캠페인 개최(350백만×100%) - 외식업 경진대회(50백만×100%)
▪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	500 - 경영역량 강화 교육(30회×12.5백만×80%) - 지구단위 외식업 활성화(1회×200백만×100%)	

□ 지원 필요성

○ 청탁금지법 시행('16.9),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 변화로 외식업체의 매출 감소, 고용 감소, 폐업률 증가 등 경영 위축 심화

- 푸드페스타 개최 및 외식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외식소비를 활성화 하고, 창업인큐베이팅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통해 외식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외식업의 수익성 개선 등 산업성장 촉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푸드서비스 선진화	1,800	1,450	1,350	△100	△6.9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100 (1개소×200백만×50%)	700 (5개소×200백만×70%)	700 (5개소×200백만×70%)	-	-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200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20개소×10백만×50%) + 레스마켓 (40개소×5백만×50%)	250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20개소×10백만×50%) + 레스마켓 설치지원(40개소×5백만×50%) + 식재료총서 발간(1식×50백만×100%)	250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50개소×5백만) * 레스마켓 설치지원과 통합운영	-	-
▪ 푸드페스타&캠페인	-	-	400 푸드페스타&캠페인 개최(350백만×100%)+ 외식업 경진대회(50백만×100%)	400	순증
▪ 외식업 경영안정화	-	500 경영역량 강화 교육(30회×12.5백만×80%) + 자구단위 외식업 활성화(1회×200백만×100%)	-	△500	순감
▪ 평창올림픽 내외국인 음식관광 기반조성	1,500 (1개소×3,000백만×50%)	-	-	-	-
□ 비목(합계))	1,800	1,450	1,350	△100	△6.9
○ 민간경상보조(320-01)	300	1,450	1,350	△100	△6.9
○ 자치단계경상보조(330-01)	1,500	-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외식산업 진흥법 제6조(창업의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외식산업 진흥법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외식산업 진흥법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11.3월)으로 외식산업 육성 근거 마련
- 외식산업포럼을 통해 주요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11.3~12월)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시행('11.9월)
-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12.1월)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신규 추진('12)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 추진('13)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소비확대 유도('13)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신규 추진('17)
- 외식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 수립·시행('17.3월)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푸드서비스 선진화	-	-	-	-	18	1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18 **(18)**	- (-)	- (-)	18 (18)	18 **(18)**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17 농해수위)

- 경영역량 강화 교육 사업 물량 확대 필요, 레스마켓 설치지원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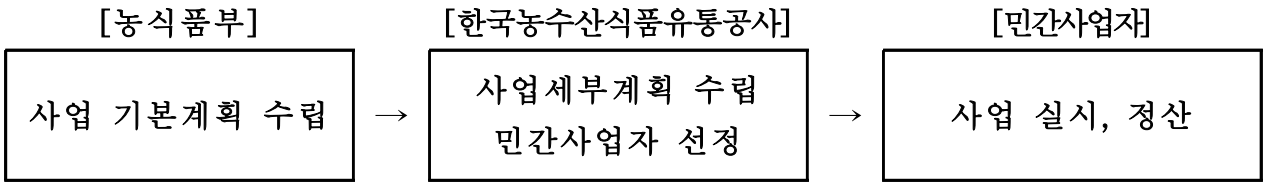

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율) (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지역자율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율)	26,093	20,896	20,636	△260	△1.2

* 사업코드 : 20 - 39 - 1 - 100 - 104 - 2800 - 2840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황규광), 사무관(김양일, ☏ 044-201-2184)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산업과장(최봉순), 사무관(김동남, ☏ 044-201-158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촌의 다양한 향토자원 발굴 및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부족자원의 발굴·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단계적·전략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산업을 1,2,3차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 도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R&D, 홍보·마케팅 및 가공시설비 등 지원
사업기간	'05년 ~ 계속(향토산업육성 : '07년~)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국고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는 자부담 20% - 향토산업육성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단 자부담 20% 이상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20,636백만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5,037백만원
  - ▪ 계속사업 : 7개소(2～5년차 사업) × 지자체보조 50%
  - ▪ 신규사업 : 2개소(1년차 사업) × 지자체보조 50%
- 향토산업육성 : 15,599백만원
  - ▪ 계속사업 : 32개소(2～4년차 사업) × 지자체보조 50%
  - ▪ 신규사업 : 9개소(1년차 사업) × 지자체보조 5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자율)	**20,896백만원**	**20,636백만원**
▪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6,456백만원 (계속13개소, 신규1개소)	5,037백만원 (계속7개소, 신규2개소)
▪ 향토산업육성	14,440백만원 (계속33개소, 신규7개소)	15,599백만원 (계속32개소, 신규9개소)

□ 지원 필요성

○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 농촌의 다양한 향토자원 발굴 및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단계적·전략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 1단계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향토자원의 발굴·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고, 2단계로서 상위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

○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R&D와 연계,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측면에서 식품정책과 부합하여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6,093	20,896	20,636	△260	△1.2
▪ 지역전략산업육성 (산출근거)	6,818 (13개소)	6,456 (14개소)	5,037 (9개소)	△1,419	△22.0
▪ 향토산업육성 (산출근거)	19,275 (53개소)	14,440 (40개소)	15,599 (41개소)	1,159	8.0
□ 비목(합계)	26,093	20,896	20,636	△260	△1.2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6,093	20,896	20,636	△260	△1.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의2. 생략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생략

③~⑦ 생략

-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추진경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구, 광역클러스터활성화) >

- 『농업·농촌 종합대책』수립('04.2.23) : 지역농업 발전전략
- 『대통령 업무보고』('04.3.8) :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
-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단 20개소 선정('05.05)
- 지역농업 클러스터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07.07)
  - 지역농업 클러스터 신규사업단 22개소 선정('07.12)
-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09 중기 재정투자계획시)
  - 광역클러스터 12개 사업단 선정('09.4)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10.4)
  - 생산과 단순 유통중심의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2·3차 식품산업으로 전환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13개소 선정('10.11)
- 2014년 지원사업단 10개 사업단 선정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육성)
  - '14년 사업단부터 5년간 30억원(국비기준)지원, 인센티브는 지원하지 않음.
-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 신규 2개소 지원
- 2018년까지 지역전략사업단 선정(누계) : 83개소 선정(생활계정 76, 제주계정 6)

< 향토산업육성사업 >

- 농어촌지역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04.3.5)
- 농어촌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편성('07~'08)

- 농어촌에 부존하는 다양한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편성, 시범사업추진('07~'08, 49개소)
- 2009년부터 균특회계 내 지역혁신계정으로 전환,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계정으로 편성,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제주계정으로 사업단 선정
-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단 선정권한을 시도로 이관 추진('14.1)
- 2018년까지 향토산업육성 사업단 선정(누계) : 250개소 지원(생활계정 234, 제주계정 16)

* 시·군단위의 기초단계 클러스터 산업육성은 향토산업육성사업, 광역권 및 타지역과의 연계·고도화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 담당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88	491	404	288	254	20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포기(2개소), 향토산업 사업포기(2개소)에 따른 불용, 지특세수 부족에 의한 이월

○ (2016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포기(1개소), 지특세수 부족에 의한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04 **(251)**	- (-)	- (-)	404 (251)	251 **(251)**	132 (-)	21 (-)
'16년	288 **(405)**	132 (-)	- (-)	420 (405)	405 **(392)**	7 (13)	8 (-)
'17년	254 **(261)**	7 (13)	- (-)	261 (274)	261 **(273)**	- (-)	-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5년 감사원 실지감사)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사업 목적 부합 여부 및 지역 과다 경쟁 등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치사항) 시도 사업계획 변경 시 검토 철저 지시('15.11.)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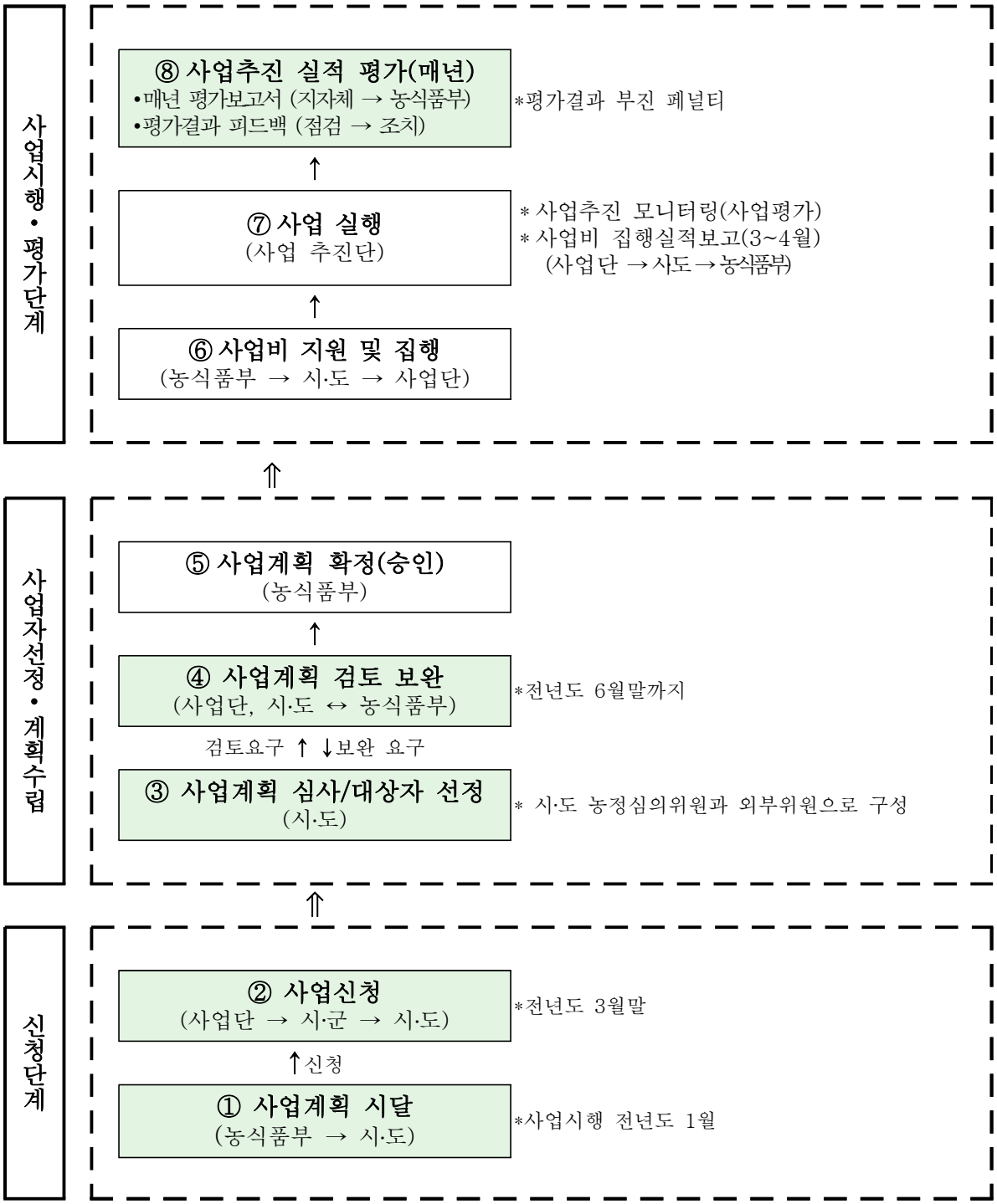

< 향토산업육성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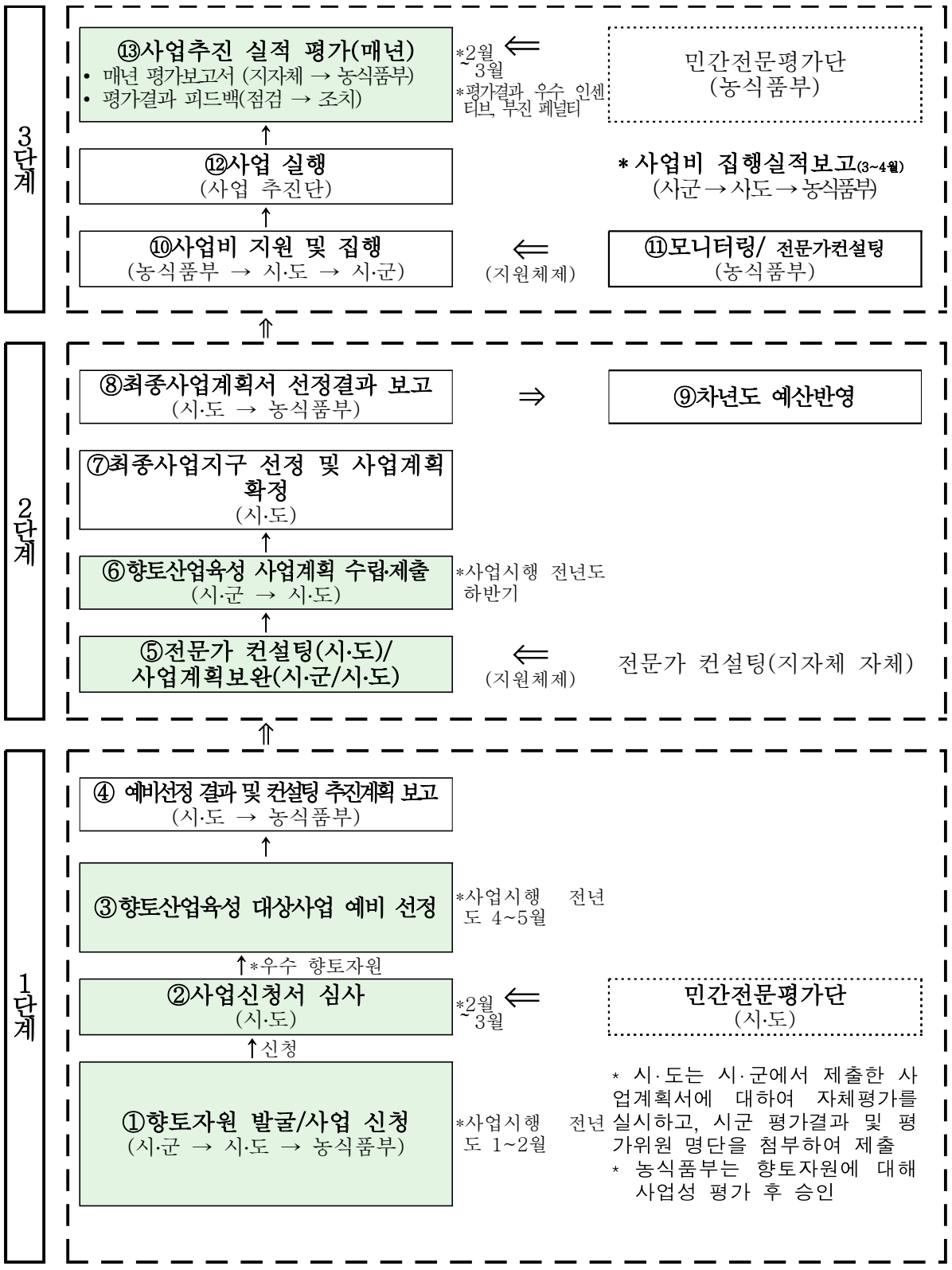
3단계
⑬사업추진 실적 평가(매년)
• 매년 평가보고서 (지자체 → 농식품부)
• 평가결과 피드백(점검 → 조치)
*2월~3월
*평가결과 우수 인센티브, 부진 페널티
민간전문평가단 (농식품부)
⑫사업 실행 (사업 추진단)
* 사업비 집행실적보고(3~4월) (사군→사도→농식품부)
⑩사업비 지원 및 집행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지원체제)
⑪모니터링/ 전문가컨설팅 (농식품부)
2단계
⑧최종사업계획서 선정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⑨차년도 예산반영
⑦최종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시·도)
⑥향토산업육성 사업계획 수립·제출 (시·군 → 시·도)
*사업시행 전년도 하반기
⑤전문가 컨설팅(시·도)/ 사업계획보완(시·군/시·도)
(지원체제)
전문가 컨설팅(지자체 자체)
1단계
④ 예비선정 결과 및 컨설팅 추진계획 보고 (시·도 → 농식품부)
③향토산업육성 대상사업 예비 선정
*사업시행 전년도 4~5월
*우수 향토자원
②사업신청서 심사 (시·도)
*2월~3월
민간전문평가단 (시·도)
신청
①향토자원 발굴/사업 신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시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
* 농식품부는 향토자원에 대해 사업성 평가 후 승인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재량, 계속)

< 균특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2,940	2,581	1,501	△1,080	△41.8

* 사업코드 : 20 - 39 - 1 - 100 - 104 - 2800 - 2842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황규광), 사무관(김양일, ☏ 044-201-2184)
  농촌정책국장(오병석), 농촌산업과장(최봉순), 사무관(김동남, ☏ 044-201-158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촌의 다양한 향토자원 발굴 및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부족자원의 발굴·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단계적·전략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농산업을 1,2,3차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 도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R&D, 홍보·마케팅 및 가공시설비 등 지원
사업기간	'05년 ~ 계속(향토산업육성 : '07년~)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국고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는 자부담 20% - 향토산업육성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단 자부담 20% 이상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2019년 예산

□ 산출내역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1,501백만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

- 향토산업육성 : 1,501백만원

▪ 계속사업 : 4개소(2~4년차 사업) × 지자체보조 50%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제주)	**2,581백만원**	**1,501백만원**
▪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341백만원 (계속 1개소)	-
▪ 향토산업육성	2,240백만원 (계속 6개소, 신규 1개소)	1,501백만원 (계속 4개소)

□ 지원 필요성

○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 농촌의 다양한 향토자원 발굴 및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단계적·전략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 1단계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향토자원의 발굴·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고, 2단계로서 상위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

○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R&D와 연계,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측면에서 식품정책과 부합하여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940	2,581	1,501	△1,080	△41.8
▪ 지역전략산업육성 (산출근거)	356 (1개소)	341 (1개소)	-	△341	△100
▪ 향토산업육성 (산출근거)	2,584 (6개소)	2,240 (7개소)	1,501 (4개소)	△739	△41.8
□ 비목(합계)	2,940	2,581	1,501	△1,080	△33.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940	2,581	1,501	△1,080	△41.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의2. 생략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생략

③~⑦ 생략

-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추진경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구, 광역클러스터활성화) >

- 『농업·농촌 종합대책』수립('04.2.23) : 지역농업 발전전략
  · 『대통령 업무보고』('04.3.8) :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
-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단 20개소 선정('05.05)
- 지역농업 클러스터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07.07)
  · 지역농업 클러스터 신규사업단 22개소 선정('07.12)
-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09 중기 재정투자계획시)
  · 광역클러스터 12개 사업단 선정('09.4)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10.4)
  · 생산과 단순 유통중심의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2·3차 식품산업으로 전환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13개소 선정('10.11)
- 2014년 지원사업단 10개 사업단 선정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육성)
  · '14년 사업단부터 5년간 30억원(국비기준)지원, 인센티브는 지원하지 않음.
-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 신규 2개소 지원
- 2018년까지 지역전략사업단 선정(누계) : 83개소 선정(생활계정 76, 제주계정 6)

< 향토산업육성사업 >

- 농어촌지역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04.3.5)

- 농어촌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편성('07~'08)
- 농어촌에 부존하는 다양한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편성, 시범사업추진('07~'08, 49개소)
- 2009년부터 균특회계 내 지역혁신계정으로 전환,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계정으로 편성,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제주계정으로 사업단 선정
-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단 선정권한을 시도로 이관 추진('14.1)
- 2018년까지 향토산업육성 사업단 선정(누계) : 250개소 지원(생활계정 234, 제주계정 16)

* 시·군단위의 기초단계 클러스터 산업육성은 향토산업육성사업, 광역권 및 타지역과의 연계·고도화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 담당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	35	24	29	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포기(1개소)에 따른 불용, 지특세수 부족에 의한 이월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5 **(24)**	- (-)	- (-)	35 (24)	24 **(22)**	4 (2)	7 (-)
'16년	24 **(28)**	4 (2)	- (-)	28 (30)	28 **(28)**	- (2)	- (-)
'17년	29 **(29)**	- (2)	- (-)	29 (31)	29 **(31)**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5년 감사원 실지감사)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사업 목적 부합 여부 및 지역 과다 경쟁 등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치사항) 시도 사업계획 변경 시 검토 철저 지시('15.11.)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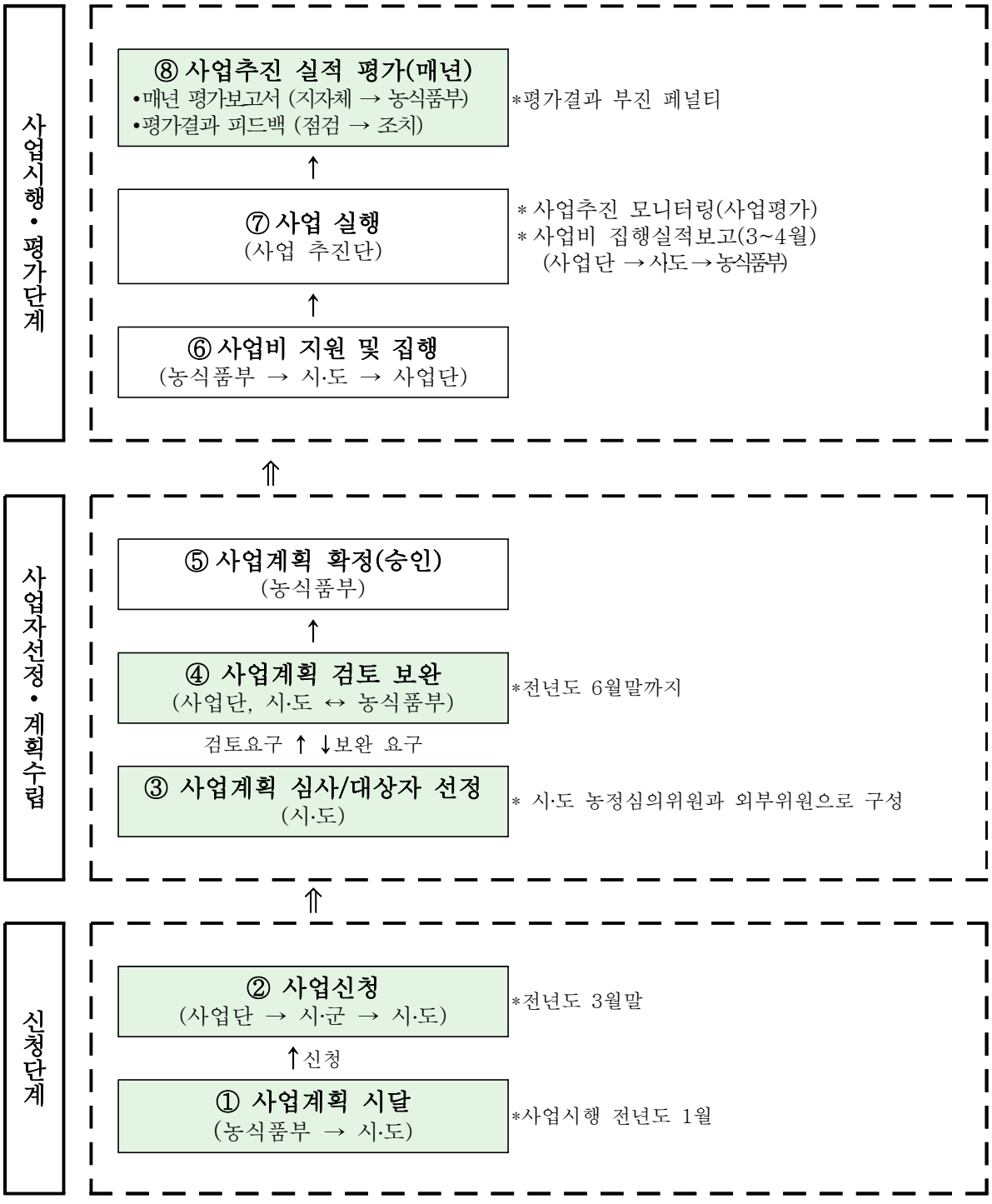

< 향토산업육성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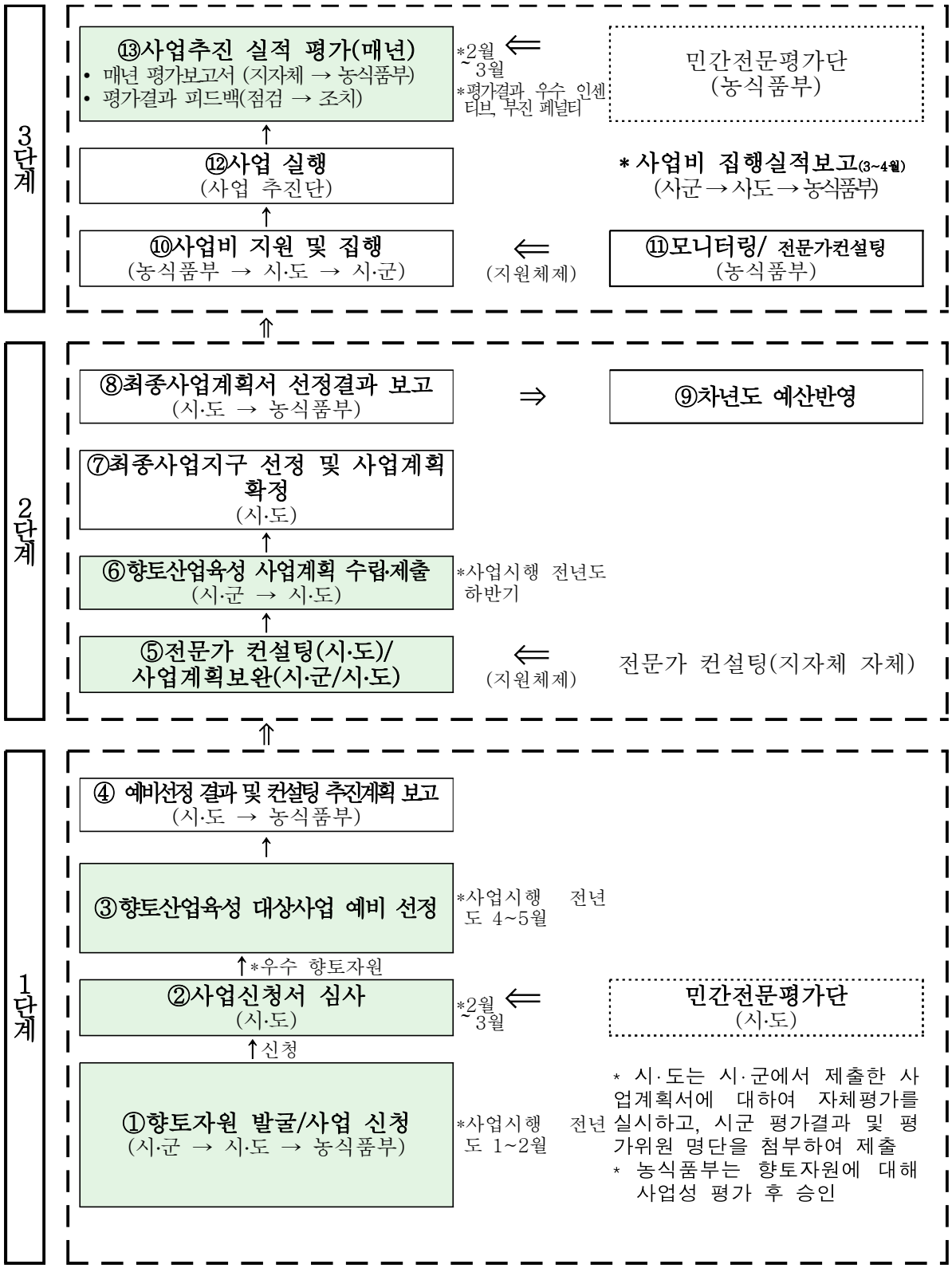
3단계
⑬사업추진 실적 평가(매년)
• 매년 평가보고서 (지자체 → 농식품부)
• 평가결과 피드백(점검 → 조치)
*2월~3월
*평가결과 우수 인센티브, 부진 페널티
민간전문평가단
(농식품부)
⑫사업 실행
(사업 추진단)
* 사업비 집행실적보고(3~4월)
(사군→사도→농식품부)
⑩사업비 지원 및 집행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지원체제)
⑪모니터링/ 전문가컨설팅
(농식품부)
2단계
⑧최종사업계획서 선정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⑨차년도 예산반영
⑦최종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시·도)
⑥향토산업육성 사업계획 수립·제출
(시·군 → 시·도)
*사업시행 전년도 하반기
⑤전문가 컨설팅(시·도)/ 사업계획보완(시·군/시·도)
(지원체제)
전문가 컨설팅(지자체 자체)
1단계
④ 예비선정 결과 및 컨설팅 추진계획 보고
(시·도 → 농식품부)
③향토산업육성 대상사업 예비 선정
*사업시행 전년도 4~5월
*우수 향토자원
②사업신청서 심사
(시·도)
*2월~3월
민간전문평가단
(시·도)
신청
①향토자원 발굴/사업 신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시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
* 농식품부는 향토자원에 대해 사업성 평가 후 승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농 지 관 리 기 금

목 차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433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434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 1436

2. 기타관유물대여료 ····· 1439

3.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 1442

4. 기타민간이자수입 ····· 1444

5. 기타재산수입 ····· 1449

6. 가산금 ····· 1450

7. 법정부담금 ····· 1451

8. 재고자산매각대 ····· 1454

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456

1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461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462

12. 기금예탁원금회수 ····· 1463

13. 기금예탁이자수입 ····· 1464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융자) ····· 1465

2.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1470
3. 대단위농업개발(농지) ····· 1478
4. 새만금지구(내부개발) ····· 1487
5.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 1492
6. 농지연금(융자) ····· 1496
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1503
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 1510
9.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 1519
10. 인건비 ····· 1535
11. 기타경비 ····· 1538
12. 농지은행인적역량강화사업 ····· 1553
13. 농지은행사업관리비 ····· 1557
14. 조성토지관리처분비 ····· 1564
15. 농지이용관리지원 ····· 1570
16.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 1574
17. 농지제도개선홍보 ····· 1577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출 ····· 1580
1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1582
20. 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 ····· 1584
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 ····· 1586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A)	2019 계획 (B)	B-A	%
총 계	**3,349,473**	**2,579,759**	**3,137,496**	**557,737**	**21.6**
51 관유물대여료	**7,523**	**14,978**	**11,305**	**△3,673**	**△24.5**
토지대여료 (51-511)	7,321	12,245	8,572	△3,673	△30.0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202	2,733	2,733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74,267**	**69,731**	**79,480**	**9,749**	**14.0**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54-541)	106	212	182	△30	△14.2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46,721	48,793	52,421	3,628	7.4
기타재산수입 (54-545)	27,440	20,726	26,877	6,151	29.7
58 가산금	**3,077**	**-**	**5,371**	**5,371**	**순증**
가산금 (58-581)	3,077	-	5,371	5,371	순증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68,535**	**770,000**	**972,047**	**202,047**	**26.2**
법정부담금 (59-593)	968,535	770,000	972,047	202,047	26.2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31,460**	**53,898**	**68,353**	**14,455**	**26.8**
재고자산매각대 (73-731)	31,460	53,898	68,353	14,455	26.8
75 융자원금회수	**358,948**	**332,860**	**395,740**	**62,880**	**18.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358,948	332,860	395,740	62,880	18.9
85 정부예금회수	**1,317,142**	**804,840**	**1,218,360**	**413,520**	**51.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281,165	433,504	365,508	△67,996	△15.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1,035,977	371,336	852,852	481,516	129.7
92 예탁원금회수	**550,000**	**500,000**	**350,000**	**△150,000**	**△30.0**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550,000	500,000	350,000	△150,000	△30.0
95 예탁이자수입	**38,521**	**33,452**	**36,840**	**3,388**	**10.1**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38,521	33,452	36,840	3,388	10.1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총 계	3,349,473	2,579,759	2,579,759	3,137,496	557,737	21.6
1073 경영회생지원	283,810	260,000	282,000	290,000	8,000	2.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융자)(1073-343)	283,810	260,000	282,000	290,000	8,000	2.8
1160 맞춤형농지지원(농지)	306,574	388,300	418,300	464,928	46,628	11.1
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306,574	388,300	418,300	464,928	46,628	11.1
4043 대단위농업개발(농지)	289,346	248,676	256,676	225,642	△31,034	△12.1
대단위농업개발(농지)(4043-302)	78,846	44,276	52,276	52,000	△276	△0.5
새만금지구(내부개발)(4043-333)	194,100	188,000	188,000	153,642	△34,358	△18.3
새만금지구(유지부대)(4043-335)	16,400	16,400	16,400	20,000	3,600	22.0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	67,305	92,314	100,314	129,929	29,615	29.5
농지연금(융자)(4130-410)	67,305	92,314	100,314	129,929	29,615	29.5
5032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5,257	15,498	15,498	15,123	△375	△2.4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5032-300)	2,257	2,898	2,898	3,153	255	8.8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5032-302)	3,000	12,600	12,600	11,970	△630	△5.0
7031 농지관리정보화	1,949	2,207	2,207	1,931	△276	△12.5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7031-500)	1,949	2,207	2,207	1,931	△276	△12.5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7077 기금운영비(농지기금)	68,617	76,179	77,321	78,155	834	1.1
인건비 (7077-101)	1,000	1,050	1,050	1,069	19	1.8
기타경비 (7077-201)	604	663	663	693	30	4.5
농지은행인적역량강화 (7077-251)	302	330	320	330	10	3.1
농지은행사업관리비 (7077-252)	60,287	67,314	67,314	69,114	1,800	2.7
조성토지관리처분비 (7077-253)	2,003	2,317	3,469	2,317	△1,152	△33.2
농지이용관리지원 (7077-256)	4,238	4,318	4,318	4,445	127	2.9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7077-257)	2	6	6	6	-	-
농지제도개선홍보 (7077-258)	181	181	181	181	-	-
841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
농특회계(농특세계정) 전출(8411-841)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
941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농지기금)	300,000	700,000	700,000	700,000	-	-
공자기금(총괄계정) 예탁(9413-940)	300,000	700,000	700,000	700,000	-	-
9703 여유자금운용(농지기금)	1,626,615	396,585	327,443	831,788	504,345	154.0
통화금융기관예치 (농지기금)(9703-971)	572,615	253,919	184,777	238,440	53,663	29.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농지기금)(9703-972)	1,054,000	142,666	142,666	593,348	450,682	315.9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51-51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토지대여료	7,321	12,245	8,572	△3,673	△30.0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농어촌정비법」제14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2. 수입 개요

○ 조성토지(간척농지)를 농업인 등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고 받은 토지임대료

3. 2019년 계획 내역

○ 조성토지 임대료

- 산출방법 : 조성토지 임대계획면적 × 해당지역 최근 5년간 평균 쌀 수확량 × 최근 5년간 kg당 평균 쌀가격 × 임대료율 × 시군별지표 × 재해감면율

○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장기 임대료

- 산출방법 : [{∑(해당도 개별 밭작물 3개년 평균소득 × 임대료율) + ∑(해당도 개별 과수 3개년 평균소득 × 임대료율)} / 총품목수] × 면적
- 산출내역 : {(12,713천원+1,630천원)/42개}/10a×15ha = 51백만원

* 세부산출내역 : 붙임 참조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0,250	7,159	7,159	69.8	100.0	-	-
'15	11,952	19,769	19,769	165.4	100.0	-	-
'16	11,952	8,861	8,861	74.1	100.0	-	-
'17	12,140	7,321	7,321	60.3	100.0	-	-
'18	12,245	5,565	5,565	45.5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붙임 **2019년도 토지대여료 세부산출내역**

□ **조성토지 임대료 = 8,521백만원**

○ 산출기준 : 조성토지 임대계획면적 × 쌀 수확량 × kg당 쌀가격 × 임대료율 × 시군별지표 × 재해감면율

· 쌀 수확량 : 해당 시·군 및 자치구의 최근 5년간 평균 쌀수확량(최대·최소 제외)

· kg당 쌀가격 :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 쌀가격(최대·최소 제외)

· 임대료율 : 해당 매립지등의 공구별 부분 준공 또는 사업 준공 이후 수도작 경작 기간을 감안하여 납부회차별 임대료율 차등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수도작(벼)	12.7%	15.6%	16.6%	17.3%	18.0%
□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요율	5.1%	6.2%	6.6%	6.9%	7.2%
□ 수도작외 작물	-	1.5%	1.6%	1.7%	1.8%

· 시군별지표 : 쌀직불금 수령여부 및 지역별 경제여건을 반영한 지표

시·도	시·군	지구명	시군별 지표(△P)	비 고
경기	화성시	시화	0.921	
충남	보령시	남포	0.717	
	서천군	남포	0.708	
	태안군	이원	0.691	
	당진시	석문	0.717	
전남	고흥군	고흥	0.710	
		해창만	0.710	
	장흥군	삼산	0.684	
	해남군	영산강	0.970	
	영암군	영산강	0.967	
	진도군	보전·군내	0.692	

* 2017년 쌀가격 추계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도입

· 재해감면율 : 36.0%('13~'17년 임대결과 재해로 인한 감면율 평균)

○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지구명	사업지역	임대영농계획										임대료				감면율(%)	추정임대료
			경작면적(ha)	수도작	타작물	조건불리지역수도작	5년수확량(kg/10a)	5년평균쌀가격(kg/원)	수도작적용율(%)	타작물적용율(%)	조건불리지역수도작요율(%)	시군별지표(△P)	수도작	타작물	조건불리지역	임대료계		
2019	고흥지구	고흥군	1,660	1,000	660	-	515	2,044	18.0	1.8	7.2	0.710	1,345	125	-	1,470	36.0	942
	보전지구	진도군	170	170	-	-	449	2,044	18.0	1.8	7.2	0.692	195	-	-	195	36.0	125
	군내지구	진도군	372	372	-	-	449	2,044	18.0	1.8	7.2	0.692	426	-	-	426	36.0	273
	삼산지구	장흥군	203	90	113	-	480	2,044	18.0	1.8	7.2	0.684	109	20	-	129	36.0	82
	석문지구	당진시	1,467	1,035	432	-	593	2,044	18.0	1.8	7.2	0.717	1,619	94	-	1,713	36.0	1,097
	남포지구	보령시	654	654	-	-	536	2,044	18.0	1.8	7.2	0.717	925	-	-	925	36.0	592
	마산1공구	해남군	803	776	27	-	500	2,044	18.0	1.8	7.2	0.970	1,384	5	-	1,389	36.0	890
	마산2공구	해남군	520	443	77	-	500	2,044	18.0	1.8	7.2	0.970	790	14	-	804	36.0	515
	마산3공구	해남군	108	108	-	-	500	2,044	17.3	1.7	6.9	0.970	185	-	-	185	36.0	119
	화원1공구	해남군	634	601	33	-	500	2,044	18.0	1.8	7.2	0.970	1,072	6	-	1,078	36.0	690
	영암유휴지	영암군	255	220	35	-	489	2,044	18.0	1.8	7.2	0.967	382	6	-	389	36.0	249
	산이2-2공구	해남군	552	506	46	-	500	2,044	18.0	1.8	7.2	0.970	902	8	-	911	36.0	583
	금호1-1공구	해남군	771	569	202	-	500	2,044	18.0	1.8	7.2	0.970	1,015	37	-	1,052	36.0	674
	금호1-2공구	해남군	614	551	63	-	500	2,044	18.0	1.8	7.2	0.970	983	12	-	994	36.0	637
	금호2-1공구	해남군	1,082	1,082	-	-	500	2,044	12.7	0.0	5.1	0.970	1,362	-	-	1,362	36.0	872
	이원지구	태안군	714	-	252	462	550	2,044	17.3	1.7	6.9	0.691	-	48	248	296	36.0	189
	소계		10,159	8,177	1,940	462										13,316	36.0	8,521

□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장기 임대료

○ 산출기준 : [{∑(해당 도 개별 밭작물 3개년 평균소득 × 임대료율) + ∑(해당 도 개별 과수 3개년 평균소득 × 임대료율)} / 총품목수] × 면적

- 개별 밭작물 및 과수의 기준 : 품목 수 42품목(밭 38, 과수 4)
  * 농촌진흥청 품목별 관리 매뉴얼에 근거
- 3개년 평균소득 : 농촌진흥청 발표 지역농산물 최근 3개년 소득
- 임대료율 : 통계청 발표 최근 3개년 평균 임대료율

구 분	'12년	'13년	'14년	평 균
밭작물	6.9	6.0	6.0	6.3
과 수	-	-	-	-

* 과수 임대료율은 통계청 미발표로 밭작물로 대체

**「농식품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임대관리지침」에 따른 임대료 반영

○ 세부산출내역 : {(12,713천원+1,630천원)/42개}/10a×15ha = **51백만원**

- ∑(경기도 개별 밭작물 3개년 평균소득 × 임대료율) = 12,713천원
- ∑(경기도 개별 과수 3개년 평균소득 × 임대료율) = 1,630천원

* 3년 단위 임대계약('15~'18)으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동일, '19년 재계약에 따른 갱신 예정

2.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관유물대여료	202	2,733	2,733	-	-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2. 수입 개요

○ 조성토지를 임대 및 매각 전까지 농업인 등에게 일시사용(경작) 또는 임시사용(가경작) 하도록 허용하고 토지사용대가로 소출의 일정 금액을 징수

3. 2019년 계획 내역

○ 일시사용료

- 산출방법 : 해당 시·군의 최근 5년간 단위면적당 평균 쌀수확량(kg) × 경작면적 × 최근 5년간 kg당 수확기 평균 쌀가격 × 일시사용료율 × 시군별지표 × 재해감면율

- 산출내역 : 남포 외 6개 지구 2,027백만원

○ 임시사용료

- 산출방법 : (해당 시·군의 해당년도 쌀 수확량(kg) × 경작면적 × 해당년도 kg당 산지 전국평균 쌀가격 - 재배면적당 직접생산비) × (5.0%~2.5%) × 재해감면율

○ 산출내역 : 시화 외 3개 지구 706백만원

* 세부산출내역 : 붙임 참조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458	3,282	3,282	94.9	100.0	-	-
'15	3,545	3,975	3,975	112.1	100.0	-	-
'16	3,592	3,177	3,177	89.6	100.0	-	-
'17	3,593	202	202	5.6	100.0	-	-
'18	2,733	2,007	2,007	73.4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붙임 **2019년도 기타관유물대여료 세부산출내역**

□ 기타관유물대여료

○ 산출기준

- **일시사용료** : 해당 시·군의 최근 5년간 단위면적당 평균 쌀수확량(kg) × 경작면적 × 최근 5년간 kg당 수확기 평균 쌀가격 × 일시사용료율 × 시군별지표 × 최근 5개년 자연재해로 인한 감면비율

· 평균 쌀 수확량 : 해당 시·군 및 자치구의 해당년도 단위면적당 평균 쌀수확량

· kg당 쌀가격 : 전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 일시사용료율 : 해당 매립지등의 공구별 부분준공 이후 수도작 경작기간을 감안하여 납부회차별 임대료율(12.7~18.0%) 차등 적용

→ 재배작물을 고려하여(수도작 12.7%~18.0%, 타작물 5.1%~7.2%) 경작기간을 감안한 납부회차별 임대료율 차등 적용

· 시군별지표 : 쌀직불금 수령여부 및 지역별 경제여건을 반영한 지표

시·도	시·군	지구명	시군별 지표(△P)	비 고
경기	화성시	시화	0.921	
충남	보령시	남포	0.717	
	서천군	남포	0.708	
	태안군	이원	0.691	
	당진시	석문	0.717	
전남	고흥군	고흥	0.710	
		해창만	0.710	
	장흥군	삼산	0.684	
	해남군	영산강	0.970	
	영암군	영산강	0.967	
	진도군	보전·군내	0.692	

* 2017년 쌀가격 추계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도입

· 재해감면율 : 36.0%('13~'17년 임대사용 결과 재해로 인한 감면율 평균)

- **임시사용료** : (해당 시·군의 해당년도 쌀 수확량(kg) × 경작면적 × 해당년도 kg당 산지 전국평균 쌀가격 - 재배면적당 직접생산비) × (5.0~2.5%) × 재해감면율

· 재배면적당 직접생산비 : 440,821원/10a

※ '국가통계포털-농림어업-농산물생산비조사'

· 재해감면율 : 36.0%('13~'17년 임대사용 결과 재해로 인한 감면율 평균)

○ 세부산출내역

- 일시사용료

(단위 : 백만원)

연도	지구명	사업 지역	사업 시행자	일시사용계획						
				경작 면적 (ha)	5년평균 수확량 (kg/10a)	5년평균 쌀가격 (kg/원)	적용율 (%)	감면율 (%)	시군별 지표 (△P)	사용료
2019	해창만지구	고흥군	고흥군수	299	515	2,044	18.0	36.0	0.710	258
	구암지구	고흥군	고흥군수	154	515	2,044	18.0	36.0	0.710	133
	양사지구	고흥군	고흥군수	11	515	2,044	18.0	36.0	0.710	9
	산촌지구	거제시	거제시장	23	493	2,044	18.0	36.0	0.702	19
	시화2지구	화성시	농어촌공사	470	494	2,044	7.2	36.0	0.921	202
	산이2-1공구	해남군	농어촌공사	514						280
	새만금지구	군산시	농식품부	650						1,126
	소계			**2,121**						**2,027**

* 산이2-1공구 농업특화단지 임대료 280백만원은 별도 임대료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추정

** 새만금지구 노출지 사료작물 재배 공개입찰경쟁방식에 의거 별도 추정

- 임시사용료

(단위 : 백만원)

연도	지구명	사업 지역	사업 시행자	임시사용계획						
				경작 면적 (ha)	수확량 (kg/10a)	평균 쌀가격 (kg/원)	적용율 (%)	직접 생산비 (원/10a)	감면율 (%)	사용료
2019	시화	안산시	농어촌공사	693	483	2,044	5%	440,821	36.0	219
	화옹	화성시	농어촌공사	1,268	531	2,044	5%	440,821	36.0	441
	영암1,영암2	영암군	농어촌공사	50	494	2,044	5%	440,821	36.0	16
	산이1,금호2-2	해남군	농어촌공사	90	514	2,044	5%	440,821	36.0	30
	소계			**2,101**						**706**

3.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54-54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106	212	182	△30	△14.2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절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 수입 개요

○ 지방자치단체(시·군) 시행 조성토지 매각대의 장기분할상환(3년 거치 20년 분할)에 따른 매각대 상환잔액에 대한 기간이자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매매계약에 의한 원금 상환잔액에 연리 2% 적용

○ 산출내역 : 사내 외 4개 지구 182백만원

* 세부산출내역 : 붙임 참조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89	1,037	655	133.9	63.2	382	-
'15	589	776	517	87.8	66.6	259	-
'16	589	568	357	60.6	62.9	211	-
'17	589	384	106	18.0	27.6	278	-
'18	212	288	288	135.8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붙임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세부산출내역**

□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지자체 시행지구 조성토지매각대 이자수입)

○ 산출기준 : 매각대 상환약정에 의한 원금상환 잔액의 연리 2% 적용

(단위:백만원)

구분	지구명	매각 연도	회수 대상액	2017 잔액	2018계획		2019계획	
					이자 수입	연말 잔액	이자 수입	연말 잔액
기매각	오마도	1993	3,250	1	-	-	-	-
	월송	2009	364	35	1	28	1	21
	좌학	2004	7,174	133	3	-	-	-
	해창만	1999	28,667	210	4	-	-	-
	완도	2000	5,972	17	-	14	-	10
	강산	2001	2,730	165	3	-	-	-
	만덕	2004	8,794	589	12	7	-	-
	사내	2007	15,610	4,489	90	2,675	64	2,469
	고금	2009	7,086	4,053	81	3,242	75	2,431
	진촌	2010	7,372	1,362	10	1,289	30	1,159
	산촌	2017	2,593	1,593	32	593	12	-
합 계				**12,647**	**236**	**7,848**	**182**	**6,090**

* '18년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산출내역은 '18년 기금운용계획(확정) 수입설명서 기준으로 작성

4.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민간이자수입	46,721	48,793	52,421	3,628	7.4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매립지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 수입 개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료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융자금의 장기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형식으로 임대료를 납입

○ 농지규모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 농지규모화사업 융자금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대여금 잔액에 대한 기간이자 수입

○ 농지매입비축사업 임대료 : 농지매입비축사업 융자금의 장기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형식으로 임대료를 납입

○ 농지연금사업 농지연금채권 이자수입 : 농지연금사업 융자금의 장기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농지연금 채권 이자 및 가입비, 위험부담금)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융자금의 장기대여에 따른 대여금 잔액에 대한 기간이자 수입

○ 조성토지매각대 이자수입 : 민간단체(한국농어촌공사)시행지구 조성토지 매각대의 장기분할 상환(최장 3년 거치 20년 분할)에 따른 매각대 상환잔액에 대한 기간이자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임대료

- 산출방법 : '06～'17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임대료 약정현황을 기준으로 임대료 추정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임대료 : 해당농지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산출내역 : 16,164백만원

○ 농지규모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 산출방법 : 농지규모화 세부 사업별 융자조건을 감안한 이자수입 반영
- 산출내역 : ('18년말 대여잔액 - '19년 회수종료액) × 무이자·1% = 14,161백만원

○ 농지매입비축사업 임대료

- 산출방법 : '10~'17년 농지매입비축사업 임대료 약정현황을 기준으로 임대료 추정
  * 농지매입비축사업 임대료 : 해당지역 임대료 수준을 참작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 산출내역 : 14,650백만원

○ 농지연금사업 임대료

- 산출방법 : '11~'17년 사업 결과 사망 등의 사유로 약정해지가 발생한 건의 농지연금채권 회수결과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출
- 산출내역 : 2,463백만원

○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 산출방법 :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 융자조건을 감안한 이자수입 반영
- 산출내역 : '18년말 대여잔액 × 1.5~2.0% = 1,630백만원

○ 조성토지매각대 이자수입

- 산출방법 : 매각대 상환약정에 의한 원금상환 잔액의 연리 2% 반영
- 산출내역 : 대호지구 등 9개 지구 3,353백만원

* 세부산출내역 : 붙임 참조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3,253	68,489	57,149	90.3	83.4	11,340[1)]	-
'15	61,940	62,151	49,393	79.7	79.5	12,758[2)]	-
'16	62,582	60,290	46,190	73.8	76.6	14,100[3)]	-
'17	62,582	63,468	46,721	74.7	73.6	16,747[4)]	-
'18	48,793	37,592	37,592	77.0	100.0	-	-

* 1) 이행기한 미도래분 6,491백만원 포함

** 2) 이행기한 미도래분 6,689백만원 포함

*** 3) 이행기한 미도래분 12,769백만원 포함

**** 4) 이행기한 미도래분 16,504백만원 포함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붙임 **2019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세부산출내역**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임대료)

○ 산출기준 : '09~'17년 사업 결과 연간 임대료 실 약정현황을 기준으로 '19년 임대료 추정

(단위:백만원)

년 도	사업비	임대료 약정현황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09년	169,995	1,002	1,218	1,286	1,297	946	1,365	1,143	975	940	843	343
'10년	240,000		1,220	1,516	1,876	1,767	1,813	1,809	1,538	1,019	126	114
'11년	240,000			1,471	1,905	2,027	2,154	2,097	2,034	1,923	860	
'12년	260,000				1,264	1,845	2,207	2,177	1,998	1,941	2,007	968
'13년	256,473					1,395	1,950	2,224	2,129	2,097	2,107	2,148
'14년	260,000						1,360	2,034	2,148	2,158	2,124	2,173
'15년	259,561							1,216	2,023	2,198	2,152	2,129
'16년	258,438								1,300	2,140	2,270	2,221
'17년	283,810									1,589	2,382	2,485
'18년	260,000										1,353	2,076
'19년	290,000											1,509
임대료												16,164

□ 농지규모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 산출기준 : 농지규모화사업 전년도말 대여잔액 × 이자율
- 이자율 : 농지매매, 교환분합, 구입은 1%, 농지임대차는 무이자

(단위:백만원)

구 분	'18년도말 대여잔액	'19년도 회수종료	이자율 (%)	'19년도 이자수입
합 계	**1,424,092**	**7,908**		**14,161**
농지매매사업	1,201,668	3,650	1%	11,980
농지임대차사업	220,599	4,066	-	2,165
농지교환·분합사업	1,825	192	1%	16

* 농지임대차 융자금은 최근 5개년 연체이자 평균수납액 반영

□ 농지매입비축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임대료)

○ 산출기준 : '12~'17년 사업 결과 연간 임대료 실 약정현황을 기준으로 '19년 임대료 추정

(단위: 백만원)

년 도	사업비 (백만원)	임대료 약정현황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2년	159,900	327	1,743	2,010	2,010	2,010	1,499		
'13년	166,497		732	1,830	1,922	1,922	1,908	1,300	
'14년	127,726			513	1,293	1,293	1,293	1,293	780
'15년	152,534				1,189	2,450	2,518	2,519	2,080
'16년	148,597					351	1,953	2,772	2,572
'17년	179,949						1,309	2,583	2,748
'18년	314,000							1,860	4,331
'19년	361,200								2,139
임대료									14,650

* 임대료 약정 : 해당지역 임대료 수준을 참작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 농지연금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 산출기준 : '11~'17년 사업 결과 사망 등의 사유로 약정해지가 발생한 건의 실 농지연금채권 회수 결과를 기준으로 '19년 이자 추정

- 농지연금채권 : 지급된 연금액, 이자(2%), 위험부담금(0.5%)를 농업인의 사망 등 약정해지로 연금지급 종료시 상속인의 상환, 저당권실행 등으로 회수
- 기말잔액 증가 부분에서 월지급금은 사업비, 약정이자 및 위험부담금은 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
- '18년도 추정 기말잔액(이자)과 '19년도 증가액(이자) 합계에 '17년 채권잔액 대비 회수비율을 곱하여 이자액 산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기말 잔액	증 가	감 소 (회수액)	기말 잔액	증 가	감 소 (회수액)
합 계		203,627	99,742	24,115	279,254	140,200	33,343
원금	월지급금 (사업비)	188,556	92,314	22,327	258,543	129,929	30,880
이자	소계	15,071	7,428	1,788	20,711	10,271	2,463
	초기가입비	2,044	-	162	1,882	-	150
	위험부담금	2,336	1,480	303	3,513	2,046	442
	약정이자	10,691	5,948	1,323	15,316	8,225	1,871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 산출기준 : 해외농업개발사업 전년도말 대여잔액 × 이자율

- 이자율 : '09년 지원분 1.5%, '10년 지원분부터 2.0%

(단위:백만원)

연도	대여구분	'18년도말 대여잔액	'19년				
			원금회수	정기회수	조기회수	이자산출	연말잔액
2009	5년거치3년상환	-	-	-	-	-	-
	10년거치3년상환	7,124	373	-	373	107	6,751
2010	3년거치7년상환	1,615	893	808	85	32	723
2011	3년거치7년상환	-	-	-	-	-	-
2012	5년거치10년상환	6,994	1,143	777	366	140	5,851
2013	5년거치10년상환	370	56	37	19	7	314
2014	5년거치10년상환	26,534	1,390	-	1,390	531	25,144
2015	5년거치10년상환	13,267	695	-	695	265	12,572
2016	5년거치10년상환	11,940	625	-	625	239	11,315
2017	5년거치10년상환	2,843	149	-	149	57	2,694
2018	5년거치10년상환	12,600	660	-	660	252	11,940
2019	5년거치10년상환	-	-	-	-	-	13,800
계		83,287	5,984	1,622	4,362	1,630	91,104

□ 조성토지매각대 이자수입(공사 관리지구)

○ 산출기준 : 매각대 상환약정에 의한 원금상환 잔액의 연리 2% 적용

(단위:백만원)

지구명	매각 연도	회수 대상액	2017 잔액	2018		2019계획	
				이자 회수	연말 잔액	이자 회수	연말 잔액
소포	1990	12,847	52	1	46	1	39
남포	1997	15,816	1	-	-	-	-
하사	1992	31,299	15	1	11	-	7
대호	1998	120,099	1,844	30	379	7	153
영산강2	1998	210,722	10,912	210	8,547	168	6,405
영산강3-1	2003	143,359	27,609	564	25,291	505	22,891
영산강3-1 (삼호지구 포함)	2014	81,851	65,481	1,159	54,567	966	43,654
영산강3-1, 3-2 (구성지구 포함)	2012	102,008	54,404	963	40,803	722	27,202
해남	2003	69,256	16,923	329	15,192	302	13,287
중장	2004	7,665	3,150	62	2,932	59	2,711
새만금	2010	194,248	70,353	1,245	35,176	623	-
소 계		**989,170**	**250,744**	**4,564**	**182,944**	**3,353**	**116,349**

* '18년 조성토지매각대 이자수입 산출내역은 '18년 기금운용계획(확정) 수입설명서 기준으로 작성

5. 기타재산수입

54-545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재산수입	27,440	20,726	26,877	6,151	29.7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기금운용수익금

2. 수입 개요

○ 사업대기성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 수입 및 기타 잡수익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익 : '19년도 평잔운용계획 × 기준수익률
- 기타잡이익 : 5개년 평균 적용

○ 산출내역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익 : 15,669백만원 ≒ (416,195백만원 × 1.97%, 1년 미만) + (366,510백만원 × 2.03%, 1년 이상)
- 기타잡이익 : 11,208백만원(최근 5개년 평균)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1,259	16,103	15,045	70.7	93.4	1,058[1)]	-
'15	27,022	16,560	15,864	58.7	95.8	696[2)]	-
'16	31,564	22,098	21,668	68.6	98.1	430	-
'17	31,564	27,638	27,440	86.9	99.3	-	-
'18	20,726	53,640	53,640	258.8	100.0	-	-

* 1) 이행기한 미도래분 790백만원 포함

** 2) 이행기한 미도래분 671백만원 포함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6. 가산금

58-58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가산금	3,077	-	5,371	5,371	순증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제53조(부과기준)

2. 수입 개요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 체납금액의 3/100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 체납금액의 12/1000 (단,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최근 5개년 평균 가산금 수납액

○ 산출내역 : ('13년 12,824 + '14년 4,717 + '15년 3,844 + '16년 2,392 + '17년 3,077) / 5 = 5,371백만원

* 세부산출내역 : 붙임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4,717	4,717	-	100.0	-	-
'15	-	3,844	3,844	-	100.0	-	-
'16	-	2,392	2,392	-	100.0	-	-
'17	-	3,077	3,077	-	100.0	-	-
'18	-	9,947	9,947	-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7. 법정부담금

59-59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법정부담금	968,535	770,000	972,047	202,047	26.2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제53조(부과기준)

2. 수입 개요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 부과금액 : 전용면적(㎡) ×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 5만원/㎡)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일반지구 + 대단위지구 수납추정액) - 환급추정액 - 수수료 추정액

○ 산출내역 : 972,047백만원 = (937,819 + 250,327) - 109,166 - 106,933

* 세부산출내역 : 붙임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759,134	1,467,657	822,561	108.4	56.0	645,096[1)]	-
'15	658,617	1,332,259	897,295	136.2	67.4	434,964[2)]	-
'16	562,157	1,663,492	1,056,548	187.9	63.5	606,944[3)]	-
'17	564,813	1,703,196	968,535	171.5	56.9	734,601[4)]	-
'18	770,000	1,020,933	1,020,933	132.6	100.0	-	-

* 1) 이행기한 미도래분 360,544백만원 포함

** 2) 이행기한 미도래분 271,067백만원 포함

*** 3) 이행기한 미도래분 358,780백만원 포함

**** 4) 이행기한 미도래분 485,906백만원 포함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붙임 **2019년도 법정부담금 세부산출내역**

□ 농지보전부담금

○ 산출기준 : 농지전용에 따른 일반지구와 대단위지구로 구분하여 지구별 수납액 추정 후, 환급 추정액 및 수수료 추정액 반영 산출

○ 세부산출내역 : (일반지구수납 + 대단위지구 수납추정액) - 환급추정액 - 수수료 추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수납 추정액 (A)	환급 추정액 (B)	수수료 추정액 (C)	기금 납입액 (D=A-B-C)
계	1,188,146	109,166	106,933	**972,047**
일 반	937,819			
대단위	250,327			

① 일반지구 수납추정액 : 937,819백만원

- '16년 농지법 개정으로 일반지구의 수납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향후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투자불안 심리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인한 농지전용 수요의 감소로 일반지구 수납액 증가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5~6년 후에는 '16년도 이전의 일반지구의 5개년 평균 수납액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3개년 일반지구 평균수납 추이 현황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수납액
수납액(백만원)	805,060	1,012,760	995,638	**937,819**

② 대단위지구 수납추정액 : 250,327백만원

- 대단위지구(10만m2이상)의 수납액은 정부정책사업 방향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대단위지구 수납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13년도 이후 대단위개발 수요 감소로 인해 대단위지구 수납액도 감소추세
- 최근 3개년 대단위지구 평균수납 추이 현황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수납액
수납액(백만원)	294,959	248,124	207,672	**250,327**

③ 환급추정액 : 109,166백만원

(단위:백만원,%)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환급액**
환급액	107,566	93,805	126,127	**109,166**

④ 수수료 추정액 : 수납·부과 업무 관련 공사 및 지자체 수수료 지급액

⇒ 공사 : '19년 부담금 수납추정액 1,188,146백만원 × 1.0% ≒ 11,881백만원

⇒ 지자체 : '19년 부담금 수납추정액 1,188,146백만원 × 8.0% ≒ 95,052백만원

연도	부담금 수납금액	공사		지자체		계
		요율	금액	요율	금액	
2019	1,188,146	1.0	11,881	8.0	95,052	**106,933**

* 수수료 추정액은 부담금 수입액에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지급방법

수납액 구간	공사 수수료	지자체 수수료
4천억원 이하	수납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수납액의 8%
4천억원~1조원	직선보간법에 따른 금액	
1조원 이상	수납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직선보간법 산출방법 : {(4,000억원*2%)+(수납액-4,000억원)/300}

8. 재고자산매각대

73-73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재고자산매각대	31,460	53,898	68,353	14,455	26.8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 수입 개요

○ 조성토지의 장기분할매각에 따른 기매각지구 분할매각대금 및 신규 매각지구 계약금 해당액(전체 매각대금의 10%)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조성토지매매계약에 의한 기매각지구 분할상환액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금액(계약금 및 분할매각대금)

○ 산출내역 : 대호지구 등 17개 지구 68,353백만원

* 세부산출내역 : 붙임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52,891	100,003	69,129	130.7	69.1	30,874[1)]	-
'15	62,748	103,889	51,962	82.8	50.0	51,927[2)]	-
'16	57,431	123,690	50,815	88.5	41.1	72,875[3)]	-
'17	57,429	308,512	31,460	54.8	10.2	277,0524[4)]	-
'18	53,898	28,858	28,858	53.5	100.0	-	-

* 1) 이행기한 미도래분 22,549백만원 포함

** 2) 이행기한 미도래분 48,848백만원 포함

*** 3) 이행기한 미도래분 56,610백만원 포함

**** 4) 이행기한 미도래분 258,577백만원 포함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붙임 **2018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세부산출내역**

□ 조성토지매각대 원금회수

(단위 : 백만원)

지구명		매각 연도	회수 대상액	2017 잔액	2018계획		2019전망	
					원금 회수	연말 잔액	원금 회수	연말 잔액
민간시행	소포	1990	12,847	52	8	77	7	39
	남포	1997	15,816	1				
	하사	1992	31,299	15	3	13	4	7
	대호	1998	120,099	1,844	280	1,958	226	153
	영산강2	1998	210,722	10,912	939	13,142	2,142	6,405
	영산강3-1	2003	143,359	27,609	2,016	28,218	2,400	22,891
	영산강3-1 (삼호지구)	2014	81,851	65,481	9,355	46,772	10,913	43,654
	영산강3-1, 3-2 (구성지구)	2012	102,008	54,404	13,601	54,405	13,601	27,202
	해남	2003	69,256	16,923	1,424	17,094	1,905	13,287
	중장	2004	7,665	3,150	240	2,882	221	2,711
	새만금	2010	194,248	70,353	24,621	24,621	35,176	-
	소 계		989,170	250,744	52,487	189,182	66,595	116,349
지자체시행	오마도	1993	3,250	1				
	월송	1993	364	35	6	23	7	21
	좌학	2004	7,174	133				
	해창만	1999	28,667	210				
	완도	2000	5,972	17	3	11	4	10
	강산	2001	2,730	165				
	만덕	2004	8,794	589	268	267	7	
	사내	2007	15,610	4,489	368	4,783	206	2,469
	고금	2009	7,086	4,053	675	2,702	811	2,431
	진촌	2010	7,372	1,362	91	1,366	130	1,159
	산촌	2017	2,593	1,593			593	
	소 계		89,612	12,647	1,411	9,152	1,758	6,090
합 계			1,078,782	263,391	53,898	198,334	68,353	122,439

* '18년 재고자산 매각대 산출내역은 '18년 기금운용계획(확정) 수입설명서 기준으로 작성

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58,948	332,860	395,740	62,880	18.9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수입 개요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융자금의 정기회수 및 조기회수액

○ 농지규모화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의 연차별 상환기간 도래액 및 조기상환액 회수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비축토지 매각대금

○ 농지연금사업의 농지연금채권 회수대금

3. 2019년 계획 내역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융자원금 회수

- 산출방법 : 환매약정 등에 따른 환매액 추정
- 산출내역 :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도래액 + 조기환매 금액 = 163,235백만원

○ 농지규모화사업 융자원금 회수

- 산출방법 : 사업별 대여약정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회수액 추정
- 산출내역 : 대여약정에 의한 정기회수 금액 + 조기회수 금액 = 195,641백만원

○ 농지연금사업 융자원금 회수

- 산출방법 : '12~'17년 사업결과 약정해지 회수결과를 기준으로 회수액 추정
- 산출내역 : ('18년 추정 기말잔액 + '19년도 증가액(원금)) × 약정해지율 = 30,880백만원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 융자원금 회수

- 산출방법 : 대여약정에 따른 회수액 추정
- 산출내역 : '09~'18년도 대여액(3년 거치 7년상환)중 회수 기간 도래액+조기회수액 = 5,984백만원

* 세부산출내역 : 붙임 참조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99,065	313,058	313,058	104.6	100.0	-	-
‘15	280,800	315,628	315,628	112.4	100.0	-	-
‘16	290,828	342,064	341,992	117.6	99.9	72	-
‘17	329,203	359,020	358,948	109.0	100.0	72	-
‘18	332,860	352,781	352,781	106.0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붙임 **2019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세부산출내역**

□ '19년도 융자원금회수 산출내역 : 395,7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말 대여잔액 (A)	'19년도 회수종료 (B)	'19년도 회수액			
			정기회수 (C)	조기회수		소계 (F=C+E)
				회수율 (D)	금액 (E=(A-B)*D)	
합 계	4,048,309	16,715	242,383	-	153,357	**395,740**
농지규모화	1,424,092	7,908	137,680	1.66~4.76%	57,961	195,641
경영회생농지매입	2,261,676	8,807	72,201	4.45%	91,034	163,235
농지연금	279,254	-	30,880	-	-	30,880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83,287	-	1,622	5.24%	4,362	5,984

- 농지규모화사업 융자원금 회수 : 195,641백만원

· 산출근거 : 대여약정에 의한 정기회수 금액과 조기회수 금액 반영

· 정기회수 : '18년도말 대여잔액 ÷ 잔여 상환연수 = 137,680백만원

· 조기회수 : ('18년도말 대여잔액 - '18년 회수종료 금액) × 조기회수율 = 57,961백만원

* 조기회수율 : '13~'17년간 조기회수율 평균 적용(농지매매 4.29%, 교환분합 4.76%, 농지임대차 1.66%)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말 대여잔액 (A)	'19년도 회수종료 (B)	'19년도 회수액			
			정기회수 (C)	조기회수		소계 (F=C+E)
				회수율 (D)	금액 (E=(A-B)*D)	
합 계	1,424,092	7,908	137,680		57,961	**195,641**
농지매매사업	1,201,668	3,650	98,422	4.29%	52,289	150,711
농지임대차사업	220,599	4,066	38,713	1.66%	5,594	44,307
농지교환·분합사업	1,825	192	545	4.76%	78	623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융자원금 회수 : 163,235백만원

· 산출근거 : 대여약정에 의한 정기 환매액과 조기 환매액 반영

· 정기회수 : 대여약정에 따른 환매예정년도 분할납부 반영 72,201백만원

· 조기회수 : ('18년도말 대여잔액 - '19년 회수종료 금액) × 조기회수율 = 91,034백만원

* 조기회수율 : '15~'17년간 조기회수율 평균(4.45%)

(단위 : 백만원)

년 도	'18년도말 대여잔액 (A)	'19년도 회수종료 (B)	'19년도 회수액			
			정기회수 (C)	조기회수		소계 (F=C+E)
				회수율 (D)	금액 (E=(A-B)*D)	
2006	8,807	8,807	8,807	4.45%	-	8,807
2007	24,967	-	12,484	4.45%	-	12,484
2008	65,765	-	21,922	4.45%	-	21,922
2009	115,955	-	28,989	4.45%	-	28,989
2010	174,289	-	-	4.45%	7,754	7,754
2011	190,618	-	-	4.45%	8,481	8,481
2012	211,496	-	-	4.45%	9,409	9,409
2013	224,417	-	-	4.45%	9,984	9,984
2014	231,736	-	-	4.45%	10,310	10,310
2015	238,822	-	-	4.45%	10,625	10,625
2016	243,784	-	-	4.45%	10,846	10,846
2017	271,020	-	-	4.45%	12,058	12,058
2018	260,000	-	-	4.45%	11,567	11,567
계	2,261,676	8,807	72,201		91,034	163,235

- 농지연금사업 융자원금 회수 : 30,880백만원

· 산출근거 : '11년 ~ '17년 사업 결과 사망 등의 사유로 약정해지가 발생한 건의 실 농지연금채권 회수 결과를 기준으로 '19년 원금회수 추정

· 농지연금채권 : 농업인의 사망 등 약정해지로 연금지급 종료시 상속인의 상환, 저당권실행 등으로 회수

· '18년도 추정 기말잔액(원금)과 '19년도 증가액(원금) 합계에 '17년 채권잔액 대비 회수비율(약정해지율)을 곱하여 원리금 산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기말 잔액	증 가	감 소 (회수액)	기말 잔액	증 가	감 소 (회수액)
합 계		203,627	99,742	24,115	279,254	140,200	33,343
원금	월지급금 (사업비)	188,556	92,314	22,327	258,543	129,929	30,880
이자	소계	15,071	7,428	1,788	20,711	10,271	2,463
	초기가입비	2,044	-	162	1,882	-	150
	위험부담금	2,336	1,480	303	3,513	2,046	442
	약정이자	10,691	5,948	1,323	15,316	8,225	1,871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융자원금 회수 : 5,984백만원

· 산출근거 : 대여약정에 의한 상환 도래액 회수

· 최근 3개년('15~'17) 조기회수율 평균 5.24% 적용

(단위:백만원)

연도	대여구분	'18년도말 대여잔액	'19년				
			원금회수	정기회수	조기회수	이자산출	연말잔액
2009	5년거치3년상환	-	-	-	-	-	-
	10년거치3년상환	7,124	373	-	373	107	6,751
2010	3년거치7년상환	1,615	893	808	85	32	723
2011	3년거치7년상환	-	-	-	-	-	-
2012	5년거치10년상환	6,994	1,143	777	366	140	5,851
2013	5년거치10년상환	370	56	37	19	7	314
2014	5년거치10년상환	26,534	1,390	-	1,390	531	25,144
2015	5년거치10년상환	13,267	695	-	695	265	12,572
2016	5년거치10년상환	11,940	625	-	625	239	11,315
2017	5년거치10년상환	2,843	149	-	149	57	2,694
2018	5년거치10년상환	12,600	660	-	660	252	11,940
2019	5년거치10년상환	-	-	-	-	-	13,800
계		83,287	5,984	1,622	4,362	1,630	91,104

* 융자조건을 '10.1.1부터 금리 1.5% 5~10년거치 3년상환에서 2.0%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변경

1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81,166	433,504	365,508	△67,996	△15.7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기금운용수익금

2. 수입 개요

○ 일반지출 및 정부내부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전년도 여유자금 중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전년도 통화금융기관 예치 추정액

○ 산출내역 : '18년 통화금융기관예치 예치 추정액 = 365,508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49,222	89,595	89,595	25.6	100.0	-	-
'15	129,735	64,386	64,386	49.6	100.0	-	-
'16	87,817	188,665	188,665	214.8	100.0	-	-
'17	212,671	281,165	281,165	132.2	100.0	-	-
'18	433,504	771,292	771,292	177.9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35,976	371,336	852,852	481,516	129.7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기금운용수익금

2. 수입 개요

○ 일반지출 및 정부내부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전년도 여유자금 중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전년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추정액

○ 산출내역 : '18년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치 추정액 = 852,852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95,295	302,783	302,783	317.7	100.0	-	-
'15	56,482	194,739	194,739	344.8	100.0	-	-
'16	13,682	203,312	203,312	1486.0	100.0	-	-
'17	205,437	1,035,976	1,035,976	504.3	100.0	-	-
'18	371,336	855,323	855,323	230.3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12.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금예탁원금회수	550,000	500,000	350,000	△150,000	△30.0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만기도래로 인한 원금회수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14년도 예탁금 1,000억원(5년물), '16년도 예탁금 2,000억원(3년물)
'16년도 예탁금 500억원(4년물, 1년 조기회수)

○ 산출내역 : 상동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15	-	-	-	-	-	-	-
'16	600,000	600,000	600,000	100.0	100.0	-	-
'17	550,000	550,000	550,000	100.0	100.0	-	-
'18	500,000	500,000	500,000	100.0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13.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금예탁이자수입	38,521	33,452	36,840	3,388	10.1

1.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2. 수입 개요

○ 기금의 여유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방법 : '18년 공자기금 기 예탁금(14,616억원) × 이자율 + '19년 공자기금 예탁금(7,000억원) × 이자율

○ 산출내역 : (14,116억원 × 1.60 ~ 3.50%) + (7,000억원 × 2.28)/2 ≒ 36,840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1,315	34,777	34,777	84.1	100.0	-	-
'15	48,941	45,832	45,832	93.6	100.0	-	-
'16	51,847	25,462	25,462	49.1	100.0	-	-
'17	40,242	38,521	38,521	95.7	100.0	-	-
'18	33,452	22,547	22,547	67.4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11월말 기준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283,810	260,000	282,000	**290,000**	**8,000**	**2.8%**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2600 - 2631

* 담 당 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 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보장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사업기간	'0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18년까지 투자액 : 27,672억원)
사업규모	1,300ha ('18년까지 : 13,515ha)
지원조건	융자 100%(7～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3년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사업비 290,000백만원
- 경영위기 농가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및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
  ▪ 산출내역 : ('18년) 1,300ha × 200백만원 → ('19년) 1,450ha

* '19년 : '13~'18년 5년간 예산소요 규모 반영

□ 지원 필요성

○ 정책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부채규모가 3천만원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가는 '15~'17년 3개년 평균 32,113호

○ '06~'17년(12년간) 동안 2조4,853억원을 지원하여 소유농지의 경매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자산손실 사전예방 및 농가 금융 비용 절감 기여

- 12년간 지원실적은 총 9,455농가(12,488ha)

  * 농가당 평균 258백만원, 1.3ha 지원

- 경매에 따른 농가 손실 방지(8,450억원, 농가당 89백만원*)

  * [24,853억원(지원누계)-16,403억원(66% 농지낙찰가율)]/지원자수(9,455명)

- 연체 이자 납부를 농지임대료로 대체하여 2,982억원(농가당 32백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이자비용」 3,231억원 -「임대료」 249억원

  * 지원전 : 24,853억원(지원농가 부채액)×13%(연체이자율) = 3,231억원

  * 지원후 : 연간임대료(농지매입가격 1% 이내) = 249억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83,810**	**260,000**	**282,000**	**290,000**	**8,000**	**2.8**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260,000** (1,300ha×200백만)	**282,000** (1,410ha×200백만)	**290,000** (1,450ha×200백만)	8,000	2.8
□ **비목**(합계)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83,810	260,000	282,000	290,000	8,000	2.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제1항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34조(기금의 용도)제1항제6호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추진경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지은행제도 도입 제안('03.12월)

-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 발표('04.2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600	2,600	2,600	2,600	2,900	2,6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연도별 집행 부진 사유

- '15년(불용) : 12월중 지원예정 농가의 계약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 '16년(불용) : 12월중 지원예정 농가의 계약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 '17년(불용) : 12월중 지원예정 농가의 계약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600 (-)	( )	( )	2,600 (-)	2,596 (-)	( )	4 (-)
'16년	2,600 (-)	( )	( )	2,600 (-)	2,584 (-)	( )	16 (-)
'17년	2,900 (-)	( )	( )	2,900 (-)	2,838 (-)	( )	62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경영회생지원농가 임대기간 연장, 분할납부, 이자율인하, 부분환매 도입 필요('13 국정감사)

○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따른 농지매매는 임대기간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13 기획재정위)

○ '17년 통합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기획재정부, 농지은행) : 83.7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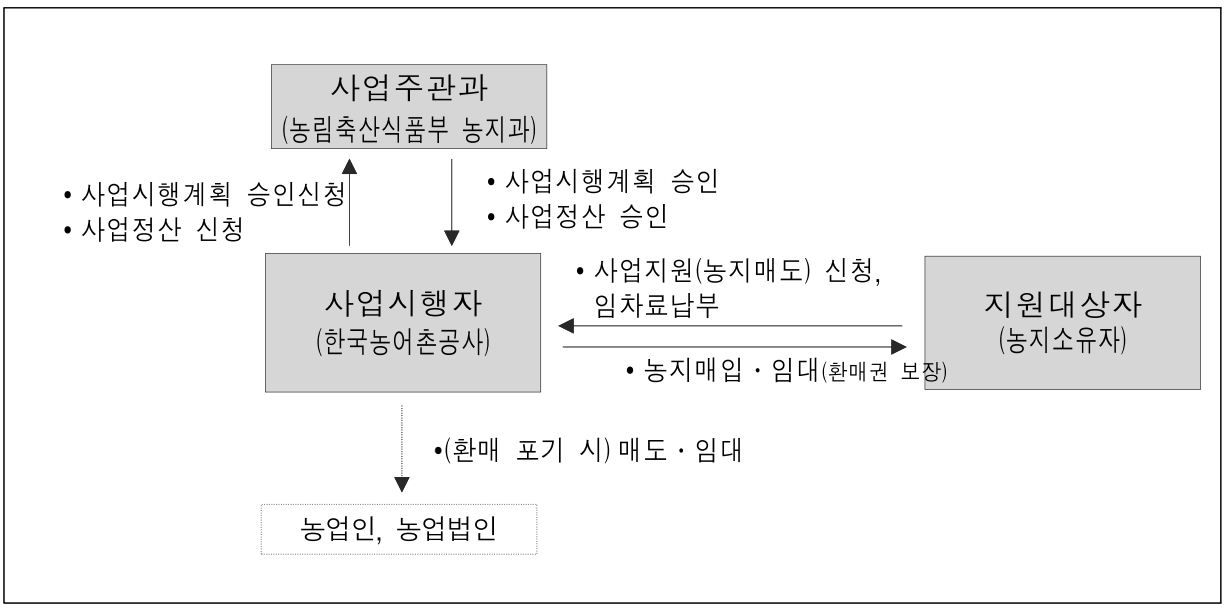

참고 1 부채 3천만원, 부채비율 40% 이상 농가현황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경영회생 사업대상 : 농업인 부채 3천만원 이상 / 부채비율 40% 이상

○ 3개년('15~'17) 평균 부채액 : 6조 4,255억원, 32,113호

- 총 부채액 대비 22.50%, 농가수 대비 3.01%

○ 총 부채액(억원) : ('06) 82,500 → ('15) 65,906 → ('16) 60,965 → ('17) 65,894

○ 농가수(호) : ('06) 59,431 → ('15) 34,835 → ('16) 31,183 → ('17) 30,320

○ 사업대상 농가 평균 부채액(억원) : ('06) 1.39 →('15) 1.89 → ('16) 1.96 → ('17) 2.17

- 호당부채액 = 사업대상 농가부채액 / 사업대상 농가수

< 최근 3개년 부채 현황 >

(단위 : 호, 억원, %)

구 분		'15~'17년 평 균	2006년(참고)	2015년	2016년	2017년
총 합 계	농가수	1,066,270	1,245,083	1,088,518	1,068,274	1,042,017
	부채액	285,537	350,530	296,235	285,546	274,830
농가당 평균부채액(천원)		26,779	28,153	27,215	26,730	26,375
3천만원 미만, 40% 미만	농가수	833,821	913,127	848,388	819,299	833,775
	(비율)	78.19%	73.34%	77.94%	76.69%	80.02%
	부채액	30,495	50,130	31,888	30,911	28,685
	(비율)	10.69%	14.30%	10.76%	10.82%	10.43%
3천만원 이상, 40% 미만	농가수	199,891	268,500	204,732	217,555	177,386
	(비율)	18.75%	21.56%	18.81%	20.37%	17.02%
	부채액	190,750	217,080	198,398	193,623	180,229
	(비율)	66.80%	61.93%	66.97%	67.81%	65.58%
3천만원 미만, 40% 이상	농가수	445	4,025	563	237	536
	(비율)	0.05%	0.32%	0.05%	0.02%	0.05%
	부채액	37	820	43	47	22
	(비율)	0.01%	0.23%	0.015%	0.02%	0.008%
3천만원 이상, 40% 이상	농가수	32,113	59,431	34,835	31,183	30,320
	(비율)	3.01%	4.78%	3.20%	2.92%	2.91%
	부채액	64,255	82,500	65,906	60,965	65,894
	(비율)	22.50%	23.54%	22.25%	21.35%	23.98%

* 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초과 시 위험농가(KREI)

2.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맞춤형 농지지원	306,575	388,300	418,300	**464,928**	**46,628**	**11.1**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2600 - 26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가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지원 및 2030세대, 진입·성장단계 농가 집중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 '18년부터 기존 2개 사업(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 보유·관리 등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구조개선 및 농업인 소득안정 등의 기능을 수행
사업기간	'18~계속 (농지매입비축) '10～'17, (농지규모화) '90～'17
총사업비	해당없음('17년까지 기투자액 : 85,841억원) * (농지규모화) 74,166억원, (농지매입비축) 11,675억원
사업규모	3,793ha('17년까지 : 182,310ha) * (농지매입비축) 5,099ha, (농지규모화) 177,211ha
지원조건	융자 100%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지 매입비(농어촌공사에서 매각시 상환) * 농지매매용 : 금리 1%, 11~30년간 분할상환 * 임차·임대용 :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동안 분할상환 * 교환분합 : 금리 1%, 10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가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지원 및 2030세대, 진입·성장단계 농가 집중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사업비 4,649억원

○ (농지매매용) 고령·은퇴, 이농·전업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 후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리로 매도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35억원

- ('17년) 600ha × 105.9백만원
  → ('18년) 571ha × 63,500백만원(100ha ×136.1백만원+471ha×105.9백만원)
  * 생애 첫 농지구입 지원(100ha) 단가차등 반영(35천원→45천원/3.3㎡, +10천원)

○ (임차임대용) 은퇴농업인의 농지를 장기로 임차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임대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00억원

- ('17년) 3,357ha × 26.8백만원 → ('18년) 1,500ha

○ (교환분합용) 농지규모화·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 지원 사업비 2억원

- ('17년) 7.7ha × 104.2백만원 → ('18년) 2.2ha

○ (공공임대용) 고령·은퇴, 이농·전업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후계농업인에게 임대지원 하기 위한 사업비 3,612억원

- ('17년) 1,000ha × 180백만원 → ('18년) 1,720ha × 2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농가인구 고령화, 쌀 수급 불균형, 귀농인 및 창업농의 농지수요 증가, 농지가격 상승 등 지속

-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 신규농 등의 농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쌀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

* 전체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 : ('00) 21.7% → ('05) 29.1→ ('10) 31.8→ ('16) 40.3 →('17) 42.5
* 쌀 재고량 : ('13) 801천톤 → ('14) 874 → ('15) 1,354 → ('16) 1,702 →('17) 1,863
* 귀농가구수 : ('13) 10,202호 → ('14) 10,758 → ('15) 11,959 → ('16) 12,785
* 농지가격 상승률(진흥지역안 농지실거래가) : ('13) 4.9 →('14) 3.2 →('15) 24.3 →('16) 11.8 →('17) 4.6

○ **(정책 효율성 제고)** 쌀 전업농 육성위주에서 청년농가 및 창업농 등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으로 전환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

- 농지가격 상승으로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소유를 통한 규모화 보다는 임대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
- 매입비축농지를 활용, 쌀 생산조정기능 강화 및 젊은 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으로 안정적 농업정착에 기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농지확보 곤란이 귀농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력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영농기반(농지) 지원 필요

* 귀농 애로요인(복수응답) :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맞춤형농지지원	306,575	388,300	418,300	464,928	46,628	11.1
▪ 농지매매용	83,712	63,500 (100ha×136.1백만원+ 471ha×105.9백만원)	63,500 (100ha×136.1백만원+ 471ha×105.9백만원)	63,500 (100ha×136.1백만원+ 471ha×105.9백만원)	-	-
▪ 임차임대용	42,686	70,000 (2,611ha×26.8백만원)	40,000 (1,500ha×26.8백만원)	40,000 (1,500ha×26.8백만원)	-	-
▪ 교환분합용	228	800 (7.7ha×104.2백만원)	800 (7.7ha×104.2백만원)	228 (2.2ha×104.2백만원)	△572	△71.5
▪ 공공임대용	179,949	254,000 (1,270ha×200백만원/ha)	314,000 (1,159ha×271백만원)	361,200 (1,720ha×210백만원/ha)	47,200	15.0
□ 비목(합계)	306,575	388,300	418,300	464,928	46,628	11.1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306,575	388,300	418,300	464,928	46,628	11.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지규모화사업

▪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제19조(농지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

▪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5. 제24조의2에 다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추진경위

- 농지규모화사업

▪ '90.7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농지규모화사업 실시
▪ '94.6 : 「농어촌발전대책」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 방침 발표
▪ '04.8 :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 발표(세부추진계획 수립<'05.1>)
▪ '14.9 :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수립 발표

- 농지매입비축사업

▪ '05.12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매입비축사업 시행근거 마련)
▪ '06.4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08.5~11 :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실시(한국농촌발전연구소)
▪ '09.4~12 :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 '09.6 :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시행)
▪ '10.1 : 농지매입비축 신규사업 시행
▪ '10.8 :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 '15. 12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맞춤형 농지지원	3,349	2,605	3,326	3,165	3,343	3,88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32,620 ( )	- ( )	△900 ( )	331,720 ( )	331,631 ( )	- ( )	89 ( )
'16년	316,500 ( )	- ( )	△2,500 ( )	314,000 ( )	299,371 ( )	- ( )	14,629 ( )
'17년	334,300 ( )	- ( )	- ( )	334,300 ( )	306,575 ( )	- ( )	27,72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前 농지규모화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농업인의 농지구입시 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단가 인상 필요('14년 국정감사)

○ 호당 평균 6ha이상의 전업농 7만호가 벼 재배면적의 50%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나, '13년에 기달성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목표치를 사용중

⇒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목표수치를 상향 조정('15년 결산, 국회)

○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6ha 수준이 되어 목표를 이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6ha 이상의 전업농에게 지원되는 비율이 3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6ha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15년 결산, 국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3) 자체평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30천원 → 35천원/3.3㎡, 15.1.1.부터)

○ 6ha 미만의 농가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연도별 지원목표를 할당

○ '17년부터 신규 성과지표(6ha미만 농업인 지원 비율) 마련

○ 前 농지매입비축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1970년부터 현재까지 40년간 농지규모화사업 시행
-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신탁사업, 농업생산법인(농지)출자 육성사업,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매입협의사업 등 시행

○ **(프랑스)** SAFER(토지정비 및 농촌시설회사)를 통해 농지매입 및 매도, 임대 등 기능 수행

○ **(독일)** 농촌개발공사를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 매입, 농업경영규모 확대 우량농지 매도, 공적 목적 토지비축, 선매권 행사 등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거래에 공적 개입

(5) 사업추진절차

【매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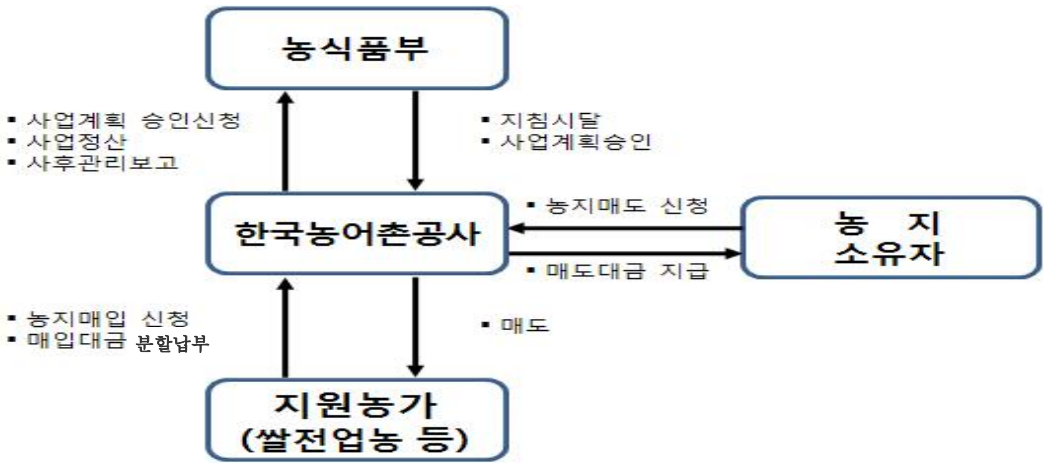

【장기임차임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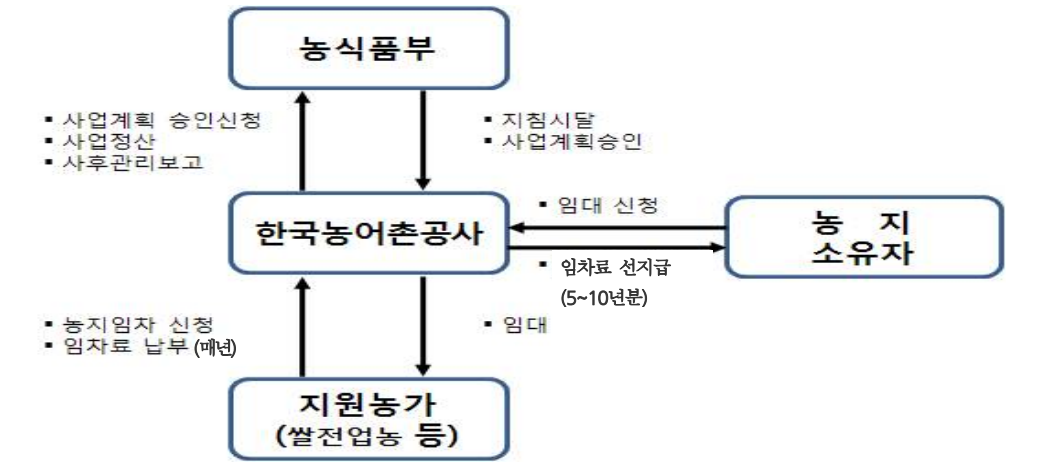

【교환·분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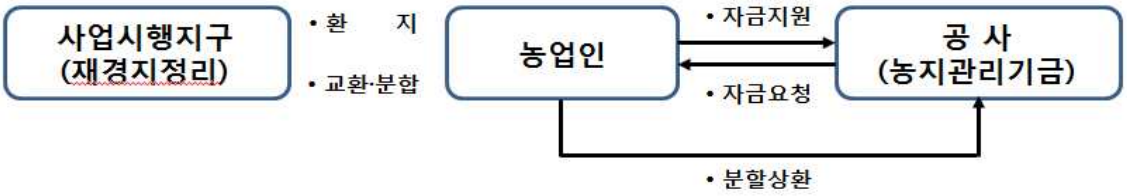

【공공임대용농지매입】

3. 대단위농업개발(농지)(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78,846	44,276	52,276	**52,000**	**△276**	**△0.5**

* 사업코드 : 20 - 15 - - 100 - 101 - 4000 - 4043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간척지농업과장(박재수), 사무관(류광현)☎(044-201-187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방조제 축조 등으로 조성된 담수호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여 용수 공급, 경지정리 및 간척농지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대규모 농어업회사로 육성 및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간척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조사·관리시스템을 구축	
사업기간	○ 화옹지구	'91 ~ '22
	○ 영산강Ⅲ-1지구	'95 ~ '23
	○ 영산강Ⅲ-2지구	'97 ~ '21
	○ 시화지구	'98 ~ '24
	○ 간척농지활용지원	'09 ~ 계속
	○ 간척지 영농편의	'17 ~ 계속
총사업비	○ 화옹지구	9,720억원('18년까지 7,377억원)
	○ 영산강Ⅲ-1지구	5,984억원('18년까지 4,879억원)
	○ 영산강Ⅲ-2지구	4,387억원('18년까지 4,095억원)
	○ 시화지구	4,371억원('18년까지 2,237억원)
	※ 간척농지활용지원, 간척농지영농편의사업은 총사업비 대상사업 제외	
사업규모	○ 화옹지구	방조제 9.8㎞, 배수갑문 1개소, 방수제 37㎞, 양수장 2개소, 내부개발 4,482ha
	○ 영산강Ⅲ-1지구	간척개답 7,960ha, 양수장 5개소, 배후지 용수로 140㎞
	○ 영산강Ⅲ-2지구	간척개답 4,540ha, 양수장 4개소, 배후지 용수로 86.4㎞
	○ 시화지구	방수제 37.6㎞, 양수장 3개소, 내부개발 3,636ha, 도수로 15.9㎞
	○ 간척농지활용지원	대상면적 : 간척지 30,394ha ·간척농지 실태조사 13,418ha(정밀토양조사 193ha) ·농업회사관리 8개회사 1,413ha
	○ 간척농지 영농편의	대상면적 : 간척지 10,272ha(법 제34조의 5의 2 가~나목)
지원조건	민간보조, 국고(농지관리기금)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지구명	금액 및 산출근거	
	금 액	산출근거
계	52,000	
○화옹지구	25,000	○ 내부개발 235ha - (내부개발) 235ha × 107백만원/ha = 25,145
○영산강Ⅲ-1지구	13,000	○ 양수장1개소, 용수로 33.3㎞ - (양수장) 1개소 × 834백만원/개소 = 834 - (용수로) 33.3㎞ × 366백만원/㎞ = 12,187
○영산강Ⅲ-2지구	4,724	○ 내부개발 55ha - (내부개발) 55ha × 86백만원/ha = 4,730
○시화지구	3,600	○ 7공구 도수로 2.6㎞ - (도수로) 2.6㎞ × 1,385백만원/㎞ = 3,601
○간척농지활용지원	1,476	- 사업대상지 및 사업자 관리비 100 - 간척지 실태조사·관리시스템 구축 1,376 · 작물재배환경 조사, 농업이용환경 모니터링 · 관리시스템구축 및 운영
○간척농지영농편의	4,200	- 10,272ha × 408천원/ha[1] = 4,200백만원 * 1) 공사 ha당 유지관리 지원단가

□ 지원 필요성

지구명	지원 필요성
화옹	○ 축산·채종·관광농업을 결합한 미래형 복합농업단지로 개발 추진중인 에코팜랜드(화옹4공구) 소요 예산지원 필요 -지방비, 민간부담분 투자계획과 연계한 적정예산 반영 필요 ○ 화옹지구 수질개선 보완대책 소요사업비 지원 필요 -수질보전대책 관계부처와 협의를(경기도, 화성시, 환강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통해 수립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을 완료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담수화시기를 결정하도록 함
영산강 Ⅲ-1	○ 한해상습지역인 배후농지의 조기 용수 공급 및 효율적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 확대 지원 필요 -배후지 농경지 5,200ha는 용수원이 없어 개별관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해 방지를 위해 배후지 용수개발 조기 추진 필요 ※영산강Ⅲ-1지구 주 수원공인 영암호는 가뭄에도 저수율이 100% 수준으로, 용수로 설치 시 가뭄해소 등 사업효과 가시화 ※배후지 용수개발은 사업장기화 및 민원발생, 총사업비 증액 방지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집중지원 필요
영산강 Ⅲ-2	○ 부동지구 기업도시 신청으로 영산강Ⅲ-2지구 금호2-1공구(1,082ha) 사업이 2년('09.9～'11.12)간 유보됨에 따라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집중 지원할 필요 *부동지구 : 전남도가 금호2-1공구 기업도시 개발을 건의하였으나 '11년말 KDI의 타당성이 없다(B/C=0.31～0.65)는 결론에 따라 농지조성 공사 재개
시화	○ 시화지구 내부개답 용수원인 탄도호의 제염 및 용수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시우도수로의 조속한 준공에 필요한 소요예산 지원 필요
간척농지 활용지원	○ 농업용으로 관리해야 하는 간척지는 총 30천ha(준공후 미처분 13천ha, 공사중 17천ha)이며, 종전의 수도작 위주에서 벗어나 간척농지의 다각적 이용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09년부터 간척지를 대상으로 장기임대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업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대상지 및 사업자 관리 필요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척지 제반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관리 필요 * '13.1.18 시행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간척농지 영농편의	○ 농지관리 기금재원으로 조성된 간척농지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용수관리) 농업용수의 적기 공급, 한해·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수질관리)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시설물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개보수 ○ 간척농지의 경우 준공된 지 평균 20.18년(최고 30년) 경과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기존 유지관리 예산으로 부족하여 별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78,846	44,276	52,276	52,000	△276	△0.5
▪ 화옹지구	42,000	24,500 내부개발228ha (228ha×107백만원)	24,500	25,000 내부개발 235ha (235ha×107백만원)	500	2.0
▪ 영산강Ⅲ-1지구	16,500	5,300 양수장 2개소(계2) (2개소×1,479백만원) 용수로 6.4㎞ (6.4㎞×366백만원)	16,900 양수장 2개소(완1,계1) (2개소×5,303백만원) 용수로 17.2㎞ (17.2㎞×366백만원)	13,000 양수장 1개소 (1개소×834백만원) 용수로 33.3㎞ (33.3㎞×366백만원)	△3,900	△23.1
▪ 영산강Ⅲ-2지구	14,500	5,000 농지조성 58ha (58ha×86백만원)	5,000	4,724 농지조성 55ha (55ha×86백만원)	△276	△5.5
▪ 시화지구	20	3,600 시우도수로 2.2㎞ (2.6㎞×1,636백만원)	-	3,600 도수로 2.6㎞ (2.6㎞×1,385백만원)	3,600	-
▪ 간척농지활용지원	1,626	1,476 (대규모농어업회사 1,413ha, 정밀토양조사 230ha, 농업이용 환경모니터링 13,739ha)	1,476	1,476 (대규모농어업회사 1,413ha, 정밀토양조사 230ha, 농업이용 환경모니터링 13,739ha)	-	-
▪ 간척농지영농편의	4,200	4,200 (면적10,272ha×460천원/ha)	4,200	4,200 (면적10,272ha×460천원/ha)	-	-
▪ 간척지타작물재배조성		200 (타작물 재배기반조성 215ha)	200	-	△200	△100.0
□ 비목(합계)	78,846	44,276	52,276	52,000	△276	△0.5
○ 민간대행사업비(320-08)	73,020	38,600	46,600	46,324	△276	△0.6
○ 민간경상보조(320-01)	5,826	5,676	5,676	5,676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8조(농어업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실태조사),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추진경위

< 화옹지구 >

- 1991. 09 : 방조제(9.8km) 공사착공 * 준공 ('08.12)
- 2005. 12 : 1공구 방수제 공사착공 * 준공 ('16. 3)
- 2007. 04 : 2공구 방수제 공사착공 * 준공 ('12.12)
- 2007. 11 : 3공구 방수제 공사착공 * 준공 ('13.06)
- 2010. 11 : 7공구 농지조성 공사착공
- 2013. 11 : 8공구 농지조성 공사착공
- 2014. 12 : 4공구 에코팜랜드 공사착공
- 2016. 2 : 5공구 농지조성 공사착공

< 영산강Ⅲ-1지구 >

- 1988. 06 : 외곽방조제 착수
- 1993. 12 : 외곽방조제 준공
- 2009. 08 : 산이2-2공구 준공
- 2011. 10 : 성산1공구 착수
- 2014. 09 : 마산3공구 준공
- 2014. 09 : 성산2공구 착수

< 영산강Ⅲ-2지구 >

- 1989. 12 : 외곽방조제 착수
- 1996. 11 : 외곽방조제 준공
- 1997. 09 : 간척지 공사 착수
- 2004. 06 : 화원1공구 준공
- 2004. 12 : 화원2-1공구 착수
- 2009. 12 : 금호1-1공구 준공
- 2011. 12 : 금호1-2공구 준공
- 2013. 12 : 화원2-2공구 준공
- 2017. 8 : 화원2-1공구 준공

< 시화지구 >

- 2001. 11 : 1공구 방수제공사 착공 * 준공 ('06.12)
- 2002. 09 : 2공구 내부개답공사 착공 * 준공 ('10.12)
- 2005. 06 : 3-1공구 방수제공사 착공 * 준공 ('08.12)
- 2006. 08 : 2공구 수질개선공사 착공 * 준공 ('09.12)
- 2006. 12 : 4-1공구 방수제공사 착공 * 준공 ('12.09)
- 2007. 04 : 6-1공구 방수제공사 착공 * 준공 ('12.09)
- 2014. 06 : 7공구 도수로공사 착공

< 간척농지활용지원 >

- '08. 3. : 대통령 업무보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부문 국정과제 채택
- '08. 9.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08.12.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 세부계획 확정
- ‘08.12.～’09. 4. : 영산강(713ha)·새만금(700ha)지구 사업자 공모
- ‘09. 4.～’10. 4. : 영산강·새만금지구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영산강지구(4개 사업자), 새만금 지구(3개 사업자)
- ‘10. 5. : 영산강 지구 일시사용 승인
- ‘10.12.～’11. 5. : 영산강 잔여지구(103ha) 사업자(1) 공모/선정
- ‘12. 2.～12. : 영산강 지구 전기시설 설치
- ‘12. 3. : 간척지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제안
- ‘12. 12. : 간척지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13년 예산확정
- ‘13.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시행
- ‘13. 1.～’13. 12. : 작물재배환경조사(정밀토양조사 6,657ha)
- ‘14. 1.～’14. 12. : 작물재배환경조사(6,568ha) 및 농업이용환경모니터링(6,657ha)
- ‘15. 1.～’15. 12. : 농업이용환경모니터링(13,499ha) 및 관리시스템 구축
- ‘15. 5 ~ ’15. 6 : 새만금지구 사업포기 및 협약해지(새만금팜 333ha, 초록마을 113ha)
- ’15. 11 :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분석용역」
- ‘16. 1.～’16. 12. : 작물재배환경조사(144ha) 및 농업이용환경모니터링(13,499ha)
- ‘16. 2.17 : 무투회의, 농업특화단지 조성 보고(새만금위원회 10월)
- ‘16.10. 7 : 농업특화단지 조성방안 TF 구성, 차관주재 점검회의
- ‘16.10.15 : 장관주재,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현장 토론
- ‘17. 1.～’17. 12. : 작물재배환경조사(170ha) 및 농업이용환경모니터링(13,643ha)
- ’17. 1. 5 : 영산강지구 ㈜장수채 파산(140ha)
- ’17. 4. 3 :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262ha)
- ’17. 6. 5 : 영산강 농업특화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140ha)
- ’17. 9. 5 :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 부안마케팅(영) 외 9개업체 사업자 지정
- ’17.10.26 : 영산강 농업특화단지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 땅끝황토친환경(영) 1개업체 사업자 지정
- ‘18. 1.～’18. 12. : 작물재배환경조사(500ha) 및 농업이용환경모니터링(13,813ha)

< 간척농지영농편의사업 >

- ‘17 : 간척농지 10,272ha, 양·배수장 등 시설물 17개소, 용·배수로 1,386km 적정 유지관리
- ‘18 : 간척농지 10,272ha, 양·배수장 등 시설물 17개소, 용·배수로 1,386km 적정 유지관리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591	587	612	534	493	443
▪ 화옹지구	300	309	324	259	250	245
▪ 영산강Ⅲ-1지구	100	123	120	102	75	53
▪ 영산강Ⅲ-2지구	130	107	119	106	75	50
▪ 시화지구	52	36	36	52	36	36
▪ 간척농지활용지원	9	12	13	15	15	15
▪ 간척농지영농편의	-	-	-	-	42	42
▪ 간척지타작물재배조성	-	-	-	-	-	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불용실적

- 2016년 : 시화지구(5,226백만원, 국회부대의견 미해소에 따른 불용)
  간척농지활용지원사업(80백만원, 연도말 검정시 감액처리)
- 2017년 : 시화지구(3,580백만원, 국회부대의견 미해소에 따른 불용)

○ 기금운영 계획 변경

- 2016년 : 새만금 지구 예산 전용(5,000백만원)

  * 새만금지구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 5,000백만원을 화옹지구로 변경하여 집행

- 2017년 : 농지기금 여유자금 및 새만금 지구 예산(33,150백만원) 전용

  * 농지지금 여유자금(19,650백만원) 및 새만금지구 총사업비 협의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액(33,150백만원)을 화옹지구(17,000백만원), 영산강Ⅲ-1지구(9,000백만원), 영산강Ⅲ-2지구(7,000백만원), 간척농지활용지원(150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집행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12**	-	100	687	**687**	-	-
	(612)	(-)	(100)	(687)	**(687)**	(-)	(-)
'16년	**534**	-	50	584	**531**	-	53
	(534)	(-)	(50)	(584)	**(531)**	(-)	(53)
'17년	**493**	-	331	824	**788**	-	36
	(493)	(-)	(331)	(824)	**(788)**	(-)	(3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구 분	지적년도	지적기관	지적내용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화옹지구 -영산강Ⅲ-1지구 -영산강Ⅲ-2지구 -시화지구	2010, 2011	국정감사	사업추진 실적 저조 및 사업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확대 필요성 지적
	2015	결산국회	사업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예산편성 및 완공위주의 집중적인 투자 필요성 지적
	2016	결산국회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완공위주 추진 필요
-간척농지활용지원	2011	결산국회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사업준비 부족으로 사업성과가 없고 향후 사업 추진가능성도 불투명 -사업추진 제약요인들을 충분히 검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화옹지구, 영산강Ⅲ-1지구, 영산강Ⅲ-2지구, 시화지구

예 정 지 조 사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8조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자 지정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계획 공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농어촌정비법 제9조	
동 의 서 징 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 인가	농식품부장관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인가 고시	농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 업 착 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준 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간척농지 활용지원 및 영농편의

-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세부계획 수립・집행(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 정산(농림축산식품부)

〈계획〉		〈추진단계〉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사업지침 등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조사 시행	➡	사업관리 및 성과점검, 사업비 정산

4. 새만금지구(내부개발)(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새만금지구(내부개발)	194,100	188,000	188,000	153,642	△34,358	△18.3

* 사업코드 : 20 - 06 - - 100 - 101 - 4000 - 4043 - 333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간척지농업과장(박재수), 서기관(이형주, ☏ 044-201-1874)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새만금 방조제 33.9㎞ 완공 이후 내측에 방수제 62.1㎞를 축조 및 농생명용지·농촌도시용지·바이오작물생산단지 9,430ha 등을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09～'22
총사업비	24,257억원 ('18년까지 투자액 15,698억원)
사업규모	방수제(62.1㎞), 농생명용지(8,570ha), 바이오작물생산단지(400ha), 농촌도시용지(460ha), 잼버리부지(884ha) 환경·생태용지(929ha), 기타(935ha) 등
지원조건	국고(농지관리기금) 100%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16년까지 방수제 54.2㎞ 축조 이후 잔여 7.9㎞ 계속 추진 및 내부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하여 ’19년 153,642백만원 소요

- (방수제) 잔여 2개 공구(7.9㎞) 소요사업비 32,000백만원
- (용지조성) 농생명용지 10개 공구(7,917ha) 소요사업비 96,000백만원
- (잼버리부지 매립) 세부설계 소요사업비 5,000백만원
- (가력선착장 확장)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소요사업비 3,642백만원
- (기타) 사후환경조사,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소요사업비 17,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연차별 공정계획에 따른 예산 투자 필요

- 내부토지 보호를 위해 간척농지 외곽에 방수제 축조 등 지원
- 방수제 내측 토지에 용·배수로 및 도로 설치, 단지내 정지작업 등 지원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세부설계,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기본조사 등 실소요 예산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새만금지구(내부개발)	**194,100**	**188,000**	**188,000**	**153,642**	**△34,358**	**△18.3**
▪ 방수제 축조	18,481	**39,500** (7.9㎞×5,000백만)	**39,500** (7.9㎞×5,000백만)	**32,000** (7.9㎞×4,050백만)	△7,500	△19.0
▪ 농생명용지 조성	152,479	**130,000** (7,917ha×16.4백만)	**130,000** (6,627ha×19.6백만)	**96,000** (7,917ha×12.1백만)	△34,000	△26.2
▪ 잼버리부지 매립	-	-	-	**5,000** (세부설계 1식)	5,000	순증
▪ 가력선착장 확장	-	-	-	**3,642**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1식)	3,642	순증
▪ 기타	23,140	**18,500** 군대체시설, 사후환경조사,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18,500** 군대체시설, 사후환경조사,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17,000** 사후환경조사,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1,500	△8.1
□ 비목(합계)	**194,100**	**188,000**	**188,000**	**153,642**	**△34,358**	**△18.3**
○ 법정민간대행(320-08)	194,100	188,000	188,000	153,642	△34,358	△18.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추진경위

- ’89.11. : 새만금지구(방조제, 내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 ’91.11. : 사업시행인가・고시, 착공
- ’07.1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 ’08.10.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 ’09.10. : 내부개발(방수제) 착수
- ’10. 1. :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 수립(제4차 새만금위원회)
- ’10. 4. : 방조제 준공식 개최 및 도로개통
- ’11. 3.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확정
- ’11. 8 ~ ’12. 5. : 새만금지구 간이타당성재조사 실시(KDI)
- ’12. 9. :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 총사업비 조정

  * 내부개발사업과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으로 예산코드 분리
- ’12.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13. 6. : 농업용지 5공구(1,513㏊) 착공
- ’14. 9. :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확정(제14차 새만금위원회)
- ’15.12. : 방수제 8개 공구(50㎞) 준공
- ’16.12. : 방수제 만경7공구(4.2㎞) 준공
- ’17.12. :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확정(제19차 새만금위원회)
- ’17.12. : 농업용지 5공구(1,513㏊) 준공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새만금지구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2,335	2,835	2,837	2,126	2,234	1,88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2015년 미집행액 : 565억원

▪ 방수제 1개 공구(만경6) 및 농생명용지 3개공구(7-1, 7-2,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 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차년도로 이월(565억원)

○ 2016년 미집행액 : 1,498억원

▪ 대단위농업개발(화옹지구)로 전용(50억원)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결과(4월 요청, 10월 승인)에 따른 신규 4개공구 착수 어려움 및 방수제 연결도로에 대한 주민협의 지연, 시공사부도 등으로 인한 불용(1,448억원)

○ 2017년 미집행액 : 293억원

▪ 가뭄상습지역인 영산강Ⅲ-1지구 등의 영농기이전 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135억원)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기간 장기간(8개월) 소요로 전력지중화 사업비 불용(158억원)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837** (-)	- (-)	- (-)	2,837 (-)	**2,272** (-)	565 (-)	- (-)
'16년	**2,126** (-)	565 (-)	△50 (-)	2,641 (-)	**1,193** (-)	- (-)	1,448 (-)
'17년	**2,234** (-)	- (-)	△135 (-)	2,099 (-)	**1,941** (-)	- (-)	158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지적사항 : 해당없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 ‘18년(미흡), ’17년(보통), ‘16년(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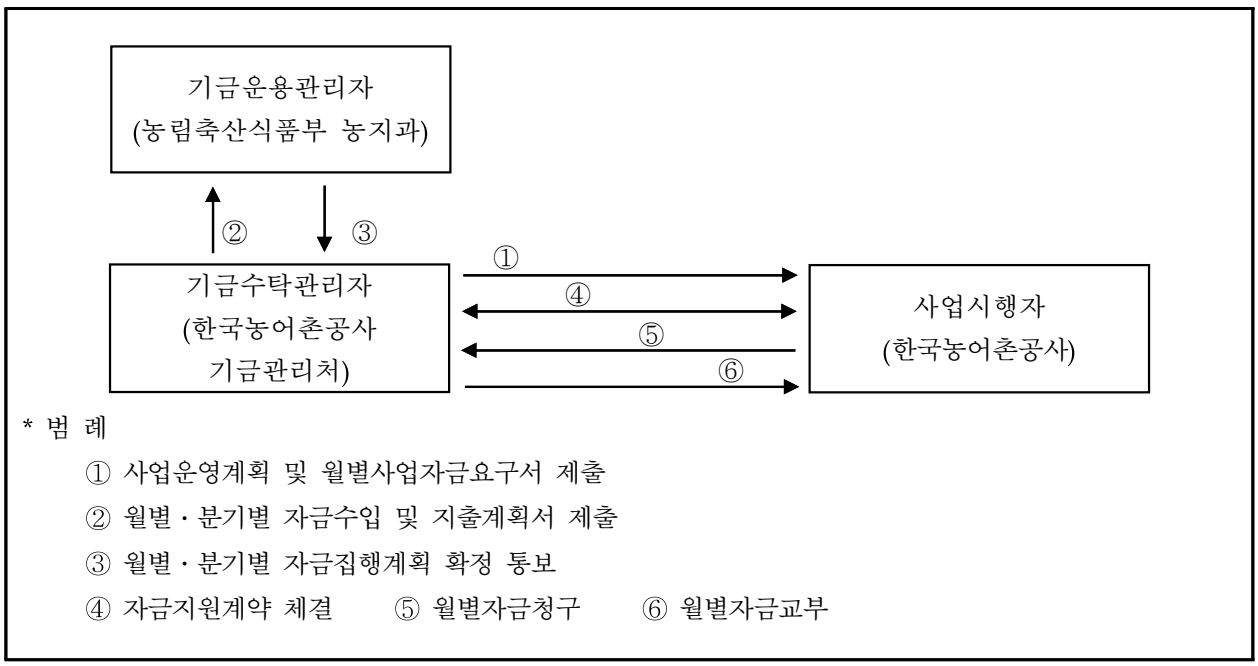

* 범 례

① 사업운영계획 및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② 월별·분기별 자금수입 및 지출계획서 제출

③ 월별·분기별 자금집행계획 확정 통보

④ 자금지원계약 체결 ⑤ 월별자금청구 ⑥ 월별자금교부

5.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새만금지구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16,400	16,400	16,400	20,000	3,600	22.0

* 사업코드 : 20 - 06 - - 100 - 101 - 4000 - 4043 - 335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간척지농업과장(박재수), 사무관(김성률, ☏ 044-201-187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0년 완공된 새만금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관리 및 조사·분석 등을 통해 사전재해예방 및 경쟁력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 방수제, 농생명용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새만금지역 내 농식품부 소관 공유수면 및 노출지에 대한 유지관리, 환경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명소화사업, 묘목장 조성 등
사업기간	20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18년까지 투자액 1,005억원)
사업규모	방조제 33.9km 및 배수갑문 2개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새만금호 및 노출 간척지 환경관리, 묘목장 조성·운영 등
지원조건	민간보조, 국고(농지관리기금) 100%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시설물 및 공유수면 관리 등을 위한 소요액

- 시설물(방조제, 방수제, 배수갑문, 승수로 등)을 운영·점검하고, 이를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 11,693백만원
- 새만금 사업지역 내 농식품부 소관 공유수면 및 노출 간척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비 : 3,790백만원
- 내부개발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묘목장 조성, 수질오염방재 등을 위한 수리시험 및 환경관리비 : 4,51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방조제·방수제 등 주요 시설물의 점검·보수, 배수갑문 조작 등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 노출 간척지의 불법 점·사용 차단, 관련 시험·분석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원활한 추진 도모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쓰레기 및 폐사 어패류 수거 등을 통한 환경관리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예산 (A)	'19 예산 (B)	(B-A)	%
□ **새만금지구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16,400**	**16,400**	**20,000**	**3,600**	**22.0**
▪ 시설물 유지관리	8,883	**8,883** (방조제배수갑문 보수보강, 녹지대 관리, 홍보관 운영 등)	**11,693** (방조제배수갑문 보수보강, 녹지대 관리, 홍보관 운영, 방수제 관리(54.2km), 방조제 근고공 보강, 통합관리시스템 보수 등)	2,810	31.6
▪ 공유수면 관리	3,790	**3,790** (공유수면 감시 및 환경관리 등)	**3,790** (공유수면 감시 및 환경관리 등)	-	-
▪ 수리시험 및 환경관리 등	3,727	**3,727** (지형수질염분조사, 수질오염방재 등)	**4,517** (지형수질염분조사, 수질오염방재, 묘목장 조성 등)	790	21.2
□ **비목**(합계)	**16,400**	**16,400**	**20,000**	**3,600**	**22.0**
○ 법정민간대행(320-08)	16,400	16,400	20,000	3,600	22.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농업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방조제·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89. 11. : 새만금지구(방조제, 내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 '91. 11. : 사업시행인가・고시, 착공
- '06. 4. :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 완료
- '08. 10.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 '10. 4. : 방조제 준공식 개최 및 도로개통
- '10. 7. : 농업용지구간 방수제 착공
- '11. 3.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 '13. 1. : 내부개발사업과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예산코드 분리
- '14. 9. : 새만금 기본계획(Master Plan) 변경(제14차 새만금위원회)
- '15. 12. : 방수제 8개 공구(50km) 준공
- '16. 12. : 방수제 만경7공구(4.2km) 준공
- '17. 5. : 새만금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지정(농식품부→농어촌공사)
- '17. 12. :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제19차 새만금위원회)
- '17. 12. : 농생명용지 5공구(1,513ha) 준공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새만금지구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165	165	165	182	164	16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5 (165)	- (-)	- (-)	165 (165)	165 (165)	- (-)	- (-)
'16년	182 (182)	- (-)	- (-)	182 (182)	182 (182)	- (-)	- (-)
'17년	164 (164)	- (-)	- (-)	164 (164)	164 (16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지적사항 : 해당없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 '18년 미흡, '17년 보통, '16년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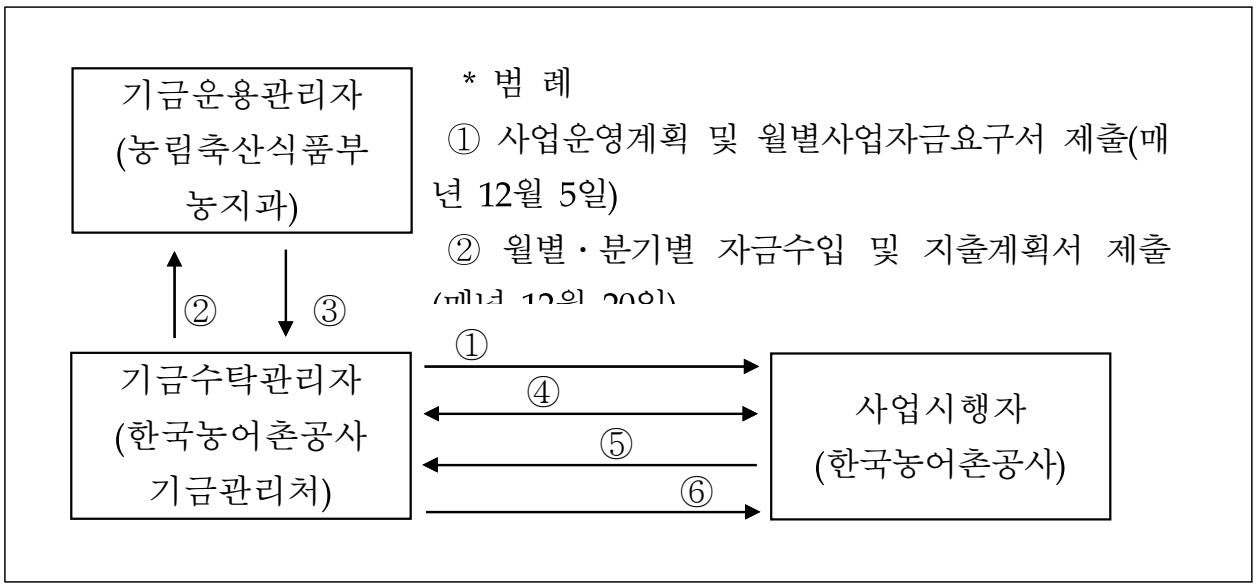

6. 농지연금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67,305	92,314	100,314	**129,929**	29,615	29.5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4100 ~ 4130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문환)☎(044-201-174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지연금사업
사업기간	'11 ~ 계속
총사업비	-억원('18년까지 투자액 3,343억원)
사업규모	'17년까지 8,631건 가입 ('18년까지 11,331건 가입예정)
지원조건	융자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요구내용 : 연금가입자 월 연금 지원 사업비 **129,929백만원**

- 가입자 증가(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 및 단가인상 요인(감정평가율 조정 80% → 90%)을 반영하여 '18년 대비 29.5% 증액

○ 산출근거

- 산출금액 : 129,929백만원 (기존가입건 94,780+신규가입건 20,768+일시인출 14,381)

▪ (기존가입) : 7,962건[1] × 992천원* × 12월 ≒ **94,780**백만원

[1] 7,962건 = 5,831건('17년말 약정유지건) × 85.1%*(약정유지율) + 3,000건('18년 신규가입건)

* 85.1% = 100% - 해지율 14.9%('17년 해지율 : 중도해지율 13.5%+기간형 종료율 1.4%)

* 992천원 = (5,831건①×981천원②+3,000건③×1,014천원④) / (5,831건+3,000건)

① '18년 기존 가입건 = '17년말 약정유지건

② '18년 기존 단가 = '17년 결산단가(968천원) 및 '17년 신규단가(1,014천원)를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정

- 기존(981천원') : '17년결산 기존단가에 '17년결산 신규단가 1,014천원을 반영하여 재산정

※ 981천원 = (4,680건[1]×968천원[2]+1,848건[3]×1,014천원[4]) / (4,680건+1,848건)

1) '17년 기존 가입건 = '16년말 약정유지건

2) '17년 기존 단가 = '17년 결산 기가입건 평균월지급금

3) '17년 신규 가입건 = '17년 농지연금 신규가입건

4) '17년 신규 단가 = '17년 결산 신규가입건 평균월지급금

③ '18년 신규 가입건 = 3,000건

④ '18년 신규 단가 = '17년 신규단가(1,014천원)반영

▪ (신규가입) : 3,000건 × 1,065천원**× 6.5월 ≒ **20,768**백만원

**1,065천원 : '17년 신규가입 평균월지급금(1,014천원) ×105%

- 감정평가 가입비율 증가예상에 따라 19년 신규가입 건의 월지급금이 기존 대비 5% 증가

▪ (일시인출) : 300건 × 47,937천원*** × 1회 ≒ **14,381**백만원

*** 일시(47,937천원 = '18년 5월 기준 평균 일시인출액(65,220천원)의 70% ×105%

- 감정평가 가입비율 증가예상에 따라 일시인출금 기존 대비 5% 증가

□ 지원 필요성

○ 농촌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농업인의 상당수는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 65세이상 농가인구(%) : ('90) 11.6 → ('00) 21.7 → ('14) 39.1(전국 : 12.7%)

* 노후준비정도 : 농어업인 54.8%, 일반국민 75.3%('09년 사회조사)

○ 농가 고정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의 유동화를 통한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67,305	92,314	100,314	129,929	29,615	29.5
▪ 농지연금(융자) (산출근거)	(기존) 4,680건×968천원 ×12월 ≒ 54,368백만원 (신규) 1,848건×1,014천원 × 6.5월 ≒ 12,182백만원 (일시) 6건 ×125,833천원 ≒ 755백만원	(기존) 5,831건*×981천원 × 12월 ≒ 68,643백만원 * '17기존 4,680 +'17신규1,848 - '17해지697 (4,680건*14.9%) (신규) 2,500건×1,014천원 × 6.5월 ≒ 16,478백만원 (일시) 200건 ×35,970천원 ≒ 7,193백만원	(10월말 기집행액) 7407건×1,110천원 × 10월 ≒ 82,253백만원 (11~12월 기존) 7,290백만원*× 2월 ≒ 14,471백만원 * '18.10 기준 기가입건 월별 예상월지급금 (11~12월 신규) 661건*×900천원×1.1개월 ≒ 650백만원 * '18.10 기준 추가가입예상건 (11월~12월 일시) 1,470백만원*× 2월 ≒ 2,940백만원 * '18.10 기준 일시인출금 평균집행액	(기존) 7,962건*×992천원 × 12월 ≒ 94,780백만원 * '18기존 5,831 +'18신규3,000 -'18해지 869 (5,831건*14.9%) (신규) 3,000건×1,065천원 × 6.5월 ≒ 20,768백만원 (일시) 300건 ×47,937천원 ≒ 14,381백만원		
□ 비목(합계)	67,305	92,314	100,314	129,929	29,615	29.5
○ 비목(비목번호)	67,305	92,314	100,314	129,929	29,615	29.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 제24조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지연금 도입타당성 검토 제시(경제관련 7개 부처 공동발표, ‘07.6)
-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대책으로 농지연금 도입 발표(‘07.11)
- 농지연금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8.4~10)
-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발표(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공동발표, ’09.1, 국경위 10차 회의)
- 농지연금 사업 시행(‘11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지연금(융자)	237	339	394	498	663	92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연도별 변경 내역 및 사유

- ’15년(전용) : 이자율 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인한 가입증가로 9억원 전용, 집행잔액 18백만원 발생
- ’16년(전용) : 신규 가입물량 연초 편중에 따른 지급 개월수 증가 및 소요 예산 부족으로 25억원 증액, ‘집행잔액 1.4억원 발생
- ’17년(전용) : 해지율 소폭 감소 및 일시인출형 상품 출시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12.5억원 증액, ‘집행잔액 2.5억원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94 ( )	( )	9 ( )	403 ( )	402 ( )	( )	0.18 ( )
’16년	498 ( )	( )	25 ( )	523 ( )	522 ( )	( )	1.4 ( )
’17년	663 ( )	( )	12.5 ( )	675.5 ( )	673 ( )	( )	2.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 국정감사 : 농지연금은 농지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등 주택연금 수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감정평가방식 농지평가율 상향조정(70%→ 80%)으로 연금액 인상(‘15.1)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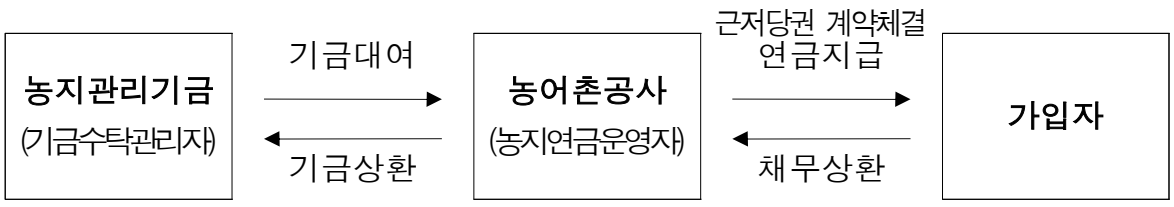

① 농지연금상담 → ② 신청 및 접수 → ③ 현지조사 → ④ 지원심사 및 대상자 결정 → ⑤ 약정 체결 → ⑥ 저당권 설정 → ⑦ 농지연금 지급 → ⑧ 사후관리 → ⑨ 채무 이행 청구 → ⑩ 정산 및 기금상환

참고 1 농지연금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80%**

○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 기타 :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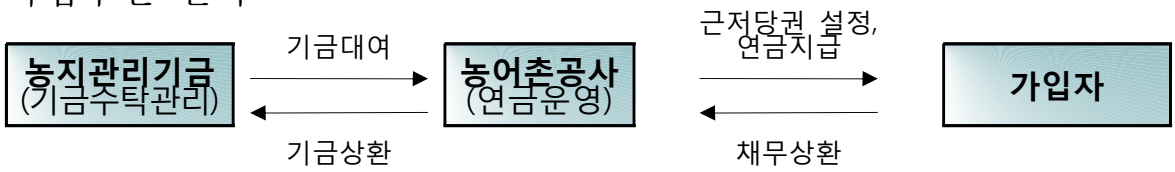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

❑ (사업실적)'18. 11월말까지 총 11,162건 가입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누계
건수	911	1,291	725	1,036	1,243	1,577	1,848	2,531	**11,162**

* 신규가입건은 전년 대비 47.7% 증가(1,714 → 2,531건)

☆ 중장기 사업목표(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반영) : ('20) 20천건 → ('25) 50천건

·연차별 사업목표 : 17)8,756 18)11,556 19)15,256 '20)20,006 '21)25,206 '22)30,906 '23)37,106 '24)43,806 '25)50,000

참고 2 농지연금사업 추진 실적

1. '17년까지 가입 실적

가입 건수(누계)			평균 월 지급액 (천원)			담보농지(㎡)	담보농지가(백만원)		
계	종신형	기간형	전체	종신형	기간형	평균면적	전체	종신형	기간형
8,631	3,383	5,248	928	863	970	4,128	167	211	138
(1,848)	(793)	(1,055)	(976)	(857)	(1,066)	(4,140)	(182*)	(215)	(157)

* ( )는 '17년 신규가입 현황, **182백만원(감정가 219, 공시가 165),** 가입자 평균 연령 73세

2. '18년 11월까지 가입 실적

구 분	가입 건수		평균 월 지급액 (천원/건)		평균면적 (㎡/건)		평균농지가 (백만원/건)	
	누계	'18년	누계	'18년	누계	'18년	누계	'18년
계	11,162	2,531	906	828	3,928	3,248	168	172*
종신형	4,596	1,213	839	770	3,987	3,565	212	216
(종신정액형)	3,827	637	836	740	3,982	3,391	207	195
(전후후박형)	432	248	927	900	4,124	3,788	221	217
(일시인출형)	337	328	751	730	3,868	3,734	261	255
기간형	6,566	1,318	952	880	3,887	2,957	137	131
(정액형)	6,548	1,302	953	881	3,885	2,940	137	131
(경영이양형)	18	16	798	798	4,504	4,338	107	104

* '18년 11월까지 가입 현황, 172**백만원(감정가 173, 공시가 170),** 가입자 평균 연령 74세, 신규가입 2,531건중 감정 1,084건(혼합 6건 포함), 공시 1,447건 가입

3. 전년도 동기대비 가입자 현황

(단위 : 건, 천원, ha, 백만원,%)

구분	가입건			평균 월지급액			담보농지	
	계	종신형	기간형	전체	종신형	기간형	총면적	평균 농지가
'17.11	1,714	735	979	997	881	1,084	722	186
'18.11	2,531	1,213	1,318	828	770	880	822	172
증감	817	478	339	-169	-111	-204	100	-14
증감률	148%	165%	135%	83%	87%	81%	114%	92%

4. 연도별 가입 통계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11	누계
가입건수		911	1,291	725	1,036	1,243	1,577	1,848	2,531	11,162
(누적 건수)		*(911)*	*(2,202)*	*(2,927)*	*(3,963)*	*(5,206)*	*(6,783)*	*(8,631)*	*(11,162)*	-
총 지급액(백만원)		7,171	15,333	22,684	29,035	40,241	52,166	67,305	91,961	325,896
일시인출금(백만원)		-	-	-	-	-	-	755	16,936	17,691
신규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천원)	977	694	831	959	1,010	998	976	828	
	담보농지 평균 가격(백만원)	160	109	130	182	195	184	182	172	
	담보농지 평균 면적(㎡)	5,331	3,716	3,749	3,890	4,100	4,126	4,140	3,248	

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257	2,898	2,898	**3,153**	255	8.8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5000 ~ 5032 - 300(보조)

* 담당자 : 국제협력국장(정일정),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 사무관(주정제)☎(044-201-20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연간 31억원
지원조건	보조 50%~70%(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해외농업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 해외환경조사, 조사비 지원 등 3,153백만원

- 해외진출 및 정착지원(인력양성, 정보제공, 해외농업투자협력 등) 1,734, 융자지원·관리 109, 영농지원센터 610, 기관운영비 700

□ 지원 필요성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업 시장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농기자재 등 **농기업들의 해외진출 요구가 증가**

* 국내 농기계 보유대수: ('00) 3.4백만대 → ('10) 2.1 → ('13) 2.0 → ('16) 1.9

* 화학비료 생산량: ('00) 1,546천톤 → ('10) 1,006 → ('13) 890 → ('16) 769

- 특히,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와 함께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국내 농기업 해외진출의 기회

○ 우리나라는 곡물 뿐만 아니라 식품원료 등 **농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미래 해외식량공급기반 확보 필요**

- 연간 1,500만톤 곡물 수입(세계 5위 곡물수입국), 곡물자급률 23.8%('16), 가공용 식품원료의 수입의존도 68.5%('15)

- 국제곡물가격 변동은 사료·전분 등 식품원료 가격변동으로 이어지고 농식품·외식업 물가변동의 원인이 되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 '농기업의 해외진출지원'으로 **국내 농산업의 경제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농기자재 진출, 기술전파 및 인력확산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해외진출 농기업을 통해 **미래 해외식량자원 공급기반도 확보**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257	2,898	2,898	3,153	255	8.8
▪ 해외진출 및 정착지원		1,346	1,346	1,734		
- 인력양성 (산출근거)		279 (집합교육, 해외농업인턴, 온라인 교육)	279 (집합교육, 해외농업인턴, 온라인 교육)	267 (집합교육, 해외농업인턴)		
- 정보제공 (산출근거)		497 (정보지 제작, 홈페이지 운영, 워크숍·홍보, 해외전문관, 비즈니스 교류)	497 (정보지 제작, 홈페이지 운영, 워크숍·홍보, 해외전문관, 비즈니스 교류)	497 (정보지 제작, 홈페이지 운영, 워크숍·홍보, 해외전문관, 비즈니스 교류)		
- 조사·컨설팅 (산출근거)		570 (환경조사, 컨설팅 8개소)	570 (환경조사, 컨설팅 8개소)	570 (환경조사, 컨설팅 8개소)		
- 해외농업투자협력 (산출근거)		-	-	400 (해외농업 투자협력)		
▪ 사업활성화연구 (산출근거)		120 (2건)	120 (2건)	-		
▪ 융자관련 업무 (산출근거)		122 (심의회, 출장, 외부평가 등)	122 (심의회, 출장, 외부평가 등)	109 (심의회, 출장, 외부평가 등)		
▪ 영농지원센터 운영 (산출근거)		610 (극동영농지원센터 운영)	610 (극동영농지원센터 운영)	610 (극동영농지원센터 운영)		
▪ 기관운영비 (산출근거)		700 (공사350, 협회350)	700 (공사350, 협회350)	700 (공사300, 협회400)		
□ 비목(합계)	5,257	2,898	2,898	3,153	255	8.8
○ 민간경상보조 (320-01)	2,257	2,898	2,898	3,56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07~'08.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해외농업개발 필요성 대두
- '08. 4. '해외농업개발 추진방안' 수립
- '09. 6. 제1차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 '11. 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12.1.15 시행)
- '12. 9. 제2차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12~'21)' 수립
- '13. 5.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 '17. 12.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계획('18~'22) 수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 계획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5	28	27	26	26	2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 불용

- 융자신청기업 감소에 따른 융자관리비 집행 잔액, 캄보디아 영농지원센터 미설치(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KOPIA)활용)로 예산 절감

○ ('16) 불용

- 한-러 농업공동연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 ('17) 불용

- 해외농업개척조사사업 추진 지연 및 홈페이지개편 관련 낙찰 차액 발생 등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 (해외농업개척조사) 조사대상지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연기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6.50 ( )	- ( )	- ( )	26.50 ( )	20.90 (20.90)	- ( )	5.60 (5.60)
'16년	25.98 ( )	- ( )	- ( )	25.98 ( )	23.14 (23.14)	- ( )	2.84 (2.84)
'17년	25.98 ( )	 ( )	 ( )	25.98 ( )	22.57 (22.57)	 ( )	3.41 (3.4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및 감사원

- ('15년 결산) 해외농업개발사업 국내반입량 저조
- ('15년 국정감사) 해외농업개발 참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16년 국정감사) 국내 반입량 저조, 융자기업 조기상환 등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 방향 재정립 검토
- ('16년 재정사업 감사) 국내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개선 필요
- ('17년 기관운영 감사) 성과지표인 '해외진출기업수' 측정시 휴·폐업한 기업은 제외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가)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개선

- 해외진출기업이 생산하는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옥수수), 수입권공매제(대두) 적용을 통해 곡물반입량 확대('15)

-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반입을 위해 '식용'으로 반입된 곡물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개정('16.2월)

- 융자사업을 통한 국내반입량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시 국내반입 실적에 따라 가점(3~5점) 부여('16.6월)

(나) 융자사업 집행제고 및 사업자 점검 강화

- 융자금 지원 사업자대상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점검 강화('15.8월)

* 융자금 실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평가 현장점검을 통해 융자금이 용도대로 이용되었는지 점검, 이후 2년마다 현장 사후관리를 상환이 완료될때까지 실시

- 해외농업개발 융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실시('16~'17,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금 대출실행중인 기업(7개국 14기업) 대상 사업추진현황 전수조사

- 해외농업개발사업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17.3월)

* 지원 다양화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융자 지원한도 설정(신규 사업자 40억원, 기 지원 사업자 30억원)

-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17.12월), 융자사업 개선*

* 지원대상 확대(국내 수입이 많은 식품원료 등), 융자금 모집공고 확대(1회→ 2개월마다, 융자금 소진시까지) 및 선정기간 단축(4개월→ 2개월)

- 휴폐업자가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측정지표를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수'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진행상황 보고기업수'로 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중국) 일본은 민간 주도(젠노, 종합상사 등)로,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방공기업 주도(지방정부 금융 지원 등)로 추진

* (일본) 마루베니 社는 미국 가빌론 社를 인수('12.5월, 50억불), 연간 4천만톤 규모의 세계 최대 곡물유통기업으로 발전, 젠노(全農)는 산지-수출-일본내 사료회사 계열화

* (중국) '01년 농업의 밖으로 나가기(저우추취, 走出去)를 국가 전략으로 정하였으며,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 (중동) 농지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국영,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지 확보 등 해외농업분야 투자 활발

-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수단,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에 대규모 농지 확보

(5)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	
사업시행승인	
↓	
사업수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제35조(권한 등의 위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	
정산 및 결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9조(기금의 결산)

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3,000	12,600	12,600	**11,970**	△630	△5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5000 - 5032 - 302(융자)

* 담당자 : 국제협력국장(정일정),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 사무관(주정제)☎(044-201-20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연간 120억원
지원조건	70%이내(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 11,970백만원

- 3개소×7,900백만원(개소당 평균 사업비)×50%(부담율)

□ 지원 필요성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업 시장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농기자재 등 **농기업들의 해외진출 요구가 증가**

* 국내 농기계 보유대수: ('00) 3.4백만대 → ('10) 2.1 → ('13) 2.0 → ('16) 1.9

* 화학비료 생산량: ('00) 1,546천톤 → ('10) 1,006 → ('13) 890 → ('16) 769

- 특히,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와 함께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국내 농기업 해외진출의 기회

○ 우리나라는 곡물 뿐만 아니라 식품원료 등 **농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미래 해외식량공급기반 확보 필요**

- 연간 1,500만톤 곡물 수입(세계 5위 곡물수입국), 곡물자급률 23.8%('16), 가공용 식품원료의 수입의존도 68.5%('15)

- 국제곡물가격 변동은 사료·전분 등 식품원료 가격변동으로 이어지고 농식품·외식업 물가변동의 원인이 되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 '농기업의 해외진출지원'으로 **국내 농산업의 경제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농기자재 진출, 기술전파 및 인력확산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해외진출 농기업을 통해 **미래 해외식량자원 공급기반도 확보**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	(B-A)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3,000	12,600	12,600	11,970	△630	△5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산출근거)		12,600 (3개소×8,400백만원 (개소당 평균사업비) ×50%(부담율))	12,600 (3개소×8,400백만원 (개소당 평균사업비) ×50%(부담율))	11,970 (3개소×7,900백만원(개소당 평균사업비) ×50%(부담율))		
□ 비목(합계)	3,000	12,600	12,600	11,970	△630	△5
○ 기타 민간융자금 (450-04)	3,000	12,600	12,600	11,97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융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07~'08.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해외농업개발 필요성 대두
- '08. 4. '해외농업개발 추진방안' 수립
- '09. 6. 제1차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 '11. 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12.1.15 시행)
- '12. 9. 제2차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12~'21)' 수립
- '13. 5.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 '17. 12.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계획('18~'22) 수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330	300	140	126	126	12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7년 불용) 사업자별 연간 지원한도* 설정으로 지원액 감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담보 미확보로 융자신청 철회(2개기업)

* 신규기업 40억원, 기지원기업 30억원이내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0.00 ( )	- ( )	- ( )	140.00 ( )	140.00 (140.00)	- ( )	- (-)
'16년	126.00 ( )	- ( )	- ( )	126.00 ( )	126.00 (126.00)	- ( )	- (-)
'17년	126.00 ( )	 ( )	 ( )	126.00 ( )	30.00 (30.00)	 ( )	96.00 (96.0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및 감사원

- ('15년 결산) 해외농업개발사업 국내반입량 저조
- ('15년 국정감사) 해외농업개발 참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16년 국정감사) 국내 반입량 저조, 융자기업 조기상환 등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 방향 재정립 검토
- ('16년 재정사업 감사) 국내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개선 필요
- ('17년 기관운영 감사) 성과지표인 '해외진출기업수' 측정시 휴·폐업한 기업은 제외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가)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개선

- 해외진출기업이 생산하는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옥수수), 수입권공매제(대두) 적용을 통해 곡물반입량 확대('15)

-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반입을 위해 '식용'으로 반입된 곡물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개정('16.2월)

- 융자사업을 통한 국내반입량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시 국내반입 실적에 따라 가점(3~5점) 부여('16.6월)

(나) 융자사업 집행제고 및 사업자 점검 강화

- 융자금 지원 사업자대상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점검 강화('15.8월)

* 융자금 실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평가 현장점검을 통해 융자금이 용도대로 이용되었는지 점검, 이후 2년마다 현장 사후관리를 상환이 완료될때까지 실시

- 해외농업개발 융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실시('16~'17,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금 대출실행중인 기업(7개국 14기업) 대상 사업추진현황 전수조사

- 해외농업개발사업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17.3월)

* 지원 다양화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융자 지원한도 설정(신규 사업자 40억원, 기 지원 사업자 30억원)

-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17.12월), 융자사업 개선*

* 지원대상 확대(국내 수입이 많은 식품원료 등), 융자금 모집공고 확대(1회→ 2개월마다, 융자금 소진시까지) 및 선정기간 단축(4개월→ 2개월)

- 휴폐업자가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측정지표를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수'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진행상황 보고기업수'로 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중국) 일본은 민간 주도(젠노, 종합상사 등)로,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방공기업 주도(지방정부 금융 지원 등)로 추진

* (일본) 마루베니 社는 미국 가빌론 社를 인수('12.5월, 50억불), 연간 4천만톤 규모의 세계 최대 곡물유통기업으로 발전, 젠노(全農)는 산지-수출-일본내 사료회사 계열화

* (중국) '01년 농업의 밖으로 나가기(저우추취, 走出去)를 국가 전략으로 정하였으며,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 (중동) 농지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국영,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지 확보 등 해외농업분야 투자 활발

-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수단,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에 대규모 농지 확보

(5) 사업추진절차

융자접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융자)
↓	
융자심의회 (대상자 선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융자금 지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융자)
↓	
정산 및 결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9조(기금의 결산)

참고1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12~'21) 요약

❑ 검토배경

○ 세계인구 증가 및 신흥국 경제성장, 기상이변의 일상화, 투기자본 개입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시적인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 전망

○ '09년 마련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18)」 추진 3년차를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완**

❑ 추진경위

○ '12.1월 시행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5조(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에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추진목표 및 전략, 추진과제, 과제별 추진계획 등을 반영

○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논의('11.4~'12.7월)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농업개발심의회' 심의**('12.8월)를 거쳐 **공고**함('12.9월)

❑ 종합계획(안) 주요내용

○ **목표 확대** : (기존) '18년까지 주요 수입곡물 국내소비량의 10% → (확대) **'21년까지 국내곡물 소비량의 35%***

* 민간 해외농업개발 195만톤, 공공 해외곡물 유통 505만톤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및 **확보 곡물 최대한 국내반입** 추진

- **(민간 투자촉진)** 농식품 모태펀드 등 **투자재원 다각화, 전문인력 육성,** 해외농장에 필요한 **SOC**(도로, 전력, 관개시설 등) **구축에 ODA 지원 등**

- **(곡물 반입 활성화) TRQ물량** 일부를 해외농업개발 곡물의 **실수요업체**에 배정, 지원대상 확대

○ **전후방 연관산업** 동반진출 강화 및 **지원대상 품목*** **확대**

* 곡물에 중점을 두되, 바이오에너지 작물, 조사료, 국내 식품원료 등에도 지원

○ G20·APEC·FAO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참고2 관련 법률 조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① 정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융자) ① 정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조림(造林)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어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참고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요

□ (목적)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장 및 비상시 대비 식량자원의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 '18년 예산 : 155억원(재원 : 농지관리기금)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12,600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이내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2%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대상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898	·보조 100%(단, 민간환경조사는 70% 이내)	·시행주체 : 한국농업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지원대상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등

□ (융자사업 : 126억원) 기업의 해외진출자금 융자 지원

○ (지원내용)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

○ 융자지원 절차

공 고	⇒	융자신청 접수	⇒	융자대상자 선정	⇒	약정체결/지급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융자심의회		융자대상자,공사

□ (보조사업 : 29억원) 민간의 해외투자환경조사, 전문교육, 영농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정보제공 및 워크숍 등 교류 지원

<보조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결정 및 개산급 지급 승인	⇒	보조금 지급
시행계획 수립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승인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농식품부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농지관리리기금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9. 농지종합정보화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지종합정보화 (정보화)	1,949	2,207	2,207	**1,931**	**△276**	**△12.5**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3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문환)☎(044-201-174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추진 및 정책자료로 활용

-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 구축
- 농지관리 및 농촌개발관련 공간정보를 DB구축하여 농정자료로 활용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위하여 농지의 형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필지별 속성정보에 대한 DB구축 및 전산 관리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농지종합정보체계 구축 ○ 농지원부 운영관리 및 지자체 사용자 지원 ○ 농업진흥지역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상시조사 지원
사업기간	농지정보 : '90~계속, 농업진흥지역 : '14~계속
총사업비	- 524억원 ('18년까지 투자액 농지정보 : 504억원, 진흥지역 : 20억원)
사업규모	전국 230개 시군구(읍면동)
지원조건	민간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지종합정보화 : ('18) 2,207 → ('19) 1,931백만원**

■ 정보시스템 고도화 : ('18) 648 → ('19) 404백만원

○ **농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238백만원**

- 농지원부, 취득 및 처분, 농지전용 등 활용을 위한 속성 및 통계(집계)정보 서비스 고도화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선정 및 결과 등록, 새올행정 연계 보완
- 연속지적도, 항공영상 및 농업진흥지역도 등 공개 SW 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농지원부,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 등 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
- 농업진흥지역 정비 등 농지관리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고도화

○ **농지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모델 연구용역 : 116백만원**

- 농지, 소득, 기후, 금융환경, 작목 등 농업관련 빅데이터 구축 방안
- 농업경영 진입, 확대 및 농촌 이주(귀농) 주거지 선정 등 대국민 농업경영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활용방안 연구
- 기후변화 및 작황분석, 작물재배 적지 선정 등 소득안정을 위한 맞춤형 농지정보 구성
- 농지 행정 및 농업인 등 대국민 정보 수요에 기반한 정보 공급체계 개편 등

○ **'18년도 항공영상 활용을 위한 경량화 및 위치보정 : 50백만원**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상 제공받은 항공영상을 웹서비스 할 수 있도록 14레벨 경량화 및 연속지적도에 맞춰 위치 보정 실시

■ 농지정보화 전산장비 유지보수 : ('18) 145 → ('19) 113백만원

○ **농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 113백만원**

- 662백만원(S/W 도입가) × 8.5%(유지보수요율) ≒ 56백만원
- 811백만원(H/W 도입가) × 7.0%(유지보수요율) ≒ 57백만원

■ 농지공간정보 DB유지관리 및 농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18) 1,111 → ('19) 1,111백만원

○ **교육 및 운영지원 : 74백만원**

○ **DB 및 시스템 운영관리 : 988만원**

○ **행정망 및 모바일 통신비 : 28백만원**

○ **기타경비 : 21백만원**

■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18) 8 → ('19) 8백만원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 ('18) 295 → ('19) 295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시스템 유지보수 : ('18) 30 → ('19) 30백만원

> ○ **농업진흥지역 신규유형 적용을 위한 S/W 보완개발 : 15백만원**
>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S/W유지보수 : 15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파일제작 및 인쇄 : 80백만원

> ○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파일제작 : 40백만원**
> ○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도면인쇄 : 40백만원**

■ 실태조사 시스템 운영·관리 : ('18) 185 → ('19) 185백만원

> ○ **실태조사 시스템 운영·관리 인건비 : 148백만원**
> ○ **기타 경비 및 일반관리비 : 3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전국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에서 농지관리 및 민원행정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현행화 및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

- 농지원부 관리, 농지취득/처분,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업무 관련 농지법, 농지원부 지침 등 농지제도의 개선된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하여 유지관리가 필수적임.
-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관리체계 도입에 따라('18), 서비스 운영 결과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전자도면체계 안정적 정착 지원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이중화 구성을 통하여 결제 및 결제 현황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무중단 서비스 필요

○ 농지 및 농촌, 농업관련 방대한 정보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농업정책 수립 및 농업인의 영농활용 지원에 활용

- 농지, 소득, 기후, 금융환경, 작목 등 농업관련 빅데이터 구축하여 농업경영 진입, 확대 및 농촌 이주(귀농) 주거지 선정 등 대국민 농업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및 작황분석, 작물재배 적지 선정 등 소득안정을 위한 맞춤형 농지정보 구성하여 농업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농업인 영농지원에 활용

○ '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이후 도로 개설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 지속 제기

- ‘05・’06년 일제 실태조사를 거쳐 ‘07・’08년 보완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14・’15년에도 일제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정비 실시
- ‘16~‘18년 변경·해제 고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비우량 농지의 추가 진흥지역 해제 요구

  * ‘15년 실태조사를 위해 ’14년 시스템 구축 완료

○ ‘17년 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지역을 지속 정비 및 진흥지역 밖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기초로 한 농지제도 정비 포함

-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지역의 지속 정비 및 지자체 농지전용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현황관리를 위한 전국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1,949	2,207	2,207	1,931	△276	△14.3
▪ 농지종합정보화 (산출근거)	1,658	1,912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납부체계 구축 : 340 (1식×340백만원) - 농업진흥지역도 전자도면 관리체계 구축 : 148 (1식×148백만원) - DRM 도입 : 110 (1식×110백만원) - 항공사진 도입 : 50 (1식×50백만원) - 1,859(장비도입가) ×7.8%(유지보수요율) : 145 - 농지정보DB및 시스템 운영관리:988 - 교육 및 운영 지원 : 74 - 행정망 및 모바일 통신비 : 28 -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설문 : 8 - 기타:21	1,912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납부체계 구축 : 340 (1식×340백만원) - 농업진흥지역도 전자도면 관리체계 구축 : 148 (1식×148백만원) - DRM 도입 : 110 (1식×110백만원) - 항공사진 도입 : 50 (1식×50백만원) - 1,859(장비도입가) ×7.8%(유지보수요율) : 145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988 - 교육 및 운영 지원 : 74 - 행정망 및 모바일 통신비 : 28 -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설문 : 8 - 기타 : 21	- 농지이용활성화 빅데이터 모델연구용역:116 - 농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38 - 항공사진 도입 : 50 (1식×50백만원) -1,473(장비도입가) ×7.7%(유지보수요율) : 113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988 - 교육 및 운영 지원 : 74 - 행정망 및 모바일 통신비 : 28 -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설문 : 8 - 기타 : 21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산출근거)	291	295 - 237(개발비) × 12.6%(유지보수요율) : 30 - 고시도면제작 : 80 - DB 및 운영관리 : 185	295 - 237(개발비) × 12.6%(유지보수요율) : 30 - 고시도면제작 : 80 - DB 및 운영관리 : 185	295 - 237(개발비) × 12.6%(유지보수요율) : 30 - 고시도면제작 : 80 - DB 및 운영관리 : 185		
□ 비목(합계)	1,949					
○ 비목(320-01)	1,94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지종합정보화)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기금의 기타사업)
-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추진경위

- '90 : 농지원부 기본계획 수립 및 DB구축
- '00 : 농지종합정보화사업 추진
- '02 : 농지종합정보화사업 통합(농지원부, 농촌지형정보, 농지종합정보)
- '08 : 전국 농지정보를 통합한 농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09 :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한 농지형상 육안판독 지원
- '13 : 스마트기기 기반의 모바일현장조사시스템 구축
- '14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프로그램 구축
- '15~'16 : 농지전용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 전국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완정비 방안 마련
- '17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 업무 실시, 농지 통계 지도서비스 등 농지공간포털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 '18 :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관리체계 구축,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대국민서비스 확대 구축, 농업진흥지역 상시정비체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지종합정보화	16	16	18	21	19	22
- 농지종합정보화	16	16	18	18	16	19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	(5)	(6)	3	3	3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사업은 '16년부터 내역사업으로 포함됨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사업"** 선정(기재부)
○ '17 통합재정사업평가 **"보통사업"** 선정(기재부)
○ '16 기금존치평가 "**존치**" 결정(기재부)
○ '16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사업**" 선정(기재부)
○ '16 보조사업연장평가 "**정상추진**" 결정(기재부)
○ '15 보조금운용평가 "**정상추진**" 결정(기재부)
○ '15 기금존치평가 "**존치**" 결정(기재부)
○ '13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우수사업**" 선정(국토부)
○ '1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사업**" 선정(농식품부 최우수사업)
○ '12 공간정보사업 사후평가 10대 "**우수사업**" 선정(국토부 장관상 수상)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농식품부 : 시행계획승인, 관련제도정비, 예산확보 등
○ 지방자치단체 : 농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자료검수 등
○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시스템구축, 운영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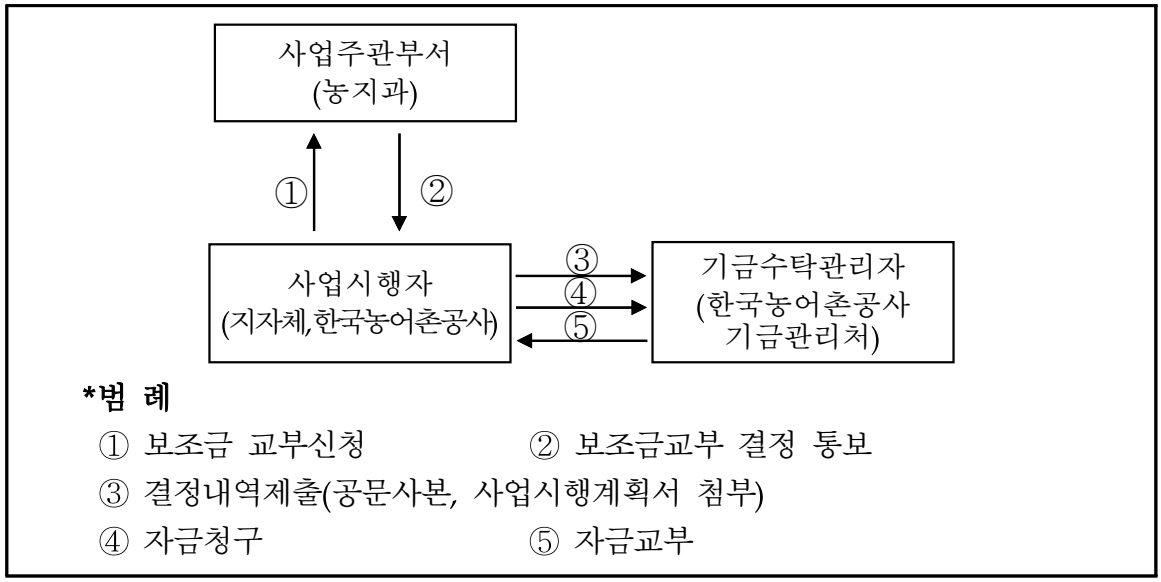

***범 례**

① 보조금 교부신청 ② 보조금교부 결정 통보

③ 결정내역제출(공문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첨부)

④ 자금청구 ⑤ 자금교부

참고 1 농지종합정보화 사업 현황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추진 및 정책자료로 활용

-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 구축
- 국가 공간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농지행정 효율성 제고

나. 재원 : 농지관리기금

다.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지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라.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0 ~ 계속

○ 사업비

연 도	2013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사업비	41,700	2,096 (468)*	2,393 (640)*	2,073 (300)*	1,949 (291)*	2,207 (295)*	52,418

마. 추진경위

❍ 1990 : 농지원부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및 DB 구축
- 종이공부로 관리되던 농지원부의 전산화를 통한 농지관리 효율화

❍ 1994 : 농촌지형정보체계(RGIS)구축 기본계획수립 및 DB 구축
- 문자기반 농지 분야에 GIS(공간정보)도입하여 다각적인 업무 지원

❍ 2000 : 전국 농지정보를 통합한 농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시군단위 시스템을 필지기반 전국단위로 구축하여 전국 통합관리

❍ 2009 :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한 농지형상 육안판독(현장조사) 지원
- 육안판독을 통해 영농확인이 가능하여 농지 현장조사 업무 감축

❍ 2014 : 앱 기반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 개발
- 지적도와 항공영상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현장 농지관리 업무분야(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불법전용단속 등) 현장 관리 업무에 활용

○ 2015~16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전면 재개발 및 농지전용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

- 전국 농지전용 통합관리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현황 관리

○ 2017 : 농업정책 지원 고도화 및 대국민 농지정보 확대 제공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 업무 실시, 농지 통계 지도서비스 등 농지공간포털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 2018 :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관리체계 및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납부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 상시정비체계

2. 사업내용

가. 농지종합정보체계 구축

● 필지별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현황 DB 구축 및 변동자료 유지관리

- 국토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 구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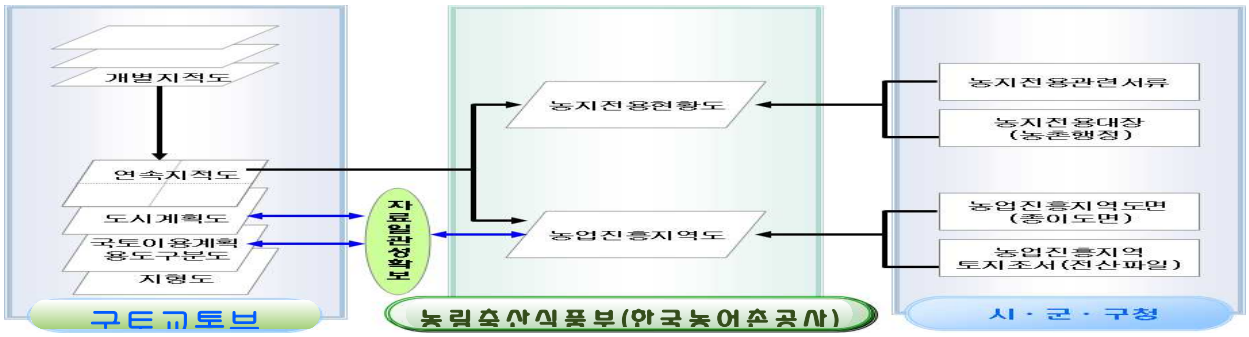

● 농지·농업생산기반시설물관련 DB 구축 및 유지관리

-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지관련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경지정리현황	배수개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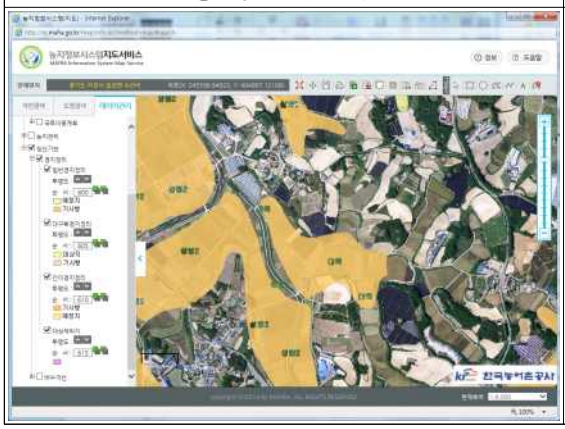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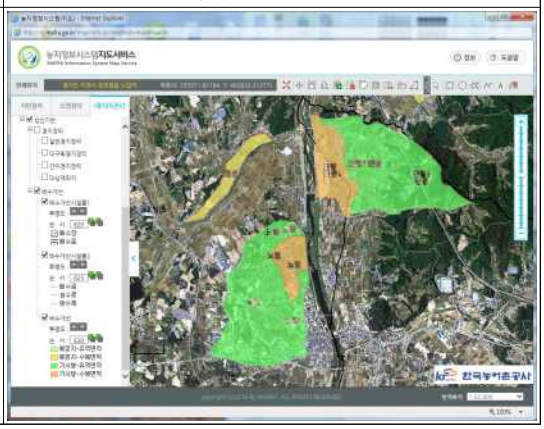

● 농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지정보시스템 개발

- 시·군·구/읍·면에서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 현황자료 관리 및 조회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지적도와 항공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농지위치 파악, 농지기본조사, 농지전용 사후관리, 길찾기(내비게이션) 등 현장조사 지원

- 농지불법전용단속,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현장조사 업무에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도입하여 농지형상 육안판독 지원

모바일 현장조사	고해상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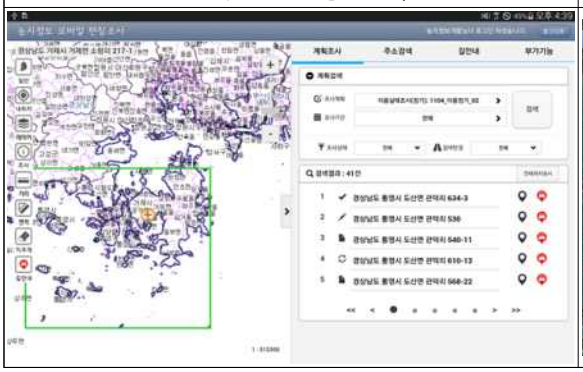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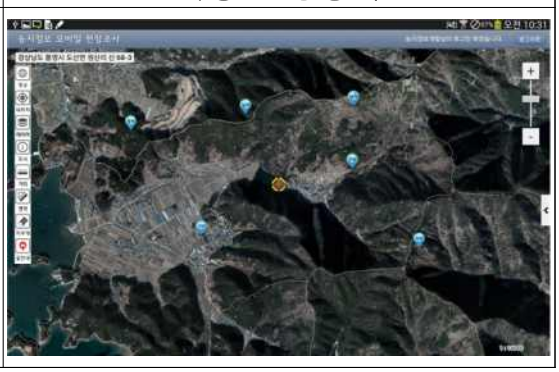

나. 농지원부 전산화

○ 전국 농지원부를 전산화하여 농지소유, 임차, 경작현황 등 관리

- 전국 191만 농가, 917만 필지, 150만 ha ('17.12.31 기준)

※ 농지원부 전산화 추진경위
○ 1990 ~ 1999 : 농식품부에서 농지원부 전산화 구축・운영
○ 2000 ~ : 행자부에서 시군구 농촌행정(농지원부)시스템 운영
○ 2007 ~ 2008 : 농지원부 일제정비(등재율 '07.6 : 70% →'08.10 : 97%)
○ 2008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연계체계 재편
○ 2009 ~ : 농지은행(규모화), KLIS(진흥지역), Agrix(직불자료) 등 연계

- 정비실적 : '16)803천건/2,155천건(37%), '17)458천건/1,029천건(45%)

○ 시군구/읍면동 농업행정(새올)시스템 구축 지원

- 농지원부 등본, 자경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민원발급

○ 농식품부 농업행정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30개 전국 시군구의 농업행정시스템을 연계한 통합DB구축

○ 전국 시군구/읍면동 농업행정시스템 사용자교육 및 운영지원, 자료정비 지원 (년간 3,000명)

○ 시군구(읍,면,동 포함) 농지원부, 농지조서 자료 정비

<붙임>

농지정보시스템 구성도

1.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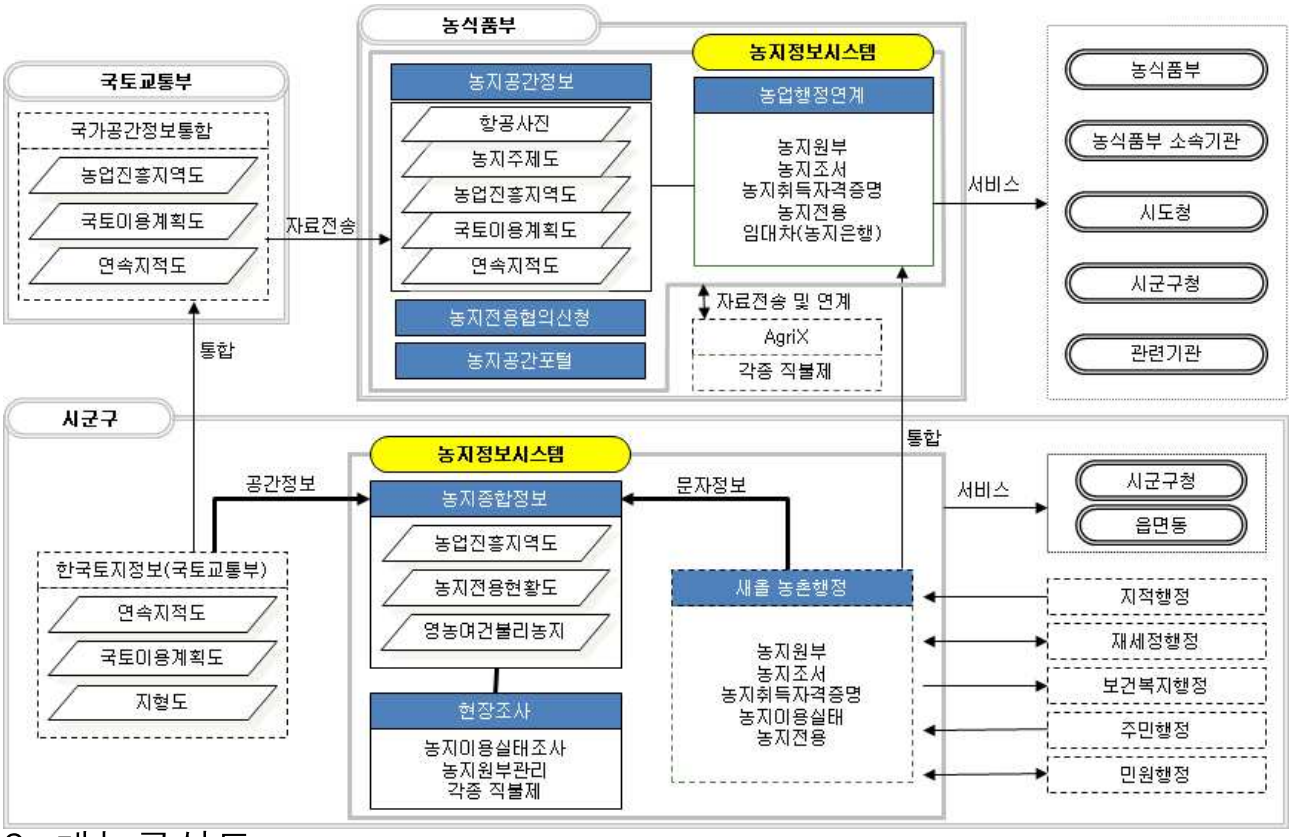

2. 메뉴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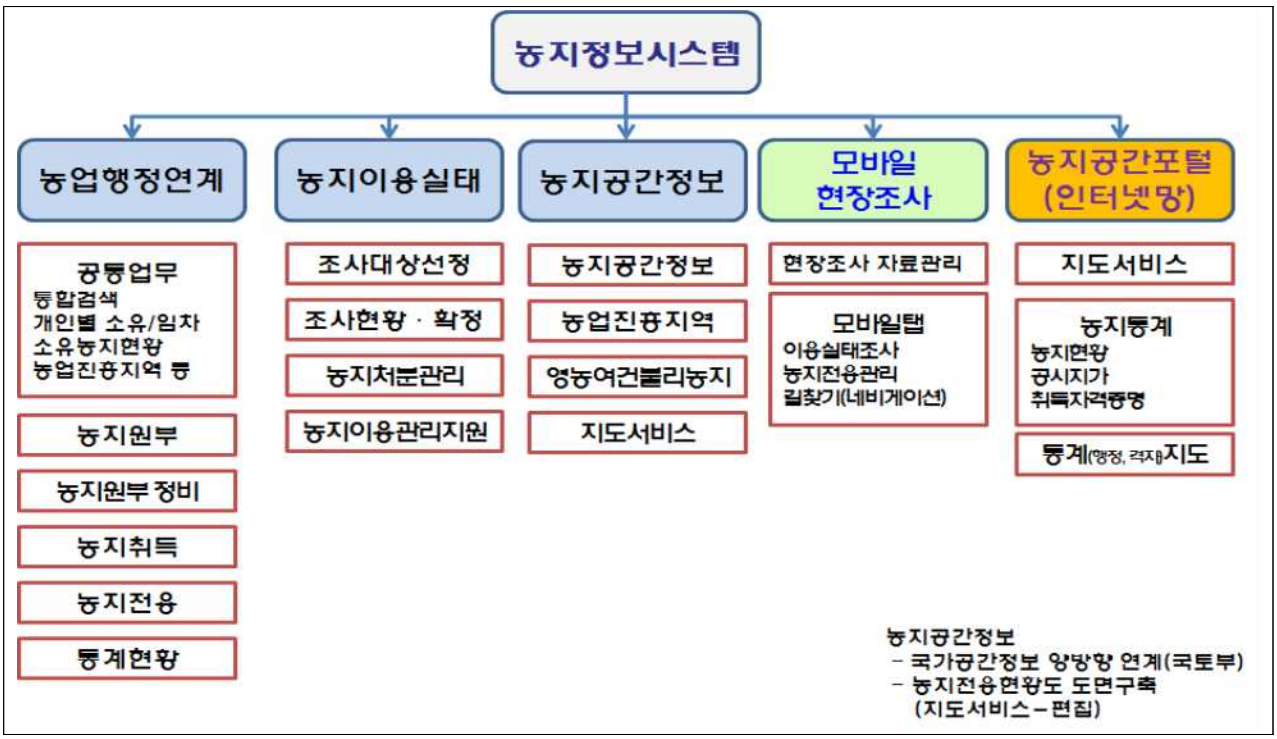

참고2 농지정보화사업 지원근거(해당법 시행령)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2.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로 년간 예산 절감 214억원

참고3 농지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성과

구 분	총 관련 업무 시간	절감율/ 활용율	절감시간 서류절감량	시간당 편익 서류비용(원)	사업투자성과 (백만원)
합 계	7,644,001				21,391
1)농지정보 업무활용 효율성	2,414,288	(절감율) 42.90%	(절감시간) 444,328	14,192 /시간	6,306
2)농지정보 정보검색 비용	189,104	(절감율) 42.90%	(절감시간) 34,803	14,192 /시간	494
3)농지 정보 효과성	2,626,321	(활용율) 93.20%	(서류발생) 29,977,718	20 /페이지	600
4)농업분야 국제경쟁력	2,414,288	(절감율) 42.90%	(절감시간) 965,300	14,494 /시간	13,991

농지정보화사업 투자수익율은 294%로써(2008~2011년기준), 4개년 각 투자액 대비 2.94배의 높은 기대수익율로 평가됨

※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를 중첩하여 농지형상 육안판독 함으로써 현장조사 업무 대폭 감소 및 각종 직불제 철저한 사후관리 지원

- 모바일PC에 지적도를 탑재하여 현장조사를 지원함으로써 현장조사 시간 단축

※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91%, 업무시간 절감을 통한 단축률 향상 41%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직불제 이행점검 방법 개선 및 소요시간 단축

- '15.12, 전문 여론조사기관 설문결과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사업시행자 대상)

- 전국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현황 등 연속지적도 기반의 농지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우량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지 생산성 향상 도모

- 농지원부를 전산구축하고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의 지적, 주민, 제세정등과 연계하여 농업정책수립 및 농업·농촌업무에 활용

※ 농지원부 현황 : 전국 150만ha, 917만 필지, 191만 농가 (2017. 12월 기준)

- 농지원부 등본, 자경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민원발급 및 영농

전국 농지관리 담당자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및 국민 편의성 제고

- 전국 시·구·읍·면 농지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
- 도별 사업담당자를 배치하여 신속한 서비스 지원 및 민원 해결

전국 농지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절감

- 등계정,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서 농업경영체등록제 현장조사, 경지 재배면적 및 경지면적 조사 등에 활용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자료의 일관성 확보

참고4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시스템 구축내역

❑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내역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용 DB 구축

유형도 및 신규공간정보 좌표 일원화

자료명	현행 좌표체계	좌표체계 일원화
유형도	KOREAN_DATUM_1985(3동경)	KOREAN_DATUM_1985(중부)
신규지적도	KOREAN_DATUM_1985(중부)	
농업진흥지역	KOREAN_DATUM_1985(중부)	

- 좌표체계 일원화
  - 기존자료(유형도) 신규지적도 기준 좌표 변환
  - KOREAN_DATUM_1985(3원점)
  - → KOREAN_DATUM_1985(중부)

기존 실태조사 자료 이관

1. 행정구역 코드 마이그레이션
2. 유형분류 마이그레이션(자동화)
3. 기존 유형도와 신규 지적도 공간매칭 작업을 통한 분류 체계화
4. 입력시스템에서 수립된 분류 체계 별 검색 및 실태조사 기능 지원

실태조사를 위한 입력시스템 개발

실태조사를 위한 지도서비스 개발

- 지도관리 / 제어
- 거리 및 면적 계산
- 공간검색(버퍼,반경)

실태조사 자료 이관 기능

- 지번코드 속성 기준 매칭을 통한 자료 이관 기능
- 공간정보 매칭을 통한 자료 이관 기능

실태조사를 위한 편집 지원

- 사용자 지정 및 진흥지역선 등에 의한 분할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할
- 조사항목 입력 시 입력 항목을 최소화해서 입력

작업 관리 및 데이터 관리

- 복수의 사용자가 동일 시 군구 작업이 가능하도록 동리 단위 편집가능지역 관리
- 데이터 유효성검사 및 이관, 내려 받기 등 지원

유형별 분석을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

직관적 정보전달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쉬운 정보전달을 위한 직관적인 지도기능 배치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시나리오를 통한 유형별 분석

- 사용자 지정 시나리오제작을 통한 시 군구별, 도별, 소권역별 분석
- 분석시나리오정보 및 결과 값에 대한 이력 관리

분석결과 조회 및 검증

- 공간정보를 활용한 분석 결과 확인 및 검증
- 기존면적 대비 시군구단위 증감률 검색 및 검증

유형정보 및 연계관리

- 유형정보 및 연계 데이터 서비스 관리 기능

❑ 실태조사 입력시스템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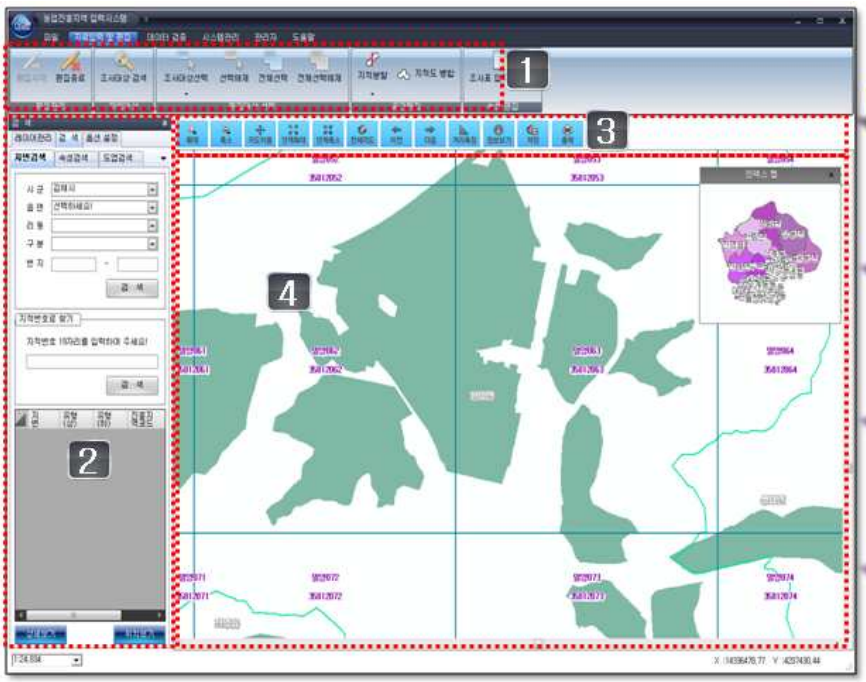

전체 화면 기능

1. 메뉴화면
   - 데이터 관리, 지도 제어 및 설정, 편집, 데이터검증
2. 레이어 및 검색
   - 레이어 관리, 지번검색, 소권역별 검색, 설정기능
3. 지도 기능
   - 확대, 축소, 이동, 이전, 다음 화면 이동, 정보조회등
4. 지도 화면
   - 연속지적도, 진흥지역도 등 공간정보 확인

10. 인건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1,000	1,050	1,050	**1,069**	**19**	**1.8**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 ☎(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 인건비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 지급
사업기간	'90~계속
총사업비	- 억원
사업규모	기금위탁관리기관 인건비 실소요액 지급 ※ 위탁업무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영농규모화사업·농지은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 등의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위탁관리인원 : 13명 기준(1급 1명, 2급 1명, 3급 3명, 4·5급 7명, 상용 1명)
지원조건	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기금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13명 기준) 1,069백만원

▪ **정규직 12명(1,003백만원), 상용직 1명(66백만원)**
▪ **산출내역**
◦ **보수 : 1,003백만원**
- 기본 소요 : 1,003백만원 ('18년 기금운용계획 보수(110-01) 소요액 : 984백만원)
· '18년 인건비 984백만원 × 1.93%인상분 반영 = 1,003백만원
◦ **상용임금 : 66백만원**
- 공사「계약직근로자연봉관리세칙」공인회계사 기본연봉의 85% 적용
· 기본급여 : 53백만원 = 62백만원 × 85% × 1명
· 성과상여금 : 4백만원 = 5백만원 × 85% × 1명 *산출식 : 연봉월액 × 100%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 9백만원 = 10백만원 × 85% × 1명

□ 지원 필요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여유자금 운용업무 등을 공사에 위탁 처리함에 따른 기금위탁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필수적인 소요액이며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 가능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1,000**	**1,050**	**1,050**	**1,069**	**19**	**1.8**
▪ 보수	955	984	984	1,003	19	1.9
▪ 상용임금	45	66	66	66	-	-
□ 비목(합계)	**1,000**	**1,050**	**1,050**	**1,069**	**19**	**1.8**
○ 보수(110-01)	955	984	984	1,003	19	1.9
○ 상용임금(110-03)	45	66	66	66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추진경위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 위탁에 따른 위탁관리 인건비 실소요액을 지급('90년~계속)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인건비	8.89	9.04	9.38	9.66	10.00	10.5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6년 불용 : 실집행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38	-	-	9.38	9.38	-	-
'16년	9.66	-	-	9.63	9.63	-	0.03
'17년	10.00	-	-	10.00	10.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서 제출(기금수탁관리자 → 기금운용관리자)
②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서(집행계획서) 확정 통보
(기금운용관리자 → 기금수탁관리자)
③ 자금집행(기금수탁관리자)
④ 위탁관리비(인건비) 정산(기금수탁관리자 ↔ 기금운용관리자)

11. 기타경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604	663	663	**693**	**30**	**4.5**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 ☎(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 경비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위탁관리기관의 경비 지급
사업기간	'90~계속
총사업비	- 억원
사업규모	기금위탁관리기관 경비 실소요액 지급 ※ 위탁업무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영농규모화사업·농지은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 등의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위탁관리인원 : 13명 기준(1급 1, 2급 1, 3급 3, 4·5급 7, 상용 1명)
지원조건	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기금위탁관리기관의 경비 693백만원

▪ **운영비 : 258백만원(전년도 254백만원)**

- 일반수용비 167백만원(전년도 163백만원, 전년대비 2.5% 증)
  · 소모품비 10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도서인쇄비 17백만원('18년 6백만원) * 전년도 실소요액(16백) 반영
  · 지급수수료 9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수선유지비 2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교육훈련비 2백만원(순증)
  · 일반관리비 127백만원
  * 일반관리비 산출방법 :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및 인건비의 10%
- 공공요금 및 제세 73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피복비 2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유류비 5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복리후생비 8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여비 : 52백만원(전년도 55백만원)**

- 국내출장(41백만원) : 48천원×13명×12개월×5.5회
- 당일출장(11백만원) : 20천원×13명×12개월×3.5회

▪ **업무추진비 : 17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사업추진비(11백만원) : 40천원×13명×22회
- 관서업무추진비(6백만원) : 다과구입비 및 내부행사비용

▪ **연구용역비 : 328백만원(전년도와 동일)**

(자산운용성과평가 및 정보화 경비)

- 농지관리기금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 298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용역 30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유형자산 : 38백만원(전년도 9백만원)**

-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기금업무용차량(9인승) 취득

  * 산출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내 유사차량의 구입가격으로 산출함

  ** 차량취득일 '10. 2. 9, 주행거리 19.9Km('18. 6. 기준)

  *** 내용연수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근거한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 차량의 경우 **내용연수 8년**이며, 다만, **주행거리 20만 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의 경우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여 적용

□ 지원 필요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여유자금 운용업무 등을 공사에 위탁 처리함에 따른 기금위탁관리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필수적인 소요액이며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 가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619	663	663	693	30	4.5
▪ 운영비	209	254	282	258	△24	△8.5
- 일반수용비	146	163	185	167	△18	△9.7
- 공공요금 및 제세	45	73	71	73	2	2.8
- 피복비	2	2	2	2	-	-
- 유류비	5	5	2	5	3	150.0
- 시설장비유지비	3	3	10	3	△7	△70.0
- 복리후생비	8	8	12	8	△4	△33.3
▪ 여비	55	55	27	52	25	92.6
▪ 업무추진비	18	17	17	17	-	-
- 사업추진비	11	11	11	11	-	-
- 관서업무비	7	6	6	6	-	-
▪ 연구용역비	328	328	328	328	-	-
▪ 자산취득비	9	9	9	38	29	322.2
□ 비목(합계)	619	663	663	693	44	4.5
○ 일반수용비(210-01)	146	163	185	167	△18	△9.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5	73	71	73	2	2.8
○ 피복비(210-03)	2	2	2	2	-	-
○ 유류비(210-08)	5	5	2	5	3	150.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	3	10	3	△7	△70.0
○ 복리후생비(210-12)	8	8	12	8	△4	△33.3
○ 국내여비(220-01)	55	55	27	52	25	92.6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11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7	6	6	6	-	-
○ 일반연구비(260-01)	328	328	328	328	-	-
○ 자산취득비(430-01)	9	9	9	38	29	322.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추진경위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 위탁에 따른 위탁관리 경비 실소요액을 지급('90년~계속)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기타경비	4.68	5.21	3.56	6.03	6.19	6.6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6년, '17년 불용 : 실집행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용역 낙찰차액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56	-	-	3.56	3.56	-	-
'16년	6.03	-	-	6.03	6.02	-	0.01
'17년	6.19	-	-	6.19	6.04	-	0.1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서 제출(기금수탁관리자 → 기금운용관리자)
②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서(집행계획서) 확정 통보(기금운용관리자 → 기금수탁관리자)
③ 자금집행(기금수탁관리자)
④ 위탁관리비(경비) 정산(기금수탁관리자 ↔ 기금운용관리자)

참고 1 농지관리기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역

1. 농지관리기금 정보시스템 예산

□ 농지관리기금 시스템별 처리유형

정보시스템명	유형	내용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농지관리기금 수입·지출 및 재무결산 등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토지 자산재평가, 자산총량관리 등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시스템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 및 성과평가관리

□ 정보시스템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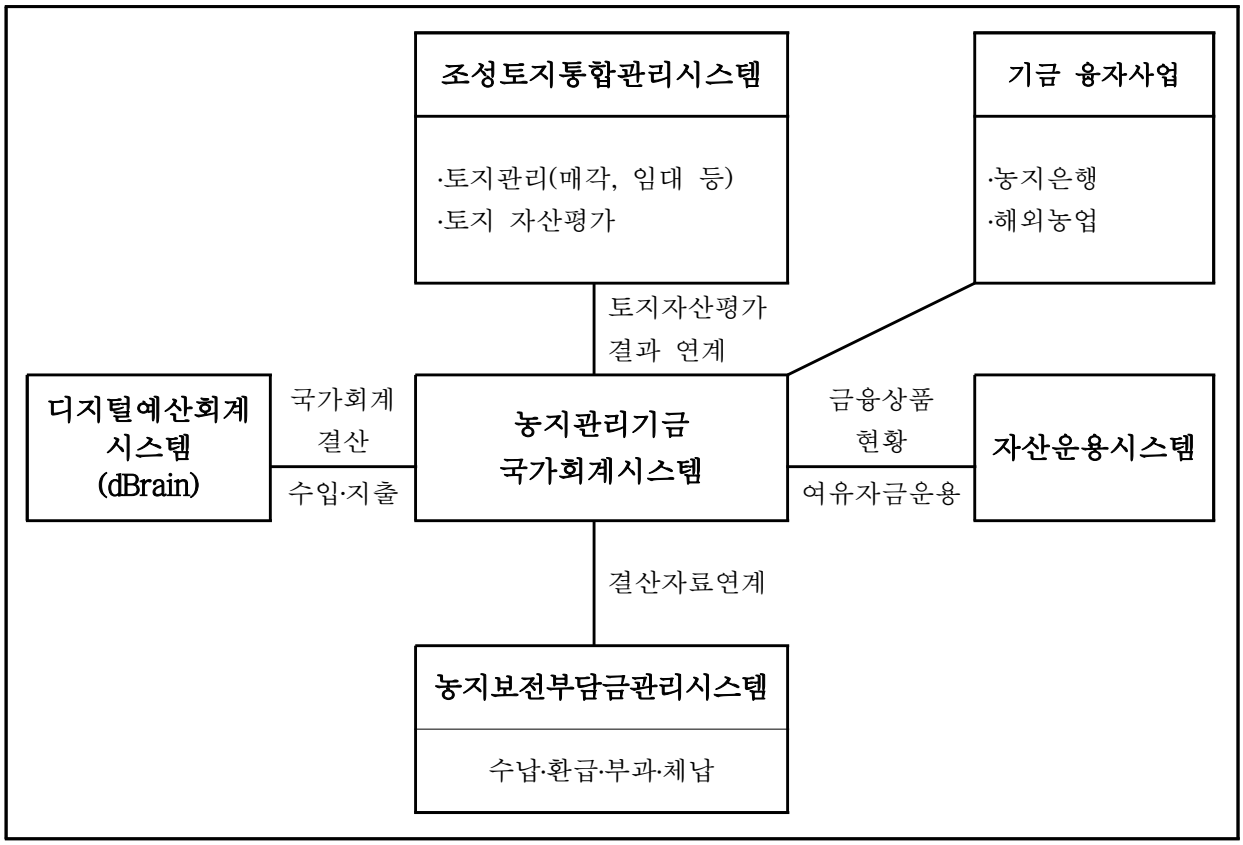

□ 시스템별 예산요구 사유

구분	사유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 공사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2016~2020)에 따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통합관리체계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시스템 분석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조성토지 통합관리시스템	■ 지속적인 간척지 임대 관리를 위한 토지 자산재평가, 자산총량관리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시스템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시스템 활용을 위해 시장정보 데이터 수신 등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필요(전문업체 연계) ■ 자산운용 제도 개정에 따른 변경 프로세스 반영 ■ 자산운용 데이터의 지속적 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보고서 활용
H/W, S/W 유지보수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장애 관리를 위한 H/W, S/W 유지보수 필요

2. 예산 요구 세부내역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유지관리 : **109,395천원**

○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항목		등급별 투입 공수(M/M)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지원업무		1	1	0	0
일상운영		0	2	0	3
총 투입공수		**1**	**3**	**0**	**3**
평균임금		391,068	305,353	239,506	191,320
월평균 일수		**20.8**			
직접인건비 합계		39,126,610			
제경비	110%	43,039,271			
기술료	20%	16,433,176			
직접경비		851,338			
소 계		99,450,394			
부 가 세		9,945,039			
합 계		**109,395,000**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02,021천원**

○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항목		등급별 투입 공수(M/M)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지원업무		1	1	0	0
일상운영		0	0	2	3
총 투입공수		**1**	**1**	**2**	**3**
평균임금		391,068	305,353	239,506	191,320
월평균 일수		**20.8**			
직접인건비 합계		36,387,374			
제경비	110%	40,026,112			
기술료	20%	15,282,697			
직접경비		1,051,050			
소 계		92,747,233			
부 가 세		9,274,723			
합 계		**102,021,000**			

□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시스템 유지관리 : **54,106천원**

○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항목		등급별 투입 공수(M/M)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지원업무		1	1	0	0
일상운영		0	0	1	2
총 투입공수		**0**	**1**	**1**	**2**
평균임금		391,068	305,353	239,506	191,320
월평균 일수		**20.8**			
직접인건비 합계		19,291,979			
제경비	110%	21,221,177			
기술료	20%	8,102,631			
직접경비		571,610			
소 계		49,187,398			
부 가 세		4,918,740			
합 계		**54,106,000**			

□ 농지관리기금시스템 H/W, S/W 유지보수 : **33,188천원**

○ 총괄표

구분	도입금액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요율
H/W	207,560,000	14,060,600	도입금액 × 7%
S/W	267,017,680	19,126,994	
합계	474,577,680	**33,187,594**	

※ 농지관리기금시스템(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기금회계시스템, 자산운용시스템) 서버 및 서버 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물리적 고장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 시 수리)를 위한 비용

-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 장비에 대해 정보화추진처에서 「정보화장비(운영솔루션 포함) 통합유지관리사업」용역으로 통합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서버(H/W) 및 소프트웨어(S/W)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이름	종류	수량	시스템	도입년도	금액
H/W	IBM P570	유닉스	1	기금회계	2008	107,000
	IBM X3650	윈도우	1	dBrain 연계서버	2011	9,900
	DELL R420	윈도우	1	농지관리기금 개발서버	2013	9,020
	DELL R710	윈도우	1	리포트 서버	2013	18,040
	SPARC M10-4S	유닉스	1	농지관리기금 DB서버	2014	63,600
S/W	Oracle Weblogic	WAS	1	농지보전부담금	2008	15,000
	Oracle DB	DBMS	2	기금회계, 조성토지	2008	5,000
	Rexpert	리포트	1	기금회계	2009	25,000
	Oracle Weblogic	WAS	1	조성토지	2009	15,000
	Secuve TOS	보안	1	dBrain 연계서버	2011	3,500
	BizSotre Indigo	EAI	1	dBrain 연계서버	2011	8,500
	K-Sign CASE	보안	1	dBrain 연계용 암호화 툴킷	2011	11,000
	Oracle DB	DBMS	1	dBrain 연계서버	2011	9,900
	XecureDB	암호화	1	기금회계, 조성토지	2012	30,000
	Oracle	DB	2	기금회계, 조성토지, 자산운용	2013	20,000
	Secuve TOS	보안	2	농지보전부담금	2013	2,649
	JEUS	WAS	1	조성토지, 농지보전부담금	2015	19,500
	Fasoo	보안	2	농지보전부담금	2015	22,000
	Clip Report	리포트	1	조성토지, 농지보전부담금	2015	21,184
	rMATE Grid	그리드	1	농지보전부담금	2015	3,960
	Secuve TOS	보안	2	농지보전부담금	2016	2,588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1. 추진배경

❏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정확한 결산 서비스 제공

❏ 국가회계기준 개정 등 국가결산 주요 변동사항 반영 및 결산 업무의 시스템 분석·검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농지관리기금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및 관리 필요

2. 목 적

❏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국가결산 대비

❏ 농지관리기금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3. 추진경과

❏ 2011.05.27. ~ 2011.12.20.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구축 및 오픈

○ 회계컨설팅, 국가회계기준 재무회계 시스템 개발, H/W 및 S/W 도입 등

❏ 2013.02.27. ~ 2014.03.26.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고도화

○ 결산 업무 지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 강화, 유지관리업무 등 수정 보완

❏ 2016.12.15. ~ 2016.12.30.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기능관리 및 보완

○ 국가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기능 점검 등

❏ 2017.07.13. ~ 2017.12.20.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고도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스템 기능 개선, 결산 업무 지원 등

❏ 2018.08.13. ~ 2018.12.20.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고도화 2차

○ 결산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및 송·수신 관리 등

4. 서비스 내용

❏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의 회계처리, 원장관리, 결산 등 정부통합결산 서비스

5. 업무 현황

❑ 정부는 예산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브레인은 업무형태에 따라 모듈이 수입·지출, 채권, 국유재산, 재무결산 등으로 구분됨

❑ 기금에서는 연중 일어나는 수입·지출 업무를 디브레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재무결산 등의 정보를 산출하여 결산 시 디브레인에 관련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기록관리 하고 있음

6.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개요

○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의 실무 회계처리, 원장관리, 결산 업무 진행 등 재무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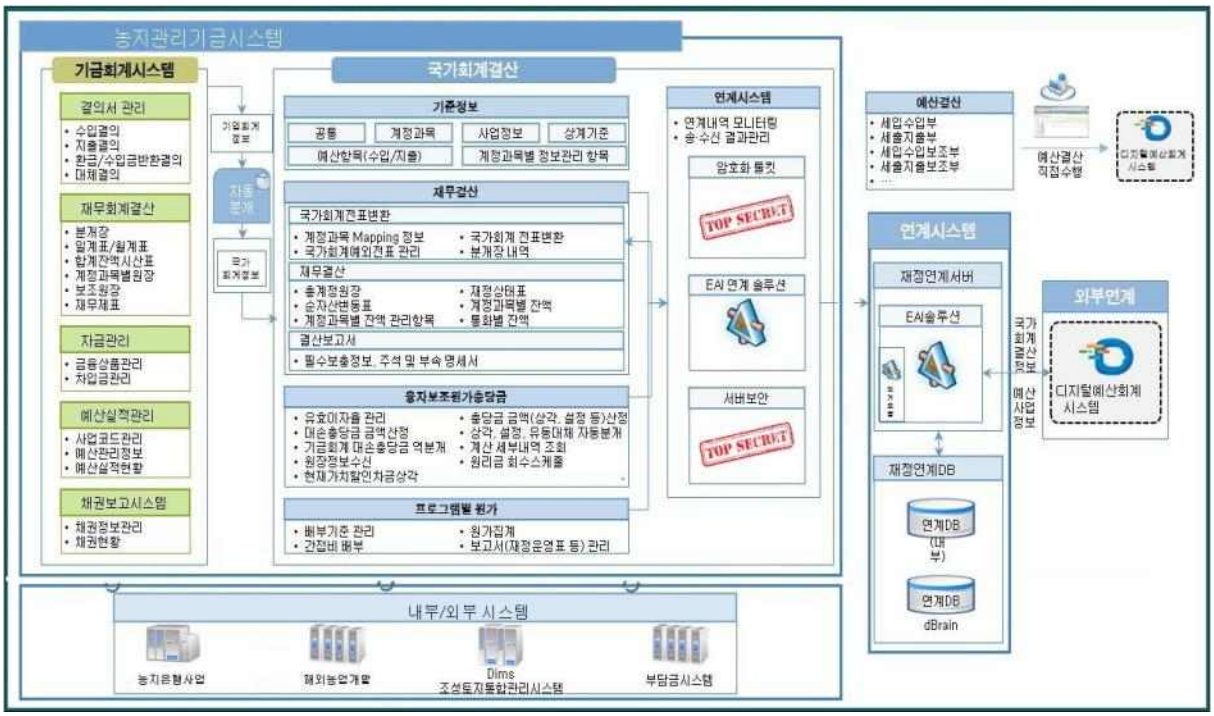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1. 추진배경

❏ 법·제도 개정에 따른 간척지의 계약방법 및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농지관리기금 간척지 관리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및 관리 필요

❏ 업무 및 시스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 확보

2. 목 적

❏ 법·제도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을 통한 효율적인 간척지 자산관리체계 구축

○ 개정된 법·제도 시행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노력으로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추진경과

❏ 2009.06.30. ~ 2009.11.30. : 시스템 개발 및 오픈

○ 매각, 임대, 임시사용, 일시사용 등 업무처리 개발

❏ 2011.04.20. ~ 2011.09.30. : 시스템 보완 개발 용역

○ 인수자산 관리, 임대사업 관리, 기존 시스템 보완개발,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 2012.09.5. ~ 2012.12.20. : 시스템 보완 개발 용역

○ 관리기능 강화, 사업현황 관리, 임대사업 관리, 매각, 일시사용 관리, 기타사항

❏ 2016.08.08. ~ 2016.12.15. : 시스템 보완 개발 용역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토지 자산재평가 및 가상계좌 서비스 기능 추가 등

4. 서비스 내용

❏ 조성토지의 매각, 임대, 일시사용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속한 부과결정 고지 및 수납, 발급서비스 제공

5. 업무 현황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간척지 채권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기금자산 총량관리 등 조성토지의 매각, 임대, 사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시스템

1. 추진배경

❏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자산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 자산운용 데이터의 지속적 관리 및 운용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2. 추진경과

❏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시스템

○ 2012.04.25. ~ 2012.08.24. : 시스템 구축 및 오픈

-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분석, 시장정보 및 기타 등 업무처리 개발

○ 2017.01.01. ~ 2017.12.31. : 시스템 유지관리

- 시장정보 데이터 수신, 자산배분모형 업그레이드, 성과평과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

3. 서비스 내용

❏ 농지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분석 등 자산운용에 필요한 정보 분석 및 보고서 출력 지원

4. 시스템 개요

❏ 금융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투자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산운용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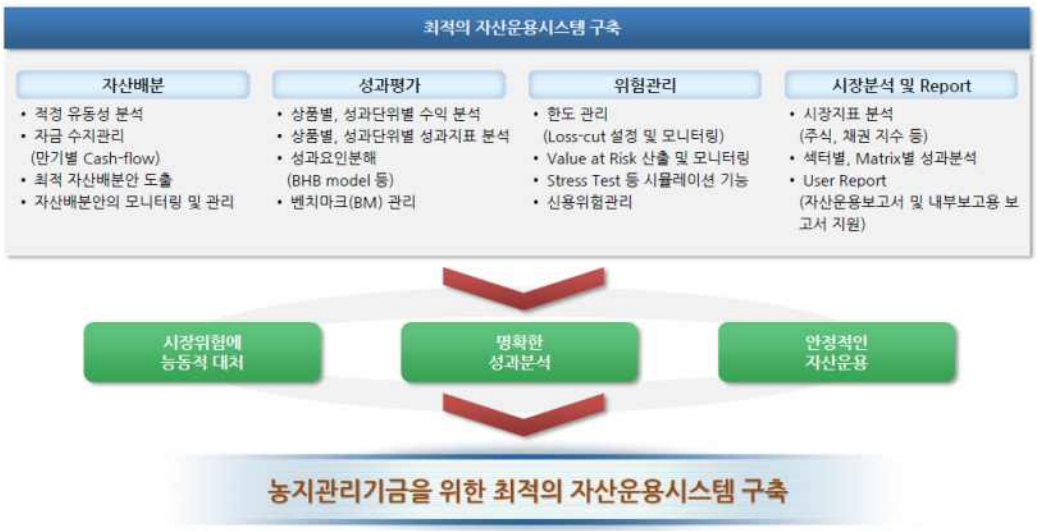

참고 2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세부내역

1. 과 업 명 : 2019년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용역

2. 과업목적

○ 기금 자산운용의 지속적인 성과분석 및 위험관리 결과 보고를 통해 자산운용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전략적 자산운용에 기여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로 기금 자산운용성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하여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대비

○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위험관리 보고를 통해 기금운용의 안정성·투명성을 도모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

3. 수행근거

○ 국가재정법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항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한다

○ '18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 ②-①-1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분리와 견제(배점 : 2.0)

· ②-①-1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이 적절히 분리되어 상호 독립성을 가지거나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것

○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 X. 성과평가 1. 성과평가의 원칙

3) 성과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운용조직과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과업내용

1) 성과평가 부문 : 성과분석 실시 및 정기평가보고서 제출

○ 월별, 분기, 반기, 연간 자산운용실적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체성과, 유형별성과, 개별성과 분석
- 절대성과 및 상대성과(기준수익률 대비, 목표수익률 대비) 분석
- 성과요인 분석(전략적 자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 효과 분석)
- 운용특성, 수익률 기여도 분석, 위험 노출도 분석 등 포트폴리오분석
- 종합평가 및 시장전망 및 기타 자산운용 관련사항 등
- 여유자금운용현황 보고 자료 작성 지원

2) 위험관리 부문 : 위험관리 실시 및 정기·수시보고서 제출

○ 위험분야별 각종 지표 산출·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위험 등 분석
-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위험지표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 농지관리기금 위험관리기준에 맞춘 각종 위험지표 관리·보고 및 대응지원

○ 국·내외 금융시장에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위험관리현황 보고서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 제출

3) 기타 사항

○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참석 및 결과 보고

○ '19년도 연간 자산운용계획(안) 작성 자문 지원

○ 기타(기금운용평가, 기금운용지침, 시장 상황 등)자문 지원

12. 농지은행 인적역량강화 사업(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지은행 인적역량 강화 사업	302	330	320	**330**	**10**	**103**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 당 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 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은행사업 참여자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함양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지은행 지원자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
사업기간	'06~계속
총사업비	3억원 ('18년까지 투자액 35.9억원)
사업규모	연 1,858명 교육('18년까지 26,610명)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국고 50~100%(농지이용 및 관리 80%, 해외견학 5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지은행 사업 지원자 및 청년창업농(2030세대 농업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비 330백만원

- (농지이용 및 관리) 청년창업농·2030세대 교육비 45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45백만원(100명×563천원×80%)
- (노후설계 컨설팅) 농지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128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128백만원(47회×20명×136천원×100%)
- (환매 활성화) 환매도래농가 교육비 111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111백만원 (16회×50명×139천원×100%)
- (해외선진 농업국가 농지제도 및 이용실태 견학) 선진국의 농지이용 및 관리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비 46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46백만원 (2팀×10명×4,600천원×50%)

□ 지원 필요성

○ 농업인의 경영혁신 역량강화, 노후설계 및 농지관리 방향설정과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지속·확대 운영 필요

- 농지은행 지원자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도모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지은행 인적역량 강화 사업**	**304**	**330**	**320**	**330**	**10**	**3**
▪ 농지이용 및 관리	56	**45** (100명×563백만×80%)	**37** (85명×551백만×80%)	**45** (100명×563백만×80%)	8	22
▪ 노후설계 컨설팅	130	**128** (47회×20명×136천원×100%)	**128** (47회×20명×136천원×100%)	**128** (47회×20명×136천원×100%)	-	
▪ 환매활성화	73	**111** (16회×50명×139천원×100%)	**111** (16회×50명×139천원×100%)	**111** (16회×50명×139천원×100%)	-	
▪ 해외선진 농업국가 견학	45	**46** (2회×10명×4,600천원×50%)	**44** (2회×10명×4,364천원×50%)	**46** (2회×10명×4,600천원×50%)	2	5
□ **비목**(합계)	**304**	**330**	**320**	**330**		
○ 인건비(110-01)	46	51 (2명×289천원×66회)	53 (2명×289천원×66회)	51 (2명×289천원×66회)		4
○ 일반관리비(210-15)	24	26 (인건비+경비의 10% 이내)	24 (인건비+경비의 10% 이내)	26 (인건비+경비의 10% 이내)		8
○ 민간경상보조 (320-01)	234	253 (4,000천원×66회)	243 (4,000천원×66회)	253 4,000천원×66회)		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추진경위

- 쌀 전업농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교육·훈련계획 도입
- 농업교육혁신 세부추진방안('05)에 따라 '06년부터 수요자 주도의 전문교육으로 전환 추진
- 농지은행 인적역량강화 교육 계획('14.4월)에 따라 '15년 이후부터는 "농지은행 지원자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시행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지은행 인적역량강화사업	280	280	280	280	330	33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80 (280)	- -	- -	280 (280)	273 (273)	-	7 (7)
'16년	280 (280)	- -	- -	280 (280)	264 (264)	-	16 (16)
'17년	330 (330)	- -	- -	330 (330)	302 (302)	-	28 (2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독 일) 농업인 교육·훈련
- 산간지대가 많은 남독일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어 농업지도원에 의한 농업분야의 교육과 생활분야의 교육사업이 병행되어 실시되며, 교육·훈련사업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

○ (네덜란드) 농업인 교육·훈련
- 세계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지속적인 시험연구, 지도활동, 교육·훈련을 통한 네덜란드 농업발전에 기여

○ (덴마크)의 농업인 교육·훈련
- 농촌인력의 직업교육을 비롯한 취농 이후의 지속교육, 지도사업, 실용시험,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교육·연구사업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13. 농지은행사업관리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지은행사업관리비	60,287	67,314	67,314	**69,114**	**1,800**	**2.7**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 직접비를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지연금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사업관리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지연금
사업기간	'90~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보조(보조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지은행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증가분 반영 소요비용 : 69,114백만원

- 산출내역 : 사업관리수수료 52,520백만원 + 제세공과금 16,594백만원

○ 산출내역 : 사업관리수수료 52,520백만원 + 제세공과금 16,594백만원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수수료(평균채권액 × 1.003%) + 제세공과금

- 평균채권액 : 2,168,970백만원('19년 추정 평균채권액)
- 사업관리수수료 : 21,755백만원
- 제세공과금 : 6,075백만원

▪ 맞춤형 농지지원 : 1)농지규모화 + 2)공공임대용 농지매입

1) 前 농지규모화 : 수수료(평균채권액 × 1.003%) + 제세공과금

- 평균채권액 : 1,307,442백만원('19년 추정 평균채권액)
- 사업관리수수료 : 13,114백만원
- 제세공과금 : 2,307백만원

2)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수수료(평균채권액 × 1.003%) + 제세공과금

- 평균채권액 : 1,474,019백만원('19년 추정 평균채권액)
- 사업관리수수료 : 14,784백만원
- 제세공과금 : 5,054백만원

▪ 농지연금 : 수수료(평균채권액 × 1.003%) + 제세공과금

- 평균채권액 : 285,860백만원('19년 추정 평균채권액)
- 사업관리수수료 : 2,867백만원
- 제세공과금 : 3,15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정부가 직접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기능 및 조직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농지은행사업관리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농업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농지이용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추진 곤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60,287	67,314	67,314	69,114		
▪ 사업관리수수료	51,065 (4,831,133백만×1.057%)	52,072 (5,006,892백만×1.040%)	52,072 (5,006,892백만×1.040%)	52,520 (5,236,291백만×1.003%)		
▪ 제세공과금	9,222 (16년 소요액 선납분)	15,242 (17년 소요액 선납분)	15,242 (17년 소요액 선납분)	16,594 (18년 소요액 선납분)		
□ 비목(합계)	60,287	67,314	67,314	69,114		
○ 민간경상보조(320-01)	60,287	67,314	67,314	69,11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34조(기금의 용도)
-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영농규모화사업 실시('90.7월)
- 「농어촌발전대책」쌀전업농 10만호육성 방침 발표('94.6월)
-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 발표('04.2월)
- 국회 농해위 국정감사시 농지은행 도입 촉구('04.10월)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05.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6.4월), 농지은행사업 시행 법적근거 마련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농지은행사업관리비	504	538	563	582	617	67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년(불용)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정산 잔액(1,780백만원)

○ ‘16년(불용)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정산 잔액(1,153백만원)

○ ‘17년(불용)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정산 잔액(1,427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63	-	-	563	545	-	18
	(563)	( )	( )	(563)	(545)	( )	(18)
’16년	582	-	-	582	571	-	11
	(582)	( )	( )	(582)	(571)	( )	(11)
’17년	617	-	-	617	603	-	14
	(617)	( )	( )	(617)	(603)	( )	(1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관리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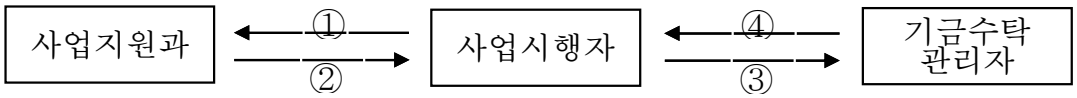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원과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② 사업지원과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확인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집행실적 및 청구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청구내역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 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관리비 지급

<제세공과금>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시 발생한 농특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관할관청에 납부

② 사업시행자는 직전연도에 납부한 농특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내역 등을 정리하여 사업지원과에 정산 신청

③ 사업지원과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 후 승인

④ 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내역서를 제출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정산내역서를 검토 후 제세공과금 정산 지급

참고 1 농지은행사업 제세공과금 현황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제세공과금 현황

○ 매매용・임차임대용・교환분합

세부사업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부과 내역 및 기준
농지 매매	취득세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납부 : 취득세 3%×50% - 감면되는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 초과인 경우 감면율 50%적용
	농어촌 특별세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특세 - 취득세 감면세액(감면되는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 초과인 경우 감면율 50%적용)의 20% (과세표준×3%×50%×20%)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납부에 따른 농특세 - 과세표준의 2%로 산출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 (과세표준×2%×50%×10%)
	등록면허세	◦매도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취득세 납부에 따른 취득가액의 1%로 산출한 세액의 20% (취득가액의 1%× 50% ×20%)
	등기신청 수수료	- 농지매입시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 - 매도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 - 1필지당 14,000원 (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의 평균값 적용)
농지 임대차	등록면허세	- 임차농지에 대한 임차권 및 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 임차농지에 대한 임차권 및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 - 1필지당 14,000원 (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의 평균값 적용)
농지 교환·분합	등록면허세	- 교환·분합한 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 교환·분합한 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 - 1필지당 14,000원 (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의 평균값 적용)

※ 농특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대법원] 제5조의2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77조의2

※ 등록면허세(저당권-채권최고액의 0.2%, 임차권-월임대차금액의 0.2%)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구 분	업무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부과기준
세 금	농지 매입	취득세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납부 : 취득세 3%×50% - 감면되는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 초과인 경우 감면율 50%적용
		농어촌 특별세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특세 - 취득세 감면세액(감면되는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 초과인 경우 감면율 50%적용)의 20% (과세표준×3%×50%×20%)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납부에 따른 농특세 - 과세표준의 2%로 산출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 (과세표준×2%×50%×10%)
		지방교육세	○취득세 납부에 따른 취득가액의 1%로 산출한 세액의 20% (취득가액의 1%× 50% ×20%)
	농지 보유	재산세	○농지취득·보유에 따른 재산세 납부액(당년 6.1일 현재 보유 농지에 대하여 부과) - 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의 0.7)의 0.07%
		지방교육세	○재산세 할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공과금	농지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 농지매입시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 - 1필지당 14,000원 (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의 평균값 적용)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제세공과금 현황

구 분	업무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부과기준
세 금	농지 매입	취득세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납부 : 취득세 3%×50% - 감면되는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 초과인 경우 감면율 50%적용
		농어촌 특별세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특세 - 취득세 감면세액(감면되는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 초과인 경우 감면율 50%적용)의 20% (과세표준×3%×50%×20%) ○농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납부에 따른 농특세 - 과세표준의 2%로 산출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 (과세표준×2%×50%×10%)
		지방교육세	○취득세 납부에 따른 취득가액의 1%로 산출한 세액의 20% (취득가액의 1%× 50% ×20%)
	농지 보유	종합부동산세	○보유 건축물(창고, 버섯재배사, 축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0.5%
		재산세	○농지취득·보유에 따른 재산세 납부액(당년 6.1일 현재 보유 농지에 대하여 부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재산세 50% 감면) - 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의 0.7)의 0.07%×0.5
		지방교육세	○재산세 할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구 분	업무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부과기준
공과금	농지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 농지매입시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 - 1필지당 14,000원 (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의 평균값 적용)
	농지 환매	감정평가 수수료	- 환매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로 인한 감정평가 수수료 - 환매농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비례

※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 경영회생지원 매입농지 재산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부 공고)

□ 농지연금사업 제세공과금 현황

구 분	업무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부과 기준
세 금	담보 농지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공과금		등기신청 수수료	-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 - 1필지당 14,000원 (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 13,000원의 평균값 적용)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016. 12. 27. 개정)**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016. 12. 27. 개정)**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2016.12.27 개정)

5.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6. 12. 27. 개정)**

14. 조성토지관리처분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2,003	2,317	5,783	2,317	△3,466	△59.9

* 사업코드 : 20 - 06 - - 100 - 101 - 7000 - 7077 - 253
* 담 당 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간척지농업과장(박재수), 사무관(신동원, 044-201-187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의 매각, 임대, 매각대금징수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지원, 준공전 지구의 일시사용에 따른 양·배수장 등 시설관리 및 일시사용료 징수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을 지원하여 조성토지의 효율적 관리 도모
사업기간	다년도 사업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23개소(임대 및 매각대금징수 21, 일시사용 2) (한국농어촌공사) 11개소(임대 및 매각대금징수 8, 일시사용1 임시2)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민간보조 100%, 국고보조 100% 보조(지속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조성토지관리처분비(한국농어촌공사) : 2,240백만원

○ 조성토지관리처분비(지자체) : 77백만원

○ 조성토지관리처분비(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구 22,546ha 2,240백만원

(1) 임대 및 매각대금징수 관리비 지원 : 1,762백만원
- ('18년) 21개 지구 1,762백만원 ⇒ ('19년) 21개 지구 1,762백만원
- (산출내역) 고흥지구 등 21개 관리지구 (21,075ha)
  - ▪ 21개 조성토지 매각대금징수 및 임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20명) 및 제반 행정 비용 반영
    * 매각대금징수관리 : 중장지구 등 8개 지구 12,074ha
    * 임대관리지구 : 이원지구 등 13개 지구(공구) 9,001ha
  - ▪ 임대제도 개선 및 영농법인 사후관리 등 반영

(2) 일시사용 관리 지원 : 150백만원
- ('18년) 2개 지구지구 150백만원 ⇒ ('19년) 2개 지구 150백만원
- (산출내역) 시화2공구 등 2개 관리지구 (1,471ha)
  - ▪ 준공 전(미등기) 지구의 간척지내 불법점용 관리 등 일시사용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등 실소요 비용 반영

(3) (신규)농지관리기금 보유자산의 재산세 : 328만원
- ('19년) 간척지 임대농지 재산세 328백만원
- (산출내역) 재산세 : 임대관리 이원지구 등 16개 지구(공구) 10,060ha

○ 조성토지관리처분비(자치단체) 8개 지구 3,004ha 77백만원

(1) 매각대금징수 관리비 지원 : 51백만원
- ('18년) 8개 지구 51백만원 ⇒ ('19년) 8개 지구 51백만원
- (산출내역) 고흥군 해창만지구 등 8개 관리지구 (2,575ha)

(2) 일시사용 관리 지원 : 16백만원
- ('18년) 1개 지구 16백만원 ⇒ ('19년) 1개 지구 16백만원
- (산출내역) 해창만지구 1개 관리지구 (213ha)

(3) 임시사용 관리 지원 : 10백만원
- ('18년) 2개 지구 10백만원 ⇒ ('19년) 2개 지구 10백만원
- (산출내역) 영암2-1공구 등 2개 관리지구 (216ha)

□ 지원 필요성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인계·인수, 임대 및 일시사용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매각된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징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간척지 임대농지 재산세 부과액 등을 지원하여 조성토지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매각대금·임대료·일시사용료 등 징수를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채권관리 및 기금사업 재투자 재원 확보

○ 대규모 농업법인에 대한 진단, 컨설팅, 평가시스템 마련하여 체계화된 규모화 농업법인 육성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준공(등기) 전 조성토지 매립지 등의 염분 제거 등을 위한 일시 사용으로 간척농지 숙답화로 수도작 등 영농생산기반 구축

○ 간척농지의 활용 다각화

- 빠른 속도로 변화화는 농업환경에서 경쟁력 우위가 가능한 쌀 중심에서 원예·사료·바이오에너지·경관 작물 등의 품목과 이용형태의 다양화의 활용방안 가능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2,003**	**2,317**	**5,783**	**2,317**	**△3,466**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운영비)	-	-	**3,794**	-	**△3,794**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한국농어촌공사)	1,912	**2,240** (23지구, 22,546ha)	**1,912** (23지구, 22,546ha)	**2,240** (23지구, 22,546ha) (재산세 16지구, 10,060ha)	**328**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지자체)	91	**77** (11지구, 3,004ha)	**77** (11지구, 3,004ha)	**77** (11지구, 3,004ha)	-	
□ **비목**(합계)	**2,003**	**2,317**	**5,783**	**2,317**	**△3,466**	
○운영비(210-02)	-	-	**3,794**	-	**△3,794**	
○민간경상보조(320-01)	1,912	2,240	1,912	2,240	32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1	77	77	77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기금의 기타 사업) 제5호
-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32조(매립지등 관리사업비 집행기준) 별표 5 조성토지 관리·처분사업비 집행기준

○ 추진경위

- '97. 7.30. 이전 : 매각대금 징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매각관리비 등은 징수금에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 집행, 일시위탁경작료 전액을 일시위탁경작비로 사용
- '97. 7.30.~'99까지 : 매각대금징수비 전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매각대금을 사용
- '00. 1. 1.~'09.12.20.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의 매각관리비 등 집행기준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집행
- '09.12.21.~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의 조성토지관리·처분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집행 지원근거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19	20	20	20	20	23
- 민간경상이전	18	18	18	18	19	22
- 자치단체이전	1	2	2	2	1	1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조성토지관리처분비(민간이전)

- 계획변경

· '16 : 남포부사공구 외 1지구 신규준공지구 취득세 828백만원 증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8.4	-	-	18.4	18.4	-	-
	(18.4)	(-)	(-)	(18.4)	(18.4)	(-)	(-)
'16년	18.4	-	8.3	26.7	26.7	-	-
	(18.4)	(-)	(8.3)	(26.7)	(26.7)	(-)	(-)
'17년	19.1	-	-	19.1	19.1	-	-
	(19.1)	(-)	(-)	(19.1)	(19.1)	(-)	(-)

○ 조성토지관리처분비(자치단체이전)

- 계획변경

· '16 : 고흥군 고흥지구 어업보상 손해배상금 9,987백만원 증액

- 불용사유

· '16 : 진도군 군내·보전지구 임대관리 잔액(3백만원),
완도군 월송·고금지구 매각대금징수관리 잔액(9백만원)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	-	-	1.6	1.6	-	
	(1.6)	(-)	-	(1.6)	(1.6)	(-)	(-)
'16년	1.6	-	99.9	101.5	101.4	-	0.1
	(1.6)	(-)	(99.9)	(101.5)	(101.4)	(-)	(0.1)
'17년	1.0	-	-	1.0	0.9	-	0.1
	(1.0)	(-)	(-)	(1.0)	(0.9)	(-)	(0.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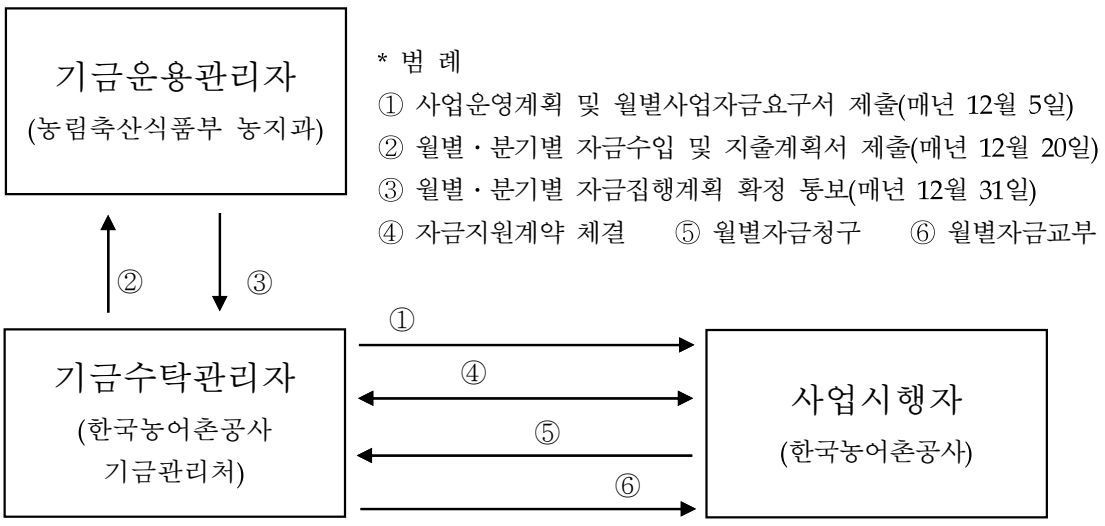
기금운용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범 례
① 사업운영계획 및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매년 12월 5일)
② 월별·분기별 자금수입 및 지출계획서 제출(매년 12월 20일)
③ 월별·분기별 자금집행계획 확정 통보(매년 12월 31일)
④ 자금지원계약 체결 ⑤ 월별자금청구 ⑥ 월별자금교부
②
③
①
④
⑤
⑥
기금수탁관리자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15. 농지이용관리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지이용관리지원	4,238	4,318	4,318	**4,445**	**127**	**2.9**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이수현) ☎(044-201-173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효율적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지자체에 조사인력 채용 지원

- 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54조 등에 따라 실시되는 농지소유 등에 관한 조사는 국가사무이며, 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함에 있어 관련 경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효율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지자체 조사인력 채용경비 지원
사업기간	'92~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자지단체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전국 지방자치단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조사인력 인건비 지원 :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등 4,445백만원

▪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원 채용일수 및 농지원부 일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산출내역 : 4,445백만원
- 조사인력 인건비 등 : 4,397백만원
· 읍면(3,754백만원)= 1,414개×50일×48,265원×1.1(보험료)×1명
· 동(643백만원)= 404개×30일×48,265원×1.1(보험료)×1명
- 운영비 : 48백만원(15개 시·도×3백만원, 2개 시×1.5백만원)
* 조사대상 확대 :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거래 목적 소유 농지에 대한 단속강화 필요

□ 지원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고(농지관리기금)에서 농지이용실태 및 농지원부 일제조사 등 조사원의 인건비 지원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 농업인을 비롯한 일반인 민원 전화 등 항의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줄 것"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지이용관리지원	4,238	4,318	4,318	4,445	127	2.9
▪ 조사원 채용 관련 인건비 (산출근거)	4,190	4,270 ◦읍면(3,686) : 1,414개×50일 ◦동(584) : 404개×28일 ※단가 47,390원	4,270 ◦읍면(3,686) : 1,414개×50일 ◦동(584) : 404개×28일 ※단가 47,390원	4,397 ◦읍면(3,754) : 1,414개×50일 ◦동(643) : 404개×30일 ※단가 48,265원	127	2.9
▪ 교육비 등 운영비 (산출근거)	48	48 (15개×3백만, 2개×1.5백만)	48 (15개×3백만, 2개×1.5백만)	48 (15개×3백만, 2개×1.5백만)	-	0.0
□ 비목(합계)	4,238	4,318	4,318	4,445	127	2.9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4,238	4,318	4,318	4,445	127	2.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지법」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농지원부 작성 및 농지이용 실태 파악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조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추진경위

- 2007년 국정감사 시 농지처분제도 강화 등 시정 요구
- 2007년 감사원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시 농지원부 자료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
- 농지관리위원회는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지의 전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09.11.28)
  - ▪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확인 업무의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여 '10년부터 농지 소유·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농업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목적 농지취득 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 강화 필요('16.2)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농지이용관리지원	42.38	42.38	42.38	42.38	42.38	43.18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2.38	-	-	42.38	42.38	-	-
'16년	42.38	-	-	42.38	42.38	-	-
'17년	42.38	-	-	42.38	42.3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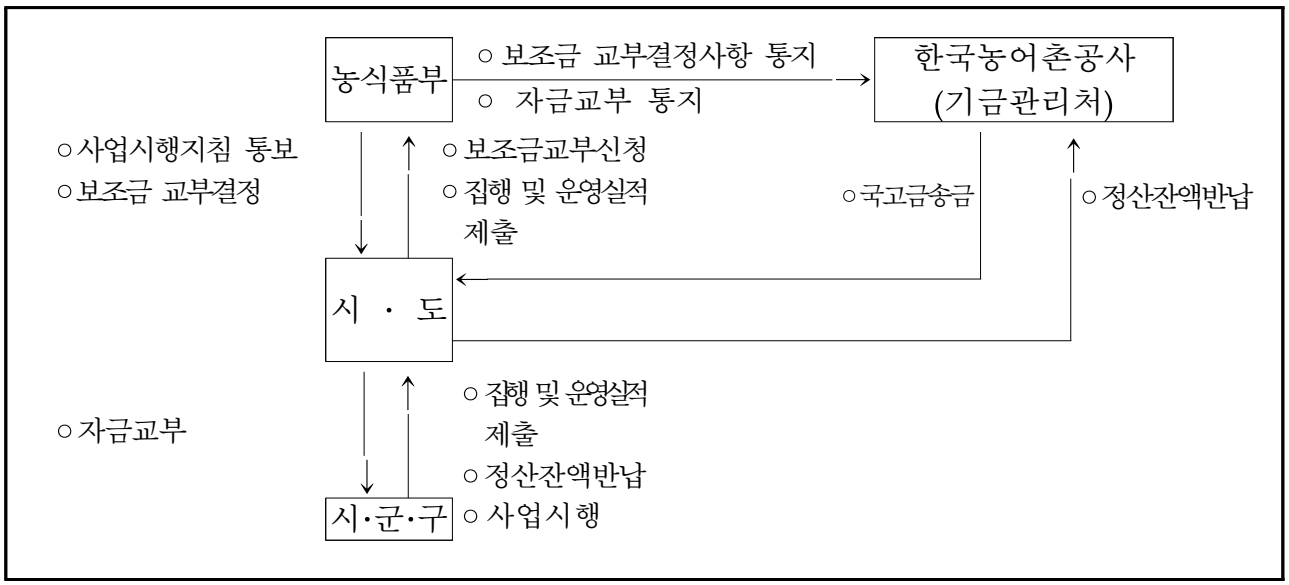

16.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2	6	6	**6**	**-**	**-**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백재관) ☎(044-201-173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신고활성화 유도로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불법전용신고 포상금 지급
사업기간	'96～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0.5백만원 × 12건 = 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지의 보전과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2	6	6	6	-	-
▪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2	6 (0.5백만×12건=6백만)	6 (0.5백만×12건=6백만)	6 (0.5백만×12건=6백만)	-	-
□ 비목(합계)	2	6	6	6	-	-
○ 포상금(310-03)	2	6	6	6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지법 제52조, 농지법시행령 제72조, 농지법시행규칙 제62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 추진경위

- 1996년부터 농지불법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지불법전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0.09	0.09	0.09	0.09	0.09	0.0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4~'17년 불용 : 예산액 대비 신고 건수 저조로 인해 불용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0.09	-	-	0.09	0.06	-	0.03
'16년	0.09	-	-	0.09	0.05	-	0.04
'17년	0.09	-	-	0.09	0.02	-	0.0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농지불법전용신고 : 신고자 → (행정기관) → 사법기관

○ 포상금 청구 : 신고자 → 시·도지사(경유)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72조, 농지법시행규칙 제62조

○ 청구내용 검토 및 포상금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 검찰(처분내용 조회) → 농림축산식품부(처분내용 회신) → 신고자에게 포상금지급(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 지급)

※ 농지법 시행령 제72조, 농지법시행규칙 제62조

17. 농지제도개선홍보(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지제도개선홍보	181	181	181	**181**	**-**	**-**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서기관(이수현)☎(044-201-173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관리제도 개선 및 농지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농업개방에 따른 농지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검토·논의 등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지법 개정 사항 교육 및 홍보 등
사업기간	'90~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지제도개선홍보사업 : 농지제도개정 관련 교육 등 181백만원

▪ 주요 농지제도 개정 관련 자료 발간 및 지자체 농지업무담당자 교육
▪ 산출내역 :
- 기획보도 및 농지법령집 등 발간 (40백만원) : 40백만원(2종 이상)
- 지자체 농지업무담당자 교육(141백만원) : 700명 × 200천원 × 1회(권역별 3회)

□ 지원 필요성

○ 농지업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원부 발급, 농지전용 허가 등 민원업무로서 그 건수나 업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이 요구되나 일선 지자체의 농지업무담당자가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농지제도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적기 교육을 통해 보직 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 필요
- 법 개정이 잦은 관계로 개정내용을 수시로 일선 지자체 공무원에게 교육 필요

○ 농지업무담당자에게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의 보존, 외국의 농지제도, 농지이용실태, 농지소유제도, 보조금 정책 등 선진 농업국의 지식을 습득케 하고, 해외 농지제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각국의 농지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내 농지제도의 문제점 개선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지제도개선홍보	181	181	181	181	-	-
▪ 농지소유이용 연구용역	-	농지이용연구용역 (100백만원)	농지이용연구용역 (91백만원)	-	-	-
▪ 농지제도 홍보 등	81	농지제도홍보 등 (21백만원)	농지지제도홍보등 (20백만원)	농지제도개선 등 홍보(40백만원)	-	-
▪ 지자체 담당자 교육	100	전국 2개권역 순회 워크숍(60백만원) (2개×30백만)	전국 2개권역 순회 워크숍(70백만원) (2개×35백만)	전국 3개권역 순회 워크숍(141백만원) (3개×47백만)	-	-
□ 비목(합계)	181	181	181	181	-	-
○ 민간경상보조(320-01)	181	181	181	181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 추진경위

- 농지 소유 및 이용, 농지전용 등 농지에 대한 농지법의 개정사항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강화 등의 사항이 있어 개정사항의 충분한 설명, 홍보가 요구됨

- 농지제도 개선홍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법 개정 사항 등의 적기 홍보·설명에 차질이 생겨 현지 농지관련 업무추진 차질, 민원 발생으로 농지정책의 혼란 우려
- 또한, 우리나라의 농지정책은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진흥지역제도, 전용허가제도,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대체농지 지정이나 신규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량농지의 타목적 전용이 증대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해외 농업선진국의 농지제도 정책사례연구 및 조사 필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농지제도개선홍보	1.81	1.81	1.81	1.81	1.81	1.81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8 (1.8)	- (-)	- (-)	1.8 (1.8)	1.8 (1.8)	- (-)	- (-)
'16년	1.8 (1.8)	- (-)	- (-)	1.8 (1.8)	1.8 (1.8)	- (-)	- (-)
'17년	1.8 (1.8)	- (-)	- (-)	1.8 (1.8)	1.8 (1.8)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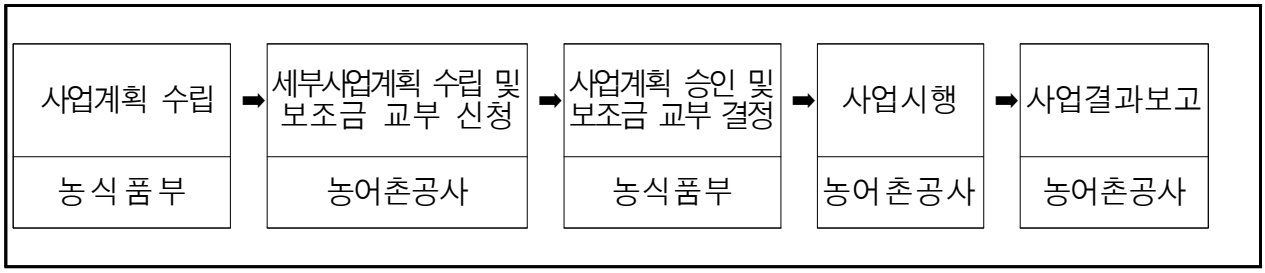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출(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사업계정) 전출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8400 - 841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 ☎(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타 회계에 전출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 회계에 전출
사업기간	해당없음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억원('18년까지 8,000억원 전출)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 400,000백만원 전출

□ 지원 필요성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부족을 보전함으로써 농특회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사업계정) 전출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
▪ 전출금 등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
□ 비목(합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
○ 특별회계전출금 (610-02)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 추진경위

- 수입재원(농지보전부담금)의 일시적 증가에 따라 늘어난 기금의 여유자금을 세입이 부족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지원하기 위하여 전출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지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전출	-	-	-	-	4,000	4,0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1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300,000	700,000	700,000	**700,000**	-	-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 ☎(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
사업기간	'12~계속
총사업비	- 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신규 예탁 700,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을 통해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300,000	700,000	700,000	700,000	-	-
▪ 공자기금 예탁금	300,000	700,000	700,000	700,000	-	-
□ 비목(합계)	300,000	700,000	700,000	700,000	-	-
○ 기금예탁금(480-03)	300,000	700,000	700,000	700,0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수입재원(농지보전부담금)의 일시적 증가에 따라 늘어난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자기금에 신규 예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5,000	5,000	2,500	3,616	3,000	7,0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500	-	-	2,500	2,500	-	-
'16년	3,616	-	-	3,616	3,616	-	-
'17년	3,000	-	-	3,000	3,0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20. 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통화금융기관예치 (농지기금)	572,615	253,919	184,777	**238,440**	**53,663**	**29.0**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9700 - 9703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 ☎(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금 내 수입 및 지출의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 여유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
사업기간	'90~계속
총사업비	- 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통화금융기관예치 238,4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여유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 계획		'18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통화금융기관예치 (농지기금)**	**572,615**	**253,919**	**184,777**	**238,440**	**53,663**	**29.0**
▪ 예치금	572,615	253,919	184,777	238,440	53,663	29.0
□ **비목**(합계)	**572,615**	**253,919**	**184,777**	**238,440**	**53,663**	**29.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572,615	253,919	184,777	238,440	53,663	29.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등을 위해 사업대기성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여유자금 운용)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통화금융기관예치 (농지기금)	2,773	1,293	149	2,019	2,139	1,848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6년(변경) : 조성토지관리처분사업(어업권 손해배상) 지원을 위해 변경

○ '17년(변경)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정률 제고를 위해 변경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9**	-	-	149	**1,887**	-	-
'16년	**2,127**	-	△108	2,019	**2,812**	-	-
'17년	**2,335**	-	△196	2,139	**5,72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농지기금)	1,054,000	142,666	142,666	**593,348**	**450,682**	**315.9**

* 사업코드 : 20 - 06 - 0 - 100 - 101 - 7000 - 7077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지과장(홍인기), 사무관(최수아) ☎(044-201-17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금 내 수입 및 지출의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사업기간	'90~계속
총사업비	- 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93,34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여유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농지기금)	1,054,000	142,666	142,666	593,348	450,682	315.9
▪ 예치금	1,054,000	142,666	142,666	593,348	450,682	315.9
□ 비목(합계)	1,054,000	142,666	142,666	593,348	450,682	315.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1,054,000	142,666	142,666	593,348	450,682	315.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등을 위해 사업대기성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여유자금 운용)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농지기금)	1,160	565	7	2,054	686	1,42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7년(변경) : 농지연금 지급대상 증가 및 신규상품 출시에 따른 연금 지급을 위해 변경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	-	-	7	2,033	-	-
'16년	2,054	-	-	2,054	10,360	-	-
'17년	698	-	△12	686	10,54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양곡증권정리기금

목 차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593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594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 ····· 1595
2. 기금예수금 ····· 1597
3. 일반회계전입금 ····· 1599
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601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 ····· 1603
2.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 1606
3. 통화금융기관예치(양곡기금) ····· 1609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1,759,189**	**510,777**	**430,011**	**△80,766**	**△15.8**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827**	**287**	**287**	**-**	**-**
기타재산수입 (54-545)	827	287	287	-	-
85 정부예금회수	**33,871**	**23,867**	**24,544**	**677**	**2.8**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33,871	23,867	24,544	677	2.8
91 전입금	**176,991**	**216,623**	**305,180**	**88,557**	**40.9**
일반회계전입금 (91-911)	176,991	216,623	305,180	88,557	40.9
94 예수금	**1,547,500**	**270,000**	**100,000**	**△170,000**	**△63.0**
기금예수금 (94-943)	1,547,500	270,000	100,000	△170,000	△63.0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1,759,189**	**510,777**	**430,011**	**△80,766**	**△15.8**
911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1,577,500**	**370,000**	**300,000**	**△70,000**	**△18.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9111-911)	1,577,500	370,000	300,000	△70,000	△18.9
920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60,909**	**116,233**	**105,180**	**△11,053**	**△9.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2-921)	160,909	116,233	105,180	△11,053	△9.5
9701 여유자금운용	**20,780**	**24,544**	**24,831**	**287**	**1.2**
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1)	20,780	24,544	24,831	287	1.2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

54-545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재산수입	827	287	287	-	-

1. 법적 근거

○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설치) ①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 수입 개요

○ 국고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수정)	287,000	금융기관 예치 24,544백만원 × 1.17% = 287백만원
2019계획안	287,000	금융기관 예치 24,831백만원 × 1.16% = 287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87	227	227	79.1	100.0	-	-
’15	287	753	753	262.4	100.0	-	-
’16	287	728	728	253.7	100.0	-	-
’17	287	827	827	288.1	100.0	-	-
’18	287	1,271	1,271	442.9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년 결산기준(산출일)으로 작성

2. 기금예수금

94-94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금예수금	1,547,500	270,000	100,000	△170,000	△63.0

1. 법적 근거

○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설치) ①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 수입 개요

○ 정부내부거래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수정)	270,000,000	상환일정에 따른 공자기금 원금 상환액 : 270,000백만원
2019계획안	100,000,000	상환일정에 따른 공자기금 원금 상환액 : 100,000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98,058	299,716	299,716	100.6	100.0	-	-
’15	500,000	500,000	500,000	100.0	100.0	-	-
’16	812,000	812,000	812,000	100.0	100.0	-	-
’17	1,577,500	1,547,500	1,547,500	98.1	100.0	-	-
’18	270,000	270,000	270,000	100.0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년 결산기준(산출일)으로 작성

3. 일반회계전입금

91-91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일반회계전입금	176,991	216,623	305,180	88,557	40.9

1. 법적 근거

○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설치) ①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 수입 개요

○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수정)	216,623,000	일반회계 전입금(공자기금 이자) : 116,62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공자기금 원금) : 100,000백만원
2019계획안	305,180,000	일반회계 전입금(공자기금 이자) : 105,180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공자기금 원금) : 200,000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97,177	197,177	197,177	100.0	100.0	-	-
’15	194,253	194,253	194,253	100.0	100.0	-	-
’16	194,136	194,136	194,136	100.0	100.0	-	-
’17	176,991	176,991	176,991	100.0	100.0	-	-
’18	216,623	216,623	216,623	100.0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년 결산기준(산출일)으로 작성

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통화기금예치금회수	33,871	23,867	24,544	677	2.8

1. 법적 근거

○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설치) ①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수정)	23,867,00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23,867백만원(예치금 회수)
2019계획안	24,544,00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24,544백만원(예치금 회수)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8,612	707	707	8.2	100.0		
’15	8,899	1,331	1,331	14.9	100.0	-	-
’16	12,692	11,099	11,099	87.4	100.0	-	-
’17	26,064	33,871	33,871	130.0	100.0	-	-
’18	23,867	20,780	20,780	87.1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년 결산기준(산출일)으로 작성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1,577,500	370,000	370,000	300,000	△70,000	△18.9

* 사업코드 : 20 - 07 - 0 - 100 - 101- 9100 - 9111

* 담 당 자 : 식량국장(김인중), 식량과장(전한영), 사무관(서정우)☎(044-201-182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곡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채 상환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일정에 따른 채무 상환관리
사업기간	'94~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18) 370,000백만원 → ('19) 300,000

▪ '19. 3. 9. 예수금(100,000백만원) 상환기간 도래, 순상환(200,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중 상환기한이 도래한 원금을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받아 상환(100,000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재원으로 순상환(200,000백만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	**1,577,500**	**370,000**	**370,000**	**300,000**	**△70,000**	**△18.9**
▪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	1,577,500	370,000 ('12.4.12예수금 270,000백만원 + 순상환 100,000백만원)	370,000 ('12.4.12예수금 270,000백만원 + 순상환 100,000백만원)	300,000 ('19.3.9 예수금 200,000백만원 + 순상환 100,000백만원)	△70,000	△18.9
□ 비목(합계)	**1,577,500**	**370,000**	**370,000**	**300,000**	**△70,000**	**△18.9**
○ 예수금원금상환 (510-04)	1,577,500	1,577,500 ('12.4.12예수금 270,000백만원 + 순상환 100,000백만원)	1,577,500 ('12.4.12예수금 270,000백만원 + 순상환 100,000백만원)	300,000 ('19.3.9 예수금 200,000백만원 + 순상환 100,000백만원)	△70,000	△18.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추진경위

- '93년까지 양곡사업을 하던 양곡관리기금의 부채(양곡증권 및 차관양곡)를 '94년부터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승계하여 상환
- '0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양곡증권원금을 상환('04년 상환완료)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중 상환기한이 도래한 원금은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받아 상환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9,761	2,981	5,000	8,120	15,775	3,7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000 (-)	- (-)	- (-)	5,000 (-)	5,000 (-)	- (-)	- (-)
'16년	8,120 (-)	- (-)	- (-)	8,120 (-)	8,120 (-)	- (-)	- (-)
'17년	15,775 (-)	- (-)	- (-)	15,775 (-)	15,775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자금 예탁신청(농식품부→기재부) →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2.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160,909	116,233	116,233	**105,180**	△11,053	△9.5

* 사업코드 : 20 - 07 - 0 - 100 - 101- 9200 - 9202

* 담 당 자 : 식량국장(김인중), 식량과장(전한영), 사무관(서정우)☎(044-201-182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곡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채 이자 상환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일정에 따른 채무 이자 상환관리
사업기간	'94~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 상환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18) 116,233백만원 → ('19) 105,180

▪ 산출내역 : '12~'18년 예수한 공자기금의 이자 상환을 6개월마다 상환

* 공자기금예수금/금리 : ('18) 45,717억원/2.87% 내외 → ('19안) 44,717/2.55

□ 지원 필요성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기한 도래에 따른 이자상환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공자기금예수금원금 상환	**160,909**	**116,233**	**116,233**	**105,180**	**△11,053**	**△9.5**
▪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160,909	116,233 ('11~'17년 예수한 공자기금의 이자)	116,233 ('11~'17년 예수한 공자기금의 이자)	105,180 ('12~'18년 예수한 공자기금의 이자)	△11,053	△9.5
□ 비목(합계)	**160,909**	**116,233**	**116,233**	**105,180**	**△11,053**	**△9.5**
○ 예수금이자상환 (510-05)	160,909	116,233 ('11~'17년 예수한 공자기금의 이자)	116,233 ('11~'17년 예수한 공자기금의 이자)	105,180 ('12~'18년 예수한 공자기금의 이자)	△11,053	△9.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추진경위

- '93년까지 양곡사업을 하던 양곡관리기금의 부채(양곡증권 및 차관양곡)를 '94년부터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승계하여 상환
- '0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양곡증권원금을 상환('04년 상환완료)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관련 상환기한이 도래한 이자 상환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2,208	1,988	1,911	1,811	1,795	1,16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2015년 :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예수이자율 하락(4.15%→4.03)에 따른 집행 잔액

○ 2016년 :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예수이자율 하락(3.94%→3.74)에 따른 집행 잔액

○ 2017년 :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예수이자율 하락(4.55%→2.10)에 따른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11** (-)	- (-)	(-)	1,911 (-)	**1,853** (-)	- (-)	58 (-)
'16년	**1,811** (-)	- (-)	- (-)	1,811 (-)	**1,721** (-)	- (-)	90 (-)
'17년	**1,795** (-)	- (-)	- (-)	1,795 (-)	**1,609** (-)	- (-)	186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일정에 따른 채무 상환관리

3. 통화금융기관예치(양곡기금)(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통화금융기관예치 (양곡기금)	20,780	24,544	24,544	**24,831**	**287**	**1.2**

* 사업코드 : 20 - 07 - 0 - 100 - 101- 9700 - 9701

* 담 당 자 : 식량국장(김인중), 식량과장(전한영), 사무관(서정우)☎(044-201-182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자금 및 여유자금 이월금 관리 운용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자금 및 여유자금 이월금 관리 운용
사업기간	'94~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통화금융기관예치 : ('18) 24,544백만원 → ('19) 24,831

▪ 여유자금 운용 규모 : 24,831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기한 도래에 따른 이자상환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	**20,780**	**24,544**	**24,544**	**24,831**	**287**	**1.2**
▪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20,780	24,544 (여유자금 운용 규모)	24,544 (여유자금 운용 규모)	24,831 (여유자금 운용 규모)	287	1.2
□ 비목(합계)	**20,780**	**24,544**	**24,544**	**24,831**	**287**	**1.2**
○ 예수금이자상환 (510-05)	20,780	24,544 (여유자금 운용 규모)	24,544 (여유자금 운용 규모)	24,831 (여유자금 운용 규모)	287	1.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추진경위

-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자금 및 여유자금 이월금 관리 운용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58	62	124	261	239	24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4 (-)	- (-)	- (-)	124 (-)	111 (-)	- (-)	- (-)
'16년	261 (-)	- (-)	- (-)	261 (-)	339 (-)	- (-)	- (-)
'17년	239 (-)	- (-)	- (-)	239 (-)	208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대기자금 및 여유자금 발생 → 통화금융기관 예치

축 산 발 전 기 금

목 차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617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618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 1620
2. 기타민간이자수입 ····· 1621
3. 기타재산수입 ····· 1622
4. 법정부담금 ····· 1623
5. 민간출연금 ····· 1624
6. 기타경상이전수입 ····· 1625
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1626
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627
9. 특별회계전입금 ····· 1628
10.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629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인건비 ····· 1630
2. 기타경비 ····· 1633
3. 축산자조금 ····· 1637
4. 축산물수급관리 ····· 1644
5.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 1660
6.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 1667
7. 가축개량지원 ····· 1680
8. 사료산업종합지원 ····· 1689
9. 말산업육성지원 ····· 1694

1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1711
11.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1715
12.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 1719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1723
14. 가축분뇨처리지원 ····· 1732
15. 축산물품질관리 ····· 1741
16. 도축검사 운영 ····· 1751
17. 축산물HACCP지원 ····· 1760
18. 가축위생방역지원 ····· 1766
19. 비통화금융기관예치(축발기금) ····· 1772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계획 (A)	2019계획 (B)	(B-A)	%
총 계	**1,084,284**	**1,052,904**	**1,017,078**	**△35,826**	**△3.4**
51 관유물대여료	9	10	10	-	-
토지대여료(51-511)	9	10	10	-	-
건물대여료(51-512)	-	-	-	-	-
54 기타이자및재산수입	40,376	38,987	39,718	**731**	**1.9**
기타민간이자(54-544)	10,674	11,081	10,272	△809	△7.3
기타재산수입(54-545)	29,702	27,906	29,446	1,540	5.5
57 변상금및위약금	2	-	-	-	-
위약금(57-572)	2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5,348	202,549	206,218	**3,669**	**1.8**
법정부담금(59-593)	3,695	3,000	3,026	26	0.9
민간출연금(59-594)	159,600	175,840	175,840	-	-
기타경상이전(59-596)	42,053	23,709	27,352	3,643	15.4
71 고정자산매각대	465	380	819	**439**	**115.5**
기계기구매각대(71-712)	-	-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	465	380	819	439	115.5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9	-	-	-	-
토지매각대(72-721)	9	-	-	-	-
75 융자원금회수	597,567	629,201	585,293	**△43,908**	**△7.0**
기타민간융자원금(75-754)	597,567	629,201	585,293	△43,908	△7.0
85 정부예금회수	240,508	181,777	35,020	**△146,757**	**△80.7**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1,826	-		-	-
통화금융기관(85-852)	-			-	-
비통화금융기관(85-853)	238,682	181,777	35,020	△146,757	△80.7
91 전입금	-	-	150,000	**150,000**	**순증**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	-	150,000	150,000	순증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계획 (A)	2019계획 (B)	(B-A)	%
총 계	**1,084,284**	**1,052,904**	**1,017,078**	**△35,826**	**△3.4**
3731 축산물수급관리	128,591	104,267	109,547	5,280	5.1
축산자조금(3731-302)	24,692	26,000	26,000	-	-
축산물수급관리(3731-303)	103,191	73,760	80,150	6,390	8.7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3731-305)	708	3,647	1,731	△1,916	△52.5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3731-306)	-	860	1,666	806	93.7
3732 축산기술보급	50,991	53,699	52,369	△1,330	△2.5
가축개량지원(융자)(3732-306)	9,000	9000	6,000	△3,000	△33.3
가축개량지원(3732-307)	41,991	44,699	46,369	1,670	3.7
3733 축산업경쟁력제고	520,362	474,341	427,630	△46,711	△9.8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3733-312)	60,989	56,957	53,850	△3,107	△5.5
말산업육성지원(3733-315)	27,844	29,434	31,640	2,206	7.5
말산업육성지원(융자)(3733-321)	2,367	1,950	1,950	-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3733-329)	420,000	380,000	336,150	△43,850	△11.5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3733-331)	5,031	3,000	1,500	△1,500	△50.0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3733-332)	4,131	3,000	1,500	△1,500	△50.0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3733-343)	-	(1,040)	1,040	1,040	순증
3735 친환경축산	189,057	189,711	170,729	△18,982	△1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융자)(3735-315)	18,613	16,658	10,807	△5,851	△35.1
조사료생산기반확충(3735-321)	75,537	80,435	76,577	△3,858	△4.8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3735-329)	51,864	55,710	48,295	△7,415	△13.3
가축분뇨처리지원(3735-330)	43,043	36,908	35,050	△1,858	△5.0
3738 축산물품질관리(축발)	-	(40,964)	43,078	43,078	순증
축산물품질관리(3738-330)	-	(40,964)	43,078	43,078	순증
3938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50,762	62,580	19,591	△42,989	△68.7
축산물품질관리(3938-330)	33,640	40,964	-	△40,964	순감
도축검사운영(3938-332)	15,472	19,966	17,941	△2,025	△10.1
축산물HACCP지원(3938-335)	1,650	1,650	1,650	-	-
3941 가축방역(축발)	41,970	49,041	51,628	2,587	5.3

구 분	2017 결산	2018계획 (A)	2019계획 (B)	(B-A)	%
가축위생방역지원(3941-342)	41,970	48,001	51,628	3,627	7.6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3941-343)	-	1,040	-	△1,040	순감
7078 기금운영비(축발)	3,304	1,715	1,735	20	1.2
인건비(7078-101)	975	1,000	1,018	18	1.8
기타경비(7078-201)	390	715	717	2	0.3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7078-652)	1,939	-	-	-	-
9704 여유자금운용	99,247	117,550	140,771	23,221	19.8
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1)	546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2)	98,701	117,550	140,771	23,221	19.8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52-51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관유물대여료	9	10	10	-	-
토지대여료(51-511)	9	10	10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건물 사용료 산출기준)

2. 수입 개요

○ 축산발전기금의 자산 중 일부를 유상 대여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근거 : 토지대여료 10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3	31	31	134.8	100.0	-	-
'15	23	18	18	78.3	100.0	-	-
'16	6	6	6	100.0	100.0	-	-
'17	10	9	9	90.0	100.0	-	-
'18	10	-	-	-	-	-	-

2.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민간이자수입 (대여금이자)	10,674	11,081	10,272	△809	△7.3

1. 법적 근거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9조(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및 제26조(이자의 납부)

2. 수입 개요

○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이자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근거 :

('17년말 추정융자원금잔액 × '17년도 가중평균대여금리*) + 회기경과후반납이자 - 재해 관련 이자감면액 추정치

= 9,855백만원 + 430백만원- 13백만원 = 11,081백만원

* '18년도 가중평균대여금리 추정치 0.746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1,074	21,770	21,770	103.3	100.0	-	-
'15	27,715	21,337	21,337	77.0	100.0	-	-
'16	17,503	12,963	12,963	74.1	100.0	-	-
'17	24,883	29,702	29,702	119.3	100.0	-	-
'18	27,906					-	-

3. 기타재산수입

54-545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재산수입	29,702	27,906	29,446	1,540	5.5
- 예치금이자수입	2,728	1,869	2,907	1,038	55.5
- 개량사업소수입	26,974	26,037	26,539	502	1.9

1. 법적 근거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2. 수입 개요

○ 한우·젖소개량사업소 생장물 및 정액 판매대금 수입

○ 축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기타재산수입 : 29,446백만원

- 예치금이자 2,907백만원 = (최근 3년간 여유자금 평잔) × 1.56% ('15~17년 평균금리+1%)
- 개량사업수입 26,539백만원 = 정액판매대금 20,262+생장물판매대금등 6,277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7,003	28,425	28,425	105.2	100.0	-	-
'15	25,200	28,323	28,323	112.4	100.0	-	-
'16	26,989	28,831	28,831	106.8	100.0	-	-
'17	27,906	29,702	29,702	106.4	100.0	-	-
'18	27,906					-	-

4. 법정부담금

59-593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법정부담금	3,695	3,000	3,026	26	0.9
- 축산물수입이익금	2,745	2,656	2,675	19	0.7
- 대체초지조성비	950	344	351	7	2.0

1. 법적 근거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및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2. 수입 개요

○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축산물(벌꿀)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물수입이익금 징수

○ 초지를 전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징수

3. 2019년 계획 내역

○ 축산물수입이익금 : 2,675백만원

- 352톤(MMA물량)*7,600천원('19년 수입권공매(추정)납입단가) ≒ 2,675백만원

○ 대체초지조성비 : 351백만원

- 30ha × 13,000천원('18년도 정부고시 납입단가) × 징수율 0.90 = 351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990	2,542	2,540	84.9	99.9	2	-
'15	2,990	2,676	2,672	89.4	99.9	4	-
'16	2,722	1,524	1,524	56.0	100.0	-	-
'17	3,000	3,695	3,695	123.2	100.0		-
'18	3,000						

5. 민간출연금

59-594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민간출연금(마사회납입금)	159,600	175,840	175,840	-	-

1. 법적 근거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2. 수입 개요

○ 한국마사회 '18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의 70%를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 축발기금 납입율은 '09년까지 48%(특별적립금율 60% × 축발기금납입율 80%), '10년 부터 56%(70% × 80%), '15년부터 70%(70% × 100%)

3. 2019년 계획 내역

○ 한국마사회 당기순이익 전망치의 특별적립금 출연비율

= 251,200백만원×70% = 175,840백만원

<경마 수익금 사용 체계>

■ 총 매출액 = 환급금 + 제세금 + 운영비용 + **이익금**
(100%) (73%) (16%) (7%) (4%)

• 이익금 = 이익준비금 + 사업확장적립금 + **특별적립금(축발기금 100%)**
(10%) (20%) **(7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81,160	159,376	159,376	87.9	100.0	-	-
'15	194,100	167,580	167,580	86.3	100.0	-	-
'16	186,470	169,120	169,120	90.7	100.0	-	-
'17	189,017	159,600	159,600	84.4	100.0	-	-
'18	175,840						

6.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42,053	23,709	27,352	3,643	15.4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2. 수입 개요

○ 전년도까지 기 집행된 보조금의 반납에 따른 일시적인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산출근거 : ('18년도 당초보조사업비) × 6.0%(추정반납률) + 조정
= 410,521백만원 × 6.0% + 2,721백만원 = 27,352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530	39,289	39,289	601.6	100.0	-	-
'15	13,700	48,896	48,896	356.9	100.0	-	-
'16	17,023	41,891	41,891	246.1	100.0	-	-
'17	26,742	42053	42053	157.3	100.0	-	-
'18	23,709	-	-	-	-	-	-

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65	380	819	439	115.5

1. 법적 근거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2. 수입 개요

○ 가축개량을 위한 정액생산용 가축 및 씨암소의 노령화 시 매각대금

3. 2019년 계획 내역

○ 가축 매각대금 산출근거 :

한우씨수소 173백만원+ 한우씨암소 624백만원 + 젖소씨수소 22백만원 = 819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54	712	712	201.1	100.0	-	-
'15	334	441	441	132.0	100.0	-	-
'16	20,235	20,676	20,676	102.2	100.0	-	-
'17	354	465	465	131.4	100.0		
'18	380						

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597,567	629,201	585,293	△43,908	△7.0

1. 법적 근거

○ 축산법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융자)

2. 수입 개요

○ 축발기금 융자지원액의 연차별 상환예정액 등 징수

3. 2019년 계획 내역

○ 융자원금회수 : 585,293백만원

'17년말기준 '19년 정기회수액 + ('18년말 추정융자원금잔액 × 5년평균조기회수율)

= 489,685백만원 + (1,320,123백만원× 7.0463%) + 2,588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35,644	430,335	430,335	128.2	100.0	-	-
'15	459,004	569,135	569,135	124.0	100.0	-	-
'16	720,468	798,811	798,811	110.9	100.0	-	-
'17	759,156	597,567	597,567	78.7	100.0	-	-
'18	629,201						

9. 특별회계전입금

91-912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특별회계전입금	-	-	150,000	150,000	순증

1. 법적 근거

○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수입 개요

○ 한·미FTA 보완대책의 축발기금 2조 확충 방안으로 매년 정부 출연

3. 2019년 계획 내역

○ 농특회계전입금 : 150,000백만원

= 지출*(876,307백만원) + 여유자금운용(140,771백만원) - 수입(867,078백만원)

* 지출 : 사업비, 기금운영비 등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출항목 일체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97,376	298,959	298,959	75.2	100.0	-	-
'15	372,000	280,000	280,000	75.3	100.0	-	-
'16	174,459	140,000	140,000	80.2	100.0		
'17	-	-	-	-	-	-	-
'18	-	-	-	-	-	-	-

10.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 통화및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40,508	181,777	35,020	△146,757	△80.7
-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1,826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238,682	181,777	35,020	△146,757	△80.7

1. 법적 근거

○ 축산법 제44조 (기금의 재원)

○ 축산법시행령 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

2. 수입 개요

○ 통화및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의 회수(전년도예치금 이월자금)

3. 2019년 계획 내역

○ 35,020백만원

=‘18년 여유자금운용 계획 117,550백만원+ ‘17년도 여유자금운용 실적 차(差)* △82,530백만원)

※ ‘17년 운용 실적 차(差) = ‘17년말 운용실적 99,247 - ‘18년도 회수계획 181,777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04,554	41,072	41,072	20.0	100.0	-	-
‘15	54,697	9,629	9,629	17.6	100.0	-	-
‘16	195,804	150,413	150,413	76.8	100.0		
‘17	135,434	240,508	240,508	177.6	100.0		
‘18	181,777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인건비(재량,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975	1,000	1,000	**1,018**	**18**	**1.8**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7000 - 7078
* 담 당 자 : 축산정책국(박병홍), 축산정책과장(최명철), 사무관(박홍진) ☎ (044-201-231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입 및 지출, 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여유자금 운용, 예산 수립 지원, 결산, 기타 기금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 위탁 관리 인건비(12명)
사업기간	'74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여유자금 운용 기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축산법 시행령 제15조)
지원조건	12명 100%
사업시행주체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산출근거 : ('18인건비 1,000백만원 × 101.8% = 1,01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축발기금의 수입 및 지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 및 처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기금의 예산수립 지원, 기금의 결산, 기타 운용관리 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금인건비	**975**	**1,000**	**1,000**	**1,018**	**18**	**1.8**
▪ 보수	975	1,000	1,000	1,018	18	1.8
□ 비목(합계)	**975**	**1,000**	**1,000**	**1,018**	**18**	**1.8**
○ 보수(110-01)	975	1,000	1,000	1,018	18	1.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48조(기금의 운용・관리) : 농협중앙회에 위탁
- 시행령 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무의 위탁)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4조의2(사무위탁) 내지 3(위탁사무의 처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 및 인건비, 경비 지원

○ 추진경위

- '74. 축산발전기금 설치(주요재원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 ’77. 4.15.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업무 개시

  * 기금관리자 : 농협중앙회장

- ’81. 3. 7. 기금관리자 변경 : 축산진흥회장 → 축협중앙회장

- ’99. 9. 7. 기금관리자 변경 : 축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시행 ’00.7.1)

- ’99.12.3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제6101호)

  * 기타기금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금으로 편입

- ’01. 1.26. 기금관리자 변경 : 농협중앙회장 → 농식품부장관

  * 축산법 개정(법률 제6381호), 중앙관서의장이 기금관리주체가 되는 기금으로 변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기금인건비	9	9	9	9	10	1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	-	-	9	9	-	-
’16년	10	-	-	10	10	-	-
’17년	10	-	-	10	1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2. 기타경비(재량,계속)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390	715	715	**717**	**2**	**0.3**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7000 - 7078
* 담 당 자 : 축산정책국(박병홍), 축산정책과장(최명철), 사무관(박홍진) ☎ (044-201-231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금 위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통 경비
사업기간	'74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기금 위탁 관리 기관 경상경비
지원조건	경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기타경비 : 717백만원

- 상용임금(30), 운영비(509), 여비(26), 업무추진비(24), 자산취득비(6) 연구용역비(38), 고용부담금(84)

□ 지원 필요성

○ 기금 위탁관리 기관의 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390**	**715**	**715**	**717**	**2**	**0.3**
▪ 상용임금	30	30	30	30	-	-
▪ 운영비	317	548	548	509	△39	△7.1
▪ 여비	15	28	28	26	△2	△7.1
▪ 업무추진비	23	25	25	24	△1	△4.0
▪ 연구용역비	-	-	-	38	38	순증
▪ 기타유형자산취득비	5	6	6	6	-	-
▪ 고용부담금	-	78	78	84	6	7.7
□ 비목(합계)	**390**	**715**	**715**	**717**	**2**	**0.3**
○ 상용임금(110-03)	30	30	30	30	-	-
○ 일반수용비(210-01)	70	214	214	122	△96	△44.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8	8	8	-	-
○ 피복비(210-03)	8	8	8	8	-	-
○ 특근매식비(210-05)	8	4	4	8	4	50.0
○ 임차료(210-07)	100	100	100	160	60	60.0
○ 유류비(210-08)	4	4	4	4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	3	3	16	13	433.3
○ 복리후생비(210-12)	42	95	95	95	-	-
○ 일반용역비(210-14)	12	35	35	14	△21	△60.0
○ 관리용역비(210-15)	59	73	73	69	△3	△4.1
○ 기타운영비(210-16)	4	4	4	4	-	-
○ 국내여비(220-01)	15	18	18	17	△1	△5.6
○ 국외업무여비(220-02)	-	10	10	10	-	-
○ 사업추진비(240-01)	23	25	25	24	△1	△4.0
○ 연구용역비(260-01)	-	-	-	38	38	순증
○ 자산취득비(430-01)	5	6	6	6	-	-
○ 고용부담금(320-09)	-	78	78	84	6	7.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48조(기금의 운용·관리) : 농협중앙회에 위탁
- 시행령 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무의 위탁)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4조의2(사무위탁) 내지 3(위탁사무의 처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 및 인건비, 경비 지원

○ 추진경위

- ’74. 축산발전기금 설치(주요재원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 ’77. 4.15.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업무 개시
  * 기금관리자 : 농협중앙회장
- ’81. 3. 7. 기금관리자 변경 : 축산진흥회장 → 축협중앙회장
- ’99. 9. 7. 기금관리자 변경 : 축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시행 ’00.7.1)
- ’99.12.3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제6101호)
  * 기타기금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금으로 편입
- ’01. 1.26. 기금관리자 변경 : 농협중앙회장 → 농식품부장관
  * 축산법 개정(법률 제6381호), 중앙관서의장이 기금관리주체가 되는 기금으로 변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기타경비	4	4	3	4	4	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2015년도 : 기금변경 63백만원(시스템 개선), 이월 15(시스템 개선 작업 미완료), 불용 19(집행잔액)

○ 2016년도 : 불용 41백만원(집행잔액)

○ 2017년도 : 불용 74백만원(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	-	1	5	5	0	0
'16년	4	0	-	4	4	-	0
'17년	5	0	-	5	4	-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3. 축산자조금(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 11.30기준		(B-A)	%
○ 축산자조금	24,692	26,000	26,000	**26,000**	-	-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700 - 3731
* 담 당 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안정모)(044-201-23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관련 사업 추진
사업기간	'92년~계속
총사업비	-억원 / 해당없음
사업규모	9개 축종의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50% (농가거출금의 100%범위내 매칭 지원)
사업시행주체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축산자조금 : 26,000백만원 >

○ 한우 : 14,850백만원(755천두×20천원×0.99)×50%+2,000백만원 = 9,425백만원

○ 우유 : 5,960백만원(2,000천톤×2천원×0.99+2,000백만원)×70%+1,000백만원 = 5,167백만원

○ 한돈 : 17,751백만원(16,300천두×1.1천원×0.99)×25%+1,000백만원 = 5,438백만원

○ 계란 : 1,400백만원(35,000천수×50원×0.8)×90% = 1,260백만원

○ 닭고기: 3,060백만원(680백만수×5원×0.9)×80%+500백만원 = 2,948백만원

○ 오리 : 590백만원(82,000천수×9원×0.8)×100% = 590백만원

○ 육우 : 718백만원(63천두×12천원×0.95)×100% = 718백만원

○ 양봉 : 346백만원(12,800군×30천원×0.9)×100%= 346백만원

○ 사슴 : 108백만원(12천두×10천원×0.9)×100% = 108백만원

* 매칭 비율 : 농가 거출금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 적용(농가거출의 100%범위내 매칭 지원)

구 분	10억원미만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150억원	150~200억원	200억원 이상
매칭비율	100%	90%	80%	70%	50%	25%	0%

* 수급조절 적립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농가거출금 범위내에서 별도 지원

· (수급조절) 한우 20억원, 돼지 10억원, (수출활성화) 우유 10억원, 닭고기 5억원

□ 지원 필요성

○ 국민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득증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 수급관리가 핵심임

○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농가교육 및 컨설팅, 정보제공, 조사·연구 사업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조금 사업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 11.30기준		(B-A)	%
□ 축산자조금	24,692	26,000	26,000	26,000	-	-
▪ 한우 (산출근거)	9,425	9,425 (755천두×20천원×0.99) ×50%+2,000백만원	9,425 (755천두×20천원×0.99) ×50%+2,000백만원	9,425 (755천두×20천원×0.99) ×50%+2,000백만원	-	-
▪ 우유 (산출근거)	5,167	5,167 (2,000천톤×2천원×0.99 +2,000백만원)×70% +1,000백만원	5,167 (2,000천톤×2천원×0.99 +2,000백만원)×70% +1,000백만원	5,167 (2,000천톤×2천원×0.99 +2,000백만원)×70% +1,000백만원	-	-
▪ 한돈 (산출근거)	5,438	5,438 (16,300천두×1.1천원×0.99) ×25%+1,000백만원	5,438 (16,300천두×1.1천원×0.99) ×25%+1,000백만원	5,438 (16,300천두×1.1천원×0.99) ×25%+1,000백만원	-	-
▪ 계란 (산출근거)	1,110	1,260 (35,000천수×50원×0.8) ×90%	1,260 (35,000천수×50원×0.8) ×90%	1,260 (35,000천수×50원×0.8) ×90%	-	-
▪ 닭고기 (산출근거)	1,720	2,948 3,060백만원(680백만수×5원×0.9) ×80%+500백만원	2,948 3,060백만원(680백만수×5원×0.9) ×80%+500백만원	2,948 3,060백만원(680백만수×5원×0.9) ×80%+500백만원	-	-
▪ 오리 (산출근거)	800	590 (82,000천수×9원×0.8) ×100%	590 (82,000천수×9원×0.8) ×100%	590 (82,000천수×9원×0.8) ×100%	-	-
▪ 육우 (산출근거)	718	718 (63천두×12천원×0.95) ×100%	718 (63천두×12천원×0.95) ×100%	718 (63천두×12천원×0.95) ×100%	-	-
▪ 양봉 (산출근거)	206	346 (12,800군×30천원×0.9) ×100%	346 (12,800군×30천원×0.9) ×100%	346 (12,800군×30천원×0.9) ×100%	-	-
▪ 사슴 (산출근거)	108	108 (12천두×10천원×0.9) ×100%	108 (12천두×10천원×0.9) ×100%	108 (12천두×10천원×0.9) ×100%	-	-
□ 비목(합계)	24,692	26,000	26,000	26,0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24,692	26,000	26,000	26,0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항 제8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 추진경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부터 2000년까지 축산(젖소, 돼지, 닭)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00.6.1) 개정 - 축산물 자조금 근거규정 마련
- 생산자단체에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청원입법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02.5.13)·시행('02.11.14)
- 축산자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법률(법의 제명 등 일부개정, '06.12.28)·시행('07.6.29)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10.2.4)·시행('11.2.5)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3.4.22)·시행('13.4.23)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축산자조금	214	193	230	250	260	26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6년 불용사유 : 사업비 집행 잔액

○ '15년 불용사유 : 농가거출금 납입 부진에 따른 불용발생(계란, 닭고기, 양봉), 집행잔액(한우)

○ '15년 이월사유 :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대비 수급안정 및 소비촉진사업 추진 비 이월

○ '14년 불용사유 : AI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거출금 납입 부진에 따른 불용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30**			230	**216**	8	6
	(216)	( )	( )	(216)	**(216)**	( )	( )
'16년	**250**	8		258	**258**		0
	(258)	( )	( )	(258)	**(255)**	( )	(3)
'17년	**260**			260	**247**		13
	(260)	( )	( )	(260)	**(241)**	( )	(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축산자조금 세부사업 기준 마련 필요('13년 예결위, 결산검토보고서)
  · 자조금 사용용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자조금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금액을 분류하여 축산자조금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축산자조금의 집행·거출관리 개선 필요('16년 상임위)
  · 보조금을 법령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거출금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1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운용평가) 결과 단계적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운용평가)결과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미국 : 축종별로 자조금 거출을 위해 개별 법 운영('85년부터)

- 재원 : 생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시장판매가격의 0.40% 징수
- 거출장소 : 생산자(도축장·집유장 등), 수입업자(세관)
  * 미국의 경우 농가 직접 투표에 의해 자조금 조성 및 지속여부 결정
- 자조금 사용용도는 농축산물의 소비증대 및 재고감소에 사용하고, 생산량 증대 및 생산비 감소와 같은 연구사업에 사용 할 수 없음

② 영국 : 산업조직 및 발전법에 근거하여 부과금 징수 및 운영('45년부터)

- 재원 : 일반부과금(농가 20팬스/두, 도축업자 35팬스/두)과 소비촉진 부과금(농가 65팬스/두)으로 구분
- 미국과 달리, 시장개발·소비촉진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

③ 덴마크 : 대부분의 생산부과기금을 설치·운영('84년부터)

- 조직 : 양돈부과금관리재단과 도축·가공협회에서 부과금 운영
- 재 원 : 도축장에서 거출(소, 양돈 등 13개 품목)
  · 농가 및 수출업자 부과금은 양돈부과금 관리재단에서 운영
- 도축 및 가공업체 부과금(4.5DKK/두)은 도축·가공업체에서 운영

④ 호주 : 부과금 및 경비조달 기본법으로 운영('91부터)

- 조직 : 정부는 농림어업성내 부과금 수입처를 운영하고 집행은 품목단체(호주돈육협회)에서 운용
- 재원 : 해당 농산물의 전체 연간 생산액의 0.5%이내(2.525$/두)

(5) 사업추진절차

① 자조활동자금 설치공동준비위원회 설립(축산단체) ⇒ ② 가축 사육 두수조사(시장·군수 → 시·도 → 농식품부) ⇒ ③ 대의원 선출(축산단체) ⇒ ④ 거출금납부에 관한 투표(대의원회) ⇒ ⑤ 자조활동 자금관리위원회 설립(축산단체) ⇒ ⑥ 사업계획수립·제출(축산단체) ⇒ ⑦ 사업계획 승인(농식품부) ⇒ ⑧ 거출금 납부 및 지급(축산업자 → 수납기관 → 축산단체) ⇒ ⑨ 소비·홍보 등 집행(축산단체)

참고 **축산자조금사업**

□ 축산자조금 개요

○ 구분 : 자조금 조성방법에 따라 의무와 임의자조금으로 구분

* (의무) 조성에 모든 농가가 의무적으로 참여, (임의) 농가 자율적 참여

○ 조성목적 :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 축산자조금 현황 : 한우 등 9개 품목

- 의무자조금 : 한우('05), 한돈('04), 우유('06), 계란(09), 닭고기('09), 오리('15), 육우('14)
- 임의자조금 : 사슴('07), 양봉('09)

○ 거출금의 한도 및 거출단가

- 거출금의 한도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이내
- 거출단가(마리당) : 한우(2만원), 한돈(1,100원), 낙농(2원/ℓ당), 계란(80원), 닭고기(5원), 오리(10원), 육우(12천원)

* 임의자조금은 농가, 단체, 계열업체, 사육규모, 품종 등에 따라 거출단가가 상이함

○ 거출금 수납기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도축장, 도계장, 집유장 등)

4. 축산물수급관리(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수급관리	103,191	73,760	78,340	80,150	1,810	2.3
- 송아지생산안정	700	700	700	700	-	
- 가공원료유지원	17,000	17,000	17,000	17,000	-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70	70	70	70	-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240	390	390	390	-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180	-	-	-	-	세부사업변경 (유통정보실용화)
- 축산물수급안정	20,443	1,234	1,234	1,234	-	
- 원유수급조절	12,173	15,000	15,000	15,000	-	
- 생계 및 소득안정	13,227	100	2,580	100	△2,480	△96.1
- 학교우유급식	37,016	37,016	37,016	37,016	-	
- 평창올림픽대비 사육제한 지원	2,142	-	-	-	-	
- 국제낙농연맹총회개최	-	450	450	-	△450	△100
-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	1,800	1,800	8,640	6,840	380
- 염소수급안정	-	-	2,100	-	△2,100	△100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700 - 3731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임지헌)☎(044-201-23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송아지생산안정)**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 **(가공원료유지원)** FTA 체결에 따른 유제품(원료유)의 수입증가로 국내 原乳생산의 감소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국산원유를 가공원료유로 지원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주요 축종별로 협의회를 구성 참여와 협의에 의한 축산물 수급조절 기반 구축과 축종별 산업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소통 유도

○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 효율적인 낙농통계 관리로 우유수급 상황의 정확한 분석·예측으로 원유수급조절 기능 강화

-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 실적, 전국 원유 생산쿼터 관리, 원유생산 예측모형 운영, 원유전자배송시스템 운영 등

○ **(축산물수급안정·생계및소득안정)**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물 수급 불균형 발생시 수매비축* 및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의 소득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자금지원

* 살처분 등 방역조치 강화로 시장공급 부족 등 수급상황 불균형 발생 시 농가 가축을 수매하여 비축 후 일정시기 시장방출 등을 통한 수급안정 방안(사육 가축 도태방안 제외)

○ **(원유수급조절)** 원유의 생산과 소비 불균형에 따른 낙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유생산 과잉시 원유수급조절 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화 도모

○ **(학교우유급식)** 저소득 학생에 대한 무상우유급식을 통해 영양불균형 해소 및 복지증진,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 도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 등

○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AI 등 질병 차단 및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가축질병 등으로 축산물 수급불균형 발생시 수매비축, 농가의 생계·소득안정 및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계절적 원유수급조절자금 지원 등 예비비성 수급안정자금
사업기간	○ 1974년~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송아지생산안정(민간경상보조 100%) ○ 가공원료유지원(민간경상보조 100%)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민간경상보조 100%) ○ 축산물수급안정(민간위탁금 100%) ○ 생계및소득안정(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 원유수급조절(민간위탁금 100%) ○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민간경상보조 100%) ○ 학교우유급식(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60% 지방비 40%) ○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시행주체	○ 농협경제지주(송아지생산안정, 축산물수급안정) ○ 지자체(생계및소득안정, 학교우유급식,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 생산자단체(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 낙농진흥회(원유수급조절, 가공원료유지원, 낙농통계 관리시스템)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송아지생산안정 : ('18) 700백만원 → ('19) 700

-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차액보전금 및 계약관리 수수료 등 지급을 위한 사업비

▪ 농가보전금 4 + 계약수수료 666 + 전산유지비 30 = 700백만원

○ 가공원료유지원 : ('18) 17,000백만원 → ('19) 17,000

-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수입 가공유제품 증가에 따라 국산 가공원료유 지원을 통한 국산 유제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비

▪ 58,219톤 × 292,000원/톤 = 17,000백만원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 ('18) 70백만원 → ('19) 70

- 축산물 수급조절 기반 구축과 축종별 산업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운영비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 ('18) 390백만원 → ('19) 390

- 우유수급 상황의 정확한 분석·예측을 위한 통계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 시스템 90 + 소비통계 자료구입 85 + 인건비 215 = 390백만원

○ 축산물수급안정 : ('18) 1,234백만원 → ('19) 1,234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수매 및 농가의 생계안정 등을 위한 예비비

○ 원유수급조절 : ('18) 15,000백만원 → ('19) 15,000

- 유업체와 계약물량을 초과한 잉여원유 처리에 소요되는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비

▪ 잉여원유 처리 : 22.3천톤 × 673,000원/톤 = 15,000백만원

○ 생계및소득안정 : ('18) 100백만원 → ('19) 100

- 가축 질병 발생시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을 위한 예비비

○ 학교우유급식 : ('18) 37,016백만원 → ('19) 37,016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574천명에게 우유 무상급식 지원

▪ 574천명 × 430원 × 250일 × 60% = 37,016백만원

○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 ('18) 1,800백만원 → ('19) 8,640(증6,840)

- 계란 GP 유통의무화를 감안, 계란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위한 사업비
- 물량 증가(증축 2개소→4개소) 필요

▪ 신축(2년차 공사비) 5,220백만원 = (9,700/1개소 + 7,700/1개소) × 30%

▪ 신축(1년차 설계비) 180백만원 = 300백만원 × 2개소 × 30%

▪ 증축/보수 3,240백만원 = 2,700×4개소×30%

□ 지원 필요성

○ **(송아지생산안정)** 한우의 안정적 사육기반 유지를 통한 국내 일정량의 자급율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송아지 번식기반을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 **(가공원료유지원)**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 원유로 생산한 가공유제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 필요

- EU와의 FTA 발효로 낙농과 돼지의 피해가 가장 클 전망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로 낙농분야 피해 심각 예상(KREI)

* 한·미 및 EU FTA로 인한 낙농품 생산감소액 : 15년차 1,188억원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운영)** 축산물 수급조절의 어려움 및 장기소요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사전 자율적인 조절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필요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우유수급상황의 정확한 분석·예측을 위한 통계시스템 운영 및 분석으로 안정적인 우유생산 기반 구축 필요

○ **(축산물수급안정)**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물 수급 불안정시 수매 등을 통한 안정화를 위해 예비비 확보 필요

○ **(원유수급조절)** 우유는 상품 특성상 저장성이 낮아 공급조정이 곤란하며, 수요와 공급이 계절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수급불안정 품목으로 수급조절을 통한 산업의 안정적 지원 필요

○ **(생계및소득안정)**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등에 대한 조속한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원 필요(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 경비)

○ **(학교우유급식)** 우유급식을 통해 우유 음용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 도모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 실시로 영양 불균형 해소
- 미국·일본·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유급식 지원

○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계란의 GP 유통의무화를 감안, 규모화 및 현대화된 계란 산지유통시설(GP)을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 및 공판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수급관리	103,191	73,760	78,340	80,150	1,810	2.3
▪ 송아지생산안정	700	700 (농가보전금 4 계약수수료 666, 전산유지비 30)	700 (농가보전금 4 계약수수료 666, 전산유지비 30)	700 (농가보전금 4 계약수수료 666, 전산유지비 30)	-	-
▪ 가공원료유지원	17,000	17,000 (58,219톤×292천원/톤)	17,000 (58,219톤×292천원/톤)	17,000 (58,219톤×292천원/톤)	-	-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70	70 (수급조절협의회 운영비)	70 (수급조절협의회 운영비)	70 (수급조절협의회 운영비)	-	-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240	390 (시스템90, 소비통계구입40, 시스템추가구축용역 60, 인건비 200)	390 (시스템90, 소비통계구입40, 시스템추가구축용역 60, 인건비 200)	390 (시스템 90, 소비통계 구입 85, 인건비 215)	-	-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180	세부사업변경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부사업변경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부사업변경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	-
▪ 축산물수급안정	20,443	1,234 (수급조절예비비)	1,234 (수급조절예비비)	1,234 (수급조절예비비)	-	-
▪ 원유수급조절	12,173	15,000 (원유구입 22.3천톤×673천원)	15,000 (원유구입 22.3천톤×673천원)	15,000 (원유구입 22.3천톤×673천원)	-	-
▪ 생계및소득안정	13,227	100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예비비)	2,580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예비비)	100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예비비)	△2,480	△96.1
▪ 학교우유급식	37,016	37,016 (574천명×430원×250일×60%)	37,016 (574천명×430원×250일×60%)	37,016 (574천명×430원×250일×60%)	-	-
▪ 평창올림픽대비 사육제한지원	2,142	-	-	-	-	-
▪ 국제낙농연맹총회개최	-	450 행사비 지원 1식	450 행사비 지원 1식	-	450	△100
▪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	1,800 (신축)300백만원× 2개소× 30% +(증설)2,700백만원× 2개소× 30%	1,800 (신축)300백만원× 2개소× 30% +(증설)2,700백만원× 2개소× 30%	8,640 ▪ 신축(2년차 공사비) 5,220백만원 = (9,700/1개소 + 7,700/1개소) × 30% ▪ 신축(1년차 설계비) 180백만원 = 300백만원 × 2개소 × 30% ▪ 증축/보수 3,240백만원 = 2,700×4개소×30%	6,840	380
▪ 염소수급안정	-	-	2,100 암염소 21천마리×100천원	-	△2,100	△100
□ 비목(합계)	103,191	73,760	78,340	80,150	1,810	2.3
○ 민간경상보조(320-01)	18,190	18,610	18,610	18,150	△460	△2.5
○ 민간위탁금(320-02)	32,616	16,234	16,234	16,234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2,385	37,116	41,696	37,116	△4,580	△11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8)	-	1,800	1,800	8,640	6,840	38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지원)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 추진경위

- (송아지생산안정) 수입개방에 따라 국내 소가격 하락이 사육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실시
  * ('98～'99년) 전국 32개 지역 시범사업, ('00년부터) 전국 확대
- (가공원료유지원) 한·EU, 한·미, 한·뉴 FTA에 의한 개방은 가공유제품을 중심으로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11년부터 시행
  * 시장개방 이후에도 낙농생산기반의 지속 유지 기반 마련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발표('13.4.15)
-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 원유수급불안에 대비한 선제적인 원유수급 정책 마련과 낙농통계 관련 정보화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추진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운영) 가금산물 거래 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 '18년 축산물수급관리사업에서 제외되어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
- (축산물수급안정)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발생에 따른 소비감소 등 수급·가격 불안정 시 수매·비축 후 시장방출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 추진
- (원유수급조절) 원유 수급조절을 통한 낙농가 및 유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낙농진흥회를 설립('99년)하여 원유수급조절사업을 추진
- (생계및소득안정) 가축 매몰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을 '02년부터 지원

- (학교우유급식) '81년도부터 초등학생에 우유 보조급식 실시
  * '04.9월 국무조정실「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에 따라 중·고등학생에게도 보조급식 지원 결정
  * '05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
  * '06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
  * '10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
  *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년)에 따라 중학생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년)에 따라 고등학생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
-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계란의 GP센터 유통의무화를 감안하여 규모화 및 현대화된 계란 산지유통시설(GP)을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 및 공판장으로 육성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축산물수급관리	750	666	722	718	735	738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2015년

- 이·전용 사유
  • (생계 및 소득안정)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으로 생계 및 소득안정 소요액 조정(4,516백만원)
  • (원유수급조절) 원유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유수급안정 사업 조정(26,900백만원)
- 불용 사유
  • (송아지생산안정) 송아지값 안정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소요 미발생(3,620백만원)
  • (축산물수급안정) 사업비 집행사유 미발생(52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내역사업	금액	이·전용 사유
기재부협의 (비목간 변경)	320-02	축산물수급안정	△3,526	생계및소득안정사업으로 변경
자체변경 (항내 비목내 내역변경)	330-01	초지조성	△990	생계및소득안정사업으로 변경 (1차 750,000천원, 2차 239,797천원)
⇒	330-01	생계및소득안정	4,516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생계(930,748천원), 소득(3,585,252천원) 안정자금으로 사용
기재부협의 (비목간 변경)	470-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0,900	원유수급조절사업으로 변경
기재부협의 (비목간 변경)	450-04	시료원료구매지원자금	△6,000	원유수급조절사업으로 변경
⇒	320-02	원유수급조절	26,900	원유생산량 증가에 따른 잉여원유처리를 위한 수급조절예산으로 사용
합 계			27,890	

○ 2016년

- 이·전용 사유
  - (축산물수급안정) AI 확산에 따른 토종닭 시장격리 등을 위해 사업 조정(3,845백만원)
  - (원유수급조절) 원유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유수급안정 사업 조정(10,000백만원)
  - (생계 및 소득안정)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으로 생계 및 소득안정 소요액 조정(1,342백만원)
- 불용 사유
  - (축산물수급안정, 송아지생산안정, 생계및소득안정) : 집행사유 미발생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이·전용 사유
자체변경	320	01	송아지생산안정	△758	축산물수급안정으로 변경
자체변경	320	01	우유수출확대	△2,706	축산물수급안정으로 변경
자체변경	320	02	축산물수급안정	3,845	AI 확산에 따른 토종닭 시장격리 * 재원 : 송아지생산안정(758), 우유수출확대(2,706),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381)
				△646	생계 및 소득안정으로 변경
자체변경	320	02	원유수급조절	10,000	잉여원유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재원 : 여유자금(10,000)
자체변경	330	01	생계 및 소득안정	1,342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재원 : 축산물수급안정(646), 가축개량지원(84), 조사료생산기반확충(612)
합 계				11,077	

○ 2017년

- 이·전용 사유
  - (축산물수급안정) AI 확산에 따른 토종닭 시장격리 등을 위해 사업 조정(20,270백만원)
  - (원유수급조절) 축산물 수급안정으로 사업 조정(2,827백만원)
  - (생계 및 소득안정)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으로 생계 및 소득안정 소요액 조정(13,590백만원)
- 불용 사유
  - (축산물수급안정, 생계및소득안정) : 집행사유 미발생
  - (우유수출확대) : 수출보조 지원시 국제무역분쟁 우려로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일부 변경 후 불용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이·전용 사유
자체변경	320	02	축산물수급안정	20,270	AI 확산에 따른 토종닭 매입·도계·급냉비 등 지원
자체변경	320	02	원유수급조절	△2,827	축산물수급안정으로 변경
자체변경	330	01	생계 및 소득안정	13,590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자체변경	320	01	우유수출확대	△945	평창올림픽대비 사육제한 지원으로 변경
자체변경	330	01	평창올림픽대비 사육제한 지원	2,141	육용오리, 종란 사육제한 지원
합 계				32,229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22**	-	279	1,001	**959**	-	42
	(959)	(-)	(-)	(959)	**(905)**	(3)	(51)
'16년	**718**	-	111	829	**829**	-	-
	(829)	**(3)**	(-)	(832)	**(738)**	(7)	(87)
'17년	**736**	-	322	1,058	**1,032**		26
	(1,032)	(7)	(-)	(1,039)	**(910)**	(17)	(11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계적 감축

○ 국회 상임위 : 축산물수급관리(우유수출확대) WTO 협정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수준 결정 필요

○ ‘16년 보조사업연장평가 : 우유수출확대사업 폐지 필요

○ ‘16년 국회 상임위 : 통상마찰 우려로 감액 필요

○ ‘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 미흡(예산집행 부진, 모니터링 미비, 성과목표 달성 저조 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원유수급조절**) EU·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낙농국도 정부에서 원유수급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 우유는 국민 필수식품으로서 저장성이 약해 공급조정이 비탄력적이며, 수요와 공급이 계절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많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안정적인 수급균형 달성 곤란

<일본>

- 가공용원유에 대한 한도수량제 운영 및 보조금지원을 통해 수급조절
- 가공원료유 가격이 보전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정부 : 생산자 = 3 : 1)

<미국>

- 연방우유명령유통제도(FMMO)에 의해 원유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가공원료유에 대한 지지가격 수준을 지원(100파운드당 9.9달러)
- 국제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수출 보조금을 지불하여 미국산 유제품의 수출증가를 통해 유제품 재고를 국내시장으로부터 격리

<영국>

- 유제품에 대한 시장가격이 개입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 개입

○ (**학교우유급식**) FAO에서 ‘00년부터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지정

- 매년 9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우유급식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 개최로 우유급식의 중요성 홍보

* 국가별 학교우유급식 현황

- 일본 : 학교급식법에 의해 의무급식 시행, '57년부터 시유 제공
- 미국 : 아침·점심급식, 방학 중 급식, 방과 후 간식의 일부로 우유제공
- 영국 : 급식영양표준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 매일 공급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급식률	53.2%('14)	92.0%('13)	80.0%('13)
급식시작년도	1981	1957	1954

○ **(가공원료유지원)**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 낙농국도 가공용 원유에 대한 보조지원 정책을 통해 산업보호 및 가격안정 도모

<캐나다>

- (개요) 낙농가 적정소득 보장과 국내 원유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제도 운영
  · 유업체에는 낮은 가격으로 원료유를 공급하여 유가공활성화
  · 생산자에게는 생산비 보장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
- (대상) 유제품용 가공원료유(전체 생산량의 60%수준)
  · 총 9개 등급 및 4개의 특별등급 등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
  · 가공용 원유는 유업계의 수요를 감안, 연간단위 할당
- (지원방식) 연방정부가 정한 낙농가소득보장가격(목표가격)에 각 주정부별로 책정한 유제품 최저지지가격 보조금을 합산하여 지급
  · 재원은 연방 및 주정부가 부담

<일본>

- (개요) 생산자 가격지지와 국내 유가공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제도 운영
  · 과거 부족불지불제를 폐지하고 2001년부터 보조금제도 운영
  · 민간교섭가격에 정부의 생산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지급
- (대상) 버터, 탈지분유 등 시유용이 아닌 유제품가공용 원유
- (지원방식) 낙농가의 최종수취단가는 유업체가 지불한 유대에 정부 보조금을 가산한 금액을 풀제로 정산

(5) 사업추진절차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 신청접수	전년 12월 ~금년 5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한우사육농가가 사업수행주체에 신청
(보전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전금 지급 요청		농협경제지주 /농식품부	· 송아지 가격 하락시 사업수행주체는 농식품부에 보전금 지급 요청
보전금 지급		농협경제지주	· 마리당 보전금 지급단가, 지급대상 마리수 등을 확인하여 해당 농가에 보전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농협경제지주	· 사업수행주체는 보전금 지급결과, 사업수행주체에 관리수수료 지급 등 사업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가공원료유지원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가공원료유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1월중	낙농진흥회	집유주체를 통해 낙농가에게 사업신청 안내
사업신청물량 집계 및 지원물량 확정	2월중	낙농진흥회	낙농가가 신청한 가공원료유 신청물량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낙농가별 지원물량 확정, 통지
가공원료유 생산	연중	낙농가	가공원료유 지원물량 범위 내에서 가공원료유 생산
가공원료유 자금 신청 및 가공유제품 생산실적 보고	12월중	집유주체	· 집유주체는 소속 낙농가의 가공원료유 생산실적을 집계하여 낙농진흥회에 자금신청 · 집유주체는 가공원료유로 생산한 가공유제품 생산실적 보고
현지실사	차년1월	낙농진흥회	낙농진흥회는 집유주체별로 가공원료유 생산량 및 가공유제품 생산실적에 대한 현지실사
자금배정요청	차년2월	낙농진흥회	낙농진흥회는 가공원료유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가공원료유 자금 배정요청
자금배정	차년2월	농식품부	가공원료유 예산 배정
예산 지원	차년2월	낙농진흥회	낙농진흥회는 집유주체를 경유하여 낙농가별 가공원료유 지원액 집행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차년2월	낙농진흥회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낙농통계시스템운영지원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낙농통계 모바일서비스	8~12월	낙농진흥회	·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용역 업체 선정 · 구축 결과보고(농식품부)
수급예측모델 알고리즘 개선	6~12월	낙농진흥회	· 원유생산예측모형 운영상 문제점 파악 · 원유생산예측모형 알고리즘 개선
우유·유제품 생산·소비실적 입력	매월	집유업영업자, 유가공영업자	· 시군별·집유주체별 원유생산 실적, 원유 품질검사 실적 · 공장별, 제품별 원유 사용실적 · 유제품 유형별 생산, 판매, 재고 현황
전국 쿼터 변동내역 입력	매월	집유업영업자, 유가공영업자	· 농가별 원유생산 실적 · 농가별 쿼터 변동 내역, 쿼터 거래가격 · 낙농가 변동내역(신규 진입, 폐업)
학교우유급식 공급 실적 입력	매월	유가공영업자	· 유·무상급식 학생수, 급식물량 · 유업체별(지점별) 급식 공급물량 · 학교별, 시도별 급식물량
집계·검증 및 보고	매월	낙농진흥회	· 홈페이지 공표 및 농식품부 보고 - 원유수급현황, 유제품 생산·소비 현황, 쿼터 변동내역 등
익년도 원유수급조절 사업계획 수립·보고	11월	낙농진흥회	· 통계자료를 기초로 익년도 개시 1개월 전 원유수급조절 사업계획을 수립·보고(농식품부)
원유위생관리 및 집유지도	4~12월	낙농진흥회	· 국산원유의 품질경쟁력 확보 - 원유의 품질과 위생을 위한 전담업무 · FTA에 대비한 정부의 피해대책 홍보 및 정책참여 유도 -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착형 낙농가 현장지도 및 관리

○ 축산물수급안정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기본지침 통보		농식품부	· 수매사업 기본지침 통보
수매 신청접수		농협경제지주	· 축산농가가 사업수행주체에 신청
수매 실시		농협경제지주	· 사업수행주체가 수매대상 지역의 가축 수매 · 수매육 판매
자금정산		농협경제지주/ 농식품부	· 사업수행주체는 수매 완료후 수매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및 수매비용을 농식품부에 요청 · 농식품부는 수매사업 정산보고서 검토 후 수매비용 지급

○ 원유수급조절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수급조절계획보고	전년 11월	사업수행주체	낙농진흥회가 익년도 수급조절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
수급조절계획 확정	1월중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수급조절계획을 기초로 사업계획 확정
자금배정요청	1월중	사업수행주체	낙농진흥회는 분기별 수급조절 소요예산 요청
자금배정	2월중	농식품부	수급조절예산 배정 통지
잉여원유 사후관리	8월중	사업수행주체	낙농진흥회가 공급한 잉여원유에 대한 용도별 사용여부 현지 실사(연2회)
수급조절사업 결산 회계감사	차년1월	사업수행주체	외부 회계법인에 수급조절사업 회계감사 실시
결산보고 및 정산	차년2월	사업수행주체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생계 및 소득 안정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보상금 신청		농장주	· 축산 농가가 시 · 군 · 구에 신청
취합 및 전달		시·군·구 축산과	· 생계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취합 및 시 · 도로 전달
검토 및 지급		시·도	· 생계안정자금 신청분에 대한 검토 및 지급
통장 입금		농장주	· 지급된 생계안정자금의 입금

○ 학교우유급식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지원대상자 선정	2월중	학교, 시도교육청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대상자 선정
자금배정 요청	2월중	지자체	지자체는 농식품부에 당해연도 사업예산 배정 요청
자금배정	3월중	농식품부	지자체에 사업예산 배정
공급업체선정	2~3월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급식우유공급	연중	유업체	학교별로 유무상 우유급식 인원에 대해 우유 공급
실적 집계 및 보조금 지급	매월	지자체	유업체가 제출한 무상우유급식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차년12월	지자체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접수	1월중	지자체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2월중	축산물품질평 가원, 지자체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행
자금배정	3월중	농식품부	지자체에 사업예산 배정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12월	지자체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5.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유통정보 실용화	763	3,647	3,647	1,731	△1,916	△52.5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900 - 3938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정책과장(최명철), 사무관(권우순)☎(044-201-2322)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김성구)☎(044-201-2336)
사무관(안정모)☎(044-201-2335)
사무관(박일수)☎(044-201-2344)
축산환경복지과장(박홍식), 사무관(이 현)☎(044-201-235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축산물 유통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유통현안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 수집·조사·분석
축산물가격조사	생산농가에게 유통정보를 신속히 분산(전파)하여 축산물생산과 출하시기를 조절토록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를 기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육류유통수출입정보 및 소비실태조사	육류의 유통 및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부기관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육류유통 관련 업체 등에 제공하여 국내 육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축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료통계관측조사	조사료의 생산·유통실태를 조사·관측하여 조사료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거래증명통합시스템	축산물의 품질·인증·위생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9종의 거래증명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하여 유통업계의 서류관리비용 절감으로 유통효율화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생산자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 대표 가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살처분 기준 가격의 합리적 설정과 공공성 확보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	산지·도매·소매 등 각 단계별 축산물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 및 거래지표 제공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실태조사)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조사료통계관측조사, 축산물가격조사, 육류유통수출입정보 및 소비실태조사, 가금산물가격조사 (거래증명통합시스템) 축산물의 품질·인증·위생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9종의 거래증명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 산지·도매·소매 등 각 단계별 축산물 가격정보를 수집·제공
사업기간	(실태조사) '15년~, (거래증명통합시스템) '18년~, (온라인가격비교플랫폼) '18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실태조사) 축산물유통비용(연중), 축산물가격조사(연중), 육류유통수출입정보 및 소비실태조사(12회), 조사료통계 및 관측조사(연중), 가금산물 가격조사(연중) (거래증명통합시스템)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축종별 9종의 거래증명서류 유통량 2억1천만건 간소화를 위한 거래증명통합시스템 개발 1식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 구축(축산물유통업체 98,714개소)
지원조건	민간이전(경상, 자본) 100%
사업시행주체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축산물유통실태조사 : ('18) 322백만원 → ('19) 235 (△87)**

-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오리 및 부산물 이외에 수입산 소·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경로·생산량·가격·비용 등 전국단위 축산물 유통실태조사비와 축산물 유통조사입력분석 시스템 구축

▪ 산출내역 : 국내 및 수입산 축산물 조사 235 (소·돼지·계란·닭고기·오리고기, 부산물, 수입산 소·돼지, 부산물)

○ **조사료통계관측조사 : ('18) 78백만원 → ('19) 78 (전년동)**

-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비, 유통가격 통계조사 및 생산·유통 관측조사를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780개농가×10만원 × 100%

○ **축산물가격조사 : ('18) 85백만원 → ('19) 50 (△35)**

- 산지가격 4품목 19종류(67개 축협), 도매가격 2품목 2종류(9개 축협) 조사비

▪ 산출내역 : 1개(농협)×50백만 × 100%

○ **육류유통수출입정보 및 소비실태조사 : ('18) 300백만원 → ('19) 250 (△50)**

- 소·돼지·닭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소비자 인식조사, 수출입정보지 등 조사비

▪ 산출내역 : 실태조사 210백만 × 100% + 정보지 40백만 × 100%

○ **축산물통합거래증명시스템 : ('18) 1,293백만원 → ('19) 150 (△1,143)**

- 시스템 연계 및 관리 비용 : 150백만원

▪ 산출내역 : 2명(시스템 연계·관리 및 유지·보수) × 75백만 × 100%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 ('17) 787백만원 → ('18) 893 (증106)**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운영, 자료조사 및 인건비 등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인건비 389, 시스템보완 95, 자료조사비 279, 운영비 24

○ **온라인가격플랫폼 : ('18) 782백만원 → ('19) 75 (△707)**

- 시스템 연계 및 관리 비용 : 75백만원

▪ 산출내역 : 1명(시스템 유지·보수) × 75백만 × 100%

□ 지원 필요성

○ 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통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정보수집

○ 축산물 유통 정보 제공으로 축산물 유통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부당 이익 발생을 차단·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국민) 권익 향상 및 생산자 보호

○ 축산분야 시장 개방, 소비트렌드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여 개선의지 확산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유통정보 실용화**	**709**	**3,647**	**3,647**	**1,731**	△1,916	△52.5
▪ 축산물유통실태 조사	300	322 (국내 및 수입산 축산물 조사 300(소·돼지·계란·닭고기, 부산물, 수입산 소·돼지, 부산물) + 오리22	322 (국내 및 수입산 축산물 조사 300(소·돼지·계란·닭고기, 부산물, 수입산 소·돼지, 부산물) + 오리22	235 (국내 및 수입산 축산물 조사 235(소·돼지·계란·닭고기·오리고기, 부산물, 수입산 소·돼지, 부산물)	△87	△27.0
▪ 조사료통계관측 조사	78	78 (1,150농가 × 6.8만원 × 100%)	78 (1,150농가 × 6.8만원 × 100%)	78 (1,150농가 × 6.8만원 × 100%)	-	-
▪ 축산물가격조사	85	85 (1개_농협 × 85백만원 × 100%)	85 (1개_농협 × 85백만원 × 100%)	50 (1개_농협 × 50백만원 × 100%)	△35	△41.2
▪ 육류유통수출입 정보	246	300 (실태조사 260백만원 × 100% + 정보지 40 ×100%)	300 (실태조사 260백만원 × 100% + 정보지 40 ×100%)	250 (실태조사 210백만원 × 100% + 정보지 40 ×100%)	△50	△16.7
▪ 거래증명통합 시스템	-	1,293 (HW500, SW246, 개발654)	1,293 (HW500, SW246, 개발654)	150 (2명×유지보수 75 ×100%)	△1,143	△88.4
▪ 가금산물가격조사 시스템	-	787 (인건비389, 시스템보완95, 자료조사비279, 운영비24)	787 (인건비389, 시스템보완95, 자료조사비279, 운영비24)	893 (인건비396, 자료조사비279, 운영비24, 시설36)	106	13.5
▪ 온라인가격플랫폼 구축	-	782 (HW173, SW112, 개발377, 데이터연계·개발120)	782 (HW173, SW112, 개발377, 데이터연계·개발120)	150 (2명×유지보수 75 ×100%)	△707	△19.2
□ **비목(합계)**	**709**	**3,647**	**3,647**	**1,731**	△1,916	△52.5
○ 민간경상보조 (320-01)	709	1,572	1,572	1,731	159	10.1
○ 민간자본보조 (320-07)	-	2,075	2,075	-	-	순감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추진경위

- '12. 2월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대책」에 포함 추진

  * 축산물 유통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경로별 공급량 파악, 장기적으로 현재 도축단계까지만 파악하고 있는 유통경로 및 물량을 가공단계 이후까지도 가능토록 축산물 유통맵 구축, 가격 폭등락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소비지 유통개선 추진 등 피부에 와닿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12.2.17 대국민 보도)

- '12. 2월 물가장관회의 시 "실시간 축산물 유통경로별 공급량 파악으로 효과적인 물가관리" 보고

  *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유통업체 '업태 유형' 을 추가하는 등 육류 유통맵 작성을 위한 초석 마련(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 13.4.11)

- '12. 3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기관(aT → 축평원)을 변경

  * 조사기관 변경을 통하여전국 축산물 유통에 관해 SCM 관점에서 규명(최초)하고, 축산물 유통경로별 공급량 파악, 도축단계까지만 파악하고 있던 유통경로 및 물량을 소매단계까지 축산물 유통맵 완성(일부 외식시장 유통경로는 과제로 남음)

- '14. 1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종합대책」에 포함·추진

- 축산물 가격조사 : 가축의 산지가격 및 축산물 도매가격 조사

- 육류유통 수출입정보 및 소비실태조사

  * 국내 및 수입 육류의 소비 · 유통 상황과 육류 수출입국가의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농가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정보 제공

- '16. 11월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시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포함·추진

  * 4대 분야(유통관련 제도 개선), 11대 주요 과제 중 '거래증명 제도 개선' , 유통정책 지원 조직 육성, 생산지 직거래 등 과제를 이행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축산물유통정보 실용화	-	-	7	8	8	3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이월) '15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시장 폐쇄로 인한 축산물가격조사 사업 지연으로 조사원 여비(19백만원)

○ (불용) '15년 축산물가격조사 사업 집행잔액(4백만원), '16년 사업 집행잔액(128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 (7)	- (-)	- (-)	7 (7)	7 (7)	0 (-)	0 (-)
'16년	8 (7)	0 (-)	- (-)	8 (7)	7 (7)	- (-)	1 (0)
'17년	8 (7)	0 (-)	- (-)	8 (7)	7 (7)	- (-)	1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프랑스 : EU법령에 근거하여 유통정보와 가격을 수집 및 발표

* 대상 및 항목 : 축산물(소 · 돼지 · 닭 · 계란 · 우유 · 유제품 · 가공품 등) 전체에 대한 유통경로 · 가격 · 비용 조사
* 조사기관 : FranceAgrimer(프랑스 농수축산 사무국으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 조사내용 : 시장분석, 생산-유통-소비 全 단계 유통조사, 통계발표, 가격수집, 거시경제분석

○ 일본 : 축산물 조사는 축산물유통조사, 식품유통구조조사의 항목으로 실시

* '축산물 유통조사' 를 통해 소 · 돼지 도축두수, 도매가격, 식계와 계란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조사하고, '식품유통구조조사' 를 통해 국내산 및 수입별, 업종별, 품목별 매입처별 구매금액비율 등을 조사
* 조사기관 : 일본농림수산성(국내 축산유통정보 조사 담당)
* 참고로, 국외 축산정보 조사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alic)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예산으로 약 20억원 편성

○ 미국 : 축산물 유통조사는 거래가격의무보고제와 GIPSA의 시장감시로 구성

* (거래가격의무보고제)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주체가 거래가격과 거래량, 계약의 내용 등을 보고하는 프로그램임. 대상 축종은 소, 돼지, 양임
* (GIPSA 시장감시) 시장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하여 담합, 가격차별 등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함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보조금 교부 신청	'19.1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경제연구원 농협경제지주 등	·사업시행주체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19.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주체에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수행	연중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경제연구원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물에 대한 유통실태조사 등 수행
⇓			
사업 완료 보고	'20.2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경제연구원 농협경제지주 등	·사업시행주체별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교부 확정	'20.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정산 및 보조금 교부 확정 통지

6.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1,926)	860	860	**1,666**	**806**	**93.7**

* 사업코드 : 20 - 31 - 계정 - 100 - 101 - 3700 - 3731

※ 프로그램-단위사업 변경 : (~'17년)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기금운영비(축발기금) 7000-7078

→ ('18년) 축산업진흥-축산물수급관리 3700-3731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정책과장(최명철), 서기관(권우순), 사무관(홍성현), 사무관(정준구)☎(044-201-2322, 2329, 234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 축산물의 소비와 직결될 수 있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에 축산물 소비관련 행사 및 관련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축산시책 및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 등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장기적인 소비기반 구축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확보, 축산식품 소비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 생산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의 브랜드 관리가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를 발굴·시상·전시함으로써 우수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축산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 단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조사・교육・홍보 사업 추진 ○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및 소비기반 구축 ○ 축산물브랜드 평가・홍보사업(브랜드교육, 경진대회 및 전시, 우수 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축산물브랜드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축산물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장기적인 소비기반 구축
사업기간	'18~계속 ('14~'17 기금운영비로 지원)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100%(지속지원)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소비자시민모임 (참여기관)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18년 소시모 등 12개 소비자단체),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860백만원)**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790백만원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홍보를 위한 사업비 70백만원

▪ '18년 수준 반영('18년 860백만원 → '19년 860백만원, 전년동)

▪ 산출근거 : 소비자단체협력사업(12개 소비자단체 × 64,167천원 × 100%) + (평가・운영비(사업시행기관) 20,000천원 × 100%)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수준 평가·홍보(1개 소비자단체 × 70,000천원 × 100%)

○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162백만원)** : 격년 개최되는 한국국제 축산박람회 개최 비용 일부 지원 사업비 162백만원

▪ ’17년 대비 10% 감액 반영(’17년 180백만원 → ’19년 162백만원)

▪ 산출근거 : (전시장사용료(1식) × 42,000천원 × 100%) + (전시장장치비 (1식) × 100,000천원 × 100%) + (홍보비(1식) × 20,000천원 × 100%)

○ **축산물브랜드 교육(20백만원)** : 평가 우수 경영체 시상, 브랜드 경영체 임직원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연찬회 개최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 20백만원

▪ ’17년 수준 반영(’17년 20백만원 → ’19년 20백만원)

▪ 산출근거 : 1식 × 20,000천원 × 100% = (회의비 12,000천원 × 100%) + (운영수당 3,400천원 × 100%) + (수용비 2,400천원 × 100%) + (광고 홍보 2,200천원 × 100%)

○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434백만원)** : 소비자 대상 축산물브랜드 홍보 및 우수 경영체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비용 일부 지원 사업비 434백만원

▪ ’17년 수준 반영(’17년 434백만원 → ’19년 434백만원)

▪ 산출근거 : 1식 × 434,000천원 × 100% = (임차료 및 행사운영 225,000 천원 × 100%) + (브랜드 홍보관 등 전시관 설치 70,000천원 × 100%) + (부대행사 운영 119,000천원 × 100%) + (경진대회 평가수당 등 운영비 20,000천원 × 100%)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190백만원)** :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사업비 190백만원을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에 지원

▪ ’17년 수준 반영(’17년 190백만원 → ’19년 190백만원)

▪ 산출근거 : 1개 소비자단체 190,000천원 × 100% = (인증홍보비 27,000천원 × 100%) + (관리인건비 50,00천원 × 100%) + (인증위원회 운영 5,700천원 × 100%) + (현지실사 87,800천원 × 100%) + (인증발표회 19,500천원 × 100%)

□ 지원 필요성

○ 축산물 수급 불안 발생 시 소비 촉진 시책이 수급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감안, 소비자 등에 대한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축산시책 및 축산물 안전성 등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장기적인 소비기반 구축하고, 올바른 축산물 소비문화 형성에 기여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우수 축산물브랜드를 발굴·육성·홍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유통및소비 촉진제고	**(1,925)**	**860**	**860**	**1,666**	**806**	**93.7**
▪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860)	**860** *소비자단체협력사업 (12개 소비자단체 ×64백만원×100%)+(평가운영비(사업시행기관)×20백만원×100%)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홍보(1개 소비자단체×70백만원 ×100%)	**860** *소비자단체협력사업 (12개 소비자단체 ×64백만원×100%)+(평가운영비(사업시행기관)×20백만원×100%)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홍보(1개 소비자단체×70백만원 ×100%)	**860** *소비자단체협력사업 (12개 소비자단체 ×64백만원×100%)+(평가운영비(사업시행기관)×20백만원×100%)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홍보(1개 소비자단체×70백만원 ×100%)	-	-
▪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개최	(180)	-	-	**162** (1식×162백만원×100%)	162	순증
▪ 축산물브랜드 교육	(20)	-	-	**20** (1식×20백만원×100%)	20	순증
▪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	(426)	-	-	**434** (1식×434백만원×100%)	434	순증
▪ 우수 축산물브랜드인증	(190)	-	-	**190** (1식×190백만원×100%)	190	순증
▪ 축산시책홍보	(97)	-	-	-	-	-
▪ 일반관리비	(152)	-	-	-	-	-
□ 비목(합계)	**(1,925)**	**860**	**860**	**1,666**	**806**	**93.7**
○ 민간경상보조(320-01)	(1,925)	860	860	1,666	806	93.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축산물브랜드를 통한 축산물 생산·유통 효율화 정책 추진을 위해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 사업 추진('00~)
-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단위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조사・교육・홍보 사업 추진('04~)
-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을 변경(7000-7078 → 3700-3731)('18)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25.6)	(23.3)	(19.2)	(18.0)	(19.8)	8.6

※ '13~'14년 기금운영비-일반교육홍보및축산물유통정보제공 사업(7000-7078)

※ '14~'17년 기금운영비-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사업(101-7000-7078)

※ '18년부터 축산업진흥-축산물수급관리-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사업(101-7000-7078)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홍보비 집행 절약을 통한 집행잔액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2 (19.2)**	- (-)	- (-)	19.2 (19.2)	**18.9 (18.9)**	- (-)	0.3 (0.3)
'16년	**18.0 (18.0)**	- (-)	- (-)	18.0 (18.0)	**18.0 (18.0)**	- (-)	- (-)
'17년	**19.8 (19.8)**	- (-)	- (-)	19.8 (19.8)	**19.4 (19.4)**	- (-)	0.4 (0.4)

(5) 사업추진절차

○ 생산자・소비자단체협력사업(사업시행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 과제 수요 조사 실시 및 주제 선정
-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관련부서 및 기관 등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

◦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
- 과제 주제, 선정 계획, 예산배정 규모 등
-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각 소비자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사업계획서 제출

◦ 단체별 사업계획서 제출
- 소비자단체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과제 선정평가

◦ 단체별 과제 추진계획 검토 및 평가
- 단체별 과제 추진계획 공개 발표
- 선정평가단 구성·평가*

* 기획능력, 수행단체 적합성, 추진계획 적정성, 성과 달성 가능성 등

◦ 단체별 수행 과제 조정·확정

⇩

과제 선정결과 통보

◦ 과제 지원계획 및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기관 → 각 소비자단체

⇩

예산 배정 및 사업 추진

◦ 단체별 예산 배정
- 사업시행기관 → 각 소비자단체

◦ 단체별 사업 추진

⇩

사업 진도 관리

◦ 중간·최종보고 등을 통한 사업 진도 관리
- 사업 진도별 평가단 구성·평가

⇩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

◦ 단체별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
- 각 소비자단체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실적 성과평가, 환류

◦ 학계, 전문가, 농식품부 관계자로 평가단 구성
◦ 진도별 평가, 홍보실적, 성과달성도 등 정량·정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 과제 선정시 가점, 예산액 증감 배정 조치

○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시행기관 :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 기본계획 수립 → 지침시달・홍보 → 참가업체 신청・접수 → 박람회 개최 → 결과보고・정산

○ 축산물브랜드 교육・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축산물품질평가원) : 기본계획 수립 → 지침시달・홍보 → 참가업체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전시회 개최 → 결과발표・시상 → 결과보고・정산

-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시행기관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품질평가원) : 기본계획 수립 → 지침시달・홍보 → 참가업체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전시회 개최 → 결과발표・시상 → 결과보고・정산

참고 1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전국단위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 관련 시책 및 축산물 소비 관련 홍보·교육·조사 사업 등 수행**('04~)

* 축산 관련 정책 추진 및 현안 발생 시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 협력·대응

○ **(목적)**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 축산식품 소비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 **(사업대상)** 「소비자기본법(제29조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의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소비자단체 및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자 관련 단체

○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고객홍보처)

○ **(추진절차)** 수요조사 → 계획수립 → 공모 → 선정평가·사업비 배정 → 사업관리(중간평가, 정책협의회) → 성과평가 →정산

○ **(19년 예산) 790백만원**(축발기금-축산물수급관리-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 '15) 790백만원 → '16) 790 → '17) 790 → '18) 790 → **'19) 790**

구분	예산내역('18년 기준)	금액(천원)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 소비자단체협력사업(12개 단체 × 45~85백만원)	770,000
	· 평가관리비(축산물품질평가원)	20,000
	합 계	**790,000**

❏ **('18년 추진사항)** 12개 소비자단체 공모·선정, 정책협의회 개최

○ **(과제·사업자 선정)** 지정(2개, 부서·유관기관 수요) 및 자율(10개, 소비자단체 수요) 과제 공모 및 평가위원회(내외부 7명) 평가·선정

* 관련부서·유관기관·소비자단체 수요조사('18.2~3월) → 우선순위 전문가 평가(5.4) → 과제 공모(개방공모, 5.24~5.30) → 선정평가회 평가·선정(6.8)

○ **(사업비 배정)** 단체별 사업계획서 평가 및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내·외부 평가위원회)를 반영하여 평가 및 사업비 차등 배정

* 선정 평가결과 **A등급 75백만원**, B등급 65백만원, C등급 55백만원 배정, '17년 성과평가 결과 상위 2개 단체 10백만원 증배정, 하위 2개 및 신규 1개 단체 10백만원 감배정

○ **(정책협의회)** 소비자단체의 축산 현안 및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3회 개최, 3·7·12월)

참고 2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홍보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도축장・집유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향상과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05~)

○ **('19년 예산) 70백만원 반영**(축발기금-축산물수급관리-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 '15) 70백만원 → '16) 70 → '17) 70 → '18) 70 → '19) 70

구분	예산내역('18년)	금액(천원)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홍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출장비, 사례비(소비자단체)	41,600
	・출장비, 사례비(전문가)	24,320
	・사전교육 및 회의비	1,260
	・일반관리비	945
	・실무인력지원비	1,875
	합계	70,000

❑ 주요 내용

○ **(평가단 운영)** HACCP 운용수준 실무평가단 선정 및 운영

- 도축장・집유장 위생관리 실태, HACCP 운용 적정성, 베스트 작업장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홍보 등

○ **('18년 평가)** 전국 191개 도축장・집유장(포유류 81개소, 가금류 48개소, 집유장 62개소) 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사항 평가**

- **(평가 기간)** '18.4월 ~ 11월(8개월)
- **(평가 기관)** 농식품부(검역본부) 주관, 지자체(5개 광역시, 9개 도),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중심 9개 단체), 외부전문가(11개 기관) 참여
- **(평가 방법)** 인프라, 위생관리, 미생물 검사결과, HACCP 운용 적정성 등에 대해 '적합'(수정・보완), '부적합'(재평가)으로 판정
- **(평가 결과)** 도축장 129개소 중 119개소 적합*(재평가 10개소), 집유장 62개소 중 60개소 적합(재평가 2개소), 베스트 작업장 11개소(우수 지자체 1개소) 선정

<'18년 HACCP 베스트 작업장 선정 결과(소비자단체 공동) >

구분	포유류	가금류	집유장
최우수(3)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	참프레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성집유장
우수(5)	농협목우촌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	사조화인코리아 나주공장 다솔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집유장
발전상(2)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	매일유업 평택공장
우수 지자체(1)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참고 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축산농가-축산기업체간 선진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95~계속, 격년개최)

- 축산업 선진 기술 및 정보 공유를 통한 경쟁력 향상, 해외기업 유치 및 해외바이어 초청을 통한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 **(사업시행기관)** 6개 생산자단체 공동주최(순번제 주관단체 지정)

* (사)대한양계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사)대한한돈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19년 주관단체)

○ **(추진절차)** 사업계획 보고 및 지원요청(추진위원회) → 사업계획 검토(농식품부) 및 지원계획 확정 → 박람회 → 결과보고(정산 등)

○ **('19년 예산) 162백만원**(축발기금-축산물수급관리-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 '15) 175백만원 → '16) 0 → '17) 180 → '18) 0 → **'19) 162**

* '17년 총예산 : 1,601백만원(**농식품부 180**, 후원금 204(대구시 114, 경북도 40, 농협 30, 사료협회 20), 부스판매비 1,212)

구분	예산내역('17년 기준)	금액(천원)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 (6개 생산자단체)	· 전시장 사용료	50,000
	· 전시 장치 조성	110,000
	· 홍보비(미디어, 전문지 홍보 등)	20,000
	합계	**180,000**

❑ '17년 행사 주요 내용

○ **(일정/장소)** '17.9.21.(목) ~ '17.9.24.(일) / 대구 EXCO

- **(주요 참석자)** 농식품부 장관, 식품실장, 경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 국회의원, 축산관련 단체장 및 관계자, 축산관련 업체 및 농가 등

○ **(주요 내용)** 전시행사, 긍정축산 홍보관, 학술행사, 축산 인식개선 캠페인, 축산물 브랜드전 및 각종 이벤트 실시

- **(전시분야)** 축산 관련 7개 분야(기자재, 사료, 약품, 해외, 기관, 축산물, 기타)

* 295개 축산관련 업체 962개 부스 참가(해외 10개국 39개 업체 45개 부스)

- **(시상식)** 장관표창 5점(개회식), 정부시상 2점 · 장관상 3점(폐회식) 등 수여

참고 4 축산물브랜드 교육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축산물브랜드 지원사업 평가 우수 경영체 시상, 브랜드 경영체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연찬회 개최('04~)

○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축산유통부), 축산물품질평가원

○ **('19년 예산) 20백만원**(축발기금-축산물수급관리-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 '15) 20백만원 → '16) 20 → '17) 20 → '18) 0 → **'19) 20**

* '18년 예산 미반영, '19년 20백만원 요구(한도외)·반영

구분	예산내역('17년 예산)	금액(천원)
축산물 브랜드 교육 (농협경제지주)	· 기획/연출료	330
	· 제작물	6,000
	· 시스템/장치 설치	2,200
	· 임대 및 구매	670
	· 인건비	2,100
	· 운영비	6,800
	· 행사대행비	1,900
	소계	**20,000**

❑ '17년 주요 내용

○ **(연찬회 개최)** '17년 축산물브랜드 연찬회 개최 비용 일부 지원

- **(일정/장소)** '17.12.12.(화) 15:00~18:00 /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
- **(주요 참석자)** 축산정책국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축산관련 단체장 및 관계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대표 및 임직원, 지자체 담당자

○ **(시상식)**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지원사업 평가·실속형 축산물 BEST 10 등 '17년 선정 브랜드 경영체 시상

* 대통령상 1, 총리상 1, 장관상 9, 명품인증서 5 / 무이자 인센티브 150억 지원

○ **(담당자 교육)** 브랜드 경영체 임직원, 시·도 사업담당자 대상 브랜드 교육, 우수 경영체 사례 발표 등

* 축산물 브랜드 정책 방향(농식품부), '17년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조사 발표(소비자공익네트워크), 브랜드 평가사업 개선 방안 연구조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발표, 우수 경영체 사례(한우 1, 돼지 1) 등

참고 5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우수 브랜드 축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경영체간 경쟁 유도를 통한 고품질 차별화 촉진**('04~)

- 생산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의 브랜드 관리가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를 발굴·시상·전시함으로써 **우수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축산물 브랜드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 경영체의 성공사례 교류를 통한 브랜드육 **홍보 및 소비촉진 추진**

○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축산유통부)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지자체(시·도) 추천 → 서류심사·현지 실사 → 경진위원회 평가 →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 결과보고(정산 등)

○ **('19년 예산) 434백만원**(축발기금-축산물수급관리-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 '15) 434백만원 → '16) 434 → '17) 434 → '18) 0 → '19) 434

구분	예산내역('17년)	금액(천원)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농협경제지주)	· 임차료	134,000
	· 행사 대행료(전시관·홍보관 설치 등)	205,000
	· 베스트육가공품 선발대회	20,000
	· 축산물 가공제품 전시관 운영	30,000
	· 축산물 직거래 판촉 행사 지원 등	30,000
	· 사전설명회 개최, 경진대회 비용 등 운영비	15,000
	합계	**434,000**

참고 6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홍보

*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중심 우수 축산물브랜드 기준 제시 및 선정

○ **(인증대상)**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한우, 육우, 돼지, 육계, 계란 축종의 생산자 브랜드(공동 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 브랜드는 제외)

- '17년 45개(한우 28, 한돈 16, 계란 1) 우수 브랜드 인증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지자체(시·도) 추천·접수 → 현지실사 대상 선정 → 현지실사(현지실사단) → 인증위원회 선정 → 인증 발표회 → 사후관리·홍보 → 결과보고(정산 등)

○ **('19년 예산) 190백만원** (축발기금-축산물수급관리\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 '15) 190백만원 → '16) 190 → '17) 190 → '18) 0 → **'19) 190**

구분	지출내역('17년)	금액(천원)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사업 (소비자시민모임)	· 관리비 및 인건비	57,000
	·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5,200
	· 현지실사 추진	40,000
	·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및 인증 발표회	41,100
	· 인증브랜드 사후관리	20,000
	소계	**163,300**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홍보 (소비자시민모임)	· 홍보용 책자 인쇄 및 배포	16,700
	·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10,000
	소계	**26,700**
합계		**190,000**

❑ 주요 내용

○ **(인증사업)** 인증위원회 및 현지실사단 구성·운영, 사업설명회·워크샵·발표회 개최, 인증 브랜드 선정, 인증 브랜드 사후관리, 인증사업 평가 및 개선, 모니터링, 홍보 등

○ **(인증홍보)** 축산물브랜드종합정보서비스(www.hqbrand.net),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보완 및 유지보수, 인증 브랜드 책자 인쇄 및 배포 등

7. 가축개량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50,991	53,699	53,699	**52,369**	**△1,330**	**△2.5**

* 사업코드 : 20 - 31 - 계정 - 100 - 101 - 3700 - 3732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개량]사무관(정준구)☎(044-201-2342)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양봉]사무관(김성구)☎(044-201-233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보급

○ FTA 등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한우·젖소 당대·후대검정을 통한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공급 ○ 한우·젖소 암소검정 및 선형심사, 돼지 농장검정을 통해 우수개체 선발 및 저능력 가축 도태 지원 ○ 국가단위유전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유전자원 선발·도입 및 참여종돈장 유전자 공유를 통해 종돈장간 개량네트워크구축 지원 ○ 국내 종계의 개량과 도입종계의 능력을 검정하는 검정소 신축 지원 ○ 혈통등록, 선형심사 등을 통해 근친교배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방지 ○ 우수 신품종 벌 벌통 지원으로 양봉산업 안정화 유도 및 농가소득 증대 ○ 농가에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암소(암송아지) 보급을 위한 지역단위로 한우 우량암소개량군 조성 ○ 흑염소 개량기반을 조성하여 생산된 우량 흑염소의 안정적 농가지원
사업기간	'69～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사업규모	○ 한우 : 보증씨수소 30두, 암소검정 242천두, 선형심사 50천두, 고능력 암소축군 600두 조성 ○ 젖소 : 보증씨수소 3두, 유우군검정 110천두, 후대선형심사 25천두 ○ 돼지 : 종돈검정 50천두, ○ 벌 : 신품종 벌통 10천개 ○ 흑염소 : 200두 생산
지원조건	민간보조(정액보조), 지자체보조(50~100%), 융자(2%)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시・도

2. 2019년 계획

【총괄】 가축개량지원 : ('18) 53,699백만원 → ('19) 52,369(△1,330)

< 보조 > : ('18) 44,699백만원 → ('19) 46,369(증1,670)

○ 한우·젖소개량지원 : ('18) 40,966백만원 → ('19) 43,512(증2,546)

- 한우육종농가사업 : ('18) 3,028백만원 → ('19) 3,057(증29)

▪ 암소검정비 : ('18) 1,264백만원 → ('19) 1,264백만원(-)

* 생시·이유시 체중측정(7,100두×100천원=710백만원)

* 6·12개월령 체중측정·초음파(2,770두(암소)×참여율(80%)×200천원=554백만원)

▪ 한우육종농가 체중기 지원 : ('18) 23백만원 → ('19) 23(-)

* 기존 설치농가 보완설치 비용(5호×4.6백만원=23백만원)

▪ 씨수소 선발 개량장려금 : ('18) 1,380백만원 → ('19) 1,450(증70)

* 신규선발 보증씨수소('18년 23두 → '19년 25) : 25두×40백만원=1,000백만원

* 후보씨수소 : 45두×10백만원 = 450백만원

▪ 농장후대검정 참여농가 지원 : ('18) 241백만원 → ('19) 200(△41)

* 자료조사비 지원(생시 및 이유체중 측정) : 400두×500천원 = 200백만원

▪ 도육종센터 씨수소 개량장려금 지원(지자체) : ('18) 120백만원 → ('19) 120(-)

* 지자체 개량장려금 2개소×60백만원=120백만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18) 5,117백만원 → ('19) 4,655(△462)

▪ 농가지도비 : ('18) 1,105백만원 → 1,105(-)

* 8,500호×260천원×50%=1,105백만원

▪ 암소검정비 : ('18) 195백만원 → 195(-)

* 11천두×30천원×50%+1천두×60천원×50%=195백만원

▪ 친자확인 : ('18) 439백만원 → 439(-)

* 14,000조×2두×15,679원=439백만원

▪ 개량컨설팅비 : ('18) 575백만원 → ('19) 575(-)

* (시행기관 55개소×10백만원)+(시범시행기관 5개소×10백만원×50%)=575백만원

▪ 고능력암소지원 : ('18) 360백만원 → ('19) 360(-)

* 고능력암소(4-7산차) : 1,800두×200천원=360백만원

▪ 저능력암소 도태 및 우량암소 입식지원('18) 450백만원 → ('19) 450(-)

* 암소검정사업 저능력우 도태지원(200,000두*150천원*1.5%=450백만원)

▪ 한우인공수정정보시스템구축 : ('18) 562백만원 → ('19) 100(△462)

* 인공수정 정보수집비 및 운영비 100백만원

▪ 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원사업(지자체) : ('18) 1,431백만원 → ('19) 1,431(-)

* 지자체 수정란 생산·공급 : 1,431백만원(9개소×159백만원)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18) 2,079백만원 → ('19) 2,079(-)

▪ 검정비 : ('18) 2,030백만원 → ('19) 2,030백만원(-)

* 검정대상우 110천두×65천원×보조율 28.4%=2,030백만원

▪ 재료비 : ('18) 49백만원 → ('19) 49백만원(-)

* 25개소×163,000원×12회=49백만원

- 한우씨수소개량지원 : ('18) 22,562백만원 → ('19) 25,570(증3,008)

▪ 인건비 : ('18) 6,377백만원 → ('19) 6,491(증114)

* 가축개량원 및 한우개량사업소 인건비 110명*59,010천원=6,491백만원

▪ 한우씨수소개량사업비 : ('18) 14,942백만원 → ('19) 14,845(△97)

* 사무·실험용소모품(3,638), 지방산전단력 분석(10), 급식비(17), 피복비(17), 회의비·업무추진비(107), 여비(117), 시설장비유지비(656), 검정우 매입, 조사료 등 재료비(8,855), 제세공과비 등(739), 복리후생비(689)

▪ 시설비 : ('18) - → ('19) 3,039(순증)

* 후대검정 확대에 따른 후대검정우사 신축 : 2개동×1,438백만원=2,875백만원

* 2검정우사 노후화에 따른 지붕교체 : 164백만원

▪ 자산취득비 : ('18) 953백만원 → ('19) 905(△48)

* 기계장치(227백만원) : 퇴비장브로워, 절단기, 베일러, CCTV, 배양기, 로터리, 비료살포기, 농업용드론

* 차량운반구(259백만원) : 지게차, 방목관리차량, 조사료절단용트랙터, 급수차

* 공구기구비품(419백만원) : 수정란장비, PC, RFID리더기, 스트로봉함기, 의빈대, 정자농도측정기, 혈액혈구분석기, 현미경, 전산실냉방기, 수술용무영등

▪ 희소한우개량지원(지자체) : (‘18) 90백만원 → (’19) 90(-)

* 3개소 * 30백만원 = 90백만원

▪ 고능력씨암소축군조성(지자체) : (‘18) 200백만원 → (’19) 200(-)

* 4개소 * 50백만원 = 200백만원

- 젖소씨수소개량지원 : (‘18) 8,035백만원 → (‘19) 8,006(△29)

▪ 인건비 : (‘18) 2,085백만원 → (‘19) 2,123(증38)

* 젖소개량사업소 인건비 36명 * 58,972천원 = 2,123백만원

▪ 젖소씨수소개량사업비 : (‘18) 4,562백만원 → (‘19) 4,562(-)

* 사무·실험용 소모품(1,514), 육종농가사업 및 정액수출(511), 여비(126), 시설장비 유지비(206), 재료비(1,538), 회의비·업무추진비(69), 급식비(7), 피복비(7), 제세공과금(389), 복리후생비(195)

▪ 자산취득비 : (‘18) 1,388백만원 → (‘19) 1,321(△67)

* 차량운반구(53백만원) : 스키드로우더

* 기계장치(126백만원) : 대인소독조, 유압보정틀,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CCTV, 웹서버, 운영프로그램

* 공구기구비품(8백만원) : 인공질자외선건조대

* 우수검정우 도입비(3두, 1,134백만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18) 145백만원 → (‘19) 145(-)

▪ 미래축산포럼(70백만원), 육종농가·검정원 등 교육(75백만원)

○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 : (‘18) 2,903백만원 → (‘19) 1,503(△1,400)

- 종돈농장검정사업 : (‘18) 200백만원 → (‘19) 200(-)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18) 1,053백만원 → (‘19) 1,053(-)

▪ 우수 종축 및 유전자원 구입비 등 : (‘18) 994백만원 → (‘19) 994(-)

▪ 협의회 개최 등 운영비 : (‘18) 59백만원→ (‘19) 59(-)

- 돼지인공수정센터 우수종돈구입 지원(지자체) : (‘18) 250백만원 → (‘19) 250(-)

- 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신축(2년차) : (‘18) 1,400백만원 → (‘18) - (△1,400)

○ 종축등록사업 지원 : (‘18) 180백만원 → (‘19) 454(증274)

- 한우 선형심사 : (‘18) 150백만원→ (‘19) 150(-)

* 한우암소 30천두×1만원×50% = 150백만원

- 종축능력평가대회 개최 지원 : ('18) 30백만원 → ('19) 30(-)

* 대회개최비용 중 일부(참가한우 운송비) 지원 : 250두×241천원/두×50%=30백만원

- 한국형 젖소 이상모델 구축사업 : ('18) (-) → ('19) 274백만원(순증)

* 실측자료 수집비 804백만원/3=268백만원 + 실측 장비구입비 = 6백만원 = 274백만원

○ 기타가축 개량 지원 : ('18) 650백만원 → ('19) 900(증250)

- 신품종 벌 보급 지원 : ('18) 150백만원 → ('19) 150(-)

* 신품종벌 2,000군x150천원x50% = 150백만원

- 흑염소 개량지원 : ('18) 500백만원 → ('19) 500(-)

* 흑염소 개량시설 1개소×1,000백만원×50% = 500백만원

-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 : ('18) - → ('19) 250백만원(순증)

* 입식 지원비 등 31.25백만원 * 8개도 = 250백만원

< 융자 > : ('18) 9,000백만원 → ('19) 6,000(△3,000)

○ 지역단위암소검정사업 : ('18) 9,000백만원 → ('19) 6,000(△3,000)

* 3개소×2,000백만원 = 6,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가축개량지원사업은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개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움

- 가축개량 신기술 활용을 통한 개량효과 극대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 한우 보증씨수소(약 5.5년), 젖소 보증씨수소(약 5.7년) 소요

○ 가축개량지원사업의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5,451억원/년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18년 농진청 가축개량관련자료)

- 한우 : 체중증가 및 고급육 생산으로 1,992억원/년 소득증대
- 젖소 : 산유량 증가로 일반농가 대비 3,185억원/년 소득증대
- 돼지 : 비육돈 생산성 향상에 따른 274억원/년 소득증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50,991	53,699	53,699	52,369	△1,330	△2.5
▪ 한우·젖소개량지원	40,134	40,966	40,966	43,512	2,546	6.2
▪ 돼지경제능력검정	1,527	2,903	2,903	1,503	△1,400	-48.2
▪ 가금류개량지원	-	-	-	-	-	-
▪ 종축등록사업지원	180	180	180	454	274	132
▪ 기타가축개량지원	150	650	650	900	250	38.5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융자)	9,000	9,000	9,000	6,000	△3,000	△33.3
□ 비목(합계)	50,991	53,699	53,699	52,369	△1,330	△2.5
▪ 민간경상보조(320-01)	36,357	38,217	38,217	38,113	△104	△0.3
▪ 민간자본보조(320-07)	45	1,400	1,400	-	△1,400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55	1,241	1,241	1,581	340	27.4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105	1,500	1,500	1,410	△90	△6.0
▪ 실시설계비(420-02)	-	-	-	165	165	-
▪ 공사비(420-03)	1,501	-	-	2,823	2,823	-
▪ 감리비(420-04)	-	-	-	41	41	-
▪ 시설부대비(420-05)	-	-	-	10	10	-
▪ 자산취득비(430-01)	1,928	2,341	2,341	2,226	△115	4.9
▪ 기타민간융자금(450-04)	9,000	9,000	9,000	6,000	△3,000	△33.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가축개량 목표 및 가축개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 추진경위

- 한우정액생산・공급 : ‘69년부터 한우개량을 위해 보증씨수소 검정・선발,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생산 공급 추진
- 젖소정액생산・공급 : ‘83년부터 젖소개량을 위해 보증씨수소 검정・선발,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생산 공급 추진
- 한우개량・육종농가육성 : ’79년부터 한우순수계통번식사업으로 추진
- 유우군 검정 : ’79년부터 젖소검정소에서 유우군 검정사업 개시
- 돼지검정 : ’84년 종돈검정소 개설 후 종돈 검정사업 추진
- 종축등록 : ’69년부터 종축등록・검정기관으로 지정 운영 및 종축혈통 등록 관리, 검정사업 및 가축품평회 추진
- 신품종벌보급지원 : ‘15년부터 우수품종 벌 증식·보급을 위해 추진
- 흑염소개량지원 : ‘18년부터 재래 흑염소 품종 개량을 위해 추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가축개량지원	411	397	477	643	524	53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2015년) 불용액 발생 사유(716백만원)

- 한우·젖소씨수소개량지원(625) : 관세인하에 따른 수정란 도입비 절감 등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91) : 우수종돈농가보급 대상두수 부족에 따른 불용 등

○ (2015년) 이월액 발생 사유(982백만원)

-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 우사 시설사업 지연(853)
- 초음파육질진단 추청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129)

○ (2016년) 불용액 발생 사유(10,391백만원)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10,300) : 높은 이자율(2%)에 따른 수요부족
- 한우·젖소개량지원(91) :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2017년) 이월액 발생 사유(1,355백만원) : 한돈혁신센터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지연(355백만원), 보조사업자 자부담확보 부족으로 닭경제능력검정소 공사지연(1,000백만원)

○ (2017년) 불용액 발생 사유(91백만원) :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시설비 · 자산취득비 집행잔액(10백만원), 우수종돈 정액농가 보급 지원 및 육종센터 씨수소 개량비 수요부족(81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77 ( )	- ( )	- ( )	477 ( )	460 ( )	10 ( )	7 ( )
'16년	642 ( )	10 ( )	- ( )	652 ( )	547 ( )	- ( )	105 ( )
'17년	524 ( )	- ( )	- ( )	524 ( )	510 ( )	13.5 ( )	0.9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17년 예산 상임위, 예결위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은 수요부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예산감액 → '17년 예산 감축(50억원/개소→30)

○ 재정사업자율평가('18) : 보통

○ 보조사업연장평가 : ('16.7월) 경상보조 5% 감축, ('17) -, ('18)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가축개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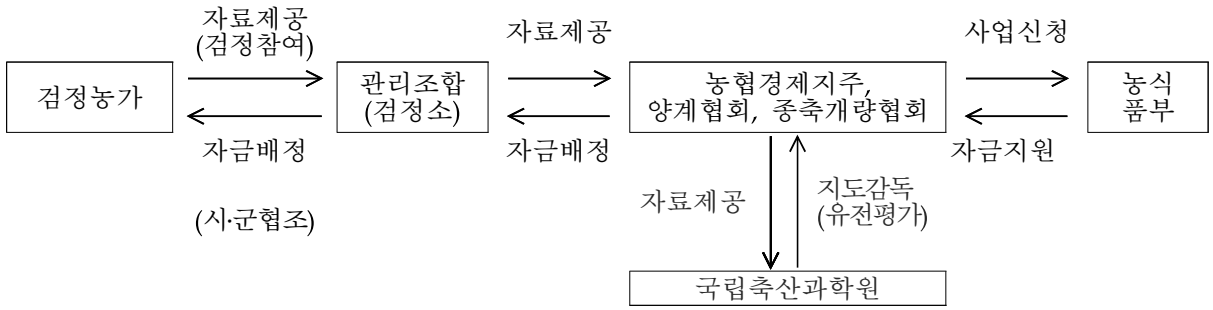

①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확보(농식품부) → ② 사업계획수립 · 제출(사업주관기관) → ③ 사업 검토 · 확정(농식품부) → ④ 보조금교부(사업주관기관) → ⑤ 사업추진(사업주관기관) → ⑥ 사업비 정산(사업주관기관)

참고 1 한우보증씨수소 선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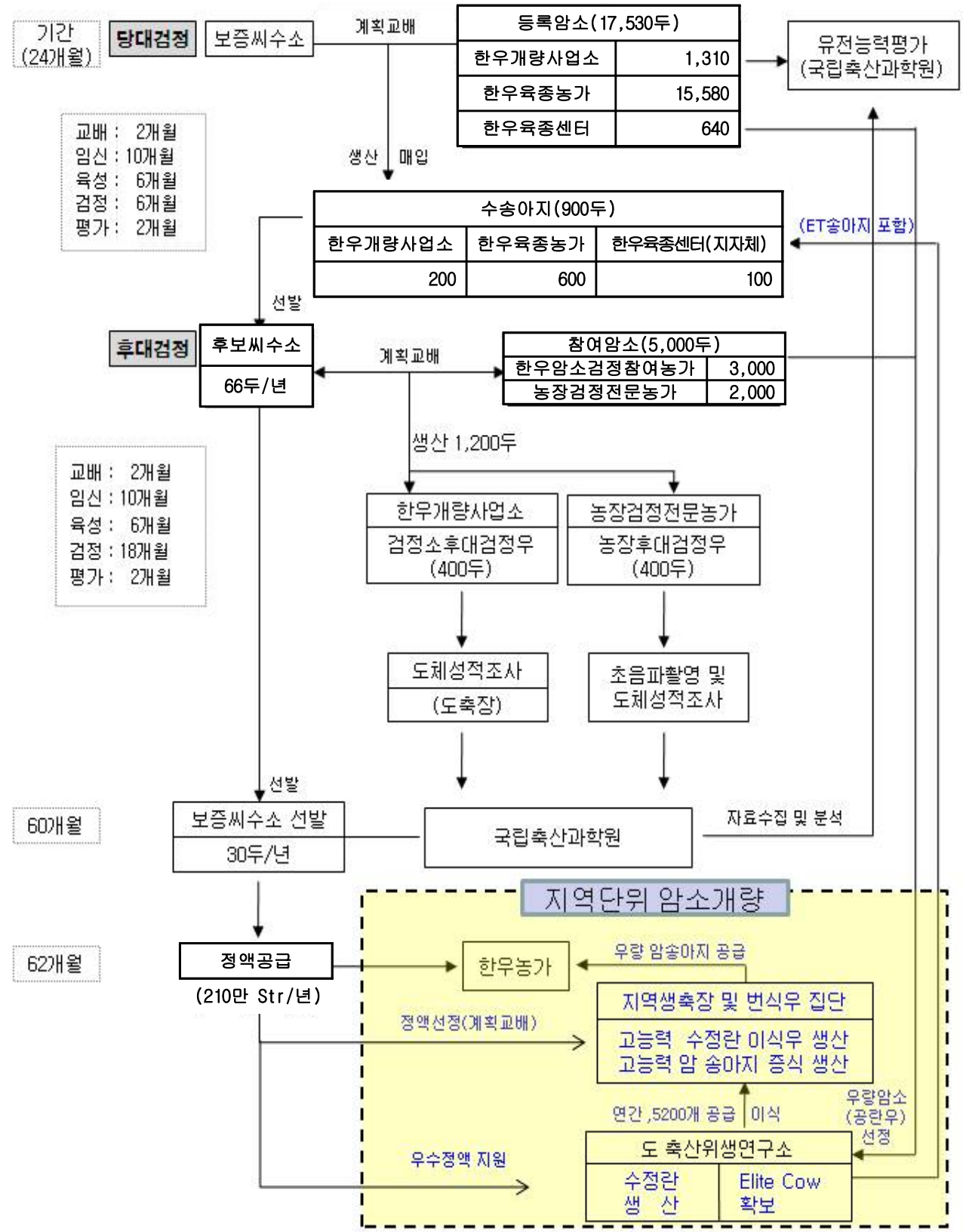

8.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사료산업종합지원	61,566	56,957	56,957	**53,850**	**△3,107**	**△5.5**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700 - 3733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환경자원과(박홍식), 사무관(김동일)☎(044-201-235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능동적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분리 및 사료수출활성화 등 시설개보수비 지원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도모
-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료의 제조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효율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농약 등 유해물질의 검정성분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사료검정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료원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사료제조시설 개보수자금 융자 지원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운영비 ○사료검정장비 지원
사업기간	○ '93 ~ 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사업규모	○ 원료구매자금 32개소, 제조시설개보수 2개소, 사료관리정보시스템 1개소, 사료검정장비 4개소
지원조건	○원료구매자금 : 융자 80%, 자부담 20%(2년 일시상환, 2.5~3%) ○제조시설개보수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3년 거치 7년 상환, 2~3%) ○사료관리정보시스템 : 보조 100% ○사료검정장비 :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사료수입신고단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사료원료구매자금 : 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료제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 51,274백만원

▪ ’18년 55,800백만원 대비 8.1%(4,526백만원) 감액

▪ 산출내역 : (’18) 35개소 × 2,000 × 80% = 55,800백만원 → (’19) 32개소 × 2,000 × 80% = 51,274백만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2년거치 일시상환(2.5～3%)

○ 제조시설개보수자금 : 사료 제조공장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2,000백만원

▪ ’18년 1,000백만원 대비 100%(1,000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 : (’18) 1개소 × 1,430백만원 × 70% = 1,000백만원 → (’19) 2개소 × 1,430백만원 × 70% = 2,000백만원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상환(2～3%)

○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백만원

▪ ’18년 157백만원 대비 4.5%(7백만원) 감액

▪ 산출내역 : (’18) 1개소 × 157백만원 × 100% = 157백만원 → (’19) 1개소 × 150백만원 × 100% = 150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 100%

○ 사료검정장비 지원 :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수입신고단체에 사료검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426백만원

▪ 사료검정 장비 지원을 위한 ’19년 신규사업

▪ 산출내역 : (’18) - 백만원 → (’19) 1개소×180백만원×50%=90백만원, 3개소×224백만원×50%= 336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 100%

□ 지원 필요성

○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산물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료가격 안정 정책 추진 필요

○ 사료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등 운영비 반영 필요

○ 농약 등 유해물질의 검정성분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사료검정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료산업종합지원**	**60,989**	**56,957**	**56,957**	**53,850**	**△3,107**	**△5.5**
▪ 사료원료구매자금 (산출근거)	60,720	55,800 (35개소×2,000백만×80%)	55,800 (35개소×2,000백만×80%)	51,274 (32개소×20백만× 80%)	△4,526	△8.1
▪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산출근거)	-	1,000 (1개소×1,430 백만원×70%)	1,000 (1개소×1,430 백만원×70%)	2,000 (2개소×1,430백만× 70%)	1,000	100.0
▪ 사료관리정보시스템구축 (산출근거)	269	-	-	-	-	-
▪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산출근거)	-	157 (1개소×157백만×100%)	157 (1개소×157백만×100%)	150 (1개소×150백만×100%)	△7	△4.5
▪ 사료검정장비 (산출근거)	-	-	-	426 (1개소×180백만원×50% 3개소×224백만원×50%)	426	순증
□ **비목**(합계)	**60,989**	**56,957**	**56,957**	**53,850**	**△3,107**	**△5.5**
○ 기타융자금(450-04)	60,720	56,800	56,800	53,274	△3,526	△6.2
○ 민간경상보조(320-01)	-	157	157	150	△7	△4.5
○ 민간자본보조(320-07)	-	-	-	426	426	순증
○ 연구개발비(260-01)	269	-	-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시설자금을 '93년부터 지원
-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원료구매자금을 '96년부터 지원
- 사료공장 HACCP 도입에 필요한 사료 제조라인 분리 등을 위해 '05년부터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사료부분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06년부터 종합지원자금으로 통합
- '08년부터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조건 변경 : 1년 일시상환→2년 일시상환
- 한-베트남 FTA 협상결과 국내 양봉산업 피해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건립 '16년 신규 요구
- 축산물 부산물자원화를 위한 혈액자원화 마스터플랜 지원('15)
-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사료관리업무 전반(원료·제조·유통·판매)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지원 계획 수립('17)
-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입사료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료수입신고단체에 사료검정 장비 지원('19)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사료산업종합지원	950	1,000	992	752	616	57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 사유 : 시중금리 인하 및 사료가격 담합업체 사업대상 제외로 사업소요 감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92 ( )	-	△60	932 ( )	616 ( )	-	316 (-)
'16년	752 ( )	- ( )	- ( )	752 ( )	623 ( )	- ( )	129 ( )
'17년	616 ( )	- ( )	- ( )	616 ( )	610 (269)	197 (197)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서 작성·제출(사업희망자 → 시·도, 사료관련단체, 농정원 → 농식품부) →
②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농식품부 → 시·도, 사료관련 단체, 농정원 → 사업대상자) →
③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시·도, 사료관련단체, 농정원, 축발기금사무국) →
④ 사업추진 보고 (시·도, 사료관련단체, 농정원 → 농식품부)

9. 말산업육성지원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말산업육성지원	30,211	31,384	31,384	**33,590**	**2,206**	**7.0**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700 - 3733
* 담 당 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정책과장(최명철), 사무관(이덕진, 044-201-232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말산업을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추진

* **(말산업 육성법)** 단일 축종의 산업발전을 위해 제정한 유일한 법령으로 동법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음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안전한 말 조련 · 경매 · 유통체계 구축, 시설 환경 개선, 유소년 승마, 농촌관광레저 승마 지원 및 말산업 이미지 개선 등
사업기간	'06~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18년까지 투자액 1,712억원)
사업규모	지자체 자본·경상 보조 및 민간경상 보조 등 33,590백만원
지원조건	민간・지자체 보조(20~100%, 일부사업 지방비 매칭), 융자(3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한국마사회, 농・축협, 축평원, 농정원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말산업육성지원 : ('18)31,384백만원 → ('19)33,590백만원(2,206)

<말산업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18)11,970백만원 → ('19)11,850백만원(△120)

▪ 산출내역

· 승용마 조련 강화 : 45두×10백만×40% = 180백만

· 경주퇴역마조련 : 24두×7.5백만×100% = 180백만

· 승용마품평 및 경매기반 구축 : 2회×70백만×100% = 140백만원

· 말등록 활성화 : 2.9천두×7만×100% = 200백만

· 퇴역마 용도다각화 : 100두×1백만×50% = 50백만원

· 유소년 승마단 지원 : (창단지원 20개소×60백만×50%=600백만)+(운영지원 60개소×20백만×50%=600백만) = 1,200백만원

· 지자체 승마대회 : 지자체 대회 5개×220백만×50% = 550백만원

· 민간 승마대회 : 민간 대회 17개×194백만×50% = 1,650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지원 : 656백명×32천원×10회×30% = 6,300백만원

· 취약계층 승마지원 : (재활승마 2,571명×42천원×10회×50%=540백만)+(사회공익승마 1,875명×32천원×10회×50%=300백만) = 840백만원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 1식×350백만×100% = 350백만

·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 : 1식×150백만×100% = 150백만

· 국산마 구매 촉진 : 20명×3백만×100% = 60백만원

<말산업기반 조성> ('18)15,140백만원 → ('19)17,546백만원(2,406)

▪ 산출내역

· 공공승마시설 설치(지자체, 대학) : 3개소×2,000백만×40% = 2,400백만

·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 : 12개×700~300백만×보조20%, 융자30% = 3,250백만

· 승마길조성 : 승마길조성 3개×500백만×40% = 600백만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 1개×4,360백만×50% = 2,180백만원 * 2년차 사업비 반영

· 말산업특구운영강화 : (신규특구지원 1개소 2년차×6,000백만×50% = 3,000백만)+(기존특구 3개소×1,333백만×50% = 2,000백만) = 5,000백만원

· 농촌관광활성화 : 농촌외승 120개×15백만×30% = 540백만원

· 말고기 소비촉진, 호스랜드 조성 및 말고기 등급제 : (말고기 소비촉진 및 호스랜드 조성 1식×400백만×100% = 400백만원) + (말고기 품질 고급화 1식×20백만×100% = 20백만원) = 420백만원

·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 (말산업전문인력교육 및 연수 182명×10.5~0.6백만×100%=452백만)+(양성기관워크숍2회×20백만×100%=40백만)+(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11개×300백만×50%=1,650) = 2,142백만원

· 말자격시험 : 1회×480백만×100% = 480백만원

· 취업지원센터 운영 : (인턴십등취업지원 80명×1,745천원×6개월×50%=418.5백만)+(고용부담금 43,500천원)+(취업지원센터운영 1식×72백만×100%=72백만) = 534백만원

<말산업 경쟁력 강화> ('18)1,824백만원 → ('19)1,744(△80)

▪ 산출내역

· 승용마 인공수정 지원체계 강화 : (인공수정지원 1식×220백만×100%=220백만)+(인공수정용 번식씨수말도입 3두×60백만×80%=144백만) = 364백만원

· 국산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 1식×100백만×100% = 100백만원

· 국산마 우수종마 선발·지원 : (국산종마선발 1두×450백만×100%=450백만)+(우수경주마 자마선발 125두×4백만×100%=500백만) = 950백만원

· 경매유통활성화 : 110두×3백만×100% = 330백만원

<말산업 지속 발전기반 구축> ('18)2,450백만원 → ('19)2,450(전년동)

▪ 산출내역

· 전문연구 및 민간투자 환경조성 : (전담연구소운용 1식×600백만×100%=600백만)+(국가통계조사 1회×420백만×100%=350백만)+(상용화기술개발 및 민간 이전 1식×150백만×100%=150백만) = 1,100백만원

· 전담기관 기능강화 및 컨설팅 : (전담기관 기능강화 1식×300백만×100%=300백만)+(컨설팅 1식×50백만×100%=50백만) = 350백만원

· 전략적홍보 : 1식×600백만×100% = 600백만원

· 말산업 행사 지원 : 말산업박람회 1식×400백만×100%= 4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시장개방 가속화, 녹색레저 수요증가 등으로 승마의 대중화, 말 수요 확충 등을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국민의 여가 기회 확대 필요성 대두

○ 국민 누구나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공익적 성격 강화, 일자리 창출 기여, 말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승마인구 확대로 말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기여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말산업육성지원	30,210	31,384	31,384	33,590	2,206	7.0
① 말산업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육성	8,566	11,970	11,970	11,850	△120	△1.0
- 승용마조련 및 유통체계 구축	678	870	870	750	△120	△13.8
· 승용마 조련강화	8	180 (60두×10백만×30%)	180 (60두×10백만×30%)	180 (60두×10백만×40%)		
· 경주퇴역마 조련	300	300 (40두×7.5백만)	300 (40두×7.5백만)	180 (24두×7.5백만)	△120	△40.0
· 승용마 품평 및 경매기반 구축	70	140 (2회×70백만)	140 (2회×70백만)	140 (2회×70백만)		
· 말등록 활성화 및 이력제	200	200 (2.9천두×7만원)	200 (2.9천두×7만원)	200 (2.9천두×7만원)		
· 퇴역마 용도다각화	100	50 (100두×1백만×50%)	50 (100두×1백만×50%)	50 (100두×1백만×50%)	-	-
-승마 대중화 및 품질제고	7,818	11,040	11,040	11,040		
· 유소년 승마단	1,200	1,200 (24개×100백만×50%)	1,200 (24개×100백만×50%)	1,200 (14개×100백만×50%)		
· 지자체 승마대회	550	-	-	550 (5개×220백만×50%)	550	순증
· 민간 승마대회	1,418	2,200 (22개×200백만×50%)	2,200 (22개×200백만×50%)	1,650 (17개×194백만×50%)	△550	△25.0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학생승마체험 지원	4,250	7,140 초중고 (656백명×32천원×10회×30%) +재활승마 (2,571명×42천원×10회×50%) +사회공익승마 (1,875명×32천원×10회×50%)	7,140 초중고 (656백명×32천원×10회×30%) +재활승마 (2,571명×42천원×10회×50%) +사회공익승마 (1,875명×32천원×10회×50%)	7,140 초중고 (656백명×32천원×10회×30%) +재활승마 (2,571명×42천원×10회×50%) +사회공익승마 (1,875명×32천원×10회×50%)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250	350 (1식×350백만)	350 (1식×350백만)	350 (1식×350백만)		
· 말산업 종합정보 시스템	150	150 (개보수 150백만)	150 (개보수 150백만)	150 (개보수 150백만)		
- 말산업관련 수출시장 개척	70	60	60	60		
· 국산 경주마 구매 촉진	70	60 (20명×3백만)	60 (20명×3백만)	60 (20명×3백만)		
② 말산업기반 조성	**17,216**	**15,140**	**15,140**	**17,546**	**2,406**	**15.9**
- 승마시설 확충, 복합단지조성	8,631	7,690	7,690	8,970	1,280	16.6
· 공공 승마시설 (지자체, 대학 등)	3,960	2,400 (3개×2,000백만×40%)	2,400 (3개×2,000백만×40%)	2,400 (3개×2,000백만×40%)		
·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4,521	3,250 (12개×5억원×50% (보조20%, 융자30%))	3,250 (12개×5억원×50% (보조20%, 융자30%))	3,250 (13개×5억원×50% (보조20%, 융자30%))		
· 승마길 조성	80	1,000 (5개×500백만×40%)	1,000 (5개×500백만×40%)	600 (3개×500백만×40%)	△400	△40
· 농촌관광승마 지원	150	540 (120개×15백만×30%)	540 (120개×15백만×30%)	540 (120개×15백만×30%)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	500 (1개×1,000백만×50%)	500 (1개×1,000백만×50%)	2,180 (4,360백만×50%(2년차))	1,680	336
- 말산업 특구 활성화	5,000	4,000	4,000	5,000	1,000	25
· 말산업 특구 지원	5,000	4,000 (신규1개소 1년차 4,000백만×50%+ 기존3개소 4,000백만×50%)	4,000 (신규1개소 1년차 4,000백만×50%+ 기존3개소 4,000백만×50%)	5,000 (신규1개소 2년차 6,000백만×50%+ 기존3개소 4,000백만×50%)	1,000	25
- 말고기 생산 유통 소비 기반 조성	420	420	420	420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말고기 소비촉진 및 호스랜드 조성	420	400 (1개소×400백만)	400 (1개소×400백만)	400 (1개소×400백만)		
· 말고기 등급제		20 (1식×20백만)	20 (1식×20백만)	20 (1식×20백만)		
-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3,165	3,030	3,030	3,156	126	4.2
·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성 강화	1,774	1,650 (11개×300백만×50%)	1,650 (11개×300백만×50%)	1,650 (11개×300백만×50%)		
· 말산업전문인력 교육 및 연수	619	452 (182명×10.5~0.6백만)	452 (182명×10.5~0.6백만)	452 (182명×10.5~0.6백만)		
· 인력양성기관 워크숍	40	40 (2회×20백만)	40 (2회×20백만)	40 (2회×20백만)		
· 현장밀착형 자격체계 운영	480	480 (1식×480백만)	480 (1식×480백만)	480 (1식×480백만)		
· 취업지원센터 및 인턴십 제도 운영	252	408 (80명×1.4백만×6개월×50%) 기타운영비 72백만원)	408 (80명×1.4백만×6개월×50%) 기타운영비 72백만원)	534 (80명×1,745천원×6개월×50%)+고용부담금 4,350만원(보수총액 10.4%)+ 기타운영비 72백만원)	126	30.9
③ 경쟁력 강화	**1,930**	**1,824**	**1,824**	**1,744**	△80	4.4
- 승용마 전문 생산농가 지원	300	544	544	464	△80	14.7
· 인공수정 지원	300	300 (1식×300백만)	300 (1식×300백만)	220 (1식×220백만)	△80	26.7
· 인공수정용 번식씨수말 도입	-	144 (3두×60백만×80%)	144 (3두×60백만×80%)	144 (3두×60백만×80%)		
· 국산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	100 (1식×100백만)	100 (1식×100백만)	100 (1식×100백만)		
- 경주마 경쟁력 강화	1,630	1,280	1,280	1,280		
· 국산 경주마 종마 선발	900	450 (1두×450백만)	450 (1두×450백만)	450 (1두×450백만)		
· 우수 경주마 자마 선발	400	500 (125두×4백만)	500 (125두×4백만)	500 (125두×4백만)		
· 경매 유통비율 확대	330	330 (110두×3백만)	330 (110두×3백만)	330 (110두×3백만)		
④ 말산업 지속발전 기반 구축	**2,498**	**2,450**	**2,450**	**2,450**		
- 말산업R&D 및 통계조사	950	1,100	1,100	1,100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전담연구소 운용 및 통계조사	950	1,100 (1식×1,100백만)	1,100 (1식×1,100백만)	1,100 (1식×1,100백만)		
- 전담기관 기능 강화	348	350	350	350		
· 전담기관 기능강화 및 컨설팅	348	350 전담기관 강화 (1식×280백만)+ 컨설팅(1식×70백만)	350 전담기관 강화 (1식×280백만)+ 컨설팅(1식×70백만)	350 전담기관 강화 (1식×280백만)+ 컨설팅(1식×70백만)		
-자속발전을 위한 홍보 강화	1,200	1,000	1,000	1,000		
· 전략적 홍보	600	600 (1식×600백만)	600 (1식×600백만)	600 (1식×600백만)		
· 말산업박람회	400	400 (1식×400백만)	400 (1식×400백만)	400 (1식×400백만)		
· 말 축제 지원	200	-	-	-		
□ **비목**(합계)	30,210	31,384	31,384	33,590	2,206	7.0
○민간경상보조(320-01)	8,797	9,380	9,380	8,756	Δ624	Δ6.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441	9,360	9,360	9,910	550	5.9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2,605	10,694	10,694	12,974	2,280	21.3
○기타민간융자금(450-04)	2,367	1,950	1,950	1,95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6년~, 말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시설 등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 '11. 9월,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
- '12. 7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13.11월, 관계부처* 합동 '승마 활성화 방안'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17.12월,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말산업육성지원	98	201	371	343	346	31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2015년도 : (불용) 사업비 잔액, 행사 취소 및 사업포기 등

○ 2016년도 : (불용) 사업비 잔액, 행사 취소 및 사업포기 등

○ 2017년도 : (불용) 사업비 잔액, 행사 취소 및 사업포기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71** (371)	- (-)	- (-)	371 (371)	**350** (339)	- (-)	21 (32)
'16년	**343** (343)	- (-)	- (-)	343 (343)	**322** (286)	- (-)	21 (75)
'17년	**346** (346)	( )	( )	**346** (346)	**302** (302)	( )	44 (4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에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는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15.7월, 상임위)
- 말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설투자 보다는 승마저변 확대, 지속적 승마참여 유도 등 말산업 수요 증대에 중점을 둘 것(15.7월, 상임위)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6년부터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17개 내역사업) 및 추진중
- 말산업 시설투자 예산은 '16년 수준(191억원)을 유지했으나, 승마저변 확대, 승마참여 유도 등 말산업 수요 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예산은 '16년 대비 6.9% 증액(106억원)하였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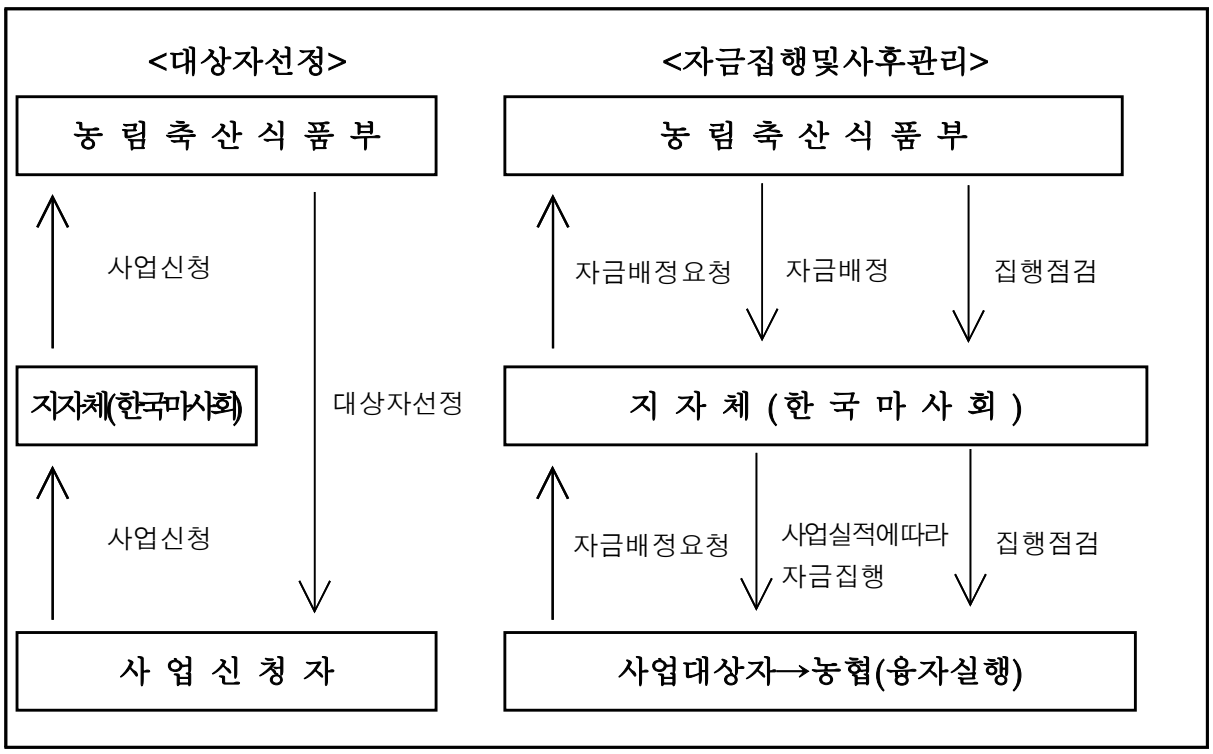

참고 1 말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과제

방 향	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

달성 목표	■ 산업규모 : ('16) 3.4조 → ('21) 4 ■ 일자리 : ('16) 2.4만명 → ('21) 3 ■ 유소년승마단 : ('16) 44개 → ('21) 100 ■ 농어촌승마길 : ('16) 57km → ('21) 500 ■ 공공승마시설 : ('16) 17개 → ('21) 32 ■ 말산업 표준화 및 보험 지원

추진 과제 (4대 분야)	수요확충 /연관산업 육성	말산업 기반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체계 구축
세부 과제 (18 과제)	㉠ 승용마 조련 및 유통체계 구축 ㉡ 승마 대중화 및 품질 제고 ㉢ 말 연관산업 육성 ㉣ 말산업 관련 수출 시장 개척	㉠ 승마시설·복합단지 조성 ㉡ 말산업 특구 활성화 ㉢ 말고기 생산·유통 기반 조성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취업지원 ㉤ 컨설팅 지원 및 표준모델 보급	㉠ 전문 승용마 생산 농장 지원 ㉡ 우수馬 도입, 스타 馬 발굴 ㉢ 경마산업화 및 국산 경주마 수준 향상 ㉣ 경마 레저 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	㉠ 승마시설 여건 개선 ㉡ 말산업 R&D 및 통계 조사 ㉢ 방역관리 체계 구축 ㉣ 말 개량 목표 설정 운영 ㉤ 교류 및 홍보 강화

참고 2 말산업 육성 추진성과

1 주요 성과

1 **(경제기여)** 말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 증가**

○ 경제기여효과는 11년 대비 18.8%(5,400여억원) 증가

○ 고용창출은 4,300여명 증가('11년 대비 22.5%↑)

2 **(기반조성)** 승마시설, 특구, 인력양성기관 등 **말산업 기반 구축**

3 **(수요창출)** 승마인구 증가, 말 문화 확산으로 **말산업 외연확대**

4 **(인지도·만족도)** 말산업 저변확대로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 승마 이용자 대상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로 나타남

2 말산업 기반 조성

1 **(승마시설)** '16년 승마시설 500개소 목표 대비 약96% 달성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 및 개보수 지원으로 승마 인프라 확충

2 **(말산업특구)** 거점 육성 전략기지 조성을 위해 **3개 지역 지정**

3 **(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국가자격제도(3종) 운용

○ 양성기관 11개소 지정, 전문자격취득 299명 배출

4 **(표준모델정립)** 승마시설 설치 및 운영 모델 개발

○ 승마시설 설치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13)

* 농어촌형 승마시설, 재활승마센터, 외승로 설계 등

○ 노무관리, 사고예방 및 지역친화형 승마시설 운영방안 등 개발

3 말산업 경쟁력 강화

1 (승용마) 전문승용마 생산을 위한 **농가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승용마

- ▲ 우수한 승용마 생산·공급을 위해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77호** 육성
- ▲ 유소년용 포니 등 전문 승용마 생산을 위한 **번식마 공급('13~'16, 184두)**
- ▲ 거점별 전문승용마 **조련센터 5개소 지정 및 번식지원센터 4개소** 구축
- ▲ 승용마 생산농가 인공수정 지원 및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교육**(175회)**

2 (경주마) 생산·육성·유통체계 개선으로 **국산마 경쟁력 강화**

경주마

- ▲ 우수 씨수말 도입**(4두, 130억)**, 국산 종마선발 지원**(12두, 61억)**, 우수마 생산장려금 지급**(784농가, 123억)**으로 생산 경쟁력 제고
- ▲ 경매유통 장려금 지급**(114농가, 연간 3.3억)**으로 경매 활성화
  - 경매유통 비율 : ('11) 17.5% → ('16) 24.0

3 (건전경마문화 정착) 경마 관람환경 개선, 구매상한선 준수 강화, 국내 경주의 해외수출 및 국제경주 개최로 **경마 이미지 제고**

건전경마문화 정착

- ▲ 장외발매소 **전좌석 지정좌석제** 전환, 기초질서확립 캠페인('14~), 소액 구매 유도를 위한 **오토벳 운영** 등으로 건전레저 경마문화 정착 노력
- ▲ **국내 경주의 해외수출**로 이미지 개선
- ▲ **해외 경마대회 출전** 및 **국제경주 개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1 **(승마 대중화)** 학생승마체험 확대, 유소년 승마단 육성, 승마대회 지원 확대, 말문화 확산 등으로 **승마 저변 확대**

말 문화 축제 관람인원(누적 17만명)

▲ 페가수스 페스티벌('13) 0.4만명, 코리아승마페스티벌('14~'15) 1.5, 어린이 승마축제('15) 5.3, 말 문화공연('15) 0.3, 어린이 승마축제('16) 3.5, 통일말대축전('15년) 2, 말산업박람회('16) 4.8

❑ **(연관산업)** 말고기 인식개선, **국산마 해외수출 및 부산물 활용**

○ 시식회, 요리개발 등을 통한 **말고기 인식개선·소비촉진**

* 말고기 도축 : ('13) 921두 → ('14) 1,031 → ('15) 1,108 → ('16) 1,225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산 경주마 시범 수출**(11두, USD 141,600)

* 수출실적 : ('11) 3두(말레이) → ('12) 6두(말레이) → ('13) 2두(마카오)

○ **마분을 재활용**한 친환경 비료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12)

* 회사명 : 에코그린팜, 제품 : 마분활용퇴비 2종, 마분포함 인공용토 1종

참고 3 해외(프랑스) 말산업 발전 사례

❑ (말두수) 1995년을 기점으로 말 두수가 **상승세로 전환**

○ 20세기 동력기관의 발달로 인해 역(力)용말 지속 감소

○ 1970년 이후 경마와 말고기 소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말 두수는 감소

○ 1995년 이후, **정부의 말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포니를 이용한 승마 확산과 농촌을 기반으로한 체험승마** 등으로 말두수 급격히 **증가**

* 출처 : 2030 프랑스 말산업 전망(IFCE, 2012.10)

❑ (말산업) 경마, 승마, 레저, 작업, 말고기, 기타로 분류

* 출처 : 2030년 프랑스 말산업 전망(IFCE, 2012.10)

❑ 프랑스 말산업 현황(2012년 기준)

구분	승마인구	농촌관광승마	승마대회
승마 부문	• **스포츠 인기순위 3위** (축구-테니스-승마) - 여성 1위 스포츠 • **승마인구 200만(인구 3%)** (승마협회 자격자 70만명) - 성별 : 여성 83%, 남성 17% - 연령 : 주니어 67%, 시니어 33% - 기승 능력등급인증 22.5만명 • **승마클럽 8,600개** - 40가지 승마활동 • **이용 형태** - 관광 : 13% - 승마(Riding) : 37% - 유소년(Pony) : 50%	• **이용인구 : 1백만명** - 이용의향 : 인구의 53% • **관련 조직체 :2500개** - 승마관광센터 : 350개 - 승마길과 숙박시설 연계 체계 구축 - 농촌 기여 : 숙박, 식사, 쇼핑, 서비스 • **경관보존 : 전체 목초지의 5%사용(50만 ha)** - 사료 및 농작물 생산 토지 포함할 경우 200만 ha	• **대회일수 : 延 15,000일** - 주최자 수 : 2,500 - 참가 말두수 : 16만두 • **대회 수 : 11만개** - 국제대회 2천개 - 아마추어 대회 :3.5만개 • **참가자 : 延 170만명** - 국제대회 5.3만명 - 프로 대회 3,000명 • **누적관람객 : 8백만명**

* 출처 : Annual References(FFE, 2013), Horse Riding in France(FFE, 2013)

구분	말생산	경마	말고기
기타 부문	• **말두수 : 1백만 두** • **생산자 : 42,700명** • **생산농가 : 35,000개소** - 농가 80% : 암말 1-2두 보유 • **생산 용도별 비중** - 승마 34%, 역용 32%, 마차경주 16%, 평지경주 9%, 포니 7%, 당나귀 2% • **승용마 생산** - 생산자 60%가 선수용 생산 - 생산자 85%는 품종구별 안함 • **승용마 구매 목적** - 아마추어 대회 : 25% - 선수용 대회 : 5% - 레저·강습용 : 70%	• **매출액 세계 4위** - 2011년 100억 유로 매출 (1일 2,700만 유로) • **년 18,000경주(하루 50경주)** • **경주종류 및 매출비중** - 마차경주 : 62% - 평지경주 : 26% - 장애물경주 : 12%	• **1년 1인당 300g 소비** (소고기는 1일 1인당 112g) - 연간 20,000톤 소비(2009년) • **말고기 수출액(2012) : 3,317만불**(FAOSTAT) - 역용말 망아지로 생산 • **말고기 수입액(2012) : 9,841만불**(FAOSTAT) - 말고기 수입 2위 국가

* 출처 : Overview of the French Horse Industry(IFCE, 2013), FAOSTAT(2014)

❑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말산업 비교

구 분		프랑스(2013)	대한민국(2014)	비고
경마	매출액	세계 4위	세계 7위	유지
	경마수준	최상위(Part Ⅰ)	중하위(PartⅢ)	시급/중요
	베팅시스템	패리뮤추얼	패리뮤츄얼	동일
	수익금환류	말산업에 2.3% 환류	말산업에 1.8% 환류	시급/중요
	더러브렛생산	4,809두('13)	1,293두('13)	유지
	경주마 두수	9,130두('13)	3,133두('13)	유지
	주관기관	갤럽(국가기관)	마사회(공공기관)	유사
승마	엘리트	상위권	중위권	보통/보통
	유소년승마체계	세계 최고	없음	시급/중요
	승마인구	200만(3%)	4만(0.08%)	시급/중요
	유소년승마인구	100만(00%)	없음	시급/중요
	승용마	자국생산+수입	용도전환+수입	시급/중요
	승용마 두수	70만두	9,591두	보통/중요
	주관기관	FFE(승마협회)	마사회, 승마협회	보통/중요
마육	소비	300g/1인당・연간	3.5g/1인당・연간	보통/보통
	생산	생산+수입	용도전환활용	보통/보통
연관 산업	박람회	세계적 수준	국내 수준	시급/중요
	말장구	자체생산+수출	수입	보통/보통
	말사료	자체생산	수입	보통/중요
	사체처리	정부지원	개인처리	시급/중요
	말복지	체계화	미정립	보통/중요
산업 형태	고용창출	18만명	1.6만명	보통/중요
	경제기여	경마50%+승마50%	경마93.7%+승마 등6.3%	보통/중요
	정책추진	국가주도	국가주도	동일
	말유통	경매, 대회, 품평회	개별거래	시급/중요
주요 특징	말산업 특징	경마와 승마가 균형 잡힌 말산업	경마위주의 말산업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유소년 승마 수요증가 예상
	1인당 국민소득	4만 5천불	2만 8천불('13)	
	유소년 실태	유소년 승마를 통해 건강한 심신 유지	지나친 학습 매몰, 게임중독 등 부작용	

1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420,000	380,000	380,000	**336,150**	△43,850	△11.5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700 - 3733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환경자원과장(박홍식), 사무관(김동일)☎(044-201-235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사업기간	'13년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사료구매자금 : 융자 100%, 2년 일시상환, 1.8%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사료관련단체, 농협은행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사료구매자금지원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지원을 위한 사업비 336,150 백만원

▪ 구조조정사업으로 '18년 380,000백만원 대비 11.5%(43,850백만원) 감액

▪ 산출내역 : ('18) 7,600농가 × 50백만원 × 100% = 380,000백만원 → ('19) 6,723농가 × 50백만원 × 100%

* 지원조건 : 2년 일시상환(1.8%)

□ 지원 필요성

○ 축산농가들이 현금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

*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구매를 현금구매로 전환하여 이자부담(12~18%)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이 높은 지원방안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	**420,000**	**380,000**	**380,000**	**336,150**	**△43,850**	**△11.5**
▪ 농가사료구매자금 (산출근거)	420,000	380,000 (7,600농가×50백만×100%)	380,000 (7,600농가×50백만×100%)	336,150 (6,723농가×50백만×100%)	△43,850	△11.5
□ 비목(합계)	**420,000**	**380,000**	**380,000**	**336,150**	**△43,850**	**△11.5**
○ 기타융자금(450-04)	420,000	380,000	380,000	336,150	△43,850	△11.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08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한시사업)
- '13년부터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시
- 국제곡물 폭등 및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별도 편성 지원('13년 한시사업)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2,000	5,000	4,000	4,500	4,200	3,8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000** ( )	- ( )	- ( )	4,000 ( )	**4,000** ( )	- ( )	- ( )
'16년	**4,500** ( )	- ( )	- ( )	4,500 ( )	**4,500** ( )	- ( )	- ( )
'17년	**4,200** ( )	- ( )	- ( )	4,200 ( )	**4,200**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지원계획 통보(농식품부 → 시·도(시·군) → 사업희망자) →
② 사업신청서류 제출(사업희망자 → 시·도(시·군)) →
③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시·도(시·군) → 사업대상자, 대출취급기관) →
④ 자금집행(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자)
⑤ 사업추진 보고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농식품부)

11.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9,162	6,000	3,000	**3,000**	-	-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700 - 3733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조재성, 201-23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촉진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소비자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 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기간	'15～'22
총사업비	-억원
사업규모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
지원조건	지자체자본보조 30%, 융자 30%(연이율 2~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40%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지자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0백만원×보조 30%, 융자 30%×5개소

□ 지원 필요성

○ 직거래 판매장 설치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영연방 FTA 이행에 따른 관세감축 이행기간 동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산 시장 점유율 확대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9,162**	**6,000**	**3,000**	**3,000**	**-**	**-**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산출근거)	5,031	**3,000** (10개×1,000백만×보조30%)	**1,500** (5개×1,000백만×보조30%)	**1,500** (5개×1,000백만×보조30%)	-	-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산출근거)	4,131	**3,000** (10개×1,000백만×융자30%)	**1,500** (5개×1,000백만×보조30%)	**1,500** (5개×1,000백만×보조30%)	-	-
□ 비목(합계)	**9,162**	**6,000**	**3,000**	**3,000**	**-**	**-**
○ 민간자본보조(320-07)	1,500	0	0	0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531	3,000	1,500	1,500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4,131	3,000	1,500	1,5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영연방 FTA 보완대책('14.9월) 수립시 한우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년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 신규 반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	-	120	120	80	6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이월('15~'16) : 설계변경 및 건축공사 허가지연 등

○ 불용('15~'17) :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한우 소비감소 및 시장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업 신청 저조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0** (60)	- ( )	- ( )	120 (60)	**54** (13)	28 (28)	38 (19)
'16년	**120** (60)	28 (28)	△4 (△4)	144 (84)	**21** (18)	50 (25)	73 (19)
'17년	**80** (40)	50 (25)	0 ( )	130 (65)	**92** (18)	0 ( )	38 (1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 상임위, 예결위)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집행관리 개선 필요

- 사업대상자 확대 및 진입장벽 완화 등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성과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사업효과 개선 추진

○ ('16년 감사원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한우직거래 판매장 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요구액을 적정수준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18.4)

○ ('18년 상임위, 예결위 '17년 결산시 시정요구)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중복예방 및 집행부진 개선 필요

- 농협의 축산물플라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범위 및 집행 부진 현상 개선을 위하여 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 신청	11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가 지자체(사업시행주체)에 신청
⇓			
지원대상자 평가·선정	12월	지자체·농식품부	· 지자체는 신청서 실사·확인을 거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완료 보고 및 완료 점검	연말	생산자단체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비 정산	연말	지자체·농식품부	· 지자체는 사업 완료를 확인하고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 지급

12.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	-	1,040	1,040	1,040	-	-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900 - 3941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정책과장(최명철), 서기관(권우순)☎(044-201-232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닭 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등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토종닭은 소규모 농가가 많고, 도계장 이용 불편 등으로 전통시장에 산닭 유통·판매 중이나 체계적인 방역관리 미흡

  * '23년부터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의 산닭 유통 원칙적 금지 예정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현재 산닭 유통비율이 총 출하두수의 36% 수준임을 감안,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의 토종닭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 지원
사업기간	'18~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소규모 도계장 10개소 설치 지원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소규모 토종닭 도계장 설치 지원 : 1,040백만원

○ 전통시장, 산닭 판매점 등 거점단위 설치 10개소 : 346.5백만원×10개소×0.3

○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소규모 도계장 건축비,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40백만원

- '17.9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해 '18년부터 반영
- 산출내역 : 346.5백만원*/개소 × 10개소

* 도축시설비 121백만원+폐수처리시설비 89.1백만원+건축비 136.4백만원

▪ 현재 산닭 유통비율은 총 출하수수 41,143천수 중 36% 수준

□ 지원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전통시장 등에서 토종닭 산닭 유통 또는 불법 도계로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상존

- 토종닭은 소규모 농가가 많고, 도계장 이용 불편 등으로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서 산닭으로 유통·도계·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연간 소비되는 토종닭 43백만마리 중 도계 유통물량은 65%(28백만마리), 산닭 유통물량은 35%(15백만마리)로 추정

⇒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3년부터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의 산닭 유통 원칙적 금지 예정**(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 '17.9)

○ (대책) 생산자협회와 협조, 불법도계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 지역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필요

- 토종닭 포장유통 확대를 통해 방역사각지대 해소 및 먹거리 위생 안전성 강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소규모 도계장 지원**	-	**1,040**	**1,040**	**1,040**	-	-
▪ 도축 시설 (산출근거)	-	363 (10개×121백만×30%)	363 (10개×121백만×30%)	363 (10개×121백만×30%)	-	-
▪ 폐수처리 시설 (산출근거)	-	268 (10개×89.1백만×30%)	268 (10개×89.1백만×30%)	268 (10개×89.1백만×30%)	-	-
▪ 건축비 (산출근거)	-	409 (10개×136.4백만×30%)	409 (10개×136.4백만×30%)	409 (10개×136.4백만×30%)	-	-
□ **비목**(합계)	-	**1,040**	**1,040**	**1,040**	-	-
○지자체자본보조 (330-03)	-	1,040	1,040	1,04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17.9)

*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를 위해 소규모도계장(이동식 도계장 포함) 설치 지원 추진

○ 추진경위

- '16~'17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전통시장 등의 토종닭 등 산 가금 불법 도계 유통으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추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	-	-	-	1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연간 30만수 미만의 물량을 처리하는 소규모 도계장(인정식조처리장)에 관한 법률상 특례를 적용하여 2,823개소 운영 중(전체 도계장의 94.2%)

○ (미국)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 시장 관련 판매업자, 거래업자, 농장에

대해 허가·등록하여 관리하는 '살아있는 가금 유통 관리 시스템'(LBMS; Live Bird Marketing System) 운영

- AI 검사, 정기점검, 12개월 거래기록 보관, 케이지와 운반차량 청소 및 소독, 교육이수, 방역기준 준수, 1농장에서 1시장으로 운송 등 조건으로 LBMS 시스템에 가입 가능

- LMBS 이외에 미국은 넓은 국토 특성상 도계장이 없는 경우 오지(奧地) 또는 원거리의 경우 이동식 도계장 허용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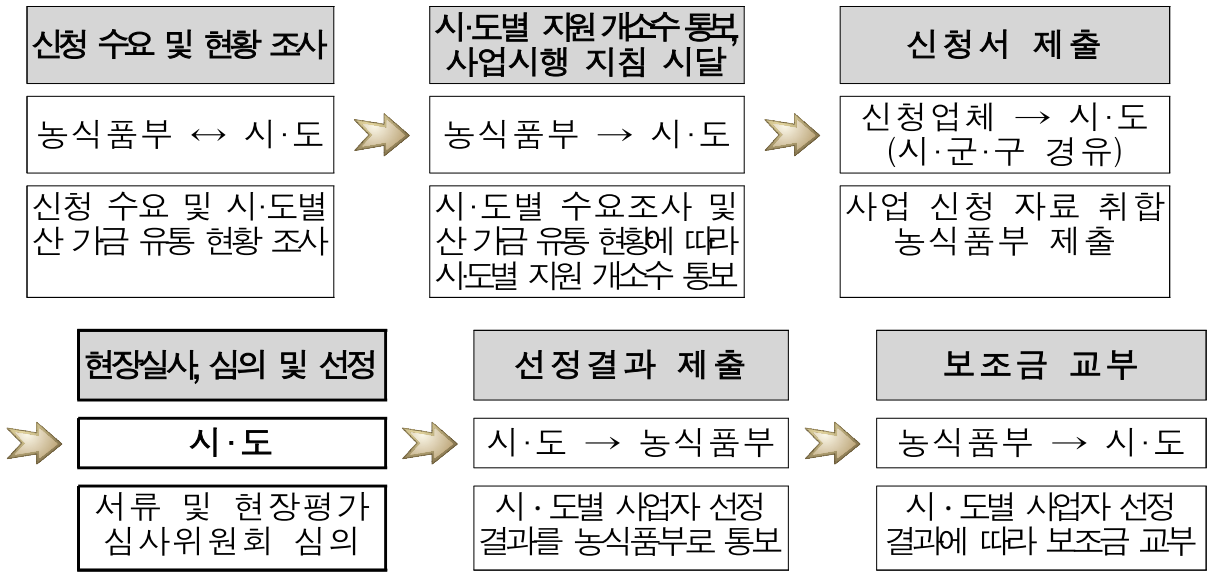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2,467	97,093	96,828	**87,384**	**△9,444**	**△10.8**

* 사업코드 : 20-31-0-100-101-3700-3735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환경복지과장(박홍식), 사무관(이현)☎(044-201-235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DDA,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응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사일리지제조·운송비, 종자구입 지원, 초지조성,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 가공·유통시설, 품질관리, 전문단지 지원 ○ 장거리유통비 및 교육홍보 지원 ○ 기계·장비, 초지 기반조성, 원료구매 및 가공·유통시설 운영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지원
사업기간	'97～계속
총사업비	14,111억원 ('18년까지 기투자액)
사업규모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108천ha, 가공·유통시설 1개소, 전문단지 24천ha, 기계장비 175set, 초지조성 63.13ha 등

구 분	내 용	
지원조건	○ 조사료생산	- 사일리지제조·운송비 : 지자체 / 국고 30%, 지방비 60%, 자담 10%
		- 종자구입 지원 : 지자체 / 국고30%, 자담70%
		- 초지조성·보완 : 지자체 / 국고50%, 융자50%
		- 농가 기계·장비 : 지자체 / 융자80%, 자담 20%, - 경영체 기계·장비 : 지자체 / 국고10%, 지방비30%, 자담30%, 융자30% *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 가공·유통시설 : 지자체 / 국고30%, 지방비30%, 자담40% - 품질관리 :지자체 / 국고50%, 지방비50%
	○ 조사료전문단지	- (사일리지) 지자체 / 국고50, 지방비40%,자담10% - (종자구입비) 지자체 / 국고40, 자담60% - (기계·장비) 지자체 / 국고20%, 지방비 30%, 자담20%, 융자30% - (퇴·액비)지자체 / 국고40%, 지방비60% - (입모중 파종) 지자체 / 국고30, 지방비30%, 자담40%
	○ 조사료공급활성화 지원	- 교육·홍보 : 농협경제지주 / 국고100%
		- 장거리유통비 : 농협경제지주 / 국고40%, 자담60%
	○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 초지조성 : 지자체 / 국고50%, 융자50% - 컨설팅 : 지자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담 30% - 기계·장비 : 지자체 / 국고10%, 지방비30%, 자담30%, 융자30% *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기반시설 : 지자체 / 융자80%, 자담20% * 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 - 초지조성부담금 : 지자체 / 국고40%, 지방비30%, 자담30% * 국·공유지만 해당 - 교육·홍보 : 농협·친환경축산협회 등 / 국고100%
	○ 원료구매·운영자금(융자)	- 원료구매운영자금 : 지자체 / 융자100% * 연리 2%, 2년거치 일시상환
사업시행주체	시·도, 시·군, 농축협,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총계> 87,384백만원

<보조> : 76,577백만원

○ 조사료생산 : 54,339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41,228백만원

· 사료작물 88.36천ha(재배면적)×18톤(ha당생산량)×60천원(지원단가)×30% = 28,628백만원

· 총체벼 20천ha(재배면적)×35톤(ha당생산량)×60천원(지원단가)×30% = 12,600백만원

- 종자구입 지원 : 10,800백만원

· 종자 : 300천ha(재배면적)×3천원(kg당가격)×40kg(파종량)×30% = 10,800백만원

- 초지조성

· 산출내역 : 40.13ha(소요량)×3,040천원(ha당 지원단가)×50% = 61백만원

-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 사료작물 기계·장비 110set(소요량)×150백만원(단가)×10% = 1,650백만원

· 총체벼 기계·장비 30set(소요량)×200백만원(단가)×10% = 600백만원

○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 2,603백만원

- 가공·유통시설 지원

· 산출내역 : 1개소(소요량)×30억원(개소당 지원규모)×30% = 900백만원

- 조사료 품질관리

· 분석장비 : 87백만원(단가)×10대(지원물량)×50% = 435백만원

· 분석비용 : 42백만원(단가)×60.38개소(개소수)×50% = 1,268백만원

○ 조사료 전문단지 구축 : 17,138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

· 산출내역 : 24천ha×18톤(ha당 생산량)×60천원(단가)×50% = 12,960백만원

- 종자구입

· 산출내역 : 24천ha×3천원(kg당 단가)×40kg(ha당 파종량)×40% = 1,152백만원

- 기계·장비

· 산출내역 : 15set×300백만원(지원단가)×20% = 900백만원

- 퇴액비

· 산출내역 : 24천ha×20만원(ha당 액비기준단가)×1.1회×40% = 2,112백만원

- 입모중파종

· 산출내역 : 283ha(재배면적) ×165천원(무인헬기 이용단가/ha)×30% = 14백만원

○ 조사료 공급활성화 : 2,144백만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 산출내역 : 80천톤(소요량)×60천원(운송비단가)×40% = 1,920백만원

- 교육·홍보(조사료 재배 확대 및 품질 제고 관련)

· 지자체담당공무원 워크샵, 사일리지 품평회, 홍보리후렛 제작, 지역순회교육 등 추진 = 100백만원

· 조사료 생산·이용 우수 사례집 발간, 생산·이용자 맞춤형 교육 = 124백만원

○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 : 353백만원

- 초지조성(산지생태)

· 산출내역 : 2.3개소×10ha(소요량)×6,600천원(ha당 단가)×50% = 76백만원

- 초지조성부담금

· 산출내역 : 6ha(소요량)×10백만원(지원한도)×40% = 24백만원

-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 산출내역 : 15백만원×1.33개소×40% = 8백만원

- 기계장비(산지생태)

· 산출내역 : 3set×150백만원×10% = 45백만원

- 교육·홍보(산지생태)

· 산지생태축산 유통 차별화 등을 위한 교육·홍보비 = 200백만원

<융자> : 10,807백만원

○ 조사료 생산·가공 및 운영(융자) : 10,401백만원

- 기계·장비(농가)

· 산출내역 : 20set(소요량)×90백만원(지원단가)×80% = 1,683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2%, 2년거치 3년상환

- 기계·장비(경영체)

· 사료작물 기계·장비 110set(소요량)×150백만원(단가)×30% = 4,950백만원

· 총체벼 기계·장비 30set(소요량)×200백만원(단가)×30% = 1,800백만원

- 기계·장비(전문단지)

· 산출내역 : 15set(소요량)×300백만원(지원단가)×30% = 1,350백만원

- 초지조성

· 산출내역 : 40ha(소요량)×3,040천원(ha당 지원단가)×50% = 61백만원

- 원료 구매 및 가공·유통시설 운영비

· 산출내역 : 2개소×400백만원×100% = 800백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 406백만원

- 초지조성(산지생태)

· 산출내역 : 2.3개소×10ha(소요량)×6,600천원(ha당 단가)×50% = 76백만원

- 기계장비(산지생태)

· 산출내역 : 3set×150백만원×30% = 135백만원

- 기반시설

· 산출내역 : 112.5백만원×2.17개소×80% = 19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등 축산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필요

○ 고품질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국고보조율 인상, 안정적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문단지 조성확대 및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평가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2,467	97,093	97,093	97,093	△9,709	△10.0
<보조>	80,643	80,435	80,435	80,435	△3,858	△4.8
▪조사료생산	51,911	55,978	55,978	55,978	△1,638	△2.9
- 사일리지제조운송비	35,749	▪ 사일리지 41,463 (사료작물 89천ha×18톤×60천원×30%=28,863백만원) + (총체벼 21천ha×35톤×60천원×30%=12,600백만원)	▪ 사일리지 41,463 (사료작물 89천ha×18톤×60천원×30%=28,863백만원) + (총체벼 21천ha×35톤×60천원×30%=12,600백만원)	▪ 사일리지 41,229 (사료작물 88천ha×18톤×60천원×30%=28,629백만원) + (논타작물 21천ha×35톤×60천원×30%=12,600백만원)	△234	△0.8
- 종자지원	11,954	▪ 종자구입 지원10,800 (300천ha×3천원×40kg×30%)	▪ 종자구입 지원10,800 (300천ha×3천원×40kg×30%)	▪ 종자구입 지원10,800 (300천ha×3천원×40kg×30%)	-	-
- 초지조성	608	▪ 초지조성(보완) 365 (240ha×3,040×50%)	▪ 초지조성(보완) 365 (240ha×3,040×50%)	▪ 초지조성(보완) 61 (40ha×3,040×50%)	-	-
- 경영체 기계장비지원	3,600	▪ 경영체 기계장비 3,350 (사료작물170set×150백만원×10%)+(총체벼40set×200백만원×10%)	▪ 경영체 기계장비 3,350 (사료작물170set×150백만원×10%)+(총체벼40set×200백만원×10%)	▪ 경영체 기계장비 2,250 (사료작물110set×150백만원×10%=1,650백만원)+(논타작물30set×200백만원×10%=600백만원)	△1,100	△32.8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6,737	2,839	2,839	2,603	△236	△8.3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가공유통시설 지원	4,500	▪ 가공·유통 1,080 (1.2개소×30억원×30%)	▪ 가공·유통 1,080 (1.2개소×30억원×30%)	▪ 가공·유통 900 (1개소×30억원×30%)	△180	△16.7
- 조사료 품질관리	1,759	▪ 품질관리 1,759 - 분석장비 436 (87백만원×10대×50%) - 분석비용 1,323 (42백만원×63개소×50%)	▪ 품질관리 1,759 - 분석장비 436 (87백만원×10대×50%) - 분석비용 1,323 (42백만원×63개소×50%)	▪ 품질관리 1,703 - 분석장비 435 (87백만원×10대×50%) - 분석비용 1,268 (42백만원×61개소×50%)	△56	△3.2
▪ 전문단지구축 사업	17,344	17,604	17,604	17,138	△466	△2.6
- 사일리지제조	10,800	▪ 사일리지 11,880 (22,000ha×18톤×60천원×50%)	▪ 사일리지 11,880 (22,000ha×18톤×60천원×50%)	▪ 사일리지 12,960 (24,000ha×18톤×60천원×50%)	1,080	9.1
- 종자구입	1,296	▪ 종자 1,056 (22,000ha×3천원×40kg×40%)	▪ 종자 1,056 (22,000ha×3천원×40kg×40%)	▪ 종자 1,152 (24,000ha×3천원×40kg×40%)	96	9.1
- 기계장비(전문단지)	1,800	▪ 기계장비 900 (15set×300백만원×20%)	▪ 기계장비 900 (15set×300백만원×20%)	▪ 기계장비 900 (15set×300백만원×20%)	-	-
- 퇴액비	3,200	▪ 퇴액비 3,520 (22,000ha×20만원×2회×40%)	▪ 퇴액비 3,520 (22,000ha×20만원×2회×40%)	▪ 퇴액비 2,112 (24,000ha×20만원×1.1회×40%)	△1408	△40.0
- 입모중파종	248	▪ 입모중파종 248 (5,000ha×165천원×30%)	▪ 입모중파종 248 (5,000ha×165천원×30%)	▪ 입모중파종 14 (282ha×165천원×30%)	△234	△94.4
▪ 조사료 공급 활성화	2,994	2,384	2,384	2,144	△240	△10.1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2,880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2,160 (90천톤×60천원×40%)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2,160 (90천톤×60천원×40%)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1,920 (80천톤×60천원×40%)	△240	△11.1
- 교육홍보(조사료)	114	▪ 교육홍보 224	▪ 교육홍보 224	▪ 교육홍보 224	-	-
▪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	2,135	1,530	1,530	353	△1177	△76.9
- 초지조성	1,015	▪ 초지조성(신규) 660 10개소×20ha×6,600천원×50%	▪ 초지조성(신규) 660 10개소×20ha×6,600천원×50%	▪ 초지조성(신규) 76 2개소×10ha×6,600천원×50%	△584	△88.5
- 초지조성부담금	400	▪ 초지조성부담금 400 (5개소×20ha×10백만원×40%)	▪ 초지조성부담금 400 (5개소×20ha×10백만원×40%)	▪ 초지조성부담금 24 (1개소×6ha×10백만원×40%)	△376	△94.0
-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120	▪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120 (15백만원×20개소×40%)	▪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120 (15백만원×20개소×40%)	▪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8 (15백만원×1.33개소×40%)	△112	△93.3
- 기계장비(산지생태)	300	▪ 기계장비(산지생태) 150 (10set×150백만원×10%)	▪ 기계장비(산지생태) 150 (10set×150백만원×10%)	▪ 기계장비(산지생태) 45 (3set×150백만원×10%)	△105	△70.0
- 교육홍보(산지생태)	300	▪ 교육·홍보(산지생태) 200 (200백만원×1식)	▪ 교육·홍보(산지생태) 200 (200백만원×1식)	▪ 교육·홍보(산지생태) 200 (200백만원×1식)	-	-
▪ 보리새싹 타당성 조사	-	▪ 보리새싹 타당성 조사 100 (100백만원×1식)	▪ 보리새싹 타당성 조사 100 (100백만원×1식)	-	△100	순감
<융자>	21,824	**16,658**	**16,393**	**10,807**	**△5,586**	**△34.1**
▪ 조사료 생산가공 및 운영	19,009	15,998	15,998	10,072	△4,247	△29.0
- 기계장비(농가)	3,501	▪ 기계장비(농가) 1,683 (23.38set×90백만원×80%)	▪ 기계장비(농가) 1,683 (23.38set×90백만원×80%)	▪ 기계장비(농가) 1,440 (20set×90백만원×80%)	△243	△14.5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계장비(경영체)	10,800	▪ 기계장비(경영체) 10,050 (사료작물170set×150백만원×30%)+(총체벼40set×200백만원×30%)	▪ 기계장비(경영체) 10,050 (사료작물170set×150백만원×30%)+(총체벼40set×200백만원×30%)	▪ 기계장비(경영체) 6,750 (사료작물110set×150백만원×30%)+(총체벼30set×200백만원×30%)	△3,300	△32.8
- 기계장비(전문단지)	2,700	▪ 기계장비(전문단지) 1,350 (15set×300백만원×30%)	▪ 기계장비(전문단지) 1,350 (15set×300백만원×30%)	▪ 기계장비(전문단지) 1,350 (15set×300백만원×30%)	-	-
- 초지조성	608	▪ 초지조성 365 (240ha×3,040천원×50%)	▪ 초지조성 365 (240ha×3,040천원×50%)	▪ 초지조성 61 (40ha×3,040천원×50%)	△304	△83.3
- 원료구매 및 가공·유통 시설 운영비	1,400	▪ 원료구매 운영자금 1,200 (3개소×400백만×100%)	▪ 원료구매 운영자금 1,200 (3개소×400백만×100%)	▪ 원료구매 운영자금 800 (2개소×400백만×100%)	△400	△33.3
▪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	2,010	2,010	1,745	406	△1,339	△76.7
- 초지조성	660	▪ 초지조성(신규) 660 10개소×20ha×6,600천원×50%	▪ 초지조성(신규) 660 10개소×20ha×6,600천원×50%	▪ 초지조성(신규) 76 2.3개소×10ha×6,600천원×50%	△584	△88.5
- 기계장비(산지생태)	450	▪ 기계장비(산지생태) 450 (10set×150백만원×30%)	▪ 기계장비(산지생태) 450 (10set×150백만원×30%)	▪ 기계장비(산지생태) 135 (3set×150백만원×30%)	△315	△70.0
- 기반시설	900	▪ 기반시설 900 (112.5백만원×10개소×80%)	▪ 기반시설 630 (112.5백만원×7개소×80%)	▪ 기반시설 195 (112.5백만원×2.17개소×80%)	△435	△69.0
□ 비목(합계)	**102,467**	**97,093**	**96,828**	**87,384**	**△9,709**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3,294	2,584	2,584	2,344	△240	△9.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7,149	72,271	72,271	70,138	△2,132	△3.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200	5,480	5,480	4,095	△1,385	△25.3
○ 기타민간융자금(450-04)	21,824	16,658	16,393	10,807	△5,586	△34.1
○ 연구용역비(260-01)	-	100	100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추진경위

- '69년 : 초지법 제정으로 초지조성, 답리작, 전작, 사료작물 재배 등 단위사업으로 추진
- '94년 :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포함되어 지원
- 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배합사료(농후사료) 위주의 가축사료급여로 인해 가축질병 발생과 경제수명 단축 등 문제점 대두

  * 반추가축은 반추 및 영양대사를 위해 양질의 조사료 급여가 필요

  *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볏짚위주 급여)함에 따라 농가의 조사료 확보 어려움

- '97년부터 국내 부존자원 활용도 제고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확대 추진
- '11년, 조사료 증산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지원규모 확대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240	1,540	1,577	1,363	1,196	1,043	971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지방재정 부담,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가공유통시설 운영자금 융자 수요 부족, 산지생태목장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한 예산 수요 부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63 ( )	( )	△10 ( )	1,353 ( )	1,087 ( )	( )	265 ( )
'16년	1,196 ( )	( )	△6 ( )	1,190 ( )	937 ( )	( )	100 ( )
'17년	1,043 ( )	( )	△18 ( )	1,025 ( )	941 ( )	( )	1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 사업신청서·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시·군) →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식품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14. 가축분뇨처리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가축분뇨처리지원	109,045	92,618	92,618	**83,345**	**△9,273**	**△10.0**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700 ~ 3735
* 국정과제코드 : 2-12-3(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환경자원과장(박홍식), 사무관(김상돈)☎(044-201-23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기간	'91년 ~ 계속
총사업비	- 억원('18년까지 기투자액 22,607억원*) * 가축분뇨 20,678, 자연순환 2,855
사업규모	-
지원조건	국비(20~100%) 지방비(20~50%), 융자(20~70%), 자부담(10~30%)
사업시행주체	시·도(시·군), 농축협,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축산악취개선 : 축산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 37,704백만원**

▪ 산출내역 : 37,704백만원

- 개별처리시설 : 32,288백만원
  · 퇴액비화 ['19] 550개소 × 30백만원 × 80%(국비 20%, 융자 60%) = 13,200백만원
  · 정화개보수 ['19] 60개소 × 200백만원 × 80%(국비 20%, 융자 60%) = 9,600백만원
  · 악취저감시설 ['19] 7개소 × 130백만원 × 80%(국비 20%, 융자 60%) = 728백만원
  · 광역축산악취개선 ['19] 3개소 × 3,500백만원 × 80%(국비 20%, 융자 60%) = 8,400백만원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19] 45개소 × 20백만원 × 40%(국비 40%) = 360백만원
- 정착촌분뇨처리 ['19] 6개소 × 30백만원 × 70%(국비 50%, 융자 20%) = 126백만원
- 액비저장조 ['19] 150개소(개보수 1,521개소) × 20백만원(9)× 20%(국비 20%) = 3,338백만원
- 퇴액비유통전문조직 ['19] 29개소 × 200백만원 × 30%(국비 30%) = 1,740백만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 : 213백만원
  · 성분분석기 ['19] 5개 × 37백만원 × 50%(국비 50%) = 93백만원
  · 부숙도판정기 ['19] 8개소 × 30백만원 × 50%(국비 50%) = 120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350백만원**

▪ 산출내역 : 14,350백만원

- 퇴·액비화 : 7,000백만원
  · ['18] 3개소 × 3,000백만원 × 70%(국비 40%, 융자 30%) × 50% = 3,150백만원
  · ['19] 1개소 × 3,000백만원 × 70%(국비 40%, 융자 30%) × 50% = 1,050백만원
  · [개보수] 8개소 × 500백만원 × 70%(국비 40%, 융자 30%) = 2,800백만원
- 에너지화 : 7,350백만원
  · ['18] 2개소 × 7,000백만원 × 70%(국비 50%, 융자 20%) × 50% = 4,900백만원
  · ['19] 1개소 × 7,000백만원 × 70%(국비 50%, 융자 20%) × 50% = 2,450백만원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 퇴비생산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개소 × 600백만원 × 국고 50%(국비 20%, 융자30%) = 3,000백만원

○ **액비살포비 : 액비살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7,100백만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국고 50%(국비 50%) × 71,000ha = 7,100백만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조직체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17,413백만원**

▪ 산출내역 : 12개소 × 2,073백만원 × 국고 70%(융자) = 17,413백만원

○ **축산악취컨설팅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자원화 조직체 관리 및 교육홍보를 위한 사업비 348백만원**

▪ 산출내역 : 348백만원 × 국고 100%(국비100%) = 348백만원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 3,430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 사업비 등 3,430백만원 × 국고 100%(국비100%) = 3,4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온난화 등에 대비

-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등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가축분뇨처리지원	109,045	92,618	92,618	83,345	△9,273	△10.0
○ 축산악취개선	45,447	44,659	44,659	37,704	△6,955	△15.6
▪ 개별처리시설	37,131	36,808	36,808	32,288	△4,520	△12.3
- 퇴액비화	11,760	14,520 605개소×3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14,520 605개소×3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13,200 550개소×3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1,320	△9.1
- 정화개보수	12,800	12,800 80개소×20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12,800 80개소×20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9,600 60개소×20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3,200	△25
- 악취저감시설	2,808	728 7개소×13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728 7개소×13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728 7개소×13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	-
- 광역축산악취개선	9,411	8,400 3개소×3,50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8,400 3개소×3,50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8,400 3개소×3,500백만원×80% * 국비20%, 융자60	-	-
-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352	360 45개소×20백만원×40% * 국비40%	360 45개소×20백만원×40% * 국비40%	360 45개소×20백만원×40% * 국비40%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정착촌분뇨처리	588	**294** 14개소×30백만원×70% * 국비50%,융자20	**294** 14개소×30백만원×70% * 국비50%,융자20	**126** 6개소×30백만원×70% * 국비50%,융자20	△168	△57.1
▪ 액비저장조	5,595	**5,200** *국비20%	**5,200** *국비20%	**3,338** *국비20%	△1,682	△35.8
▪ 액비유통센터	1,800	**1,800** 30개×2억원×30% * 국비30%	**1,800** 30개×2억원×30% * 국비30%	**1,740** 29개×2억원×30% * 국비30%	△60	△0.3
▪ 성분분석기	108	**167** 9개×37백만×50% * 국비50%	**167** 9개×37백만×50% * 국비50%	**93** 5개×37백만×50% * 국비50%	△74	△44.3
▪ 부숙도판정기	135	**300** 20개×30백만×50% * 국비50%	**300** 20개×30백만×50% * 국비50%	**120** 8개×30백만×50% * 국비50%	△180	△60.0
▪ 유해가스측정기	90	**90** 150개×1.2백만×50% * 국비50%	**90** 150개×1.2백만×50% * 국비50%	-	-	-
○ 공동자원화시설	19,600	**10,850**	**10,850**	**14,350**	3,500	32.3
▪ 퇴·액비화	7,350	**5,950** ['18]3개×3,000백만원×70%×50%=3,150 [개보수]8개×500백만원×70%=2,800 *국비40%, 융자30	**5,950** ['18]3개×3,000백만원×70%×50%=3,150 [개보수]8개×500백만원×70%=2,800 *국비40%, 융자30	**7,000** ['18]3개×3,000백만원×70%×50%=3,150 ['19]1개×3,000백만원×70%×50%=1,050 [개보수]8개×500백만원×70%=2,800 *국비40%, 융자30	△1,050	△17.7
▪ 에너지화	12,250	**4,900** ['18]2개×70억원×70%×50%=4,900 *국비50%, 융자20	**4,900** ['18]2개×70억원×70%×50%=4,900 *국비50%, 융자20	**7,350** ['18]2개×70억원×70%×50%=4,900 ['19]1개×70억원×70%×50%=2,450 *국비50%, 융자20	2,450	50.0
○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4,200	**3,900** 13개×600백만원×50% *국비20%, 융자30	**3,900** 13개×600백만원×50% *국비20%, 융자30	**3,000** 10개×600백만원×50% *국비20%, 융자30	△900	△30.0
○ 액비살포비	7,934	**7,934** 79,340ha×20만원×50% *국비50%	**7,934** 79,340ha×20만원×50% *국비50%	**7,100** 71,000ha×20만원×50% *국비50%	△834	△11.0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8,900	**22,000**	**22,000**	**17,413**	△4,587	△20.9
○ 축산악취컨설팅	346	**348** *국비100%	**348** *국비100%	**348** *국비100%	-	-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2,708	**2,927** *국비100%	**2,927** *국비100%	**3,430** *국비100%	503	17.2
□ 비목(합계)	109,045	92,618	92,618	83,345	△9,273	△10.0
○ 민간이전(320)	3,054	3,275	3,275	3,778	503	15.4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934	7,934	7,934	7,100	△834	△10.5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2,235	25,699	25,699	24,172	△1,527	△5.9
○ 민간융자금(450-04)	65,822	55,710	55,710	48,295	△7,415	△13.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가축분뇨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신고규모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지원('91년부터)
- 농림부·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마련('04.11)
- 가축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06.7)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07.6)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09.9)
- 국정과제, 녹색뉴딜사업, 신성장동력사업 등으로 채택('08, '09)
-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4)
- 국정과제,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채택('13.5)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 대책('16.12)
- 국정과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채택('17.7)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가축분뇨처리시설	853	969	877	917	813	706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24	310	279	281	277	220
합 계	1,077	1,279	1,156	1,198	1,090	92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년 이·불용 : 15,012백만원

- (불용) 자원화조직체 관리(6백만원) : 세부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 (이월) 공동자원화(에너지)시설(15,006백만원) : '15년 사업량 3개소중 대상자 2개소 1차년도 사업비 15,006백만원 이월

○ '16년 이·불용 : 18,935백만원

- (불용) 액비저장조(905백만원) : 세부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액비유통센터(60백만원) : 세부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380백만원) : 세부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자연순환농업활성화(5,650백만원) : 융자 대출담보 부족으로 불용, 공동자원화사업(8,769백만원) : 사업대상자 인허가 등 행정절차 미완료에 따른 '15년 이월자금 불용
- (이월) 공동자원화(에너지)시설(3,171백만원) : '16년 사업량 5개소 중 대상자 5개소 1차년도 사업비 3,171백만원 이월

○ '17년 이·불용 : 17,308백만원

- (불용)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644백만원) : 대출담보 부족 등, 공동자원화(2,445백만원) : 보조·융자 매칭 잔액 발생, 자연순환농업활성화(14,219백만원) : 대출담보 부족 등에 따른 17,308백만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56** ( )	( )	( )	1,156 ( )	**1,006** ( )	150 ( )	- ( )
'16년	**1,198** ( )	150 ( )	( )	1,348 ( )	**1,159** ( )	32 ( )	158 ( )
'17년	**1,090** ( )	32 ( )	( )	1,122 ( )	**949** ( )	- ( )	17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적정한 보조비율을 검토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13년 결산 검토보고서, '14.6월)

○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공동자원화율 제고를 위해 해당 설치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15년 결산 상임위 검토, '16.7월)

○ '16년 정부안은 실집행 부진에 따라 5,600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상임위 예결위 심의 과정 중 사업규모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4,100백만원 추가 감액

- 실집행률을 고려하되, '15년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내년도 실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16년 예산안 일부조정(△4,100백만원)

○ '17년 예산 예결위 심의 과정 중 '16년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내년도 실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17년 예산안 조정(△2,100백만원)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기획재정부) : 68(미흡)/지출구조조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 신청	'18.2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가 시 · 군 · 구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내용 검토 · 심의	'18.3	시·군, 시·도	·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대상자 선정		농정심의회	
⇓			
사업신청	'18.4	시·군, 시·도	·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 군 → 시 · 도 → 농식품부)
⇓			
예산배정	'19.1	농식품부, 시·도, 시·군,	· 예산배정(농식품부 → 시 · 도 → 시 · 군)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19.3	시·군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 · 군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19.3	농식품부, 시·군, 시·도, 사업대상자	·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 · 군 → 시 · 도 → 농식품부) · 교부결정(농식품부 → 시 · 도 → 시 · 군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	‘19.4-12	사업대상자, 시・군	・보조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시공전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이행
⇓			
시공업체 선정・착공	‘19.4-12	사업대상자	・보조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후 착공
⇓			
준공검사	‘19.4-12	시・군	・보조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완료후 허가청(건축・환경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이행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19.4-12	사업대상자	・허가청의 허가・신고 이행후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정산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및 보조금 집행	‘19.4-12	시・군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 검정・정산후 보조금 집행

참고 관련 통계 및 참고사항

□ **(발생)** 가축분뇨 발생량은 **4,846만톤**이며('17), 이중 **돼지 분뇨가 39.5%** (1,915만톤)**으로** 가장 많고, **한육우 31.0%**(1,505만톤), 닭14.6% 순임

○ **발생량(만톤)** : ('13)4,724 → ('14)4,623 → ('15)4,653 → ('16)4,699 → ('17) 4,846

축종별 발생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
사육두수(천마리)	202,067	3,009	413	10,514	161,207	26,924
발생량(천톤)* (점유율)	48,460 (100)	15,046 (31.0)	5,677 (11.7)	19,151 (39.5)	7,061 (14.6)	1,525 (3.2)

※ 사육두수 : 가축통계('17년 1~4분기 평균), 기타가축('16년 12월) 사육두수 기준으로 산출

* 축종별 분뇨발생량(1일/두) : 한우 13.7㎏, 젖소 37.7㎏, 돼지5.1㎏, 닭·오리 0.12㎏

** 말, 사슴, 양, 토끼, 개,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단위 : 천두)

통계청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소계
'15년	2,946	432	10,127	180,222	193,742
'16년	2,705	405	10,426	177,916	191,452
'17년	3,014	412	11,239	167,844	182,526

□ **(처리) 개별농가** 78%, **위탁** 22%로 처리되고, **91%가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로 환원, **8%는 정화처리**, 자연증발 1%임

○ 자원화 91%는 **공동처리*** **15.3%**(7,439천톤), **개별농가 처리 75.7%**(36,664)

* 자원화 조직 230개소 : 공동자원화사업장 84개소, 액비유통센터 146개소

○ 정화처리 8%는 **공공처리*** **5.7%**(2,762천톤), **개별처리 2.3%**(1,095)

*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104개소('16)

(단위 : 천톤, %)

연도	발생량	자원화			정화방류		해양투기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장		
'13	47,235 (100)	42,129 (89.2)	38,132 (80.7)	3,997 (8.5)	1,552 (3.3)	2,510 (5.3)	- (0)	1,043 (2.2)
'14	46,233 (100)	41,469 (89.7)	37,495 (81.1)	3,974 (8.6)	1,339 (2.9)	2,496 (5.4)	- (0)	929 (2.0)
'15	46,530 (100)	41,991 (90.2)	37,244 (80.0)	4,747 (10.2)	1,064 (2.3)	2,977 (6.4)	- (0)	499 (1.1)
'16	46,988 (100)	42,576 (90.6)	37,417 (79.6)	5,159 (11.0)	1,084 (2.3)	2,762 (5.9)	- (0)	566 (1.2)
'17	48,460 (100)	44,103 (91.0)	38,848 (80.2)	5,256 (10.8)	1,095 (2.3)	2,762 (5.7)	- (0)	499 (1.0)

15. 축산물품질관리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당초	수정(A)	(B)	(B-A)	%
○ 축산물품질관리	**33,401**	**40,964**	**40,964**	**43,078**	**2,114**	**5.2**
- 축산물이력제	19,183	23,068	23,068	24,635	**1,567**	**6.8**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4,218	17,896	17,896	18,443	**547**	**3.1**

* 사업코드 : 20 - 31 - 100 - 101 - 3700 - 3738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소병록)☎(044-201-2346)
축산정책과장(최명철), 서기관(권우순)☎(044-201-232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력)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를 통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축산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등급) 국내산 축산물 등급판정을 통해 품질 향상, 유통 원활화, 가축 개량 촉진 유도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이력) 소·돼지·닭·오리·계란의 사육부터 유통, 전(全) 단계까지 기록·관리하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급) 국내산 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말 등)에 대한 등급판정
사업기간	○(이력) '04 ~ 현재, (등급) '89 ~ 계속
총사업비	○(이력) 해당 없음, (등급) 해당 없음
사업규모	○(이력) 소(3,405천두), 돼지(11,566천두), 닭(1.7억수), 오리(7천수) 등 ○(등급) 소 873천두, 돼지 16,712천두, 계란 7억개, 닭 1억수, 오리 31백만수 등
지원조건	○(이력) 지자체경상(50%), 지자체자본(40%), 민간경상·자본(국고 100%) ○(등급) 민간경상·자본(등급판정수수료 수입 외에 부족 경비 전액보조)
사업시행주체	○(이력)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축산물품질관리] ('18) 40,964백만원 → ('19) 43,078 (증2,114)

○ 축산물이력제 : ('18) 23,068백만원 → ('19) 24,635 (증1,567)

① 인건비 : ('18) 3,596백만원 → ('19) 5,135 (증1,539)

② 쇠고기이력제 : ('18) 13,945백만원 → ('18) 14,189 (증244)

<민간이전> ('18) 9,713백만원 → ('19) 9,886 (증173)

- 운영비 : ('18) 8,883백만원 → ('18) 9,376 (증493)
- 예비비 : ('18) 189백만원 → ('19) 216 (증27)
- 민간자본보조 : ('18) 641백만원 → ('19) 294 (△347)

<지자체이전> : ('18) 4,232백만원 → ('18) 4,303 (증71)

- 이력관리비(귀표부착) : ('18) 4,132백만원 → ('19) 4,022 (△110)
- DNA분석장비 : ('19) 184백만원 (순증)
- 사육단계DNA검사비 : ('18) 97백만원 → ('19) 97 (전년동)
- 유통단계DNA수거비 : ('18) 3백만원 (순감)

② 돼지고기이력제 : ('18) 2,902백만원 → ('19) 2,673 (△229)

<민간이전> ('18) 2,902백만원 → ('19) 2,673 (△229)

- 운영비 : ('18) 2,902백만원 → ('19) 2,673 (△229)

③ 닭·오리·계란이력제 : ('18) 2,625 → ('19) 2,638 (증13)

<민간이전> ('18) 2,625 → ('19) 2,638 (증13)

○ 축산물등급판정사업 : ('18) 17,896백만원 → ('19) 18,443 (증547)

① 인건비 : ('18) 17,046백만원 → ('18) 17,750 (증704)

② 운영비 : ('18) 6,472백만원 → ('18) 6,732 (증260)

③ 예비비 : ('18) 917백만원 → ('18) 948 (증31)

④ 등급판정수수료 수입 : ('18) △10,320백만원 → ('19) △10,714 (△394)

* (등급판정물량 추청치) 소 876천두(2,000원/두), 돼지 17,860천두(400원/두), 계란 744백만개(1원/개) 닭고기 105백만수(10원/두), 오리 31백만수(20원/두)

⑤ 민간자본보조 : ('18) 2,581백만원 → ('17) 2,587 (증6)

⑥ **자산취득비 : ('18) 1,200백만원(1개소) → ('18) 1,140(1개소) (△60)**

□ **지원 필요성**

○ **축산물이력제**

-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FTA 대책 사업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EU, 한미,영연방 FTA 대책사업)
- 제도를 통해 축적된 이력정보는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조절에 활용
- '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부터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닭·오리·계란까지 이력관리 품목을 확대 적용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기여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 그 결과를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가 활용하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생산농가 소득지지, 축산물 유통의 원활화 유도
- 등급판정사업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유지하고 국민적 부담 경감과 편익 증진 기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품질관리	33,401	40,964	40,964	43,078	2,114	5.2
① 축산물이력제	19,183	23,068	23,068	24,635	1,567	6.8
• 인건비	3,474	3,596 (정규직 84명)	3,596 (정규직 84명)	5,135 (정규직 140명, 무기직 22명)	1,539	
• 쇠고기이력제	12,869	13,945	13,945	14,189	244	
- 운영비	12,564	13,115 (3,312천두×3,959원=)	13,115 (3,312천두×3,959원=)	13,679 (3,351천두×4,082원=)	564	
- 예비비	184	189 (2,520백만원×1/12×60%×150%)	189 (2,520백만원×1/12×60%×150%)	216 (2,880백만원×1/12×60%×150%)	27	
- 장비구입비	121	641 (PC등 2.2백만원×36대) (스마트PC 1백만×40대) (라벨프린터 550천원×40대) (DNA장비 500백만×1set)	641 (PC등 2.2백만원×36대) (스마트PC 1백만×400대) (라벨프린터 550천원×40대) (DNA장비 500백만×1set)	294 (PC등 2.2백만원×90대) (스마트PC 1백만×40대) (사무집기 550천원×78set) (프린터43, 복사기6, 파쇄기1)	△347	
• 돼지고기이력제	2,840	2,902	2,902	2,673	△229	
- 운영비	2,840	2,902 (11,465천두×253원=)	2,902 (11,465천두×253원=)	2,673 (11,566천두×231원=)	△229	
• 닭·오리·계란이력제	-	2,625	2,625	2,638	13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운영비	-	2,625 (170백만수×15.4원=)	2,625 (170백만수×15.4원=)	2,638 (170백만수×15.5원=)	13	
② 축산물등급판정	14,218	17,896	17,896	18,443	547	3.1
• 인건비	16,384	17,046 (정규직 225명)	17,046 (정규직 225명)	17,750 (정규직 226명, 무기직 11명)	704	
• 운영비	5,786	6,472 (2,397천원×225명×12개월=)	6,472 (2,397천원×225명×12개월=)	6,732 (2,367천원×237명×12개월=)	260	
• 예비비	894	917 (12,228백만원×1/12×60%×150%=)	917 (12,228백만원×1/12×60%×150%=)	948 (12,640백만원×1/12×60%×150%=)	31	
• 자본보조	421	2,581 (전산140, 등급2,346, 사무79)	2,581 (전산140, 등급2,346, 사무79)	2,587 (전산147, 등급2,436, 사무4)	6	
• 자산취득비	998	1,200 (1,200백×1개소=)	1,200 (1,200백×1개소=)	1,140 (1,140백×1개소=)	△60	
• 등급판정수수료	△10,265	△10,320 (소1,847, 돼지6,259, 계란1,006, 닭970, 오리486)	△10,320 (소1,847, 돼지6,259, 계란1,006, 닭970, 오리486)	△10,714 (소1,699, 돼지6,929, 계란783, 닭910, 오리393)	△394	
□ 비목(합계)	33,401	40,964	40,964	43,078	2,114	5.2
○민간경상(320-01)	27,460	32,310	32,310	34,754	2,444	7.6
○민간자본(320-07)	542	3,222	3,222	2,881	△341	△10.6
○지자체경상(330-01)	4,401	4,232	4,232	4,119	△113	△2.7
○지자체자본(330-03)	-	-	-	184	184	100.0
○자산취득비(430-01)	998	1,200	1,200	1,140	△60	△5.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물이력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축산법」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및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축산물이력제)**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이력제사업 추진
  · '04. 1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쇠고기 이력제 추진위원회 구성
  · '04. 5월 쇠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도 시달
  · '04. 10월 쇠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착수
  · '05. 8월 쇠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자체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 '05. 12~'07. 12월 쇠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여대상 확대
  · '07.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08.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시행
    * '08. 12월부터 사육단계, '09.6월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 '10. 5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
  · '10.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시행
    * '10.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12. 10월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착수
  · '13.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
    * 법제명 변경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14. 12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
  · '15. 12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 '17. 4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 장관 회의 : 닭·오리·계란이력제 도입 필요
  · '18. 11월 닭·오리·계란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UR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과 국민 식생활의 선진화에 대비하여 국내 축산물의 차별화와 국내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을 추진

· '89. 8월 정부의 '축산진흥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제도 시행
· '92. 7월 축산물 등급판정사업 시범 실시(소, 돼지)
· '93. 6월 축산법 개정으로 등급판정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지원근거 마련
· '95. 2월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 고시
· '96. 4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 '01. 12월 계란 등급판정 시범 실시
· '03. 1월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소, 돼지)
· '03. 4월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 실시
· '04. 3월 계란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 '07. 3월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 '07. 7월 돼지고기 육질등급제 시행
· '10. 2월 축산물품질평가원 출범
· '12. 7월 오리 등급판정 본사업 실시
· '18 8월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 실시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축산물품질관리	285	303	375	350	337	410
- 축산물이력제	182	182	223	203	194	231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03	121	152	147	143	17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2015년도) 지원사무실 구입 차액(138백만원)

○ (2016년도) 지원사무실 구입 차액(72)

○ (2017년도) 낙찰차액, 지원사무실 구입 차액(109)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75 (370)	- (-)	- (-)	375 (370)	**374** (353)	- (-)	1 (17)
'16년	350 (340)	- (-)	- (-)	350 (340)	**349** (335)	- (-)	1 (5)
'17년	337 (326)	- (-)	- (-)	337 (326)	**336** (324)	- (-)	1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18년 보통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 소 이력자료를 활용하여 가축동향조사(소 축종) 대체 등의 방안 마련(’16. 10월)
- (조치) 소 이력자료를 활용한 가축동향조사(통계청) 대체(’17. 9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축산물이력제**

- EU : ’98년부터 의무화
- 일본 : ’97. 4월 시범사업, ’04년부터 유통단계까지 의무 시행
- 미국 : ’07년부터 자발적인 국가동물개체식별체계(NAIS) 구축
- 호주 : ’04년부터 귀표부착 의무화
- 캐나다 : ’14년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사육·유통)
- 주요국의 축산물(소·돼지)이력제 실시근거

구 분		실시근거	시행시기
소	일본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3년
	프랑스	‘97년 EC/820/ 97제정‘00년 EC/1760/ 2000발표	1998년
	호주	주별 축산공사법(‘98, NSW)	1999년
돼지	캐나다	Regulation of the Health of Animal Act	2014년
	덴마크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로 의무화	2005년
	네델란드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로 의무화	2005년

- 주요국의 축산물이력제 DB관리기관

구 분	소			돼지		
	일본	프랑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델란드
DB 관리기관	가축개량센터	농업식량부	MLA (호주축산공사)	CLIA (Canadian identification agency)	CHR (Central Husbandry register)	I&R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 미국, 일본 및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여 소·돼지·계란 및 가금류(닭고기, 칠면조)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 시행기관도 국가 및 독립 법인에서 수행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근거 법령

구 분	법 령	시행시기
미 국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1927년
캐나다	농산물법(Agricultural Products Act)	1929년
EU	의회규정(Council Regulation Act)	1972년
호 주	호주 식육 및 축산업에 관한 법률 (Meat and Livestock Industry Regulations)	1987년
일 본	축산물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964년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 담당기관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	계란
미 국	농무성 USDA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캐나다	등급판정기관 Canada Beef Grading Agency		식품위생검사기관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EU(영국)	식육위생검사기관 - Meat Hygiene Service			계란유통검사기관 Egg Marketing Inspectorate
호 주	식육 및 육류 통일규격위원회 Authority for Uniform Specificarion Meat and Livestock		-	-
일 본	(사)일본식육격부협회			-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보조금 교부 신청	'19.1	시도, 축평원 농협, 한종협	· 사업수행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19.1	농림축산 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수행주체에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수행	연중	시도, 축평원 농협, 한종협	· 사업수행주체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
⇓			
사업완료 보고	'19.1	시도, 축평원 농협, 한종협	·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교부 확정	'19.2	농림축산 식품부	· 각 사업에 대한 교부금 정산 및 확정 통지

참고 1 닭·오리·계란이력제 도입

< 추진계획 >

□ 닭·오리·계란이력제는 **'19.12.28일 의무시행**을 목표로 단계적 추진

○ ('18년) 닭·오리·계란이력제 시범사업 추진(11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추진(12월)

○ **('19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닭·오리·계란이력제 의무시행(12.28.)**

□ 현황 및 문제점

○ 소·돼지와 달리 가금 및 가금산물 분야는 이력관리 체계 미 구축으로 체계적인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 미비**

* (제도 도입) 국내산 소('08)→ 수입 쇠고기('10)→ 국내산 돼지('14)→ 수입 돼지고기('18.12)

□ 사업개요(이력관리대상 : 닭(육계·산란계·토종닭), 오리, 계란)

○ 닭·오리·계란의 **거래단계별 정보 기록·관리**로 축산물 **위해(危害) 사고 발생 시 추적·회수를 효율화 하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심 강화**

* (먹을거리 안전) 닭·오리·계란 판매시 이력정보(사육·유통경로)를 제공함으로써(홈페이지·스마트 폰) 닭·오리·계란에 대한 소비자 안심(安心) 제고

* (가금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가금 사육두수, 가금산물 생산·유통 정보 등을 활용한 생산예측, 수급조절 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

- 국무회의 보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사업으로 추진 중-

① **'17.8.21. 국무회의 보고**(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 도입('19)'

② **'18.3.20. 행안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전략 2/과제 4-3(식품, 안전 등 국민 삶과 정보 집중공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닭(계란)·오리 유통정보 국민 제공'

* ('17년 농식품부 보도자료) **살충제 검사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 계란이력제 조기도입 추진
('17년농식품부 **AI방역대책**)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닭·오리·계란이력제 도입

○ **(제도 이행주체)** 닭·오리 사육농장*, 도축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 포장처리·판매(식육즉석·유통전문 포함)업자 등

* (농장) (원)종계장, 부화장, 실용계·산란계, 종·육용오리 토종닭(순계·종계)

○ **(의무사항)** 사육농장(닭·오리 사육 및 입식 현황, 닭·오리 이동신고 의무화), 유통업자(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참고 2 2019년도 등급판정 수수료 수입계획

□ 2019년도 축종별 등급판정 물량예측 및 수수료

구분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판정물량예측	876천두	17,860천두	744백만개	105백만수	31백만수
수수료 (단가/기준)	2,000원/두	400원/두	50천원/일50천개 (1원/1개) 일50천개 초과 ⇨ 1개당 1원 가산	70천원/일7천수 (10원/1수) 일7천수 초과 ⇨ 1마리당 8원 가산; 일10천수 초과 ⇨ 1마리당 6원 가산	100천원/일5천수 (20원/1수) 일5천수 초과 ⇨ 1마리당 10원 가산; 일10천수 초과 ⇨ 1마리당 8원 가산

* (소·돼지, 의무판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8' 中 '19년 출하두수 예측치
* (계란·닭·오리, 자율판정) 인력운용 상황(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고려하여 17년 등급판정 물량 수준으로 '19년 계란·닭·오리 등급판정 물량 예측
* (수수료)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농식품부고시 제2017-21호)

□ 2019년도 축종별 등급판정수수료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17년도		'19계획
	계획	수입	계획	수입	
○ 수수료수입	10,336	10,552	10,568	10,265	10,714
- 소(a*b-c)	1,696	1,668	1,847	1,694	1,699
·단가(원/두)(a)	2,000	2,000	2,000	2,000	2,000
·물량(천두)(b)	874	859	952	873	876
·징수비용(c)	52	51	57	52	53
- 돼지(a*b-c)	6,219	6,411	6,259	6,484	6,929
·단가(원/두)(a)	400	400	400	400	400
·물량(천두)(b)	16,028	16,524	16,132	16,712	17,860
·징수비용(c)	192	198	194	200	214
- 계란	970	1,145	1,006	783	783
- 닭고기	951	983	970	910	910
- 오리고기	500	345	486	393	393

* (징수비용) 「축산법」 제49조(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에 따라 수수료 납입액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도축장 등)
* ('19년 계란·닭·오리 수수료) '17년도 등급판정수수료 수입(물량) 기준으로 예측

16. 도축검사 운영(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도축검사운영	15,472	19,966	20,408	17,941	△2,467	△12.1

* 사업코드 : 20 - 31 - 00 - 100 - 101 - 3900 - 3938
* 담당자 : 방역정책국장(오순민), 방역정책과장(김상경), 기술서기관(이동식, ☏ 044-201-252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와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제고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에 필요한 축산물 검사장비 및 재료비, 도축검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사업기간	1991년 ~ 계속 * '16년부터 도축검사원운영(축발)과 축산물검사(농특)를 도축검사원운영(축발)으로 통합하고 사업명을 도축검사운영으로 변경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7,941백만원 [최근 5년간('14~'18) 696억원(누적)/139억원(평균)]
지원조건	· 재료비·여비 : 국비 100% · 도축검사원 운영비 :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도축검사교육 :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도축검사원 인건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60%, 지방비 40% · 축산물검사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비 40%, 지방비 60% · 축산물검사장비구축 :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40%, 지방비 6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17,941백만원** (전년 대비 △2,467백만원)

○ 재료비 : 1,262백만원

▪ (지원내용) 축산물 위해·안전사고 발생 시 생산단계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 등) 위생·안전성 긴급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직접 집행 경비)

* 도축검사,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항생제내성균 검사, 젖소 유방염 검사 등

▪ (산출내역) 1,262백만원 (전년 비 ▲762백만원)

* 산식 : 1,262백만원 × 100%

* 증감사유 : 축산물 위해·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소요액을 감안

○ 여비 : 18백만원

▪ (지원내용) 축산물 위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작업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축산물위생중앙감시반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지원

▪ (산출내역) 18백만원 (전년 동)

* 산식 : 18백만원 × 100%

○ 도축검사원 운영비 : 1,963백만원

▪ (지원내용)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생체·해체검사 등) 보조를 수행하는 도축검사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산출내역) 1,963백만원(전년 비 ▲222백만원)

* 산식 : 5.3백만원 × 370명 × 100%

* 증감사유 : '18년 주 52시간 근로 기준 변경 및 도축장 신규 개설로 도축검사원 증원('17년 336명 → '19년 370명)에 따른 운영비 증가

○ 도축검사 교육 : 650백만원

▪ (지원내용) 도축검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및 검사원에 대한 교육 관련 필요 경비를 지원

▪ (산출내역) 650백만원 (전년 동)

* 산식 : 650백만원 × 100%

○ 도축검사원 인건비 : 9,746백만원

▪ (지원내용)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생체검사, 해체검사 등)를 수행하는 검사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위해축산물을 사전 차단하는 검사원의 인건비 지원

▪ (산출내역) 9,746백만원 (전년 비 ▲711백만원)

* 산식 : 43.9백만원 × 370명 × 60%

* 증감사유 : '18년 주 52시간 근로 기준 변경 및 도축장 신규 개설로 도축검사원 증원('17년 336명 → '19년 370명)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축산물검사비 : 2,416백만원

▪ (지원내용) 도축검사,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수거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보조원** 인건비,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축산물 유상수거비 및 검사재료비 등 지원

* 도축검사,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항생제내성균 검사, 젖소 유방염 검사 등

** 원유검사 보조원, 식육 검사 보조원, 항생제 내성균 검사 보조원

▪ (산출내역) 2,416백만원 (전년 비 ▲352백만원)

* 산식 : 377.5백만원 × 16개소 × 40%

* 증감사유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이행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 물량 증가, 검사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및 검사보조원 인건비 현실화(최저인건비 반영) 등을 감안

○ 축산물검사장비 : 1,886백만원

▪ (지원내용)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추진을 위해 검사에 필요한 현장·실험실 장비의 구입예산 지원

* 도축검사,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항생제내성균 검사, 젖소 유방염 검사 등

▪ (산출내역) 1,886백만원 (전년 비 △4,514백만원)

* 산식 : 262백만원 × 18개소 × 40%

* 증감사유 : '17년 살충제 사태의 후속조치로 '18년 검사장비 예산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여 예년 수준의 금액으로 회복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도축검사운영	19,966백만원	17,941백만원
▪ 재료비	500 (500백만원×1식×100%)	1,262 (1,262백만원×1식×100%)
▪ 도축검사원 운영비	1,741 (5.2백만원×336명×100%)	1,963 (5.3백만원×370명×100%)
▪ 도축검사원인건비	8,953 (44.4백만원×336명×60%)	9,746 (43.9백만원×370명×60%)
▪ 축산물검사비*	1,704 (266백만원×16개소×40%)	2,416 (377.5백만원×16개소×40%)
▪ 축산물검사장비	6,400 (1,000백만원×16개소×40%)	1,886 (262백만원×18개소×40%)

□ 지원 필요성

○ 본 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생산단계 농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업무는 식약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 고유 사업임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및 품질 향상,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적 성격이 높아 국비 지원이 필요

- 부적정 축산물의 생산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전국에 유통되어 소비될 우려가 있으며,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그 파급효과에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관리하기 힘든 업무이며,

- 수익 행위 및 창출에 목적이 있는 민간에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축산물 검사 등이 소홀해지거나 국민의 식품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하는 등 민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사업임

○ 살충제 계란 파동(’17.8월) 이후 국내산 계란 및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도축검사운영	15,472	19,966	20,408	17,941	△2,467	△12.1
▪ 재료비 (산출근거)	2,036	1,436 (1,436백만×100%)	500 (500백만원×1식×100%)	1,262 (1,262백만원×1식×100%)	762	152.4
▪ 여비 (산출근거)	18	18 (100천원×18명×10회)	18 (100천원×18명×10회×100%)	18 (100천원×18명×10회×100%)	-	-
▪ 도축검사원 운영비 (산출근거)	1,741	1,741 (5,182천원×336명×100%)	1,741 (5.2백만원×336명×100%)	1,963 (5.3백만원×370명×100%)	222	12.7
▪ 도축검사 교육 (산출근거)	650	650 (722천원×900명×100%)	650 (650백만원×1식×100%)	650 (650백만원×1식×100%)	-	-
▪ 도축검사원 인건비 (산출근거)	8,675	8,953 (43백만원×336명×60%+278)	9,035 (44.8백만원×336명×60%)	9,746 (43.9백만원×370명×60%)	711	7.9
▪ 축산물검사비 (산출근거)	672	768 (120백만원×16개소×40%)	2,064 (323백만원×16개소×40%)	2,416 (377.5백만원×16개소×40%)	352	17.1
▪ 축산물검사장비 (산출근거)	1,680	6,400 (1,000백만원×16개소×40%)	6,400 (1,000백만원×16개소×40%)	1,886 (262백만원×18개소×40%)	△4,514	△70.5
□ 비목(합계)	15,472	19,966	20,408	17,941	△2,467	△12.1
○ 재료비 (210-11)	2,036	1,436	500	1,262	762	152.4
○ 국내여비 (220-01)	18	18	18	18	-	-
○ 민간경상보조 (320-01)	2,391	2,391	2,391	2,613	222	9.3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9,347	9,721	11,099	12,162	1,063	9.6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680	6,400	6,400	1,886	△4,514	△70.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축산물위생검사기관·위생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검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설립한다.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검사원)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및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

○ 추진경위

< 축산물 검사 >

- '92년부터 식육의 안전성 검사를 시작으로 원유, 식용란으로 그 품목을 확대하여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00년부터 품목별 세부 검사요령 규정
- 축산물검사장비 지원('91년~), 축산물검사 재료비('95년~), 원유검사 지원('02년~), 항생제 내성균검사 지원('08년~)

* '85.7.1. 축산식품의 가공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가 '98.7.3. 농림축산식품부로 재이관

* '13.3.23. 정부조직개편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으나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 대한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위탁

< 도축검사원 >

- 새로운 농정의 원년 2004년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04.3.8.)
  · 소 전두수 검사체계 및 쇠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 구축 등 강도 높은 광우병 대책 추진
-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수립(‘04.7.29.) 추진, 검사관 및 도축검사원을 충원하여 도축검사 강화
- 도축검사원 채용배치 : 150명(‘05 : 100명, ’06 : 30명, ‘08 : 20명)
- 가금류 도축장 도축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정부 검사관이 실시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시행(‘14.7.1.일부터)에 따라 가금류 도축장 도축검사원 3년간 단계적 배치
  · (‘14.7.1.일 시행) : 일일 도축 8만수 이상 도축장 : 42명 배치
  · (‘15.1.1.일 시행) : 일일 도축 5만수 이상 8만수 미만 도축장 : 39명 배치
  · (‘16.1.1.일 시행) : 일일 도축 5만수 미만 도축장 : 소요인원 55명
- ’18년 주 52시간 근로 기준 변경에 따른 25명 신규 채용 및 배치, 제주·충남·전북 3개소 도축장 신규 개설로 검사원 9명 신규 채용 및 배치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도축검사운영	77	84	116	141	155	20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 재료비(1) 및 여비(5) 집행잔액

○ ‘16년 : 도축검사원 운영비(9) 집행잔액

○ ’17년 : 해당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6 **(116)**	- (-)	- (-)	116 (116)	116 **(110)**	- (2)	- (5)
’16년	141 **(141)**	- (2)	- (-)	141 (143)	141 **(138)**	- (-)	- (5)
’17년	155 **(155)**	- (-)	- (-)	155 (155)	155 **(151)**	- (1)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보조사업 연장평가 : 감축('18년)

- (지적사항) 검사장비 구축비용이 '18년 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19년 이후 예년 수준에 비추어 지원하되 10% 정도 감축을 고려
- (조치사항) '19년 예산 수립 시 반영(12.1% 감축)

○ '18년도 국회 상임위(이양수 의원)

- (지적사항) 사업 성과계획(지표)을 재점검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가 필요
- (조치사항) 성과지표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재점검하여 성과지표의 조정 또는 추가 검토 계획

○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17년)

- (지적사항) 성과지표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달성률 97.8%)
- (조치사항) 성과지표 개선
  · (기존) (식육 중 잔류물질 모니터링 부적합수 / 검사건수) × 100
  · (개선) (식육 및 식용란 중 잔류물질과 미생물 모니터링 부적합수 / 검사건수) × 100

○ 보조사업평가 : 사업방식 개선('15년)

- (지적사항) 축산물검사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10% 규모의 국가보조의 단계적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 (조치사항) '17년도 예산부터 국고보조율 10% 하향 조정(50% → 40)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축산물검사(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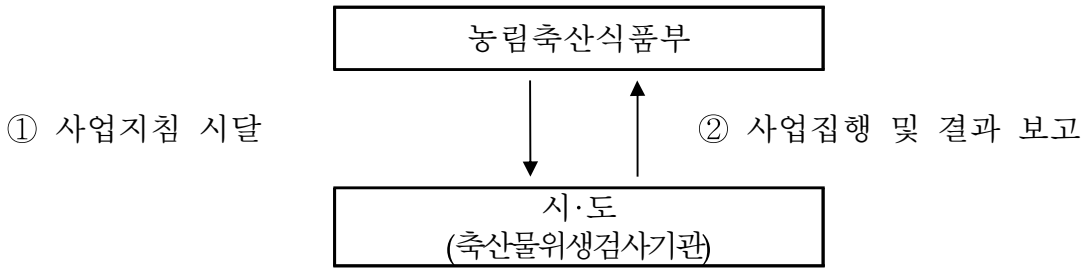

○ 도축검사교육(민간경상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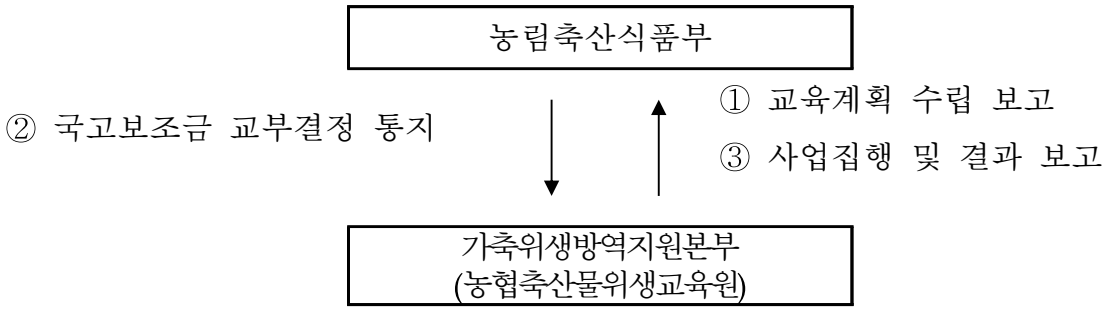

○ 도축검사원 인건비(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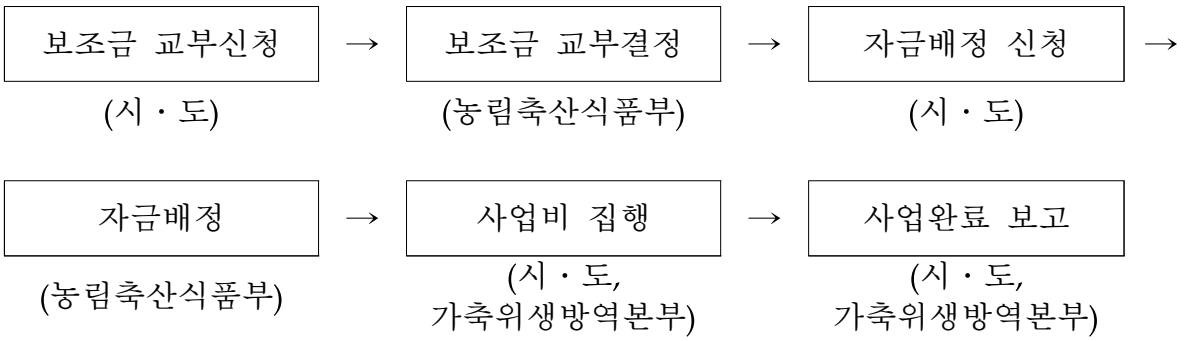

○ 도축검사원 운영비(민간경상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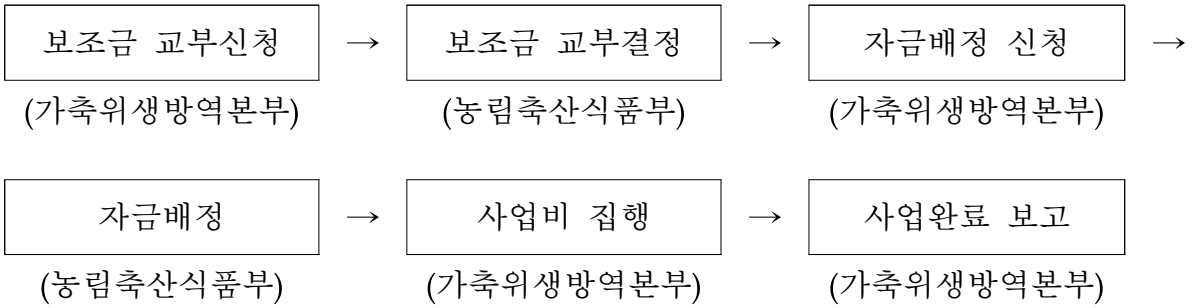

17. 축산물HACCP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HACCP지원	1,650	1,650	1,650	1,650	-	-

* 사업코드 : 20 - 31 - 00 - 100 - 101 - 3900 - 3938
* 담당자 : 방역정책국장(오순민), 방역정책과장(김상경), 서기관(이동식)☎(044-201-252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HACCP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 축산물 HACCP 적용 농장 및 영업자 중 운용이 미흡하여 조사·평가 심사결과 부적합 또는 현장보완 판정을 받는 농장·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 자체 운용능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생산단계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팅 제공과 HACCP 운용이 미흡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기술지도 경비 지원
사업기간	20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HACCP 컨설팅 : 350개소 ○ 현장 기술지도 등 : 400개소
지원조건	○ HACCP 컨설팅 :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현장기술지도 등 : 국비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 HACCP컨설팅 : 시·도 ○현장기술지도 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 1,120백만원

▪ 산출내역 : 8백만원 × 350개소 × 40% = 1,120백만원

○ HACCP 운용 미흡 농장 등의 현장 기술지도 사업비 32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800천원 × 400개소 × 100% = 320백만원

○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평가 및 교육, 사업만족도 조사·세미나,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21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210백만원

-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평가 및 교육·세미나 등 = 20백만원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홍보 = 30백만원
- 도축장, 집유장 HACCP 운용수준 조사평가 = 800천원 × 200개소 × 100% = 16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 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다소비 식품인 축산물(식육, 유, 알 및 가공품 등)에서 위해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HACCP 적용 확대는 필수적임

-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신뢰제고를 위해 HACCP 적용확대 업무가 정부 핵심 중점과제로 지정(국정과제 83-4)

○ 동 사업은 축산물 HACCP 적용·운영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HACCP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HACCP 인증 확대 및 운용수준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함

○ 농장 HACCP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초석이 되는 단계로서,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장단계 HACCP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제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산물HACCP지원	1,650	1,650	1,650	1,650	-	-
▪ HACCP컨설팅 (산출근거)	1,280	1,120 (350개×8백만×40%)	1,120 (350개×8백만×40%)	1,120 (350개×8백만×40%)	-	-
▪ 현장기술지도 (산출근거)	320	320 (400개×0.8백만×100%)	320 (400개×0.8백만×100%)	320 (400개×0.8백만×100%)	-	-
▪ 교육, 평가, 홍보 등 (산출근거)	50	210 (만족도 조사 및 평가, 교육세미나 20백만원 + 홍보30백만원 + 도축장, 집유장 평가 160백만원)	210 (만족도 조사 및 평가, 교육세미나 20백만원 + 홍보30백만원 + 도축장, 집유장 평가 160백만원)	210 (만족도 조사 및 평가, 교육세미나 20백만원 + 홍보30백만원 + 도축장, 집유장 평가 160백만원)	-	-
□ 비목(합계)	1,650	1,650	1,650	1,650	-	-
○ 민간경상보조(320-01)	370	530	530	530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280	1,120	1,120	1,12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식약처장으로부터 농식품부장관에게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권한 및

범위와 기준에 의거 다음 사항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함

· HACCP 인증 작업장 등(농장·도축장·집유장에 한함)의 인증(변경 포함) 및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 HACCP 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 HACCP 적용 작업장 등 중 농장에 대한 조사·평가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의 유통개선,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시책의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 추진경위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안전성을 강화 방안 필요성 대두

-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물 HACCP 활성화 대책 수립('11. 11.)

·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정 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대책 마련

- 축산물HACCP기준원 설립, 운영지원 추진('06. 10. 18. 설립 허가)

- 축산물HACCP담당기관 지정('06. 10. 31.)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립('08. 6. 22.)

· 축산물HACCP기준원 업무를 승계함

· '13. 3.23. 정부조직개편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로 이관되었으나,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 대한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고유업무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칭변경('14. 1.)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운영('17. 3.)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축산물HACCP지원	26	17	17	17	17	1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년 : 실집행은 컨설팅지연에 따른 이월(275), 포기에 따른 반납(174)

○ '16년 : 실집행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방문 중지에 따른 컨설팅지연으로 인한 이월(112), 포기에 따른 반납(231)

○ '17년 : 실집행은 컨설팅지연에 따른 이월(98), 포기에 따른 반납(281)

(백만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37 (1,937)	- (35)	- (-)	1,937 (1,972)	1,937 (1,523)	- (275)	- (174)
'16년	1,650 (1,642)	- (275)	- (-)	1,650 (1,917)	1,642 (1,582)	- (112)	8 (223)
'17년	1,650 (1,650)	- (134)	- (-)	1,650 (1,784)	1,650 (1,405)	- (98)	- (28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축산물HACCP컨설팅 및 생산단계 HACCP 기술지원 및 검정사업은 정상추진('15 보조사업운용평가)

○ 축산물 위생 및 안전 제고를 위해 동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을 권고함('16 보조사업 연장평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축산물 HACCP 컨설팅

○ 사업절차도

컨설팅 희망자 (사업대상자) 신청	➡	컨설팅 사업대상자 선정	➡	컨설팅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 시·도 * 농식품부에 보고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컨설팅업체 지자체에서 계약사항 확인	

➡	업체별 컨설턴트 현장컨설팅 시행	➡	사업완료 결과보고	➡	사업비 배정 및 정산
	컨설팅업체→ 사업대상자		시·도→농식품부 * 컨설팅 업체 시도에 결과 보고		사업대상자↔ 지자체↔농식품부

○ 생산단계 HACCP 기술지원 및 검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① 사업지침 시달

③ 세부사업 심사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보고, 국고보조금 신청

④ 사업집행 및 결과 보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8.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가축위생방역지원	41,970	48,001	**51,034**	**51,628**	**594**	**1.2**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3900 - 3941
* 담당자 : 방역정책국장(오순민), 방역정책과장(김상경), 주무관(이중혁, ☎ 044-201-25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가축위생방역지원(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가축위생방역지원(민간자본보조) : 국비 100% 가축위생방역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 50 ~ 60%
사업시행주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농(축)협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가축위생방역지원 : 51,628백만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민간경상보조) : ('18) 25,789백만원 → ('19) 27,287

- 인건비(일반·검역·기타직) : ('18) 6,518백만원 → ('19) 7,222 (증 704)

  * 공통인상분 1.8%(123백만원), 검역직 13명(6개월), 청사관리 4명(12개월) 증원 미반영분 및 최저임금 반영(398백만원), 유통직 이관 3명(183백만원)

- 운영비 : ('18) 5,370백만원 → ('19) 5,367 (감 3)

  * 청사관리 용역비용(△158백만원), 유통직 운영비 이관(18백만원), 검역직·방역직 증원 소요(137백만원)

- 전화예찰사업 : ('18) 7,796백만원 → ('19) 8,792 (증 996)

  * 최저임금 반영(563백만원), 퇴직적립금(433백만원)

- 가축질병근절 : ('18) 6,105백만원 → ('19) 5,906 (감 199)

  · 방역재료구입 : ('18) 2,500백만원 → ('19) 2,500

  · 긴급방역지원단 : ('18) 350백만원 → ('19) 350

  · 철새도래지 등 AI 검사 : ('18) 1,294백만원 → ('19) 1,294

  · 가축질병근절홍보 : ('18) 1,252백만원 → ('19) 1,252

  · 방역전문가자문평가 : ('18) 60백만원 → ('19) 60

  · 지자체방역평가지원 : ('18) 400백만원 → ('19) 400

  · 신고포상금 : ('18) 50백만원 → ('19) 50

○ 가축위생방역지원(민간자본보조) : ('18) 548백만원 → ('19) 1,589

- 노후 차량 교체(18대) : 486백만원
- 노후 집기비품 교체(42개소) : 62백만원
- 증원 인원 차량(13대) : 365백만원
- 증원 인원 집기비품(책상, 컴퓨터 40set) : 108백만원
- 전화예찰 시스템 교체 : 320백만원
- 전화예찰 컴퓨터 교체 : 248백만원

○ 가축위생방역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18) 24,697백만원 → ('19) 22,752

- 방역직 인건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18) 8,535백만원 → ('19) 8,959 (증 424)
  * 공통인상분 1.8%(153백만원), 방역직 27명 증원 소요(271백만원)
  * 국비 60%, 지방비 40%

- 공동방제단 운영(농협) : ('18) 13,129백만원 → ('19) 13,793 (증 664)
  * 최저임금 반영(664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 ('18) 3,033백만원 → ('19) 0원
  * (육용오리) 2,134백만원, (종란폐기) 899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필요성

○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한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 농장방역실태점검 및 가축의 임상관찰을 통한 질병의 조기검색

○ 농가 자율방역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 질병예찰 및 신고·상담 콜센터 운영을 통한 가축질병 신고 및 민원 조기 해결

○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가축위생방역지원	41,970	48,001	51,034	51,628	594	1.2
▪ 인건비(일반·검역직) (일반직 49명, 검역직 60명)	6,308	6,518 (107명×5.01백만×12월×100%=6,428) (2명×3.75백만×12월×100%=90)	6,518 (107명×5.01백만×12월×100%=6,428) (2명×3.75백만×12월×100%=90)	7,222 (109명×4.98백만원×12월×100%=6,518) (유통직 이관 3명×5.08백만원×12월×100%=183) (검역직 증원 13명×2.97백만원×6월×100%=232) (청사관리 4명×3.3백만원×12월×100%=158) (공통인상분 123) (최저임금 인상분 8)	704	10.8
▪ 운영비 * 사무소 : 54개소 * 인력 : (18) 442 → (19) 482 * 차량 : (18) 250 → (19) 263	5,251	5,370 (54개소×7.86백만×12월×100%=5,095) (방역직 42명 증원 소요 275)	5,370 (54개소×7.86백만×12월×100%=5,095) (방역직 42명 증원 소요 275)	5,367 (54개소×8.29백만원×12월×100%=5,370) (청사관리 용역비용 △158) (유통직 운영비 이관 18) (검역직 증원인력 운영비 32) (방역직 증원인력 운영비 105)	△3	△0.1
▪ 전화예찰사업	6,362	7,796 (300명×1.77백만×12월×100%=6,362) (전화예찰요원 처우개선 소요 1,434)	7,796 (300명×1.77백만×12월×100%=6,362) (전화예찰요원 처우개선 소요 1,434)	8,792 (248명×2.95백만원×12월×100%=7,796) (최저임금 인상분 563) (퇴직적립금 433)	996	12.8
▪ 가축질병근절	4,834	6,105 (방역재료 2,500) (축사환경개선 199) (긴급방역지원 350) (철새 AI검사 1,294) (가축질병홍보 1,252) (방역전문가평가 60) (지자체방역평가 400) (신고포상금 50)	6,105 (방역재료 2,500) (축사환경개선 199) (긴급방역지원 350) (철새 AI검사 1,294) (가축질병홍보 1,252) (방역전문가평가 60) (지자체방역평가 400) (신고포상금 50)	5,906 (방역재료 2,500) (긴급방역지원 350) (철새 AI검사 1,294) (가축질병홍보 1,252) (방역전문가평가 60) (지자체방역평가 400) (신고포상금 50)	△199	△3.3
▪ 자산취득비	1,505	548 (차량교체 16대 432) (집기비품교체 116)	548 (차량교체 16대 432) (집기비품교체 116)	1,589 (노후 차량교체 18대 486) (노후 집기비품교체 62) (증원인력 차량 13대 365) (증원인력 책상, 컴퓨터 40set 108) (전화예찰 시스템 교체 320) (전화예찰 컴퓨터 교체 248)	1,041	190
▪ 방역직 인건비 (방역직 333명)	7,631	8,535 (333명×3.56백만×12월×60%=8,535)	8,535 (333명×3.56백만×12월×60%=8,535)	8,959 (333명×3.56백만원×12월×60%=8,535) (공통인상분 8,535백만원×1.8%=153) (증원 27명×2.79백만원×6월×60%=271)	424	5.0
▪ 공동방제단 운영 (540반)	10,079	13,129 (540반×4.05백만×12월×50%=13,129)	13,129 (540반×4.05백만×12월×50%=13,129)	13,793 (540반×4.05백만원×12월×50%=13,129) (최저임금 인상분 664)	664	5.1
▪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	-	3,033 (육용오리: 2,997천수x712원/수x2회x50%=2,134) (종란폐기 2997천개x600원/개x1회x50%=899)	-	△3,033	△100
□ 비목(합계)	41,970	48,001	51,034	51,628	594	1.2
○ 민간경상보조(320-01)	22,755	25,789	25,789	27,287	1,498	5.8
○ 민간자본보조(320-07)	1,505	548	548	1,589	1,041	190
○ 지자체경상보조(330-01)	17,710	21,664	24,697	22,752	1,088	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99년도부터 정부의 가축방역정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방역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를 매년 지원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사업 추진(방역재료 구입, 초동방역팀 운영, 철새도래지 AI검사,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99년부터 매년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가축위생방역지원	321	330	397	385	405	51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년 : 가축질병근절 집행잔액(230백만원)

○ ‘16년 : 인건비 집행잔액(169백만원, 결원 등), 운영비 집행잔액(44백만원), 사업비 집행잔액(224백만원), 전화예찰사업 체계변경(인력조정)에 따른 집행잔액(1,260백만원)

○ ‘17년 : 가축질병근절 집행잔액(119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97 (395)	- (-)	- (-)	397 (395)	395 (392)	- (-)	2 (3)
’16년	385 (368)	- (-)	- (-)	385 (368)	368 (368)	- (-)	17 (-)
’17년	421 (420)	- (-)	- (-)	421 (420)	420 (417)	- (-)	1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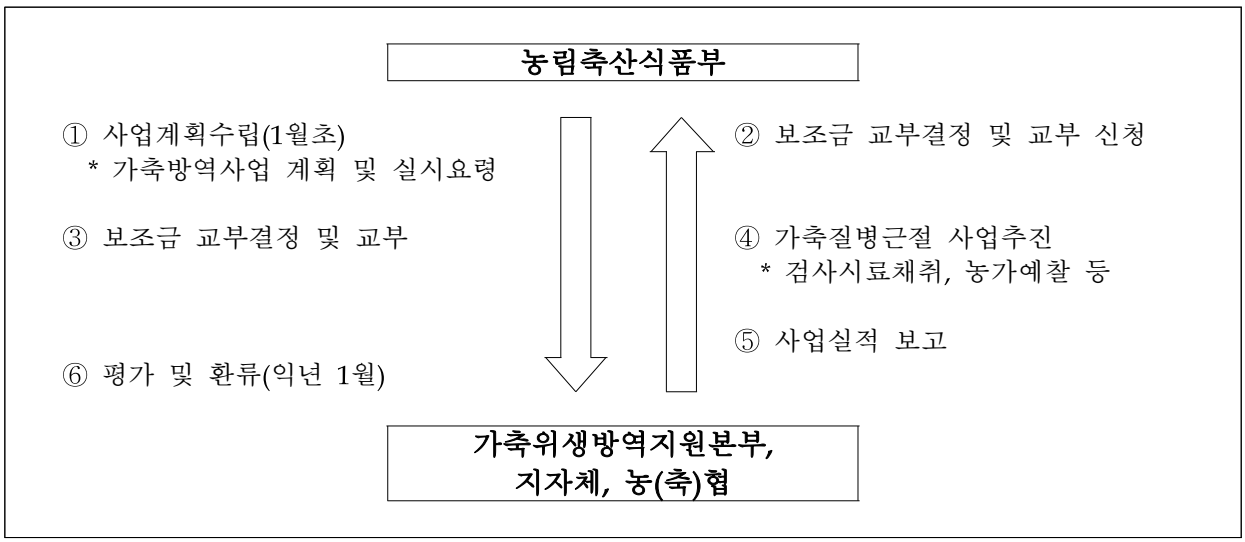

19. 비통화금융기관예치(축발기금)(재량,계속)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9,247**	**117,550**	**112,528**	**140,771**	**28,243**	**25.1**
- 한국은행예치	546	-	-	-	-	-
- 통화금융기관	-	-	-	-	-	-
- 비통화금융기관	98,701	117,550	112,528	140,771	28,243	25.1

* 사업코드 : 20 - 31 - 0 - 100 - 101 - 9700 - 9704

* 담 당 자 : 축산정책국(박병홍), 축산정책과장(최명철), 사무관(박홍진) ☎ (044-201-231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사료값 상승, 송아지값 하락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의 여유자금을 수지계획표의 수불일정에 맞춰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수익 확보
사업기간	'74.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1년 미만의 정기예금)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MMF 등)
지원조건	해당 없음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19년 운용규모 1,017,078백만원 - 사업비 874,572 - 기금운영비 1,735 = 140,771백만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여유자금운용	99,247	117,550	112,528	140,771	28,243	25.1
▪ 통화금융기관예치	-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8,701	117,550	112,528	140,771	28,243	25.1
▪ 한국은행예치	546	-	-	-	-	-
□ 비목(합계)	99,247	117,550	112,528	140,771	28,243	25.1
○ 한국은행예치금 (470-01)	546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98,701	117,550	112,528	140,771	28,243	25.1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축산법 시행령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및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19	-	△209	810	1,504	-	-
'16년	1,808	-	△100	1,708	2,405	-	-
'17년	1,176	-	△51	1,125	99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목 차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779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780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 ····· 1781
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782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783
4. 특별회계전입금 ····· 1784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 1785
2. 직불제이행점검 ····· 1790
3. 인건비 ····· 1794
4. 기타경비 ····· 1797
5. 사업관리비 ····· 1800
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 1804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1,498,850**	**1,101,960**	**276,039**	**△825,921**	**△75.0**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889**	**45**	**5,255**	**5,210**	**11,577.8**
기타재산수입 (54-545)	889	45	5,255	5,210	11,577.8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90**	**-**	**-**	**-**	**-**
법정부담금 (59-593)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190	-	-	-	-
85 정부예금회수	**57,592**	**2,300**	**45**	**△2,255**	**△98.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4	-	-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3,367	300	20	△280	△93.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3)	54,221	2,000	25	△1,975	△98.8
91 전입금	**1,373,779**	**1,099,615**	**270,739**	**△828,876**	**△75.4**
특별회계전입금 (91-812)	1,373,779	1,099,615	270,739	△828,876	△75.4
94 예수금	**65,400**	**-**	**-**	**-**	**-**
기금예수금 (94-943)	65,400	-	-	-	-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1,498,850**	**1,101,960**	**276,039**	**△825,921**	**△75.0**
1071 농가소득보전	**1,489,778**	**1,092,197**	**265,631**	**△826,566**	**△75.7**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1071-300)	1,489,778	1,080,000	253,300	△826,700	△76.5
직불제이행점검 (1071-301)	-	12,197	12,331	134	1.1
7079 기금운영비	**7,916**	**8,550**	**9,240**	**690**	**8.1**
인건비 (7079-101)	161	165	168	3	1.8
기타경비 (7079-201)	1	2	2	-	-
사업관리비 (7079-250)	7,754	8,383	9,070	687	8.2
9203 공자기금이자상환	**890**	**1,168**	**1,168**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3-924)	890	1,168	1,168	-	-
9705 여유자금운용	**266**	**45**	**-**	**△45**	**순감**
한국은행예치(9705-970)	3	-	-	-	-
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1)	263	45	-	△45	순감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	-	-	-	-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

54-545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재산수입	889	45	5,255	5,210	11,577.8

1. 법적 근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재원)

2. 수입 개요

○ 기금 운용 수입금(이자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발생이자 수익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116	505	505	23.9	100.0	-	-
‘15	5,255	82	82	1.6	100.0	-	-
‘16	1,717	988	988	57.5	100.0	-	-
‘17	5,255	889	889	16.9	100.0	-	-
‘18	45	78	78	173.3	100.0	-	-

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367	300	20	△280	△93.3

1. 법적 근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재원)

2. 수입 개요

○ 전년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된 여유자금 회수 금액

3. 2019년 계획 내역

○ 전년도 통화금융기관 예치 여유자금 회수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000	872	872	43.6	100.0	-	-
'15	1,020	93	93	9.1	100.0	-	-
'16	221,000	52,270	52,270	23.7	100.0	-	-
'17	386	3,367	3,367	872.3	100.0	-	-
'18	300	-	-	-	-	-	-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4,221	2,000	25	△1,975	△98.8

1. 법적 근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재원)

2. 수입 개요

○ 전년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된 여유자금 회수금액

3. 2019년 계획 내역

○ 전년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여유자금 회수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2,199	2,199	순증	100.0	-	-
'15	1,018	8,151	8,151	800.7	100.0	-	-
'16	78,812	121,826	121,826	154.6	100.0	-	-
'17	59,660	54,221	54,221	90.9	100.0	-	-
'18	2,000	2,519	2,519	126.0	100.0	-	-

4. 특별회계전입금

91-812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특별회계전입금	1,373,779	1,099,615	270,739	△828,876	△75.4

1. 법적 근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재원)

2. 수입 개요

○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여유자금회수 등 지출대비 수입 부족분 지원

3. 2019년 계획 내역

○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여유자금회수 등 지출대비 수입 부족분 지원

- 총지출 276,039 - 전입금 외 수입 5,300 = 270,739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15,469	154,113	154,113	71.5	100.0	-	-
'15	434,300	300,000	300,000	69.1	100.0	-	-
'16	483,466	617,766	617,766	127.8	100.0	-	-
'17	1,373,779	1,373,779	1,373,779	100.0	100.0	-	-
'18	1,099,615	600,000	600,000	54.6	100.0	-	-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쌀소득보전변동직불(의무,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1,489,778	1,080,000	1,080,000	**253,300**	**△826,700**	**△76.5**

* 사업코드 : 20 - 45 - 0 - 100 - 101 - 1000 - 107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이지은, ☏ 044-201-17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에서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사업기간	'03~계속
사업규모	656천ha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쌀값 하락에서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변동직불금 253,300백만원

○ 쌀값 추세 등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76.5% 감액

▪ 산출내역 : 5,763원/80kg × 656천ha × 67가마

* 변동직불금 단가 = (목표가격 - 수확기산지평균쌀값) × 85% - 고정직불금 단가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1,080,000백만원	253,300백만원
▪ 변동직불금 단가	24,009원/80kg	5,763원/80kg
▪ 지급대상면적	714천ha	656천ha
▪ 고정직불금 단가	15,873원/80kg	14,925원/80kg
▪ 평균 생산량	63가마/ha	67가마/ha

□ 지원 필요성

○ 쌀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한 소득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주곡의 생산기반 유지 및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1,489,778**	**1,080,000**	**1,080,000**	**253,300**	**△826,700**	**△76.5**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1,489,778	**1,080,000** (714천ha× 24,009원/80kg× 63가마)	**1,080,000** (714천ha× 24,009원/80kg× 63가마)	**253,300** (656천ha× 5,763원/80kg× 67가마)	△826,700	△76.5
□ 비목(합계)	**1,489,778**	**1,080,000**	**1,080,000**	**253,300**	**△826,700**	**△76.5**
○ 기타보전금(310-04)	1,489,778	1,080,000	1,080,000	253,300	△826,700	△76.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추진경위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2.12)
- ('05)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과 변동직불)로 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05.3)
- ('15) 쌀소득보전법 폐지('14.12.3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5.1.1)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52	200	1,641	7,193	14,900	10,8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 '16)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계획변경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41**	-	305	1,946	**1,941**	-	5
'16년	**7,193**	-	104	7,297	**7,262**	-	35
'17년	**14,900**	-	-	14,900	**14,898**	-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우수”

(4) 사업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 ▸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② 직불금 신청·등록	2~4월	▸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9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신청내용 조사(서면·현지) - 등록증 교부	5월	▸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 **등록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5~9월	▸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지자체 등)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필수점검)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신규·관외 신청자, 팜맵·경영체정보 불일치,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많은 경우 등 ▸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
⑥ 고정직불금 지급	10월	▸ **지급대상자·면적·금액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통장계좌입금**(시·군·구→지급대상자) ▸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⑦ 농약잔류·토양 검사	9~11월	▸ **농약잔류검사**(농관원)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⑧ 변동직불금 지급	다음연도 2~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 * 지급대행: 농협경제지주회사(시군 농정지원단)
⑨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직불금 콜센터(1588-6830)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참고 1 연도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현황

* 목표가격 : ('05년～'12년산) 170,083원/80kg, ('13～'17년산) 188,000원

< 고정직불금 >

연산별	면적(천ha)		지급총액(억원, 천명)			지급액 (백만원)	지급단가 (원)	농가당 지급액 (천원)	ha당 단가(천원)
	예산	실적	인원	예산	실적				
'17년산	816	829	804	8,160	8,315	831,509	15,873	1,034	1,000(진흥 1,076, 비진흥 807)
'16년산	824	837	794	8,240	8,383	838,284	15,873	1,056	1,000(진흥 1,076, 비진흥 807)
'15년산	845	844	779	8,450	8,427	842,712	15,873	1,082	1,000(진흥 1,076, 비진흥 807)
'14년산	860	835	740	7,740	7,560	755,957	14,306	1,022	900(진흥 970, 비진흥 728)
'13년산	873	855	770	6,984	6,866	686,614	12,713	892	800(진흥 850, 비진흥 680)
'12년산	883	866	791	6,181	6,101	610,101	11,509	771	700
'11년산	885	875	812	6,195	6,174	617,444	11,495	760	700
'10년산	950	883	837	6,650	6,223	622,269	11,486	743	700
'09년산	1,013	893	865	7,088	6,328	632,805	11,536	732	700
'08년산	1,016	1,013	1,097	7,116	7,118	711,809	11,475	649	700
'07년산	1,012	1,018	1,077	7,171	7,120	712,004	11,475	661	700
'06년산	998	1,024	1,050	6,986	7,184	718,397	11,475	684	700(진흥746, 비진흥597)
'05년산	1,004	1,007	1,033	6,002	6,022	602,208	9,836	585	600(진흥640, 비진흥512)

< 변동직불금 >

연산별	면적(천ha)		지급총액(억원, 천명)			지급액 (백만원)	지급단가 (원)	농가당 지급액 (천원)	ha당 단가(원)
	예산	실적	인원	예산	실적				
'17년산	714	684	675	10,800	5,393	539,331	12,514	799	788,382
'16년산	715	706	685	14,900	14,898	1,489,778	33,499	2,175	2,110,437
'15년산	730	726	685	7,193	7,262	726,220	15,867	1,060	999,621
'14년산	731	729	671	1,641	1,941	194,096	4,226	289	266,238
'13년산	742	735	697	200	-	-	-	-	-
'12년산	786	747	719	252	-	-	-	-	-
'11년산	788	754	740	620	-	-	-	-	-
'10년산	790	789	781	7,993	7,501	750,145	15,588	960	950,868
'09년산	815	809	815	5,951	5,945	594,500	12,028	729	733,708
'08년산	943	920	1,025	676	-	-	-	-	-
'07년산	945	932	1,016	5,330	2,791	279,122	4,907	275	299,327
'06년산	998	951	1,000	9,501	4,370	437,038	7,537	437	459,757
'05년산	945	940	984	9,096	9,007	900,703	15,710	915	958,310

2. 직불제이행점검(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직불제이행점검	-	12,197	12,197	**12,331**	**134**	**1.1**

* 사업코드 : 20 - 45 - 0 - 100 - 101 - 1000 - 1071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이지은, ☏ 044-201-17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및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및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사업기간	'18~계속 * 기존 직불사업별로 배정되어 있던 이행점검 예산을 '18년에 통합
사업규모	1,295천ha, 13,185억원 ('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규모) - (쌀) 803천ha 10,561억원, (밭) 386천ha, 2,078억원, (조건) 106천ha, 546억원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및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사업비 12,331백만원

○ 드론 등 현장장비 도입을 위해 '18년 대비 1.1% 증액

▪ 인건비 : 9,702백만원

- (일용임금) 8,803백만원 = 845명×66,800원/일×6개월

- (고용부담금) 899백만원 = 일용임금×10.21%

▪ 현장장비 : 1,493백만원

- (장비구입) 777백만원 = (드론 339대×2백만원) + (태블릿PC 248대 × 40만원)

- (서비임차) 216, (장비수리) 161, (소모품) 157, (회선료) 80, (장비교육) 64, (보험 등) 38

▪ 운영비 : 1,136백만원

- (국내여비) 777, (교육·사무용품 등) 359

(단위: 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직불제이행점검	12,197	12,331
▪ 인건비	10,118	9,702
- 일용임금	9,190 (1,000명×62,000원×6개월)	8,803백만원 (845명×66,800원×6개월)
- 고용부담금	928 (일용임금×10.21%)	899백만원 (일용임금×10.21%)
▪ 현장장비	470	1,493
- 장비구입	120 (테블릿PC 300대×40만원)	777 (태블릿PC 248대 × 40만원) + (드론 339대×2백만원)
- 서비임차 등	350 (서비임차 216, 회선료 80, 소모품 54)	716 (서비임차 216, 회선료 80, 소모품 157) + (장비수리 161, 장비교육 64, 보험 등 38)
▪ 운영비	1,609	1,136
- 여비, 교육 등	(교육·사무용품 등 1,609)	(교육·사무용품 등 359) + (국내여비 777)

□ 지원 필요성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신청농지에 대한 지급요건 이행여부 현장확인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직불제 이행점검	**-**	**12,197**	**12,197**	**12,331**	**134**	**1.1**
▪ 인건비	-	**10,118** (일용임금 : 1,000명×62천원×6개월) (고용부담금 : 일용임금×10.21%)	**10,118** (일용임금 : 1,000명×62천원×6개월) (고용부담금 : 일용임금×10.21%)	**9,702** (일용임금 : 845명×67천원×6개월) (고용부담금 : 일용임금×10.21%)	**△416**	**△4.1**
▪ 현장장비	-	**470** (장비구입 : 120) (서버임차 : 216) (소모품 등 : 134)	**470** (장비구입 : 120) (서버임차 : 216) (소모품 등 : 134)	**1,493** (장비구입 : 777) (서버임차 : 216) (장비수리 : 161) (소 모 품 : 157) (보 험 등 : 182)	**1,023**	**217.7**
▪ 운영비	-	**1,609** (교육·사무용품 등)	**1,609** (교육·사무용품 등)	**1,136** (교육·사무용품 등 359) (국내여비 777)	**△473**	**△29.4**
□ 비목(합계)	**-**	**12,197**	**12,197**	**12,331**	**134**	**1.1**
○ 일용임금(110-04)	-	9,190	9,190	8,803	△387	△4.2
○ 일반수용비(210-01)	-	1,143	1,143	488	△655	△57.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0	80	80	-	-
○ 피복비(210-03)	-	120	120	60	△60	△50.0
○ 특근매식비(210-05)	-	360	360	60	△300	△83.3
○ 임차료(210-07)	-	256	256	226	△30	△11.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161	161	순증
○ 국내여비(220-01)	-	-	-	777	777	순증
○ 고용부담금(320-09)	-	928	928	899	△29	△3.1
○ 자산취득비(430-01)	-	120	120	777	657	547.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22조(기금의 용도)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농약잔류검사에 필요한 경비

○ 추진경위 : 기존에 쌀·밭·조건불리직불 사업별로 배정되어 있던 이행점검비를 '18년부터 직불제이행점검 사업으로 통합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직불제이행점검	-	-	-	-	-	12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사업추진절차

이행점검 **사전준비**(1~3월) ⇨ 이행점검 **표본농가 선정**(3월/5월) ⇨ **현지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
* 논이모작: 3월~5월
* 쌀·밭고정·조건불리: 5월~9월

3. 인건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161	165	165	**168**	**3**	**1.8**

* 사업코드 : 20 - 45 - 0 - 100 - 101 - 7000 - 7079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이지은, ☏ 044-201-17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농협경제지주에 위탁함에 따른 위탁관리 인건비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위탁관리 인건비 지급
사업기간	'03~계속
사업규모	2,760억원 ('19년 기금운용규모)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기금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 168백만원

○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18년 대비 1.8% 증액

▪ 산출내역: 165백만원('18년 예산액) × 101.8%

- 기금 위탁관리인원 2명(3급 1명, 4급 1명)

(단위 :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인건비	165	168
■ 위탁관리인원	위탁관리인원 2명(3급 1, 4급 1)	위탁관리인원 2명(3급 1, 4급 1)

□ 지원 필요성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농협경제지주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관리 인건비 지급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161**	**165**	**165**	**168**	**3**	**1.8**
▪ 인건비	161	165 (위탁관리인 2명)	165 (위탁관리인 2명)	168 (위탁관리인 2명)	3	1.8
□ 비목(합계)	**161**	**165**	**165**	**168**	**3**	**1.8**
○ 보수(110-01)	161	165	165	168	3	1.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용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추진경위

- ('03) 쌀소득보전기금 설치, 농협중앙회에 위탁관리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2.12)

- ('1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15.1.1)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인건비	1	1	2	2	2	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기타경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1	2	2	**2**	**-**	**-**

* 사업코드 : 20 - 45 - 0 - 100 - 101 - 7000 - 7079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이지은, ☏ 044-201-17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자산운용 업무 지원을 위한 자산운용위원회 운영비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자산운용 업무 지원을 위한 자산운용위원회 운영비 지급
사업기간	'07~계속
사업규모	2,760억원 ('19년 기금운용규모)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운영비 2백만원

○ ‘18년과 동일

▪ 산출내역: 5명 × 20만원 × 2회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 예산
□ 기타경비	2	2
■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5명 × 20만원 × 2회	5명 × 20만원 × 2회

□ 지원 필요성

○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지원을 위해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1**	**2**	**2**	**2**	**-**	**-**
▪ 자산운용위원회 운영비	1	**2** (5명×20만원×2회)	**2** (5명×20만원×2회)	**2** (5명×20만원×2회)	-	-
□ **비목**(합계)	**1**	**2**	**2**	**2**	**-**	**-**
○ 일반수용비(210-01)	1	2	2	2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22조(기금의 용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추진경위

- ('07) 기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자문위원회 운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기타경비	0.04	0.04	0.04	0.04	0.02	0.0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17) 집행잔액 발생 * ('15, '16) 3백만원, ('17) 1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0.04**	-	-	0.04	**0.01**	-	0.03
'16년	**0.04**	-	-	0.04	**0.01**	-	0.03
'17년	**0.02**	-	-	0.02	**0.01**	-	0.0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5. 사업관리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사업관리비	7,754	8,383	8,383	**9,070**	**687**	**8.2**

* 사업코드 : 20 - 45 - 0 - 100 - 101 - 7000 - 7079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이지은, ☏ 044-201-17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검사, 실경작심사위원회 개최 등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경비 지원을 통한 직불금 지급요건 검증 및 업무효율성 향상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검사, 실경작심사위원회 개최 등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경비 지원
사업기간	'03~계속
사업규모	1,295천ha, 13,185억원 ('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규모) - (쌀) 803천ha 10,561억원, (밭) 386천ha, 2,078억원, (조건) 106천ha, 546억원
지원조건	직접수행·자치단체경상보조·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검사, 경작심사위원회 개최 등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9,070백만원

○ 직불제개편협의회 운영, 전년도 직불금 지급내역 통보 등 '18년 대비 8.2% 증액

▪ 지자체 행정비 : 6,684백만원

- (전산입력 보조원) 3,641백만원 = 524명×66,800원/일×4개월
- (경작심사위원회) 2,974백만원 = 위원수당 1,888 + 위원여비 755 + 운영비 331
- (행정서식 구입) 69백만원

▪ 교육 등 운영비 : 608백만원

- (지자체 순회교육) 16, (담당자 연찬회) 57, (직불제 포럼운영) 10, (책자제작) 115, (신고포상금) 10, (지급내역 통보) 400

▪ 농약잔류검사 : 145백만원 = 2,300표본×63,043원

▪ 토양검사 : 418백만원 = 58,000표본×7,206원

▪ 상담지원센터 : 214백만원 = 인건비 203 + 시스템운영 10 + 운영비 1

▪ 조건불리지역 DB관리 : 102백만원 = 인건비 80 + 시스템관리 2 + 운영비 20

▪ 이행점검 : 399백만원 = 국내여비 299 + 현장점검시스템 유지보수 100

▪ 직불제개편협의회 운영 : 500백만원 =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관리·운영 100 + 정책과제 조사·연구 400

(단위: 백만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 사업관리비	8,383	9,070
▪ 지자체 행정비	6,952 (전산입력 보조원 3,616, 실경작심사위원회 3,267, 행정서식 69)	6,684 (전산입력 보조원 3,641, 실경작심사위원회 2,974, 행정서식 69)
▪ 교육 등 운영비	208 (순회교육 16, 연찬회 57, 직불포럼 10, 책자제작 115, 포상금 10)	608 (순회교육 16, 연찬회 57, 직불포럼 10, 책자제작 115, 포상금 10, 지급내역통보 400)
▪ 토양검사 등 자격요건 검증	1,223 (농약잔류검사 145, 토양검사 418, 상담지원센터 214, 조건불리지역DB 102, 이행점검 여비 299, 현장점검시스템 45)	1,278 (농약잔류검사 145, 토양검사 418, 상담지원센터 214, 조건불리지역DB 102, 이행점검 여비 299, 현장점검시스템 100)
▪ 직불제개편협의회 운영	-	500 (관리·운영 100, 정책과제 조사·연구 400)

□ 지원 필요성

○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요건 검증 등에 필요한 행정경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업관리비	**7,754**	**8,383**	**8,383**	**9,070**	**687**	**8.2**
▪ 지자체 행정비	4,569	**6,952** (보조원 인건비 3,616, 경작심사위원회 3,267, 행정서식 69)	**6,952** (보조원 인건비 3,616, 경작심사위원회 3,267, 행정서식 69)	**6,684** (보조원 인건비 3,641, 경작심사위원회 2,974, 행정서식 69)	△268	△3.9
▪ 교육 등 운영비	148	**208** (순회교육 16, 연찬회 57, 직불제 포럼 10, 책자 115, 포상금 10)	**208** (순회교육 16, 연찬회 57, 직불제 포럼 10, 책자 115, 포상금 10)	**608** (순회교육 16, 연찬회 57, 직불제 포럼 10, 책자 115, 포상금 10, 지급내역통보 400)	400	192.3
▪ 농약잔류검사	145	**145** (2,300표본×63,043원)	**145** (2,300표본×63,043원)	**145** (2,300표본×63,043원)	-	-
▪ 토양검사	418	**418** (58,000표본×7,206원)	**418** (58,000표본×7,206원)	**418** (58,000표본×7,206원)	-	-
▪ 상담지원센터	-	**214** (인건비 203, 운영비 11)	**214** (인건비 203, 운영비 11)	**214** (인건비 203, 운영비 11)	-	-
▪ 조건불리지역 DB관리	-	**102** (인건비 80, 운영비 22)	**102** (인건비 80, 운영비 22)	**102** (인건비 80, 운영비 22)	-	-
▪ 이행점검	2,474	**344** (국내여비 299, 현장점검시스템 45)	**344** (국내여비 299, 현장점검시스템 45)	**399** (국내여비 299, 현장점검시스템 100)	55	16.0
▪ 직불제개편협의회	-	**-**	**-**	**500** (관리·운영 100, 조사·연구 400)	500	순증
□ 비목(합계)	**7,754**	**8,383**	**8,383**	**9,070**	**687**	**8.2**
○ 일용임금(110-04)	1,900	-	-	-	-	-
○ 일반수용비(210-01)	148	208	208	308	100	48.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	-	-	-	-	-
○ 재료비(210-11)	145	145	145	145	-	-
○ 국내여비(220-01)	296	299	299	299	-	-
○ 민간경상보조(320-01)	72	361	361	1,216	855	236.8
○ 고용부담금(320-09)	191	-	-	-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987	7,370	7,370	7,102	△268	△3.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용도)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농약잔류검사에 필요한 경비

○ 추진경위
- ('03)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 도입
- ('08) 지자체 행정비 지원 시작
- ('18) 쌀·밭·조건불리직불금에 분산되어 있던 행정경비를 사업관리비로 이관, 사업관리비에 있던 이행점검비는 직불제이행점검 사업으로 이관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사업관리비	30	30	74	74	78	8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6, '17) 집행잔액 발생 * ('16) 4백만원, ('17) 33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4**	-	-	74	**74**	-	-
	(50)	(-)	(-)	(50)	**(48)**	(-)	(2)
'16년	**74**	-	-	74	**74**	-	-
	(50)	(-)	(-)	(50)	**(48)**	(-)	(2)
'17년	**78**	-	-	78	**78**	-	-
	(50)	(-)	(-)	(50)	**(48)**	(-)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890	1,168	1,168	1,168	-	-

* 사업코드 : 20 - 45 - 0 - 100 - 101 - 9200 - 9203

* 담당자 : 식량정책관(김인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김원일), 사무관(이지은, ☏ 044-201-17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상환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상환
사업기간	'17~'23
사업규모	654억원 ('19년 차입금 잔액)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168백만원

○ '18년과 동일

▪ 산출내역: 차입금 654억원 × 연 1.786%

구 분	'18예산	'19 예산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1,168백만원	1,168백만원
■ 차입금	654억원	654억원
■ 이율	연 1.786%	연 1.786%

□ 지원 필요성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상환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890**	**1,168**	**1,168**	**1,168**	**-**	**-**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890	**1,168** (654억원 × 1.786%)	**1,168** (654억원 × 1.786%)	**1,168** (654억원 × 1.786%)	-	-
□ 비목(합계)	**890**	**1,168**	**1,168**	**1,168**	**-**	**-**
○ 예수금이자(510-05)	890	1,168	1,168	1,168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22조(기금의 용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추진경위
- ('17) '16년산 수확기 쌀값이 크게 하락함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재원으로 '17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차입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	-	-	-	12	1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16년	-	-	-	-	-	-	-
'17년	1	-	11	12	9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목 차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811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812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민간이자수입 ····· 1814

2. 기타재산수입 ····· 1816

3. 법정부담금 ····· 1818

4. 기타경상이전수입 ····· 1820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821

6. 특별회계전입금 ····· 1823

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825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827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인건비 ····· 1829

2. 기타경비 ····· 1832

3.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 1835

4.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 1840

5.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 1843

6. 피해보전직불 ····· 1846

7. 폐업지원 ····· 1852

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 1857
9.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1861
10. 종자산업기반구축 ····· 1865
11. 과수생산유통지원 ····· 1871
12. 원예시설현대화 ····· 1882
13.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 1892
14.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 1899
15. 원유소비활성화 ····· 1902
16. 축사시설현대화 ····· 1906
17. 여유자금운용(통화, 비통화) ····· 1912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562,014**	**706,004**	**711,744**	**5,740**	**0.8**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54)	**10,385**	**26,969**	**28,139**	**1,170**	**4.3**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8,940	22,587	23,757	1,170	5.2
기타재산수입 (54-545)	1,445	4,382	4,382	-	-
변상금 및 위약금(57)	**240**	**-**	**-**	-	-
위약금 (57-572)	240	-	-	-	-
기타경상이전수입(59)	**113,358**	**112,460**	**115,808**	**3,348**	**3.0**
법정부담금 (59-593)	68,660	73,478	75,682	2,204	3.0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44,698	38,982	40,126	1,144	2.9
융자원금회수(75)	**188,469**	**163,376**	**188,469**	**25,093**	**1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188,469	163,376	188,469	25,093	15.4
정부예금회수(85)	**54,562**	**73,745**	**72,206**	**△1,539**	**6.5**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56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	33,185	32,997	△188	△0.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54,506	40,560	39,209	△1,351	△3.3
전입금(91)	**195,000**	**329,454**	**307,122**	**△22,332**	**△6.8**
기타특별회계전입금 (91-912)	195,000	329,454	307,122	△22,332	△6.8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562,014**	**706,004**	**711,744**	**5,740**	**0.8**
1072 직접피해지원	**7,671**	**207,675**	**206,630**	**-1,045**	**-0.5**
피해보전직불 (1072-392)	3,277	100,478	100,000	-478	-0.5
폐업지원 (1072-393)	0	102,717	102,000	-717	-0.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1072-395)	4,394	4,480	4,630	150	3.4
1151 농식품창업지원	**20,000**	**10,000**	**20,000**	**10,000**	**100.0**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151-300)	20,000	10,000	20,000	10,000	100.0
2261 농기자재산업육성	**9,338**	**9,183**	**9,561**	**378**	**4.1**
종자산업기반구축 (2261-322)	9,338	9,183	9,561	378	4.1
2275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	**5,500**	**2,000**	**-**	**-2,000**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275-300)	5,500	2,000	-	-,2000	-
3034 원예산업경쟁력강화	**185,775**	**180,146**	**183,944**	**3,798**	**2.1**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3034-303)	55,338	62,061	55,080	-6,981	-11.3
과수생산유통지원 (3034-304)	58,029	56,518	59,307	2,789	4.9
원예시설현대화 (3034-350)	41,521	40,025	29,680	-10,345	-25.9
원예시설현대화(융자) (3034-360)	30,887	21,542	15,108	-6,434	-29.9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3034-370)	0	0	12,745	12,745	순증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융자) (3034-380)	0	0	12,024	12,024	순증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3730 축산업경쟁력제고	**20,000**	**20,000**	**20,000**	**0**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3730-300)	10,000	10,000	10,000	0	-
원유소비활성화 (3730-310)	10,000	10,000	10,000	0	-
3760 축사시설현대화	**154,717**	**207,223**	**213,169**	**5,946**	**2.9**
축사시설현대화(융자) (3760-332)	118,329	158,188	164,150	5,962	3.8
축사시설현대화 (3760-346)	36,388	49,035	49,019	-16	-0.1
7079 기금운영비	**3,871**	**4,399**	**4,819**	**420**	**9.6**
인건비 (7079-101)	270	277	398	121	43.7
기타경비 (7079-201)	171	178	444	266	149.4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7079-250)	133	173	173	0	-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 (7079-252)	1,033	1,033	1,033	0	-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7079-253)	2,264	2,738	2,771	33	1.2
9706 여유자금운용	**155,142**	**65,378**	**53,621**	**-11,757**	**-18.0**
통화금융기관예치 (9706-971)	-	30,867	13,621	-17,246	-55.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6-972)	155,142	34,511	40,000	5,489	15.9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민간이자수입	8,940	22,587	23,757	1,170	5.2

1.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기금의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2. 수입 개요

○ 기금의 융자사업인 기타민간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 과원규모화(매매) : 15~30년 상환, 금리 2.0%(임대차는 무이자)
- 기타융자금 : 3년 거치 7년 상환, 금리 0.75%(농협회원조합 1.9%)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 (수정)	22,587	▪ 과원매매 : (245,366 × 2.0%) = 4,907백만원 ▪ 기타융자금 : (2,357,252 × 평균 0.75%) ≒ 17,679백만원 * 융자원금잔액 × 회수이자율
2019계획안	23,757	▪ 과원매매 : (250,459 × 2.0%) = 5,009백만원 ▪ 기타융자금 : (2,499,750 × 평균 0.75%) ≒ 18,748백만원 * 융자원금잔액 × 회수이자율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2,925	14,410	14,410	111.5	100	-	-
'15	12,984	11,357	11,357	87.5	100	-	-
'16	18,609	8,230	8,164	43.9	99.2	66	-
'17	20,959	9,035	8,940	42.7	98.9	95	-
'18	22,587	8,606	8,606	38.1	100.0	-	-

※ '18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11월말 기준

2. 기타재산수입

54-545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재산수입	1,445	4,382	4,382	-	-

1.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기금의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2. 수입 개요

○ 사업대기성 자금 등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 (수정)	4,382	▪ 여유자금 이자수익 : 916억원×1.33% ≒ 1,218백만원 ▪ 사업비 등 예치이자 수익 : 3,163백만원 * 운용평잔 916억원 * 적용금리 : FTA기금 연간운용계획에 따른 목표수익률 및 16년도 연간수익률
2019계획안	4,382	▪ 여유자금 이자수익 : 916억원×1.33% ≒ 1,218백만원 ▪ 사업비 등 예치이자 수익 : 3,163백만원 * 운용평잔 916억원 * 적용금리 : FTA기금 연간운용계획에 따른 목표수익률 및 16년도 연간수익률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276	2,550	2,550	59.6	100	-	-
‘15	3,580	2,577	2,577	72.0	100	-	-
‘16	3,407	1,733	1,733	50.9	100	-	-
‘17	4,276	1,449	1,445	33.8	99.7	-	-
‘18	4,382	3,325	3,348	76.4	100.7	-	-

※ ’18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11월말 기준

3. 법정부담금

59-593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법정부담금	68,660	73,478	75,682	2,204	3.0

1.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기금의조성)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할당물량(TRQ)이 적용되는 농축산물을 협정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공매납입금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 (수정)	73,478	▪ FTA별로 관세할당물량에 대한 공매납입금 징수 * 칠레(쇠고기 128, 유장기타 45), 아세안(강낭콩 55), 미국(분유·연유 4,598, 버터 360, 천연꿀 432, 식용감자 26, 오렌지 1,987), 호주(버터 222), 캐나다(천연꿀 104), EU(분유·연유 1,225, 버터 512, 천연꿀 69), 중국(참깨 50,000, 대두 6,300, 팥 5,100), 뉴질랜드(분유·연유 1,124, 버터 1,191) 등

2019계획안	75,682	▪ 한·뉴질랜드 FTA 버터 낙찰단가 상승 전망 등으로 '18년 대비 22억원(3.0%) 증액 * 한·뉴 버터 낙찰단가 : ('18계획) 1,363원/kg → ('19) 3,539(16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047	11,805	11,805	387.4	100	-	-
'15	8,759	9,475	9,475	108.2	100	-	-
'16	12,000	70,325	70,325	586.0	100	-	-
'17	123,507	68,660	68,660	55.6	100	-	-
'18	73,478	60,782	60,782	82.7	100	-	-

※ '18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11월말 기준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44,698	38,982	40,126	1,144	2.9

1.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기금의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의 운용수익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5조(보조금의 집행)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2. 수입 개요

○ 기금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중 사업정산 후 지출잔액의 반납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안 (수정)	38,982	▪ 37,847('15년 결산액) × 103.0% / 100
2019계획안	40,126	▪ 37,854('16년 결산액) × 106.0% / 10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7,460	22,647	22,647	303.6	100	-	-
'15	14,592	37,847	37,847	259.4	100	-	-
'16	22,647	39,316	37,854	167.1	96.3	1,462	-
'17	37,847	44,971	44,698	118.1	99.4	273	-
'18	38,982	22,498	22,498	57.7	100.0	-	-

※ '18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11월말 기준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88,469	163,376	188,469	25,093	15.4

1.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기금의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대여금의 상환 등)

2. 수입 개요

○ 기금 융자사업으로 지출된 기타민간융자금의 정기상환, 중도상환, 회계연도를 경과한 융자금의 반납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안 (수정)	163,376	▪ 16년 결산 수준 반영
2019계획안	188,469	▪ 17년 결산 수준 반영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4,574	217,856	217,856	337.4	100	-	-
‘15	105,700	155,445	155,445	147.0	100	-	-
‘16	108,871	164,311	163,377	150.1	99.4	934	-
‘17	155,445	189,212	188,469	121.2	99.6	743	-
‘18	163,376	215,999	210,716	129.0	97.6	5,283	-

※ ’18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11월말 기준

6. 기타특별회계전입금

91-9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95,000	329,454	307,122	△22,332	△6.8

1.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기금의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2. 수입 개요

○ FTA이행지원기금의 '19년도 사업비 소요액 중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이외의 부족재원에 대한 농특회계 출연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 (수정)	329,454	▪ 기금운용 규모(A) : 706,004백만원 ▪ 기금 자체수입(B) : 302,805백만원 ▪ 여유자금 회수(C) : 73,745백만원 ▪ 정부출연금(A-B-C) : 329,454백만원
2019계획안	307,122	▪ 기금운용 규모(A) : 711,744백만원 ▪ 기금 자체수입(B) : 332,416백만원 ▪ 여유자금 회수(C) : 72,206백만원 ▪ 정부출연금(A-B-C) : 307,122백만원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92,556	295,000	295,000	59.9	100	-	-
'15	506,704	380,000	380,000	75.0	100	-	-
'16	457,936	343,000	343,000	74.9	100	-	-
'17	286,096	195,000	195,000	68.2	100	-	-
'18	329,454	150,000	150,000	45.5	100	-	-

※ '18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 11월말 기준

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2)	-	33,185	32,997	△188	△0.6

1.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기금의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의 운용수익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지출잔액으로써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 중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의 회수액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 (수정)	33,185	▪ '17년말 여유자금 잔액(73,745백만원)으로 '18년 중 통화금융기관 회수 예정액
2019계획안	32,997	▪ '18년말 여유자금 잔액 예상액(72,206백만원)으로 '19년 중 통화금융기관 회수 예정액 (72,206 = '18 총조달 706,004 - 총지출 633,798)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77,203	22,944	22,944	29.7	100	-	-
'15	33,276	5,000	5,000	15.0	100	-	-
'16	42,666	-	-	-	-	-	-
'17	31,163	-	-	-	-	-	-
'18	33,185	-	-	-	-	-	-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3)	54,562	40,560	39,209	△-1,351	△3.3

1.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기금의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의 운용수익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지출잔액으로써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 중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의 회수액

3. 2019년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계획 (수정)	40,560	▪ ‘17년말 여유자금 잔액(73,745백만원)으로 ‘18년 중 비통화금융기관 회수 예정액
2019계획안	39,209	▪ ‘18년말 여유자금 잔액 예상액(72,206백만원)으로 ‘19년 중 비통화금융기관 회수 예정액 (72,206 = ‘18 총조달 706,004 - 총지출 633,798)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77,203	22,944	22,944	29.7	100	-	-
‘15	16,842	57,411	57,411	340.9	100	-	-
‘16	32,414	78,627	78,627	242.6	100	-	-
‘17	38,089	54,506	54,506	143.1	100	-	-
‘18	40,560	155,142	155,142	382.5	100.0	-	-

Ⅲ. 지출계획설명서

1. 인건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270	277	277	**398**	**121**	**43.7**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7000 - 7079 - 101

* 담 당 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완)(☎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FTA이행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위탁업무 관리비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 지급
사업기간	'04 ~ '21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위탁관리인원 5명
지원조건	민간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인건비) ('18) 277백만원 → **('19) 398백만원(증 121)**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계획
인건비(백만원)	315	290	270	277	398
정 원(A)	5	5	5	5	5
현 원(B)	3	4	5	5	5
결 원(C=A-B)	△2	△1	정·현원일치	정·현원일치	정·현원일치

* '16년, '17년 인건비 초과 지출, 여유자금운용 전문인력(CFA) 충원('17년)

□ 지원 필요성

○ FTA기금 운용·관리 수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금관리비	**270**	**277**	**277**	**398**	**121**	**43.7**
· 인 건 비	270	277	277	398	121	43.7
□ 비목 (합계)	**270**	**277**	**277**	**398**	**121**	**43.7**
○ 인건비(110)	270	277	277	398	121	43.7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운용 · 관리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 추진경위

- ’04. 3월 FTA기금관리준비반 설치(근거 : FTA특별법 제13조 등)
- ’04.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FTA기금팀 정규조직 설치 및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인건비	4	3	3	3	3	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이·불용 내역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 (3)	( )	( )	3 (3)	3 (2)	( )	( )
’16년	3 (3)	( )	( )	3 (3)	3 (3)	( )	( )
’17년	3 (3)	( )	( )	3 (3)	3 (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지출한도배정 신청(분기별) : 기금수탁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
○ 지출한도배정(분기별) : 농림축산식품부 → 기금수탁관리자
○ 자금지급(분기별) : 국고 → 기금수탁관리자

2. 기타경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171	178	178	**444**	**266**	**149.4**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7000 - 7079 - 201

* 담 당 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완)(☎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FTA이행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위탁업무 관리비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 위탁관리에 따른 경비 지급
사업기간	'04 ~ '21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위탁관리인원 5명
지원조건	민간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기타경비) ('18) 178백만원 → **('19) 444백만원(증 266)**

○ FTA기금 재정관리 자체 전산시스템 신규 구축비용 추가(268백만원)

- 기금 대여, 보조, 자금운용, 원가, 결산, 연계관리 등

* '04년 FTA기금 신설 후 현재까지 관리기간이 15년에 이르고 있으나, 대여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기로 지속 수행함에 따라 기금관리 효율성 저하

구 분	내 역	산출근기	금액
경비인상	2018년 기타경비		178
	예산 절감		△2
시스템구축	FTA기금 전산시스템 구축(신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구입비	268
총 계			444

□ 지원 필요성

○ FTA기금 운용·관리 수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금관리비	**153**	**178**	**178**	**444**	**266**	**149.4**
· 기타경비	**153**	**178**	**178**	**444**	**266**	**149.4**
□ 비목 (합계)	**153**	**178**	**178**	**444**	**266**	**149.4**
○ 운영비(210)	**132**	**147**	**147**	**153**	**6**	**4.1**
○ 여비(220)	**10**	**20**	**20**	**13**	**△7**	**△35.0**
○ 업무추진비(240)	**11**	**11**	**11**	**10**	**△1**	**△9.1**
○ 연구개발비(260)	**-**	**-**	**-**	**268**	**268**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 추진경위

- '04. 3월 FTA기금관리준비반 설치(근거 : FTA특별법 제13조 등)
- '04.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FTA기금팀 정규조직 설치 및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기타경비	2	2	2	2	2	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이·불용 내역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 (2)	( )	( )	2 (2)	2 (2)	( )	( )
'16년	2 (2)	( )	( )	2 (2)	2 (2)	( )	( )
'17년	2 (2)	( )	( )	2 (2)	2 (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지출한도배정 신청(분기별) : 기금수탁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
○ 지출한도배정(분기별) : 농림축산식품부 → 기금수탁관리자
○ 자금지급(분기별) : 국고 → 기금수탁관리자

3.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133	173	173	**173**	-	-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7000 - 7079 - 250

* 담 당 자 : 국제협력국장(정일정), 농업통상과장(김경미), 사무관(정명희)(☎044-201-2056)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FTA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의 수입권 공매 입찰시행 등 수입관리 경비지원

○ 지원내용

- FTA별 관세할당물량 수입권공매를 위한 신문공고료, 회의실사용료 등 협정관세 할당물량 수입관리

- FTA 대상국별 TRQ 농축산물의 수입여건 분석과 수급동향 조사

▪ 품목별 생산·수입 및 가격동향 조사

▪ TRQ 품목관련 수입여건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 수행

- FTA 협정관세 수입관리 위탁에 따른 업무수탁기관 인건비·경비 지원

○ 지원기준 : 민간보조 (기금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근거 : FTA특별법 제22조, 제23조 및 동법시행령22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동법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FTA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공매 입찰 시행 등 수입관리 경비 지원 - 수입권공매를 위한 공고료, 회의실사용료 등 수입관리 경비 - FTA 대상국 TRQ 수입여건 분석 및 수급동향 조사비 - 수입관리 위탁에 따른 업무수탁기관 인건비·경비 지원
사업기간	'04 ~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연간 한·칠레 3,880톤, 한·EFTA 60톤, 한·아세안 3,995톤, 한·EU 53,504톤, 한·미 82,770톤, 한·호주 11,666톤, 한·캐나다 32,215톤, 한·중 47,000톤, 한·뉴질랜드 2,513톤, 한·콜롬비아 100톤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산출근거 : ('18) 173백만원 → ('19) 173백만원

- FTA TRQ 수입권공매를 위한 신문공고, 인건비 지원 : 154백만원
- 수입여건 현지출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 13백만원
- 전자입찰 및 추천서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원 : 4백만원
- FTA 수입관리 기타부대경비(회의실 사용료, 국내출장 등) : 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FTA체결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이행협정 준수와 효율적인 수입관리 추진을 위하여 지원 필요

- 기존 관리물량 외 한·중, 한·뉴질랜드 등 신규 FTA TRQ 물량 증가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133**	**173**	**173**	**173**	**-**	**-**
○ 비목	**133**	**173**	**173**	**173**	**-**	**-**
- 민간경상보조(320-01)	133	173	173	173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동법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4년
- 추진배경 : 한·칠레 FTA에 따른 무관세 적용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 업무의 위탁관리에 따른 제경비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	1	1	1	1	1	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이·불용 내역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6년	1 (1)	( )	( )	1 (1)	1 (1)	( )	( )
'17년	1 (1)	( )	( )	1 (1)	1 (1)	( )	( )
'18년	2 (2)	( )	( )	2 (2)	2 (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일괄 집행 후 연말에 사후 정산

[참고]

2019년 수입권공매납입금 추정 산출근거

FTA 구분	품 목	계획물량(톤) (A)	낙찰단가 (천원/톤) (B)	이행률(%) (C)	수입이익금 (D=A×B×C)
칠레	쇠고기(냉동)	200	900	95.8	172,440
	유장	1,000	48	83.2	39,936
아세안	강낭콩	1,995	58	25.2	29,159
미국	분유·연유	6,150	780	96.9	4,648,293
	버터	246	2,103	75.9	392,660
	천연꿀	246	7,933	94.9	1,851,991
	식용감자	3,690	164	16.7	101,062
	오렌지	3,075	804	99.8	2,467,355
EU	분유·연유	1,229	1,223	100	1,503,067
	버터	430	2,720	100	1,169,600
	천연꿀	61	12,100	82.9	611,885
호주	버터	125	3,500	88.8	388,500
캐나다	천연꿀	120	6,293	97.9	739,302
중국	참깨	24,000	2,077	80.4	40,077,792
	콩	10,000	650	96.4	6,266,000
	팥	3,000	2,327	94.7	6,611,007
뉴질랜드	분유·연유	1,688	456	99.9	768,958
	버터	900	3,539	100	3,185,100
합 계		**58,155**	-	-	**71,024,107 (71,024백만원)**

주1) 계획물량 : 권역별 FTA 협정에 근거한 '19년도 수입권공매 계획물량

* 최근 3개년 수입권공매 낙찰실적이 없는 품목은 제외

주2) 낙찰단가 : '17년 수입권공매 입찰 평균낙찰단가

주3) 이행률 : 최근 3개년 평균 계획 대비 이행률

4.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	1,033	1,033	1,033	**1,033**	-	-

* 사업코드 : 20 - 46 - 00 - 100 - 101 - 7000 - 7079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최종순)☎(044-201-22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 지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과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지자체 책임하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조사비용과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비 등 지원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사업추진 워크샵·교육 등 운영비 지원

○ '04년 이후 기금의 지원분야 및 규모 확대에 따라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조사비 지원 · FTA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지원
사업기간	2004년 ~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지원조건	국비 100%,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지역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집행, 점검 등 경비

('18) 1,033백만원 → **('19) 1,033**

- 사업운영비 : 115백만원(('18)115 → ('19)115)
- 사업 성과평가 : 80백만원(('18)80 → ('19)80)
- 지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지원 : 838백만원(('18)838 → ('19)838)

□ 지원 필요성

○ FTA 대응 강화, 신규사업자 선정, 워크샵·교육,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	**1,033**	**1,033**	**-**	**1,033**	**-**	**-**
▪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 (산출근거)	1,033 (운영비)115백만원 (성과평가)80백만원 (계획수립지원)838백만원	1,033 (운영비)115백만원 (성과평가)80백만원 (계획수립지원)838백만원	-	1,033 (운영비)115백만원 (성과평가)80백만원 (계획수립지원)838백만원	-	-
□ 비목(합계)	**1,033**	**1,033**	**-**	**1,033**	-	-
○ 일반수용비(210-01)	115	115	-	115	-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0	838	-	838	-	-
○ 민간경상보조 (320-01)	838	80	-	8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 국회비준(2004.2.16) :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지원법 제정(2004.3.22) : FTA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FTA이행특별법 발효 : 2004. 4. 1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 11. 6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	10	10	10	10	10	1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 (10)	- (-)	- (-)	10 (10)	10 (10)	- (-)	- (-)
'16년	10 (10)	- (-)	- (-)	10 (10)	10 (10)	- (-)	- (-)
'17년	10 (10)	- (-)	- (-)	10 (10)	10 (1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운영비 : 농식품부 직접 집행

○ 민간경상이전 : 기금수탁관리기관을 통한 집행 후 정산

5.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2,264	2,738	2,738	**2,771**	**33**	**1.2**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7000 - 7079

* 담당자: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최종순)☎(044-201-22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원규모화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과원규모화사업의 사업관리비 및 사업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관리수수료 : 사업시행 종사원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 경비 지급
- 제세공과금 :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농특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업관리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지원
사업기간	2004년 ~
총사업비	해당 없음('16년까지 192억 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보조(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과원규모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18) 2,738백만원 → **('19) 2,771**

- 사업관리수수료 : 1,741백만원(('18)1,741 → ('19)1,741)
- 제세공과금 : 1,030백만원(('18)997 → ('19)1,030)

□ 지원 필요성

○ 사업관리수수료

- '16년도까지 지원한 전업농 관리 및 채권회수,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 보장과 과원규모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계속 지원 필요

○ 제세공과금

- 사업시행자가 선집행한 금액으로 예산반영 필수

○ 사업관리비의 지원대상인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수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과원의 규모화·집단화, 과원영농규모의 적정화, 과수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과원농지 이용의 효율화, 과원시장안정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2,265**	**2,738**	**2,738**	**2,771**	**33**	**1.2**
▪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산출근거)	2,265	2,738 (수수료)202,490백만원×0.86% (제세공과금)997백만원	2,738 (수수료)202,490백만원×0.86% (제세공과금)997백만원	2,771 (수수료)202,490백만원×0.86% (제세공과금)1,030백만원	33	1.2
□ 비목(합계)	**2,265**	**2,738**	**2,738**	**2,771**	33	1.2
○ 민간경상보조 (320-01)	2,265	2,738	2,738	2,771	33	1.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 추진경위
- 한・칠레FTA 국회비준 : '04. 2. 16
- FTA지원특별법 지원법 제정 : '04. 3. 22
- FTA이행특별법 발효 : '04. 4. 1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 11. 6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한·중 FTA 타결 : '14. 11. 10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19	19	19	20	25	2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과원규모화 사업비 실집행률(96.13%)을 반영하여 사업운영비를 확정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 (19)	( )	( )	19 (19)	19 (19)	( )	( )
'16년	20 (20)	( )	( )	20 (20)	20 (20)	( )	( )
'17년	25 (25)	( )	( )	25 (25)	23 (23)	( )	2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6. 피해보전직불(의무,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피해보전직불	3,276	100,478	100,478	**100,000**	**△478**	**△0.5**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72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완)☎(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FTA 이행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
사업기간	'04~'25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 법인은 50백만원, 개인은 35백만원 한도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위한 사업비 100,000백만원 요구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총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직불제 발동요건 충족 가능품목을 전망·산정

※ FTA이행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되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

○ **세부산출내역**

〈식량분야〉 1,980백만원

- 밀 : 10,440ha × 3,197kg/ha × 75원/kg × 64.90% = 1,619백만 원
- 녹두 : 1,821ha × 963kg/ha × 1,051원/kg × 19.60% = 361백만 원

〈원예분야〉 26,333백만원

- 체리 : 183ha × 6,073kg/ha × 1,343원/kg × 23.45% = 350백만 원
- 키위 : 1,395ha × 18,113kg/ha × 289원/kg × 22.73% = 1,661백만 원
- 딸기 : 5,978ha × 30,930kg/ha × 988원/kg × 13.17% = 24,055백만 원
- 카네이션 : 62ha × 56,345kg/ha × 654원/kg × 11.67% = 267백만 원

〈임업분야〉 536백만원

- 호두 : 1,904ha × 590kg/ha × 3,017원/kg × 15.82% = 536백만 원

〈축산분야〉 71,151백만원

- 쇠고기(한우) : 738,867마리 × 50천원/마리 × 25.50% = 9,386백만 원
- 쇠고기(육우) : 64,592마리 × 404천원/마리 × 24.10% = 6,282백만 원
- 돼지고기 : 16,545,492마리 × 13천원/마리 × 26.17% = 55,471백만 원
- 우유 : 2,069,581톤 × 47원/kg × 12.30% = 12백만 원

* 당년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 전망가격 적용
* 재배면적(생산량)은 '16년도(키위·호두는 '15년도) 기준 적용
* 평균단수는 '12~'16년 단수 중 최대·최솟값을 제외한 평균
* 수입기여도는 '13~'17년 계측결과를 감안하여 추정

□ 지원 필요성

○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의 관세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영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피해보전직불	3,276	100,478	100,478	100,000	-	-
▪ 식량분야 (산출근거)		1,861 · 팥 : 6,905톤×444원/kg×25.0% = 766 · 녹두: 2,322톤×1,464원/kg×32.21% = 1,095	1,861 · 팥 : 6,905톤×444원/kg×25.0% = 766 · 녹두: 2,322톤×1,464원/kg×32.21% = 1,095	1,980 · 밀 : 10,440ha×319.7kg/ha ×75원/kg ×64.90% = 1,619 · 녹두 : 1,821ha×96.3kg/ha ×1,051원/kg×19.60% = 361		
▪ 원예분야 (산출근거)		95,494 · 채리 : 656톤× 451원/kg×83.55% = 247 · 당근 : 83,316톤×157원/kg×26.85% = 3,506 · 양파 : 1,589,957톤×172원/kg×25.0% = 68,403 · 참깨 : 12,158톤×1,059원/kg×26.0% = 3,349 · 키위 : 23,933톤×476원/kg×54.6% = 6,222 · 시설포도: 268,556톤×95원/kg×20.25% = 5,179 ·노지감귤: 722,325톤×51원/kg×23.48% = 8,588	95,494 · 채리 : 656톤× 451원/kg×83.55% = 247 · 당근 : 83,316톤×157원/kg×26.85% = 3,506 · 양파 : 1,589,957톤×172원/kg×25.0% = 68,403 · 참깨 : 12,158톤×1,059원/kg×26.0% = 3,349 · 키위 : 23,933톤×476원/kg×54.6% = 6,222 · 시설포도: 268,556톤×95원/kg×20.25% = 5,179 ·노지감귤: 722,325톤×51원/kg×23.48% = 8,588	26,333 · 채리 : 183ha×6,073kg/ha ×1,343원/kg×23.45% = 350 · 키위 : 1,395ha× 18,113kg/ha ×289원/kg×22.73% = 1,661 · 딸기 : 5,978ha×30,930kg/ha ×988원/kg×13.17% = 24,055 · 카네이션 : 62ha× 56,345kg/ha ×654원/kg×11.67% = 267		
▪ 임업분야 (산출근거)	3,276	3,124 · 밤 : 59,465톤×473원/kg×11.10% = 3,124	3,124 · 밤 : 59,465톤×473원/kg×11.10% = 3,124	536 · 호두 : 1,940ha×590kg/ha ×3,017원/kg×15.82% = 536		
▪ 축산분야 (산출근거)		-	-	71,151 · 한우 : 738,867마리 × 50천원/마리 ×25.50% = 9,386 · 육우 : 64,592마리 × 404천원/마리 ×24.10% = 6,282 · 돼지고기 : 16,545,492마리 × 13천원/마리 ×26.17% = 55,471 · 우유 : 2,069,581톤 × 47원/kg × 12.30% = 12		
□ 비목(합계)	3,276	100,478	100,478	10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276	100,478	100,478	100,0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 추진경위

- 한·칠레 FTA('04.4월)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FTA지원특별법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에 근거하여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한·EU FTA 여야정 합의 따라 FTA지원특별법 전부개정('11.7월) 시행('11.10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0%→85), 피해보전 비율상향(85%→90), 시행기간 연장(한·EU FTA발효일로부터 10년, '21.6.30)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12.1월)·시행('12.4월), 피해보전 발동기준 완화(85%→90), 지급한도 설정(법인 5천만원, 농업인 3.5천만원)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농어업법 개정·시행('17.1월), 피해보전 비율상향(90%→95), 시행기간 연장(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25.12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피해보전직불	600	1,005	1,005	1,005	1,005	1,00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농업인등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금액에 대하여 전액지원, 폐업지원금 신청금액이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불용예상액 일부를 FTA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폐업지원('15년)

○ **(불용)** 피해보전직불금 집행잔액('15년, '17년)

* '17년도에는 지원품목이 도라지만 선정되어 자금 지원이후 집행잔액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05 ( )	- ( )	△123 ( )	882 ( )	495 ( )	- ( )	387 ( )
'16년	1,005 ( )	- ( )	△604 ( )	401 ( )	401 ( )	- ( )	- ( )
'17년	1,005 ( )	- ( )	- ( )	1,005 ( )	33 ( )	- ( )	97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액 하한선 설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피해보전비율을 95%로 상향조정하도록 할 것('15년 상임위, 결산국회)
⇒「FTA 농어업법」개정('17.1월)을 통해 피해보전비율 95% 상향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제를 조기에 개선할 것('15년 상임위)
⇒ 한·중 FTA 국내대책 수립과 연계하여 시행기간 연장, 지원 대상품목·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등의 이의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평가결과)** 기재부 '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미흡 : 성과지표 목표치를 매년 100%로 하여 목표설정의 적극성 부족 ⇒ 성과목표치 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월	·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공고(농식품부)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잠정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 신청	5~7월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 생산지·농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조정계수 산정	10월	·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 분석(농식품부) · 지급가능 보조액 초과여부에 따라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확정(농식품부) 또는 조정계수 별도 심의·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조정계수 통보(농식품부 → 시·도)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 자금배정 요청(시·도 → 농식품부)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7. 폐업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폐업지원	-	102,717	102,717	**102,000**	**△717**	**△0.7**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72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완)☎(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3년간 순수익)을 지급함으로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FTA 이행으로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등이 폐업을 할 경우 3년치 순수익액 지원
사업기간	('16) '04~'16 → ('17) '04~'20 *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FTA 농어업법 개정)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위한 사업비 102,000백만원 요구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총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폐업지원제 발동요건 충족 가능품목을 전망·산정

※ FTA이행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되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

○ **세부산출내역**

〈원예분야〉 9,757백만원
- 체리 : 34ha × 32,474천원/ha = 1,105백만 원
- 키위 : 299ha × 28,984천원/ha = 8,652백만 원

〈임업분야〉 3,447백만원
- 호두 : 286ha × 12,070천원/ha = 3,447백만 원

〈축산분야〉 88,795백만원
- 한우비육우 : 15,516마리 × 1,543천원/마리 = 23,939백만 원
- 육우 : 775마리 × 1,345천원/마리 = 1,042백만 원
- 돼지 : 16,545천마리 × 263천원/마리 = 30,498백만 원
- 젖소 : 4,760마리 × 6,999천원/마리 = 33,316백만 원

* 순수익 : '12~'16년 통계청·산림청「생산비 자료」, 농진청「농산물 소득자료집」활용
* 재배면적(생산량)은 통계청 '16년도 자료, 호두는 산림청「임업통계연보」'15년 자료 축산은 '16년 도축마리수 자료

□ 지원 필요성

○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의 관세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상버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업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폐업지원	-	102,717	102,717	102,000	-	-
▪ 원예분야 (산출근거)		101,202 · 키위 : 124ha × 3,285천원/ha = 4,076 · 만감류 : 132ha × 13,947천원/ha = 18,440 · 시설포도 : 155ha × 9,015천원/ha = 13,946 · 시설감귤 : 205ha × 31,620천원/ha = 64,740	101,202 · 키위 : 124ha × 3,285천원/ha = 4,076 · 만감류 : 132ha × 13,947천원/ha = 18,440 · 시설포도 : 155ha × 9,015천원/ha = 13,946 · 시설감귤 : 205ha × 31,620천원/ha = 64,740	9,757 · 체리 : 34ha × 32,474천원/ha =1,105 · 키위 : 299ha × 28,984천원/ha = 8,652		
▪ 임업분야 (산출근거)		830 · 호두 : 84ha × 987천원/ha = 830	830 · 호두 : 84ha × 987천원/ha = 830	3,447 · 호두 : 286ha × 12,070천원/ha = 3,447		
▪ 축산분야 (산출근거)		686 · 오리고기 : 2,486천두 × 276원/마리 = 686	686 · 오리고기 : 2,486천두 × 276원/마리 = 686	88,795 · 한우비육우 : 15,516마리 × 1,543천원/마리 = 23,939 · 육우 : 755마리 × 1,345천원/마리 = 1,042 · 돼지 : 16,545마리 × 263천원/마리 = 30,498 · 젖소 : 4,760마리 × 6,999천원/마리 = 33,316		
□ 비목(합계)	-	102,717	102,717	102,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102,717	102,717	102,0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폐업지원)

○ 추진경위

- 한·칠레 FTA('04.4월)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FTA 지원특별법 제6조(폐업지원)에 근거하여 폐업지원제도 도입
  ·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를 사전지정하고, '04~'08년까지 2,377억원 지급
- 한·EU FTA 여야정 합의 따라 FTA 지원특별법 개정시행('11.10월), 폐업지원 산출방법 개선(순수입 → 순수익), 대상품목 확대(사전지정 → 사후지정(모든품목)) 시행기간 연장(한·EU FTA발효일로부터 5년, '16.6.30)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 농어업법」 개정·시행('17.1월), 시행기간 연장(한·중FTA발효일로부터 5년, '20.12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폐업지원	1,027	1,027	1,027	1,027	1,027	1,02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폐업지원금 신청금액이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불용예상액을 FTA기금 운용계획 변경하여 폐업지원

* 변경내역: ('15년) 123억원 → ('16년) 940

- '16년도에 폐업지원금 신청액(1,967억원)이 당초 예산(1,027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불용예상액(604억원)을 자체 기금계획 변경(1차), 기재부와 협의하여 FTA기금 여유자금(336억원)을 기금계획 변경(2차)하여 폐업지원에 활용

○ **(불용)**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27** ( )	- ( )	123 ( )	1,150 ( )	**1,150** ( )	- ( )	- ( )
'16년	**1,027** ( )	- ( )	940 ( )	1,967 ( )	**1,967** ( )	- ( )	- ( )
'17년	**1,027** ( )	- ( )	- ( )	1,027 ( )	**-** ( )	- ( )	1,02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폐업지원 신청 농가의 폐업이행 촉진방안 마련 필요('17년 상임위, 결산국회)

- 폐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품목전화 농가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 **(평가결과)** 기재부 '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미흡 : 성과지표 목표치를 매년 100%로 하여 목표설정의 적극성 부족 ⇒ 성과목표치 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	· 폐업지원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 폐업지원 요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신청	5~7월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 폐업 신청지,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연차별계획 수립 (필요시)	10월	· 재정여건 및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시·도)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농식품부)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에 따른 자금 배정 요청(시·도) · 자금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지원금 지급	11~12월	· 폐업 예정지 최종 확인(시·군·구) ·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시·군·구 → 농업인등) ·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농업인등 → 시·군·구) ·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4,394	4,480	4,480	**4,630**	**150**	**3.3**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1000 - 1072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완)☎(044-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의 국내 농축산물 피해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업인 상담지원, FTA 분야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여 직접피해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FTA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축산물의 피해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업인에 대한 상담지원 역할 수행 - FTA 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형성
사업기간	'04 ~ '21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FTA 이행지원센터운영 출연금 100%,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 공모선정 사업시행자(FTA분야 교육·홍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FTA이행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4,630백만원 요구

- 신규 FTA 체결 및 기체결 FTA 사후영향 평가 등 이행지원 업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모든 FTA에 공통 적용되는 업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1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FTA지원센터 운영비 산출
- FTA 이행지원 교육·홍보 사업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 일부 증액

▪ 산출내역: FTA이행지원센터운영 사업비 1,535백만원 + FTA 이행지원 교육·홍보 사업 3,095백만원

* FTA이행지원센터운영비

· 연구전문인력 인건비(16명) : 792백만원

· 경상운영비(공과금, 공공요금, 장비유지보수 등) : 53백만원

· 사업비(여비, DB구축 운영, 자문회의 등) : 69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영연방, 중국 등 농업강국과의 FTA 추진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 동향, 국내 수입 및 가격 연계성 조사·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 직접피해지원제도 운영 지원이 필요

-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운영을 위한 국내 수입 및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농업인 상담 치 교육·홍보 사업 추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4,394	4,480	4,480	4,630		
▪ FTA이행지원센터운영 (산출근거)	1,535	1,535 ▪ 인건비: 792 ▪ 운영비: 53 ▪ 사업비:690	1,535 ▪ 인건비: 792 ▪ 운영비: 53 ▪ 사업비:690	1,535 ▪ 인건비: 792 ▪ 운영비: 53 ▪ 사업비:690		
▪ FTA분야 교육·홍보 (산출근거)	2,859	2,945 ▪ 교육홍보비 2,945	2,945 ▪ 교육홍보비 2,945	3,095 ▪ 교육홍보비: 3,095		
□ 비목(합계)	4,394	4,480	4,480	4,630		
○ 출연금(350-01)	1,535	1,535	1,535	1,535		
○ 민간경상보조(320-01)	2,859	2,945	2,945	3,095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

○ 추진경위

- 한·EU FTA 여·야·정 합의('11.5.2)에 따라 한·EU FTA 발효, 한·미FTA 비준 등에 대비하기 위해 FTA지원특별법을 개정('11.7.21),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등 직접 피해보전제도 시행근거 마련

* 직접피해보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의무화

- 한미 FTA 국내대책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 경쟁력 강화대책"('11.8),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12.3.7)

* 농업분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분야(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중 FTA('15.12 발효) 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한·중 FTA 발효 후 10년) 및 수입기여도('15.11, 여·야·정 합의) 산정관련 절차 마련 등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FTA이행지원센터운영	14	14	45	45	45	4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5 ( )	( )	( )	45 ( )	45 ( )	( )	( )
'16년	45 ( )	( )	( )	45 ( )	45 ( )	( )	( )
'17년	45 ( )	( )	( )	45 ( )	44 ( )	( )	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FTA 교육·홍보사업에 aT, 농정원 등 공공기관 참여('16 결산 상임위)

- 본 사업의 공공기관 공모 참여가 금지된 것은 아니나, 향후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참여를 최소화할 계획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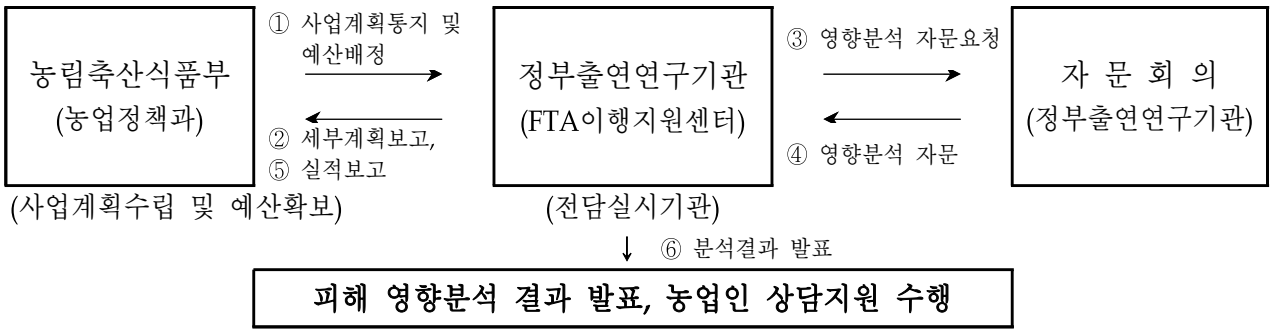

9.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1100 - 115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금융정책과장(이시혜), 사무관(허정은)☎(044-201-175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 확대로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정부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하여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한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
사업기간	'10~'40(30년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20년까지 1조원 농식품투자조합 조성
지원조건	출자 100% * 모태펀드 출자+민간자본 매칭, 펀드 결성 후 투자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주관기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청년 창업농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펀드, 스마트팜 등 농식품 혁신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000 백만원

- 농식품벤처펀드: 10,000백만원(12,500 백만원x0.8(매칭비율)x1개)
- 마이크로펀드: 10,000백만원(6,250 백만원x0.8(매칭비율)x2개)

□ 지원 필요성

○ 농식품분야에 집중투자 하는 특수목적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우수한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산출근거)	20,000 (일반펀드 =20,000*0.5*2개)	10,000 (농식품벤처펀드 =12,500*0.8*1개)	10,000 (농식품벤처펀드 =12,500*0.8*1개)	10,000 (농식품벤처펀드 =12,500*0.8*1개) 10,000 (마이크로펀드 =6,250*0.8*2개)	10,000	100
□ 비목(합계)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
○ 일반출자금(460-01)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 추진경위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분과 보고에 농어업금융 개편방안으로 '민간참여형 직접투자 방식' 포함('09.4.16)
- 농어업 투자 촉진을 위한 농어업 펀드 조성·운용 계획 수립 ('09.8.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09.9.3, 장관방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09.10.27)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10.5.26)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00	600	500	300	200	1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자펀드 투자실적 제고 및 농식품분야 투자율 상향 필요('17년 예정처, 국감)

→ 연차별 의무투자비율 상향('17.12.) 및 특수목적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농식품분야 투자율 상향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출자) ⇒ ②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민간과 매칭하여 창투사 등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 ⇒ ③ 자펀드가 성장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에 투자 ⇒ ④ 농식품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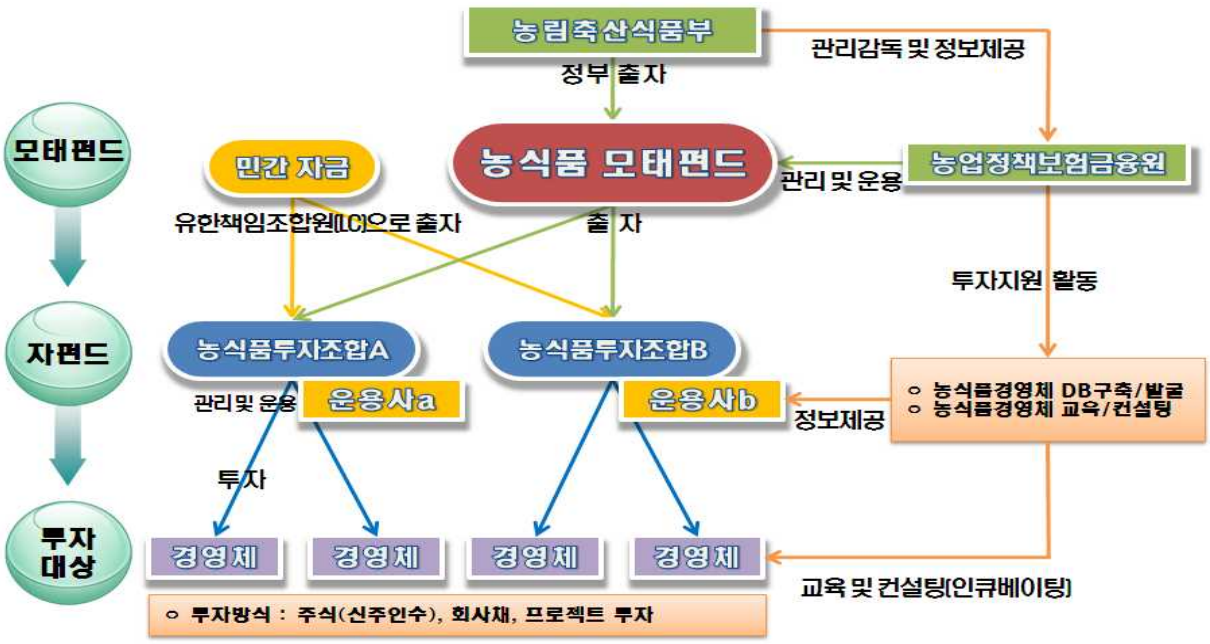

10. 종자산업기반구축(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종자산업기반구축	9,338	9,183	9,183	**9,561**	**378**	**4.1**

* 사업코드 : 20 - 46 - 계정(×) - 100 - 101 - 2200 - 2261
* 담당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종자생명산업과장(최근진), 연구관(양미희) ☎(044-201-24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국제종자박람회 등 종자산업 가치홍보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우수 종묘(종자) 증식·보급 기반조성(시설, 장비) 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종자산업 가치홍보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우수종묘 증식·보급기반 구축(12~15개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종자산업 홍보(1식),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1식)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 30～50%(우수종묘 증식보급기반 구축) 민간경상보조 100%(진흥센터 운영 및 홍보)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우수종묘 증식보급기반 구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홍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7,210백만원

▪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육묘업 제도화 등 보급기반 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18년과 동일 수준 요구

▪ 산출내역

- 계속사업 : 씨감자, 종균배양센터 등 1,050백만원

・씨감자 750백만원(1,5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1개소) + 종균배양센터 300백만원(1,000백만원×지자체 보조 30%×1개소)

- 신규사업 : 딸기원묘, 과수묘목 등 증식보급기반 6,160백만원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 14개소×지자체 보조 30~50%×880백만원

○ 종자산업 홍보 : 종자산업 가치홍보에 필요한 715백만원 요구(전년동)

▪ 산출내역

- 종자산업 가치홍보 : 15백만원

・종자제도 교육홍보(1식×5백만원) + 종자산업 워크숍(1식×10백만원)

- 국제 종자산업 박람회 : 700백만원

・전시관 및 전시포 조성, 박람회 홍보 및 운영비

○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 1,636백만원

▪ 분석장비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발생 등 '18년 대비 23.1% 증액

▪ 산출내역(1,636백만원)

- 센터·단지 운영비 : 827백만원

・센터 및 단지 운영・관리비 417백만원

・인건비 290백만원(분석, 농감 등 전문계약직 및 기간제 등 11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운영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120백만원

- 육종연구 지원 : 809백만원

・분자표지 및 기능성 분석서비스 등 469백만원

・분석장비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3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원예・약용작물・종균은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어도 효과적인 증식・보급 체계가 없어 농가의 우수 품종재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12년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외국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부담 완화를 위해 국산 품종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정부 지원 필요

○ 농가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보급종 씨감자(정부, 지자체) 및 고구마 종순의 공급요구 증대

○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16) 및 운영에 따라 단지 내 설치된 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수출지원, 연구지원 등 종자산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관된 지원체계 운영 필요

○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를 통한 종자수출 확대 및 종자산업 가치홍보 등을 통한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종자산업기반구축**	**9,338**	**9,183**	**9,183**	**9,561**	**378**	**4.1**
▪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구축	7,565	**7,210**	**7,210**	**7,210**	-	-
- 증식보급시설 구축	7,565	**7,210** (15개×1,000백만×30~50%)	**7,210** (15개×1,000백만×30~50%)	**7,210** (15개×1,000백만×30~50%)	-	-
▪ 종자산업 홍보	515	**715**	**715**	**715**	-	-
- 종자산업 가치홍보	15	**15** (1개×15백만×100%)	**15** (1개×15백만×100%)	**15** (1개×15백만×100%)	-	-
- 국제종자박람회	500	**700** (1식×700백만×100%)	**700** (1식×700백만×100%)	**700** (1식×700백만×100%)	-	-
▪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1,258	**1,258**	**1,258**	**1,636**	378	30.0
-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및 연구지원	1,258	**1,258** (1식×1,258백만×100%)	**1,258** (1식×1,258백만×100%)	**1,636** (1식×1,636백만×100%)	378	30.0
□ **비목**(합계)	**9,338**	**9,183**	**9,183**	**9,561**	**378**	**4.1**
○ 민간경상보조(320-01)	1,773	1,973	1,973	2,351	378	19.2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565	7,210	7,210	7,21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 개발·생산·보급·가공·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 및 묘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 종자산업법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장관주재 종자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06~'07.3월, 3회) : 종자 증식·보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
- FTA농업분야 보완대책 중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의 우수종자 보급 내용 포함('07.6월)
-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수립('09.10월)
  → 동 대책의 세부과제로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및 씨감자생산기반구축사업 추진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16년)
-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7년) 및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8년)
- 종자산업법에 따른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시행('18.1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종자산업기반구축	111	117	92	94	93	9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최근 3년간 이불용 실적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2	-	-	92	90	-	1
	(90)	(53)	(-)	(143)	(57)	(85)	(1)
'16년	94	-	-	94	94	-	-
	(94)	(85)	(-)	(179)	(118)	(41)	(20)
'17년	93	-	-	93	93	-	-
	(93)	(41)	(-)	(134)	(96)	(38)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 상임위) 보조금 연차별 비율 개선 등 이월액 발생 최소화 방안 필요

⇒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이월 발생 최소화 및 사업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보조금 배분 비율 조정

○ ('16년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동 사업의 '정상추진' 통보를 받았으며,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또한, 보조사업 집행·선정·사후관리·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해서도 적정 평가를 받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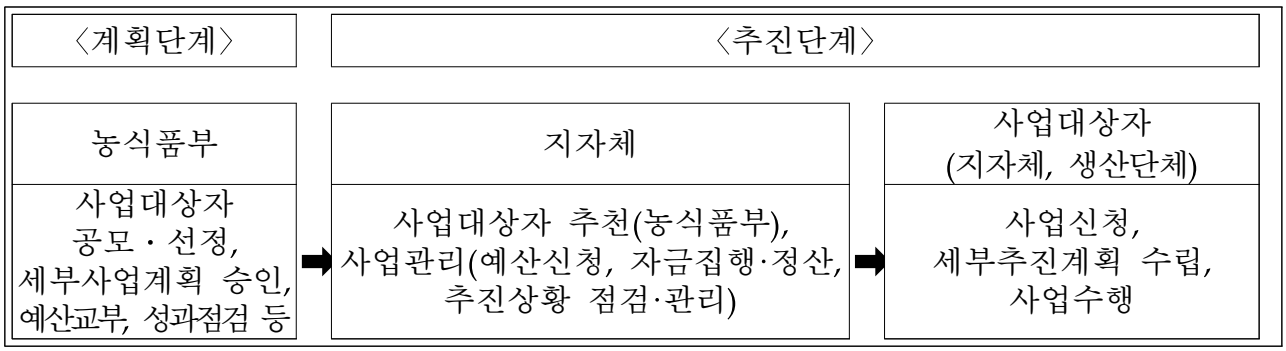

11.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보조)(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과수생산유통지원	113,367	118,579	118,579	**114,387**	**△4,192**	**△3.5**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55,338	62,061	62,061	**55,080**	**△6,981**	**△11.2**
-과수생산유통지원(보조)	58,029	56,518	56,518	**59,307**	**2,789**	**4.9**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000 - 3034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최종순)☎(044-201-22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과수농가 등의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비(융자・보조)를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고품질 과실의 생산·유통 등 계열화 지원으로 유통 규모화·마케팅 일원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2004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과실전문생산단지 11.6천ha 조성 ▪ 꽃가루생산단지조성 : 70ha 조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생산시설현대화 83천ha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35개소 건립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 ICT를 접목한 온습도 등 자동제어시설 지원 ▪ 유통시설현대화 : 유통시설현대화 25개소 ▪ 과실브랜드육성 : 과수전국공동브랜드 1개소, 과수지역공동브랜드 27개소 ▪ 과원규모화 : 과수전업농 30천호 육성

지원조건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조사설계비: 민간보조(국비 100%) - 기반조성비: 지자체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2년(1년차 30%, 2년차 70%) ▪ 과수우량묘목생산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민간보조(국비 100%)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 - 지자체 추진사업: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자체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과수 스마트팜 확산 - 융복합 확산: 지자체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컨설팅: 민간보조(국비 100%)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일반: 지자체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보완사업: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유통시설현대화 : 자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과실브랜드육성 - 전국단위: 민간보조(국비 70%, 자부담 30) - 지역단위: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3년 ▪ 과원규모화 - 매 매: 지원상한 15천원/㎡, 15~30년 상환 (연리2.0%) - 임대차: 지원단가는 지역시세 반영, 5~10년 균분상환 (무이자)
사업시행주체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우량묘목생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시·군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수 스마트팜 확산: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농정원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유통시설현대화: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과실브랜드육성: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도지사 ▪ 과원규모화: 한국농어촌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갖춘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18) 19,361백만원 → **('19) 21,181**

- 조사설계비 : 800ha × 461천원/ha × 100% = 369백만원
- 기반조성비 : 20,812백만원
  - (계속) 800ha × 32,520천원/ha × 80% × 70% = 14,569백만원
  - (신규) 800ha × 32,520천원/ha × 80% × 30% = 6,243백만원

○ **과수우량묘목생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무병묘 공급사업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대행, 외국의 사례를 감안한 기반조성 사업비 ('18) 500백만원 → **('19) 500**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 500백만원
  - 무병품종선발·도입 : 200, 장비구입 및 시설장비개보수 : 300
  - 보급종 공급에 따른 바이러스 검정수 증가로 검정장비 증설 등

  * '18년부터 중앙센터운영비 지원 중단(무병원종 증식, 병해충 검정 등)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설치, 기계·장비 확보 사업비 ('18) 363백만원 → **('19) 363**

- (보조) 5ha × 145백만원/ha × 50% = 363백만원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농가 시설현대화 등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비 ('18) 45,898백만원 → **('19) 45,431**

- (보조) 3,150ha × 47,710천원 × 20% = 30,071백만원
- (융자) 2,900ha × 47,710천원 × 30% × 37%(실집행률 적용) = 15,360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과수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사업비 ('18) 1,740백만원 → **('19) 920**

- (보조) 100호(호/0.33ha) × 20백만원 × 20% = 400
- (융자) 100호(호/0.33ha) × 20백만원 × 30% × 70%(실집행률) = 420
- (민간보조) 200농가(컨설팅) × 0.5백만원 × 100% = 100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신규 및 보완 사업비 ('18) 3,942백만원 → **('19) 4,227**

- (보완) 5개소 × 1,691백만원 × 50%(공공유형 보조율)= 4,227

○ **유통시설현대화:**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8) 1,800백만원 → **('19) 1,350**

- (보조) 유통시설현대화 3개소 × 1,500백만원 × 30%= 1,350백만원

○ **과실브랜드육성:** 과수 브랜드 교육·홍보·마케팅지원을 위한 사업비 ('18) 1,325백만원 → **('19) 1,115**

- 전국공동브랜드(과수) : ('18) 665백만원 → ('19) 665
  - 950백만원 × 1개소 × 70%(보조율) = 665
- 지역공동브랜드(과수) : ('18) 660백만원 → ('19) 450
  - (계속) 900백만원 × 1개소(제주,2년차)× 30%(국고보조) = 270
  - (신규) 600백만원 × 1개소(충북,1년차)× 30%(국고보조) = 180

○ **과원규모화:**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8) 42,900백만원 → **('19) 39,300**

- 과원매매 : 180ha × 180백만원 × 융자 100% = 32,400
- 과원임대차 : 100ha × 69백만원 × 융자 100% = 6,900

□ **지원 필요성**

○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과수의 경쟁력 제고, 과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생산·유통 계열화로 과수전업농 규성 및 유통규모화로 과수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과수생산유통 지원(보조/융자)	113,367	118,579	118,579	114,387	△4,192	△3.5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6,712 (조사설계)700ha×461천원×100% (계속)600ha×32,520천원×80%×70% (신규)700ha×32,520천원×80%×30%	19,361 (조사설계)800ha×461천원×100% (계속)700ha×32,520천원×80%×70% (신규)800ha×32,520천원×80%×30%	19,361 (조사설계)800ha×461천원×100% (계속)700ha×32,520천원×80%×70% (신규)800ha×32,520천원×80%×30%	21,181 (조사설계)8000ha×461천원×100% (계속)800ha×32,520천원×80%×70% (신규)800ha×32,520천원×80%×30%	1,820	9.4
▪ 과수우량묘목생산	539 (센터운영 : 239) 1식×399백만×60% (기반조성 : 300) 1식×300백만× 100%	500 (1식×500백만×100%)	500 (1식×500백만×100%)	500 (1식×500백만×100%)	-	-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230 (5ha×145백만×50%)	363 (5ha×145백만×50%)	363 (5ha×145백만×50%)	363 (5ha×145백만× 50%)	-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48,668 (보조)3,200ha×47,710천원×20% (융자)3,200ha×47,710천원×30% ×40%	45,898 (보조)2,900ha×47,710천원×20% (융자)3,200ha×47,710천원×30% ×40%	45,898 (보조)2,900ha×47,710천원×20% (융자)3,200ha×47,710천원×30% ×40%	45,431 (보조)3,150ha×47,710천원×20% (융자)2,900ha×47,710천원×30% ×37%	△467	△1.0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366 (보조) 200농가 × 20백만× 20% (융자) 200농가 × 20백만× 30% × 70% (컨설팅)200농가×0.5백만×100%	1,740 (보조)200농가×20백만×20% (융자)200농가×20백만×30%×70% (컨설팅)200농가×0.5백만×100%	1,740 (보조)200농가×20백만×20% (융자)200농가×20백만×30%×70% (컨설팅)200농가×0.5백만×100%	920 (보조)100농가×20백만×20% (융자)100농가×20백만×30%×70% (컨설팅)200농가×0.5백만×100%	△820	△47.1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4,207 (계속)1개소×8,000백만×40%×70% (보완- 공공 1개소) 3,000백만×50%	3,942 (신선편이-3개소)3개소×600백만×50% (보완- 공공 3개소) 3개소×2,028백만×50%	3,942 (신선편이-3개소)3개소×600백만×50% (보완- 공공 3개소) 3개소×2,028백만×50%	4,227 (5개소×1,691백만×50%)	285	7.2
▪ 유통시설현대화	4,330 3개소×1,500백만×30% (유자부산물)1,500백만×30% (감귤포장상자제조시설건립)9,000백만×1년×1개소×30%	1,800 (4개소×1,500백만×30%)	1,800 (4개소×1,500백만×30%)	1,350 (3개소×1,500백만×30%)	△450	△25.0
▪ 과실브랜드육성	1,415 (전국)950백만×70% (지역)(계속 300백만/2개소 + 계속 1,000백만/1개소 +신규900백만×1개소)×30%	1,325 (전국)950백만×70% (지역)(계속 300백만/1개소+ 1,000백만/1개소 + 900백만/1개소)×30%	1,325 (전국)950백만×70% (지역)(계속 300백만/1개소+ 1,000백만/1개소 + 900백만/1개소)×30%	1,115 (전국)950백만×70% (지역) (계속 900백만/1개소) + (신규 600백만/1개소×30%)	△210	△15.8
▪ 과원규모화	36,900 (매매)200ha×150백만×100% (임대차)100ha×69백만×100%	42,900 (매매)200ha×180백만×100% (임대차)100ha×69백만×100%	42,900 (매매)200ha×180백만×100% (임대차)100ha×69백만×100%	39,300 (매매)180ha×180백만×100% (임대차)100ha×69백만×100%	△3,600	△8.4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지원	-	750 (1개소×2,500백만×30%)	750 (1개소×2,500백만×30%)	-	△750	순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비목(합계)	**113,367**	**118,579**	**118,579**	**114,387**	△4,192	△3.5
○ 민간경상보조 (320-01)	1,326	1,134	1,134	1,134	-	-
○ 민간자본보조 (320-07)	300	500	500	5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750	660	660	450	△210	△31.8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5,653	54,224	54,224	57,223	2,999	5.5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55,338	62,061	62,061	55,080	△6,981	△11.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감귤원 정비) 관련 지역공약
  - ▪ 제주 지역공약: 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 추진경위
- 국회비준(2004.2.16) :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지원법 제정(2004.3.22) : FTA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FTA이행특별법 발효 : 2004. 4. 1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 11. 6
- 한·미 FTA 발효 : ‘12. 3. 15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과수생산유통지원(보조/융자)	1,158	1,095	1,092	1,195	1,147	1,186
○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606	608	587	565
○ 과수생산유통지원			486	587	560	621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과수농가의 ICT에 대한 효용성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신청 저조 및 기타 집행 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92	-	-	1,092	1,069	-	23
	(1,069)	(258)	(-)	(1,326)	(952)	(267)	(106)
'16년	1,195	-	-	1,195	1,169	-	26
	(1,169)	(267)	(-)	(1,436)	(965)	(282)	(189)
'17년	1,147	-	-	1,147	1,134	-	14
	(1,134)	(282)	(-)	(1,415)	(976)	(252)	(18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76.00점) *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주요 과실 생산 **선진국은 무병묘**(無病, Virus Free)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 우량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 무병묘유통 : 미국('63), 영국('71), 네덜란드('74), 일본('83)

  * 사과수량(톤/ha) : 네덜란드 40톤, 이태리 40, 미국 30, 일본 21, **한국 15**(FAO, '07)

○ 원종(무병묘)의 육성・공급 및 병해충 검정과 보증은 전문기관, 모수관리 및 묘목생산은 민간에서 수행

- 모수(母樹)의 공급은 대부분 품종육성관련 정부기관에서 공급하고 바이러스 검정을 주기적으로 실시
- 민간은 자체 품질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부검사 수검

(5) 사업추진절차

○ 과실전문생산단지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준 공	(시·도지사)

○ 과수우량묘목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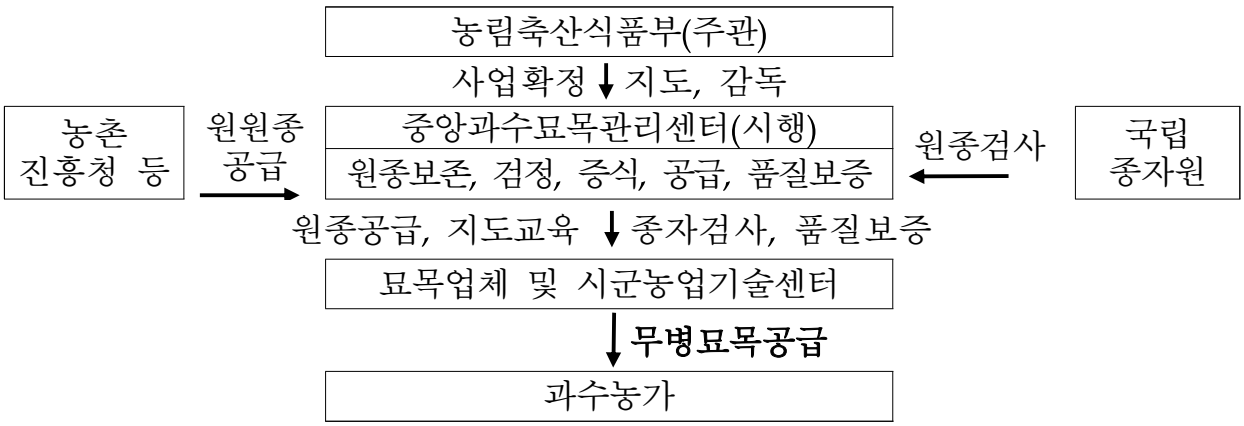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지 ◦ 사업대상자 통지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지침 통지 ◦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확정통지 ◦ 자금지원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 과원규모화

① 사업시행지침시달(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③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④ 사업자금 대여신청(농어촌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⑤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농어촌공사)
⑥ 과원매도 · 임대신청(과원소유자 → 농어촌공사)
⑦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확인(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 · 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 · 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 · 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 ·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 · 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 · 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⑧ 과원매입 · 임차계약(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⑨ 매입대금 · 임차료 지급(농어촌공사 → 과원소유자)
⑩ 과원매입 · 임차신청(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⑪ 신청내용 현지조사 ·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농어촌공사)
⑫ 과원매도 · 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⑬ 원리금 · 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농어촌공사)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 전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 사업 시행지침 통지
◦ 사업계획 확정 통지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12. 원예시설현대화사업(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원예시설현대화**	**72,408**	**61,567**	**61,567**	**44,788**	**△16,779**	**△27.3**
- 원예시설현대화(보조)	41,521	40,025	40,025	29,680	△10,345	△25.8
- 원예시설현대화(융자)	30,887	21,542	21,542	15,108	△6,434	△29.9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000 - 3034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박혜민)☎(044-201-225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 잠재력이 있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을 수출전문 경영체 및 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규모화·전문화된 생산기반을 구축

○ 인삼·특용작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과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및 특용작물시설의 현대화,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시설원예 현대화 763ha,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40ha,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270개소, 인삼생산기반시설 181ha 등
지원조건	○ 시설원예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배지관리센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제외): 국비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배지관리센터):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국고 50%, 지방비 5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자치구청장)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시설원예현대화 : ('18) 32,379백만원→ ('19) 24,688 (△7,691)**

* 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사업 축소)를 반영하여 '18년 대비 23.8% 감액
  : ('18) 농산물전문생산단지 363ha, 일반원예시설 640ha → ('19) 240ha, 515ha

- (보조) 15,430백만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40ha × 100백만원 × 20% = 4,800
  · 일반원예시설 515ha × 100백만원 × 20% = 10,310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8ha × 200백만원 × 20% = 320

- (융자) 9,258백만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40ha × 1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2,880
  · 일반원예시설 515ha × 1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6,186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8ha × 2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192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18) 10,240백만원→ ('19) 8,960 (△1,280)**

* 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사업 축소) 및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12.5% 감액
  : ('18) 비가림시설 160ha → ('19) 140ha

- (보조) 5,600백만원
  · 비가림시설 140ha × 200백만원 × 20% = 5,600

- (융자) 3,360백만원
  · 비가림시설 140ha × 20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3,360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 ('18) 10,732백만원→ ('19) 11,140 (+408)**

* 수요 증가①에 따른 사업 확대 및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 지원방식 변경②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3.8% 증액 요구
  ① ('18) 14개 시·도 382농가 → ('19 요구) 16개 시·도 430농가
  ② ('18) 민간경상보조(국비 50%) + 융자(국비 30%) → ('19 요구)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30%)

- (보조) 8,650백만원
  · 노후재배사개보수 120동 × 60백만원 × 20% = 1,440
  · 노후기자재교체 150대 × 30백만원 × 20% = 900
  · 인삼생산기반시설 181ha × 50백만원 × 20% = 1,810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1개소 × 6,000백만원 × 50% × 33%(2년차) + 1개소 × 6,000백만원 × 50% × 33%(3년차) = 2,000
· 버섯배지관리센터 2개소 × 5,000백만원 × 50%(1년차) × 50% = 2,500

- (융자) 2,490백만원
· 노후재배사개보수 120동 × 6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864
· 노후기자재교체 150대 × 3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540
· 인삼생산기반시설 181ha × 5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1,086

□ 지원 필요성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채소·화훼류 소비 감소 등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 및 농가소득 감소 추세

- 고품질 안전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시설원예 분야 경쟁력 제고 필요

- FTA 등 시장개방을 활용한 화훼류 수출 및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전략품목으로 선정, 맞춤형 지원 필요

○ 인삼은 연작장해로 인한 이동경작, 낮은 생력화율, 높은 임차료 등으로 생산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농가소득 감소로 생산기반 자체 붕괴 우려

- 또한 다년간(4~6년) 재배하는 인삼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설('15.12.), 강풍('16.5.), 태풍('18.8, 10)등 자연재해의 빈발로 일반농산물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고, 내재해형 해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재해보상에서도 제외
* 자연재해 피해액 : 111억원(대설('15.12.) 81억원, 강풍('16.5월) 30억원

- '19년 인삼생산시설 사업수요 조사 결과 예산액(1,810백만원) 대비 약 1.5배 이상 요구(878농가 2,758백만원)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특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지원 필요

-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 버섯배지를 안정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수확후배지를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농업인 부가소득 창출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원예시설현대화(보조/융자)	72,408	61,567	61,567	44,788	△16,779	△27.3
▪ 시설원예현대화	34,303	32,379	32,379	24,688	△7,691	△23.8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7,175	11,387 (보조) 363ha×100백만원×20% (융자) 363ha×100백만원×실융자율12%	11,387 (보조) 363ha×100백만원×20% (융자) 363ha×100백만원×실융자율12%	7,680 (보조) 240ha×100백만원×20% (융자) 240ha×100백만원×실융자율12%	△3,707	△32.6
- 일반원예시설	26,748	20,480 (보조) 640ha×100백만원×20% (융자) 640ha×100백만원×실융자율12%	20,480 (보조) 640ha×100백만원×20% (융자) 640ha×100백만원×실융자율12%	16,496 (보조) 515ha×100백만원×20% (융자) 515ha×100백만원×실융자율12%	△3,984	△19.5
- 화훼류 新수출 전략품목 육성	380	512 (보조) 8ha×200백만원×20% (융자) 8ha×200백만원×실융자율12%	512 (보조) 8ha×200백만원×20% (융자) 8ha×200백만원×실융자율12%	512 (보조) 8ha×200백만원×20% (융자) 8ha×200백만원×실융자율12%	-	-
▪ ICT융복합확산*	19,009	8,216	8,216	(별도 사업 분리)	△8,216	순감
- 스마트팜 온실신축	15,121	871 (보조) 33ha×1,200백만원×20%×5% (융자) 33ha×1,200백만원×실융자율24%×5%	871 (보조) 33ha×1,200백만원×20%×5% (융자) 33ha×1,200백만원×실융자율24%×5%	-	△871	순감
- 스마트팜 시설보급	3,888	6,720 (보조) 1,050호×20백만원×20% (융자) 1,050호×20백만원×실융자율12%	6,720 (보조) 1,050호×20백만원×20% (융자) 1,050호×20백만원×실융자율12%	-	△6,720	순감
- 컨설팅	625	625 (민간) 1,250호×0.5백만원×100%	625 (민간) 1,250호×0.5백만원×100%	-	△625	순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9,957	10,240 (보조) 160ha×200백만원×20% (융자) 160ha×200백만원×실융자율12%	10,240 (보조) 160ha×200백만원×20% (융자) 160ha×200백만원×실융자율12%	8,960 (보조) 140ha×200백만원×20% (융자) 140ha×200백만원×실융자율12%	△1,280	△12.5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9,140**	**10,732**	**10,732**	**11,140**	408	3.8
- 노후재배사개보수	1,920	1,920 (보조) 100동×60백만원×20% (융자) 100동×60백만원×실융자율12%	1,920 (보조) 100동×60백만원×20% (융자) 100동×60백만원×실융자율12%	2,304 (보조) 120동×60백만원×20% (융자) 120동×60백만원×실융자율12%	384	20.0
- 노후기자재 교체	1,296	1,296 (보조) 135개×30백만원×20% (융자) 130개×30백만원×실융자율12%	1,296 (보조) 135개×30백만원×20% (융자) 130개×30백만원×실융자율12%	1,440 (보조) 150개×30백만원×20% (융자) 150개×30백만원×실융자율12%	144	11.1
- 버섯배지관리센터	3,100	3,100 (민간) 2개소×5,000백만원×2년차50%×50% (융자) 2개소×5,000백만원×2년차50%×실융자율12%	3,100 (민간) 2개소×5,000백만원×2년차50%×50% (융자) 2개소×5,000백만원×2년차50%×실융자율12%	2,500 (보조) 2개소×5,000백만원×1년차50%×50%	△600	△19.4
-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1,000	2,000 (보조) 1개소×6,000백만원×33%(2년차)×50%+1개소×6,000백만원×33%(1년차)×50%	2,000 (보조) 1개소×6,000백만원×33%(2년차)×50%+1개소×6,000백만원×33%(1년차)×50%	2,000 (보조) 1개소×6,000백만원×33%(2년차)×50%+1개소×6,000백만원×33%(3년차)×50%	-	-
- 인삼생산기반시설	1,824	2,416 (보조) 151개소×50백만원×20% (융자) 151개소×50백만원×실융자율12%	2,416 (보조) 151개소×50백만원×20% (융자) 151개소×50백만원×실융자율12%	2,896 (보조) 181개소×50백만원×20% (융자) 181개소×50백만원×실융자율12%	480	19.9
□ **비목**(합계)	**72,408**	**61,567**	**61,567**	**44,788**	**△16,779**	**△27.3**
○ 민간경상보조(320-01)	3,125	3,125	3,125	-	△3,125	순감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8,396	36,900	36,900	29,680	△7,220	△19.6
○ 기타민간융자금(450-04)	30,887	21,542	21,542	15,108	△6,434	△29.9

* '19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으로 편성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 추진경위

-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 공급과잉, 수출경쟁력 저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 필요함에 따라 '09년부터 채소·화훼·특작 재배시설 품질개선 추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원예시설현대화(보조/융자)	1,632	1,459	1,469	950	874	616
○ 원예시설현대화	803	860	864	513	514	400
○ 원예시설현대화(융자)	829	599	605	437	360	21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① 내수경기 침체, 환율하락(엔저현상)으로 인한 신선채소·화훼 수출감소 추세에 따른 시설원예 분야 투자심리 저하, ② ICT 융복합 확산 사업추진 여건 미성숙(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이원화 등)으로 사업신청 부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69 (1,366)	- (544)	- (-)	1,469 (1,910)	1,366 (1,000)	- (618)	103 (292)
'16년	950 (859)	- (381)	- (-)	950 (1,240)	859 (511)	- (259)	91 (470)
'17년	874 (724)	- (265)	- (-)	874 (989)	724 (396)	- (234)	150 (35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융자금 수요 및 실집행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예산 편성요구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16년 융자실태감사)

⇒ (조치사항)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융자 예산 편성 시 실집행률 반영('17년)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76.00점) *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사업방식 변경

- (평가결과) 국고지원 감축 및 사업추진주체의 책임성 강화방안 강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 EU: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 (투자액 기준 최대 40%)

- 네덜란드: "GREEN FINANCING", 시중금리(약 1%)이하 장기 지원

* 농업분야 ICT 적극 활용(관련 산업 세계 최고 수준)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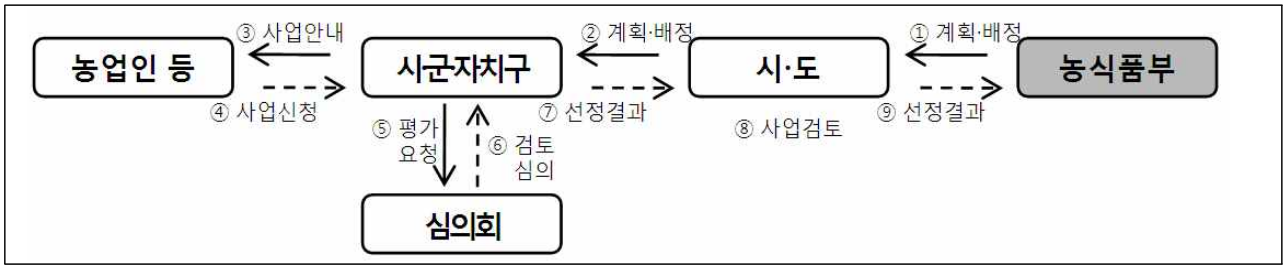

참고 1 온실 형태별 특성

구 분		연동 비닐하우스	경질판온실	유리온실
외부전경				
내부전경				
온실면적 (비중)		51,173ha(98.7%) * 단동하우스 포함	311ha(0.6%)	345ha(0.7%)
생산성 (파프리카)		130~160톤/ha	190~200톤/ha	200~240톤/ha
규격		폭 7~8m 측고 3m	폭 8~10m 측고 4~5m	폭 8~10m 측고 4~6m
피복자재 (수명)		PE 필름 (2~3년)	FRP판, PC판 (8년)	유리 (미파손 시 반영구적)
보온 커튼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부직포 등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부직포 등	알루미늄스크린
환기창		천창 : 권취식 측창 : 권취식	천창 : 탑오픈방식 측창 : 권취식	천창 : 밀창식 측창 : 여닫이식
설치 비용 (천원)	3.3㎡	200～250	600～700	800～1,000
	1ha	750,000	3,000,000	
환경관리		단순제어방식 (일반적 관리기술)	단순제어방식 (일반적 관리기술)	자동 복합제어방식 (고급 관리기술 필요)
재배방식		토경	토경, 양액재배	양액재배

참고 2 시설원에 분야 지원 정책 해외 사례

○ 외국의 시설원예정책은 친환경, 에너지절감, 시설현대화, 비용절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음

○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과 함께 보조를 통해 해당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

❑ 일본

○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 과채류 등의 가격하락 시, 가격보전으로 농가경영을 안정(토마토, 오이, 가지 등)

❑ 유럽연합(EU)

○ 농업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를 지원

-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

- 보조율은 투자액 기준으로 최대 40%(조건불리지역 50%, 후계자 45%)

* 시설원예 신흥 강국인 스페인의 경우에는 시설원예분야에 중점 지원

❑ 네덜란드

○ “GREEN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저리 융자로 친환경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신규도입을 지원

- 시중금리(약1%)이하로 장기간 지원(온실은 일반적으로 20년)

참고 3 한국과 네덜란드 시설원예산업 비교

구분	한 국	네덜란드
온실 구조	▪ 유리·경질판온실: 1.3%('13년 656ha) - 이중 90%가 10년 이상 ▪ 비닐온실: 98.7%('13년 51,173ha) ▪ 온실높이: 3~5m(측고 2~4m) * 온실내 공기 볼륨이 적어 환경변화가 큼 ▪ 낮은 투광율(일반 유리)	▪ 유리온실: 100%*('10년 10,374ha) - 우리나라의 30배 수준 * 광폭형 12%, 벤로형 87% ▪ 온실높이: 6~9m(측고 5~6m) * 온실내 공기 볼륨이 커 환경변화가 적음 ▪ 높은 투광율(산란광 유리)
생산성	▪ 네덜란드의 1/2~1/6수준(과채류) - 파프리카: 190톤/ha(선도농 기준) ▪ 상하위권 생산성 차이: 200~300%	▪ 높은 수준의 생산성 - 파프리카: 300톤/ha ▪ 상하위권 생산성 차이: 10~15%
재배 기술	▪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 미구축 ▪ 수경재배면적: 2% ▪ 단기생산 및 전문화 구축 미흡	▪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수경재배면적: 99%(과채류) ▪ 연중 생산 및 재배 단계별 전문화 구축 * 순환식 수경재배, 천적 적용 실용화 등
농가 조직	▪ 소규모 영세 농가 중심 - 온실규모: 평균 0.6ha ▪ 품목구성: 채소 93%, 화훼 7%	▪ 협동조합 중심 조직화* - 온실규모: 평균 7ha(개별 농가는 1.4ha) * 채소농가 90% 이상이 그리너리 조합원 ▪ 품목구성: 절화·분화류 60%, 채소 40%
물류 체계	▪ 유통·수출업체의 영세성·비전문성 -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 및 바이어 중심의 유통체계 - 고부가가치 완제품의 수출체계 미흡	▪ 생산자조합이 판매전문 자회사* 설립 * (화훼) 알스미어, 플로라홀랜드 (채소·과실) 그리너리
연구 개발	▪ 에너지 절감, 환경제어 및 천적 활용 기술 등 기초 분야에 치중	▪ 천연가스 사용, 생물학적 방제 활성화 추진 및 실습중심의 실용교육

1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재량, 신규,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 (19,009)	- (8,216)	- (8,216)	24,769	24,769	순증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보조)	- (8,064)	- (5,221)	- (5,221)	12,745	12,745	순증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융자)	- (10,945)	- (2,995)	- (2,995)	12,024	12,024	순증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000 - 3034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박혜민)☎(044-201-2256)

**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ICT융복합확산)을 분리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보급과 ICT 융복합 첨단온실 신축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으로 경쟁력 제고

○ 첨단시설의 보급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 견인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센서, 제어기 등 스마트팜 시설 보급 및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
사업기간	'14년～계속 * '14～'18년까지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스마트팜 온실신축 33ha, 스마트팜 시설보급 1,050호
지원조건	○ 스마트팜 온실신축·시설보급: 국비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컨설팅: 민간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장·군수·자치구청장)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 ('18) 8,216백만원 → ('19) 24,769 (+16,553)**

*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ICT융복합확산)을 분리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 (보조) 12,120백만원
  · 스마트팜 온실신축 33ha × 1,200백만원 × 20% × 95%(2년차) + 스마트팜 온실신축 33ha × 1,200백만원 × 20% × 5%(1년차) + 스마트팜 시설보급 1,050호 × 20백만원 × 20% = 12,120

- (민간보조) 625백만원
  · 컨설팅 1,250호 × 0.5백만원 × 100% = 625

- (융자) 12,024백만원
  · 스마트팜 온실신축 33ha × 1,200백만원 × 30% × 80%(실집행률) × 95%(2년차) + 스마트팜 온실신축 33ha × 1,200백만원 × 30% × 80%(실집행률) × 5%(1년차) + 스마트팜 시설보급 1,050호 × 20백만원 × 30% × 40%(실집행률) = 12,024

□ 지원 필요성

○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로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시설원예 기반시설과 ICT를 접목한 시설농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배 규모 한계 극복 가능

-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 및 환경관리·제어 기술은 농업분야 ICT 융복합의 기회요인

○ 혁신성장 전략회의('17.11)에서 스마트팜이 정부 8大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 발표('18.4)

- '22년까지 스마트팜 7천ha 보급을 목표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농가단위 스마트팜 보급 및 스마트팜 확산 거점 조성을 추진, 농업분야 혁신성장을 선도할 계획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보조/융자)	- (19,009)	- (8,216)	- (8,216)	24,769	24,769 (16,553)	순증 (201.5)
▪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 (19,009)	- (8,216)	- (8,216)	24,769	24,769 (16,553)	순증 (201.5)
- 스마트팜 온실신축	- (15,121)	- (871) (보조) 33ha×1,200백만원×20%×5%(1년차) (융자) 33ha×1,200백만원×24%(실융자율)×5%(1년차)	- (871) (보조) 33ha×1,200백만원×20%×5%(1년차) (융자) 33ha×1,200백만원×24%(실융자율)×5%(1년차)	17,424 (보조) 33ha×1,200백만원×20%×95%(2년차) +33ha×1,200백만원×20%×5%(1년차) (융자) 33ha×1,200백만원×24%(실융자율)×95%(2년차) +33ha×1,200백만원×24%(실융자율)×5%(1년차)	17,424 (16,550)	순증 (201.5)
- 스마트팜 시설보급	- (3,263)	- (6,720) (보조) 1,050호×20백만원×20% (융자) 1,050호×20백만원×12%(실융자율)	- (6,720) (보조) 1,050호×20백만원×20% (융자) 1,050호×20백만원×12%(실융자율)	6,720 (보조) 1,050호×20백만원×20% (융자) 1,050호×20백만원×12%(실융자율)	6,720 (-)	순증 (-)
- 컨설팅	- (625)	- (625) (민간) 1,250호×0.5백만원×100%	- (625) (민간) 1,250호×0.5백만원×100%	625 (민간) 1,250호×0.5백만원×100%	625 (-)	순증 (-)
□ 비목(합계)	- (19,009)	- (8,216)	- (8,216)	24,769	24,769 (16,553)	순증 (201.5)
○ 민간경상보조(320-01)	- (625)	- (625)	- (625)	625	625 (-)	순증 (-)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 (7,439)	- (4,596)	- (4,596)	12,120	12,120 (7,524)	순증 (163.7)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10,945)	- (2,995)	- (2,995)	12,024	12,024 (9,029)	순증 (301.5

*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ICT융복합확산)을 분리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 (관련 공약) 85. 대통령이 챙기는 농어업(85-3.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 (국정과제) 83-3.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스마트팜 보급 확대)

○ 추진경위

-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 소비 감소, 수출경쟁력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 필요성이 대두, ’09년부터 채소·화훼·특작 재배시설 품질개선 추진
-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14년부터 추진
- ‘스마트팜’이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선정(’17.11),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수립(’18.4)하고 ’19년부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스마트팜 확산 거점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 원예시설현대화(보조/융자)의 해당 내역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보조/융자)	-	105	105	206	271	82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	45	45	86	129	52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융자)	-	60	60	120	142	3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ICT 융복합 확산 사업추진 여건 미성숙(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이원화 등)으로 사업신청 부족

* 원예시설현대화(보조/융자)의 해당 내역 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10,500) (4,396)	- (185)	- (-)	- (10,500) (4,581)	- (4,396) (1,243)	- (1,094)	- (6,104) (2,244)
'16년	- (20,600) (18,667)	- (1,094)	-	- (20,600) (19,761)	- (18,667) (1,288)	- (14,432)	- (1,933) (4,041)
'17년	- (27,145) (19,009)	- (14,432)	- (-)	- (27,145) (33,441)	- (19,009) (6,996)	- (10,213)	- (8,136) (16,23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시설개보수 및 신규설치, 기계화 등에 보조 지원(50%)

○ EU: 생산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생산기술향상 등에 대한 보조지원 (투자액 기준 최대 40%)

- 네덜란드: "GREEN FINANCING", 시중금리(약 1%)이하 장기 지원

* 농업분야 ICT 적극 활용(관련 산업 세계 최고 수준)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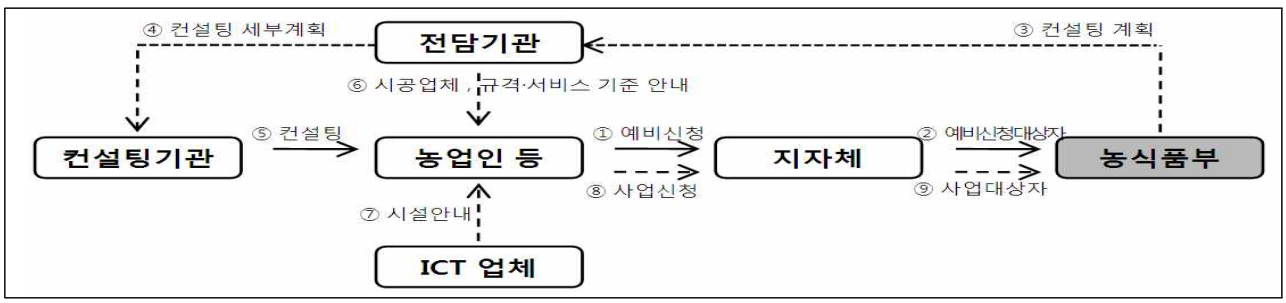

참고 1 스마트팜 성과분석자료('16년 서울대)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생산성 향상 분석

○ **조사기관** : 서울대 산학협력단

○ **조사기간** : '16.8.9~10.9(60일간)

○ **조사대상** : 정부 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농가 226호(시설원예 185, 축산 29, 과수 12)

○ **표본추출** : 비례할당 표본추출법

○ **표 본 수** : 84호(시설원예 59, 축산 21, 과수: 4)

□ 조사결과

○ **시설원예 분야 분석결과**(59개 표본)

- **스마트팜 도입농가의 생산성 27.9% 향상**

- **조사 2년차 농가 생산성 전년대비 8.9% 추가 향상**(20개 표본농가)

구분		항목	분석결과
정량 지표	생산량증가	단위면적당 생산량(kg/㎡)	27.9% 증가
		1인당 생산량①	40.4% 증가
	노동력절감	고용노동비 감소율	15.9% 감소
	품질향상	수율 향상률②	4.7% 증가
	재해관리	병충해 및 질병 발생 감소율	발생 53.7% 감소 및 피해액 57.3% 감소
정성 지표	만족도 (7점만점)	생산성 향상 만족도	5.3점
		농업경영 도움정도 만족도	5.8점
		비용절감 만족도	4.8점
		자가노동 절감 만족도	6.1점
	의향 (7점만점)	추천의향도	6.1점
		시설확대 의향도	5.8점

① 작물생산에 참여한 전체 노동력(자가 노동+고용노동) 1인당 생산량

② 작물 생산량 중 실제 상품으로 출하되는 물량 비율의 변화

참고 2 네덜란드 시설원예 클러스터

□ 네덜란드 원예산업은 **그린포트(Greenport)**라 불리는 6곳의 클러스터에 밀집

○ **생산, R&D, 물류, 인프라, 수출**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를 통해 **네덜란드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

○ 대규모 시장, 물류에 좋은 항구·공항 등과 인접, 집중화를 통해 **기술, 자재, 물류 등 연관산업이 발달**하고 **환경문제*를 효율적 관리**

* 태양전지 사용, 자연광 혹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전등사용, 지열 에너지 발전시설 등을 권장

클러스터 명	특징
1. 노르트홀란드 노르트 (Greenport Noord-Holland Noord)	농업, 어업, 구근재배, 축산업, 과수원, 온실원예, 야외 채소재배, 씨앗조제
2. 다윈엔볼런스트레이크 (Green port Duin en Bollenstreek)	대규모 튤립밭과 세계적인 튤립축제가 열리는 쾨켄호프로 유명함
3. 웨스트오스트랜드 (Greenport Westland-Oostland)	네덜란드 최대의 온실원예 클러스터로 생산, 지식, 혁신, 무역, 물류분야 전문
4. 벤로(Greenport Venlo)	웨스트오스트랜드에 이은 2위 규모의 원예재배 지역으로 독일과 중앙유럽에 위치해 유리한 입지조건
5. 알스미어(Greenport Alsmeer)	화훼산업과 관련한 식물재배, 개량, 증식, 생산 및 판매, 무역 등이 집중
6. 보스코프(Greenport Boskoop)	세계적인 관목 산업지역으로 관련 제조, 무역, 연구기관 등이 해당 지역에서 협력

14.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지원(융자)	10,000	10,000	10,000	**10,000**	**-**	**-**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700 - 3730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임지헌)☎(044-201-23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원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낙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원유가격 안정으로 국내산 원유 소비촉진

○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라 가격경쟁력 우위 선점으로 수출시장 확대 및 국내 낙농산업 보호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원유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국내 낙농산업 보호
사업기간	'15 ~ '20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융자 100%(연리 0~1%, 2년 거치 일시상환) * 평가 1위 조합 : 무이자, 2위 조합 : 1% 이율 적용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 조사료 종자 구매, 국내산 조사료 구매 및 생산, 낙농컨설팅, 낙농조합원 교육, 유우군능력검정사업비, 국산 젖소정액 구입, 낙농헬퍼 운영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반 사업비 10,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00백만원 (50억원 × 2개소)

* 융자 100%(연이율 0~1%, 2년 거치 일시상환), 평가 1위 무이자, 2위 1% 적용

□ 지원 필요성

○ 원유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	**-**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	-
□ **비목**(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000	10,000	10,000	10,0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 추진경위

- 원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낙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원유가격 안정으로 국내산 원유소비 촉진 및 영연방 FTA 대책사업으로 '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지원	-	-	100	100	100	1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0	-	-	100	100	-	-
	(100)	(-)	(-)	(100)	(100)	(-)	(-)
'16년	100	-	-	100	100	-	-
	(100)	(-)	(-)	(100)	(100)	(-)	(-)
'17년	100	-	-	100	100	-	-
	(100)	(-)	(-)	(100)	(1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행	1월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행
⇓			
세부사업계획 수립	2월	농협경제지주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보고	2월	농협경제지주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대상자 확정 통보	3월	농식품부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배정	3월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 통보
⇓			
사업추진 및 정산	연중	농협경제지주	사업추진 감독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사후관리, 성과평가	차차년	농식품부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목표 달성 평가

15. 원유소비활성화(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원유소비활성화(융자)	10,000	10,000	-	**10,000**	**-**	**-**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700 - 3730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임지헌)☎(044-201-23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제품 생산사업 육성기반 마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치즈 등 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원유 구입비, 유통·판매 및 시장 개척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비, R&D, 컨설팅,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해 국산 유제품 생산기반 마련
사업기간	'16 ~ '24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사업시행주체	낙농진흥회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공장형 사업장 : 9,310백만원(①+②+③+④)

① 원유 구입비 : 6,900백만원 = 3개소 × 5톤/(9개 공장형 사업장 1일 평균 치즈 생산 능력 7톤 범위 내에서 설정) × 10배(원유 환산) × 1,000㎏ × 1,070원/㎏ × 258일(9개 공장형 사업장 연평균 생산일수) ÷ 6회전

② 시장개척비 : 1,210백만원 = 신규 유통·판매점 개척비용 45개소 × 27백만원 내외

③ 유제품 개발 및 R&D 등 비용 : 900백만원 = 해외 유명제품 벤치마킹 및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 한국형 유제품 개발(200백만원) 및 소비자 반응조사(100백만원) × 3개소

④ 브랜드 구축비 : 300백만원 = 브랜드 개발(네이밍, BI 등) 100백만원 × 3개소

○ 목장형 사업장 : 690백만원(3개소 × 230백만원/개소)

* 원유 구입비 : 1개소 × 500kg/(목장형 사업장 1일 평균 치즈 생산 능력) × 10배(원유 환산) × 1,070원/㎏ × 258일 ÷ 6회전 = 2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민 식생활 개선으로 인한 치즈 등의 소비량 증가와 FTA 개방에 따른 해외 유제품 수입확대로 인해 국산 유제품 육성기반 조성과 국내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원유소비활성화(융자)	**10,000**	**10,000**	**10,000**	**10,000**	**-**	**-**
▪ 원유소비활성화	10,000	10,000	10,000	10,000	-	-
□ 비목(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000	10,000	10,000	10,0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 추진경위

- 국민 식생활 개선 및 FTA 체결로 인한 치즈 등의 유제품 수입 증가와 한·뉴 FTA 대책사업으로 '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원유소비·활성화	-	-	-	100	100	1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100** **(100)**	- (-)	- (-)	- (-)	**100** **(100)**	- (-)	- (-)
'17년	**100** **(100)**	- (-)	- (-)	- (-)	**100** **(1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시행지침 시행	1월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행
세부사업계획 수립	2월	낙농진흥회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보고	2월	낙농진흥회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대상자 확정 통보	3월	농식품부	대상자 확정 통보
사업비 배정	3월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 통보
사업추진 및 정산	연중	낙농진흥회	사업추진 감독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사후관리, 성과평가	차차년	농식품부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목표 달성 평가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축사시설현대화	154,717	207,223	207,223	**213,169**	**5,946**	**2.9**

* 사업코드 : 20 - 46 - 0 - 100 - 101 - 3700 - 3760
* 담당자 : 축산정책국장(박병홍), 축산경영과장(송태복), 사무관(김성구)☎(044-201-233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축사시설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축산단지 조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기간	'09~'24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축사시설개선 : 보조 0~40%, 융자 0~80%, 자담 10~20%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보조 10%, 융자 50%, 자담 20%, 지방비 20% ○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후계축산농육성 : 융자 80%, 자담 20% ○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 보조 70%, 지방비 30%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축사시설개선 : ('18) 151,703백만원 → ('19) 128,280백만원
- 시설현대화 지원 113,680백만원(700개소×203백만원×융자 80%)
- CCTV 등 방역인프라 10,500백만원(CCTV 2,500개×5백만원×보조30%・융자 30% + 방역시설 100개×50백만원×보조30%・융자30%)
- 사후관리 및 체계개선 500백만원(보조 100%)
- 가금밀집지역 개편 : 3,600백만원(5호×4,500백만원×보조40%×1년차 40%)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18) 3,000백만원 → ('19) 3,000백만원
- 5개소×1,000백만원×보조10%・융자 50%

○ 축산분야 ICT 시설 지원 : ('18) 49,800백만원 → ('19) 71,294백만원
- ICT 시설설치 64,000백만원(800개소×100백만원×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4,800백만원(800개소×1백만원×6회×보조100%)
- 빅데이터 플랫폼 2,494백만원(플랫폼 개발 1,814, 장비・분석모형 개발 680)

○ 후계축산농 육성 : ('18) 2,720백만원→ ('19) 2,720백만원
- 3,400백만원(한우, 양돈)×융자80%

○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 ('18) - → ('19) 7,875백만원
- 3개×7,500백만원×보조70%×1년차 50%

□ 지원 필요성

○ (축사시설개선)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우량송아지생산) 농가 고령화에 따른 송아지 생산기반 약화 방지 및 안정적 한우 생산기반 마련하여 수입산과 차별화된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

○ (ICT융복합)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이 검증된 ICT융복합 성과모델의 확산을 통해 축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

○ (후계축산농) 축산업은 각종 규제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후계농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우므로 휴폐업 축사 매입 및 리모델링 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는 사업 필요

○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사시설(악취・환경민원, 무허가 축사 등)을 이전하여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축사시설현대화	154,717	207,223	207,223	213,169	5,946	2.9
▪ 축사시설개선	125,009	151,703 -시설현대화 123,424 (가금 외 600개소×203백만원×융자 80%), (가금 160개소×203백만원×보조30%·융자 50%) -CCTV 등 방역 인프라 18,576 (계열농가1,561개×16.6백만×보조30,융자30)+(비계열농가1,008개×5백만×보조30, 융자30) -사후관리 등 703 (703백만원×보조 100%) -밀집지역 개편 9,000 (5호×4,500백만원×보조40%)	151,703 -시설현대화 123,424 (가금 외 600개소×203백만원×융자 80%), (가금 160개소×203백만원×보조30%·융자 50%) -CCTV 등 방역 인프라 18,576 (계열농가1,561개×16.6백만×보조30,융자30)+(비계열농가1,008개×5백만×보조30, 융자30) -사후관리 등 703 (703백만원×보조 100%) -밀집지역 개편 9,000 (5호×4,500백만원×보조40%)	128,280 -시설현대화 113,680 (700개소×203백만원×융자 80%) -CCTV 등 방역 인프라 10,500 (CCTV 2,500개×5백만원×보조30%·융자30% + 방역시설 100개×50백만원×보조30%·융자30%) -사후관리 500 (500백만원×보조 100%) -밀집지역 개편 3,600 (5호×4,500백만원×보조40%×1년차40%)	△23,423	△15.4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2,818	3,000 (5개소×1,000백만원×보조10%·융자 50%)	3,000 (5개소×1,000백만원×보조10%·융자 50%)	3,000 (5개소×1,000백만원×보조10%·융자 50%)	-	-
▪ 축산분야 ICT시설 지원	26,890	49,800 - ICT 시설 설치 지원 48,000 (600개소×100백만원×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1,800 (600개소×500천원×6회×보조100%)	49,800 - ICT 시설 설치 지원 48,000 (600개소×100백만원×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1,800 (600개소×500천원×6회×보조100%)	71,294 - ICT 시설 설치 지원 64,000 (800개소×100백만원×보조30%·융자 50%) - 농가컨설팅 지원 4,800 (800개소×1백만원×6회×보조100%)	21,494	43.2
▪ 후계축산농 육성	-	2,720 (한우 2개소×500백만원×융자80%,), (양돈 2개소×1,200백만원×융자80%)	2,720 (한우 2개소×500백만원×융자80%,), (양돈 2개소×1,200백만원×융자80%)	2,720 (3,400백만원(한우, 양돈)×융자80%)	-	-
▪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	-	-	7,875 (3개×7,500백만원×보조70%×1년차 50%)	7,875	순증
□ 비목(합계)	154,717	207,223	207,223	213,169	5,946	2.9
○ 민간경상보조(320-01)	1,550	2,503	2,503	7,794	5,291	211.4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4,838	46,532	46,532	41,225	△5,307	△11.4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18,329	158,188	158,188	164,150	5,962	3.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 추진경위

- '02.10월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칠레 FTA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04. 2월 :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통과
- '04. 5월 : FTA이행지원기금 설치(4.1)
- '07. 4월 :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보완대책 수립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07.11)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등의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11.8.19)
-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영연방 FTA 협상타결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14.10)
- '17. 공약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축사시설현대화	2,200	1,692	1,544	1,401	1,549	2,07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불용액 발생사유 : ('15~'16) 축사주변 민원발생에 따른 중도포기 및 수요부족, ('17) 집행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44	-	-	1,544	1,514	-	30
	(1,544)	( )	( )	(1,544)	(1,170)	(274)	(169)
'16년	1,401			1,401	1,375		26
	(1,401)	( )	( )	(1,401)	(1,267)	(227)	(119)
'17년	1,549			1,549	1,547		2
	(1,549)	( )	( )	(1,549)	(1,394)	(248)	(12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재정지원 효과가 개별 농업경영체에 귀속되는 시설·장비 지원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감축

⇒ ICT 융복합 확산 등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보조율 유지하되, 단순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보조율 인하 추진

-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율 단계적 감축('15: 30% → '16: 20→ '17: 10 → '18: 0) 하여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되, 가금은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율('17년~'18년) 상향

○ ('18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사업방식 변경'으로 가축사육환경 조기개선 유도의 필요성과 당초 보조율 폐지 계획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방식 전환 로드맵의 구축 및 이행이 필요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보통'결과를 받았으며 사업비 집행 등 정상 수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1월	농가	· 축산농가가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선정	2월	시·군·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을 감안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연중	농가	·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			
자금배정	연중	농식품부 시·도 대출취급기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자금집행원칙에 따라 이행 지도 · 시·도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

이행점검	9월	농식품부 시·도	· 농식품부 및 시도 합동 점검
⇓			
성과측정	익년2월	농식품부	·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 산출
⇓			
사업평가 및 환류	익년2월	농식품부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평가 실시 * 필요시 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 시 사업지침 개선 등 예산편성 방향 및 제도개선사항 환류
⇓			
사업비 정산	익년2월	농업인 시·군	· 농가는 사업완료 후 잔금지급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완료점검결과에 따라 완료결과를 승인하고 농가에 잔금 지급

17. 여유자금운용(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여유자금운용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5,142	65,378	65,378	**53,621**	**△11,757**	**△18.0**

* 사업코드 : 20-46-0-100-101-9700-9706-971(통화금융기관예치)

20-46-0-100-101-9700-9706-972(비통화금융기관예치)

* 담 당 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농업정책과장(송남근), 사무관(이완)(☎201-17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간 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 중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 이외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익을 실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업대기성 자금 및 여유자금 예치금 운용
사업기간	'04 ~ '21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위탁운용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8년 계획

□ 산출내역

○ ‘19년 여유자금 운용규모 : 53,621백만원

- 53,621백만원 : (‘19 총조달 711,744 - ‘19 순지출 658,123)

○ 여유자금 운용 : 통화금융기관(시중은행) 25%, 비통화금융기관(연기금투자풀 등) 75%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여유자금운용	155,142	65,378	65,378	53,621	△11,757	△18.0
· 통화금융기관예치	-	30,867	30,867	13,621	△17,246	△55.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5,142	34,511	34,511	40,000	5,489	15.9
□ 비목 (합계)	155,142	65,378	65,378	53,621	△11,757	△18.0
○ 통화금융기관예치(470-02)	-	30,867	30,867	13,621	△17,246	△55.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470-03)	155,142	34,511	34,511	40,000	5,489	15.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3. 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 동법 시행령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추진경위

- ′04. 3월 FTA기금관리준비반 설치(근거 : FTA지원특별법 제13조 등)
- ′04.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FTA기금팀 정규조직 설치 및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여유자금운용	697	501	747	693	654	65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이·불용 내역 없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47 (747)	( )	( )	747 (747)	786 (786)	( )	( )
′16년	693 (693)	( )	( )	693 (693)	546 (546)	( )	( )
′17년	654 (654)	( )	( )	654 (654)	1,551 (1,551)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농 산 물 가 격 안 정 기 금

목 차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1919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1921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 1924
2. 기타민간이자수입 ····· 1925
3. 기타재산수입 ····· 1927
4. 몰수금 및 추징금 ····· 1929
5. 위약금 ····· 1930
6. 법정부담금 ····· 1931
7. 기타경상이전수입 ····· 1933
8. 건물매각대 ····· 1934
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1936
10. 토지매각대 ····· 1937
11. 재고자산매각대 ····· 1939
12.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 1940
13.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1945
14.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1946
1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1947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 1948
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 1954
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 1960

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1965
5. 전통발효식품육성 ····· 1971
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 1984
7. 비축지원 ····· 1991
8.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 2019
9. 자조금지원 ····· 2025
10.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 2029
11. 도매유통활성화지원 ····· 2038
12.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2042
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 2050
14.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 2056
15.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2056
16.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 2062
17.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 2067
18.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융자) ····· 2072
19.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2078
20. 농산물마케팅지원 ····· 2093
21.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 2100
22.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2104
23.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2110
24. 종자수매·공급 ····· 2114
25. 인건비 ····· 2121
26. 기타경비 ····· 2125
27. 유통개선사업운영 ····· 2129
28. 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 ····· 2138
29.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 ····· 2138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2,311,260**	**2,373,927**	**2,402,524**	**28,597**	**1.2**
51 관유물대여료	**1**	**25**	**25**	**-**	**-**
토지대여료 (51-511)	1	25	25	-	-
52 정부출자수입	**4,040**	**-**	**-**	**-**	**-**
정부출자수입 (52-521)	4,040	-	-	-	-
54 기타이자수입 및재산수입	**18,476**	**16,431**	**20,759**	**4,328**	**26.3**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9,205	7,418	11,746	4,328	58.3
기타재산수입 (54-545)	9,271	9,013	9,013	-	-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2**	**32**	**32**	**-**	**-**
몰수금및추징금 (56-562)	12	32	32	-	-
57 변상금및위약금	**1,831**	**5,381**	**5,381**	**-**	**-**
위약금 (57-572)	1,831	5,381	5,381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1,377**	**93,294**	**157,027**	**63,733**	**68.3**
법정부담금 (59-593)	49,400	44,677	44,677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71,977	48,617	112,350	63,733	131.1
69 잡수입	**47**	**-**	**-**	**-**	**-**
기타잡수입 (69-691)	47	-	-	-	-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71 고정자산매각대 (관유물매각대)	**2**	**12**	**5,298**	**5,286**	**44,050.0**
건물매각대 (71-711)	-	-	5,286	5,286	순증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2	12	12	-	-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55,914**	**55,914**	**순증**
토지매각대 (72-721)	-	-	55,914	55,914	순증
73 재고자산 및 유동자산매각대	**637,308**	**743,045**	**803,214**	**60,169**	**8.1**
재고자산매각대 (73-731)	637,308	743,045	803,214	60,169	8.1
75 융자원금회수	**927,087**	**1,197,022**	**1,125,567**	**△71,455**	**△6.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927,087	1,197,022	1,125,567	△71,455	△6.0
84 유가증권매각대	**18,162**	**5,085**	**5,085**	**-**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843)	18,162	5,085	5,085	-	-
85 정부예금회수	**482,917**	**313,600**	**224,222**	**△89,378**	**△28.5**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12,986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4,959	166,837	74,222	△92,615	△55.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464,972	146,763	150,000	3,237	2.2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19 계획		
		당초	수정(A)	(B)	(B-A)	%
총 계	**2,311,260**	**2,373,927**	**2,373,927**	**2,402,524**	28,597	1.2
2276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19,581**	**25,000**	**25,000**	**22,500**	△2,500	△10.0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2276-305)	19,581	25,000	25,000	22,500	△2,500	△10.0
2833 한식 및 외식산업 육성(농안)	**10,539**	**12,106**	**12,106**	**9,858**	△2,248	△18.6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2833-332)	10,539	12,106	12,106	9,858	△2,248	△18.6
2835 농식품수출촉진(농안)	**359,516**	**410,006**	**410,006**	**411,165**	1,159	0.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2835-404)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2835-406)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2851 식품산업육성(농안)	**107,055**	**132,306**	**142,306**	**138,400**	△3,906	△2.7
전통발효식품육성(2851-310)	13,732	7,026	7,026	8,400	1,374	19.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851-345)	93,323	125,280	135,280	130,000	△5,280	△3.9
303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농안)	**632,921**	**598,962**	**599,403**	**646,558**	47,155	7.9
비축지원(3031-323)	599,333	564,287	564,287	618,880	54,593	9.7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3031-324) * '17년 비축지원 사업의 내역 → '18년 분리	-	3,435	3,435	3,466	31	0.9
자조금지원(3031-325)	7,108	7,630	7,630	8,130	500	6.6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10,000	16,819	16,819	16,082	△737	△4.4
비축기지현대화 및 광역화(3031-337)	16,480	6,791	7,232	-	△7,232	순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19 계획		
		당초	수정(A)	(B)	(B-A)	%
3033 농산물유통개선(농안)	**710,729**	**807,116**	**789,081**	**756,017**	△33,064	△4.2
도매유통활성화지원 (3033-301)	650	990	990	650	△340	△34.3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3033-304)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3033-305)	89,150	96,851	96,851	96,851	-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3033-311)	8,245	12,587	11,196	13,758	2,562	22.9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3033-330)	6,191	11,940	10,897	10,318	△579	-△-5.3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3033-333)	18,973	19,418	19,418	19,418	-	-
농식품유통교육훈련 (3033-345)	2,359	2,289	2,289	2,289	-	-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융자) (3033-349)	4,628	8,360	8,360	8,360	-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033-350)	28,321	34,727	30,212	30,959	747	2.5
농산물마케팅지원 (3033-351)	6,561	8,254	8,254	8,254	-	-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3033-355)	-	2,400	2,400	2,400	-	-
3039 소비지유통활성화	**52,702**	**53,105**	**53,105**	**51,515**	△1,590	△3.0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3039-310)	14,402	14,705	14,705	13,215	△1,490	△10.1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융자)(3039-311)	38,300	38,300	38,300	38,300	-	-
국제 난 엑스포개최 (3039-354)	-	100	100	-	△100	순감
6435 종자수급조절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종자수매·공급 (6435-334)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구 분	'17 결산	'18 계획		'19 계획		
		당초	수정(A)	(B)	(B-A)	%
7076 기금운영비	**49,417**	**50,881**	**50,881**	**52,036**	1,155	2.3
인건비(농안) (7076-101)	761	742	742	732	△10	△1.3
기타경비(농안) (7076-201)	455	631	631	685	54	8.6
유통개선사업운영 (7076-250)	48,201	49,508	49,508	50,619	1,111	2.2
9702 여유자금운용(농안기금)	**303,159**	**224,222**	**220,730**	**254,252**	33,522	15.2
한국은행예치 (9702-970)	2,533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 (9702-971)	30,000	74,222	70,730	156,478	85,748	12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 (9702-972)	270,626	150,000	150,000	97,774	△52,226	△34.8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토지대여료

51-51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토지대여료	1	25	25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2. 수입 개요

○ 비축기지 토지 대여 등에 따른 대부료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5년간 실적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치 적용('18년 계획액 수준 반영)

- [('12)28백만원+('13)27+('14)20]÷3 = 25

* 노량진비축기지 대부료 발생('13~'16): 해수부의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및 농산물비축기지 재건축을 위한 협약 체결(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교환 합의)에 따른 특이적 발생으로 추계 시 제외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7	1,757	1,757	6,507.4	100.0	-	-
'15	1,294	1,159	1,159	89.6	100.0	-	-
'16	1,303	439	439	33.7	100.0	-	-
'17	1,294	1	1	0.1	100.0	-	-
'18	25	39	39	156.0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2.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민간이자수입	9,205	7,418	11,746	4,328	58.3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2. 수입 개요

○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금대출취급기관(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융자사업 수해에 따른 대여금 이자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19년 융자평잔 × 기관별 평균 대여이율

- 농협경제지주: 1,848,655백만원 × 0.55% + 354 = 10,50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89,351백만원 × 0.13% + 77 = 1,24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3,288**	**34,242**	**34,242**	79.1	100.0	-	-
통화	24,022	22,651	22,651	94.3	100.0	-	-
비통화	19,266	11,591	11,591	60.2	100.0	-	-
‘15	**41,205**	**22,570**	**22,570**	54.8	100.0	-	-
통화	23,946	15,444	15,444	64.5	100.0	-	-
비통화	17,259	7,126	7,126	41.3	100.0	-	-
‘16	**42,752**	**15,472**	**15,472**	36.2	100.0	-	-
통화	23,946	10,096	10,096	42.2	100.0	-	-
비통화	18,806	5,376	5,376	28.6	100.0	-	-
‘17	44,438	9,205	9,205	20.7	100.0	-	-
‘18	7,418	6,318	6,318	85.2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3. 기타재산수입

54-545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재산수입	9,271	9,013	9,013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2. 수입 개요

○ 보조사업비 이자발생액 및 여유자금 및 사업 지출을 위한 일시 사업대기성 자금의 예치 이자 수입 등

3. 2019년 계획 내역

○ '19년 여유자금 평잔 × 자산별비중 × '18년 기대수익률

- 현금성(28%): 107,157백만원 × 1.68% = 1,800
- 유동성(44%): 156,072백만원 × 1.81% = 2,825
- 중장기(28%): 60,529백만원 × 3.0% = 1,816

○ 5년간 실적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치 적용('18년 계획액 수준 반영)

- [('12)2,970백만원+('13)2,370+('15)2,376]÷3 = 2,572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506	5,638	5,583	85.8	99.0	55	-
‘15	24,371	7,233	7,178	29.5	99.2	55	-
‘16	5,638	103,340	103,241	1,831.2	99.9	99	-
‘17	28,478	9,380	9,271	32.6	98.8	10	99
‘18	9,013	12,150	12,150	134.8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4. 몰수금 및 추징금

56-562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몰수금및추징금	12	32	32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2. 수입 개요

○ 몰수농산물 등의 매각·공매 대금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5년간 실적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치 적용('18년 계획액 수준 반영)

- [('14)36백만원+('15)0+('16)60]÷3 = 32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326	36	36	11.0	100.0	-	-
'15	326	-	-	순감	-	-	-
'16	326	60	60	18.4	100.0	-	-
'17	326	12	12	3.7	100.0	-	-
'18	32	-	-	순감	-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5. 위약금

57-572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위약금	1,831	5,381	5,381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2. 수입 개요

○ 비축 및 융자 등 사업수행 시 법령과 계약에 따라 수반되는 위약금 등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5년간 실적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치 적용('18년 계획액 수준 반영)

- [('12)4,980백만원+('14)5,895+('16)5,267]÷3 = 5,381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277	5,895	5,895	137.8	100.0	-	-
'15	7,615	3,308	3,308	43.4	100.0	-	-
'16	7,615	5,267	5,267	69.2	100.0	-	-
'17	7,615	1,831	1,831	24.0	100.0	-	-
'18	5,381	6,729	6,729	125.1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6. 법정부담금

59-59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법정부담금	49,400	44,677	44,677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인삼산업법 제20조(인삼류 신장접근물량 수입추천)

2. 수입 개요

○ WTO협정에 따라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 입찰시 제시한 금액)

3. 2019년 계획 내역

○ 5개년 품목별 평균물량(최고·최저 제외) × 5개년 품목별 단가(최고·최저 제외)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22,348	45,149	45,149	36.9	100.0	-	-
'15	88,600	108,400	108,400	122.3	100.0	-	-
'16	114,500	61,834	61,834	54.0	100.0	-	-
'17	111,124	49,400	49,400	44.5	100.0	-	-
'18	44,677	41,343	41,343	92.5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참고 | **2019년 법정부담금 수입 계획 세부내역(안)**

□ 법정부담금(수입권공매)

(단위: kg, 백만원)

품 목	물량(kg)	단가(원)	금액(백만원)
합 계	**36,014,800**	-	**44,677**
○참 깨	21,489,800	1,437	30,881
○참 기 름	583,000	1,539	897
○생 강	-	2,939	-
○고 추	-	-	-
○양 파	1,846,000	77	142
○마 늘	2,196,000	369	810
○땅 콩	-	-	-
○메 밀	440,000	1,493	657
○감 자	-	-	-
○ 콩	-	204	-
○콩나물콩	9,447,000	1,185	11,195
○녹 두	-	2,164	-
○ 팥	-	675	-
○퀴 노 아	13,000	7,295	95
○인 삼	-	-	-

7.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171,977	48,617	112,350	63,733	131.1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2. 수입 개요

○ 기금 사업을 위해 지출한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등 반납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 적용

- [('15)40,394백만원+('16)124,679+('17)171,977]÷3 = 112,35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5,049	38,991	38,500	85.5	98.7	491	-
'15	66,958	41,002	40,393	60.3	98.5	609	-
'16	66,958	125,371	124,679	186.2	99.4	692	-
'17	66,958	172,513	171,977	256.8	99.7	58	478
'18	48,617	171,871	171,839	353.5	100.0	32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8. 건물매각대

71-71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건물매각대	-	-	5,286	5,286	순증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2. 수입 개요

○ 매각대상 기존 비축기지 등 건물 매각 대금 수입

-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 완료('18)에 따라 지방의 노후화된 기존 비축기지 매각 계획

3. 2019년 계획 내역

○ 기존 비축기지 건물 매각에 대한 탁상감정 가격

- 청주: 776백만원, 전주: 811, 광주: 1,659, 노포: 715, 학장: 1,32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참고 | **노후화된 비축기지 건물 및 토지 매각대 산출내역(안)**

□ 건물 및 토지매각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관리지역본부 (비축기지명)	구분	장부가액	장부가 비율	탁상감정 매각가	해당 목 매각대
충북 (청주)	토지	2,511	81.9	4,300	3,523
	건물	554	18.1		777
대전충남 (회덕)	토지	4,705	100.0	8,200	8,200
	건물	-	-		-
전북 (전주)	토지	1,661	76.2	3,400	2,589
	건물	520	23.8		811
광주전남 (광주)	토지	9,577	89.3	15,500	13,841
	건물	1,148	10.7		1,659
부산울산 (노포)	토지	5,254	89.2	6,600	5,885
	건물	638	10.8		715
부산울산 (학장)	토지	12,384	94.3	23,200	21,875
	건물	750	5.7		1,325

□ 비축기지별 해당 목 매각대

(단위: 백만원)

비축기지명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청주	777	3,523
회덕	-	8,200
전주	811	2,589
광주	1,659	13,841
노포	715	5,885
학장	1,325	21,875
계	**5,286**	**55,914**

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	12	12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2. 수입 개요

○ 내용연수 경과된 기타 고정자산의 매각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5년간 실적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치 적용('18년 계획액 수준 반영)

- [('12)0백만원+('13)37+('14)0]÷3 = 12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15	-	42	42	순증	-	-	-
'16	-	-	-	-	-	-	-
'17	12	2	2	16.7	-	-	-
'18	12	269	40	333.3	14.9	229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10. 토지매각대

72-72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토지매각대	-	-	55,914	55,914	순증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2. 수입 개요

○ 매각대상 기존 비축기지 등 토지 매각 대금 수입

-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 완료('18)에 따라 지방의 노후화된 기존 비축기지 매각 계획

3. 2019년 계획 내역

○ 기존 비축기지 토지 매각에 대한 탁상감정 가격

- 청주: 3,524백만원, 회덕: 8,200, 전주: 2,589, 광주: 13,841, 노포: 5,885, 학장: 21,87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	-	-	-	-	-
'15	-	-	-	-	-	-	-
'16	78,000	14,718	14,718	18.9	100.0	-	-
'17	-	-	-	-	-	-	-
'18	-	19,070	962	순증	5.0	18,108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참고 | **노후화된 비축기지 건물 및 토지 매각대 산출내역(안)**

□ 건물 및 토지매각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관리지역본부 (비축기지명)	구분	장부가액	장부가 비율	탁상감정 매각가	해당 목 매각대
충북 (청주)	토지	2,511	81.9	4,300	3,523
	건물	554	18.1		777
대전충남 (회덕)	토지	4,705	100.0	8,200	8,200
	건물	-	-		-
전북 (전주)	토지	1,661	76.2	3,400	2,589
	건물	520	23.8		811
광주전남 (광주)	토지	9,577	89.3	15,500	13,841
	건물	1,148	10.7		1,659
부산울산 (노포)	토지	5,254	89.2	6,600	5,885
	건물	638	10.8		715
부산울산 (학장)	토지	12,384	94.3	23,200	21,875
	건물	750	5.7		1,325

□ 비축기지별 해당 목 매각대

(단위: 백만원)

비축기지명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청주	777	3,523
회덕	-	8,200
전주	811	2,589
광주	1,659	13,841
노포	715	5,885
학장	1,325	21,875
계	**5,286**	**55,914**

11. 재고자산매각대

73-73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재고자산매각대	637,308	743,045	803,214	60,169	8.1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비축사업 등의 자금의 집행관리)

○ 종자산업법 제22조(품목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2. 수입 개요

○ 가격안정용 수매·수입 농산물(콩, 팥, 참깨, 마늘 등)을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에게 공급하고 징수한 판매대금 및 식량종자 보급종 판매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농산물판매수입 + 종자판매수입

- 730,312백만원+72,902 = 803,214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859,865	545,311	545,311	63.4	100.0	-	-
'15	811,600	562,991	562,991	69.4	100.0	-	-
'16	794,900	655,654	655,654	82.5	100.0	-	-
'17	859,865	637,308	637,308	74.1	100.0	-	-
'18	743,045	493,016	492,988	66.3	100.0	28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1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927,087	1,197,022	1,125,567	△71,455	△6.0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2. 수입 개요

○ 산지유통활성화, 농산물직거래활성화, 도매유통활성화, 식품산업육성, 수출농식품지원 등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해 기금 대출취급기관(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여한 융자원금 회수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정기상환 + 조기상환

- 1,078,452백만원+47,115 = 1,125,567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471,006**	**1,648,947**	**1,648,947**	112.1	100.0	-	-
통화	818,364	996,613	996,613	121.8	100.0	-	-
비통화	652,642	652,034	652,034	99.9	100.0	-	-
'15	**1,544,700**	**1,415,383**	**1,415,383**	91.6	100.0	-	-
통화	878,600	863,615	863,615	98.3	100.0	-	-
비통화	666,100	551,768	551,768	82.8	100.0	-	-
'16	**1,407,900**	**1,143,146**	**1,143,146**	81.2	100.0	-	-
통화	557,600	697,447	697,447	125.1	100.0	-	-
비통화	850,300	445,699	445,699	52.4	100.0	-	-
'17	1,468,128	927,087	927,087	63.1	100.0	-	-
'18	1,197,022	1,134,125	1,134,125	94.7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참고 | 2019년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세부내역(안)

□ 총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금액 : 1,125,567백만원

○ 정기상환액(1,078,452백만원) + 조기상환액(47,115백만원)

□ 정기상환 : 1,078,452백만원

○ 단기자금 : '18년 운용계획에 반영된 융자금 전액을 '19년 회수

○ 장기자금 : 정기분할 상환금액 회수

(단위: 백만원)

대출취급기관	단기		장기		정기상환액 합계
	2018년말 잔액	정기상환액	2018년말 잔액	정기상환액	
경제지주	123,100	123,100	1,967,157	431,302	554,402
유통공사	467,308	467,308	372,603	56,742	524,050
합 계	590,408	590,408	2,339,760	488,044	1,078,452

□ 조기상환 : 47,115백만원

○ 조기상환율 : 1.61%

○ 조기상환

• 과거 7개년 융자금 최저 조기상환율 1.61%를 '18년말 융자잔액에 적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대출취급기관별로 안분, 정기상환액은 당해연도에 예산반영을 가정

* '18년말 융자잔액 × 조기상환율

= 2,930,168백만원 × 1.61% = 47,115백만원(경제지주 : 33,634백만원, 유통공사 : 13,481백만원)

* 대출취급기관별 안분시 단기는 당해연도 대여기준, 장기는 잔액기준

(단위: 백만원)

대출취급기관	단기		장기		조기상환액 합계
	2018년말 잔액	조기상환액	2018년말 잔액	조기상환액	
경제지주	123,100	1,981	1,967,157	31,653	33,634
유통공사	467,308	7,519	372,603	5,962	13,481
합 계	590,408	9,500	2,339,760	37,615	47,115

□ 농협경제지주 장기융자금 회수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19계획	'20계획	'21계획	'22계획	상환기간 (거치기간)
[농협경제지주]	**431,302**	**551,240**	**605,693**	**536,688**	
저온유통체계구축	**598**	**712**	**814**	**1,793**	
-저온유통체계구축	28	142	244	1,223	10(3)
-무배추출하조절시설	570	570	570	570	10(3)
산지유통종합자금	**410,963**	**532,734**	**588,046**	**517,643**	
-산지유통활성화	255,264	282,734	449,246	308,609	3(3)
-과실수급안정	20,000	50,000	49,800	50,000	5(5)
-과채류수급안정	-	-	41,000	69,700	5(5)
-노지채소수급안정	135,699	200,000	48,000	89,334	5(5)
-동절기수급안정	-	-	-	-	10(3)
식품외식종합자금	**3,647**	**2,278**	**1,064**	**721**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일반가공)	-	-	-	-	1~2
-소매유통시설현대화	-	-	-	-	10(3)
-소비지유통시설	3,647	2,278	1,064	721	10(3)
인삼약용작물계열화	**16,094**	**15,516**	**15,769**	**16,531**	
-인삼계열화(수매자금)	-	-	-	-	1
-인삼계열화(계약재배)	16,094	15,516	15,769	16,531	5(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기융자금 회수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19계획	'20계획	'21계획	'22계획	상환기간 (거치기간)
[유통공사]	**56,742**	**89,397**	**67,648**	**56,846**	
저온유통체계구축	**638**	**857**	**478**	**106**	
-저온유통체계구축	638	857	478	106	10(3)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2,361**	**3,454**	**5,702**	**8,384**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2,361	3,454	5,702	8,384	10(3)
농식품수출촉진	**-**	**-**	**-**	**2,000**	
-해외전진기지구축	-	-	-	2,000	20(10)
산지유통종합자금	**30,668**	**55,907**	**30,574**	**17,939**	
-산지유통활성화	17,960	10,557	1,280	1,533	3(3)
-노지채소수급안정	12,708	45,350	29,294	16,406	5(5)
-수매지원저장용(종자)	-	-	-	-	5(5)
식품외식종합자금	**23,075**	**29,012**	**30,719**	**27,281**	
-전통발효식품육성	317	317	172	91	10(3)
-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1,601	820	20	20	10(3)
-농공상융복합형 중소기업육성(시설)	759	963	338	338	10(3)
-농공상융복합형 중소기업육성(운영)	13,318	19,320	20,963	20,774	2(2)
-농식품가공시설현대화	-	-	-	-	10(3)
-농식품시설현대화	1,002	1,854	2,042	2,144	10(3)
-돼지고기수출작업장	2,650	2,727	2,938	2,313	10(3)
-무역진흥센터	1,286	1,044	921	523	20
-식품가공원료매입 (전통주류)	527	-	-	-	2(2)
-식품제조업체시설현대화	1,608	1,960	3,318	1,078	10(3)
-신선편이시설현대화	-	-	-	-	10(3)
-우수시설현대화	-	-	-	-	10(3)
-유기가공식품시설지원	7	7	7	-	10(3)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	**-**	**-**	**-**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	-	-	-	-	5(5)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	**167**	**175**	**1,136**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	167	175	1,136	10(3)

13.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84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18,162	5,085	5,085	-	-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2. 수입 개요

○ 농식품 모태펀드 등에 출자한 원금배분금액 회수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6년간 실적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치 적용('18년 계획액 수준 반영)

- [('11)770백만원+('14)4,412+('15)4,660+('16)10,460]÷4 = 5,085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4,412	4,412	순증	100.0	-	-
'15	-	4,660	4,660	순증	100.0	-	-
'16	542	10,460	10,460	1,929.9	100.0	-	-
'17	1,927	18,162	18,162	942.5	100.0	-	-
'18	5,085	-	-	순감	-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14.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5-852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959	166,837	74,222	△92,615	△55.5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2. 수입 개요

○ 연간 기금 총 수입액 중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 이외의 일시 여유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만기일 또는 자금 소요시기에 회수

3. 2019년 계획 내역

○ ‘18년 운용계획 수준 반영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05,926	22,801	22,801	21.5	100.0	-	-
‘15	46,315	30,000	30,000	64.8	100.0	-	-
‘16	235,152	60,000	60,000	25.5	100.0	-	-
‘17	153,661	4,959	4,959	3.2	100.0	-	-
‘18	166,837	30,000	30,000	18.0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1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64,972	146,763	150,000	3,237	2.2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2. 수입 개요

○ 연간 기금 총 수입액 중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 이외의 일시 여유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만기일 또는 자금 소요시기에 회수

3. 2019년 계획 내역

○ '18년 운용계획 수준 반영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208,033	26,092	26,092	12.5	100.0	-	-
'15	137,143	196,533	196,533	143.3	100.0	-	-
'16	130,917	192,070	192,070	146.7	100.0	-	-
'17	141,170	464,972	464,972	329.4	100.0	-	-
'18	146,763	270,626	270,626	184.4	100.0	-	-

※ '18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년 결산기준(11월 말)으로 작성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29,440	25,000	25,000	22,500	△2,500	△10.0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2200 - 2276

* 담 당 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친환경농업과장(이상혁), 사무관(이윤식)☎(044-201-243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직거래자금을 융자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가격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직거래 매취자금 등 융자지원
사업기간	'0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융자(국고 80%, 자부담 20%), 연리 2~3%(변동금리 가능) * (운영자금)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 (시설자금)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등 융자지원 : 22,50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 등 : 22,500백만원

- 1,250백만원 × 23개소 × 80%(국고융자) = 22,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및 판매채널 확충을 지원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융자)	**29,440**	**25,000**	**25,000**	**22,500**	**2,500**	**△10.0**
▪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융자)	29,440	**25,000** (25개×1,250백만×80%)	**25,000** (25개×1,250백만×80%)	**22,500** (23개×1,250백만×80%)	△2,500	△10.0
□ 비목(합계)	**29,440**	**25,000**	**25,000**	**22,500**	**2,500**	**△10.0**
○ 기타민간융자금(450-04)	29,440	25,000	25,000	22,500	2,500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2.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행하는 교육·홍보·공동구매·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 추진경위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적정가격 및 안정적 판로보장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03년)
- 친환경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한살림, 생협 등이 운영하는 소비지 판매장 확충지원 방안 검토지시(장관, '07.4.18)
- 한미 FTA 종합대책('07.6.28) 발표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향상 추진
  - 안정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생산자와 수요처간 계약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 '08~'11년 한미 FTA비준 연계사업으로 사업 미추진('12년부터 사업시행)
- '농식품소비지산지협력'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12년)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13.9월)
- 국정과제 사업편성으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으로 별도 분리('14년부터)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으로 통합('16년부터)
-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판매장개설자금과 직거래 매취자금을 통합 운영('18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519	514	514	414	294	25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

- ('15) 높은 정책금리, 담보 부족 등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로 240억원 불용
- ('16) 담보부족 등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로 195억원 불용
- ('17) 담보부족 등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로 99억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14** (274)	- (-)	- (-)	514 (274)	**274** (274)	(-)	240 (-)
'16년	**414** (219)	- (-)	- (-)	414 (219)	**219** (219)	- (-)	195 (-)
'17년	**294** (195)	- (-)	- (-)	**294** (195)	**195** (195)	- (-)	99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융자수요 확보 수단 강구 필요('15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16년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사업대상자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기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16.7.21일 사업시행지침 추가 개정을 통해 사업의무량 완화(250% → 125%) 조치

* '15. 7월 금리인하(3~4% → 2.5~3%, 변동금리 도입) 및 지원 대상자 확대(유기가공식품업체 등), 자금사용용도 추가(판매장 확장시 지원 추가 등)

- (지적내용)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16년 결산 상임위·예결위 등 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 철저한 집행 상황 점검으로 불용 최소화. '18년 예산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44억원 감액 편성

- (지적내용)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 존치 여부 검토('16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16년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불용되어 '18년 예산 편성 시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 내역사업 폐지 후 친환경직거래 매취자금과 통합하여 직거래지원 자금으로 운영

- (지적내용) 친환경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시설자금 사업수요가 전무할 경우 존치 여부 검토('17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18년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시설자금을 직거래매취자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18년 2개 업체에 시설자금 집행 및 '19년 1개 업체가 시설자금 수요 희망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 미흡(49.75)*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단위사업

- 미흡 사유: 집행 부진

⇒ (조치사항)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 면밀한 계획 수립, 철저한 집행상황 점검으로 불용을 최소하고, '19년도 예산은 전년도 집행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5억원 감액 편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시달 (전년도 10월)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고 (1월)	사업신청 (1월)
사업선정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2월)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및 자금지원계획 승인(1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자금지원 계획 수립 (1월)	
자금배정	자금배정 (2월~)	자금배정 요청 및 대출실행 (2월~)	대출신청 (2월~)
이행점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 집행 점검 (반기1회)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확인 (반기1회)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정책 반영	지원업체 성과측정	사업이행실적 제출

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재량/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0,539	12,106	12,106	9,858	△2,248	△18.6

* 사업코드: 20 - 55 - 0 - 100 - 104 - 2800 - 2833
* 담 당 자: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외식산업진흥과장(이재식), 사무관(안정은)☎(044-201-215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농식품 수출 지원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한식진흥 기반강화, 음식관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기간	'09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한식진흥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한식진흥기반강화 : ('18) 4,663백만원 → ('19) 5,549백만원 >

○ 한식정보분석 및 콘텐츠 확산 800

* 한식콘텐츠 DB 구축 및 확산 200, 국내외 한식산업 및 소비실태조사 600

○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5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491

○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강화 540, 추진기관 운영비 3,668

< 음식관광활성화 : ('18) 1,750백만원 → ('19) 1,809백만원 >

○ 음식관광상품 개발·보급 700

○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1,109

* 임차료 460, 관리비 196, 운영비 183,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270

< 전문인력양성 : ('18) 2,527백만원 → ('19) 2,500백만원 >

○ 한식교육인프라 강화 660

* 한식교육기관 지원 500(25개소×20백만원), 한식강사 역량강화 60(2회×30명), 한식해설사 양성 100(5회×20명)

○ 한식전문인력 취창업 지원 1,840

*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400(20개소×20백만원), 한식분야 취업현황조사 100, 해외한식인턴 지원 400(100명×4백만원), 해외한식인턴 취업비자 지원 100, 한식전문인력 취업지원 130(취업연계 90, 콘텐츠제작 30, 취업워크숍 10), 해외 한식강좌 개설 및 한식강사 파견 500, 호텔 연계 전문인력 해외진출지원 200, 사업관리비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19계획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2,106	9,858
▪ 한식진흥기반강화	4,663	5,549
▪ 음식관광활성화	1,750	1,809
▪ 전문인력양성	2,527	2,500
▪ 한식해외확산	3,166	-

□ 지원 필요성

○ 한식에 대한 우호적 해외 여건과 **올림픽 기간중 성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식재료 수출, 한식문화의 해외 확산 등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예산의 투자가 필요**

* 해외 한식인턴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지원('18 : 80명 → '19 : 100)

* 해외한식당협의체(11개국 23개)를 식재료 수출창구로 육성하여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539**	**12,106**	**12,106**	**9,858**	**△2,248**	**△18.6**
▪ 한식진흥 기반 강화	**5,018** -한식 콘텐츠 개발 70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 600 -한식 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200 -추진기관 운영 2,136 -한식문화관 1,322	**4,663** -한식콘텐츠 DB구축 235 -정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반 조성 9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 지원 491 -한식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60 -추진기관 운영 3,787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	**4,663** -한식콘텐츠 DB구축 235 -정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반 조성 9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 지원 491 -한식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60 -추진기관 운영 3,787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	**5,549** -한식정보 분석 및 콘텐츠 확산 800 -정문화 유네스코 등재 5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 지원 491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540 -추진기관 운영비 3,668	886	19.0
▪ 음식관광 활성화	**2,370** -음식관광 상품 개발 보급 920 -국제 및 국내 행사 연계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800 -음식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보급 650	**1,750** -음식관광 상품 개발 보급 500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한식 홍보 1,250	**1,750** -음식관광 상품 개발 보급 500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한식 홍보 1,250	**1,809** -음식관광상품 개발 보급 700 -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1,109	59	3.4
▪ 전문인력 양성	**2,081** -국내 한식교육 1,040 -해외 한식교육 1,041	**2,527** -국내 한식교육 926 -해외 한식교육 1,601	**2,527** -국내 한식교육 926 -해외 한식교육 1,601	**2,500** -한식교육인프라 강화 660 -한식전문인력 취창업 지원 1,840	△27	△1.1
▪ 한식 해외확산	**1,070**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540 -해외 한식와식 정보조사 530	**3,166**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540 -글로벌 한식산업 조사 및 DB 활용 626 -한식문화 해외홍보 2,000	**3,166**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540 -글로벌 한식산업 조사 및 DB 활용 626 -한식문화 해외홍보 2,000	-	순감	-
□ **비목**(합계)	**10,539**	**12,106**	**12,106**	**9,558**	**△2,248**	**△18.6**
○ 민간경상보조 (320-01)	10,539	12,106	12,106	9,558	△2,248	△18.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2(한식세계화추진기관의 지정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중 한식(韓食)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키로 결정('06.6)
- 한식 산업화·세계화 추진계획 수립('09.5)
- 한식세계화의 민간 집행기구인 한식재단 설립('10.3)
-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한식재단 지정('12.5), 한식정책 발전방안 마련('14.1)
- 한식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15.1), 한식진흥원 명칭 변경('17.12)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92	126	128	107	105	121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15) 한식문화관 조성비로 1,775백만원 증액(기재부 승인변경)

○ **불용 :** ('16) 내역사업 중 한식문화관 운영비(1,000백만원) 예산은 지출전 기재부 사전협의 사업으로 지정, '16년 4월 개관이후 실제 필요예산(877백만원)만 배정받아 일부 불용액(123백만원)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0**	-	18	128	**128**	-	-
	(110)	(-)	(18)	(128)	**(123)**	(-)	(-)
'16년	**107**	-	-	107	**106**	-	1
	(106)	(-)	(-)	(106)	**(99)**	(-)	(7)
'17년	**105**	-	-	105	**105**	-	-
	(105)	(-)	(-)	(105)	**(96)**	(-)	(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한식을 포함한 외식산업 수출지원 및 수출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 유사('16 예정처)

⇒ (조치사항) '18년부터 '수출인프라강화' 사업(농특)의 '식문화홍보' 내역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유사 내역인 '한식해외확산' 내역으로 이관하여 예산 편성

- (지적내용) 한식진흥원 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16 예정처)

⇒ (조치사항) '17년도에는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 이월 없이, 연내에 집행 완료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18년): 보통(82.75) * 농산물수출촉진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10%)

⇒ (조치사항) '16년 대비 10.9% 축소된 '19년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단계에서 일부 증액되어 최종 8.1% 축소된 예산 편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 1960년대부터 정부주도로 자국음식 세계화 추진

* 1964년 동경올림픽 당시 서양인들을 위한 메뉴개발을 정부가 주도, 철판요리를 창안하면서 시작

- 2010년까지 일식애호가를 12억명으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식문화연구추진회」를 발족하여 활동

○ try Japan's good food('06.10.부터 시작)

* 재외공관에 현지의 요인이나 오피니언리더 등을 대상으로 일본의 고품질 식자재를 이용한 일본식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식문화 보급 및 식품 수출진흥지원

<태국>

○ 탁신총리 주도로 '01년부터 음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07년까지 해외 태국 음식점을 5,500개소에서 8,500개로 증설한다는 "Kitchen to the World" 프로젝트 마련

○ 자국 음식점 대중화 전략 및 전문인력 관리의 정부주도 추진

* 90년대 초반부터 고유음식 조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태국 요리사 양성과정 및 식당 전문관리자 과정 등을 통해 국제인력 양성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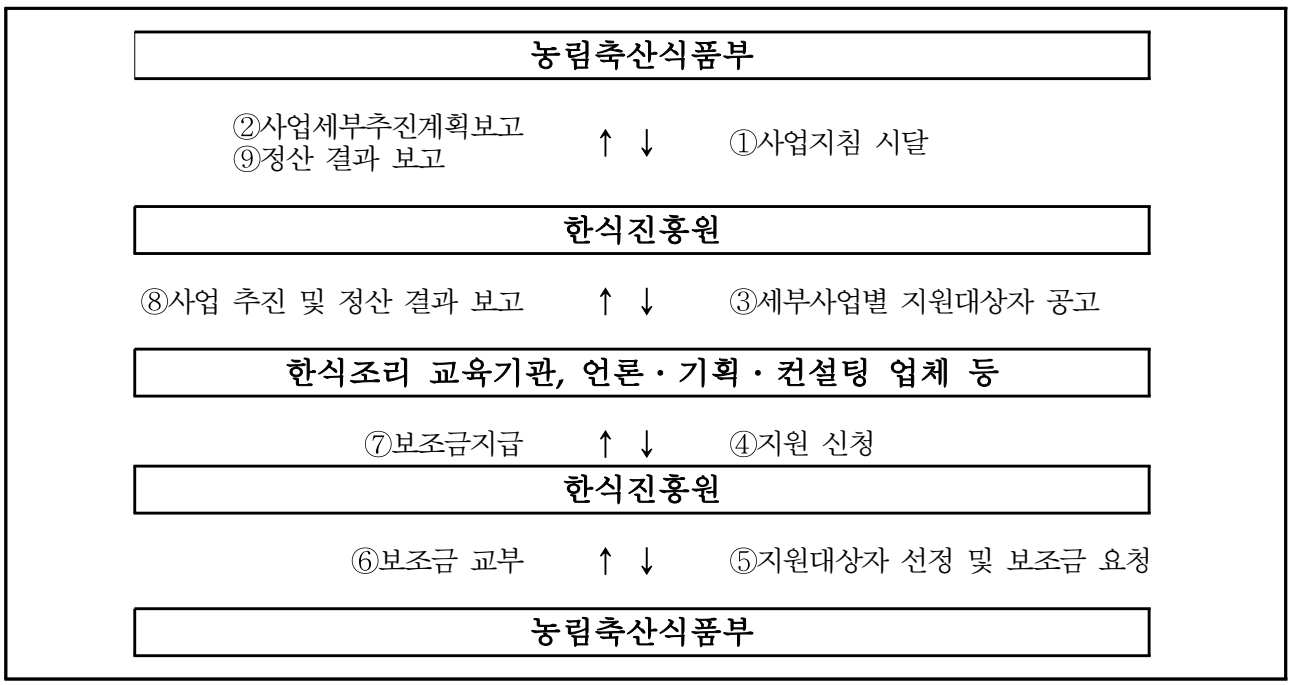

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4 - 2800 - 2835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수출진흥과장(김민욱), 사무관(안광현)☎(044-201-21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기간	'1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농식품 수출업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150개소, 가공식품 수출업체 300개소)
지원조건	o 수출농식품 원료구매 : 국고융자 80~9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지원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o 농식품수출 시설현대화 : 국고융자 8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식품 원료구매 지원 : 338,642백만원

- 234개 업체 x 1,780백만원 x 80% = 338,642백만원

○ 농식품 시설현대화 지원 : 4,800백만원

- 6개 업체 x 1,000백만원 x 80% = 4,8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 견인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규모 수출업체로 정책자금 지원 중단 시 경영부실화 및 수출기반 상실 우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글로벌육성자원자금(융자)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 수출농식품 원료구매	286,094	**333,842** (234개업체x1,780백만원x80%)	**333,842** (234개업체x1,780백만원x80%)	**333,842** (234개업체x1,780백만원x80%)	-	-
▪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1,400	**4,800** (6개업체x1,000백만원x80%)	**4,800** (6개업체x1,000백만원x80%)	**4,800** (6개업체x1,000백만원x80%)	-	-
□ **비목**(합계)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2. 농산물의 수출촉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80년부터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용 원료구매 자금 지원
- ’95년부터 수출 부자재·저장·가공·포장·운송 등 부대경비 지원
- ’05년부터 수산분야 지원은 수발기금(구 해양수산부)으로 이관
- ’08년부터 농식품 수출자금(원료구매자금,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자금 등)을 운영활성화자금으로 통합지원
- ‘13년부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 ‘14년부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 축산물 원료구매자금 지원
- ‘15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으로 재편
- ‘17년부터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재편
- ‘18년부터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3,871	4,200	4,856	4,613	3,775	3,38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17, △30억원) 식품산업육성 프로그램 내 사업간 융자금 규모 조정

- 최저임금 인상 등 외식업계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 위축 우려로 외식경영 안정화 및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을 30억원 감액하여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증액(기재부 승인변경)

○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낮은 시중금리 기조('15~'17),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 악화, AI 발생 등에 따른 농식품 수출 감소 등('17)으로 인한 정책자금 수요부족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856** **(1,896)**	- (-)	- (-)	4,856 (1,896)	**1,896** **(1,879)**	- (-)	2,960 (17)
'16년	**4,613** **(2,566)**	- (-)	- (-)	4,613 (2,566)	**2,566** **(2,566)**	- (-)	2,047 (-)
'17년	**3,805** **(2,875)**	- (-)	△30 (-)	3,775 (2,875)	**2,875** **(2,876)**	- (800)	900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원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집행실적 제고 필요('16년 결산 상임위)

⇒ (조치사항) 수출자금 한시적(6개월간, '17.3.1~8.31) 금리인하(고정금리 1%) 조치('17.3월) 등을 통해 '17년 집행률은 76.2%로 전년대비 20.6% 증가

○ 감사원 지적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2.75) * 농산물수출촉진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외 여러 국가가 수출보조금 지급과 수출신용 공여제도 등을 통해 자국 농업의 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농림어업자 해외개척지원자금: 일본산 농림수산물 해외판매를 위한 상표권 획득비용, 해외판매장 임차보증금, 해외설립 일본산 농림수산물 가공공장 지원, 운영자금 등 일본농림어업 진흥에 관계되는 사항 지원
- (미국 FSA/Farm Service Agency) 농가 운영자금(Operration Loans) 등 상업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가 신용력과 담보력을 갖추도록 육성
- (대만 BOAF/The Bureau of Agricultural Finance) 농업자금(General Agricultural Loans) 등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농업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어업자 자금지원
- WTO에 통보된 문서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농산물에 대한 감축대상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낙농품에 대한 보조가 주를 이루며, EU는 곡물에도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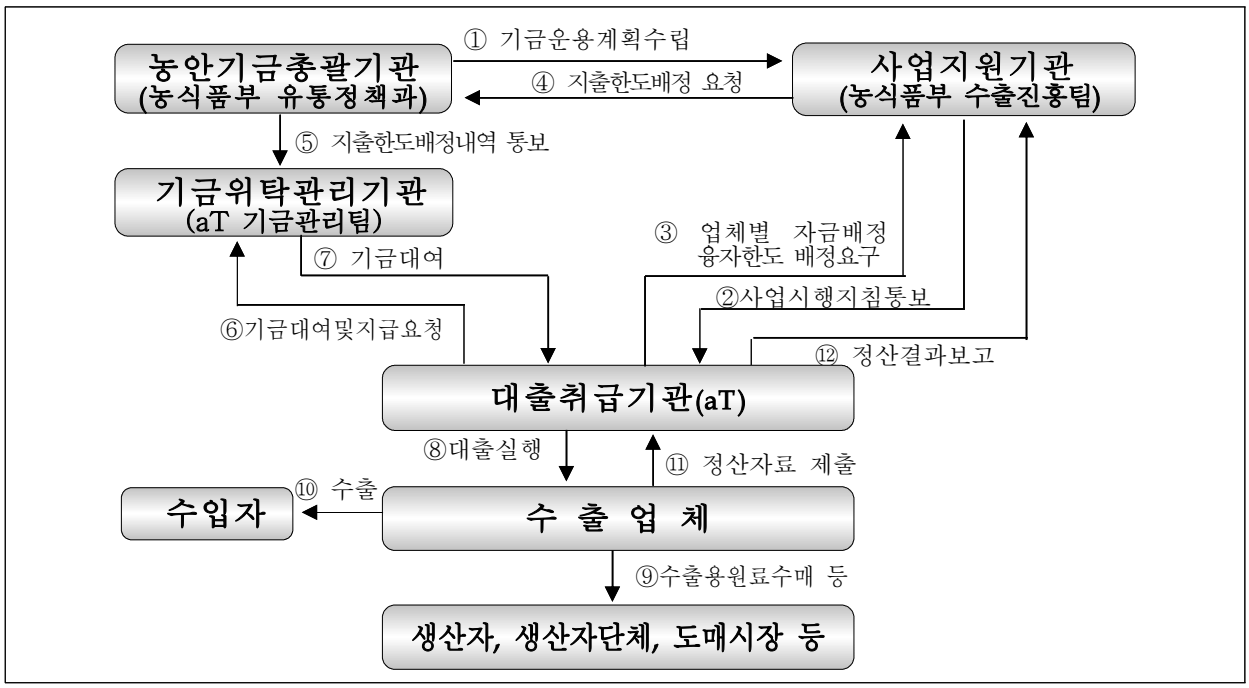

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4 - 2800 - 2835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수출진흥과장(김민욱), 사무관(안광현)☎(044-201-21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전문단지', 품목별 수출츨통합조직 육성, 전문 판매조직인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브랜드 홍보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사업기간	'1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 등(수출단지 160개소, 품목별 조직 15개, 농식품수출업체 450개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50~9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생산기반)** 수출생산기반 구축 위한 **'수출전문단지'** 육성**(3,823백만원)**

- (조직화 교육) 160개소×12백만원 = 1,896백만원
- (안전성 관리비) 90개소×16.4백만원×90% = 1,327백만원
- (검역관 초청) 대미 수출 배 500백만원+2품목(우유, 삼계탕)×50백만원 = 600백만원

* 대미 수출배 생산단지 13개소는 매년 500백만원 소요

○ **(판매조직육성)**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및 **수출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협의회'** 활성화**(4,790백만원)**

▪ (수출선도·통합조직) 15개×200백만원(조직 육성·교육) = 3,000백만원

▪ (수출협의회) 16개×99.4백만원 = 1,59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 50업체×4백만원 = 200백만원

○ **(수출업체 맞춤지원)** 물류비, 보험·통관, 해외인증, 마케팅 등 수출업체에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 추진**(63,541백만원)**

▪ (물류비) 수출농식품 247천톤×154원/㎏ = 38,023백만원

▪ (보험·통관·선도유지제) 160개업체×22백만원×90% = 3,190백만원

▪ (해외인증) 할랄, 코셔인증 등 278업체×24.5백만원×70% = 4,768백만원

▪ (현지화) 상품개발 현지화 지원 125개소×26백만원×80% = 2,600백만원

▪ (수출컨설팅) 98개소×27.5백만원×80% = 2,160백만원

▪ (상품개발) 80개소×50백만원×80% = 3,200백만원

▪ (마케팅 지원) 개별브랜드 홍보, 해외유통매장 판촉, 개별박람회, 바이어 지원

- 240개소×50백만원×80% = 9,600백만원

○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 농식품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비**(36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내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단지, 조직화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할랄·코셔시장 등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한 만큼 신흥시장에 대한 초기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비용지원 필요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검역 등에서 보다 자유롭고 한류 등 문화와의 연계성이 높은 가공식품이 수출 견인 역할을 해야 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 생산기반조성	3,703	3,823	3,823	3,823	-	-
- 조직화교육	1,776 (148개소×12백만)	1,896 (158개소×12백만)	1,896 (158개소×12백만)	1,896 (158개소×12백만)	-	-
- 안전성관리비	1,327 (90개소×16.4백만×90%)	1,327 (90개소×16.4백만×90%)	1,327 (90개소×16.4백만×90%)	1,327 (90개소×16.4백만×90%)	-	-
- 검역관초청	600 (현지검역 500백만 + 현지조사 100백만)	600 (현지검역 500백만 + 현지조사 100백만)	600 (현지검역 500백만 + 현지조사 100백만)	600 (현지검역 500백만 + 현지조사 100백만)	-	-
▪ 판매조직육성	3,390	3,790	3,790	4,790	1,000	26.4
- 수출선도·통합조직	2,000 (15개×133백만)	2,000 (15개×133백만)	2,000 (15개×133백만)	3,000 (15개×200백만)	1,000	50
- 수출협의회	1,190 (17개×70백만)	1,590 (16개×99.4백만)	1,590 (16개×99.4백만)	1,590 (16개×99.4백만)	-	-
- 전문인력	200 (50업체×4백만)	200 (50업체×4백만)	200 (50업체×4백만)	200 (50업체×4백만)	-	-
▪ 수출업체 맞춤지원	64,929	63,341	63,341	63,541	200	0.3
- 물류비	37,992 (246.7천톤×154원/kg)	37,992 (246.7천톤×154원/kg)	37,992 (246.7천톤×154원/kg)	38,023 (246.9천톤×154원/kg)	31	0.1
- 보험·통관·선도유지제	4,279 (183업체×26백만×90%)	3,181 (160업체×22백만×90%)	3,181 (160업체×22백만×90%)	3,190 (161업체×22백만×90%)	9	0.3
- 해외인증	5,108 (300업체×24.3백만×70%)	4,768 (278업체×24.5백만×70%)	4,768 (278업체×24.5백만×70%)	4,768 (278업체×24.5백만×70%)	-	-
- 현지화	2,600 (125개소×26백만×80%)	2,600 (125개소×26백만×80%)	2,600 (125개소×26백만×80%)	2,600 (125개소×26백만×80%)	-	-
- 수출컨설팅	2,700 (113개소×30백만×80%)	2,200 (100개소×27.5백만×80%)	2,200 (100개소×27.5백만×80%)	2,160 (98개소×27.5백만×80%)	△40	△18
- 상품개발	2,000 (50개소×50백만×80%)	3,000 (75개소×50백만×80%)	3,000 (75개소×50백만×80%)	3,200 (80개소×50백만×80%)	200	6.7
- 마케팅지원	10,250 (256개소×50백만×80%)	9,600 (240개소×50백만×80%)	9,600 (240개소×50백만×80%)	9,600 (240개소×50백만×80%)	-	-
▪ 농식품 수출바우처지원	-	410	410	369	△41	△10
□ 비목(합계)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민간경상보조(320-01)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수출물류비 >

- '90년부터 수출과정에서 부담이 큰 농산물의 선별·포장·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 일부지원
- '15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으로 재편

< 해외시장개척 >

- '95년부터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 '88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독일 베를린 농업박람회에 처음 참가 후, '91년부터 '94년까지 박람회 참가사업으로 추진

- '15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으로 재편
- '17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재편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412	423	640	648	720	71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40 (640)	- (-)	- (-)	640 (640)	640 (540)	- (-)	- (100)
'16년	648 (648)	- (-)	- (-)	648 (648)	648 (543)	- (-)	- (105)
'17년	720 (720)	- (-)	- (-)	720 (720)	720 (638)	- (-)	- (6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2.75) * 농산물수출촉진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선진국 대부분이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보조·융자 등 다양한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투자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농가 및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도 농식품 수출지원에 적극 대응할 필요

□ **해외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12월,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방안」 중)

○ **(미국)** 미국은 농무성 산하 해외농무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이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에서의 미국 농업 경쟁력 강화, 정보수집 등 수출확대 프로그램 총괄

-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은 비영리 미국 농업 무역 협회, 비영리 미국 농업협동조합, 비영리 주 지역 무역 그룹,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의 비용 공유 전시회, 시장 조사, 소비자 프로모션, 기술 지원, 무역 서비스 및 해외 고객에 대한 교육 세미나로 이루어짐.

  * 2008년 6월 제정된 식품·자연보호·에너지 법률에 의거 2012년 기준 연간 2억 달러의 MAP를 위한 기금을 설정함.

-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은 장기적인 수출시장의 유지, 창출, 확장을 위해 소비자판촉, 기술지원, 무역서비스, 시장조사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

○ **(프랑스)**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은 생산단계의 기반 조성과 교육을 통한 지식산업화, 품질 및 안전 확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지원으로 구성

-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SOPEXA)는 프랑스산 식품 및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컨설팅, 광고 전략수립, 홍보 캠페인·행사 개최 및 PR업무에 대한 계획 구상·대행, 식품 위생문제 발생 시 정보전달 담당, 국제박람회 시 프랑스관 부스 구상 수립, 프랑스 수출업체 명부 발행 등 담당

  * 농수산부의 수출지원 관련 예산은 약 4천만 유로

○ **(네덜란드)** 수출지원정책의 핵심인 **BES(쌍방향 경제협력)**는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부가 30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네덜란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 **식물수출정책(PEX/Plant Export Policy)**은 정부와 분야별 협력 기구가 공동으로 수출대상국의 법적 규제 및 시장 접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출대상국과 국제기구의 법, 규제 등 수출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점들도 신속히 정부에 보고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 **일본**(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18년 예산 중 수출관련 예산 발췌)

- (핵심내용) '18년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 대책(안)의 핵심은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전략」 등의 착실한 실시를 위해 All Japan 방식의 전략적 일관성 있는 프로모션의 기획·실행 등에 의한 해외수요 창출, 수출환경 정비 추진,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

- (정책목표)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확대

  * 농림수산식품 수출목표 : '16년 7,502억엔(75,284억원) → '19년 10,000(100,352)

- ('18년 지원예산)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 5,769백만엔(57,893백만원)

  * 예산추이 : ('15) 21,654백만엔 → ('16) 4,578→ ('17) 4,667→ ('18) 5,769

- (주요사업 내용) 전략적 수출확대 서포트사업, 품목별 수출촉진대책사업(판로개척 등), 일본 식문화 해외수요창출 가속화사업(일본식문화 전담 요리인 육성, 일본 레스토랑의 일본산 식재료 활용추진 등 지원), 수출환경정비추진사업(첨가물 해외 등록 등), 수출촉진을 위한 동식물검역 등 환경정비(검역협의 가속화를 위한 기술자료 축적 등 지원, 가축질병대응 등 지원), 해외농업 무역투자환경조사분석 사업(민관협의회 개최, 해외제도 등 조사, PR, 식산업 인프라 침투 지원 등)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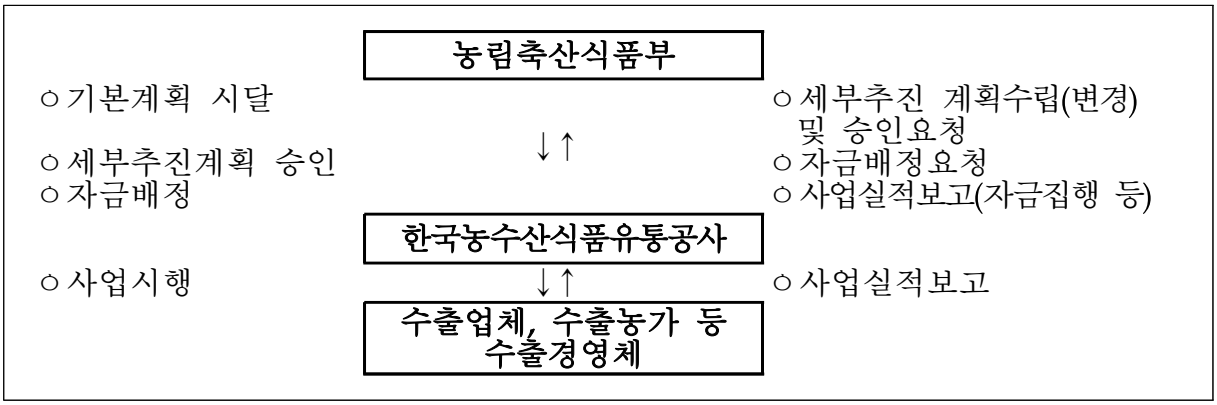

5. 전통발효식품육성(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전통발효식품육성	13,732	7,026	7,026	**8,400**	**1,374**	**19.6**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4 - 2800 - 2851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식품산업진흥과장(이용직), 사무관(박진희)☎(044-201-213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해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세계화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지역 전통식품 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소재 전통발효식품 원료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기간	'09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국비 50%, 100%), 지자체보조(국비 40~50%) ○ 민간경상보조: 전통식품산업진흥, 전통주산업진흥, 식품명인발굴육성, 식품명인체험홍보관운영(국비 100%), 김치자조금(국비 50%, 자부담 50) ○ 지자체보조 - 경상보조: 소스산업화센터운영지원·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국비 50%, 지방비 50), 찾아가는 양조장(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자본보조: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보조), 전라북도(소스산업화센터운영), 지자체(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찾아가는양조장,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전통식품산업 육성 > ('18) 2,060백만원 → ('19) 1,980(△80)

○ **전통식품 산업진흥 : 630백만원**(전년 대비 △37.6%)

▪ 전통식품 홍보 200백만원, 국내유통 활성화 지원 130, 김치문화축제 100, 김치품평회 200

○ **식품명인발굴·육성** : **600백만원**(전년 대비 100% 증)

▪ 식품명인 선정, 활동지원 및 판로확대 등 300백만원(전년 동)

▪ (신규)**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 :300백만원**(순증)

- 개인별 연간 4~6백만원 지급

* 지원조건 변경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운영** : **500백만원**(전년 동)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소스산업화센터 지원('18~'21년, 4년간)** : **250백만원**(전년 동)

▪ 소스산업화센터 운영 지원 1개소 × 500백만원 × 50%(국고보조율) = 250백만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 전라북도

< 발효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18) 1,050백만원 → ('19) 3,250(+2,150)

○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3개년 사업)** : **2,600백만원**(전년 대비 420% 증)

▪ 센터 건립 지원: 2,500백만원

- 2년차 1개소(건축비 및 장비구입비) × 8,000백만원 × 50%(국고보조율) × 50%(2년차 진행률) = 2,000백만원

- **(신규)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1년차 1개소(실시설계) × 8,000백만원 × 100%(국고보조율) × 15%(1년차 진행률) = 500백만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개소당 3년간 사업비 80억원 / 선정방식: 지자체 공모

▪ **(신규)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타당성용역 100백만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 국회 심의단계에서 도입된 신규사업비로 목 간 조정 필요: 자치단체자본보조 △1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100

○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 **300백만원**(전년 대비 50% 증)

▪ 15개 업체 × 40백만원 × 50%(국고보조율) = 300백만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발효식품산업 정보제공** : **100백만원**(전년 동)

▪ 조사용역(관리운영비 포함) 1식 × 100백만원 × 100%(국고보조율) = 100백만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김치자조금 지원**: **250백만원**(전년 동)

▪ 김치자조금 500백만원 × 50%(국고보조율) = 250백만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50%, 자부담 50%)

< 한국술산업 육성 > ('18) 3,916백만원 → ('19) 3,170(△746)

○ **전통주산업진흥**: **1,670백만원**(전년 대비 △49.7%)

▪ 주류산업 실태조사 250백만원,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520, 전통주 갤러리 700, 우리술 사이트 관리·운영 100, 주종별 표시기준 수립 100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찾아가는 양조장** : **500백만원**

▪ 양조장 지원 : (1년차 4개소 × 120백만원 × 40%(국고보조율) × 50%(1년차 진행률)) + (2년차 4개소 × 120백만원 × 40%(국고보조율) × 50%(2년차 진행률)) = 192백만원

*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선정방식: 지자체 공모

▪ 양조장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용역기관 1식 × 308백만원 × 100%(국고보조율) = 308백만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신규)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 사업비 **1,000백만원**

▪ 1개소 × 2,000백만원 × 50%(국고보조율) = 1,00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자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 필요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식품산업에서 국산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국산농산물 사용 촉진이라는 목적 달성과 더불어 우리 전통문화가 담겨있으나 아직은 영세한 전통식품(전통주)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전통발효식품육성	13,732	7,026	7,026	8,400	1,374	19.6
○ 전통식품 산업육성	9,700	2,060	2,060	1,980	△80	△3.9
▪ 전통식품 산업진흥	2,200	1,010	1,010	630	△380	△37.6
- 전통식품 홍보	410백만원 (홍보물제작 1식×50백만원, 매체방영 1식×100백만원, 미디어마케팅 1식×260백만원)	660백만원 (전통식품언론홍보 450, 김치품평회 200)	660백만원 (전통식품언론홍보 450, 김치품평회 200)	200백만원 (TV프로그램홍보 200)	△420	△63.6
- 국내 유통 활성화 지원	1,065백만원 235백만원[(전통식품 직거래 장터 운영 1식×75백만원) + (팝업스토어 구축·운영 3개소×50백만원 + 관리비 10백만원)] + 200백만원[(온라인 식품명인관 신규입점 및 운영비용 1식×140백만원) + (온라인 홍보 및 프로모션 비용 1식×60백만원)] + 230백만원[(전통식품 팸투어 1식×70백만원) + (팝업스토어 구축·운영 3개소×50백만원 + 관리비 10백만원) + 400백만원[(우수문화상품 전시 1식×40백만) + (마케팅 지원 13개업체 ×20백만원) + (홍보관 운영×100백만)]	250백만원 (직거래장터, 대형마트 전용관 개설 100, 온라인몰 전용관 개설, 홈쇼핑 입점 150)	250백만원 (직거래장터, 대형마트 전용관 개설 100, 온라인몰 전용관 개설, 홈쇼핑 입점 150)	130백만원 (학교급식공급망확대지원50, 역량강화교육 30, 박람회지원 50)	△120	△48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전통식품 세계화 지원	200백만원 (해외문화원 지원 1식×180백만원, 사업운영비 1식×20백만원)	100백만원 (우수문화상품 100)	100백만원 (우수문화상품 100)	-	-	-
- 전통식품 육성 운영	60백만원 (전문가회의 3회×5백만원, 의견수렴회의 3회×5백만원, 품목별 육성방안 연구 3회×10백만원)	-	-	-	-	-
- 김치 문화 축제	300백만원 (떡.한과박람회 1식×30백만원, 떡.한과 해외문화축제 지원 1식×70백만원, 장류 홍보관 지원 1식×80백만원, 유통업체 판촉 지원 1식×50백만원, 장류 tv 홍보 1식×30백만원, 장류 교육사업 지원 1식×40백만원)	-	-	100백만원 (김치패스티벌 100)	100	순증
- 김치 품평회	165백만원 (선정·평가 1식×150백만, 시상·전시 1식×10백만)	-	-	200백만원 (선정·평가 1식×150백만, 시상·전시 1식×50백만)	200	순증
▪ 식품명인 발굴·육성	**300** (식품명인 선정 1식×30백만원, 식품명인 활동 지원 1식×40백만원,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 1식×50백만원, 판로확대 지원 1식×180백만원)	**300** (식품명인 선정 1식×30백만원, 식품명인 활동 지원 1식×40백만원,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 1식×50백만원, 판로확대 지원 1식×180백만원)	**300** (식품명인 선정 1식×30백만원, 식품명인 활동 지원 1식×40백만원,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 1식×50백만원, 판로확대 지원 1식×180백만원)	**600** (식품명인 선정 1식×30백만원, 식품명인 활동 지원 1식×40백만원,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 1식×50백만원, 판로확대 지원 1식×180백만원, 전수자장려금 60명X5백만원))	**300**	**100**
▪ 식품명인 체험 홍보관 운영	**500** (식품명인 홍보관 운영 1식×500백만원(임차비, 홍보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500** (식품명인 홍보관 운영 1식×500백만원(임차비, 홍보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500** (식품명인 홍보관 운영 1식×500백만원(임차비, 홍보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500** (식품명인 홍보관 운영 1식×500백만원(임차비, 홍보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
▪ 소스산업화센터 지원	**6,700**	**250**	**250**	**250**	**-**	**-**
- 소스산업화센터 설계 용역	-	-	-	-	-	-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지원	6,700백만원 (건축비 1식×2,600백만원, 기계장비구입비 1식×3,800, 인건비 및 관리비 300)	-	-	-	-	-
- 소스산업화센터 운영 지원	-	250백만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 국비:지방비=50:50	250백만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 국비:지방비=50:50	250백만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 국비:지방비=50:50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발효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350	1,050	1,050	3,250	2,200	209.5
▪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500 (기본설계용역 200, 공사감리 150, 시설부대비 150)× 국고100% * 3개년 사업,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 50:50)	500 (기본설계용역 200, 공사감리 150, 시설부대비 150)× 국고100% * 3개년 사업,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 50:50)	2,600 (타당성용역 100백만× 국고100%) + (1년차 기본설계용역 500백만 × 국고100%) + (2년차 건축 및 장비구입비 2000백만× 국고50%) * 3개년 사업,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 50:50) ** 타당성용역: 민간보조	2,100	420
▪ 종균 활용 발효 식품산업 지원	-	200 (2개 지자체 × 200백만원 × 국고50%) *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50:50)	200 (2개 지자체 × 200백만원 × 국고50%) *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50:50)	300 (15개업체 ×40백만원× 국고50%) *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50:50)	100	50
▪ 발효식품산업 정보제공	100 (조사용역비 1식×95백만원, 관리운영비 1식×5백만원)	100 (조사용역비 1식×95백만원, 관리운영비 1식×5백만원)	100 (조사용역비 1식×95백만원, 관리운영비 1식×5백만원)	100 (조사용역비 1식×95백만원, 관리운영비 1식×5백만원)	-	-
▪ 김치 자조금 지원	250 (김치자조금×500백만×국고50%)	250 (김치자조금×500백만×국고50%)	250 (김치자조금×500백만×국고50%)	250 (김치자조금×500백만×국고50%)	-	-
○ 한국술산업 육성	3,682	3,916	3,916	3,170	△746	△19.1
▪ 전통주 산업진흥	3,010	3,320	3,320	1,670	△1,650	△49.7
- 주류산업실태조사	150백만원 (조사용역비 1식×140백만원, 관리운영비 1식×10백만원)	250백만원 (조사용역비 1식×240백만원, 관리운영비 1식×10백만원)	250백만원 (조사용역비 1식×240백만원, 관리운영비 1식×10백만원)	250백만원 (조사용역비 1식×240백만원, 관리운영비 1식×10백만원)	-	-
- 전문판매점 유통망 개척	500백만원 (전문판매점 유통망 10개소×50백만원, 소요비용의 최대 80% 지원)	-	-	-	-	-
- 유통·외식 판로개척 지원	-	300백만원 (15개소×20백만원)	300백만원 (15개소×20백만원)	-	-	-
- 전통주 소비촉진 홍보	500백만원 (한국와인페스티벌 행사 1식×300백만원, 전통주소믈리에 선발대회 1식×20백만원, 국산와인 시음회 1식×20백만원, 전통주 홍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1식×10백만원,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1식×150백만원)	-	-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품평회)	360백만원 (품평회 개최 비용(장소 대여료 등) 1식×100백만원, 해외주류품평회 참가지원 1식×70백만원, 수상자 해외선진지 연수 1식×40백만원, 품평회 입상작 홍보 1식×150백만원)	570백만원 (품평회 개최 비용(장소 대여료 등) 1식×100백만원, 해외주류품평회 참가지원 1식×70백만원, 수상자 해외선진지 연수 1식×40백만원, 품평회 입상작 홍보 1식×150백만원) * 우리술대축제 210백만원 농특회계에서 이관	570백만원 (품평회 개최 비용(장소 대여료 등) 1식×100백만원, 해외주류품평회 참가지원 1식×70백만원, 수상자 해외선진지 연수 1식×40백만원, 품평회 입상작 홍보 1식×150백만원) * 우리술대축제 210백만원 농특회계에서 이관	520백만원 (품평회 개최 비용(장소 대여료 등) 1식×100백만원, 우리술 대축제 행사 용역 1식×420백만원)	△50	△8.8
- 전통주 갤러리	700백만원 (기존 갤러리 운영비 1식×570백만원, 해외공관 전통주 홍보 사업 지원 1식×130백만원)	700백만원 (기존 갤러리 운영비 1식×500백만원, 해외공관 전통주 홍보 사업 지원 1식×200백만원)	700백만원 (기존 갤러리 운영비 1식×500백만원, 해외공관 전통주 홍보 사업 지원 1식×200백만원)	700백만원 (기존 갤러리 운영비 1식×500백만원, 해외공관 전통주 홍보 사업 지원 1식×200백만원)	-	-
- 전통주 우수성 홍보	400백만원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 행사 1식×50백만원, 국내외 관광객대상 전통주 홍보 1식×150백만원, 막걸리유람단 행사 (6회×20백만원) 120백만원,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연계 전통주 홍보 1식×50백만원, 전통주 온라인 판로확대 사업 1식×30백만원)	-	-		-	-
- 우리술 사이트 관리·운영	50백만원 (우리술사이트 관리,운영 1식×50백만원)	50백만원 (우리술사이트 관리,운영 1식×50백만원)	50백만원 (우리술사이트 관리,운영 1식×50백만원)	100백만원 (우리술사이트 관리,운영 1식×100백만원)	50	100
- 전통주 발효제 보급	350백만원 (전통주 발효제 보급 활성화 연구 용역 1식×350백만원)	350백만원 (전통주 발효제 보급 활성화 연구 용역 1식×350백만원)	350백만원 (전통주 발효제 보급 활성화 연구 용역 1식×350백만원)	-	-	-
- 전통주통신판매활성화지원	-	300백만원 (온라인 판촉지원)	300백만원 (온라인 판촉지원)	-	-	-
- 전통주공용병개발지원	-	150백만원 (규격·디자인 개발 용역)	150백만원 (규격·디자인 개발 용역)	-	-	-
- 주종별 원료, 지역, 생산 연한 표시기준 수립	-	100백만원 (주종별 표시기준, 표준규격 개발 연구 용역)	100백만원 (주종별 표시기준, 표준규격 개발 연구 용역)	100백만원 (주종별 표시기준, 표준규격 개발 연구 용역)	-	-
- 우수한 한국술 전문주점 지정	-	150백만원 (심사 및 홍보 지원)	150백만원 (심사 및 홍보 지원)	-	-	-
- 국내외 양조전문가 초청세미나	-	100백만원 (초청세미나)	100백만원 (초청세미나)	-	-	-
- 발효주살균개선연구	-	300백만원 (연구용역)	300백만원 (연구용역)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찾아가는 양조장	672	596	596	500	△96	△16.1
- 양조장 지원	492백만원 민간보조 492백만원(1년차 6개소×50백만원, 2년차 8개소×24백만원)	372백만원 민간보조 276백만원(2년차 6개소×46백만원) + 지자체보조 96백만원(1년차 4개소×120백만원×국고 40%×1년차50%) *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자부담=40:40:20)	372백만원 민간보조 276백만원(2년차 6개소×46백만원) + 지자체보조 96백만원(1년차 4개소×120백만원×국고 40%×1년차50%) *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자부담=40:40:20)	192백만원 (1년차 4개소×120백만원×국고 40%×1년차50%) + (2년차 4개소×120백만원×국고 40%×2년차50%) *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자부담=40:40:20)	△180	△48.4
- 양조장 컨설팅 지원	180백만원 (컨설팅 용역기관 1식×180백만원×국고 100%)	224백만원 (컨설팅 용역기관 1식×224백만원×국고100%)	224백만원 (컨설팅 용역기관 1식×224백만원×국고100%)	308백만원 (컨설팅 용역기관 1식×308백만원×국고100%)	84	37.5
▪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	-	-	1,000 (1개소×2,000백만원×국고 50%) *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자부담=50:30:20)	1,000	순증
□ 비목(합계)	13,732	7,026	7,026	8,400	1,374	19.6
○민간경상보조(320-01)	7,032	5,980	5,980	4,058	△1,922	△32.1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00	546	546	742	196	35.9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400	500	500	3,600	3,100	620

* 국회 심의단계에서 도입된 (신규)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타당성용역비 목간 조정 필요: 자치단체자본보조 △1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100백만원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④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 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 7, 9, 13, 14, 15, 18, 23조
  ▪ 전통주 제조업체 경영개선 지원,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술 산업 통계조사, 홍보전시관(교육관) 운영 지원, 유통센터(전문판매점) 운영 지원, 술 품평회 개최, 건전한 술문화 조성, 술 품질인증제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김치산업 진흥법 제6, 8, 9, 11, 12, 15, 16, 17, 19, 20조
  ▪ 김치제조업체 경영개선, 통계조사, 연구·시험사업 추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자조금 지원, 김치의 문화계승 및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2008.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 농업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류제조 농가·업체에 기술개발, 컨설팅,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보고
- 2008년 및 200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 6대 전통·발효식품의 세계 명품화 계획 보고
  * 전통·발효식품 육성은 신성장 동력확보에 포함된 국정중점과제(“활기찬 경제”)
- 2009. 8.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VIP 보고)
  ▪ 우리술의 품질고급화, 다양성 확대, 세계화 등을 위한 지원책 포함
- 2009.2.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2011.7.21.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공포
- 2011.9.14.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 2012.1.22. 「김치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시행
- 2012.12.4.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 2012.12. 대통령 공약집 공약과제 세부과제 포함,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산업 정책 확대 -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3.4.5. 공포, ’13.10.6. 시행)
- 2013.7.8. 「식품명인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전통발효식품육성	83	78	125	84	137	7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15, 425백만원) ① **소스산업화센터 실시설계(400백만원)**: 소스산업화센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지연으로 소스산업화센터 설치 여부 미결정, ② **김치품평회(25백만원)**: 서울특별시에서 김치품평회 미추진
- ('16, 700백만원) 지출 전 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사업의 일부만 승인 (① **식품명인관** 사업 1,000백만원 중 700 승인, 300 불용, ②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설계용역 600백만원 중 200 승인, 400 불용)
- ('17, 31백만원)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4.5 (120.3)**	- (-)	- (-)	124.5 (120.3)	**120.3 (120.3)**	- (-)	4.2 (-)
'16년	**84.2 (77.2)**	- (-)	- (-)	84.2 (77.2)	**77.2 (77.2)**	- (-)	7 (-)
'17년	**137 (137)**	- (-)	- (-)	137 (137)	**137 (137)**	- (-)	0.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및 감사원 지적: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18년): 보통(80.75) * 식품산업육성(농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조치사항) '16년 계획(84억원) 대비 19% 감축한 '19년 정부안(68억원)을 마련하였으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16억원)되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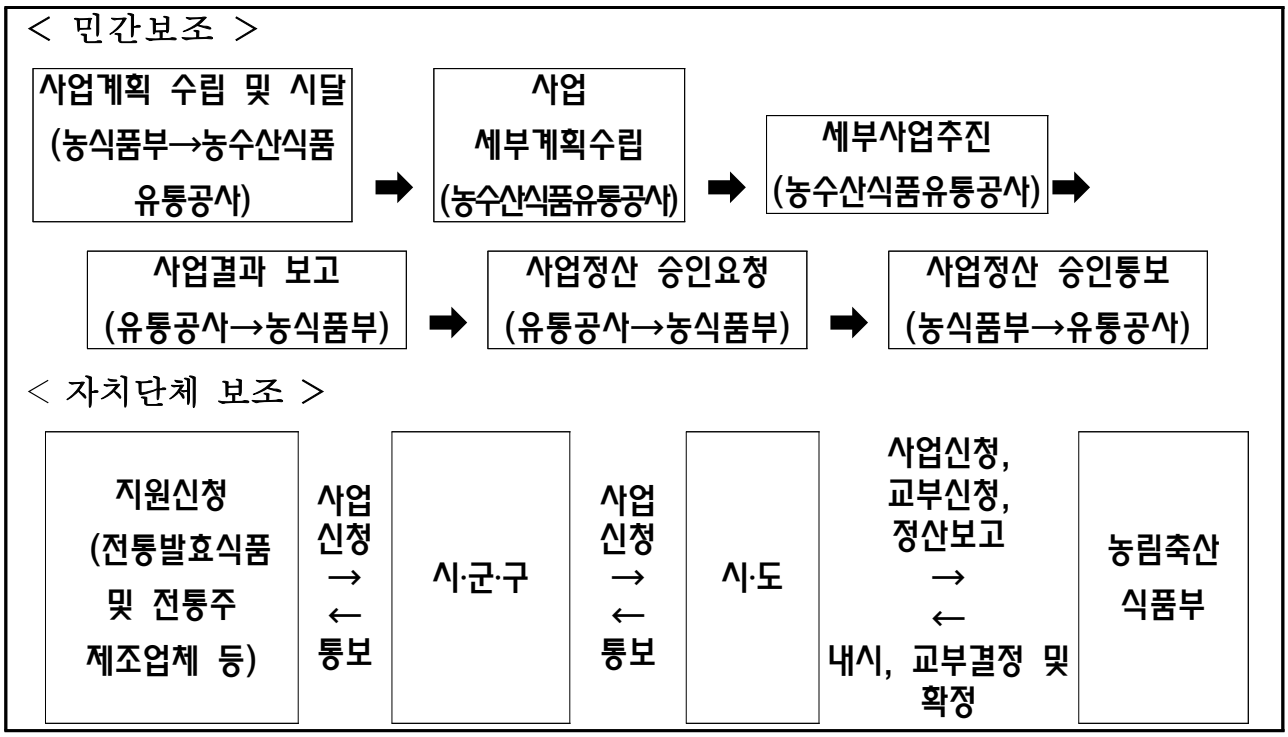
< 민간보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농식품부→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사업
세부계획수립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부사업추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결과 보고
(유통공사→농식품부)
사업정산 승인요청
(유통공사→농식품부)
사업정산 승인통보
(농식품부→유통공사)
< 자치단체 보조 >
지원신청
(전통발효식품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
사업
신청
→
←
통보
시·군·구
사업
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참고 1 김치산업 진흥법 주요내용['12.1.22. 시행]

1.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제4조)

○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등 (제6조, 제7조)

○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 및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3. 김치 제조기술 등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실시(제8조, 제9조)

○ 김치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및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 실시

4.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제11조, 제12조)

○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산업 활성화와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5.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및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3조, 제14조)

○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및 김치의 포장·규격출하와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등의 운영 지원

6.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품평회 개최, 전통김치의 기술 복원 및 계승,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사업자단체의 설립

○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국민적 관심제고 및 세계화 도모

7. 김치의 품질인증(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및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참고 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10.8.5. 시행]

1. 전통주 제조업체 경영개선 지원(제5조)

○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홍보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

2. 술 산업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제6조)

○ 생산자단체나 협회 등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3. 술 산업 통계조사 실시(제9조)

○ 술의 원료공급 현황, 제조·판매면허, 생산·유통·판매, 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수출입 현황, 술의 제조·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 실시

4.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운영(제11조, 제12조)

○ (교육훈련기관)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보급·전수, 술에 대한 소양교육 등을 통해 우리술의 저변확대를 도모

○ (전문인력양성기관) 전통주 등의 우리술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술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

5. 홍보전시관 및 전문판매점 등 지원(제13조, 제14조)

○ (홍보전시관)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 제조방법 보존 등을 위하여 술 박물관 등 홍보전시관을 설치·운영 지원

○ (전문판매점) 전통주의 포장개선·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등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지원

6. 술 품평회 개최(제15조)

○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명품주를 선발·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하여 선발 제품에 대해 충분한 프로모션 기회 확대

7. 술 품질인증(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 지원

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93,323	125,280	135,280	**130,000**	**△5,280**	**△3.9**

* 사업코드 : 20 - 55 - 00 - 100 - 104 - 2800 - 2851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식품산업진흥과장(이용직), 사무관(곽기형)☎(044-201-213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식품제조업체의 가공원료 매입지원, 시설현대화 등 지원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수급조절과 농식품의 품질개선 등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식품제조·가공·신선편이·전통발효 제조·가공·수출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등 지원
사업기간	'11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식품가공원료 매입: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국산농산물 매입실적 및 계약재배 실적 우수기업(상위 30%)에 1.0% 금리 우대 (상환기간) ①일반가공: 1년 만기 상환, ②전통주류: 2년 만기 상환 - 농식품시설현대화 ‣농업경영체 운영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업체에 1.0% 금리 우대 ‣시설현대화 자금 :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소규모 창업 운영 :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2년 만기 상환 - 외식업체 육성 ‣업력 5년 미만이면서 경영자연령 만 40세미만인 청년 외식업체에 1.0% 금리 우대

구 분	내 용
	▸운영 자금 :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2년 만기 상환 ▸시설현대화 자금 :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농공상 융복합형 중소기업 지원 ▸농업경영체 운영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업체에 1.0% 금리 우대 ▸시설현대화 자금 :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운영 자금 :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2년 만기 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식품·외식업체 및 농공상기업의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비 130,000백만원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18) 96,880백만원 → ('19) 89,000백만원(△7,880)

▪ 222개 업체 × 500백만원 × 80%(운영자금 1년, 고정금리 2.5~3%, 변동금리 중 택)

- (농식품시설현대화) : ('17) 10,000백만원 → ('18) 10,000(전년동)

▪ 13개 업체 × 970백만원 × 80%(3년거치 7년상환, 고정금리 2~3%, 변동금리 중 택)

- (외식업체육성) : ('18) 7,400백만원 → ('19) 10,000(2,600)

▪ 31개 업체 × 410백만원 × 80%(2년거치 3년상환, 고정금리 2.5~3%, 변동금리 중 택)

- (농공상융복합형 중소기업 육성) : ('18) 21,000백만원 → ('19) 21,000(전년동)

▪ 31개 업체 × 850백만원 × 80%(운영자금 2년 이내, 고정금리 2.5~3%, 변동금리 중 택)

□ 지원 필요성

○ 식품·위생 안전성 제고를 위한 HACCP 의무 적용 확대 방침 등으로 식품제조 및 외식업체의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대부분 식품제조 및 외식업체가 영세하여 국가의 지원을 통해 품질개선, 생산·수출 확대 등 식품업체의 산업화 및 현대화 기반 마련 필요

* 김치업체는 2014년까지 HACCP 의무도입 대상

○ 식품·외식산업 성장에 따라 자금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 식품기업이 영세한 점을 감안, 식품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원료매입자금 지원 필요

* 식품 제조업 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 수준('09, 통계청)

○ 가공용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낮은 농식품 제조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여 영세한 업체의 수출확대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 농업인이 참여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조업 및 서비스와의 연계필요

- 대부분의 농어업법인이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 개시 5년부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농어업법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유통업 등과의 연계·협력이 중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방안 (농촌경제연구원, '11.1월)

- 농업·농촌 부가가치 제고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고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93,323	125,280	135,280	130,00	△5,280	△3.9
▪ 농식품시설현대화	3,247	10,000 (13개×970백만×80%)	10,000 (13개×970백만×80%)	10,000 (13개×970백만×80%)	-	-
▪ 외식업체육성지원	2,894	7,400 (23개 ×410백만×80%)	7,400 (23개×410백만×80%)	10,000 (31개×410백만×80%)	2,600	35.1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73,864	86,880 (217개×500백만×80%)	96,880 (243개×500백만×80%)	89,000 (222개×500백만×80%)	△7,880	△8.1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13,318	21,000 (31개×850백만×80%)	21,000 (31개×850백만×80%)	21,000 (31×850×80%)	-	-
□ 비목(합계)	93,323	125,280	135,280	130,000	△5,280	△3.9
○기타민간융자금(450-04)	93,323	125,280	135,280	130,000	△5,280	△3.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비유통의 개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②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 지원),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경영개선 지원)
- 김치산업진흥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경영개선 지원)

○ 추진경위

- '96년부터 기존 단기 운영자금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 수출기반 확충
- 식품안전 인증시설 자금지원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 활성화 방안 추진('06.)
- 신선편이 업체 등에 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08.)
- 잉여 돼지고기 수요확대 및 수출방안 검토 지시('08.3, 대통령지시)
- 가공·유통시설의 안전기반 강화('08.11,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 2008.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 ▪ 주류제조 농가・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컨설팅, 자금지원 등
- 2008년 및 200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 ▪ 6대 전통・발효식품의 세계 명품화 계획 보고

- 식품전문가위원회 심의시 공동조리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 논의('08.1.)
- 대통령 지시('08.9.) : "농식품부에서 외식업 진작 대책 세울 것"
- 농어민단체 간담회시('08.1.21, 대통령) 및 대통령 취임사(2.25.)
- 지자체별 식품제조기업과의 농수산물 계약재배 현황 파악('08.8.)
- 식품제조기업 대상으로 융·복합사업 수요조사 실시('08.10.)
-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이 부처별 핵심녹색산업 과제로 선정, 위기관리대책회의 보고('11.4.14.)
- '유기농식품 명품화 대책'과 연계,「친환경농업 미래 Vision 2015」수립(8월)

  * 「유기가공식품의 생산기반 확충」은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고부가가치식품 산업"에 포함된 국정중점과제

- 외식산업진흥법 제정('11.3.9.)
  - 외식산업의 유통활성화 지원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외식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1년 품목별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설('11.1.)

  * '10년까지는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지원, 생산자참여형육성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

- 2013.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16년부터 '농공상융복합형 중소기업육성' 사업이 식품외식종합자금 세부사업으로 통합
- '19년부터 계약재배 및 국산농산물 구매우수업체, 창업업체 등에 금리우대(1% 인하) 적용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675	1,303	1,140	1,312	1,233	1,35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15)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3~4%)의 실효성 저하 및 국내 식품가공업체의 경기부진에 따라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 감소
- ('16) 기금 배정받은 업체의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 중도포기업체 발생 및 국내 식품업체 경기부진에 따른 시설자금 융자 수요 감소
- ('17) 국내 식품가공업체의 경기부진에 따라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중소식품기업의 담보력 부족 등으로 융자 수요 감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40	-	-	1,140-	642	-	498
	(642)	(-)	(-)	(642)	(642)	(-)	(-)
'16년	1,312	-	-	1,312	1,001	-	311
	(1,001)	(-)	(-)	(1,001)	(1,001)	(-)	(-)
'17년	1,233	-	-	1,233	933	-	300
	(933)	(-)	(-)	(933)	(93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사항)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어 정책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인하 필요('15년 예결위, 상임위 결산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당정협의 결과 농식품 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30억원 증액하였으나, 상당부분 집행되지 못함. 신중한 기금운영계획변경을 통해 불용 최소화 필요('17년 예결위, 상임위 결산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수요 파악 후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운영계획 반영

○ '17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18년): 보통(80.75) * 식품산업육성(농안)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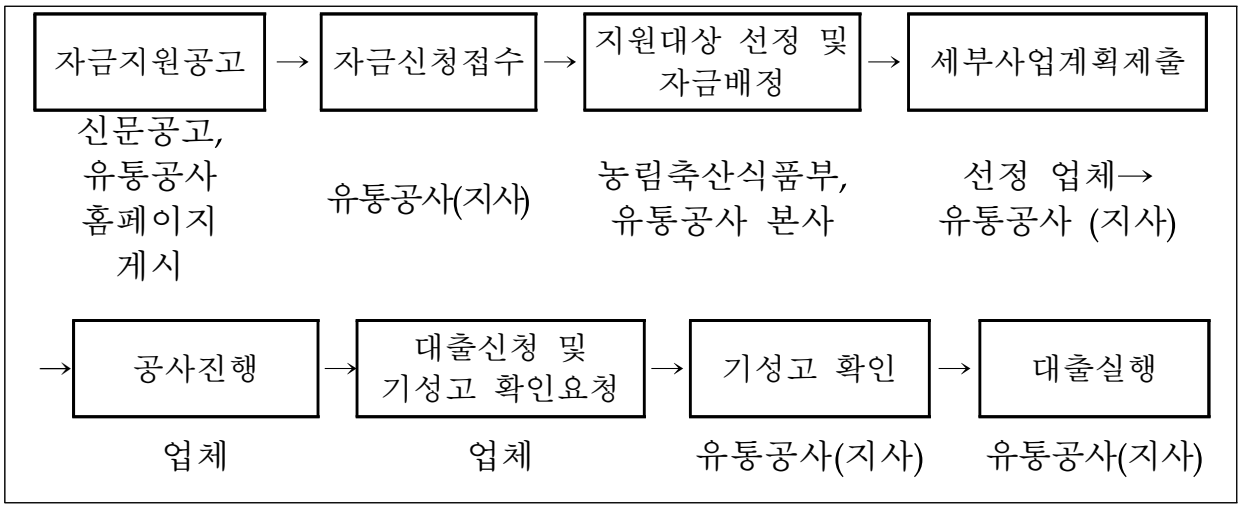
자금지원공고
→
자금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세부사업계획제출
신문공고, 유통공사 홈페이지 게시
유통공사(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공사 본사
선정 업체→ 유통공사 (지사)
→
공사진행
→
대출신청 및 기성고 확인요청
→
기성고 확인
→
대출실행
업체
업체
유통공사(지사)
유통공사(지사)

7. 비축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당초	수정(A)	(B)	(B-A)	%
○ 비축지원	599,333	564,287	564,287	618,880	54,593	9.7
- 비축사업	596,987	563,237	563,237	544,549	△18,688	△3.3
- 농산물 유통정보조사	2,146	(별도분리)	(별도분리)	-	-	-
- 유통협약·명령지원	200	1,050	1,050	(내역이관)	△1,050	순감
- 정부비축기지인수자금	-	-	-	74,331	74,331	순증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동환)☎(044-201-22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정부 비축창고의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개보수 등을 통해 농산물의 최적 보관 조건 유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비축사업(비축농산물의 최적 보관조건 유지 등을 위한 정부 비축기지의 시설·장비 개보수 지원 포함)
사업기간	○'7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9년 수매·수입 계획량 335천톤(수매 63, 수입 272)
지원조건	직접수행, 보조, 융자 ○직접수행: 비축사업(비축사업 위탁료 제외) ○민간보조(국비 100%): 비축사업 위탁료 ○융자(국비 100%): 정부비축기지 인수자금 지원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

□ 산출내역

○ **비축사업**: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요 비축대상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 비축하여 보관하는 등 정부비축사업비 544,549백만원

< 저장품매입비 : ('18) 532,583백만원 → ('19) 513,608 >

- 수매비축 : ('18) 145,666백만원 → ('19) 148,913

▪ 수매 품목 : 7개(콩, 고추, 마늘, 배추, 양파, 무, 밀(신규, 국회단계 도입))

* (기존 6개 품목) 최근 수급동향 및 추세가 반영된 최근 5개년 평균 정부수매실적 고려

- (마늘·양파·고추) 연간 생산량 5% 감소 시 가격폭등이 발생하는 양념류 특성을 감안 생산량의 5% 내외에서 수매비축물량 확보 운영
- (무·배추) 월별 상시 공급(배추 2,500톤, 무 1,000)이 가능하도록 비축물량 확보
- (두류) 수급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기본물량으로 '18년 수매 목표물량(55천톤)의 30~35% 수준 요구

** (국회단계 도입: 밀) 국산 밀 수급조절 및 고품질 밀 생산 유도 등을 통한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수매 도입(100억원 증액)

- 수입비축 : ('18) 379,917백만원 → ('19) 357,695

▪ 수입 품목 : 6개(콩, 팥, 참깨, 고추, 마늘, 양파)

* 수요·공급 및 '18년 TRQ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물량 적용

* 환율 : ('18) 1,130원/$ → ('19) 1,100

- 긴급가격안정 : ('18) 7,000백만원 → ('19) 7,000

< 비축사업설비비 : ('18) 5,823백만원 → ('19) 5,823 >

- 공사비 : ('18) 4,343백만원 → ('19) 4,320

* 비축기지 노후 냉장설비 개보수, 창고 지붕 및 방수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자산취득비 : ('18) 1,480백만원 → ('19) 1,503

< 시설장비유지비 : ('18) 1,866백만원 → ('19) 1,866 >

- 비축기지 시설유지비 등 : ('18) 1,866백만원 → ('19) 1,866

< 비축사업 위탁료 : ('18) 22,965백만원 → ('19) 23,252 >

- 사업위탁료 : ('18) 22,965백만원 → ('19) 23,252

* '19~'23년 개정 위탁요율 반영(세부내역 참고3)

○ **유통협약·명령 지원**: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정부비축기지 인수 자금지원(융자, 신규)** : ('19) 74,331백만원

-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 종료('18년, 광역기지 4개소 건립)에 따라 매각대상인 기존 정부비축기지(6개소)를 공익적 활용 등을 감안하여 공공매각하고, 매입기관(aT)에 정부비축기지 인수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구 분	'18계획	'19계획
□ 비축지원	**564,287백만원**	**618,880백만원**
▪ 비축사업	**563,237백만원**	**544,549백만원**
- 수매	수매비축: 145,666백만원 - 콩 : 18,823톤(3,559원/kg×1.08) - 고추: 2,948톤(9,431원/kg×1.12) - 마늘: 10,188톤(2,203원/kg×1.13) - 양파: 9,689톤(953원/kg×1.30) - 배추: 4,629톤(511원/kg×1.34) - 무 : 2,654톤(472원/kg×1.31)	수매비축: 148,913(증 3,676) - 콩 : 17,355톤(3,696원/kg×1.07) - 고추: 2,741톤(9,765원/kg×1.09) - 마늘: 4,566톤(2,885원/kg×1.15) - 양파: 8,800톤(968원/kg×1.34) - 배추: 10,781톤(577원/kg×1.30) - 무 : 8,505톤(607원/kg×1.25) - 밀 : 10,000톤(1,000원/kg×1.00)
- 수입	수입비축: 379,917백만원 - 콩 : 230,781톤(610$/톤×1.15) - 팥 : 24,000톤(1,368$/톤×1.34) - 참깨: 38,500톤(1,465$/톤×1.46) - 고추: 3,595톤(3,417$/톤×1.64) - 마늘: 7,232톤(1,640$/톤×1.58) - 양파: 10,323톤(506$/톤×1.74)	수입비축: 357,695(감 22,222) - 콩 : 196,861톤(672$/톤×1.15) - 팥 : 20,487톤(1,321$/톤×1.35) - 참깨: 36,192톤(1,638$/톤×1.46) - 고추: 2,821톤(3,258$/톤×1.61) - 마늘: 6,580톤(2,411$/톤×1.58) - 양파: 9,400톤(617$/톤×1.74)
	* 환율 : 1,130원/$	* 환율 : 1,100원/$
- 긴급가격안정	○ 긴급수매・수입 : 7,000백만원	○ 긴급수매・수입 : 7,000백만원
- 설비비	○ 비축기지 설비비: 5,823백만원 - 공 사 비: 4,343 - 자산취득비: 1,480	○ 비축기지 설비비: 5,823(-) - 공 사 비: 4,320(감 23) * 비축기지 노후 냉장설비 개보수, 창고 지붕 및 방수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자산취득비: 1,503(증 23)
- 시설장비유지비	○ 비축기지 시설유지: 1,866백만원	○ 비축기지 시설유지: 1,866 (-) * 노후·소모성 물품·자재 교체 등 증가

구 분	'18계획	'19계획
- 비축사업위탁료	○ 비축사업위탁료: 22,965백만원	○ 비축사업위탁료: 23,252백만원 (증 287)
▪ 유통협약명령	**1,050백만원** ○ 농산물 산지폐기, 품질규제	-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비축기지 인수자금 지원(융자)	-	**74,331백만원** ○ 노후 정부비축기지 공공매각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지원 필요성

○ 주요 농산물 정부수매비축을 통해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필요

- 성출하기 가격폭락 방지로 농가 수취가격 보장
- 국내 농산물가공업계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후생증진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적기 도입 및 시중가격 동향을 감안한 탄력적 방출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비축창고의 노후화에 따라 비축 농산물의 안전 관리 및 최적 보관조건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 필요

○ 비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 비축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원

○ 장기보관 비축농산물 증가에 따른 보관 여석 부족 심화 및 민간창고 임차 면적 증가로 기존 비축기지 공공매각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비축지원**	**599,333**	**564,287**	**564,287**	**618,880**	54,593	9.7
▪ 비축사업	596,987	563,237	563,237	544,549	△18,688	△3.3
- 수매·수입비축	565,599 수매 136,105 (6품목 48,931톤) 수입 429,494 (6품목 314,431톤)	525,583 수매 145,666 (6품목 48,931톤) 수입 379,917 (6품목 314,431톤)	525,583 수매 145,666 (6품목 48,931톤) 수입 379,917 (6품목 314,431톤)	506,608 수매 148,913 (7품목 62,748톤) 수입 357,695 (6품목 272,341톤)	△18,975	△3.6
- 긴급가격안정	2,000	7,000	7,000	7,000	-	-
- 시설장비유지비	1,866	1,866	1,866	1,866	-	-
- 비축사업설비비	5,388 (공사비 1,590) + (자산취득비 3,798)	5,823 (공사비 4,343) + (자산취득비 1,480)	5,823 (공사비 4,343) + (자산취득비 1,480)	5,823 (공사비 4,320) + (자산취득비 1,503)	-	-
- 비축사업위탁료	22,134 (19,396백만원×1.038('15.인건비증가율)×1.07('16.인건비증가율)×1.03('17.인건비증가율))×1.07('18.인건비증가율))	22,965 (19,396백만원×1.038('15.인건비증가율)×1.07('16.인건비증가율)×1.03('17.인건비증가율))×1.07('18.인건비증가율))	22,965 (19,396백만원×1.038('15.인건비증가율)×1.07('16.인건비증가율)×1.03('17.인건비증가율))×1.07('18.인건비증가율))	23,252 ('19년 개정 위탁요율적용)	287	1.2
▪ 농산물유통정보조사	2,146	(별도사업으로 분리)	(별도사업으로 분리)	-	-	-
▪ 유통협약·명령	200	1,050	1,050	(내역 이관)	△1,050	순감
▪ 정부비축기지 인수자금 지원	-	-	-	74,331	74,331	순증
□ **비목**(합계)	**599,333**	**564,287**	**564,287**	**618,880**	54,593	9.7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866	1,866	1,866	1,866	-	-
○ 민간경상보조 (320-01)	24,480	24,015	24,015	23,252	△763	△3.2
○ 공사비 (420-03)	1,590	4,343	4,343	4,320	△23	△0.5
○ 자산취득비 (430-01)	3,798	1,480	1,480	1,503	23	1.6
○ 저장품매입비 (430-02)	567,599	532,583	532,583	513,608	△18,975	△3.6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74,331	74,331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수출·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포장·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46호) 제3조(대상품목)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1>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

1. 대상품목: ○ 수매비축: 9개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 수입비축: 8개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2. 품목 선정기준: ○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

* 비축 대상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품목 및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경위

- ‘76.12.21. 농안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78.08.23.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설치하여 비축사업 본격 추진
- ‘95.01.01. WTO 출범과 함께 고추, 마늘, 양파 등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추천계획에 따라 국영무역방식으로 운영
- ‘05.01.01. 수산분야 사업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
- ‘13.01.01. 배추 품목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반영
- ‘14.09.29. 무 품목을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반영
- ‘16.05.12. ’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계획: 「2015 콩 자급률 제고 및 소비 활성화 전략(’15.4.30.)」에 따라 팥·녹두의 생산지지 강화를 위해 시범수매 추진
- ’16~’17년 (’16) 농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부사업이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내역사업으로 비축지원사업에 편입 → (’18)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세부사업으로 분리
- ’17~’18년 (’17) 유통협약·명령지원 내역사업 편입(’16년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반영) → (’19)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재 이관

* 유통협약·명령 지원 사업은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유통협약) 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인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운영함이 적절

** ’17·’18년 통합운영의 효과는 없었으며 정부 직접사업과 민간지원사업 간의 통합으로 사업 관리(집행·결산 및 성과분석)상 비효율 발생 우려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합 계	6,628	6,744	6,370	6,159	6,046	5,643
○ 비축지원	6,615	6,711	6,337	6,144	6,046	5,643
○ 농산물 유통정보조사	11	17	17	(비축지원 사업으로 통합)		(별도분리)
○ 유통협약·명령	2	16	16	15	(비축지원 사업으로 통합)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15) 저장품매입비 잔액 활용 밭농업주산지 실태조사 실시 ±1,100백만원(자체변경)
- ('16) 국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국산 콩 매입 사업비 55,000백만원 증액(기재부 승인변경)

○ 이월: 해당 없음

○ 불용

- ('15) 수입콩 도입원가 하락 및 국내 고추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물량 축소, 참깨·콩 등 국제곡물가 하락으로 인한 도입원가 감소 등
- ('16)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 필요성 저조 및 시설비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
- ('17) 유통협약·명령 지원 및 긴급가격안정 자금* 지출 잔액 및 비축기지 설비비 낙찰차액 발생

* 농산물 수급상황 안정 → 과잉생산시 생산자등의 유통협약·명령 또는 정부의 시장격리 필요성 감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337**	-	-	6,337	**6,175**	-	162
	(6,175)	(-)	(-)	(6,175)	**(5,562)**	(-)	(613)
'16년	**6,144**	-	-	6,144	**6,075**	-	69
	(6,075)	(-)	(-)	(6,075)	**(4,754)**	(-)	(1,322)
'17년	**6,046**	-	-	6,046	**5,993**	-	53
	(5,993)	(-)	(-)	(5,993)	**(4,337)**	(-)	(1,65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비축지원 사업의 국내 농산물 수매 확대 필요('15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상임위)

⇒ (조치사항) 고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는 가격 하락 시 수입비축을 최소화하고 국내 수매비축을 확대 조치하는 등 탄력적 운영. 특히, 두류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수매계획 물량 지속 확대

* 국산 수매실적: ('14) 36,515톤 → ('15) 44,205(21%증) → ('16) 계획 55,464(25%증), 실적 34,735(전년대비 △21.4%, 계획대비 △37.4%)

** '16 수매 저조 사유: 콩, 마늘 등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부족 및 고추 적정 생산 등으로 정부수매 필요성 낮음

- (지적내용) 정부 비축물량 방출할 경우 국산 농산물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출시기와 물량을 조절('17년 예산안 심사, 상임위)

⇒ (조치사항) 수요충족 및 가격안정을 위해 연중 도입이 불가피한 참깨, 콩, 팥 등 절대부족 품목도 사전 수요량 예측을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하여 적정 수준의 TRQ물량이 도입되도록 노력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양념채소류 수매비축사업 운영 시 재배초기 선제적 수매 등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16년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감사

⇒ (조치사항) 양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 T/F 구성·운영(aT, '16.11.~) 및 선제적 수매비축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4월) 및 '17년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5~6월)

○ '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18년): 미흡(65.0점)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단위사업

- (평가결과) 성과목표 달성부진, 성과지표 관리의 적시성 제고 필요
- (개선대책)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및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수매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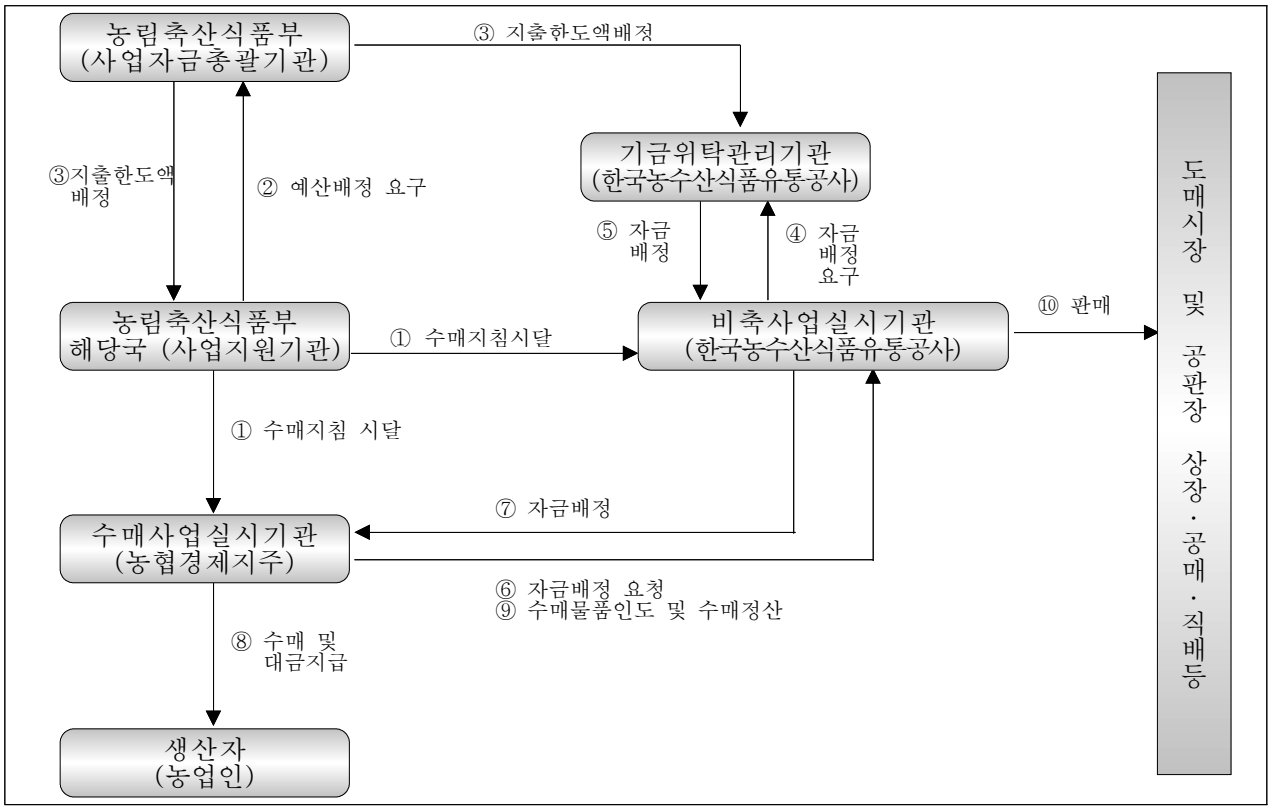

○ 수입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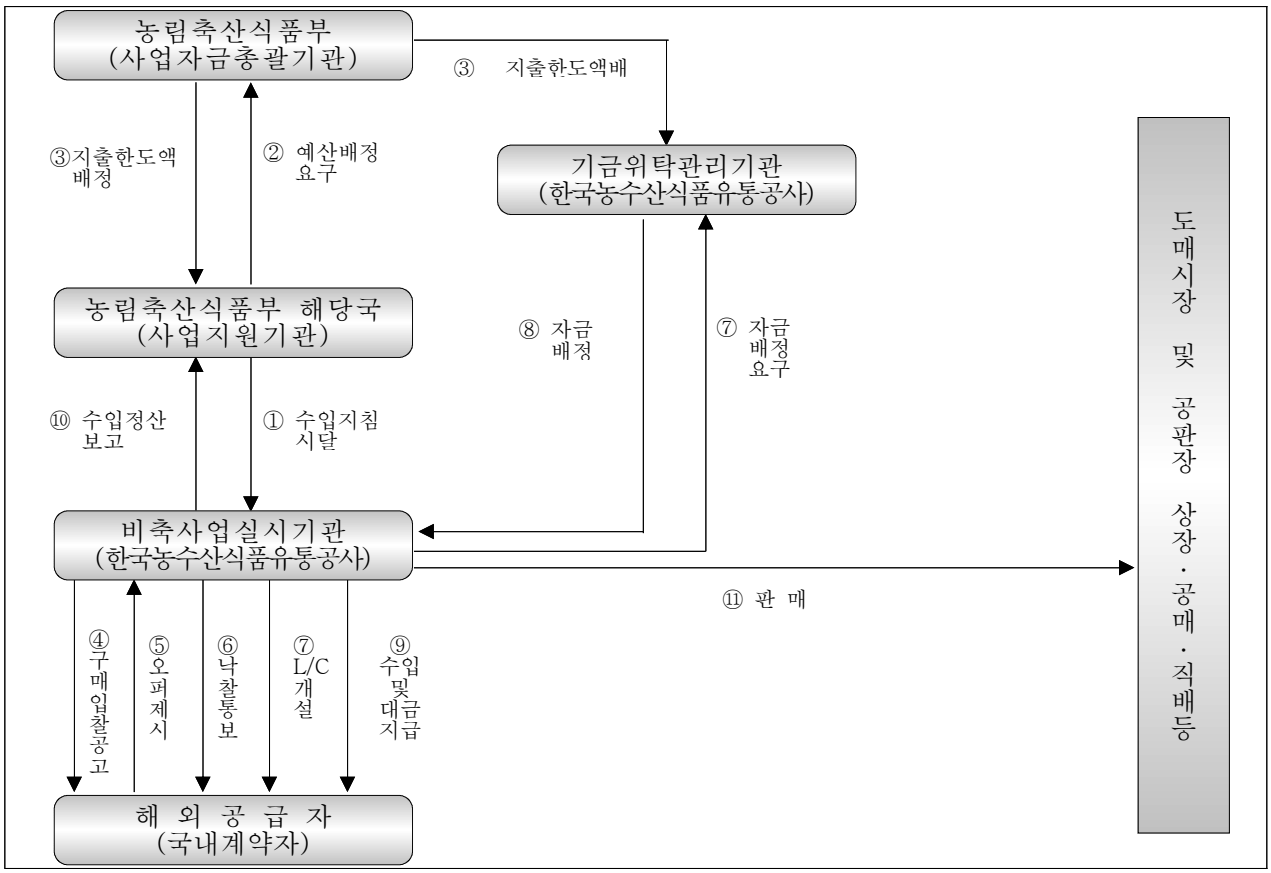

참고 1 비축지원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백만원)

내 역	2018 예산		2019 예산(안)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합 계	564,287		618,880	
□ 비축사업	563,237	(수매·수입 총 363,362톤)	544,549	(수매·수입 총 335,089톤)
○ 수매	145,666	(국산 수매 6품목 48,931톤)	148,913	(국산 수매 7품목 62,748톤)
두류	72,350	18,823톤×3,559원/kg×1.08	68,634	17,355톤×3,696원/kg×1.07
고추	31,139	2,948톤×9,431원/kg×1.12	29,175	2,741톤×9,765원/kg×1.09
마늘	25,362	10,188톤×2,203원/kg×1.13	15,149	4,566톤×2,885원/kg×1.15
양파	12,004	9,689톤×953원/kg×1.30	11,415	8,800톤×968원/kg×1.34
배추	3,170	4,629톤×511원/kg×1.34	8,087	10,781톤×577원/kg×1.30
무	1,641	2,654톤×472원/kg×1.31	6,453	8,505톤×607원/kg×1.25
밀	-	-	10,000	10,000톤×1,000원/kg×1.00
○ 수입	379,917	(수입 6품목 314,431톤)	357,695	(수입 6품목 272,341톤)
콩	182,939	230,781톤×610$/톤×1,130원/$×1.15	167,348	196,861톤×672$/톤×1,100원/$×1.15
팥	49,714	24,000톤×1,368$/톤×1,130원/$×1.34	40,189	20,487톤×1,321$/톤×1,100원/$×1.35
참깨	93,053	38,500톤×1,465$/톤×1,130원/$×1.46	95,208	36,192톤×1,638$/톤×1,100원/$×1.46
고추	22,765	3,595톤×3,417$/톤×1,130원/$×1.64	16,277	2,821톤×3,258$/톤×1,100원/$×1.61
마늘	21,176	7,232톤×1,640$/톤×1,130원/$×1.58	27,572	6,580톤×2,411$/톤×1,100원/$×1.58
양파	10,270	10,323톤×506$/톤×1,130원/$×1.74	11,101	9,400톤×617$/톤×1,100원/$×1.74
○ 긴급가격안정	7,000	긴급 수매·수입 등	7,000	긴급 수매·수입 등
○ 설비비	5,823		5,823	
공사비	4,343	비축기지 창고 개보수	4,320	비축기지 창고 개보수
자산취득비	1,480	비축기지 필요 자산 취득	1,503	비축기지 필요 자산 취득
○ 시설장비유지	1,866	비축기지 시설·장비 유지비	1,866	비축기지 시설·장비 유지비
○ 비축사업 위탁료	22,965	인건비·경비 증가율 반영	23,252	인건비·경비 증가율 반영
□ 유통협약·명령	1,050	농산물 산지폐기·품질규제	-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정부비축기지 인수자금 지원(융자)	-	-	74,331	기존비축기지 6개소 aT 인수

* 부대경비 비율: 품목별 물품대 대비 관련 부대비용(수매검사비, 운송보관비, 판매수수료, 판매수송비 등)으로 5개년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율

참고 2 비축사업 설비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요구내역

1. 예산총괄

(단위: 천원)

구 분	비축사업설비비		시설장비 유지비	합 계
	공 사 비	자산취득비		
연간예산	4,320,000	1,503,000	1,866,000	**7,689,000**

2. 지역본부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지사명	기지명	공 사 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합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서울 경기	김 포	-	-	13	22,460	29	232,000	42	254,460
	이 천	1	3,250,000	9	398,250	25	425,800	34	3,698,100
	평 택	1	200,000	8	401,150	23	317,500	31	542,700
인천	인 천	4	550,000	3	4,000	16	243,500	23	797,500
충북	청 원	1	240,000	4	15,500	11	89,000	16	344,500
광주 전남	장 성	2	80,000	7	19,800	10	149,000	19	248,800
대구 경북	안 심	-	-	11	15,900	8	66,000	19	81,900
부산 울산	부 경	-	-	1	375,940	4	40,000	4	40,000
본사	본 사	-	-	3	250,000	3	303,200	11	1,681,040
합 계		9	4,320,000	59	1,503,000	129	1,866,000	199	7,689,000

가. 공사비

(단위 : 천원)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이 천	B동 냉장 설비 및 건축 개보수 공사	U/C,압축기,에바콘,닥트,수액기, 배관,환기창,밸브,케노피 고내 등	노후화로보수 및 교체공사 (1991년,2000년,2003년)	3,250,000
평 택	지붕누수보수공사	A · C동전후면, B동 후면 : (17년도 B동 일부구간 공사)	누수로 인한 비축물자 피해, 시설 소손 우려	200,000
경 기	**소 계 2**			**3,450,000**
인 천	지붕보수(4호실)	지붕면적 4,300㎡	노후로 인하여 페인트 탈루 및 부식으로 누수	250,000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방열창고 5~7호실)	TPO필터공법 (2,130*70,400)	우천시 옥상 및 벽면누수로 고내 빗물유입	150,000
	전기시설 ACB반 판넬 교체	저압MCCB반,ACB반 (400KVA) 판넬 ACB반(150KVA)판넬	장기사용으로 게이지 등 오작동	50,000
	캐노피설치 (4~7호실)	93.6m×70.3×5m	기존 캐노피 우기시 입출고 지난(입고품 손상우려)	100,000
	소 계 4	-	-	**550,000**
청 원	A동 후면 대지 경계 보강토 옹벽 설치	A동후면 보강토 320㎡ D동 후면 축조블록 88㎡ C,D동 측면 옹벽,배수로 50㎡ B동 후면 호안블록 264㎡	경사로 옹벽 미비로 인한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 방지	**240,000**
장 성	중천정 갤러리창 신설	비축기지 전호실	하절기 중층 판넬 결로발생	50,000
	창고내부 차압 스위치 신설(air vent)	비축기지 전호실	냉동기 기동시 창고내부 음압 발생	30,000
	소 계 2			**80,000**
합 계 9				**4,320,000**

나. 자산취득비

(단위 : 천원)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김 포	표준온습도계	아스만식(SATO7450)×1대	온도계, 품온계보정	900
	산업용정밀온습도계	TESTO-645(디지탈)센서1대set포함 (독일산)	품질관리및시설관리용	3,200
	수중펌프	스텐(IP-835N)단상220V한일펌프1대	시설보수용(브라인 이송용)	300
	잔수처리기	CS-150P(한국,씨에스텍사)1대	브라인 누설시잔수 처리기	840
	고압분무기	K-2160TST(독일kranzle사)1대	브라인누설시 고내바닥 청소용	1,760
	세탁기	통돌이TR14WK(14kg)-LG3대	사택 구입설치용	1,290
	전기밥솥	쿠첸4인용IH압력밥솥4대	사택 구입설치용	1,000
	청소기	슈퍼싸이킹Ⅲ,주니어K73RGY5대	사택,전기실,통제실구입설치용	1,520
	제설차	컵카텟LTB-45승차식제설기(미국)1대	겨울철 제설용 작업차	4,000
	열화상카메라	FLIR(플리어)1대E8(-20℃~260℃)	전기설비 접촉부 열화(과열)상태 측정	4,400
	다중온습도계	SKL200THa(SATO)6대	고내 품질관리용(대별, 위치별, 측정)	2,600
	지테크 전자저울	GL-6000S(20g단위)2대	품질검사용(휴대용.아답터포함)	400
	인버터DC아크용접기 (코리아나)	M230입력(6.8KW)출력(190A)전압220V,	(홀더,어스선포함)1대시설보수용	250
	소 계 13			**22,460**
이 천	아스만 통풍 건습계	온도,습도보정용(1,000×1ea)SK-RHG7450	2004년교체 내용연수초과	1,000
	업무용의자,회의가구	중앙통제실의자(300×7ea),소파1식2,900	2012년 구매 노후로 교체	4,500
	컴퓨터	1,500×5대	중앙통제실(2012년노후)	7,000
	진공청소기	고내사용(800×1대)	호실내 청소및위생관리	1,500
	지게차용 제설기	3,000×1대(SP150-1)	겨울철 제설 작업용	4,000
	벽걸이 냉난방기	경비실 냉온풍기(800×1대)	겨울철온풍기부재	800
	냉방기	품질관리실 냉방기(2,000×1대)	2005년 구매 내용연수초과	2,000
	사무실 냉장고	냉장고(1,500×1대)	2005년구매 내용연수초과	1,500
	용융아연도금파렛트제작	300×2,000개		375,950
	소 계 9			**398,250**
평 택	싱크대		노후로 인한 뒤틀림	8,500
	간이식탁		"	1,900
	전기밥솥		사택관리 비품	1,300
	진공청소기		"	700
	텔레비전		"	2,900
	지게차용 제설기		"	8,000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제거	1,900
	용융아연도금파렛트제작	300×2,000개		375,950
	소 계 8			**401,150**
서울경기	**소 계 30**			**821,86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인천	PC	기계실 자동제어용	장기사용 자동제어 에러 발생	1,500
	PC	업무용	장기사용 노후화	1,500
	에어콘	계근장	장기사용 노후화 계근장 개보수	1,000
	소 계 3	-	-	**4,000**
청원	제습기	나우이엘,MA-220DP	창고 내 제습기능 부족 습도 유지 불가	9,000
	CCTV 저장장치 추가	하드디스크 3TB * 2ea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녹화시간 부족	2,500
	엔진브로워	엔진 송풍기 EB-803RT	통합비축기지 신축	3,000
	안전화	k2-55 * 5	통합비축기지 신축	1,000
	소계 4			**15,500**
장 성	105℃ 건조기	FD-720	품질관리용	3,800
	지게차용 제설기	3,000×1대(SP150-1)	겨울철 제설 작업용	9,000
	텔레비전	32″ × 1	중앙감시실	2,000
	낟알 계수기	낟알 계수기(계수접시 1개), 시료 원형접시(10개)	품질관리용	1,000
	곡물수분측정기	GMK-303D(국산)	품질관리용	1,000
	에어콤프레셔(이동식)	게양KAC-25	농산물 더미 사이 및 파렛트 청소	1,000
	무선청소기	보쉬 GAS 18V-LI (충 전기, 배터리포함 2EA)	농산물더미사이 낙곡청소	2,000
	소 계 7			**19,800**
안심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각 1대	회의실 교육용(신규)	4,000
	노트북	1대	회의실 교육용(신규)	2,000
	브라인 농도계	1대	냉매 관리용(신규)	700
	전동 드릴	1대	시설 관리용(신규)	500
	사동기	유니비엔씨(UBC-S-S)	품질 관리용(신규)	5,000
	체(참깨용)	1.0mm, 1.18mm	품질 관리용(제품 노후)	550
	체(콩나물콩용)	7.3mm,6.3 등	품질 관리용(제품 노후)	1,400
	디지털 온습도계	30천원×15대	품질 관리용(신규)	450
	전자레인지	1대	사택 비품(신규)	100
	세탁기	사택 공용-1대	사택 비품(신규)	600
	디지털 카메라	1대	현 제품 노후	600
	소계 11			**15,900**
부경	**용융아연도금파렛트제작**	**300×2,000개**		**375,940**
본사	ISP 및 aT Bid 시스템 개선	S/W 개발 및 시설구입	입출고, 재고관련 ISP 및 민간창고 입찰 등 관련 aT Bid 시스템 개선	218,000
	공인인증솔루션 업그레이드	ActiveX제거및멀티브라우저지원필요	〃	12,000
	대민원격지원 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RemoteCall V6윈도우7이후지원되지않음	〃	20,000
	소계 3			**250,000**
합계	**59**			**1,503,000**

다. 시설장비유지비

(단위 : 천원)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김포	에바콘세관 및 안전변 검사	에바콘 : 150R/T 법정(년1회):안전변 9개	안전변 : 법정검사(1년/2년)	10,000
	소방시설 정기점검	(연2회×3,000)	법적검사(정밀1회, 작동기능1)	5,000
	계근장검사 및 보수	(5,000×1식)	법정검사	5,000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설비 정밀점검	법정(년1회)	5,000
	소화전 및 배관 동파방지 설치	옥내소화전26개소×6m	겨울철 주 배관이 결빙(동파)	20,000
	변전실, 발전기실 환기창 보완	1.4m×0.9m,1.4m×1.9m	강우시 빗물 유입	3,000
	냉동기기동반 결로수 유입 방지장치 설치	3M×3M×3개 냉동기	냉동기 기동반으로 결로수 침투/소손	4,000
	중앙통제실 CCTV 모니터설치	55인치 모니터 포함 (통신 케이블)	중앙통제실 CCTV 모니터 설치 (비상계획실 권고사항)	3,000
	HMI프로그램 보완 및 Upgrade	A,B,C동 HMI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오동작, 오류 등으로 Upgrade	7,000
	C동 수직반송기 진입계단 설치	4.5m×3m×2개소	수직반송기 수리 보수시 출입	3,000
	C동비상계단,소방펌프실방충망, 출입문설치	2.4m×0.9m×2개소	C동 방충망 없음, 소방펌프실 출입문없음 (위생안전시 지적사항)	2,000
	사무실 CCTV 보호 칸막이 설치	1식	사무실 CCTV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 칸막이 설치 (정보보안 점검 지적사항)	3,000
	압축기 2호,3호기 인버터 설치	184KW×2대	기동 및 운전시 잦은 트립 또는 정지(1호기는 기 설치되어 있음)	20,000
	UC브라인 배관보완 By-pass설치	14호실×2개UC×3개배관= 84개 배관	UC밸브1개 고장시 전체 가동 중지됨	20,000
	재순환펌프 주변배관 밸브등 설치	14호실×2개UC=28개	압력계, 체크밸브 등 부착	20,000
	기계실 배수로 트랜치 설치	27m×12m×0.15 17m×0.15	카버 없음으로 오염원 배출, 장치부식등(위생검열 지적사항)	7,000
	환기창 고정 락장치 설치	14호실×4지창 =56개	환기창 OPEN시 바람으로 닫힘 기기과부하 발생	4,000
	브라인펌프 주변 결로 집수시설 설치	10M×1.5M	기계실 내부로 배출(녹물,오염수 등)	1,000
	U/C 물 전자변 배관히터 설치	2U/C×1개소×14호실	히터 미설치로 동파우려	5,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김포	각 펌프 트랜스 미터 설치 프로그램 보완	제상펌프 : 3대 브라인펌프 : 6대	설비 동작상태 감시미흡	10,000
	사택동 적산전력계 설치	4개호실 설치	적산전력계 미설치 (감사실 지적사항)	5,000
	제상수탱크 및 저수조 청소	시 수 : 60톤 제상수 : 48톤	제상수탱크 및 시수저수조 오염원(이물질, 침전물등)제거	5,000
	브라인탱크 구분 차단판 높이조절	6M×3.5M	차단벽이 높아 운전에 지장초래	5,000
	기계실 펌프류 보수용 I빔 및 체인브럭 설치	I빔 : 10M×1.5M 체인블럭 : 10M	펌프, 모터등 고장시 분해 이송 도구	6,000
	U/C수조 오버플로우 설치	14호실×2U/C×1개소	U/C수조 넘침으로 보관품 피해	30,000
	사택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 설치	4개호실 ×20만원	가스누출 사전방지장치	800
	중앙 통제실복도 출입문 설치	4M×5M×1개소	외부인 접근금지, 안전사고우려	3,000
	중앙통제실 2중창 설치	10M×1.5M	근무환경저하(소음, 열효율, 외기유입)	4,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 자재 구입 및 긴급수선		16,200
	소 계 29			**232,000**
이천	소방 검사	연 2회× 3,500	법적 검사(정밀1회, 작동기능1회)	5,000
	전기설비 정기검사	7,000× 1식	연간 정기검사 및 점검	5,000
	안전변 검사 및 기타밸브 보수공사	A,B,D동안전변검사 및 밸브교체(10,000× 1식,15ea)	고압가스 안전법에 의한 의무사항	10,000
	계근장 검사 보수공사	(5,000× 1식)	검사 및 보수(도색)	8,000
	정화조청소	D동,관리동,경비실,사택	환경수질관리 법적(매년)	7,000
	자동제어 보수공사	자동제어 유지보수 및 DDC카드 교체(10,000×1식)	장기 사용으로 잦은 오류 발생	10,000
	에바콘 세관, 보수 및저수조, 제상수조 청소 공사	A,B,D동 에바콘세관 및 보수공사(15,000× 1식) ·B·D동저수조,관리동,사택저수조청소 (5,000× 1식)	스케일제거 및 노즐청소 후드교체 및 배관보수 침전물 누적 및 펌프 펌핑 불량 및 수질 개선	20,000
	DDC카드 교체공사	D동 DDC카드 교체 (2,200× 9개)	노후화(2006년)로 인한 잦은 오류발생 교체	19,800
	에바콘코일 중화제 구입	CHEM AQUA15000-240L, MB215-360L,CBD92L-150L (18× 750L)	에바콘 코일 스케일 및 녹 발생 방지	13,500
	전동문 보수공사	A·B·D동모터,콘트롤박스, 트라벨박스교체(10,000× 1식)	노후화로 밀폐저하 및 소음·누유로 교체	10,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이천	철재 파렛트 도색공사	2,000개 도색(65× 2,000개)	노후로 탈색 및 녹 발생	70,000
	구동기기 보수공사	각종 모터베어링 등 보수	장기 사용 노후 및 소음	10,000
	기초 수선유지비	자재상하반기(10,000× 2회) 오일,냉매구입(15,000× 1식) 기타수선유지보수(15,000× 1식)	소모성 자재구입 오일, 냉매구입 기타시설 비상수선유지비	30,000
	보이러 및 전기온수기 교체공사	사택 보이러(750×12set) D동보이러,온수기(6,000×1식)	장기(2008년)사용으로 노후 교체(잦은 고장)	15,000
	가로수 전지 공사	펜스·축대 가로수 전지작업 (10,000× 1식)	펜스·축대 잡목으로 관리지난 및 안전관리	10,000
	D동 차단기 및 C동 분전반 교체공사	D동 차단기(8,000×1식) C동 분전반(3,000×4식)	장기사용(1994년)으로 작동 및 안전관리	20,000
	관리동 온수배관 교체	관리동 공동구 비트내 급수 및 온수배관 교체공사	2층 온수배관 노후화로 상시 녹물 배출	6,500
	D동 피뢰침선로공사 및 노후 패널 철거공사	피뢰침선로보수(3,000×1식) 패널철거(3,000×1식)	피뢰침 선로보수 및 노후 패널 안전관리	6,000
	CCTV 카메라,DVR,모니터 및 선로 교체 공사	CCTV카메라(12ea),DVR,모니터 선로 교체(18,000×1식)	장기(2013년)사용으로 노후 및 통합관리 지난	18,000
	기지내 맨홀 및 배수 관로 청소 및 보수공사	배수맨홀, 배수관로청소 및 C동배수로보수(10,000×1식)	토사 등에 배수로 맨홀 막혀 폭우대비 정비보수	10,000
	D동2층 익스펜션조인트 보수공사	익스펜션조인트 교체 및 방수 (12,000×1식)	장기(1994년) 사용으로 노후 및 누수	12,000
	D동제상전자밸브 교체공사	750×24ea	노후화(2005년)로 제상시 밀림현상 발생 교체	20,000
	D동 닥트 교체공사	D동11호,12호 닥트 교체 (12,500×4식)	노후화(1994년) 및 곰팡이 발생으로 교체	50,000
	사택 리모델링 공사 (나동102호)	실내 전체,화장실,보이러, 배관,방풍문(20,000×1식)	장기(1992년)사용으로 노후 보수	20,000
	사택 보이러실 샷시 교체 및 방풍문,도색공사	샷시교체(700×8식)방풍문(600×14set),도색(6,000×1식)	노후화(1991년)로 교체(겨울철 동파 예방)	20,000
	소 계 25			**425,8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평택	소방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검사	공공기관에 관한 소방관리법 (3,500×2회)	법정 정기 검사 (정밀검사1회, 작동기능검사1회)	5,000
	전기설비 정밀검사	전기정밀점검 (7,000×1회)	정기검사 및 점검 연 1회(법규개정)	5,000
	계근장 검사 및 보수 공사	계근장 검사 및 보수 (5,000×1식)	정기 검사 및 노후부품 점검, 교체.	5,000
	안전변 검사 (압축기)	안전변 검사 (1,500×1식)	법정 정기 검사(년/1회)	1,500
	압축기 오바홀	B동압축기 오바홀 (25,000 × 1)	장기 가동인한 효율 저하	25,000
	에바콘 세관 및 부대 공사	에바콘 세관 및 부대 공사(15,000 × 1식)	스케일로 인한 냉각효율 저하, 에너지 손실	15,000
	자동제어 보수 공사	1,2,3동 제어 설비보수 (10,000×1식)	장기사용 잦은 오류발생	10,000
	옥내소화전 기동회로, 발신기 보수공사	회로기판교체 및 발신기함 보수 (7,000×1식)	펌프기동용S/W, 부속품 및 선로 노후	7,000
	가로등(입간판) LED교체공사	가로등, 입간판 등기구 LED교체(10,000×1식)	램프 및 안정기 노후 및 에너지 절약	10,000
	MCC반 보수공사	MCC반 자동제어반 증설 (15,000×1식)	MCC반 자동제어반 증설	15,000
	광고탑사다리, B동 피난 기구 설치 공사	사다리, 피난기구 제작 및 설치 (20,000 × 1식)	우천 시 배수구 점검 및 B동 상주 인원 비상탈출	20,000
	분전함, 통신함, 전동문 제어반 이전설치공사	분전함 제작이전 설치 (5,000× 6개소)	누수로 인한 누전 및 화재발생 우려	30,000
	구동 기기 보수 공사	각종 모터 베아링 및 코일 (10,000×1식)	각종 모터, 펌프의 긴급 보수 및 유지 관리	10,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 자재 구입 (20,000 × 1식)	소모성 자재 구입 및 긴급수선	20,000
	에바콘 약품 구입	에바콘 약품 (16×500L)	에바콘 유지관리	9,000
	전동문 보수공사	A, B, C동 21개 호실 (25,000×1식)	PLC 및 인버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생산업체 도산으로 인한 보수불가	20,000
	통신모듈 구입	통신모듈 구입(30,000×1식)	생산중단 부품 확보	30,000
	A, B, C동 기계실 에폭시 바닥 도색	기계실 도색작업 (1,000×1식)	기계실 바닥 에폭시도색	1,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평택	A, B, C동 기계실 온도 유지 장치 설치 공사	온도유지장치설치CPV-A234SB(3,000×3개)	각종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9,000
	사택동 방 창문 보수공사	조적작업 및 창 설치 (5,000×5식)	사택동 단열 개선	20,000
	사택동 보일러 교체, 배관 청소 및 기타공사	보일러교체(1,000×5대) 배관청소(300×5식) 등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에너지 효율 개선	8,000
	사택동 수도 보수 공사	수도관로보수공사(27,000×1식)	사택동 수도 보수	27,000
	캐노피아치 끝 물받이 설치 및 우수 관 연장 설치공사	A, B, C동 아치8개소 (15,000×1식)	고드름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우수 관 보강	15,000
	소 계 23			**317,500**
서울경기 계 77				**975,300**
인 천	소방시설 점검	정기점검 년2회	년2회 법정 정기점검	8,000
	계량장 점검	계량장 정기점검	정기검사 및 보수	7,000
	냉매 및 냉동유구입	냉매 500kg,냉동유 100kg	자연 감모량 및 교체	10,000
	기초 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구입	자체 보수자재 구입	20,000
	경비실 재설치	탕비실, 화장실 외부설치(정화조설치)	차량 진출입시 시계·조망 불가로 차량유도 및 방호 지난 서측면 → 동측면으로 이동설치	20,000
	비둘기 퇴치기 설치(4호실)	906.05평	비둘기 서식으로 보관품 오염 위생점검 시 상시 지적사항	30,000
	마당포장공사	노면절삭 및 포장(전체 마당의 1/3)3,000㎡	마당포장 침하현상 발생 매년 부분적인 보수	30,000
	고내 바닥보수(4호실)	에폭시처리 전체바닥의 1/3	바닥침하 및 대형차량 집입으로 파손으로 매년 1/3 보수	20,000
	건물 외벽도색	관리동/저온/방열 30,000*1식	창고 외벽 탈색 및 탈루로 미관저해	40,000
	에바콘 점검용 계단	철제계단 및 작업발판(5M)	에바콘 점검 및 수리 지난	3,000
	제상수 탱크 및 에바콘 세관	제상수 탱크 및 에바콘 세관(5,000*1식)	에바콘 코일 스케일 형성에 따른 고압상승으로 냉동능력 저하	5,000
	관리동 방화문 교체	관리동, 지하, 1층, 2층 방화문	장기사용으로 노후화 및 부식	2,500
	기지주변 하단 잡석 타설	잡석 및 모래 (15,000*1식)	기지주변 화단 정리정돈 잡초발생 방지 및 미화	15,000
	기계실 소음차단 칸막이 및 방음창 설치	감시실 방음벽 (칸막이 4m×7m)-15,000,방음창(1.5m×1.4m)-1,000	냉동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근무환경 매우 열악	16,000
	자동제어 보수	정기 및 수시점검보수	냉동설비유지보수(제상수펌프, 전자변, 팽창변,에바콘 관련)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00
	창고 출입문 및 환기구보수	전동문, 방열창고출입문, 저온호실환기구 보수	출입문 고장수리 및 환기구보수	7,000
	소 계 16			**243,5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인 천	소방시설 점검	정기점검 년2회	년2회 법정 정기점검	8,000
	계량장 점검	계량장 정기점검	정기검사 및 보수	7,000
	냉매 및 냉동유구입	냉매 500kg,냉동유 100kg	자연 감모량 및 교체	10,000
	기초 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구입	자체 보수자재 구입	20,000
	경비실 재설치	탕비실, 화장실 외부설치(정화조설치)	차량 진출입시 시계·조망 불가로 차량유도 및 방호 지난 서측면 → 동측면으로 이동설치	20,000
	비둘기 퇴치기 설치(4호실)	906.05평	비둘기 서식으로 보관품 오염 위생점검 시 상시 지적사항	30,000
	마당포장공사	노면절삭 및 포장(전체 마당의 1/3)3,000㎡	마당포장 침하현상 발생 매년 부분적인 보수	30,000
	고내 바닥보수(4호실)	에폭시처리 전체바닥의 1/3	바닥침하 및 대형차량 집입으로 파손으로 매년 1/3 보수	20,000
	건물 외벽도색	관리동/저온/방열 30,000*1식	창고 외벽 탈색 및 탈루로 미관저해	40,000
	에바콘 점검용 계단	철제계단 및 작업발판(5M)	에바콘 점검 및 수리 지난	3,000
	제상수 탱크 및 에바콘 세관	제상수 탱크 및 에바콘 세관(5,000*1식)	에바콘 코일 스케일 형성에 따른 고압상승으로 냉동능력 저하	5,000
	관리동 방화문 교체	관리동, 지하, 1층, 2층 방화문	장기사용으로 노후화 및 부식	2,500
	기지주변 하단 잡석 타설	잡석 및 모래 (15,000*1식)	기지주변 화단 정리정돈 잡초발생 방지 및 미화	15,000
	기계실 소음차단 칸막이 및 방음창 설치	감시실 방음벽 (칸막이 4m×7m)-15,000,방음창(1.5m× 1.4m)-1,000	냉동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근무환경 매우 열악	16,000
	자동제어 보수	정기 및 수시점검보수	냉동설비유지보수(제상수펌프, 전자변, 팽창변,에바콘 관련)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00
	창고 출입문 및 환기구보수	전동문, 방열창고출입문, 저온호실환기구 보수	출입문 고장수리 및 환기구보수	7,000
	소 계 16			**243,5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청 원	전기설비 정밀점검		전기 정밀 검사(5,000 × 1회)	5,000
	소방점검		방화관리대행용역	5,000
	에바콘 세관,안전변 검사		에바콘 세관, 안전변 15개(2,000×1식)	15,000
	계근장 정기검사		계근장 정기검사 및 보수	5,000
	시설관리		정화조	5,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구입 및 긴급보수	20,000
	기지 주변 환경정리		비축기지 주변 환경정리	10,000
	냉동설비 중앙감시반과 사무실간 모니터링 구축		중앙감시반 1인상주로 인한 사무실근무 인력난 초래	10,000
	A, B동 안전 바 설치	2개동 * 1,000	A,B동 계단부위 지게차 낙하 위험 발생 방지.	2,000
	데크 이동식 계단 설치	4개동 * 2,000	데크 중간 계단 미설치로 인한 하역원 및 차량기사 안전에 위협	4,000
	전기실,기계실 비상조명 설치		정전시 비상조명 부족으로 전기실 및 기계실 유지보수 어려움	8,000
	소 계 11			**89,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장성	소방시설 정기검사	정기검사	법정정기검사	5,000
	전기설비 정밀점검	전기설비 정밀점검	안전관리규정 준용	5,000
	에바콘 계단 설치	에바콘 계단 설치	에바콘 점검시 낙상위험	3,000
	계근장 검사 및 보수	5,000×1식	정기검사 및 보수공사	5,000
	기지주변 수목 전지 및 풀 제거	기지주변 수목 전지 및 잡풀 제거	뒷편 은행나무 잎 농가로 떨어져 민원제기 우려	12,000
	에바콘세관 및 안전변 검사	세관 및 수조청소(1식)	주기적(1회/년) 청소 및 검사	9,000
	천막 설치 공사	철골천막설치(30,000×1식), (H:5.5 L:10 W:7.5)	파렛트 보관용	30,000
	냉매 및 오일구입	냉매(8,000),오일(2,000)	정기적 보충 및 교체	10,000
	중천정 갤러리창 신설	비축기지 전호실	하절기 중층 판넬 결로발생	50,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상,하반기 각 1회)	보수, 소모성 자재구입 및 비상 수선 유지비	20,000
	소 계 10			**149,000**
안심	전기설비 안전진단검사	5,000×1회	법정 관리	5,000
	전기설비 정기검사	5,000×1회	법정 관리	5,000
	냉동시설 자율검사	1,000×2회	법정 관리	2,000
	에바콘 세관, 안전변 검사	에바콘 세관,안전변 검사	법정 관리	10,000
	소방시설 정기검사	정기검사	법정정기검사	6,000
	제상수 탱크 청소	3,000×1식		3,000
	제상수 탱크 점검용 철제 계단 설치	15,000×1식		15,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구입 및 긴급보수	20,000
	소 계 8			**66,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부경	소방정밀점검	정기검사	소방법에 의한 법정정기 종합검사	5,000
	안전변 검사	정기검사	법정 정기검사	5,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구입,긴급보수(냉매등)	20,000
	기지주변 수목 전지 및 풀 제거	기지주변 수목 전지 및 잡풀 제거	뒷편 은행나무농가 민원제기 우려	10,000
	소 계 4			**40,000**
본사	비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SW, HW 유지보수비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95,000
	비축통합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47,000
	분석장비 정비,보수	분석기기 소모품 교체 및 점검비용	분석기기 정밀도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부품 교체 필요	110,000
	실험용 소모품 구매	분석관련 시약, 초자, 표준품, 분석가스 등	실험업무를 위한 정기적인 소모품 구비 필요	
	칭량실 구획공사	칭량실 구분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	안전성 검사기관 인증을 위한 요건	
	긴급보수 예비비		긴급보수용도 예비비 필요	51,200
	소 계 6			**303,200**
합 계 128				**1,866,000**

참고 3 비축사업 위탁수수료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18년

22,965백만원

○ 563,408백만원(기준변수) × 0.033485(위탁요율) = 18,866백만원

⇒ 18,866백만원이 요율구간의 하한금액(19,396백만원)미만이므로 하한금액 **19,396백만원 적용**

⇒ 19,396백만원 × 1.038('15년 인건비 증가율) × 1.07('16)×1.035('17)× 1.07('18p)=**22,965백만원**

※ 매출액(기준변수) 산정('15～'17)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비축농산물 (A)	수입권공매 (B)	C=B×0.3	기준변수 (A+C)
2015	504,438,432	108,537,734	32,561,320	536,999,753
2016	588,655,922	61,639,480	18,491,844	607,147,766
2017(p)	524,543,383	71,775,471	21,532,641	546,076,024
계	1,617,637,737	241,952,685	72,585,805	1,690,223,543
평균	**539,212,579**	**80,650,895**	**24,195,268**	**563,407,848**

* 2017(p): 과거 3년 평균 금액('14～'16년)

2019년

23,252백만원 (증 287, 1.25%)

○ 606,155백만원(기준변수) × 0.037544(위탁요율) = 22,758백만원

⇒ 18,866백만원이 요율구간의 하한금액(23,252백만원)미만이므로 하한금액 **23,252백만원 적용**

⇒ '19~23년 개정 위탁요율표 적용

※ 매출액(기준변수) 산정('16～'18)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비축농산물 (A)	수입권공매 (B)	C=B×0.3	기준변수 (A+C)
2016	588,655,922	61,639,480	18,491,844	607,147,766
2017	606,508,133	53,146,456	15,943,937	622,452,070
2018(p)	566,534,162	74,441,224	22,332,367	588,866,530
계	1,761,698,217	189,227,160	56,768,148	1,818,466,366
평균	**587,232,739**	**63,075,720**	**18,922,716**	**606,155,455**

* 2018(p): 과거 3년 평균 금액('15～'17년)

* '19년부터 민간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반영한 신규 위탁요율 적용(삼일회계법인)

※ 해당구간 '19~23년 기본요율표

기준변수구간 (매출액)	비축사업위탁요율(%)			하한금액 (천원)
	사업비요율	이윤율	합계	
.	.	.	.	.
5800억원이상 6000억원미만	3.6681	0.2073	3.8754	23,227,840
6000억원이상 6200억원미만	**3.5478**	**0.2066**	**3.7544**	**23,252,400**
6200억원이상 6400억원미만	3.4352	0.2060	3.6412	23,277,280
.	.	.	.	.

참고 4 비축농산물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1. 구축 배경

○ 비축기지 현대화, 광역화에 따라 하드웨어 분야는 구축('12~'18)이 되었으나, 재고관리 등 운영부분은 아직까지 수기기록 등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대화 필요

○ 최근 이슈인 4차 산업화와 연계하여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비축기지 실시간 재고관리 방안 검토 결과>

❖ (~'18. 3) 정보통신기술(ICT) 등 활용 방안 전문가 자문 및 비축기지 현장 실사 실시

① (IOT 방식) IOT센서 팔렛 부착을 통해, 실시간 입출고 및 제고 파악

② (One-stop 전산입력 방식) PDA 현장 입력으로 비축사업통합정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 포장규격 상이 및 IOT 센서탈·부착 등 문제로 **One-stop 전산입력 방식 추진**

2. 추진 방안

○ 입출고 사항에 대한 현장 온라인 입력 및 비축사업통합정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 수기기록 후 사무실 ISP 재입력 등 중복 수작업 생략을 통한 효율성 제고

현 행(각 단계 확인 및 입력)	변 경(One stop 입력방식)
▶수기기록(더미현황판)→비축기지 사무실 수기입력→ISP 반영 *** 중복 작업 발생**	▶입고시 PDA 입력정보가 현장모니터→ **비축 ISP 및 수급정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3. 향후 추진 사항

○ **'19년 농안기금 시설장비 유지비 반영을 위한 연차별(3개년) 예산 신청('18.6월)**

- 전산 설비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수립 및 신청

○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 창고 대상 시범 사업 실시('19년)**

- 연도별 시스템 도입 비축기지 확대 및 자동화 단계 업그레이드 실시

* (1단계 시범사업/'19년) 장성비축기지 → (2단계/'20년) 청원, 안심 → (3단계/'21년) 김포, 부경권

4. 기대 효과

○ ISP 실시간 연동 및 관련부서 현황판 설치로 **효율적 재고 파악 및 입·출고 관리**

○ 재고현황판 수기 작성 및 컴퓨터 입력 등 **수작업 최소화로 품질관리 집중 가능**

참고 5 정부비축기지 aT 매각 및 융자 필요성

❑ 쌀·고추 등 장기보관품목 증가에 따른 보관 여석 부족 심화 및 민간창고 임차 면적 증가로 기존 비축기지를 매각하기 곤란한 상황

○ 매년 수입 쌀 비축물량 증가로 정부 비축농산물 상당 부분을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 중이며, 이에 따라 보관료 지급액도 매년 증가

* 민간창고 임차개소 : '12) 18개소 → '13) 42 → '14) 58 → '15) 70 → '16) 86

[연도별 민간창고 보관물량 및 보관료 지급액]

구 분	'12	'13	'14	'15	'16	합계
보관물량(톤)	8,926	83,801	58,079	108,660	113,805	373,271
임차개소	18	42	58	70	86	274
보관료(억원)	21	49	136	185	226	617

○ 기존 비축기지(7개소) 매각 시에는 연면적 29,091㎡, 보관능력 22,426톤(저온 11,252, 방열 11,174)에 대한 추가 임차(연간 40억원) 필요

❑ 비축농산물 민간창고 위탁보관에 따른 문제점

○ 수급불안시 긴급 수매·수입으로 인한 필요면적 적시 확보에 어려움

- 긴급 확보 시 신속한 보관을 위해서는 과도한 임차료 요구 등 수용 불가피

* 신선농산물의 경우 입고 후 이고 시 급격한 품위저하 우려로 이고 불가능

○ 민간 임차창고 대부분 소규모 영세 창고로 효율적 관리 애로

- 전국 지역별 소량 분산 보관으로 인한 물류비용 과다로 원가 상승

* 현재 민간위탁창고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위생·안전 밀착관리에 한계

○ 비축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지속적인 책임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되는 비축농산물의 통합 및 직접관리 필요

- 수입 쌀 별도 보관 시 비축농산물 전량 비축기지 보관 가능

8.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2,146	3,435	3,435	**3,466**	**31**	**0.9**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산업과장(서준한), 서기관(강효주, ☏ 044-201-223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 수급상황, 도소매 가격정보 및 유통실태조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친환경농업 정책고객(농업인, 유통기업, 연구자 등)의 의사결정 및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정보 기반(산업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 수급정보, 도소매가격, 유통실태, 수입정보,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 등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수행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수급정보조사 : 1,188백만원**

-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종합시스템 구축 : 1,002
- 수급정보 현지조사, 모니터관리, 대내외협의체 운영 등 105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관리 및 사무국 운영 : 81

○ **국내가격정보조사 : 1,271백만원**

-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 및 분석 : 741

  * '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소매가격조사 위탁용역비(주부조사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증 31

- KAMIS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150
- 알뜰장보기 등 물가정보 홍보(방송매체, 모바일콘텐츠 등) : 380

○ **화훼유통정보조사 : 270백만원**

- 화훼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210 / 생산·소비 모니터요원 운영 : 60

○ **유통실태조사 : 195백만원**

- 유통실태조사(유통경로, 유통비용 등) : 185 / 물류표준화실태조사 : 10

○ **수입정보조사 : 199백만원**

- 해외모니터를 통한 농산물 수입정보조사 : 92 / 해외수입정보 검증회의 : 43
- 수입농산물 국내유통경로, 소비실태 등 조사 : 64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 343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 183 / 판매장현황 및 소비자인식조사 : 50
- 유기가공식품 유통실태조사 : 50 /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 조사 : 60

구 분	'18계획	'19계획
□ 농산물 유통소비 정보조사	**3,435백만원**	**3,466백만원**
▪ 수급정보조사	1,188	1,188
▪ 국내가격정보조사	○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 710 ○ KAMIS 운영·관리 150 ○ 알뜰장보기 등 물가정보 홍보 380	○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 741 * '19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31) ○ KAMIS 운영·관리 150 ○ 알뜰장보기 등 물가정보 홍보 380
▪ 화훼유통정보조사	270	270
▪ 유통실태조사	195	195
▪ 수입정보조사	199	199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343	343

□ 지원 필요성

○ 농산물은 전작기(전년도) 가격에 따른 큰 폭의 재배면적 변동과 기상·병해충 등의 영향으로 과잉·과소 생산이 유발되어 수급 불안 문제 상존

○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수급정책보다는 시장거래 주체 중심의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가 필요

○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 시장 거래 주체의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급, 유통 및 소비관련 다양한 정보를 분석·제공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2,146	3,435	3,435	3,466	31	0.9
▪ 수급정보조사	316	1,188	1,188	1,188	0	0
▪ 국내가격정보조사	1,166	1,240	1,240	1,271	31	2.5
▪ 화훼유통정보조사	270	270	270	270	0	0
▪ 유통실태조사	195	195	195	195	0	0
▪ 수입정보조사	199	199	199	199	0	0
▪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실태조사	-	343	343	343	0	0
□ 비목(합계)	2,146	3,435	3,435	3,466	31	0.9
○ 민간경상보조(320-01)	2,146	3,435	3,435	3,466	31	0.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법」제11조(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

○ 추진경위

- ’83년: 농수축산물유통통계지침(농수산부훈령)에 따라 국내가격정보조사 실시
- ’97년: 농림부 유통개혁대책 일환으로 농산물유통실태조사 실시
- ’04년: 해외수입정보조사 실시(농식품부 방침)
- ’13년: 수급정보조사 신규 실시 및 농산물 수급조절위원설 설치
  농산물 유통정보실용화 사업으로 정보조사 세부사업 통합 추진
- ’16년: 농산물 유통정보 실용화 사업이 비축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편입
- ’18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신규 실시.
  비축지원 내역사업에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사업으로 분리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11	17	17	19	21	3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불용: 해당 없음

○ 실집행 불용 사유: 집행잔액(‘15년: 54백만원, ‘16년: 51백만원, ‘17년: 102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5**	-	-	16.5	**16.5**	-	-
	(16.5)	(-)	(-)	**(16.5)**	**(16.0)**	(-)	(0.5)
’16년	**19.3**	-	-	19.3	**19.3**	-	-
	(19.3)	(-)	(-)	**(19.3)**	**(18.8)**	(-)	(0.5)
’17년	**21.5**	-	-	**21.5**	**21.5**	-	-
	(21.5)	(-)	(-)	**(21.5)**	**(20.4)**	(-)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미흡(65.00)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단위사업

- 미흡 사유: 성과달성 미흡(비축지원 사업 성과목표 미달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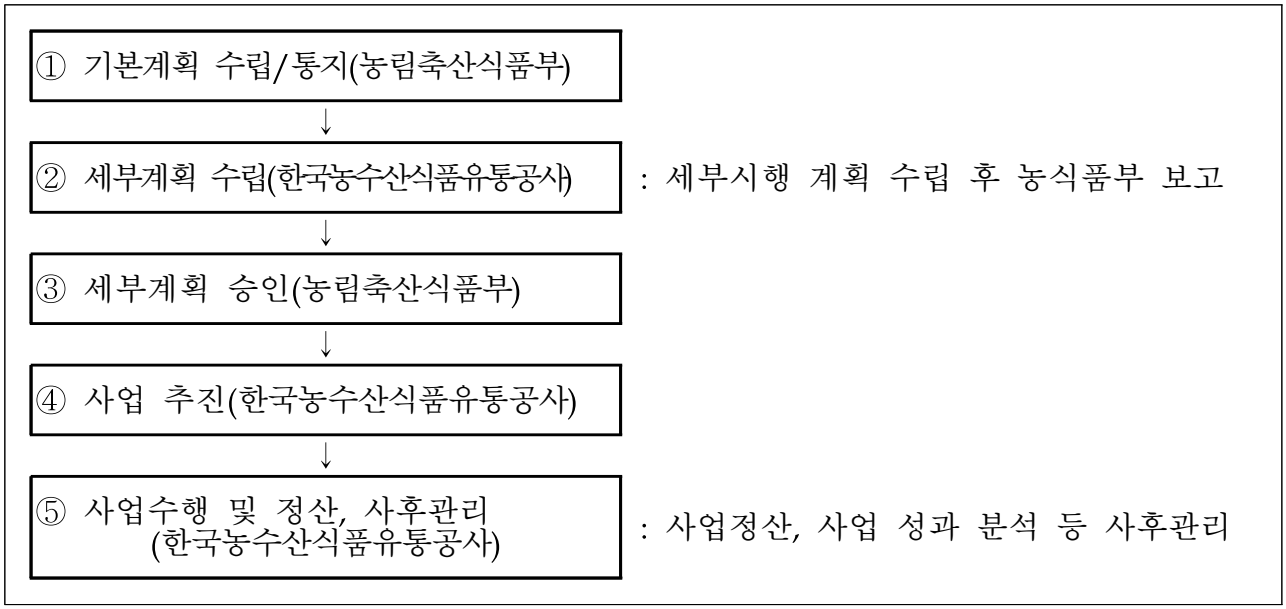

9. 자조금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자조금지원	7,108	7,630	7,630	**8,130**	**500**	**6.6**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이행은)☎(044-201-22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조금단체의 자발적인 수급조절,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

- 자조금단체가 스스로 해당품목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단체의 역량강화 및 대표성 확보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 단체에 수급조절,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등 지원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자조금단체지원,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국비 50%, 자부담 50) ○ 행정경비(자조금 평가·점검 등):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산물 자조금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자조금을 자체 조성한 품목단체 지원비 8,130백만원 반영

- 자조금단체 통합 지원을 위한 자조금통합지원센터 500백만원 추가 반영 등 전년대비 6.6% 증액

▪ 의무자조금 12개소×10,300백만원(평균거출금)×70%(평균지월율) + 의무자조금 전환단체 등 지원 400백만원 + 행정경비 20백만원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1,000백만원×50%(보조율)

□ 지원 필요성

○ 정부주도형에서 산업주도형으로 체질을 바꾸고 규모화 되고 역량있는 자조금단체가 해당산업을 선도하여 품목대표조직으로 육성되도록 정부에서 지원 필요

○ R&D, 교육, 소비촉진 홍보비 등을 1:1 매칭 지원하여 생산자단체 스스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진 유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자조금지원**	**7,108**	**7,630**	**7,630**	**8,130**	**500**	**6.6**
▪ 자조금단체지원	7,088 (25개×283.5백만)	7,610 (의무자조금 9개소×10,000백만원×70% + 전환단체 610백만원)	7,610 (의무자조금 9개소×10,000백만원×70% + 전환단체 610백만원)	7,610 (의무자조금 12개소×10,300백만원×70% + 전환단체 400백만원)	-	-
▪ 행정경비 (자조금 평가·점검 등)	20	20	20	20	-	-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	-	500 (1,000백만×50%)	500	순증
□ **비목**(합계)	**7,108**	**7,630**	**7,630**	**8,130**	**500**	**6.6**
○ 민간경상보조(320-01)	7,180	7,630	7,630	8,130	500	6.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 제19대 대통령 공약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및 추진배경: '00년부터 지원한 자조금사업으로 품목별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 2000 : 원예자조금 도입(농안법에 지원근거 마련, 파프리카·참다래 시작)
- 2005 : 자조금 거출한도 상향조정(1→3%), 자조금심의위원회 신설
- 2006 :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자조금 단체 시범평가 실시
- 2007 : 자조금단체에 대한 본평가 실시(사업 3년 이상인 단체)
- 2008 : 평가결과(상대)에 의한 차등보조 실시(100% > 90% > 80%)
  → 2009년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
- 2010 : 사업의무량 상향 조정(최소 자조금조성액 : 1천만원→5천만원)
  → 2011년 사업의무량 상향 조정(최소 자조금조성액 : 5천만원→1억원)
- 2012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공포('12.2.22.)
- 2013 : 의무자조금 도입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2.23.)
- 2014 : 자조금 품목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자조금 지원	80	80	80	70	76	7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일부품목 작황부진(태풍 등)에 따른 거출 감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 미집행, 낙찰차액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0** **(73.83)**	- (-)	- (-)	80 (73.83)	**73.83** **(69.65)**	- (-)	6.17 (418)
'16년	**70.2** **(68.15)**	- (-)	- (-)	70.2 (68.15)	**68.15** **(65.61)**	- (-)	2.05 (2.54)
'17년	**76.3** **(71.08)**	- (-)	- (-)	76.3 (71.08)	**71.08** **(68.03)**	- (-)	4.5 (3.0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18년): 미흡(65.0점)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단위사업

- 미흡 사유: 성과달성 미흡(비축지원 사업 성과목표 미달성, 자조금지원 달성 부진)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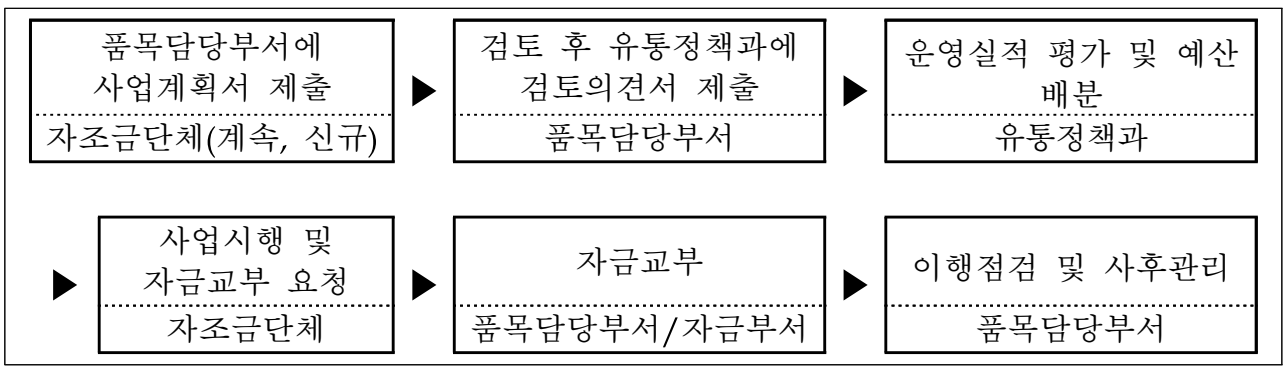

10.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생산유통 조절지원	10,000	16,819	16,819	**16,082**	**737**	**△4.4**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3000 - 3031 - 326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산업과장(서준한), 서기관(서정호)☎(044-201-22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이내)을 보전하여 주고, 사전 면적조절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 유통협약 또는 유통조절명령 이행시 손실 지원
사업기간	'00년~계속 * (채소가격안정지원) '16~계속, (유통협약·명령) '00~계속 ** 유통협약·명령 내역: ('17) 비축지원 사업 → ('19)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채소가격안정지원)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시범)) 평년 생산량 10% (유통협약·명령) 과실류 3품목(8,728톤), 채소류 4품목(14,538톤)
지원조건	(채소가격안정지원) 민간경상보조(국비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유통협약·명령지원)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채소가격안정지원) 농협경제지주 (유통협약·명령지원) 생산자단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채소가격안정지원)** 주요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시범))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137백만원

▪ 단위사업 재정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 '18년 대비 10% 일괄 감액

▪ 산출내역 : 460천톤(5품목) × 110천원/톤 × 30%(국고) ≒ 15,137백만원

* 배추 202천톤, 무 107천톤, 마늘 29천톤, 양파 113천톤, 고추 9천톤

○ **(유통협약·명령지원)** 국내 농산물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생산자조직이 자율수급조절(유통협약, 유통조절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 945백만원

* ('17)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에서 비축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19) 비축지원 사업에서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단위사업 재정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 '18년 대비 10% 일괄 감액

▪ 산출내역 : 과실류(3품목): 8,728톤 × 65천원/톤 × 100%(보조율) = 567백만원
채소류(4품목): 14,538톤 × 26천원/톤 × 100%(보조율) = 378백만원

* 사업량 산출: 대상품목 평년생산량의 (과실류 1,460천톤, 채소류 3,433)의 0.5% 수준

□ 지원 필요성

○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를 정부의 직접 개입(수매비축, 시장격리) 보다는 주산지 생산자조직(지역주산지협의체, 중앙주산지협의회)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 할 필요

- 특히, 농산물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생산前단계부터 직접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

○ 이에, 주산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재배단계에서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해 나가고, 기상이변 등으로 공급과부족 발생 시 채소가격안정제, 유통협약·명령조절지원 등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10,000 (10,200)	16,819 (17,869)	16,819 (17,869)	16,082	△737 (△1,787)	△4.4 (△10.0)
▪ 채소가격안정지원	10,000	16,819 (511천톤(5품목)×110천원/톤×30%)	16,819 (511천톤(5품목)×110천원/톤×30%)	15,137 (460천톤/(6품목)×110천원/톤×30%)	△1,682	△10.0
▪ 유통협약·명령	(200)	(1,050)	(1,050)	945	945 (△105)	순증 (△10.0)
- 과실류	-	(630) 9,693톤(3품목)×65천원/톤×100%	(630) 9,693톤(3품목)×65천원/톤×100%	567 8,728톤(3품목)×65천원/톤×100%	567 (△63)	순증 (△10.0)
- 채소류	(200) (파프리카)	(420) 16,154톤(4품목)×26천원/톤×100%	(420) 16,154톤(4품목)×26천원/톤×100%	378 14,538톤(4품목)×26천원/톤×100%	378 (△42)	순증 (△10.0)
□ 비목(합계)	10,000 (10,200)	16,819 (17,869)	16,819 (17,869)	16,082	△737 (△1,787)	△4.4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10,000 (10,200)	16,819 (17,869)	16,819 (17,869)	16,082	△737 (△1,787)	△4.4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협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9대 대통령 공약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 추진경위

<채소가격안정지원>

- '9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시행 및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시장 격리, 수매비축 등) 추진 중이나, 수급안정 기능 미흡 및 수급상황 발생 시 사후적 대책 한계로 계약재배 개편 필요성 대두
- 지자체, 생산자단체, 국회(황주홍, 김승남, 김영록, 경대수, 윤명희 의원 등) 등에서 계약재배 참여유도, 지역별 생산조정 및 수급안정기금 조성을 통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안정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14, '15년 임시국회, 국정감사 등)
- 「농산물 수급안정제도 개선방안」 마련('14.5.)
  *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정부 자금지원 등)
- 한·중 FTA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한 '채소류 산업 발전 방안' 마련('15.2.16.)

- '15년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면적조절 등) 강화, 지원 조직의 판매능력 확보 등 계약재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 마련('15.4월, 채소가격안정·출하안정제 도입, 시범사업 추진)

  * (현행) 사후적/ 정부주도/ 농협 중심/ 생산 초점 → (개선) 사전적/ 민간자율/ 주체다양화/ 생산·판매 연계

- '16년 정부 예산(20억원) 확보 및 사업 추진

- 채소가격안정·출하안정제 내실화 등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 개선방안 마련('16.5월)

<유통협약·명령 지원>

-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

- '99.11 :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0.7~12 : 유통명령 도상연습실시(2회)

  * 1차('00.7.24~26) : 강원도 고랭지 배추, * 2차('00.12.5~7) : 제주도 감귤

- 연도별 유통협약·명령 실시 추이

  * ('01) 대파, 양파 → ('02) 양파 → ('03) 감귤, 김 → ('04) 감귤, 김 → ('05) 대파, 양파, 감귤 → ('07) 겨울배추, 대파, 사과, 감귤 → ('08) 가을배추, 배, 감귤 → ('09) 가을배추, 마늘, 감귤 → ('11) 봄배추, 가을무·배추 → ('13) 가을 배추 → ('14) 겨울무→ ('15) 감귤 → ('16) 파프리카→ ('17) 파프리카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산물생산유통 조절지원	20	16	16	35	110	178
- 채소가격안정지원	-	-		20	100	168
- 유통협약·명령	20	16	16	15	10	1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 해당 없음

○ 불용

<채소가격안정지원>

- ('16: 15억원) 사업대상 품목(배추, 무 등)의 가격급등으로 지원 수요가 감소

<유통협약·명령 지원>

- ('17: 8.5억원) 농산물 수급안정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협약 체결 또는 유통조절명령 공표 필요성이 낮았음(유통협약 1건: 파프리카)
- ('16: 13억원) 농산물 수급안정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협약 체결 또는 유통조절명령 공표 필요성이 낮았음(유통협약 1건: 파프리카)

* 유통협약·명령,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과잉 등으로 품목별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야 가격차 보전 등 집행 수요가 발생되는 사업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거나 안정되면 집행수요가 미미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 (16)	- (-)	- (-)	16 (16)	16 (16)	- (-)	- (-)
'16년	35 (35)	- (-)	- (-)	35 (7)	7 (4)	- (-)	28 (3)
'17년	100 (100)	- (-)	- (-)	100 (100)	100 (31)	- (-)	- (6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채소가격안정(생산안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16년 예산 예결위)

⇒ (조치사항) 채소가격안정(생산안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16.12.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17.6.3. 시행)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미흡(65.0점)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단위사업

- 미흡 사유: 성과달성 미흡(비축지원 사업 성과목표 미달성)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통폐합, 감축

- (평가결과) 유통협약·명령지원을 비축지원 사업으로 이관하고, 채소가격안정지원은 사업정착 단계에 국고 보조율 축소(30% → 20) 검토

⇒ (조치사항) '17~'18년 유통협약·명령지원 내역을 비축지원 사업에 이관하여 운영했으나, '19년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재 이관

* '17·'18년 통합운영의 효과는 없었으며 정부 직접사업과 민간지원사업 간의 통합으로 사업 관리(집행·결산 및 성과분석)상 비효율 발생 우려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지정채소가격안정대책 사업) 지정채소*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채소생산출하안정법 제10조), 목표가격과 하락된 차액 보전, 농가경영 안정 도모

* 14품목 : 양배추, 오이, 토란, 무, 토마토, 가지, 당근, 파, 배추, 피망, 양상추, 양파, 감자, 시금치

(5) 사업추진절차

○ 채소가격안정지원

계획수립·승인	물량·예산 배정	계약 및 재원조성	수급대책 추진
(협의체) 계획 수립 (농식품부) 계획 승인	(농식품부) 시도별 배정 (협의체) 지역농협별 배정	(농협) 농업인과 계약 체결 및 공동재원 조성	(협의체) 대책수립·의결 (농협) 대책시행 및 정산

○ 유통협약·명령

<유통협약>

- 유통협약 필요성 문제제기 → 유통협약 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유통협약추진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협약계획서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 협의 →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추진상황 통보 → 유통협약서 서명 및 체결 → 유통협약 실행 → 유통협약 자금지원

<유통명령>

- 유통명령 필요성 문제제기 →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 → 유통명령요청서 작성 및 전문가 검토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지자체 협의 → 유통명령서 확정 → 유통명령 요청 → 유통명령서 검토 및 협의·조정(공정거래위원회, 요청자) → 유통명령 발령 → 유통명령 홍보·공고 → 유통명령 홍보, 점검, 과태료 부과 → 유통명령이행 결과보고 → 유통명령 이행관련 자금지원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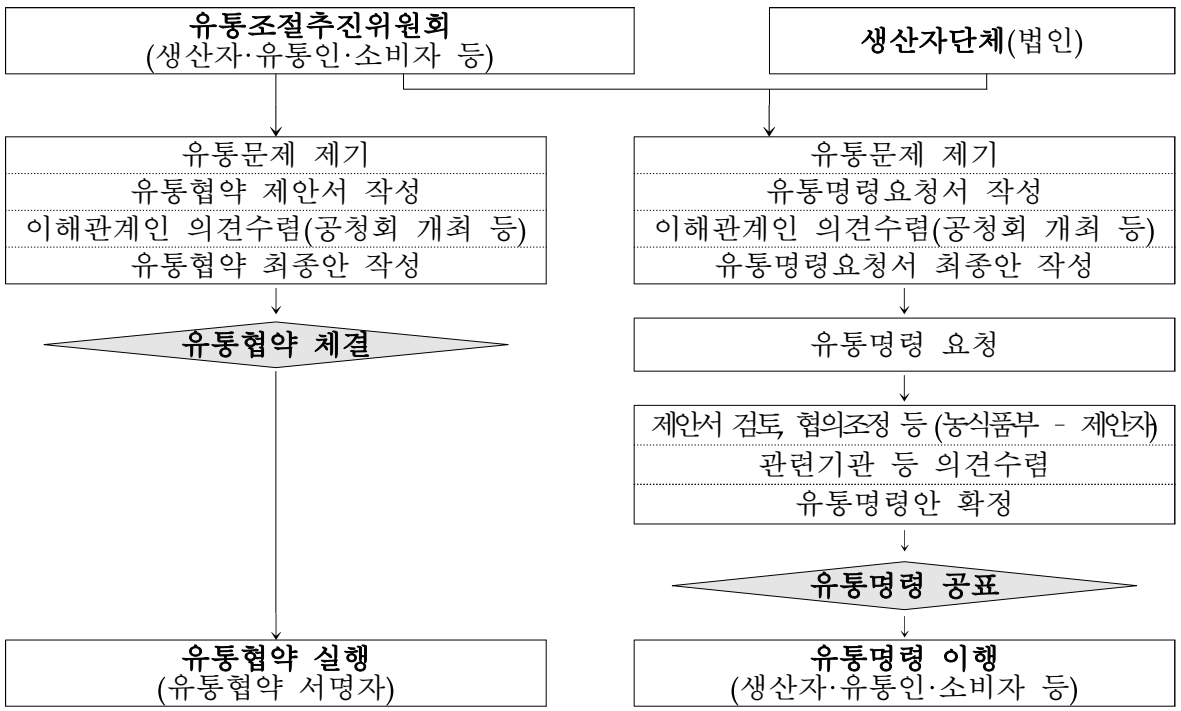

참고 |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 **(도입배경)** 기존 계약재배만으로는 수급조절 물량 확보 및 선제적 수급 대책 이행이 어려워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

□ **(주요내용)**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을 체결, 농업인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가격 하락시 손실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

○ **(농업인 의무)**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생육단계 폐기), 출하정지, 출하조절**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

- **(과잉시)**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 방지

- **(부족시)**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시기 조절,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

○ **(정부·농협 이행사항)** 공동재원*을 조성해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하고, **평년 가격의 80%** 수준 보장

*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출하前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 소요된 생산비 수준, (출하조절) 운송비·작업비

□ **(추진체계)** 지자체·농협·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급대책 수립·추진

사업 신청 및 계획 수립	물량·예산 배정	계약 및 재원조성	수급대책 추진
(협의체) 신청, 계획 수립 (농식품부) 계획 승인	(농식품부) 시도별 배정 (협의체) 지역농협별 배정	(농협) 농업인과 계약 체결 및 공동재원 조성	(협의체) 대책수립·의결 (농협) 대책시행 및 정산

□ **(사업효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 등 강화된 수급 의무를 부여, **수급조절 물량 확대 및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가능**

11. 도매유통활성화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990	990	**650**	△340	△34.3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민호)☎(044-201-22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매시장법인 등에 결제자금 등 지원을 통해 농업인 출하대금 정산 안정성 제고 및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화 유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도매시장 평가, 온라인경매 등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유도
사업기간	'82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도매유통활성화: ('18) 990백만원 → ('19) 650

- 도매시장 평가 등 운영·관리 지원, 이미지경매 시스템 시범도입을 위한 사업비

  • 1식×650백만원×100%=650

□ 지원 필요성

○ 공영도매시장(전국 32개소)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주체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 도매시장 내 낮은 공간 활용성, 시장 내 혼잡 등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온라인 경매 도입 추진

○ 도매시장 내 업무검사,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제도정비 등 종합지원

-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수행 적정성 여부 종합 점검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도매시장 중장기 전략 및 시설정비 계획 수립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990**	**990**	**650**	**△340**	**△34.3**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990** (1개×990백만×100%)	**990** (1개×990백만×100%)	**650** (1개×650백만×100%)	**△340**	**△34.3**
□ 비목(합계)	**650**	**990**	**990**	**650**	△340	△34.3
○민간경상보조(320-01)	650	990	990	650	△340	△34.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 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치('08.1)
- 농산물 산지-소비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마련('08.3)
- 유통·외식·식품업체, 산지유통조직, 정부 공동으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08.3)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13.2) : 34.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34-3.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도매유통활성화지원	149	32	33	7	6	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3 (36)	2 (-)	- (-)	36 (36)	36 (35)	- (-)	- (-)
'16년	7 (7)	- (72)	- (-)	7 (8)	7 (7)	- (-)	- (-)
'17년	6 (6)	- (-)	- (-)	6 (6)	6 (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 * 소비지유통활성화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지적내용) '17년 예산 10%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조치사항)

▪ '17년 보조예산 축소('16년 대비 △130백만원, △16.7%)

▪ 공영도매시장 및 유통활성화 관련 다수의 국고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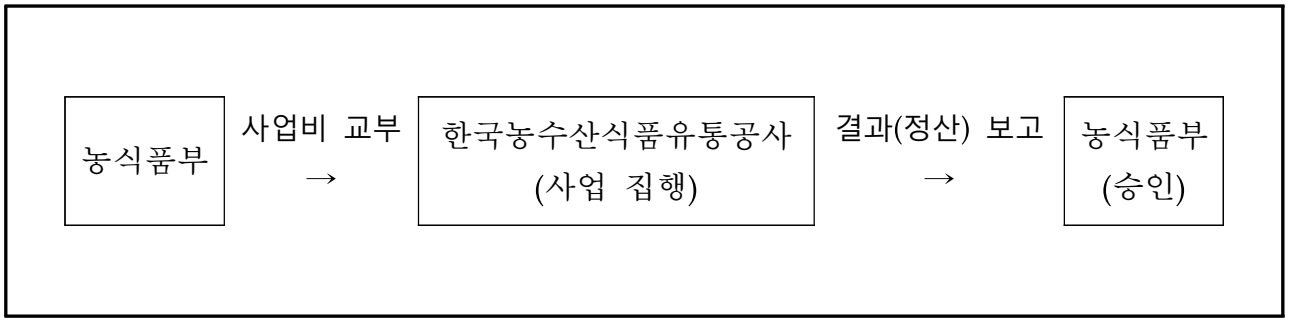

12.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당초	수정(A)	(B)	(B-A)	%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 사업코드: 55 - 20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서기관 허동웅☎(044-201-22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지유통 활성화) 산지조직에게 원물 확보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는 한편, 산지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산지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통합마케팅조직 취급액 : ('16) 3.6조원 → ('17) 3.7 → ('22) 5

○ (수급안정) 과일 및 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

* 노지채소 계약재배 비중 : ('16실적) 14.4% → ('17실적) 17.5 → ('19목표) 23.0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산지유통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원물확보) 및 노지채소·과실류·과채류의 수급안정자금(계약재배) 지원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산지유통활성화: 대형산지유통조직 연간 300개소 내외 지원 ○ 수급안정: 품목별 평년생산량의 20%까지 계약재배 확대
지원조건	○ 산지유통활성화: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지원 / (상환기간)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 수급안정: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5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 등을 위한 융자금 562,760백만원

▪ 융자상환 도래액 및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7.6% 축소

< 산지유통활성화 > ('18) 330,000백만원 → ('19) 320,000

- 원물확보 : 1,333백만원 × 300개소 × 융자 80% ≒ 320,000

  * 융자조건: 금리 0~3%(평가를 통하여 차등 적용), 3년 거치 일시상환

< 수급안정 > ('18) 279,300백만원 → ('19) 242,760

* 융자조건: 금리 0%, 5년 거치 일시상환

- 노지채소 : ('18) 199,300백만원 → ('19) 170,000

  • '19년 융자상환 도래액 148,612백만원 + 계약재배 확대 소요액* 21,388백만원

  * [(배추 42천톤 × 204천원/톤) + (무 31천톤 × 201천원/톤) + (양파 22천톤 × 550천원/톤)] × 80%

- 과수 : ('18) 40,000백만원 → ('19) 40,000

  • 융자상환도래액 20,000 + 계약재배 확대 소요액 20,000 = 40,000백만원

  * [(사과 5천톤 × 2,080천원/톤) + (단감 2천톤 × 1,092천원/톤) + (감귤 13천톤 × 970천원/톤)] × 80%

- 과채류 : ('18) 40,000백만원 → ('19) 32,760

  * [(풋고추 4천톤 × 3,789천원/톤) + (호박 3천톤 × 1,407천원/톤) + (오이 5천톤 × 1,577천원/톤) + (파프리카 5천톤 × 2,736천원/톤)×80%

□ 지원 필요성

< 산지유통활성화 >

○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지 유통업체 대형화 등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지조직 육성 필요

- 소비지는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으로 대형화·수요독점이 가속화되고 있고, 산지가 균일한 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를 희망

- 산지는 다수의 영세조직이 난립하여 소비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공급경쟁이 극심하여 경쟁력 미확보

* 선진국에서는 농협의 합병·연합사업체제 구축 또는 판매전문 자회사를 설립, 산지유통 조직 규모화로 경쟁력 확보(네덜란드 그리너리, 뉴질랜드 제스프리, 미국 썬키스트 등)

○ 공동선별출하회 육성을 통한 공동계산제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물확보자금 지원 필요

< 수급안정 >

○ 원예농산물의 경우 기상조건 등에 따라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으로 수급불안 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계약재배, 수급조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계약재배사업 물량의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가격 등락 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사업중단 시 출하조절 기능 상실로 가격 폭·등락 심화 우려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을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16.5.)하여 계약재배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 '20년까지 품목별 평년 생산량의 20%수준까지 생산안정제 사업물량 조기 확대, '20년까지 품목별 평년 생산량의 15%까지 출하안정제 확대 계획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319,211	330,000 (1,375백만원×80%×300개소)	318,914 (1,329백만원×80%×300개소)	320,000 (1,333백만원×80%×300개소)	1,086	0.3
▪ 수급안정지원	226,440 (노지채소 106,740) (과수 50,000) (과채 69,700)	279,300 (노지채소 199,300) (과수 40,000) (과채 40,000)	279,300 (노지채소 199,300) (과수 40,000) (과채 40,000)	242,760 (노지채소 170,000) (과수 40,000) (과채 32,760)	△36,540	△13.1
□ **비목**(합계)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 기타민간융자금(450-04)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협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9대 대통령 공약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추진경위

< 산지유통활성화 >

- '00년부터 중기(3년) 저리(3%)의 원료확보자금 등 유통종합자금 지원
- '03년부터 기존 공동규격출하촉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을 산지 일반조직지원으로 통합 지원
- '05년부터 지역농협, 영농조합단위의 소규모사업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추진
- '07년부터 산지유통조직에 지원되는 자금을 통합하여 중복지원 방지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1단계('07～'08년): 시설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통합
  * 2단계('09년 이후): 수매지원(저장용, 산지가공) 통합
  *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은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통합추진
- '11년부터 시설채소·과실 수급안정사업과 수매지원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으로 통합 운영

< 수급안정 >

- '95년부터 노지채소의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도입
  * '01년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시설채소 및 과실 수급안정 사업 도입
- '10년 배추파동을 계기로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하여 사업 물량 확대 및 운용방법 등 개선안 마련
  * '17년까지 평년생산량의 30% 수준으로 확대
- '14년 과실·시설채소 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마련하여 대상품목 및 연차별 물량 확대 추진
- '15년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면적조절 등) 강화, 지원 조직의 판매 능력 확보 등 계약재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편 추진
  * (현행) 사후적 / 정부주도 / 농협 중심 / 생산 초점 → (개선) 사전적 / 민간자율 / 주체다양화 / 생산·판매 연계
- '16.5월 채소가격안정(생산안정)·출하안정제 등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 개선방안 마련·추진

- 관련 공약

▪ 87.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87-5.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 받기 Project" 시행

▪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 91. 농어업회의소 전국 설치(91-3.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도입)

- 관련 국정과제

▪ 82-3.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생산안정제 확대로 적정 수준의 수급조절 역할 강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7,934	6,100	6,840	5,328	5,893	6,093
- 산지유통활성화	5,290	4,200	3,960	3,600	3,600	3,300
- 수급안정	2,644	1,900	2,880	1,728	2,293	2,79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15)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확대를 위해 360억원 증액(국회 승인변경)

○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지원대상조직의 사업포기 및 담보능력 부족 등(’15년: 7억원, ’16년: 190억원, ’17년: 436억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480** **(6,833)**	- (-)	360 (-)	6,840 (6,833)	**6,833** **(6,510)**	- (-)	7 (323)
’16년	**5,328** **(5,198)**	- (-)	- (-)	5,328 (5,198)	**5,198** **(4,928)**	- (-)	190 (270)
’17년	**5,893** **(5,457)**	- (-)	- (-)	5,893 (5,457)	**5,457** **(5,431)**	 (12)	436 (1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확대 필요('15 결산심사, 상임위)

⇒ (조치사항)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을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16.5.)하여 계약재배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 개선방안」 마련('16.5.): '20년까지 품목별 평년 생산량의 20% 수준까지 생산안정제 사업물량 조기확대, '20년까지 품목별 평년생산량 15%까지 출하안정제 확대 계획

- (지적내용) 수급안정 계약재배 물량 비중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관리 강화 및 계약이행 방안 마련 필요('16 결산 시정요구)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우수(90.75) * 산지유통활성화(농안, 융자)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이바라끼현 VFS(vegetable fruit station)>

○ 일본의 농협 유통사업의 혁신을 위해 최근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중앙조직의 전농 현본부 중심의 VFS(채소과일점; vegetable fruit station)

- 계약생산 및 매입, 배송시스템을 융합한 유통센터가 판매채널을 관리하는 것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 대표적인 사례로 이바라끼현 전농본부의 VFS임

- 현재 100억엔대의 출하규모 유지, 대형소매점(70%), 도매시장(30%)

<프랑스 도를레안느(Dorleane)>

○ 도를레안느농협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협동조합과 영농조합이 합병

- 전문조합으로 소비자 선호변화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에 대응하여 조직혁신을 추구하고, 규모화·시설현대화 추진

○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품질관리와 공동출하를 위한 협의회 성격의 연합체를 구성

-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표준화 된 품질의 상품 등 가능

(5) 사업추진절차

< 산지유통활성화 >

① 사업지침 마련 및 예산확보, 사업대상조직 확정

②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③ 사업비 지원 및 지도

④ 사업신청 제출

⑤ 사업신청서 취합 제출

⑥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및 선정결과 농식품부 제출

< 수급안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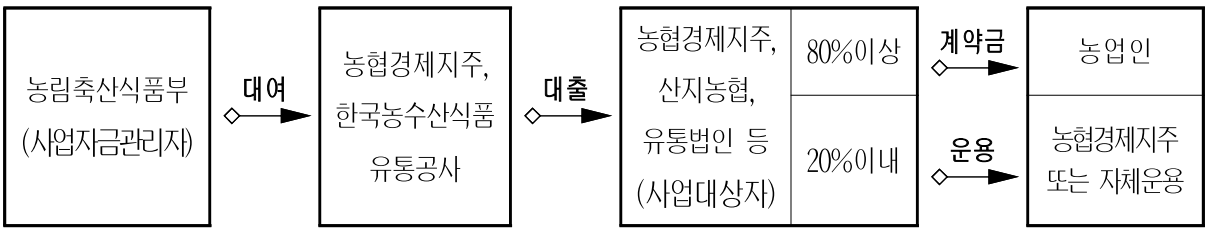

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89,150	96,851	96,851	**96,851**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민호)☎(044-201-22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매시장 관계자 등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수매·매취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도매유통 관계자(도매시장, 공판장 등)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도매유통 활성화 유도
사업기간	'9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국고융자 100%(금리 0~3%, 1년 만기 상환) * 융자조건 - 도매시장 출하촉진: (고정금리) ① 선도금: 1.5%, ② 결제자금: 3.0%(*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적용), ③ 대금정산조직: 0%(무이자), ④ 정가·수의매매: 1.5%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고정금리) ① 선도금: 1.5%, ② 결제자금: 3.0%(*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적용), ③ 정가·수의매매: 1.5% - 화훼 유통개선지원: (고정금리) ① 선도금: 1.5%, ② 결제자금: 농업경영체 2.5%, 조합 등 일반업체 3.0%(*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적용) - 농산물 수매지원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조합 등 일반업체 3.0% (변동금리) 적용 가능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18) 96,851백만원 → ('19) 96,851 (전년 동)

○ 도매시장출하촉진 : ('18) 45,000백만원 → ('19) 45,000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등 45,000백만원

- (선도금) 2,000백만원 = 20개소×100백만원×100%
- (결제자금) 6,000백만원 = 20개소×300백만원×100%
- (대금정산조직) 10,000백만원 = 1개소×10,000백만원×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7,000백만원 = 36개소×750백만원×100%

○ 공판장(청과)출하촉진 : ('18) 20,000백만원 → ('19) 20,000

▪ 공판장에 결제자금, 선도금 등 20,000백만원

- (선도금 및 결제자금) 3,000백만원 = 6개소×500백만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17,000백만원 = 20개소×850백만원

○ 화훼유통 개선지원 : ('18) 15,000백만원 → ('19) 15,000

▪ 화훼 공판장 결제자금 등 지원을 위한 15,000백만원

- (aT공판장 결제자금 등 지원) 13,000백만원 = 1개소×13,000백만원×100%
- (농협공판장 결제자금 등 지원) 2,000백만원 = 10개소×200백만원×100%

○ 농산물 수매지원 : ('18) 16,851백만원 → ('19) 16,851

▪ 밭작물(콩·보리·고구마 등), 국산밀 가공업체에 수매자금 지원을 위한 16,851백만원

- (aT 수매지원) 13,851백만원
  - 맥류(보리·밀), 두류, 고구마 등 30개소×461.7백만원×100%=13,851
- (농협 수매지원) 3,000백만원
  - 맥류(보리·밀), 두류, 고구마 등 30개소×100백만원×100%=3,000

□ 지원 필요성

○ 도매시장·공판장 등 농산물 도매유통 관계자에 결제자금, 선도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및 도매유통활성화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필요

○ 경매제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89,150	96,851	96,851	96,851	-	-
▪ 도매시장출하촉진	47,085	45,000 [(선도금: 법인 20개소 ×100백만×100%) + (결제자금: 법인 20개소 × 300백만 ×100%) + (대금정산 조작: 1개소 × 10,0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법인 36개소 × 750백만×100%)]	45,000 [(선도금: 법인 20개소 ×100백만×100%) + (결제자금: 법인 20개소 × 300백만 ×100%) + (대금정산 조작: 1개소 × 10,0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법인 36개소 × 750백만×100%)]	45,000 [(선도금: 법인 20개소 ×100백만×100%) + (결제자금: 법인 20개소 × 300백만 ×100%) + (대금정산 조작: 1개소 × 10,0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법인 36개소 × 750백만×100%)]	-	-
▪ 공판장(청과)출하촉진	19,800	20,000 [(선도금 및 결제자금: 6개소 × 500백만 ×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0개소 × 850백만×100%)]	20,000 [(선도금 및 결제자금: 6개소 × 500백만 ×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0개소 × 850백만×100%)]	20,000 [(선도금 및 결제자금: 6개소 × 500백만 ×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0개소 × 850백만×100%)]	-	-
▪ 화훼유통개선지원	11,949	15,000 [(결제자금: 농협공판장 4개소 × 500백만 ×100%) + (결제자금: aT공판장 1개소 × 13,000백만×100%)]	15,000 [(결제자금: 농협공판장 4개소 × 500백만 ×100%) + (결제자금: aT공판장 1개소 × 13,000백만×100%)]	15,000 [(결제자금: 농협공판장 4개소 × 500백만 ×100%) + (결제자금: aT공판장 1개소 × 13,000백만×100%)]	-	-
▪ 농산물수매지원	10,316	16,851 [(aT수매지원: (밀): 10천톤 × 1,000천원/톤 × 100%, (두류·잡곡류) 1천톤 × 2,851천원/톤 × 100%, (서류) 2천톤 × 500천원/톤 × 100%)] + [(농협수매지원 (보리) 1천톤 × 1,000천원/톤 × 100%, (콩) 1천톤 × 2,000천원/톤 × 100%)]	16,851 [(aT수매지원: (밀): 10천톤 × 1,000천원/톤 × 100%, (두류·잡곡류) 1천톤 × 2,851천원/톤 × 100%, (서류) 2천톤 × 500천원/톤 × 100%)] + [(농협수매지원 (보리) 1천톤 × 1,000천원/톤 × 100%, (콩) 1천톤 × 2,000천원/톤 × 100%)]	16,851 [(aT수매지원: (밀): 10천톤 × 1,000천원/톤 × 100%, (두류·잡곡류) 1천톤 × 2,851천원/톤 × 100%, (서류) 2천톤 × 500천원/톤 × 100%)] + [(농협수매지원 (보리) 1천톤 × 1,000천원/톤 × 100%, (콩) 1천톤 × 2,000천원/톤 × 100%)]	-	-
□ 비목(합계)	89,150	96,851		96,851	-	-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9,150	96,851		96,851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 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 공판장의 산지집하와 대금정산 기능 강화('90~)
- 도매시장 등에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출하촉진자금 지원('90~)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치('08.1)
- 농산물 산지-소비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마련('08.3)
- 유통·외식·식품업체, 산지유통조직, 정부 공동으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08.3)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13.2) : 34.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34-3.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2,960	1,817	2,025	1,622	1,273	968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17) 높은 정책금리, 담보부족 및 일부 사업자들의 중도 사업포기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025 (1,455)	- (-)	- (-)	2,025 (1,455)	**1,455** **(1,455)**	- (-)	569 (-)
'16년	1,622 (755)	- (-)	- (-)	1,622 (755)	**755** **(755)**	- (-)	866 (-)
'17년	1,273 (891)	- (-)	- (-)	1,273 (891)	**891** **(891)**	- (-)	382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높은 금리로 인해 정책자금 수요가 부진하므로 금리 인하 등 방안마련 필요('17년 결산 상임위)

⇒ (조치사항) 대상자 및 한도액 확대 등 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선도금 금리 개선

2019년 자금별 선도금 지원조건 개선

자금명		**도매시장 출하촉진**	**공판장 출하촉진**	**화훼유통개선 (aT 공판장)**	**화훼유통개선 (농협공판장)**
최종수혜자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지원 금리	당 초	연 1.5%	연 3.0%	연 2.5%	연 3.0%
	개선	연 1.5%	연 1.5%	연 1.5%	연 1.5%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정가·수의매매 실적은 국내산 농산물 거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하고,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대상에서 수입농산물 배제 필요('16,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감사)

⇒ (조치사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실적지표 변경('16)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 * 소비지유통활성화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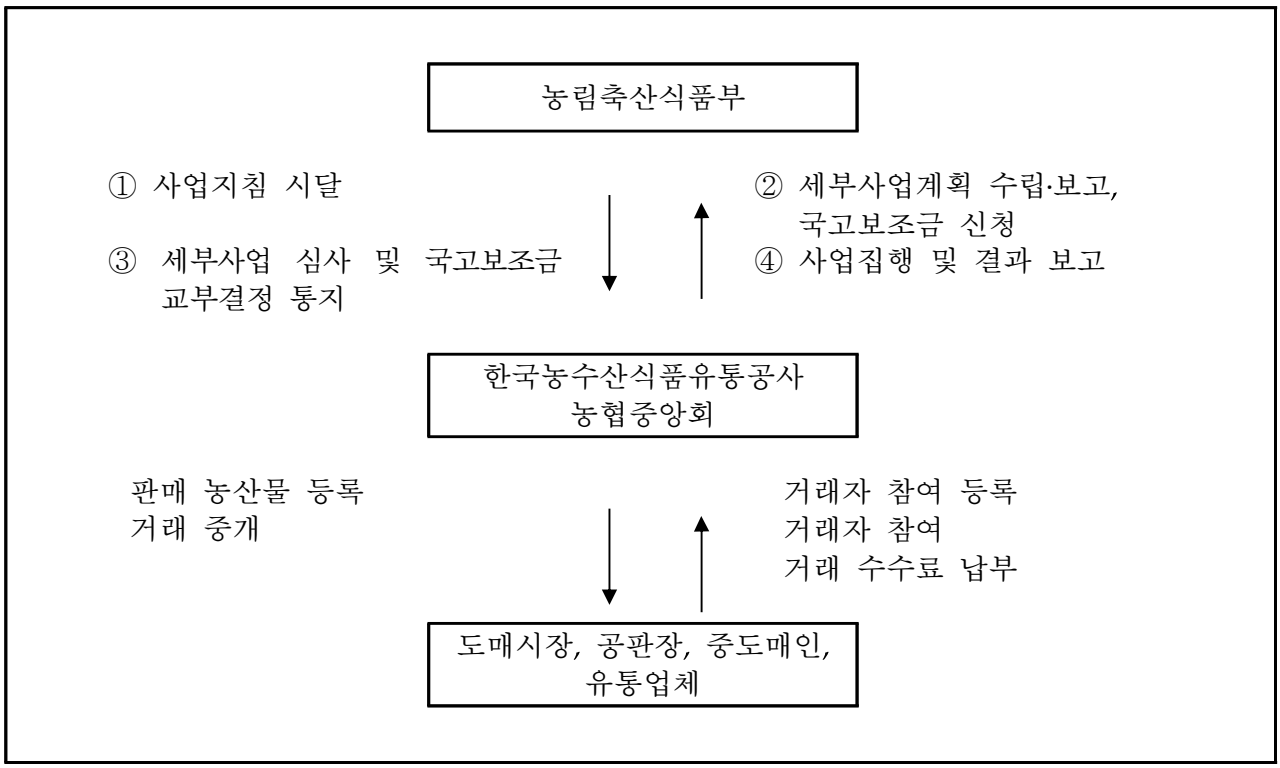

14.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재량, 계속)
15.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당초	수정(A)	(B)	(B-A)	%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보조/융자)	14,436	24,527	22,093	**24,076**	**1,983**	**9.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8,245	12,587	11,196	**13,758**	**2,562**	**22.9**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6,191	11,940	10,897	**10,318**	**△579**	**△5.3**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민호)☎(044-201-22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하역기계화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가락시장) '09년~'21년, (수원시장) '17년~'20년, (안동시장) '18년~'20년
총사업비	· (가락시장) 7,493억원(국비 2,248억원) · (수원시장) 1,061억원(국비 318억원) · (안동시장) 222억원(국비 67억원) · (구리시장) 433억원(국비 130억원)
사업규모	(가락시장) 531,830㎡, (수원시장) 58,940㎡, (안동시장) 34,559㎡
지원조건	보조+융자 국비 70%(보조 30, 융자 40), 지방비 3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 3.0%,변동금리(시중금리 - 1%p) 선택 가능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다만, 가락시장은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출취급기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보조> : ('18) 11,940백만원 → ('19) 10,318

<융자> : ('18) 12,587백만원 → ('19) 13,758

○ 수원시장 시설현대화: ('18) 17,943백만원 → ('19) 15,842

▪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 1개소x22,631백만원x70%(보조 30, 융자 40)

- (보조) ('18) 7,690백만원 → ('19) 6,789
- (융자) ('18) 10,253백만원 → ('19) 9,053

○ 안동시장 시설현대화: ('18) 500백만원 → ('19) 3,594

▪ 공사비 등 : 1개소x5,134백만원x70%(보조 20, 융자 50)

- (보조) ('18) 214백만원 → ('19) 1,540
- (융자) ('18) 286백만원 → ('19) 2,054

○ 구리시장 시설현대화: ('18) -백만원 → ('19) 4,640

▪ 설계비 등 : 1개소x6,629백만원x70%(보조 20, 융자 50)

- (보조) ('18) -백만원 → ('19) 1,989
- (융자) ('18) -백만원 → ('19) 2,651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	'19계획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융자)	24,527	24,076
▪경기수원시장	17,943 (1개소x25,633백만x70%)	15,842 (1개소x22,631백만x70%)
▪경북안동시장	500 (1개소x714백만x70%)	3,594 (1개소x5,134백만x70%)
▪경기구리시장	-	4,640 (1개소x6,629백만x70%)

□ 지원 필요성

○ '85~'04년에 걸쳐 전국 32개소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설치된 후 운영되었으나 시설노후화로 물류 효율성 제고 등에 어려움

*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15년 이상된 도매시장이 18개로 과반수 차지

○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품질·신선도 등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저온저장고, 가공·포장 등 상품화시설 등)과 다양한 유통 확충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보조/융자)	**14,436**	**24,527**	**22,093**	**24,076**	**1,983**	**9.0**
▪ 서울가락시장	3,929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5,613백만×70%)	6,084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8,691백만×70%)	3,650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5,215백만×70%)	-	△3,650	순감
▪ 경기수원시장	10,507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15,010백만×70%)	17,943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25,633백만×70%)	17,943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25,633백만×70%)	15,842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22,6311백만×70%)	△2,101	△11.7
▪ 전북전주시장	-	-	-	-	-	-
▪ 경북안동시장	-	500 (시설부대비 1개소×714백만×70%)	500 (시설부대비 1개소×714백만×70%)	3,594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5,134백만×70%)	3,094	618.8
▪ 경기구리시장	-	-	-	4,640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6,629백만×70%)	△4,640	순증
□ 비목(합계)	**14,436**	**24,527**	**22,093**	**24,076**	**1,983**	**9.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6,191	11,940	10,897	10,318	△1,755	△23.4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245	12,587	11,196	13,758	3,738	33.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

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 정산·운영 및 시설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추진경위

- ('04.12)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발표 : 가락시장 등 주요도매시장 시설개선 보완 강구
- ('07.12)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 ('08.02)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 농업경쟁력 강화 과제 내에 포함
- ('13.0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농산물유통개선 과제 내에 포함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보조/융자)	465	757	167	71	164	245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257	433	92	35	82	126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208	324	75	36	82	11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7) 전주도매시장 지방비 미확보로 전액(20억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7** **(167)**	- (84)	- (-)	167 (251)	**167** **(192)**	- (59)	- (-)
'16년	**71** **(71)**	- (59)	- (-)	71 (130)	**71** **(99)**	- (31)	- (-)
'17년	**164** **(144)**	- (31)	- (-)	164 (175)	**144** **(119)**	- (55)	20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총사업비 및 완공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관리 필요('17년 예산안 예정처 분석보고)

⇒ (조치사항) 시설정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 최소화

- (지적내용) 총사업비 및 완공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관리 필요('17년 상임위 결산검토보고)

⇒ (조치사항) 시설정비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관리 만전을 기해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 최소화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0)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평가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 축소 및 융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검토

⇒ (조치사항)

▪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이용패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 기존 추진사업은 감축이 되면 사업추진계획 진행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사업부터 사업내용 전환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 오사카 도매시장(本場) 재건축(1990~2002년)

○ 삿뽀로 도매시장 재건축(1998~2006년)

○ 쯔끼지 도매시장 이전(2007~11년) * 일본 최대 수산시장

○ 동경 오다 도매시장 시설 보완(2003.8월부터) * 일본 최대 청과시장

○ 삿포로 도매시장의 상물 분리 전자상거래('06.7.17 시작)

○ 동경도 요도바시 도매시장(신주쿠 소재)의 저온경매장 설치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40%, 나머지의 80% 범위내 융자(3~5년 거치 15~25년 상환)

<유럽>

○ 대상 시장 : 이탈리아리 신로마 도매시장(이전) 및 밀라노(시설), 스페인 바르셀로나(리모델링), 프랑스 헝지스(재건축)

○ 시설개선 내역

- 시장 내 통행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동선구조 개선
- 점포 내 저온시설, 점포 복층구조의 사무실, 가변적인 형태
- 파레트 상하차를 위한 점포 외부 데크시설 설치
- 물류시설, 집배송시설, 포장·가공시설 설치
- 시장 건물 내 공기오염 소음방지을 위한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진입을 가급적 억제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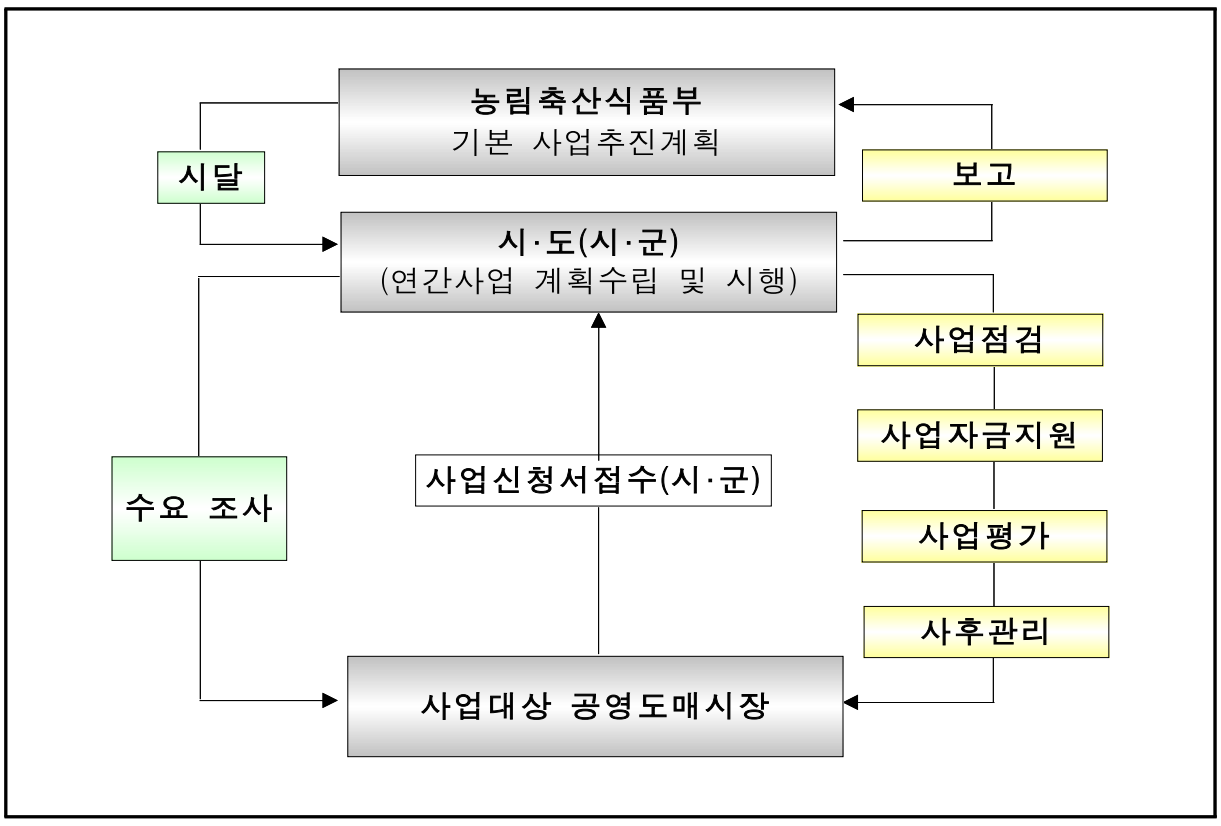

16.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18,973	19,418	19,418	**19,418**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 당 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산업과장(서준한), 사무관(손경문, ☎044-201-223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삼 및 특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괄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개선, 농가 소득 보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인삼·특용작물 계약재배자금 및 인삼종자·특용작물 수매자금 지원
사업기간	'04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7년까지 인삼계열화 면적 3,201ha
지원조건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계약재배(인삼) :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5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 계약재배(특용작물):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 수매사업(인삼종자):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 수매사업(특용작물):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인삼특용작물계열화 : ('18) 19,418백만원 → ('19) 19,418백만원

- 계약재배 : 17,598백만원
  - · 인삼 : 627ha × 33백만원/ha × 80% = 16,553
  - · 특용작물 : 297ha × 4.4백만원/ha × 80% = 1,045
- 수매사업 : 1,820백만원
  - · 인삼종자 : 20톤 × 50백만원/톤 × 80% = 800
  - · 특용작물 : 220톤 × 5.8백만원/톤 × 80% = 1,020

□ 지원 필요성

○ 전매제 폐지('95년)·민영화('98년) 이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규모는 3.5배 성장하였으나, '10년 이후 정체상태

* 생 산 액 : ('98) 3.1천억원 → ('00) 3.7 → ('05) 5.8 → ('10) 9.3 → ('13) 9 → ('17) 8
* 재배면적 : ('00) 12.4천ha → ('05) 14.1 → ('10) 19 → ('13) 15.8 → ('17) 14.8
* 생 산 량 : ('00) 13.6천톤 → ('05) 14.6 → ('10) 26.9 → (13) 22.0 → ('17) 23.3

○ 침체된 인삼·특용작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가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가공업체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인삼·특용작물을 공급하는 계열화사업 지원 구축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인삼특용작물계열화	**18,973**	**19,418**	**19,418**	**19,418**	**-**	**-**
▪ 계약재배	16,834	**17,598** (627ha×33백만×80%)+(297ha×4.4백만×80%)	**17,598** (627ha×33백만×80%)+(297ha×4.4백만×80%)	**17,598** (627ha×33백만×80%)+(297ha×4.4백만×80%)	-	-
▪ 수매사업	2,139	**1,820** (20톤×50백만×80%)+(220톤×5.8백만×80%)	**1,820** (20톤×50백만×80%)+(220톤×5.8백만×80%)	**1,820** (20톤×50백만×80%)+(220톤×5.8백만×80%)	-	-
□ 비목(합계)	**18,973**	**19,418**	**19,418**	**19,418**	**-**	**-**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8,973	19,418	19,418	19,418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 추진경위

- 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출하장려 및 가공용 민간수매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단기 융자금으로 인삼재배 및 사업특성에 맞지 않고, 안전성 미확보로 고려인삼의 품질저하 및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지원효과가 낮았음
- '04년부터 출하장려 사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수매지원사업을 계열화 사업으로 개선하여 지원
- '10년부터 약용작물계열화사업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인삼특용작물계열화	571	186	187	190	190	19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 '14년 이전 인삼종자 국외유출로 인한 가격급등 현상 완화로 인삼종자 수매사업 수요 감소 및 높은 정책금리(3%)로 인한 약용작물사업 수요 감소

* 인삼종자 가격: ('13년) 10만원/kg → ('15년) 3만원/kg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87 (187)	- (-)	- (-)	187 (187)	174 (158)	- (-)	13 (29)
'16년	190 (190)	- (-)	- (-)	190 (190)	190 (190)	- (-)	- (-)
'17년	190 (190)	- (-)	- (-)	190 (190)	190 (19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약용작물 융자 상환기간 및 약용작물계열화 계획 조정 필요 ('16년 결산, 예결위)

⇒ (조치사항) 특용작물 융자 상환기간을 기존 1년 거치 상환에서 '18년부터 3년 거치 상환으로 완화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인삼 및 약용작물 수매사업 융자금리 일원화 필요('16년, 감사원)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0)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수립·시행)
사업지침통보
자금지원
자금배정요청
결과보고
농협경제지주
(세부운용지침 수립)
사업자선정
수요조사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금지원
결과보고
사업평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일반업체 등)
대상농가통보
수요조사
계약재배신청
계약체결,자금지급
인삼 등 재배농가

17. 농식품유통 교육훈련(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2,359	2,289	2,289	**2,289**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동환)☎(044-201-22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 유통 종사자에 대한 장·단기 교육 실시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42과정 5,900여명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55~100%) * 교육생 자부담 0~45%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참여기관) 위탁교육기관(공모선정)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식품유통교육훈련 사업비 **2,289**백만원

▪ 일반(단기) 교육 : 4,600명 × 140천원 × 100% = 644백만원

▪ 전문(장기) 교육 : 14기수×144백만원×55%+운영비346백만원= 1,455백만원

▪ 교육정보화 : 교육정보시스템 및 강의영상시스템 운영 190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백만원

- 강의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비 :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식품유통교육은 유통개선 관련 정부정책의 확산 및 현장 적용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

-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농식품산업 유통종사자(농업인, 산지조직, 직거래, 도매, 유통·식품·수출업체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방향, 최신 산업동향, 관련법령, 실무향상 등 관련 교육사업 지속 추진

○ 농식품유통은 종사자는 물론 국민경제 · 식생활 전반과 관련된 분야로 영세 농어업인과 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유통교육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시 자발적인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정부의 지원이 없을 시 교육 참여율 저조로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농식품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온라인 고객 서비스 및 동영상강의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사업명	2,359	2,289	2,289	2,289	-	-
▪ 일반(단기)교육	644	644 (4,600명×140천원×100%)	644 (4,600명×140천원×100%)	644 (4,600명×140천원×100%)	-	-
▪ 전문(장기)교육	1,455	1,455 (14개수×144백만원×55%+ 운영비 346백만원)	1,455 (14개수×144백만원×55%+ 운영비 346백만원)	1,455 (14개수×144백만원×55%+ 운영비 346백만원)	-	-
▪ 교육정보화	190	190 (시스템 유지보수 134,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 56)	190 (시스템 유지보수 150,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 40)	190 (시스템 유지보수 150,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 40)	-	-
□ 비목(합계)	2,289	2,289	2,289	2,289	-	-
○ 민간경상보조(320-01)	2,289	2,289	2,289	2,289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교육훈련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추진경위

- '85 : 농산물유통 일반교육 실시(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개원)
- '86 : 농산물유통 교육훈련 근거 마련(농안법 제75조)
- '04 : 농산물유통 전문교육 개설(지역별 전문교육기관 운영)
- '13 : 산지조직 현장교육, 장기종합과정(1년 과정) 개설, 유통연구소 운영
- '19 : 푸드플랜 아카데미 신설 및 경매사 의무교육 실시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식품유통교육훈련	21	21	24	24	24	2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16):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감액조정(210백만원)

*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 증액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류 등 소비감소 대응

(단위 :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4** **(24)**	- (-)	- (-)	24 (24)	**24** **(22)**	- (-)	- (-)
'16년	**24** **(22)**	- (-)	△2 (-)	22 (22)	**22** **(20)**	- (-)	- (2)
'17년	**24** **(24)**	- (-)	- (-)	24 (24)	**24** **(21)**	- (-)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0)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	aT 농식품유통교육원	➡	농식품부 · aT
유통교육 기본계획 수립 관련예산 지원		세부계획 수립 유통교육 추진		교육성과 점검 사업비 정산

18.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지원(융자)	4,628	8,360	8,360	**8,360**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식생활소비정책과장(정혜련), 사무관(곽병배)☎(044-201-22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융자자금 지원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융자(국비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협조합·일반업체: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의 구매자금 융자지원 : 8,360백만원

- (산출내역) 1,045백만원 × 10개소 × 80%(국고융자) = 8,36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식품 생산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 영농법인, 지자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기적 공급망 구축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13.3.22 VIP 업무보고)

* 농식품부(생산자)·교육부(소비자) 학교급식 MOU체결('13.5.7.)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연중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농산물 등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확시기에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

-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식품을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여 생산지~학교급식지원센터~학교로 유통단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

- 직거래·계약재배 등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지역 생산자단체·영농법인과의 유기적 공급망 구축 확대는 지역 농식품의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우수 농식품의 소비촉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융자)	**4,628**	**8,360**	**8,360**	**8,360**	-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4,628	8,360 (10개소×1,045백만×80%)	8,360 (10개소×1,045백만×80%)	8,360 (10개소×1,045백만×80%)	-	-
□ 비목(합계)	**4,628**	**8,360**	**8,360**	**8,360**	-	-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4,628	8,360	8,360	8,36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재배·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재배·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 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방안」 마련('10.12.15.)
- 직거래·공동구매·사이버거래에 기반한 우수 농수산물 공급망 구축 지원
-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공급망 구축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11년도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확대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지자체에 대해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농식품부 사업을 일괄 지원(원물확보, 직거래매취, 저온저장시설, 냉장유통차량, 친환경·농어촌 체험, 컨설팅 등)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 보고('12.8.31. 총리 주재 서민생활 점검회의 시 교과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고)

  * '13년 신규사업으로 지원 시작

- 학교급식을 통한 소비자와 농촌의 연계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영농법인과 지자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기적 공급망 구축 확대가 필요('13.3.22. VIP 업무보고)

- 안전한 우수농식품 공급확대 및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식품부·교육부 MOU 체결('13.5.7.)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15.3.27),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15.9.15)

  * 우수한 식자재 학교급식 공급,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의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거래 지원 기준 마련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융자)	220	200	110	88	83.6	83.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15) 융자대상업체가 연도말에 융자를 포기하여 추가업체 선정 불가능
- ('16) 융자대상업체가 연도말에 담보여력 부족으로 융자 포기
- ('17) 융자대상업체(2개소)에 입찰법령 위반 등으로 대출중단 및 감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0**	-	-	110	**109**	-	1
	(110)	(-)	(-)	(110)	**(109)**	(-)	(1)
'16년	**88**	-	-	88	**66.5**	-	21.5
	(88)	(-)	(-)	(88)	**(66.5)**	(-)	(21.5)
'17년	**83.6**	-	-	83.6	**46.3**	-	37..3
	(83.6)	(-)	(-)	(83.6)	**(46.3)**	(-)	(37.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사항) 집행률 제고 및 지원업체 선정방식 개선('17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시정요구, 강석진·경대수 의원)

⇒ (조치사항) ① 융자실행 시기를 앞당기고(4월 → 3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②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융자실행 선착순 지원방식으로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신규 희망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사원 지적: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75) * 식품산업육성(농안)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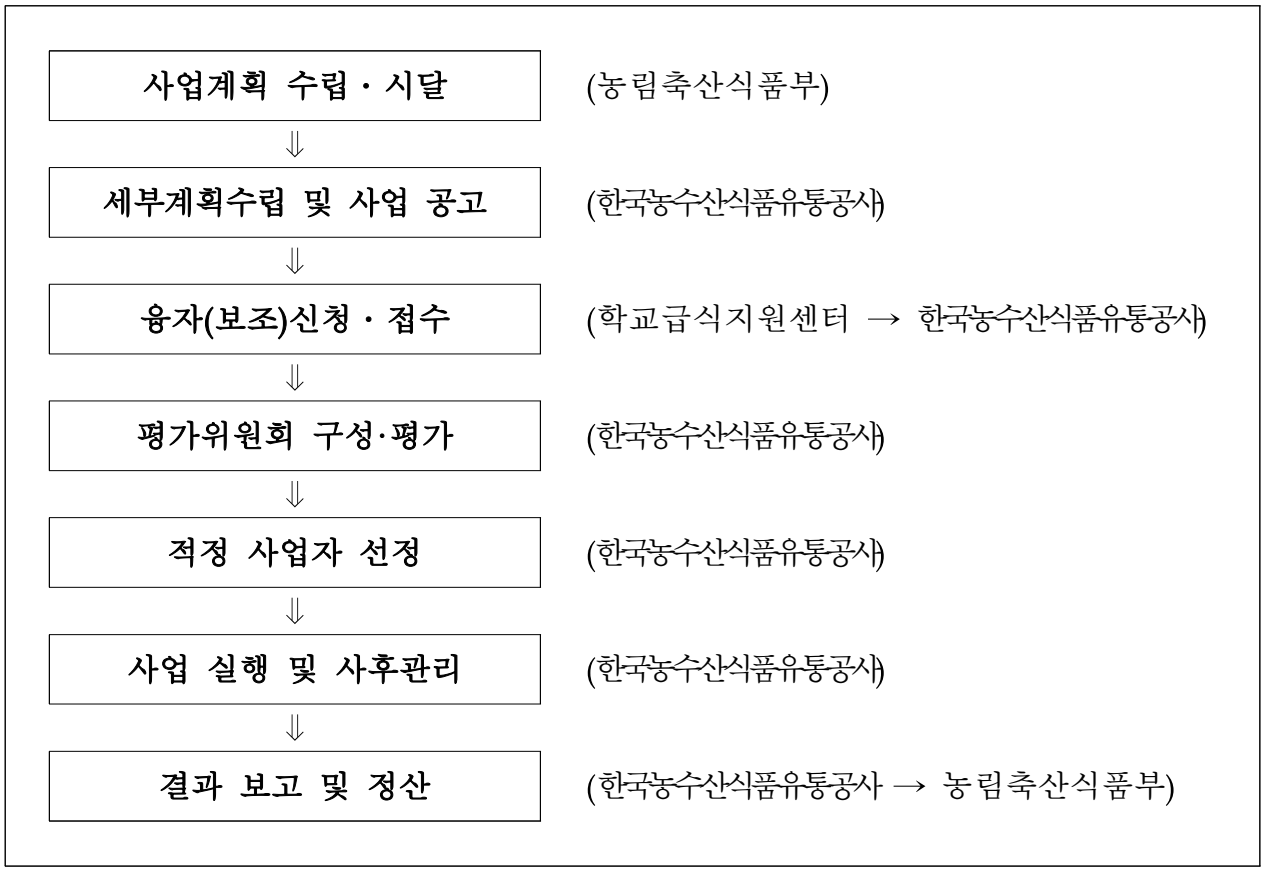

19.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28,321	34,727	30,212	**30,959**	**747**	**2.5**

* 사업코드: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350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서기관 허동웅☎(044-201-22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통합마케팅조직 취급액 : ('16) 3.6조원 → ('17) 3.7 → ('22) 5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주산지 권역별로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위한 관련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인삼산업 전문 거점 조성

- 고품질 인삼제품 등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컨설팅비 지원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지원 목표 : ('17) 2개소, ('18) 1개소, ('20) 2개소

○ (저온유통체계 구축)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식품원료 제조업계의 수요를 고려,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 확보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유통조직(누계) :('17년) 1개소 →('18년) 4개소 → ('22년) 9개소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기간	'14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산지유통시설 연간 17개소 내외 보완 등
지원조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일반APC(보완):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규)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품목광역조직) 국고보조 50%, 지방비10, 자부담 40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 지원> - 생산유통시설: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컨설팅: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인삼검사소현대화(국비 100%) <저온유통체계구축> - 산지시설 및 저온차량: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행정경비(국비 100) - 화훼류습식유통: 민간보조(국비 50%, 자부담 50%)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 '18년까지 지원 후 종료('19년부터 일반APC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30,959백만원

▪ 내역사업 2년차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2.5% 증액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18) 19,665백만원 → ('19) 21,905

▪ 일반APC 지원: 17,485백만원(전년 동)

- 3,429백만원(평균) × 17개소 × 30%(국고보조) = 17,485

* 지원조건(국고:지방비:자부담): (보완)30:30:40, (신규)40:30:30, (품목광역)50:10:40, (공공유형) 국고50:지방50

▪ 성주군 APC 지원: 3,920백만원(2년차 소요액 반영)
- 80억원 × 70%(국고보조) × 70%(2년차) = 3,920백만원
* '18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 증액 예산으로 '19년도 2년차로 사업 마무리
▪ 행정경비(사업대상자 선정평가 등): 500백만원(전년 동)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 ('18) 1,145백만원 → ('19) 1,145
▪ 시설현대화: 600백만원(전년 대비 300 감)
- (계속) 2,000백만원 × 1개소 × 30%(국고보조) × 50%(2년차) = 300
- (신규) 2,000백만원 × 1개소 × 30%(국고보조) × 50%(1년차) = 300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30백만원(전년 대비 15 감)
- (계속) 100백만원 × 1개소 × 30%(국고보조) × 50%(2년차) = 15
- (신규) 100백만원 × 1개소 × 30%(국고보조) × 50%(1년차) = 15
▪ 인삼검사소현대화: 515백만원(전년 대비 315 증)
- 인삼류 검사장비(분석기기 등) 교체비용 200백만원 × 100%(국고보조)
- 국정검사지원(운영비) 315백만원 × 100%(국고보조)
* 분석 전문인력 인건비 250백만원, 분석 소모품 65백만원

< 저온유통체계구축 > ('18) 9,767백만원 → ('19) 3,759
▪ 산지저온시설 : 3,330백만원
- 148백만원 × 75개소 × 30%(국고보조) ≒ 3,330
▪ 저온수송(PCM 축냉식차량 포함) : 312백만원
- 1톤~5톤 이하 : 52백만원 × 20대 × 30%(국고보조) = 312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예산 미편성(일반APC로 통합)
▪ 화훼류 습식유통 지원 : 100백만원
- 습식대차: 900천원 × 80개 × 50%(국고보조) = 36
- 습식물통: 30천원 × 2,000개 × 50%(국고보조) = 30
- 화훼포장망: 9천원 × 4,450개 × 50%(국고보조) ≒ 20
- 수명연장제: 400천원 × 70개 × 50%(국고보조) = 14
▪ 행정경비(사업자 사후관리 등): 17백만원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 ('18) 2,150백만원 → ('19) 2,150
▪ 700백만원(평균) × 10개소 × 30%(국고보조) = 2,100백만원
▪ 행정경비(사업대상자 선정평가 등) : 50백만원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 ('18) 2,000백만원 → ('19) 2,000
▪ 2,000백만원 × 3개소 × 50%(국고보조) × 50%(2년차) = 1,500백만원
▪ 2,000백만원 × 1개소 × 50%(국고보조) × 50%(1년차) = 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개편·정착된 소비지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 필요

○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농협·농업법인)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여 공동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산지유통시설(APC)은 선별·포장·저장·1차 가공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공동판매를 위한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 담당

○ 최근 산지 조직화 진전에 따라 공동출하·판매가 증가하여 통합마케팅의 핵심 시설인 APC에 대한 수요 증가

⇒ AP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공동출하·판매를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유통계열화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개선 촉진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

○ 시설현대화 및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고품질 인삼제품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려인삼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인삼산업 생산액: ('00) 3,728억원 → ('11) 10,666 → ('12) 10,831 → ('20P) 20,000

* 인삼 수출액: ('10) 124백만$ → ('11) 189 → ('12) 151 → ('13) 175 → ('20P) 200

○ 인삼검사소 현대화

-「인삼산업법」 및「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삼류의 품질관리, 검사역량 강화 및 제조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검사기관의 검사장 확충 및 검사기기 보강 필요

< 저온유통체계구축 >

○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지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저온상태에서 유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의 단위시설 지원 위주에서 예냉 → 저온저장 → 저온선별 → 저온수송을 통해 일관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 공급이 가능

○ 또한,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따라 직거래, 로컬푸드 등 신유통 지원을 위해 신선도 유지를 통한 차별화된 공급 시스템 필요성이 증대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

○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활성화 필요

-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선호가 고급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 식품소재* 필요성 증대

* (주요유형) 농축액(과즙), 반건조(슬라이스 건조), 동결건조(분말), 기능성 첨가물 등

- 과잉 생산된 농축산물의 소재·반가공화로 수급조절 애로 해소

* 양파 vs 양파즙 또는 양파분말(*부피가 줄어들면서 장기저장이 가능하고, 활용도는 상승)

○ 한·중 FTA 등 시장개방 본격화에 대비,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품목으로서의 소재 및 반가공제품의 필요성 제기

- 수입 시장이 본격화되면 완제품보다는 반가공제품의 시장 잠식이 더욱더 심화될 우려

* 고추 관세(270%) vs 냉동고추(45%) / 원료를 혼합한 기타 반가공제품 수입 대다수 차지

- 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막혀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보다는 소재 및 반가공제품의 육성을 통해 우회 수출 전략 필요

* 김치 vs 김치 소스 / 유자·매실 vs 유자·매실 진액 / 쌀 vs 쌀 퓨레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

○ 친환경농산물 산지의 조직화 미흡으로 생산농가(68천호)는 약 155개 품목을 중간유통업체(33%), 지역농협(27%) 및 도매시장(15%)을 통해 주로 출하

○ 이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물량확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

* 친환경 전문 판매장/판매액: ('10) 4,122개소/7,544억원 → ('15) 5,366/13,521

** 일반농산물과의 유통마진율 차이(%): 감자 8.0, 오이 12.5, 사과 12.0, 쌀 37.2

⇒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지원 필요

<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28,321	34,727	30,212	30,959	747	2.5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일반 APC) 지원	17,985	19,665 보유(17개×3,429백만원×30%)+행정경비(500백만원) (성주군 APC) 8,000백만원×70%(국비)×30%(1년차)	19,665 보유(17개×3,429백만원×30%)+행정경비(500백만원) (성주군 APC) 8,000백만원×70%(국비)×30%(1년차)	21,905 보유(17개×3,429백만원×30%)+행정경비(500백만원) (성주군 APC) 8,000백만원×70%(국비)×70%(2년차)	2,240	11.4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1,280	1,145 시설(2,000백만원×2개소×30%×50%(2년차)+2,000백만원×1개소×30%×50%(1년차))+컨설팅(100백만원×2개소×30%×50%(2년차))+컨설팅(100백만원×2개소×30%×50%(1년차))+인삼검사소(200백만원×100%)	830 시설(2,000백만원×1개소×30%×50%(2년차)+2,000백만원×1개소×30%×50%(1년차))+컨설팅(100백만원×1개소×30%×50%(2년차))+컨설팅(100백만원×2개소×30%×50%(1년차))+인삼검사소(200백만원×100%)	1,145 시설(2,000백만원×1개소×30%×50%(2년차)+2,000백만원×1개소×30%×50%(1년차))+컨설팅(100백만원×1개소×30%×50%(2년차))+컨설팅(100백만원×1개소×30%×50%(1년차))+인삼검사소(검사장비 200백만원×100%+국정검사지원315백만원×100%)	315	38.0
▪ 저온유통체계구축	6,561	9,767 산지저온시설(148백만원×75개소×30%)+저온수송(52백만원×20대×30%)+채소류 출하조절(6,000백만원)+화훼류습식유통(113백만원)+행정경비 12백만원	5,567 산지저온시설(148백만원×75개소×30%)+저온수송(52백만원×20대×30%)+채소류 출하조절(1,800백만원)+화훼류습식유통(113백만원)+행정경비 12백만원	3,759 산지저온시설(148백만원×75개소×30%)+저온수송(52백만원×20대×30%)+화훼류습식유통(100백만원)+행정경비 17백만원	△1,808	△32.5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1,995	2,150 (700백만원×10개소×30%+행정경비 50백만원)	2,150 (700백만원×10개소×30%+행정경비 50백만원)	2,150 (700백만원×10개소×30%+행정경비 50백만원)	-	-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500	2,000 (1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1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	2,000 (1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3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	2,000 (3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1개소×2,000백만원×50%(1년차)×50%(국비))	-	-
□ 비목(합계)	28,321	34,727	30,212	30,959	747	2.5
○민간경상보조(320-01)	582	675	675	982	307	45.5
○민간자본보조(320-07)	650	200	200	200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30	2,045	2,030	2,030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6,559	29,407	27,307	27,747	440	1.6
○기타민간융자금(450-04)	-	2,400	-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저온유통체계구축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 제19대 대통령 공약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

-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제19대 대통령 공약
  - 85. 대통령이 챙기는 농어업(85-4. 친환경 생태농업을 8차 산업으로 육성)
  - 172. 친환경 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172-1.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전략(푸드 플랜)) 수립
- 관련 국정과제
  - 83-2.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육성)

○ 추진경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 '94년에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
- '99년부터 지원대상자를 지자체 및 민간 유통업체까지 확대

* 농산물포장센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사업명칭 변경

- '01년부터 여러 사업으로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관련 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일원화

*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간이집하장시설보완사업을 흡수

- '05년부터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
- '10년부터 광특회계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전환
- '13년부터 산지유통센터 신설지원은 최소화하고 기존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 및 시설통합 등을 중점 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 국내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 영향으로 유통구조가 타 작물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생산기반은 과거 관행적인 재배형태를 답습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

* 외국삼과의 가격경쟁력 열세: 중국산 대비 3~4배, 미국・캐나다산 대비 4배 수준

- 한・미 FTA협상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754.3%)가 철폐되면 국내

인삼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각국 보호주의 경향에 따라 안전성 등 수입요건 강화로 수출여건 불투명

- 생산농가의 조직화·전문화를 통해 고품질 인삼·특용작물 제품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등으로 인삼·특용작물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 한·중FTA 발효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16.3.29)」을 통해 소비·유통·수출·생산기반 등에 분야별 대응책 마련(*장관님 지시)

< 저온유통체계구축 >

- 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업무수행을 위한 T/F 구성(5명, '07.1)
- 저온유통체계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07.8)
- 저온유통체계구축방안 기본방침 확정('07.12)
- 화훼산업발전대책 수립('11.5), 태풍 등에 의한 고랭지배추 가격 파동('10.9)
- 배추 등 저장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비 증액('10.12)
- 무배추 대규모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설('12.12)

< 식품소재 및반가공 산업육성 >

- '07.12.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 '11.9.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14.3.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 수립
- '1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작(3개소)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

- 유통·소비 분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유통 관계자 회의('15.9)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연계한 유통관계자 의견 수렴('15.10.27~10.28)
- 충청남도, 생산자단체(친농연) 대상 세부추진방향 논의('15.12.28)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연계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생산자단체 대상회의('15.12.30)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자본화·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교섭 가능한 산지주체 육성 지원 추진 계획 수립*('16년)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17년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 추진(1개소)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346	323	299	332	34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17년) 일부 사업대상자 포기 및 지자체 지방비 미확보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23**	-	-	323	**321**	-	2
	(321)	(139)	(-)	(460)	**(246)**	(166)	(48)
'16년	**299**	-	-	299	**231**	-	68
	(231)	(166)	(-)	(397)	**(209)**	(174)	(14)
'17년	**332**	-	-	332	**283**		48
	(283)	(174)	(-)	(458)	**(236)**	(215)	(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경제성 평가 강화 ('15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16년부터 사업주체의 참여 확대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고, 선정평가 시 재무건전성 검토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 지원조건 : ('15) 국고40%, 지방30, 자부담 30 → ('16) 국고 30%, 지방 30, 자부담 40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점)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선키스트(미국)>

○ 대규모·자동화 설비에 의한 저장,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포장단위로 고급 상품화

* 1차(색택선별 → 세척(왁스처리) → 건조 → 중량선별)선별 후, 2차 선별·포장화(색택선별 → 중량선별 → 포장)

- 특품뿐 아니라 중·하품까지 수출용, 고급시장용, 저급시장용, 쥬스용 등으로 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화(매출액('01): 821백만불, 수출 247)

<Boscovich 농장(미국 캘리포니아)>

○ 대규모 선별·포장·예냉 및 저온저장 등의 시설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Fresh cut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 미국 파 유통량의 70% 점유

○ 세척장비, 금속탐지기, 컨베어벨트, 소포장라인, 반진공포장시설, 예냉시설 등의 시설을 통해 위생적으로 처리된 고품질상품 출하

<일본 농산물 유통센터>

○ 산지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상인에 대한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선과장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90년대 이후 자동화, 현대화, 규모화 추진

○ 前처리농산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어 주요산지별 공판장의 경우 출하량의 23%가 전처리로 유통(신선편이채소 매출액 급증 : 100억엔 → 200억엔)

(5) 사업추진절차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전반적인 사업시행 기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지(1월초)
↓		
APC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6.20.)
↓		
사업계획서 검토	시·군(시·도)	사업계획조사, 농정심의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제출(6.30.)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7월)
↓		
선정·평가	산·학·연 전문 평가단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평가(7월)
↓		
사업비 심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자별 사업규모 및 총 사업비 심의·조정(8월)
↓		
사업대상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및 총 사업비 확정 통지(사업연도 1월)
↓		
사업시행	시·군	공정상황 관리, 사업비 집행, 정산, 사후관리
↓		
사업종료	사업자	APC운영 및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추진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사업신청(사업자 → 시·군) → 사업계획 심의(시·도) →

시·도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계획 심의(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사업 착수 및 추진(사업자) → 사업 지도감독 및 사업비집행(시·도) →

평가·분석(농림축산식품부)

- 근거 : 인삼·특용 유통시설지원 지침

< 저온유통체계구축 >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전반적인 사업시행 기획
↓		
사업계획 수립	시·도(시·군)	연간사업 계획수립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시·도(시·군)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평가대상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 선정
↓		
사업대상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통지
↓		
사업시행	시·군	사업비 집행, 정산, 사후관리
↓		
사업종료	사업자	사업 추진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식품소재기업)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매칭, 사업신청검토,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농협 등)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매칭, 사업신청검토, 보조금교부신청, 세부사업계획 승인, 사업관리·정산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0. 농산물마케팅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마케팅지원	6,562	8,254	8,254	**8,254**	-	-

* 사업코드: 55 - 20 - 0 - 100 - 101 - 3000 - 3033 - 35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서기관 허동웅☎(044-201-22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지통합마케팅지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농산물소비촉진지원) 국내 과수, 화훼, 차류, 인삼, 잡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소비생활화 및 소비확대 등을 유도하여 관련사업 발전 도모

* 청탁금지법 시행('15)에 대응하여 위축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통합마케팅 조직의 마케팅·홍보 및 산지조직화 지원 ○ 국산 과일, 화훼, 차류, 인삼, 잡곡 소비촉진 지원
사업기간	'14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통합마케팅조직 100개소 내외
지원조건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산지조직: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품목광역조직: 보조(국비 50%), 자부담 50%,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산지평가: 민간보조(국비 100%) ○ 농산물소비촉진: 민간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농산물소비촉진 사업비 8,254백만원(전년 동)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18) 2,450백만원 → ('19) 2,450백만원

-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 100백만원 × 75개소 내외 × 보조 30% = 2,250
- 산지조직 평가 등 : ('18) 200백만원 → ('19) 200백만원

<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 ('18) 5,804백만원 → ('19) 5,804백만원

- 과수: ('18) 2,064백만원 → ('19) 2,064백만원
  - ▷ 과일산업대전: 64백만원
  - ▷ 소포장·신품종 유통소비 활성화 지원: 1,200백만원
  - ▷ 과수소비활성화 마케팅 기획: 800백만원
- 화훼 : ('18) 3,160백만원 → ('19) 3,160백만원
  - ▷ 꽃 생활화 홍보: 1,760백만원
  - ▷ 꽃 생활화 교육 및 소비촉진 기반 조성 : 1,300백만원
  - ▷ 미세먼지 저감식물 발굴 · 홍보 100백만원
- 차류: ('18) 30백만원 → ('19) 30백만원
  - ▷ 한국 차 산업 문화 행사: 30백만원
- 인삼: ('18) 350백만원 → ('19) 350백만원
  - ▷ 인삼소비촉진(고려인삼 소비 대축제): 350백만원
- 잡곡: ('18) 200백만원 → ('19) 200백만원
  - ▷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홍보 100백만원
  - ▷ 잡곡 포장재 개발 및 사용 지원 50백만원
  - ▷ 잡곡 가공식품 콘테스트 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확대에 기여

○ 농산물소비촉진지원

- 국산 과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과수산업 발전
- 건전한 꽃 소비생활화 문화 조성을 위해 대국민 꽃 소비생활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훼산업 발전 도모
- 한·중 FTA 등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녹차의 경쟁력 강화 대안을 모색하고, 한국 차(茶) 문화의 역사성과 정통성 확산 도모
-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인삼의 우수성을 대내외 알려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
- 잡곡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마케팅지원	**6,562**	**8,254**	**8,254**	**8,254**	**-**	**-**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2,450	**2,450**	**2,450**	**2,450**	-	-
- 산지조직 지원	2,250	2,250 (250백만원×30개소×30%)	2,250 (250백만원×30개소×30%)	2,250 (250백만원×30개소×30%)		
- 산지조직 평가	200	200	200	200		
▪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4,112	**5,804**	**5,804**	**5,804**	-	-
- 과 수	2,072	2,064	2,064	2,064		
- 화 훼	1,660	3,160	3,160	3,160		
- 차 류	30	30	30	30		
- 인 삼	-	350	350	350		
- 잡 곡	-	200	200	200		
□ 비목(합계)	**6,561**	**8,254**	**8,254**	**8,254**	**-**	**-**
○민간경상보조(320-01)	4,311	6,004	6,004	6,004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250	2,250	2,250	2,25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 제19대 대통령 공약

▪ (화훼 소비촉진 지원) 113.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 국정과제

▪ (마케팅지원)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추진경위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6.)에 따라 통합마케팅조직 중심 지원체계 구축
- '11년부터 농협 신경분리 등에 따른 유통여건 변화에 따라 1시·군 1유통주체 육성 추진
- 관련 공약

▪ (산지조직 마케팅 지원)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관련 국정과제

▪ (산지조직 마케팅 지원) 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통합마케팅 취급 비중 확대)

<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

- 2011년부터 국산과일·화훼, 녹차 등의 우수성 홍보위해 과일산업대전 추진 및 화훼 관련 전시회 등 홍보사업 추진
- '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과일·화훼소비 변화에 대응하여 국산 과일·화훼 소비촉진 홍보 강화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인삼·잡곡의 우수성 홍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촉진 지원 사업 추가('17. 인삼, '18. 잡곡)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산물마케팅지원	-	36	38	27	65	8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16)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류 거래 감소 및 소비 격감에 따른 꽃 생활화 등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한 210백만원 증액(자체변경)

○ 이월사유: ('15) 메르스 여파로 인한 홍보·마케팅 행사 순연으로 과실브랜드사업 실집행 일부 이월

○ 불용사유: ('15·'17)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당년도 매출감소 등으로 실집행 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	-	-	38	**38**	-	-
	(38)	(0.1)	(-)	(38)	**(30)**	(0.3)	(7)
'16년	**27**	-	2	29	**29**	-	-
	(29)	(0.3)	(-)	(29)	**(24)**	(-)	(4)
'17년	**66**	-	-	66	**66**	-	-
	(66)	(-)	(-)	(66)	**(63)**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및 감사원 지적: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지자체보조 사업방식변경*

* 통합조직의 교육·홍보비 등을 일부 보조하는 현 마케팅지원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사업내용 다양화 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산지조직 마케팅지원>

사업신청(AgriX시스템)	(사업자 → aT)
↓	
신청내역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안) 제출	(aT → 지자체 및 농식품부)
↓	
사업자 확정 및 예산배정 결과 통지	(농식품부 → 지자체 및 aT)
↓	
사업추진계획 제출	(보조사업자 → 관할 지자체)
↓	
사업추진계획 확정	(관할 지자체)
↓	
보조금 교부	(농식품부 → 각 지자체)
↓	
보조사업 시행	(보조사업자)
↓	
사업결과·정산 보고	(각 지자체 → 농식품부)
↓	
사업결과·정산 승인	(농식품부 → 각 지자체)

○ 농산물소비촉진지원

<과수, 화훼, 차류, 인삼, 잡곡>

기본계획 수립 및 통지	(농식품부 → 보조사업자)
↓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보조사업자 → 농식품부)
↓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농식품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시행	(보조사업자)
↓	
사업결과·정산 보고	(보조사업자 → 농식품부)
↓	
사업결과·정산 승인	(농식품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과수: 과수농협연합회
- 화훼: 화훼단체 등
- 차류: 차 관련단체
- 인삼: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잡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1.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 지원	-	2,400	2,400	**2,400**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정현주, ☏ 044-201-226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화훼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거점 산지에 화훼전용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통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화훼류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건립
사업기간	'18~'20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화훼유통센터 2개소 총 200억원(100억원/개소)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연차별 지원비율(국비) :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 4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화훼종합유통센터 2개소 건립을 위한 2년차 사업비 2,400백만원

▪ 산출내역 : 2개소×100억원×40%(국고보조율)×30%(2년차 지원율)

* 화훼종합유통센터 2개소 건립을 위한 3개년('18～'20년) 사업으로 2년차 2,400백만원 예산지원, 2년차 2,400백만원 요구

□ 지원 필요성

○ '22년까지 수도권, 영남권 등에 거점 산지 화훼유통센터 4개소 건립 (화훼산업발전대책 '11.5.)

* '12～'15까지 충청권(충북 음성)에 거점 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운영

○ FTA 수입개방 및 청탁금지법 등 국·내외 유통·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수도권 등 거점 산지에 수입, 보관,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등 기능을 가진 화훼 전용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효율성 제고 및 화훼농가의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 거점 산지에 유통인프라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이 꽃 생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훼산업 발전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 지원	**-**	**2,400**	**2,400**	**2,400**	**-**	**-**
▪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 지원	-	**2,400** [2개소×100억원×40%(국고보조율)×30%(1년차 지원율)]	**2,400** [2개소×100억원×40%(국고보조율)×30%(1년차 지원율)]	**2,400** [2개소×100억원×40%(국고보조율)×30%(2년차 지원율)]	-	-
□ 비목(합계)	**-**	**2,400**	**2,400**	**2,400**	**-**	**-**
○ 자치단체자본보조 (3033-355)	-	**2,400**	**2,400**	**2,4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추진경위

- 화훼산업발전대책('11.5월)의 유통구조 선진화 일환으로 거점 산지 화훼 유통센터 건립 추진지원근거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	-	-	-	-	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8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제출(지자체→농식품부)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농식품부→지자체) → 보조사업시행(지자체) → 사업결과 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업결과 정산승인(농식품부)

22.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4,402	14,705	14,705	**13,215**	**△1,490**	**△10.1**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9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남주)☎(044-201-228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직거래 등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산지·소비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지원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로컬푸드직매장 20개소, 직거래장터 40개소, 1도1대표장터 2개소 등
지원조건	보조 ○ 직매장 지원: 지자체자본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직거래장터 지원: 민간경상보조(국비 70%, 자부담 30) ○ 직거래활성화,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직매장 지원: 직매장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4,200백만원**

- 산출근거 : 20개소 × 700백만원 × 30%

* 지원조건 변경 : ('18) 민간경상보조 30% → ('19) 자치단체자본보조 30%

(보조방식 변경 사유)

○ 자금용도 다양화 : "직매장 설치"라는 자본보조성격의 사업이지만 자금용도가 내부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움

○ 지방비 확보 용이 : 높은 자부담(70%)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므로 지방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직거래장터 지원: 직거래장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50백만원**

- 산출근거 : 70개소 × 50백만원 × 70%

○ 직거래활성화 지원: 교육·홍보·정보화 등 전방위 직거래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65백만원**

- 홍보 : 800백만원(1식 × 800백만원 × 100%)
- 직거래활성화 교육 : 600백만원(1식 × 600백만원 × 100%)
- 직거래경영정보시스템운영 : 200백만원(1식 × 200백만원 × 100%)
-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500백만원(1개소 × 500백만원 × 100%)
- 행정경비 : 165백만원(1식 × 165백만원 × 100%)

○ 사이버거래소 지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거래소 지원비 **3,000백만원**

○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비 **1,200백만원**

- 온라인 직거래활성화지원: 500백만원(1식 × 500백만원 × 100%)
-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지원: 200백만원(1식 × 200백만원 × 100%)
- 농산물판로확대: 500백만원(1식 × 500백만원 × 100%)

○ 전통시장지역농산물판매촉진: 전통시장 내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백만원**

- 산출근거 : 4개소 × 25백만원 × 100%

□ 지원 필요성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는 줄이고 유통비용은 절감**하여 농가 소득은 올리고, 구매가격은 낮춤으로써 농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직거래규모('17): 31,792억원(전체대비 6.8%), ** 유통비용 절감액('17): 4,581.6억원

○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생산이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승수효과 = 로컬푸드 매출액 × 2.52('14년 로컬푸드활성화 연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4,402	14,705	14,705	13,215	△1,490	△10.1
▪ 직거래장터 지원	2,450	2,450 (70개소×50백만×70%)	2,450 (70개소×50백만×70%)	2,450 (40개소×50백만×70%) (2개소×711백만×70%)	-	-
▪ 직매장 지원	6,300	5,250 (25개소×700백만×30%)	5,250 (25개소×700백만×30%)	4,200 (20개소×700백만×30%)	△1,050	△20.0
▪ 직거래활성화지원 (소비자대상 홍보) (직거래활성화 교육) (직거래경영정보 운영)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행정경비)	1,265	2,265 800 (40회×20백만×100%) 600 (30개소×2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500백만×100%) 165	2,265 800 (40회×20백만×100%) 600 (30개소×2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500백만×100%) 165	2,265 800 (40회×20백만×100%) 600 (30개소×2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500백만×100%) 165	-	-
▪ 사이버거래소지원	3,087	3,440 (1개소×3,440백만×100%)	3,440 (1개소×3,440백만×100%)	3,000 (1개소×3,000백만×100%)	△440	△12.8
▪ 농산물 산유통경로확산 (온라인직거래활성화지원) (유기농식품유통활성화지원) (농산물판로확대)	1,200	1,200 500 (1개소×50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200백만×100%)	1,200 500 (1개소×50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200백만×100%)	1,200 500 (1개소×50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200백만×100%)	-	-
▪ 전통시장지역농산물판매촉진	100	100 (4개소×25백만×100%)	100 (4개소×25백만×100%)	100 (4개소×25백만×100%)	-	-
□ 비목(합계)	14,402	14,705	14,705	13,215	△1,490	△10.1
▪ 민간경상보조(320-01)	14,402	14,705	14,705	9,015	△5,690	△38.7
▪ 지자체자본보조(330-03)	-	-	-	4,200	4,2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 추진경위

- '12.01. 물가장관회의에서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결정
- '13.01. 소비자참여형 직거래사업 시범사업 추진
- '13.03. VIP주관 유통전문가 간담회에서 직거래 확대 논의
- '13.05. 기관합동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 '15.0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16.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7~'21)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농산물직거래활성화	118	121	122	154	144	14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15)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및 온라인 직거래 지원 확대 4,000백만원 증액(국회 승인변경)

○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15)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감소 및 담보부족 등(800백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선정사업자들의 사업준비기간 부족으로 사업 중도포기,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실집행 잔액 발생
- ('16) 담보부족 등으로 인한 융자 포기로 미집행(600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2 (154)	- (9)	40 (-)	162 (163)	**154** **(101)**	- (39)	8 (23)
'16년	537 531	- 39	- (-)	537 (570)	**531** **(474)**	- (42)	6 (54)
'17년	527 527	- (42)	- (-)	527 (569)	**527** **(495)**	- (43)	- (3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의 직매장설치지원 사업과 직거래 장터지원 사업을 2년차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직매장·직거래장터를 대도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16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사업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16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전환

* (1년차)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비 지원, (2년차) 직매장시설 설치 및 개장 홍보비 지원

- (지적내용) 직매장설치지원·직거래장터지원사업 등의 홍보 강화, 자부담 완화, 자금용도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17년 결산, 상임위)

⇒ (조치사항) ’19년부터는 비목을 전환(민간경상 → 지자체자본)함으로써 자금용도를 건축용도까지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한 자부담 완화(70% → 40%)를 유도함으로써 집행률 제고(‘19년 예산에 반영)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 * 소비지유통활성화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평가결과) 법적 근거의 명확성, 목적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지자체 추진사업과의 연계강화 및 지원사업자의 경영자립화 유도로 국고지원 10% 감축 제안

⇒ (조치사항) ‘16년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차단한 바 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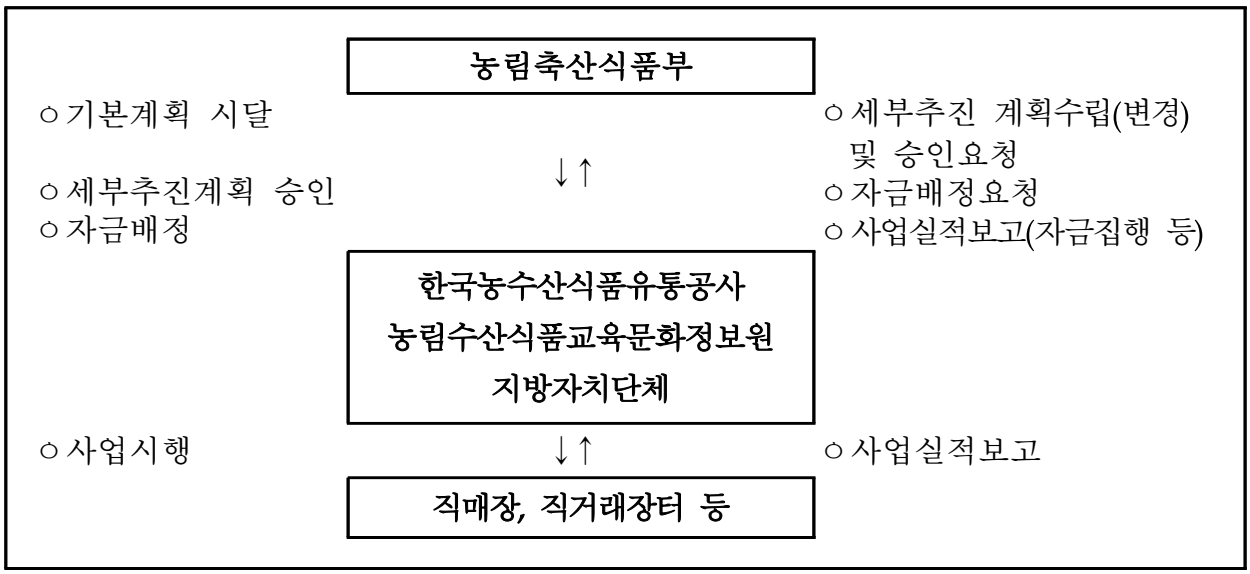

23.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융자)	38,300	38,300	38,300	**38,300**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9 - 31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남주)☎(044-201-228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재자금 및 구매자금비 등 융자사업 지원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이버거래소 선결재를 위한 결재자금 및 산지에서 농산물 직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기간	'16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사이버거래소결재자금 1식,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1식
지원조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융자(국비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융자(국비 100%) * 융자조건: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aT 사이버거래소 B2B(기업간거래) 결제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25,300백만원**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오프라인 기업 간 농산물 직거래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는 줄이고 유통비용은 절감**하여 농가소득은 올리고, 구매가격은 낮춤으로써 농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

* 직거래규모('17): 31,792억원(전체대비 6.8%), ** 유통비용 절감액('17): 4,581.6억원

○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생산이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승수효과 = 로컬푸드 매출액 × 2.52('14년 로컬푸드활성화 연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융자)**	**38,300**	**38,300**	**38,300**	**38,300**	**-**	**-**
▪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25,300**	**25,300** (1식×25,300백만×100%)	**25,300** (1식×25,300백만×100%)	**25,300** (1식×25,300백만×100%)	**-**	**-**
▪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	**13,000**	**13,000** (1식×16,250백만×80%)	**13,000** (1식×16,250백만×80%)	**13,000** (1식×16,250백만×80%)	-	-
□ **비목**(합계)	**38,300**	**38,300**	**38,300**	**38,300**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38,300	38,300	38,300	38,3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 추진경위

- ’12.01. 물가장관회의에서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결정
- ’13.01. 소비자참여형 직거래사업 시범사업 추진
- ’13.03. VIP주관 유통전문가 간담회에서 직거래 확대 논의
- ‘13.05. 기관합동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 ‘15.06.「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16.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7~‘21)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융자)	-	-	-	383	383	38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6) 담보부족 등으로 인한 융자 포기로 미집행(600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383 (383)	- (-)	- (-)	383 (383)	**377** **(377)**	- (-)	6 (6)
'17년	383 (383)	- (-)	- (-)	383 (383)	**383** **(383)**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 * 소비지유통활성화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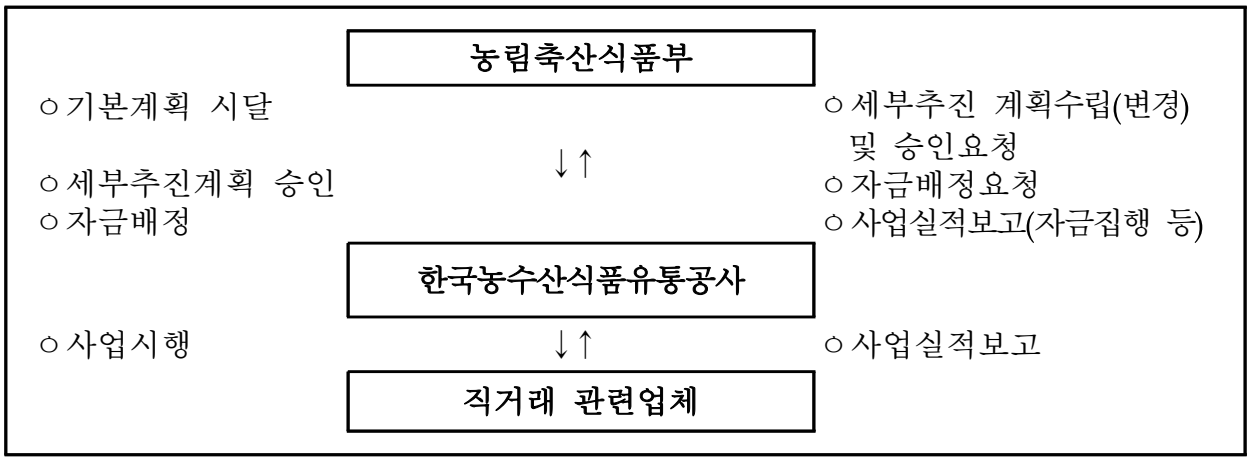

24. 종자 수매·공급(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종자수매·공급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6400 ~ 6435
* 담당자 : 국립종자원장(최병국), 식량종자과장(이태용), 사무관(우제현)☎(054-912-01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벼, 보리, 밀, 두류(콩, 팥)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고품질 우량종자(보급종)를 생산하여 수요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벼·보리·밀·두류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고품질 우량종자(보급종)를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
사업기간	'76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9년 종자 매입 계획량 29,953톤
지원조건	직접수행(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국립종자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급종 생산비 60,223백만원

▪ 종자 매입 : 60,118백만원

- 벼 : 24,903톤 × 수매단가 1,538천원/톤 × 제비용 1.18 = 45,195백만원
  * 식량산업 정책방향 및 농업인 수요 고려 다수확 품종 축소 및 고품질 품종 공급 추진
- 겉보리 : 500톤 × 수매단가 1,227천원/톤 × 제비용 1.20 = 736백만원
  * 농업인의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량 전년수준으로 편성
- 쌀보리 : 1,700톤 × 수매단가 1,355천원/톤 × 제비용 1.19 = 2,741백만원
  * 농가 선호품종 변화에 맞추어 전년수준으로 생산
- 청보리 : 500톤 × 수매단가 1,227천원/톤 × 제비용 1.20 = 736백만원
  * 조사료 재배면적 유지 및 겨울철 유휴농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수준 생산
- 밀 : 750톤 × 수매단가 1,295천원/톤 × 제비용 1.18 = 1,146백만원
  * 농업인의 수요량을 감안하여 일정수준 생산
- 두류(콩, 팥) : 1,600톤 × 수매단가 5,385천원/톤 × 제비용 1.11 = 9,564백만원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전년수준 생산량 유지

▪ 종자 피해농가 지원 : 65백만원
  * 보급종 문제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금 지원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편성

▪ 보급종 신청·공급 홍보 : 40백만원
  * 보급종 신청 및 공급 홍보를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편성

□ 지원 필요성

○ 종자 수매·공급사업은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단계를 거쳐 보급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둘 필요성이 있음

○ 최근 기후변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곡물의 수급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통해 국제 곡물가격 불안대응 및 식량안보 주권 강화 필요

○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보급종)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
- 벼의 경우 자가 채종종자보다 보급종 사용 시 수확량 106% 증수, 품질 향상 효과 발생

○ 주요 식량작물 종자에 대한 생산·공급이 중단될 경우, 농업인의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식량안보에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종자 수매·공급**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 종자 수매·공급 (산출근거)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 종자수매	65,601	60,118	71,269	60,118	△11,151	△15.6
- 벼	48,566	44,438 (23,655톤×1,592천원×118%)	55,742 (23,655톤×1,997천원×118%)	45,195 (24,903톤×1,538천원×118%)	△10,547	△18.9
- 겉보리	744	745 (500톤×1,242천원×120%)	621 (410톤×1,262천원×120%)	736 (500톤×1,227천원×120%)	115	18.5
- 쌀보리	3,093	2,778 (1,800톤×1,297천원×119%)	2,601 (1,604톤×1,423천원×119%)	2,741 (1,700톤×1,355천원×119%)	140	5.4
- 청보리	1,000	1,042 (700톤×1,241천원×120%)	580 (384톤×1,349천원×120%)	736 (500톤×1,227천원×120%)	156	26.9
- 밀	1,994	1,915 (1,270톤×1,278천원×118%)	866 (516톤×1,422천원×118%)	1,146 (750톤×1,295천원×118%)	280	32.3
- 콩	10,204	9,200 (1,670톤×5,008천원×110%)	10,859 (1,670톤×5,911천원×110%)	9,564 (1,600톤×5,385천원×111%)	△1,295	△11.9
○ 종자 피해농가 지원	-	65	-	65	65	순증
○ 홍보비	40	40 (10개소×4,000천원)	40	40 (10개소×4,000천원)	-	-
□ **비목**(합계)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 일반수용비 (210-01)	40	40	40	40	-	-
○ 손실보상금 (310-01)	-	65	-	65	65	순증
○ 저장품매입비 (430-02)	65,601	60,118	71,269	60,118	△11,151	△15.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종자산업법」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현황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추진경위

- '75년: 주요농작물종자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종자보급사업기금 663백만원이 조성되어 벼, 보리, 콩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사업 실시
- '00년: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에 의거 종자기금이 폐지(정부 유사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름)되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
- '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고품질 중심의 벼 종자 갱신율을 '07년까지 50%수준으로 연차적 확대 공급
- '08년: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 급등 및 국산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09년부터 밀 보급종 공급
- '09년: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에 따라 '12년부터 옥수수, 감자 작물은 융자사업으로 전환
- '11년: 주요곡물 수급안정 대책 및 밭작물 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추진계획 등에 따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콩 보급종 확대 공급 추진
- '14년: 상업성이 높은 옥수수 및 감자에 대한 융자 사업은 지자체 예산(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4년부터 폐지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종자 수매·공급	719	695	695	678	652	71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17) 벼 수매단가 상승에 따른 수매자금 증가로 1,864백만원 증액
- ('18) 보급종 수매단가 상승에 따른 수매자금 증가로 11,086백만원 증액

○ 이월

- ('16) 벼·콩 보급종 PP포대 구입건에 대해 계약업체의 검사·검수 요청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 원인행위 금액 449백만원 이월

○ 불용

- ('14) 종자 피해보상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65백만원 발생
- ('15) 종자 피해보상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65백만원 발생
- ('16) 벼 수매단가 하락, 수발아 피해발생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15,207백만원) 및 보상금(65백만원) 미지급

* '16년 벼 보급종 수매실적 : (계획) 27,818톤 → (실적) 21,982(계획대비 79%)

** 벼 수발아 피해 현황 : 8,358톤(1,520㏊)

*** 수매단가 : ('15년) 1,619원/kg → ('16년) 1,368(△251, 15.5%)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95 (-)	- (-)	- (-)	695 (-)	694 (-)	- (-)	1 (-)
'16년	678 (-)	- (-)	- (-)	678 (-)	520 (-)	5 (-)	153 (-)
'17년	634 ( )	4 ( )	19 ( )	657 ( )	657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회계연도 예결위 박완주의원: 벼 보급종 다수확품종 공급량 조절 필요

-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다수확 품종 보급종 공급량 축소

* ('17) 35% → ('18) 21% → ('19~) 15%미만

○ '17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18년): 보통(82.7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참고1

참고 1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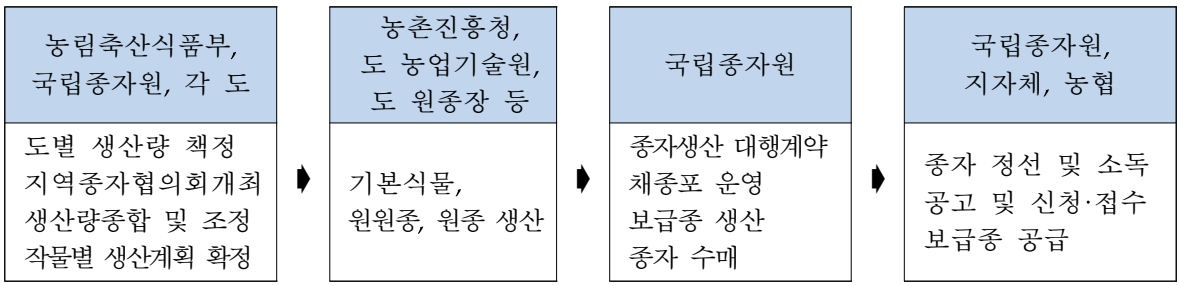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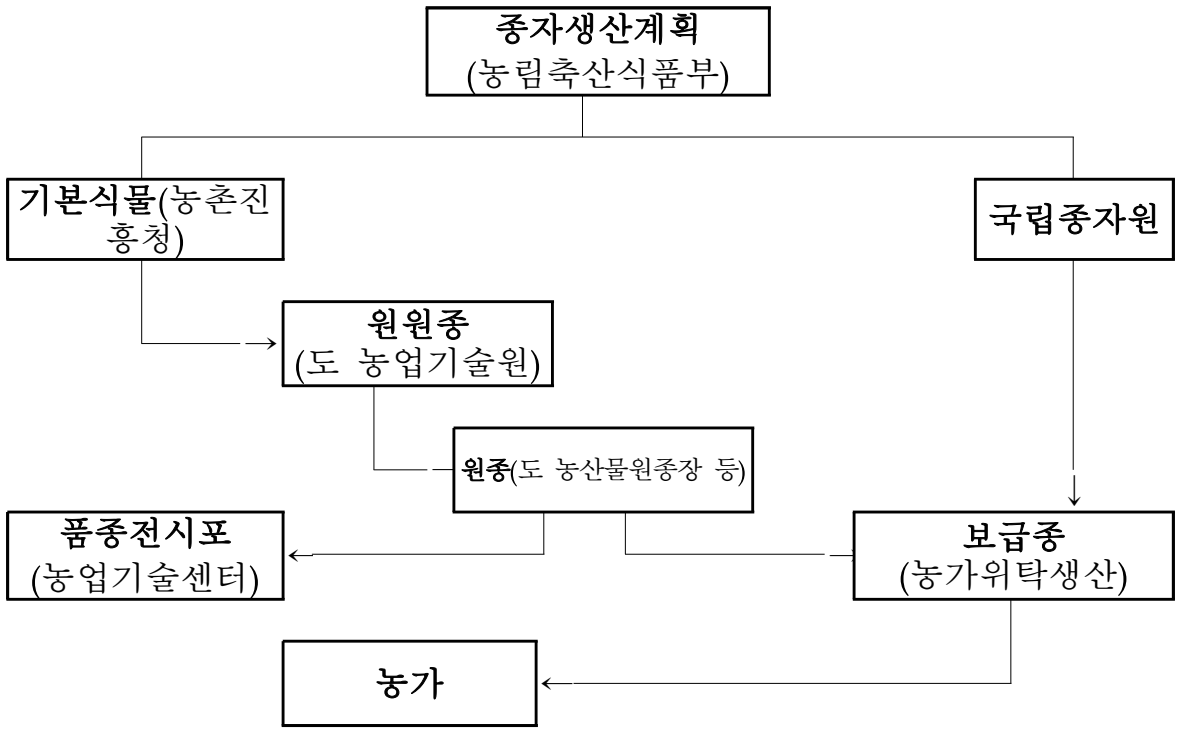

① 작물별 생산계획수립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② 채종단계별 생산·공급

기본식물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등)		(국립종자원)

③ 종자생산 대행계약

▪종자관리요강 제10조 [농식품부 고시 제2014-85호(2014.8.29)]

④ 채종포 운영 및 종자 수매

▪채종포장 운영 및 종자 수매 요령 [국립종자원 예규 제113호(2014.10.30)]

⑤ 공급공고, 종자 신청 및 보급종 공급

▪보급종 신청 및 공급 요령 [국립종자원 예규 제114호(2014.11.13]

25. 인건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761	742	742	**732**	**△10**	**△1.3**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7000 ~ 7076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동환)☎(044-201-22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기금위탁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탁관리 부서의 인건비 지급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위탁관리 인원 12명
지원조건	직접수행(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안기금 관리 인건비 : ('18) 742백만원→ ('19) 732 (전년대비 1.3% 감)

* '17년도 인건비 집행률 부진에 따른 감액 △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탁관리에 따른 부서운영 실비로서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원 필요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농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 제고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761**	**742**	**742**	**732**	**△10**	**△1.3**
▪ 인건비(12명)	761	**742** (12명)	**742** (12명)	**732** (12명)	△10	△1.3
□ 비목(합계)	**761**	**742**	**742**	**732**	**△10**	**△1.3**
○ 보수(110-01)	761	742	742	732	△10	△1.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추진경위

- 최초 시작연도 : 2000년
- 추진배경
  - ▪ 종자기금 및 인삼기금을 농안기금에 흡수 통합하면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 ▪ 기금운용계획 및 제도개선 등 정책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되 기금의 집행(수입, 지출, 융자관리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경비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인건비	7	7	7	7	8	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 (7)	- (-)	- (-)	7 (7)	7 (5)	- (-)	- (2)
'16년	7 (7)	- (-)	- (-)	7 (7)	7 (5)	- (-)	- (2)
'17년	8 (8)	- (-)	- (-)	8 (8)	8 (6)	- (-)	-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인건비(농안기금) 실집행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결원 발생 시 대책을 강구할 것('17년 결산, 상임위)

⇒ (조치사항) '18년 기금 사후관리 인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기금총괄관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 기금의 운용·관리 (농안법 제56조)
- 기금의 운용계획 (농안법 제60조)
- 기금 결산 및 보고 (농안법 제61조)

→

[기금수탁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금관리부)

- 기금의 운용·관리사무 수탁 (농안법 시행령 제22조)
- 기금의 수입·지출
-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6. 기타경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455	631	631	**685**	**54**	**8.6**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7000 ~ 7076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동환)☎(044-201-22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기금위탁 관리 경비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탁관리 부서의 운영경비 지급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위탁관리 인원 12명
지원조건	직접수행(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안기금 관리 기타경비 : ('18) 631백만원 → ('19) 685 (전년대비 8.6% 증)

* '18년 예산 중 기금평가 우수 인센티브 반영분 감액 △146백만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산시스템 개선 비용 증액 2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탁관리에 따른 부서운영 실비로서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원 필요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농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기금운영비)	**455**	**631**	**631**	**685**	**54**	**8.6**
▪ 기타경비(12명)	455	**631** (12명)	**631** (12명)	**685** (12명)	54	8.6
□ 비목(합계)	**455**	**631**	**631**	**685**	**54**	**8.6**
○ 일반수용비(210-01)	225	323	315	271	△44	△14.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4	41	41	31	△10	△24.4
○ 유류비(210-08)	3	5	5	5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7	112	112	7	△105	△93.8
○ 복리후생비(210-12)	34	35	35	33	△2	△5.7
○ 위탁사업비(210-15)	58	63	63	286	223	354
○ 기타운영비(210-16)	1	1	1	1	-	-
○ 국내여비(220-01)	30	29	37	29	△8	△21.6
○ 사업추진비(240-01)	23	22	22	22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추진경위

- 최초 시작연도 : 2000년
- 추진배경
  - ▪ 종자기금 및 인삼기금을 농안기금에 흡수 통합하면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 ▪ 기금운용계획 및 제도개선 등 정책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되 기금의 집행(수입, 지출, 융자관리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경비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기타경비	3	5	5	5	5	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 (5)	- (-)	- (-)	5 (5)	5 (5)	- (-)	- (-)
'16년	5 (5)	- (-)	- (-)	5 (5)	5 (5)	- (-)	- (-)
'17년	5 (5)	- (-)	- (-)	5 (5)	5 (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기금총괄관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 기금의 운용·관리 (농안법 제56조)
- 기금의 운용계획 (농안법 제60조)
- 기금 결산 및 보고 (농안법 제61조)

→

[기금수탁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금관리부)

- 기금의 운용·관리사무 수탁 (농안법 시행령 제22조)
- 기금의 수입·지출
-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7. 유통개선사업운영(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유통개선사업운영	48,201	49,508	49,508	**50,619**	**1,111**	**2.2**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7000 - 7076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동환)☎(044-201-22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 수급, 식품, 수출사업 관련 지원(위탁사업비, 홍보, 연구·조사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식품산업 육성 촉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 유통개선, 가격안정, 식품산업육성, 수출확대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인건비, 경비), 홍보비, 연구조사비 등 지원
사업기간	'8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국비 10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개선, 식품산업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홍보비, 연구조사비 등 50,619백만원 지원

- 유통개선운영: ('18) 47,108백만원 → ('19) 48,219 (증 1,11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사업 인건비(327 → 335명) 및 경비 등

- 농산물 유통개선 홍보비 : ('18) 2,000백만원 → ('19) 2,000 (전년 동)
- 농산물 유통관련 연구조사비 : ('18) 400백만원 → ('19) 400 (전년 동)

□ 지원 필요성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가격안정,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확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운영비, 홍보비, 연구조사비 등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유통개선사업운영	**48,201**	**49,508**	**49,508**	50,619	**1,111**	**2.2**
▪ 유통개선운영	46,013	47,108	47,108	48,219	1,111	2.2
▪ 유통개선홍보	1,997	2,000	2,000	2,000	-	-
▪ 연구개발비	191	400	400	400	-	-
□ 비목(합계)	**48,201**	**49,508**	**49,508**	50,619	**1,111**	**2.2**
○ 일반연구비(260-01)	191	400	400	4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48,010	49,108	49,108	50,219	1,111	2.2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51조(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류표준화 촉진 및 지도
2. 농산물의 산지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등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경영지도
3. 농산물유통종사자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유통전문지식의 교육훈련
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개선
5.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도
6. 농산물의 유통정보조사 및 전파
7.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개척
8.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지도
9. 농업경영인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농업정보 교육 등 농촌정보화 촉진사업
10.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 및 연구용역 등 유통조성 사업
11. 그 밖에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83 : 농식품 유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유통교육원 개원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업무 위탁(관서운영비 210-01)
- ‘00 : 수출지원 사업비 등에 포함된 인건비·경비를 하나의 목으로 편성
- ‘05 : 관서운영비(210-01)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로 목 변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유통개선사업운영	416	476	457	470	484	495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단위 :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57	-	-	457	453	-	4
	(457)	(-)	(-)	(457)	(441)	(-)	(16)
’16년	470	-	-	470	470	-	-
	(470)	(-)	(-)	(470)	(462)	(-)	(8)
’17년	484	-	-	484	482	-	2
	(484)	(-)	(-)	(484)	(482)	(-)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실행계획수립 보고(공사 등) → 세부사업 실행 계획 승인(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요청 및 지급(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공사 등) → 결과보고 및 정산(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참고 1 유통개선사업운영 세부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8계획 (A)	'19계획 (B)	전년대비	
			B-A	%
□ 유통개선사업운영	**49,508**	**50,619**	**1,111**	**2.2**
1. 유통개선운영	**47,108**	**48,219**	**1,111**	**2.4**
① 인건비 ('18년 327명→'19년 335명)	27,976	29,016	1,040	3.7
② 기관운영비	11,498	11,569	71	0.6
③ 사업경비	367	367	-	-
④ 일반관리비	7,267	7,267	-	-
2. 유통개선홍보비	**2,000**	**2,000**	**-**	**-**
3. 연구개발비	**400**	**400**	**-**	**-**

참고 2 '유통개선운영'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사업·인력 현황

구 분 (327명→335)	사업내용	비 고
□ 농 산 물 수급관리 (60명→61)	○ 채소류 수급관리 (18명 → 19)	- 품목별 수급관리대책 수립 - 품목별 산지 및 시장정보조사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관리 - 수급정보시스템 구축지원('19년 증원)
	○ 노지채소 계약재배 (13명 → 13)	- 수요자 및 공급자 계약이행 관리 - 계약재배사업 시스템 구축 - 수매비축사업 연계 운영
	○ 국내가격정보조사 (14명 → 14)	-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조사 - 시장거래동향 분석 - 유통정보 분산 - 화훼정보 조사분석
	○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8명 → 8)	- 유통실태·테마정보 조사 - 물류표준화실태 조사 - 농산물 물류비·물류효율화율 산정 - KAMIS 운영
	○ 수입정보 조사분석 (7명 → 7)	- 해외모니터 등을 통한 농산물수입정보조사 - 농산물 사전세액심사 검증회의 운영 - 농산물 수급동향, 긴급현황 조사 등
□ 농 산 물 유통조성 (66명→66)	○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 (17명 → 17)	- 유통기획 및 예산 종합관리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종합관리 - 싱싱장터 운영 관리 - 농식품 공정거래 지원 -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
	○ 산지유통지원 (17명 → 17)	- 산지유통조직 선정, 지원 및 종합평가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APC사업자 선정 및 운영실태 분석 - 산지유통시설 관리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거점APC 사업성진단 및 경영평가·분석
	○ 저온유통체계구축 (1명 → 1)	-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사업수요조사 실시,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 도매시장 운영개선 (9명 → 9)	-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관리 -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지원 - 도매시장 수탁관리
	○ 물류효율화사업 (3명 → 3)	- 공동출하확대사업 지원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 파렛트 최소출하단위 설정 운영 추진 - RFID 회수관리시스템 구축 - 기타 물류효율화 신사업 발굴 및 검토
	○ 유통교육훈련 (19명 → 19)	- 유통일반 및 전문 교육 - 교수실 운영(유통관련 강의/연구 수행)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 농 산 물 수출진흥 (165명 → 172)	○ 신선농산물수출지원 (42명 → 42)	- 수출 선도조직 육성 - 수출전문단지 경쟁력 강화 교육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대일수출채소 ID관리 등) - 신선농산물 해외인증등록, 수출보험 등 지원 - 신신농산물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 신선농산물 개별브랜드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컨설팅 - 품목별 협의회 공동마케팅 지원
	○ 가공식품수출지원 (41명 → 41)	- 수출 유망품목 육성 -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가공식품사전등록제 등) - 가공식품 해외인증등록, 수출보험 등 지원 - 가공식품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 가공식품 개별브랜드 지원 - 가공식품 수출컨설팅 -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한 수출현지화지원
	○ 수출인프라강화 (59명 → 66)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종합, 아웃소싱, 개별박람회 지원 - 온라인·모바일 마케팅(중국 웨이신 등 연계) - 바이어 거래알선 - 해외 안테나숍 운영 - TV특집물 제작·방영, 옥외·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미디어 홍보 - K-Food Fair - 재외공관 협력 농식품 홍보 등을 통한 현지 유력 인사 구전마케팅 - 해외대학, 요리전문기관 연계 등 소비자 체험마케팅 - 해외시장정보 조사 및 전파 - 수출실적 및 동향 전파, 언론매체를 통한 수출성공 사례 전파 등 국내 수출의욕 고취 - 신제품 마켓테스트, 통관 및 검역애로 해소 지원 등 종합적 시장개척 업무 지원 - 신남방 전략지역 수출거점 확보 및 성과확대를 위한 시장개척('19년 증원)
	○ 대중국유망상품육성 (13명 → 13)	- 대 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마케팅
	○ 농식품수출 시장다변화 (1명 → 1)	-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
	○ 수출플랫폼 구축 (9명 → 9)	- 수출전문농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 식품산업 육 성 (36명 → 36)	○ 식품산업육성 지원 (10명 → 10)	- 식품·외식산업 종합기획 및 관리 - 식품산업육성 예산확보 및 관리 - 식품제조업 육성 사업 기획 및 발굴 - 식품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 Korea Food Show 개최 및 운영 - 대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 운영 -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 및 자문단 운영
	○ 외식진흥사업 (8명 → 8)	-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글로벌 외식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외식산업 통계, 정보조사·분석 - 외식정보 통합 홈페이지 운영 - 외식 협의체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진흥사업 (10명 → 10)	-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 - 전통주산업 및 전통식품산업 육성 사업 - 식품명인 발굴·육성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우수성 홍보 및 판촉 지원 - 전통주 품질고급화 지원 -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기관 운영 - 전통식품 교육훈련기관 지정·지원 등
	○ 중소식품기업종합지원 (3명 → 3)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종합운영 계획 수립 - 식품기업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식품업체 종합DB 구축 및 상담운영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식품업체 지원사업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외부 식품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 중소기업협력지원 사업 운영
	○ 중소식품기업 컨설팅 (3명 → 3)	- 식품제조·외식 컨설팅 종합기획 - 식품업체 문제점 사전 진단에 관한 업무 - 식품업체 현장코칭 시행 - 식품제조업체 경영 및 기술 컨설팅 - 외식업체·수출업체 종합 컨설팅 - 해외 한식당 컨설팅 - 원예단지 해외전문가 초청 컨설팅 - 유기가공식품업체 컨설팅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 식품정보 제공 (2명 → 2)	- 식품산업정보 사업계획 수립 - 식품통계 수집 및 분석 - 식품산업 심층정보 조사, 분석 - 식품통계·정보 자문단 운영 및 워크숍 - 식품산업통계시스템(FIS) 운영 관리

참고 3 사업경비 현황(유통구조개선 및 식품산업육성)

1.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경로 다원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 정책 수립 및 지원

○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식품·외식산업의 정책과제 발굴 및 홍보

2.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식품산업 육성 관련 정책개발, 토론회·간담회, 조사·연구, 사업경비, 홍보 등 지원 경비

3.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2018(A)	2019(B)	증감(B-A)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217	217	-
○ 식품산업육성	150	150	-
합 계	**367**	**367**	**-**

28. 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재량, 계속)
29.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당초	수정(A)	(B)	(B-A)	%
□ 여유자금운용	303,159	224,222	220,730	**254,252**	**33,522**	**15.2**
○ 한국은행예치(농안기금)	2,533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 (농안기금)	30,000	74,222	70,730	**156,478**	**85,748**	**121.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농안기금)	270,626	150,000	150,000	**97,774**	**△52,226**	**△34.8**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9700 - 9702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동환)☎(044-201-22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간 기금 총 수입액 중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 중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 이외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정기예금 등 예치은행 상품 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금 투자풀(MMF, 채권형 수익증권 등) 및 증권사 예치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여유자금을 통화·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및 운용
사업기간	'9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여유자금 운용 : ('18) 224,222백만원 → ('19) 254,252

- 통화금융기관예치 : ('18) 74,222백만원 → ('19) 156,478
  · 254,252백만원 × 61.5% ≒ 156,478백만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18) 150,000백만원 → ('19) 97,774
  · 254,252백만원 × 38.5% ≒ 97,774백만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여유자금운용	**303,159**	**224,222**	**220,730**	**254,252**	**33,522**	**15.2**
▪ 한국은행예치(농안기금)	2,533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 (농안기금)	30,000	74,222	70,730	156,478	85,748	121.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농안기금)	270,626	150,000	150,000	97,774	△52,226	△34.8
□ 비목(합계)	**303,159**	**224,222**	**220,730**	**242,252**	**33,522**	**15.2**
○ 한국은행예치(470-01)	2,533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470-02)	30,000	74,222	70,730	156,478	85,748	121.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470-03)	270,626	150,000	150,000	97,774	△52,226	△34.8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여유자금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일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 달성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여유자금운용	3,597	3,855	3,604	5,648	6,509	2,24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사업비 증액만큼 여유자금에서 감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604 (3,604)	- (-)	△1,017 (△1,017)	2,587 (2,587)	2,267 (2,267)	- (-)	- (-)
'16년	5,648 (5,648)	- (-)	△550 (△550)	5,098 (5,098)	4,829 (4,829)	- (-)	- (-)
'17년	6,509 (6,509)	- (-)	△18 (△18)	6,491 (6,491)	3,032 (3,03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평가결과 :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14회계연도 : 양호, '16회계연도 : 우수)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농 어 업 재 해 재 보 험 기 금

목 차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 2145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 2146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이자수입) ····· 2147

2. 면허료 및 수수료(재보험료 수입) ····· 2148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149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150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재보험금 ····· 2151

2. 인건비 ····· 2155

3. 기타경비 ····· 2158

4. 통화금융기관예치 ····· 2161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164

Ⅰ. 총 괄 표

1. 2019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196,573**	**330,481**	**409,489**	**79,008**	**23.9**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812**	**3,920**	**3,360**	**△560**	**△14.3**
기타재산수입 (54-545)	2,812	3,920	3,360	△560	△14.3
65 면허료 및 수수료	**16,599**	**159,000**	**111,300**	**△47,700**	**△30.0**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16,599	159,000	111,300	△47,700	△30.0
85 정부 예금회수	**177,162**	**167,561**	**294,829**	**127,268**	**76.0**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85-852)	102,541	101,537	176,897	75,360	74.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85-853)	74,621	66,024	117,932	51,908	78.6

2. 2019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결산	'18 계획 (A)	'19 계획 (B)	(B-A)	%
총 계	**196,573**	**330,481**	**409,489**	**79,008**	**23.9**
1032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	**53,402**	**10,000**	**20,000**	**10,000**	**100.0**
재보험금(1032-301)	53,402	10,000	20,000	10,000	100.0
7079 기금운영비	**657**	**604**	**575**	△29	△4.8
인건비(7079-101)	402	400	395	△5	△1.3
기타경비(7079-201)	252	204	180	△24	△11.8
9707 여유자금운용	**142,514**	**319,877**	**388,914**	**69,037**	**21.6**
통화금융기관예치(9707-971)	139,417	219,877	204,480	△15,397	△7.0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7-972)	3,097	100,000	184,434	84,434	84.4

Ⅱ. 수입계획 설명서

1. 기타재산수입(이자 수입)

54 - 545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기타재산수입	2,812	3,920	3,360	△560	△14.2

1. 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4호(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및 재보험금 지급 대기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 등

3. 2019년 계획 내역

○ 이자수입 : 3,360

- 대상자금 : 여유자금 142,514, 기금운영비 575, 재보험료 111,300, 재보험금 20,000
- 적용금리 : 1.64%
- 대상기간별 운용 여유자금('19년도)
  - 1.1~3.31 : '17년 여유자금운용회수분 - 기금운영비 = 141,939(A)
  - 4.1~5.31 : (A) + 정부출연금 = 141,939(B)
  - 6.1~11.30 : (B) + 재보험료 수입 = 253,239(C)
  - 12.1~12.31 : (C) - 재보험금 = 233,239(D)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6,810	2,285	2,285	33.6	100.0	-	-
'15	5,200	2,326	2,326	44.7	100.0	-	-
'16	14,077	3,063	3,063	21.8	100.0	-	-
'17	14,077	2,812	2,812	20.0	100.0	-	-
'18.11	3,920	1,705	1,705	43.5	100.0	-	-

2. 면허료 및 수수료(재보험료 수입)

65 - 651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면허료 및 수수료	16,599	159,000	111,300	△47,700	△30.0

1. 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1호(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수입 개요

○ 국가재보험인수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가 재보험료 수입

3. 2019년 계획 내역

○ (농작물) '17년 대비 2.2배 수준, (수산물) '17년 수입에 연평균 증가율 적용

- [(농작물) 49,486 × 2.2] + [(수산물) 2,781 × 1.8%] = 111,300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13,194	14,223	14,223	107.8	100.0	-	-
'15	22,600	24,627	24,627	109.0	100.0	-	-
'16	24,463	26,040	26,040	106.4	100.0	-	-
'17	24,084	16,599	16,599	68.9	100.0	-	-
'18.11	159,000	31,695	31,695	19.9	100.0	-	-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2,541	101,537	176,897	75,360	74.2

1. 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4호(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계획상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액(여유자금운용액)의 차년도 회수금액

3. 2019년 계획 내역

○ 전년도 계획상 여유자금운용 금액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49,800	36,245	36,245	72.8	100.0	-	-
'15	116,153	69,485	69,485	59.8	100.0	-	-
'16	156,842	88,552	88,552	56.5	100.0	-	-
'17	113,336	102,541	102,541	90.5	100.0	-	-
'18.11	101,537	83,380	83,380	82.1	100.0	-	-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단위 : 백만원)

목명	2017년 수납액	2018년 계획 (A)	2019년 계획 (B)		
				(B-A)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4,621	66,024	117,932	51,908	78.6

1. 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4호(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계획상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액(여유자금운용액)의 차년도 회수금액

3. 2019년 계획 내역

○ 전년도 계획상 여유자금운용 금액

4.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14	-	12,605	12,605	순증	100.0	-	-
'15	-	27,134	27,134	순증	100.0	-	-
'16	-	66,521	66,521	순증	100.0	-	-
'17	75,558	74,621	74,621	98.8	100.0	-	-
'18.11	66,024	3,097	3,097	4.7	100.0	-	-

Ⅲ. 지출계획 설명서

1. 재보험금(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재보험금	53,402	10,000	10,000	**20,000**	**10,000**	**100.0**

* 사업코드 : 20 - 94 - 0 - 100 - 101 - 1000 - 1032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사무관(최은철)☎(044-201-179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손해(농작물 손익분담방식에 따른 정부 부담분, 양식수산물 150% 초과 손해)발생 시 그 피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거대재해 발생시 일정수준 이상의 손해율에 대해서 국가가 재보험 기금으로 지원
사업기간	'05 ~ 계속(양식수산물은 '08년부터 시작)
총사업비	계속사업('17년까지 투자액 4,187억원)
사업규모	(농작물) 대상품목 53개, 보험료 3,620억원, 가입률 30.1%('17년 기준) (양식수산물) 대상품목 27개, 보험료 343억원, 가입률 42.1%('17년 기준)
지원조건	민간보조, 거대재해 피해(농작물 손익분담방식에 따른 정부 부담분, 양식수산물 150% 초과) 전액 지원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관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재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0,000백만원

- 최근 5년간 재보험금 평균집행액(197억원) 고려하여 '18년 대비 100% 증액
- 산출내역 : 최근 5년간 평균집행액 (987억원 ÷ 5년)

* ('18년) 최근 집행액('16년 149억원) → ('19년) 최근 5년간 평균집행액 197억원

□ 지원 필요성

○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에 비해 위험이 매우 높아 민간 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의 사업 참여 의지가 낮은 실정. 이에 국가재보험제도(기금)를 통해 재해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 실제, '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해를 입은 민영보험사들은 '03년부터 재보험사업에서 철수하였고, '03년 태풍 "매미" 이후 원수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현. 농협손보)마저 사업을 기피
- '05년 재보험기금 설치이후 민영보험사가 사업에 복귀하였으며, 원수보험사 또한 현재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 중
- '12년의 경우 연속적인 태풍(볼라벤·덴빈·산바), 우박, 폭염 등으로 재해보험사업자 및 민영보험사가 큰 손실을 보았으나, 재보험기금으로 약 2,925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을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재보험금	**53,402**	**10,000**	**10,000**	**20,000**	**10,000**	**100**
▪재보험금 (산출근거)	53,402	**10,000** ('16년 149억원)	**10,000** ('16년 149억원)	**20,000** (987억원÷5년)	10,000	100
□ 비목(합계)	**53,402**	**10,000**	**10,000**	**20,000**	**10,000**	**100**
○ 재보험금(301)	53,402	10,000	10,000	20,000	10,000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추진경위

-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시행 (‘01)
- ‘02～‘03년 태풍 “루사·매미”로 민영보험사의 사업철수
- 농업인의 날(기념사),V.I.P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천명(‘03.11)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설치·운용(‘05.6)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시행(‘07.12)
- 자두의 동상해피해로 국가재보험금 최초지급(‘08.12)
-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설치·운용(‘09.1)
-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공포(‘09.3, ‘10.1.1 시행)
- ‘12년 태풍 등 거대재해로 재보험금 2,925억원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재보험금	230	230	230	230	50	10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 : 자연재해 발생이 적어 집행잔액 발생
○ ‘16년 불용 : 양식수산물 거대재해의 손해규모 확정 및 재보험금 청구 지연
○ ‘17년 불용 : 집행잔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30	-	-	230	44	-	186
	(230)	(-)	(-)	(230)	(44)	(-)	(186)
’16년	230	-	-	230	149	-	81
	(230)	(-)	(-)	(230)	(149)	(-)	(81)
’17년	50	-	488	538	534	-	4
	(50)	(-)	(488)	(538)	(534)	(-)	(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54개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실시
○ 미국·일본·캐나다·스페인 등 50~60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
- 대부분의 국가가 30품목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대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보험 운영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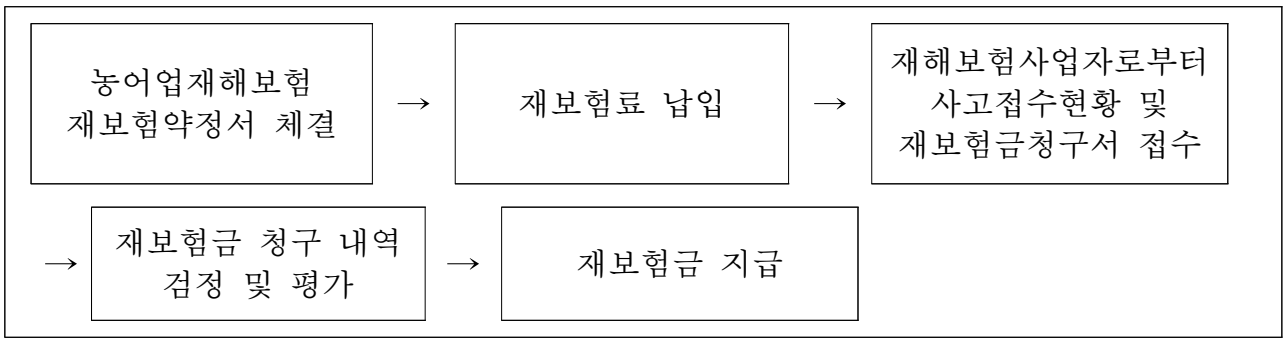

2. 인건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402	400	400	395	△5	△1.3

* 사업코드 : 20 - 94 - 0 - 100 - 101 - 7000 - 7079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사무관(최은철)☎(044-201-179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 인건비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탁관리 인건비 지급
사업기간	'05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위탁관리비 실소요액 지원
지원조건	기금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위탁업무내용

- 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기금 여유자금 운용, 기금의 결산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재보험기금 인건비 : ‘17년 대비 1.3% 감소

- (‘18) 400백만원 → (‘19) 395백만원(5백만원 감)

□ 지원 필요성

○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인건비	**402**	**400**	**400**	**395**	**△5**	**△1.3**
▪ 인건비 (산출근거)	402	400	400	395	△5	△1.3
□ 비목(합계)	**402**	**400**	**400**	**395**	**△5**	**△1.3**
○ 인건비(110)	402	400	400	395	△5	△1.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등 위탁에 따른 위탁관리경비 실소요액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 인건비	3.57	3.63	3.77	3.88	4.02	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77	-	-	3.77	3.77	-	-
	(3.77)	(-)	(-)	(3.77)	(3.66)	(-)	(0.11)
'16년	3.88	-	-	3.88	3.88	-	-
	(3.88)	(-)	(-)	(3.88)	(3.16)	(-)	(0.72)
'17년	4.02	-	-	4.02	4.02	-	-
	(4.02)	(-)	(-)	(4.02)	(3.29)	(-)	(0.7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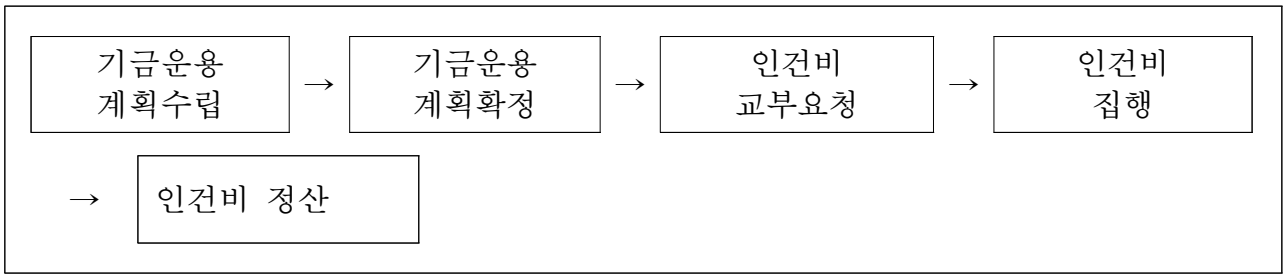

3. 기타경비(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252	204	204	**180**	**△24**	**△11.8**

* 사업코드 : 20 - 94 - 0 - 100 - 101 - 7000 - 7079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사무관(최은철)☎(044-201-179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 기타경비 지급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탁관리 기타경비 지급
사업기간	'0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위탁관리비 실소요액 지원
지원조건	기금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위탁업무내용

- 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기금 여유자금 운용, 기금의 결산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재보험기금 기타경비 : ‘17년 대비 11.8% 감소

- (‘18) 204백만원 → (‘19) 180백만원(24백만원 감)

□ 지원 필요성

○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기타경비	**149**	**204**	**204**	**180**	**△24**	**△11.8**
▪ 기타경비 (산출근거)	149	204	204	180	△24	△11.8
□ 비목(합계)	**149**	**204**	**204**	**180**	**△24**	**△11.8**
○ 운영비(210)	111	144	144	127	△17	△11.8
○ 여비(220)	17	11	11	11	0	-
○ 업무추진비(240)	18	11	11	11	0	-
○ 연구개발비(260)	-	35	35	29	△6	△17.1
○ 유형자산(430)	3	3	3	2	△1	△33.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등 위탁에 따른 위탁관리경비 실소요액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기타경비	1.79	1.64	1.60	1.60	149	20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0 (1.60)	- (-)	- (-)	1.60 (1.60)	1.60 (1.30)	- (-)	- (0.3)
'16년	1.60 (1.60)	- (-)	- (-)	1.60 (1.60)	1.60 (0.97)	- (-)	- (0.63)
'17년	1.49 (1.49)	- (-)	- (-)	1.49 (1.49)	1.49 (1.24)	- (-)	- (0.2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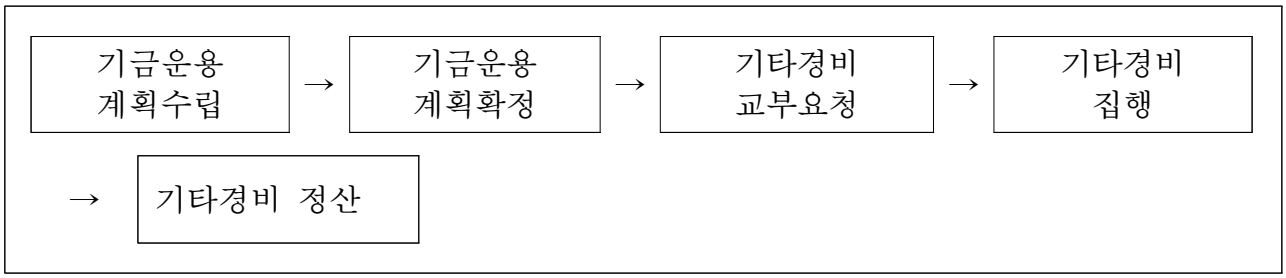

4. 통화금융기관예치(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통화금융기관예치	139,417	219,877	219,877	**204,480**	**△15,397**	**△7.0**

* 사업코드 : 20 - 94 - 0 - 100 - 101 - 9700 - 9707 - 971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사무관(최은철)☎(044-201-179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적립과 거대재해 시 국가재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수입에서 사업비, 기금운영비 등 총지출을 차감한 여유재원의 운용
사업기간	'05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9년 계획 : 204,480백만원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19년 여유자금(총수입에서 사업비, 기금운영비 등 총지출 차감한 잔액)의 52.6%

- ‘19년 여유자금 = 총조성액 - (사업비지출금액 + 기금운영비)
  388,914백만원 = 409,489백만원 - (20,000백만원 + 575백만원)
- 204,480백만원 = 388,914백만원 × 52.6%

□ 지원 필요성

○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통화금융기관예치	**139,417**	**219,877**	**219,877**	**204,480**	**△15,397**	**△7.0**
▪통화금융기관예치	139,417	219,877	219,877	204,480	△15,397	△7.0
□ 비목(합계)	**139,417**	**219,877**	**219,877**	**204,480**	**△15,397**	**△7.0**
○통화금융기관예치(971)	139,417	219,877	219,877	204,480	△15,397	△7.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기금의 조성)

○ 추진경위

- 재보험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
- 수익률 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일부 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연기금투자풀)에 운용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통화금융기관예치	468	1,045	1,412	1,889	131,268	219,87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6,842	-	-	156,842	88,552	-	-
'16년	188,894	-	-	188,894	102,540	-	-
'17년	131,268	-	-	131,268	139,41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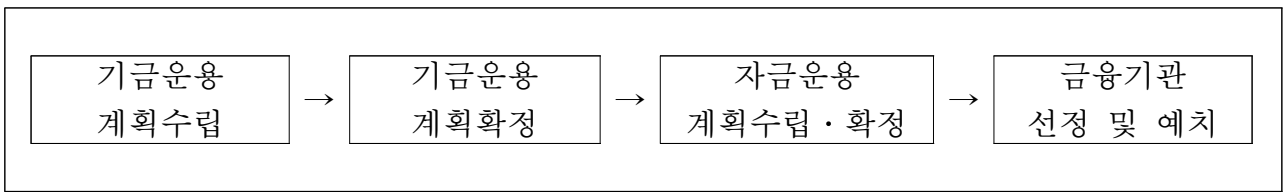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097	100,000	100,000	**184,434**	**84,434**	**84.4**

* 사업코드 : 20 - 94 - 0 - 100 - 101 - 9700 - 9707 - 972
* 담당자 : 농업정책국장(이주명), 재해보험정책과장(문석호), 사무관(최은철)☎(044-201-179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적립과 거대재해 시 국가재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기금수입에서 사업비, 기금운영비 등 총지출을 차감한 여유재원의 운용
사업기간	'0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9년 계획 : 184,434백만원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19년 여유자금(총수입에서 사업비, 기금운영비 등 총지출 차감한 잔액)의 47.4%

- ‘19년 여유자금 = 총조성액 - (사업비지출금액 + 기금운영비)
  388,914백만원 = 409,489백만원 - (20,000백만원 + 575백만원)
- 184,434백만원 = 388,914백만원 × 47.4%

□ 지원 필요성

○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097**	**100,000**	**100,000**	**184,434**	**84,434**	**84.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097	100,000	100,000	184,434	84,434	84.4
□ 비목(합계)	**3,097**	**100,000**	**100,000**	**184,434**	**84,434**	**84.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	3,097	100,000	100,000	184,434	84,434	84.4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기금의 조성)

○ 추진경위

- 재보험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 수익률 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일부 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연기금투자풀)에 운용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통화금융기관예치	468	1,045	1,412	1,889	131,268	219,87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684	-	-	15,684	66,521	-	-
'16년	-	-	-	-	74,621	-	-
'17년	90,130	-	△48,837	41,293	3,09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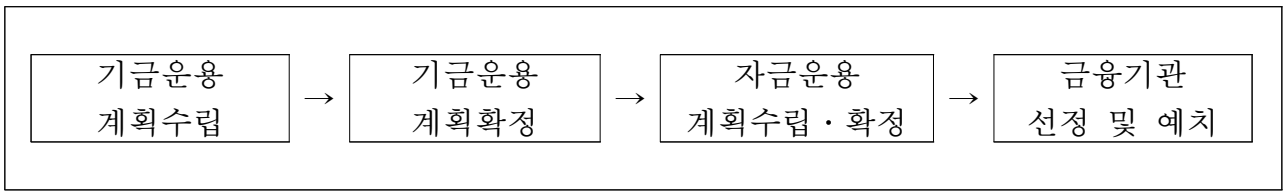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